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38-01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38-01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11.

연구수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이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 효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 복 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 영 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차 정 미 (연세대학교)

春木育美 (Toyo Eiwa 대학교)

이은나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유 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 하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지원 : 서 지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혜 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 은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I. 서론	1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조사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조사연구의 활용방안과 한계점	9
II. 세계 각국의 인권기구 일반 현황	11
1. GANHRI A 등급 국가인권기구	13
가. 아시아 태평양	13
1) 아프가니스탄	13
2) 인도네시아	22
3) 요르단	31
4) 몽고	39
5) 네팔	49
6) 뉴질랜드	56
7) 팔레스타인	68
8) 카타르	79
9) 동티모르	88
나. 유럽	100
10) 알바니아	100
11) 크로아티아	112
12) 라트비아	117
13) 러시아	125
14) 우크라이나	132
15) 조지아	139
16) 룩셈부르크	148

17) 핀란드 .....	158
18) 그리스 .....	169
19) 헝가리 .....	179
20) 아일랜드 .....	198
21) 북아일랜드 .....	208
22) 스코틀랜드 .....	214
23) 네덜란드 .....	224
24) 포르투갈 .....	235
25) 세르비아 .....	248
다. 미주 .....	258
26) 아르헨티나 .....	258
27) 볼리비아 .....	269
28) 칠레 .....	285
29) 콜롬비아 .....	295
30) 에콰도르 .....	308
31) 엘살바도르 .....	318
32) 과테말라 .....	340
33) 아이티 .....	357
34) 니카라과 .....	378
35) 파나마 .....	389
36) 페루 .....	404
37) 베네수엘라 .....	417
라. 아프리카 .....	432
38) 카메룬 .....	432
39) 이집트 .....	444
40) 모리타니 .....	457
41) 가나 .....	470
42) 탄자니아 .....	478

43) 잠비아	484
44) 부룬디	491
45) 말라위	505
46) 모리셔스	519
47) 모로코	533
48) 르완다	546
49) 시에라리온	558
50) 토고	569
51) 우간다	580
2. GANHRI B 등급 국가인권기구 (5개국)	588
가. 태국	588
나. 방글라데시	597
다. 오스트리아	606
라. 노르웨이	612
마. 스웨덴	619
Ⅲ. 주요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주요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심층조사	627
1. 호주	629
2. 인도	659
3. 말레이시아	692
4. 필리핀	723
5. 덴마크	757
6. 프랑스	784
7. 독일	815
8. 영국	837
9. 폴란드	861
10. 스페인	895
11. 캐나다	926

12. 코스타리카 .....	962
13. 멕시코 .....	999
14. 케냐 .....	1033
15. 남아프리카공화국 .....	1065
16. 나이지리아 .....	1095
IV.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국가의 인권시스템 현황 .....	1125
1. 미국 .....	1127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127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기구 및 법제 .....	1145
다. 미국 인권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153
2. 중국 .....	1155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155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정책 및 법제 .....	1170
다. 중국 인권 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176
3. 일본 .....	1187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187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정책 및 법제 .....	1201
다. 일본 인권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208
V.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현황 분석 결과 .....	1215
1. 조사 국가 일반 현황 .....	1217
2. 법적 성격(설립근거법)으로 인한 기구의 유형화와 특징 .....	1228
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유형화와 특징 .....	1230
4. 지리적 위치에 따른 대륙별 기구 분석 .....	1232
5. B등급 국가 특징 및 소결 .....	1240

## 서론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조사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조사연구의 활용방안과 한계점	9



##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출발하였고,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이 채택되면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공고히 하였다. 유엔은 창설이후 각국에 인권 자료센터나 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했으며, 1978년 국가인권위원회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을 각국 정부에 회람 시킨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면서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그리고 파리원칙 결의안 채택으로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다.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지역별로 국제인권기구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각국의 인권기구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는 2016년 3월 연례 총회(스위스 제네바)를 통해 기존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GANHRI는 전 세계 약 110여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인권기구는 각 국가에서 인권 전담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차이가 있다. 2016년 3월 현재 A등급으로 승인 받은 국가는 모두 72개국이며, B등급 국가는 29개이다.

GANHRI는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보다 잘 준수하도록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역할, 기능 그리고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국가인권기구에 권고하고 있으며, 각 국가인권기구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외국사례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향후 위원회가 파리원칙을 보다 준수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상, 운영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해당 국가의 인권 법제 및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2. 조사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가. 조사연구 내용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GANHRI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및 기구형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인권위원 선출방식,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및 권한 행사방식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계 주요국가의 인권시스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였다.

각국의 인권기구에 대한 조사는 크게 일반현황과 심층현황으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다음은 일반현황과 심층조사의 내용이다.

<표 I -1> 조사 내용

일반현황 조사	심층조사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2) 설립 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 (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3) 조직 구성(인원,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5) 주요권한 및 활동 (6) 특이사항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 일반현황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2) 설립 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 (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3) 조직 구성(인원,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5) 주요권한 및 활동 (6) 해당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및 활동내용 (1)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2)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3)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1) 피해자 구제 (2) 교육 (3) 홍보 (4) 정책 개선 (5) 사법부 의견 제출 (6) 주요 인권이슈 (7)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4)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인권기구

#### 4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이번 조사연구에서 일반현황 외에 심층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전체 정부 조직구조 안에서 살펴보고,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조사하며,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기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심층조사 대상 국가는 아메리카의 3개국, 아시아태평양 4개국, 아프리카 3개국, 유럽 6개국으로 대륙별 안배를 두고, 유럽의 인권분야의 선진기구들을 더 많이 포함시켰다.

<표 I-2> 심층조사 대상 국가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
1. 호주	5. 덴마크	11. 캐나다	14. 케냐
2. 인도	6. 프랑스	12. 코스타리카	15. 남아공
3. 말레이시아	7. 독일	13. 멕시코	16. 나이지리아
4. 필리핀	8. 영국		
	9. 폴란드		
	10. 스페인		

한편,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3개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차별개선에 대한 조정기구가 활발한 미국과 사회주의권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국, 그리고 인권기구가 없지만 정부조직 안에서 인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이 그 대상국이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처럼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에 대해 조사한 이유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 국가들이나 공식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없어 해당 국가와의 교류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그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 나. 조사연구 대상 국가 및 조사 방법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국가를 크게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조사와 심층현황 조사로 구분하였다. 일반현황 조사대상은 아메리카 15개국, 아시

아아프리카 15개국, 아프리카 18개국, 유럽 28개국으로 총 76개국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4개 국가를 제외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72개 국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공식적인 법률 문서, UPR 보고서, 해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레터, 활동자료 등을 1차 문헌으로 활용하였다. 심층조사 국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해당 국가와 관련한 연구논문이나 해당 국가의 공식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 중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가 닫혀있거나 오류가 있는 등의 이유로 조사자체가 지연되었고, 조사대상 국가의 언어에 접근성이 낮아 해당 언어 사용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이들 국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웹사이트와 언어의 제한이 가장 큰 제약요건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수행했던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국가인권위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은 경우이다. 엘살바도르와 동티모르의 경우,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으니 정보 화일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얼마 후, 해당 국가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연구진의 지인을 통해 해당 국가인권위 직원과 이메일로 연락이 되어 관련 문서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메일을 보내고 서신 교환도 하였으나, 결국 웹사이트는 열리지 않아, 해당 국가의 자료를 구글에서 검색한 경우이다. 멕시코의 경우이며, 결국 멕시코 인권위 홈페이지라는 출처가 나와 있는 문서만을 모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영어나 스페인어, 불어가 아닌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자료정리 방법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요르단의 경우는 영어 문서보다 아랍어 문서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었으나, 영어 문서만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공식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모두 자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아예 접근이 불가하였으나, 연구진의 지인인 인도네시아의 Gadjah Mada 대학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소재) 정치학과 연구교수의 도움으로 작성이 가능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언어의 한계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는 제약요건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공식 영문 자료를 찾아 조사를 한 국가들도 있었으나, 4개 국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나미비아의 경우, GANHRI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없었고, 나미비아 홈페이지에도 첫 화면만 접근이 가능할 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페이스북도 영어서비스는 없었다. 설립기본법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찾을 수 있었으나<sup>1)</sup>, 아르메니아 국가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설립일, 설립 배경 등)를 언어의 제한으로 찾을 수가 없어(언어제한) 위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공식 웹사이트에 영어서비스가 없었으나, 설립기본법으로 추정되는 자료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비공식적인 번역(unofficial trans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없었다.<sup>2)</sup> 한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경우 조사 기간 중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지 않아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표 I-3> 조사 대상 국가

대륙 구분	일반 심층 구분	조사대상 국가	비고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일반현황 조사	1.아프가니스탄	
		2.인도네시아	
		3.요르단	
		4.몽골	
		5.네팔	
		6.뉴질랜드	
		7.팔레스타인	
		8.카타르	
		9.동티모르	홈페이지 제한
		10. 태국	B등급
		11. 방글라데시	B등급
	심층조사	12. 호주	
		13. 인도	
		14. 말레이시아	
		15. 필리핀	

1) <http://www.parliament.am/legislation.php?sel=show&ID=1457&lang=eng>

2) [http://www.apr.ch/content/files/npm/eca/Azerbaijan\\_Law%20Ombudsman\\_Eng.pdf](http://www.apr.ch/content/files/npm/eca/Azerbaijan_Law%20Ombudsman_Eng.pdf)

대륙 구분	일반 심층 구분	조사대상 국가	비고
유럽 (28개국)	일반현황 조사	1.알바니아	
		2.아르메니아	언어제한, 조사 미실시
		3.아제르바이잔	언어제한, 조사 미실시
		4.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언어제한, 조사 미실시
		5.크로아티아	
		6.라트비아	
		7.러시아	
		8.우크라이나	
		9.조지아	
		10.룩셈부르크	
		11.핀란드	
		12.그리스	
		13.헝가리	
		14.아일랜드	
		15.북아일랜드	
		16.스코틀랜드	
		17.네덜란드	
		18.포르투갈	
		19.세르비아	
		20. 오스트리아	B등급
		21. 노르웨이	B등급
		22. 스웨덴	B등급
	심층조사	23.덴마크	
		24.프랑스	
		25.독일	
		26.영국	
		27.폴란드	
		28.스페인	
아메리카 (15개국)	일반현황 조사	1.아르헨티나	
		2.볼리비아	
		3.칠레	
		4.콜롬비아	
		5.에콰도르	
		6.엘살바도르	홈페이지 제한
		7.과테말라	
		8.아이티	
		9.니카라과	

8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대륙 구분	일반 심층 구분	조사대상 국가	비고
		10.파나마	
		11.페루	
		12.베네수엘라	
	심층조사	13.캐나다	
		14.코스타리카	
		15.멕시코	홈페이지 제한
아프리카 (18개국)	일반현황 조사	1.카메룬	
		2.이집트	
		3.모리타니	
		4.가나	
		5.탄자니아	
		6.잠비아	
		7.부룬디	
		8.말라위	
		9.모리셔스	
		10.모로코	
		11.르완다	
		12.시에라리온	
		13.토고	
		14.나미비아	홈페이지 제한, 조사 불가
		15.잠비아	
	심층조사	16. 케냐	
		17. 남아프리카공화국	
		18. 나이지리아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 (3개국)		미국	
		2. 중국	
		3. 일본	

\*B등급 표시 국가 제외한 모든 국가 A 등급

### 3. 조사연구의 활용방안과 한계점

이번 조사연구 결과는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 대한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인권기구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자료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시한 것 이외에 해당 원문까지 모두 각주에 표시를 하여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및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가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동안 스페인어권에 대한 정보를 얻어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있어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국가는 국가마다 정치경제적 발전 상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들의 인권관련 법과 기구의 기능은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1993년 파리원칙 이후에 설립된 상황으로도 설명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권상황이 열악한 일부 국가들에서조차 해당 국가인권기구는 대부분의 사법적 구제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의 권한과 기능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객관적인 법률적 자료들을 조사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의 해결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인권기구뿐 아니라 사법적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권기구의 비교만으로 국가 간 인권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을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세계 각국의 인권기구 일반 현황

1. GANHRI A 등급 국가인권기구	13
가. 아시아 태평양	13
나. 유럽	100
다. 미주	258
라. 아프리카	432
2. GANHRI B 등급 국가인권기구 (5개국)	588
가. 태국	588
나. 방글라데시	597
다. 오스트리아	606
라. 노르웨이	612
마. 스웨덴	619



## 1. GANHRI A 등급 국가인권기구

### 가. 아시아 태평양

#### 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가 정보 <sup>3)</sup>	
면적	652,000km <sup>2</sup>
인구	약 3,256만 명('15) ※ 주변국에 5백만 난민 거주 추정
수도	카불(Kabul)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다리어(50%), 파슈토어(35%) 및 투르크어(11%) 등
주요종교	이슬람교(수니파 80%, 시아파 19%)
GDP	215억 미불('15)
	673미불('15)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Afghanist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 AIHRC)

##### (2) 설립연도: 2002년

##### (3) 설립배경

(가) 인권보호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인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영구적 정부기구 재수립을 위한 가협정(the Agreement on Provisional Arrangements in Afghanistan Pending The Re-Establishment of Permanent Government Institutions) (이하 '본 합의(Bonn Agreement)')에 따라 임시 행정부가 유엔의 지원을 받아 창설함.<sup>4)</sup>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아프가니스탄 헌법 제 58조<sup>5)</sup>

3)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2998.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2998.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9.30.)

4) <http://www.aihrc.org.af/home/introduction> (검색일 2016.9.30.)

5) <http://www.afghanembassy.com.pl/afg/images/pliki/TheConstitution.pdf>

아프가니스탄 내 독립인권위원회 설립 사실과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진정의 권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과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할 근거법의 기초로서 존재.

(나)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의 구조, 의무 및 권한에 대한 법 (Law on the Structure, Duties and Mandate of the AIHRC (24/02/1384 (14 May 2005)))<sup>6)</sup>

위원회 설립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 아프가니스탄 내각을 통해 승인되고 대통령을 통해 정식으로 재정됨<sup>7)</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the Chairperson of the AIHRC)과 부위원장(deputy chairperson)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Commissioners)를 통해 운영됨. 위원회의 업무 내용은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을 통해 관리됨.

현재 위원장은 Dr. Sima Samar, 사무총장은 Muhammad Musa Mahmoudi.<sup>8)</sup>

---

(검색일 2016.9.30.)

아프가니스탄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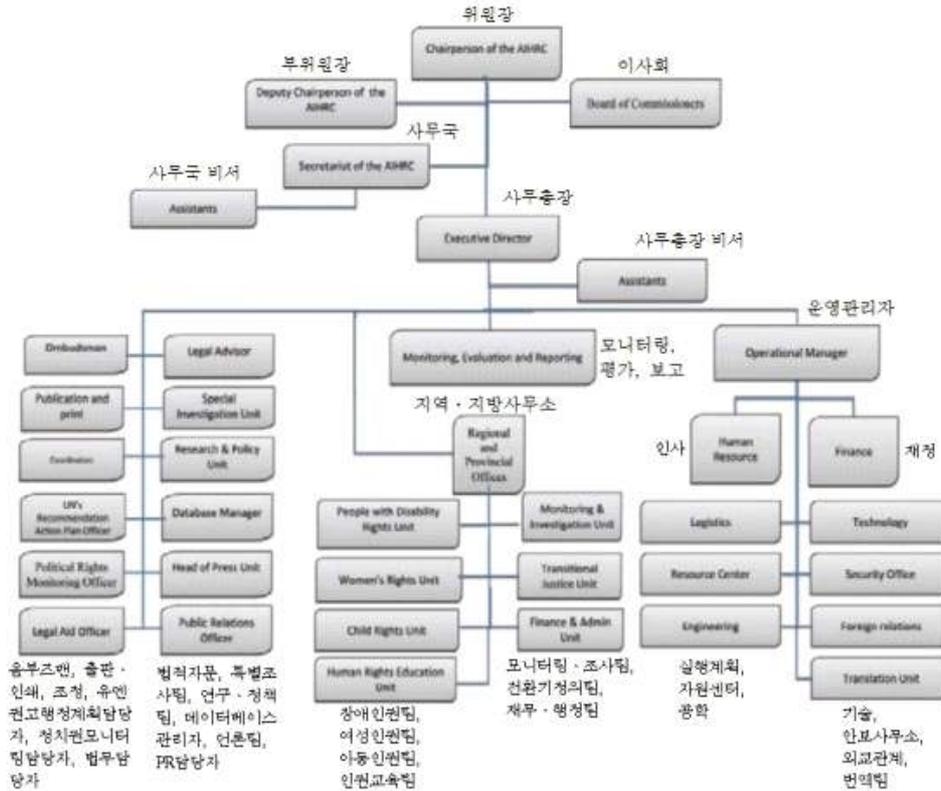
Article Fifty-Eight 제 58조

To monitor respect for human rights in Afghanistan as well as to foster and protect it, the state shall establish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 of Afghanistan. Every individual shall complain to this Commission about the violation of personal human rights. The Commission shall refer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dividuals to legal authorities and assist them in defense of their rights. Organization and method of operat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regulated by law.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존중 모니터링 및 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가는 독립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모든 개인은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관련 법적 기관에 알리고 개인의 인권 옹호를 돕는다. 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수행 방식은 법의 규제를 따라 이루어진다.

6) <http://www.aihrc.org.af/home/law/360> (검색일 2016.9.30.)

7) <http://www.asiapacificforum.net/resources/law-on-mandate-aihrc/> (검색일 2016.10.7.)

8) p.2, <http://www.aihrc.org.af/media/files/Reports/Annual%20Reports/English/Annual->



[아프가니스탄-그림 1]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조직도

(2) 지역사무소<sup>9)</sup>

중앙사무소 (Main Office)를 포함, 총 16개 사무소(15개 지역사무소: Kabul, Faryaab Maimana, Ghoor, Urozgan, Kandahar, Herat, Jelalabad, Mazar-e-Shareef, Bamyan, Gardez, Kunduz, Badakhshan, Daikundi, Helmand)가 존재함.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0)11)</sup>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운영 예산을 재정하여 지원<sup>12)</sup>. 2014년 보고서에 따르

Report-94-Eng-for-website.pdf (검색일 2016.9.30.)

9) <http://www.aihrc.org.af/home/offices#> (검색일 2016.9.30.)

10)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11)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면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의 현재 연간 예산 9백만 달러 중 10%가 정부 출연<sup>13)</sup>. 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각료들에게 발표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지니며 유엔 및 국가후원기구들에게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음.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최근 201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독립인권위원회의 예산규모는 미화 11,470,418달러(한화로 약 12,631,167,000원)임<sup>14)</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로 구성된 9명으로 이루어지고 임기는 5년 임. 9명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위원장 자리에 선출되고, 위원회 내에서 부위원장이 선출됨. 부위원장의 권한 및 역할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르게 됨.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를 도울 자문이사회를 수립하는데, 이사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수는 10명을 넘어가지 않음<sup>15)16)17)</sup>.

(나) 위원회와 전문자문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sup>18)</sup>을 갖추어야 함:

- ① 25세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
- ②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은 자
- ③ 법, 인권법 및 이슬람식 사법시스템 등에 대한 고등 교육 및 인권 분야의 실질적인 경험을 지닌 자

12) p. 73, <http://www.aihrc.org.af/media/files/Reports/Annual%20Reports/English/Annual-Report-94-Eng-for-website.pdf> (검색일 2016.11.07)

13) APF Member 'Bare Facts' Afghanistan Updated February 2014

14) p. 75, <http://www.aihrc.org.af/media/files/Reports/Annual%20Reports/English/Annual-Report-94-Eng-for-website.pdf> (검색일 2016.9.30.)

15)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법

16)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17)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법  
Article 10 제 10조:

18)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 ④ 국가에 대한 배반 행위나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 ⑤ 사회적 명망이 있고, 독립적이며, 대중의 신뢰를 지니고 있고 인권에 헌신하는 자

또한, 구성원들은 재임기간 동안 그 어떤 정당에도 속해있을 수 없음.

(다) 위원회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secretariat)을 두게 되는데,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이 사무국의 책임자임. 사무총장 및 직원들은 전문성, 개인 전문분야, 인권에 대한 기여 및 인종, 성, 언어적 배경 등을 전제로 노동법(Labor Law)과 공무원채용법(Civil Servant Recruitment Law)에 따라 채용됨<sup>19)</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20)</sup>(장관급 등)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21)</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22)</sup>

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5년의 임기가 주어지며 재임불가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23)</sup>

위원회의 구성원 및 모든 직원은 법적 권한 아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 기소로부터 자유로움.

19)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20)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1)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2)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법

Article 7 제 7조:

1- The Commission shall be consist of nine members, female and male, who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for a period of five years.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로 구성된 9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통령을 통해 임명되고, 5년의 임기를 가진다.

23)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법 Art. 16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24)25)</sup>

(1) 진정 및 권고<sup>26)27)</sup>

- (가) 위원회는 위원회로 제출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내용을 조사함. 이 때 진정 내용들을 검토하고 분석, 정보와 증거자료를 모으고, 관련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음. 위원회는 요구되는 경우 진정 내용을 사법적이나 비사법적 기관에 위탁하기도 함.
- (나) 위원회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권고함

(2) 보고서 작성<sup>28)</sup>

- (가) 위원회는 의회의 연간 세션 시작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예산 사용 내용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하원(the Lower House of the Parliament (Ulisy Jirga))에 제출함. 보고서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하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

---

24)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Article 5 제 5조: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following objectives: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1. Monitor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국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

2.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인권 증진 및 보호

3. Monitoring the situation of and people's access to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접근권 상황 모니터링

4. Investigating and verify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입증

5. Taking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국가 내 인권 상황의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조치 취함

25)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Article 21

26)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Article 23

27)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Art. 26

28) [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http://www.aihrc.org.af/media/files/Laws/Law_AIHRC.pdf) (검색일 2016.9.30.)  
Art. 32

과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연간보고서와 별개로, 위원회는 하원에 보고서들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는 인권 모니터링, 보호, 홍보와 개선점 등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과 권고 내용이 포함됨.

(나) 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들은 하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연간보고서가 평가되는 세션에 참여.

(3)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조사

(가) 국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

- ① 헌법, 법률과 규제 등의 법령에 따른 수행 내용 및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기준에 대한 책무 모니터링
- ② 행정, 법률, 사법 시스템의 업무 수행 및 국내 및 국제 인권 기관들과 NGO들 모니터링
- ③ 국가기관과 NGO들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와 복지가 모두에게 공평하고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 ④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접근권 상황 모니터링
- ⑤ 구금센터 방문을 통해 피구금자의 대우에 대한 법령 이행 모니터링을 이행
- ⑥ 행정 본부, 지역 및 지방사무소 관리와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활동과 행동 모니터링

(나) 인권침해 사건 조사

- ① 인권침해 원인 조사 및 입증
- ②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서류, 증거자료, 증인 등 수집,
- ③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하는 기구에 보내고 미래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 ④ 범죄 조사와 인권 침해 내용이 전환기 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

(4)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가)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 ①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회 확보
- ② 과학적이거나 실용적인 차원의 인권 상황 보고에 대한 규제
- ③ 국가 내 인권 상황의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조치 취함

- ④ 대중들의 인식을 위한 인권 홍보 및 증진
- ⑤ 인권 분야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공공 선언 및 공식 성명 공고

(나) 인권교육

- ① 국가인권교육계획 및 공공인식 증진 프로그램 형성 및 수립
- ② 교육 커리큘럼 내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 해당 기관들과 협업

(5) 정부 및 행정기관과의 협업

(가) 정부 (의회, 정부기관, 대통령 등)

- ①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승인, 개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폐지하기 위해 의회, 정부에 자문 제공.
- ②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인권협약들을 더 잘 지키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자문 제공
- ③ 아프가니스탄이 조약의 의무사항을 지키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정부에 자문과 필요한 정보 제공
- ④ 국가, 지역 및 시 의회 및 기타 기관들에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자문 제공 및 권고사항 제출
- ⑤ 인권상황에 대해 연간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 ⑥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와 성명 공개 및 출간
- ⑦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자문 제공
- ⑧ 인권기준 위반의 원인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설명 요구
- ⑨ 위원회의 직원들의 권리, 책임, 특권과 보험 등을 관리하는 법률 및 법규 승인

(나) 국제인권 관련

- ① 국제인권협약 및 조약 서명 및 가입을 위해 의회와 정부에 자문 제공
- ② 국제인권기구의 원칙과 메커니즘이 아프가니스탄 문화 및 전통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 관련 제안 제공.
- ③ 권한 내에서 유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협업

(6) 그 외

(가) 기타 협업 (민관협력, 대중, 시민단체 등)

- ① 인권 기준의 실행 향상과 필요한 분야에서의 정부 및 NGO, 다른 기관들과 협업
- ② 아프가니스탄 내의 인권 지지와 개선을 위한 행정 개혁 이행을 위한 협업
- ③ 인권활동 분야에서의 국내 및 국제적인 관계 형성과 동범 항복들의 더욱 효과적인 이행
- ④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설문조사 진행.
- ⑤ 시민단체 및 지역 인권단체의 능력 배양과 활동 지지

바) 특이사항

앞의 기능 외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인권분야<sup>29)</sup>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음

- (1) 인권 트레이닝 Human Rights Training
- (2) 전환적정의 Transitional Justice
- (3) 아동권리 지지 및 개발 Children Rights Support & Development
- (4) 여성권리 지지 및 개발 Women Rights Support & Development
- (5) 인권침해 모니터링 및 조사 Monitoring &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 (6) 장애인권리 지지 Disables Rights Support

또한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양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30)</sup>

2007년 10월 기준으로 A등급, 2008년 11월에도 등급을 유지. 2013년 11월에는 심사가 연기되어, 2014년 10월에 A등급.

29) <http://www.aihrc.org.af/#> (검색일 2016.10.7.)

30)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30)

##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 정보 <sup>31)</sup>	
면적	190만km <sup>2</sup>
인구	2억 5,518만 명
수도	자카르타(Jakarta)
정치형태	대통령중심제
민족	자바족(45%), 순다족(13.6%) 등 300여 종족
주요언어	인도네시아어
주요종교	이슬람(87%), 기독교(10%), 가톨릭, 힌두교, 불교
GDP	GDP : 약8,726억 불
	1인당 GDP : 3,415불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Komnas HAM)

#### (2) 설립연도<sup>32)</sup>: 1993년

(3) 설립배경: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는 결의안 1993/97호(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97)를 채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함. 유엔 결의안 통과 후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 제재에 대응해야 했던 당시 수하르토(Suharto) 독재 정권은 대통령령 제50호(decree of President Number 50 of 1993)를 발표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 1998년에 수하르토가 하야한 후, 1993년 법령은 1999년 법령 제39호(Law No. 39 of 1999)에 의해 대체되었음. 1984년에 발생한 탄정 프리오크 대량학살 사건(Tanjung Priok massacre)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2000년에 인권법(Human Rights Law of 2000 No.26)을 제정하여 인권위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함.

### 나) 설립 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sup>33)</sup>)

31)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3005.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3005.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9.30.)

32) [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2](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2) (검색일: 2016.10.1.)

33) [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2](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2) (검색일: 2016.10.1.)

- (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1993년 대통령령 제50호(decree of President Number 50 of 1993)에 근거하여 설립됨.
- (나)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를 제정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 목표, 기능, 조직, 원칙, 업무, 권한을 규정함. 이 법률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규칙(Rules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위원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sup>34)</sup>
- (다) 2000년 인권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26호(Law No. 26 of 2000 regarding Human Rights Court)은 인권위에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위원회는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인권위 및 시민사회 구성원들로 조직한 특별팀을 개설할 수 있게 됨.
- (라)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2008년 법령 제40호(Law No. 40 of 2008 regarding Elimination of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모든 활동을 관리 감독 함.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에 근거한 국가기구(국가인권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독립성을 보장받은 국가인권기구로서 다른 국가 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춤<sup>35)</sup>.)

####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 (가) 인원 및 부서<sup>36)</sup>

위원 포함 인권위 전체 구성원은 총 320명이며, 누르 콜리스(Nur Kholis) 현 위원장을 수장으로 두 명의 부위원장과 13명의 위원을 포함함<sup>37)</sup>. 인권위는 의사결정 조직인 총회(Plenary Council), 위원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4개의 소위원회(Sub-Commission), 행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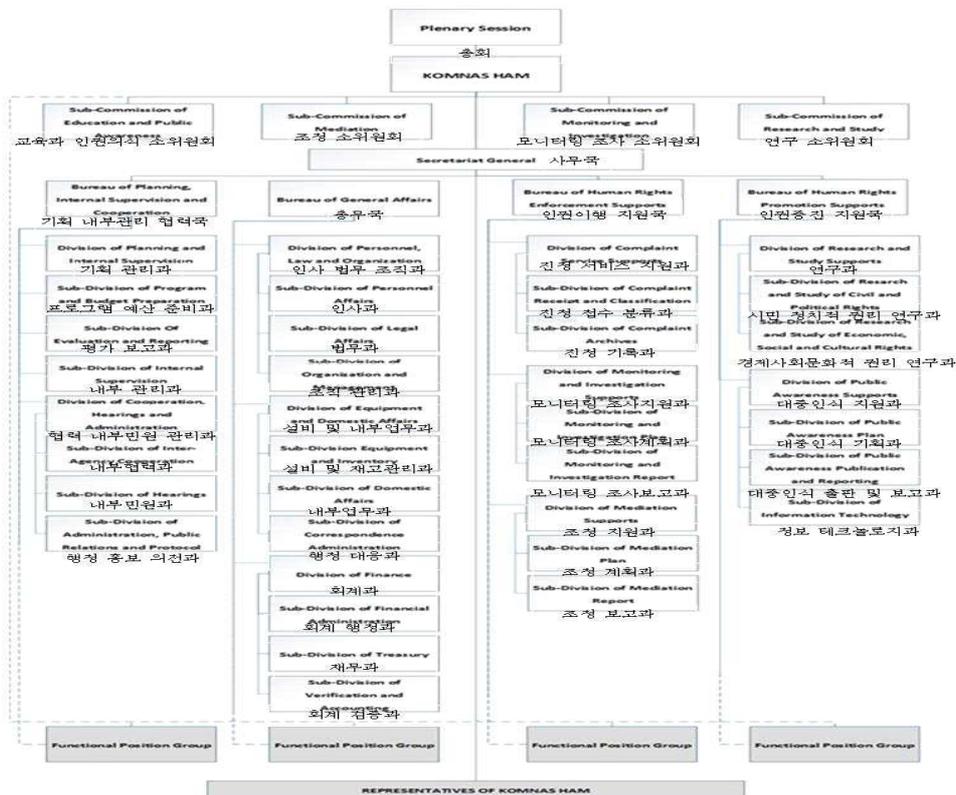
34)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의 7장  
<http://www.refworld.org/docid/4da2ce862.html> (검색일: 2016.10.2.)

35) <http://en.komnasham.go.id/profil> (검색일: 2016.10.1.)

36) [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4](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4) (검색일: 2016.10.1.)

37) <http://www.refworld.org/docid/4da2ce862.html> (검색일: 2016.10.2.)

담당하는 사무국(Secretariat General)으로 구성됨. 소위원회에는 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 소위원회(Sub-Commission of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조정 소위원회(Sub-Commission of Mediation), 모니터링 및 조사 소위원회(Sub-Commission of Monitoring and Investigation), 연구 소위원회(Sub-Commission of Research and Study) 등이 있음. 또한, 행정 조직인 사무국(Secretariat General) 산하에 4개의 부서로서, 기획·내부관리·협력국(Bureau of Planning, Internal Supervision and Cooperation), 총무국(Bureau of General Affairs), 인권이행지원국(Bureau of Human Rights Enforcement Supports), 인권증진지원국(Bureau of Human Rights Promotion Supports)이 있어 인권위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함.



출처: 인도네시아 인권위 홈페이지 (www.en.komnasham.go.id)

[인도네시아-그림 2]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조직도

(2) 지역사무소<sup>38)</sup>

위원회 본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함. 본부 외에 6개의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 아체주(Province Ache), 수나트라바랏 주(West Sumatra), 칼리만탄바랏 주(West Kalimantan), 중앙 술라웨시 주(Central Sulawesi Province), 말루쿠 주(Province Maluku), 파푸아 주(Papua)에 지역사무소가 위치함.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도네시아 인권위 재정은 크게 Anggaran Perencanaan Belanja Negara (APBN)라고도 불리는 정부 예산과 외부 지원으로 구성됨<sup>39)</sup>. 2015년 정부 예산(APBN)으로 약 80,490,873,000.00 Rp(약 70억 4,510만 원)을 배분받았음<sup>40)</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인권위의 추천을 받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은 총 35명의 위원을 선발한 후 대통령이 승인(validate)함으로써 위원을 임명함. 임명된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함<sup>41)</sup>. 인권위는 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먼저 총회(Plenary Council)에서 위원 선정 위원회(selection committee)를 구성하는데, 선정

38) [http://en.komnasham.go.id/contact#quickset-kantor\\_perwakilan1](http://en.komnasham.go.id/contact#quickset-kantor_perwakilan1) (검색일: 2016.10.1.)

39)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의 7장  
<http://www.refworld.org/docid/4da2ce862.html> (검색일: 2016.10.2.)

40) NCHR, 『인도네시아 인권위 예산 실행 보고서(Budget Realization Report)』, June 30 2015

41)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3조: (1)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mprises 35 (thirty five) members selec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validated by the President as Head of State.

(2)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headed by a Chair and two Vice-Chairs.

(3) The Chair and the Vice-Chairs ar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4) The Chair, Vice-Chairs, and Members serve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 further five-year period.

위원회는 위원 선발에 시민사회 및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임. 현 인권위 위원은 선정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선정 위원회는 최대 70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선정 위원회가 추천한 명단을 인권위가 다시 법제화하여 이를 하원에 올림으로써 추천 절차가 완성됨<sup>42)</sup>.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인도네시아 시민 중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 활동 경험, 변호사·판사·경찰·법률가 등 법조계 종사 경험, 법 제정 및 집행 혹은 고등기관 업무 담당 경험을 지닌 사람, 종교계·시민 사회·고등교육기관 출신 혹은 공인으로서 잘 알려진 인물을 선발함<sup>43)</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44)</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7조 2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권위 모든 위원은 위원회 총회 및 소위원회에 제안과 의견을 낼 권한, 총회 및 소위원회 결정에 참여할 권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에 참여할 권한, 잠정 후보자 및 대체 위원 선정에 참여할 권한 등을 가짐<sup>45)</sup>.

---

42) Peraturan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Nomor 3 Tahun 2016 Tentang Pembentukan Panitia Seleksi Calon Anggot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Regulation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No. 3 of 2016) (인도네시아 인권위 내규 제3번) : In the implementation the process of NCHR members' selection is started from the form of selection committee by NCHR Plenary Council. The selection committee is an independent team that are responsible to conduct the process of NCHR candidate selection by ensuring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The current members of NCHR are not allowed to be selected as the selection committee. The selection committee does the process of candidate nominations with maximum candidate nomination is 70 candidates. The result is later submitted to NCHR. After the work of selection committee is legalized by NCHR, the result is sent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출처: <http://news.liputan6.com/read/433720/komnas-ham-jelaskan-kronologi-pemilihan-anggota>)

43)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4조: Those eligible for appointment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re Indonesian citizens who: a) have experience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s or groups whose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b) are experienced as lawyers, judges, police, attorneys, or other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c) are experienced in legislative and executive affairs and in the affairs of high level state institutions; or d) are religious figures, public figures, members of NGOs, or from higher education establishments.

44) 해당 정보 찾을 수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면책 특권 여부는 알 수 없음. 위원 해임의 경우 인권위 총회 결의안을 통해 결정하며 이를 하원에 통보하면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Decree)을 통해 해임함. 위원은 사망 시, 동료 위원 혹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정신 건강상 문제가 1년간 지속됐을 경우, 범죄 행위 가담 시, 비난받을 만한 행동 혹은 인권위 명성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임 가능함<sup>46)</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47)</sup>

(1) 인권 침해 진정 접수 및 조사, 직권 조사

모든 개인 및 단체는 인권 침해사건을 서면 혹은 구술로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 불만을 접수한 당사자의 신원이 확실하고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착수함. 위원회는

---

45)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7조 2항: All Member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the right to: a) submit proposals and ideas to the Plenary Council and Sub-commissions; b) provide input into the decision making of the Plenary Council and Sub-commissions; c) propose nominees for and elect the Chair and Vice-Chairs on the Plenary Council; d) nominate prospective Member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interim and regular replacement.

46)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5조: (1) Discharge of a Member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based on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Council and shall be made known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ratified by a Presidential Decree.

(2) A Member may be discharged: a) in the event of his/her death; b) upon the request of the Member him/herself; c) in the event that prolonged psychological or spiritual ill-health prevents the member from carrying out his duties consecutively for a period of one year; d) in the event that he perpetrates a gross criminal act; or e) in the event that he/she perpetrates a reprehensible act or other act which the Plenary Council deems to besmirch the dignity and reputation, and/or diminish the independence and credibility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47)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의 7장 <http://www.refworld.org/docid/4da2ce862.html> (검색일: 2016.10.2.)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소환 및 증언 요청 권한, 피해자 및 가해자 소환 권한, 사례와 관계된 장소 조사 권한, 필요에 따라 법원장(Head of Court)의 허가를 받아 사례 관련자들로 하여금 증거 진술 및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 법원장 허가 하에 사건 관련 장소를 수색할 권한 등을 가짐. 진정 요청에 대한 조사 외에도 인도네시아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보고서로 작성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음<sup>48)</sup>.

(2) 피해자 구제 - 조정(mediation), 사법적 지원

인도네시아 인권위는 침해 사례 조사 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적 구제 활동으로서 소송 지원을 제공함.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례에서 협의(consultation),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화해(conciliation), 전문가의 개입 및 평가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함. 재판으로 사례를 해결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인권위의 권고를 전달하며, 관련 정부 당국과 국회에 정책과 후속 시정 조치 등에 관해 권고함<sup>49)</sup>. 또한, 위

---

48)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9조 3항: (3) To carry out its supervisory function NCHR is charged with and authorized to:

- a) monitor the execution of human rights and compile reports of the output of this monitoring;
- b) investigate and examine incidents occurring in society which either by their nature or scope likely constitute violations of human rights;
- c) call on complainants, victims and accused to request and hear their statements;
- d) call on witnesses to request and hear their witness statements, and in the case of prosecution witness to request submission of necessary evidence;
- e) survey incident locations and other locations as deemed necessary;
- f) call on related parties to give written statements or to submit necessary authenticated documents as required upon approval of the Head of Court;
- g) examine houses, yards, buildings, and other places that certain parties reside in or own, upon approval of the Head of Court;

49)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9조 4항: (4) To carry out its function as mediator NCHR is charged with and authorized to:

- a) arbitrate between the two parties;
- b) resolve cases through consultation,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and expert evaluation;
- c) giv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for resolving conflict through the courts;
- d) submit recommendations concern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the Government in order that their resolution may be followed up on;
- e) submit recommendations concern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the

위원회는 법원장의 허가 하에 인권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에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개입(input)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역할을 수행함. 위원회가 사법적 지원에 나설 경우, 판사는 사건에 위원회가 개입한다는 사실을 당사자 양측에 공지해야함<sup>50)</sup>.

(3)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

위원회는 국제 인권 제도를 연구 및 조사하여 이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권고함. 또한 국내에 존재하는 법률을 연구 및 조사하여 인권 보호에 적합하게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함. 위원회는 국내 인권 현황 및 정책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또,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외부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조사 활동을 수행함<sup>51)</sup>.

(4) 인권 문화 확산

위원회는 인권 증진 임무로서 인도네시아 시민을 위한 인권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 공교육 및 민간 교육 기관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교육과 증진에 관해 국내 및 아시아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기타 단체, 기관들과 협력함<sup>52)</sup>.

---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ir follow up.

50)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9조 3-h항: h) on approval of the Head of Court, provide input into particular cases currently undergoing judicial process if the case involves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public issue and court investigation, and the inpu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shall be made known to the parties by the judge;

51)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9조 1항: (1)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study and research NCHR has the authority to:

- a) study and examin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ith the aim of providing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ir possible accession and ratification;
- b) study and examine legislation in order to provide recommendations concerning drawing up, amending and revoking of legisl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 c) publish study and examination reports;
- d) carry out literature studies, field studies, and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countries;
- e) discuss issues related to protecting, uphold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and,
- f) conduct cooperative research and examination into human rights with organizations, institutions or other parties, at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52) 1999년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제89조 2항: (2) To carry out its function

(5) 인종차별철폐<sup>53)</sup>

인도네시아 인권위는 2008년 제정된 인종차별에 관한 법령 제40호(Law No. 40 of 2008)에 근거해 국내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는 국가 정책 및 지역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정책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함. 또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단체, 공공·민영 기관에 의한 인종차별 행태를 조사하고 평가함. 평가와 모니터링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사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며, 하원(People's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PR RI)에는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함<sup>54)</sup>.

바) 특이사항

인도네시아는 인권위 후보추천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는 시민사회와 대중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인권운동, 법조계 종사, 시민사회 활동 경험 등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선발하고 있음.

---

as disseminator NCHR is charged with and authorized to:

- a) disseminate inform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to the Indonesian public;
- b) take steps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stitutes and other bodies;
- c) cooperate with organizations, institutions or other parties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ith regard human rights;

53) [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2](http://en.komnasham.go.id/profil#quickset-tentang_komnas_ham2) (검색일: 2016.10.1.)

54) 2008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 제40호(Law No. 40 of 2008 regarding Elimination of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Monitoring and evaluating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policy valued to be potential to result in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elimination of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 Finding facts and evaluation against any individual, group of society, or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that are allegedly committing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 Granting recommendation to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findings concerning with any acts containing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 Granting recommendation to DPR RI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o do supervision toward the government ignoring the finding of NCHR.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0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7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11월 심사와 2014년 3월 특별 심사에서도 A등급을 유지함<sup>55)</sup>.

### 3) 요르단<sup>56)</sup>

요르단 국가 정보 <sup>57)</sup>	
면적	89,342km <sup>2</sup>
인구	950만명('15)
수도	암만(Amman)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주요언어	아랍어(영어도 통용)
주요종교	이슬람(92%, 수니파), 기독교(6%)
GDP	GDP : 275억불 ('15)
	1인당 GDP : 5,160불 ('14)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국가인권센터

The 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아랍어 المركز الوطني لحقوق الإنسان

(2) 설립연도: 2002년 12월

(3) 설립배경<sup>58)</sup>: 1952년 헌법제정을 통해 요르단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권리 보호법 및 자유·정치적 담론을 시작할 수 있었음. 국가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골자는 시민·정치·사회적 자유에 대한 심층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요르단은 대다수의 국제인권 조약들에 서명하게 되었음. 1992년 후세인 왕은 인권을 위한 지역협회의

5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56) 공식웹사이트 <http://www.nchr.org.jo/arabic/%D8%A7%D9%84%D8%B5%D9%81%D8%AD%D8%A9%D8%A7%D9%84%D8%B1%D8%A6%D9%8A%D8%B3%D9%8A%D8%A9.aspx>. (검색일 2016.9.8.)

웹사이트는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있으나 (<http://www.nchr.org.jo/english/home.aspx>) 2010년 이후의 것은 거의 번역되어 있지 않음.

57)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0/1\\_23079.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0/1_23079.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9.8.)

58)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aspx> (검색일 2016.9.13.). 이 링크에 올려져있는 기관 소개 영상(<https://youtu.be/J9in0BISeNA>)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함

수립을 공표하였으나 이에 그치고, 그 후 압둘라 2세를 통해 국가인권센터가 세워짐.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국가인권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Law)<sup>59)</sup>  
(a.k.a Law No. (51) for the Year 2006)

(나) 다른 법규들 (Regulations)<sup>60)</sup>

국가인권센터법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규들로, 행정규정(Administrative Regulations), 기술 및 행정팀(Tech. and Admin. Unit), 인사 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도서관 내규(Internal Rules of the Library), 예산 규정(Financial Regulations), 제공 및 조달(Supplies and Procurement), 프로젝트 규정(Projects Regulations), 자원봉사자 규정 (Volunteers Regulations)에 대한 법규가 각각 존재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국가인권센터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기구<sup>61)</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

국가인권센터법의 전체 인원은 37명이며 국가인권센터법에 정의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서들<sup>62)</sup>은 다음과 같음:

① 이사회(The Center's Board of Trustees)와 그 의장 (Chairman of the Board)<sup>63)</sup>: 이사회는 NGO, 노동조합, 법률 및 보건 전문가, 학계 등 21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 의장이나 부의장의 소집으로 월간 회

59)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60)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Regulations.aspx> (검색일 2016.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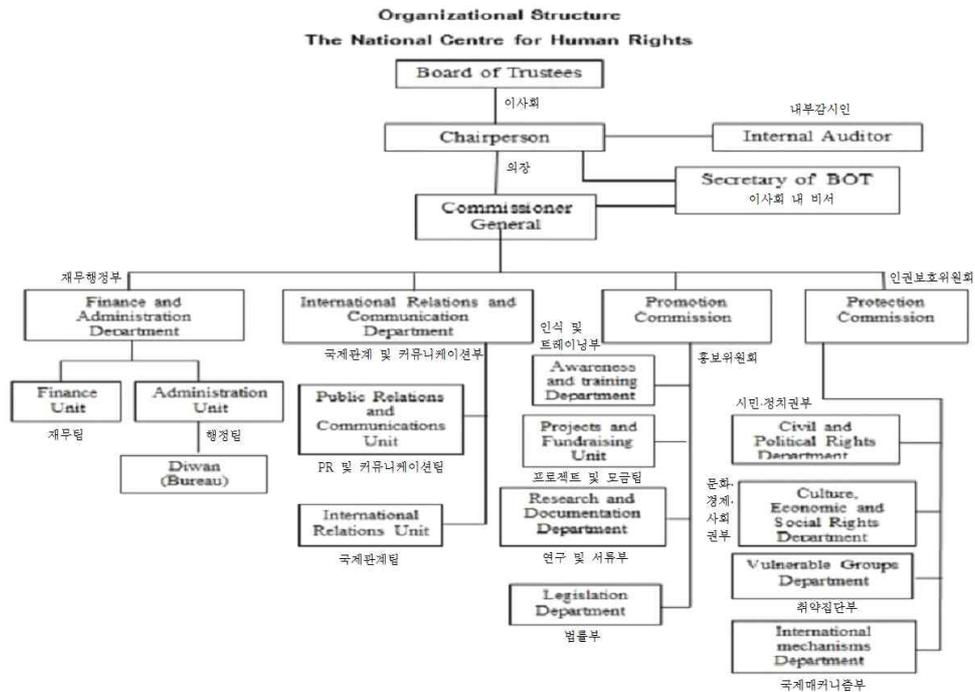
61) APF Member 'Bare Facts' Jordan

62)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63)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의를 진행. 월간 회의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 적어도 전체 이사회  
회의 2/3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참석했을 때 정족수(quorum)가 되고,  
참석한 이사들의 2/3에 해당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 내용을 승인. 필요  
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나 이사회 구성원에게 권한을 양도 가능.  
이사회는 이사들 중 회계를 선정하여 예산 기록과 계좌 관리, 예산 사용  
집행과 수납전표 관리,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나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과 함께 출금전표에 서명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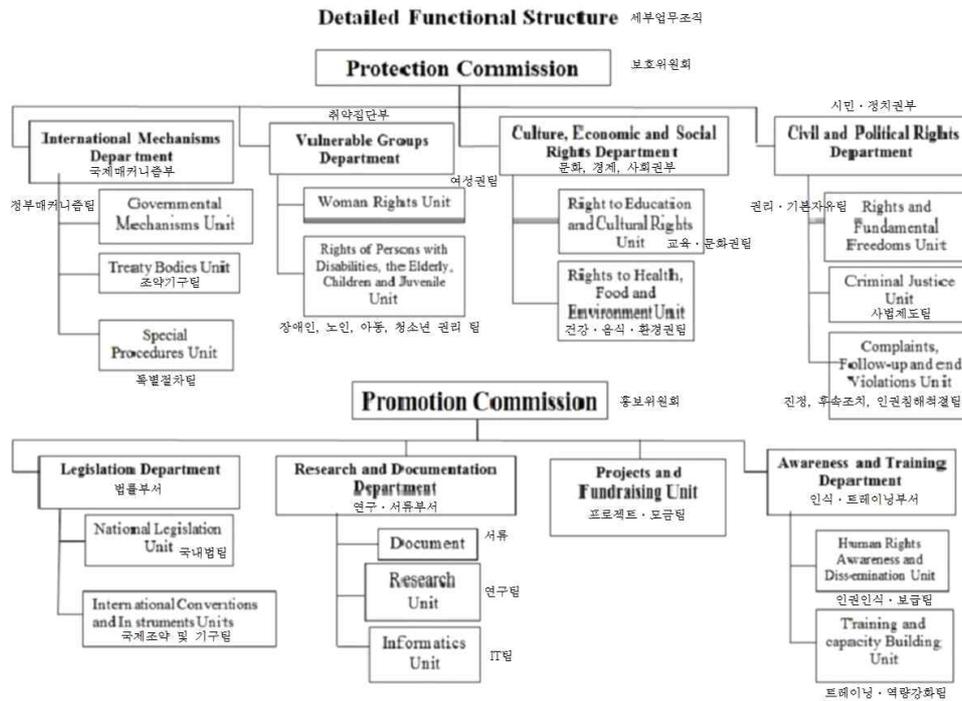
- ② 사무국 (The Secretariat)<sup>64</sup>: 센터의 집행 기구이며 사무국의 수장인  
위원장은 센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가짐.



[요르단-그림 3] 요르단 국가인권센터 조직도

64)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③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sup>65)</sup>: 위원장은 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이사회 의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상근 위원 (commissioners)들의 지원을 받음.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위원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양도 가능함.



[요르단-그림 4] 요르단 국가인권센터 홍보위원회 및 인권보호위원회 상세조직도

65)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국가인권센터법

Article 16:

제 16조 (B)

(B) The Commissioner General shall be responsible before the Board for the performance of his tasks and shall be assisted by a number of full-time commissioners appointed by the Board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man. The Commissioner General may delegate some of his authorities to any of the commissioners, should the circumstances require it.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의 업무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사회 의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상근 위원들과 협업한다. 위원장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위원들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

(2) 지역사무소<sup>66)</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67)68)69)</sup>

요르단 왕국의 국가인권센터는 재정적 및 행정적 독립성을 누리는 법인 (legal personality)으로 수립됨. 이에 따라 센터는 계약체결, 동·부동산의 소유, 소송을 위한 사법절차 의존 등을 포함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센터의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됨:

(가)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

(나) 센터의 재정 및 문화적 활동과 프로젝트 등으로부터 오는 수익금

(다) 기부금, 보조금, 혹은 동법 조항들에 따라 이사회가 허가하는 다른 재정. 외국에서 오는 재정지원인 경우에는 장관들의 위원회를 통해 허가 됨.

(라) 유증 및 와크프(Waqf: 이슬람 종교 재단) 기부금.

2010년 기준, 국가인권센터의 예산은 45만 요르단 디나르(한화로 약 696,457,400원)<sup>70)</sup>. 2013년 기준 예산은 US\$ 636,402(한화 7억5,146만 3,481.60원)임.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이사회 (Board of Trustees)<sup>71)</sup>: 최대 21명으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

---

66)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67)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68)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69)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70)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BudgetoftheCentre/Budget2010.aspx> (검색일 2016.9.28.)

2010년의 자료가 영문 번역된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가장 최근.

71)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국가인권센터법

Article 13:

(A) The Center shall be supervised and managed by a Board of Trustees of no more than 21 members, whose Chairman and members are appointed by Royal Decree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B) The Board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Deputy Chairman who

(Chairman)과 이사들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칙령을 통해 임명됨. 이사회는 이사들 중 의장의 부재 시 업무를 위임받아 맡게 될 부의장(Deputy Chairman)을 선출.

(나)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sup>72)</sup>: 이사회와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결정으로 칙령을 통해 선출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73)</sup>(장관급 등)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74)</sup>

국가인권센터법 제16조 (B)항에 따르면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의 업무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사회 의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상근 위원들과 협업. 위원장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위원들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75)</sup>

이사들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짐.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에게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재임 가능.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76)</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77)78)</sup>

(1) 국내 정책 및 인권상황 관련 활동

(가) 특정 인권침해가 발생 시 위반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를 멈추기 위해 행정권이나 사법권, 혹은 탁월한 법적 권위자에 위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왕국 내에서 인권이 주시되고 있음을 입증.

---

deputizes for the Chairman during his absence.

제 13조 (일부)

(A) 센터는 최대 21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통해 감독되고 관리된다.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칙령을 통해 임명된다.

(B) 이사회는 이사들 중 의장의 부재 시 업무를 위임받아 맡게 될 부의장(Deputy Chairman)을 선출한다.

72)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73)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74)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75)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76)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77)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78) <http://www.nchr.org.jo/english/AboutUs/NCHRLaw.aspx> (검색일 2016.9.9.)

- (나) 이슬람교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교육 단계에 인권 원칙 포함
  - (다) 왕국 내 인권과 관련된 입장 표명
  - (라) 왕국 내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권고사항 및 제안 제출
  - (마) 센터의 목적과 부합하는 법률 제안
  - (바) 센터는 왕국 내 인권 및 공중 자유 상황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양원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에 제출
- (2) 연구 및 교육
- (가) 센터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및 다양한 분야의 연구 진행
  -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의 목적에 맞는 강의, 세미나, 회의 등 다양한 활동 조직
  - (다) 트레이닝, 교육 세미나 등 조직
  - (라) 인권과 관련된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 (가) 인권과 관련된 성명, 공고, 정기적 및 비정기적 출판물 발행
  - (나) 언론자료 준비와 더불어,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토론, 인터뷰 등에 참여
  - (다) 지역·국제기관들 외에도 국가, 아랍, 이슬람 협회 및 기관들과 정보 및 경험 교환
- (4)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통한 기관 협력: 국가인권센터와 MOU 관계에 있는 기관<sup>79)</sup>
- (가) 국가여성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Women's Affairs)
  - (나) 옴부즈맨사무소 (the Office of the Ombudsman)
  - (다) 일반안보부서 (the Directorate of General Security)
  - (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마) 정치개발부(Ministry of Political Development)와는 협력 프로토콜 (Cooperation Protocol) 관계.
- (5) 기타 기관 협력<sup>80)81)</sup>

79) <http://www.nchr.org.jo/english/ActivitiesandEvents/MemorandumsOfUnderstanding/local.aspx> (검색일 2016.9.13.)

80)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3/159/47/PDF/G1315947.pdf?>

요르단 정부는 인권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데, 국가인권센터, 부정부패척결위원회(the Commission to Combat Corruption), 진정사무소 및 인권사무소 (the Complaints [and Human Rights] Office), 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다양한 장관급 인권부서, 국가여성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국가장애인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과 협업하여 인권 증진과 보호에 힘을 쓰고자 함.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나 전교조 (The Teachers' Union) 등의 다른 기관과도 협력. 다양한 부처들(ministries)과 국가인권기구들은 계속해서 국가인권센터 및 다른 인권기구들과 협력함. 문호개방정책 (open-door policy)이 채택되었고, 부정적인 관행과 인권 침해 및 학대를 근절하고자 관련 요청 및 피드백에 대한 건설적이고 열린 접근법이 사용됨.

(6) 인권교육<sup>82)</sup>

요르단은 계속해서 사회 내에서의 인권교육을 향상시키려 함. 전반적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교내 인권 개념 포함, 그리고 특별히 대학교 내의 커리큘럼 형성 등의 방법을 취함. 또한, 국제인권조약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령 및 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국가인권기구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인권센터는 이 분야의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인권교육을 확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센터는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와 협업, ‘인권교육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 (the National Plan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omotion, 2013 - 2016)’ 수립.

---

OpenElement (검색일 2016.9.21.)

8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3/159/47/PDF/G1315947.pdf?>

OpenElement (검색일 2016.9.21.)

82)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3/159/47/PDF/G1315947.pdf?>

OpenElement (검색일 2016.9.21.)

(7) 구금시설 방문<sup>83)</sup>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의 골자로서, 공공안보부서(Public Security Directorate) 와 국가인권센터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서명, 이를 통해 인권센터는 재활센터와 구금시설에 관계자를 보내 합동 검사(joint inspection)를 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함. 국가인권센터의 대표들과 검사 등의 임원들은 사전 공지를 한, 혹은 하지 않고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시찰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센터 관계자들의 기관 방문 횟수는 다음과 같음: 2009년에 48회, 2010년에 41회, 그리고 2011년에 약 99회.

바) 특이사항

예산의 일부가 이슬람종교재단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인권교육에 있어 이슬람교 원칙을 반영하는 등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6년 4월에 B등급으로 가입. 2007년 3월에도 B등급을 받았지만 2007년 10월에 A등급을 받은 후로 2010년 10월에도 A등급. 2015년 11월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되어있었으나 2016년으로 미루어짐.<sup>84)</sup>

4) 몽고

몽고 국가 정보 <sup>85)</sup>	
면적	156.7만km <sup>2</sup>
인구	306만 명(2015.12월 말)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
정치형태	민주공화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행부제)
민족	몽고인(96%), 카자흐인(Kazakhs, 4%)
주요언어	할흐 몽고어(Khalkh Mongol 語)
주요종교	라마교(53%), 이슬람교(4%)
GDP	GDP : 115.7억 불(2015년 말)
	1인당 GDP : 3,781불(2015년 말)

83)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3/159/47/PDF/G1315947.pdf?OpenElement> (검색일 2016.9.21.)

84)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몽고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ongolia, NHRCM)
- (2) 설립연도<sup>86)</sup>: 2001년 2월
- (3) 설립배경<sup>87)</sup>: 몽고에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1990년 7월에 인권보호를 위한 자발적 위원회(voluntary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설립됨. 이는 이후 몽고 인권 위원회(Mongolian Human Rights Committee)로 발전했음. 이후 1992년에 국가대의회(State Great Hural) 산하 법률 상임 위원회(Law Standing Committee) 소속 인권 소위원회(human rights subcommittee)가 설립되었으며 1994년에 몽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가협력 위원회(Mongolian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Amnesty International)가 설립됨. 이후 2000년 12월 7일에 몽고 국가인권위원회법(law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ongolia)이 제정되어 몽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됨.<sup>88)</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sup>89)</sup>)
  - (가) 2000년 12월에 제정된 몽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함. 동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원칙, 구조(structure),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 (가) 인원 및 부서<sup>90)</sup>: 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sup>91)</sup>되고 산하에 사무국

---

85) [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919/1\\_25358.jsp?menu=m\\_40\\_10\\_20](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919/1_25358.jsp?menu=m_40_10_20) (검색일: 201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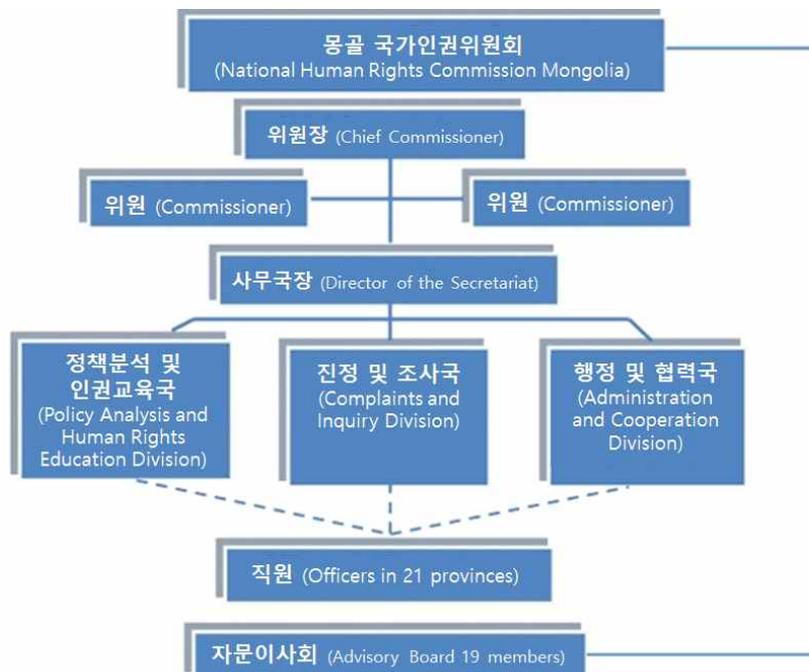
86) <http://mn-nhrc.org/eng/main/3/> (검색일: 2016.10.25.)

87) Alan Sanders. *Historical Dictionary of Mongolia*, 2nd edition, (Lanham: Scarecrow Press, Inc., 2003)

88) <http://mn-nhrc.org/eng/main/1/> (검색일: 2016.10.28.)

89) <http://mn-nhrc.org/eng/main/1/> (검색일: 2016.10.25.)

을 두고 있음.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함. 총 48명의 직원이 근무함. 사무국은 세 개의 국을 두고 있음: 정책분석 및 인권교육국(Policy Analysis and Human Rights Education Division), 진정 및 조사국(Complaint and Inquiry Division), 행정 및 협력국(Administration and Cooperation Division). 또한 각 주(총 21개의 주)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씩 있음. 사무국 이외에 자문 이사회를 두고 있음. 자문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됨.<sup>92)</sup>



출처: 몽고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몽고-그림 5] 몽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90) <http://mn-nhrc.org/eng/main/3/> (검색일: 2016.10.25.)

91) <http://mn-nhrc.org/eng/main/2/> (검색일: 2016.10.25.)

92) <http://mn-nhrc.org/eng/main/5/> (검색일: 2016.10.25.)

(2) 지역사무소<sup>93)</sup>: 위원회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94)</sup>

위원회의 예산은 국가통합예산(State Consolidated Budget)에서 지원됨. 국가가 위원들의 활동비용을 부담함. 국가대의회는 위원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국가통합예산에 위원회의 예산 반영하고 이를 승인하며 이 예산은 위원회의 독립된 운영을 가능하게 함. 2014년 기준 예산의 규모는 US\$ 566, 037.73(한화로 6억6,832만747.81 원)임<sup>95)</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96)</sup>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국가대의회의 의장(Speaker of the State Great Hural, Parliament)은 대통령, 국가대의회의 법률 상임이사회(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Legal Affairs), 그리고 대법원(Supreme Court)의 추천에 근거하여 의회에 위원 후보를 제출함. 의회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시에 의장은 14일 이내로 새로운 후보를 제출함. 의회는 위원 후보 명부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위원을 결정해야함. 위원장(Chief Commissioner)은 의장의 제안을 근거로 의회가 결정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위원은 정부 내각 (Member of the Government Cabinet)과 동등한 봉급을 받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97)</su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내 및 대외 관계에서 위원회 대표, 직원 임명 또는 석방, 위원회 내부 조직 문제 처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른 진정 접수에 관한 위원의 권한은 진정 수락 및 검

93) <http://mn-nhrc.org/eng/2.html> (검색일: 2016.10.25.)

94) <http://mn-nhrc.org/eng/engine/download.php?id=1> (검색일: 2016.10.25.)

95) APF Member 'Bare Facts'Mongolia Updated February 2014

96) <http://mn-nhrc.org/eng/engine/download.php?id=1> (검색일: 2016.10.25.)

9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ongolia Act, Article 15. Powers of Commissioners with respect to the acceptance of Complaints, Article 16. Powers of Commissioners with respect to Inquiry of Complaints, Article 17. Powers of Commissioners in respect of Decision-making on Complaints

토,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진정접수 거부, 형사 또는 민사사건 및 분쟁과 관련된 진정사항을 관련 부서로 이전, 신청인이 침해당한 권리와 의무를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진정사항 문의에 관한 위원의 권한은 접수인 및 관련 사업체,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서면 설명을 하며 만약 접수인이 문맹인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하고 기록함, 신청인 및 관련자 소환, 사업체 또는 조직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회의 참석 및 관련 공무원과의 만남,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그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 등 기밀 정보에 접근 등이며 동법 제17조에 따른 진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위원의 권한은 법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사업체, 조직, 공무원, 개인에 의한 인권 및 자유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에 청구를 제출, 당사자들 간 조정을 통한 쟁점사안 결정, 접수인의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진정서를 접수인에게 반송, 위원은 진정사항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의무, 기타 권한으로는 국가대외회의 의장 또는 국무총리 요청에 따라 정부 내각회의 등에서 고문 역할을 할 수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6년임. 위원은 한 번 재임할 수 있음.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이 형법 위반(criminal act) 혹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관련 담당자는 24시간 이내로 국가대외회의 의장(Chairperson of the State Great Hural)에게 이를 보고해야함. 이를 제외한 경우에 사법적 절차로서 위원을 구금(detain), 투옥(imprison)하거나 행정적 제재(administrative sanctions)를 가할 수 없으며 신체·가택·사무실을 수색할 수 없음. 법에서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한, 위원의 동의 없이 그(녀)를 해고하거나 전출시킬 수 없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몽고의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보호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권한을 가지며 몽고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함.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련하여 권고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인권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규약의 비준 및 도입을 지지함.<sup>98)</sup>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가) 위원회는 인권 및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짐. 또한 구금소, 아동 보호소(childcare centers), 경찰서, 병원 그리고 기업(business entities)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해당 기업, 기구 혹은 담당자에게 인권 및 자유를 보호에 관한 권고사항을 전달함.<sup>99)</sup>

(나) 위원회는 몽고 국민 및 몽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진정을 연평균 280건 접수받아 해결함. 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정을 거절하거나 관련 다른 담당 부서로 넘길 수 있음. 진정을 접수 받은 이후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다음의 권한을 가짐: 진정인(Complainant)과 관련 기업·기관·관계자·개인으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요청할 권한, 피해자 및 관련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 모든 기업 및 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권한, 기관과 관계자로부터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without any charge) 필요한 증거·정보·공식 문서를 습득할 권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한, 사건이 속한 관할권에 따라 다른 기관 혹은 관계자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는 권한, 단독 혹은 다른 국가기관·관계자의 제안에 따라 합동으로 기업·기관·관계자의 조사를 실시할 권한,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개인·기관·정부의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sup>100)</sup>

(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함. 또한 당대에 시급한 인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함.<sup>101)</sup>

98) <http://mn-nhrc.org/eng/main2/19/> (검색일: 2010.10.27.)

99) <http://mn-nhrc.org/eng/main2/11/> (검색일: 2010.10.27.)

100) <http://mn-nhrc.org/eng/main2/11/eng/38/39/eng/38/40/> (검색일: 2016.10.27.)

101) <http://mn-nhrc.org/eng/18/> (검색일: 2016.10.27.)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sup>102)</sup>

(가)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제2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국가대의회 통과와 함께 사형제 폐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함.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사형제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례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음. 국가대의회 법률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접한 후 내각(Cabinet)에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08년, 2010년에 발의함.

(나)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몽고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할 것을 촉구함. 이를 위해 위원회는 TV, 교육프로그램, 광고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정책 결정자, 대중, 장애인, 시민단체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수의 출판물을 발간함. 또한 국가대의회 의원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냄. 결국 2009년 몽고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다) 인권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인권 감독 역량 강화 프로젝트(Strengthening national human rights oversight capacity in Mongolia)를 수행함(2012년-2014년). 위원회는 몽고의 시급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하고 관계자 및 관련 기관이 인권 보호 및 인권 문제 해결의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추진함. 이를 통해 위원회는 주제별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링·진정의 해결 및 사건의 관리·인권교육 및 지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sup>103)</sup>

(3) 인권 문화 확산

(가) 열린 인권의 날(Human rights open day)을 지정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위원회는 열린 인권의 날 행사를 통해 사무소가 없는 지역

102) <http://mn-nhrc.org/eng/main2/19/> (검색일: 2016.10.27.)

103) <http://mn-nhrc.org/eng/45/47/> (검색일: 2016.10.27.)

에까지 인권 기준, 정책 및 결정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함. 당일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활동, 감옥·구금소·군사시설 모니터링, 주지사의 결정의 인권 침해 여부 검토,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이 계획됨.<sup>104)</sup>

(나) 위원회는 인권정보센터(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함. 인권정보 센터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인권 연구가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역할을 함.<sup>105)</sup>

(4)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sup>106)</sup>

(가) 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제를 기반으로 한 인권 문제 연구를 수행함. 연구를 통한 중요한 발견은 연례 인권 현황 보고서에 게재함.

(나) 위원회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계간지(quarterly journal)를 발간함. 본 계간지에서는 인권 활동가 및 학자들의 글이 실리며 이를 통해 인권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고자 함.

(5) 인권 및 자유에 관한 현황 보고서 (Status report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발간<sup>107)</sup>

(가) 위원회는 매년 인권 및 자유에 관한 현황 보고서 (Status report on human rights and freedoms)를 발간하여 국가대의회에 제출함.

(나) 보고서는 당해에 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및 연구의 결과, 개인 진정, 위원회의 요구와 권고의 이행사항, 시민사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당해의 주요한 인권 및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다) 국가인권위원회법(Law of Mongolia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3조(Article 13)에 근거해 위원회는 보고서에 포함된 인

104) <http://mn-nhrc.org/eng/main2/10/> (검색일: 2016.10.27.)

105) <http://mn-nhrc.org/eng/main2/17/> (검색일: 2015.10.27.)

106) <http://mn-nhrc.org/eng/main2/17/> (검색일: 2016.10.27.)

107) <http://mn-nhrc.org/eng/engine/download.php?id=98> (검색일: 2016.10.27.)0000

권 및 자유 현황에 대해 국가대의회가 고려해볼만한 부분들을 보고서 말미에 제안함.

(6) 인권 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

(가) 몽고 국민은, 개인 혹은 단체 자격으로 헌법과 국내외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및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 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몽고에 거주중인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또한 몽고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진정할 수 있음. 진정은 서면 혹은 구술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및 자유의 침해가 발생한 날 혹은 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접수되어야함.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된 후 30-60일 이내로 답변함.<sup>108)</sup>

(나) 위원회는 접수받은 진정을 토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소에 게 재판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위원회는 사건 해결을 위해 인권 및 자유를 침해한 가해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침해와 관련한 행동을 중단한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함.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함.<sup>109)</sup>

(다) 위원회는 무료 법률 조언 서비스를 제공함.<sup>110)</sup>

(7) 인권 교육<sup>111)</sup>

(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3조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함.

(나)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률, 국제규약,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단체 및 제도, 몽고의 인권 문제, 대두되고 있는 인권 문제와 관련한 성과와 결점 등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다) 인권교육은 다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시민과 공동체, 중앙 및 지

108) <http://mn-nhrc.org/eng/main2/11/eng/38/39/> (검색일: 2016.10.27.)

109) <http://mn-nhrc.org/eng/main2/11/eng/38/39/eng/38/40/> (검색일: 2016.10.27.)

110) <http://mn-nhrc.org/eng/main2/11/eng/38/39/eng/38/40/eng/38/41/>  
(검색일: 2016.10.27.)

111) <http://mn-nhrc.org/eng/main2/6/> (검색일: 2016.10.27.)

방 행정 기구 및 관계자(authorities), 법원·경찰·법원 판결 집행 기구(court decision implement agency) 등의 법 집행 기관 및 관계자, 인권과 자유 영역에 종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직원, 교육·언론·조사(inspection)과 관련한 전문 단체 및 소속 직원, 여성·학생·노인·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

(8)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의 협력<sup>112)</sup>

(가)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단체·국가인권기구·정부·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감. 특히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MOU(Memoranda of Understanding)을 체결함. 2009년에는 몽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몽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MOU를 체결했음.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내외 기관들과 MOU 체결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감.

(나)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회원임.

바) 특이사항

몽고 국가위원회는 몽고 국민 뿐 만 아니라 몽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진정도 받고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2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3년, 2008년 11월, 2014년 10월 심사에서도 A등급을 유지함.<sup>113)</sup>

112) <http://mn-nhrc.org/eng/main2/21/> (검색일: 2016.10.27.)

113)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25.)

## 5) 네팔

네팔 국가 정보 <sup>114)</sup>	
면적	147,181km <sup>2</sup>
인구	3,155만 명('15)
수도	카트만두(Kathmandu)
정치형태	내각책임제(총리가 행정수반)
민족	아리안족(80%), 티벳·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
주요언어	네팔어
주요종교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GDP	GDP : 210억불('15)
	1인당 GDP : 716불('15)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2) 설립연도: 2000년 5월 26일<sup>115)</sup>
- (3) 설립배경<sup>116)</sup>: 네팔의 국가인권위원회는 1991년 유엔이 후원하고 파리에서 개최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회의에 대응하여 창설되었음. 1993년 세계 모든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파리원칙이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토대와 기준이 되었고 이후 1997년 인권위원회법(1997 Human Rights Commission Act)에 근거해 법적인 기구로 2000년에 설립됨.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1997년에 제정된 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53, 1997)에서 위원회의 설립을 정함. 동법에서 위원회의 구성, 기능, 권한 등에 대해 정함.<sup>117)</sup> 이후 이 법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68, 2012)으로 대체됨.<sup>118)</sup>

114)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5/1\\_22795.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5/1_22795.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10.25.)

115) [http://nepal.ohchr.org/en/resources/publications/ODS-2\\_E..pdf](http://nepal.ohchr.org/en/resources/publications/ODS-2_E..pdf) (검색일: 2016.11.1.)

116) [http://www.nhrcnepal.org/nhrc\\_about.html](http://www.nhrcnepal.org/nhrc_about.html)(검색일: 2016. 11. 17)

117)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ilo\\_aids/documents/legaldocument/wcms\\_126115.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ilo_aids/documents/legaldocument/wcms_126115.pdf) (검색일: 2016.11.1.)

(나) 2007년 잠정 헌법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63, 2007) 15장에서 인권위원회의 구성, 기능, 권한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승격.<sup>119)</sup> 2015년 헌법 25장에서 위원회에 대해 정하고 있음.<sup>120)</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sup>121)</sup>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인원 및 부서: 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장(Chairperson)과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됨.<sup>122)</sup> 사무국 산하에 4개의 부서가 있음: 법률·조사·모니터링국(Law, Investigation & Monitoring Department), 협력국(Coordination Department), 증진·옹호·집단적 권리국(Promotion, Advocacy & Collective Rights Department), 행정·재무·정책·기획국(Administration, Finance, Policy & Planning Department).<sup>123)</sup> 국가인권위원회(NHRC)의 총 인원은 154명.

---

118)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90654&p\\_country=NPL&p\\_count=119&p\\_classification=01&p\\_classcount=45](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90654&p_country=NPL&p_count=119&p_classification=01&p_classcount=45) (검색일: 2016.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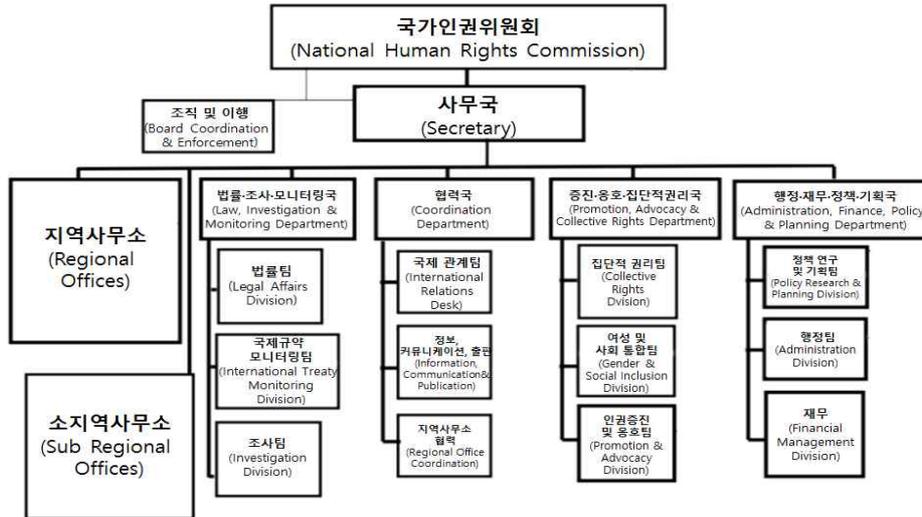
119)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np/np006en.pdf> (검색일: 2016.11.1.)

120)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 (검색일: 2016.11.1.)

121)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122)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 (검색일: 2016.11.1.)

123) [http://www.nhrcnepal.org/nhrc\\_new/doc/organization/160630043933\\_Nepal\\_NHRC\\_Organogram\\_2073web.pdf](http://www.nhrcnepal.org/nhrc_new/doc/organization/160630043933_Nepal_NHRC_Organogram_2073web.pdf) (검색일: 2016.11.7.)



출처: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네팔-그림 6]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2) 지역사무소<sup>124)</sup>

위원회 본부는 수도인 카트만두에 위치하고 있음. 6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가 있음: 동부 지역사무소(Eastern regional office, Biratnagar), 중앙 지역사무소(Central regional office, Janakpurdham), 서부 지역사무소(Western regional office, Pokhara), 중서부 지역사무소(Mid-western regional office, Nepalgunj), 극서 지역사무소(Far-western regional office, Dhangadi). 그리고 3개의 소지역사무소(sub regional office)인 코탕(Khotang), 줌라(Jumla), 루판데히(Rupendehi)가 있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하는 다른 국내 혹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기 위한 협약(agreement)에 재정적(financial)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재무부(Finance Ministry)의 허락을 받아야함. 위원회는 본부 이외의 지역 사무소 혹은 연락사무소를 수립할 경우 재무부와 상의해야함. 예산 규모는 250만 달러(한화 29억5,150만 원)이며 이 중 네팔 정부가 58% 출연함

124) [http://www.nhrcnepal.org/nhrc\\_contact.html](http://www.nhrcnepal.org/nhrc_contact.html) (검색일: 2016.11.6.)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125)</sup>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대통령은 헌법이사회(Constitutional Council)의 추천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함. 위원장은 퇴임한 고등법원의 수석판사(Chief Justice)·판사 중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혹은 20년 이상 인권의 보호·증진 및 국가생활(national life)의 다양한 분야에 크게 기여하여 명성이 높은 자여야 함. 위원은 20년 이상 인권의 보호·증진 및 국가생활(national life)의 다양한 분야에 크게 기여하여 명성이 높은 자여야 함. 공통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은 45세 이상, 학사 이상의 학력, 높은 도덕성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임명 직전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여야 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위원장과 위원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다른 헌법적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 근무환경(conditions of service), 혜택을 누림.<sup>126)</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27)</sup>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또는 임원 수준의 직원, 네팔 정부 공무원 등에게 헌법 및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위원장이 정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재임할 수 없음.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128)</sup> 등

위원회가 선의(good faith)로 행한 행위를 이유로 위원회, 위원장, 위원, 직원 혹은 위원회가 정한 사람(individual assigned by the Commission)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125)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  
(검색일: 2016.11.1.)

126)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127)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128)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가) 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접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탄원서 혹은 진정, 입수한 정보, 혹은 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과 관련 정보를 녹음하고 검토할 수 있음, 증거를 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음, 물리적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거나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사건과 관련된 자의 자택 혹은 사무실을 수사하거나, 관련된 문서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중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구조를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정부 부지 혹은 다른 곳에 진입할 수 있음.<sup>129)</sup>

(나) 위원회는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영기관 등에 대한 사찰(inspection)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음.<sup>130)</sup> 또한 직접 조사단을 전국 여러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 현황을 조사함.<sup>131)</sup>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sup>132)</sup>

(가)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개정 사항을 정부에 권고함. 위원회는 네팔 정부가 법안의 발의 및 법률의 개정, 혹은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에 관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자문을 제공함.<sup>133)</sup>

(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유와 함께 새로운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을 정

129)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  
(검색일: 2016.11.1.)

130)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131) [http://www.nhrcnepal.org/nhrc\\_new/doc/newsletter/A%20Brief%20Overview%2009-Eng.pdf](http://www.nhrcnepal.org/nhrc_new/doc/newsletter/A%20Brief%20Overview%2009-Eng.pdf) (검색일: 2016.11.6.)

132)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  
(검색일: 2016.11.1.)

133)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부에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네팔이 당사국인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이행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행을 촉구함.

(다) 네팔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에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함.<sup>134)</sup>

(3) 인권 문화 확산

(가) 위원회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인권주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함.<sup>135)</sup>

(나)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게 교과과정에 인권 관련 교육 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함.<sup>136)</sup>

(4)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sup>137)</sup>

(가) 위원회는 연례보고서와 함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함. 특히 2015년에는 지진 피해 현황과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간함.<sup>138)</sup>

(나) 매달 인권포스트(Human Rights Post)를 발간함.

(5)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 피해자는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음. 인권 침해 혹은 인권침해 방조(abetment)에 대한 진정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개인이 감금되었다면 자유의 몸이 된지 6개월 이내에 진정을 접수해야함. 진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확인서(receipt)를 발급함. 진정이 접수된 직후 위원회는 예심절차(preliminary proceedings)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

134)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135) [http://www.nhrcnepal.org/nhrc\\_radio.html](http://www.nhrcnepal.org/nhrc_radio.html) (검색일: 2016.11.6.)

136) <http://www.accessfacility.org/sites/default/files/National%20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11.1.)

137) [http://www.nhrcnepal.org/nhrc\\_new/doc/newsletter/A%20Brief%20Overview%202009-Eng.pdf](http://www.nhrcnepal.org/nhrc_new/doc/newsletter/A%20Brief%20Overview%202009-Eng.pdf) (검색일: 2016.11.6.)

138) [http://www.nhrcnepal.org/publication.php?&nstart=1&start=1&num\\_totrec=122&n=&page=R](http://www.nhrcnepal.org/publication.php?&nstart=1&start=1&num_totrec=122&n=&page=R) (검색일: 2016.11.6.)

면 관련 기관 혹은 담당자에게 적절한 명령을 전달함.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진정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즉각적으로 구조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될 때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 조치(interim relief) 혹은 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다) 조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compens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단, 이미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할 수 없음.

#### (6) 인권 침해 사건 해결

- (가)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에 대해 정부 기관에 대응을 권고할 수 있음. 또는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권 침해를 행한 가해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lodge a petition).<sup>139)</sup>
- (나)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위원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이행할 것을 요구한 권고, 명령, 지시가 준수 되지 않았을 때 위원회는 해당 담당자, 개인, 기관의 실명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음. 실명을 공개하기 이전에 해당 담당자(official), 개인, 기관(agency)에게 위원회의 권고, 명령, 지시 불이행에 관한 공고문을 발송하며 이를 전달받은 담당자, 개인, 기관은 15일 이내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함. 15일 내로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하는 담당자, 개인, 기관의 실명을 공표함. 위원회는 이들의 명단을 기록 및 보관하며 추후 이들의 임명, 승진, 커리어에 있어 관련 기관은 이 명단을 참고할 수 있음.
- (다) 피해자 및 가해자(concerned parties)가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해 양측이 화해(reconciliation)를 위한 합동 탄원서(joint petition)을

---

139)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Nepal_2015?lang=en)  
(검색일: 2016.11.1.)

제출한다면, 위원회는 그들이 말한 대로 화해하도록 함. 단, 국제인권 규약 혹은 기존 법률에서 화해로 인한 해결이 허용되지 않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바) 특이사항

위원장은 고등법원의 수석판사나 판사로 퇴임한 자 중에서 임명함.

후속조치: 인권침해자에 대한 권고, 명령, 지시가 준수되지 않았을 때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기관의 실명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1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2년, 2007년 10월, 2008년 11월 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3월 심사에서 B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 5월에 A등급을 회복하였음. 2014년 10월 특별 심사에서도 등급을 유지함.<sup>140)</sup>

6)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가 정보 <sup>141)</sup>	
면적	270,000km <sup>2</sup>
인구	450만 명('15)
수도	웰링턴(Wellington)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영국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민족	유럽인(68%), 마오리족(14%), 아시아계(9.2%), 폴리네시아인(6.9%)
주요언어	영어, 마오리어
주요종교	성공회(17%), 카톨릭(14%), 개신교(11%)
GDP	GDP : 1,999억불('15)
	1인당 GDP : 44,342불('15)

140)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16.)

141)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5.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5.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8.24.)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sup>142)</sup>
- (2) 설립연도: 1977년
- (3) 설립배경<sup>143)</sup>: 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된 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77)<sup>144)</sup> 4조에 근거하여 설립됨. 또한 인권위원회는 1993년에 차별과 관련한 조항이 강화되어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sup>145)</sup>과 왕립 회사법(Crown Entities Act 2004)에 따라 운영됨.<sup>146)</sup>

나) 설립 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147)</sup>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77) 4조에 근거해 설립됨. 1993년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 4조 1항에서는 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존속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장 전반에 걸쳐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하고 있음. 2001년에 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mendment Act 2001)<sup>148)</sup>의 5조는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1993년에 제정된 기존의 인권법을 보완하고 있음.

인권위원회는 왕립회사법(Crown Entities Act 2004) 7조<sup>149)</sup>에 근거한 왕

---

142)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rc.co.nz/> (검색일: 2016.8.24.)

143) <https://www.hrc.co.nz/about/our-story/> (검색일: 2016.8.24.)

144)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hrca19771977n49294/](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hrca19771977n49294/) (검색일: 2016.8.24.)

145)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DLM304212.html>

(검색일: 2016.8.24.)

146) 2015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 (검색일: 2016.8.24.)

147)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whole.html#DLM304269> (검색일: 2016.8.25.)

148)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1/0096/latest/whole.html#DLM121843> (검색일: 2016.8.25.)

립회사(Crown entity)로써 왕립회사법의 적용을 받음. 인권법 4조 4항에 의해 왕립회사법의 16조<sup>150)</sup>와 17조<sup>151)</sup>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발생함: 인권법 혹은 왕립회사법이 정하고 있는 자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 인권소송사무소 소장(Director of Human Rights Proceedings)·그(녀)의 대리인·소장의 지시에 따르는 인권소송사무소 직원이 인권법에 근거한 기능, 권한, 의무를 수행할 때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법적 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sup>152)</sup>(인원 및 조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 바로 아래에는 최고 책임자(Chief Executive)가 있음.

최고책임자는 인사 네트워크 담당관(HRN Manger), 최고 중재 담당관(Chief Mediator), 프로그램 담당관(Program Manager), 인사관리 및 평가 담당관(People&Performance Manager), 서비스 담당관(Corporate Service Manager), 조직 관리자(Kaiwhakarite Matua), 커뮤니케이션 담당관(HR Comms Manager), 그리고 법적위험관리담당관(Legal Risk Management, LRM Manager)과 함께 조직을 이끌어나감. 또한 인권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권소송사무소(Office of Human Rights Proceedings, OHRP)는 인권소송사무소 소장의 지휘 하에 운영됨. 인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인권소송사무소 소장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60여명의 직원이

149)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4/0115/latest/DLM329641.html#DLM329641> (검색일: 2016.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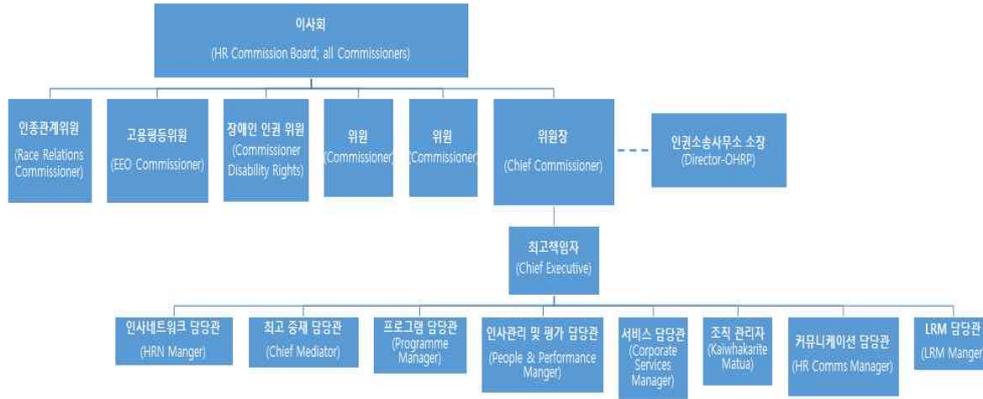
150) 법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16. A statutory entity may do anything authorised by this Act or the entity's Act.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4/0115/latest/DLM329930.html#DLM329930> (검색일: 2016.8.25.)

151) 법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17.(1) A statutory entity may do anything that a natural person of full age and capacity may do. (2) Subsection (1) applie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or another Act or rule of law.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4/0115/latest/DLM329931.html#DLM329931> (검색일: 2016.8.25.)

152) <https://www.hrc.co.nz/about/commissioners-and-senior-leadership/> (검색일: 2016.8.25.)

상근하고 있음.

- (2) 지역사무소<sup>153)</sup>: 오클랜드(Auckland), 웰링턴(Wellington)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에 위치한 총 3개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음.



[뉴질랜드-그림 7] 인권위원회 조직도

- (3) 예산<sup>154)</sup>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위원회는 예산부분에 있어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으나 정부와는 독립적인 조직(independent Crown Entity)으로써 활동함.<sup>155)</sup> 정부의 보조금은 1993년 인권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연간 예산 802만 달러(한화 94억8,124만4,000 원) 중 97.6% 뉴질랜드 정부 출연.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보조금이 조건부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령 시점에 환불 혹은 교환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간주함. 정부의 보조금은 사전에 이루어진 보조금 합의 사항에 준하여 지급됨. 인권위원회의 2015년 총 수입 978만 3천 불 중 정부보조금은 939만 6천 불로 정부보조금이 총 수입의 약 96%를 차지함. 동 기간 총 지출은 980만 7천 불임.

153) <https://www.hrc.co.nz/contact/> (검색일: 2016.8.25.)

154) 2015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 (검색일: 2016.8.25.)

155) <https://www.hrc.co.nz/about/our-story/> (검색일: 2016.8.24.)

<뉴질랜드-표 4> 2014-2015 뉴질랜드 인권위 재정현황 및 정부보조금 비율

연도	2015	2014
총 수입 (\$)	9,783,000	9,720,000
정부보조금 (\$, %)	9,396,000 (96%)	9,396,000 (96.6%)
총 지출 (\$)	9,807,000	10,760,000

출처: 2015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156)</sup>

2001년에 개정된 인권법 8조 2항에 따라 총독(Governor-General)은 법무부장관(Minister)이 추천한 자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장관은 동법 11조에 제시된 조건에 충족되는 자를 추천해야하며 위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 등의 조건을 나열한 동법 12조를 참고해야하며 인종관계위원과 고용평등위원 추천 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동법 13조와 14조에 따라 적합한 자를 추천해야함. 현재 위원장은 2011년 9월에 임명된 데이비드 루터포드(David Rutherford)이며 그와 함께 2016년 8월 기준 상근하는 고용평등위원(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er), 인종관계위원(Race Relations Commissioner)과 3명의 비상근 위원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sup>157)</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58)</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59)</sup>

1993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 19조에서는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음. 본 조항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156)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1/0096/latest/whole.html#DLM121850>  
 (검색일: 2016.8.25.)

157) 2015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 (검색일: 2016.8.25.)

158) 해당정보 찾을 수 없음

159) 위원의 지위 및 면책특권은 같은 법에서 따로 명시되지 않음.

법에 근거한 역할과 의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함. 위원들이 동법 16조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은 동법 15조 (b), (c), (d)에 따른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sup>160)</sup>

역할<sup>161)</sup>: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1993년 인권법 15조, 16조에서 정하고 있음. 위원장은 동법 15조에 따라 (a)위원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 (b)위원회의 활동이 동법 7조<sup>162)</sup>에 따라 정해진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도록 할 것 (c)위원회가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d)위원회가 왕립회사법(Crown Entities Act 2004),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 공무원법(State Sector Act 1988)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어기지 않도록 할 것 (e)장관과의 협의하여 위원들의 전문 영역과 활동 영역을 정해줄 것 (f)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총 관리자(general manager)와 협의 및 감독할 것 (g)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 동법 8조 (1A) 혹은 (1B)<sup>163)</sup>에 따라 우선영역이 정해진 위원은 동법 16조 1항에 따라 (a)지정된 우선영역의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 (b)우선영역과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 (c)우선활동영역에 관한 대중의 논의에 기여할 것 (d)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 인권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회의 전략 방향과 활동의 성격을 결정하고 1993년에 제정

---

160)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whole.html#DLM304413>  
(검색일: 2016.8.26.)

161)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whole.html#DLM304413>  
(검색일: 2016.8.26.)

162) 7조 (1) 위원들은 위원회가 나아갈 전략적 방향과 활동의 성격을 함께 정함 (2) 위원장은 위원들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함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whole.html#DLM304413>  
(검색일: 2016.8.26.)

163) 8조 (1A) 위원장 이외에 다음의 우선 영역을 이끌어 나갈 위원이 임명되어야 함: 장애인 인권(장애인인권 위원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er), 평등한 고용의 기회(고용평등위원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er), 인종관계(인종관계위원 the Race Relations Commissioner) (1B) 위원은 위원장이 장관과 다른 위원들과의 합의 후 위원회의 전략적 방향과 활동 성격에 따라 정해진 우선영역을 이끌어 나가야 함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whole.html#DLM304284> (검색일: 2016.8.26.)

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영역의 전략적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함.<sup>164)</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165)</sup>

2001년에 개정된 인권법 20(F)조에 근거하여 총독은 장관이 제안하는 임기를 위원이 임명 될 당시 지정하며 이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연임 불가. 동법 20(G) 조항에 근거하여 임기를 종료하게 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위원직을 수행해야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66)</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67)</sup>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 명시되어 있듯이 뉴질랜드 사회 내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개인 간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 및 유지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임. 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기본계획의 이행 촉구 및 모니터링, 교육 및 인권옹호활동, 국내법 및 국제인권기구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 인권침해사건 해결, 그리고 소송제기 및 변론이 있음.<sup>168)</sup>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및 법률 지원

(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소송사무소(Office of Human Rights Proceedings, OHRP)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인권소송사무소에서는 차별과 관련한 소송(Discrimination Litigation)에 대해 무료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건이 인권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에서 재판을 수 있도록 함. 인권소송사무소 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93)과

---

164) 2015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 (검색일: 2016.8.26.)

165)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1/0096/latest/whole.html#DLM121854>  
(검색일: 2016.8.25.)

166) 해당사항을 찾을 수 없음

167) 2015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https://www.hrc.co.nz/files/5414/4893/3995/924898ED-8C74-428A-9ACD-0196CC2125E5HRC_Annual_Report_2015.pdf) (검색일: 2016.8.26.)

168) <https://www.hrc.co.nz/about/what-commission-does/> (검색일: 2016.8.27.)

관련한 사건에서도 원고 혹은 소송참가인(intervener)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sup>169)</sup>

(나) 인권위원회는 불만접수 서비스(complaints service)와 조사(enquiries)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sup>170)</sup>

(2)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sup>171)</sup>

(가) 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차별로 인한 분쟁을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인권위원회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사법적 기능은 국내 재판소와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서 수행함.

(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자는 인권위원회의 불만접수 서비스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불만접수는 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만이 접수 된 후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나감. 대체적으로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를 통한 해결, 정보의 제공, 조정(medi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함. 조정과정 참가자 중 90% 이상이 조정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음. 인권위원회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인권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권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음.

(다) 인권소송사무소에 무료 변론을 요청하여 사건을 인권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음.

(3)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

(가) 차별에 관한 연구: UMR 리서치(UMR Research)<sup>172)</sup>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뉴질랜드 내 차별에 대한 인식

169) <https://www.hrc.co.nz/ohrp/our-work/> (검색일: 2016.8.26.)

170) <https://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 (검색일: 2016.8.26.)

171) <https://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how-make-complaint/> (2016.8.26.)

172) UMR 리서치는 연구 및 평가 회사로 특히 기업 명성, 문제 해결, 정책,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음.

조사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보고서 상에서는 인종,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차별을 다루고 있음.<sup>173)</sup> 또한 위원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의 발간<sup>174)</sup>, 성전환자가 겪는 차별에 대한 조사<sup>175)</sup>를 시행함.

(나) 위원회는 ‘기업에서의 평등 현황 추적(Tracking Equality at Work)’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서는 차별, 성별에 근거한 리더십과 급여, 민족, 나이, 장애 등과 고용 결과 간의 분석을 제공함. 이 분석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용 결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황 모니터링에도 기여함.

(4)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입법 자문활동<sup>176)</sup>

(가) 인권위원회는 총리(Prime Minister)에게 인권 보호 증진 혹은 국제 인권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방안과 새로운 인권 기구 가입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동법에 근거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현존하는 법, 행정 조항(administrative provision), 혹은 정책에 대해 총리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음.

(나)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을 수립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뉴질랜드가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내용을 토대로 한 국가의 향후 인권 정책과 방향을 제시함. 인권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sup>177)</sup>

(다) 위원회는 2013년 헌법 자문 패널의 일원으로 합류함. 위원회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로서 ‘사람’이 헌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 하에 헌

173) <https://www.hrc.co.nz/your-rights/race-relations-and-diversity/race-relations/our-work/discrimination-research/> (검색일: 2016.8.26.)

174) <https://www.hrc.co.nz/your-rights/social-equality/our-work/fair-go-all/> (검색일: 2016.8.27.)

175) <https://www.hrc.co.nz/your-rights/social-equality/our-work/inquiry-discrimination-experienced-transgender-people/> (검색일: 2016.8.27.)

176)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DLM304276.html> (검색일: 2016.8.26.)

177) <https://www.hrc.co.nz/about/what-commission-does/> (검색일: 2016.8.27.)

법의 개정 및 논의가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함.<sup>178)</sup>

- (라) 위원회는 정부가 국내 인권 현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들과 협력하며 자문을 제공함. 위원회는 괴롭힘에 관한 자문 단체(Bullying Prevention Advisory Group, BPAG), 아동 기본계획 담당부서 등에 자문을 제공함. 보건법의 개정과 조직적 폭력 및 반부패 법안 등 입법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함.

(5)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가)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권 인식을 증진시키고 각종 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실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 기업 내 인권(The Business of Human Rights), 토착민의 권리, 장애인 적합 시설물, 임신으로 인한 차별의 예방, 학교 내 따돌림, 종교의 다양성 등의 권리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도움.<sup>179)</sup>

- (나) 위원회는 왕립회사(Crown Entities)의 고용과정에서 인권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 연례보고서를 통해 왕립회사의 고용 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며 고용과정에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함. 이와 더불어 우수한 고용주에 대한 지침(good employer guidance)을 제공함. 위원회는 고용자와 (예비)근로자를 위한 지침서를 공개하고 국내 기업 중 인권의 관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함.<sup>180)</sup>

(6)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갈등 해소 및 화합 장려

- (가) 인권위원회의 목표는 뉴질랜드 국민 모두가 서로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나)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 5조 1항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주요

178) <https://www.hrc.co.nz/your-rights/indigenous-rights/our-work/> (검색일: 2016.8.27.)

179) <https://www.hrc.co.nz/resources/> (검색일: 2016.8.27.)

180) <https://www.hrc.co.nz/your-rights/business-and-work> (검색일: 2016.8.27.)

기능으로 (b)국내 다양한 개인 간, 집단 간 화합의 유지와 발전을 격려하며 (c) 인종 간 평등(racial equality)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8조 1A항에서 인종 관계 위원(Race Relations Commissioner)의 임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sup>181)</sup>

(다) 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번 다른 도시에서 뉴질랜드 다양성 포럼을 개최함. 포럼은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 문화 다양성과 우수한 인종관계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와 현황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자리임.<sup>182)</sup>

(7) 우선 영역(priority area)내 인권증진

(가) 인권법(Human Rights Act) 8조에서는 우선 영역으로 지정된 장애인 인권, 평등한 고용의 기회, 인종 관계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위원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183)</sup>

(나) 인종관계위원(Race Relations Commissioner)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인종관계에 관심을 갖고 인종차별(racial abuse)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함. 2013년 4월에 데임 수잔(Dame Susan)이 인종관계위원으로 임명되었음.<sup>184)</sup> 위원회는 인종관계의 날(Race Relations Day)을 지정하여 조화로운 인종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함. 또한 다양성 기본계획(New Zealand Diversity Action Programme)을 기획하여 사회 내 화합을 장려함. <sup>185)</sup>

(다) 고용평등위원(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er)이 임명되어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 특히 고용

181)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DLM304276.html> (검색일: 2016.8.26.)

182) <https://www.hrc.co.nz/your-rights/race-relations-and-diversity/race-relations/our-work/new-zealand-diversity-forum/> (검색일: 2016.8.27.)

183)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2/latest/DLM304289.html> (검색일: 2016.8.26.)

184) <https://www.hrc.co.nz/about/commissioners-and-senior-leadership/dame-susan-de-voy/> (검색일: 2016.8.27.)

185) <https://www.hrc.co.nz/your-rights/race-relations-and-diversity/race-relations/our-work/> (검색일: 2016.8.27.)

의 평등한 기회에 대해 집중하며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과 마오리족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출신의 이들이 저평가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함. 제키 블루(Dr. Jackie Blue)가 고용평등위원으로 임명되었음.<sup>186)</sup>

(라) 장애인인권 위원(Disability Rights Commissioner)은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의 국내 이행과 장애인 권리 신장에 기여함. 특히 폭력, 교육, 정신 질환과 노인의 권리 영역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무엇보다 장애인이 환영받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함. 2001년에 폴 김슨(Paul Gibson)이 장애인인권 위원으로 임명되었음.<sup>187)</sup>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들의 의견을 국가 장애인 기본 계획(Disability Action Plan)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함.

#### 바) 특이사항

인권위원회 산하에는 인권소송사무소가 있어 인권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사법적 기능은 국내 재판소와 인권재판소가 맡고 있음

####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6년 10월, 2011년 5월, 2016년 5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188)</sup>

---

186) <https://www.hrc.co.nz/about/commissioners-and-senior-leadership/dr-jackie-blue/>  
(검색일: 2016.8.27.)

187) <https://www.hrc.co.nz/about/commissioners-and-senior-leadership/paul-gibson/>  
(검색일 2016.8.27.)

188)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24)

## 7)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국가 정보 <sup>189)</sup>	
면적	6,020km <sup>2</sup>
인구	약 475만명(2015) * West Bank 290만, 가자지구 185만 거주
수도	라말라(Ramallah: 임시 행정수도)
정치형태	이원집정부제
주요언어	아랍어, 영어
주요종교	이슬람교(98%), 기독교(1.37%)
GDP	국민총생산(2014): 127.4억불
	1인당 GDP : 2,957불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

The Independent Commission for Human Rights (ICHR)

아랍어명칭 الهيئة المستقلة لحقوق الانسان

#### (2) 설립연도: 1993년 9월 30일

#### (3) 설립배경<sup>190)</sup>

(가) 독립인권위원회는 1993년 Yasser Arafat 팔레스타인 대통령 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의장의 대통령령을 통해 설립. 1994년 초에 활동 시작한 독립인권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은 “팔레스타인 법, 조례들, 규제들,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관련 국가부서들과 기관들의 업무 내용 제반을 통해 인권 보호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반영되고, 보장되도록”함. 또한 대통령령은 독립인권위원회가 자체적인 규정(statute)을 작성, 이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2007년 12월부터, 독립인권위원회는 중앙화된 계획과 분권화된 이행을 기초로한 조직 재구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형성. 이 방식을 통해 독립인권위원회는 더 분명한 권한 및 직무에 대한 설명을 지니게 되고, 위원회 본부와 지역사무소들 (서안지구 West Bank, 가자지구 Gaza Strip 위치)와의 관계 역시 더욱 분명해짐.

189)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1/1\\_23179.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1/1_23179.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9.23.)

190) <http://www.ichr.ps/en/2/2/251/About-Us-About-Us.htm?tpl=141> (검색일 2016.9.23.)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팔레스타인 기본법(The Palestinian Basic Law) 제 31조<sup>191)</sup>

기본법 제 31조가 팔레스타인 의회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PLC)를 통해 1997년 투표에 부쳐지고, 2002년에 비준, 2003년에 개정 됨. 이 조항은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법에 따라 수립되고, 그 형태와 의무, 관할권이 상세하게 정해진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내부적인 조례들, 강령과 활동 내용을 통해 권한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됨.

2004년, 독립인권위원회는 법 초안을 작성, 2005년 5월에 이를 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제출. 이 법률은 독립인권위원회를 팔레스타인의 정식 국가인권위원회로 확정하고, 옴부즈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근거가 됨. 동 법률은 국가 및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인권위의 권한을 부여함. 위원회는 권력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나 진정을 국민들이 제출할 수 있는 구심점이고, 인권 교육과 홍보 기관이며, 팔레스타인 법과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권 가치 통합의 역할을 담당.

(나) 2015년 독립인권위원회 이사회 내규 (Bylaws of ICHR's Board of Commissioners 2015)<sup>192)</sup>

독립인권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제반 내용 포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팔레스타인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sup>193)</sup>

---

191) <http://www.palestinianbasiclaw.org/basic-law/2003-amended-basic-law>  
(검색일 2016.9.23.) 팔레스타인 기본법 Art. 31

192)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인권위원회는 17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이사회(board of commissioners)에 의해 운영됨. 위원들은 팔레스타인 사회 내에서 저명한 자들로, 팔레스타인 본토 및 디아스포라(Diaspora)<sup>194</sup>를 통해 지명. 이는 다양한 팔레스타인계 커뮤니티의 소통을 확인하고 디아스포라들 내에서 인권위원회의 영향을 증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함. 이사회 내에서 선출되고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이 의장을 맡는 사무국 (Executive Office)는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상위의 지위를 가지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감독함. 사무국에서 지명하는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는 위원회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부서들을 담당함.

독립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개 부서/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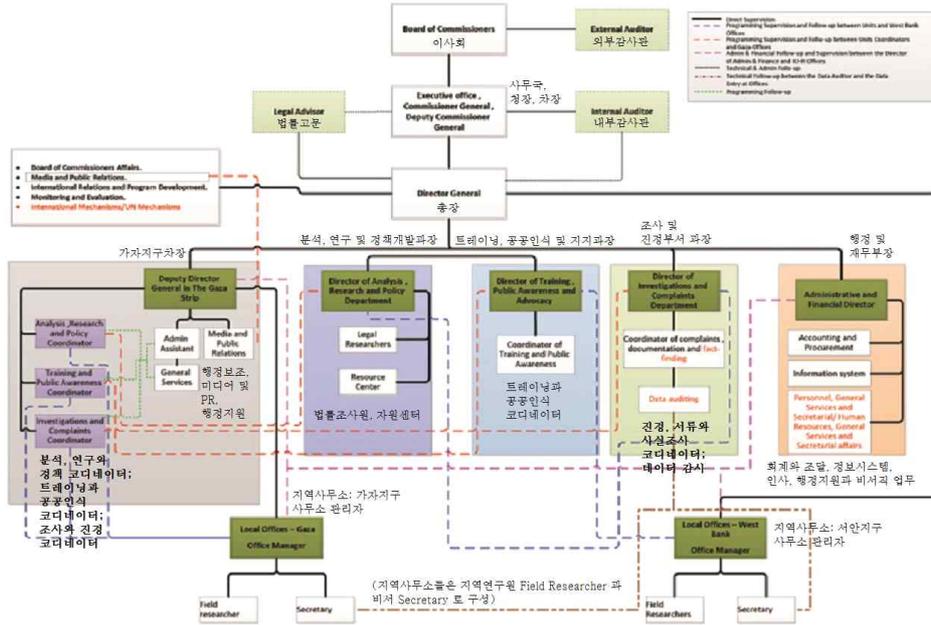
- ① 행정·재무부서 Administration and Finance Division,
- ② 조사·진정팀 Investigation and Complaints Unit,
- ③ 국내법·정책 모니터링팀 Monitoring of National Legislations and Policies Unit,
- ④ 대중인식·트레이닝팀 Public Awareness and Training Unit
- ⑤ PR·미디어사무소 Public Relations and Media office

독립인권위원회는 위원회 내 직원들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음. 구조 조정 과정을 통해 위원회 내의 조직 구성과 직원들의 위치가 정리됨. 사무국은 상임이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지역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행정재무과장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Division)으로 이루어짐. 추가적으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두 기술팀이 있다. 이 팀들은 지역사무소담당자들, 각 조사 및 진정 담당자, 지역사무소 담당자와 각 조사 및 진정 담당자, 공공인식과 트레이닝 팀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짐. 최종적으로, 국내법률 및 정책 모니터링의 책임자들이 정보센터와 법률 연구가들과 함께 협업함. 2013년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포함한 총 직원 수(중앙사무소 및

193) <http://www.ichr.ps/en/2/2/254/Structure-Structure.htm> (검색일 2016.9.23.)

194) 타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지역사무소 직원까지 모두 포함)는 79명<sup>195)</sup>.



[팔레스타인-그림 8]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 조직도

(2) 지역사무소<sup>196)</sup>

독립인권위원회는 라말라(Ramallah) 중앙사무소와 더불어 5개 지역사무소 (서안지구에 3곳 - 북부, 중앙, 남부, 그리고 가자지구에 2곳 - 북부, 남부)를 둬. 서안지구 중앙지역사무소는 라말라 중앙사무소와 동일한 전제를 지니고, 가자지구 북부지역사무소는 가자시 (Gaza City) 사무소와 동일한 전제를 지님.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97)</sup>

(가)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는 외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활동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 후원을 받음:

195) <http://www.ichr.ps/en/2/6/1209/ICHR-19th-Annual-Report-ICHR-19th-Annual-Report--Executive-Summary.htm> (검색일 2016.10.7.)  
 196) <http://www.ichr.ps/en/2/2/254/Structure-Structure.htm> (검색일 2016.9.23.)  
 197) <http://www.ichr.ps/en/2/2/258/Donors-Donors.htm> (검색일 2016.10.05)  
 최근 자료가 2011년까지의 자료만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 있었음.

- ①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단(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 ② 스위스개발협력단(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 ③ 네덜란드 대표부(The Netherlands Representative Office)
  - ④ ④ 덴마크왕실 대표부(The Royal Danish Representative Office)
  - 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노르웨이 대표부 (The Representative Office of Norway to the Palestinian Authority)
- (나) 2008년 초반부터 독립인권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5%의 재정을 지원받고, 지원받는 금액은 2009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은 미화 2,564,712 달러 (한화 약 2,861,315,700원), 사용된 금액은 2,323,046달러 (한화 약 2,591,892,300원)<sup>198</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이사회 및 위원

- ① 독립인권위원회는 17명에서 21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Board of Commissioners)를 통해 운영됨. 위원(Commissioners)들은 국내 혹은 디아스포라 내의 팔레스타인인들로, 이사회 내규 및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s)에 따라 선출되고 해임됨.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 성별에 따라 최소 12명의 위원들(남성 6명, 여성 6명)을 두어야 함<sup>199</sup>).

198) <http://www.ichr.ps/en/2/6/1209/ICHR-19th-Annual-Report-ICHR-19th-Annual-Report--Executive-Summary.htm> (검색일 2016.10.7.)

199)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15년 독립인권위원회 이사회 내규

Article (3)

제 3조

1. ICHR is run by a Board of Commissioners consisting of 17 to 21 members. The Commissioners are Palestinians in the homeland and the Diaspora. They are selected and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Board of Commissioners'

- ② 위원장 (Commissioner General)을 포함한 이사회는 모든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팔레스타인인 2) 법적행위능력(legal capacity)을 누리는 자 3) 경쟁력, 경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 및 국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자 4)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 사실이 없고, 공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자 5) 사회 내에서 존경받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널리 알려진 자. 위원은 행정부나 기타 팔레스타인의 공공기관, 의회, 정당 등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안 됨<sup>200)</sup>.
- ③ 이사회 내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위원회는 최소 두 곳의 신문사와 공식웹사이트에 공고함. 이사회에 대한 자격 요건은 이사회 공석에 대한 공고에 포함됨. 신청서를 받는 기간은 최소 30일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기존 위원회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함<sup>201)</sup>.

---

bylaws and the Paris Principles regulating the work of NHRIs.

독립인권위원회는 17명에서 21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Board of Commissioners)를 통해 운영된다. 위원(Commissioners)들은 국내 혹은 디아스포라 내의 팔레스타인인이다. 위원들은 이사회 내규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s) 등의 법에 따라 선출되고 해임된다.

2. The Board of Commissioners must consist of at least six members of both sexes,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diversity in the Palestinian society.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 성별에 따라 적어도 6명씩의 위원들 (남성 6명, 여성 6명)을 두어야 한다.
3. The membership period of a Commissioner is three years; and can be extended twice only (9 years maximum).  
위원들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최대 2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즉, 총 9년까지 가능).
4. The Commissioner will be informed (every three years) at least 9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of his/her membership in order to express the desire to extend the membership of the Commissioner for another period and/or be informed of the end the membership.  
위원은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 임기가 끝나는 시기로부터 적어도 90일 전에 안내받는다. 위원은 임기 연장과 임기 만료 중 선택 가능하다.

200)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1)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15년 독립인권위원회 이사회 내규  
Article (7)

- ④ 이사회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새로운 이사회 위원의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요청함. 자문위원회는 변호사협회장(Bar Association President), 대법원장(Supreme Court President),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법률·인권위원회 의장들, 저명한 학술인 2명, 인권 및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 5명과 전 위원장들로 구성됨. 자문위원회는 내규, 파리 원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CC)의 기준과 원리를 지킴.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의 목록을 형성, 사무국에 추천. 목록은 실제 공식 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사회는 내부 연간회의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들을 선출하게 됨<sup>202)</sup>.

#### 제 7조

1. In case of a vacancy or more in the membership of Board of Commissioners, the Commission will announce for membership applications in two local newspapers (at least) and on ICHR's webpage. The period of receiving membership applications should not be less than 30 days.  
이사회 내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위원회는 최소 두 곳의 신문사와 공식웹사이트에 공고를 낸다. 신청서를 받는 기간은 30일 이하여서는 안 된다.
2. The required principles of being a member (whether an individual or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Board of the Commissioners shall be included in the announcement for vacancies in the Board of Commissioners  
이사회 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이사회 공석에 대한 공고에 포함된다.
3. Procedures of appointing new commissioners will begin 3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of a seated Commissioner membership.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기존 위원회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The Commissioner will stay in his/her position despite the expiration of his/her membership until a new Commissioner is appointed.  
위원들은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202)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15년 독립인권위원회 이사회 내규  
Article (8)

#### 제 8조

1. The Board of Commissioners shall ask an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to review the new membership applications for the Board of Commissioners and recommend new Commissioners. The committee shall be informed to perform its task at least 90 day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membership of the current

(나) 사무국(Executive Office), 위원장(Commissioner General) 및 부위원장 (Deputy Commissioner General)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사무국과 위원장의 구성원을 선출함. 사무국은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의 의장 역할을 함. 사무국 내에서는 부위원장 역시 선출해야 함. 사무국의 임기는 3년으로, 사무국의 구성원은 1회 재임 가능<sup>203)</sup>.
- ② 위원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지니며, 1회 재임 가능. 위원장은 이사회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부위원장

---

Commissioners.

이사회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새로운 이사회 위원의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기존 위원의 임기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에 그 역할을 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2. The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Bar Association President, the Supreme Court President, the Presidents of the Legal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s of the PLC, two prominent academics, five representatives of human right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suring verification in specialization) and former Commissioner Generals.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는 변호사협회장(Bar Association President), 대법원장(Supreme Court President),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법률·인권위원회 의장들, 저명한 학술인 2명, 인권 및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 5명과 전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3. The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shall abide to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these bylaws, the Paris Principle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observations provided by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CC.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는 내규, 파리 원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CC)의 (...) 기준과 원리를 지킨다.

4. The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shall review all of the membership applications submitted to ICHR and recommend a list of the elected candidates, who meet the requirements of membership at the Board of Commissioners, to the Executive Office of the Board of Commissioners. The list shall contain a number of candidates that is twice the number required for the membership and the Board of Commissioners shall thereafter elect new members during their annual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advisory committee's recommendations.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의 목록을 형성, 사무국에 추천한다. 목록은 실제 공석 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연간회의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들을 선출한다.

203)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경우 역할을 위임. 또한, 위원장은 임시적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무를 위임시킬 권리가 있음<sup>204</sup>).

(다) 사무총장(General Director)

- ① 이사회의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선출, 이사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게 함. 사무총장은 직원들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맡게 됨.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사무국의 회의에 참여, 이사회에 3개월에 한 번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준비해 이사회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 위원회의 업무 발전, 명성과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들에 대해 알림<sup>205</sup>.
- ② 사무총장은 위원장에게 서류, 보고서, 평가서, 예산,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등 위원장과 사무국, 이사회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의 최종본을 제공. 위원장은 이사회와 함께 서류들을 검토하고 공식 서명과 출간, 번역 전 최종 검토일을 결정<sup>206</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207</sup>(장관급 등)

위원장의 자리는 위원회의 정책과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책임이 있기에, 매우 정치적인 위치로 여겨짐.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위원장은 이사회가 제 시간에 맞추어 필요한 보고서와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전략, 계획, 예산, 평가 등을 비준하고 고위직 채용, 외부 파트너십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총장의 지원을 통해 관련 서류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sup>208</sup>).

---

204)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5)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6)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7) 해당 정보를 찾을수 없음

208)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209)</sup>

(가) 위원들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최대 2번까지 재임이 가능. 즉, 최대 9년의 임기가 가능.

(나) 사무국 구성원들의 임기는 3년, 1번의 재임이 가능.

(다) 위원장은 4년의 임기를 지니며, 1회 재임 가능.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210)</sup> 등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211)</sup>

(1) 조사 및 진정 접수 Investigations & Complaints<sup>212)</sup>

(가) 독립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3,185건의 진정을 접수받음. 이는 2011년의 2,876건보다는 많고, 2010년의 3,828건보다는 적은 양. 2012년의 진정들은 주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공공자유 침해에 대한 내용들로, 서안지구에서 온 진정이 2,373건, 가자지구에서 온 진정이 812건. 2011년의 경우 서안지구에서 2,045건, 가자지구에서 832건.

---

209) [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http://www.ichr.ps/attachment/599/Bylaws%20of%20BoC.pdf?g_download=1)

(검색일 2016.9.23.)

2015년 독립인권위원회 이사회 내규

Art. 3.3 The membership period of a Commissioner is three years; and can be extended twice only (9 years maximum).

제 3조 3항: 위원들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최대 2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즉, 총 9년까지 가능).

Art. 10.3 The membership of the Executive Office is three years and can be renewed once.

제 10조 3항: 사무국 구성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사무국의 구성원은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Art. 14.1. The Board of Commissioners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fulltime General Commissioner for a four year renewable period (one time only).

제 14조 1항: 이사회는 상임 위원장(General Commissioner)을 선출하는데, 위원장은 4년의 임기를 지니고,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210)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11) <http://www.ichr.ps/en/2/2/252/Modes-of-Operation-Modes-of-Operation.htm?d=2015> (검색일 2016.9.23.)

212) <http://www.ichr.ps/en/2/3/259/Complaints-Handling-Complaints-Handling.htm> (검색일 2016.10.5.)

가장 최근 자료 기준이 2012년이었음.

(나) 2012년 기준, 독립인권위원회는 공식 및 비공식 후속조치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진정들에 대해 조치함. 비공식적인 접근 차원에서는 총 426건의 진정을 다루며 그 중 275건이 서안지구, 169건이 가자지구의 진정이었음. 위원회는 3,658건의 서신과 조언을 통해 진정 내용에 해당하는 당국에 연락, 1,787건은 가자지구로, 1,871건은 서안지구로 보내짐.

- (2) 인권침해 모니터링, 진정 접수 및 기록 관리. 인권침해 패턴 분석.
- (3) 안보 및 법안 강화 트레이닝과 인권 교육 및 공공인식 활동 인권 존중 향상
- (4) 진정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 당국에 대한 적절한 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안, 팔레스타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당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권보호 추구
- (5) 보고서 출판

① 월간 Monthly<sup>213)</sup>

인권침해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내용은 팔레스타인 (특히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중심) 내의 돌연사나, 고문 외 비인도적인 처우, 구금, 평화시위에 대한 공격, 실종, 사형 선고 등의 사실 정보를 통계로 공개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실림.

② 연간 Annual<sup>214)</sup>

연간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의 정세 및 이스라엘 측의 인권침해 상황, 각 인권 분야 및 취약계층에 따른 조사 및 진정 내용과 권고사항, 연간 예산 내역 등을 포함.

③ 그 외에도 법률 (Legal), 진정 & 구금시설 (Complaints & Detention centers), 특별 (Special), 서류/기타 (Papers)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들이 출판되나, 월간보고서나 연간보고서에 비해 규칙적이지는 않은 편.

213) <http://www.ichr.ps/en/2/5/1684/Augest-2016-Report-of-Human-Rights-Violations-Augest-2016-Report-of-Human-Rights-Violation.htm> (검색일 2016.10.05.)

214) <http://www.ichr.ps/en/2/6/1209/ICHR-19th-Annual-Report-ICHR-19th-Annual-Report--Executive-Summery.htm> (검색일 2016.10.7.)

바) 특이사항

인권위 예산은 자치정부로부터 일부 받고 나머지는 외부 기관의 후원을 받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215)</sup>

2005년 유보사항을 전제로 한 A등급. 2009년 3월과 2015년 11월의 심사에서 A 등급 유지.

### 8) 카타르

카타르 국가 정보 <sup>216)</sup>	
면적	11,521km <sup>2</sup>
인구	242만 명('15)
수도	도하(Doha)
정치형태	국왕중심제(세습군주제)
민족	아랍계(40%), 인도계(18%), 파키스탄계(18%), 이란계(10%), 기타(14%)
주요언어	아랍어, 영어도 통용
주요종교	이슬람교(대부분이 수니파)
GDP	GDP : 1,853억불('15)
	1인당 GDP : 76,576 불('15)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NHRC)
- (2) 설립연도<sup>217)</sup>: 2002년 11월
- (3) 설립배경<sup>218)</sup>: 사회 변화에 따라 카타르 정부는 법치주의, 인권, 자유, 그리고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음. 2010년에 카타르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가인권 기구에 관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sup>219)</sup>에 부합할 수 있도록

21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23)

216)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1/1\\_23150.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1/1_23150.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8.25.)

217) <http://www.nhrc-qa.org/en/about-nhrc/who-we-are/> (검색일: 2016.8.30.)

218) <http://www.nhrc-qa.org/en/about-nhrc/who-we-are/> (검색일: 2016.8.30.)

219) 파리원칙(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는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 기구가 갖추어야할 의무와 권한 등이 제시되어 있음. 자세한 원칙의 내용은 다음의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재정비하였음.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법령 제38호(Decree Law No.(38) for the year 200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위 법령에서는 상설 위원회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도하에 본부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220)</sup> 2009년 3월 ICC의 승인소위(SCA)는 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특히 파리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sup>221)</sup> 이에 따라 카타르 정부는 위원회의 역할, 권한 및 독립성을 구체화한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를 제정하였음.<sup>222)</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독립적인 예산을 가진 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 혹은 시민사회 단체가 아닌 특별한 성격을 가진 국가 공식 위원회이며 행정 조직 혹은 의사결정조직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분야의 자문기구인 동시에 개인과 단체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을 조사하는 역할을 함.<sup>223)</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sup>224)</sup>

(1) 조직 구성<sup>225)</sup>(인원 및 조직도 등)

---

링크 참조: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StatusOfNationalInstitutions.aspx> (검색일: 2016.8.30.)

220) <http://www.nhrc-qa.org/en/decree-law-no-38-of-2002-on-the-setting-up-of-the-national-human-rights-committee/> (검색일: 2016.8.30.)

221)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REPORT%20MARCH%202010%20-%20FINAL%20\(with%20annexes\).pdf](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REPORT%20MARCH%202010%20-%20FINAL%20(with%20annexes).pdf) (검색일: 2016.8.30.)

222) <http://www.nhrc-qa.org/en/about-nhrc/who-we-are/> (검색일: 2016.8.30.)

223) <http://www.nhrc-qa.org/en/about-nhrc/vision-and-mission/> (검색일: 2016.8.31.)

224) <http://www.nhrc-qa.org/en/decree-law-no-17-of-2010-on-the-organization-of-the-national-human-rights-committee-nhrc/> (검색일: 2016.8.30.)

225) <http://www.nhrc-qa.org/en/about-nhrc/organizational-chart/> (검색일: 2016.8.30.)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인권 전문가 7인 이상과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노동부(Ministry of Labour)·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가족문제최고위원회(The Supreme Council for Family Affairs)에서 한명씩 선출·임명한 대표로 구성됨. 시민사회 인권 전문가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됨.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부위원회 혹은 TF(task force)를 구성할 수 있음. 위원회는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과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을 갖고 있으며 구성원의 역할과 보상은 위원장이 정한다. 사무국은 행정 및 재무팀(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airs Department), 프로그램 및 교육팀(Programs and Education Department), 법률팀(Legal Affairs Department), 국제협력팀(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으로 구성됨.

(2) 지역사무소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2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본부는 도하에 위치함. 동 조항에 근거하여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카타르는 도하에 위치한 본부만 운영 중임.

(3) 예산<sup>226)</sup>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1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예산을 보장받음. 동법 17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재원은 정부의 지원금(Appropriation allocated by the state), 보조금, 기부금, 양여금(grants), 국가기관의 유증(bequests)임.

---

226) 공식홈페이지, 연간보고서 등에서 구체적인 연간 예산이 따로 발표되어 있지 않음.



출처: 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카타르-그림 9] 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227)</sup>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위원은 경험이 많은 인권옹호가들이 선정하는 7인 이상의 시민사회를 대

227) <http://www.nhrc-qa.org/en/decre-law-no-17-of-2010-on-the-organization-of-the-national-human-rights-committee-nhrc/> (검색일: 2016.8.30.)

표하는 인권 전문가 7인과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노동부(Ministry of Labour)·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가족문제최고위원회(The Supreme Council for Family Affairs)에서 각각 1명씩 선출·임명한 대표들로 이루어짐. 정부 대표들은 투표권을 갖지 않음. 모든 위원은 에메리 법령(Emiri Decree)에 근거하여 임명됨. 위원은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6조<sup>228)</sup>에서 규정하는 자격에 부합해야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229)</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230)</sup>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제14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사법부 앞에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다른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7조에 근거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의 면책특권은 같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231)</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4조에 근거하여 인권관련 활동에 대하여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 받음. 동법 16조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시 투표권을 따로 부여하지 않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를 회의에 초대할 수

228) 위원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함 1) 카타르 국적 2) 21세 이상 3) 올바른 품행과 좋은 평판을 가짐 4)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 5) 인권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http://www.nhrc-qa.org/en/decree-law-no-17-of-2010-on-the-organization-of-the-national-human-rights-committee-nhrc/> (검색일: 2016.8.30.)

229) 해당 정보 찾을 수 없음

230) 위원의 면책특권은 같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31) [http://www.nhrc-qa.org/wp-content/uploads/2014/01/en\\_2014-NHRC-report\\_finals2.pdf](http://www.nhrc-qa.org/wp-content/uploads/2014/01/en_2014-NHRC-report_finals2.pdf) (검색일: 2016.8.30.)

있음.

위원회는 2010년 법령 제17호(Decree Law No.(17) for the year of 2010) 3조에 근거한 인권 현황 모니터링, 인권 의식 개선 활동, 정책 제안 및 입법 자문, 교육, 국제교류 등 국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함. 활동의 일환으로 동법 1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함. 3개월 마다 혹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회의는 시민사회대표 위원 과반수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출석으로 개최함. 회의에서는 다수결에 의해 권고안을 결정함. 위원회는 6개월마다 혹은 요청이나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위원회에 활동 내용 및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카타르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구 및 모니터링 하며, 관련 정부 부처에 인권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정책 제안을 함. 또한 국내 인권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권의식 개선활동, 각종 교육 및 연구 활동<sup>232)</sup> 및 국내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관련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인식을 증진시키고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의 인권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법률적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sup>233)</sup>

####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제출함. 이러한 인권현황 모니터링을 토대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인권분야를 선정하여 지원 대책을 관련 담당자와 협의함.

(나) 인권침해 피해자는 팩스, 전화, 이메일, 직접 접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음.<sup>234)</sup> 위원회는 접수되는 인권침해 불만 사례 혹은 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 사례를 조사하며 관련 담당자와 협력하여 정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함.

(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도소(penal institution), 교정 시설

232) <http://www.nhrc-qa.org/en/about-nhrc/vision-and-mission/> (검색일: 2016.8.31.)

233) <http://www.nhrc-qa.org/en/about-nhrc/vision-and-mission/> (검색일: 2016.8.31.)

234) <http://www.nhrc-qa.org/en/submit-a-complaint/> (검색일: 2016.8.31.)

(correctional institution), 수용소(detention centers), 노동집회(labor gatherings), 의료 및 교육 기관 등에 현장 방문하여 시설의 인권 현황을 직접 모니터링 함.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입법 자문 활동

(가)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검토하며 정부가 국내 인권 현황을 인식하고 세계인권선언문에 나타나있는 권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함.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 권고사항을 정리 및 발표함. 또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 최고위원회 등 정책 결정 및 이행 집단에 속해있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인권 관련 사항들을 논의함.

(나) 인권위원회는 카타르가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각종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관련 담당 기관에게 정책 제안을 함. 국내법과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며 정책의 수정 및 법의 개정을 권고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함.

(3)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 문화 확산

(가) 위원회는 카타르 과학교육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단(Qatar Found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community development)과 협력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또한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본부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나) 위원회는 국내에서 국제회의, 국제 인권 보호 체계 및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관련한 훈련 과정(training courses),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다) 위원회는 잡지와 소개책자(introductory booklet)를 자체적으로 발간하며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출판물 및 캠페인을 통해 국내 인권 현황에 대한 인권 인식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지속함.

(4)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에 중점으로 두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함.
- (나) 위원회에 접수되는 인권 침해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의 사례이며 건설 현장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 접수가 총 불만 접수 건수의 48%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환경 및 사법접근권의 개선을 위해 내무부, 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함. 위원회는 아랍어와 영어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권고함.
- (다) 2004년 카타르 헌법은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권리와 의무에 있어 평등해야함을 강조함. 카타르에서 여성 권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위원회는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역할을 함. 위원회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관련 정부 기관에 권고사항 전달을 통해 저조한 카타르 여성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라) 위원회는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 아동 폭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이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마)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들의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인권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5)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정책 제안

- (가) 커뮤니티 사무소(community offices)를 설치하여 국내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함. 2015년 국내에 있는 인도인, 네팔인, 필리핀인, 이집트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무소를 본부에 설치하였으며 사무소를 통해 공동체·정부·대사관·시민사회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인권 현황 개선을 하고자 함. 추후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하여 더 많은 공동체와 소통하고자 함.

- (나) 위원회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 또한 두 단체가 카타르를 방문하는 것을 도우며 관련 정부 담당자와의 회의 일정을 조율해 줌.

(6)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 촉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가) 국내 인권 현황과 당사국인 국제인권규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함.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이행 촉구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카타르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을 촉구함. 2014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카타르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과 강제실종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에 가입할 것을 권고함.
- (나) 인권 및 자유와 관련한 국가·지역·국제기구와 협력함.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 UPR참여, 위원회 참여 등 유엔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도하며 다른 국가의 인권 기구와 소통하며 아시아 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아랍 인권 기구 네트워크(The Arab Network for Human Rights Institutions) 등의 다양한 기구들과의 협력함.<sup>235)</sup>

바) 특이사항

카타르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사회 인권전문가 7인 이상을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권전문가 출신 위원 중에서 선출됨

---

235) <http://www.nhrc-qa.org/en/international-cooperation/regional-and-international-partnerships/> (검색일: 2016.8.31.)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6년 10월 B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9년 3월에 A 등급이 되었으며 2010년 3월<sup>236)</sup>, 2010년 10월, 2015년 11월에도 A등급을 유지함.<sup>237)</sup>

9) 동티모르

동티모르 국가 정보 <sup>238)</sup>	
면적	14,874km <sup>2</sup>
인구	약 120만 명 (2015년)
수도	Dili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주요언어	포르투갈, 테툼어(현지어)
주요종교	가톨릭(91%), 개신교, 이슬람교 등
GDP	GDP : 55.96억불 (2013년)
	1인당 GDP : 4,742불 (2013년)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인권과 정의를 위한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이하 ‘국가옴부즈맨사무소’) (Office of the Ombudsma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포르투갈어 Provedoria dos Direitos Humanos e Justiça (PDHJ))
- (2) 설립연도: 옴부즈맨사무소는 동티모르 헌법에 따라 2002년 5월 설립. 이는 동티모르의 독립과 더불어 국내의 강력한 인권보호 의지를 상징. 2006년 3월 옴부즈맨사무소는 정식으로 대중들에게 문을 열어 서비스 제공 시작<sup>239)</sup>.
- (3) 설립배경: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에 독립. 같은 해에 제정된 헌법은 필요한 국가기관의 설립에 대한 법적 기관으로 작용하였는데 2002년의 헌

236) 승인소위는 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되 현재의 A등급은 유지하기로 결정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REPORT%20MARCH%202010%20-%20FINAL%20\(with%20annexes\).pdf](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REPORT%20MARCH%202010%20-%20FINAL%20(with%20annexes).pdf) (검색일: 2016.8.28.)

237)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24.)

238)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7.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7.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9.6.)

239) <http://pdhj.tl/about/history/?lang=en> (검색일 2016.9.28.)

법의 “기본권, 의무, 자유와 보장”에 대한 장을 통해 옴부즈맨사무소가 형성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동티모르 헌법 제 27조, 150조, 151조

헌법 제 27조에는 옴부즈맨사무소는 부당함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에 따라 공공기구들에 대한 국민들의 진정을 조사 및 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국민들에게 있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임을 명시, 그리고 옴부즈맨위원장의 임기와 행정기관의 활동 협조 의무 등을 다루고 있음<sup>240</sup>). 헌법 제 150조와 151조는 옴부즈맨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헌법 및 사법적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sup>241</sup>).

---

240) [http://timor-leste.gov.tl/wp-content/uploads/2010/03/Constitution\\_RDTL\\_ENG.pdf](http://timor-leste.gov.tl/wp-content/uploads/2010/03/Constitution_RDTL_ENG.pdf)  
(검색일 2016.9.6.)

동티모르 헌법 Section 27

241) [http://timor-leste.gov.tl/wp-content/uploads/2010/03/Constitution\\_RDTL\\_ENG.pdf](http://timor-leste.gov.tl/wp-content/uploads/2010/03/Constitution_RDTL_ENG.pdf)  
(검색일 2016.9.6.)

동티모르 헌법 제 150, 151조

Section 150 (Abstract review of constitutionality)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may be requested by:

위헌선언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a)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동티모르 대통령

b) The Speaker of the National Parliament;

국가 의회의 의장

c) The Prosecutor-General, based on the refusal by the courts, in three concrete cases, to apply a statute deemed unconstitutional;

검찰총장 (후략)

d) The Prime Minister;

총리

e) One fifth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Parliament;

의회의 1/5에 해당하는 의원들

f) The Ombudsman.

옴부즈맨위원장

Section 151 (Unconstitutionality by omission) 누락에 의한 헌법 위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Prosecutor-General and the Ombudsman may request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by omission

- (나) 인권과 정의를 위한 옴부즈맨사무소 헌장 (이하 ‘국가옴부즈맨사무소 법’) THE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OMBUDSMA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2004년 5월 26일): ‘법 No. 7/2004’로도 불리는 옴부즈맨사무소의 핵심적인 법.
- (다) 인권과 정의를 위한 옴부즈맨사무소 법령 25/2011 (Decree Law 25/2011 Organiz Structure of the Office of the Provedor for Human Rights and Justice)<sup>242</sup>): 인권과 정의를 위한 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Organic Law of The Office of the Provedor for Human Rights and Justice)으로도 통하며, 사무소 내의 세부적인 기관들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한 법령. (이하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제 9조<sup>243</sup>)에 따르면 옴부즈맨사무소는 옴부즈맨 위원장, 옴부즈맨 부위원장, 수석보좌관, 기술적 및 행정적 필요에 따른 그 외의 관계자 및 직원들로 구성됨.

국가옴부즈맨사무소 내의 부서들<sup>244</sup>)은 다음과 같음:

- ① 공공지원부서 (Directorate of Public Assistance): 대중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점적인 부서로, 진정을 접수 받고 절차를 밟는 역할.
- ② 인권부서 (Directorate of Human Rights): 권한 내에서 인권 관련 사례 관리, 모니터링, 홍보, 교육 등을 담당.

---

of any legislative measures deemed necessary to enabl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동티모르 대통령, 검찰총장과 옴부즈맨위원장은 대법원에 누락에 대한 헌법 위반을 검토하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 개정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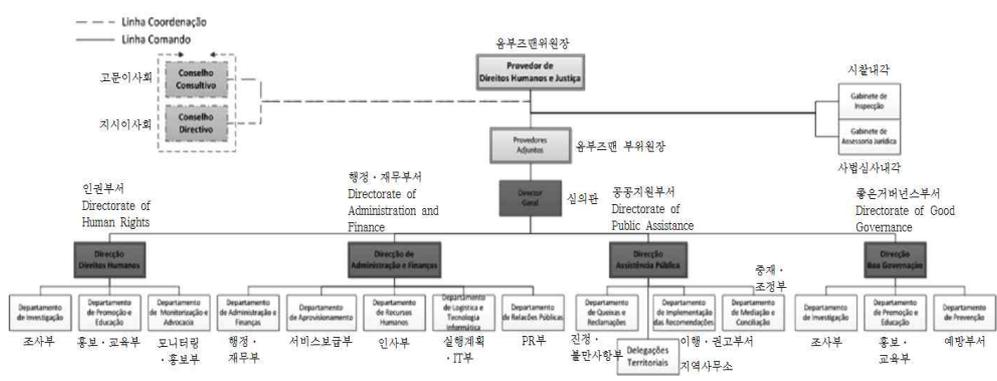
242) <http://pdhj.tl/wp-content/uploads/2013/11/Decree-Law-25-2011-Organic-PDHJe.pdf> (검색일 2016.9.28.)

243)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44) <http://pdhj.tl/about/organisational-structure/?lang=en> (검색일 2016.9.28.)

- ③ 좋은 거버넌스 부서 (Directorate of Good Governance):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잘못된 행정 관습이나 공공 행동의 합법성 등의 이슈 관리
- ④ 행정 및 재무부서 (Directorate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옴부즈맨사무소의 효과적인 업무 이행을 위한 예산 관리, 인사, PR, 실행 계획, 조달 서비스 등을 담당.

또한, 동티모르 국가옴부즈맨사무소 내에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을 근거로 기술적 및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 및 정의 사무국 (Secretariat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이하 '사무국') 및 사무국장 (Secretary for Human Rights and Justice)의 역할이 형성됨. 사무국 내에는 법적 자문 및 사무국장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돕는 법률자문사무소 (Legal Counsel Office), 사무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사무소 (Inspector's Office),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 아카이브를 담당하고 사무국의 자료를 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도서관 (library) 등의 부서 역시 존재 함<sup>245)</sup>.



출처: <http://pdhj.tl/wp-content/uploads/2013/11/Organigram-current.png>

[동티모르-그림 10] 동티모르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245) <http://pdhj.tl/wp-content/uploads/2013/11/Decree-Law-25-2011-Organic-PDHJe.pdf> Art. 12, 13, 14. (검색일 2016.10.10.)

(2) 지역사무소<sup>246)</sup>

옴부즈맨사무소는 동티모르 내에 4개의 지역사무소를 구축, 이를 통해 사무소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역할 수행 가능. 지역사무소의 역할은 사무국의 역할을 지역단위에서 이행하는 일을 돕고 동티모르 내에서 모두에게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sup>247)</sup>.

- ① Baucau 지역사무소: Baucau 외에도 Lautem, Manatuto, 그리고 Viqueque 지역 담당
  - ② Oecusse 지역사무소
  - ③ Same 지역사무소: Manufahi, Ainaro, 그리고 Cova Lima 지역 담당
  - ④ Maliana 지역사무소: Bobonaro, Ermera, 그리고 Liquica 지역 담당
- Dili(동티모르 수도)와 Ailieu 지역은 Dili 사무소가 담당.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248)</sup>

옴부즈맨사무소는 활동을 위한 연간 예산을 법에 따라 충분히 지원받고, 이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함. 옴부즈맨사무소는 기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타협하는 상황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는 안 됨. 예산의 규모는 86만4,000 달러(한화 10억1,952만 원)임<sup>249)</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위원장

의회는 옴부즈맨위원장 임명 관련 공표가 난 시점으로부터, 혹은 옴부즈맨의 자리가 공석이 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간 후보자를 모집. 의회는 현역 의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옴부즈맨위원장을 선출. 의회는 총회에서 모든 후보자들을 고려하고, 각 후보자들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야 함<sup>250)</sup>. 옴부즈맨위원장으로 선출되려면 ① 인권침해, 부정부패, 불법

246) <http://pdhj.tl/about/organisational-structure/?lang=en> (검색일 2016.9.28.)

247) <http://pdhj.tl/wp-content/uploads/2013/11/Decree-Law-25-2011-Organic-PDHJe.pdf> Article 15 (검색일 2016.10.10.)

248)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Article. 11

249) <http://pdhj.tl/pdhj-budget-2008-2011/>  
홈페이지에서는 2008-2011년의 예산만 제공하고 있음

적 영향력 행사, 행정적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 ② 증명된 청렴성, ③ 인권, 좋은 거버넌스, 행정의 원리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속해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sup>251)</sup>.

(나) 부위원장

옴부즈맨위원장은 2명 이상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음. 옴부즈맨 부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정직성과 독립성, 공정성과 자격 등을 갖춘 자가 고려되어야 함<sup>252)</sup>.

현재<sup>253)</sup> 옴부즈맨 위원장은 Dr Silverio Pinto Baptista, 부위원장은 두 사람으로, Jesuina Maria Ferreira Gomes (좋은 거버넌스 담당 부위원장 Deputy Provedor for Good Governance)와 Horacio de Almeida (인권업무 담당 부위원장 Deputy Provedor for Human Rights Affairs).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254)</sup>(장관급 등)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제 28조<sup>255)</sup>에 명시되어있는 옴부즈맨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

(가) 진정 접수

(나) 권한 내에서의 수사 및 조사

(다) 동법 제 37조 3항에 따라 신청된 진정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

(라) 조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때 해당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을 소환하도록 명령하거나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250)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Art. 12

251)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52)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53) <http://pdhj.tl/about/meet-the-ombudsman-and-deputies/?lang=en>  
(검색일 2016.9.28.)

254)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55)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의 면담

- (마) 진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기관, 서류, 도구, 정보 조사에 대한 접근권 및 개인 심문권
  - (바) 구금센터 방문, 내부 상황 시찰 및 구금되어 있는 개인과의 기밀 인터뷰 시행
  - (사) 진정을 다른 관할기관이나 의뢰 메커니즘에 회부
  - (아)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 (arbitration tribunal) 혹은 행정심리위원회 (administrative enquiry commission) 출두
  - (자) 진정 당사자들 간의 중재자 혹은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후략)
  - (차) 진정에 대한, 해결책과 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권고사항 전달
  - (카) 관할권 내에서 인권 존중과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의견, 제안, 권고 등의 자문 제공
  - (타) 조사나 권고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 (가) 옴부즈맨위원장<sup>256)</sup>

옴부즈맨위원장에게는 4년간의 임기가 주어지고, 1번의 재임 가능. 옴부즈맨위원장은 첫 임기가 종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두 번째 임기 신청에 대해 의회의 의장에게 알려야 함.

옴부즈맨위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료됨:

    - ① 임기 만료
    - ② 사망
    - ③ 사임
    - ④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⑤ 형사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
    - ⑥ 형사상에서 징역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유죄 선고
    - ⑦ 의회 투표로 결정된 면직
  - (나) 옴부즈맨 부위원장<sup>257)</sup>

256)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Art. 19

257)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부위원장은 4년간의 임기를 지니고, 재임 가능. 옴부즈맨 부위원장의 임기는 옴부즈맨위원장의 임기에 따라 함께 종료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옴부즈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급의 권리, 명예, 우선권, 보수와 특권을 누림. 옴부즈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들의 성실한 직무 이행에 따른 제반의 행동이나 주시, 표명된 의견에 대해 민사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sup>258)</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인권침해 조사

(가) 조사 (Investigation)<sup>259)260)261)262)</sup>

옴부즈맨위원장에게는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 자유권, 권력 남용, 부당한 행정, 불법행위, 분명한 부당행위, 정당한 법 절차의 부재 등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고, 지연주의, 결탁, 불법적인 연줄 이용과 부정부패 등을 조사하기도 함. 옴부즈맨사무소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

---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le 16 Deputy Ombudsmen

제 16조 부위원장 (일부)

3. The Deputy Ombudsmen shall be appointed for a renewable four (4) years period.

부위원장은 4년간의 임기를 지니고, 재임이 가능하다.

4. The term of office of the Deputy Ombudsmen shall cease with the end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Ombudsma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under Article 19.5.

옴부즈맨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 법 제 19조 5항에 따라 옴부즈맨위원장의 임기와 더불어 종료된다.

258)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59)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60)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61)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62)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는 사례나 동티모르 정부와 타국의 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교섭과 관련된 사례, 혹은 사면이나 감형과 관련된 사례인 경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음.

조사는 관계 측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함. 조사 과정은 정보 요청, 시찰, 검토, 요청 등 개인 및 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반의 절차들로 이루어짐. 이 때 공무원, 행정직원, 민간이나 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옴부즈맨위원장에게 협조, 요구되는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야 함.

(나) 진정 (Complaint)<sup>263)264)</sup>

개인 및 법인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인권의 침해 및 위반에 대해 옴부즈맨사무소에 진정을 신청 가능. 진정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출되고, 진정인의 신원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진정 신청은 무료.

옴부즈맨 위원장은 진정접수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진정 접수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30일 안에 접수된 진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 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진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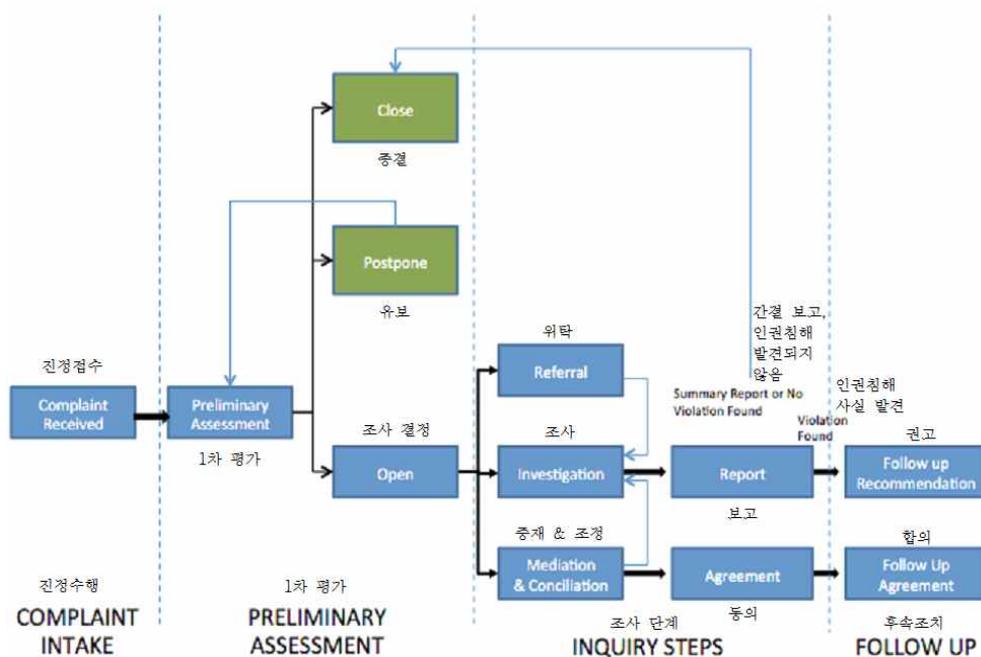
옴부즈맨위원장은 진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는 ① 진정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진정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사실무근이거나, 명백하게 경솔하거나 번거로운 경우, ③ 법이나 기존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정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이 존재하는 경우. (단, 진정인이 해당 방안을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④ 진정 내용이 옴부즈맨위원장의 권한 아래 있지 않은 경우 ⑤ 진정 내용이 현행법이 효력을 발위하기 전의 관련 행동과 연관이 있을 때 ⑥ 진정이 현행법에 기재된 기간 후에 신청되었을 때 ⑦ 진정 시기가 사건 시기로부터 확연하게 지연되었을 때 ⑧ 진정을 통해 주장된 손해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시정 되었을 때 ⑨ 내용상 비

263)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Art. 36

264)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슷하거나 동일한 진정이 이미 다루어졌거나, 옴부즈맨사무소를 통해 다루지는 중에 있는 경우 ⑩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됨. 옴부즈맨위원장은 진정접수일을 기준으로 45일 안에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진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림.

(다) 중재와 조정 과정(Mediation/Conciliation)은 관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 단계는 합의 단계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혹은 이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도 함. 조사 과정(Investigation)의 경우 보고 및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권고내용이 결정되고 해당하는 기관에게 전달됨. 모든 과정과 후속조치까지 완료되고 나면 해당 사건 종결. 2012년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진정의 수는 총 116건<sup>265)</sup>.



[동티모르-그림 11] 진정 신청 절차

265) <http://pdhj.tl/media-publications/other-reports/?lang=en> (검색일 2016.9.28.)

(2) 인권 모니터링<sup>266)</sup>

옴부즈맨위원장은 모니터링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님:

- (가) 정부, 정부 관련 기관 공기업과 사기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함한 기관들의 역할 이행을 감독하고, 조직적이고 널리 행해지는 인권 침해, 부당한 행정 및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나) 정부, 의회 외 제반 기구들에 인권 옹호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자문,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 제공
- (다) 동티모르 헌법 제 150조와 151조에 따라 대법원에 사법적 사항들의 위헌성 공표를 요청
- (라) 규제, 행정지시, 정책 및 실행방침, 법률 초안 등을 국제법 및 비준한 인권조약들로부터의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토
- (마) 새로운 법률 채택, 시행중에 있는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채택·개정 권고

(3) 인권 증진과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sup>267)</sup>

옴부즈맨 위원장은 주어진 권한 아래에서 인권증진과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이행:

- (가) 성명서 발표, 정보제공 캠페인 등의 적절한 방법들을 통해 대중과 공공기관 내에서 인권 존중, 좋은 거버넌스, 부정부패 척결 등의 문화 증진 및 정보 전파.
- (나)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조약 내용 이행 모니터링, 조약에 대한 유보 등 권고
- (다) 국제인권조약으로부터의 골자 내에서 정부의 보고 의무에 대한 자문 제공
- (라) 동티모르가 유엔기구 및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기여
- (마)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 표명

---

266)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67)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Art. 25

(4) 부정부패 척결<sup>268)</sup>

옴부즈맨 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님:

- (가) 관계자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나 공공재 유용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 조사 내용 관련 보고서들을 검찰총장(Prosecutor-General)에게 전달
- (나) 인프라, 조달 및 공공사업분야 등 공공행정에 있어 그 책임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 이는 시민 의견 반영,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전략, 그 외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보장 및 증진함을 통해 이루어짐.
- (다) 전략적 연간 계획 이행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 이행 및 원칙, (특정)행동에 대한 법적 권리 등을 알려주는 인식캠페인 증진

(5) 지위 남용(peddling) 척결<sup>269)</sup>

옴부즈맨 위원장은 지위 남용 척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님:

- (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관계 내에서의 행정 행동이나 절차의 적법성 조사
- (나) 공공업무계약과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계약, 자산이나 보상금 지불 조달 및 처리, 물품 및 서비스 수입이나 수출, 신용과 채무 면제 승인이나 거절 등에 대한 상을 통한 적법성 및 행정행동 정정 모니터링
- (다)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적법성 존중을 향상하기 위해 의회와 정부에 입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를 제안. 특히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관례를 호의적으로 보거나 용이하게 하는 요소 제거에 집중.

바) 특이사항

동티모르는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옴부즈맨사무소라는 이름을 가진 인권기구임.

또한 부정부패척결이 이 기구의 중요한 역할로 명시되어 있음.

---

268)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269) <http://mj.gov.tl/jornal/lawsTL/RDTL-Law/RDTL-Laws/Law-2004-7.pdf>  
(검색일 2016.9.6.)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8년 4월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13년 11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70)</sup>

## 나. 유럽

### 10) 알바니아

알바니아 국가 정보 <sup>271)</sup>	
면적	28,748km <sup>2</sup>
인구	약 320만명
수도	티라나
정치형태	의회민주제(대통령제 가미)
민족	알바니아계(95%), 그리스계(3%), 기타(2%)
주요언어	알바니아어(*11, CIA Factbook)
주요종교	이슬람교(70%), 동방정교(20%), 가톨릭(10%)
GDP	GDP : 130억불(*14, EIU)
	1인당 GDP : 4,659불(*13, IBRD)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알바니아 시민옹호자/옴부즈맨

(People's Advocate/Ombudsman)<sup>272)</sup>

(2) 설립연도: 1998년

(3) 설립배경: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 후, 약 십년 간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국내적 및 국제사회의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 그 결과 1998년 국내외 전문가의 기여로 탄생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헌법에 옴부즈맨 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알바니아 국회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옴부즈맨 법(Ombudsman laws)을 참고하여 만든 시민옹호자법(Law No.8454,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을 이듬해인 1999년에 통과시킴.<sup>273)</sup>

270)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271)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77.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77.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10. 6)

272)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www.avokatipopullit.gov.al/> (검색일 2016. 10. 6)

273) <http://www.avokatipopullit.gov.al/en/history-0> (검색일 2016. 10. 6)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알바니아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lbania)<sup>274)</sup>

알바니아 헌법은 제5장에서 알바니아 시민옹호자에 관해 다루고 있음. 헌법은 알바니아 시민옹호자가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실패 행위나 불법(unlawful) 및 부당한(improper) 행위들로부터 시민의 권리, 자유, 합법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음.<sup>275)</sup> 이 외에도, 시민옹호자(advocate)의 지위, 의무, 임명, 및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음.

(나) 시민옹호자법(Law No.8454,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sup>276)</sup>

시민옹호자법은 기관(institution)설립에 관한 근거법으로서, 해당 조직의 규칙 도입 및 시민옹호자의 역할을 명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sup>277)</sup> 40개의 조(40 articles)로 이루어진 본 법의 주요 내용은 시민옹호자의 의무(duties), 선출(election), 진정 조사 절차(investigative procedures) 및 권한(powers) 등이 있음.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헌법에 의해 활동에 있어 독립적인 위치를 보장받는 독립기구임.<sup>278)</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가) 인원 및 부서

---

274) 알바니아 헌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osce.org/albania/41888?download=true> (검색일 2016. 10. 6)

275)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lbania, chapter VI “People’s Advocate”, art. 60(1) (알바니아 헌법, 제 5장 “시민옹호자” 60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276) 시민옹호자 법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avokatipopullit.gov.al/en/ligji-p%C3%ABr-avokatin-e-popullit-0> (검색일 2016. 10. 6)

277)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 1 “Objection of the Law” (시민옹호자법, 제 1장 “일반규정” 1조 “법의 목적”): 해당 조 직접인용.

278)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lbania, chapter VI “People’s Advocate”, art. 60(2) (알바니아 헌법, 제 5장 “시민옹호자” 60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사무소는 한 명의 시민옹호자/옴부즈맨 아래 다섯 개의 전문 분과(sections)로 나뉘며, 각 분과의 책임자는 위원(Commissioner)임. 다섯 개의 분과는 아래와 같음. 이 밖에도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시민옹호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각 분과 내에 특별 분과를 설치할 수 있음.<sup>279)</sup>

- ① 중앙정부,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 3자에 관한 분과 (Section for central administration boies, local government and third parties acting on their behalf)
- ② 경찰, 첩보기관, 교도소, 군대 및 사법부에 관한 분과(Section for police, secret service, prisons, armed forces and judiciary)
- ③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Mechanism for Prevention of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④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분과(Sec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 ⑤ 일반 분과(General section)

(2) 지역사무소

시민옹호자 사무소는 필요와 정부예산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역단위로 구성. 수도인 티라나(Tirana)에 중앙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슈코더르(Shkodër), 피어(Fier), 베라트(Berat), 사란더(Sarandë), 드롭풀(Dropull), 쿠커스(Kukës), 포그라데츠(Pogradec)에 총 7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sup>280)</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281)</sup>

헌법에 의하면,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독립된 예산을 가짐.<sup>282)</sup> 시민옹호

279)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V "Commissioners, Office and Budget", art. 31 (시민옹호자법, 제 5장 "위원, 사무소, 및 예산" 31조): 해당 조 직접 인용.

280) <http://www.avokatipopullit.gov.al/en/zyrat-rajonale-0> (검색일 2016. 10. 6)

281)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82)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lbania, chapter VI "People's Advocate", art. 60(3) (알바니아 헌법, 제 5장 "시민옹호자" 60조 3항): The People's Advocate has his own budget, which he administers himself. He proposes the budget pursuant to law (시민옹호자는 독립된 예산을 가지며, 이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다. 시민옹호자는

자는 알바니아 예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법(law on budget management system)을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는 국회의 승인을 거침.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 and audit)을 따라 매년 회계장부(accounts)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민옹호자의 재무기록(financial records)은 국가관리실(High State Control)<sup>283</sup>의 감사대상임.<sup>284</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시민옹호자(People's Advocate/Ombudsman)

① 자격요건: 아래 제시된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민옹호자로 선출될 수 있음.<sup>285</sup>

- 알바니아 시민권자 일 것
- 인권, 자유, 법 분야에 대한 두드러진 활동 및 이해도를 지닐 것
- 특출한 전문적 기량(professional skills)이나 도덕 및 윤리 자질(moral-ethical qualities)을 지닐 것
- 형사법 상 유죄판결(convicted criminally)을 받지 않은 자일 것
- 시민옹호자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국회의 구성원이 아닐 것

② 선출방법: 시민옹호자의 선출은 국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회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채택하고 있음.<sup>286</sup>

---

법을 준수하여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다.)

283) 국가관리실(High State Control)에 관한 설명은 헌법 제 16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알바니아의 경제 및 재무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임.

284)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V "Commissioners, Office and Budget", art. 36 "People's Advocate Budget" (시민옹호자법, 제 5장 "위원, 사무소, 및 예산" 36조 "시민옹호자 예산"): 해당 조 직접인용.

285)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 3 "Requirements for Election of the People's Advocate" (시민옹호자법, 제 1장 "일반규정" 3조 "시민옹호자 자격요건"): 해당 조 직접인용.

286)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 "Election, Removal, and Right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4 "Election of the People's Advocate" (시민옹호자법, 제 2장 "시민옹호자의 선출, 해임 및 권리" 4조 "시민옹호자 선출"): The People's Advocate shall be elected by three-fifths of all the members of the Assembly. Before taking up or resuming the duty People's Advocate takes an oath before the Assem

③ 겸직금지: 시민옹호자는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없음.

- 정당(political parties)의 정당원으로 활동
- 정치, 정부, 및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활동
- 사회적, 경제적, 상업적 기관의 간부(steering bodies)로서의 활동
- 시민옹호자는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교육 활동 및 집필활동을 할 수 있음

(나) 위원(Commissioner)

① 자격요건: 알바니아 시민권자이며, 아래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sup>287)</sup>

- 법 관련 고등교육을 마치거나, 이학 석사학위(Master of Science)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위를 가진 자
-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진 자
- 형사법 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일 것
- 정당원이거나, 하원(MPs), 장관 및 차관이 아닐 것

② 선출방법: 시민옹호자는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투표하여 선출함.<sup>288)</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가) 시민옹호자(People's Advocate/Ombudsman)는 고등법원 판사(High Court judge)와 동등한 면책 특권을 누리며, 보수는 고등 법원장(High Court Chairman)에 준함.<sup>289)</sup>

---

bly. The oath is formulated like: "I swear that while carrying out my duty I will always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people with no any differenti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Albania".(시민옹호자는 의회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시민옹호자는 취임 전, 국회 앞에 취임선서를 해야하며, 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알바니아의 법률을 준수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287)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V "Commissioners, Office and Budget", art. 33 "Conditions for being elected commissioner and their salary"(1) (시민옹호자법, 제 5장 "위원, 사무소, 및 예산" 33조 "위원 선출 자격요건 및 보수"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288) 위원 선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옹호자법(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33/1조 2항부터 9항에 걸쳐 명시되어 있음.

289)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 "Election, Removal, and Rights of

- (나) 위원(Commissioner)의 보수는 시민옹호자 보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정함.<sup>290)</sup>
- (다) 이 외 시민옹호자 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은 알바니아 공무원(Civil Service) 지위를 지님.<sup>291)</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292)</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 (가) 시민옹호자(People's Advocate/Ombudsman)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재임 가능.<sup>293)</sup>
  - (나)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한 번에 한 해 가능.<sup>294)</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295)</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 (1) 진정(complaints) 조사(Investigation)
  - (가) 진정 접수: 누구든지(개인, 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 그의 권리, 자유 및 합법적인 이익이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unlawful and improper actions) 및 공공행정의 실패행위(failures to act by the organ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에 의해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서를 제

---

the People's Advocate", art. 6 "Immunities and Salary" (시민옹호자법, 제 2장 "시민옹호자의 선출, 해임 및 권리" 6조 "면책 및 보수"): 해당 조 직접인용.

290)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V "Commissioners, Office and Budget", art. 33 "Conditions for being elected commissioner and their salary"(3) (시민옹호자법, 제 5장 "위원, 사무소, 및 예산" 33조 "위원 선출 자격요건 및 보수"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291)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V "Commissioners, Office and Budget", art. 35 "Organization and the personnel of the People's Advocate Office" (시민옹호자법, 제 5장 "위원, 사무소, 및 예산" 35조 "시민옹호자 사무소의 조직 및 직원"): 해당 조 직접인용.

292)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93)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 "Election, Removal, and Right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5 "Term in Office" (시민옹호자법, 제 2장 "시민옹호자의 선출, 해임 및 권리" 5조 "임기"): 해당 조 직접인용.

294)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V "Commissioners, Office and Budget", art. 33/1 "Election of Commissioners"(1) (시민옹호자법, 제 5장 "위원, 사무소, 및 예산" 33/1조 "위원 선출 자격요건 및 보수" 1항 "위원 선출"): 해당 항 직접인용.

295)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출하거나 시민옹호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음. 시민옹호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시 비밀을 유지해야 함.<sup>296)</sup>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옹호자 사무소에 접수된 진정(complaints), 탄원(petitions), 신고현황(notifications)는 총 4203개이며, 이 중 시민옹호자의 기능 하에 속하는 내용은 총 2735건임.<sup>297)</sup>

(나) 조사 절차: 시민옹호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조사를 진행함.<sup>298)</sup>

- 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현장 조사는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의 부지에 대한 출입권한과 조사에 관계된 모든 문서(papers) 및 법령(acts)에 대한 검토(examination)을 포함함.
- ②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에 해명을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증을 획득함.
- ③ 조사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문(interrogate)할 수 있으며, 면책(immunity)없이 이들을 시민옹호자 사무소로 소환할 수 있음.
- ④ 시민옹호자는 조사를 위해 전문가에 자문을 구성하거나 요청할 수 있으며, 위에 제시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시한(deadline)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조사 권한

- ①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국가기밀(state secrets)로 분류된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이 경우에 시민옹호자는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sup>299)</sup>

---

296)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I "Complaints,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ower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12 "The Right to Complain" (시민옹호자법, 제 3장 "진정, 조사절차 및 시민옹호자의 권한" 12조 "진정을 제출할 권리"): 해당 조 직접인용.

297)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p159.

298)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I "Complaints,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ower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19 "Investigative Procedures" (시민옹호자법, 제 3장 "진정, 조사절차 및 시민옹호자의 권한" 19조 "조사 절차"): 해당 조 직접인용.

② 시민옹호자는 다음에 제시된 대상 및 법령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을 지니지 않음.<sup>300)</sup>

- 알바니아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 총리(The Prime Minister)
- 법규 및 타 법령(Statutes and other legal acts)
- 군령(Military orders to the Armed Forces)

(라) 조사 결과

① 시민옹호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sup>301)</sup>

- 진정 투서인에게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음을 설명.
- 권리 침해를 발생시킨 행정 당국(administrative organ)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 제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이에 대한 기관의 대응이 시민옹호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부적절 및 불법적인 행위와 조사절차를 중단(suspend)하도록 함.
-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킨 기관을 감독하는 상위 권위(authority)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 제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부적절 및 불법 행위와 조사 절차는 유예됨.
- 형사상의 범죄가 확인된 경우 및 조사 중지 및 유예된 사건의 경우, 검사(public prosecutor)에게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recommend)할 수 있음.
-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견된 경우, 국회를 포함한 상위 권위(authority)

---

299)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I "Complaints,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ower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20 "Investigative Procedures" (시민옹호자법, 제 3장 "진정, 조사절차 및 시민옹호자의 권한" 19조 "조사 절차"): 해당 조 직접인용.

300)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I "Complaints,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ower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25 "Persons and Act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Advocate" (시민옹호자법, 제 3장 "진정, 조사절차 및 시민옹호자의 권한" 25조 "시민옹호자의 관할 밖의 대상 및 법령"): 해당 조 직접인용.

301)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I "Complaints,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ower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21 "Actions and Powers after Conclusion of Investigation" (시민옹호자법, 제 3장 "진정, 조사절차 및 시민옹호자의 권한" 21조 "조사 결과 후 조치 및 권한"): 해당 조 직접인용.

- 에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박탈(dismiss)을 제안.
- 사법부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민옹호자는 사법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할청(competent authorities)에 위반사항에 대해 알림.
  -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법적인 소송으로 가져갈 것을 권고(recommend).
- ② 해당공무원 및 기관이 시민옹호자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 시민옹호자는 관할청(competent authority)에 징계(disciplinary measures)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거나 직무 및 공무 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sup>302)</sup>
- ③ 시민옹호자는 법의 적용(application of a statute or other legal act)이 아닌 법규나 법령(statute or other legal act)의 내용 자체가 헌법 및 타 법에 의해 인정받는 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음.
- 법 제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 법규(the statute)에 대한 개정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에 내부규칙(bylaws)을 개정하거나 개선할 것을 제안. 시민옹호자의 제안을 30일 이내에 검토하지 않는 것은 권리 및 자유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the sublegal acts)에 대한 잠정적인 중단(suspension)을 가져옴.
  -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에 해당 법령(acts)의 무효화(invalidate)를 제안
- ④ 2015년 한 해 동안 총 81개의 기관이 시민옹호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실천하였으며<sup>303)</sup>, 권고사항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기관은 37개<sup>304)</sup>,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거부를 표명한 기관은 26개로 집계됨.<sup>305)</sup>

302)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II "Complaints,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owers of the People's Advocate", art. 22/1 "Sactions for non-cooperation with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법, 제 3장 "진정, 조사절차 및 시민옹호자의 권한" 22/1조 "시민옹호자에 대한 비협조 사항에 관한 제재"): 해당 조 직접인용.

303)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부록 1, p166-168.

304)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부록 2, p169.

2015년 실시된 법규 및 법령의 개정사항은 총 17건 임.<sup>306)</sup>

- (3) 인권 증진 활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옹호자 사무소는 2015년 다음의 활동을 수행함.
- (가) 인권관련 교육활동으로 총 9건의 현장학습(study visits)과 연수(training)을 기획하여 수행함.<sup>307)</sup>
  - (나) 인권관련 보고서 작성: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연간보고서 외에도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2015년 한 해 동안에 총 10건의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sup>308)</sup>
  - (다) 각종 매체 활동: 시민옹호자의 텔레비전 방송 출연을 포함하여, 각종 미디어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 관련 문제를 대중에게 공개하였으며, 잡지에 인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 이슈들에 관해 총 12건의 기고를 함.<sup>309)</sup>
- (4) 국제 활동 사항: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현재(2015년 기준) 다음의 9개의 지역 및 국제기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음.<sup>310)</sup>
- (가) 국제옴부즈맨기구(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2000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나) 유럽옴부즈맨기구(European Ombudsman Institute, EOI): 2000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305)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부록 3, p170.

306)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부록 4, p171-173.

307)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부록 5, p174.

308) 각각의 보고서에 관한 요약은 “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5”의 96쪽부터 99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309) 미디어 활동 내역 및 기고문의 요약은 “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5”의 104쪽부터 105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310)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p145-146.

- (다) 불어권옴부즈맨및중재자협회(Association of Francophone Ombudsmen and Mediators, AOMF): 2000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라) 미국옴부즈맨협회(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USOA): 2006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마) 국제옴부즈맨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 IOA): 2007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바) 지중해옴부즈맨협회(Association of Mediterranean Ombudsmen, AMO): 2009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 of National Institutions of Human Rights): 2004년 처음 심사에서 A등급을 획득한 이후, 2008년, 2014에서도 A 등급 유지.
- (아) 유럽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NHRI): 2014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자) 유럽아동옴부즈맨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men for Children, ENOC): 2015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5) 국회 및 다른 기구에 대한 의무

(가) 국회에 대한 의무

- ① 시민옹호자는 사무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대통령 및 총리에 제출됨.<sup>311)</sup>
- ② 연간보고서 외에도 시민옹호자의 직권에 의해서나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Assembly), 혹은 대리(a group of deputies)의 서면 요청에 있을 경우 시민옹호자의 권리 내에 있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러한 이슈들은 주로 헌법 및 법적인 권리 침해와 관련이 있음.<sup>312)</sup>

311)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V "Relations with the Assembly,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t. 26 "Report to the Assembly"(시민옹호자법, 제 4장 "국회, 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의 관계" 26조 "국회에 대한 보고"): 해당 조 직접인용.

312)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V "Relations with the Assembly,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t. 27 "Special Reports to the Assembly"(시민옹호자법, 제 4장 "국회, 타 정부기관 및 비

(나) 기타 보고서에 대한 의무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알바니아 정부에 의해 비준된 알바니아 인권과 자유문제에 관련된 국제기구 내 협약(conventions)의 실천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기여하며, 해당 보고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함. 더불어 시민옹호자는 인권 및 자유의 보호가 헌법 및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기관 내의 실천사항 및 교육과정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함.<sup>313)</sup>

(다)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알바니아 시민옹호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organisations)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며, 알바니아 내 인권상황에 관한 비정부기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해야 함. 또한 비 정부기관과 함께 인권 및 자유 상황에 대한 국가적 활동(a national activity)을 최소 일 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함.<sup>314)</sup>

바) 특이사항

시민옹호자의 역할 중 하나로 국가고문방지기구(National Mechanism for Prevention of Torture, NMPT)로서의 역할이 있음

국가고문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은 2003년 발의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에 관한 법(Law No. 9094)에 명시되어 있으며, 2008년 개정된 법(Law No. 9888, dated 10.03.2008)에 의해 시민옹호자 내부의 조직으로 개편됨.<sup>315)</sup> 국가고문방지기구로서 시민옹호자는 2015년

---

정부기관과의 관계” 27조 “국회에 대한 특별 보고”): 해당 조 직접인용.

313)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V “Relations with the Assembly,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t. 29 “Preparation of reports on human rights”(시민옹호자법, 제 4장 “국회, 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의 관계” 29조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준비”): 해당 조 직접인용.

314) The Law on the people’s Advocate, Chapter IV “Relations with the Assembly,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t. 30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시민옹호자법, 제 4장 “국회, 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의 관계” 30조 “비정부기관과의 협업”): 해당 조 직접인용.

315)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

총 130건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함. 이 중 83건은 승인된 사찰(inspection)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었고, 47건은 재조사(re-inspection)가 진행된 방문임.<sup>316)</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알바니아 시민옹호자(People's Advocate/Ombudsman)는 2014년 GANHRI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317)</sup>

### 11)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국가 정보 <sup>318)</sup>	
면적	56,594km <sup>2</sup>
인구	약 429만명
수도	자그레브
정치형태	대통령 직선하의 의원내각제
민족	크로아티아인(89.5%), 세르비아인(4.5%), 기타(6%)
주요언어	크로아티아어
주요종교	카톨릭(87.8%), 동방정교(4.4%), 회교(1%), 기타(6.5%)
GDP	GDP : 572억불('15, EIU)
	1인당 GDP : 21,696불('15, EIU)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크로아티아 옴부즈맨(The Ombudsman of Republic of Croatia)<sup>319)</sup>
- (2) 설립연도: 1990년
- (3) 설립배경: 옴부즈맨 시스템은 1990년 크로아티아 헌법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크로아티아 정치 및 사법체계에 소개됨.<sup>320)</sup> 옴부즈맨은 크로아티아 헌법 및 기타 법(laws)에 명시된 인권 및 자유와 크로아티아 정부가 비준(ratify)한 인권 및 자유에 관한 국제법(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을

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p22.

316) 알바니아 시민옹호자, 『Annual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People's Advocate(시민옹호자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2016년 2월, p24.

317)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10. 6)

318)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90.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90.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10. 4)

319)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ombudsman.hr/en/> (검색일 2016. 10. 4)

320) <http://ombudsman.hr/en/about-us/history> (검색일 2016. 10. 4)

증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sup>321)</sup>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크로아티아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sup>322)</sup>: 1990년 제정된 크로아티아 헌법은 제93조에 옴부즈맨의 역할, 선출 및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나) 옴부즈맨 법(Law on the Ombudsman)<sup>323)</sup>: 옴부즈맨 법은 옴부즈맨의 조직구성, 업무, 선출 및 해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헌법에 옴부즈맨의 역할, 선출 및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임. 옴부즈맨은 국회의 위원(Commissioner)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옴부즈맨 및 옴부즈맨 사무소는 독립(independent)적인 위치를 보장받음.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크로아티아 옴부즈맨은 한 명의 옴부즈맨과 세 명의 부옴부즈맨(Deputies)으로 구성됨.<sup>324)</sup>

(2) 지역사무소

중앙사무소는 수도인 자그레브(Zagreb)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 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를 각각 리예카(Rijeka), 오시예크(Osijek), 스플리트(Split)에 두고 있음.<sup>325)</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326)</sup>

32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 art. 93(1) (크로아티아 헌법, 제 93조 1항): 해당 조 직접인용.

322) 크로아티아 헌법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sabor.hr/fgs.axd?id=17074> (검색일 2016. 10. 4)

323) 옴부즈맨 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vsrh.hr/CustomPages/Static/HRV/Files/Legislation\\_Law-Ombudsman.pdf](http://www.vsrh.hr/CustomPages/Static/HRV/Files/Legislation_Law-Ombudsman.pdf) (검색일 2016. 10. 4)

324) Law on Ombudsma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 3(2) (옴부즈맨법, 제1장 “일반규정”, 3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조직도 등에 대한 해당정보는 찾을 수 없음

325) 공식홈페이지 참조.

옴부즈맨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크로아티아 국가 예산(State budget of the Republic of Croatia)으로부터 지급.<sup>327)</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Deputies)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sup>328)</sup>

- ① 크로아티아 시민권자 일 것
- ② 최소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험이 있는, 법학 학위 소지자 일 것
- ③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권보호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자 일 것

(나) 옴부즈맨은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Sabor of the Republic of Croatia)에 의해 선출 및 해임되며<sup>329)</sup>, 부옴부즈맨(Deputies)는 국회가 옴부즈맨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함.<sup>330)</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옴부즈맨은 국회의 위원(commissioner)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sup>331)</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332)</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은 8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임 가능함.<sup>333)</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

326)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327) Law on Ombudsman, Chapter V “The Transitional and Concluding Provisions”, art. 21 (옴부즈맨법, 제 5장 “경과 및 종결규정” 21조): 해당 조 직접인용.

328) Law on Ombudsman, Chapter IV “The Election and Dismissal of the Ombudsman”, art. 16 (옴부즈맨법, 제 4장 “옴부즈맨의 선출 및 해임” 16조): 해당 조 직접인용.

329) Law on Ombudsma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 3(1) (옴부즈맨법, 제1장 “일반규정”, 3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30) Law on Ombudsma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 3(3) (옴부즈맨법, 제1장 “일반규정”, 3조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33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 art. 93(1) (크로아티아 헌법, 제 93조 1항): 해당 조 직접인용.

332)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옴부즈맨의 주요 권한 및 활동은 마) 참조

333) Law on Ombudsma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 3(4) (옴부즈맨법, 제1장 “일반규정”, 3조 4항): 해당 항 직접인용.

옴부즈맨은 크로아티아 국회의원과 동일한 면책특권을 지님.<sup>334)</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진정 조사 활동:

진정(grievance) 접수 및 조사(investigation): 크로아티아 옴부즈맨은 정부(state authorities), 공권력을 지닌 기관(bodies with public authority), 공무원(officials)에 의해 시민권(civil rights) 시민권이 침해당한 경우들에 대한 개별 조사를 진행함.<sup>335)</sup>

(가) 진정 신고: 헌법 및 기타 법에 명시된 시민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injury)의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옴부즈맨에 진정(grievance)을 낼 권리가 있으며<sup>336)</sup>, 진정신고는 무상으로 진행.<sup>337)</sup>

(나) 조사: 옴부즈맨은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크로아티아의 모든 정보(data and information)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sup>338)</sup>, 정부(state authorities), 공권력을 지닌 기관(bodies with public authority), 공무원(officials)은 옴부즈맨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지님.<sup>339)</sup> 옴부즈맨은 언제든지 교정시설(correctional institutions) 및 자유의 박탈이 있는 타 기관에 대한 사찰(inspection)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설 내 모든 구역에 대한 접근권을 지님.<sup>340)</sup>

(다) 조사결과: 옴부즈맨은 경고(warn), 통지(inform), 제안(suggest), 및 권고(give recommendations)를 할 수 있으며,<sup>341)</sup> 해당기관은 30일 이내

334)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 art. 93(5) (크로아티아 헌법, 제 93조 5항): 해당 조 직접인용.

335) Law on Ombudsman, Chapter II “Jurisdiction and Manner of Work”, art. 5 (옴부즈맨법, 제2장 “관할 및 업무방식”, 5조): 해당 조 직접인용.

336) Law on Ombudsman, Chapter III “Procedural Provisions”, art. 12(2) (옴부즈맨법, 제3장 “절차 규정”, 12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37) Law on Ombudsman, Chapter III “Procedural Provisions”, art. 13 (옴부즈맨법, 제3장 “절차 규정”, 13조): 해당 항 직접인용.

338) Law on Ombudsman, Chapter II “Jurisdiction and Manner of Work”, art. 11(1) (옴부즈맨법, 제2장 “관할 및 업무방식”, 11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39) Law on Ombudsman, Chapter II “Jurisdiction and Manner of Work”, art. 11(2) (옴부즈맨법, 제2장 “관할 및 업무방식”, 11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40) Law on Ombudsman, Chapter III “Procedural Provisions”, art. 15(1) (옴부즈맨법, 제3장 “절차 규정”, 15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옴부즈맨에게 경고, 제안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함.<sup>342)</sup>

(라) 진정 조사활동 현황: 옴부즈맨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3,892건의 진정 사례에 대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594건이 접수된 진정 및 옴부즈맨의 직권조사에 의해 이루어 짐. 주요 분야는 사법(justice), 공무원 행정(civil service),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가 있음.<sup>343)</sup>

(2) 대외 활동

(가) 미디어 활동: 크로아티아 옴부즈맨은 옴부즈맨 활동에 관해 총 22차례에 걸쳐 기고하였으며, 공식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이 사항이 업데이트 됨. 시민과의 소통 증가를 위해 트위터(Twitter) 및 비미오(Vimeo) 등의 소셜 미디어 창을 개설.<sup>344)</sup>

(나) 교육활동: 비차별법(Anti-Discrimination Act)에 관한 공무원 교육 등 특정 그룹에 대한 교육활동 진행.<sup>345)</sup>

(3) 국제활동: 크로아티아 옴부즈맨은 국제 컨퍼런스 참석과 유럽인종차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등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이행.<sup>346)</sup>

(4) 국회에 대한 의무: 옴부즈맨은 매년 활동사항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sup>347)</sup>

---

341) Law on Ombudsman, Chapter II “Jurisdiction and Manner of Work”, art. 7(1) (옴부즈맨법, 제2장 “관할 및 업무방식”, 7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42) Law on Ombudsman, Chapter II “Jurisdiction and Manner of Work”, art. 7(3) (옴부즈맨법, 제2장 “관할 및 업무방식”, 7조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343) 크로아티아 옴부즈맨, 『2014년 옴부즈맨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of the Ombudsman for 2014)』, 2015, p3-5.

344) 크로아티아 옴부즈맨, 『2014년 옴부즈맨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of the Ombudsman for 2014)』, 2015, p32.

345) 크로아티아 옴부즈맨, 『2014년 옴부즈맨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of the Ombudsman for 2014)』, 2015, p33.

346) 크로아티아 옴부즈맨, 『2014년 옴부즈맨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of the Ombudsman for 2014)』, 2015, p32.

347) Law on Ombudsman, Chapter II “Jurisdiction and Manner of Work”, art. 8 (옴부즈맨법, 제2장 “관할 및 업무방식”, 8조): 해당 조 직접인용.

바) 특이사항

2014년 크로아티아 옴부즈맨은 인권 및 비차별(Anti-Discrimination) 분야의 법령 초안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참여한 법령은 총 15건에 달함.<sup>348)</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크로아티아 옴부즈맨은 GANHRI 심사에서 2008년에 A등급을 받은 후, 2013년에도 A등급 유지.<sup>349)</sup>

12) 라트비아

라트비아 국가 정보 <sup>350)</sup>	
면적	64,589km <sup>2</sup>
인구	약 210만 명
수도	리가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민족	라트비아인(61.1%), 러시아인(26.2%) 등
주요언어	라트비아어(공식어), 러시아어(33.8%) (*11, CIA Factbook)
주요종교	루터교, 카톨릭교, 러시아정교
GDP	GDP : 319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16,037불(*14, World Bank)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라트비아 옴부즈맨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Latvia) <sup>351)</sup>
- (2) 설립연도: 2007년
- (3) 설립배경: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지배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번복해가며 1940년 스탈린에 의해 소련공화국에 강제 합병됨. 1991년 독립을 하게 되며, 1992년 라트비아의 위원회 (Supreme Council)는 소비에트 연방국으로부터 라트비아 시민의 인권을

348) 크로아티아 옴부즈맨, 『2014년 옴부즈맨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of the Ombudsman for 2014)』, 2015, p31.

349)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10. 4)

350)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4.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4.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10. 14)

351)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음. <http://www.tiesibsargs.lv/en> (검색일 2016.10.17.)

되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함.<sup>352)</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옴부즈맨법(Ombudsman Law, 2006)<sup>353)</sup>: 옴부즈맨법은 옴부즈맨의 역할, 선출, 권한 및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옴부즈맨법에 근거한 독립 국가기구임. 옴부즈맨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오로지 법(law)의 지배(governed)만 받음. 누구도 옴부즈맨의 임무 및 기능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이 법으로 보장됨.<sup>354)</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라트비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한 명의 옴부즈맨(Ombudsman) 아래 각 6개 부서(division)의 책임자와 사무국 부국장(Deputy Head of office and chancellery)이 별도로 있으며, 총 39명의 직원으로 구성됨.<sup>355)</sup>

(나) 옴부즈맨 사무소는 다음의 주요부서와 부속 부서(assisting divisions)로 구성됨.<sup>356)</sup>

① 시민 및 정치적 권리 부(Divis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주요

---

352) [http://www.ohchr.org/EN/Issues/Truth/Documents/Latvia\\_english.pdf](http://www.ohchr.org/EN/Issues/Truth/Documents/Latvia_english.pdf)  
(검색일 2016.10.17.)

353) 옴부즈맨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가능, <http://www.tiesibsargs.lv/en/civil-acts/tiesibsarga-likums> (검색일 2016. 10. 14)

354)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4 “Independence and Immunity of the Ombudsman” (1)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4조 “옴부즈맨의 독립성 및 면책”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55)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ahUKEwi-8v3SxuHPAhXHw1QKHfMWAwcQFggIMAI&url=http%3A%2F%2Fadsdata.base.ohchr.org%2FIssueLibrary%2FOffice%2520of%2520the%2520Ombudsman%2520-%2520Latvia.pdf&usg=AFQjCNH\\_ZOpdcFCt3wSftF0nFarf8BIUMg&sig2=w26gSVG\\_GMWmZKxQZuf\\_Aw](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ahUKEwi-8v3SxuHPAhXHw1QKHfMWAwcQFggIMAI&url=http%3A%2F%2Fadsdata.base.ohchr.org%2FIssueLibrary%2FOffice%2520of%2520the%2520Ombudsman%2520-%2520Latvia.pdf&usg=AFQjCNH_ZOpdcFCt3wSftF0nFarf8BIUMg&sig2=w26gSVG_GMWmZKxQZuf_Aw) (검색일 2016. 10. 14)

356) <http://www.tiesibsargs.lv/en/about-us/tiesibsarga-birojs/darbibas-jomas>  
(검색일 2016. 10. 14)

부서

- ②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부(Division of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Rights): 주요부서
- ③ 아동권리부(Divis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주요부서
- ④ 평등부(Division of Equality before Law): 주요부서
- ⑤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협력 부(Division of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주요부서
- ⑥ 행정부(The Administrative Division): 부속부서
- ⑦ 공문서부(The Chancery): 부속부서

(2) 지역사무소

옴부즈맨 사무소는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Riga)에 위치하고 있음.<sup>357)</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옴부즈맨의 예산은 국가예산(State Budget)에서 지급됨.<sup>358)</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은 국회의원 최소 다섯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회(Saeima)에 의해 선출됨.<sup>359)</sup>

(나) 옴부즈맨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sup>360)</sup>

- ① 라트비아 시민권자로서, 최소 30세 이상일 것
- ②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을 수료하였으며, 법 집행(law enforcement)관련 경험이 있을 것
- ③ 법 요건에 충족하여, 공공기밀(official secret)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④ 이중국적자는 옴부즈맨으로 선출될 수 없음

357) <http://www.tiesibsargs.lv/en/kontaktinformacija> (검색일 2016. 10. 14) 지역사무소에 관하여는 해당정보 없음

358) 예산 규모에 관하여는 해당정보 없음

359)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5 “Approval of the Ombudsman in Office” (1) (옴부즈맨법, 제2장 “옴부즈맨” 5조 “옴부즈맨의 임명”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0)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5 “Approval of the Ombudsman in Office” (2) (옴부즈맨법, 제2장 “옴부즈맨” 5조 “옴부즈맨의 임명”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 옴부즈맨 지위는 따로 명시되지 않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 (가) 옴부즈맨은 법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권한(rights)을 지님.
- ① 조사(행정법, 절차규정, 서한), 해명 및 다른 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해당 기관에 무상으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음.<sup>361)</sup>
  - ② 조사(verification procedure)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 할 수 있음.<sup>362)</sup>
  - ③ 특별한 허가 없이 언제든지 구금 시설(closed-type institutions)을 방문할 수 있으며, 기관의 모든 구역(territory)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고, 기관의 모든 부지(premises)를 방문할 수 있으며, 구금시설에 억류된 사람을 비공식적(in private) 으로 만날 수 있음.<sup>363)</sup>
  - ④ 아동이 원할 경우 부모(parents), 보호자(guardians), 교육, 아동보호, 교정 시설의 고용인 없이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sup>364)</sup>
  - ⑤ 직권조사(own initiative)를 실시할 수 있음.<sup>365)</sup>
  - ⑥ 전문가(specialists)의 견해를 구할 수 있음.<sup>366)</sup>
  - ⑦ 옴부즈맨이 결정한 시한 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disputable act)를 자행한 기관이 문제점(deficiencies)을 개선(rectify)하지 않으면 옴부즈맨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submit an application) 할 수 있음.<sup>367)</sup>

---

361)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1)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2)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2)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3)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3)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4)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4)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4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5)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6)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6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6)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7)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7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7)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3 “Rights of the Ombudsman”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취임선서(oath/solemn vow)를 한 날로 부터 5년이  
며<sup>368)</sup>, 재임 가능함.<sup>369)</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옴부즈맨 사무소는 정당에 흡수되지 않으며<sup>370)</sup>, 옴부즈맨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조치(administrative sanction)은 국회(Saeima)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만 가능.<sup>371)</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옴부즈맨은 법에 의해 다음의 기능(functions)을 지님.

(가) 옴부즈맨은 개인의 인권을 증진 및 보호.<sup>372)</sup>

(나) 평등한 대우(equal treatment) 규칙의 준수(compliance)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방지(prevent).<sup>373)</sup>

(다) 정부가 좋은 행정부(good administration)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 지 평  
가 및 이를 증진.<sup>374)</sup>

---

(8)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3조 “옴부즈맨의 권한” 8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8)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7 “Term of Office of the  
Ombudsman” (1)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7조 “옴부즈맨의 임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69)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7 “Term of Office of the  
Ombudsman” (2)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7조 “옴부즈맨의 임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0)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4 “Independence and Immunity  
of the Ombudsman” (2)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4조 “옴부즈맨의 독립성 및  
면책”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1)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4 “Independence and Immunity  
of the Ombudsman” (3)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4조 “옴부즈맨의 독립성 및  
면책”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2)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1 “Functions of the  
Ombudsman” (1)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1조 “옴부즈맨의 기능”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3)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1 “Functions of the  
Ombudsman” (2)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1조 “옴부즈맨의 기능”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4)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1 “Functions of the  
Ombudsman” (3)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1조 “옴부즈맨의 기능”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 (라) 인권 감시와 좋은 행정부 규칙과 관계있는 이슈들이 법 제정 (legislation)이나 실천(application)에 있어 부족함(deficiencies)이 없는 지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rectification)하기 위한 활동<sup>375)</sup>
- (마) 인권, 인권수호기관(the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옴부즈맨 활동에 관한 대중의 이해 및 인식을 증진<sup>376)</sup>

(2) 진정 수렴 및 조사(verification procedures)

- (가) 진정 신고: 누구나 옴부즈맨 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음
- (나) 진정 조사: 접수된 진정은 옴부즈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 (다) 진정 조사의 완료(completion) 및 종료(termination): 조사가 완료되면 옴부즈맨은 다음의 행동을 취함.
  - ① 쌍방(parties)이 타협(conciliation)에 실패할 경우, 옴부즈맨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담은 견해(opinion)를 제공할 수 있음.<sup>377)</sup>
  - ② 옴부즈맨의 견해는 권리 침해의 교정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와 필요할 경우 다른 권고사항을 모두 포함함.<sup>378)</sup>
  - ③ 조사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옴부즈맨은 조사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sup>379)</sup>

375)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1 “Functions of the Ombudsman” (4)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1조 “옴부즈맨의 기능” 4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6) Ombudsman Law, Chapter II “Ombudsman”, sec. 11 “Functions of the Ombudsman” (5)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11조 “옴부즈맨의 기능” 5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7) Ombudsman Law, Chapter IV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of Submission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sec. 25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a Verification Procedure” (2) (옴부즈맨법, 제 4장 “진정 검토절차 및 조사” 25조 “조사의 완료 및 종료”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8) Ombudsman Law, Chapter IV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of Submission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sec. 25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a Verification Procedure” (3) (옴부즈맨법, 제 4장 “진정 검토절차 및 조사” 25조 “조사의 완료 및 종료” 3항): 해당 항 직접인용

379) Ombudsman Law, Chapter IV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of Submission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sec. 25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a Verification

- (3) 아동권리부(Divis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활동  
 2015년 라트비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총 890건의 아동의 권리 관련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110건은 고아(orphans) 및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많은 수의 진정을 기록. 이와 관련하여 옴부즈맨 사무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8건의 조사(verification procedures)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두 건은 직권조사(own initiative)에 의해, 나머지 16건은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실시.<sup>380)</sup>
- (4) 시민 및 정치적 권리 부(Divis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는 다음의 주제들에 관해 활동.
- (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 확인(Ensuring Right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sup>381)</sup>
  - (나) 구금시설에 구류된 사람들의 권리 보호(Protection of Persons' Rights in Places of Imprisonment)<sup>382)</sup>
  -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Fair Trial)<sup>383)</sup>
  - (라) 사생활, 가정 및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불가침(Inviolability of Private Life, Home and Correspondence)<sup>384)</sup>
  - (마)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sup>385)</sup>
  - (바) 인신매매관련 모니터링(Observation of Human Trafficking)<sup>386)</sup>
- (5)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부(Division of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Rights)의 주요 활동 분야는 아래와 같음.
- (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Social Security)<sup>387)</sup>

---

Procedure” (5) (옴부즈맨법, 제 4장 “진정 검토절차 및 조사” 25조 “조사의 완료 및 종료” 5항): 해당 항 직접인용

380)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10-11.

381)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51-60.

382)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62-78.

383)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81-93.

384)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97-103.

385)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106-114.

386)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131.

387)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135-141.

(나) 장애인의 권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up>388)</sup>

(다)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 등

(6) 대외 활동

옴부즈맨 사무소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이를 위해 다양한 유인물의 활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제별 소책자(booklet)를 발간하고 있음.<sup>389)</sup>

(7) 국제활동

옴부즈맨은 국제수준 및 유럽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2015년 두 건의 보고서를 각각 UN 국가별 인권사항 정기검토(U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United Nations)에 제출한 사항이 있으며, 주요 협력기관으로는 유럽아동옴부즈맨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ENOC),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유럽연합기본권기구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Equality Bodies), 국제옴부즈맨기구(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등이 있음.<sup>390)</sup>

바) 특이사항: 없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라트비아 옴부즈맨(Ombudsman of the Republic of Latvia)은 2015년 GANHRI심사에서 A등급 획득.<sup>391)</sup>

---

388)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143-161.

389) 옴부즈맨 사무소에서 발간한 유인물 및 소책자의 관한 정보는 연간보고서 243쪽부터 253쪽에서 확인 할 수 있음.

390) 라트비아 옴부즈맨, 『2015년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5)』, 2016, p-258.

391)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10. 14)

### 13) 러시아

러시아 국가 정보 <sup>392)</sup>	
면적	1,708만km <sup>2</sup>
인구	약 1억 4,247만명
수도	모스크바
정치형태	대통령제
민족	러시아인(77.7%), 타타르족(3.7%), 우크라이나인(1.4%) 등
주요언어	러시아어
주요종교	러시아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가톨릭교 등
GDP	GDP : 12,358억불('15, IMF)
	1인당 GDP : 8,447불('15, IMF)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러시아연방 인권위원회 위원장(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 인권위’)이라는 직책(post)명을 인권위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sup>393)</sup>
- (2) 설립연도: 러시아 인권위는 1993년 러시아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sup>394)</sup>.
- (3) 설립배경: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기구 설립 및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과정을 거치게 됨. 1993년 러시아 헌법은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함. 헌법을 바탕으로 러시아 인권위가 1993년에 설립됨.<sup>395)</sup>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위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96년 의회동의 및 1997년 대통령의 승인 이후임.<sup>396)</sup>

####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러시아 헌법: 러시아 헌법(i.e. Article 1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Law No. 1-FKZ as of 26 February 1997 On the Commissioner for

392)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3.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3.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9. 9)

393) 담당 기구(state body)의 명칭은 the Institut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혹은 Institution of High Commissioner on Human로도 불림.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aims\\_and\\_objectives](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aims_and_objectives) (검색일 2016. 10. 13)

394)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history> (검색일 2016. 10. 13)

395) <http://www.varuh-rs.si/index.php?id=696> (검색일 2016. 10. 13)

396) <http://www.varuh-rs.si/index.php?id=696> (검색일 2016. 10. 13)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sup>397)</sup> 제45조는 국가에 의한 시민권 및 인권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에서 러시아 인권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임.<sup>398)</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399)</sup>

(가) 조직

러시아 인권위원장<sup>400)</sup>(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산하에 인권위원회(Council of Commissioners), 전문가위원회(Expert Council), 사무총장/국장(Head of Chancery of the High Commissioners for Human Rights), 고문(Counsellors)이 있음.

(나) 부서

위원장(High Commissioner) 아래 사무총장/국장 (Head of Chancery), 부사무총장/부국장이 있으며 각 부사무총장/부국장 (Deputy Head of Chancery) 아래 부서(Department)들이 있음. 부서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음.

397) 러시아 인권위 근거법에 대한 타임라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regulatory\\_legal\\_acts](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regulatory_legal_acts) (검색일 2016. 10. 13)

398) 그 어떤 정부 기구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기구이며, 국가의 비상사태나 계엄령 선포시에도 국가는 인권위의 권한을 축소 혹은 폐지 할 수 없다 (High Commissioner is independent and not accountable to any state bodies or officials. In case the state of emergency or martial law is declared on the whol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part thereof, it shall not cancel or limit the mandate of the High Commissioner) (출처: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status\\_and\\_authority](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status_and_authority) 검색일 2016. 10. 13) )

399) 조직 구성도 [첨부1]에서 확인할 수 있음.

400) 현재 위원장은 Ms. Tatiana Moskalkova로 법학 및 철학 박사학위를 가진 벨라루스 태생의 여성이며 치안감 (Police Major General) 으로 은퇴를 하였음. 제 5-6회 러시아의회의(2007-2016) 의원을 역임한 2선 국회의원이며. 1999년, 2002년 2005년 헌법 재판소의 위원직을 겸했으며, 유엔인권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러시아 대표를 맡기도 하였음.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biography> (검색일 2016. 10.13)

- 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인권 보호부(Department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riminal Court Proceedings)
- ② 시민권 보호부(Department for Protection of Civil Rights)
- ③ 사회적 권리 보호부(Department for Protection of Social Rights)
- ④ 정치적 권리 보호부 (Department for Protection of Political Rights)
- ⑤ 분석 및 법률부(Analytical and Law Department)
- ⑥ 정보 및 국제협력부(Department for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⑦ 문서관리 및 인사부 (Documentation and Personal Department)
- ⑧ 재무부 (Finance Department)

(2) 지역사무소

러시아 인권위원회는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58개의 지역사무소와 지역위원이 있음.<sup>401)</sup> 모든 지역사무소는 인권위원회(Council of Commissioners)를 통해서 회의를 하며 의사결정을 함. 지역 인권위는 연방 인권위와 협동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교류, 인권에 관한 법률 교육 협력을 하고 있음.



출처: 러시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러시아-그림 12] 러시아 인권위원회 조직도

401) 각 지방 위원회의 대표자 및 연락처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eng.ombudsmanrf.org/russia/ombudsmans> (검색일 2016. 10. 13)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예산의 규모나 독립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2015년 3월 27일에 의회에서 채택된 개정법(the draft federal constitutional law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Constitutional Law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raft federal law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Improve the Work of Human Rights Commissioners)에 의하면 인권위의 활동은 독립된 기구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원됨.<sup>402)</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징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러시아 의회(the State Duma)에서 임명 및 해임을 할 수 있음.<sup>403)</sup> 정확한 절차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현 위원장(Ms. Moskalkova)의 선출에 관한 보도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 러시아 의회(the State Duma)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을 함. 현 위원장의 경우 찬성 323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임명됨. 현 위원장의 경우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이 되었음.<sup>404)</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405)</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406)</sup>

(가) 위원장은 연방과 지방 정부기구, 기업, 단체, 군대, 공익협회(public

---

402) It is provided by the law that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and his or her office in a constituent ent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financed using budget assignments from the constituent entity's budget

[http://eng.ombudsmanrf.org/events/news/news\\_of\\_the\\_commissioner/view/law\\_on\\_human\\_rights\\_commissioner\\_adopted\\_by\\_state\\_duma](http://eng.ombudsmanrf.org/events/news/news_of_the_commissioner/view/law_on_human_rights_commissioner_adopted_by_state_duma) (검색일 2016. 10. 13)

403)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history> (검색일 2016. 10. 13)

404) [http://eng.ombudsmanrf.org/events/news/news\\_of\\_the\\_commissioner/view/tatiana\\_moskalkova\\_elected\\_high\\_commissioner\\_for\\_human\\_rights\\_in\\_the\\_russian\\_federation](http://eng.ombudsmanrf.org/events/news/news_of_the_commissioner/view/tatiana_moskalkova_elected_high_commissioner_for_human_rights_in_the_russian_federation) (검색일 2016. 10. 13)

405) 해당정보 없음. 다만, 위원장의 전임 직이 변호사, 미국대사, 사회보호부 장관, 러시아 UN 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인권위의 위원장은 상당한 고위직임을 유추할 수 있음(Ibid.)

406)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status\\_and\\_authority](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status_and_authority) (검색일 2016.10.13.)

associations)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위원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방문 기관 혹은 면담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공무수행에 방해 없이 방문 혹은 면담을 수락해야함.

(나) 위원장은 위에 언급된 기관들에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들은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기관 등의 행위에 관하여 조사 (investigation)를 할 수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407)</sup>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 가능<sup>408)</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의회의 동의 없이 재임기간 내에 위원장을 법정에 소환할 수 없으며, 구금, 체포, 수색도 불가능함.<sup>409)</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410)</sup>

러시아 인권위는 러시아 내의 시민권 및 인권, 자유의 이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1) 인권침해대응, (2) 인권침해 관련 갈등 중재, (3) 인권 관련 입법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legislative activities), (4) 인권과 관련한 법률 교육 및 정보공유 활동을 하고 있음.

이 4가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러시아 인권위는 국가권력, 지방기구 및 공무원에 의한 시민권 및 인권과 자유가 수호되고 있는지 감시(control), 인권 관련 기구 및 인권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자문(consultation), 러시아 내의 다양한 인권기구들 간의 조직적인 협력을 위한 조정(coordination)의 기능을 하고 있음.<sup>411)</sup>

407) 인권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408) 제3대 위원장인 Vladimir Lukin의 경우 2004-2014년간 5년씩 두 차례 연임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history> (검색일 2016. 10. 13)

409)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status\\_and\\_authority](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status_and_authority)  
(검색일 2016.10.13.)

410)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aims\\_and\\_objectives](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aims_and_objectives)  
(검색일 2016. 10. 13)

411) [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aims\\_and\\_objectives](http://eng.ombudsmanrf.org/ombudsman/content/aims_and_objectives)  
(검색일 2016. 10. 13)

(1) 인권 및 자유 침해 대응활동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38,093건의 청원 중 36,845 건의 진정에 적절한 조취를 취했음.<sup>412)</sup> 업무 시간동안에 항의 및 청원서를 받으며, 위원장이 순회방문을 통해 시베리아, 극동, 남부 연방지역 및 수용소 내부에서 284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항의서를 수렴했음.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인권침해 신고도 가능함.<sup>413)</sup> 인권위에 접수되는 51%의 진정서의 내용은 건강과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에 관한 것이고 36%는 형사절차에서의 불법구금 등의 절차상 부당함을 항의하는 사항임.

(2) 갈등 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 제안

(3)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입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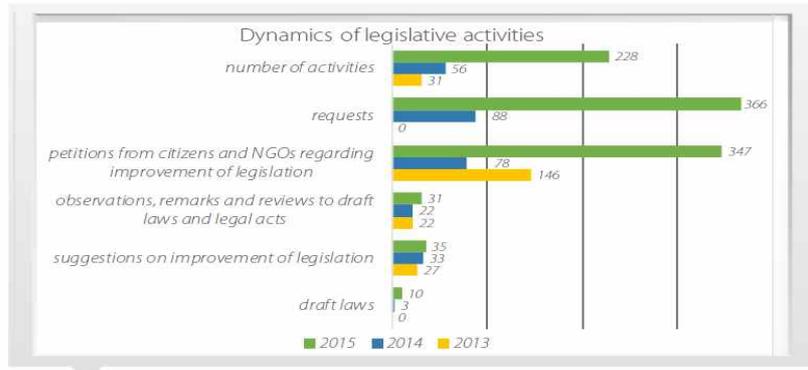
다양한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 이후 탄력을 받아 2015년 입법 활동이 증대가 되었음. 주로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공식적인 준거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 예컨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는 유관기관의 책무성을 유도하는 매커니즘이 부재하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장애인의 권리보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 개정법(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 draft federal law that envisages establishing powers of state executive organ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monitor and control in the field of protection of disabled persons' rights) 도입을 제안하였음. 이를 통해 유관 기관의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책임 기능을 강화함<sup>414)</sup>.

---

412) 러시아 인권위, 『러시아 인권위 2015 보고서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ort 2015)』, 2015, p.166

413) 러시아 인권위, 『러시아 인권위 2015 보고서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ort 2015)』, 2015, p.166

414) 러시아 인권위, 『러시아 인권위 2015 보고서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ort 2015)』, 2015, p.179



[러시아-그림 13] 2013-2015 러시아 인권위의 입법 활동

(4) 인권과 자유에 대한 교육 증진 및 인식개선

러시아에서 낮은 수준의 법률 교육은 개인들이 스스로를 인권침해로부터 방어하는데 큰 장애요소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의 법률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예컨대, 2015년 9월부터 러시아 사회방송국(Social Television of Russia, STR)은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적인 정보를 다룬 ‘인권(Human Rights)’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sup>415)</sup>.

바) 특이사항

인권위에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러시아 인권위원회(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는 GANHRI심사에서 2004 이후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A등급 유지.<sup>416)</sup>

415) 러시아 인권위, 『러시아 인권위 2015 보고서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ort 2015)』, 2015, p.185-186

416)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10. 13)

#### 1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 정보 <sup>417)</sup>	
면적	603,700km <sup>2</sup>
인구	4,443만명
수도	키예프
정치형태	대통령제
민족	우크라이나계(77.8%), 러시아계(17.3%), 기타(4.9%)
주요언어	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 상용)
주요종교	우크라이나정교, 동방전례 가톨릭, 기타
GDP	GDP : 870억불
	1인당 GDP : 7,880불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우크라이나 인권위’)
- (2) 설립연도: 1998년<sup>418)</sup>
- (3) 설립배경: 1988년 폴란드의 성공적인 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후 차례로 동구권 국가에서 옴부즈맨 도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함. 이 흐름에 발맞추어 우크라이나도 인권위를 설립함.<sup>419)</sup>

#####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Law of Ukraine On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sup>420)</sup>: 우크라이나 인권위 설립의 근거법으로서, 우크라이나 인권위의 조직, 위원의 임면, 임기, 권한,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417)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82.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82.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10. 10)

418)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14](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14) (검색일 2016. 10.3)

419)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14](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14) (검색일 2016. 10.3)

420)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10.5.)

(나) 우크라이나 헌법: 우크라이나 헌법 제 55조에 따르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법원에 의해 보호되고, 누구나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무작위에 의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회에 권리의 보호를 진정할 권리를 가짐.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가기구임<sup>421)</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우크라이나 인권위는 휘하에 7개 대표(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er)를 두고 있음.

각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인도적 권리 준수(observance of social, economic and humanitarian rights)를 대표하는 1인, 개인정보 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를 대표하는 1인, 아동 권리 준수와 성평등, 차별금지(observance of the rights of the child, non-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를 대표하는 1인, 홍보와 정보기술(public rel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을 대표하는 1인, 공공정보접근권 준수와 헌법소원 기초(drafting of constitutional appeals and observance of the right to access to public information)를 대표하는 1인, 국내실향민 권리 준수(observance of the right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에 대한 대표인 1인, 사병의 권리 준수(observance of the rights of military men)를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sup>422)</sup>

또한, 사무국(Secretariat of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두며 사무국은 우크라이나 인권위의 행정, 법률과 기타

---

421)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에 관한 법률(Law of Ukraine On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4조에 의거함.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 5)

422) 각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ombudsman.gov.ua/en/page/secretariat/representatives-of-the-commissioner/> (검색일 2016. 10.5)

영역에서 인권위원의 활동을 지원함<sup>423)</sup>

(2) 지역사무소

본부는 수도인 키예프(Kyiv)에 있으며, 8개의 지역사무소(Lviv, Zhytomyr, Dnipropetrovsk, Rivne, Chernivtsi, Kharkiv, Odesa and Ivano-Frankivsk)를 운영하고 있음.<sup>424)</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위의 예산은 우크라이나 국가예산으로부터 배정받고 있음.<sup>425)</sup>

매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심사받아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sup>426)</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5조의 17항에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인권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선임절차에 대하여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Law of Ukraine On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sup>427)</sup>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 인권위원은 언어를 잘 구사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추며 인권보호에 대한 경험이 있고, 지난 5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4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시민이어야 함.

(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패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

423) <http://www.ombudsman.gov.ua/en/page/secretariat/> (검색일 2016. 10.5)

424) <http://www.ombudsman.gov.ua/en/page/secretariat/regionalni-predstavnicztva-upo-vnovazhenogo/regionalni-predstavnitstva.html> (검색일 2016. 10. 7)

425)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 7)

426)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 7)

427)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10.5.)

권위원을 할 수 없음.

(다) 인권위원은 부패 대응과 예방을 위한 원칙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을 따를 사람이어야 함.

(라) 인권위원 후보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의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sup>428)</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은 헌법, 인권위 관련법 및 기타 법에 의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sup>429)</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위원은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sup>430)</sup> 제4장에서 정해진 바에 의하여 제 권한들을 가짐.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의회의 의장, 총리, 대법원장, 대법원과 고등법원, 정부 기관의 수장, 지방 정부, 소유권과 형태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시민단체, 기업, 기관, 조직과 그 종사자들로부터 지체 없이 통지받을 권리

(나) 의회의 회의, 내각 회의, 헌법 재판소의 회의, 고등 법원의 회의, 검찰 협의회의 회의,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권리

(다) 우크라이나 법률 또는 의회에 의해 제정된 다른 법률, 대통령, 총리가 제정한 법률, 크림 공화국 (Republic of Crimea)이 제정한 법률, 우크라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거한 공식적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

---

428)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5)

429)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 5) 장관급 등 지위에 대하여는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430)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5)

(라) 인권과 자유의 보호의 범위에서 적절한 절차로 입법 개선을 제안할 권리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인권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sup>431)</sup>, 선출된 자가 인권위원의 선서를 함으로써 시작됨.<sup>432)</sup> 인권위원의 임기는 의회의 임기와 겹치지 않음.<sup>433)</sup> 법률 상 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재임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음.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가) 인권위원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음.

(나) 인권위원은 구금, 수색, 체포와 같은 행정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sup>434)</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진정서 수렴

인권위는 우크라이나 시민과 국회의원의 진정서를 받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진정을 신청하는 자는 최근 1년 내에 당한 인권침해에 관해 보고할 수 있음.<sup>435)</sup> 2014년 이후로 최신 보고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30,415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sup>436)</sup>

431)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 제5조,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5) 재임에 관하여는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432)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 (검색일 2016. 10.5)

433)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15&Itemid=23](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15&Itemid=23) (검색일 2016. 10.5)

434)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 [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http://www1.ombudsman.gov.ua/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5:law-of-ukraine-qon-the-ukrainian-parliament-commissioner-for-human-rightsq&catid=38:2010-12-15-09-15-51&Itemid=25) (검색일 2016. 10.5)

435) <http://www.ombudsman.gov.ua/en/page/applicant/admissibility-criteria-for-petitions-to-the-commissioner/> (검색일 2016. 10.5)

436) 우크라이나 인권위, 『2014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of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5)』, 2015, p92

- (2)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 활동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불법 구금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령함.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NPM은 약물 및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약품을 보급하는 시설(narcological dispensaries) 및 간호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음. 모든 타입의 NPM에 해당하는 기관에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여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음.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유관부서에 보내졌으며 권고안이 잘 이행이 되었는지 방문하여 확인했음.<sup>437)</sup>
- (3)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 활동  
 우크라이나 군 채용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Certificate of family)과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를 제거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함. 국방부는 답신을 보내 실정법에 따라 개인 정보 사용 방지를 위한 기준 제정에 착수하였음을 밝힘.
- (4) 아동 권리 (Rights of the Child) 증진 활동  
 아동 난민과 아동 망명 신청자에 대한 권리는 잘 보장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기임. 이에 인권위 조직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Hayes사의 대표단, 유럽연합 의회는 가족으로부터 이산된 아동의 난민 지위 부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 의료 제공에 관해 논의함. 인권위는 논의 결과를 내각에 제출하여 중앙집행기구가 세부사항 제도에 착수하는 성과를 냄.<sup>438)</sup>
- (5) 차별 예방 및 철폐 관련(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활동  
 우크라이나 내 차별은 주로 인종, 종교, 장애, 성별에서부터 출발함.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인식개선 활동과 차별철폐에 관한 법률제정임. 그러나 차별철폐조치는 진척이 없으며, 그 원인으로는 차별관련 법률제정에 대한 정부와 각종 권력층의 낮은

437) 우크라이나 인권위, 『2014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of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5)』, 2015, p31

438) 우크라이나 인권위, 『2014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of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5)』, 2015, p79

중요도 인식에 있음.<sup>439)</sup>

(6) 정보요청 권리 (Rights for Information) 활동

우크라이나의 공공 정보에 관한 법률(Law of Ukraine on Access to Public Information)에 의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정보라 간주 될 수 있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생기거나 개인정보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 받을 시,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함. 우크라이나 인권위에서는 공개될 수 있는 정보, 아닌 정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sup>440)</sup>

바) 특이사항

(1)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갈등 조율

초대 인권위원장인 니나 카르파초바(Nina Karpachova)는 2004-2005년 오렌지 혁명(Orange Revolution) 당시에 의회 앞에 성난 수천 명의 시위대를 달래어 보낸 바 있음.<sup>441)</sup>

(2) 우크라이나 내부 이슈를 국제사회에 공론화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빈곤은 인권침해를 야기 시켜옴.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온 정부를 대신하여 우크라이나 인권위는 유엔 우크라이나 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빈곤문제를 제기해옴.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국가차원의 빈곤감소(poverty allevi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게됨.<sup>442)</sup>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크림반도 인권그룹(The Crimean

---

439) 우크라이나 인권위, 『2014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of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5)』, 2015, p61

440) 우크라이나 인권위, 『2014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of the 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5)』, 2015, p59

441) 니나 카르파초바(Nina Karpachova)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옴부즈맨 기구 (The Ombudsman Institution a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2009, p3

442) 니나 카르파초바(Nina Karpachova)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옴부즈맨 기구 (The Ombudsman Institution a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2009, p4

Human Rights Group, CHRG) 을 지난 7월에 결성하여 변동한 국제 정세 속에 크림반도의 주민들의 침해당하는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음.<sup>443)</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우크라이나 국회인권위원회(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GANHRI심사에서 2009년 및 2014년에 A등급 유지.<sup>444)</sup>

## 15) 조지아

조지아 국가 정보 <sup>445)</sup>	
면적	69,700km <sup>2</sup>
인구	약 450만명
수도	트빌리시
정치형태	분권형 대통령제(Semi-presidential Republic)
민족	조지아인(83.8%), 아제르바이잔인(6.5%), 아르메니아인(5.7%) ('02, CIA Factbook)
주요언어	조지아어
주요종교	조지아 정교
GDP	GDP : 140억불('15, EIU)
	1인당 GDP : 3,720불('15, EIU)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옴부즈맨(Public Defender's Office/Ombudsman)

(2) 설립연도: 1997년

(3) 설립배경: 인권 보호에 관한 논의는 1921년 제정된 조지아 헌법에도 밝혀져 있듯이, 조지아 내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임. 이후 1992년, 인권 및 소수민족관계 국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Human Rights and Inter-Ethnic Relations of the Republic of Georgia)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조지아 국가위원회(Supreme Council)의 산하 기구였음. 이

443) <http://www.ombudsman.gov.ua/en/all-news/pr/11716-gr-the-crimean-human-rights-group-prepared-the-monitoring-overview-of-a-s/>

444)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10. 10)

445)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83.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83.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10. 12)

후, 이 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지아 옴부즈맨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위원회의 업무에 비해 더 광범위한 인권 및 자유에 대해 다루도록 함.<sup>446)</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옴부즈맨 기본법(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1996)<sup>447)</sup>: 조지아 헌법 제43조 제4항은 옴부즈맨의 역할 및 특권이 옴부즈맨 기본법을 통해 명시될 것을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옴부즈맨 기본법은 조지아 옴부즈맨의 역할, 선출, 권한 및 구성 등에 관해 다루고 있음.

(나) 조지아 헌법(The Constitution of Georgia, adopted in 1995, last amended in 2006)<sup>448)</sup>: 조지아 헌법 제43조는 옴부즈맨이 조지아 영토 내 인권 및 기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s)를 감독하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으며<sup>449)</sup>, 옴부즈맨이 인권 및 자유 침해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이를 관할 기관 및 대상에 보고할 특권을 지님을 명시하고 있음.<sup>450)</sup>

---

446) <http://www.ombudsman.ge/en/public-defender/saqmianobis-istoria>  
(검색일 2016. 10. 12)

447) 옴부즈맨 기본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33034?impose=translateEn> (검색일 2016. 10. 12)

448) 조지아 헌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ombudsman.ge/uploads/other/1/1475.pdf> (검색일 2016. 10. 12)

449) The Constitution of Georgia, art. 43(1) (조지아 헌법, 제 43조 1항):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in the territory of Georgia shall be supervised by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who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ive years by the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of Georgia. (조지아 영토 내 인권 및 기본 자유는 조지아 옴부즈맨에 의해 감독되며, 옴부즈맨은 5년의 임기로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450) The Constitution of Georgia, art. 43(2) (조지아 헌법, 제 43조 2항): The Public Defender shall be authorised to reveal facts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to report on them to corresponding bodies and officials. The creation of impediments to the activity of the Public Defender shall be punishable by law. (옴부즈맨은 인권과 자유의 침해 사항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해 관할 기관 및 대상에 보고할 특권을 부여 받는다. 옴부즈맨 업무에 대한 방해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조지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한명의 옴부즈맨(Public Defender/Ombudsman)과 제1부옴부즈맨(First Deputy Public Defender)과 다수의 부옴부즈맨(Deputies)으로 구성되며, 부옴부즈맨의 숫자 및 권한은 조지아 옴부즈맨 법령(Statute of the Public Defender's Office of Georgia)에 의해 결정됨.<sup>451)</sup> 현재(2016년 기준)는 제1부옴부즈맨과, 제2부옴부즈맨을 두고 있음.

(나) 제1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사무소의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하에 있는 부서는 다음의 9개임.<sup>452)</sup>

- ① 직원 및 인적자원부 (The Department of Chancellery and Human Resources)
- ② 분석부 (The Analytical Department)
- ③ 평등부 (The Equality Department)
- ④ 성평등부 (The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 ⑤ 장애인권리부 (The Department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⑥ 홍보부 (The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 ⑦ 행정관리부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 ⑧ 아동권리센터 (The Child's Rights Centre)

---

451)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26(2) (옴부즈맨 기본법, 제 26조 2항):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have the First Deputy and Deputies. The number and powers of the Deputies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tute of the Public Defender's Office of Georgia. The First Deputy and Deputies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be appointed to and dismissed from the position by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조지아 옴부즈맨은 제 1 부옴부즈맨과 다수의 부옴부즈맨을 둔다. 부옴부즈맨의 권한 및 숫자는 조지아 옴부즈맨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 1 부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은 조지아 옴부즈맨에 의해 이루어진다.)

452) 옴부즈맨 사무소, 『조지아 옴부즈맨의 기능(Functions o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2015, p3-4.

⑨ 인권학교 (The Human Rights School)

(다) 제2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 법령(Statute of the Public Defender's Office of Georgia)에 의해 결정된 활동(activities)들을 조정(coordinate)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래 5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음.<sup>453)</sup>

- ① 형사부(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 ②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부(The Department of Civil an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③ 예방 및 감시부(The Department of Prevention and Monitoring, NPM)
- ④ 국방 및 군대 내 인권부(The Department of Human Rights in Military Defense and Armed Forces)
- ⑤ 지역사무소관리부(The Division to Manage Regional Offices)

(라) 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사무국(The Secretariat of the Public Defender)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무국은 옴부즈맨 사무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사무국은 다음의 직책으로 이루어짐.<sup>454)</sup>

- ① 분쟁피해지역의 인권보호 수석고문관(The Senior Adviser in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onflict Affected Areas)
- ② 법률 수석고문관(The Senior Legal Advisor)
- ③ 국제관계 및 전략발전 담당관(The Assista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trategic Development)
- ④ 경영 담당관(The Assistant in Management)
- ⑤ 프로젝트 운영 담당관(The Assistant in Project Management)

(마) 이 외에도 조지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아래의 2개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sup>455)</sup>

- ① 오세트 포럼 (The Ossetian Forum): 2014년 옴부즈맨 이니셔티브에

---

453) 옴부즈맨 사무소, 『조지아 옴부즈맨의 기능(Functions o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2015, p3-4.

454) 옴부즈맨 사무소, 『조지아 옴부즈맨의 기능(Functions o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2015, p5.

455) 옴부즈맨 사무소, 『조지아 옴부즈맨의 기능(Functions o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2015, p9-10.

의해 만들어진 포럼으로서, 조지아 내 오세트인(Ossetians)의 소수 민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함.

- ② 관용센터(The Tolerance Centre): 2005년부터 관용센터는 조지아내 관용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관용센터는 소수 민족 및 종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관용 및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둠.

(2) 지역사무소

조지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수도인 트빌리시(Tbilisi)에 중앙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 오주르게티(Ozurgeti), 마르네울리(Marneuli), 아할칼라키(Akhalkalaki), 고리(Gori), 주그디디(Zugdidi), 쿠타이시(Kutaisi), 바투미(Batumi), 텔라비(Telavi)에 총 8개의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sup>456)</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옴부즈맨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모의 예산을 국가예산(State Budget of Georgia)으로부터 지원 받음.<sup>457)</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조지아 옴부즈맨은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임명됨. 후보자는 국회 정당(a parliamentary faction)이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여섯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해 지명됨.<sup>458)</sup>

(나) 제1부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권은 조지아 옴부즈맨이 가지고 있음.<sup>459)</sup>

456) <http://www.ombudsman.ge/en/contact> (검색일 2016. 10. 12)

457)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25(2) (옴부즈맨 기본법, 제25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예산규모는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458)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6(2) (옴부즈맨 기본법, 제6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459)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26(2) (옴부즈맨 기본법, 제 26조 2항):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have the First Deputy and Deputies. The number and powers of the Deputies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tute of the Public Defender's Office of Georgia. The First Deputy and Deputies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be appointed to and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지위(장관급 등)  
 지위를 명시한 자료는 없으나, 옴부즈맨의 보수는 헌법재판소장 (Chairpers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Georgia)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바<sup>460)</sup>로 지위를 유추할 수 있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조지아 옴부즈맨은 제1부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짐.<sup>461)</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5년임.<sup>462)</sup> 재임가능하며, 2회까지만 가능함.<sup>463)</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가) 조지아 옴부즈맨은 현행법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체포될 수 없으며, 조지아 국회의 허가 없이는 옴부즈맨의 자택, 차량, 및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없음.  
 옴부즈맨이 체포됐을 경우에도, 의회의 허가가 없다면 옴부즈맨은 즉시 석방되어야 함.<sup>464)</sup>

---

dismissed from the position by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조지아 옴부즈맨은 제 1 부옴부즈맨과 다수의 부옴부즈맨을 둔다. 부옴부즈맨의 권한 및 숫자는 조지아 옴부즈맨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 1 부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은 조지아 옴부즈맨에 의해 이루어진다.)

- 460)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25(4) (옴부즈맨 기본법, 제25조 4항): 해당 항 직접인용.
- 461)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26(2) (옴부즈맨 기본법, 제 26조 2항):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have the First Deputy and Deputies. The number and powers of the Deputies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tute of the Public Defender's Office of Georgia. The First Deputy and Deputies Public Defender of Georgia shall be appointed to and dismissed from the position by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조지아 옴부즈맨은 제1부옴부즈맨과 다수의 부옴부즈맨을 둔다. 부옴부즈맨의 권한 및 숫자는 조지아 옴부즈맨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1부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은 조지아 옴부즈맨에 의해 이루어진다.)
- 462)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6(2) (옴부즈맨 기본법, 제6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 463)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6(2) (옴부즈맨 기본법, 제7조)
- 464)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5(2) (옴부즈맨 기본법, 제5조 2항): 해당 항 직접인용.

(나) 옴부즈맨은 임무 수행을 위해 밝힌 견해 때문에 기소될 수 없음.<sup>465)</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인권 수호 기능

옴부즈맨은 조지아 내 인권 및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조지아 공화국이 수호하는 가치인 기본권(rights)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를 지님. 이러한 가치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 국적, 민족, 사회적 관계(social affiliation), 출생(origin), 재산 및 사회적 지위(property and social status), 거주지역(place of residence)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함.<sup>466)</sup>

(2)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

조지아 옴부즈맨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아래 국가예방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sup>467)</sup>

(3) 진정(statements and appeals) 수렴 및 조사(inspection)

(가) 조사대상

옴부즈맨은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진정을 수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sup>468)</sup>

- 공공기관의 행위 (a decision of a public institution)
- 소송 중, 조지아 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rights) 및 자유권(freedoms)가 위반(infringement)되거나 침해(violation) 당했을 경우

---

465)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5(5) (옴부즈맨 기본법, 제5조 5항): 해당 항 직접인용.

466)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3(1) (옴부즈맨 기본법, 제 3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467)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3-1(1) (옴부즈맨 기본법, 제 3-1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468)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14(1) (옴부즈맨 기본법, 제 14조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 구금 및 구류된 사람들(detained and arrested people)의 권리를 위해 제정된 조지아 법이 위반되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 헌법 제 2장에 제시된 규범(normative acts)와 관련된 내용(conformity)
-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인 국민투표(referendum) 및 선거(elections)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범(norms)의 헌법적합성(constitutionality)에 관한 내용

(나) 조사 결정

옴부즈맨은 직권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진정 신고인(declarant)에게 이에 관한 결과를 송부해야함.<sup>469)</sup>

(다) 조사 절차

옴부즈맨은 조사를 위해 다음을 실행할 수 있음.<sup>470)</sup>

- 조사를 위해 옴부즈맨은 군사시설, 교도소, 구류시설(confinement facilities)와 기타 구금 및 자유의 제한이 발생하는 장소들을 포함한 어떠한 정부 및 지자체, 기업(enterprise), 조직(organisation), 기관(institution)에 출입할 수 있음.
- 조사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certificates), 문서(documents) 및 자료(materials)를 해당 정부 및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옴부즈맨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떤 공무원(official), 담당자(officer) 및 이와 대등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된 사유서(explanations)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음.
-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진정·조사활동 현황

조지아 옴부즈맨은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신고를 위해 24시간 핫라인(24-hour-hotline, 번호는 1481)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조언(legal advices)을 제공.<sup>471)</sup> 2015년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진정은

469)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17 (옴부즈맨 기본법, 제 17조): 해당 조 직접인용.

470) Organic Law of Georgia on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art, 18 (옴부즈맨 기본법, 제 18조): 해당 조 직접인용.

471) 옴부즈맨 사무소, 『조지아 옴부즈맨의 기능(Functions o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2015, p5.

총 265건이며, 이를 포함하여 사무소에는 총 8617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사무소에 의해 채택된 진정은 7068건임.<sup>472)</sup>

(마) 옴부즈맨의 권고(recommendations) 및 제안(proposals)

옴부즈맨은 2015년 총 377건에 달하는 권고 및 제안을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s)에 담았으며, 이 중 80건이 진정에 의해 신고된 기관으로 직접 전달되었음. 80건 중, 절반의 권고 및 제안이 해당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17%는 부분채택 그리고 33%는 무응답으로 기록됨.<sup>473)</sup>

(4) 입법 관련 활동

옴부즈맨은 법안의 초안에 관한 검토를 하여 국회에 제안(proposals), 견해(opinions), 의견(comments)을 제출하며, 2015년 총 23건을 진행함.<sup>474)</sup>

(5) 국제활동(International Relations)

조지아 옴부즈맨은 다음의 국제활동을 수행함.

(가) 국제인권관련 기구에 대한 서면 제출(written opinions and questions):

2015년 총 13건의 서면 견해를 인권관련 국제기구에 제출함.

(나) 이 외에도 인권관련 기관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총 8개 기관의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음.<sup>475)</sup>

(6) 교육활동(Educational Activities)

옴부즈맨은 총 7번의 공청회를 열어 인권관련 교육활동을 펼쳤으며, 월간지(monthly newsletters) 및 계간지(quarterly newsletters)를 통해, 옴부즈맨의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음. 이 외에도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 게시판(bulletin)을 통해 분쟁으로 인해 피해입은 소수민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sup>476)</sup>

472) 옴부즈맨 사무소, 『2015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2015)』, 2016, p9.

473) 옴부즈맨 사무소, 『2015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2015)』, 2016, p13-15.

474) 옴부즈맨 사무소, 『2015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2015)』, 2016, p23-24.

475) 옴부즈맨 사무소, 『2015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2015)』, 2016, p28-29.

476) 옴부즈맨 사무소, 『2015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2015)』, 2016, p30-31.

바) 특이사항

인권관련 연수(training) 및 공모전(competition): 옴부즈맨은 미-옴부즈맨(Me-Ombudsman)이라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대상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임. 2015년에 총 6회 진행하여 총 582명의 학생들이 참가. 이 외에도 인권관련 에세이 공모전 및 여름학교를 운영 중에 있음.<sup>477)</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조지아 옴부즈맨(Public Defender/Ombudsman)은 GANHRI 심사에서 2007년과 2013년에 A등급을 받음.<sup>478)</sup>

16)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국가 정보 <sup>479)</sup>	
면적	2,586km <sup>2</sup>
인구	57만 명 (2015년 기준)
수도	룩셈부르크(Luxembourg)
정치형태	입헌군주제하 내각책임제
주요언어	불어, 독일어
주요종교	가톨릭(87%), 기타(13%)
주요민족	룩셈부르크인, 독일인, 프랑스인
GDP	574억 달러(2015년)
1인당	101,994달러(2015년)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du Grand-Duché du Luxembourg, CCDH)

(2) 설립연도: 2000년 5월 26일<sup>480)</sup>

477) 옴부즈맨 사무소, 『2015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2015)』, 2016, p31-32.

478)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479)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5.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5.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10.30.)

480)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첫 번째 법적 문서인 ‘인권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칙(Règlement du Gouvernement en Conseil du 26 mai 2000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채택일

(3) 설립배경: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는 1947년 설립된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음.<sup>481)</sup> 1993년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이 등장한 후 룩셈부르크는 1997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의사를 밝혔음. 룩셈부르크 정부는 1999년 공식적으로 국가 선언(Déclaration gouvernementale)을 통해 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히고, 2000년 5월 26일 '인권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칙(Règlement du Gouvernement en Conseil du 26 mai 2000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을 채택함으로써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함. 2008년 5월, 국무총리가 인권자문위원회 설립 법안(un projet de loi)을 국회에 제안했고, 2008년 11월 21일에 룩셈부르크 국회가 정식으로 '인권자문위원회 설립법(Loi du 21 novembre 200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을 채택하면서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는 국회가 승인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됨<sup>482)</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인권자문위원회 설립법(Loi du 21 novembre 200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sup>483)</sup>: 2008년 5월 26에 룩셈부르크 국회가 채택한 인권자문위원회 설립법을 근거로 국가인권자문기관(un organe consultatif du Gouvernement)<sup>484)</sup>이 설립됨.

(나)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내부 규정(Règlement d'ordre intérieur de

481) <http://www.ccdh.public.lu/fr/historique/index.html> (검색일: 2016.10.30.)

482) <http://www.ccdh.public.lu/fr/historique/index.html> (검색일: 2016.10.30.)

483) Loi du 21 novembre 200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 L.C.C.D.H. (2008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설립법, 이하 '인권자문위원회법')

484) L.C.C.D.H. art.1(2) (인권자문위원회법 제1조 2항) : La Commission est un organe consultatif du Gouvernement qui a pour mission la promotion et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 (…)

la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du Grand-Duché de Luxembourg)<sup>485</sup>: 2010년 7월 13일 인권자문위원회 총회(assemblée plénière)에서 채택한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내부 규정에서 인권위원회 조직과 구성을 규율하고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임. 인권자문위법 제1조는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sup>486</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는 질베르 프레노(Gilbert Pregno) 현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21인의 상임 위원, 위원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assemblée plénière), 위원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제별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위원장과 총회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실(Bureau), 위원회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Secrétariat)으로 구성됨.

(가) 총회(assemblée plénière)

총회는 위원회의 핵심 조직으로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들이 모여 위원회 결정을 채택하는 회의를 뜻함.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또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하면 개최함<sup>487</sup>.

(나)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워킹그룹은 최소 3명의 위원과 1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워킹그룹 활동 기간은 총회에서 결정

485) Règlement d'ordre intérieur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R.C.C.D.H.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내부 규정, 이하 '내규'): 2010년 7월 13일 인권자문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한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이는 4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14년 12월 16일에 개정된 버전을 사용함.

486) L.C.C.D.H. art.1(2) (인권자문위원회법 제1조 2항): (...) A cette fin, elle adresse au Gouvernement des avis, études, prises de position et recommandations qu'elle élabore en toute indépendance sur toutes les questions de portée générale qui concernent les droits de l'Homm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 (...)

487) R.C.C.D.H. art.3(4)(1)~(4)(2) (내규 제3조 4-1항~2항): (1) L'assemblée plénière est l'organe principal de la CCDH. Elle est composée de tous les membres présents et/ou représentés et du secrétaire général ou de son remplaçant. (2) L'assemblée plénière se réunit sur convocation du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au moins un tiers de ses membres.

합<sup>488</sup>). 워킹그룹 구성원들은 일정을 정하고, 그룹 대표(un membre président)를 선출하여 이를 임무 시작 전에 총회로 전달함<sup>489</sup>). 현재 워킹그룹으로는 난민과 이민(Asile et immigration), 무기거래 통제(Contrôle des exportations), 장애인 인권(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양육권 문제(Filiation), 정교분리(Laïcité), 청년 보호(Protection de la jeunesse), 성매매 문제(Prostitution) 등을 주제로 7개의 워킹그룹이 있음<sup>490</sup>).

(다) 사무국(Secrétariat)과 지원실(Bureau)

사무국은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이 이끌며 사무총장 이하 직원들로 구성됨. 총회 및 워킹그룹 업무를 지원하고, 위원회 재정, 위원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위원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정리, 위원회 출판물 발간 등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함<sup>491</sup>). 지원실(Bureau)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며, 총회 일정 조정 및 총회 준비, 연간 일정과 활동 내용 검토, 사무국을 거쳐 사무총장이 올린 예산안 검토 등 주로 위원장의 최종 검토 및 결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함<sup>492</sup>).

488) R.C.C.D.H. art.3(6)(1)~(6)(2) (내규 제3조 6-1항~2항) : (1) Un groupe de travail est composé d'au moins trois membres ainsi que d'un membre du secrétariat. (2) Le mandat des groupes de travail est défini par l'assemblée plénière. (…)

489) R.C.C.D.H. art.3(6)(3) (내규 제3조 6-3항) : Les groupes de travail fixent leur calendrier de réunions. Ils élisent en leur sein un membre président le groupe de travail et font rapport à l'assemblée plénière de l'avancement de leurs travaux.

490)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Rapport d'activités 2015』(2015 연간보고서), p.76

491) R.C.C.D.H. art.3(3) (내규 제3조 3항) : Le secrétariat, placé sous l'autorité de la présidence, est dirigé par le secrétaire général. Il est composé du secrétaire général et des personnes affectées au secrétariat. Le secrétaire général - assiste aux assemblées plénières et aux réunions des groupes de travail, - est chargé de la gestion administrative de la CCDH, - assure la gestion financière courante, sauf tout engagement financier hors dépenses courantes, - assure le suivi des travaux administratifs, - veille à mettre à la disposition des membres la documentation nécessaire pour la réalisation des travaux, - gère les sites Internet, Intranet et Extranet de la CCDH. - est responsable des publications de la CCDH, - peut être mandaté par le président pour représenter la CCDH.

492) R.C.C.D.H. art.3(2) (내규 제3조 2항) : Le bureau de la CCDH est composé de la présidence et du secrétariat général. Le secrétaire général assiste aux réunions du bureau avec voix consultative. Le bureau est responsable de la gestion quotidienne

(2) 지역사무소

룩셈부르크는 도시 국가로 본부는 국가이자 수도인 룩셈부르크에 위치함<sup>493</sup>. 지역사무소는 없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가) 예산 규모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음:

<룩셈부르크-표 5>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2015 예산

2015 인권자문위 예산	17,195,561 Euro (약 216억 원)
---------------	-------------------------------

출처: 룩셈부르크 국회, 『Project de loi concernant le budget des recettes et des dépenses de l'État pour l'exercice 2016』, p.46

(나) 예산의 독립성

인권자문위 예산은 국무장관(Ministère d'Etat) 예산으로 분류되어 정부 예산을 배분 받음<sup>494</sup>. 위원회 사무국은 정부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간주, 정부 급여를 받음<sup>495</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de la CCDH. Il fait le bilan de l'assemblée plénière antérieure et prépare l'assemblée plénière suivante. Il fixe les ordres du jour des assemblées plénières, propose un calendrier de réunions et un programme de travail annuels, examine les comptes de l'année ainsi que les demandes budgétaires pour l'exercice suivant présentés par le secrétaire général.

493) L.C.C.D.H. art.1(3) (인권자문위원회법 제1조 3항) : La Commission a son siège à Luxembourg.

494) R.C.C.D.H. art.3(7) (내규 제3조 7항) : La CCDH profite d'une dotation budgétaire annuelle inscrite au budget du Ministère d'Etat. Cette dotation est définie d'après les règles budgétaires étatiques.

495) L.C.C.D.H. art.11(1) (인권자문위원회법 제11조 1항) : Les frais de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sont à charge du budget de l'Etat. Dans la limite des crédits budgétaires disponibles, le secrétariat de la Commission est assuré par des employés de l'Etat.

인권자문위원 임명권은 정부에 있음(인권자문위법 제4조)<sup>496</sup>).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상임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얻은 인물로 임명함<sup>497</sup>).

(나) 위원

상임 위원(membres avec voix délibérative) 21명과 비상임위원(membres avec voix consultative) 5명을 임명하는데, 상임위원은 룩셈부르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인권 분야 혹은 사회 문제에서 역량과 경험을 가진 인물을 선정함<sup>498</sup>. 또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임명하지는 않으나, 투표권 없이 협의권(voix consultative)만을 갖고 참관자(Observateurs)로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5명의 비상임위원을 둬. 이들은 정부 대표(Représentant du Gouvernement) 1인, 아동인권옴부즈맨 위원장(Président de l'Ombudscomité fir d'Rechter vum Kand) 1인, 평등대우센터장(Président du Centre pour l'égalité de traitement) 1인, 갈등조정관(Médiatrice) 1인, 국가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Présidente de la 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1인으로 구성됨<sup>499</sup>).

---

496) L.C.C.D.H. art.4(1) (인권자문위원회법 제4조 1항) : La Commission se compose de vingt et un membres avec voix délibérative au plus, nommés par le Gouvernement pour des mandats renouvelables de cinq ans. (…)

497) L.C.C.D.H. art.5(1) (인권자문위원회법 제5조 1항) : Le président et les deux vice-présidents de la Commission sont désignés par la majorité absolue des membres ayant droit de vote pour une durée correspondant à celle du mandat de la Commission. (…)

498) L.C.C.D.H. art.4(2) (인권자문위원회법 제4조 2항) :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des personnes indépendantes représentatives issues de la société civile et choisies en raison de leurs compétences et de leur engagement en matière de droits de l'Homme ou, de façon plus générale, dans le domaine des questions de société.

499) L.C.C.D.H. art.6(4) (인권자문위원회법 제6조 4항) : Le délégué du Gouvernement, le Médiateur,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le président du Collège du Centre pour l'Égalité de Traitement et le président de «l'Ombuds-Comité fir d'Rechter vum Kand» sont invités aux assemblées plénières de la Commission. Ils assistent aux réunions de l'assemblée plénière avec voix consultative. Ils ne peuvent se faire représenter.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500)</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자문위원은 개별 피해 사례 조사,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음.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는 국가 자문기구로서 주로 인권 정책 및 법률,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인권자문위법 제4조 1항), 재임 가능함.

동법 제5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의 투표로 ‘위원회에 주어진 임기 동안(une durée correspondant à celle du mandat de la Commission)’ 임명됨을 명시하고 있음.

룩셈부르크 정부는 위원회 위원 3/4 이상 인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sup>501)</sup>. 임기를 마치기 전 위원의 해임 또는 사임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나머지 위원의 의견을 묻고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음<sup>502)</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503)</sup>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1) 인권 정책 및 법률, 인권 사안에 대해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는 룩셈부르크 내 인권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avis), 연구 보고서(étude ou rapport), 입장 표명(prise de position), 권고(recommendation), 보도자료(communiqué)를 통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함. 자문 활동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혹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 및 총회 결정 등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짐<sup>504)</sup>. 자문을 통해서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인

500)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501) L.C.C.D.H. art.4(3) (인권자문위원회법 제4조 3항) : Le Gouvernement peut décider, sur proposition des trois quarts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de révoquer un membre de la Commission.

502) L.C.C.D.H. art.4(4) (인권자문위원회법 제4조 4항) : Si le mandat de membre prend fin avant son échéance normale, le Gouvernement nomme un membre remplaçant, l'avis des membres restants de la Commission ayant été demandé. Les membres ainsi nommés terminent le mandat de ceux qu'ils remplacent.

503)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504) L.C.C.D.H. art.2 (인권자문위원회법 제2조) : (1) La Commission émet ses avis,

권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요청함<sup>505</sup>).

자문위의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도출하며, 총회에서 채택한 의견, 보도자료, 연구 보고는 국회에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혹은 국회에서의 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음<sup>506</sup>). 예외적으로, 사실이 확인된 위중하고 실질적인 사건이며 위원회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총회를 거치지 않고 모든 위원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당국에 조치나 결정을 권고하고 인권 원칙을 환기시키는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음<sup>507</sup>).

특히, 인권자문위는 법안(avant-projet de loi) 심의 시 해당 부처에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는데, 부처 논의가 있기 전 검토해야 할 법안이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워킹그룹 또는 사무국 차원에서

---

élabore ses études, formule ses prises de position et recommandations soit à la demande du Gouvernement soit de sa propre initiative. (2) La Commission se saisit de sa propre initiative sur proposition d'un de ses membres et en vertu d'une décision d'autosaisine de l'assemblée plénière.

505) L.C.C.D.H. art.3(1) (인권자문위원회법 제3조 1항) : La Commission prend toute autre initiative qui favorise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 Elle propose au Gouvernement des mesures et des programmes d'action qui lui paraissent de nature à favorise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506) R.C.C.D.H. art.3(5)(1)~(5)(2) (내규 제3조 5-1항~2항) : (1) Toutes les décisions de la CCDH doivent obligatoirement être prises par l'assemblée plénière à la majorité absolue des membres, à l'exception des décisions prévues par l'art. 3.2.1. et 3.5.7. La décision est considérée comme prise si le nombre de réponses atteint le quorum défini à l'article 3.4.6. et que le nombre de réponses positives atteint ou dépasse le seuil prévu à l'article 3.5.1.

(2) Tout document (avis, communiqué, étude ou rapport) soumis au vote de l'assemblée plénière, peut donner lieu à des propositions d'amendements, soit par écrit avant l'assemblée, soit lors des délibérations de celle-ci.

507) R.C.C.D.H. art.3(5)(7) (내규 제3조 5-7항) : En cas de survenance d'un évènement avéré, grave et actuel, qui nécessite une intervention immédiate de la CCDH sans qu'une assemblée plénière ne puisse être convoquée en temps utile, tout membre peut proposer un texte visant à

- recommander au ministre compétent de surseoir provisoirement à l'exécution d'une pratique ou d'une décision dans l'attente d'une prise de position de la part de la CCDH,
- rappeler publiquement les principes généraux des droits de l'Homme applicables en la matière.

법안을 검토한 후 입장 표명(prise de position), 또는 전달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함. 법안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은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 혹은 법안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법안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등 인권 원칙 준수와 관계된 자문을 자공한다는 한계를 지님.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만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 작성이나 도입에 관여할 수 없음<sup>508</sup>).

인권자문위는 2015년 기간에 총 11개의 의견을 채택했는데, 9개는 정부 요청에 의한 검토 및 의견이었고 2개는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른 의견 채택이었음<sup>509</sup>).

## (2) 인권 증진 활동

인권 인식 확산과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함. 인권자문위원회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비준한 이후, 협약 이행과

---

508) R.C.C.D.H. Annexe “Saisine de la CCDH sur un avant-projet de loi” (내규 부록 “법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요청”) : La CCDH est contactée par un ministère : Invitation à une réunion au ministère :

- La CCDH est invitée à une discussion sur l’avant-projet de loi. Au cas où le texte de l’avant-projet de loi n’est pas envoyé avec l’invitation, il doit être demandé au ministère avant la réunion, en prenant en compte la confidentialité du document.
  - La présidence mandate un groupe de travail d’une mission définie à confirmer par l’assemblée plénière suivante, conformément à l’article 3.4.2. du ROI.
  - Si le temps le permet, une prise de position est élaborée par le groupe de travail et le secrétariat (approbation par l’assemblée plénière, si possible).
  - Avant de participer à la réunion, un courrier est envoyé au ministère concerné, qui définit le rôle de la CCDH. La CCDH ne s’exprimera pas sur le fond de la question, mais elle pourra attirer l’attention du ministère sur le risque d’un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L’intervention est donc limitée à l’essentiel des principes de droits de l’Homme.
  - La prise de position est présentée lors de la réunion au ministère, à laquelle participera également un membre du secrétariat. (Au cas où il n’y aurait pas assez de temps pour préparer une prise de position, les représentants de la CCDH le notifient lors de la réunion avec l’information qu’un texte écrit suivra.)
- (…) La CCDH s’exprime seulement sur un texte écrit déjà existant. Elle ne participera en aucun cas à l’élaboration ou à la rédaction d’un avant-projet de loi.

509)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 『Rapport d’activités 2015』(2015 연간보고서), p.53

장애인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평등대우센터(Centre pour l'égalité de traitement)와 함께 룩셈부르크 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보호 임무를 부여받았음. 이에 따라 2015년에는 특히 장애인 인권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적 장애인 인권 현황과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컨퍼런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 관련 입법에 대한 교육 행사 등을 개최함<sup>510</sup>).

(3) 인신매매 국가보고관 활동

인권자문위원회는 2014년 정부가 도입한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 강화법 (La loi du 9 avril 2014 renforçant le droit des victimes de la traite des êtres humains)'에 근거해 인신매매 국가보고관(Rapporteur national sur la traite des êtres humains)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 사실 및 이와 관련한 국가 통계,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정책의 결과, 시민사회의 대응 활동과 노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함<sup>511</sup>).

(4) 정부 부처,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가)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통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협력하기도 함. 주의가 필요한 인권 사안, 위원회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논의 의사를 전달해 부처 관계자를 초대하거나 방문하며, 차후 법안 심의에 공식적인 의견 및 입장 표명을 전달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함. 또한, 룩셈부르크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상황 감시, 국제 및 유럽 지역인권보호 메커니즘 심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 역할을 맡으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협력 활동에 참여함.

(나) 행정 부처 및 국회 외에도 아동인권옴부즈맨 (Ombudscomité fir d'Rechter vum Kand), 평등대우센터(Centre pour l'égalité de traitement), 갈등조정관(Médiateure), 국가정보보호위원회

---

510) Id. p.63-66

511) Id. p.54-55

(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등 룩셈부르크 내 인권 관련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함. 이들 기관 대표들은 인권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투표권 없이 총회에 참석해 자문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바) 특이사항

인권자문기구로서 정부로부터 개별 피해 사례 조사,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며, 정부 정책 및 법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함. 정부 부처와 국회는 법안 심의 시 자문위에 의견을 요청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은 실질적 영향력을 지님. 또한, 인권자문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1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9년 11월, 2010년 10월, 2015년 11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512)</sup>

17) 핀란드

핀란드 국가 정보 <sup>513)</sup>	
면적	338,145km <sup>2</sup>
인구	약 547만명
수도	헬싱키
정치형태	이원집정제(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민족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주요언어	핀란드어(93%), 스웨덴어(6%)
주요종교	루터교(91%), 그리스정교(1.3%)
GDP	GDP : 2,707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41,100불(*14, CIA Factbook)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핀란드 국가인권기구

(Finnis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sup>514)</sup>

512)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513)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6.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6.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9. 9)

514)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human-r>

(2) 설립연도: 2012년

(3) 설립배경: 옴부즈맨의 의무는 핀란드 헌법 및 국회 옴부즈맨 법

(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amended in 2011)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기본권 및 인권의 실현은 1995년 관련 헌법조항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옴부즈맨의 역할에 포함.<sup>515)</sup> 또한, 유엔 파리협약(UN Paris Principle)은 각 국가가 법적으로 인권관련기구를 설치할 것을 명하고,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국회 옴부즈맨의 파트너로 독립기관인 인권센터(The Human Rights Centre)와 인권대표단을 두어 핀란드 내 인권 문제를 담당하도록 함.<sup>516)</sup>

- 국회 옴부즈맨(The Parliamentary Ombudsman): 국회 옴부즈맨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올바른 행정과 헌법 및 인권보장의 준수를 관리·감독하는데 목표를 둬.<sup>517)</sup>

- 인권센터(The Human Rights Centre): 인권센터는 인권 증진을 위해 더 나은 조직, 협동,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설립되었고,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함. 행정적으로는 국회 옴부즈맨과 연결되어 있으나, 기본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함.<sup>518)</sup>

- 인권대표단(The Human Rights Delegation): 인권센터는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된 인권대표단을 가짐. 대표단은 핀란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권 행위자로서, 대표성 및 전문성에서 다양성을 지녀야 함.<sup>519)</sup>

---

ights-actors-in-finland/national-human-rights-institutio/ (검색일 2016. 9. 9)

515)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a/english/ombudsman/tasks/fundamental.htx> (검색일 2016. 9. 12)

516) Human Rights Centre Annual Report 2015, Human Rights Centre, 2015, p. 5.

517)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a/english/ombudsman/index.htx> (검색일 2016. 9. 9)

518)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centre/> (검색일 2016. 9. 9)

519)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delegation/> (검색일 2016. 9. 9)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옴부즈맨 법(Act on the Amendment of the 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Act 535/2011)<sup>520</sup>): 2002년 첫 시행된 후 2011년에 개정된 옴부즈맨 법은 국회 옴부즈맨의 연결기관인 인권센터(The Human Rights Centre)의 설치와 인권대표단(The Human Rights Delegation)의 선출을 명시함. 19조 b항은 인권센터의 설립목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의 증진을 들고 있으며, 인권센터가 국회 옴부즈맨의 지원 하에 설립될 것을 밝힘. 동조 e항은 인권대표단 선출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단의 선출방법, 임기 및 역할에 관해 다루고 있음.<sup>521</sup>)

(나) 핀란드 헌법(The Constitution of Finland) <sup>522</sup>): 핀란드 헌법은 국회 옴부즈맨의 선출, 역할, 및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옴부즈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임.

인권센터 및 인권대표단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법적 지위는 국가기구라기 보다는 각 센터 및 자문단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임.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핀란드 국가인권기구는 국회 옴부즈맨(The Parliamentary Ombudsman), 인권대표단(The Human Rights Delegation), 인권센터(The Human Rights Centre)로 구성됨.

(가) 옴부즈맨은 1명의 옴부즈맨과, 2명의 부옴부즈맨(Deputy Ombudsmen)으로 구성.

(나) 인권센터는 1명의 장(Director)과 2명의 정규직 전문공무원(Permanent

---

520) 옴부즈맨 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521)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a/english/lawlinks/act-ombudsman.htm> (검색일 2016. 9. 9)

522) 핀란드 헌법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9/en19990731.pdf> (검색일 2016. 9. 9)

expert officials)으로 구성되어 있음.<sup>523)</sup>

(다) 인권대표단은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되며, 정규 구성원(permanent members)과 타 구성원으로 이루어짐. 정규 구성원은 국회 옴부즈맨, 법무부 장관(the Chancellor of Justice of the Council of State) 혹은 대리(deputies), 소수자 옴부즈맨(The Ombudsman for Minorities), 평등 옴부즈맨(The Ombudsman for Equality), 아동 옴부즈맨(The Ombudsman for Children), 정보보호 옴부즈맨(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그리고 사미족 의회(Sámi Parliament)이며, 나머지 인원은 인권 관련 다양한 하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됨.<sup>524)</sup>

(2) 지역사무소

국회 옴부즈맨과 인권센터는 사무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무소는 헬싱키(Helsinki)에 위치한 핀란드 국회 안에 위치하고 있음. 지역사무소는 없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525)</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옴부즈맨(Ombudsman)은 2명의 부옴부즈맨(The Deputy-Ombudsmen)과 함께 핀란드 의회(Eduskunta, the Parliament of Finland)에 의해 선출됨. 헌법은 옴부즈맨 및 부 옴부즈맨의 조건으로 법률에 대한 상당한 학식(outstanding knowledge of law)을 요구함.<sup>526)</sup>

523)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centre/>  
(검색일 2016. 9. 12)

524)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delegation/>,  
현 핀란드 인권대표단의 명단은 [http://www.ihmisoikeuskeskus.fi/@Bin/2530643/IOV-jäsenet+2015\\_päivitetty+051015.pdf](http://www.ihmisoikeuskeskus.fi/@Bin/2530643/IOV-jäsenet+2015_päivitetty+051015.pdf) 에서 확인할 수 있음.

525)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526) The Constitution of Finland, Chapter 4 “Parliamentary activity”, section 38 “Parliamentary Ombudsman”(핀란드 헌법, 제 4장 “의회 활동”, 제 38조 “국회 옴부즈맨”): The Parliament appoints for a term of four years a Parliamentary Ombudsman and two Deputy Ombudsmen, who shall have outstanding knowledge of law. A Deputy Ombudsman may have a substitute as provided in more detail by an Act. The provisions on the Ombudsman apply, in so far as appropriate, to a Deputy Ombudsman and Deputy Ombudsman’s substitute. The Parliament, after

- (나)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장(Director) 선출은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amended in 2011) 제3조 19조 c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인권센터의 장(Director)은 핀란드 국회가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Law Committee)로부터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함. 센터의 장은 기본권 및 인권에 관한 깊은 이해도를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선출 후, 인권센터의 장으로서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인권센터 소관의 기본권 및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함.<sup>527)</sup>
- (다) 인권대표단: 인권대표단은 국회 옴부즈맨이 인권센터의 장(Director)으로부터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받아 선출함. 인권대표단은 기본권 및 인권 연구분야나 시민사회의 대표거나 기본권 및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함. 인권센터 장(Director)은 인권대표단의 단장(Chair) 역할을 수행하며, 선출된 인권대표단은 구성원 중 부 단장(A Deputy Chair/Vice Chair)을 선출함. 인권대표단의 중도 사임 시에는 국회 옴부즈맨이 남은 임기에 맞춰 새로운 대표단을 임명함.<sup>528)</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으나, 옴부즈맨의 급여는 법무부 장관(Chancellor of Justice of the Government)에 준하여 책정되고, 부 옴부즈맨의 급여는 법무부 차관(Deputy Chancellor of Justice)급으로 지정됨.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529)</sup>

---

having obtained the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Committee, may, for extremely weighty reasons, dismiss the Ombudsman before the end of his or her term by a decision supported by at least two thirds of the votes cast.(국회는 4년의 임기로 법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지닌 국회 옴부즈맨과 두 명의 부옴부즈맨을 임명한다.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리 옴부즈맨을 둘 수 있다. 옴부즈맨에 관한 조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 부 옴부즈맨과 대리 옴부즈맨에게 적용된다. 상당히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회는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옴부즈맨의 임기 중 사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족수는 재적의 최소 삼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527)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3장, 19조 c항,

528)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3장, 19조 e항.

529) 아래 마)를 참조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가) 옴부즈맨 및 2명의 부 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있음.<sup>530)</sup>

옴부즈맨 및 부 옴부즈맨은 연임이 가능함.

옴부즈맨과 부 옴부즈맨을 중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sup>531)</sup>

(나) 인권센터 장(Director)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함. 초대 센터장(Director)은 *Sirpa Rautio*로서, 2016년 3월 1일부터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음.<sup>532)</sup>

(다) 인권대표단의 임기는 4년이며, 1년에 두 번에서 4번의 회의를 소집.<sup>533)</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사항 등에 관한 자료 없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옴부즈맨

(가) 기본권 및 인권관련 옴부즈맨의 역할은 핀란드 헌법 10장 109조(Section 109)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기본권, 자유, 및 인권의 실현을 감찰하며, 감찰 결과는 매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sup>534)</sup>

(나) 적법성 감독(Oversight of Legality) : 옴부즈맨은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이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그리고 기본권 및 인권의 실현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감독함. 그러나 옴부즈맨은 국회, 국회의원, 민간기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지니지 않음.<sup>535)</sup>

---

530) The Constitution of Finland, Chapter 4 “Parliamentary activity”, section 38 “Parliamentary Ombudsman”(핀란드 헌법, 제 4장 “의회 활동”, 제 38조 “국회 옴부즈맨”).

531)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3장, 18조.

532)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centre/> (검색일 2016. 9. 12)

533)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delegation/> (검색일 2016. 9. 12)

534) <http://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9/en19990731.pdf> (검색일 2016. 9. 12)

535) <http://www.oikeusasiamies.fi/Resource.phx/ea/english/ombudsman/tasks/subjects.htx> (검색일 2016. 9. 12)

- (다) 진정사례 조사(Investigating Complaints): 진정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은 옴부즈맨의 역할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임. 옴부즈맨의 감독 아래에 있는 기관이나 혹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 혹은 근무태만이 접수된 경우, 옴부즈맨은 조사(investigation)를 실시할 수 있음. 옴부즈맨은 현장조사(on-site investigations)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조사대상의 불법행위가 밝혀졌고, 사법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맨은 대상에게 행동에 대한 견책(reprimand)을 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sup>536)</sup> 2014년 국회 옴부즈맨에 신고된 진정서는 4558개로, 합산 4757개의 진정서가 옴부즈맨에 의해 판결되었고, 이 중 736개는 질책 및 권고 사항의 제안으로 이어졌음.<sup>537)</sup> 옴부즈맨의 단독 조사는 58개 이루어졌으며, 이 중 38개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음. 교도소 및 경찰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on-site investigations)는 2014년에는 111건, 2013년에는 89건 발생함.<sup>538)</sup>
- (라) 비밀 정보관련 모니터링(Monitoring of covert intelligence): 핀란드 의회는 옴부즈맨에게 비밀 정보수집의 적법성 감독이라는 특별 업무를 부가함. 비밀 정보수집이란 범죄 수사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강압정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되는 다른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 사용처로는 경찰, 세관, 국경관리대, 및 방위군이 있음. 옴부즈맨은 주로 내부감찰을 실시하며, 언급된 주 사용처 및 기관은 수집된 정보의 출처 및 수집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옴부즈맨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sup>539)</sup>
- (마) 핀란드 옴부즈맨은 201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의 국가예방기구(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이 됨. 이에 따라

536)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1장.

537)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a/english/ombudsman/work/complaints.htm> (검색일 2016. 9. 12)

538)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a/english/ombudsman/work/index.htm> (검색일 2016. 9. 13)

539)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a/english/ombudsman/tasks/undercoverpolice.htm> (검색일 2016. 9. 12)

옴부즈맨은 경찰서, 교도소와 같이 구금이 가능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의무를 지님.<sup>540)</sup>

(2) 인권센터(The Human Rights Centre)

(가)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19조 d, 1항부터 3항에 따르면, 핀란드 인권센터 (The Human Rights Centre)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 및 권한을 지님.<sup>541)</sup>

- ① 기본권 및 인권에 관한 정보, 교육, 연수, 및 연구와 이와 관련된 협력을 증진시킴.
- ② 기본권 및 인권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 ③ 기본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 및 특정한 이슈에 관한 성명서 발표.
- ④ 기본권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럽 및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
- ⑤ 핀란드 인권센터는 인권관련 진정서를 받지 않음.
- ⑥ 핀란드 인권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보고서를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를 지님.

(나) 활동

- ① 기본권 및 인권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웹사이트 운영, 대외 및 국내용 인권관련 뉴스레터 발간,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발간물 제작 등이 있음. 2015년 발간한 자료로는 연간보고서, 핀란드 내 인권 교육 및 연수 증진을 위한 인권대표단 제안서(Recommendations of the Human Rights Delegation for Promot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Finland),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발간물 번역본, 인권관련 용어사전(Human Rights

540)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p/ea/english/ombudsman/tasks/opcat.htm>, 이에 대한 법 조항은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1장 a에서 확인가능.

541)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3장 a, 19조 d.

Glossary) 등이 있음.<sup>542)</sup>

- ② 인권센터는 2015년에 핀란드 기초 및 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성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기초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함. 또한 중등과정 핵심교육과정에 관해 핀란드 국가 교육위원회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사회 규범으로서의 인권의 역할을 강조함.<sup>543)</sup>
- ③ 인권센터는 핀란드의 첫 인권 교육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2014)하였고, 2015년에는 특히 교육 및 연수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데 집중함. 이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인권 실천 및 인권대표단의 권고사항의 실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였음.<sup>544)</sup>
- ④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라플란드 대학 북극센터의 북부 환경 및 소수민족 법 기관(Northern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Minority Law, NIEM), 국회 옴부즈맨, 유럽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미팅 및 세미나 등의 이벤트 개최.<sup>545)</sup> 비록 인권센터는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장(Director)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심화과정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기도 함.<sup>546)</sup>
- ⑤ 그동안 인권센터는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이에, 2015에는 기본권 및 인권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의 통합과 인권관련 연구 자료를 배포하는데 집중. 성과로는 라플란드 대학 북극센터의 북부 환경 및 소수민족 법 기관(Northern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Minority Law, NIEM)과의 공동 연구 및 세미나가 있음.
- ⑥ 인권센터는 핀란드 의회 위원회(The Parliamentary Committees), 정

542)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9-10.

543)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11-12.

544)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5 인권센터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5) p16-18에서 찾아볼 수 있음.

545)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12-14.

546)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14.

부부처, 및 국제기구에 인권 관련 다양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2015년 발표한 국내 성명은 약 12개이며, 국제 성명은 약 8개임.<sup>547)</sup>

- ⑦ 핀란드 국가 인권기관으로서 인권센터는 인권관련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UN 인권관련 기관, 유럽연합 기본권기구(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유럽 국가 인권기구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NHRI) 등이 있음. 국내 주요 협력 대상으로는 국회(The Parliament)가 있으며, 최근 관련된 민간단체와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sup>548)</sup>

(3) 인권대표단(The Human Rights Delegation)

(가) 법으로 명시된 인권대표단의 주요 기능 및 권한은 아래와 같음.<sup>549)</sup>

- ① 원칙상 원대하고 또 중요한(far-reaching and important in principle) 기본권 및 인권 관련 문제들을 처리함.
- ② 매년 인권센터(The Human Rights Centre)의 연간 활동 계획 및 연간 보고서를 승인.
- ③ 기본권 및 인권 분야의 국가적 협력 활동가로서 역할 수행.
- ④ 인권대표단은 활동을 위해 업무 위원회(A work Committee)와 분과(sections)를 만들 수 있으며, 활동규칙(Rules of Procedure)을 도입할 수 있음.

(나) 인권대표단의 분과는 다음과 같음

- ① 활동(가) 인권 교육 및 연수 분과(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ection): 본 분과는 2012년 국가 인권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기초연구의 실무단으로 탄생하였음. 인권대표단 외에 학계 및 인권 분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영입하였으며, 2015년 총 세 번의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인권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기초연구의 실효성 모니터링, 유엔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UN World Programme for

547) 각 성명의 제목 및 요약은 2015 인권센터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5) p20-21에서 찾아볼 수 있음.

548)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21-24.

549)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2002, 2011년 개정), 제 3장 a, 19조 e.

- Human Rights Education), 기초 및 중등 핵심교육과정 개혁, 및 인권 센터의 기본권 및 인권분야 활동 보고에 관해 논의함.<sup>550)</sup>
- 기본권 및 인권 실현 모니터링 분과(Section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Fundamental and Human Rights): 2015년에 이루어진 총선으로 인해 새 정부의 기본권 및 인권에 관한 규칙 미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관한 국가보고서의 미완성으로 인해, 한 번의 회의만 소집.<sup>551)</sup>
  - 장애분과 설립을 위한 업무위원회 (Working Group for Preparing the Establishment of a Disability Section):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분과의 설립을 결정. 장애인 기관의 대표들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영입하였으며, 외무부, 비차별 옴부즈맨, 국회 옴부즈맨 등의 정부 기관 대표들이 전문가로 참여.<sup>552)</sup>

#### 바) 특이사항

핀란드 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는 옴부즈맨, 인권 센터, 인권대표단의 세 기관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세 기관은 법에 의해 공통적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의 증진, 보호, 관리, 및 이행의 역할을 수행함.<sup>553)</sup>

####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핀란드 국가인권기구 (Finnis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는 GANHRI심사에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A등급 유지.<sup>554)</sup>

550)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31.

551)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31.

552)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2015(Annual Report 2015)』, 2015, p32-33.

553) <http://www.ihmisoikeuskeskus.fi/in-english/who-we-are/human-rights-centre/>  
(검색일 2016. 9. 12)

554)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 18) 그리스

그리스 국가 정보 <sup>555)</sup>	
면적	131,957km <sup>2</sup>
인구	약 1,078만명
수도	아테네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민족	그리스인(93%) ('01, CIA Factbook)
주요언어	그리스어
주요종교	그리스정교(98%), 이슬람교(1.3%), 기타(0.3%)
GDP	GDP : 2,843불('14, CIA)
	1인당 GDP : 25,800불('14, IMF)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Greek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GNCHR)<sup>556)</sup>
- (2) 설립연도: 2000년 1월 10일
- (3) 설립배경: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으로는 유럽연합의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1993)을 들 수 있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하는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 등 국제기구들의 영향을 받음. 인권 보호의 발전을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스 시민에게 인권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그리스 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근대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필요성이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원동력이 됨.<sup>557)</sup>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1998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sup>558)</sup>: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을

555)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0.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0.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9. 9)

556) 공식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www.nchr.gr/index.php/en> (검색일 2016. 9. 26)

557) <http://www.nchr.gr/index.php/en/2013-04-03-10-13-40/2013-04-03-10-14-20> (검색일 2016. 9. 26)

558) <http://www.nchr.gr/index.php/en/2013-04-03-10-13-40/2013-04-03-10-15-59>

기반으로 설립되었음. 동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은 총리(Prime Minister)실 소속 독립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sup>559)</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위원: 그리스 국가위원회는 의장(President, 1명), 부의장(Vice President, 2명), 5개의 분과위원회(Sub-Commissions)로 구성.<sup>560)</sup> 위원은 총 32명이며, 부 위원을 포함한 전체 수는 64명임.<sup>561)</sup>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① 시민·정치권 분과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 ② 사회·경제·문화권 분과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Social, Economic and Culture Rights)
- ③ 이민자에 대한 인권적용 분과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Aliens)

---

(검색일 2016.11.21.)

559)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1조 1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음(Art.1.1. The Greek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GNCHR) is the independent advisory body to the State on matters pertaining to human rights protection.). 동조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음(Art.1.2. The GNCHR is attached to the Prime Minister and is supported as to its staffing and infrastructure by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이하 생략) <http://www.nchr.gr/index.php/en/2013-04-03-10-13-40/2013-04-03-10-15-59> (검색일 2016. 11. 21) 그러나 별도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및 UN 제출 보고서에는 독립기관으로 표기하고 있음.

560) <http://www.nchr.gr/index.php/en/2013-04-03-10-13-40/2013-04-03-10-15-08>  
(검색일: 2016. 9. 27)

561) 의장 및 부의장, 위원 및 부위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nchr.gr/index.php/en/2013-04-03-10-13-40/2013-04-03-10-14-44>  
(검색일: 2016. 9. 27)

④ 인권증진 분과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⑤국제소통·협력 분과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나) 사무국(Secretariat): 사무국의 수장은 의장(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이며<sup>562</sup>,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 1명) 및 사무직원(3명)으로 구성.<sup>563</sup> 현재는 2 명의 사무직원을 두고 있음.

(2) 지역사무소

2003년 수도 아테네(Athens)에 별도의 부지를 얻어 사무소를 개소하였음. 지역사무소는 없음.

(3) 예산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현재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행정은 총리실 산하 정부 사무국(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sup>564</sup>에 의해 관리되며, 예산 역시 해당 부처에서 관리.<sup>565</sup>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을 위한 예산 사용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노력 중으로 보고됨.<sup>566</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 의장(President) 및 부의장(Vice-President, 2명)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The outgoing President)이 서면으로 위원 회

562)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1 “Constitution and mission” paragraph 3(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1조 “설립과 임무” 3항): The Commission shall have its own secretariat.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shall be in charge of the secretariat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의 관리는 의장이 한다.)

563)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8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paragraph 1(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8조 “위원회 사무국” 1항): One (1) post of secretary and three (3) posts for secretarial and technical support of the Commission are hereby constituted. (본 조항으로 사무국장직의 1석과, 사무및기술 지원을 위한 3석이 설치된다)

564)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www.ggk.gov.gr/?page\\_id=334](http://www.ggk.gov.gr/?page_id=334) (검색일: 2016. 9. 27)

565)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 p11.

566)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 p5.

의를 소집하여,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논의함. 의장 및 부의장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중,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됨.<sup>567)</sup>

(나) 위원(Members of the Commission)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은 총리(Prime Minister)가 임명함.<sup>568)</sup>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으로 구성됨.<sup>569)</sup>

- 기관의 투명성에 관한 국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The President of the Special Parliamentary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 그리스 노동총동맹의 대표(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of Greece) 1명과, 그리스 공공노조연맹(Supreme Administration of Unions of Civil Servants)의 대표 1명.
- 4명의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organisations)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발하며, 해당 비정부기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함. 동법의 제 9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개의 비정부기관의 대표를 추가적으로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의회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한 정당에서 1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
- 그리스 소비자 옴부즈맨(The Hellenic Consumer's Ombudsman)
- 그리스 옴부즈맨(The Greek Ombudsman)
- 개인정보보호국(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국장에 의해 추천된 1명.

---

567)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2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paragraph 4(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4항): 해당 조항 직접 인용.

568)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2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paragraph 3(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3항):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ir alternates shall be appointed by a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for a term of office of three (3) years. The term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take part in its first composition expires, irrespective of the date of their appointment, on 15 March 2003 (as amended by Law 3051/2002) (위원회의 정위원 및 부위원의 임명은 총리가 하며, 임명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의 창립위원의 임기는 임명시기에 관계없이 2003년 3월 15일로 종료된다)

569)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2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paragraph 1(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항): 해당 조항 직접 인용.

- 공영방송위원회(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Council) 위원장에 의해 추천된 1명.
  - 생물학, 유전학 및 의학 분야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National Bioethics Commission)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된 1명.
  - 총리(Prime Minister)의 지명을 받은 인권보호 문제에 학식이 풍부한 저명한 인사 2명.
  - 내무·공공행정·지방분권부(Ministry for the Interior, Public Administration & Decentralisation),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공공질서부(Ministry of Public Order), 교육·종교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 Religious Affairs),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언론·매스미디어부(Ministry for the Press and Mass Media, 2004년 해산됨) 장관의 지명을 받은 자.
  - 공법(Public Law) 혹은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분야의 교수 및 부교수(associate professors) 2명.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어떤 종합대학수준의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지를 추천하여 선정함.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은 (a) 아테네 대학의 법학부(the Department of Law of the University of Athens), (b) 테살로니키 대학의 법학부(the Department of Law of the University of Thessaloniki), (c) 트라키아 대학의 법학부(the Department of Law of the University of Thrace), (d) 아테네 대학의 사회과학 및 행정학부(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ity of Athens), (e) 판테이온 대학의 법학부 (the General Department of Law of the Panteion University), (f) 판테이온 대학의 사회과학부(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the Panteion University)와 같음. 위원회는 이 외에도 타 종합대학수준의 교육기관의 학부를 다음 추천에 추가할지 결정할 수 있음.
  - 아테네변호사협회(Athens Bar Association)의 회원 1명.
- (다) 연구원(Research Officer):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3명의 법률연구원(Legal/Research Officers)을 둠. 연구원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근무

하며, 계약서는 갱신될 수 있음. 연구직은 공개채용의 형태로 진행. 투표권을 지닌 다섯 명의 위원에 의해 선발이 되고, 최종 임명은 의장 (the President)에 의해 이루어짐.<sup>570)</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의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지위는 명시된 바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음. 위원회의 권한은 아래 마)를 참조.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가) 위원과 대리위원의 임기는 3년임.<sup>571)</sup>

(나) 법률연구원의 임기는 3년임.<sup>572)</sup>

---

570)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7 “Research Officers” paragraph 1(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7조 “연구원” 1항): Three (3) posts for specialist academic staff, within the meaning of para. 2 of Article 25 of Law 1943/1991 (OGG A 50), on a private law employment contract of a term of three (3) years, are hereby constituted. This contract shall be renewable (as amended by Law 3156/2003). These posts shall be filled following a public invitation by the Commission for applications. Selection from the candidat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5 and 6 of Article 19 of Law 2190/1994 (OGG A 28), as replaced by Article 4 of Law 2527/1997 (OGG A206), by five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have a vote, to be nominated by its President (법령 1943/1991 제 25조 2항의 범위 안에서 3년 임기의 계약으로 세 명의 학계전문가를 채용한다. 계약은 개정법 3156/2003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모집은 공개채용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중 최종선발은 법령 2190/1994 제 19조 2, 5, 6항을 따르며(법령 2527/1997 제 4조로 대체됨), 투표권을 가진 5인의 정위원회에 의해 선발되고, 의장이 임명한다.)

571)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다만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선출 후 위원으로서의 임기까지 의장 및 부의장 직을 맡는 것으로 이해됨.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2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paragraph 3(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3항):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ir alternates shall be appointed by a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for a term of office of three (3) years. The term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take part in its first composition expires, irrespective of the date of their appointment, on 15 March 2003 (as amended by Law 3051/2002) (위원회의 정위원 및 부위원의 임명은 총리가 하며, 임명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의 창립위원의 임기는 임명시기에 관계없이 2003년 3월 15일로 종료된다)

572)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7 “Research Officers” paragraph 1(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7조 “연구원” 1항): Three (3) posts for specialist academic staff, within the meaning of para. 2 of Article 25 of Law 1943/1991 (OGG A 50), on a private law employment contract of a term of three (3) years, are hereby constituted. This contract shall be renewable (as amended by Law 3156/2003).

- (다) 재임 관련 자료 없음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573)</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 (1)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sup>574)</sup>
  - (가) 지속적으로 인권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리스 국민에게 인권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인권관련 심층연구 진행
  - (나) UN, 유럽의회,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와의 인권관련 교류
  -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책 제안
- (2) 이외에도 설립법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임무에 관해 따로 명시하고 있음.<sup>575)</sup>
  - (가) 정부나 국회의장회의 혹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비정부기관에 의해 제시된 인권보호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사 실시
  - (나)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어, 권고나 제안서 제출, 연구 진행, 보고서 제출, 입법 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의견서 제출, 실행
  - (다) 인권존중에 관한
  - (라) 교육제도 내 인권존중 함양을 위한 계획 착수
  - (마) 국제기구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보고서 등에 인권 문제에 관한 의견

---

These posts shall be filled following a public invitation by the Commission for applications. Selection from the candidat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5 and 6 of Article 19 of Law 2190/1994 (OGG A 28), as replaced by Article 4 of Law 2527/1997 (OGG A206), by five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have a vote, to be nominated by its President (법령 1943/1991 제 25조 2항의 범위 안에서 3년 임기의 계약으로 세 명의 학계전문가를 채용한다. 계약은 개정법 3156/2003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모집은 공개채용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중 최종선발은 법령 2190/1994 제 19조 2, 5, 6항을 따르며(법령 2527/1997 제 4조로 대체됨), 투표권을 가진 5인의 정위원에 의해 선발되고, 의장이 임명한다.)

573) 해당 자료 찾을 수 없음.

574)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1 “Constitution and mission” paragraph 5(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1조 “설립과 임무” 5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575)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1 “Constitution and mission” paragraph 6(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1조 “설립과 임무” 6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 송부

- (바) 국제기구, 타 국가들의 인권관련기구, 국내 혹은 국제적 비정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 (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치를 상기
- (아) 인권보호 관련 연간보고서를 발간. 연간보고서는 매년 그리스 총리, 국회의장, 그리스 국회 및 유럽의회 정당의 대표에게 제출됨.<sup>576)</sup>
- (자) 그리스의 입법과정이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가 내 해당기관에 의견 송부

### (3) 위 임무에 따른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가) 그리스 국가위원회 결의안, 결정, 견해 및 언론보도 활동

① 결의안 및 견해 발표: 다음의 활동내용은 그리스 인권위원회 2014년 연간보고서<sup>577)</sup>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으로서, 그리스 인권위원회의 중점 관심분야 및 활동분야가 소개되어 있음.

- 워터 이니셔티브: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법에 근거하여 인권관련 국가 자문기구로 활동할 수 있음.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에 대한 권리(Rights to Water)가 헌법에 포함될 것을 제안하는 권고사항을 발표. 물에 대한 권리는 삶 및 생존에 관한 권리,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 위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한 권리 등을 포함함.<sup>578)</sup> 본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및 결정사안에 대해 발표.<sup>579)</sup>
-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결의(건강 및 복지):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그리스 국내 상황에 맞는

576) Law 2667/1998 establishing the GNCHR, art.5 “Annual Report”(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5조 “연간보고서”): The Commission shall by the end of January of each year submit its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of Parliament, and the leaders of the political parties which are represented in the nationa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1월 말일까지 총리, 국회의장, 그리스 국회 및 유럽의회의 정당 대표에게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77)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자료 중, 2014년 자료가 가장 최신임.

578)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25-38

579)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77-179

일곱 가지 권고내용을 발표.<sup>580)</sup>

- 특수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2008년 발표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2014년 특수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에 부쳐졌으며, 의회에는 상정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부쳐진 법안의 초안에 관한 견해를 제시.<sup>581)</sup>
  -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ESC) 및 유럽사회헌장추가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Social Charter): 그리스 노동·사회보장·복지부(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and Welfare)는 유럽사회헌장 및 이의 추가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서를 그리스 인권위원회에 보내왔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sup>582)</sup>
  - 국제장애인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실천에 관한 보고: 그리스 국내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준수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 특히 법안의 미비 및 지자체의 실천미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동개선을 촉구.<sup>583)</sup>
  - 노인권리보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노인권리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짐. 이에,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수준 및 유럽연합수준, 그리고 국내수준에서의 접근방향 및 제안 제시.<sup>584)</sup>
- ② 언론보도: 그리스 인권위원회는 2014년 총 다섯 차례의 언론보도를 진행. 주요 내용으로는 그리스 내 심화되고 있는 난민에 관한 문제(유럽연합의 역할 분담 촉구, 그리스 내 난민관련 법 제정 등)와 교도소 등 수감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음.<sup>585)</sup>

(나) 국내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한 기고(Contribution)

- ① 국내기관에 대한 기고: 2014년 총 세 건의 서한을 그리스 경찰청장

580)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48-51

581)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52-63.

582)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64-77.

583)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78-79.

584)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80-105.

585)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15-118

(Chief of the Hellenic Police Force), 법무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외교부 인권과장(Director of the Human Rights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게 보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촉구.<sup>586)</sup>

② 국제기구에 대한 기고

- 보고서 제출: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실천상황에 대한 두 번째 정기보고서를 제출.<sup>587)</sup>
- 구두 발표(Oral Statement):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7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연례회의'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 및 국가인권기구(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예방기구(National monitoring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구두 발표 진행.<sup>588)</sup>
- 발표 및 보고사항: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의 회의에서 “제한된 예산 조달, 긴축정책 및 인권침해에 관한 경험(Experienc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austerity measures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t a time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라는 주제로 발표 및 보고서 작성<sup>589)</sup>

(다) 국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

- ① 국내기관과의 협력: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회의참여,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Group), 및 다수의 인

586)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21-122.

587) 보고서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 (검색일: 2017. 9. 28)

588)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46-147.

589)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47-157.

권 관련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국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도모.<sup>590)</sup>

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럽의회 인권대표사무소(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기본권기구(Fundamental Rights Agency, FRA), 유럽평등기구연합(The European Network of Equality Bodies, Equinet), 유럽 국가인권기구연합(European Network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Human Rights) 등의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sup>591)</sup>

바) 특이사항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진정사례는 담당하고 있지 않음.<sup>592)</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GANHRI심사에서 2007년, 2009, 그리고 2010년에 A등급을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B등급으로 강등될 것으로 전망.<sup>593)</sup>

19) 헝가리

헝가리 국가 정보 <sup>594)</sup>	
면적	93,030km <sup>2</sup>
인구	약 985만명
수도	부다페스트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민족	마자르인(94.5%), 독일인(0.6%), 슬로바키아인, 남슬라브인 등(1.9%)
주요언어	헝가리어
주요종교	카톨릭(54.5%), 개신교(19.5%), 기타(26%)
GDP	GDP : 1,370억불('14, EIU 및 헝가리통계청)
	1인당 GDP : 24,450불('14, EIU 및 헝가리통계청)

590)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71-174.

591)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4, p171.

592)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GRC/INT_CCPR_NHS_GRC_21794_E.pdf), p2.

593)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594)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97.jsp?menu=m\\_4](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97.jsp?menu=m_4)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헝가리 기본권위원회(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sup>595)</sup>
- (2) 설립연도: 2012년
- (3) 설립배경: 2010년 총선에서 Fidesz-KDNP 연합당이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함에 따라, 새로운 헌법 및 여러 분야의 법이 개정됨. 2011년 개정된 헌법(헝가리기본법,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과 헝가리 기본권 위원에 관한 법령(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은 헝가리 내 새로운 옴부즈맨 사무소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sup>596)</sup> 이에 따라, 기존 두 개의 특별 옴부즈맨 사무소인 소수민족권리 옴부즈맨 (Parliamentary Commissioners for the Rights of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과 미래세대이해 옴부즈맨(Parliamentary Commissioners for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이 하나의 옴부즈맨(general ombudsman)사무소로 편입됨. 개정된 법령은 기존의 옴부즈맨의 역할을 헝가리 기본권위원을 통해 보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15년간 옴부즈맨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sup>597)</sup>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에 관한 법령 제 111호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헝가리 기본법 제30조 5항<sup>598)</sup>에 따라 헝가리 기본법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법령

---

0\_50\_20 (검색일 2016. 9. 9)

595)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s://www.ajbh.hu/en/web/ajbh-en/main\\_page](https://www.ajbh.hu/en/web/ajbh-en/main_page).

596)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2012년 헝가리 기본권 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of Hungary in the Year 2012)』, 2012, p23.

597)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2012년 헝가리 기본권 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of Hungary in the Year 2012)』, 2012, p23.

598)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art.30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paragraph 5 (헝가리 기본법 제 30조 “기본권 위원회” 5항): The detailed rules for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or her deputies shall be laid down in an Act. (헝가리 기본권 위원 및 부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규칙은 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을 채택. 이에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에 관한 법령에는 기본권 위원회의 임무(duties), 권한(mandate), 사무소(office), 임무수행 절차 및 방법(proceedings and measures) 등이 명시되어 있음.<sup>599)</sup>

(나) 헝가리 기본법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헝가리 기본법은 2011년 4월 18일 헝가리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2013년 10월 1일 최종 발의된 법안이 효력을 지님.<sup>600)</sup>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의 설치 관련된 내용은 제 30조 “헝가리 기본권 위원(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sup>5</sup>항에 명시.<sup>601)</sup>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위원 및 부위원: 2011년 개정된 법령에 의해 헝가리 기본법위원회(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는 위원(The Commissioner)과 2명의 부위원(Deputy Commissioner)로 구성

① 위원(The Commissioner)은 헝가리 옴부즈맨(Ombudsman 혹은 general Ombudsman)으로 표기

② 2명의 부위원은(Deputy Commissioners)은 임무수행 시, 각각의 담당 분야에 따라 미래세대 이해 보호(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를 담당하는 부위원은 ‘미래세대 옴부즈맨

599)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에 관한 법령 제111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ajbh.hu/en/web/ajbh-en/act-cxi-of-2011> (검색일 2016. 9. 22)

600) 헝가리 기본법(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의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www.mfa.gov.hu/NR/rdonlyres/8204FB28-BF22-481A-9426-D2761D10EC7C/0/FUNDAMENTALLAWOFHUNGARYmostrecentversion01102013.pdf> (검색일 2016. 9. 22)

601)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art.30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paragraph 5 (헝가리 기본법 제 30조 “기본권 위원회” 5항): The detailed rules for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or her deputies shall be laid down in an Act. (헝가리 기본권 위원 및 부위원에 관한 자세한 규칙은 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Ombudsman for Future Generations)’으로,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를 담당하는 부위원은 ‘소수민족권리 옴부즈맨(Ombudsman for the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으로서의 직함을 사용할 수 있음.<sup>602)</sup>

(나)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 헝가리 기본법위원회는 행정업무는 사무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사무국(Secretariat General)에 의해 처리됨. 사무국은 아홉 개의 하위 부서로 나뉘며, 각각의 부서명은 아래와 같음.<sup>603)</sup>

- ① 경영 및 인적자원 부(Department for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 ② 총무 및 IT 부(Department for IT and Administration)
- ③ 일반민원 및 소수민족부(Department for General Inquiries and National Minority Rights)
- ④ 평등 및 아동권리부(Department for Equal Opportunities and Children’s Rights)
- ⑤ 행정사건 및 환경보호부(Department for Administrative Cas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⑥ 공법 부(Department of Public Law)
- ⑦ OPCAT 국가예방기구(OPCAT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epartment)
- ⑧ 공익 보호 및 민원인담당 부(Departmen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Client Service)
- ⑨ 국제 및 홍보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and Public Relations)

(2) 지역사무소

헝가리 기본권위원 사무소는 수도인 부다페스트(Budapest)에 위치.<sup>604)</sup>

---

602)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 “The tasks and competenc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3(4)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임무와 권한” 제 5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03) [http://www.ajbh.hu/documents/14315/130159/Organisation\\_20151014.pdf/cd75be45-e5f0-49bb-9290-c943ef231be8](http://www.ajbh.hu/documents/14315/130159/Organisation_20151014.pdf/cd75be45-e5f0-49bb-9290-c943ef231be8) (검색일 2016. 9. 22)

지역사무소는 없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헝가리 기본권위원회는 중앙예산(Central Budget)에서 독립적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에 의해 운용됨.<sup>605)</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자격요건: 헝가리 시민 중, 법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추고 있고, 아래에 제시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위원(The Commissioner) 및 부위원(Deputy Commissioners)으로 선출될 수 있음.<sup>606)</sup> 조건은 아래와 같음.<sup>607)</sup>

- ① 법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나, 적어도 십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 (lawyers)

604) <http://www.ajbh.hu/en/web/ajbh-en/contacts> (검색일: 2016. 9. 22)

605)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5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1(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5장 “기본권위원회 사무소” 제 41조 3항): 해당 법령 직접 인용. 예산규모는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음.

606)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5(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5 조 1항): Any Hungarian citizen may be elected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or his or her Deputy if he or she has a law degree, has the right to stand as a candidate in elections of Members of Parliament and meets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this Section (헝가리 시민이며, 법 관련 학위가 있고, 국회의원에 출마 자격이 있고, 본 조에 열거된 자격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기본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607)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5(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5 조 2항): Parliament shall elect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from among those lawyers who have outstanding theoretical knowledge or at least ten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have reached the age of thirty-five years and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in conducting or supervising proceedings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or in the scientific theory of such proceedings (국회는 법조인 중 해당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겸비하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자, 최소 서른다섯 세 이상이며, 기본법 관련 소송절차를 시행하거나 감독, 혹은 이에 관한 이해도에 있어 상당한 경험을 지닌 사람을 기본권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한다)

- ② 만 서른다섯 세 이상인 자
- ③ 임무 관련된 소송절차를 진행 및 감독하거나, 소송절차 관련 지식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지닌 자
  - 위원(The Commissioner)은 기본권 관련 법적 소송절차
  - 부 위원(Deputy Commissioner)은 각자 맡은 부서에 따라 미래세대 이해보호(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와<sup>608)</sup>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보호(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에 관한 임무로 나뉘며, 이에 각각의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를 요구<sup>609)</sup>
- ④ 부적격요건: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의 위원 혹은 부위원으로 선출 전, 4년 동안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 사람은 당선될 수 없음.<sup>610)</sup>

608)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5(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5 조 3항): Parliament shall elect the Deputy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from among those lawyer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thirty-five years, have outstanding theoretical knowledge or at least ten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and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in conducting or supervising proceedings affecting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or in the scientific theory of such proceedings (국회는 법조인 중 최소 서른다섯 세 이상이고, 미래세대의 이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감독하는데 상당함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에 관한 뛰어난 이해도를 지닌 사람을 미래세대이해 보호를 담당하는 부위원으로 선출한다)

609)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5(4)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5 조 4항): Parliament shall elect the Deputy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 from among those lawyer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thirty-five years, have outstanding theoretical knowledge or at least ten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and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in conducting or supervising proceedings affecting the right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 or in the scientific theory of such proceedings (국회는 법조인 중 최소 서른다섯 세 이상이고, 헝가리내 소수민족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감독하는데 상당함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에 관한 뛰어난 이해도를 지닌 사람을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위원으로 선출한다)

610)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5(5)

- 헝가리 국회의원(Member of Parliament)
- 유럽의회의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 헝가리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 정부 공무원(Member of the Government)
- 차관(state secretary) 및 부차관(deputy state secretary)
- 상임서기(permanent state secretary)
- 지자체 및 소수민족자치단체 소속 공무원(member of a local government body/a nationality self-government)
- 시장(mayor) 및 부시장(Deputy mayor)
- 군복무자(professional member of the Hungarian Defence Forces)
- 사법당국 종사자나 법률집행관련 종사자(professional member of the law-enforcement organs or of organs performing law-enforcement tasks)
- 정당에 소속된 당원(the officer or employee of a political party)

(나) 임명절차

- ① 위원(The Commissioner): 위원 후보자 선발은 헝가리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Republic)이 현직 위원의 임기만료 90일에서 45일 전 완료하여야 함.<sup>611)</sup>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가 국회에서 위원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30일 이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함.<sup>612)</sup> 국회 위원회(The Committee of Parliament)는 청문회<sup>613)</sup>를 통

---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5조 5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11)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 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6(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6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12)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6(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6조 3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13)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6(4)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6조 4항): The person proposed for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hall be

해 후보자 자질검증을 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위원(The Commissioner)을 임명함.<sup>614)</sup>

- ② 부위원(Deputy Commissioner): 위원(The Commissioner)은 현재 부위원(Deputy Commissioner)의 임기만료 90일부터 45일 전 사이에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함.<sup>615)</sup> 위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은 30일 이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함.<sup>616)</sup> 두 명의 부위원 중, 헝가리 시민의 권리보호(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를 담당하는 위원의 추천은 헝가리 국가 소수민족자치단체(National Nationality self-governments)으로부터 의견을 수렴.<sup>617)</sup> 부위원 후보자는 국회

---

given a hearing by the committee of Parliament competent according to the task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기본권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위원으로서의 임무에 따라 국회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야한다)

- 614)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5(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5 조 2항): Parliament shall elect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from among those lawyers who have outstanding theoretical knowledge or at least ten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have reached the age of thirty-five years and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in conducting or supervising proceedings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or in the scientific theory of such proceedings (국회는 법조인 중, 법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가지거나, 해당 분야에서 십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서른다섯 세 이상이며 기본권 관련 법적인 소송절차를 실행 및 감독하는데 상당한 경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이해도를 지닌 자를 기본권위원회 사무소의 위원으로 선출한다)
- 615)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7(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7 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 616)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7(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7 조 3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 617)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7(4)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7 조 4항):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hall - before making his or her proposal for the person of the Deputy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 -

위원회(The committee of Parliament)의 청문회<sup>618)</sup>를 거치며, 국회가 최종 임명함.<sup>619)</sup>

③ 정족수: 위원 및 부위원의 선출을 위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임.<sup>620)</sup>

(다) 사무소 직원: 기본권위원회의 직원은 공무원(Public Servants)으로 일하게 되며, 임용 및 해임에 대한 권한은 위원(The Commissioner)이 가지고 있음.<sup>621)</sup>

---

request an opinion from the national nationality self-governments (헝가리 내 소수 민족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위원의 선발은 추천 전에, 헝가리 국가 소수민족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618)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7(5)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7조 5항): The person proposed for Deputy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hall be given a hearing by the committee of Parliament competent according to the tasks of the Deputy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기본권 위원회의 부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부위원으로서의 임무에 따라 국회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야한다)

619)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2, “El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4(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2절 “기본권 위원과 부위원 선출” 제 4조 1항): Parliament shall elect the Deputy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nd the Deputy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 at the proposal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미래세대이해 보호 담당 부위원 및 헝가리 내 소수민족권의 보호 담당 부위원의 선출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임명한다)

620)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art.30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paragraph 3.

621)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5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2(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5장 “기본권위원회 사무소” 제 42조 3항): Public servants employed by the Office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or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s referred to in subsection (4), by either Deputy Comm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in other respects the employer’s rights over these public servants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retary General.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ughts shall endeavour to give due representation to women, ethnic, minority and disadvantaged groups in the personnel of the Office (사무소에 고용된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의 권한은 가지며 위원이 가지며, 제 4관에 언급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위원이 그 권한을 가진다. 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이 밖의 고용인으로서의 권한은 사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지위에 대하여는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다만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음.  
 (가) 위원: 위원의 기본급여는 장관(Minister)과 동일하며, 경영관리에 대한 급여는 장관의 1.5배로 책정됨.<sup>622)</sup>  
 (나) 부위원: 부위원의 기본급여는 차관(State Secretary)<sup>623)</sup>  
 (다) 사무국장: 사무국장의 급여는 차관(State Secretary)과 동일함.<sup>624)</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위원은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으며, 오로지 법률(Acts)에만 종속되고, 임무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음.<sup>625)</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과 부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재임은 한 번만 가능<sup>626)</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

무국장이 지닌다. 위원은 사무소의 인원 구성 시 여성, 민족, 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 622)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 5, “Legal Status and Remunera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12(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5절 “기본권 위원 및 부위원의 법적 지위 및 보수”제 12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 623)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 5, “Legal Status and Remunera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12(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5절 “기본권 위원 및 부위원의 법적 지위 및 보수”제 412조 2항): The Deputy Commissioners for Fundamental Rights shall be entitled to a salary and allowances identical to those of a state secretary (기본권위원회사무소의 부위원은 차관과 동일한 봉급을 보장받는다)
- 624)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5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2(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5장 “기본권위원회 사무소” 제 42조 2항): The Secretary General shall be entitled to a salary and allowances identical to those of a state secretary and to forty working days of leave per calendar year (사무국장은 차관과 동일한 봉급을 보장받고, 일 년간 40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 625)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 5, “Legal Status and Remuneration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12(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5절 “기본권 위원 및 부위원의 법적 지위 및 보수”제 11조): 해당 법령 직접인용.
- 626) <http://www.ajbh.hu/en/web/ajbh-en/about-the-office> (검색일 2016. 9. 22)

(가) 위원과 부위원은 국회의원(Members of Parliament)와 동일한 면책특권을 지님.<sup>627)</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기본권 보호 역할: 헝가리 기본권위원회는 헝가리 기본법(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제 30조 1항에 의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위원(The Commissioner)이 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음.<sup>628)</sup>

(가) 헝가리 기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proceedings ex officio)를 통해 다음의 열거된 집단에 대한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법령에서는 아동의 권리, 기본법 P조에 명시된 가치들(본 법령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이익이라고 칭함), 기본법 XXIX조에 정의된 권리들(본 법령에서는 헝가리 내 소수민족의 권리로 칭함),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명시함.<sup>629)</sup>

(나) UN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의 헝가리 내 실천을 장려, 보호, 및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sup>630)</sup>

---

627)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 6, “Immunity”, section 14(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6절 “면책”제 14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28)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art.30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paragraph 1(헝가리 기본법 제 30조 “기본권 위원회” 1항: 해당 항 직접인용.

629)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 “The tasks and competenc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1(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절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임무와 권한” 제 1조 2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30)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 “The tasks and competenc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1(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절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임무와 권한” 제 1조 3항): In the course of his or her activities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hall - especially by conducting proceedings ex officio - pay special attention to assisting, protecting and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mulgated by Act XCII of 2007 (기본위원회 위원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2007년 제92 법령으로 공포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천을 장려, 보호 및 감찰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OPCAT)의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sup>631)</sup>
- (라) 미래세대이익 보호를 담당하는 부위원(Deputy Commissioner)은 이의 집행 상황을 감찰해야 함.<sup>632)</sup> 법으로 명시된 활동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sup>633)</sup>
- ① 정기적으로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대중에게 미래세대이익의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함.
  - ②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대중에게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권리침해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상기시킴.
  - ③ 국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실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④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한 법의 신설 및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 (마)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부 위원(Deputy Commissioner)은 이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함.<sup>634)</sup> 법으로 명시된 역할은 다음과 같음.<sup>635)</sup>

631)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 “The tasks and competenc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2(6)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절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임무와 권한” 제 2조 6항):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hall perform the tasks related to 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romulgated by Act CXLIII of 2011 (기본권위원회 위원은 2011년 공포된 헝가리 법령 제143에 따라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의 국가예방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632)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 “The tasks and competenc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3(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절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임무와 권한” 제 3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33) 부 위원의 임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의 제 1장 1절 3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음.

634)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 “The tasks and competenc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of his or her Deputies”, section 3(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절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임무와 권한” 제 3조 2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 ① 정기적으로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대중에게 헝가리 내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야 함.
- ②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대중에게 헝가리 내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리침해의 위협성에 대해 주의를 상기시킴.
- ③ 정부의 사회통합전략(Government's Social Inclusion Strategy)을 검토하고, 헝가리 내 소수민족과 관련된 목표들의 실천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 ④ 헝가리 내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법의 신설 및 개정을 제시할 수 있음.

## (2) 진정

### (가) 진정

- ① 진정(petition)을 내는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현재 존재하는 행정상의 법적 제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에 알맞은 법적 제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위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진정의 대상은 행정부서(public administration organ), 지방정부(a local government), 소수민족 자치정부(a nationality self-government), 공공기관(a public body with mandatory membership), 국가방위기관(the Hungarian Defence Forces), 사법기관(a law-enforcement organ), 국가 공공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타 모든 기관들 (any other organs acting in its public administration competence)이 있음.<sup>635)</sup> 그러나 기본권 위원은 다음의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진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그 기관으로는 국회(Parliament),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국가회계국(the State Audit Office), 법정(the courts), 조사 담당부서를 제외한 검찰(the Prosecution Service,

635) 부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의 제 1장 1절 3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음.

636)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9, "Proceeding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18(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9절 "기본권 위원회의 절차" 제 18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with the exception of the investigation organs of the Prosecution Service)이 있음.<sup>637)</sup>

- ② 위원은 진정이 법령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근거 없는 진정이거나, 신청사항에 대한 새로운 내용 및 사실에 대한 추가 없이 반복적으로 제출된 진정, 진정을 제출한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음.<sup>638)</sup>

(나) 진정조사(inquiries)

- ① 위원은 제출된 진정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령(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에 제시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sup>639)</sup>
- ②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위원은 다음의 권한을 지님.
  - 위원은 조사대상에 기존에 진행한 조사 내용 및 조사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sup>640)</sup>
  - 위원은 조사를 위해 대상 기관의 장(head of the authority), 감독 기관의 장(head of its supervisory authority), 부서의 장(head of the organ)등을 소환할 수 있음.<sup>641)</sup>
  - 위원은 공청회(public hearing)에 참여할 수 있음.<sup>642)</sup>

---

637)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9, “Proceeding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18(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9절 “기본권 위원의 절차” 제 18조 3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38)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9, “Proceeding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0(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9절 “기본권 위원의 절차” 제 20조 2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39)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9, “Proceeding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0(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9절 “기본권 위원의 절차” 제 20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40)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1(1)(a)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1조 1항(a)): 해당 법령 직접인용.

641)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1(1)(b)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1조 1항(b)): 해당 법령 직접인용.

- 위원은 현장조사(on-site inspections)를 실시할 수 있음.<sup>643)</sup>
- ③ 현장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권한을 지닌 위원 및 위원회 직원 (staff)은 다음의 권한을 지님.
  - 법적인 규제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조사를 위해 기관의 부지에 출입할 수 있음.<sup>644)</sup>
  -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열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복사 및 추출이 가능.<sup>645)</sup>
  - 조사 대상인 기관의 어떤 직원에게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음.<sup>646)</sup>
- ④ 기본권위원회의 조사 실시 및 계획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은 위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sup>647)</sup>.

642)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1(1)(c)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1조 1항(c)): 해당 법령 직접 인용.

643)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1(1)(d)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1조 1항(d)): 해당 법령 직접 인용.

644)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2(1)(a)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2조 1항(a)): 해당 법령 직접 인용.

645)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2(1)(b)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2조 1항(b)): 해당 법령 직접 인용.

646)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1(1)(d)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2조 1항(b)): 해당 법령 직접 인용.

647)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0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25(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사” 제 25조 1항: In the interest of conducting and planning the inquir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the authority subject to inquiry, the head of the authority subject to inquiry, the head of the supervisory organ of the authority subject to inquiry, the head of the organ otherwise authorised by a legal rule to conduct inquiries and the employees of the authority subject to inquiry shall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s determined in subsection (1) of

(다) 진정조사에 따른 조치(measures)

- ① 진행한 조사에 기반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  
은 해당 사항의 시정을 위해 조사대상 기관의 감독부서(the  
supervisory organ of the authority subject to inquiry)에 권고 사항  
을 보낼 수 있으며, 동시에 조사대상이 된 기관에도 공지를 하여야  
함. 권고사항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입장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야함.<sup>648)</sup>
- ②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위원은 기존 권고사항에  
대한 유지(maintenance), 수정(amendment) 및 철회(withdrawal)를  
알려야 함.<sup>649)</sup>
- ③ 권고사항의 수정이 있을 경우, 이는 조사에 대한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간주됨.<sup>650)</sup>
- ④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감독기관이 부재할 경우, 위원은 직접 권  
고사항을 전달해야 함.<sup>651)</sup>

(라) 진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15년 접수된 진정은 총 8240개로, 이 중  
5440건은 2015년 종결되었고, 886건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며, 3686건의 조사는 연말까지 종결되기를 앞두고 있  
음.<sup>652)</sup>

---

Section 21 (조사의 실시 및 계획을 위해, 조사대상이 되는 권위체, 권위체의 장, 권위  
체의 감독기관의 장, 기관의 장, 기관의 구성원은 동 법 제 21조 1항에 명시된 사례에  
서 기본권 위원과의 협력을 해야한다)

648)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1 “Measur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31(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치” 제 31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49)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1 “Measur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31(2)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치” 제 31조 2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0)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1 “Measur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31(3)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치” 제 31조 3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1)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rc.11 “Measur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31(4)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 10절 “기본권 위원의 조치” 제 31조 4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2)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Deputies)』,

(3) 보고서 발간

(가) 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sup>653)</sup>

(나) 연간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① 동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 제시된 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기본권 수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sup>654)</sup>
- ② 민원의 수렴,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정보<sup>655)</sup>
- ③ 기본권 침해 통계를 바탕으로 내린 현재 기본권 상황에 대한 평가<sup>656)</sup>

(라) 활동

(가) 기본권 보호활동<sup>657)</sup>

- ① 헌법(기본법,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에 명시된 강조분야에 대한 기본권 보호 활동
  - 아동의 권리보호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 장애인의 기본권보호(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isabled)

---

2015, p52-53.

653)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IV“The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0(1)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4장 “기본권 위원의 연간보고서” 제 4장 40조 1항):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4)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IV“The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0(1)(a)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4장 “기본권 위원의 연간보고서” 제 4장 40조 1항(a)):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5)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IV“The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0(1)(b)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4장 “기본권 위원의 연간보고서” 제 4장 40조 1항(b)):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6) Act CXI of 2011 on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hapter IV“The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section 40(1)(c) (기본권 위원에 관한 2011년 법령 제 111, 제4장 “기본권 위원의 연간보고서” 제 4장 40조 1항(c)): 해당 법령 직접인용.

657) 2015년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은 2015년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Deputies) 10쪽부터 34쪽에 소개되어 있음.

-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리보호(Protection of the rights of most vulnerable social groups)

② 기타 기본권 보호활동으로는 다음이 있음.

- 노숙자 및 주거곤란 개인의 권리 보호(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homeless and other individuals in existential need)
- 환자의 권리보호(Protecting patients' rights)
- 노인문제 (Elderly affairs)
- 지방자치단체 공공종사자의 권리보호(Protecting the rights of municipal public workers)
- 수감자들의 권리 보호(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in confinement)
- 난민 권리 보호(Protection of the rights of refugees)
- 생존 및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권리(Right to life and human dignity)
- 사회권- 사회보장, 의료, 교육에 대한 권리 (Social Rights- right to social security, health and education)

(나)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OPCAT)의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로서 2015년 15곳의 시설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고, 총 8건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sup>658)</sup>

바) 특이사항

헝가리의 국가 특성을 반영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활동 및 미래세대의 이해를 위한 활동이 주요한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음.

(1) 헝가리 내 소수민족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활동: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및 소속 직원들은 총 169건의 포럼, 컨퍼런스, 회의 등 국제 행사에 참여하였음.<sup>659)</sup> 이 외에도 국내에서 172건의 진정 및 직권조사를

658)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Deputies)』, 2015, p38-40.

659)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Report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건분야로는 교육(Education, training, 24건), 사회적 지원활동(Social case, 23건), 주거문제(Accommodation problem), 소수민족(National minority)이 있음.<sup>660)</sup>

- (2) 미래세대의 이해(Interest)를 위한 활동: 미래 세대의 권익보장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및 유럽 ombudsman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타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공동유산의 보호(protecting the common heritage of the nation)를 위해 한 명의 신생아 당 한 그루의 국산나무(indigenous tree)심기 캠페인을 펼쳐 자연과 인간이 미래 세대에 있어 중요한 자원임을 역설. 환경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공해 및 소음이 있음.<sup>661)</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헝가리 기본권위원회(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는 GANHRI심사에서 2014년에 A등급을 받음.<sup>662)</sup>

---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Deputies)』, 2015, p42-45.

660)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Deputies)』, 2015, p45.

661) 헝가리 기본권위원회, 『기본권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and his Deputies)』, 2015, p48-50.

662)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 20) 아일랜드

아일랜드 국가 정보 <sup>663)</sup>	
면적	70,282km <sup>2</sup>
인구	약 489만명(2015)
수도	더블린 (Dublin)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민족	켈트인
주요언어	게일어(모국어), 영어
주요종교	가톨릭(88%), 개신교(3%)
GDP	GDP : 2,459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53,314불('14, World Bank)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The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IHREC)<sup>664)</sup>
- (2) 설립연도: 2014년 11월
- (3) 설립배경: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인권관련 기구였던 아일랜드 인권 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와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의 기능을 합친 아일랜드의 인권 및 평등관련 국가임.<sup>665)</sup> 국제사회에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인권 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로서, 인권 및 평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국내 수준에서,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는 아일랜드 내 1) 인권 및 평등의 보호와 증진, 2) 인권, 평등, 및 다문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 수준에서는 국제인권법, 유럽인권법, 그리고 유럽연합차별방지 및 평등법이 아일랜드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sup>666)</sup>

663)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87.jsp?menu=m\\_40\\_50\\_20#contentAction1](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87.jsp?menu=m_40_50_20#contentAction1) (검색일 2016. 8. 27)

664) 공식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www.ihrec.ie/>. (검색일 2016. 8. 27)

665) About the Commission, Annual Report 2015, Ireland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June 2016, p. 7.

666) <http://www.ihrec.ie/about/> (검색일 2016년 8월 27일).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법(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sup>667)</sup>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 법에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의 설립 및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동법은 먼저 다음의 세 가지를 밝히며,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명시하고 있음.<sup>668)</sup>

(가) 기존의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 및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의 해산을 밝히고, 이들의 모든 기능 및 역할이 새로 설립되는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로 귀속됨을 명시.

(나) 동법을 통해 기존의 고용평등법(the Employment Equality Act, 1998), 평등지위법(the Equal Status Act, 2000), 유럽인권보호조약법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ts, 2003)이 개정됨을 명시하고, 인권위원회의 해산과 더불어 관련 법인 인권위원회법(the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0)을 폐지함을 밝힘.

(다) 동법은 유럽연합 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4년 EU지침 54호 (2014/54/EU)를 수행하는 아일랜드의 국가기관으로서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를 지정하고 있음.

(라) 이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의 역할, 예산, 조직위 및 구성 등이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위원장(the Chief Commissioner), 위원(the Members), 4개의 분과 위원회(subcommittees), 국장(the Director),

---

667)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4/act/25/enacted/en/print>  
(검색일 2016년 8월 27일).

668)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4/act/25/enacted/en/print#sec1>  
(검색일 2016. 8. 27)

그리고 4개의 행정부서로 구성.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2014년 대통령 마이클 히긴스(Michael Higgins)가 임명한 15명의 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에밀리 로건(Emily Logan)이 초기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현재까지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위원회는 다음의 네 개의 분과 위원회, 1)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2) 법률위원회(Legal Case Work Committee), 3) 결산 및 위험 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 4) 입법 검토 위원회(Legislative Review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들은 하나 이상의 분과 위원회에서 의장 혹은 구성원으로서 활동.<sup>669)</sup>

이 외의 행정업무는 국장의 지휘아래 1) 법률 및 정보 (Legal and Information), 2) 공공참여 (Public Engagement), 3) 정책검토 (Policy Review), 4) 법인서비스(Corporate services)의 네 개의 행정 부서에 의해 처리됨. 현재 (2015년 기준) 33명의 직원이 행정부서에 고용되어 있음.<sup>670)</sup>

## (2) 지역사무소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의 본부는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음.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 (가) 예산 규모

2015년 위원회에 할당된 예산의 규모는 633만 유로(€6.33 million, 한화 약 79억 원)임.

이중 324만 유로(€3.24 million, 한화 약 40억 원)는 지출 비용(pay-related expenditure)으로 사용되었고, 309만 유로(€3.09 million, 한화 약 39억 원)는 미지출 관련 비용(non-pay expenditure)으로 처리됨.

약 245만 유로(€2.45 million, 한화 약 31억 원)가 당해 흑자로 (surplus)서 이는 재무부(Exchequer)로 귀속됨<sup>671)</sup>

---

669) Commission Activity and Subcommittees, Annual Report 2015,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Section 5: Corporate Services, June 2016, p. 46.

670) Appendix 4-Commission Staff Members, Annual Report 2015, June 2016, p. 62.

671) Financial Control, Annual Report 2015,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Part5: Corporate Services, 2015, p. 44.

(나) 예산의 독립성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매년 국회로부터 승인된 보조금 (grants)을 지원받는데, 이는 정의평등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Equality)이 공공재정 및 개혁부 장관(Minister for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의 동의를 얻어 지급.<sup>672)</sup>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 법 제27조는 위원회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매년 정의평등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Equality)과 공공 개혁 및 개혁부 장관(Minister for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감사원장과 감사원에 보고됨. 감사원에서 작성한 위원회의 예산 지출 관련 보고서 사본은 국회에 제출됨.<sup>673)</sup>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두 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예산의 계획, 배분 및 검토를 위해서는 자체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를 그리고 내부감사(internal audit function)와 연차결산(annual accounts) 검토를 위해서는 결산 및 위험 위원회 (Audit and Risk Committee)를 두고 있음.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Membership)은 12명 이상, 15명 이하여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위원장(the Chief Commissioner)로서 활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성비는 같아야 함.

(나) 임명: 위원은 대통령이 정부의 자문 및 아일랜드 국회 (the House of the Oireachtas)의 의결안을 거쳐 지명.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할 시, 정부(the Government)는 새 위원 선발을 위한 자문단(the Service)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문단은 인권 및 평등, 공공 분야, 혹은 경영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를 선정. 자문단에 의

672) Grants to Commission,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26, 2014.

673) Accounts of Commission,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27, 2014.

해 결정된 선발 기준은 정의평등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Equality)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고, 선발 요건 및 선발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모든 예비 후보자는 자문단에 의해 선발되나, 한 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유럽연합 기본권청(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의 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또한 자문단과 정부의 허가가 있고, 해당 후보자가 관련 문제에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the President)이 직접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음. 정부는 자문단에서 지명한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문단은 제시된 이유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재추천 할 수 있음.<sup>674)</sup>

(다) 국장: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는 위원장과 구성원 외에 국장(the Director)이라는 별도의 지위를 두고 있다. 국장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정해진 임기 없이 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임무를 수행. 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문위원(an advisory committee)으로 활동 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및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지니고 있음. 국장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결산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와 국회(Oireachtas Committees)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님.<sup>675)</sup>

- ① 결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감사원장과 회계 감사원에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의 예산 사용 및 거래 내역을 제공
- ② 결산위원회의 보고서를 위한 필요 자료를 제출할 의무

(라) 행정직원: 위원회의 행정 직원 고용은 정의평등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Equality)의 허가와 공공재정 및 개혁부 장관(Minister for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으로부터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인

674) Appointment of Members of Commission,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13, 2014.

675) 1) Accountability of Director to Public Accounts Committee,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22, 2014 (근거로는 Provisions in relation to certain reports of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AMENDMENT) ACT, 1993, Section 11(2)를 제시하고 있음), 2) Accountability of Director to other Oireachtas Committees,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Part 2, Section 23, 2014.

원 및 계약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고용된 직원은 아일랜드의 국가 공무원(civil servant in the Civil Service of the State)으로서 활동.<sup>676)</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677)</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678)</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연임은 한 번까지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임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음. 위원 중 7명은 3년의 임기를,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함.<sup>679)</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680)</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주요 기능 및 역할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법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위원회법 10조 1항 및 2항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1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아일랜드 내 1) 인권과 평등 문제를 보호 및 증진, 2) 인권, 평등,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독려, 3) 인권 및 평등 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 4) 다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수용 장려, 5) 차별과 인권 유린을 없애기 위한 실천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681)</sup>

2항에서는 위에 제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1) 인권 및 평등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 2) 인권 및 평등에 관한 법안의 적절성 및 실효성 검토, 3) 인권 및 평등에 관한 법률 제안서 및 보고서 검토, 4) 인권 및 평등 증진을 위한 제안, 5) 인권 및 평등 관련 재판에서 법정 조언자로서 역할, 6) 인권 및 평등에

676) Staff of Commission,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24, 2014.

677)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678)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위원회의 주요 권한 및 역할은 아래 마) 참조

679) Membership of Commission, Irish Human Right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12, 2014.

680)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681) Functions of commission,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10 (1), 2014.

관한 교육 및 활동 제공 등이 있음.<sup>682)</sup>

(2) 활동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위원회 법 제28조 1항<sup>683)</sup>에 의거하여 매년 위원회의 활동을 기록한 연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2014년 11월 1일 (설립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을 담은 첫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2015)를 2016년 6월 발간.

(가) 정책(Policy) 관련 활동

①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활동 (International Reporting)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아일랜드의 국가수준의 인권 관련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그 활동을 보고할 의무를 지님. 따라서 본 위원회는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아일랜드 국내 상황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UN 인권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의 요청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제시된 권고 사항들에 관한 아일랜드의 활동 내역을 제출. 더불어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아래 아일랜드 내 여성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심층 보고서를 제출. 또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아래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관한 보고서는 2015년 9월 완료되어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로 송부<sup>684)</sup>.

② 입법 관련 모니터링 (Legislative Observations) 및 정책 제언 (Policy Statements and Submissions)

---

682) Functions of commission,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10 (2), 2014.

683) Annual Report,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Act 2014, Part 2, Section 28, 2014.

684) International Reporting, Annual Report 2015,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ttees, June 2015, p. 14.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한 해동안 아이, 가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 속 인권분야의 문제를 감시해 왔으며, 국회 내 인권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 부서의 설립을 촉구 하는 등의 입법 관련 모니터링을 시행. 또한 육아, 아동, 난민 등 여러 분야의 인권 및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제언해 옴.<sup>685)</sup>

(나) 국제, 지역, 국내 관련 활동 (International, Regional, Domestic Engagement)

① 국제사회수준(International Mechanism)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의 2015년 목표 중 하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으며, 2015년 11월 위원회는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 등급 판정을 받음.<sup>686)</sup>

② 지역사회수준(Regional Mechanisms)

위원회는 지역사회수준에서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ENNHRI,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와 유럽평등기구네트워크(Equinet, European Network of Equality Bodies)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과 평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이 밖에도,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에서 개최하는 회의 참석 및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유럽이사회와도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인종차별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와 유럽의회의 여성인권및평등위원회(Women's Rights and Equality Committee of the European Parliament) 등 인권 및 평등 관련 세부 문제에서도 지역적으로 협력을 도모.<sup>687)</sup>

영국-아일랜드 협정의 부속인 다자 협정(the Multi-Party Agreement annexed to the British-Irish Agreement Act 1999)에 따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 인권 및 평등문제에 관한 공동 협력이 있어야 하며, 또 다른 관련 법안으로는 벨파스트 협정 (Belfast Agreement, often called as Good Friday Agreement)이 있음. 이에 아일랜드 인권 및

685) Ibid., p. 15.

686) International, Regional, Domestic Engagement, Annual Report 2015, p. 20.

687) Annual Report 2015, p. 20-21.

평등 위원회는 북 아일랜드의 인권 관련 기관인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NIHRC,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와 협업하고 있음.<sup>688)</sup>

③ 국내수준 (Domestic Engagements by the Commission)

국내수준에서 위원회는 주로 정부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의 평등 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의 회의에 자문위원 등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인종, 인신매매, 젠더 등 인권 및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689)</sup>

(다) 법 집행 및 정보관련(Legal and Information)

위원회는 고등법원에서 법정조언자로서의 역할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위원회법 제40조에 의해 2014년에는 일곱 건의 조언 신청 중 한 건을 수행하였고, 2015년에는 32개 중 다섯 건의 사건을 지원.<sup>690)</sup>

(라) 공공참여(Public Engagement)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는 인권 및 평등 문제에 관해 공공참여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먼저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과 평등에 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방송 및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인권관련 캠페인인 권리를 현실로 (Make Rights Real)를 수행. 둘째로, NGO와의 회의 (NGO briefing)를 열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NGO 단체와의 질의응답.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 전국민 회담(Consultation)을 약 오 개월에 걸쳐 여덟개의 지역에서 개최하여, 약 290여명의 국민이 참여. 셋째로는, 기존의 평등위원회 (Equality Authority)에서 담당하던 평등한 일터를 위한 5개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 이를 위한 주요 과제는 성소수자문제 (LGBT), 이주자 문제, 인종차별문제, 직장 내 평등지표 검토, 액션플랜 개발 및

---

688) Ibid., p. 22.

689) Ibid., p. 23.

690) 위원회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건들에 대한 요약은 위원회의 2015년 연차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Ibid, p. 26-29.

다문화 직장문화 개선 등이 있음. 넷째로, 위원회는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이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이후 20년, 세계속 여성의 자리는 있다 (Beijing +20, A Woman’s Place is in the World)” 혹은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젊은이들이 홍보하는 아일랜드 속 인권 (Express Yourself! Young People Promoting Human Rights in Ireland)” 과 같은 대규모 컨벤션을 열거나 학교 선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sup>691)</sup>

(마) 미디어 활동 관련(The Commission in the Media)

위원회는 미디어 속 인권 및 평등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연계되어 활동. 2015년 위원회가 미디어 중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킨 분야는 학교 예산과 입학에 관한 평등분배 문제, 동성결혼 문제, 굿프라이데이 협정 관련 의회의 역할 수행, 위원회의 법률서비스 및 법정조언 활동 사항, 난민 문제, 모자보건문제, 그리고 위원회에서 개최한 전국민 회담 등이 있음.<sup>692)</sup>

바) 특이사항

진정 조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위원회는 GANHRI심사에서 2015년 11월 A등급을 받았으며, 2016년 8월 실시된 평가에서도 A 등급을 유지.<sup>693)</sup>

691) Annual Report 2015, p. 33-34.

692) 미디어에 노출된 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요약내용은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Ibid., p. 49-50.

693)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 21)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국가 정보 <sup>694)</sup>	
면적	70,282km <sup>2</sup>
인구	약 186만명(2016)
수도	벨 파스트(Belfast)
정치형태	입헌군주국
민족	켈트인
주요언어	게일어(모국어), 영어
주요종교	가톨릭(88%), 개신교(3%)
GDP	GDP : 2,459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53,314불('14, World Bank)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The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NIHRC)
- (2) 설립연도: 1999년<sup>695)</sup>
- (3) 설립배경: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북아일랜드의 국가인권관련 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았음. 영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북아일랜드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7개 원칙을 선정하여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음.<sup>696)</sup>
  - 인권 존중의 문화 설립(Build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분단 및 분쟁의 역사를 겪은 북아일랜드 사회 내, 인권이 존중받고, 인권이 사회를 이끄는 문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있음.
  - 합법성 및 독립성(Legality and Independence):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영국 국가수준과 또 유엔 파리원칙(UN Paris Principles)에 명시된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권한을 준수하며 이행함.
  - 비차별 및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인권은 차별 없이

694) <http://www.nisra.gov.uk/publications/default.asp10.htm> (검색일 2016. 8. 27)

695) <http://www.nihrc.org/about-us/who-we-are> (검색일 2016년 11월 23일)

696) <http://www.nihrc.org/about-us/who-we-are/vision-mission-and-values> (검색일 2016년 8월 27일).

평등하게 누구나 누릴 권리이며, 이는 벨파스트 협정(Belfast or Good Friday Agreement)에서 강조된 바 있음.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다른 어떤 원칙보다도 이 원칙을 가장 강조하고 있음.

- 시민·정치·사회·문화의 평등한 상태(The Equal Status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인권은 어떤 분야에서든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이에 통합된 방법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 실천되어야 함.
- 참여(Participation):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실현은 이를 위한 모든 절차로 인해 영향 받게 될 사람들의 참여로부터 이루어짐. 이에,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및 사회 전역의 참여를 도모.
- 책무성(Accountability): 인권실현에 있어 책무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해야함. 나아가, 책무성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모든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함.
- 협력(Partnership): 협력은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해 북아일랜드에 사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북아일랜드인권위원회는 중요한 협력이 맺어지는 데 있어 주축 역할을 도맡아 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벨파스트 혹은 굿프라이데이 협정 (Belfast or Good Friday Agreement)

벨파스트 협정은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 정부와 맺은 협정으로서, 6조 권리, 안전보장, 및 기회의 평등(Rights, Safeguards and Equality of Opportunity)에 그 설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종교, 정치, 성별, 인종, 장애, 나이, 결혼여부, 성적취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북 아일랜드 내부에 있을 필요성을 먼저 밝히고, 이를 위한 기관으로서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The new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와 이 위원회가 영국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드러내고 있음. 북아일랜드위원회는 영국의회(Westminster legislation)에서 유럽인권보호조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보완하는 내용에 관해 자문을 하게 되고, 국제수준의 방법이나 경험에 빗대어 북 아일랜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역할을 지니는데 이는 북 아일랜드 내 상이한 두 공동체의 상호존중을 위함이며, 북 아일랜드를 위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실현을 위한 것임. 따라서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북 아일랜드 내 두 공동체의 존중과 동등한 상호 우대를 고려해야 하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함.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영국의회에 의해 설립되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이며, 상설인권자문위원회(The Standing Advisory Commission on Human Rights)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게 됨.<sup>697)</sup> 또한 벨파스트 협정은 동조 제10항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인권관련 공동 위원회가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일랜드 섬에 사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확립을 위함을 이유로 들고 있음.<sup>698)</sup>

(나) 북아일랜드 법 (Northern Ireland Act 1998)

1998년 발의된 북아일랜드 법(Northern Ireland Act) 제7장에서는 인권과 기회평등에 관해 다루고 있음.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설립, 기능, 예산, 위원 선임 및 임기 등의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공공기관.<sup>699)</sup> 영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

697) Rights, Safeguard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Belfast Agreement, Section 6 (1) - (8).

698) Belfast Agreement, Section 6 (10).

699)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소개되고 있음. 홈페이지에 영국 정부와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영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독립된 공공기관임을 강조하고 있어(The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NIHRC) is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for Northern Ireland. Although funded by government, we are an independent public body 출처: <http://www.nihrc.org/about-us/who-we-are> (검색일 2016. 11. 23), 국가기관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위원장(chief commissioner) 및 7명의 위원(commissioner)을 두고 있음<sup>700</sup>. 별도로 국장 및 부국장의 직위를 설치하고 있음.

(2) 지역사무소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 사무소는 수도인 벨파스트에 위치하고 있음. 지역사무소는 두고 있지 않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북아일랜드인권위원회는 영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의회에서 책정된 보조금(grants)을 지원받음<sup>701</sup>.

예산규모는 1,096,711파운드(1,096,711€, 한화 약15억9천만 원)임.<sup>702</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장관에 의해 지명됨

위원장이나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임의로 직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사임의 경우에는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sup>703</sup>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고용 인원 및 계약 사항에 대해 국무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 직원임용이 가능함.<sup>704</sup> 또한 인권위원회에 고용된 고용인은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지니지는 않음.<sup>705</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706</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707</sup>

700) <http://www.nihrc.org/about-us/who-we-are/people> (검색일 2016.11.23.)

701) <http://www.nihrc.org/about-us/what-we-spend> (검색일 2016.11.23.)

702) 2015-2016년(2016년 3월 31.기준) NIHR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5-6, p.42 출처: <http://www.nihrc.org/publication/detail/nihrc-annual-report-accounts> 에서 2016.11.23. 인출

703) Northern Ireland Act 1998), Part 7, 68 (2)-(3).

704) Northern Ireland Act 1998), Part 7, 68 (4).

705) Northern Ireland Act 1998), Part 7, 68 (11).

706)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의 경우에는 5년 임기이며, 인권위원은 3년의 임기임.<sup>708)</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709)</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주요 권한

북아일랜드법 (Northern Ireland Act 1998)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sup>710)</sup>

- (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북아일랜드 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해야 함.
- (나) 매 2년 마다 국무장관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인권위원회는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장관과 국회의 입법위원회에 인권 관련 자문을 해 줄 수 있음.
- (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권 수호를 위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권 수호를 위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음.
- (마) 인권 관련하여 조사 및 중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에게 정보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바) 인권위원회는 북아일랜드 내 인권에 대한 의식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2) 활동

- (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언 서비스: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국회에 의해 발의된 법안과 북아일랜드 행정부 장관에 의해 제안된 정책 제언에 관한 조언을 제공함. 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 국회의 및

---

707)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708) Northern Ireland Act 1998), Part 7, 68 (2)-(3).

709)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710) 제시된 모든 기능은 Northern Ireland Act 1998, Part 7, Section 69 (1) - (11)와, The 2015 Annual Statement, p.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결정에 관해서도 관여함.<sup>711)</sup>

(나) 인권관련 조사활동 :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및 기관에 진술을 강요하거나 서면화를 요구할 수 있음.<sup>712)</sup>

(다) 인권관련 인식도 개선 및 교육 :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북아일랜드 내 인권 관련 인식도 및 이해도를 개선시킬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위원회는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으로는 정부 부서,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음.<sup>713)</sup>

바)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GANHRI 승인에서 2016년 8월 A 등급을 유지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심사에서는 2001년 B등급을 받았고, 2011년 5월 및 2016년 5월에는 각각 A등급을 취득하였음.<sup>714)</sup>

---

711) <http://www.nihrc.org/about-us/what-we-do/advising-government-and-public-bodies> (검색일 2016. 8. 30).

712) <http://www.nihrc.org/about-us/what-we-do/investigating-human-rights-issues> 에서 역할 및 기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조사활동에 관한 정보는 <http://www.nihrc.org/publication/category/Research-and-investigations> 에서 얻을 수 있다 (검색일 2016. 8. 30).

713) <http://www.nihrc.org/about-us/what-we-do/educating-and-promoting-awareness> (검색일 2016. 8. 30)

714)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년 8. 30)

## 2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국가 정보 <sup>715)</sup>	
면적	78,772km <sup>2</sup>
인구	약 530만명('13,
수도	에딘버러(Edinburgh)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민족	스코틀랜드인(77.9%), 영국계백인(13.1%)
주요언어	게일어(모국어), 영어, 스코틀랜드어
주요종교	스코틀랜드 국교(32.4%), 로마카톨릭(15.9%)
GDP	GDP : 2,459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41,180불 ( '14, Scottish Government)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The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SHRC)<sup>716)</sup>
- (2) 설립연도: 2008년 12월
- (3) 설립배경: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스코틀랜드 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소관을 지닌 독립적인 공공기관임. 위원회의 보호 대상 인권은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스코틀랜드 법(Scotland Act 1998)과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에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다른 국제조약이나 영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에 드러난 인권 역시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가 수호해야 할 가치임.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법에 의하여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시민 등 모든 형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존중 및 인식향상의 의무를 지님.<sup>717)</sup>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715) <http://www.scotland.org/about-scotland/facts-about-scotland> (검색일 2016. 8. 30)

716)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  
(검색일 2016. 8. 27)

717)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about> (검색일 2016. 8. 27).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sup>718</sup>: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11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8일 최종적으로 여왕의 재가를 받음. 인권위원회법에는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권한, 의무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임.

-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공공기관임.<sup>719</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1)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현재 1명의 의장(Chair), 3명의 위원(Commissioners)과 11명의 직원(Staff)들로 구성.

의장은 정규직으로 상근직인 반면,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음.<sup>720</sup>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전략 및 법률(Strategic and Legal),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그리고 경영(Business Management)의 세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함<sup>721</sup>).

- (2) 지역사무소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별도의 지부가 없으며, 수도인 에딘버러(Edinburgh)에 중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음.<sup>722</sup>)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의 위원 보수 등을 포함한 활동 비용은 스코틀랜드 국회법인체에 의해 지급됨.<sup>723</sup>)

718)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www.legislation.gov.uk/asp/2006/16/pdfs/asp\\_20060016\\_en.pdf](http://www.legislation.gov.uk/asp/2006/16/pdfs/asp_20060016_en.pdf) (검색일 2016. 8. 28)

719) 영국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기구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720)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2014-15 (Annual Report 2014-15)』, 2015, p28-29.

721) Annual Report 2014-15, p. 27-28, 직원 및 위원에 관한 정보는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about/tea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2)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about/contact> (검색일 2016. 8. 29).

723)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aragraph 14 “Finance”(1)(a-b) (스코틀랜드 인권

매해 초에 인권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출계획을 세워 의회법인체에 제출하여 함.<sup>724)</sup>

예산규모는 950,000파운드(950,000£, 한화 약13억8천만 원)임.<sup>725)</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의장: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의 의장(Chair)는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의 추천을 받아 영국 여왕이 최종 임명함.<sup>726)</sup>

(나) 위원(Members):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위원은 4명까지 선출 가능하며<sup>727)</sup>, 스코틀랜드 의회법인체(Scottish Parliamentary Corporate Body, SPCB)<sup>728)</sup>에 의해 선출됨.<sup>729)</sup>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법은 위

---

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4항 “예산”1호 a-b목): (1) The Parliamentary corporation is to pay – (a) the remuneration and allowances of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b) any expenses incurred by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so far as those expenses are not met out of sums received and applied by it under section 3(3). (스코틀랜드 국회법인체는 (a)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보수 및 수당과 (b)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러한 비용은 동 법의 제 3조 3항에 따라, 전체 지급된 금액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724) 예산규모는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음.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aragraph 14 “Finance”(2)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4항 “예산”2목): The Commission must, before the start of each financial year, prepare proposals for its use of resources and expenditure during the year and send the proposals to the Parliamentary corporation for approval by such date as the Parliamentary corporation may determine.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인권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예산 활용계획 및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국회 법인체가 정한 날짜까지 국회 법인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725) 2014-2015년(2015년 3월 31.기준)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media/1149/cranualaccounts2014-2015.pdf> p.15 2016.11.23. 인출

726)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aragraph 1 “Membership” (2)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항 “위원자격”2호): 해당 호 직접인용.

727)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aragraph 1 “Membership” (1)(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항 “위원자격”1호 b): (1) The Commission consists of the following members - (b) not more than 4 other members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네 명이 넘지 않는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

728) 스코틀랜드 의회법인체에 대한 설명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parliament.scot/abouttheparliament/16231.aspx> (검색일 2016. 8. 27)

원회의 자격요건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현직의 하원의원(a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a member of the Scottish Parliament), 유럽의회 의원(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을 밝힘.<sup>729)</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위원회의 위원은 영국의 공무원이 아님.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함<sup>731)</sup>. 위원 및 의장의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인체가 결정함.<sup>732)</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가)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법은 위원회가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원(any member of the Parliament)이나, 스코틀랜드 행정부(any member of the Scottish Executive),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의회법인체(the Parliamentary corporation)에 속되지 않

729)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aragraph 1 “Membership” (3)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항 “위원자격” 3호): 해당 호 직접인용.

730)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aragraph 4 “Disqualification”(1) -(3)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항 “위원자격” 1호-3호): (1) A person is disqualified from appointment, and from holding office, 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if that person is— (a) a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 (b) a member of the Scottish Parliament, or (c) 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2) A person is also disqualified from such appointment if that person has, in the relevant period, held any of the offices set out in sub-paragraph (1)(a) to (C). (3) The relevant period is— (a) in relation to the appointment of a member to chair the Commission, the year preceding the date of nomination, (b) in relation to the appointment of any other member of the Commission, the year preceding the proposed date of appointment. {(1) 다음의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취임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a) 현직 하원의원, (b) 현직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 (c) 유럽의회 의원. (2) 관련기간에 1항의 (a)호부터 (C)호에 언급된 직위를 지닌 자는 임명되거나 취임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3) 관련기간이란 (a) 의장 임명과 관련하여, 추천일로부터 일 년, (b)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위원 임명으로부터 일 년을 의미한다.}

73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2 “Status”(6)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2항 “지위”): 해당 항 직접인용. 따라서 지위의 장관급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732)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5 “Terms of office and remuneration”(7)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5항 “임기 및 보수” 7호): 해당 호 직접 인용.

는 독립성을 보장받음.<sup>733)</sup>

(나) 위원회는 고용인원에 관해 의회법인체의 동의를 받은 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sup>734)</sup> 계약 조건 등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서 결정.<sup>735)</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가) 임기: 위원의 임기는 스코틀랜드 국회법인체(SPCB)에 의해 결정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제한됨. 재임 및 연임을 통해 총 두 번까지 임명 가능.<sup>736)</sup> 의장의 임기는 최대 5년까지이며, 연임 및 재임의 경우에는 총 임명기간이 8년을 넘을 수 없음. 의장 역시 두 번에 한해 재임 및 연임이 가능.<sup>737)</sup>

(나) 위원직 박탈: 의장의 의장직 박탈은 타 위원들의 요청이 있거나 아래 제시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영국여왕이 의장직 박탈을 명하며,<sup>738)</sup> 위원들 역시 타 위원들의 요청이 있거나, 두 요건을

---

733)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3“Independence”(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3항 “독립성”1호): 해당 항 직접인용.

734)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11“Staff”(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1항 “직원”1호): 해당 항 직접인용.

735)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11“Staff”(2)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11항 “직원”2호): 해당 항 직접인용.

736)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5 “Terms of office and remuneration”(1)(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5항 “임기 및 보수” 1호 a-b 목): (1)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a) holds office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as the Parliamentary corporation, at the time of appointment, may determine, and (b) is eligible for reappointment to the same office (whether the reappointment is for a consecutive period or otherwise) but reappointment for a third period is not competent. (위원회의 위원은 (a) 스코틀랜드 국회법인체가 임명 당시 임기를 결정하며, 임기는 최대 오년을 넘지 않는다. (b) 위원은 연임이든 재임이든 관계없이 재임명될 수 있으나, 세 번의 재임명은 불가하다.)

737)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차결산보고서 2015(Annual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15)』, 2015, p10.

738)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5 “Terms of office and remuneration”(2)(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5항 “임기 및 보수” 2호 a-b 목): 해당 호목 직접인용.

충족하는 경우 국회법인체가 위원직의 박탈을 결정함.<sup>739)</sup>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회법인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박탈이 최종 결정됨.<sup>740)</sup>

① 조건 A

- 국회협의회가 위원 및 의장이 계약 조건을 파기했다고 판단하거나
- 그러한 이유로 인해 위원 및 의장이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야한다고 결론내린 경우

② 조건 B

- 국회법인체가 위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결론 내린 경우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인권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책 및 특권을 지니지 않음.<sup>741)</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주요 권한

(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부여된 일반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공공기관이나, 다수의 공공기관들, 및 특별히 명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sup>742)</sup> 조사 시행 전, 인권위원회는 조사에 관한 위임사항 및 조사 시 이행할 조사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이에 관해 사전 공지 및 공공 게재를 해야함.<sup>743)</sup>

739)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5 “Terms of office and remuneration”(3)(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5항 “임기 및 보수” 3호 a-b 목): 해당 호목 직접인용.

740)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5 “Terms of office and remuneration”(6)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5항 “임기 및 보수” 6호): A resolution under sub-paragraph (4)(b) or (5), if passed on division, must be voted for by not less than two thirds of those voting. (동항 4호 b목 및 5항에 의해 결정된 사안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74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chedule 1, paragraph 2 “Status”(6)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부록 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제 2항 “지위”): 해당 항 직접인용.

742)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8 “Power to conduct inquiries”(1)(a-c)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8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1항 a-c목): 해당 항목 직접인용.

743)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8 “Power to conduct

(나)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법원의 초청이 있을 경우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해 제안을 할 목적으로 소송을 중재할 수 있음.<sup>744)</sup> 소송의 중재는 아동심리(children’s hearing proceeding)를 제외하고, 민사소송(civil proceedings)에만 해당되며<sup>745)</sup>,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가 인권위원회의 일반의무와 관련이 있고,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관한 문제여야 함.<sup>746)</sup>

(2) 주요 기능

(가) 정치적 역할 및 기능 :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와 스코틀랜드 정부 자치협의(Scottish Government consultations)에 응할 수 있으며, 국회 위원회(Scottish Parliamentary Committees)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정부와 직접 인권 관련 특정이슈들에 관해 협력.<sup>747)</sup>

(나) 국제인권시스템과의 협력 : 국가인권관련(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 기구로서,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조약이 스코틀랜드 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 외에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의 인권 관련 조약

---

inquiries”(4)(a-c)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8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4항 a-c목): 해당 항목 직접인용.

744)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14“Power to intervene”(2)(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14조 “중재할 수 있는 권한”2항 a-b목): 해당 항목 직접인용.

745)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14“Power to intervene”(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14조 “중재할 수 있는 권한”1항): 해당항 직접인용.

746)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14“Power to intervene”(3)(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14조 “중재할 수 있는 권한”3항 a-b목): The Commission may intervene under subsection (2) only if it appears to the Commission that the issue arising in the proceedings— (a) is relevant to its general duty, and (b) raises a matter of public interest. (인권위원회는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가 인권위원회의 일반의무와 관련되어 있고, 공공이익의 문제에 관한 것일 경우에만 2항에 언급된 바처럼 소송을 중재할 수 있다.)

747)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4-15(Annual Report 2014-15)』, 2015, p14-17.

에 관해 분석하고, 관련 유엔 위원회에 조사한 내용을 제출. 또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리포트는 영국의 인권관련 국제적 의무 사항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발언권을 지니고 있음.<sup>748)</sup>

(다) 인권기반 접근을 위한 타 기관 지원 : 공공기관 등이 인권 및 통합평등 (integrated equality)을 성취하고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웹사이트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sup>749)</sup>

(라)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 및 대중과의 협업 :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원조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증진 활동을 펼침. 이의 대한 예로는 다수의 발간물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OurRightsSNAP 등) 등이 있음.<sup>750)</sup>

(마) 스코틀랜드 인권조치계획(Scotland's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SNAP)지지 : SNAP은 스코틀랜드 내 50여개가 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관련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SNAP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음.<sup>751)</sup>

### (3) 주요 활동

(가) 인권 증진을 위한 일반 의무: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의 일반 의무는, 인권위원회 설립법에 의거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인권 관련 우수한 실천 사례를 독려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sup>752)</sup>

(나) 정보, 안내, 및 교육 관련: 일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보 게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언 및 안내 제공, 관련 연구 수행, 및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제공할 수 있음.<sup>753)</sup>

748)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4-15(Annual Report 2014-15)』, 2015, p18-20.

749)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4-15(Annual Report 2014-15)』, 2015, p21-23.

750)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4-15(Annual Report 2014-15)』, 2015, p24-25.

75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4-15(Annual Report 2014-15)』, 2015, p26.

752)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2“General duty to promote human rights”(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2조 “인권 증진을 위한 일반 의무”1항): 해당 항 직접 인용.

- (다) 법, 정책, 및 활동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 위원회는 스코틀랜드 법이나, 스코틀랜드 정부기관의 정책 및 활동 사항을 검토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음.<sup>754</sup> 법안 검토의 경우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함.<sup>755</sup>
- (라) 협업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타인으로부터의 자문, 타인과의 공동 행위, 및 협업,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조를 할 수 있음.<sup>756</sup> 하지만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다른 법안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활동들을 모방할 수 없음.<sup>757</sup>
- (마) 전략계획 (Strategic Plan):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매 4년마다 일반 의무 수행을 위한 전략을 담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하여야함.<sup>758</sup> 현재는 2016년 5월 채택된 세 번째 전략계획 2016-2020(Strategic Plan 2016-2020)<sup>759</sup>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 제시된 다섯 가지 중점 목표는 아래와 같음.<sup>760</sup>
- ① 스코틀랜드 내 인권존중 문화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753)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3“Information, guidance, education etc.”(1)(a-d)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3조 “인권 증진을 위한 일반 의무”1항 a-d목): 해당 항목 직접 인용.

754)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4“Monitoring of law, policies and practices”(1)(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4조 “법,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1항 a-b목): 해당 항목 직접 인용.

755)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4“Monitoring of law, policies and practices”(2)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4조 “법,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2항): The Commission must consult the Scottish Law Commission before undertaking a review of any area of the law under subsection (1)(a). (해당 조 1항 a목의 스코틀랜드 법안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756)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5“Power to co-operate etc. with others”(1)(a-d)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5조 “협업할 수 있는 권한”1항 a-d목): 해당 항목 직접인용.

757)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5“Power to co-operate etc. with others”(2)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5조 “협업할 수 있는 권한”2항): 해당 항목 직접인용.

758)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7“Strategic plans”(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7조 “전략계획”1항): 해당 항목 직접인용.

759)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application/resources/documents/Strategic\\_Plan\\_2016-2020\\_final.pdf](http://www.scottishhumanrights.com/application/resources/documents/Strategic_Plan_2016-2020_final.pdf) (검색일 2016. 8. 29)

760)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about/strategicplan/SP3> (검색일 2016. 8. 29)

- ② 의료 및 사회보장 관련 활동 실적을 증가시켜, 서비스 내 인권준증이 실현되도록 할 것
  - ③ 스코틀랜드가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는 데 인권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
  - ④ 이미 존재하는 인권관련 법안 옹호, 타 법안에 대한 감시, 인권문제에 대한 집중조명, 잘못된 문제에 대한 기관 질책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할 것
  - ⑤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인권관련 훌륭한 실천사례를 학습, 나눔 및 홍보를 강조할 것
- (바) 연간보고서: 인권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인권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sup>761)</sup> 연간보고서는 해당연도 실시된 조사에 관한 요약, 인권위원회의 일반의무를 수행하는 데 실시된 화동에 관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함.<sup>762)</sup>

바) 특이사항

영국여왕이 의장을 임명. 스코틀랜드의 독립된 인권기구로서 활동. 진정 조사 기능은 없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는 2010년, 2015년에 이어 2016년 GANHRI심사에서 A 등급을 유지.<sup>763)</sup>

761)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15“Annual Reports”(1)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15조 “연간보고서”1항): 해당 항 직접인용.

762) Scottis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06, section 15“Annual Reports”(2)(a-b)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법, 제 15조 “연간보고서”2항 a-b목): 해당 항목 직접인용.

763)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8. 30).

### 23)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가 정보 <sup>764)</sup>	
면적	41,526km <sup>2</sup>
인구	약 1,690만명(2015)
수도	암스테르담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민족	네덜란드인(78.6%)
주요언어	네덜란드어
주요종교	가톨릭, 개신교
GDP	GDP : 7384억달러('15, CIA)
	1인당 GDP : 49,200달러('15, CIA)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sup>765)</sup>

##### (2) 설립연도: 2012년 10월

(3) 설립배경: 네덜란드 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1993년 파리 원칙(Paris Principle)의 승인과, 유럽 평의회 의 각료 이사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의 권고 사항에 따라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온 문제임. 이후 2006년 네덜란드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가입하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약속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됨.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네덜란드 국가 옴부즈맨, 정보보호기구(Data Protection Agency), 평등위원회(Equal Treatment Commission), 및 네덜란드 인권협회(The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SIM)가 합동 협력단(Consortium)을 조직하여, 새로운 인권관련 기관 설립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함. 2009년 평등위원회(Equal Treatment Commission)가 새 인권기구에 편입될 것을 결정함.<sup>766)</sup> 이후, 2011년 네덜란드 국회에서 설립 근거법인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Netherlands

764)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0.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0.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9. 12)

765) 공식홈페이지 주소 <https://www.mensenrechten.nl/mission-and-ambition> (검색일: 2016. 9. 12)

766) Explanatory memorandum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p. 2-3, <http://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17478> (검색일: 2016. 9. 12)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과 통과되었고, 2012년에 설립이 완료 됨.<sup>767)</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 (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은 인권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 및 목적, 역할 및 기능, 조직 및 구성, 의무 등에 관해 다루고 있음. 설립법은 배경으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 1993)과 유럽 평의회 의 각료 이사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1997)의 권고사항을 들고 있으며, 설립 목적으로는 평등한 대우(equal treatment)를 포함한 모든 인권의 보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의 보호 감찰을 명시함.<sup>768)</sup>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관할은 카리브 해의 네덜란드 자치령인 보나이러(Bonaire), 사바(Saba), 신트 외스타티우스 (Sint Eustatius)를 포함한 네덜란드 본토의 모든 공공기관임.<sup>769)</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최소 9명에서 최대 12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되며, 이는 연구소장(Chair/President)과 두 명의 부 소장(assistant chairs/Vice-Presidents)가 포함된 인원임.<sup>770)</sup>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별

767) <https://mensenrechten.nl/questions-and-answers> (검색일: 2016. 9. 12)

768)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Section 1, "Establishment, Duties and Powers"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1장 1조 "설립, 의무, 및 권한")

769)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Section 2, "Establishment, Duties and Powers"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1장 2조 "설립, 의무, 및 권한")

770)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14조 혹은 동법의 Explanatory Memorandum, 3.4)에는 연구소장과 부소장을 각각 Chair와 Assistant Chair로 부르고 있으나, 네덜란드 인권

도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를 두고 있는데, 상임의원으로는 국가 옴부즈맨, 정보보호기구(Data Protection Agency)의 장, 사법위원회(Justice Administration Council)의 장을 두고 있음.<sup>771)</sup> 이 외의 행정업무는 국가 공무원(civil servants)의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직원(Staff)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다음의 세 개의 부서, ① 사건접수 부서(Front Office & Case Opinion), ② 연구, 제안 및 커뮤니케이션 부(Studies, Recommendations, & Communication), ③ 운영부(Operation Staff Department)로 구성됨. 2014년 12월 조사된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전체 행정직원은 66명임.<sup>772)</sup>

(2) 지역사무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사무소는 위트레흐트(Utrecht)에 위치함.<sup>773)</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예산은 치안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가 주 지급처이나,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및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가 치안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를 통해서도 예산에 지원을 받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예산의 분배에 있어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는 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지님.

2014년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약 576만 유로(한화 약 71억9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의 균형예산을 제출함.<sup>774)</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위원 및 자문위원은 네덜란드의 다양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석이 생길 시 인권연구소는 반

---

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는 연구소장을 President, 부소장을 Vice-Presidents로 표기함.

771)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 2014 (Annual Report 2014)』, 2014, p27.

772) <http://mensenrechten.nl/structure> (검색일: 2016. 9. 13)

773) 지역사무소는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774)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 2014 (Annual Report 2014)』, 2014, p27.

드시 인권관련 기관에 이에 관한 공시를 해야 함.<sup>775)</sup> 임명 과정 역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sup>776)</sup>

(가) 위원 (Commissioners): 위원 및 대체위원(Alternate members/Deputy Commissioners)<sup>777)</sup>은 치안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장관의 추천을 받아 여왕이 임명(Royal Decree).

위원 추천 시, 자문위원회는 치안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에 제안을 할 수 있음.<sup>778)</sup>

(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회는 상임의원인 국가 옴부즈맨, 정보보호기구(Data Protection Agency)의 장, 사법위원회(Judicial Administration Council)의 장외에 4명에서 8명 사이의 인권, 고용, 학술 등에 사회적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됨. 이들의 임명은 상임의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후, 치안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장관이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779)</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행정직원(Staff)의 고용, 승진, 징계, 및 해임은 연구소의 권한임.<sup>780)</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

775)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Chapter 3, Section 16(3), “Composition and Procedure”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3장 16 조 3항“구성 및 절차”)

776) Explanatory memorandum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Section 16, p. 50, <http://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17478> (검색일: 2016. 9. 13)

777)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에는 위원(Commissioner)이라는 명칭대신 구성원(member)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위원(Commissioner) 및 대체위원(Deputy Commissioner)으로 표기.

778) Explanatory memorandum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p. 25, <http://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17478> (검색일: 2016. 9. 13)

779)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780)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Chapter 3, Section 18(2), “Composition and Procedure”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3장 18 조 2항“구성 및 절차”) : The officials who staff the office are appointed, promoted, subjected to disciplinary punishment, suspended and dismissed by the Institute. (인권연구소의 행정직원은 인권연구소에 의해 임명, 승진, 징계, 자격정지, 및 해임된다.)

위원의 임기는 최대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함.<sup>781)</sup> 자문위원의 임기는 최대 4년까지이며, 재임 가능함.<sup>782)</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783)</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주요 권한 및 기능

(가) 인권연구소: 설립 근거법 및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에 명시된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sup>784)</sup>

- ① 인권 및 평등의 보호를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② 매년 네덜란드의 인권 상황 등을 포함하여 인권의 보호를 위한 보고서 및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③ 장관이나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인권연구소의 주도로, 법, 및 각종 칙령(orders)에 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인권과 관련하여 구속력이 있는 인권관련 유럽연합의 문제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나 의회에 조언을 할 수 있음.
- ④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 및 인권교육을 구성하거나 장려해야 함.
- ⑤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를 장려.
- ⑥ 네덜란드 내 시민 사회, 국가적, 및 국제사회 수준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함.
- ⑦ 인권 관련 조약의 비준, 실행, 준수 및 철회를 강요.

---

781)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Chapter 3, Section 17(2), “Composition and Procedure”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3장 17조 2항“구성 및 절차”) : The 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are appointed for a maximum term of six years. They may be reappointed with immediate effect. (위원 및 대체위원은 최대 육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즉효로 연임이 가능하다.)

782) Explanatory memorandum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Section 16, subsection 3, p. 50, <http://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17478> (검색일: 2016. 9. 13)

783) 해당 정보 찾을 수 없음

784)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Section 3, “Establishment, Duties and Powers”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3장 3조“설립, 의무 및 권한”)

- ⑧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 및 제안의 실행 및 준수를 강요.
  - ⑨ 조사를 위해 인권연구소는 관련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할 권리를 지니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 및 당사자는 주어진 기한 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님.<sup>785)</sup>
  - ⑩ 인권연구소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국가 기밀 보호법(Protection of State Secrets Act)에 의해 금지된 영역이 아닌 곳에 한해, 관련된 모든 장소의 출입이 가능함.<sup>786)</sup>
  - ⑪ 평등법(Equal Treatment Act), 남녀평등법{Equal Treatment(Men and Women)}, 민법(Civil Code) 7권 646조 (Article 646, Book 7)의 위반이 드러날 시, 인권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sup>787)</sup>
  - ⑫ 매 5년마다, 인권위원회는 평등법(Equal Treatment Act), 남녀평등법{Equal Treatment(Men and Women)}, 민법(Civil Code) 7권 646조 (Article 646, Book 7)의 시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에 제출해야 함.
- (나)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sup>788)</sup>
- ① 자문위원회는 매년 인권연구소의 정책계획에 관한 자문을 제공.
  - ② 인권연구소의 위원 및 부위원 선정에 관한 제안 및 의견을 치안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장관에게 제출.
  - ③ 자문위원회는 공권력이 없기에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아님. 나아가 국가 정책이나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785)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6조, 2항.

786)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7조, 1항.

787)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2011, Appendix 1, Chapter 2, Section 3(1), "Investigations and Findings Relating to Equal Treatment"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설립법 부록 1, 제 2장 3조 1항 "평등에 관한 조사 및 결론"): The Institute may bring a legal action with a view to obtaining a ruling that conduct contrary to the Equal Treatment Act, the Equal Treatment (Men and Women) Act or article 646, Book 7 of the Civil Code is unlawful, requesting that such conduct be prohibited or that the court order that the consequences of such conduct be rectified.

788) Explanatory memorandum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ct, Section 15, p. 46, <http://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17478> (검색일: 2016. 9. 13)

자문기관 체계 법(Advisory Bodies Framework Act)에 명시된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니지 않음.

(2) 주요 활동

(가) 다개년 전략계획(Strategic Multi-year Plan):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2012년 설립된 이래 첫 삼개년 전략계획(2012-2015)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수정 및 조정을 진행.<sup>789)</sup> 첫 전략계획에는 인권 연구소의 임무, 전략적 선택방안(Making Strategic Choices), 및 우선과제(Proactive Agenda)에 관해 다루고 있음.

①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임무 및 비전(Mission and Vision): 전략계획은 네덜란드 인권연구소가 인권을 설명, 모니터링, 보호하며, 네덜란드 내 입법, 정책 및 실천에서 평등을 포함한 인권문제를 증진시키고, 인권에 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 이를 통해, 네덜란드의 모든 영토 내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존중의 문화가 있는,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이들이 자유를 지니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비전이 있음.<sup>790)</sup>

② 전략적 선택방안(Making Strategic Choices): 전략적 선택방안이란 네덜란드 내 인권관련 여러 이슈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판별하는 것에 관한 내용임.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네덜란드 내 인권관련 모든 이슈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짐. 인권연구소에 통합된 평등위원회(Equal Treatment commission)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광범위 설문조사를 시행,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과학자, 법조인, 정치인,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150여건의 인터뷰를 함. 이 외에도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조사 및 미디어 분석이 실시됨. 이를 통해 백 여개의 인권 문제를 리스트업 할 수 있었음. 둘째로, 이들 중 우선순위를 선정

789)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전략계획(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rategic Plan)』, 2013년 8월, p17, <http://www.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35930> (검색일: 2016. 9. 13)

790)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전략계획(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rategic Plan)』, 2013년 8월, p4, <http://www.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35930> (검색일: 2016. 9. 13)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도구(The Assessment Framework)를 개발하여 우선과제 선정.<sup>791)</sup>

③ 우선과제(Proactive Agenda): 네덜란드 인권연구원에서 다루어야 할 우선 과제는 아래의 여섯 가지로 선정됨.<sup>792)</sup>

- 노인복지와 인권(Care of the Elderly and Human Rights): 최근 노인 복지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급부상함. 노인복지 관련 주요 이슈는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상태, 위생상태, 자유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 노인 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이 있음.
- 이민과 인권(Migration and Human Rights): 현재 진행 및 미래의 계획될 이민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네덜란드 내 이민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둬. 이를 위해 3개년 목표, 안전한 이민(Migration in Safety), 자유로운 이민(Migration in Freedom), 존엄한 이민(Migration in dignity)를 설정함.
- 고용시장 내 차별(Discrimination in the Employment Market): 장애인, 노약자, 이민자, 소수민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이 존재함. 이를 위해, 고용을 방해하는 장애물 분석 및 성취목표 설정.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의 비준 및 실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적 수준의 여러 법이 통과됨.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의 비준 및 실천을 우선순위과제로 선정.
-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인권에 관한 교육은 두 가지 수

---

791)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전략계획(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rategic Plan)』, 2013년 8월, p10-12, 동일 페이지에서 전략평가도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찾아볼 수 있음, <http://www.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35930> (검색일: 2016. 9. 13)

792)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전략계획(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rategic Plan)』, 2013년 8월, p13-16, <http://www.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35930> (검색일: 2016. 9. 13)

- 준에서 진행되어야 함. 먼저 일반교육에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 교육관련 기자재 및 교육도구의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화하는데 목표를 둔.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은 앞서 설명한 노인복지, 고용 등의 사회문제 속 차별 및 인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다른 조약의 비준(Ratification of Other Treaties): 네덜란드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의 조약 및 의정서를 신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협약(ILO Convention for Domestic Workers)
    - 생물학 및 의학 운용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 존중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Human Existenc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Biology and Medicine)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 (conven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Prevention and Combat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나) 주요 활동내역

- ① 사건접수 부서(Front Office & Case Opinion): 사건접수 부서의 행정원들은 인권 및 평등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1차 연락망으로서, 민원인의 인권 및 평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필요시 사법체계 및 각 읍부즈맨과의 연결을 알선함. 2014년 한 해동안 총 230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중 646건이 인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1657건

- 은 평등에 관한 내용이었음. 인권 및 평등 침해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감정 청구권(request for an opinion)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건은 반드시, 교육, 주거, 소비, 노동, 오락 및 스포츠에 관한 내용이어야 함. 2014년에 총 464건의 청구권이 접수되었으며, 인종차별이 전년(18%)에 비해 24%로 증가하였으며, 노동관련 청구권이 전체의 56%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청구권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감정서를 발표할 수 있음. 2014년에는 총 179건에 대한 감정서를 발표하였고, 이중 성차별에 관한 감정이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sup>793)</sup>
- ②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부재로 인해,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사, 학교 운영위, 인권전문가, 과학자, 정책가 등을 모아 회의를 진행. 이 외에도 인권교육 투어(Human Rights Lessons Tour)를 통해 20개의 학교에서 40개의 학급에 인권관련 강의를 함.<sup>794)</sup>
- ③ 기업체 및 지자체의 인권보호: 기업 내에서의 인권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을 의회에 2013년 제출.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대해 수정 및 권고사항 발표. 지자체는 정부보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해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에서 현장 강연 수행. 또한 정책 발전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요약하여 가능함(available), 수용성(acceptable), 융통성(adjustable), 용이함(accessible)의 4A 체제 구축.<sup>795)</sup>
- ④ 인권 관련 캠페인: 장애아동의 교육권, 직장 내 종교의상 착용문제, 남녀임금차 등 차별에 관련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sup>796)</sup>

793)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 2014 (Annual Report 2014)』, 2014, p11-12.

794)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 2014 (Annual Report 2014)』, 2014, p20

795)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 2014 (Annual Report 2014)』, 2014, p21-22

796)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연간보고서 2014 (Annual Report 2014)』, 2014, p24-25

⑤ 연구, 권고, 보고서, 및 기타 발간물<sup>797)</sup>

- 연구사항: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유럽연합 가족재통합 지시사항에 관한 네덜란드 내 규제 및 실천사항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덜란드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가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연구.
- 권고사항: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2014년 각종 인권관련 및 평등분야에서 총 13건에 달하는 권고 및 성명을 발표.<sup>798)</sup>
- 보고서: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매해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포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후속 보고서와 아동권리위원회(Rights of the child Committee)에 네덜란드에 관한 보고서 제출.
- 기타 발간물: 네덜란드 인권연구소는 권고사항 및 성명서의 발표 외에도, 정부 부처에 12건의 투고를 통해 인권 및 평등 문제가 개선될 것을 촉구함.

바) 특이사항

진정 조사 기능은 없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네덜란드 인권연구소(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GANHRI심사에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A등급 유지.<sup>799)</sup>

---

797)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전략계획(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rategic Plan)』, 2013년 8월, p30-32, <http://www.mensenrechten.nl/publicaties/detail/35930> (검색일: 2016. 9. 13)

798) 권고사항 및 성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전략계획의 부록 2(Appendix 2)에서 찾아볼 수 있음.

799)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 24) 포르투갈

포르투갈 국가 정보 <sup>800)</sup>	
면적	92,141km <sup>2</sup>
인구	약 1,082만 명
수도	리스본
정치형태	이원집정제, 반(半) 대통령제
민족	이베리아족,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무어족 등 혼혈
주요언어	포르투갈어
주요종교	가톨릭(90%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GDP	GDP : 2,051억불('16, IMF)
	1인당 GDP : 27,800불('15, CIA Factbook)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포르투갈 국가 옴부즈맨(포르투갈어; Provedor de Justicia, 영어; Portuguese Ombudsman)<sup>801)</sup>
- (2) 설립연도: 1975년
- (3) 설립배경: 포르투갈 국가 옴부즈맨은 1975년 사무소를 열었고, 1976년도에 첫 옴부즈맨이 선출. 1999년 국가 인권기관(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음.<sup>802)</sup>

행정감찰관으로서의 포르투갈 옴부즈맨은 1975년 정부가 옴부즈맨의 설치 관련 법령(Decree-Law No. 212/75, of April 21)을 공포하며 처음으로 그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음. 일 년뒤(1976년)에는 옴부즈맨의 역할을 헌법(제23조 1항부터 4항)에서도 명시함. 파리원칙(1993년)의 실현을 위해, 옴부즈맨은 1999 이래 포르투갈의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별도의 기구 설립 없이, 옴부즈맨의 임무에 국가인권기구가 더해진 이유로는 옴부즈맨이 법으로 명시된 포르투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sup>803)</sup>

800)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3.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3.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9. 9)

801) 공식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www.provedor-jus.pt/?idl=2> (검색일 2016. 9. 18)

802) <http://www.provedor-jus.pt/?idc=117> (검색일 2016. 9. 18), 2.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 인권기관, 『2015 국회 제출 보고서(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70.

803) <http://www.provedor-jus.pt/?idc=29> (검색일 2016. 9. 18)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지위,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옴부즈맨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법령은 크게 포르투갈 헌법(제 23조, 1항부터 4항), 옴부즈맨 법령(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 및 옴부즈맨기본법(영어: Organic Law of the Ombudsman, 포르투갈어: Lei Orgânica da Provedoria de Justiça)가 있음. 헌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령은 옴부즈맨의 설치 목적, 역할 및 기능, 임명, 옴부즈맨 사무소 구성, 진정(Complaints) 중재 방안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지위, 법인, 센터 등)

포르투갈 국가옴부즈맨은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State body)임.<sup>804)</sup>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으로서의 지위는 1999년 부여받게 된 것으로, 옴부즈맨 법령(Statute of the Ombudsman) 제 1조 2항에 옴부즈맨이 인권관련 조약 및 협정의 실천사항을 감찰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밝힘.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가) 포르투갈 옴부즈맨 사무소는 옴부즈맨(1명)과 부옴부즈맨(2명)이 있음.

(나) 이 외에도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맨 내각(Cabinet)과 두 개의 지원부(Support Structure)인 기술 및 행정부(Directorate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와 법률고문서비스(Advisory Legal Services)를 가지고 있음.

① 옴부즈맨 내각(Cabinet): 옴부즈맨 내각은 옴부즈맨의 업무를 직접적 혹은 개인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 내각의 구성은 한 명의 장(head of cabinet)과, 세 명의 고문(advisers), 및 네 명의 개인비서(personal secretaries)로 구성.<sup>805)</sup>

804)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1), "Duties"

805)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② 기술 및 행정부(Directorate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기술 및 행정부는 별도의 직위인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직을 두어 전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하위부서로는 행정부(Administrative Office), 정보 및 홍보부(Division of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및 문서부(Documentation Division)가 있음.<sup>806)</sup>

③ 법률고문서비스부(Advisory Legal Services):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고문서비스는 여섯 개의 주제별 센터(Thematic Unit)로 나뉘며, 이 주제는 각각 옴부즈맨의 중재 분야를 의미.<sup>807)</sup> 법률고문서비스부는 각각의 센터에 한 명의 조정자(Coordinator)와 한 명의 고문관(Advisor)을 둠.<sup>808)</sup>

- 환경, 도시계획 및 문화권 (Environmental, Urban planning and Cultural Rights)
- 경제주체, 납세자 및 소비자 권리(Economic operators',taxpayers'and Consumers'rights)
- 사회권 (Social rights)
- 노동권 (Workers' rights)
- 사법 및 치안권(Right to justice and security)
- 권리, 자유 및 보증에 관한 이슈 (Rights, freedoms and guarantees; health, education and constitutionality valuations)

이와 더불어,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센터(Children,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 N-CID)을 신설하여 언급된 사회적 노약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담하도록 함.

---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0(1-2), "Cabinet of the Ombudsman"

806) <http://www.provedor-jus.pt/?idc=91> (검색일 2016. 9. 19)

807) <http://www.provedor-jus.pt/?idc=91> (검색일 2016. 9. 19)

808) 조직도 참고, 및 조정자와 고문관의 설치는 다음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음,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7(1) "Assistants"

(2) 지역사무소

옴부즈맨 사무소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자치 지역인 아조레스(Azores, 1996년 설립)와 마데이라(Madeira, 2000년 설립)에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sup>809)</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포르투갈 옴부즈맨 사무실의 예산은 국회로부터 지급됨.<sup>810)</sup>

옴부즈맨은 행정과 예산의 운용에 있어 자율 및 독립성을 보장받는데, 재무관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sup>811)</sup>

2015년 옴부즈맨에 할당된 예산규모는 약 오백만 유로(€ 5,019,880, 한화 약 62억7천만 원)임.<sup>812)</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옴부즈맨의 임명은 국회가 하며,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임명 정족수로 채택. 찬성수는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함.<sup>813)</sup> 옴부즈맨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음.<sup>814)</sup> 차기 옴부즈맨의 선출은 현 옴부즈맨의 임기 마지막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의회가 회산 및 폐회되었을 경우에는, 새 국회 개정 후나 새 회기의 15일 이내에 옴부즈맨의 임명이 이루어져야 함.<sup>815)</sup>

809) <http://www.provedor-jus.pt/?idc=51> (검색일 2016. 9. 19)

810) 해당 법이 영어로 제공되지 않아, 구글트랜스레이터 사용, Organic Law of the Ombudsman(Lei Orgânica da Provedoria de Justiça), art.23(1) “Budget of the office (Orçamento da Provedoria)”

811) Organic Law of the Ombudsman(Lei Orgânica da Provedoria de Justiça), art.2(1-2) “Nature of the institution and the board(Natureza da instituição e conselho administrativo)”

812) 포르투갈 옴부즈맨, 『2015 국회 제출 보고서(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86.

813)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5(1) “Appointment”

814)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1(2) “Incompatibilities”

815) Statute of the Ombudsman 2015, art.6(1-4) “Duration of the mandate”

- (나) 부옴부즈맨 (Deputy Ombudsmen): 법으로 명시된 부옴부즈맨의 인원은 두 명이며, 옴부즈맨이 임명권을 지님.<sup>816)</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포르투갈 옴부즈맨은 장관과 동일한 권리, 명예, 우선권, 계급, 보수 및 특권을 지님.<sup>817)</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은 옴부즈맨 내각(Cabinet)의 장을 포함한 내각의 직원, 기타 직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의 권한이 있음<sup>818)</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이며, 한 번에 한 해 연임 가능.  
임기를 다 했더라도, 차기 옴부즈맨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재임자는 계속해서 옴부즈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 (가) 옴부즈맨은 임무수행을 위해 실시한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sup>819)</sup>
- (나) 옴부즈맨은 징역 삼년이상을 선고받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허가 없이 구금되거나 체포될 수 없음.<sup>820)</sup>
- (다) 옴부즈맨이 형사소송을 당하고, 옴부즈맨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옴부즈맨의 정직을 결정할 수 있음.<sup>821)</sup>

816)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6(1) “Deputy Ombudsmen”

817)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9 “Privileges, rights and guarantees”

818)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0(3), “Cabinet of the Ombudsman”

819)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8(1) “Immunities”

820)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8(2) “Immunities”

821)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감찰 및 중재(Intervention)

(가) 옴부즈맨은 공공기관의 적법성 확인을 통해 포르투갈 국민의 권리, 자유, 보증,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sup>822)</sup> 옴부즈맨의 조사 대상은 중앙 및 지방정부(Central, regional and local public Administration), 군(Armed Forces), 공공기관(Public institutes), 공기업(Public companies), 및 공공자본의 비율이 높은 사기업(Companies whose capital is mostly public) 등이 있음.<sup>823)</sup> 옴부즈맨의 임무 수행은 아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 ① 진정(Complaints) 신고: 포르투갈의 시민은 누구든지 행정당국 및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음.<sup>824)</sup> 진정신고는 구두 및 서면 모두 가능하며, 구두로 제출된 진정은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함. 진정은 옴부즈맨 사무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나, 사법당국에(Public Prosecution Office)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진정은 옴부즈맨 사무소로 전달됨.<sup>825)</sup>
- ② 옴부즈맨 이니셔티브: 옴부즈맨은 신고된 진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알게된 불법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826)</sup>
- ③ 신고된 진정에 대한 예비 심사(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8(3) “Immunities”

822)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1(1) “Duties”

823)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1) “Scope of activity”

824)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3 “Right to complain”

825)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5(1-3) “Submission of complaints”

826)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4(1) “Initiative”

Complaints): 예비심사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정을 각하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진정, 명백하게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악의적인 진정, 또는 옴부즈맨의 권한 밖에 있는 진정 등이 그 예임. 신고자에게는 진정의 처리 상황, 예비심사 통과 혹은 각하에 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함.<sup>827)</sup>

④ 조사 (Investigation): 옴부즈맨은 진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information)수집, 검문(inspection), 조사(examination), 취조(inquiries)를 수행할 수 있음.<sup>828)</sup> 조사는 옴부즈맨과 사무소 인력에 의해 진행되지만,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Public Prosecution officials)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합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sup>829)</sup> 옴부즈맨의 조사 권한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옴부즈맨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 및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지님.<sup>830)</sup>

⑤ 진정해소: 조사된 진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됨.

- 위법행위의 폭로(Disclosure of offences and publicity): 조사대상의 범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옴부즈맨은 사법당국(Public Prosecutor)이나 징계 및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 기관에 알림.<sup>831)</sup> 필요한 경우에 따라, 옴부즈맨은 지역공영방송(State-owned media)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sup>832)</sup>

---

827)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7(1-3)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mplaints"

828)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8(1) "Investigation"

829)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8(2) "Investigation"

830)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29(1-3) "Duty to cooperate"

831)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35(1) "Disclosure of offences and publicity"

832)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 권고(Recommendations): 옴부즈맨의 권고사항은 범법 행위를 시정할 수 있거나, 부당한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 당국에 전달되며,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기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60일 안에 발표해야 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상위기관, 심의회(Deliberative Assembly)나 의회(Parliament) 등에 알릴 수 있음.<sup>833)</sup>

(나) 감찰 및 중재 현황

2015년 포르투갈 옴부즈맨은 총 7335건의 진정을 새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7329건은 옴부즈맨 신고를 통해 들어온 진정이며, 6건은 옴부즈맨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루어짐.<sup>834)</sup> 진정은 분야별로 주제별 센터(Thematic Unit)에 의해 분류 및 처리되며, 2015년에 옴부즈맨이 받은 진정 신고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음.

- ① 환경, 도시계획 및 문화권 (Environmental, Urban planning and Cultural Rights): 2015년 환경, 도시계획 및 문화 분야 분야에서 조사된 진정은 734개이며, 이 중 옴부즈맨은 두 건의 이니셔티브를 시행. 고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총 547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 이 센터에서 높은 비중을 지닌 이슈는 차례로 토지개발(land development, 40.3%), 환경 및 자원개발(27.1%), 및 공사 및 주택공급(construction and housing, 24.7%)과 같음.<sup>835)</sup>
- ② 경제주체, 납세자 및 소비자 권리(Economic operators',taxpayers'and Consumers'rights): 본 센터에서는 2015년 총 1570개의 진정 조사가 이루어 졌음.<sup>836)</sup> 납세관련 주요 이슈로는 통행료(Toll fees), 과세(Tax Enforcement),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관련이 주를

---

February 18), art.28(2 “Investigation”

833) Statute of the Ombudsman, Law No.9/91, of April 9(as amended by Law No. 30/96, of August 14, Law No. 52-A/2005, of October 10, and Law No. 17/2013, of February 18), art.38(1-6) “Recommendations”

834)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14.

835)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22-26.

836)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27.

이름.<sup>837)</sup> 옴부즈맨에 중재를 요청한 소비관련 진정은 대부분 전기 및 가스 공급(Electricity and gas supply), 전화 및 텔레비전과 같은 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upply), 대중교통이용(Public transports)에 대한 진정으로서, 옴부즈맨은 해당 공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권고사항을 지시.<sup>838)</sup> 금융 및 재무관련 경제주체에 대한 진정 중 보험회사나 민간은행에 대한 진정은 옴부즈맨의 권한 밖이므로 세부 조사 없이 각하되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진정인에게 모두 통보 됨.<sup>839)</sup>

- ③ 사회권(Social rights): 2015년 사회권 침해에 관한 진정 조사는 16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85건이 조사로 진행됨.<sup>840)</sup> 전년도에 이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에 관한 진정이 많았는데,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sup>841)</sup> 1585건의 진정 중 923건(58.2%)이 옴부즈맨의 중재를 통해 불법행위 및 부당한 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짐.<sup>842)</sup>
- ④ 노동권(Workers' rights): 노동 및 고용에 관해 조사된 진정은 1021건으로서, 주요 이슈는 공무원 및 공무원채용 관련 분쟁(Public Employment Disputes)이 84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뒤이어 민사 노동쟁의(Private Labour Disputes, 104건) 및 고용과 직업연수(Employment and Occupational Training, 60건)이 있음. 공무원에 대한 진정 접수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진정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는 공무원 채용절차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진정

837)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28.

838)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32.

839)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35.

840)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37.

841)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4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4, p38.

842)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37.

이 있었음.<sup>843)</sup>

- ⑤ 사법 및 치안권(Right to justice and security): 조사된 진정의 수는 1012건으로서, 사법 및 치안권 센터의 주요 처리분야는 크게 사법부에 대한 진정, 기타 법에 대한 진정, 치안 및 안전문제, 교통안전, 및 등록과 공증에 대한 진정으로 구분됨. 사법부에 대한 진정으로는 사법처리 지연이 41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사법공무원에 대한 진정(119건)이 뒤를 이음.<sup>844)</sup>
- ⑥ 권리, 자유 및 보중에 관한 이슈(Rights, freedoms and guarantees; health, education and constitutionality valuations): 본 센터는 주요 중재 분야로 외국인법(Foreigner's Law), 국적(Nationality), 교도소시스템(Penitentiary System), 교육(Education), 건강(Health)등을 가짐.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진정을 담당하고 있음.<sup>845)</sup>
- ⑦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센터(Children,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 N-CID): 옴부즈맨 사무소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를 보다 집중하기 위해 N-CI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상담전화(Phone Helpline) 서비스와 일대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도 인식개선 운동과, 포르투갈 내 언급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개발하고 있음. 콜센터는 그 대상에 따라 아동상담전화(Children's Free Telephone Line), 노인상담전화(Senior citizen's Free Telephone Line), 장애인상담전화(Citizen with Disabilities Free Helpline)로 나뉘어 운영됨. 2015년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문의사항은 4157건에 달함.
- 아동상담전화(Children's Free Telephone Line): 아동상담전화의 주요 업무는 아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해당 기관에 문제를 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임. 2015년에는 총 671건의 문의전화가 기록되

843)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39.

844)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41-45.

845)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46.

었으며, 친권관련 문제(Parental responsibility issues, 163건)와 아동 교육에 관한 문제(Education and school related problems, 103건)가 대다수를 이룸.<sup>846)</sup>

- 노인상담전화(Senior citizen's Free Telephone Line): 노인상담전화는 매해 약 2800건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으며, 2015년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2864건에 달함. 다른 상담전화 라인에 비해 건수가 많은 것은, 움부즈맨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가 포르투갈 내 유일한 노인 관련 전화이기 때문으로 분석. 노인상담전화 역시 관련정보 제공 및 해결기관에 문제를 이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건강관련(Health, 318건), 노인지원서비스(Support Services, 251건), 노인요양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196건), 질병치료(ill-treatment, 160건), 연금(Pensions), 사회복지제도(Social Welfare, 145건)등이 있음.<sup>847)</sup>
- 장애인상담전화(Citizen with Disabilities Free Helpline): 장애인상담 전화는 2013년 4월 약 2년간의 시범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 이후 매년 약 600여건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는데, 주로 가족으로서의 의무사항(Family obligations, 88건), 사회보장수혜금(Social Benefits, 71건), 재활, 신체 및 정신 건강 센터(Rehabilitation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care, 54건)등에 관한 상담이 신청됨.<sup>848)</sup>

(2)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움부즈맨은 포르투갈 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소개됨. 첫째로, 인권관련 다양한 인권관련 이니셔티브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움부즈맨으로서 각종 행사에서 개회사 및 폐회사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846) 포르투갈 움부즈맨, 『포르투갈 움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57-58.

847) 포르투갈 움부즈맨, 『포르투갈 움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58-60.

848) 포르투갈 움부즈맨, 『포르투갈 움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60-61.

을 진행.<sup>849)</sup> 둘째로,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유럽의회(European Council) 등에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Report) 및 특정 주제에 관한 답변서(Questionnaire Response)를 제출.<sup>850)</sup>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옴부즈맨 홈페이지를 통해 옴부즈맨의 활동을 대중에게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뉴스레터(Newsletter), 보고서(Report), 논평(Communication) 등의 형태로 제공.<sup>851)</sup>

(3)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

유엔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이 1989년 포르투갈에서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를 비준함. OPCAT은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사찰 및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가예방기구(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의 설치 요구됨. 2013년 포르투갈 옴부즈맨은 각료 결의안(Resolu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 32/2013, of May 20th)을 통해 국가예방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됨.<sup>852)</sup> 포르투갈 옴부즈맨은 정기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경찰서 유치장(Police station's detention cells), 교도소(Prisons Facilities), 교육시설(Educational Centers), 정신병원(Psychiatry hospital) 등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함.<sup>853)</sup>

국가예방기구로서의 포르투갈 옴부즈맨 사무소는 2015년 한 해 동안 50여

849) 옴부즈맨, 부옴브맨, 옴부즈맨 사무소 직원이 참여한 행사 목록과 교육프로그램은 2015년 국회제출 보고서 71쪽부터 75쪽에서 찾아볼 수 있음.

850) 옴부즈맨 사무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출한 답변서 및 보고서는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예방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Report to the Parliament)』의 75쪽부터 76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851) <http://www.provedor-jus.pt/?idc=15> (검색일 2016. 9. 15)

852)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예방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8.

853) <http://www.provedor-jus.pt/?idc=107> (검색일 2016. 9. 13)

개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한 번은 옴부즈맨이 직접 참여. 지역별로는 수도인 리스본에서 총 15건의 조사가 이루어져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시설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교도소(19건)와 경찰서 유치장(16건)으로의 방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sup>854)</sup> 방문조사 이후엔 시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명함.<sup>855)</sup> 이외에도 NPM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 및 인권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주요 협력기관으로는 고문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유엔 산하 고문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이 있음. 2015년에는 포르투갈 옴부즈맨 홈페이지<sup>856)</sup>에 NPM을 위한 페이지를 마련, NPM의 기능, 구조, 활동내역 및 방문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sup>857)</sup>

#### (4) 국제활동

(가) 유엔(UN)관련 활동: 옴부즈맨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과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파트너 기구로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음. 또한, 포르투갈 내 인권 현황 및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 산하 위원회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에 활동보고서를 제출.<sup>858)</sup>

854)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예방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14-16, 각각의 방문점검에 관한 내용은 해당보고서 17쪽부터 74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855) 해당보고서 74-84쪽에는 2014년에 이루어진 방문조사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이 요약되어 있음.

856) <http://www.provedor-jus.pt/?idc=107> (검색일 2016. 9. 15)

857)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예방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86.

858)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나) 유럽 지역 활동: 포르투갈은 유럽 지역 내 기구인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옴부즈맨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Ombudsman), 및 유럽연합 기본권기관(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과의 협동.<sup>859)</sup>

(다) 포르투갈어 사용국가들 간의 활동: 옴부즈맨은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들 간의 옴부즈맨 네트워크, 국가인권기구 및 타 인권관련 기관들과의 미팅 개최 등을 통해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음.<sup>860)</sup>

바) 특이사항

국가 옴부즈맨이 설치된 후 국가 인권기관(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포르투갈 국가 옴부즈맨 (포르투갈어; Provedor de Justicia, 영어; Portuguese Ombudsman)는 GANHRI심사에서 1999년, 2007, 그리고 2012년에 A등급 유지<sup>861)</sup>.

25) 세르비아

세르비아 국가 정보 <sup>862)</sup>	
면적	88,361Km <sup>2</sup> km <sup>2</sup>
인구	약 721만명
수도	베오그라드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민족	세르비아인(83.3%), 헝가리인(3.5%), 로마인(2.1%), 보스니아인(2%)
주요언어	세르비아어
주요종교	세르비아정교(84.6%), 카톨릭(5.5%), 이슬람(3.1%) 등
GDP	GDP : 439억불('14, EIU)
	1인당 GDP : 6,354불('13, IBRD)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80.

859)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80.

860) 포르투갈 옴부즈맨, 『포르투갈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구, 2015 국회 제출 보고서 (Report to the Parliament)』, 2015, p80-81.

861)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세르비아 옴부즈맨(The Protector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Serbia, Ombudsman)<sup>863)</sup>
- (2) 설립연도: 2005년
- (3) 설립배경: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자율성을 지닌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05년 옴부즈맨법을 통해 설립됨. 옴부즈맨은 세르비아 시민의 권리존중의 증진 및 감독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옴부즈맨의 임무수행은 헌법, 법, 다른 규제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비준된 국제 조약 및 국제법에 의해 인정받은 규제를 준수함.<sup>864)</sup>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sup>865)</sup>
  - (가)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LOfficial Gazette of RS No. 79/05 and 54/07):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2005년 처음으로 옴부즈맨법(LoPoC)에 의해 세르비아 사법체계에 귀속된 국가기관임. 옴부즈맨법은 옴부즈맨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맨의 임명, 해임, 옴부즈맨의 조사영역, 국회제출의무, 타 기관과의 협업, 옴부즈맨 산하 사무소 운영 등이 있음.<sup>866)</sup> 이 외에도 본 법은 세르비아 옴부즈맨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 및 증진시키는 기구임을 확인.<sup>867)</sup>

---

862)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57.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57.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9. 9)

863) 법과 옴부즈맨 보고서에 쓰인 세르비아 옴부즈맨의 영문명은 시민대변인(The Protector of Citizens)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옴부즈맨(Ombudsman)이라는 표현을 공용하고 있음. 공식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www.ombudsman.org.rs/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Itemid=24](http://www.ombudsman.org.rs/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Itemid=24) (검색일 2016. 9. 20)

864)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19.

865) 세르비아 옴부즈맨의 설립근거법을 포함하여, 옴부즈맨의 역할 및 의무를 명시한 법들의 이름과 요약은 2015년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보고서 41쪽부터 45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866)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41

(나) 세르비아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sup>868)</sup>: 세르비아 옴부즈맨의 위치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음. 2006년 개정된 헌법 제 138조는 옴부즈맨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부처, 소유권 및 세르비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법기관, 이외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찰하는 독립 기관임을 명시.<sup>869)</sup> 헌법에 따라 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은 국회에서 담당하며,<sup>870)</sup> 옴부즈맨은 활동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님.<sup>871)</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임.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헌법에 의해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치를 보장받음.<sup>872)</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옴부즈맨 산하: 세르비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옴부즈맨, 네 명의 부 옴

---

867)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 “Introductory Provisions”, art.1(2)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1장 “서론조항” 제 1조 2항): The Protector of Citizens shall also ensure that human freedoms and rights are protected and promoted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인간의 자유 및 권리가 보호 및 증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68) <http://www.parlament.gov.rs/national-assembly/important-documents.531.html>  
(검색일 2016. 9. 20)

869)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2006, art.138(1) (세르비아 헌법, 제 138조 1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870)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2006, art.138(3) (세르비아 헌법, 제 138조 3항): The Civic Defender shall be elected and dismi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국회가 임명 및 해임을 한다)

871)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2006, art.138(4) (세르비아 헌법, 제 138조 4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872)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2006, art.138(2) (세르비아 헌법, 제 138조 1항): The Civic Defender shall be independent state body who shall protect citizens’ rights and monitor the work of public administration bodies, body in charge of legal protection of proprietar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Serbia, as well as other bodies and organisations, companies and institutions to which public powers have been delegated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세르비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부처, 소유권 및 세르비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법기관, 이외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찰한다)

부즈맨, 및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국(Secretariat)을 두고 있음.

(나) 사무국: 사무국은 2007년 12월 24일 개소하였으며, 수장은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임. 2015년 12월자로, 사무국은 총 8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50명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정규직 직원이며, 31명은 단기 및 계약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음.<sup>873)</sup>

(2) 지역사무소

옴부즈맨 중앙사무소는 수도인 베오그라드(Belgrade)에 위치함.

옴부즈맨은 지역사무소의 설립을 결정할 수 있음.<sup>874)</sup> 지역사무소는 세르비아 전역에 걸쳐 총 18개를 가지고 있음.<sup>875)</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옴부즈맨 사무소의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충당.

매년 옴부즈맨은 다음 년도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예산은 옴부즈맨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운용은 세르비아의 미시경제정책을 준수해야 함.<sup>876)</sup>

2015년 옴부즈맨에 할당된 예산은 1억 7천만 디나르(RSD 176,580,000, 한화 약 17억9천만 원)이며, 이 중 1억 5천만 디나르(RSD 154,792,573)를 집행.<sup>877)</sup>

---

873)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Annex II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335.

874)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 “Introductory Provisions”, art.3(1-2)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1장 “서론조항” 제 1조 1-2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875) [http://www.ombudsman.org.rs/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8&Itemid=11](http://www.ombudsman.org.rs/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8&Itemid=11) (검색일 2016. 9. 22)

876)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VII “Funds for Work of the Protector of Citizens” art.37(1-3)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7장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예산” 제 37조 1-3항): 1. The funds for the work of the Protector of Citizens are provided in the Republic budget, 2. The Protector of Citizens shall draft a proposal for funds for the following year, pursuant to methodology and criteria in force for other budget spending units and shall deliver it to the Government for inclusion as an integral part of the proposed Republic budget, 3. Annual funds for the work of the Protector of Citizens should be sufficient to enable him to fulfil his duties in efficient and operational (1. 세르비아 옴부즈맨의 예산은 국가로부터 지급된다, 2.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예산계획에 대한 다른 부서들의 방법 및 규제를 따라 차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이를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3. 한 해 예산은 옴부즈맨이 임무수행 및 조사를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① 옴부즈맨 자격요건: 옴부즈맨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먼저 세르비아 시민권자로서,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sup>878)</sup>

- 법학사 학위 소지자 (bachelor's degree in law)
- 옴부즈맨의 업무 권한 내 분야에서 최소 십 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 높은 도덕성 및 뛰어난 자질(high moral character and qualification)
- 시민의 권리보호 분야에 경험이 깊은 자

② 옴부즈맨 임명 및 절차: 옴부즈맨의 임명은 세르비아 국회의 소관. 국회는 국회헌법위원회(National Assembl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Issues)의 추천을 받아 옴부즈맨을 임명함. 국회 원내 교섭단체(Parliamentary group in the National Assembly)는 국회헌법위원회에 옴부즈맨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거나 공동후보자(Joint Candidate)를 지정할 수 있음. 국회헌법위원회가 추천을 할 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추천을 위해 제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옴부즈맨으로서의 자질평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sup>879)</sup>

(나) 부옴부즈맨 (Deputies) 임명: 옴부즈맨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임명하며, 자격요건으로는 세르비아 시민권자일 것과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음.<sup>880)</sup>

---

877)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Annex “Financial Statement”, p339-340.

878)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 “Appointment and End of Office”, art.5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5조): 해당 조항 직접 인용.

879)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 “Appointment and End of Office” art.4(1-5)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4조(1-5)): 해당 조항 직접 인용.

880)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 “Appointment and End of Office” art.6(4-6)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6조(4-6)): 해당 조항 직접 인용.

- ① 학사 학위 소지자(university degree)
- ② 옴부즈맨의 업무 권한 내 분야에서 최소 오 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 ③ 높은 도덕성 및 뛰어난 자질
- ④ 시민의 권리보호 분야에 경험이 깊은 자

(다) 사무국(Secretariat)

- ①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 사무국장은 법 학위(degree in law)를 소지하고, 최소 오 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하며, 행정부서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sup>881)</sup>
- ② 사무국 직원의 고용은 옴부즈맨(The Protector of Citizens)이 담당함.<sup>882)</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세르비아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은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음.<sup>883)</sup>

지위에 대한 해당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옴부즈맨 임금의 경우 헌법재판소장(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과 동일하며, 부옴부즈맨의 임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Judge of the Constitutional Court)에 준함.<sup>884)</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은 부옴부즈맨에 대한 추천권한 및 사무국직원의 고용권한이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연임이 가능.<sup>885)886)</sup>

881)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VIII“Secretariat”art.38(2)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8장 “사무국” 제 38조(2)): 해당 조항 직접인용.

882)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VIII“Secretariat”art.38(4)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8장 “사무국” 제 38조(4)): 해당 조항 직접인용.

883)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Appointment and End of Office”art.9(3)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9조(3)): 해당 조항 직접 인용.

884)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VI“Right to Salary”art.36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5장 “옴부즈맨 보수” 제 36조): 해당 조항 직접 인용.

885)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Appointment and End of Office”art.4(6)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4조(6)): 해당 조항 직접 인용.

886)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Appointment and End of Office”art.6(4)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6조(4)): 해당 조항 직접 인용.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가) 옴부즈맨은 임무수행을 하며 발생한 옴부즈맨의 견해, 권고사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sup>887)</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주요 권한 및 기능

(1) 법의 개정 및 신설: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규제의 부재로 인해 세르비아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정부(the Government) 또는 국회(National Assembly)와 함께 법령 개정에 관한 계획이나 새로운 법령 신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sup>888)</sup> 또한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이나 규제에 대한 합헌 및 부적법성을 평가하도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889)</sup>

(2) 진정조사: 옴부즈맨은 진정이 있을 경우 혹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890)</sup>

(가) 진정 제출: 법이나 규칙, 혹은 행정당국의 행위로 인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 기관 및 외국인은 누구든지 진정을 제출할 수 있음.<sup>891)</sup> 진정은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되지 않음.<sup>892)</sup>

---

항 직접 인용.

887)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Appointment and End of Office”, art.10(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2장 “옴부즈맨 사무소의 임명 및 해산” 제 10조 (1)): 해당 조항 직접 인용.

888)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I“Powers”, art.18(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3장 “권한” 제 18조 1항): The Protector of Citizens shall have the power to launch initiatives with the Government or National Assembly for the amendment of laws or other regulations or general acts, if he deems that violations of citizens’ rights are a result of deficiencies of such regulations. He shall also have the power to launch initiatives for new laws, other regulations and general acts, if he considers it significant for exercising and protecting citizens’ rights (법령의 문제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정부 또는 국회와 함께 법령의 개정 및 신설에 관한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889)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II“Powers”, art.19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3장 “권한” 제 19조): 해당 조항 직접인용.

890)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V“Procedure”, art.24(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4장 “절차”제 24조 1항): 해당조항 직접 인용.

891)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V“Procedure”, art.25(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4장 “절차”제 24조 1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 (나) 진정 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함.<sup>893)</sup> 조사에 중요한 대상일 경우, 대상 기관의 누구든지 인터뷰를 할 권리를 지님.<sup>894)</sup>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는 교정기관이나 장소에 대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의 비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음.<sup>895)</sup>
- (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OPCAT)의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로서의 역할을 수행.<sup>896)</sup>
- (4) 국회에 대한 의무: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매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sup>897)</sup>

---

892)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V“Procedure”, art.26(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4장 “절차”제 26조 1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893)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V“Procedure”, art.21(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4장 “절차”제 21조 1항):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all co-operate with the Protector of Citizens and enable his access to their premises and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which are of importance for the proceedings he runs, i.e. for the fulfillment of the goal of his preventive operation,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nfidentiality of such information, unless it is contrary to the law (행정당국은 세르비아 옴부즈맨과 협력하여야 하며, 옴부즈맨에게 시설에 대한 권한 및 조사에 중요한 자료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자료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 한해 기밀의 등급에 관계없이 옴부즈맨의 임무수행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894)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V“Procedure”, art.21(2)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4장 “절차”제 26조 2항): 해당 조항 직접인용.

895)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IV“Procedure”, art.22: 해당 조항 직접인용.

896) [http://www.npm.lls.rs/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9&Itemid=10](http://www.npm.lls.rs/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9&Itemid=10) (검색일 2016. 9. 27)

897) Law on the Protector of Citizens, Part V“Report to the Assembly and Co-operation of Protector of Citizens with other Bodies”, art.33(1) (세르비아 옴부즈맨법, 제 5장 “옴부즈맨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다른 기관과의 협업”제 33조 1항): The Protector of Citizens shall submit a regular annual report to the Assembly that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activities in the preceding year, noted irregularities in the work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status of citizens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국회에 전년도 활동에 관한 정보, 행정당국의 드러난 부조리 사항 및 행정당국과 관련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 활동

(가) 분야별 활동사항: 인권 및 기본권 관련한 옴부즈맨의 주요 활동분야는 아동권리(child Rights), 소수민족 권리(Rights of National Minorities), 양성평등 및 성적소수자 권리(Gender Equality and Rights of LGBTI Persons), 장애인권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 및 국가예방기구로서의 활동(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and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등이 있음.<sup>898)</sup>

(나) 진정접수 현황: 2014년 접수된 진정은 총 4877건임, 가장 많은 진정이 들어온 분야는 차례로 다음과 같음. 사법분야(Justice Sector, 466건), 아동권리(Child rights, 417건), 지방자치단체(Local self-government, 409건). 권리관련해서는 정부의 좋은 거버넌스에 관한 권리(Right to good governance)에 대한 진정이 총 214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한 진정이 1994건으로 뒤이었음.<sup>899)</sup>

(다) 권고, 견해 및 법 관련 활동

① 2014년 진행된 833건의 조사활동에 대해,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총 799건의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에 전달. 정부의 좋은 거버넌스 원칙(good governance principle)에 관한 내용이 전체 권고사항의 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동권리(child rights, 10%)와 장애인관련(Persons with disabilities, 8%) 권고사항이 뒤를 이음.<sup>900)</sup>

② 2014년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공공기관에 대해 18개의 견해를 제공. 16개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2개는 법률 입안 초기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경우

898) 세르비아 옴부즈맨의 인권 및 기본권 수호활동에 관한 사항은 2015년 연간보고서 36쪽부터 221쪽 까지 분야별로 소개되어 있음.

899)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IV: Total Number and Classification of Complaints, p236-245.

900)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V: Recommendations, Opinions and Legislative Initiatives of the Protector of Citizens, 5.1“Recommendations”, p246.

국회, 정부 규제, 및 법률 초안에 견해를 포함함.<sup>901)</sup>

- ③ 2014년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총 7건의 법 개정을 시작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회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특정 법령의 조항들에 대한 합헌성 및 법적 검토를 시행.<sup>902)</sup>

(라) 대외활동

- ①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일간지 및 주간지를 포함한 신문사에 총 563건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43건의 방송 보도를 함.<sup>903)</sup>
- ② 옴부즈맨은 법으로 정한 옴부즈맨의 비조사대상 기관들인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법정, 및 검찰과의 협력을 도모해옴. 국회는 2건의 옴부즈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옴부즈맨의 국가예방기구로서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진행.<sup>904)</sup>
- ③ 세르비아 옴부즈맨은 세계옴부즈맨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지중해옴부즈맨협회(Association of Mediterranean Ombudsmen) 등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sup>905)</sup>

바) 특이사항

특이사항은 없음

901)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V: Recommendations, Opinions and Legislative Initiatives of the Protector of Citizens, 5.2“Opinions”, p249.

902)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V: Recommendations, Opinions and Legislative Initiatives of the Protector of Citizens, 5.3. “Legislative Initiatives”, p249-251.

903)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III: Cooperation by the Protector of Citizens, 3.1 “Protector of Citizens in the Media”, p227-229.

904)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III: Cooperation by the Protector of Citizens, 3.2. “Cooperation with Public Authorities excluded from Oversight by the Protector of Citizens”, p229-231.

905) 세르비아 옴부즈맨, 『2015 세르비아 옴부즈맨 연간보고서(Regular Annual Report of the Protector of Citizen for 2015)』, Part III: Cooperation by the Protector of Citizens, 3.3.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jects”, p231-233.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세르비아 국가옴부즈맨(The Protector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Serbia, Ombudsman) GANHRI심사에서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A등급 유지.<sup>906)</sup>

## 다. 미주

### 2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국가 정보 <sup>907)</sup>	
면적	279만km <sup>2</sup>
인구	4,313만명('15)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연임가능)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카톨릭 71%, 기독교 15% (2014) <sup>908)</sup>
GDP	GDP : 5,631억불(2015)
	1인당 GDP : 13,271불(2015)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아르헨티나 국가옴부즈맨

(El Defensor del Pueblo de la Nación Argentina)

(2) 설립연도: 1994년

(3) 설립배경<sup>909)</sup>: 1994년 7월 20일의 기록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옴부즈맨 제도는 1974년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의회위원장 (comisionado del Congreso)”으로 불림. 1975년 독재자들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기 시작하였고, 이 당시, “의회위원장”의 개념이 “인권을 위한 국가옴부즈맨(comisionado del Congreso en Defensor de los Derechos Humanos)”의 형태로 변화하였음.

1980년대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옴부즈맨의 개념이 형성되고 나서,

906)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  
(검색일 2016. 9. 12)

907)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69.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69.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9.23.)

908) [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Argentina](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Argentina) (검색일 2016.9.23.)

909) <http://www.derecho.uba.ar/publicaciones/pensar-en-derecho/revistas/5/defensor-de-l-pueblo-y-la-reforma-constitucional-de-1994.pdf> (검색일 2016.10.6.)

Libardo Eduardo Menem을 포함한 상원의원들이 1984년부터 9년간의 시간을 들여 법 No. 24284를 제정(1993년 12월 1일)하고, 그 후 1994년 10월 17일, Jorge Maiorano가 첫 국가옴부즈맨(Primer Ombudsman Nacional)이 됨.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아르헨티나 헌법 제 86조

이 조항에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독립성과 목적, 옴부즈맨 임명 과정 및 세부적인 부분을 정의하게 되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sup>910</sup>).

(나)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개정법 N.24.397)<sup>911</sup>)

1993년 12월에 법 N.24.284가 먼저 의회에 의해 제정되고, 법 N.24.397를 통해 개정됨<sup>912</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913</sup>)

---

910) <http://servicios.infoleg.gob.ar/infolegInternet/anexos/0-4999/804/norma.htm> (검색일 2016.9.23.)

Artículo 86.

제 86조

El Defensor del Pueblo es un órgano independiente instituido en el ámbito del Congreso de la Nación, que actuará con plena autonomía funcional, sin recibir instrucciones de ninguna autoridad. Su misión es la defensa y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y demás derechos, garantías e intereses tutelados en esta Constitución y las leyes, ante hechos, actos u omisiones de la Administración; y el control del ejercicio de las funciones administrativas públicas.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의회(Congreso de la Nación) 내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그 어떤 당국의 지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역할 이행에서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사무소의 목적은 행정기구의 특정 행동으로부터 인권 및 동 헌법과 법률들을 통한 다른 권익의 옹호와 보호, 그리고 공공행정기관의 역할 규제에 있다.

911)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912) <http://www.dpn.gob.ar/dpn.php> (검색일 2016.9.23.)

913) 세부 설명이 공식 웹사이트나 연간보고서에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옴부즈맨 사무소의 조직은 크게 사무국과 사무처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필두로 기관 커뮤니케이션, 국제관계, 법률 및 기술 사무실, 기관 총무, 행정 및 인사,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뉘어져 있음. 사무처에는 총 6개 영역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영역으로 인권보호 전반, 제2영역으로 건강·사회행동·교육과 문화, 제3영역으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제4영역으로 사용자, 업무·공공서비스, 경제, 재무·조세, 제5영역으로 사회보장 및 노동, 그리고 인권특별보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옴부즈맨 사무소의 최고책임자는 1명의 옴부즈맨과 부위원장격의 부옴부즈맨이 2명 있음(그림 14 참고).



출처: 아르헨티나 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dpn.gov.ar/autoridades.php>

[아르헨티나-그림 14] 아르헨티나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2) 지역사무소

- (가) 5개 지역 내 5개 사무소(oficinas regionales) 존재. Sede Central, Córdoba, San Salvador de Jujuy, Santa Rosa, Viedma.<sup>914)</sup>
- (나) 18개 지역 내 21개의 준사무소/창구(receptoría) 존재, 주로 진정을 신청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소기관들임. Catamarca, Resistencia, Rawson, Córdoba 내 3개 (Marcos Juárez, Río Cuarto, Villa María), Corrientes, Paraná, Formosa, La Quiaca, La Rioja, Mendoza, Posadas, Salta, San Juan, San Luis, Rosario, Santiago del Estero, Ushuaia, Tucumán<sup>915)</sup>
- (다) 이와 별개로, 19개 지역 내 42개의 자치 옴부즈맨사무소들 존재<sup>916)</sup>.

(3) 예산 규모<sup>917)</sup> 및 예산의 독립성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및 근거법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출을 위한 자원들은 예산 관련 법령들에 따라 의회에서 제공됨<sup>918)</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옴부즈맨)

국가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절차<sup>919)</sup>에 따라 의회에 의해 선출됨:

914) <http://www.dpn.gob.ar/oficinas.php?idS=2100> (검색일 2016.9.23.)

915) <http://www.dpn.gob.ar/oficinas.php?idS=2200> (검색일 2016.9.23.)

916) <http://www.dpn.gob.ar/oficinas.php?idS=2300> (검색일 2016.9.23.) 행정구역상 자치기구들로 세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917) 예산규모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음.

918)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36.- Presupuesto. 제 36조 예산

Los recursos para atender todos los gastos que demande el cumplimiento de la presente ley provienen de las partidas que las leyes de presupuesto asignan al Poder Legislativo de la Nación.

이 법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출을 위한 자원들은 (예산 관련 법령들에 따라) 의회에서 나온다.

919)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2º.- Titular. Forma de elección.

- ① 옴부즈맨 선출을 위해 구성된 상하원 양원위원회를 구축하고, 위원회는 7인의 상원의원과 7인의 하원위원으로 이루어짐.
- ②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장과의 회의를 통해 옴부즈맨 후보 3인을 선정하고, 양원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짐.
- ③ 후보가 선정되면 그 후로 30일 안에 양원에서 투표를 실시, 투표 수가 의원 수의 2/3 이상이 나오는 후보자가 옴부즈맨으로 선출됨.
- ④ 첫 투표 때 그 누구도 의원 수 2/3를 얻지 못하는 경우 투표수를 만족하는 적임자가 나올 때 까지 투표를 반복함.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최소 30세 이상인 아르헨티나 태생이거나

---

Es titular de ese organismo un funcionario denominado Defensor del Pueblo quien es elegido por el Congreso de la Nación de acuerdo con el siguiente procedimiento: (...) 국가옴부즈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a) Ambas Cámaras del Congreso deben elegir una comisión bicameral permanente, integrada por siete (7) senadores y siete (7) diputados cuya composición debe mantener la proporción de la representación del cuerpo;  
양원에서는 상임양원위원회를 선출, 7인의 상원의원과 7인의 하원위원으로 이루어진다.

b) En un plazo no mayor de treinta (30) días a contar desde la promulgación de la presente ley, la comisión bicameral reunida bajo la Presidencia del presidente del Senado, debe proponer a las Cámaras de uno a tres candidatos para ocupar el cargo de defensor del pueblo.

Las decisiones de la comisión bicameral se adoptan por mayoría simple;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의장과 만나 옴부즈맨 위원장 후보 3인을 선정한다. 양원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c)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siguientes al pronunciamiento de la comisión bicameral, ambas Cámaras eligen por el voto de dos tercios de sus miembros presentes a uno de los candidatos propuestos;  
그 후로 30일 안에 양원에서는 투표를 실시해 표가 자리에 참석한 의원 수의 2/3 이상이 나오는 한 사람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d) Si en la primera votación ningún candidato obtiene la mayoría requerida en el inciso anterior debe repetirse la votación hasta alcanzarse;  
첫 투표 시 그 누구도 해당 수의 투표량을 얻지 못하는 경우 투표수를 만족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 까지 절차를 반복한다.

e) Si los candidatos propuestos para la primera votación son tres y se diera el supuesto del inciso d) las nuevas votaciones se deben hacer sobre los dos candidatos más votados en ella.

만약 첫 투표 당시 후보자 수가 3명이었을 경우, (...) 다음 투표는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두 후보자들만을 두고 새로운 기준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귀화한 아르헨티나인이어야 함<sup>920</sup>).

(나) 부위원장 (부옴부즈맨)<sup>921</sup>

옴부즈맨의 제안에 따라 동법 제 2조의 양원위원회는 두 사람의 부위원장(부옴부즈맨)을 임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해임도 가능.

부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동법 제 4조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니고 있어야 함:

- ① 8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지니고 있거나, 사법부나 입법부, 공공행정이거나 대학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지닌 자
- ② 공공 권리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경력을 지닌 자

부옴부즈맨들에게는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법률 내용 (제 3, 5, 7, 10,

---

920)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921)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13.- Adjuntos. 제 13조 부옴부즈맨

A propuesta del Defensor del Pueblo la comisión bicameral prevista en el artículo 2º, inciso a) debe designar dos adjuntos que auxiliarán a aquél en su tarea, pudiendo reemplazarlo provisoriamente en los supuestos de cese, muerte, suspensión o imposibilidad temporal, en el orden que la comisión determine al designarlos.

옴부즈맨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동법 제 2조의 양원위원회는 두 사람의 부옴부즈맨을 임명해야 하고, 임기 종료나 사망, 임기 임시 중단이 경우 등 양원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해임도 가능하다.

Para ser designado adjunto del Defensor del Pueblo son requisitos, además de los previstos en el artículo 4º de la presente ley:

a) Ser abogado con ocho años en el ejercicio de la profesión como mínimo o tener una antigüedad computable, como mínimo, en cargos del Poder Judicial, Poder Legislativo,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o de la docencia universitaria;

b) Tener acreditada reconocida versación en derecho público.

부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동법 제 4조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a) 8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지니고 있거나 (...) 적어도 사법부나 입법부, 공공행정이거나 대학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지닌 자

b) 공공 권리에 대하여 잘 알려진 경력을 지닌 자

A los adjuntos les es de aplicación, en lo pertinente, lo dispuesto en los artículos 3º, 5º, 7º, 10, 11 y 12 de la presente ley.

부옴부즈맨들에게는 동법 제 3, 5, 7, 10, 11, 그리고 12조가 적용된다.

Perciben la remuneración que al efecto establezca el Congreso de la Nación por resolución conjunta de los Presidentes de ambas Cámaras.

부옴부즈맨들은 의회의 양원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불받는다.

- 11, 그리고 12조)이 동일하게 적용.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은 두명의 부옴부즈맨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임기는 5년이며 1번의 재임이 가능<sup>922</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923</sup>  
아르헨티나 헌법 제 86조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의회 의원들과 동일한 면책 및 특권을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924</sup>

(1) 주요 권한 및 기능

(가) 진정

- ① 모든 진정은 진정인이 진정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진정인의 이름과 성, 거주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진정 내용에는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의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함. 진정을 신청할 때에는 진정인에게 별다른 자격요건이나 법적 대리인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절차는 무료로 이루어져야 함<sup>925</sup>).

922)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923)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아르헨티나 헌법

Artículo 86 제 86조 중 일부

El Defensor del Pueblo tiene legitimación procesal. Es designado y removido por el Congreso con el voto de las dos terceras partes de los miembros presentes de cada una de las Cámaras. Goza de las inmunidades y privilegios de los legisladores. (...) 국가옴부즈맨은 (...)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는데, 이는 양원 각각 참석한 의원들의 2/3에 해당하는 투표로 결정된다. 위원장은 의원들의 면책 및 특권을 누린다. (후략)

924) <http://www.dpn.gob.ar/competencia.php> (검색일 2016.9.23.)

925)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19.- Queja. Forma. 제 19조 진정

Toda queja se debe presentar en forma escrita y firmada por el interesado, con indicación de su nombre, apellido y domicilio en el plazo máximo de un año

- ② 만약 진정 내용이 옴부즈맨사무소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 않거나, 동법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밖이라면, 옴부즈맨은 이러한 진정을 관할권을 지니는 다른 당국에 위임할 수 있음<sup>926</sup>).
- ③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경우<sup>927</sup> 진정을 기각할 수 있음:
  - a. 진정의 내용이 악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거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b. 진정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미 행정적 혹은 사법적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 c.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 ④ 진정을 접수받고, 옴부즈맨은 법규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간략

calendario, contado a partir del momento en que ocurriere el acto, hecho u omisión motivo de la misma.

모든 진정은 진정인이 (진정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진정인의 이름과 성, 1년 간의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 내용에는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의 (...)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No se requiere al interesado el cumplimiento de otra formalidad para presentar la queja.

진점을 신청할 때에는 진정인에게 다른 형태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Todas las actuaciones ante el Defensor del Pueblo son gratuitas para el interesado, quien no está obligado a actuar con patrocinio letrado.

국가옴부즈맨사무소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는 무료로 이루어지고, 법적 대리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926)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927)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21.- Rechazo. Causales. 제 21조 진정의 기각 (일부)

El Defensor del Pueblo no debe dar curso a las quejas en los siguientes casos:

국가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 Cuando advierta mala fe, carencia de fundamentos, inexistencia de pretensión o fundamento fútil o trivial;

진정의 내용이 악의성을 지니고 있거나, 근거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헛되거나 하찮은 경우

b) Cuando, respecto de la cuestión planteada, se encuentre pendiente resolución administrativa o judicial.

진정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미 행정적 혹은 사법적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Puede rechazar también aquellas quejas cuya tramitación irrogue perjuicio al legítimo derecho de tercera persona.

또한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 조사를 진행. 모든 경우에 사무소는 해당 기관에 최대 30일 안에 서면 보고를 전달하되, 이 30일의 기간은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더 연장될 수도 있음<sup>928)</sup>.

- ⑤ 2015년 옴부즈맨사무소는 12,002건의 진정에 대해 절차를 밟음. 이 중 175건은 직권 조사. 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한 1994년 10월을 기준으로 누적된 진정의 수는 251,156건. 2015년 기준으로 진정 및 직권조사 분야의 반 이상의 지분(55.19%)을 차지했던 분야가 이용자와 소비자, 공공서비스, 경제, 재무 등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18.90%)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보장과 노동에 대한 것이었음<sup>929)</sup>.

(나) 의회 보고서 작성

- ① 옴부즈맨은 매 해 5월 31일에 양원에 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함. 추가적으로, 특정 사실 관계에 심각성과 긴박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기도 함. 연간보고서 및 몇몇 특별보고서는 국가관보와 양원의 일간회의록에 출간되고, 사본은 국가 행정부에 송부됨.
- ② 옴부즈맨은 보고서에 진정의 수와 종류를 분류해 보고하는데, 이 중 몇 개의 진정이 조사 전에 기각되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위와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됨. 또한, 사무소의 예산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③ 사무소의 개선사항을 의회에 제안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포함할 수

928)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23.- Procedimiento. 제 23조 절차 (일부)

Admitida la queja, el Defensor del Pueblo debe promover la investigación sumaria, en la forma que establezca la reglamentación, para el esclarecimiento de lo supuestos de aquélla. En todos los casos debe dar cuenta de su contenido al organismo o entidad pertinente, a fin de que por intermedio de autoridad responsable y en el plazo máximo de treinta (30) días, se remita informe escrito. El plazo puede ser ampliado cuando concurran circunstancias que lo aconsejen a juicio del Defensor del Pueblo.

진정을 접수받고, 옴부즈맨은 법규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간략한 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경우에 사무소는 해당 기관에 최대 30일 안에 서면 보고를 전달한다. 기간은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연장될 수도 있다.

929) <http://www.dpn.gob.ar/documentos/anuales/ianual2015.pdf> (검색일 2016.10.6.)

있음. 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원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다) 기타 권한

- ① 조사, 시찰, 조회 등을 이행하고 기록, 보고서, 서류, 아카이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자료 및 중요 요소 수집에 대해서도 관련 결정권을 지님.
- ② 입법부(Poder Legislativo)와 행정부(Administración Pública)에 적극적인 수행시 불공정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제도에 대한 개정 제안 가능
- ③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생물학자, 생태학자와 지질학자 등을 학제간 연구 팀(equipo interdisciplinario)으로 모아 사무소의 활동 내용(직권조사나 진정의 결과, 특정 제안의 진행 과정, 최신기술 도입 및 자료 프로세싱 등)을 분석.

(라) 관할권

- ①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 대해 관할권을 지님: 중앙 및 분권행정기관, 자치기관, 국영기업, 혼합경제회사, 그 외 국가 기관 및 국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②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예외인 기관은 사법부, 입법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임<sup>930</sup>.

930) <http://www.dpn.gob.ar/ley24284.php> (검색일 2016.9.2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법 N.24.284, 법 N.24.397)

ARTICULO 16.- Competencia. 제 16조 권한

Dentro del concepto de administración pública nacional, a los efectos de la presente ley, quedan comprendidas la administración centralizada y descentralizada; entidades autárquicas; empresas del Estado; sociedades del Estado; sociedades de economía mixta; sociedades con participación estatal mayoritaria; y todo otro organismo del Estado nacional cualquiera fuere su naturaleza jurídica, denominación, ley especial que pudiera regirlo, o lugar del país donde preste sus servicios.

국가공공기관의 개념 안에서,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다: 중앙 및 분권행정기관, 자치기관, 국영기업, 혼합경제회사, (...), 그 외 국가 기관 및 국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Quedan exceptuados del ámbito de competenci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el

(2) 활동 내용

(가) 헌법과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의 목표 수행에 따라, 옴부즈맨사무소는 직권으로, 혹은 요청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조사 내용은 국가 공공기관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들의 행동들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있음:

- ① 순기능 mal funcionamiento
- ② 위법기능 ilegitimidad
- ③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 결여 falta de respuesta a reclamos efectuados
- ④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주의 및 대우 mala prestación, atención o trato
- ⑤ 정보 불충분 insuficiencia de información
- ⑥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인권침해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del usuario y del consumidor
- ⑦ 환경 보존과 관련된 문제 cuestiones atinentes a la pre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 ⑧ 국가로부터 결정된 사법 판결 불이행 casos de incumplimiento de sentencias judiciales por parte del Estado.
- ⑨ 사무소는 특정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능한데, 이는 사건 내용이 행정 및 사법적 결정을 대기하고 있거나, 사건 자체가 (개입 시기로부터) 1년 이상 이전에 벌어진 경우에 그러함.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서, 상하 양원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됨. 진정 및 조사 권한이 있고 의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함. 또한 위원장 자격으로 8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두고 있는 점이 특이 사항임.

---

Poder Judicial, el Poder Legislativo, la Municipalidad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y los organismos de defensa y seguridad;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예외인 기관은 사법부, 입법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931)</sup>

1999년에 A등급으로 가입, 2006년 10월과 2011년 10월의 심사에서도 A등급 유지.

## 27) 볼리비아

국가 정보 <sup>932)933)</sup>	
면적	1,098,581km <sup>2</sup>
인구	1,060만('14년)
수도	라파스 (La Paz, 행정수도)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Guaraní, Quechua, Aymara
주요종교	78% 카톨릭, 19% 개신교
GDP	국내총생산 330억불 (2015년말)
	1인당 국민소득 2,886불 (추정) (2015말)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볼리비아 국가옴부즈맨 (Defensor del Pueblo en Bolivia)

(2) 설립연도: 1998년

(3) 설립배경<sup>934)</sup>: 옴부즈맨사무소(La Defensoría del Pueblo)는 옴부즈맨(Defensor del Pueblo)으로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옴부즈맨사무소 볼리비아지부(el Capítulo Boliviano del Ombudsman)”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로 형성된 단체가 되었음. 1992년의 헌법과 1997년에 의회를 통과한 법률 1818, 이 두 가지의 법을 통해 이 기관의 조직과 권한의 형태가 형성됨.

의회는 특별회기를 열어 기자 출신 Ana María Romero de Campero를 1998년 3월 2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첫 옴부즈맨으로 선출했는데, 당시 그녀는 2/3이 넘는 투표 결과를 통해 선출되었음.

옴부즈맨의 공식 활동은 10월 1일부터 La Paz 내에 사무소가 형성되는 것

931)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23)

932)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51.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51.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9.30.)

933) <https://en.wikipedia.org/wiki/Bolivia> (검색일 2016.9.30.)

934) <http://www.defensoria.gob.bo/sp/historia.mundo1.asp> (검색일 2016.9.30.)

으로부터 시작되었음. 기관에 제출된 첫 진정들과 더불어, 주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이주민과 페루 국적의 정치 난민, 그리고 이탈리아 이주민 등에 대한 직권 조사들이 진행되었음. 모든 상황에 있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었음.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볼리비아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제 218조 ~ 224조<sup>935)</sup>

옴부즈맨사무소 및 옴부즈맨에 대한 헌법 조항들.

① 제 218조<sup>936)</sup>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목적, 역할, 소통 대상 및 사무소의 자치적 및 독립성에 대해 명시.

② 제 219조<sup>937)</sup>에는 옴부즈맨의 권한과 임기, 면책, 제 220조<sup>938)</sup>에는 임

935)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936)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Artículo 218. 제 218조

I. La Defensoría del Pueblo velará por la vigencia, promoción, difusión y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humanos, individuales y colectivos, que se establecen en la Constitución, las leyes y los instrumentos internacionales. La función de la Defensoría alcanzará a la actividad administrativa de todo el sector público y a la actividad de las instituciones privadas que presten servicios públicos.

옴부즈맨사무소는 효과적인 인권 홍보, 보급, 보장 및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개인 및 공동체를 위한 인권이 모두 포함되고, 이는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제도 등을 통해 확립되어 있다. 사무소의 역할은 모든 공공부문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기관을 통한 행정 활동을 살피는 것이다.

II. Corresponderá asimismo a la Defensoría del Pueblo la promoción de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naciones y pueblos indígena originario campesinos, de las comunidades urbanas e interculturales, y de las bolivianas y los bolivianos en el exterior.

옴부즈맨사무소는 국민들 및 선주민들의 권리 및 도심이나 다문화화를 배경으로 하는 커뮤니티와 재외 볼리비아인들을 위해 소통한다.

III. La Defensoría del Pueblo es una institución con autonomía funcional, financiera y administrativa, en el marco de la ley. Sus funciones se regirán bajo los principios de gratuidad, accesibilidad, celeridad y solidaridad.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no recibe instrucciones de los órganos del Estado.

옴부즈맨사무소는 법적으로 기능 수행, 재정, 행정적 자치를 누린다. 사무소는 서비스 무료 제공, 접근성의 용이함, 신속함과 연대 등의 원칙을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에 있어 타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명 과정, 그리고 제 211조<sup>939)</sup>에는 자격 요건에 대해 명시. 제 222조<sup>940)</sup>에는 옴부즈맨의 자세한 권한 및 업무 내용 기재.

- 937)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Artículo 219. 제 219조.  
I. La Defensoría del Pueblo estará dirigida por la Defensora o el Defensor del Pueblo, que ejercerá sus funciones por un periodo de seis años, sin posibilidad de nueva designación.  
옴부즈맨사무소는 옴부즈맨을 통해 운영된다. 위원장에게는 6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재임은 불가능하다.  
II. La Defensora o el Defensor del Pueblo no será objeto de persecución, detención, acusación ni enjuiciamiento por los actos realizados en el ejercicio de sus atribuciones.  
옴부즈맨은 임무 수행에 대한 박해, 구금, 기소나 재판 등을 받지 않는다.
- 938)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Artículo 220. 제 220조  
La Defensora o el Defensor del Pueblo se designará por al menos dos tercios de los presentes de la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La designación requerirá de convocatoria pública previa y calificación de capacidad profesional y méritos a través de concurso público, entre personas reconocidas por su trayectoria en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옴부즈맨은 다민족의회(1a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내 참석한 의원들의 최소 2/3에 해당하는 표를 받아 임명된다. 위원장의 임명은 1) 사전 공고 및 2) 전문성과 인권분야의 경력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을 요구한다.
- 939)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Artículo 221. 제 211조  
Para ser designada Defensora o ser designado Defensor del Pueblo se requerirá cumplir con las condiciones generales de acceso al servicio público, contar con treinta años de edad cumplidos al momento de su designación y contar con probada integridad personal y ética, determinada a través de la observación pública.  
국가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공공서비스의 일반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고, 선출 시기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직함과 도덕성에 있어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 940)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Artículo 222. 제 222조  
Son atribuciones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además de las que establecen la Constitución y la ley:  
헌법과 법령에 따른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권한 및 업무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nterponer las acciones de Inconstitucionalidad, de Libertad, de Amparo

③ 제 223조<sup>941)</sup>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업무 이행을 위한 모든 공공기관

Constitucional, de Protección de Privacidad, Popular, de Cumplimiento y el recurso directo de nulidad, sin necesidad de mandato.

위헌적인 행동, 자유 행동, 헌법에 따른 보호 행동, 사생활 보호 행동, (...) 등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개입

2. Presentar proyectos de ley y proponer modificaciones a leyes, decretos y resoluciones no judiciales en materia de su competencia.

권한 내에서 법안 발표 및 법률, 법령, 비사법적 결의안 등 개정 내용 제안.

3. Investigar, de oficio o a solicitud de parte, los actos u omisiones que impliquen violación de los derechos, individuales y colectivos, que se establecen en la Constitución, las leyes y los instrumentos internacionales, e instar al Ministerio Público al inicio de las acciones legales que correspondan.

직권으로, 혹은 외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진행. 이는 헌법이나 법률, 혹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또한, 검찰관(Ministerio Público)에게 법적인 조치를 요청.

4. Solicitar a las autoridades y servidores públicos información respecto a las investigaciones que realice la Defensoría del Pueblo, sin que puedan oponer reserva alguna.

국가옴부즈맨사무소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유보 사항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국 및 공무원들에게 요청

5. Formular recomendaciones, recordatorios de deberes legales, y sugerencias para la inmediata adopción de correctivos y medidas a todos los órganos e instituciones del Estado, y emitir censura pública por actos o comportamientos contrarios a dichas formulaciones.

국가 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권고사항,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상기, 즉각적인 대책 등에 대한 채택 제안, 또한 이러한 기능을 막는 행동에 대해 공적으로 검열

6. Acceder libremente a los centros de detención e internación, sin que pueda oponerse objeción alguna.

구금센터 및 병원(입원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후략)

7. Ejercer sus funciones sin interrupción de ninguna naturaleza, aun en caso de declaratoria de estado de excepción.

긴급상황을 포함, 모든 상황에서 외부 개입 없이 역할 수행

8. Asistir con prontitud y sin discriminación a las personas que soliciten sus servicios.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응답하고, 차별 없이 지원

9. Elaborar los reglamentos necesarios para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내규 형성.

941)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제 223조

Las autoridades y los servidores públicos tienen la obligación de proporcionar a la Defensoría del Pueblo la información que solicite en relación co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및 관계자의 협업 의무에 대해 명시.

- ④ 제 224조<sup>942)</sup>에는 옴부즈맨의 연간보고 및 특별보고에 대해 기재되어 있음.

(나)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N°. 1818 / LEY DE 22 DE DICIEMBRE DE 1997)

옴부즈맨 및 옴부즈맨사무소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법으로, 1997년 12월 22일에 통과됨. '법률 1818번'으로 국가관보에 출간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sup>943)</sup>

- ① 옴부즈맨사무소 Despacho<sup>944)</sup>: 사무소는 인권옹호, 홍보 및 확장을 위해 지시 및 감독. 기관의 사명과 관점에 따라 행정 및 재무 업무 이행. 현재<sup>945)</sup> 국가옴부즈맨은 David Alonzo Tezanos Pinto Ledezma.

---

모든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En caso de no ser debidamente atendida en su solicitud, la Defensoría interpondrá las acciones correspondientes contra la autoridad, que podrá ser procesada y destituida si se demuestra el incumplimiento.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옴부즈맨사무소는 해당 당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되거나 기각될수 있다.

942) [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http://www.oas.org/dil/esp/Constitucion_Bolivia.pdf) (검색일 2016.10.19.)

볼리비아 헌법

Artículo 224. 제 224조

Cada año, la Defensora o el Defensor del Pueblo informará a la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y al Control Social sobre la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el país y sobre la gestión de su administración. La Defensora o Defensor del Pueblo podrá ser convocada o convocado en cualquier momento por la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o el Control Social, para rendir informe respecto al ejercicio de sus funciones.

매년 국가옴부즈맨은 의회(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와 시민통제 (Control Social)에 국가 내 인권상황과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국가옴부즈맨은 의회나 시민통제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호출되어 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야 한다.

943) <http://www.defensoria.gob.bo/sp/nominaautoridades.asp> (검색일 2016.9.30.)

944)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uni.asp> (검색일 2016.9.30.)

- ② 특별프로그램 부옴부즈맨사무소 ADJUNTORIA DE PROGRAMAS Y ACTUACIONES ESPECIALES<sup>946</sup>): 국내 취약계층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단위의 계획, 정책 및 전략을 확립하고 사회 내 갈등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내 단체들의 협상 및 조정 과정을 도움. 현재 특별프로그램 부옴부즈맨(Adjunta Programas Especiales)은 Tamara Nuñez del Prado.
- ③ 시민권 관련 업무 부옴부즈맨사무소 ADJUNTORIA DE ATENCION A LA CIUDADANIA<sup>947</sup>): 국민들의 진정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반영함을 통해 인권 존중, 보호 및 재확립을 위해 활동 진행.
- ④ 홍보·분석 부옴부즈맨사무소 ADJUNTORIA DE PROMOCION Y ANALISIS<sup>948</sup>): 옴부즈맨사무소가 정의구현과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로 인식될수 있도록 대중들을 대상으로 인권 존중과 옹호를 고무하고 인권인식을 심어주는 활동 진행. 현재 홍보·분석 부옴부즈맨(Adjunto Promoción y Análisis)은 Juan Carlos Ballivian.
- ⑤ 사무국 SECRETARIA GENERAL<sup>949</sup>): 인사, 재무, 기술 및 자료 등 기관 내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역할. 현재 사무국장 (Secretaria General)은 Rocio Araoz Terceros.
- ⑥ 기관활동조정부 COORDINACION DE GESTION INSTITUCIONAL<sup>950</sup>): 중앙행정으로서 역할 수행. 기관 활동의 일관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국제협력기관들간의 관계에서 계획, 행정조직, 활동 이행 등을 통해 옴부즈맨사무소의 대표성 및 지속성 제시. 현재 기관활동 코디네이터 (Coordinador de Gestión Institucional)는 Jaime Mauricio Quiroga Carvajal.
- ⑦ 지역사무소 REPRESENTACIONES DEPARTAMENTALES<sup>951</sup>): 개

945) 2016년 10월 기준. (가)항에 소개되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946)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ac.asp> (검색일 2016.9.30.)

947)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apa.asp> (검색일 2016.9.30.)

948)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apae.asp> (검색일 2016.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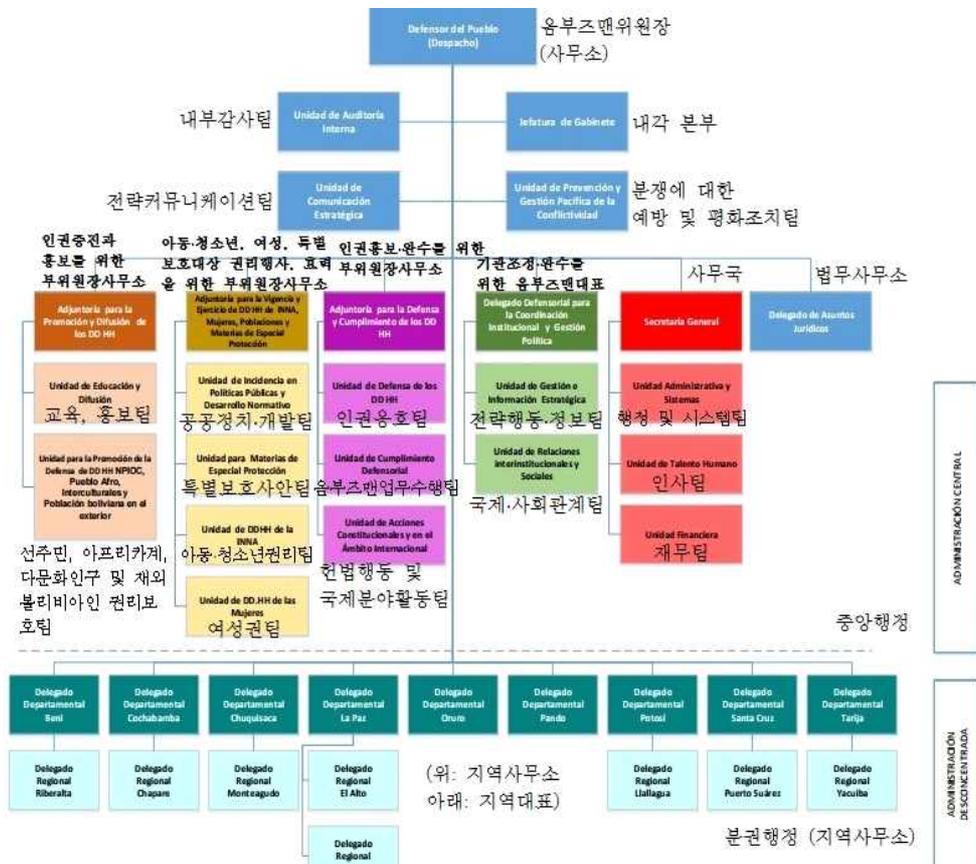
949)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sg.asp> (검색일 2016.9.30.)

950)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cgi.asp> (검색일 2016.9.30.)

951)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ase.asp> (검색일 2016.9.30.)

인 및 커뮤니티의 헌법적 권리 옹호를 위해 계획, 정책 및 전략 실행. 인권 옹호, 홍보 및 공표. 옴부즈맨사무소의 사명과 관점에 따라 사무소 내 재정 및 행정 관리.

- ⑧ 옴부즈맨 준사무소 MESAS DEFENSORIALES<sup>952</sup>): 인권 및 시민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처리하고 지역단위 관할권에 따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분야들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함.



출처: 볼리비아 옴부즈맨 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org.asp>

[볼리비아-그림 15] 볼리비아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952) <http://www.defensoria.gob.bo/sp/quehacemos.con.asp> (검색일 2016.9.30.)

(2) 지역사무소<sup>953)</sup>

- (가) 지역사무소(Representante Departamental)는 6곳으로, 라 파즈 La Paz, 포토시 Potosí, चु키사카 Chuquisaca, 산타 크루즈 Santa Cruz, 코차밤바 Cochabamba, 판도 Pando 위치.
- (나) 특별사무소(Representante Especial)는 두 곳, 엘 알토 El Alto 와 비야 투나리 Villa Tunari 위치.
- (다) 준사무소 (Responsable de Mesa)는 세 곳으로, 야야구아 Llallagua, 카라나비 Caranavi, 야쿠이바 Yacuiba 위치.

(3) 예산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가) 예산 규모

2015년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실제 예산규모는 39.774.888,22 볼리비아노 (한화로 약 6,349,193,400원).<sup>954)</sup>

(나) 예산의 독립성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연간 예산을 지니고, 이는 통합된 입법부 예산의 일부에 해당하게 됨. 예산 관리, 사용 등은 재정행정 및 정부규제시스템법 (Ley del Sistema de Administración Fiscal y Control Gubernamental)에 따라 옴부즈맨의 책임 하에 있음<sup>955)</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Defensor del Pueblo) 선임절차

의회 내 헌법, 정의 및 사법경찰 합동위원회 (La Comisión Mixta de Constitución, Justicia y Policía Judicial del Congreso Nacional, 이하 '합동위원회')는 대중적 인지도 및 개인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옴부즈

953) <http://www.defensoria.gob.bo/sp/nominaautoridades.asp> (검색일 2016.9.30.)

954) p. 136, [http://www.defensoria.gob.bo/archivos/InformeASLEG\\_2015\\_4\\_baja.pdf](http://www.defensoria.gob.bo/archivos/InformeASLEG_2015_4_baja.pdf) (검색일 2016.9.30.)

955)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36 (제 36조 예산)

맨의 자리에 합당한 후보들에 대해 제안을 받는데, 이때 양성 평등이 보장되어야 함.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에 추천되는 후보자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합동위원회 보고서의 발표 후 30일 안에 의회는 옴부즈맨을 선출하게 되는데, 참석 의원의 2/3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받는 후보가 선출됨. 첫 투표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두 번째 투표가 15일 안에 다시 진행됨.<sup>956)957)</sup>

(나) 국가 옴부즈맨 후보의 자격요건<sup>958)</sup>:

956)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6. ELECCION.- 제 6조 선거

El Congreso Nacional elegirá al titular del Defensor del Pueblo por dos tercios de votos de los miembros presentes. Ejercerá sus funciones por cinco años y puede ser reelecto por una sola vez.

의회는 참석한 의원의 2/3 찬성표를 통하여 옴부즈맨을 선출한다. 옴부즈맨은 5년의 임기를 지니며,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957)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7. PROCEDIMIENTO PARA ELECCION. 제 7조 선거 절차

La Comisión Mixta de Constitución, Justicia y Policía Judicial del Congreso Nacional, recibirá y calificará las propuestas fundamentadas para candidatos al cargo de Defensor del Pueblo en concurso público, antecedentes y méritos, donde se garantice la igualdad de oportunidad para hombres y mujeres. Las organizaciones de la sociedad civil podrán proponer o impugnar nombres a la Comisión.

의회 내 헌법, 정의 및 사법경찰 합동위원회 (La Comisión Mixta de Constitución, Justicia y Policía Judicial del Congreso Nacional, 이하 '합동위원회')는 대중적, 개인 배경(...) 등을 미루어 보아 옴부즈맨의 자리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후보들에 대해 제안을 받는데, 이에는 양성 평등이 보장된다.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에 추천되는 후보자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a Comisión Mixta de Constitución, Justicia y Policía Judicial, por simple mayoría de votos calificará las propuestas recibidas y elevará al Congreso Nacional la nómina y el informe correspondiente para la elección de Defensor del Pueblo.

합동위원회는 제안받은 후보들 중 의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득표하는 자가 옴부즈맨이 될 것을 발표한다.

Dentro de los treinta días siguientes al pronunciamiento de la Comisión Mixta de Constitución, el Congreso Nacional elegirá al Defensor del Pueblo. En caso de no alcanzarse la votación requerida en la primera elección, deberá repetirse el procedimiento en un plazo de quince días, y así sucesivamente cuantas veces sea necesario.

합동보고서의 발표 후 30일 안에 의회는 옴부즈맨을 선출한다. 첫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었을 경우, 두 번째 투표가 15일 안에 다시 진행된다.

- ① 볼리비아 태생이고 의무군복무를 마친 자
- ② 적어도 35세 이상인자
- ③ 선거접수처(Registro Electoral)에 등록된 자
- ④ 형사처벌 사실이 없는 자, 단 상원위원을 통해 사회 복귀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절차가 없었던 경우, 혹은 법에 의해 제외되거나 상반됨으로 인해 양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

(다) 부옴부즈맨들 (Los Delegados Adjuntos)<sup>959)960)961)</sup>

옴부즈맨은 3인의 부위원장격의 부옴부즈맨들(제 1, 2, 3 부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아 옴부즈맨으로서의 업무를 일부 위탁 가능. 옴부즈맨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부옴부즈맨들이 역할을 대리하고, 이때 법에 따라 옴부즈맨의 특권을 누리게 됨. 부옴부즈맨 되려면 옴부즈맨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겸업 금지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962)</sup>

958)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8 (제 8조 자격요건)

959)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14. DELEGADOS ADJUNTOS.- 제 14조 부옴부즈맨들

I. El titular del Defensor del Pueblo estará asistido en el desempeño de sus funciones por tres Delegados Adjuntos, de igual jerarquía denominados Adjunto Primero, Segundo y Tercero respectivamente, en los que podrá delegar funciones, quienes lo sustituirán por su orden en el caso de ausencia temporal o cesación.  
옴부즈맨 위원장은 3인의 부옴부즈맨(제 1, 2, 3 부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아 위원장의 업무를 일부 위탁 가능. 위원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부옴부즈맨들이 순서에 따라 역할 대리.

II. Los Delegados Adjuntos por el tiempo que ejerzan las funciones e Defensor del Pueblo gozarán de las prerrogativas que la ley le otorga a éste.  
부옴부즈맨들은 옴부즈맨의 역할을 대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권을 누린다.

III. Los Delegados Adjuntos cumplirán sus funciones en el ámbito nacional y en las áreas y comisiones que les competen de acuerdo con el Reglamento Interno.  
부옴부즈맨들은 국가적 권한 내에서 내규에 따라 (...) 역할을 수행한다.

960)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15 (부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

961)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16

962)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옴부즈맨은 국회의장(Alto Comisionado del Congreso)과 동등한 지위를 지님.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과 양원의 비준을 통해 부옴부즈맨들의 임명 및 해임이 이루어짐.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963)</sup>

옴부즈맨은 5년의 임기를 지니며, 1번의 재임 가능.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964)</sup> 등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965)</sup>

ARTICULO 1. NATURALEZA 제 1조 (일부)

Tiene por misión, como Alto Comisionado del Congreso, la defensa y protección de las garantías y derechos individuales y colectivos, tutelados por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y las Leyes.

옴부즈맨은 의회 최고 대표(Alto Comisionado del Congreso)로서 국가 헌법과 법령들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옹호 (...) 및 보호를 위해 일한다.

963)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6 (선거)

964)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음.

965)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11. ATRIBUCIONES. 제 11조 권한

El Defensor del Pueblo tiene las siguientes atribuciones:

국가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Interponer, conforme establec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en su Artículo 129, Recursos de Inconstitucionalidad, Directo de Nulidad, de Amparo y Habeas Corpus, sin necesidad de mandato.

국가 헌법 제 129조에 따라 역할 수행. (후략)

2. Investigar y denunciar, de oficio o como consecuencia de una queja, los actos u omisiones que impliquen viol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de las garantías, derechos individuales y colectivos establecidos en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leyes, tratados y convenios internacionales aprobados por el Estado Boliviano.

직권조사나 진정을 통해 헌법, 법률, 볼리비아가 비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인권 및 개인이나 공동체 권리 침해 조사, 보고.

3. Solicitar a las autoridades y servidores públicos información relativa al objeto de sus investigaciones sin que éstas puedan oponer reserva alguna.

당국 및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위한 정보를 요청. 이 때 특정 정보에 대한 유보는 불가능하다.

4. Formular recomendaciones, recordatorios de deberes legales y sugerencias para la adopción de correctivos y medidas a todos los órgano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al Consejo de la Judicatura o la Fiscalía General de la Nación cuando los

- hechos se relacionen a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o constituyan delito.  
 공공 행정기관 모두에 대해 시정 조치와 관련된 권고, 법적 의무 상기, 제안. (후략)
5. Proponer modificaciones a Leyes, Decretos y Resoluciones no judiciales, relativa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률, 칙령,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 결의안 개정 등 제안.
  6. El Defensor del Pueblo deberá vigilar la situación de las 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para velar por el respeto de los límites de la detención. Para este efecto, y para fines de registro el Defensor del Pueblo deberá ser informado por escrito de todo arresto, apresamiento o detención que se realiza en el territorio nacional.  
 옴부즈맨은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구금센터 내에서 인권이 지켜질수 있도록 보장. 옴부즈맨에게는 체포, 압수, 구금 사실 등이 서면으로 전달된다.
  7. Recomendar al Poder Ejecutivo la suscripción de tratados y convenio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y su aprobación al Poder Legislativo.  
 행정부에 인권과 관련이 있는 국제조약 및 협약에 가입할 것을, 입법부에 승인을 권고.
  8. Tener libre acceso a los centros de detención, reclusión, internamiento y confinamiento sin que pueda oponérsele objeción alguna  
 구금센터, 교도소, 병동 등에 예외없이 자유로운 접근권을 지님.
  9. Velar por el respeto de la naturaleza multiétnica y pluricultural del Estado boliviano y promover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de lo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del país.  
 볼리비아 내 다민족 및 다문화적 성격을 존중하고 선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함.
  10. Promover y recomendar en sus actuaciones la observancia a las Convenciones y Tratados Internacionales relativos a los Derechos Humanos de la Mujer.  
 여성권에 대한 국제협약 및 조약에 적합한 활동을 증진하고 권고
  11. Ejercer sus funciones sin interrupción de ninguna naturaleza, aún en caso de declaratoria de estado de sitio.  
 계엄(estado de sitio)상태를 포함, 언제든지 그 어떤 외부 개입 없이 역할 수행
  12. Solicitar a cualquier dependencia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la declaratoria en comisión de funcionarios técnicos, cuyos servicios, específicos y temporales, sean requeridos por el Defensor del Pueblo.  
 옴부즈맨이 업무 처리시 필요로 하는 특정 혹은 임시 기술,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제공 요청
  13. Diseñar, elaborar, ejecutar y supervisar programas para la defensa, promoción y divulg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así como establecer mecanismos de coordinación con organismos gubernamentales y no gubernamentales para estos efectos.  
 인권옹호, 홍보, 배급을 위한 프로그램 형성, 실행 및 감독. 정부기관과 NGO들간의 협업 메커니즘 수립.
  14. Velar por los derechos y deberes fundamentales de las personas en el ámbito militar y policial.

(1) 국가기관과의 협업

- (가) 직권 조사나 진정을 통해 헌법, 법률, 볼리비아가 비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인권 및 개인이나 공동체 권리 침해 조사, 보고.
- (나) 당국 및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위한 유보 없이 모든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청.
- (다) 공공 행정기관 모두에 대해 시정 조치와 관련된 권고, 법적 의무 상기, 제안.
- (라)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률, 칙령,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 결의안 개정 등 제안.
- (마) 행정부에 인권과 관련이 있는 국제조약 및 협약에 가입할 것을, 입법부에 그에 대한 승인을 권고.
- (바) 옴부즈맨이 업무 처리시 필요로 하는 특정 혹은 임시 기술,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제공 요청
- (사) 국가기관 및 국제기관과 기술 및 재정적 협업 합의내용 관리. 정부기관과 NGO들간의 협업 메커니즘 수립.
- (아) 사무소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내규 형성.

(2) 특정 인권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 (가) 옴부즈맨은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구금센터 내에서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 이에 따라 옴부즈맨은 구금센터, 교도소, 병동 등에 예외없이 자유로운 접근권을 지니고, 체포, 압수, 구금 사실 등이 서면으로 전달됨.
- (나) 볼리비아 내 다민족 및 다문화적 성격을 존중하고 선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함.
- (다) 여성권에 대한 국제협약 및 조약에 적합한 활동을 증진하고 권고
- (라) 군대나 정치적 환경에 속한 개인의 권리와 기본 의무 감독

---

군이나 정치적 환경에 속한 개인의 권리와 기본 의무 감독

15. Gestionar convenios de cooperación técnica o financiera con organizacione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국가기관 및 국제기관과 기술 및 재정적 협업 합의내용 관리

16. Elaborar los reglamentos necesarios para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사무소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내규 형성.

(3) 인권옹호, 홍보, 배급을 위한 프로그램 형성, 실행 및 감독.

(4) 진정 및 직권 조사

(가) 진정<sup>966)</sup>

① 모든 개인과 법인은 행정 측의 임의적 행동 및 절차, 인권침해 및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국가옴부즈맨사무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음. 진정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되고, 법적대리인이 요구되지 않음. 진정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서 진술서가 동원됨. 진정이 스페인어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 측에서 통역인을 제공. 옴부즈맨은 요청에 의해서,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정인 측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함. 옴부즈맨에게 제출되는 모든 진정은 진정인이 사실 관계를 알고 있는 사건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 안에 전달되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나 옴부즈맨 혹은 부옴부즈맨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진정이라도 고려 가능.

② 옴부즈맨은 진정을 등록하고,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진정 당사자와 진정 허가 혹은 취하에 대하여 소통. 진정이 허가되었을 때, 사무소는 내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공무원이나 기관에 10일 안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단, 이 기간은 옴부즈맨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③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음:

- 진정에 악의성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제출된 진정이 사법적 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3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동법의 관할권 밖에 있는 개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진정이 신청 가능기간을 지나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익명으로 신청된 경우

(나) 직권 조사<sup>967)968)</sup>

966)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19~24.

967)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18. INICIO DE LA INVESTIGACION.

국가옴부즈맨은 사실 관계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옴부즈맨에게 주어지는 권한 하에서 조사 진행이 가능, 이를 통해 진정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됨.

(5) 사건 해결 및 결의안 발표 (Resoluciones)<sup>969)</sup>

(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진행되었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옴부즈맨은 결정 내용을 공개. 이러한 결정 내용은 권고나 법적 의무 상기의 형태로 적용됨.

권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함:

- ① 교정, 개정,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침해된 권리 회복.
- ② 법적 행동 시작
- ③ 불합리한 상황 및 (권리)손상의 원인이 되는 규율 교정
- ④ 당국이나 공무원의 권한 사용(행동, 누락, 남용 등)으로 인해 생긴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의무 상기

(나) 옴부즈맨으로부터의 해결책은 관련 당사자들 및 공무원, 해당 행정기관과 당국에게 전달되고, 해당 당국 및 공무원들은 전달받은 결정 내용에 대해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신을 보내야 함.

만약 결정 내용이 전달된 지 30일 안에 해당 당국 측에서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경우, 옴부즈맨은 더 상급 행정당국에 사건의 배경에 대해 알리게 됨. 만약 상급 행정당국마저도 10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은 의회에 상황 및 관계자의 이름을 알리고, 법적으로 적

---

El Defensor del Pueblo iniciará, de oficio o como consecuencia de una queja, las investigaciones referidas a las atribuciones que le otorga la presente Ley.

제 18조 직권 조사

국가옴부즈맨 위원장은 직권이나 진정 신청에 따라 동법으로부터 주의지는 권한 하에서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968)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32.- INVESTIGACION DE OFICIO.

Cuando la investigación de un hecho sea de oficio se observará, en cuanto sea pertinente, el procedimiento de la queja previsto en el presente Título.

제 32조 직권조사

사실 관계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진정 절차를 밟게 된다.

969)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30, 31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

(다) 진정 내용이 여성의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옴부즈맨의 해결책은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la Convención Sobre la Eliminación de Todas las Formas de Discriminación Contra la Mujer),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협약(la Convención Interamericana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a Violencia Contra la Mujer) 등 여성권을 보호하는 국제조약들에 의해 관리됨.

(라) 만약 사건 해결 내용이 사기업과 관련이 있다면 옴부즈맨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당국에 권고사항을 제공.

(6) 의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연간보고서<sup>970)</sup>

옴부즈맨은 의회에 서면으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해결책과 예산 사용 내용 등이 포함. 보고서는 매 연말에 제출되고, 보고서 제출일 30일 전에는 구두로 발표됨.

(나) 특별보고서<sup>971)</sup>

옴부즈맨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조사의 결과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970)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30, 31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33.- INFORMES ORDINARIOS.

제 33조 정기보고서

El titular del Defensor del Pueblo dará cuenta de sus actos al Congreso Nacional en informe anual escrito, el que incluirá sus resoluciones y el estado de ejecución del presupuesto.

국제옴부즈맨은 의회에 서면으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해결책과 예산 사용 내용 등이 포함된다.

El informe será presentado antes de la conclusión de cada legislatura, y dentro de los treinta días siguientes a su presentación, realizará exposición oral del mismo. Reporte es presentado al final del año y, 30 días antes de su presentación, se publica oralmente.

Asimismo, cualesquiera de las Comisiones Camarales podrán convocarlo en relación al ejercicio de sus funciones

또한, 양원의 위원회 내 누구든지 의무 수행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971) <http://www.defensoria.gob.bo/sp/quees.marco.asp> (검색일 2016.9.30.) Art. 34 (특별 보고서)

연간보고서와 특정 경우의 특별보고서는 출간됨. 또한 옴부즈맨이 의회에 제안하거나(sugerencias) 권고(recomendaciones)한 내용 역시 출간됨.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서, 옴부즈맨 후보 선정 시 양성평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진정 및 직권조사 기능이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972)</sup>

1999년에 B등급. 2000년 심사부터 A등급을 받아 2007년 3월, 2012년 3월까지 유지.

28) 칠레

칠레 국가 정보 <sup>973)</sup>	
면적	76만km <sup>2</sup>
인구	1,804만명(2016)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55% 카톨릭, 무교 25%, 13% 개신교 <sup>974)</sup>
GDP	국내총생산 : 2,704억불 (2015)
	1인당 GDP : 13,910불 (2015)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인권기구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INDH),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 (2) 설립연도: 2005년
- (3) 설립배경: 국가인권기구(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INDH)는 법률 20405를 통해 형성된 독립적 공공 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칠레

972)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6)

973)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42.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42.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25)

974) <http://plazapublica.cl/wp-content/uploads/658799.pdf> (검색일 2016.10.25.)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한 국제조약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모든 칠레인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함. 칠레의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수립은 레티그 보고서(Rettig Report, 1991)<sup>975)</sup>의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져 인권 존중 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게 됨.

국가인권기구는 칠레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칠레에 인권 회복을 도입하고, 인권의 가치가 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함<sup>976)</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국가인권기구법 제 20405번 (Ley N° 20.405 del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sup>977)</sup><sup>978)</sup>

법률 제 20405번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수립되었는데, 2005년 6월 15일 Ricardo Lagos 전 대통령 정부 하에 이 법률이 의회에 제출됨. 법률 절차를 상원을 통해 2009년 11월에 종료됨.

(2) 법적 지위: 법률에 기반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sup>979)</sup>

국가인권기구 내 팀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관리 및 협업 팀 Unidad de colaboración y atención a la ciudadanía

국민관리 및 협업 팀은 국가인권기구의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

975) 1989년 12월 피노체트와 공산당을 배제한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아일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아일윈 대통령은 1990년 9개월 동안, 1973년부터 1990년까지 피노체트의 쿠데타와 17년간의 군부독재 기간에 벌어진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었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레티그(Rettig)위원회'라고 불린 이 위원회는 <레티그 보고서>를 발간하여 4,000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공개하였음.

976) <http://www.indh.cl/content-in-english> (검색일 2016.10.25.)

977) [http://www.indh.cl/sitio\\_transparencia/docs/Ley20405indh.pdf](http://www.indh.cl/sitio_transparencia/docs/Ley20405indh.pdf) (검색일 2016.10.25.)

978) <http://www.indh.cl/content-in-english> (검색일 2016.10.25.)

979) <http://www.indh.cl/content-in-english> (검색일 2016.10.25.)

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함. 역할 수행을 통해, 이 팀은 법에 따라 진정 및 탄원서 시스템 및 정보 관리의 역할도 맡아 함.

이 부서는 국가기구의 기록센터(INDH Center of Documentation)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배상 및 조정 협업기관(National Corporation of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 감옥 구금 및 고문 위원회(Commission of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 피구금자와 강제실종자, 정치적 행정 및 구금, 고문 피해자에 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Detained and Disappeared, Victims of Political Executions and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 등의 기관의 자료와 서류와 관리하고 기관 도서관의 업데이트를 통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에 힘쓰기도 함.

② 교육·홍보팀 Unidad de Educación y Promoción

국가인권기구의 교육 팀의 주요 목적은 칠레 내 인권 존중 문화를 증진하는 데에 있음. 이는 교육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인권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군 부대 트레이닝, 법 강화와 공공 안보 등을 포함함.

국가인권기구 교육팀은 공모전 부상이나 스폰서십 등을 통해 연구 개발을 촉진함. 또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그룹, 커뮤니티에 대해 그들의 권리에 대해 보급하고 협업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 및 외국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합의함.

③ 연구팀 Unidad de Estudios

연구팀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 수행, 이를 통해 칠레의 현실에 대해 대중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 이 부서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유엔 및 지역기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인권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촉진.

이 팀은 연구, 프로젝트 및 보고서 관련 출간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칠레 내 인권 존중 수행에 대한 통계자료나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직하고 관리함.

- ④ 행정 및 재정팀 Unidad de Administración y Finanzas  
 행정 및 재정팀은 기구의 인사, 재원, 예산, IT 등의 적절한 관리를 담당.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자원과 서비스를 위한 정책 이행. 예산 사용을 결정하고, 국가재정행정 규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을 꾸리며, 연간예산관리보고서를 작성.
- ⑤ 법률·사법팀 Unidad Jurídica y judicial  
 법률·사법팀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들에 여러 제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받아, 법률, 규율 및 이행 등이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함.  
 또한, 기구의 권한 내에서 법원의 사법 행동들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인권 이슈들과 관련이 있는 법률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  
 또한, 국내외 및 국제적인 재판소들의 인권 사건들에 대한 법리적인 관점을 지켜보고 국내 관할권을 지니는 다른 법원 및 사법 기관에 법률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
- ⑥ 지역사무소들 Sedes regionales  
 국가인권기구의 지역사무소들은 중앙사무소의 업무를 여러 지역들에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둠. 현재 국가인권기구는 6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지역들에 위치함: 아키아와 파리나코타 Arica y Parinacota,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발파라이소 Valparaiso, 라 라우카니아 La Araucanía, 비오비오 Biobío, 그리고 로스 라고스 Los Lagos. 2016년, 국가 내 다른 지역으로도 지역사무소들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는 전국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사무소

국가인권기구의 지역사무소들의 주요업무들은 다음과 같음<sup>980)</sup>:

- 연간보고서에 포함되는 지역 섹션 담당
- 지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을 지역 정부기구에 전

980) <http://www.indh.cl/resena-institucional/organigrama> (검색일 201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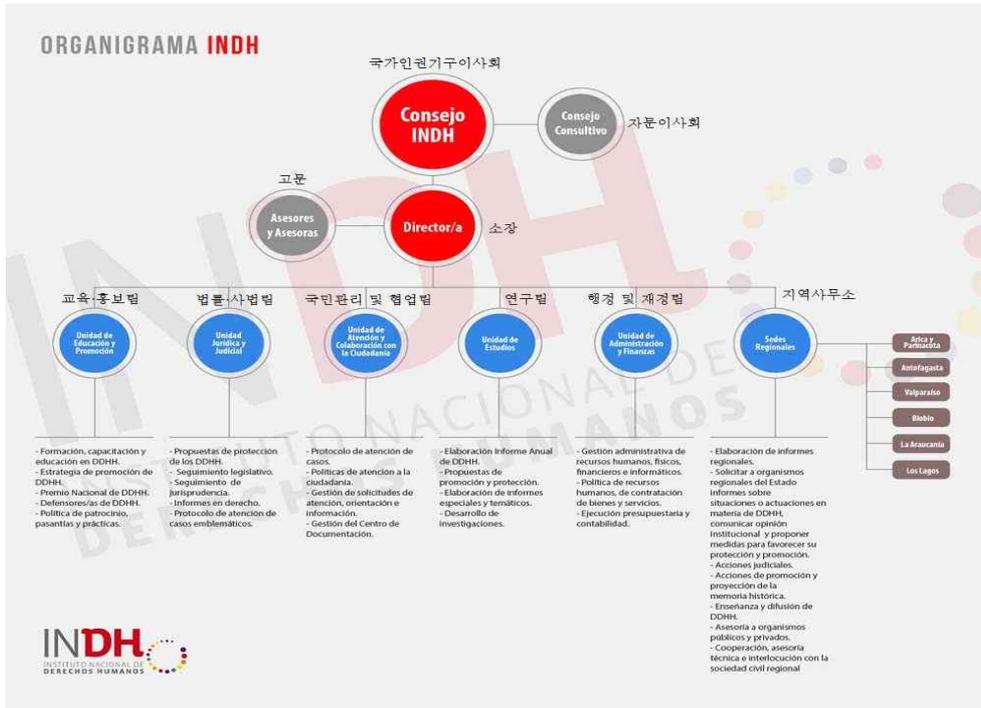
#### 달 및 소통

- 지역정부기관 및 서비스 제공 측에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 요청
- 지역정부기관에 인권 증진과 보호 촉구
- 법적 행동 이행
- 중앙사무소와 협업하여 정보 교환
- 지역 내 인권 관련 역사에 대해 홍보, 협업, 보급
- 지역 내 인권감수성 및 인식 증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자문
- 지역 내 시민사회로부터 요청되는 기술 제공, 협업, 소통.

#### (2) 지역사무소<sup>981)</sup>

- 아키아와 파리나코타 지역 Región de Arica y Parinacota
- 타라파카 지역 Región de Tarapacá
- 안토파가스타 지역 Región de Antofagasta
- 아타카마 지역 Región de Atacama
- 코킴보 지역 Región de Coquimbo
- 발파라이소 지역 Región de Valparaíso
- 수도권 지역 Región Metropolitana
- 해방자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지역 Región del Libertador Bernardo O'Higgins
- 마울레 지역 Región del Maule
- 비오비오 지역 Región del Bío Bío
- 라 아라우카니아 지역 Región de La Araucanía
- 로스 리오스 지역 Región de Los Ríos
- 로스 라고스 지역 Región de Los Lagos
- 카를로스 델 캄포 장군의 아이센 지역 Región de Aysén del General Carlos Ibañez del Campo
- 마가야네스 및 안타르티카 칠레나 지역 Región de Magallanes y la Antártica Chilena

981) <http://www.indh.cl/indh-en-regiones> (검색일 2016.10.25.)



출처: 칠레 국가인권기구 홈페이지 <http://www.indh.cl/resena-institucional/organigrama>

[칠레-그림 16] 칠레 국가인권기구 조직도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가)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형성<sup>982)</sup>:

- ① 국가예산법에 따라 매년 제공되는 예산액
- ② 기구와 설립취지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달된 기부금(동산 및 부동산)
- ③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하는 후원금
- ④ 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  
기구의 업무 절차를 위한 후원금은 법에 따라 세금 면제.

(나) 2015년 보고서 기준으로 3,857,965,835 칠레 페소 (한화 약 6,683,584,380원) 책정, 2,515,224,157 칠레 페소 (한화 약 4,357,403,250원) 사용 집행.<sup>983)</sup> 또한, 당 해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전혀 받지 않

982) <http://www.indh.cl/wp-content/uploads/2010/10/ley20405.pdf> 국가인권기구법 제 20405번 Art. 13

음<sup>984</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국가인권기구 이사회 Consejo INDH<sup>985</sup><sup>986</sup>)

국가인권기구 이사회 (El Consejo del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Consejo INDH. 이하 ‘이사회’)는 기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 이 이사회는 인권 관련 분야의 활동으로 저명한 11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6년의 임기가 주어짐. 이사회는 구성원들은 그들 안에서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서 이사회의 의장(Director)을 선출하고, 의장은 이사회 관리, 행정 업무, 그리고 기구의 사법적 대표 역할을 담당.

이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됨:

- 대통령을 통해 임명되는 2인. 이들은 다른 지역 출신이어야 함.
- 상원의 4/7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2인(Directors)
- 하원의 4/7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2인(Directors)
- 대학 총장들 및 로스쿨 학과장들을 통해 선출된 1인(Counselor)
-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로부터 선출되는 4인(Directors)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과반 정족수 투표를 통해 이사회 의장(Director)을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은 기구의 소장을 겸하게 됨.

단,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시장, 시나 지역단위의회의의 구성원, 판사, 검사, 국가행정 관리자, 군 소속, 혹은 경찰 소속 이어서는 안 됨.

(나) 자문이사회 Consejo Consultivo<sup>987</sup><sup>988</sup>)

983) p. 265, <http://www.indh.cl/informe-anual-situacion-de-los-derechos-humanos-en-chile-2015> (검색일 2016.10.26.)

984) p. 268, <http://www.indh.cl/informe-anual-situacion-de-los-derechos-humanos-en-chile-2015> (검색일 2016.10.26.)

985) <http://www.indh.cl/content-in-english> (검색일 2016.10.25.)

986) <http://www.indh.cl/resena-institucional/consejo-consultivo> (검색일 2016.10.25.)

987) <http://www.indh.cl/content-in-english> (검색일 2016.10.25.)

인권 및 기본 자유권의 옹호 및 증진에 목적을 두는 국가자문이사회를 통해 사회 및 학술기관들이 대표되고, 국가인권기구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 전문 의견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용됨.

자문이사회는 자문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부 규율을 결정하는데, 이는 국가인권기구 이사회의 2/3 투표로 결정됨.

자문이사회(Consejo Consultivo)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홍보 및 옹호 활동을 하는 사회기관이나 (시민)단체 출신의 4인
-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홍보 및 옹호를 위해 학술기관을 통해 참여하는 4인
- 법률 제 20415번 제 14조에 따라 국가인권상을 수여받은 사람들 위원회의 2/3에 해당하는 투표를 통해 승인되는 내부 규율은 (위원회의) 자문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결정함.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국가인권기구 위원회의 동의를 전제로 회의에 초대될 수 있음.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989)</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990)</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어야 하고 6년의 임기가 주어짐. 단, 이사들은 3명씩 공정하게 교체됨<sup>991)</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992)</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sup>993)</sup>:

- (1) 국내 인권 상황, 기구의 활동 내용, 그리고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연간

988) <http://www.indh.cl/resena-institucional/consejo-consultivo> (검색일 2016.10.25.)

989)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990)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991) <http://www.indh.cl/wp-content/uploads/2010/10/ley20405.pdf> 국가인권기구법 제 20405번 Art. 6. 연임 정보를 찾을 수 없음.

992)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993) <http://www.indh.cl/content-in-english> (검색일 2016.10.25.)

보고서를 준비. 이 보고서는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전달됨. 그 외에도 유엔이나 미주지구, 혹은 인권옹호를 위한 기관들에 전달되기도 함.

- (2) 국가 내 인권 관련 관점들에 대해 정부 및 여러 국가기구들과 소통.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함.
- (3)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국가기관들에 제안
- (4) 국내 법률들이 국제조약들의 내용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
- (5) (법적 권한 내에서) 법원들에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고문, 실종 등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케이스들 제출. 인신보호영장 발행 및 다른 헌법/사법적 행동 이행.
- (6) 진실과 화해 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 레티그 위원회(Rettig Commission)로도 통합), 정치적 구금과 고문 위원회 (Commission on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 발렉 위원회(Valech Commission)로도 통합), 배상 및 화해를 위한 국가공단 (the National Corporation for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 인권프로그램(Human Rights Program)으로 모인 정보들을 관리.
- (7) 외교부 및 다른 공공서비스 기관들과 유엔 및 미주기구에 보고할 주제에 대해 협업
- (8)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유엔과 지역기구, 외국의 기관들과 협업
- (9) 인권에 대한 인식을 늘리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장 및 지지. 이는 군내에 서의 트레이닝, 조사 수행, 자료 출판, 포상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국내 인권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
- (10) 연간보고서에 명시되어있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sup>994)</sup>
  - (가) 인권 보호 및 사법 접근권 프로그램 (PROGRAMA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Y ACCESO A LA JUSTICIA)
    - 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임무 수행

994) p.244~266, <http://www.indh.cl/informe-anual-situacion-de-los-derechos-humanos-en-chile-2015> (검색일 2016.10.26.)

- ② 구금시설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환경 모니터링
  - ③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와 합동 협업
  - ④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옹호
  - ⑤ 고문방지 계획
- (나)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PROGRAMA DE EDUCACIÓN EN DERECHOS HUMANOS, Estudio)
- ① 강의, 학위 및 고등교육 수료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 ② 인권교육 네트워크 강화
  - ③ 인권 교육 커리큘럼 모니터링
  - ④ 국가인권기구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 ⑤ 경제사회문화권 지표 연구: 건강과 근로
- (다) 인권홍보 프로그램 PROGRAMA DE PROMO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 ①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
  - ② 기록 센터 (CENTRO DE DOCUMENTACIÓN, CEDOC) 확장 및 특수 참고문헌 구매
  - ③ 공공 연간 캠페인
- (라) 기관개발프로그램 PROGRAMA DE DESARROLLO INSTITUCIONAL
- ① 국가자문이사회 (CONSEJO CONSULTIVO NACIONAL, CCN) 설립
  - ② 기구 내 공무원들 능력배양 및 소통 원활화
  - ③ 지역조정프로그램
- (마) 역사기록 강화 프로그램 PROGRAMA DE FORTALECIMIENTO DE LA MEMORIA HISTÓRICA
- ① 인권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기록 디지털화 및 보관
  - ② 사법적 판결 및 결정 아카이브
  - ③ 인권 및 관련 기록의 문화예술 콘텐츠 형성
- (바) 지역사무소 구축 INSTALACIÓN DE LAS SEDES REGIONALES
- (사) 보고서 작성
- 연간보고서(Informe Anual), 지역별 보고서(Informe regional), (특정 주제에 대해) 보완적인 보고서(Informes complementarios) 등이 존재.

바) 특이사항

국가인권기구 소장을 국가인권기구 이사회 의장이 겸하고 있으며, 소장은 이사회 위원들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통해 선출함. 이사회 구성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상하 양원에서 추천하는 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됨.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995)</sup>

2012년 11월에 A등급.

29)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가 정보 <sup>996)</sup>	
면적	114만km <sup>2</sup>
인구	4,875만 명(2016)
수도	보고타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200여 토착 인디언어
주요종교	79% 카톨릭, 13% 개신교 <sup>997)</sup>
GDP	2,532억불 (2016, IMF)
	1인당 GDP : 5,195불 (2016, IMF)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콜롬비아 국가옴부즈맨 (Defensoria del Pueblo de Colombia)
- (2) 설립연도: 1992년
- (3) 설립배경<sup>998)</sup>: 콜롬비아 옴부즈맨은 1991년 콜롬비아 헌법에 의해 형성된 헌법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인권 증진, 활동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함. 국가 내에서 민주적, 참여적, 다원적인 인권을 지키고 국제인도주의법의 보급 및 증진 역시 포함.

99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30)

996)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51.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51.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25)

997) [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Colombia](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Colombia) (검색일 2016.10.25.)

998) <http://www.personeriadesogamoso.gov.co/es/acerca-de-la-entidad/entidades-relacionadas/494-defensoria-del-pueblo> (검색일 2016.10.25.)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1991년 헌법 제281조 ~ 284조 (Artículos 281 al 284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1991)<sup>999)</sup>

헌법 내 옴부즈맨사무소 및 위원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4개의 조항으로, 제 281조와 제 283조는 2015년에 개정됨.

제281조<sup>1000)</sup>는 옴부즈맨의 자율권과 임명, 제282조<sup>1001)</sup>는 옴부즈맨의

999)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Arts281al284Constitucion-Defensoria.pdf> (검색일 2016.10.25.)

1000)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Arts281al284Constitucion-Defensoria.pdf> (검색일 2016.10.25.)

콜롬비아 헌법

ARTICULO 281. 제 281조

El Defensor del Pueblo ejercerá sus funciones de manera autónoma. Será elegido por la Cámara de Representantes para un periodo institucional de cuatro años de terna elaborada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국가옴부즈맨은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권을 지닌다. 위원장은 의회를 통해 임명되어 4년간의 임기를 지니는데, 관련 조건은 대통령을 통해 정해진다.

1001)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Arts281al284Constitucion-Defensoria.pdf> (검색일 2016.10.25.)

콜롬비아 헌법

ARTICULO 282. 제 282조

El Defensor del Pueblo velará por la promoción, el ejercicio y la divulg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para lo cual ejercerá las siguientes funciones:

옴부즈맨은 인권 증진, 활동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Orientar e instruir a los habitantes del territorio nacional y a los colombianos en el exterior en el ejercicio y defensa de sus derechos ante las autoridades competentes o entidades de carácter privado.

콜롬비아 내 거주자 및 재외 콜롬비아인을 대상으로 특정 당국이나 기관, 사기관 등에 대해 그들의 권리 행사와 옹호에 대하여 안내 및 지도

2. Divulgar los derechos humanos y recomendar las políticas para su enseñanza. 인권 홍보 및 정책 권고 (후략)

3. Invocar el derecho de Habeas Corpus e interponer las acciones de tutela, sin perjuicio del derecho que asiste a los interesados. 인신보호(Habeas Corpus) 권리와 보호 (후략)

4. Organizar y dirigir la defensoría pública en los términos que señale la ley. 법에 따라 공공변호(defensoría pública) 형성 및 관리

5. Interponer acciones populares en asuntos relacionados con su competencia. 권한 안에서 공공행동 제안

6. Presentar proyectos de ley sobre materias relativas a su competencia. 관할권 내에서 관련 법안 발표

역할, 제283조<sup>1002</sup>)는 옴부즈맨사무소의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제공, 제284조<sup>1003</sup>)는 옴부즈맨의 자료 요청 및 국가기구 협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제281조, 283조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

(나) 1992년 옴부즈맨의 조직 및 역할에 대한 법률 제24번 (Ley 24 de 1992, por la cual se establece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이하 ‘옴부즈맨사무소법’)<sup>1004</sup>)

(다) 2014년 옴부즈맨사무소 내 조직 개정을 위한 칙령 제25번 (Decreto 025 de 2014, por la cual se modifica la estructura orgánic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이하 ‘옴부즈맨사무소 개정칙령’)<sup>1005</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

7. Rendir informes al Congreso sobre el 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업무 수행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 제출

8. Las demás que determine la ley.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내용

1002)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Arts281al284Constitucion-Defensoria.pdf> (검색일 2016.10.25.)

콜롬비아 헌법

ARTICULO 283. 제 283조

La ley determinará lo relativo a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como ente autónomo administrativa y presupuestalmente.

법률(옴부즈맨사무소법)은 옴부즈맨사무소의 세부적인 조직과 역할 및 행정적 및 예산적 자율성을 뒷받침한다.

1003)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Arts281al284Constitucion-Defensoria.pdf> (검색일 2016.10.25.)

콜롬비아 헌법

ARTICULO 284. 제 284조

Salvo las excepciones previstas en la Constitución y la ley, el Procurador General de la Nación y el Defensor del Pueblo podrán requerir de las autoridades las informaciones necesarias para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sin que pueda oponérseles reserva alguna.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들을 제외하고, (...) 옴부즈맨은 역할 수행을 위해 해당 당국에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특정자료 유보는 불가능하다.

1004) [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 (검색일 2016.10.25.)

1005)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decreto-025-2014.pdf> (검색일 2016.10.25.)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

2014년의 옴부즈맨의 개정 칙령 제 3조에 따라, 옴부즈맨사무소 내의 조직이 다음과 같이 재형성됨:

- ① 옴부즈맨 사무소 (DESPACHO DEL DEFENSOR DEL PUEBLO)
  - a. 국제업무사무소 Oficina de Asuntos Internacionales.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국제업무 전략 수행을 위한 관리 및 협업 담당. 옴부즈맨에게 재외 콜롬비아인들의 인권 및 인도주의법 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정책 상황에 대해 자문<sup>1006)</sup>.
  - b. 커뮤니케이션 및 기관이미지 사무소 Oficina de Comunicaciones e Imagen Institucional.  
옴부즈맨사무소의 이미지 향상 및 보급, 그리고 소통 과정의 효과적 관리와 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 이를 통해 기관의 정책과 도덕적인 요소, 인권 홍보 및 보급 등에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둬.<sup>1007)</sup>
  - c. 내부제재사무소 Oficina de Control Interno.  
옴부즈맨의 운영 방식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평가. 정보 관리와 자원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모든 활동 내역이 헌법 내용과 일치하고 옴부즈맨사무소의 목적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sup>1008)</sup>.
  - d. 내부제재징계사무소 Oficina de Control Interno Disciplinario.  
옴부즈맨에게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제재할 때, 예방성과 처벌성이 포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sup>1009)</sup>.
  - e. 법률사무소 Oficina Jurídica.

1006)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spachodeldefensor/2277/Oficina-de-Asuntos-Internacionales.htm> (검색일 2016.10.25.)

1007)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spachodeldefensor/1451/Oficina-de-Comunicaciones-e-Imagen-Institucional.htm> (검색일 2016.10.25.)

1008)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spachodeldefensor/1273/Oficina-de-Control-Interno.htm> (검색일 2016.10.25.)

1009)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spachodeldefensor/1272/Veedur%C3%ADa.htm> (검색일 2016.10.25.)

법률사무소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사법적인 절차를 담당. 옴부즈맨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기존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사무소 운영을 하고자 노력<sup>1010</sup>).

f. 계획사무소 Oficina de Planeación.

계획사무소는 기관의 계획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프로젝트 계획을 짜고 실행해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행동에 대하여 운영하고 관리<sup>1011</sup>).

② 부옴부즈맨 사무소 DESPACHO DEL VICEDEFENSOR DEL PUEBLO.

a. 옴부즈맨 대표들 Defensorías Delegadas.

: 다음의 특정 주제를 담당하는 옴부즈맨들을 의미함.

- 노약자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a Infancia, la Juventud y Adulto Mayor
- 국내무력갈등 피해자 오리엔테이션 및 자문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a Orientación y Asesoría de Víctimas del Conflicto Armado Interno
- 범죄 및 처벌정책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a Política Criminal y Penitenciaria: 범죄 관련 정책 및 감옥, 구금시설 정책과 관련된 업무 담당. 헌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고려하는 정책을 지지<sup>1012</sup>)
- 인권 및 인도주의법 침해 위협 예방을 위한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a Prevención de Riesgos de Violaciones de DDHH y DIH
- 건강, 사회보장 및 장애에 대한 옴부즈맨 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a Salud, la Seguridad social y la Discapacidad: 건강과 사회 보장권 옹호 및 행사를 위함. 콜롬비아인들이 좋은 질

1010)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spachodeldefensor/1608/Oficina-Jur%C3%ADdica.htm> (검색일 2016.10.25.)

1011)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spachodeldefensor/1452/Oficina-de-Planeaci%C3%B3n.htm> (검색일 2016.10.25.)

1012)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fensoriasdelegadas/1280/Para-la-pol%C3%ADtica-criminal-y-penitenciaria.htm> (검색일 2016.10.25.)

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sup>1013</sup>).

- 전원지역 및 영토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Asuntos Agrarios y Tierras<sup>1014</sup>):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인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서. 개인들의 참여를 돕고 민족 및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전원 커뮤니티의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강화하는데에 목적을 둠.
- 헌법 및 법률업무를 위한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os Asuntos Constitucionales y Legales<sup>1015</sup>): 인권 보호 및 옹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 옴부즈맨의 그리고 각 특별분야의 다른 팀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 자문 및 지지
- 환경 공공체 권리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os Derechos Colectivos y del Ambiente
- 실향민권리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os Derechos de la Población Desplazada<sup>1016</sup>): 강제 이주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 이를 위해 국가기관들과 헌법이나 법률적인 협업.
- 여성권 및 젠더 옴부즈맨대표 Defensoria Delegada para los Derechos de las Mujeres y Asuntos de Género
- 선주민과 소수민족 옴부즈맨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os Indígenas y las Minorías Étnicas<sup>1017</sup>): 콜롬비아 내 민족 커뮤니티들의 인권 존중 및 보장
- 경제사회문화권 특별대표 Defensoría Delegada para los Derechos

---

1013)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fensoriasdelegadas/1450/Para-la-salud-y-seguridad-social.htm> (검색일 2016.10.25.)

1014)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fensoriasdelegadas/3472/Defensor%3%ADa-Delegada-para-Asuntos-Agrarios-y-Tierras.htm> (검색일 2016.10.25.)

1015)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fensoriasdelegadas/1447/Para-los-derechos-colectivos-y-del-ambiente.htm> (검색일 2016.10.25.)

1016)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fensoriasdelegadas/1449/Para-los-derechos-de-la-poblaci%3%B3n-desplazada.htm> (검색일 2016.10.25.)

1017)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defensoriasdelegadas/1283/Para-los-ind%3%ADgenas-y-minor%3%ADas-%3%A9tnicas.htm> (검색일 2016.10.25.)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 b. 인권홍보·보급부서 Dirección Nacional de Promoción y Divulgación de Derechos Humanos: 인권교육과 교습을 강조함을 통해 대중들이 인권과 권리에 대해 알리고, 행동과 관점을 변화시키는데에 있음. 인권교습 및 교육을 통해 국가기관들이 공공정책에 참여하게 하고 인권 침해의 피해자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평등, 평화, 사회정의 등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c. 진정관리부서 Dirección Nacional de Atención y Trámite de Quejas.
  - d. 사법행동부서 Dirección Nacional de Recursos y Acciones Judiciales: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옴부즈맨사무소의 법적 행동을 구상하는 역할을 함
  - e. 공공옴부즈맨부서 Dirección Nacional de Defensoría Pública.
    - ③ 지역사무소 DEFENSORÍAS REGIONALES.
    - ④ 사무국 SECRETARÍA GENERAL.
      - a. 인사 준부서 Subdirección de Gestión del Talento Humano.
      - b. 행정 준부서 Subdirección Administrativa.
      - c. 재정 준부서 Subdirección Financiera.
    - ⑤ 자문 및 조정기구 ÓRGANOS DE ASESORÍA Y COORDINACIÓN.
      - a. 옴부즈맨사무소 자문이사회 Consejo Asesor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 b. 행정경력위원회 Comisión de Carrera Administrativa.
      - c. 인사위원회 Comisión de Personal.
      - d. 내부규율시스템협업위원회 Comité de Coordinación del Sistema de Control Interno.
      - e. 조정위원회 Comité de Conciliación.
-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정식 직원 수는 총 109명<sup>1018)</sup>.

---

1018)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institucional/116/Directorio-de-Dependencia-s.htm> (검색일 2016.10.25.)



출처: 콜롬비아 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institucional/115/Organigrama.htm>

[콜롬비아-그림 17] 콜롬비아 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지역사무소는 총 36곳으로, 지역별로 지역옴부즈맨(Defensores regionales)이 존재(1019).

1019)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sedesregionales> (검색일 201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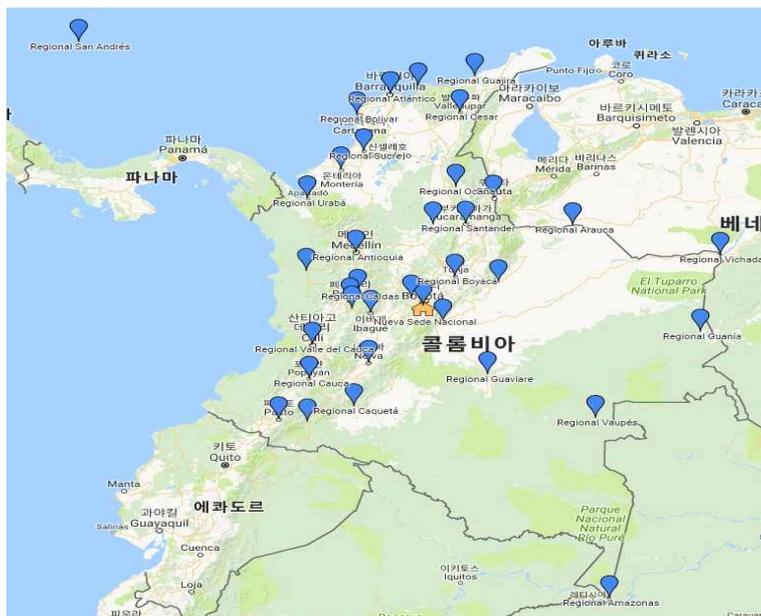
지역사무소들 (목록)

Defensorías Regionales		
Antioquia	Chocó	Ocaña
Arauca	Córdoba	Putumayo
Atlántico	Cundinamarca	Quindío
Amazonas	Guajira	Risaralda
Bogotá	Guainía	San Andrés Isla
Bolívar	Guaviare	Santander
Boyacá	Huila	Sucre
Caldas	Magdalena	Tolima
Caquetá	Magdalena Medio	Urabá
Casanare	Meta	Valle del Cauca
Cauca	Nariño	Vaupés
César	Norte de Santander	Vichada

Áreas Operativas Misionales

출처: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institucional/115/Organigrama.html>

[콜롬비아-그림 18] 지역사무소 목록



출처: <http://www.defensoria.gov.co/es/public/sedesregionales>

[콜롬비아-그림 19] 지역사무소 지도(노란색: 본부/파란색: 지역사무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옴부즈맨사무소의 행정, 재정, 및 예산 부문 조직에 있어 법무장관(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Nación)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 국가 예산 일부분 외에도 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은 특정목적에 대한 자원, 국가 및 국제기관들로부터의 지원과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짐<sup>1020</sup>).

2015년 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규모는 452.212.473.220 콜롬비아 페소 (한화 약 174,132,297,600원)로, 그 전 해(2014)의 381.167.000.000 콜롬비아 페소(한화 약 146,774,999,400원)보다 18.64% 증가한 양<sup>1021</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1022</sup>)

(가) 옴부즈맨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를 통해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지님. 옴부즈맨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혹은 최고행정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을 통해 임명됨.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맨이 될 수 없음:

- ① 구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는 개인 (후략)
- ② 처벌 과정에서 관련 당국을 통해 (기존 책임 역할로부터) 해고되거나 업무 실행 중단 결정을 받은 자
- ③ 어떤 직업에 대한 업무 수행에 있어 다수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제외된 자
- ④ 사법적 차단(interdicción judicial) 상태인 경우
- ⑤ 피고소인인 경우 (단, 정치범죄나 과실에 대한 범죄는 예외)
- ⑥ 법무장관이나 대통령과 혈연(4촌)이나 결혼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1020) [http://www.secretaria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http://www.secretaria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  
(검색일 2016.10.25.)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0

1021) p. 361,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XXIII\\_informe\\_al\\_Congreso\\_Republica\\_2016\\_primeraparte.pdf](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XXIII_informe_al_Congreso_Republica_2016_primeraparte.pdf) (검색일 2016.10.26.)

1022) [http://www.secretaria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http://www.secretaria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  
(검색일 2016.10.25.)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 3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023)</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024)</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짐<sup>1025)</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026)</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027)</sup>

(1) 진정<sup>1028)</sup>

(가) 진정들에 대한 주의 및 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① 직권으로나 특정 개인의 요청,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이고 약식으로 대응,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절차 시행
- ② (조사)결과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요청 및 진정 케이스 각각의 절차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 ③ 공공 기관 내의, 특히 교도소나 법적 구금기관, 경찰기관 및 정신병동 등에서의 인권 보장. 피구금자들이 존엄성을 존중받고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으며 적절한 법적,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인권침해 및 위협에 대하여 의견 표명, 보고, 권고 및 상황 관찰 등 진행
- ⑤ 기타 옴부즈맨에게 주어지는 기타 업무 수행

(나) 진정 접수 및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짐:

- ① 진정이 익명으로 신청되거나 사실 관계 및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하함.

1023)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024)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1025) [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  
(검색일 2016.10.25.) 이외 재임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음.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

1026)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027) [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  
(검색일 2016.10.26.)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9

1028) [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http://www.secretariassenado.gov.co/senado/basedoc/ley_0024_1992.html)  
(검색일 2016.10.26.)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6, 27, 29

- ② 국가공무원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 서면 형식의 답변/보고를 최대 5일 이내로 작성 및 전달, 그 내용이 진정인과 옴부즈맨에게 전달되어야 함.
  - ③ 답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서, 해고되거나 옴부즈맨의 업무 방해로 간주됨. 이런 경우 옴부즈맨은 협조하지 않은 관계자의 이름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이는 처벌 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짐.
- (다)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진정이 형성되면, 옴부즈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해당 당국에 결정 내용을 전달.

(2) 교육

- (가) 콜롬비아 헌법 내 기본법, 사회, 정치, 문화, 공공체, 그리고 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지식 보급
- (나) 인권 보급 및 증진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파트너십 형성

(3) 홍보

- (가)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법무장관(el Procurador General de la Nación)과 더불어 국내 인권보호와 보급 관련 정책 형성 및 승인.
- (나) 인권에 대한 위협 및 침해의 경우 해당 당국 및 개인에 대한 권고 및 관측을 통해 인권 홍보 및 행사 보장. 옴부즈맨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관련 행동에 대해 의회에 알린다.
- (다) 조사결과 및 인권 인식 저조에 대하여 고발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적 보고서 작성

(4) 정책지원

- (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위해 법무장관을 지원
- (나) 사기업들이 기본 권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충고
- (다) 인권 보호 및 옹호를 위해 정부기관과 국내 및 국제 NGO들의 영구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해 필요한 매커니즘 형성

(5) 직권조사

인권 관련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나 외부 개인으로부터의 요청을 통해 헌법 재판소에 고소, 이의제기, 변호. 헌법에 따라 법원이나 공무원, 당국에 대해 공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 행동 취함.

(6) 중재 등 인권옹호 활동

- (가) 시민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공동적인 요청이 있을 때 중재 역할
- (나) 소수민족 및 소비자의 권리 지지
- (다) 인권 옹호를 위해 의회 공판, 특별 공판 등 참여.
- (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나 사기업과 이용자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
- (마) 그 외 법적인 권한 하의 활동
- (바) (특정)기구의 인권옹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계약 및 행정적 실행 계획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법적 및 사법적 대리자로서의 역할 제공.

(7) 연간보고서 제출<sup>1029)</sup>

옴부즈맨은 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는 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데, 진정의 종료와 통계자료, 진정 내용에 대한 조치와 과정,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언급, 필요하다고 여겨진 행정적 및 법률적 권고사항 등이 포함. 옴부즈맨 사무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리는 차원으로도 사용됨.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이며, 담당 업무 및 주제별 옴부즈맨 대표 11명을 두고 활동하는 점이 특이사항임.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030)</sup>

2001년에 A등급. 2007년 10월과 2012년 3월에도 동일 등급 유지.

1029) <http://www.defensoria.gov.co/public/pdf/01/decreto-025-2014.pdf>

(검색일 2016.10.26.) 옴부즈맨사무소 개정칙령 Art. 5

1030)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30)

### 30) 에콰도르

에콰도르 국가 정보 <sup>1031)</sup>	
면적	283,560km <sup>2</sup>
인구	1,510만명
수도	끼또(Quito)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가톨릭(95%)
GDP	1,008억불 (2015)
	6,196억불 (2015)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에콰도르 국가 옴부즈맨(Defensoría del Pueblo de Ecuador)
- (2) 설립연도: 1998년
- (3) 설립배경<sup>1032)</sup>
  - (가) 국가 옴부즈맨은 에콰도르의 정부 기관들 중 하나로, 헌법 제 96조에 근거하여 세워지고, 1998년 8월부터 법적 효력을 지님. 현재는 새로 개정(2008년 10월)된 에콰도르 헌법 제 214조에 근거 하고 있는 기관.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에콰도르 헌법 제 214조, 215조, 216조<sup>1033)</sup>

에콰도르 헌법의 세 조항은 옴부즈맨 사무소 및 옴부즈맨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음. 제 214조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정의 및 역할<sup>1034)</sup>, 제 215조는 사무소의 구체적인 역할<sup>1035)</sup>, 그리고 제 216조는

1031)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74.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74.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12)

1032) <http://www.dpe.gob.ec/que-hacemos/> (검색일 2016.10.13.)

1033) [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 (검색일 2016.10.14.)

1034) [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 (검색일 2016.10.14.)

에콰도르 헌법 Art. 214. 제 214조

La Defensoría del Pueblo será un órgano de derecho público con jurisdicción nacional, personalidad jurídica y autonomía administrativa y financiera. Su estructura será desconcentrada y tendrá delegados en cada provincia y en el

옴부즈맨의 임명 및 권한<sup>1036)</sup>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terior.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권리 수호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국가단위의 관할권, 법인,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지닌다. 조직은 분권화되어 각 지역마다, 그리고 해외에 대표들이 파견된다.

1035) [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

(검색일 2016.10.14.)

에콰도르 헌법 Art. 215. 제 215조

La Defensoría del Pueblo tendrá como funciones la protección y tutela de los derechos de los habitantes del Ecuador y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ecuatorianas y ecuatorianos que estén fuera del país. Serán sus atribuciones, además de las establecidas en la ley, las siguientes: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사무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El patrocinio, de oficio o a petición de parte, de las acciones de protección, hábeas corpus,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hábeas data, incumplimiento, acción ciudadana y los reclamos por mala calidad o indebida prestación de los servicios públicos o privados.

직권에 따르거나 외부 요청에 따른 지원은 보호행동(las acciones de protección), 인신보호(hábeas corpus),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개인정보보호(hábeas data), 불응(incumplimiento), 국민행동 및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로부터의 기타 악질적인 행동이나 부적절한 조치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2. Emitir medidas de cumplimiento obligatorio e inmediato en materia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y solicitar juzgamiento y sanción ante la autoridad competente, por sus incumplimientos.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에 대해 판결, 징계.

3. Investigar y resolver, en el marco de sus atribuciones, sobre acciones u omisiones de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presten servicios públicos.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행동이나 비행동에 대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조사 및 해결책 제공

4. Ejercer y promover la vigilancia del debido proceso, y prevenir, e impedir de inmediato la tortura, el trato cruel, inhumano y degradante en todas sus formas. (적합한) 법적 절차를 위한 감시 및 증진,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1036) [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

(검색일 2016.10.14.)

에콰도르 헌법 Art. 216. 제 216조

Para ser designado Defensora o Defensor del Pueblo será necesario cumplir con los mismos requisitos exigidos para las juezas y jueces de la Corte Nacional de Justicia y acreditar amplia trayectoria en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La Defensora o Defensor del Pueblo tendrá fuero de Corte Nacional de Justicia y

(나) 국가 옴부즈맨 사무소 기본법 (LEY ORGANICA DE LA DEFENSORIA DEL PUEBLO)<sup>1037)</sup>

1997년 2월 20일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2009년 3월 9일에 가장 최근으로 수정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조직내 최고 의사결정단위<sup>1038)</sup>

사무소 내 조직구성에 있어서 2명의 부옴부즈맨이 있어 한명은 조사 및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사무소 관리 등의 총괄업무 및 소비자 진정 등의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① 국가 옴부즈맨 (Defensor de el Pueblo): Dr. Ramiro Rivadeneira Silva
- ② 조사 및 교육 부옴부즈맨(Adjunto de Derechos Humanos y de la Naturaleza): Dr. Patricio Benalcázar Alarcón
- ③ 행정총괄 부옴부즈맨(Adjunta de Usuarios y Consumidores): Dra. Jhoanna Pullas Villavicencio

(나) 행정조직

2명의 부옴부즈맨 이외에, 기관계획조정 총괄담당관과 행정재무조정 총괄 담당관이 있고, 옴부즈맨 산하로 지역 옴부즈맨과 사무소들이 있으며, 해외대표부도 운영하고 있음.

(2) 지역사무소<sup>1039)</sup>

- ① 수도인 키토 Quito 내 3개의 사무소(북마트리스 빌딩 Edificio Matriz Norte, 남부 Sur, 시리스사무소 Oficina Shyris)가 존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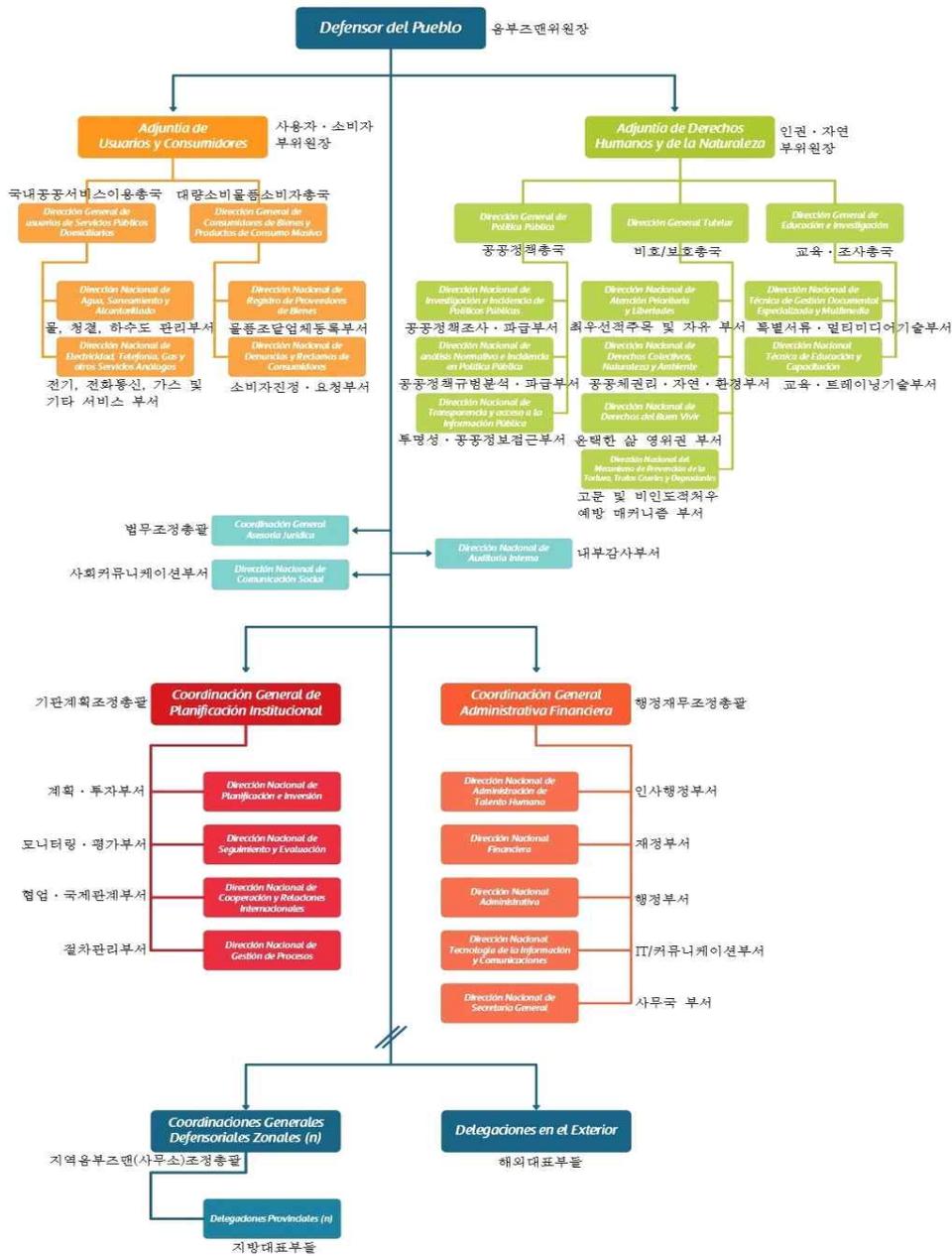
gozará de inmunidad en los términos que establezca la ley.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국가사법재판소(Corte Nacional de Justicia)의 법관들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지녀야 하고, 인권옹호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옴부즈맨은 국가사법재판소의 영향 밖에서 관할권을 지니고, 법에 수립된 바대로 면책을 누린다.

1037)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1038) <http://www.dpe.gob.ec/autoridades-defensoria-del-pueblo-ecuador/> (검색일 2016.10.13.)

1039) <http://www.dpe.gob.ec/category/ubiquenos-en-el-territorio/> (검색일 2016.10.13.)



출처: 에콰도르 읍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dpe.gob.ec/estructura/>

[에콰도르-그림 20] 에콰도르 읍부즈맨사무소 조직도

② 지역사무소는 총 36곳으로, 다음은 그 목록(주 - 도시)임:

- Azuay - Cuenca
- Pichincha - Sangolquí
- Azogues - Cañar
- Bolivar - Guaranda
- Carchi - Tulcán
- Cotopaxi - Latacunga
- Chimborazo - Riobamba
- Esmeraldas - Esmeraldas
- El Oro - Machala
- Galápagos - Pto. Baquerizo Moreno - Isla San Cristóbal
- Guayas - 4곳: Guayaquil, Milagro, Durán, Daule.
- Imbabura - Ibarra
- Loja - Loja
- Los Rios - 2곳: Quevedo, Babahoyo.
- Manabí - 5곳: Chone, Manta, Bahía de Caráquez, Jipijapa, Portoviejo.
- Morona Santiago - Macas
- Napo - Tena
- Orellana - Coca
- Pastaza - Puyo
- Santo Domingo - Santo Domingo de los Tsáchilas
- Sucumbios - Lago Agrio
- Santa Elena - Santa Elena
- Tungurahua - Ambato
- Zamora Chinchipe - Zamora

③ 국제사무소는 총 6곳으로, 미국에 세 곳 (시카고, 텍사스 휴스턴, 뉴욕), 멕시코 타파출라 Tapachula,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 함.

(3) 예산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가) 예산규모

2015년 연간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정된 예산은 15,222,305,09 달러<sup>1040)</sup> (한화로 약 17,237,053,330원), 실제 사용 집행된 예산은 지정 예산의 97.37%에 해당하는 14,822,229,89 (한화로 약 16,784,026,130원) 달러<sup>1041)</sup>.

(나) 예산의 독립성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의 두 조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제 1조<sup>1042)</sup>에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성격을 설명하며 그 중 경제적 자율권을 포함하고 있음. 제 26조<sup>1043)</sup>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 지정과 예산 사용 집행에서의 자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

1040) 에콰도르는 2000년도부터 미국 달러를 국가 화폐로 사용함.

1041) <http://repositorio.dpe.gob.ec/handle/39000/1214> (검색일 2016.10.13.)

1042)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1. 제 1조

La Defensoría del Pueblo, cuyo titular es el Defensor del Pueblo, es un organismo público, con autonomía funcional, económica y administrativa y con jurisdicción nacional. Su sede será la capital de la República.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 역할, 경제, 행정적 자율권과 국가 관할권을 지닌다. 사무소는 에콰도르의 수도에 위치한다.

1043)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26. 제 26조

Para el funcionamiento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se asignarán en el Presupuesto General del Estado los recursos necesarios que le permitan ejercer sus deberes y atribuciones garantizándose su autonomía funcional, económica y administrativa prevista en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는 사무소의 예산을) 국가 예산(el Presupuesto General del Estado)의 일부로 포함,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무소는 역할 수행, 재정, 행정적인 부분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 ① 국가옴부즈맨은 의회 의원의 2/3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 선출됨<sup>1044</sup>. 국가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대법관(Magistrado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과 동일한 자격요건(헌법 제 183조에 따라 1)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에콰도르인, 2) 국내에서 인정되는 법적 조건을 갖춘 자, 3) 최소 10년간 변호사나 판사로 일했거나,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경력을 지닌 자)을 갖춘 자로서, 사법계열 종사자로부터의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음. 또한 옴부즈맨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특정 기관 및 정당 소속, 혹은 선거 관련 참여 사실이 없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자여야 함<sup>1045</sup>.

(나) 부옴부즈맨 및 대리 역할

- ① 옴부즈맨은 제 1, 2 부옴부즈맨을 선출하여 옴부즈맨의 업무와 의무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음. 옴부즈맨 임시 부재 혹은 공석 시에는 부옴부즈맨들이 옴부즈맨을 대리하게 됨<sup>1046</sup>.
- ② 각 지방(provincia)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지역)대표가 존재, 지방의 상황에 따라 옴부즈맨으로부터 임명된 대표/위원(comisionado)이 관련 업무 이행, 의무, 권한 등을 준수함. 위원들은 사법계열 종사자로부터의 추천서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의 판사들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지니고 있어야 함<sup>1047</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048</sup>

1044)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3. 제 3조

El Defensor del Pueblo será elegido por el Congreso Nacional en Pleno con el voto de las dos terceras partes, por lo menos, de sus miembros, para un período de cuatro años y podrá ser reelegido por una sólo vez.

국가옴부즈맨은 의회 총회를 통해 2/3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 선출된다. (...) 위원장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1045)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4

1046)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9

1047)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10

1048)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은 2명의 부옴부즈맨을 임명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1번의 재임이 가능<sup>1049</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국가옴부즈맨은 의회의 위원들과 동일한 면책을 누림<sup>1050</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051</sup>)

(1) 진정

(가) 진정은 구술이나 서명으로 제출되는데, 그 내용에는 진정인의 신원과 사실 관계가 포함되어야 함. 구술로 신청되는 진정의 경우 받아 적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신분증이나 여권 등으로 신원을 증명, 접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제 3자인 목격자가 진정인의 신분을 증명하게 됨<sup>1052</sup>).

(나) 진정을 접수 받으면 진정을 허가해서 심층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등록을 불허하게 됨.

① 진정이 등록되어 (추가적 조사가) 허가되면 약식으로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됨. 진정의 내용에 따라 특정 행동이나 비행동에 책임을 지는 해당 주체에게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고, 그들은 8일 내에 (8일 더 갱신 가능)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해당 주체가 답변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진정의 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여짐<sup>1053</sup>).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이 불허됨: 진정이 익명으로 신청되는 경우, 악의적인 경우, 증거 부족한 경우,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불허 결정 시에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049)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3

1050)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5

1051) <http://www.dpe.gob.ec/que-hacemos/> (검색일 2016.10.13.)

1052)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15

1053)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19

대안적 방안에 대해 알려야 함. 또한, 진정 등록 불허 사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sup>1054</sup>).

③ 진정의 내용이 사법적 혹은 행정적 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옴부즈맨사무소는 법 절차 모니터링만 담당하게 됨.

(다)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신체 및 정신의 온전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진정들의 경우, 옴부즈맨은 지체하지 않고 심각한 손상이나 위험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진<sup>1055</sup>).

(2) 조사<sup>1056</sup> 및 직권조사

(가) 옴부즈맨은 무보수, 약식, 즉각성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 옴부즈맨은 직권으로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필요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증하고 동법 제 2조 a(인신보호영장, 정보청구, 개인 보호), b항(헌법 및 에콰도르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 조약에 따른 개인 및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조사)에 따라 공공분야나 특정 분야를 조사함.

(2) 대국민 활동<sup>1057</sup>)

(가)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 ① 국민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안내
- ② 국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탄원서 접수받음
- ③ 국민들의 권리 행사에 대해 안내하는 기본적인 과제 수행
- ④ 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통지 및 안내
- ⑤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관련 콘텐츠에 대해) 공공검열 이행

(나) 조사, 모니터링, 국민보호

- ① 인권침해 조사 및 고발

---

1054)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17, 18

1055)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16

1056)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ecu_org4.pdf) (검색일 2016.10.13.)  
Art. 13, 14

1057) <http://www.dpe.gob.ec/que-hacemos/> (검색일 2016.10.13.)

- ②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에 대한 모니터링
  - ③ 보호 및 인신보호(hábeas corpus) 증진 및 지원.
  - ④ 외부로부터의 진정신청/요청시 해당 개인의 개인정보보호(hábeas data) 지원
  - ⑤ 재판관이나 판사가 인신보호(hábeas corpus), 개인정보보호 및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
  - ⑥ 사전심리 피구금자들을 위한 인신보호영장 발부.
  - ⑦ 직권으로나 외부의 요청에 따라 재외 에콰도르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 증진, 수호
- (다) 인권 존중 및 다분야 참여 촉진
- 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증진
  - ② 평화적인 문제 해결 지지
  - ③ 대중들의 주도에 따라 형성된 법안 소개
  - ④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개입
- (라) 국가기관들과의 협업
- ①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법률이나 법령, 규율, 조례, 헌장 및 모든 공공 당국의 행정법 등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절차보고서 제출
  - ② 법인이나 기관 등이 공공행정과 분쟁이 있을 때 조정 차원에서 개입
  - ③ 인권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교도소, 경찰서, 군 부대 내 구금시설을 정기 방문
  - ④ 부옴부즈맨들, 위원들(Comisionados), 부장들(Directores) 및 국가조정총괄(Coordinador Nacional)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인권과 헌법적 권리 및 옴부즈맨사무소의 권한에 포함되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⑤ 의회에 매 해 보고.
  - ⑥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들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고무함.
  - ⑦ 공공서비스의 좋은 질을 위해 노력
- (마) 국제적 차원의 업무 수행
- ① 인권에 대한 조약, 협약, 국제선언들에 서명 및 비준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

- ② 국제적인 포럼에서 국가 대표로서 옴부즈맨사무소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알리는 역할 수행.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이며,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임.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058)</sup>

1999년 유보사항을 전제로 A등급. 2002년에도 동일 등급. 2008년 4월에는 B등급을 권고받았으나 파리 원칙(Paris Principle)의 더 나은 이행을 위해 1년간의 기간이 주어짐. 2009년 3월에 A등급을 받고, 2015년 3월에도 같은 등급 유지.

### 31)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국가 정보 <sup>1059)</sup>	
면적	21,040km <sup>2</sup>
인구	614만명 (2015.7)
수도	산살바도르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가톨릭 60%, 개신교 35%, 기타 5%
GDP	GDP (명목) : 251억불 (2014, IMF)
	1인당 GDP : 3,958불 (2014, IMF)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인권 옴부즈맨사무소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 (2) 설립연도: 1992년

인권 옴부즈맨사무소법 (Ley de la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은 의회법령(Decreto Legislativo) 제 183번 (1992년 2

1058)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30)

1059)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35.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35.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9.6.)

월 20일)을 통해 공개되고, 공식관보(Diario Oficial) 제 45번 (같은 해 3월 3일)을 통해 출판됨<sup>1060</sup>).

(3) 설립배경<sup>1061</sup>)

(가) 옴부즈맨사무소는 평화협정(los Acuerdos de Paz)에 따라 엘살바도르의 헌법 개정을 통해 세워짐. 옴부즈맨사무소는 무력 충돌 후 사회 내 전환의 시기에 엘살바도르 내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고, 민주주의 국가 및 권리를 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생겨남.

사무소가 세워졌을 당시에는 지난날에 발생했던 심각한 인권침해 및 기본적 자유 침해에 근거해 헌법 및 법에 따른 권한이 주어짐. 엘살바도르의 옴부즈맨사무소는 기존의 유럽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옴부즈맨(Ombudsman)에 비해 권한이 더 큰 편임.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엘살바도르 헌법 제 191, 192, 194조.

헌법 내에서 옴부즈맨에 대해 서술하는 조항은 세 곳으로, 제 191조, 192조, 194조. 헌법 제 191조<sup>1062</sup>)는 옴부즈맨의 고등경찰청장(Ministerio Público)의 임명 참여, 192조<sup>1063</sup>)는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1060) <http://www.pddh.gob.sv/menuinfo/menutrabajo/menuhistoriapddh>  
(검색일 2016.10.05.)

1061) <http://www.pddh.gob.sv/menuinfo/menutrabajo/menuhistoriapddh>  
(검색일 2016.9.6.)

1062)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constitucion-de-la-republica/> (검색일 2016.9.6.)

엘살바도르 헌법 Art. 191.- EL MINISTERIO PUBLICO SERA EJERCIDO POR EL FISCAL GENERAL DE LA REPUBLICA, EL PROCURADOR GENERAL DE LA REPUBLICA,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Y LOS DEMAS FUNCIONARIOS QUE DETERMINE LA LEY.

제 191조

고등경찰청장(Ministerio Público)은 법무장관 (el Fiscal general de la Republica), 검찰총장 (El Procurador general de la Republica), 옴부즈맨과 그 외 법을 결정하는 관계자들을 통해 임명된다.

1063)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constitucion-de-la-republica/>

옴부즈맨의 임명 절차, 그리고 194조<sup>1064</sup>)는 옴부즈맨(I항)과 검찰총장

tos-legislativos/constitucion-de-la-republica/ (검색일 2016.9.6.)

엘살바도르 헌법 Art. 192.- EL FISCAL GENERAL DE LA REPUBLICA, EL PROCURADOR GENERAL DE LA REPUBLICA Y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SERAN ELEGIDOS POR LA ASAMBLEA LEGISLATIVA POR MAYORIA CALIFICADA DE LOS DOS TERCIOS DE LOS DIPUTADOS ELECTOS.

DURARAN TRES AÑOS EN EL EJERCICIO DE SUS CARGOS Y PODRAN SER REELEGIDOS. LA DESTITUCION SOLAMENTE PROCEDERA POR CAUSAS LEGALES, CON EL VOTO DE LOS DOS TERCIOS DE LOS DIPUTADOS ELECTOS.

PARA SER FISCAL GENERAL DE LA REPUBLICA O PROCURADOR GENERAL DE LA REPUBLICA SE REQUIEREN LAS MISMAS CUALIDADES QUE PARA SER MAGISTRADO DE LAS CAMARAS DE SEGUNDA INSTANCIA.

LA LEY DETERMINARA LOS REQUISITOS QUE DEBERA REUNIR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제 192조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옴부즈맨은 상원의 과반수 투표와 하원의 2/3 투표를 통해 임명된다. 그들에게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재임이 가능하다. 면직은 법률적인 원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원의 2/3 투표로 결정된다. (중략) 옴부즈맨의 자격요건은 법으로 지정된다.

1064)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constitucion-de-la-republica/> (검색일 2016.9.6.)

엘살바도르 헌법 Art. 194.

제 194조 (I항만 번역)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Y EL PROCURADOR GENERAL DE LA REPUBLICA, TENDRAN LAS SIGUIENTES FUNCIONES:

옴부즈맨과 검찰총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I.- CORRESPONDE A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옴부즈맨의 경우:

1º- VELAR POR EL RESPETO Y LA GARANTIA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존중과 보증 유지

2º- INVESTIGAR, DE OFICIO O POR DENUNCIA QUE HUBIERE RECIBIDO, CASO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진정 요청이나 자체적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

3º- ASISTIR A LAS PRESUNTAS VICTIMA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문의사항 및 질문 지원

(II항)의 역할에 대해 서술.

(나) 인권 옴부즈맨사무소법 (La ley de la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4°- PROMOVER RECURSOS JUDICIALES O ADMINISTRATIVOS PARA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적 및 행정적 수단 증진

5°- VIGILAR LA SITUACION DE LAS PERSONAS PRIVADAS DE SU LIBERTAD. SERA NOTIFICADO DE TODO ARRESTO Y CUIDARA QUE SEAN RESPETADOS LOS LIMITES LEGALES DE LA DETENCION ADMINISTRATIVA;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상황을 살핌. 모든 체포 사실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파피구금인들이 행정구금기관의 법적 한계와 상관 없이 존중받을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

6°- PRACTICAR INSPECCIONES, DONDE LO ESTIME NECESARIO, EN ORDEN A

ASEGURAR EL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려되는 경우 시찰 이행.

7°- SUPERVISAR LA ACTUACION DE LA ADMINISTRACION PUBLICA FRENTE A LAS PERSONAS;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 활동 감독

8°- PROMOVER REFORMAS ANTE LOS ORGANOS DEL ESTADO PARA EL PROGRESO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진전을 위해 국가 기구 개혁 증진

9°- EMITIR OPINIONES SOBRE PROYECTOS DE LEYES QUE AFECTEN EL EJERCICIO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견 제공

10°- PROMOVER Y PROPONER LAS MEDIDAS QUE ESTIME NECESARIAS EN ORDEN A PREVENIR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조치를 증진 및 제안

11°- FORMULAR CONCLUSIONES Y RECOMENDACIONES PUBLICA O PRIVADAMENTE;

공적 및 민간 단위의 결론 및 권고사항 형성

12°- ELABORAR Y PUBLICAR INFORMES;

보고서 작성 및 출간

13°- DESARROLLAR UN PROGRAMA PERMANENTE DE ACTIVIDADES DE PROMOCION SOBRE EL CONOCIMIENTO Y RESPETO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존중 및 인식 증진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프로그램 개발

14°- LAS DEMÁS QUE LE ATRIBUYAN LA CONSTITUCION O LA LEY.

그 외에 헌법이나 옴부즈맨사무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업무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PODRA TENER DELEGADOS DEPARTAMENTALES Y LOCALES DE CARACTER PERMANENTE.

옴부즈맨은 부서 단위 및 지역 단위의 대리인들을 임명할 수 있다.

de Los Derechos Humanos)<sup>1065)</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sup>1066)</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sup>1067)</sup>

① 옴부즈맨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sup>1068)</sup>

옴부즈맨은 엘살바도르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인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증진과 교육 및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 2016년 9월 현재의 옴부즈맨은 David Ernesto Morales Cruz임.

② 부옴부즈맨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sup>1069)</sup>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사무소 내에서 2인자의 지위를 가지며, 옴부즈맨과 가까이에서 협업함. 옴부즈맨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받기도 함. 부옴부즈맨은 인권보호시스템국장(Director Nacional del Sistema de Protección a Derechos Humanos)의 역할도 겸임함.

③ 특정 분야의 부옴부즈맨 (Procuradurias adjuntas específicas)

1065)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1066)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

제 2조 (일부)

La Procuraduría es una institución integrante del Ministerio Público, de carácter permanente e independiente, con personalidad jurídica propia y autonomía administrativa, cuyo objeto será el de velar por la protección, promoción y educ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y por la vigencia irrestricta de los mismos. 옴부즈맨사무소는 고등경찰청장(Ministerio Público) 산하의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기구만의 법인격(personalidad jurídica)과 행정적 자치를 지니며, 목적은 인권 보호 및 교육과 인권상황 감시를 위한 것이다.

1067) <http://www.pddh.gob.sv/> (검색일 2016.9.6.)

1068) <http://www.pddh.gob.sv/menuinfo/manustruct/menuprocurador> (검색일 2016.9.6.)

1069) <http://www.pddh.gob.sv/menuinfo/manustruct/menuadjunto> (검색일 2016.9.6.)

- a.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Procuraduría Adjunt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Juventud)
  - 청소년부 (Unidades Juveniles)
  - 국내 무력분쟁으로 인해 실종된 아동 수색 국가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Búsqueda de Niñas y Niños Desaparecidos durante el Conflicto Armado Interno)
- b. 여성가족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Procuraduría Adjunt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Mujer y la Familia)
- c. 경제·사회·문화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Procuraduría Adjunt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 HIV와 인권부서 (Departamento VIH y Derechos Humanos)
- d. 환경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Procuraduría Adjunta para la Defensa del Medio Ambiente)
- e. 시민·개인권 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Procuraduría Adjunt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Civiles e Individuales)
  - 이주민부 (Unidad de Migrantes)
  - 참정권부 (Unidad de Derechos Políticos)
  - ④ 인권학교 (Escuela de Derechos Humanos)
  - 시사부 (Unidad de Realidad Nacional)
  - 교육부 (Unidad de Educación)
  - 문화증진부 (Unidad de Promoción y Cultura)
  - ⑤ 지역사무소(Delegaciones departamentales y locales): 아래 참고
  - ⑥ 보호시스템부서들 (Departamentos del Sistema de Protección)
    - 진정부서 (Departamento de Denuncias)
    - 공소부서 (Departamento de Procuración)
    - 모니터링부서 (Departamento de Seguimiento)
    - 처벌입증부서 (Departamento de Verificación Penitenciaria)
    - 예방적 관찰 및 위기 주목 부서 (Departamento de Observación Preventiva y Atención a Crisis)
  - ⑦ 행정 및 재정분야 Áreas administrativas y financieras

(나)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총 16개로 부서 단위 (Departamental), 지역 단위 (Local) 두 가지 규모로 존재. 대다수는 부서 단위이고, 지역 단위 사무소('L'로 표시) 총 3곳과 부중앙 사무소가 있음.

(2) 지역사무소

(가) 서부 (zona occidental): Santa Ana, Ahuachapán, Sonsonate, Metapán(L)

(나) 중앙 (zona central): La Libertad, Chalatenango, Soyapango(L)

(다) 동부 (zona oriental): San Miguel, Morazán, La Unión, Usulután, Santa Rosa de Lima(L)

(라) 부중앙 (zona paracentral): San Vicente, La Paz, Cuscatlán, Cabañas

(3) 예산의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은 별개로 지정되어 사용되므로, 예산의 독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sup>1070</sup>). 2015년을 기준으로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은 2014년보다 감소한 9,011,000달러 (한화로 약 9,894,108,300원)<sup>1071</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1070)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19.

Para su funcionamiento, la Procuraduría tendrá un presupuesto especial y su propia Ley de Salarios. Para efectos de control presupuestario, el Procurador establecerá los mecanismos que estime convenientes, sin perjuicio de la fiscalización que corresponde a la Corte de Cuentas de la República.

제 19조

역할 수행을 위해, 옴부즈맨사무소는 특별 예산(...)이 따로 지정되어 진행된다. 재정 관리를 위해 옴부즈맨사무소는 재정법원(Corte de Cuentas)과의 소통 없이 사무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적합한 매커니즘을 수립 가능하다.

1071) [http://www.lapagina.com.sv/nacionales/99706/2014/10/02/Trabajadores-de-la-PD-DH-protestan-por-reduccion-de-\\$100-mil-en-presupuesto-para-2015](http://www.lapagina.com.sv/nacionales/99706/2014/10/02/Trabajadores-de-la-PD-DH-protestan-por-reduccion-de-$100-mil-en-presupuesto-para-2015) (검색일 2016.9.28.)

(가) 옴부즈맨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2/3의 표를 받아 임명됨<sup>1072</sup>).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인권 관련 계열에서 명망과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엘살바도르인이어야 함. 또한,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6년 전부터 엘살바도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음<sup>1073</sup>).

옴부즈맨으로 선출될 수 없는 예외의 경우들도 존재하는데, 선거 관련 공무원, 장관 및 차관, 대법원(la Corte Suprema de Justicia)의 판사들(Magistrados) 및 그들과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정

---

1072)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 일부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que en la presente ley se denominará EL PROCURADOR, será elegido por la Asamblea Legislativa, por mayoría calificada de los dos tercios de los diputados electos. Durará tres años en el ejercicio de su cargo y podrá ser reelegido.

제 4조

옴부즈맨은 (...) 의회를 통해 임명되는데, 의원 2/3의 표를 받아야 한다. 임기는 3년간이고, 재임이 가능하다.

1073)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5.

PARA SER PROCURADOR SE REQUIERE: SER SALVADOREÑO, DEL ESTADO SEGLAR, MAYOR DE TREINTA Y CINCO AÑOS, CON GRADO UNIVERSITARIO, DE RECONOCIDA TRAYECTORIA EN LA PROMOCIÓN, EDUCA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Y CON AMPLIOS CONOCIMIENTOS EN ESE CAMPO, DE MORALIDAD Y COMPETENCIA NOTORIAS, ESTAR EN EL GOCE DE LOS DERECHOS DE CIUDADANO Y HABERLO ESTADO EN LOS SEIS AÑOS ANTERIORES AL DESEMPEÑO DE SU CARGO.

제 5조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엘살바도르인이어야 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교육을 받았고, 인권증진, 교육 및 보호 계열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명망이 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느리며,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6년 전부터 (엘살바도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의 구성원, 군 소속이거나 관련 계열 종사자,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등임<sup>1074</sup>).

(나) 부옴부즈맨

부옴부즈맨들의 경우 전반적인 차원에서 부옴부즈맨(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을 포함하여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Juventud), 여성가족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Mujer y la Familia), 경제·사회·문화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환경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l Medio Ambiente), 시민·개인권 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Civiles e Individuales) 등이 있음.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옴부즈맨과 동일

1074)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6.

No podrán ser elegidos PROCURADOR: los funcionarios de elección popular, los Ministros o Viceministros de Estado, los Magistrados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sus cónyuges o parientes dentro del cuarto grado de consanguinidad o segundo de afinidad, los integrantes de partidos políticos que desempeñen cargos en los órganos de dirección, los militares de profesión que estén o hayan estado de alta o quienes pertenezcan o hayan pertenecido a grupos armados de cualquier naturaleza y los que hubiesen sido condenados por violación a los derechos humanos.

제 6조

다음의 경우에는 옴부즈맨으로 선출될수 없다:

선거 관련 공무원, 국가의 장관 및 차관, 대법원(la Corte Suprema de Justicia)의 판사들(Magistrados) 및 그들과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정당의 구성원, 군 소속이거나 관련 계열 종사자,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부옴부즈맨은 위원장의 부재나 공석 등의 상황에서 새로운 옴부즈맨이 선출될 때까지 옴부즈맨의 역할을 대행<sup>1075)</sup>.

부옴부즈맨들로 선출되려면 나이 35세 이상의 엘살바도르 태생 국민이어야 하고, 비종교적인 신분과 도덕적·전문적 분야의 명망가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sup>1076)</sup>.

---

1075)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15.-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DEBERÁ REUNIR LOS MISMOS REQUISITOS QUE PARA EL CARGO DE PROCURADOR. SUSTITUIRÁ A ÉSTE EN LOS CASOS DE AUSENCIA O IMPEDIMENTO, SIEMPRE QUE LA SUSTITUCIÓN OPERE DENTRO DEL PERÍODO PARA EL QUE FUE ELECTO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CON LOS REQUISITOS QUE EXIGE LA CONSTITUCIÓN.

제 15조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옴부즈맨 위원장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원장의 부재나 공석 등의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 역할을 대행한다.

1076)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16.

LOS PROCURADORES ADJUNTOS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JUVENTUD; DE LA MUJER Y LA FAMILIA; DE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DEL MEDIO AMBIENTE, DE DERECHOS CIVILES E INDIVIDUALES, Y LOS DEMÁS PROCURADORES ADJUNTOS QUE NOMBRE EL PROCURADOR, DEBERÁN REUNIR LOS SIGUIENTES REQUISITOS:

1o.) SER SALVADOREÑOS POR NACIMIENTO;

2o.) DEL ESTADO SEGLAR;

3o.) MAYORES DE TREINTA Y CINCO AÑOS;

4o.) DE MORALIDAD Y COMPETENCIA NOTORIAS; Y,

5o.) CON AMPLIOS CONOCIMIENTOS SOBRE LA MATERIA OBJETO DE SU MANDATO.

제 16조

특수분야 부옴부즈맨들 (Los Procuradores adjuntos: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077)</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필요에 따라 옴부즈맨은 사무소의 업무 수행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부옴부즈맨을 추가 임명하기도 함<sup>1078)</sup>. 옴부즈맨은 사무

---

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Juventud), 여성가족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Mujer y la Familia), 경제·사회·문화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환경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l Medio Ambiente), 시민·개인권 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Civiles e Individuales), 그리고 그 외에 옴부즈맨사무소가 법적인 임무 수행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려 되는 분야의 부옴부즈맨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o.) 엘살바도르 태생 국민

2o.) 비종교적 신분

3o.) 나이 35세 이상

4o.) 도덕적 및 전문적 명망이 있는자

5o.) 본인의 전문 분야 및 권한 아래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1077)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078)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13.- ADEMÁS DE SU TITULAR, LA PROCURADURÍA ESTARÁ INTEGRADA POR UN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LOS PROCURADORES ADJUNTOS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JUVENTUD, DE LA MUJER Y LA FAMILIA, DE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DEL MEDIO AMBIENTE, Y DE DERECHOS CIVILES E INDIVIDUALES, Y LOS DEMÁS PROCURADORES ADJUNTOS QUE EL PROCURADOR CONSIDERE NECESARIOS PARA EL MEJOR CUMPLIMIENTO DE SUS ATRIBUCIONES CONSTITUCIONALES Y LEGALES.

제 13조

옴부즈맨위원회는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Juventud), 여성가족인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 Mujer y la Familia), 경제·사회·문화권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환경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l Medio Ambiente), 시민·개인권 보호를 위한 부옴부즈맨 (El Procurador Adjunt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Civiles e Individuales), 그리고 그 외에

소의 권한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정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sup>1079</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3년이고, 재임 가능<sup>1080</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옴부즈맨에게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독립성이 주어지고, 이는 다른 당국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sup>1081</sup>).

---

옴부즈맨사무소가 법적인 임무 수행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분야의 부옴부즈맨들이 추가될수 있다.

Estos funcionarios serán nombrados por el Procurador, dependerán directamente de éste y les serán aplicables las causales de inelegibilidad e incompatibilidad establecidas en esta ley. Tendrán las atribuciones que esta Ley, el Reglamento o el Procurador les asignen.

부옴부즈맨들은 옴부즈맨을 통해 임명되고, 이 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나 겸업금지 원칙 등의 원칙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과 법규(Reglamento), 혹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권한을 지니게 된다.

1079)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17.- El Procurador podrá nombrar a personas o integrar comisiones encargadas de desempeñar una función especial de las comprendidas en sus atribuciones. La designación puede recaer en personas que no formen parte de la Procuraduría.

제 17조

옴부즈맨 위원장은 사무소의 권한 아래에서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인력을 고용하거나 위원회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직함은 굳이 옴부즈맨사무소 소속이 아닐 수도 있다.

1080)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 일부

E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que en la presente ley se denominará EL PROCURADOR, será elegido por la Asamblea Legislativa, por mayoría calificada de los dos tercios de los diputados electos. Durará tres años en el ejercicio de su cargo y podrá ser reelegido.

제 4조

옴부즈맨은 (...) 의회를 통해 임명되는데, 의원 2/3의 표를 받아야 한다. 임기는 3년 간이고, 재임이 가능하다.

1081)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082)1083)</sup>

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10.

El PROCURADOR actuará en forma independiente en el ejercicio de su cargo y no podrá ser impedido ni coartado por ninguna autoridad. En el desempeño de sus funciones podrá requerir ayuda, cooperación, informes o dictámenes a los órganos del Estado, autoridad o funcionario civil, militar o de seguridad pública y a cualquier persona, quienes estarán obligados a prestar colaboración con carácter prioritario e inmediato a sus peticiones y recomendaciones

제 10조

옴부즈맨 위원장에게는 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독립성이 주어지고, 이는 다른 당국에 의해 침해될수 없다. (후략)

1082) <http://www.pddh.gob.sv/menuinfo/menutrabajo/menumandato> (검색일 2016.9.6.)

1083)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제 11, 12조

Artículo 11

제 11조

1º) Velar por el respeto y la garantía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존중과 보증 유지

2º) Investigar, de oficio o por denuncia que hubiere recibido, caso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진정 요청이나 자체적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

3º) Asistir a las presuntas víctima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침해 피해자들 지원

4º) Promover recursos judiciales o administrativos para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 증진

5º) Vigilar la situación de las personas privadas de su libertad. Será notificado de todo arresto y cuidará que sean respetados los límites legales de la detención administrativa;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상황을 살핌. 모든 체포 사실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피구금인들이 행정구금기관의 법적 한계와 상관 없이 존중받을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

6º) Practicar inspecciones, donde lo estime necesario, en orden a asegurar el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려되는 경우 시찰 이행.

7º) Supervisar la actuación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frente a las personas;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 활동 감독

8º) Promover reformas ante los Organos del estado para el progreso de los

---

Derechos Humanos;

인권 진전을 위해 국가 기구 개혁 증진

9º) Emitir opiniones sobre proyectos de leyes que afecten el ejercicio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견 제공

10º) Promover y proponer las medidas que estime necesarias en orden a prevenir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조치를 증진 및 제안

11º) Formular conclusiones y recomendaciones públicas o privadamente;

공적 및 민간 단위의 결론 및 권고사항 형성

12º) Elaborar y publicar informes;

보고서 작성 및 출간

13º) Desarrollar un programa permanente de actividades de promoción sobre el conocimiento y respeto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존중 및 인식 증진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프로그램 개발

Art. 12 Además de las atribuciones contempladas en el artículo anterior, el Procurador tendrá las siguientes:

제 12조 - 제 11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의 권한

1º) Velar por el estricto cumplimiento de los procedimientos y plazos legales en los distintos recursos que hubiere promovido o en las acciones judiciales en que se interesare;

절차 및 법적 테드라인의 엄격한 수행 (후략)

2º) Velar por el respeto a las garantías del debido proceso y evitar la incomunicación de los detenidos;

정당한 법 절차(debido proceso; due process) 보장 및 피구금자들의 소통 두절 예방을 위한 감시

3º) Llevar un registro centralizado de personas privadas de su libertad y de centros autorizados de detención;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과 구금센터들의 기록을 중앙 집중 관리

4º) Presentar propuestas de anteproyectos de leyes para el avance de los derechos humanos en el país;

국내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안 소개

5º) Promover la firma, ratificación o adhesión a tratado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인권에 대한 국제조약 서명, 비준 및 유착 증진

6º) Emitir resoluciones de censura pública contra los responsables materiales o intelectuale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한 공공 검열 해결책 제공

7º) Procurar la conciliación entre las personas cuyos derechos han sido vulnerados y las autoridades o funcionarios señalados como presuntos responsables, cuando la naturaleza del caso lo permita;

가능한 상황인 경우, 권리침해 당사자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혹은 공무

인권 옴부즈맨 사무소의 권한은 엘살바도르 헌법 제 194조와 옴부즈맨사무소 법 제 11, 12항에 기재되어 있음.

(1) 진정

(가) 진정 신청 절차<sup>1084)1085)1086)</sup>

원 간의 조정을 위해 노력

8º) Crear, fomentar y desarrollar nexos de comunicación y cooperación con organismos de promo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gubernamentales, intergubernamentales y no gubernamentales, tanto nacionales como internacionales y con los diversos sectores de la vida nacional;

인권 증진과 옹호를 위해 일하는 공공·민간기관들(...)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소통 및 협동 관계 창설, 장려 및 발전

9º) Emitir el reglamento para la aplicación de la presente ley y los reglamentos internos que fueren necesarios; Issu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and internal regulations necessary

동법 이행 및 필요한 내부 규율과 관련된 규정 발표

10º) Nombrar, remover, conceder licencias y aceptar renunciaciones a los funcionarios y empleados de la institución;

사무소의 직원들 임명, 해임, 허가 승인, 사직서 수리 등 담당.

11º) Elaborar el proyecto de presupuesto anual y remitirlo a la instancia correspondiente; y

연간 예산 사용 내역 관리 및 집행

12º) Las demás que le atribuyan la Constitución o la Ley.

헌법이나 동법에 기재된 기타 관련 업무

1084)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4.- Toda persona puede interponer denuncias sobre presuntas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Las denuncias serán presentadas en la Secretaría General de la Procuraduría o en las oficinas de las delegaciones departamentales o locales. También podrán ser recibidas por funcionarios, delegados del Procurador u otro personal designado para tal fin.

모든 개인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진정은 옴부즈맨사무소의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de la Procuraduría)이나 지역사무소들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혹은 옴부즈맨사무소의 공무원, 옴부즈맨 위원장의 대리인 등 인사에 제도 제출 가능하다.

1085)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5. (일부) - La denuncia puede ser presentada por escrito, en forma verbal

모든 개인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음. 모든 진정은 옴부즈맨사무소의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de la Procuraduría)

o usando cualquier sistema de comunicación, y deberá contener como requisitos formales mínimos de admisibilidad:

진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혹은 그 어떤 형태의 소통으로 제출될 수 있다. 진정에는 등록을 위한 다음의 정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o.) Nombre y demás generales del denunciante;

진정인의 이름과 기본 정보

2o.) Relación de los hechos, señalando en lo posible la forma, fecha y lugar de la violación denunciada;

진정에 따른 인권침해의 사실관계, (...) 일자와 장소.

3o.) Proporcionar, si es posible, nombre de la víctima, presuntos autores o partícipes en el hecho, testigo o personas que pudieran aportar datos respecto a las circunstancias de su realización; y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이름, 인권침해의 (...) 가해자, 증인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자 등의 정보 제공

4o.) Cualquier otro elemento o indicio que pueda contribuir al esclarecimiento del hecho denunciado.

그 외 진정의 내용 해명과 관련된 요소나 증거자료.

1086)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6.- El Procurador no conocerá de la denuncia cuando:

옴부즈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1o.) Fuere anónima;

익명일 때

2o.) Advierta mala fe, inexistencia o inverosimilitud del hecho denunciado o contenga fundamento fútil o trivial;

진정의 내용이 악질적이거나, 근거 없거나, 사실일법 하지 않거나, 진정의 내용이 무익하거나 사소한 경우

3o.) La investigación de los hechos o acciones no sea de su competencia. En estos casos, si fuere procedente, remitirá la denuncia a la autoridad competente; 사실관계 및 행동 조사 가능 반경이 관할권 밖일 때. 이런 경우에는 진정 내용을 권한이 있는 당국에 전달하게 됨

4o.) Fuere esencialmente la misma examinada anteriormente y no contenga hechos, datos, elementos o indicios nuevos; y

예전에 다루어진 적이 있는 정보인데 새로운 사실 관계, 데이터, 증거자료 등이 따로 없는 경우

5o.) Se advierta en su contenido que es motivada por intereses políticos y al margen de consideraciones de índole humanitaria.

진정의 내용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을 경우

이나 지역사무소 혹은 옴부즈맨사무소의 공무원, 옴부즈맨의 대리인 등에 제출 가능.

진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혹은 그 어떤 형태의 소통으로 제출 가능. 진정을 접수 할 때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기본 정보, 진정에 따른 인권침해의 사실관계, 인권침해 일자와 장소 등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해자, 증인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진정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 및 증거자료까지도 제출이 가능함.

단, 모든 진정 내용이 인정되지는 않음. 익명으로 진정이 신청되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악질적이거나, 근거 없거나, 진정의 내용이 무익하거나 사소한 경우, 사실관계 및 행동 조사 가능 반경이 관할권 밖인 경우, 예전에 이미 다루어진 적이 있고 새로운 사실도 추가되지 않은 경우, 진정의 내용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경우가 해당됨.

(나) 진정 접수 후 절차<sup>1087)1088)1089)</sup>

---

1087)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7.- Admitida la denuncia, el Procurador promoverá la investigación del caso y solicitará inmediatamente al funcionario, institución, autoridad o persona señalada como presunto responsable o a su superior jerárquico, rinda un informe sobre el hecho y las medidas adoptadas al respecto.

제 27조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옴부즈맨 위원장은 케이스 조사를 진행하고 진정 내용상의 가해자로 보이는 공무원, 기관, 당국, 그 외 해당되는 개인에게 본인이나 본인의 상사측의 보고서를 요청한다.

1088)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9.- Dentro del término de ocho días, contados a partir de la fecha en que se haya presentado la denuncia, el Procurador dictará una resolución, sobre la base de la información o indicios recabados pronunciándose en cualquiera de las formas siguientes:

1o.) Archivar el expediente si no existen elementos suficientes, al menos, para presumir violaciones de derechos humanos, sin perjuicio de informar del hecho a

las autoridades correspondientes y solicitar su intervención si procede. Si posteriormente hubiesen nuevos elementos sobre el caso, se podrá reabrir el expediente;

2o.) Promover las acciones que estime conveniente, cuando existan razones suficientes para presumir la violación a los derechos humanos, y señalar un plazo no mayor de treinta días para concluir la investigación; y

3o.) Comprobada la violación a los derechos humanos, procederá según se establece en el artículo siguiente.

제 29조

진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8일 안에, 옴부즈맨 위원장은 수집된 정보나 증거, 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공한다:

1o.)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종결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당국에 보고해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확인. 만약 해당 사건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경우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2o.)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행동 증진 및 30일 안의 조사 진행기간 표시.

3o.) 인권침해 사실이 증명 되는대로, 동법 제 30조에 따라 진행.

1089)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30.- Al reunirse suficientes elementos y considerar establecida la violación a los derechos humanos; la Procuraduría preparará un informe, en el que se expondrán los hechos, sus conclusiones y además:

1o.) Promoverá el cese inmediato de la violación y la restitución de los derechos violados, si fuese posible e interpondrá los recursos judiciales y administrativos pertinentes;

2o.) Si lo considera conveniente, hará las recomendaciones pertinentes para cambiar las prácticas o reformar las políticas, leyes, reglamentos o disposiciones normativas que propicien la violación;

3o.) Podrá solicitar la aplicación del debido procedimiento legal respectivo contra el responsable, inclusive su destitución o la imposición de cualquier otra sanción prevista en otras leyes y reglamentos;

4o.) Recomendará la indemnización a la víctima y si ésta hubiese muerto a sus familiares; y

5o.) Adoptará cualquier otra medida que considere necesaria para el cumplimiento de sus atribuciones y la garantía de los derechos humanos en general.

제 30조 -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로 보여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옴부즈맨사무소는 사실 관계, 조사 내용, 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1o.)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통한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및 침해된 권리 회복 증진

2o.)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권고를 통해 관례 변화나 정책, 법, 법규, 법령 등 개선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옴부즈맨은 사건 조사를 진행, 진정 내용상의 가해자로 보이는 공무원, 기관, 당국, 그 외 해당되는 개인에게 본인이나 본인의 상사 측의 보고서를 요청.

진정 신청 일을 기준으로 8일 안에, 옴부즈맨은 수집된 정보나 증거를 근거로 1차적인 해결책을 제공.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종결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당국에 보고해 다른 기관의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확인. 단, 해당 사건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경우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행동 증진 및 30일 안의 조사 진행기간 책정.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로 보여 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옴부즈맨사무소는 사실 관계, 조사 내용, 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작성을 준비함. 보고서에는 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및 침해된 권리 회복 증진, 권고를 통해 관례 변화나 정책, 법, 법규, 법령 등 개선, 해임이나 처벌 등을 포함한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한 법적절차 요청, 보상(indemnización)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다) 조사 과정<sup>1090)</sup>

3o.) 다른 법이나 규율에 따른 해임이나 처벌 등을 포함,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한 법적절차 신청 요청 가능

4o.) 친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보상(indemnización) 제공

5o.) (전략) 전반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행동 실행

1090)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34.- En la investigación de presuntas violaciones de los derechos humanos, el Procurador o sus delegados podrán entrevistar libre y privadamente testigos, víctimas y presuntos responsables, realizar inspecciones o visitar libremente cualquier lugar público sin previo aviso, exigir la entrega o exhibición de toda clase de documentos o evidencias y practicar las diligencias necesarias para su esclarecimiento.

En el caso de lugares privados, lo hará con autorización judicial, la cual le será extendida por cualquier juez de primera instancia con jurisdicción en lo penal, con la sola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escrita por el Procurador o sus Delegados. La autorización correspondiente será extendida por el juez en cualquier día y hora, aunque no fuere de audiencia.

인권침해 조사 시, 옴부즈맨과 그 대표들은 관련 증인들, 피해자와 가해자들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인터뷰 가능. 또한, 사전 통보 없이 그 어떤 공공장소든지 자유롭게 시찰하고 방문, 해당 기관에 옴부즈맨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 및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 이행 가능. 옴부즈맨으로부터 호출을 받는 개인은 반드시 출두하여야 하고, 변호사와의 동행이 가능 함. 단, 변호사는 동행 이외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함. 반복적으로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두를 강요할 수도 있음. 또한 옴부즈맨은 진정한, 피해자와 증인에게 신분의 기밀 유지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함.

- (라) 진정 접수부터 사실관계 정보를 모으는 절차까지,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옴부즈맨은 적절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러한 예방 조치들은 최종 해결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sup>1091</sup>).

---

Toda persona que sea citada por el Procurador, deberá comparecer personalmente y podrá hacerse acompañar de abogado, quien no tendrá más función que la aquí señalada; y si fuese citada por segunda vez y no lo hiciere, será obligada por apremio, salvo en los casos de fuerza mayor.

La Procuraduría tendrá la obligación de informar al denunciante, víctima y testigos del derecho a que su identidad se mantenga en reserva de confidencialidad, si así lo solicitare.

제 34조

인권침해 조사 시, 옴부즈맨과 그 대표들은 관련 증인들, 피해자와 가해자들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인터뷰 할 수 있다. 또한 사전 통보 없이 그 어떤 공공장소든지 자유롭게 시찰하고 방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옴부즈맨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 및 증거자료를 요청하고 해명을 위한 행동들을 이행할 수 있다.

사적인 장소의 경우, 옴부즈맨이나 대표들의 요청을 통해 형사적 관할권을 지닌 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허가를 받아 진행된다. (중략)

옴부즈맨으로부터 호출을 받는 개인은 반드시 출두하여야 하고, 변호사와의 동행이 가능하다. 단, 변호사는 동행 이외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만약 첫 호출에 출두하지 않아 두 번째 호출을 받았고, 이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두를 강요(단, 강요 명령이 불가(force majeure)한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진정한, 피해자와 증인에게 신분의 기밀 유지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1091)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e-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36.- Al recibir la denuncia, tener conocimiento de los hechos o en cualquier

(2) 구금시설 시찰

- (가) 옴부즈맨과 기타 대리인들은 피구금자의 인권 존중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구금시설, 감옥, 그 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있음. 이 때, 해당 당국이나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를 할 의무는 없음. 구금기관의 관계자들은 최대한 옴부즈맨 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해야 함<sup>1092</sup>).
- (나)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들은 피구금자들과 관계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적인 형태의 인터뷰 진행 가능. 옴부즈맨과 피구금자의 소통은 전보, 통화, 혹은 개입이나 검열이 존재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sup>1093</sup>).

---

estado del procedimiento, para evitar que se consumen daños irreparables a la persona, el Procurador podrá adoptar las medidas cautelares que estime necesarias y eficaces. La adopción de tales medidas no prejuzgará la materia de la resolución final.

제 36조

진정을 접수 받을 때, 사실관계 정보를 모으는 그 어떤 절차 상태에서도,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옴부즈맨 위원장은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사실은 최종 해결책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092)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Art. 40. 일부

El Procurador o sus delegados tendrán libre e inmediato acceso a los centros penitenciarios, cárceles o cualquier lugar público donde se presuma que se encuentra una persona privada de su libertad, a fin de garantizar el respeto de sus derechos humanos.

Para llevar a cabo las visitas a los diferentes lugares de detención, no necesitará notificar a la autoridad responsable o encargada del establecimiento. Dichas autoridades estarán obligadas a proporcionar todas las facilidades para el mejor cumplimiento de su labor, so pena de incurrir en la responsabilidad penal respectiva.

제 40조

옴부즈맨 위원장과 대표들은 피구금자의 인권 존중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구금시설, 감옥, 그 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 구금시설을 방문 시 해당 당국이나 관계자에게 미리 방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방문 대상이 된 구금기관의 관계자들은 최대한 (옴부즈맨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3) 연간보고<sup>1094)</sup>

옴부즈맨은 매년 의회에 인권 보호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함.

(4) 피해자 및 대중 지원

(가) 인권침해 피해자들 지원

(나) 가능한 상황인 경우, 권리침해 당사자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 혹은 공무원 간의 조정을 위해 노력

(다) 인권 증진과 옹호를 위해 일하는 공공·민간기관들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소통 및 협동 관계 창설, 장려 및 발전

(라) 인권 존중 및 인식 증진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프로그램 개발

(5) 법안 및 행정 개정

(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 증진

(나) 인권 진전을 위해 국가 기구 개혁 증진

---

1093)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1.

En el cumplimiento de sus atribuciones, el Procurador o sus delegados podrán llevar a cabo entrevistas con los detenidos, sin interferencias y en forma privada. Toda comunicación entre la Procuraduría y el detenido sea por correspondencia, telegrama, teléfono o por cualquier otro medio se hará libre de intervención y censura.

제 41조

권한 내 업무를 완수하고자, 옴부즈맨 위원장 및 대표들은 피구금자들과 개입 없이 사적인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과 피구금자의 소통은 전보, 통화, 혹은 개입이나 검열이 존재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094) <http://www.asamblea.gob.sv/eparlamento/indice-legislativo/buscador-de-documentos-legislativos/ley-de-la-procuraduria-para-la-defensa-de-los-derechos-humanos> (검색일 2016.9.6.)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9.

El Procurador rendirá anualmente a la Asamblea Legislativa un informe de labores en el que detallará sus actuaciones en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제 49조

옴부즈맨 위원장은 매년 의회에 인권 보호 관련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 (다) 인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견 제공
- (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의 증진 및 제안
- (마) 국내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안 소개
- (바) 인권에 대한 국제조약 서명, 비준 및 유착 증진
- (6) 기타
  - (가) 보고서 작성 및 출간
  - (나) 동법 이행 및 필요한 내부 규율과 관련된 규정 발표
  - (다) 사무소의 직원들 임명, 해임, 허가 승인, 사직서 수리 등 담당.
  - (라) 연간 예산 사용 내역 관리 및 집행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이며, 1명의 부옴부즈맨과 특정 주제분야의 부옴부즈맨 5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옴부즈맨의 임기는 3년으로 재임 가능함. 옴부즈맨으로부터 호출을 받는 개인은 반드시 출두하여야 하고,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두를 강요할 수도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6년 4월 A등급으로 GANHRI 가입 후 2011년 5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1095)</sup>

32) 과테말라

과테말라 국가 정보 <sup>1096)</sup>	
면적	108,890km <sup>2</sup>
인구	1,627만명(2015)
수도	과테말라시티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공용어), 23개 부족어
주요종교	가톨릭(50%), 개신교(45%)
GDP	639억불 (2015, IMF)
	1인당 GDP : 3,929불 (2015, IMF)

109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6)

1096)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60114/1\\_71770.jsp?me](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60114/1_71770.jsp?me)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옴부즈맨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 (2) 설립연도: 1987년
- (3) 설립배경<sup>1097)</sup>: 인권을 위한 옴부즈맨은 1985년 헌법을 통해 신설됨. 옴부즈맨은 ‘양심의 법관(Magistrado de Conciencia)’로도 불림. 이는 1984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인한 결과물로, 옴부즈맨은 1985년 5월 31일 의회에서 도입됨.

이 헌법에 의거해 3개의 기관이 생겨남: 헌법재판소(Corte de Constitucionalidad), 선거법원(Tribunal Supremo Electoral), 그리고 옴부즈맨(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옴부즈맨의 기관 및 조직 설립은 1987년 8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첫 옴부즈맨인 Gonzalo Menéndez 는 1987년 8월 13일에 임명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과테말라 헌법 제 274, 275조 (Art. 274 & 275,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sup>1098)</sup>

이 조항들을 통해 옴부즈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제 274조<sup>1099)</sup>는 옴

---

nu=m\_40\_40\_20 (검색일 2016.10.19)

1097) <http://www.pdh.org.gt/procurador/antecedentes.html> (검색일 2016.10.19.)

1098) [https://www.oas.org/juridico/mla/sp/gtm/sp\\_gtm-int-text-const.pdf](https://www.oas.org/juridico/mla/sp/gtm/sp_gtm-int-text-const.pdf)  
(검색일 2016.10.21.)

1099) [https://www.oas.org/juridico/mla/sp/gtm/sp\\_gtm-int-text-const.pdf](https://www.oas.org/juridico/mla/sp/gtm/sp_gtm-int-text-const.pdf)  
(검색일 2016.10.21.)

과테말라 헌법

Artículo 274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제 274조 옴부즈맨

El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es un comisionado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que la Constitución garantiza. Tendrá facultades de supervisar la administración; ejercerá su cargo por un período de cinco años, y rendirá informe anual al pleno del Congreso, con el que se relacionará a través de 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옴부즈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옹호를 위한 의회의 위원이다. (...) 행정적인 부분을 감독하고, 5년의 임기를 지니며, 의회 총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옴부즈맨은 인권위원회(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를 통하여 협업한다.

부즈맨의 성격과 임명과정, 임기,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제 275조<sup>1100)</sup>는 옴부즈맨의 권한에 대해 명시.

(나)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 옴부즈맨에 대한 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y del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

1100) [https://www.oas.org/juridico/mla/sp/gtm/sp\\_gtm-int-text-const.pdf](https://www.oas.org/juridico/mla/sp/gtm/sp_gtm-int-text-const.pdf)

(검색일 2016.10.21.)

과테말라 헌법

Artículo 275.- Atribuciones del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제 275조 옴부즈맨의 권한

El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tiene las siguientes atribuciones: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a) Promover el buen funcionamiento y la agilización de la gestión administrativa gubernamental,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인권 분야에 있어 정부 행정기구의 행동을 통해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증진

b) Investigar y denunciar Comportamientos administrativos lesivos a los intereses de las Personas;

개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활동 조사 및 고발

c) Investigar toda clase de denuncias que le sean planteadas por cualquier persona, sobr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라면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청되었든 모두 조사

d) Recomendar privada o públicamente a los funcionarios, la modificación de un comportamiento administrativo objetado;

행정기구의 특정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권고

e) Emitir censura pública por actos o comportamientos en contra de los derechos institucionales;

기관(...)과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 공공검열 실시

f) Promover acciones o recursos, judiciales o administrativos, en los casos en que sea procedente; y

적절하다고 사려되는 사법적, 행정적 조치(...) 촉진

g) Las otras funciones y atribuciones que le asigne esta ley.

그 외 동법에 따른 역할 및 권한.

El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de oficio o a instancia de parte, actuará con la debida diligencia para que, durante el régimen de excepción, se garanticen a plenitud los derechos fundamentales cuya vigencia no hubiere sido expresamente restringida. Para el 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todos los días y horas son hábiles.

옴부즈맨은 직권으로나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기본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맨사무소는) 연중무휴로 일한다.

과테말라 의회 칙령 제 54-86번(DECRETO No. 54-86 EL CONGRESO DE LA REPUBLICA DE GUATEMALA)으로도 알려져 있고, 의회 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국가옴부즈맨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근거법.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 및 옴부즈맨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구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세부 주제별 옴부즈맨 부서(Defensorías)은 다음과 같음.

- ① 성적 다양성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 Diversidad Sexual)<sup>1101</sup>: 다양한 성적 및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지님. 공평한 기회 부여, 사회 내에서의 인식 향상 및 포함, 참여, 차별금지, 권리 존중, 정책 개선, 교육 및 트레이닝 제공 등.
- ② 청년 옴부즈맨 부서(Defensoría de la Juventud)<sup>1102</sup>: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개발, 온전한 성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젊은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제공.
- ③ 여성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 Mujer)<sup>1103</sup>: 여성권을 효과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여성의 평등과 존엄성,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참여를 위한 여러 조치. 정부 및 국내 및 국제NGO들과 여성권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여성과 관련된 정책 및 법률에 대해 참여
- ④ 아동·청소년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 Niñez y Adolescencia)<sup>1104</sup>: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아동이

---

1101)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diversidad-sexual.html>  
(검색일 2016.10.21.)

1102)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juventud.html> (검색일 2016.10.21.)

1103)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mujer.html> (검색일 2016.10.21.)

1104)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ninez-y-juventud.html>  
(검색일 2016.10.21.)

나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들과 일하는 정부기관 및 NGO들의 활동을 감독하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협업.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프로그램, 회의, 세미나, 포럼, TV프로그램, 라디오, 기사 작성 등.

- ⑤ 실향민(Población Desarraigada)·이주민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 Población Desarraigada y Migrante)<sup>1105</sup>: 이주민들에게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협력. 공공기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사, 과테말라 시민들과 시민단체들 및 당국 등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향민과 이주민에 대한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옹호.
- ⑥ 건강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 Salud)<sup>1106</sup>: 과테말라 헌법에 따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들을 감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과테말라 내 건강권을 위한 의무들에 대해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기관들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단위의 건강법을 더욱 순조롭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특히 HIV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 성 건강 및 재생산권과 관련된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절차 수행 강화.
- ⑦ 장애인 옴부즈맨 부서(Defensoría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sup>1107</sup>: 장애인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기관들을 감독. 동일한 기회 제공, 사회 내 포함 및 참여, 차별금지과 인권 존중 등을 위해 일함.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법안을 제안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
- ⑧ 노인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s Personas Mayores)<sup>1108</sup>: 노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증진하고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둠. 사회 내 더욱

1105)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poblacion-migrante.html>  
(검색일 2016.10.21)

1106)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salud.html> (검색일 2016.10.21.)

1107)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s-personas-con-discapacidad.html>  
(검색일 2016.10.21.)

1108)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s-personas-mayores.html>  
(검색일 2016.10.21.)

공평하고 인간적인 분위기 조성. 노인 존중의 문화를 사회 전반 및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국가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노인 인권 옹호, 홍보, 각인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과테말라 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 ⑨ 노동자/근로자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s Personas Trabajadoras)<sup>1109</sup>): 국가기관들을 감독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데에 목적을 둠. 노동권 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고용인과 피고용인,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고려. 노동조합 단위뿐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권에 대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 ⑩ 피해자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as Personas Víctimas de Trata)<sup>1110</sup>):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범죄가 피해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시화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을 지님. 교육부서와 협업하여 인신매매의 피해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진행, 국가적인 단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감독, 관측, 조사 진행. 과테말라 내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절차를 형성하고, 보호 제공.

---

1109)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s-personas-trabajadoras.html>  
(검색일 2016.10.21.)

1110)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as-personas-v%C3%ADctimas-de-trata.html>  
(검색일 2016.10.21.)

- ⑪ 대중교통 이용자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os Usuarios de Transporte Público)<sup>1111</sup>): 대중교통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을 감독하고, 도시 및 도외 지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형성된 대중교통을 통해 권리 보호. 시 자치단체들을 통해 과테말라 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감독, 도시 및 도외의 대중교통을 통하여 개인 및 공동체적 노력을 지원,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 특히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권리 개발 증진.

---

1111)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os-usuarios-de-transporte-p%C3%BAblico.html> (검색일 2016.10.21.)

- ⑫ 선주민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 los Pueblos Indígenas)<sup>1112)</sup>: 선주민들의 권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을 감독하고, 같은 기회 제공, 사회 내 수용 및 참여, 기존의 전통과 특유의 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함.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 증진 및 옹호를 위해 협업, 선주민들의 공동체적 권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특별 케이스 조사, 정규적인 보고서를 통해 선주민 그룹들의 인권 상황 및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보고, 다양한 서류와 통계를 통해 선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하여 노력.

---

1112)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os-pueblos-indigenas.html>  
(검색일 2016.10.21.)

- ⑬ 소비자·사용자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l Consumidor y Usuario)<sup>1113</sup>): 소비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는데 목적을 둠.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 모니터링. 또한 기본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등의 물품 가격 관리.

---

1113)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consumidor-y-usuario.html>  
(검색일 2016.10.21.)

- ⑭ **정당한 법 절차(Debido Proceso)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l Debido Proceso)**<sup>1114</sup>: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절차, 지식 및 시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자유를 박탈당해 구금되어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관측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국가내 기관들이 피구금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감사 및 제재. 국가 내 형법 시스템의 역할 수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 제공.
- ⑮ **식량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del Derecho a la Alimentación)**<sup>1115</sup>: 식량에 대한 권리를 위해 특정 요소들을 확보하고,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식량 및 영양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음. 과테말라 내에서의 식량 및 영양소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들 관리, 국내 관련 업체들과 식량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필요한 조사 실시.
- ⑯ **사회환경 옴부즈맨 부서 (Defensoría Socio Ambiental)**<sup>1116</sup>: 사회 환경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인권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개인이나 공동체 단위에서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 중재, 모니터링, 연대. 환경권에 대한 진정을 실시하고 해당 당국/기관에 케이스에 대해 내용 전달. 정부기관에 법률과 내규에 따라 권한 내에서 환경보호 조치를 촉진, 정부기관들과 NGO들이 국내외 협력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촉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117</sup>)

옴부즈맨 중앙사무소(Institución del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는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Ciudad de Guatemala)에 위치. 지역사무소(Auxiliatura)는 총 31곳이고, 이동사무소(Auxiliatura Móvil)는 3곳.

다음은 과테말라 내 지역사무소 및 이동사무소 목록:

- 라비날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Rabinal

1114)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debido-proceso.html> (검색일 2016.10.21.)

1115) <http://www.pdh.org.gt/defensorias/del-derecho-a-la-alimentaci%C3%B3n.html> (검색일 2016.10.21.)

1116) <http://www.pdh.org.gt/defensorias/socio-ambiental.html> (검색일 2016.10.21.)

1117) <http://www.pdh.org.gt/auxiliaturas/mapa-de-auxiliaturas.html> (검색일 2016.10.21.)

- 알타 베라파스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Alta Verapaz
- 웨웨테낭고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Huehuetenango
- (웨웨테낭고 내) 산 안토니오 위스타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an Antonio Huista, Huehuetenango
- 산 일테폰도 익스타와칸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an Ildefonso Ixtahuacan
- 이사발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Izabal
- 할라파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Jalapa
- 후티아파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Jutiapa
- 페텐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Petén
- (페텐 내) 라 리베르타드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La Libertad, Petén
- (페텐 내) 푼툼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Poptún, Petén
- 콰테페케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Coatepeque
- 바하 베라파스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Baja Verapaz
- 케탈체낭고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Quetzaltenango
- 키체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Quiché
- (키체 내) 익스칸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Ixcán, Quiché
- (키체 내) 사카파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Zacapa
- (키체 내) 네바즈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Nebaj, Quiché
- 레탈우레우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Retalhuleu
- 사카테페케즈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acatepéquez
- 산 마르코스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an Marcos
- 산타 로사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anta Rosa
- (산타 로사 내) 치키물리야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Chiquimulilla, Santa Rosa
- 치말테낭고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Chimaltenango
- 솔로라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ololá
- (솔로라 내) 산티아고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antiago Atitlán, Sololá
- 수치테페케즈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Suchitepéquez

- 토토니카판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Totonicapán
- 치키몰라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Chiquimula
- 엘 프로그레소 과스타토야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El Progreso Guastatoya
- 에스퀀틀라 지역사무소 Auxiliatura de Escuintla
- 제 1 이동사무소(치나우틀라 내 믹스코 위치) Auxiliatura Móvil I, Mixco - Chinautla
- 제 2 이동사무소(프라이하네스 위치) Auxiliatura Móvil II, Fraijanes
- 제 4 이동사무소 (비야 누에바) Auxiliatura Móvil IV, Villa Nueva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옴부즈맨사무소의 회계 연도 예산액은 공공재정부 (El 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로부터 이체됨<sup>1118)</sup>.

2016년을 기준으로 제정된 예산액은 70,796,305,204.00 과테말라 케츠살(한화로 약 10,426,575,608,370원)로, 2015년의 예산액보다 0.28% 증가한 금액<sup>1119)</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1120)</sup>

옴부즈맨은 의회를 통해 2/3의 표를 얻어 선출됨.

1118)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ICULO 38. Presupuesto para el presente año 제 38조 연간예산

El 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 hará las transferencias de partidas presupuestarias correspondientes para cubrir los gastos respectivos de la Procuraduría para el presente ejercicio fiscal.

공공재정부 (El 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는 옴부즈맨사무소의 회계 연도 예산 사용을 위해 예산액을 이체한다.

1119) [http://www.pdh.org.gt/archivos/descargas/Biblioteca/Informes%20Anuales/iac\\_2015\\_f0.pdf](http://www.pdh.org.gt/archivos/descargas/Biblioteca/Informes%20Anuales/iac_2015_f0.pdf) (검색일 2016.10.21.)

1120)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10, 11

옴부즈맨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두 사람의 부옴부즈맨을 선출할 수 있는데, 부옴부즈맨들은 옴부즈맨의 임시적 부재나 해임의 상황에서 새로운 옴부즈맨이 선출되기 전까지 옴부즈맨의 업무를 대리 함. 부옴부즈맨들은 옴부즈맨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옴부즈맨은 과테말라 헌법, 세계인권선언, 과테말라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 등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국회의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 옴부즈맨은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지님<sup>1121</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은 부옴부즈맨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에게는 5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임기 연장이나 재임은 불가<sup>1122</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123</sup>)

옴부즈맨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지녀야 하고 의회의 의원들과 동일한 면책과 혜택을 받음. 옴부즈맨의 업무는 다른 공공 업무들과 겹치지 않음.

마) 주요권한<sup>1124</sup>) 및 활동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들은 국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모든 진정 사건에 대한 개입 자격을 지니고, 그 어떤 개인, 공무원, 직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인권

1121)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8

1122)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10

1123)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9, 19

1124)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20, 23

침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에 대해 절차를 밟을 권한이 있음.

(1) 진정<sup>1125)</sup>

(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진정 요청은 서면이나 구술을 통해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들 및 세부 기관에 전달. 모든 개인 및 단체, 법인은 어떠한 제약이나 무료로 (조사나 진정을) 요청 가능.<sup>1126)</sup>

요청을 접수받은 직후에 인권 관리자(Portador de los Derechos Humanos)는 조사 시작을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권한 내에서 범죄, 행동, 비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옴부즈맨은 진정이나 요청을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려 및 최종 결정을 목적으로 전달 가능.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같은 해결책을 통해 옴부즈맨은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의 상위 기관에 공적으로 사건에 대해 알릴수 있음. 세부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보고서는 5일 안에 반드시 송부되어야 함.

(나) 진정이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8일 안에, 옴부즈맨은 해결책을 제공해야 함.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건 조사가 종결됨.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30일이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진행하고, 적절한 정정 조치 및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 인권침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됨.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 등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함.

- ① 인권침해 현상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
- ②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징계 절차를 밟는데, 이에는 해당 관리자 해고나 다른 처벌들이 포함
- ③ 조사 과정에서 범죄나 경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정에 대해

1125)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2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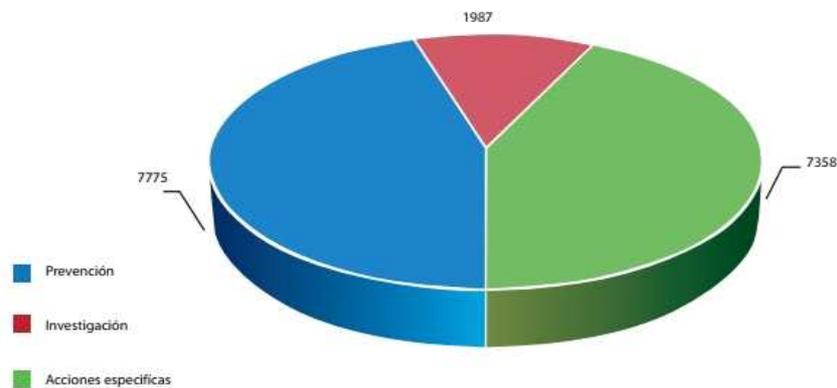
1126)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13, 14

해당 법원에 통보.

- ④ 인권침해가 특정 개인으로부터 오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옴부즈맨의) 결정사항은 이해 당사자, 책임자 및 행정기관의 당국이나 직원에게 통보됨.

(다)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행함.



출처: [http://www.pdh.org.gt/archivos/descargas/Biblioteca/Informes%20Anuales/iac\\_2015\\_f0.pdf](http://www.pdh.org.gt/archivos/descargas/Biblioteca/Informes%20Anuales/iac_2015_f0.pdf)

[과테말라-그림 21] 과테말라 옴부즈맨 2015년 진정 통계

(라) 2015년 진정 통계

- ① 예방 차원에서의 조사 (Investigación para prevención):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절차. 2015년 기준으로 총 1987건.
- ② 조사 (Investigación): 진정 내용에 대해 관련 사실 관계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일반서류 및 직권조사 관련) 2015년 기준으로 총 7775건.
- ③ 특별행동 (Acciones específicas): 옴부즈맨사무소 권한 밖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2015년 기준으로 총 7358건.

(2) 인권교육 및 연구/보고서

(가) 인권이슈에 대하여 모든 교육대상자를 포함하는 민관교육기업 커리큘

럼을 위해 관련 기구와 협업

(나) 인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 향상 및 중요한 요소들을 살피기 위해 활동 프로그램, 보고서, 연구, 출판, 캠페인 진행 등 개발.

(다)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관, NGO들,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들과 소통 형성 및 유지

(라) 매년 1월에 연간보고서 작성, 그리고 법에 따라 특별보고서 작성

(마) 옴부즈맨은 매 해 1월 중후반에 위원회의 지위에 맞추어 그 전 해 사무소의 활동내용 및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sup>1127)</sup>

### (3) 국가기관 감독

(가) 인권 분야에 있어 정부 행정기구의 행동을 통해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증진

(나) 개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활동 조사 및 고발

(다) 행정기구의 특정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권고

(라) 옴부즈맨 및 인권보호와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 공공검열 실시

(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법적, 행정적 조치촉진

(바) 옴부즈맨사무소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직원 등에게 도서, 서류, 기록, 파일, 디지털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

### (4) 국가기관 관련 업무 외의 활동

(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행사 참여

(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공공검열 실시

### (5) 기타

(가) 옴부즈맨 내에서 내규에 따라 인사 임명, 충고 및 해임.

(나) 옴부즈맨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국가 예산안의 일부로 포함.

(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맨은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운영.<sup>1128)</sup>

---

1127)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15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서 옴부즈맨에게는 5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임기 연장이나 재임은 불가함.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 세부 분야를 16개로 나누어 활동.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129)</sup>

1999년에 B등급. 2000년에 유보사항들을 전제로 한 A등급으로 승격. 그 후 2002년, 2008년 4월, 2013년 5월의 심사에서 A등급 유지.

### 33) 아이티

아이티 국가 정보 <sup>1130)</sup>	
면적	27,750km <sup>2</sup>
인구	1,011만명 (2015.7)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
정치형태	대통령제
주요언어	프랑스어(공용), 토속어 Creole
주요종교	가톨릭(80%), 개신교(16%)
GDP	GDP (명목) : 87억불 (2014, IMF)
	1인당 GDP : 832불 (2014, IMF)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 국민보호사무소 (Office de la Protection du Citoyen)

(2) 설립연도 : 1987년 3월 29일<sup>1131)</sup>.

(3) 설립배경<sup>1132)</sup><sup>1133)</sup>: 국민보호사무소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국제적인 유래

1128) <http://www.pdh.org.gt/sala-de-prensa/finish/19-leyes-y-tratados/136-ley-del-procurador.html>. (검색일 2016.10.21)

의회 인권위원회 및 국가옴부즈맨에 대한 법 Art. 17

112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19)

1130)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70.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70.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9.8.)

1131)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Itemid=63](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Itemid=63) (검색일 2016.9.28.)

1132)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Itemid=63](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Itemid=63) (검색일 2016.9.13.)

1133)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Itemid=63&limitstart=1](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Itemid=63&limitstart=1) (검색일 2016.9.28.)

와 국내차원에서의 계획을 살펴보아야 함.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민보호 사무소가 옴부즈맨사무소 및 국가조정기구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사무소는 기득권을 지닌 자들의 행정적 행동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사무소는 스웨덴 국가옴부즈맨사무소로부터 유래됨.

아이티 국내 차원에서는 1987년에 헌법을 근거로 한 국민보호사무소가 생겨남. 이는 공공행정기관으로부터 모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기능 이행과 구조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1989년의 법령 (당시 대통령 Prosper AVRIL)에 의해 사무소가 법무부 아래 속하게 되는 위헌적인 일이 발생. 1995년 10월 16일의 법령 (당시 대통령 Jean Bertrand ARISTIDE)을 통해 사무소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바에 더 가까워져 독립적인 기관이되 행정부의 자문을 받는 위치가 됨. 동시에 사무소장은 사무소 내 조직을 다른 기존의 자치기관들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됨.

오늘날에는 2009년 10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Florence Elie이 사무소장을 맡고 있음. 지금까지도 국민보호사무소에는 구조적 및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나, 사무소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계.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아이티 헌법<sup>1134)</sup>

---

1134)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Haiti\\_2012.pdf?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Haiti_2012.pdf?lang=en)

(검색일 2016.9.9.)

아이티 헌법 제 207조, 207-1조, 207-2조, 207-3조

Article 207

An office known as the OFFICE OF CITIZEN PROTECTION is established to protect all individuals against any form of abuse by the government.

제 207조

‘국민보호사무소’로 명명되는 사무소는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모든 개인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다.

Article 207-1

The office is directed by a citizen bearing the title of PROTECTOR OF

아이티 헌법 제 207조, 207-1조, 207-2조, 207-3조에 국민보호사무소에 대한 자료가 존재함. ‘국민보호사무소’의 설립 목적, ‘국민수호자(Protector of Citizens)’로 명명되는 사무소장의 임명 내용, 사무소에 제출하는 진정 처리 과정, 그리고 세부 규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나) 국민보호사무소법 (Loi portant Organization et Fonctionnement de L’Office de la Protection du Citoyen)<sup>1135)</sup>

2012년 5월 3일 의회를 통해 채택되었고, 같은 해 7월 20일에 공식관고 119번을 통해 널리 알려짐. 이 법을 근거로 국민보호사무소가 파리 원칙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sup>1136)1137)1138)1139)</sup>

---

CITIZENS. He is chosen by consensus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he President of the Chamber of Deputies. His term is seven (7) years and may not be renewed.

제 207-1조

사무소는 ‘국민수호자(Protector of Citizens)’로 명명되는 사무소장을 통해 운영된다. 사무소장은 아이티 대통령,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의 합의로 임명된다. 사무소장에게는 7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재임이 불가능하다.

Article 207-2

His intervention on behalf of any complainant is without charge, whatever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might be.

제 207-2조

진정 처리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후략)

Article 207-3

A law sets the condi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Office of Citizen Protection.

국민보호사무소의 구체적인 규율과 조건들은 (다른) 법령을 통해 정해진다.

1135)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1136)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4&Itemid=65](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4&Itemid=65) (검색일 2016.9.26.)

1137)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

Article 9

Composition de l'OPC

L'OPC comprend :

- (a) Le Bureau du Protecteur du Citoyen ;
- (b) La Direction Générale ;
- (c) Les Directions (article 22 de la présente loi) ;
- (d) Les Unités Spécialisées (article 23 de la présente loi) ;
- (e) Les présences territoriales.

제 9조 국민보호사무소의 구성 부서

국민보호사무소는:

- (a) 국민보호사무소장 사무실 (Le Bureau du Protecteur du Citoyen)
- (b) 총국
- (c) 기타 부서 (동법 제 22조에 따름)
- (d) 특수분야팀 (동법 제 23조에 따름)
- (e) 지역사무소

- 1138)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22 Composi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제 22조 총국의 구성 (일부)

2. D'autres Directions seront créées au besoin sur décision du Protecteur du Citoyen.

국민보호사무소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서들이 형성될 수도 있다.

3. Le rôle, les attributions, la structure et, le cas échéant, les subdivisions de chaque direction sont établies par le règlement intérieur de l'OPC.

역할, 권한, 조직 및 세부부서 등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의 내부 규율에 따라 결정된다.

4. Les conditions de nomination, de renvoi et les attributions des Directeurs sont établies par le règlement intérieur de l'OPC.

The conditions of appointment, removal and powers of Directors are established by the rules of the UCI.

부서들의 부장들(Directeurs)의 임명, 해임 및 권한 등은 국민보호사무소의 내부 규율에 따라 결정된다.

- 1139)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23 Les Unités Spécialisées

제 23조 전문화된 유닛

1. Les Unités Spécialisées dépendent directement du Protecteur du Citoyen. Ces Unités visent notamment à renforcer la capacité de l'institution à répondre de manière cèle et systématique aux besoins d'inspection, d'enquêtes, de recherches et à la performance de l'information via notamment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전문 유닛들(Les Unités Spécialisées)은 국민보호사무소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유닛들은 사무소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찰, 요청, 연구 등을 이행할수

2012년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사무소에는 총 57명의 직원이 근무<sup>1140)</sup>.

국민보호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로 나뉘어짐:

- ① 국민보호사무소장 사무실 (Le Bureau du Protecteur du Citoyen)
  - 사무소장 및 차장 사무실 (Le Bureau du Protecteur et de son Adjoint)
  - 사무소장 내각 (Le Cabinet du Protecteur)
  - IT/커뮤니케이션팀 (L'Unité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시찰팀 (L'Unité de l'Inspection)
  - 특별조사 및 연구팀 (L'Unité de la Recherche et des Enquêtes Systémiques)
  - 보고팀 (L'Unité de Reporting)
- ② 총국 (La Direction Générale)
  - 총국(La Direction Générale)은 다음과 같은 부서들로 형성됨:
    - ②-1. 인권보호부 (La Direction de la Protection des Droits Humains)
      - 진정 및 요청과 (Le Service des Plaintes et Enquêtes)
      - 피구금자보호과 (Le Service de Protection des Détenus)
      - 아동권리보호과 (Le Service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Enfant)

---

있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후략)

2. La création des Unités Spécialisées, la définition de leur structure et rôle,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ur fermeture sont du ressort exclusif du Protecteur du Citoyen.

전문 유닛 형성, 구성과 역할, (...) 활동 종료 등은 국민보호사무소장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3. Chaque Unité Spécialisée est dirigée par un fonctionnaire portant le titre de Coordonateur.

각 전문 유닛은 공무원 중 '총괄책임자(Coordonateur)'를 통해 활동한다.

4. Les conditions de nomination, de renvoi et les attributions des Coordonateurs, ainsi que la structure et le rôle de chaque Unité Spécialisée sont établis par le règlement intérieur de l'OPC.

총괄책임자의 채용, 해임, 권한, 그리고 전문 유닛의 구성 및 역할은 국민보호사무소 내규에 따라 정해진다.

1140)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0&Itemid=102](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0&Itemid=102) (검색일 2016.9.28.)

- ②-2. 인권증진부 (La Direction de la promotion des droits humains)
  - 공공관계과 (Le Service des relations publiques)
  - 트레이닝과 (Le Service de la formation)
  - 인권 NGO 협력과 (Le Service de liaison avec les ONGs de droits Humains)

②-3. 행정·재정업무부 (La Direction des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ères)

- 인사과 (Le Service des ressources humaines)
- 회계과 (Le Service de la comptabilité)
- 일반사무과 (Les Services Généraux)

②-4. 업무 확장 및 서비스 분권부 (La Direction de l'expansion et des services déconcentrés)

- 지역사무소 (Représentations Départementales)
- 분권된 서비스 (Les Services Déconcentrés)

②-5. 기타 부서들 (국민보호사무소법 제 22조에 따름)

국민보호사무소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서들이 형성되기도 함. 역할, 권한, 조직 및 세부부서 등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의 내부 규율에 따라 결정됨. 부서의 부장들(Directeurs)의 임명, 해임 및 권한 등역시 내부 규율에 따라 결정.

③ 특수분야팀 (국민보호사무소법 제 23조에 따름)

특수분야팀(Les Unités Spécialisées)은 국민보호사무소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사무소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찰, 요청, 연구 등을 이행할수 있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함. 전문 유닛 형성, 구성과 역할, 활동 종료 등에 대한 결정은 국민보호사무소장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이루어짐.

각 특수분야팀은 공무원 중 ‘총괄책임자(Coordonateur)’를 통해 활동하게 되는데, 총괄책임자의 채용, 해임, 권한, 그리고 전문 유닛의 구성 및 역할은 국민보호사무소 내규에 따라 정해짐.

④ 지역사무소: 아래 항목 참고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141)</sup>

국민보호사무소장은 아이티 내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소의 분권화를 추구함. 국민보호사무소는 이미 9개의 지역 사무소(괄호는 구체적인 지역명)를 배치함:

(가) 지역사무소

- ① 남부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u Sud (les Cayes, Côteaux et Aquin)
- ② Artibonite 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e l'Artibonite (Gonaïves, Saint-Marc)
- ③ 북동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u Nord-Est (Fort-Liberté)
- ④ 북서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u Nord-Ouest (Port-de-Paix)
- ⑤ 남동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u Sud-Est (Jacmel)
- ⑥ Nippes 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es Nippes (Anse-à-Veau, Miragoâne)
- ⑦ la Grand-Anse 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e la Grand-Anse (Jérémie)
- ⑧ 북부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u Nord (Cap-Haitien, Grande Rivière du Nord)
- ⑨ 중앙지역사무소 Département du Centre (Hinche, Mirebalais)

(나) 지역사무소들의 역할

- ① 국민보호사무소의 가시성 및 홍보 확보
- ② 국민들의 교육을 통해 인권 증진

(3) 예산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142)1143)</sup>

---

1141)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5&Itemid=66](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5&Itemid=66) (검색일 2016.9.13.)

1142)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2

Indépendance de l'OPC

L'OPC est une institution indépendante créée par la Constitution de 1987. Il n'est soumis ni au contrôle hiérarchique d'une autorité administrative, ni à la tutelle d'une institution administrative ou politique. Il ne reçoit, dans l'exercice de ses attributions, aucune instruction. Il entretient cependant des relations fonctionnelles

(가) 예산규모

2007년부터 사무소 예산은 1100만 구르드에서 2012년 3억 1900만 구르드 정도로 성장. 2012년 - 2013년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예산은 31,947,686.00 아이티 구르드 (한화로 약 536,085,212원)<sup>1144)</sup>.

(나) 예산의 독립성

국민보호사무소는 1987년 헌법에 의해 수립된 독립적인 기구로, 위계질서로부터의 규제나 행정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사무소는 권한 집행에 있어 그 어떤 기구의 영향도 받지 않되, 다른 국가기관들과 기능적인 관계는 유지.

사무소 예산의 경우 1차적으로 재무부로부터 오는데, 기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총액을 다 지원받지는 못함. 그러므로 사무소의 재정은 국제협력기구들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기도 하고,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로부터의 지원, 미주 단위의 지역기구 지원을 받기도 함.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국민보호사무소장

- ① 사무소장은 아이티 대통령과 양원의 의장들을 통해 임명됨. 대통령과 의장들은 양원으로부터 제출된 후보들의 명단을 보고 적임자를 결정하게 됨. 사무소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90일 전에, 양원은 다음 사무소장 선정 과정에 대해 공고. 양원은 모든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야 함. 후보자 이름 명단은 양원의 참여 및 승인을 통해 작성되는데, 적어도 3인의 후보자가 있어야

---

avec les autres Institutions de l'Etat.

제 2조 국민보호사무소의 독립성

국민보호사무소는 1987년 헌법에 의해 수립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사무소는 위계질서로부터의 규제나 행정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기구의 감독 하에 있지 않다. 사무소는 권한 집행에 있어 그 어떤 기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국가기관들과 기능적인 관계는 유지한다.

1143)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0&Itemid=102](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0&Itemid=102) (검색일 2016.9.28.)

1144)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0&Itemid=102](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0&Itemid=102) (검색일 2016.9.28.)

함1145).

- ② 사무소장으로 임명되려면 35세 이상의 아이티 국적을 지닌 자여야 하고, 사회적 명망이 있어야 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며 범죄사실로 인한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함. 또한, 인권 및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함1146).

1145)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10

Processus de nomination du Protecteur du Citoyen

제 10조

사무소장 임명 절차

1.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11 et 12 ci-après, le Protecteur du Citoyen est choisi par consensu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ésident du Sénat 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Députés à partir d'une liste de noms soumise par les deux (2) Chambres du Parlement.

제 11, 12조의 후보 조항들을 전제로, 사무소장은 아이티 대통령과 양원의 의장들을 통해 임명된다. 대통령과 의장들은 양원으로부터 제출된 후보들의 명단을 보고 결정 과정을 밝게 된다.

2. Au moins quatre-vingt-dix jours (90) avant l'expiration du mandat du Protecteur du Citoyen, un appel public à candidatures est lancé par les deux (2) Chambres du Parlement.

사무소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90일 전에, 양원은 다음 사무소장 선정 과정에 대해 공고한다.

3. Les deux (2) Chambres du Parlement considèrent l'ensemble des candidatures et votent sur chacune d'entre-elles;

양원은 모든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

4. La liste de noms sera composée des candidatures ayant réuni l'adhésion de la majorité des deux (2) Chambres du Parlement. Elle contiendra au maximum trois (3) noms

후보자 이름 명단은 양원의 참여 및 승인을 통해 작성된다. 명단에는 적어도 3인의 후보자가 있어야 한다.

1146)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11

Conditions de nomination du Protecteur du Citoyen

사무소장 자격요건

Pour être nommé Protecteur du Citoyen, il faut :

국민보호사무소장으로 임명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Etre de nationalité haïtienne ;

아이티 국적자

(b) Jouir d'une notoriété publique ;

③ 단, 국민보호사무소장으로 임명될수 없는 조건도 존재함. 민족, 인종, 성, 종교, 사회적 배경, 언어, 종교, 정치적 및 사상적 의견, 재산 등과 관련이 있는 차별이나, 폭력, 인권침해의 가해자 혹은 지지자인 경우가 그러함<sup>1147</sup>).

(나) 국민보호사무소 차장

① 국민보호사무소 차장은 국민보호사무소장의 제안을 근거로 아이티 대통령령의 대통령령을 통해 사무소장의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90일 안에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

(c) Avoir trente-cinq (35) ans accomplis ;

35세 이상

(d) Jouir de ses droits civils et politiques et n'avoir jamais été condamné(e) à une peine afflictive et infamante;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며 범죄사실로 인한 유죄 판결이 없는 자

(e) Avoir un intérêt marqué pour les questions relatives aux droits humains et à la

bonne gouvernance ;

인권 및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f) Etre de bonne vie et mœurs.

인격자

(g) Avoir reçu décharge de sa gestion, si l'intéressé était gestionnaire, à un titre quelconque, de deniers de l'État ou de biens publics.

기존에 행정적 위치에 있었던 경우라면 업무를 내려놓은 자 (후략)

1147)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12

Conditions d'inéligibilité à la fonction de Protecteur du Citoyen

사무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우

Nul ne peut occuper le poste de Protecteur du Citoyen s'il se trouve dans l'une des situations suivantes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보호사무소장으로 임명될수 없다:

(a) Auteur ou artisan de la discrimination fondée sur la race, la couleur, le sexe, la religion, l'origine sociale ou tout autre motif;

민족, 인종, 성, 종교, 사회적 배경이나 다른 동기를 근거로 하는 차별의 가해자인 경우

(b) Auteur ou partisan de la violence fondée notamment sur la race, le sexe, la couleur, la langue, la religion, l'opinion politique ou idéologique, la fortune ou l'appartenance sociale ;

민족, 성,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및 사상적 의견, 재산,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이 있는 폭력의 가해자 혹은 지지자인 경우

(c) Auteur notoire de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기타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경우

임명됨. 사무소 차장은 국민보호사무소법 제 17조에 따라 국민보호사무소장과 같은 의무를 지님<sup>1148)</sup>.

- ② 국민보호사무소의 차장으로 임명되려면 35세 이상의 아이티 시민이어야 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범죄사실로 인한 유죄 판결이 없는 자여야 하며, 인권 및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함.
- ③ 국민보호사무소 차장은 사무소장과 동일한 임명 불가 조건을 지님<sup>1149)</sup>.

---

1148)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18

Le Protecteur du Citoyen Adjoint

국민보호사무소 차장

1. Le Protecteur du Citoyen est assisté d'un Protecteur du Citoyen Adjoint, ci-après désigné Protecteur Adjoint.

국민보호사무소장은 국민보호사무소의 차장과 (...) 협업한다.

2. Sous réserve de l'article 19 ci-après, il est nommé par arrêt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otecteur du Citoyen dans les quatre-vingt-dix (90) jours qui suivent l'entrée en fonction du Protecteur du Citoyen.

제 19조의 유보 사항을 전제로, 국민보호사무소 차장은 국민보호사무소장의 제안을 근거로 아이티 대통령의 대통령령을 통해 사무소장의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90일 안에 임명된다.

3. Il est nommé pour un mandat de quatre (4) ans, renouvelable une fois.

사무소 차장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4. Il est soumis aux mêmes obligations que celles prévues pour le Protecteur du Citoyen par l'article 17 de la présente loi.

사무소 차장은 동법 제 17조에 따라 국민보호사무소장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149)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19

Conditions de nomination du Protecteur Adjoint

국민보호사무소 차장 임명 자격요건

1. Pour être nommé Protecteur Adjoint il faut :

국민보호사무소의 차장으로 임명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être de nationalité haïtienne ;

아이티 시민

(b) avoir trente-cinq (35) ans accomplis ;

35세 이상

(c) jouir de ses droits civils et politiques et n'avoir jamais été condamné(e) à une

(다) 총국 (La Direction Générale)<sup>1150)</sup>

총국(La Direction Générale)은 국민보호사무소장의 모든 결정 내용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총재 (Directeur Général)에 의해 관리된다. 총재는 국민보호사무소장을 통해 지명, 대통령령 (Arrêté Présidentiel)에 의해 임명되는데, 총재의 임명 및 해임 요건은 국민보호사무소의 내규에 따라 설정됨.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151)</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152)</sup>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

peine afflictive et infamante;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범죄사실로 인한 유죄 판결이 없는 자  
(d) avoir un intérêt marqué pour les questions relatives aux droits humains et à la  
bonne gouvernance ;  
인권 및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e) Etre de bonnes vie et mœurs.  
인격자  
(f) Avoir reçu décharge de sa gestion, si l'intéressé était gestionnaire, à un titre  
quelconque, de deniers de l'État ou de biens publics.  
기존에 행정적 위치에 있었던 경우라면 업무를 내려놓은 자 (후략)  
2. Les conditions d'inéligibilité prévues à l'article 12 de la présente loi s'appliquent  
à la nomination du Protecteur Adjoint.  
동법 제 12조의 임명 불가 조항 내용은 국민보호사무소 차장에게도 해당된다.

1150)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21

총국 (La Direction Générale)

1. La Direction Générale est la structure qui met en œuvre toutes les décisions prises par le Protecteur du Citoyen. Elle est dirigée par un fonctionnaire qui porte le titre de « Directeur Général ». Celui-ci est désigné par le Protecteur du Citoyen pour être nommé par Arrêté Présidentiel.

총국(La Direction Générale)은 국민보호사무소장의 모든 결정 내용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총국은 총재 (Directeur Général)에 의해 관리된다. 총재는 국민보호사무소장을 통해 지명, 대통령령 (Arrêté Présidentiel)에 의해 임명된다.

2. Les conditions de nomination, de renvoi du Directeur Général sont établies par le règlement intérieur de l'OPC.

총재의 임명 및 해임 요건은 국민보호사무소의 내규에 따라 설정된다.

1151)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음.

1152)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음.

사무소장에게는 7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재임 불가<sup>1153)</sup>. 사무소 차장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1번의 재임이 가능.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1154)</sup> 등

국민보호사무소장은 업무 수행을 위한 행동들을 근거로 기소되거나, 검문의 대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음. 또한 국민보호사무소장과 차장, 공무원들과 기타 관계자들은 국민보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발설하도록 강요받지 않음. 단, 헌법에 따라 하원(Chambre des Députés) 2/3의 투표를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심각한 범죄 사실 등에 대하여 고등법원(la Haute Cour de Justice)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국민보호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님<sup>1155)</sup>:

---

1153) [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2&Itemid=63](http://www.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2&Itemid=63) (검색일 2016.9.28)

1154)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15 Immunité

제 15조 면책 (일부)

1. Le Protecteur du Citoyen ne peut être poursuivi, recherché, arrêté, détenu ou jugé pour les actes édictés et les opinions émises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Il est cependant passible de la Haute Cour de Justice pour les fautes graves commises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Chambre des Députés,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de ses membres prononce sa mise en accusation, le tout conformément à la Constitution.

국민보호사무소장은 업무 수행을 위한 행동들을 근거로 기소되거나, 검문의 대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하원(Chambre des Députés) 2/3의 투표를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심각한 범죄 사실 등에 대하여 고등법원(la Haute Cour de Justice)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2. Le Protecteur du Citoyen, ainsi que son adjoint, les fonctionnaires ou autres agents ne peuvent être contraints de faire une déposition portant sur un renseignement obtenu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국민보호사무소장과 차장, 공무원들과 기타 관계자들은 국민보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발설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1155)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6

---

Attributions de l'OPC

국민보호사무소의 권한

L'OPC est chargé de :

국민보호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Assurer la protection des individus lésés par les actions de l'Administration publique ;

공공행정기관의 행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 보호 보장

(b) Intervenir, de sa propre initiative ou à la demande de tout individu ou groupe d'individus, chaque fois qu'il a des motifs de croire qu'un individu ou groupe d'individus a été lésé ou peut vraisemblablement l'être, par un acte, une omission ou une négligenc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ou cautionné par celle-ci;

공공행정으로부터의 특정 행동, 비행동 혹은 나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지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마다 사무소 자체로부터의 이유나 개인·단체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개입,

(c) Enquêter sur tout abus, notamment les violations des droits humains, commis ou susceptible d'être commis par l'Administration publique ou cautionné par celle-ci;

공공 행정기관측이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학대, 특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d) Faire respecter les droits des individus en garde à vue dans les commissariats de police, ainsi que ceux des détenus dans les prisons, et veiller à l'exécution par l'Administration publique des décisions définitives de justice prononcées à l'endroit des détenus ;

경찰에 의해 구류되거나 감옥에 구금된 개인의 관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구금센터와 관련된 공공행정의 최종 결정 사항 이행 확인.

(e) Formuler des recommandations à la suite de l'examen des plaintes déposées auprès de l'OPC par des individus ou groupe d'individus s'estimant victime d'un abus de l'Administration publique;

공공행정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된 진정을 사 후, 권고사항 형성

(f) Sensibilise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sur les abus dont sont victimes les individus dans leur ensemble, incluant les agents publics et les agents de droit privé de l'Administration publique;

공공 당국들이 공공행정분야의 민·관 주체들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함

(g) Assister les agents publics et les agents de droit privé de l'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es recours administratifs qu'ils sont chargés d'exercer ;

공공행정분야의 민·관 주체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부분에서 도움 제공

(h) Contribuer à la vulgarisation des règles d'éthique dans l'Administration publique et veiller à leur respect ;

공공행정 도덕 대중화에 기여 (후략)

(i) Contribuer à et appuyer les initiatives citoyennes de promotion et de défense

(1)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plainte) 및 직권조사/자체조사 (auto-saisine; self-referral)

(가) 모든 개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음. 진정

---

des droits des individus dans leur rapport avec l'Administration publique ;

시민들로부터의 행정 측의 관계와 권리 옹호 참여를 지지

(j) Encourager la ratification et la mise en œuvre effective par l'État Haïtien des instruments internationaux relatifs aux droits humains;

아이티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도록 고무

(k) Établir, à la fin de chaque année fiscale, un rapport sur la situation nationale en matière de droits humains et le respect des droits des individus par l'Administration publique, et le diffuser largement après l'avoir présenté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aux deux Chambres du Parlement;

매 회계연도 말에 행정에 의한 인권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대통령과 양원에 발표된다.

(l) Établir tout avis, recommandation, proposition et rapport qu'il estime approprié pour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et le diffuser largement, après l'avoir transmis aux autorités compétentes;

국민보호사무소의 성과와 활동 등의 정보를 관계있는 해당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의견, 권고, 제안과 보고 등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치 확립

(m) Contribuer en toute indépendance aux rapports que l'Etat Haïtien doit présenter aux organes et comités des Nations Unies, ainsi qu'aux institutions régionales, conformément à ses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

조약 내 의무에 합당하게, 유엔 기구와 위원회들에 아이티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들에 독립적인 관점 제공

(n) Contribuer avec les institutions publiques compétentes au respect et à la protection des droits des groupes vulnérables;

취약계층의 권리를 옹호·존중하기 위해 공공 기관들과 협력

(o) Promouvoir l'enseignement et le respect des droits humains et de la dignité humaine, notamment dans les établissements scolaires et universitaires ;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습법과 존중 증진, 특히 학술적인 기관 및 대학 기관들을 중점으로 한다.

(p) Participer à l'élaboration de programmes concernant l'enseignement et la recherche sur les droits humains;

인권에 대한 교습법 및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 형성에 참여

(q) Sensibiliser la population aux droits humains et contribuer à leur vulgarisation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

아이티 국민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 내 여러 분야의 시민참여에 기여

(r) Assurer la promotion de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à tous les niveaux de la société ;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들의 교육 확립

(s) Accomplir toute autre attribution prévue par la loi.

동법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

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나, 가족 구성원이나 사실관계 속에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을 통해 제출되기도 함<sup>1156</sup>).

(나) 국민보호사무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행정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인 조사 및 개입하는 일이 가능<sup>1157</sup>. 국민보호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된 진정을 근거로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조사에 반드시 요구되는 구술 혹은 서면 형식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 및 공무원들을 소환할 수도 있음. 국민보호사무소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입수할 수 있음<sup>1158</sup>).

1156)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28

Saisine par une  
진정(plainte) 신청

1. Sous réserve de l'article 30 ci-après, tout individu ou groupe d'individus qui s'estime lésé par un abus peut saisir d'une plainte l'OPC.

동법 제 30조에 따라, 모든 개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La plainte est personnelle ; elle peut néanmoins être effectuée par un membre de la famille, un ayant droit ou tout individu ou organisme mandaté à cet effet ou ayant autorité pour ce faire. Cependant, les mandataires rémunérés ne sont pas autorisés.

진정은 개인적인 것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사실관계 속에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후략)

1157)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31

Droit d'auto-saisine

제 31조 자체 조사 (auto-saisine; self-referral) (일부)

1. L'OPC a le droit d'intervenir d'office et de sa propre initiative lorsqu'il a des motifs raisonnables de croire qu'un individu ou un groupe d'individus a été lésé ou peut l'être vraisemblablement par un acte, une omission ou une négligenc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ou cautionné par celle-ci.

국민보호사무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행정으로부터의 행동이나 비행동, 나태함 등으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인 조사 및 개입하는 일이 가능하다.

1158)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 (다) 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성을 유지해야 함. 하지만 사무소는 의회나 사법부의 위원회들과 협업할 의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sup>1159</sup>).
- (2) 행정기관과의 협력과 시민참여
  - (가) 공공 당국들이 공공행정분야의 민·관 주체들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게 함
  - (나) 공공행정분야의 민·관 주체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부분에서 도움 제공
  - (다) 공공행정 도덕 대중화에 기여
  - (라) 시민들로부터의 행정 측의 관계와 권리 옹호 참여를 지지

---

Article 34

Pouvoir d'enquêter

조사권

1. L'OPC peut enquêter sur tous les cas dont il est saisi et dont il se saisit conformément à l'article 30 de la présente loi.

국민보호사무소는 동법 제 30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L'OPC peut interroger tout agent mis en cause dans le cadre d'une plainte d'un individu ou d'un groupe d'individus qui s'estime lésé par un act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Il peut inviter tout agent et toute personne dont le témoignage est nécessaire à lui fournir des explications orales ou écrites.

국민보호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된 진정을 근거로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반드시 요구되는 구술 혹은 서면 형식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 및 공무원들을 소환할 수도 있다.

3. L'OPC peut se faire communiquer tous documents ou dossiers relatifs à une enquête.

국민보호사무소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

1159)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32

Confidentialité

제 32조 기밀성

L'OPC doit assurer la confidentialité de tout renseignement auquel il a accès et qu'il collecte dans le cadre de ses interventions. Il doit néanmoins collaborer à toute commission d'enquête parlementaire ou judiciaire et aussi rendre publique toute information qu'il estime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국민보호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소는 의회나 사법부의 위원회들과 협업할 의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마) 취약계층의 권리를 옹호·존중하기 위해 공공 기관들과 협력
- (바) 아이티 국민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 내 여러 분야의 시민참여에 기여
- (3) 국제인권기준 관련 업무
  - (가) 아이티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도록 고무
  - (나) 국민보호사무소의 성과와 활동 등의 정보를 관계있는 해당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의견, 권고, 제안과 보고 등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치 확립
  - (다) 조약 내 의무에 합당하게, 유엔 기구와 위원회들에 아이티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들에 독립적인 관점 제공
- (4) 인권교육 및 연구
  - (가)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습법과 존중 증진, 특히 학술적인 기관 및 대학 기관들을 중점으로 함.
  - (나) 인권에 대한 교습법 및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 형성에 참여
  - (다)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들의 교육 확립
- (5) 권고 및 후속 조치
  - (가) 국민보호사무소의 권고는 진정 당사자들과 해당 행정에게 통지됨. 이에 따라 권고 대상 해당 행정은 국민보호사무소의 권고 사항에 대해 30일 안에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보호사무소는 진정인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알려야 함. 이 모든 과정은 행정기관 측 통보 기준 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sup>1160</sup>).

1160)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41

제 41조

Notification de la recommandation et suivi

권고 및 모니터링 통지

1. La recommandation de l'OPC est notifiée à l'intéressé et à l'administration concernée.

국민보호사무소의 권고는 진정 당사자들과 해당 행정에게 통지된다.

2. L'administration concernée est tenue de notifier sa décision prise en réponse à la recommandation formulée par l'OPC dans un délai n'excédant pas trente (30) jours à compter de son édicition.

권고 대상 해당 행정은 국민보호사무소의 권고 사항에 대해 30일 안에 결정 내용을

(나) 행정기관이 국민보호사무소가 정당한 진정 내용을 근거로 한 권고사항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의회와 대중에게 알림. 해당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기도 함. 추가적으로, 행정 측에서 사법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는 순응을 요구할수 있음<sup>1161)1162)</sup>.

(6) 피구금자 권리 수호<sup>1163)</sup>

알려야 한다. (후략)

3. L'OPC est tenu de faire connaître à l'intéressé la décision de l'administration concernée dans un délai de cinq (5) jours franc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notification par l'administration.

국민보호사무소는 진정인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는 행정 기관 측 통보 기준 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161)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42 제 42조

Pouvoir en cas de refus d'exécuter une recommandation

권고 이행 거부의 경우

En cas de refus de l'administration d'exécuter une recommandation de l'OPC suite à une plainte justifiée, le Protecteur du Citoyen publie le rapport d'enquête, saisit le Parlement et informe le public de l'affaire. Il peut de plus saisir les instances judiciaires dans le cas d'une violation constatée des droits humains.

행정기관이 국민보호사무소가 정당한 진정 내용을 근거로 한 권고사항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의회와 대중에게 알린다.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기도 한다.

1162)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43 제 43조

Pouvoir en cas de refus d'exécuter une décision de justice

1. En cas de refus par l'administration d'exécuter une décision de justice passée en force de chose souverainement jugée, l'OPC peut lui demander de s'y conformer.

행정 측에서 사법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는 순응을 요구할수 있다.

2. Si le refus devient persistant, la demande peut faire l'objet de publicité.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는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

1163)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29

Droit des détenus

피구금자의 권리

1. Tout individu privé de liberté, que ce soit dans un commissariat de police ou

- (가) 경찰서나 감옥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게는 국민보호사무소에 서면으로, 혹은 영상녹화(enregistrement audiovisuel)로 호소할 권리가 있음. 구금시설의 책임자들은 국민보호사무소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리고 하지 않고, 곧장 보내야 함.
- (나) 국민보호사무소장과 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모든 기관들과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 이는 경찰서나 감옥에서도 동일하고, 언제든지 유효함. 이에 따라 경찰 당국과 형무소,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들은 해당 개인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허가해야 함<sup>1164</sup>).
- (다) 위에 명시되어 있는 피구금자와 국민보호사무소의 소통과 관련된 의

dans une prison, a le droit de s'adresser à l'OPC par écrit ou au moyen d'enregistrement audiovisuel. Les Responsables du lieu de la détention sont tenus de faire parvenir en toute diligence à l'OPC tout écrit qui leur est remis par tout individu privé de liberté sans en prendre connaissance.

경찰서나 감옥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게는 국민보호사무소에 서면으로 혹은 영상녹화(enregistrement audiovisuel)로 호소할 권리가 있다. 구금시설의 책임자들은 국민보호사무소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리고 하지 않고, 곧장 보내야 한다.

2. Le non-respect de l'obligation ci-dessus constitue une violation du droit d'un détenu de communiquer avec l'OPC et entraîne pour tout contrevenant des sanctions prévues par la loi.

위에 명시되어 있는 피구금자와 국민보호사무소의 소통과 관련된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1164)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36 제 36조

Droit d'accès 접근권

1. Le Protecteur du Citoyen et les membres du personnel de l'OPC en fonction ont droit d'accès à tous les lieux où des individus sont privés de liberté, dans les commissariats de police ou dans les prisons, et ce en tout temps.

국민보호사무소장과 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모든 기관들과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이는 경찰서나 감옥에서도 동일하고, 언제든지 유효하다.

2. Les autorités policières et/ou pénitentiaires leur accorderont toutes facilités nécessaires pour accéder à ces lieux et avoir accès aux individus privés de leur liberté et aux informations relatives à leur détention.

경찰 당국과 형무소,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들은 해당 개인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7) 개혁 제안<sup>1165)</sup>

국민보호사무소장은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공공행정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8)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말에 행정에 의한 인권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대통령과 양원에 발표됨.

바)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13년 11월 심사에서 A등급<sup>1166)</sup>

---

1165) [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http://protectioncitoyenhaiti.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06) (검색일 2016.9.9.)

Article 44

Propositions de réforme

개혁 제안

Le Protecteur du Citoyen peut proposer toute amélioration qu'il croit nécessaire au bon fonctionnement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n vue de prévenir les abus. Il peut, dans le même objectif, proposer et/ou préconiser des modifications aux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Il peut préconiser des actions à entreprendre dans des situations susceptibles de donner lieu à des abus, notamment des violations des droits humains.

국민보호사무소장은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공공행정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후략)

1166)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8)

### 34) 니카라과

니카라과 국가 정보 <sup>1167)</sup>	
면적	130,370km <sup>2</sup>
인구	626만명 (2015)
수도	마나과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주요종교	가톨릭(51.4%), 개신교(34.5%)
GDP	127억불 (2015, 니카라과중앙은행)
	2,026불 (2015, 니카라과중앙은행)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니카라과공화국 인권옹호 옴부즈맨사무소

La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 (2) 설립시기: 1995년 12월 법률 승인, 1996년 1월 출간.
- (3) 설립배경<sup>1168)</sup>: 1995년 12월 13일, 니카라과 의회는 법률 212번(Ley No. 212)으로도 알려진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la Ley de la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을 승인. 이 법은 1996년 1월 10일 국가관보(Diario Oficial La Gaceta) 제 7번으로 출간됨. 이 법률의 승인은 1995년 헌법(la Carta Magna) 개정의 일부로서 이루어짐. 의회를 통해 법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내용이 적용되는 데에는 거의 4년이 걸렸는데, 이때 첫 옴부즈맨 위원장과 부옴부즈맨이 선출되었음.
- 니카라과 시스템에 옴부즈맨사무소가 포함된 것은 국제커뮤니티에 대한 니카라과 정부의 책무 이행의 일부로서 이루어짐.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근거법 및 상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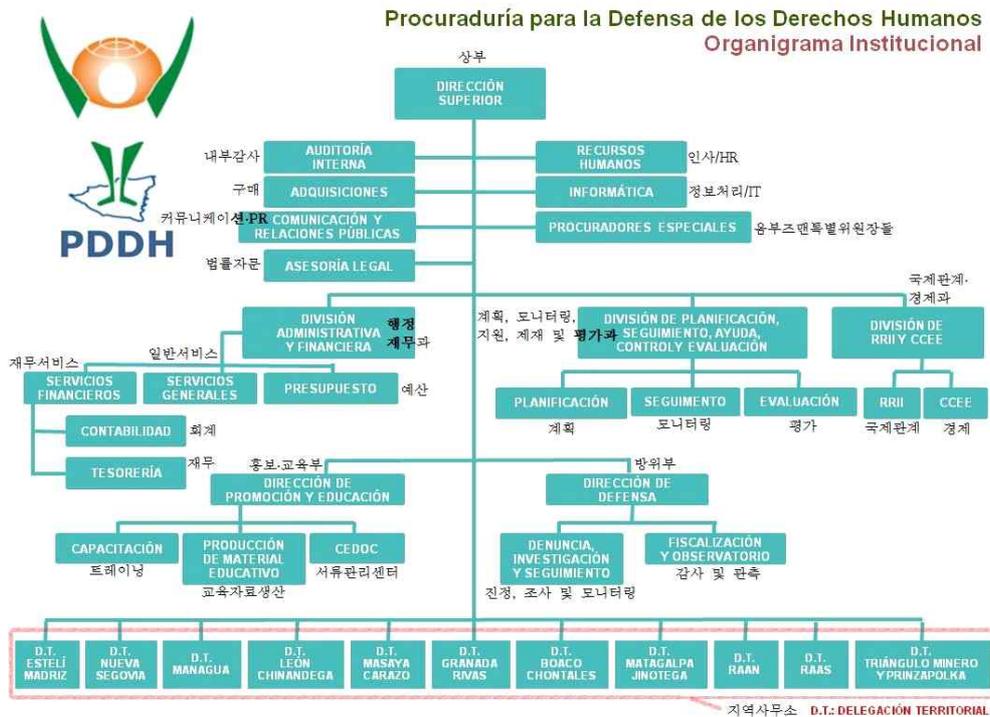
(가)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a Ley de la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sup>1169)</sup>

1167)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4/1\\_22632.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4/1_22632.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12)

1168) [http://www.pddh.gob.ni/?page\\_id=163](http://www.pddh.gob.ni/?page_id=163) (검색일 2016.10.13.)

법률 212번으로도 알려져 있음. 1995년 12월 13일에 승인, 1996년 1월 10일 국가관보 제7번으로 출간. 사무소법 제 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인권수호를 위한 국가옴부즈맨 위원장 및 부옴부즈맨 (이하 ‘위원장’, ‘부옴부즈맨’)의 역할, 특성, 목적, 권한 등을 규제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형성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옴부즈맨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출처: <http://www.pddh.gob.ni/wp-content/uploads/2013/02/PDDH-Organigrama-2013.jpg>

[니카라과-그림 22] 니카라과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다) 조직구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1169)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옴부즈맨 위원장 (El Procurador), 부옴부즈맨 (Subprocurador). 특별 위원장 (los Procuradores Especiales) 등 다수. 기타 세부 부서는 그림 참고.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170)</sup>

중앙사무소(Oficinas Centrales)는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Managua) 위치. 지역 사무소들은 총 7곳으로, 다음과 같음 (괄호 안은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도시명):

- ① 서부사무소 Delegación de Occidente (León)
- ② 카리베 자치구역 남부사무소 Delegación de la RACS (Región Autónoma Caribe Sur) (Bluefields)
- ③ 카리베 자치구역 북부사무소 Delegación de la RACN(Región Autónoma Caribe Norte) (Puerto Cabezas)
- ④ 마타갈파-히노테가 지역사무소 Delegación de Matagalpa-Jinotega
- ⑤ 보아코-촌탈레스 지역사무소 Delegación de Boaco-Chontales (Juigalpa)
- ⑥ 그라나다-리바스 지역사무소 Delegación de Granada-Rivas
- ⑦ 트리앙글로 미네로 지역사무소 Delegación del Triángulo Minero (Siuna)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국가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가예산(Presupuesto General de la República)의 일부로 충분한 예산을 지정, 초안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sup>1171)</sup>.

2014년을 기준으로, 국가옴부즈맨사무소에 지정된 예산은 44,422,160.00 니카라과 코르도바 (한화로 약 1,732,135,500원)<sup>1172)</sup>.

옴부즈맨사무소의 자산 및 수입은 사무소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모든 세금 면제됨. 또한, 사무소는 공공수도, 전기, 전화 및 우체국 서비스도 무료

1170) [http://www.pddh.gob.ni/?page\\_id=173](http://www.pddh.gob.ni/?page_id=173) (검색일 2016.10.13.)

1171)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8

1172) <http://www.pddh.gob.ni/wp-content/uploads/2013/01/INFORME-ANUAL-2014-.pdf> (검색일 2016.10.13.)

로 사용할 수 있음<sup>1173</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1174</sup>)

(가) 국가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은 의회를 통해 임명됨.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문을 통해 후보 목록을 구성. 목록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은 의회 의원들 중 60퍼센트의 투표를 통해 선출됨.

옴부즈맨, 부옴부즈맨, 그리고 특별위원들의 자격요건은:

- ① 니카라과 국적자이고, 니카라과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 ②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도덕적·직업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 인권침해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자.
- ③ 임명일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이고 75세 이하인 자.
- ④ 인권옹호 및 홍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자.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1175</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176</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은 각각 5년간의 임기를 지님. 특별위원장들의 경우 새로운 옴부즈맨이 의회로부터 선출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됨<sup>1177</sup>).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재임 관련 자료 없음.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178</sup>)

---

1173)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Art. 50

1174)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Art. 8, 10

1175)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176) 마)항 옴부즈맨 사무소의 권한과 같은 권한

1177)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Art. 9, 23

1178)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권한<sup>1179)</sup>

(가) 옴부즈맨 및 대표들은 구술주의(oralidad), 무상, 신속, 근접성, 단순성, 간결함, 그리고 재량성(discrecionalidad)에 따라 활동. 국가옴부즈맨 및 그 대표들은 서비스를 항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나) 국가옴부즈맨은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권한 내에서 직권 조사나 요청에 의해 국가 내 공공행정기관, 시 행정, 자치구들과 대학들의 활동을 감독. 자치기관과 대학 등에 속한 기관들은 옴부즈맨과 협업하고, 위원장은 그들의 협조를 요청 가능.

(다) 시찰 및 정보접근권<sup>1180)1181)1182)1183)</sup>

---

1179)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Art. 24, 25, 37.

1180)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ículo 33. 제 33조

El Procurador tendrá la facultad de inspeccionar cualquier instalación o dependencia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igualmente tendrá acceso a cualquier documentación, expediente o información de la misma.

옴부즈맨은 공공행정과 관련된 그 어떤 기관이든 시찰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서류, 기록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주어진다.

El Procurador podrá solicitar a los poderes públicos todos los documentos que considere necesarios para el desarrollo de su función, incluidos aquellos clasificados con el carácter de secretos, teniendo en consideración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538 y siguientes del Código Penal.

옴부즈맨은 업무 수행을 위해 모든 공공 당국에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형법(Código Penal) 제 538조 등의 항목에 따라 기밀서류도 이에 포함된다.

Las investigaciones que realice y el expediente que levante el procurador y el personal dependiente del mismo, así como los trámites procedimentales, se verificarán dentro de la más absoluta reserva, tanto con respecto a los particulares como a las dependencias y demás organismos públicos, sin perjuicio de las consideraciones que el Procurador considere oportuno incluir en sus informes a la Asamblea Nacional.

옴부즈맨 및 담당 부서 관계자를 통해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모든 과정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진정인과 해당 기구, 그리고 다른 기관들까지 고려한다. 조사에는 옴부즈맨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고려된다.

① 옴부즈맨에게는 공공행정과 관련된 그 어떤 기관이든 시찰할 수 있는

---

Cuando entienda que un documento declarado secreto y no remitido por la administración pudiera afectar de forma decisiva la buena marcha de su investigación, lo podrá en conocimiento de 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y la Paz de la Asamblea Nacional.

특정 기밀문서가 행정 측에 의해 (옴부즈맨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인권평화위원회 (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y la Paz de la Asamblea Nacional)에 알릴수 있다.

- 1181)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ículo 34. 제 34조

Todos los órganos, sus titulares y funcionarios de los poderes públicos, están en la obligación de prestar con carácter preferente y urgente la debida colaboración al Procurador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o al funcionario que él delegue para tal fin.

모든 기관, 당국과 공무원들은 옴부즈맨 및 대리인에게 호의적이고 신속하게 협업하여야 한다.

- 1182)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ículo 35. 제 35조

En los casos de que las autoridades, funcionarios o empleados públicos a los que se solicitara información o colaboración se negaren a ellos incurrirán en el delito de desacato y en responsabilidades administrativas, según sea el caso. El Procurador hará referencia en su informe anual de los casos en que los funcionarios se hayan negado a colaborar y dando cuenta al Procurador General de Justicia de la República para el ejercicio de las acciones legales correspondientes.

당국, 관계자 및 공무원이 정보 요청이나 협업을 거부할 경우 그들은 행정적 책임을 무시한 책임을 물게 된다. 옴부즈맨은 연간보고서에 공무원들이 협조 요청을 무시한 사실을 명시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법무장관(Procurador General de Justicia de la República)에게 전달되어,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 1183)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ículo 36. 제 36조

Los órganos del Ejército de Nicaragua y de la Policía Nacional están obligados a colaborar de manera preferente con el Procurador en sus investigaciones, y en general a brindarle todas las facilidades para el desempeño de sus funciones.

니카라과의 군이나 국가경찰기관들은 옴부즈맨과 그 조사과정에 있어 협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이에 따라 모든 시설을 제공한다.

권한이 있고, 해당 기관의 서류, 기록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주어짐. 옴부즈맨은 업무 수행을 위해 모든 공공 당국에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형법(Código Penal) 제 538조 등의 항목에 따라 기밀서류도 이에 포함됨.

- ② 옴부즈맨 및 담당 부서 관계자를 통해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모든 과정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진정인과 해당 기구, 그리고 다른 기관들까지 고려한다. 조사에는 옴부즈맨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고려됨.
- ③ 니카라과군 및 국가경찰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 당국과 공무원들은 옴부즈맨 및 대리인에게 호의적이고 신속하게 협업하고,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해야 함.
- ④ 당국, 관계자 및 공무원이 정보 요청이나 협업을 거부할 경우 그들은 행정적 책임을 무시한 책임을 물게 됨. 특정 기밀문서가 옴부즈맨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인권평화위원회(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y la Paz de la Asamblea Nacional)에 알릴 수 있음. 또한 옴부즈맨은 연간보고서에 공무원들이 협조 요청을 무시한 사실을 작성하고, 이러한 사실은 법무장관(Procurador General de Justicia de la República)에게 전달되어,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짐.

## (2) 활동 내용<sup>1184)</sup>

---

1184)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Artículo 18. 제 18조

Son Atribuciones del Procurador:

다음은 옴부즈맨의 권한이다:

1) Promover en la ciudadanía el estudio y la educación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los Derechos Humanos.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니카라과 헌법 및 인권 교육과 연구 증진

2) Orientar e instruir a las personas en el territorio nacional sobre el ejercicio y defensa de sus derechos y obligaciones, libertades y garantías ante los agentes de

---

la administración pública.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 그들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보장에 대해 가르쳐준다.

3) Promover el respeto de los derechos humanos y desarrollar programas participativos de promoción y educación para toda la sociedad.

인권존중 증진과 모든 사회를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

4) Fiscalizar el apego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y sus funcionarios en el respeto de los derechos humanos.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인권 존중 여부 감독

5) Investigar actuacione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de oficio o por denuncia, para esclarecer los actos u omisiones que vulneren los derechos humanos y remitir a los que resultaren presuntos culpables al organismo correspondiente para su debida sanción.

직권으로나 진정을 통해 행정기관 행동에 대한 조사, 이를 통해 인권침해 행동을 살피고 해당 기관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게 됨.

6) Solicitar la suspensión y la destitución de las autoridades, funcionarios y empleados públicos que con su actuación lesionen o pongan en peligro los derechos humanos, sin perjuicio de iniciar las acciones de responsabilidad civil o penal.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 (...) 당국, 관계자, 공무원들의 (권리행사) 유예나 해산/해고 요청

7) Establecer conclusiones y hacer recomendaciones en las investigaciones que realice, emitiendo censura pública ante los responsables de actos contrarios a los derechos humanos.

진행된 조사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 요청. 인권과 반대되는 행동에 대한 공공검열 실시.

8) Practicar inspecciones en los locale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que sean de su interés y requerir de los funcionarios información sin que pueda oponérsele reserva alguna.

지역행정기구 시찰 참여. 이 때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고, 유보내용은 없어야 한다.

9) Conocer los informes que el Estado envía al Comité de Derechos Humanos de la Organización de Naciones Unidas y a la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유엔 및 미주기구의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전달

10) Procurar la conciliación entre las personas cuyos derechos han sido violados o puestos en peligro con los presuntos responsable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행정기관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조정 진행.

11) Vigilar la situación de las 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en la Policía Nacional y en el Sistema Penitenciario Nacional.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상황을 살피고자 국가경찰 및 형무소들 모니터링

12) Proponer reformas ante los órganos administrativos, tendientes a promover la tutela de los derechos humanos y recomendar la rectificación de acciones ilegales o arbitrarias.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개혁을 제안하고 행정기구에 의한 위법적이거나 임의적 행동

(가) 진정 혹은 직권조사, 모니터링

- ① 직권으로나 진정을 통해 행정기관 행위에 대한 조사, 이를 통해 인권 침해 행동을 살피고 해당 기관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게 됨.
- ②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한 (...) 당국, 관계자, 공무원들의 (권리행사) 유예나 해산/해고 요청.
- ③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증진, 절차 이행.
- ④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인권 존중 여부 감독
- ⑤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상황을 살피고자 국가경찰 및 형무소들 모니터링

---

에 대해 수정 권고

13) Rendir informe anual a la Asamblea Nacional e informe especial cuando así lo crea necesario el Procurador o la Asamblea Nacional.

의회에 연간보고서 및 음부즈맨이나 의회에 의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특별보고서 제출.

14) Proponer la suscripción y ratificación de tratados y convenios sobre derechos humanos.

인권에 대한 조약 및 협약 서명과 비준 제안

15) Organizar su propia estructura y dictar el Reglamento interno necesario que regule el funcionamiento de su actividad administrativa.

사무소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조직 및 필요한 내부 규율 구성.

16) Estimular la labor que en pro de los derechos humanos efectúen los organismos gubernamentales y no gubernamentales, así como los medios de comunicación social.

정부기구 및 NGO들, 사회의 언론·미디어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 진행.

17) Nombrar al Procurador de la Niñez y Adolescencia, y a la Procuradora de la Mujer y de los Pueblos Indígenas y Comunidades Etnicas y otros Procuradores especiales que estime pertinente, implementando métodos participativos para la postulación de candidatura.

적절한 임명 절차 및 후보 등록을 통해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Procurador de la Niñez y Adolescencia), 여성특별위원장( Procuradora de la Mujer), 선주민특별위원장 (Procurador de los Pueblos Indígenas), 민족커뮤니티특별위원장 (Procurador de las Comunidades Etnicas), 그리고 그 외 특별위원장 임명.

18) Proponer y tramitar denuncias de parte de la población de violaciones a sus derechos humanos.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진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증진, 절차 이행.

19) Las demás que le confiera la Ley.

이 법에 따른 기타 권한 및 업무

⑥ 진정 및 직권 조사 절차<sup>1185)</sup>

- a. 옴부즈맨사무소의 조사는 직권으로 혹은 외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짐.
- b. 국적, 거주지, 성, 나이(미성년), 인종, 종교적·정치적 배경, 법적 지위, 병동이나 교도소 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중앙사무소나 영구·임시적 지역사무소에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 신청 가능. 이 때, 구금, 노동, 연구센터나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부터 옴부즈맨에게 전달되는 모든 소통과정은 검열이나, 도청, 개입 등이 일절 불가하고, 위반되는 경우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게 됨.
- c. 모든 진정은 진정인을 통해 신청되고, 진정인의 이름, 성, 거주지,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 설명을 포함해야 함. 진정은 서면 작성, 전화, 팩스, 편지, (해당하는 기록을 동반한) 구술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d. 옴부즈맨사무소의 모든 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지원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되, 진정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진정인의 변호사 측으로부터의 지원 가능.
- e. 사법적 결정을 기다리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은 다루어지지 않음. 단, 사법조치 지연에 대한 내용은 예외. 만약 진정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옴부즈맨사무소는 그에 따라 절차 중단 이유와 대안적 방안 등을 포함, 결정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
- f. 진정을 접수 받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가 허가되는 대로 사무소는 8일간 사건의 성격과 상황을 파악하는 즉각적 조사를 진행. 옴부즈맨은 사무소법을 근거로 1차적인 결정을 내리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때 조사 대상인 기관 혹은 관계자는 72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나 진정과 관련이 있는 개인은 호출이 있었을 경우 옴부즈맨을 만나기도 함. 군인이나 경찰인 경우에는 상부를 통해서 호출됨.
- g. 옴부즈맨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내용을 제공:
  -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서류 작성
  - 조사 심화과정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

1185)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Art. 26 ~ 32, 38

- 인권침해 발견 사실 공표

h. 진정 통계: 2014년(2013년 11월 ~ 2014년 10월)에 3,242건, 2013년에 3,210건. 이 중 수도인 Managua에서의 진정이 2014년에 1,173건 (36.18%), 2013년에 1,290건 (40.97%)<sup>1186)</sup>

(나) 권고 및 법률 개정

①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개혁 제안하고 행정기구에 의한 위법적이거나 임의적 행동에 대해 수정 권고

(다) 교육, 연구, 홍보

- 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니카라과 헌법 및 인권 교육과 연구 증진
- ②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보장에 대해 가르침.
- ③ 인권준중 증진과 모든 사회를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
- ④ 정부기구 및 NGO들, 사회의 언론·미디어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 진행.

(라) 기관들과의 협력 및 조정

- ① 진행된 조사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 요청. 인권과 반대되는 행동에 대한 공공검열 실시.
- ② 지역행정기구 시찰 참여. 이 때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고, 유보내용은 없어야 함.
- ③ 행정기관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조정 진행.

(마) 국제인권기준 관련

- ① 유엔 및 미주기구 내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전달
- ② 인권에 대한 조약 및 협약 서명과 비준 제안

(라) 사무소 내 업무

- ① 사무소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조직 및 필요한 내부 규율 구성.
- ② 적절한 임명 절차 및 후보 등록을 통해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1186) <http://www.pddh.gob.ni/wp-content/uploads/2013/01/INFORME-ANUAL-2014-.pdf> (검색일 2016.10.13.)

(Procurador de la Niñez y Adolescencia), 여성특별위원장(Procuradora de la Mujer), 선주민특별위원장 (Procurador de los Pueblos Indígenas), 민족커뮤니티특별위원장 (Procurador de las Comunidades Etnicas), 그리고 그 외 특별위원장 임명.

③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sup>1187)</sup>

옴부즈맨은 매년 12월 10일에 의회에 연간 정규보고서를 발표함.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나 의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기도 함.

연간 정규보고서는 각 해의 정황에 대해 작성되는데, 사무소의 목적 및 목표, 권한에 따른 조사 결과, 연간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의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보고서는 옴부즈맨이나 의회의 관점에 따라 관계있는 요점들을 포함.

바)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188)</sup>

2006년 4월에 A등급, 2011년 5월에도 같은 등급 유지.

35) 파나마

파나마 국가 정보 <sup>1189)</sup>	
면적	75,517km <sup>2</sup>
인구	4006만명(2015)
수도	파나마 시티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영어
주요종교	가톨릭(84%), 신교(15%)
GDP	521.3억불 (2015, IMF)
	1인당 GDP : 13,013불 (2015, IMF)

1187)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d0c69e2c91d9955906256a400077164a/29360a59fbb47a5406257116005385eb?OpenDocument> (검색일 2016.10.13.) Art. 46, 47

1188)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30)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 국가옴부즈맨 (Defensoría del Pueblo)

(2) 설립연도<sup>1190)</sup>: 1997년 2월 5일

(3) 설립배경<sup>1191)</sup>

(가) 1990년, 법령 107번을 통해 파나마 선거법원(el Tribunal Electoral de la República de Panamá)은 행정적 조사를 위한 부서를 설립, 부서의 책임자를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선정하여 기관 내의 행정적인 규율 수행과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1980년대에 다양한 연구와 논문들이 작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 적용이 고무됨. 논문 중 특히 Richard Ballard의 1982년대 “행정에 대한 의회 옴부즈맨 El Ombudsman Parlamentario de la Administración”이나 Arlene Jones의 1983년 “민주주의 사법적 관리자 옴부즈맨 Ombudsman Contralor Jurídico de la Democracia”등의 작업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토론과 증진의 원동력이 됨.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1992년에 헌법 개정안(el Proyecto de Reformas Constitucionales)을 통하여 “호민관 Tribuno del Pueblo”제도를 세우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는데, (호민관에게는) 법무장관(Procurador(a) General de la República) 및 행정대표(Procurador(a) de la Administración)에 대해 신청된 진정들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제안됨. 단, 당시의 이 개정안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1995년에는 행정판정 제 172번(Decreto Ejecutivo No.172)을 통해 자문위원회(Comisión Presidencial)가 세워짐. 이를 통해 옴부즈맨(Defensoría del Pueblo)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구성원들과 인권 옹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

1189)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93.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93.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19)

1190) [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k2&view=item&layout=item&id=3817&Itemid=142](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k2&view=item&layout=item&id=3817&Itemid=142) (검색일 2016.10.19.)

1191) [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k2&view=item&layout=item&id=1&Itemid=188](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k2&view=item&layout=item&id=1&Itemid=188) (검색일 2016.10.21.)

시작됨.

이 자문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다름아닌 다른 국가들의 옴부즈맨 사무소들로부터 받은 지지였는데, 중앙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사무소, 푸에르토리코 사무소, 콜롬비아 사무소와 스페인 사무소 뿐 아니라 유럽 기구 옴부즈맨 대표들과 유네스코까지에 이르렀음. 이러한 많은 국가기관 및 국제기관의 여러 협력과 제안을 통하여 파나마 내 옴부즈맨의 설립이 본격화되고, 이와 관련된 법안 제 43번(Anteproyecto Ley No. 43)이 소개되어 의회에서 통과됨. 최종적으로 1997년, 2월 5일 법령 제 7번 (a Ley No. 7 de 5 de febrero de 1997)을 통해 옴부즈맨이 세워지고, 효력을 발휘하게 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파나마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Panamá, 1972)<sup>1192)</sup>

헌법 제 129조와 제 130조에 옴부즈맨사무소와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됨. 제 129조<sup>1193)</sup>에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성격과 옴부즈맨의 임명

1192) <http://www.ilo.org/dyn/travail/docs/2083/CONSTITUTION.pdf> (검색일 2016.10.21.)

1193) <http://www.ilo.org/dyn/travail/docs/2083/CONSTITUTION.pdf>  
(검색일 2016.10.21.)

파나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Panamá, 1972)  
ARTICULO 129. 제 129조

La Defensoría del Pueblo velará por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y las garantías fundamentales consagradas en esta Constitución, así como los previstos en los convenios internacionales de derechos humanos y la Ley, mediante el control no jurisdiccional de los hechos, actos u omis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y de quienes presten servicios públicos, y actuará para que ellos se respeten.

옴부즈맨사무소는 헌법, (...) 국제인권협약, 그리고 법률에 의해 세워진 기본적인 권리와 보장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공무원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사실관계, 행동, 비행동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재를 한다. (후략)

La Defensoría del Pueblo actuará bajo la dirección y responsabilidad del Defensor del Pueblo, quien será nombrado por el Órgano Legislativo para un periodo de cinco años, dentro del cual no podrá ser suspendido ni removido, sino por el voto de dos tercios de los miembros de la Asamblea Nacional, en virtud de causas definidas previamente por la Ley.

옴부즈맨사무소는 옴부즈맨의 운영과 책임을 통해 활동하는데, 위원장은 의회를 통해 임명되어 5년의 임기를 가진다. 의회는 의원 2/3에 해당하는 투표를 통해 위원장

방식이, 제 130조<sup>1194)</sup>에는 옴부즈맨으로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나)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N° 7 de 5 de febrero de 1997 por la cual se crea la Defensoría del Pueblo)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세부적인 성격과 구성 등을 다루는 기본법.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구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

옴부즈맨사무소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팀을 형성하고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음<sup>1195)</sup>. 세부 부서는 다음<sup>1196)</sup>과 같이 이루어져 있음:

---

의 임무 중단이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후략)

1194) <http://www.ilo.org/dyn/travail/docs/2083/CONSTITUTION.pdf>  
(검색일 2016.10.21.)

파나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Panamá, 1972)

ARTICULO 130. 제 130조

Para ser elegido Defensor del Pueblo se requiere:

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Ser panameño por nacimiento.

파나마 태생

2. Estar en pleno goce de sus derechos civiles y políticos.

시민·정치권을 누리는 자

3. Haber cumplido treinta y cinco años o más de edad.

35세 이상인 자

4. No haber sido condenado por delito doloso con pena privativa de la libertad de cinco años o más.

5년 이상의 구금 처벌을 받은 범죄 사실이 없는 자

5. Tener solvencia moral y prestigio reconocido.

도덕적이고 저명한 자

6. No tener parentesco, dentro del cuarto grado de consanguinidad y segundo de afinidad, con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con ningún otro miembro del Consejo de Gabinete, con Magistrados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ni con Diputados de la República.

대통령이나 내각, 대법원의 판사들이나 의원들과 사촌 이하의 혈연이나 두 단계 이하의 지연으로 연관이 있지 아니한 자

1195)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4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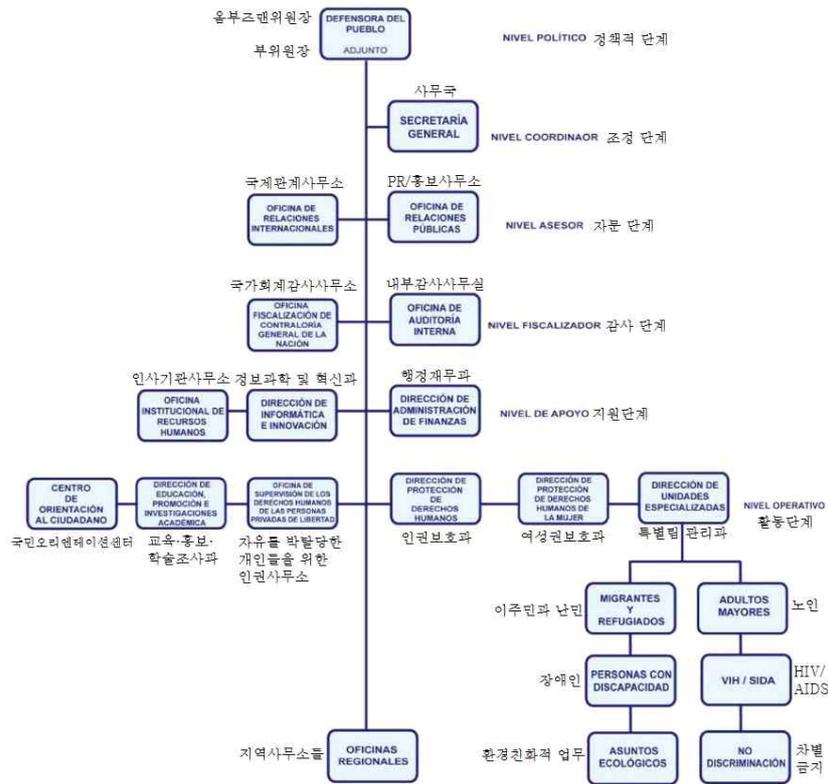
1196) [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flippingbook&view=book&id=137:informe-anual-2014-2015&catid=6:informes&Itemid=151](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flippingbook&view=book&id=137:informe-anual-2014-2015&catid=6:informes&Itemid=151)

- ① 정책적 단계 Nivel Político:
  - 옴부즈맨 Defensor del Pueblo
  - 부옴부즈맨 Adjunto
- ② 조정 단계 Nivel Coordinador: 사무국 Secretaría General
- ③ 자문 단계 Nivel Asesor:
  - 국제관계사무소 Oficina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 PR 사무소 Oficina de Relaciones Públicas
  - 법률자문사무소 Dirección de Asesoría Jurídico
- ④ 감사 단계 Nivel Fiscalizador:
  - 파나마회계감사사무소 Oficina de fiscalización Controla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de Panamá
  - 내부감사사무실 Oficina de Auditoría Interna
- ⑤ 지원 단계 Nivel de Apoyo:
  - 인사기관사무소 Oficina Institucional de Recursos Humanos,
  - 행정재무과 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 Finanzas,
  - 정보과학 및 혁신과 Dirección de Informática e Innovación
- ⑥ 활동 단계 Nivel Operativo:
  - 국민오리엔테이션센터 Centro de Orientación al Ciudadano
  - 교육·홍보·학술조사과 Dirección de Educación, Promoción e Investigaciones Académicas
  -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의 인권 감독사무소 Oficina de Superv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de las 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 인권보호과 Dirección de Protección de Derechos Humanos
  - 여성권보호과 Dirección de Protección de Derechos Humanos de la Mujer
  - 특별팀과 Dirección de Unidades Especializadas
    - 이주민과 난민 Migrantes y Refugiados
    - 장애인 Personas con Discapacidad
    - 환경친화적업무 Asuntos Ecológicos

---

(검색일 2016.10.21.)

노인들 Adultos Mayores  
HIV / AIDS VIH / SIDA  
차별금지 No discriminación



출처: [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flippingbook&view=book&id=137:informe-anual-2014-2015&catid=6:informes&Itemid=151](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flippingbook&view=book&id=137:informe-anual-2014-2015&catid=6:informes&Itemid=151)

[ 파나마-그림 23 ] 파나마 옴부즈맨 조직도

(2) 지역사무소 Oficinas Regionales

12개 주마다 지역사무소가 한 곳씩 있음.



[파나마-그림 24] 파나마 옴부즈맨사무소 지역사무소 지도

(3) 예산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197)1198)</sup>

1197)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45 제 45조

Es obligación del Estado dotar a la Defensoría del Pueblo de un presupuesto anual suficiente para asegurar su funcionamiento efectivo, el cual no podrá ser inferior al año anterior.

국가는 국가옴부즈맨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연간 예산을 충분히 지정할 의무가 있다. 예산 총액은 그 전 해의 예산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La dotación económica necesaria para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constituirá una partida fija en el presupuesto anual de la Asamblea Legislativa.

의회는 연간 예산의 고정적인 일부는 옴부즈맨사무소의 필요한 경제적 뼈대이자 활동 비용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1198)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46 제 46조

Las aportaciones, donaciones o legados que provengan de personas u organizaciones nacionales o internacionales no contemplados en el presupuesto de la Institución, deberán ser destinados exclusivamente a la ejecución de proyectos específicos, y 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hará expreso señalamiento de su procedencia en el informe anual.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으로부터 오는 후원금이나 선물 등은 특별 프로젝트 이행 시에만 적용해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옴부즈맨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서술된다.

파나마 정부는 국가옴부즈맨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연간 예산을 충분히 지정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의회 연간 예산의 고정적인 일부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필요한 경제적 뼈대이자 활동 비용으로 정해져 있어야 함.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후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오는 후원금이나 선물 등은 특별 프로젝트 이행 시에만 적용해 사용. 매 해의 예산 총액은 그 전 해의 예산 총액보다 많아야 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옴부즈맨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서술됨.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18일 기준 예산사용 집행 총량은 총 5,500,000 발보아(한화로 약 6,290,691,200원)<sup>1199)</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sup>1200)</sup>

- ① 옴부즈맨은 의회의 제안 및 투표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임명됨. 의회 내 인권위원회(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de la Asamblea Legislativa)가 옴부즈맨 후보(들)을 선출하여 제안하면 30일 안에 의회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를 통해 옴부즈맨이 정해짐.
- ② 의회 총회에서 1차 투표로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경우,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를 제외하고 투표를 진행. 만약 의회 총회로부터 결정이 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인권위원회는 새로운 후보(들)을 의회에 제안하고, 이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대로 다시 위원장 선출 결정 절차를 밟음.
- ③ 옴부즈맨 사무소의 책임자로 임명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요구됨.

- 1) 파나마인
- 2)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자

1199) [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flippingbook&view=book&id=137:informe-anual-2014-2015&catid=6:informes&Itemid=151](http://www.defensoriadelpueblo.gob.pa/index.php?option=com_flippingbook&view=book&id=137:informe-anual-2014-2015&catid=6:informes&Itemid=151)  
(검색일 2016.10.21.)

1200)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6, 8

- 3) 35세 이상인 자
- 4) 고의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 5) 도덕적이고 명망이 있는 자
- 6) 대통령이나 내각, 대법원관이나 의회 의원들과 가까운 혈연(4촌)이나 지연(2명 걸쳐서 아는 사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
- 7) 인권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자 우대

(나) 부옵부즈맨<sup>1201)</sup>

- ① 옵부즈맨은 각 부옵부즈맨을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임 가능. 부옵부즈맨들은 순차대로 옵부즈맨의 공식 상황에 업무를 대리하게 됨.
- ② 부옵부즈맨들은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동법 제 1, 2, 4, 5, 6, 7, 13, 14, 15조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202)</sup>

옵부즈맨은 국가 내 권위자(alta autoridad del Estado)로 고려되고, 대법원장(Magistrado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203)</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1204)</sup>

옵부즈맨, 그리고 부옵부즈맨들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205)</sup>

옵부즈맨사무소의 권한 내 활동에 있어 옵부즈맨 및 부옵부즈맨들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음. 이러한 혜택은 근무일뿐 아니라, 의회 휴회 시에도 중단되지 않음. 국가 내 긴급 상황 공표에도 옵부즈맨사무소의 권한 및 업무 수행은 지속됨.

또한 옵부즈맨과 부옵부즈맨들은 의회의 허가 없이 형사적인 이유나 경찰

1201)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옵부즈맨사무소법 Art. 17 ~ 19

1202)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옵부즈맨사무소법 Art. 10

1203) 옵부즈맨 사무소 활동권한으로 대체함.

1204)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옵부즈맨사무소법 Art. 7, 19

1205)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옵부즈맨사무소법 Art. 12, 15

에 의해 기소되거나, 구금되지 않음. 또한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들은 업무 수행에 따른 의견 표명이나 투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단, 이러한 면책은 현행범(flagrante delicto)인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옴부즈맨이나 부옴부즈맨들의 재판이 진행될 시 이는 대법원을 통해 진행됨.

마) 주요권한 및 활동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활동 권한<sup>1206)</sup>이 있음:

1206)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ICULO 4 제 4조

La Defensoría del Pueblo tendrá las siguientes atribuciones:

옴부즈맨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 권한이 있다:

1) Investigar los actos u omisiones de las autoridades y de los servidores públicos que impliquen violaciones a los derechos establecidos en el Título III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los demás derechos constitucionales, así como los previstos en tratados, convenios y declaraciones internacionales, suscritos y ratificados por el Estado panameño.

파나마 헌법 및 파나마 정부에 의해 비준된 국제조약, 협약, 선언 등에 따라(...) 당국 및 인권침해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행동 혹은 비행동 조사

2) Inquirir sobre los actos, hechos u omisione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incluyendo como tal al Órgano Ejecutivo, a los gobiernos locales y a la Fuerza Pública, que pudieran haberse realizado irregularmente.

행정부, 지역정부, 경찰을 포함한 공공행정기관의 행동, 사실관계 혹은 비행동에 대해 조사. (후략)

3) Investigar sobre los actos, hechos u omis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En el caso de los servidores públicos del Órgano Legislativo, del Órgano Judicial, del Ministerio Público y del Tribunal Electoral, sólo en la medida en que sean de naturaleza administrativa y no jurisdiccional.

공무원들의 행동, (...) 비행동 등 조사. 입법부, 사법부, 법무장관이나 선거법원 등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행정적인 성격에서만 조사가 가능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Investigar y denunciar hechos, actos u omisiones de las empresas públicas, mixtas o privad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desarrollen un servicio público por concesión o autorización administrativa.

공기업들이나 사기업, 개인이나 법인 등 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 그들의 행동, 비행동, 사실관계 등 조사 및 고발

5) Recomendar anteproyectos de ley en materia de su competencia a los titulares de la iniciativa legislativa.

권한 및 입법적 (...) 자격 내에서 법안 권고

6) Realizar estudios e investigaciones, a fin de incorporar norma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en el ordenamiento jurídico interno.

(1) 진정 및 조사<sup>1207)</sup>

- (가) 모든 개인 및 법인은 국적이나 연령, 형무소 구금이나 병동 억류 상태, 정부기구나 공공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 등과 상관없이 옴부즈맨사무소에 진정 신청 가능. 옴부즈맨사무소는 사법행정(Administración de Justicia)으로부터의 서비스 제공 부족에 대해 진정을 접수 받고 조사하기도 함. 옴부즈맨사무소 측의 모든 절차는 무상으로 제공됨. 옴부즈맨사무소는 직권으로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의 사유를 통해 조사를 진행. 사무소에 진정을 신청하는 모든 주체는 그들의 주장을 근엄함이나 형식성 없이도 피력할수 있어야 함.

---

내부 법률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 연구나 조사 시행

7) Presentar a la Asamblea Legislativa un Informe Annual de sus actuaciones, así como cuantos informes especiales considere conveniente  
의회에 연간보고서 제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특별보고서들을 제출하기도 함.

8) Atender las quejas y situaciones que afecten los Derechos Humanos y promover, ante la autoridad respectiva, que se subsanen las condiciones que impidan a las personas el pleno ejercicio de sus derechos.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려되는 진정 및 상황에 대해 다루고, 모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당국 지원

9) Diseñar y adoptar políticas de promoción y divulg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difundir el conocimiento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especialmente de los Derechos consagrados en ella; establecer comunicación permanente con organizaciones gubernamentales y no gubernamentales para la protec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celebrar convenios con establecimientos educativos y de investigación para la divulgación y promo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celebrar convenios de cooperación con organizaciones gubernamentales y no gubernamentales, nacionales, extranjeras e internacionales. 인권 보호 및 보급을 위한 정책 설계와 도입;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에 대한 지식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기관과 NGO들간의 영구적인 소통 형성; 인권 보급 및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이나 연구에 대한 합의 추진; 정부기관, NGO, 국가기관, 해외기관 및 국제기관들과 협업 추진.

10) Mediar en los conflictos que se presenten entr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y los particulares, con la finalidad de promover acuerdos que solucionen el problema. Esta atribución sólo podrá ser ejercida de común acuerdo con las partes enfrentadas.

행정기관과 특정 개인 사이의 갈등이 생긴 경우 양 측 동의와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 이러한 권한은 양 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휘된다.

1207)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20, 22 ~ 30

옴부즈맨사무소와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과 전화통화 전반은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권리가 제한된 개인들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 마찬가지로, 옴부즈맨 사무소의 모든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특정 당국이나 개인으로부터 제한될 수 없음.

(나) 옴부즈맨 사무소는 모든 진정을 접수받음:

- ① 파나마 헌법 및 파나마 정부에 의해 비준된 국제조약, 협약, 선언 등에 따라 인권침해를 일으킨 당국 및 공무원들의 행위 혹은 비행위 조사
- ② 행정부, 지역정부, 경찰을 포함한 공공행정기관의 행위, 사실관계 혹은 비행위에 대해 조사.
- ③ 공무원들의 행위, 비행위 등 조사. 입법부, 사법부, 법무장관이나 선거법원 등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행정적인 성격에서만 조사가 가능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 ④ 공기업들이나 사기업, 개인이나 법인 등 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 그들의 행위, 비행위, 사실관계 등 조사 및 고발

(다) 진정의 제출은 구술이나 서면, 혹은 그 어떤 형태로든 제출 될 수 있고, 익명으로도든 신원 공개가 되었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왔든 상관없이 접수되어 그 후 조사에 대한 허가나 불허가 결정됨.

조사가 허가되면 그 사실이 진정인에게 알려지고, 조사가 불허된 경우에는 불허 사유와 더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다른 대안적 해결책, 관점, 절차, 행동 등을 함께 알림. 옴부즈맨은 악의적이거나, 정보부족이거나, 증거 불충분이거나, 사소하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진정들은 불허함.

(라) 옴부즈맨 사무소가 진정이나 직권 조사를 통해 조사 진행을 허가할 시, 합당한 조사를 진행,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 측에 보고를 요청. 옴부즈맨사무소에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은)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안에 보고해야 하고, 이 기간은 옴부즈맨사무소가 동의하는 상황 및 전제 안에 연장되기도 하고, 상황에 긴급성이 따르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기도 함.

또한 옴부즈맨은 경찰관련 기관, 교도소, 정신병동 등 그 어떤 공공기관이든 시찰할 수 있음. 이러한 행정기관들은 위원장의 즉각적인 접근권을 부정할 수 없고, 조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 기록이나 서류 등에

있어서도 공개 유보가 불가.

(바) 필요한 정보를 보내지 않거나 요청된 정보를 늦게 혹은 불충분하게 전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등 정당화 될 수 없는 협업 거부로 옴부즈맨의 조사를 방해하는 당국이나 공무원에게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 옴부즈맨은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취해질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림.

옴부즈맨사무소에 협업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고 태만한 태도로 협조하는 당국이나 공무원은 상관과의 소통 내용과 상관없이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옴부즈맨사무소는 연간보고서나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함. 옴부즈맨은 인사과에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당국이나 공무원이 정규적인 평가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옴부즈맨이 특정 범죄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무장관에게 알림.

(2) 문제 해결 Resoluciones<sup>1208)</sup>

(가) 옴부즈맨 사무소를 통한 조사는 해결책을 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때 사무소는 진정과정 및 조사 완료 후의 해결책을 진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해당 당국에 최종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함. 옴부즈맨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나 행정기구의 비정규적인 관행에 대한 조치가 도움이 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조사 내용 및 해결책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함.

(나) 옴부즈맨 사무소는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들과 기관, 혹은 공무원들에게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들에게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의무사항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함.

옴부즈맨은 관련 행정기관들에게 각 기관의 권한 내에서의 시찰이나 처벌 등을 요청 가능. 제안, 권고 혹은 법적 의무 상기의 경우, 해당 공

1208)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31 ~ 35

무원은 30일 안에 옴부즈맨의 결정 내용에 대해 수행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작성해야 함.

- (다) 옴부즈맨 사무소의 해결책들은 공공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체적인 행동이나 해결책의 효과를 무효화시키지 않음. (단, 개정이나 수정, 혹은 취소 등의 제안은 가능) 사무소의 해결책들은 행정기관의 특정 절차나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에 따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행동이나 보장을 대신하지도 않음.

(3) 보고서<sup>1209)</sup>

(가) 연간 및 특별보고서는 옴부즈맨사무소를 통해 출간됨.

(나) 옴부즈맨의 연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① 활동 내역, 결과, 진정 분류 및 해결방식, 진정 허가 및 불허 통계, 권고, 제안, 이의 등. 또한 보고서에는 옴부즈맨에 협조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 및 당국에 대한 정보도 포함.
- ② 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 사용 내역 및 다음 해 예상 예산안 연간보고서, 특별보고서, 그리고 기타 옴부즈맨으로부터 제기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정보에는 상황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인 등의) 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다) 옴부즈맨의 보고 절차:

- ① 연간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 이듬해 6개월 이내에 발표됨. 보고서는 옴부즈맨을 통해 사무소의 활동 내용에 대해 작성되고, 인권위원회와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됨.
- ② 의회는 의회 의장을 통해 옴부즈맨의 의회 출석 및 활동 보고를 요청 가능. 마찬가지로, 옴부즈맨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의회나 인권위원회에 출석 요청 가능.

(4) 국가기관 내 지원 및 권고

(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려되는 진정 및 상황에 대해 다루고,

---

1209) <http://www.acnur.org/t3/fileadmin/Documentos/BDL/2002/1875.pdf?view=1>  
(검색일 2016.10.21) 옴부즈맨사무소법 Art. 37 ~ 39

모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당국 지원

(나) 인권 보호 및 보급을 위한 정책 설계와 도입,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에 대한 지식 보급

(다) 권한 및 입법적 자격 내에서 법안 권고

(5) 협업과 조정

(가)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기관과 NGO들간의 영구적인 소통 형성, 인권 보급 및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이나 연구에 대한 합의 추진

(나) 정부기관, NGO, 국가기관, 해외기관 및 국제기관들과 협업 추진.

(다) 행정기관과 특정 개인 사이의 갈등이 생긴 경우 양 측 동의와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 이러한 권한은 양 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휘됨.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사례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함.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210)</sup>

1999년에 A등급. 그 후 2006년 10월 심사와 2012년 11월 심사에서 등급 유지.

---

1210)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19)

### 36) 페루

페루 국가 정보 <sup>1211)</sup>	
면적	129만km <sup>2</sup>
인구	3,191만명 (2015)
수도	리마(Lima)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주요종교	카톨릭 (77%), 개신교(10%) 등 (2013) <sup>1212)</sup>
GDP	1,921억불 (2015)
	1인당 GDP : 6,021불 (2015)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 옴부즈맨 (Defensoría del Pueblo)
- (2) 설립연도: 1993년
- (3) 설립배경<sup>1213)</sup>

(가) 페루의 국가옴부즈맨은 1993년 헌법을 통해 헌법에 따른 자율성을 지닌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가 행정기관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세워짐. 사무소는 전국에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도 겸함.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가) 페루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1993) 제 161, 162조<sup>1214)</sup> 두 조항을 통해 옴부즈맨사무소 및 옴부즈맨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 제 161조<sup>1215)</sup>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자율성과 옴부즈맨의 임명 과정 및

1211)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99.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99.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6)

1212) [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Peru](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Peru) (검색일 2016.10.6.)

1213) <http://defensoria.gob.pe/defensoria.php> (검색일 2016.10.6)

1214) [http://www.congreso.gob.pe/Docs/files/CONSTITUTION\\_27\\_11\\_2012\\_ENG.pdf](http://www.congreso.gob.pe/Docs/files/CONSTITUTION_27_11_2012_ENG.pdf) (검색일 2016.10.12.)

1215) [http://www.congreso.gob.pe/Docs/files/CONSTITUTION\\_27\\_11\\_2012\\_ENG.pdf](http://www.congreso.gob.pe/Docs/files/CONSTITUTION_27_11_2012_ENG.pdf) (검색일 2016.10.12.)

페루 헌법

Article 161 제 161조

The Office of the Ombudsman is autonomous. State bodies are obliged to

자격 요건에 대하여, 제 162조<sup>1216)</sup>는 옴부즈맨사무소의 의무, 옴부즈맨의 보고서 및 사무소 예산 초안 제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함.

- (나)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Ley Orgánic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법률 26520 (Ley N. 26520) 으로도 알려져 있음. 1995년 8월 8일 출간. 2012년 6월 7일 법률 29882번을 통해 개정(MODIFICATORIA A LA

---

cooperate with the Office of the Ombudsman whenever it requests their help. The structure of the Office of the Ombudsman at the national level is set up by law.

옴부즈맨사무소는 자율성을 지닌다. 국가 기구들은 옴부즈맨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조직은 법에 따라 구성된다.

The Ombudsman is elected and removed from office by the Congress with the votes of two-thirds of the legal number of members, and enjoys the same immunity and prerogatives as congressmen.

옴부즈맨은 의회 내 참석한 의원들의 2/3 이상의 득표를 통해 임명되고, 해임된다. 옴부즈맨은 의원들과 동일한 권한 및 면책을 누린다.

To be elected Ombudsman, a candidate must be at least thirty-five years of age and an attorney-at-law. The term of the office lasts five years and does not receive a binding mandate. He possesses the same incompatibilities th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적어도 35세 이상의 변호사여야 한다. 위원장은 5년의 임기를 지니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권한을 지니지는 않는다. 위원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겸업불가의 원칙을 지킨다.

- 1216) [http://www.congreso.gob.pe/Docs/files/CONSTITUTION\\_27\\_11\\_2012\\_ENG.pdf](http://www.congreso.gob.pe/Docs/files/CONSTITUTION_27_11_2012_ENG.pdf) (검색일 2016.10.12.)

페루 헌법

Article 162 제 162조

It is the duty of the Office of the Ombudsman to defend the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 and the community, and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the state administration duties, as well as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o citizens. The Ombudsman submits a report to Congress once a year and whenever the latter requests one. He may initiate legislation and recommend measures to facilitate the improved performance of his duties.

옴부즈맨사무소의 의무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헌법 및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가행정 의무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 보고서 역시 제출한다. 위원장은 효과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 법률을 제안하고 권고할 수 있다.

The Office of the Ombudsman submits its budget draft to the Executive Branch, which must be sustained before the Executive Branch and before Congress.

옴부즈맨사무소는 행정부에 예산 초안을 제출하고, 행정부와 의회 앞에서 보증하여야 한다.

LEY ORGÁNIC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되어 출간.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1217)</sup>

(가) 인원 및 부서

다음은 세부 조직 명칭. 그 아래 그림은 조직도<sup>12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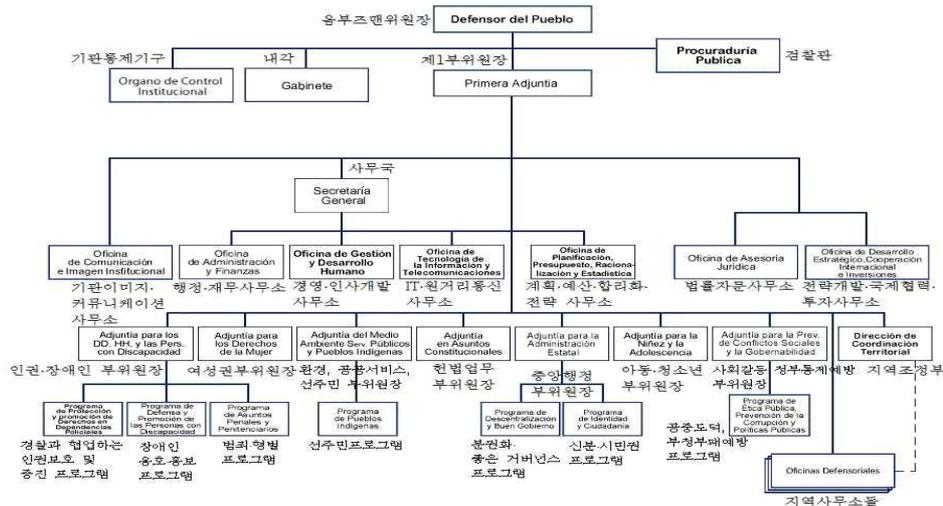
- ① 옴부즈맨 Defensor del Pueblo
- ② 제 1 부옴부즈맨 Primera Adjuntía
- ③ 자문내각 Gabinete de Asesores
- ④ 기관통제기구 Oficina de Control Institucional
- ⑤ 기관이미지·커뮤니케이션 사무소 Oficina de Comunicación e Imágen Institucional
- ⑥ 법률자문사무소 Oficina de Asesoría Jurídica
- ⑦ 전략개발·국제협력·투자사무소 Oficina de Desarrollo Estratégico, Cooperación Internacional e Inversiones
- ⑧ 사무국 Secretaría General
  - 행정·재무사무소 Oficina de Administración y Finanzas
  - 경영·인사개발사무소 Oficina de Gestión y Desarrollo Humano
  - IT·원거리통신 사무소 Oficina de Tecnología de la Información y Telecomunicaciones
  - 계획·예산·합리화·전략 사무소 Oficina de Planificación, Presupuesto, Racionalización y Estadística
- ⑨ 인권·장애인 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los Derechos Humanos y Personas con Discapacidad
  - (경찰과 협업하는) 인권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Programa de Protección y Promoción de Derechos en Dependencias Policiales
  - 장애인 옹호·홍보 프로그램 Programa de Defensa y Promoción de

1217) <http://defensoria.gob.pe/directorio.php> (검색일 2016.10.6.)

1218) 이 외의 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없음.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 범죄·형벌 프로그램 Programa de Asuntos Penales y Penitenciarios
- ⑩ 여성권 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los Derechos de la Mujer
- ⑪ 환경, 공공서비스, 선주민 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el Medio Ambiente, Servicios Públicos y Pueblos Indígenas
  - 선주민프로그램 Programa de Pueblos Indígenas
- ⑫ 헌법업무 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los Asuntos Constitucionales
- ⑬ 중앙행정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la Administración Estatal
  - 분권화·좋은 거버넌스 프로그램 Programa de Descentralización y Buen Gobierno
  - 신분·시민권 프로그램 Programa de Identidad y Ciudadanía
- ⑭ 아동·청소년 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la Niñez y la Adolescencia
- ⑮ 사회갈등·정부통제예방 부옴부즈맨 Adjuntía para la Prevención de Conflictos Sociales y la Gobernabilidad
  - 공중도덕, 부정부패예방 프로그램 Programa de Ética Pública, Prevención de la Corrupción y políticas públicas
- ⑯ 지역조정부 Dirección de Coordinación Territorial



출처: 페루 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 <http://defensoria.gob.pe/organigrama.php>

[페루-그림 25] 페루 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2) 지역사무소

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제 32조에 따라 옴부즈맨은 필요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세울 수 있음<sup>1219</sup>).

지역사무소(Oficina Defensorial)와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존재. 지역사무소 28곳, 보조사무소 10곳<sup>1220</sup>. 사무소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음:

아마조나스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Amazonas

안카쉬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Ancash

- 칩보테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Chimbote

아푸리막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Apurimac

- 안다우아이라스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Andahuaylas

아레키파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Arequipa

아야쿠초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Ayacucho

- 푸키오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de Puquio

- 우안타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de Huanta

카하마르카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Cajamarca

- 하엔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Jaén

쿠스코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Cusco

우안카벨리카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Huancavelica

우아누코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Huánuco

- 텅고 마리아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Tingo Maria

이카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Ica

후닌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Junín

- 사티포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de Satipo

- 메르세드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de la Merced

리베르타드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la Libertad

람바예케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Lambayeque

카요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l Callao

1219)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1220) <http://www.defensoria.gob.pe/oficinas-listado.php> (검색일 2016.10.17.)



출처: <http://www.defensoria.gob.pe/oficinas.php>

[페루-그림 26] 옴부즈맨사무소 지역사무소 및 보조사무소 지도

- 동리마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Lima Este
- 북리마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Lima Norte
- 남리마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Lima Sur
- 리마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Lima
- 로레토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Loreto
- 마드레 데 디오스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Madre de Dios

모케구아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Moquegua  
 파스코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Pasco  
 피우라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Piura  
 푸토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Puno  
 - 훌리아카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de Juliaca  
 산 마르틴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San Martin  
 - 타라포토 보조사무소 Módulo de Atención Tarapoto  
 타크나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Tacna  
 툼베스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Tumbes  
 우카야리 지역사무소 Oficina Defensorial de Ucayali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기본법 제 34조에 따르면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연간예산안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부에 발표되고, 예산안은 의회 앞에서 보증되어야 함<sup>1221)</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적어도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변호사여야 하며, 정직성과 독립성에 있어 알려지고 명망이 있는 인물이어야 함. 새로운 옴부즈맨의 임명은 기존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진행되는데, 의회 총회에서는 특별 위원회(의회 내 각 그룹을 대표하는 5명에서 9명의 위원들로 구성)를 통해 최대 5명까지의 후보를 선택. 이 때 후보 추천에는 최고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야 함.

옴부즈맨으로 최종 선출되려면 투표 당일 참석한 의원들의 2/3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함. 모든 투표 과정은 특별위원회의 진행을 통해 이루어짐<sup>1222)1223)</sup>.

1221)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1222)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

Artículo 2º(임명, 임기) 제 2조

El Defensor del Pueblo será designado por el Congreso con el voto de los dos tercios de su número legal. La decisión recaerá en un ciudadano que reúna los requisitos de haber cumplido los treinta y cinco años de edad y ser abogado y que goce de conocida reputación de integridad e independencia.

옴부즈맨은 의회의 참석한 의원의 2/3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 선출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되려면 적어도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변호사여야 하며, 정직성과 독립성에 있어 알려지고 명망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El Defensor del Pueblo será elegido por cinco años, y podrá ser reelegido sólo una vez por igual período. Finalizado el período para el que fue designado, el Defensor del Pueblo continuará en funciones hasta que asuma el cargo su sucesor.

옴부즈맨은 5년의 임기를 지니고,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옴부즈맨은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1223)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3º

제 3조 (일부)

La design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se efectuará dentro de los sesenta días naturales anteriores a la expiración del mandato.

새로운 옴부즈맨의 임명은 기존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진행된다.

Para tal efecto, el Pleno del Congreso designará una comisión especial, integrada por un mínimo de cinco y máximo de nueve Congresistas, respetando en lo posible, la proporción de cada grupo parlamentario, para encargarse de recibir las propuestas y seleccionar de uno a cinco candidatos.

의회 총회에서는 의회 내 각 그룹을 대표할수 있는 최소 5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1명에서 5명의 후보를 선택한다.

La Comisión Especial publica en el Diario Oficial El Peruano la convocatoria para la presentación de propuestas. Asimismo, publica la relación de las personas propuestas a fin que se puedan formular tachas, las que deben estar acompañadas de prueba documental.

특별 위원회는 페루 공식 국가관보를 통해 후보 추천 접수 사실을 알린다. 후보 추천시에는 (...) 증명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Presentada la propuesta de uno o más candidatos se convocará en término no inferior a siete días al Pleno del Congreso para que se proceda a la elección con el voto mayoritario de los dos tercios de su número legal. La votación se efectuará, candidato por candidato, en el orden que presente la Comisión Especial. En caso de no alcanzarse la mencionada mayoría, la Comisión procederá un plazo máximo de diez días naturales a formular sucesivas propuestas. Una vez conseguida la mayoría de los dos tercios del número legal de miembros del Congreso, la designación quedará realizada.

의회가 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 추천을 받는 기간은 최소 7일

(나)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이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함. 부옴부즈맨들은 공개모집(concurso público)을 통해 선출되고, 그들에 대한 내부 규율들은 옴부즈맨을 통해 승인됨. 부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35세 이상이어야 함<sup>1224</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헌법 제 161조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의원들과 동일한 권한, 면책 및 보수를 누림. 단, 옴부즈맨의 임명 및 해임은 의회 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됨.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225</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은 5년의 임기를 지니고, 1번의 재임이 가능. 부옴부즈맨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재임이 가능<sup>1226</sup>).

---

은 되어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되려면 투표 당일 참석한 의원들의 2/3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한다. 모든 투표 과정은 특별위원회의 진행을 통해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루어진다. (...) 특정 후보가 2/3의 표를 얻게 되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1224)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7° 제 7조 (일부)

El Defensor del Pueblo estará auxiliado por Adjuntos que lo representarán en el ejercicio de las funciones y atribuciones previstas en esta ley. Los Adjuntos serán seleccionados mediante concurso público según las disposiciones que señale el reglamento aprobado por el Defensor del Pueblo.

옴부즈맨은 동법의 역할 및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옴부즈맨들과 협업한다. 부옴부즈맨들은 공개모집(concurso público)을 통해 선출되고, 관련 내규는 옴부즈맨을 통해 승인된다.

Para ser Adjunto se requiere haber cumplido treinta y cinco años.

부옴부즈맨으로 선출되려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Los Adjuntos son designados por un período de 3 años, a cuyo término podrán concursar nuevamente.

부옴부즈맨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재임이 가능하다.

1225) 옴부즈맨 기구의 주요 권한 및 활동으로 대체함.

1226)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2조, 7조 일부

Artículo 2°

El Defensor del Pueblo será elegido por cinco años, y podrá ser reelegido sólo una vez por igual período. Finalizado el período para el que fue designado, el Defensor del Pueblo continuará en funciones hasta que asuma el cargo su sucesor.

옴부즈맨은 5년의 임기를 지니고,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옴부즈맨은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옴부즈맨은 업무 수행에 있어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무적인 지시나 지령을 받지 않음. 옴부즈맨은 역할 수행에 있어 불가침권을 누리고, 권고, 보호 및 역할 이행중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민·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음. 옴부즈맨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체포나 기소 불가능. 단, 현행범(flagrante delito)인 경우는 예외<sup>1227)</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옴부즈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짐<sup>1228)</sup>:

---

Artículo 7°

Los Adjuntos son designados por un período de 3 años, a cuyo término podrán concursar nuevamente.

옴부즈맨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재임이 가능하다.

1227)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5

1228)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제 9조

El Defensor del Pueblo está facultado,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para: 옴부즈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진다:

1.- Iniciar y proseguir, de oficio o a petición de parte cualquier investigación conducente al esclarecimiento de los actos y resolucione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y sus agentes que, implicando el ejercicio ilegítimo, defectuoso, irregular, moroso, abusivo o excesivo arbitrario o negligente, de sus funciones, afecte la vigencia plena de los derechos constitucionales y fundamentales de la persona y de la comunidad.

직권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관계자들의 위헌적(...)이거나, 흠이 있거나, 권한 남용이거나, 임의적(...)으로 보이는 특정 행동 및 결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 진행. (후략)

2.- Ejercitar ante el Tribunal Constitucional la 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 contra las normas con rango de ley a que se refiere el inciso 4) del Artículo 20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asimismo, para interponer la Acción de Hábeas Corpus, Acción de Amparo, Acción de Hábeas Data, la de Acción Popular y la Acción de Cumplimiento, en tutela de los derechos constitucionales y fundamentales de la persona y de la comunidad.

Asimismo, está capacitado o facultado para intervenir en los procesos de Hábeas Corpus, para coadyuvar a la defensa del perjudicado.

(옴부즈맨사무소는) 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와 더불어 개인 및 커뮤니티의 헌법 및 기본법 보호를 위해 헌법 제 200조 4항에 따른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 조치하는데, 관련 법률 개념에는 인신보호영장(Hábeas Corpus)이나 자료열람(Hábeas Data), 대중들의 기소(Acción Popular), 준수행동(Acción de Cumplimiento) 등이 있음.

(1) 직권조사 및 진정 관련 조사 진행을 통해

- (가) 모든 개인 및 법인은 개인이나 공동체 단위로 제한 없이 진정 신청 가능. 진정을 신청할 때는 국적, 성, 미성년, 거주지, 법적 신분, 재활센터, 감옥,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의 위치적 조건, 제 3자와의 법적·사실적 관계 등의 상황이 전혀 문제되지 않음. 반면에, 행정기관이라면 어떠한 기관도 옴부즈맨에게 진정 제출 불가<sup>1229</sup>).
- (나)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진정들의 경우 기본법 제 25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될 수 있음<sup>1230</sup>.
- (다) 진정이 신청될 때는 진정인이나 진정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그 외에도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와 사실관계, 진정신청 동기 및 목적을

---

또한, 부상당한 개인 보호 지원을 위해 인신보호영장 절차에 개입 가능.

3.- Iniciar o participar de oficio o a petición de parte, en cualquier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en representación de una persona o grupo de personas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constitucionales y fundamentales de la persona y de la comunidad.

직권(de oficio)이나 외부의 요청(a petición de parte)을 통해 개인과 커뮤니티의 헌법적 및 기본 권리 옹호를 위한 행정 절차 시작 혹은 참여.

4.- Ejercer el derecho de iniciativa legislativa conforme al artículo 162° de la Constitución.

헌법 제 162조에 따라 입법 계획에 대한 권리 행사

5.- Promover la firma, ratificación, adhesión y efectiva difusión de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국제인권조약 서명, 비준, 가입, 그리고 효과적인 파급 증진

6.- Inciso derogado por la Ley N° 26900 publicada el 16 de diciembre de 1997, que transfiere el Registro Nacional de Detenidos y Sentenciados a Pena Privativa de Libertad Efectiv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al Ministerio Público.

1997년 12월 16일에 출간된 법률 26900번에 따라 국가피구금자등록(Registro Nacional de Detenidos y Sentenciados a Pena Privativa de Libertad Efectiva) 기록이 옴부즈맨 및 법무장관(Ministerio Público)에게 넘어간다.

7.- Dictar los reglamentos que requiera para el cumplimiento de las funciones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y demás normas complementarias para la tramitación de las quejas que a su juicio requieran de acción inmediata.

옴부즈맨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진정 처리에 있어 (사무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법규 및 기타 규칙을 공포

8.- Ejercer las demás atribuciones y facultades que establece la Constitución y esta ley

헌법 및 이 법을 통해 수립되어 있는 기타 권한 및 역할 수행.

1229)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10, 12

1230)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13

포함하고 있어야 함. 옴부즈맨은 상황에 따라 이례적으로 구술로 이루어지는 진정을 접수 받기도 함. 진정은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고, 무료로 제출 가능. 옴부즈맨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방 검사(Fiscal del Ministerio Público) 등에게 접수 가능하고, 이러한 진정들은 옴부즈맨 사무소로 곧장 전달됨<sup>1231</sup>).

(라) 진정은 정식으로 허가되기 전 1차 검토를 거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이 허가되지 않음:

- ① 진정이 익명으로 신청된 경우
- ② 악의성을 지니고 있거나, 사실관계 부족이거나, 증거 부족이거나 진정 내용이 허황거나 무익한 경우
- ③ 진정이 다루는 문제가 사법적 해결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단, 진정이 다루는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는 가능함. 옴부즈맨의 진정 허가에 대한 결정에는 이의 제기 불가<sup>1232</sup>).

(마) 옴부즈맨이 요청한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 공무원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옴부즈맨은) 서면으로 요청에 순응하라는 새로운 요청을 보내 5일 간의 추가 기간과 거리 고려 등의 여유를 주되 다른 편으로는 요청 불이행에 해당하는 새로운 징계절차를 준비하기도 함. 이러한 유동성은 국가 대통령, 의회 위원들, 정부부처, 헌법재판소 및 국가사법위원회의 판사들, 대법원장들, 감사원장, 국가선거배심원들, 선거절차사무소장, 시민등록 및 신원사무소(Oficina de Identificación y Registro Civil)장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음<sup>1233</sup>).

## (2) 조사

의회 총회 및 위원회들은 특정 행정행위 수행에 대해 서면으로 옴부즈맨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sup>1234</sup>).

옴부즈맨의 행정 분야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은 관련 기관이나 기구에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조사 결과

1231)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19

1232)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20

1233)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21

1234)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11

행정기관의 비정상적·비정규적 업무수행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사항에 따라 사법부 집행위원회(Consejo Ejecutivo del Poder Judicial)나 법무장관(Ministerio Público)에게 알림<sup>1235)</sup>.



출처: [http://defensoria.gob.pe/casos.php#casos\\_anuales](http://defensoria.gob.pe/casos.php#casos_anuales)

[페루-그림 27] 페루 내 진정 통계 파이차트

### (3) 문제 해결 (resoluciones)

옴부즈맨은 조사 중에 당국, 공무원과 행정기관 관계자 등에게 새로운 조치 채택을 위한 권고, 법적 의무 상기, 제안 등을 할 수 있음. 모든 경우에 당국,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함. 권고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 옴부즈맨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최종적인 차원에서 권고사항과 그 배경을 해당 분야 장관이나 최고 상부, 혹은 국가감사원장사무소(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에 알릴 수 있음<sup>1236)</sup>. 진정과 관련 절차 및 해결책은 다른 행정절차의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sup>1237)</sup>.

### (4) 보고서<sup>1238)</sup>

1235)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14

1236)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26

1237)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25

1238) [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per_res8.pdf) (검색일 2016.10.12.) Art. 27

옴부즈맨은 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는 의회 본회의 중에 발표됨. 그 외에도 특정 상황이 심각성이나 긴급성을 요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보고서가 작성, 발표될 수 있음. 연간보고서와 특정 특별보고서의 내용은 페루 국가관보를 통해 출간되며, 보고서는 대통령에게도 전달됨.

이 보고서에는 진정의 수 및 분류와 거절된 진정 및 사유, 조사된 진정들을 통한 결과와 공공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활동 등이 포함됨.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서 권고사항 불이행 시 후속조치를 취함.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239)</sup>

1999년에 A등급. 2007년 3월과 2012년 3월에 같은 등급 유지.

37)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국가 정보 <sup>1240)</sup>	
면적	912,050km <sup>2</sup>
인구	3,093만명 (2015)
수도	카라카스(Caracas)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가톨릭(전 인구의 96%), 개신교 2%, 기타 2%
GDP	2,395억불 (2015, IMF)
	1인당 국민소득 : 7,745불 (2015, IMF)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 옴부즈맨 (Defensoría del Pueblo)
- (2) 설립연도: 2004년
- (3) 설립배경: 베네수엘라의 국가옴부즈맨은 헌법에 의해 세워짐. 옴부즈맨사

123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6)

1240)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39.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5/1_22739.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10.6)

무소의 개념에는 베네수엘라의 해방자로 불리는 Simón Bolívar로부터 제안된 원칙들도 포함됨.

역사적으로 옴부즈맨의 개념은 국가 행정의 권한이 국민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따라 생겨남. 그 유래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본적인 옴부즈맨의 권한에 덧붙여 2차적으로 국가의 모든 정부 부처들에 대해 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공행정을 제재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존재해 왔음<sup>1241</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베네수엘라 헌법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제 280조 ~ 283조<sup>1242</sup>)

베네수엘라 헌법 제 280조 ~283조에 옴부즈맨 기구 및 옴부즈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됨.

제 280조<sup>1243</sup>)에는 옴부즈맨 기구가 지니는 책임과 옴부즈맨의 임명

---

1241) <http://www.defensoria.gob.ve/conocenos/origen.html> (검색일 2016.10.6.)

1242)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 (검색일 2016.10.17.)

1243)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 (검색일 2016.10.17.)

베네수엘라 헌법

Artículo 280. 제 280조

La Defensoría del Pueblo tiene a su cargo la promoción, defensa y vigilancia de los derechos y garantías establecidos en esta Constitución y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además de los intereses legítimos, colectivos o difusos, de los ciudadanos y ciudadanas.

옴부즈맨사무소는 인권 홍보, 보호, 모니터링, 헌법과 국제인권조약들에 따른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들의 정당하고,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La Defensoría del Pueblo actuará bajo la dirección y responsabilidad d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quien será designado o designada por un único período de siete años.

옴부즈맨사무소는 옴부즈맨을 통해 운영되고, 위원장에게는 재임 기회 없이 7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Para ser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se requiere ser venezolano o venezolana por nacimiento y sin otra nacionalidad, mayor de treinta años, con

및 임기,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제 281조<sup>1244)</sup>에는 음

---

manifiesta y demostrada competenci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umplir con las exigencias de honorabilidad, ética y moral que establezca la ley. Las faltas absolutas o temporales d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serán cubiertas de acuerdo con lo dispuesto en la ley.

옴부즈맨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적이 없는 베네수엘라 태생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 도덕적 명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위원장의 자리가 영구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는 법 조항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1244)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 (검색일 2016.10.17.)

베네수엘라 헌법

Artículo 281. Son atribuciones d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Son atribuciones d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옴부즈맨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Velar por el efectivo respeto y garantía de los derechos humanos consagrados en esta Constitución y en los tratados, convenios y acuerdo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ratificados por la República, investigando de oficio o a instancia de parte las denuncias que lleguen a su conocimiento.

헌법과 국가가 비준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 협약, 협정 등에 따른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보장. 또한 직권 조사나 외부의 요청을 통해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 실행.

2. Velar por el correcto funcionamiento de los servicios públicos, amparar y proteger los derechos e intereses legítimos, colectivos o difusos de las personas, contra las arbitrariedades, desviaciones de poder y errores cometidos en la prestación de los mismos, interponiendo cuando fuere procedente las acciones necesarias para exigir al Estado el resarcimiento a las personas de los daños y perjuicios que les sean ocasionados con motivo del funcionamiento de los servicios públicos.

권리 보장 및 지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적합한 수행을 보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해치는 임의적인 행동, 권력남용 등에 맞선다. 또한 국가에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발행한 부당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3. Interponer las acciones de inconstitucionalidad, amparo, hábeas corpus, hábeas data y las demás acciones o recursos necesarios para ejercer las atribuciones señaladas en los numerales anteriores, cuando fuere procedente de conformidad con la ley.

위법성, 보호(amparo), 인신보호(hábeas corpus), 개인정보보호(ábeas data),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행동을 취한다. 단, 이러한 행동들은 법률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4. Instar al Fiscal o a la Fiscal General de la República para que intente las acciones o recursos a que hubiere lugar contra los funcionarios públicos o funcionarias públicas, responsables de la violación o menoscabo de los derechos humanos.

법무장관(la Fiscal General de la República)에게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이나 관계자

부즈맨의 권한, 제 282조<sup>1245)</sup>에는 음부즈맨의 면책, 그리고 제 283

들에 대해 적절한 행동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충고

5. Solicitar al Consejo Moral Republicano que adopte las medidas a que hubiere lugar respecto de los funcionarios públicos o funcionarias públicas responsables por la violación o menoscabo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민도덕이사회에 요청

6. Solicitar ante el órgano competente la aplicación de los correctivos y las sanciones a que hubiere lugar por la violación de los derechos del público consumidor y usuario, de conformidad con la ley.

소비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공공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조치나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기관에 요청

7. Presentar ante los órganos legislativos municipales, estatales o nacionales, proyectos de ley u otras iniciativas para la protección progresiva de los derechos humanos.

시, 주, 국가단위의 입법기관에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나 아이디어 제공

8. Velar por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y ejercer las acciones necesarias para su garantía y efectiva protección.

선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효과적인 보호 및 보장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9. Visitar e inspeccionar las dependencias y establecimientos de los órganos del Estado, a fin de garantizar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보호 보장을 위해 국가기관들(...)을 방문 및 시찰

10. Formular ante los órganos correspondientes las recomendaciones y observaciones necesarias para la eficaz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virtud de lo cual desarrollará mecanismos de comunicación permanente con órganos públicos o privado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de protec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효과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기관들과의 소통하여 권고 및 필요한 시찰 실시. 이는 공기업, 사기업, 국가기관들과의 영구적 커뮤니케이션 매커니즘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전제하여 이루어진다.

11. Promover y ejecutar políticas para la difusión y efectiv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인권 홍보 및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 증진 및 실행

12. Las demás que establezcan esta Constitución y la ley.

그 외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업무

1245)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 (검색일 2016.10.17.)

베네수엘라 헌법

Artículo 282. 제 282조

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gozará de inmunidad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y, por lo tanto, no podrá ser perseguido o perseguida, detenido o detenida, ni enjuiciado o enjuiciada por actos relacionados co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En cualquier caso conocerá de manera privativa el Tribunal Supremo

조<sup>1246</sup>)는 옴부즈맨 기본법의 근거 제공 및 기구 활동의 성격에 대해 명시함.

(나) 국가옴부즈맨 사무소 기본법 (La Ley Orgánic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sup>1247</sup>)

베네수엘라 국가관보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제 37.995번으로, 2004년 8월 5일에 출간. 이 기본법은 옴부즈맨의 성격, 조직 및 역할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sup>1248</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sup>1249</sup>)

옴부즈맨사무소 주요 부서들<sup>1250</sup>)은 다음과 같음:

- ① 옴부즈맨
- ② 상임위원

---

de Justicia.

옴부즈맨은 업무 수행차원에서 면책을 누린다. 즉,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대해 기소, 구금, 재판될수 없다. (후략)

1246)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cap4sec2) (검색일 2016.10.17.)

베네수엘라 헌법

Artículo 283. 제 283조

La ley determinará lo relativo a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en el ámbito municipal, estatal, nacional y especial. Su actividad se regirá por los principios de gratuidad, accesibilidad, celeridad, informalidad e impulso de oficio.

이 법은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관 내 조직과 시, 주, 국가 및 특별분야에서의 역할을 결정한다. 사무소의 활동은 무상, 접근성, 신속성, 약식, 직권 추진력 등을 전제로 한다.

1247) <http://www.defensoria.gob.ve/conocenos/competencias.html> (검색일 2016.10.6.)

1248)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1

1249) 조직도를 따로 찾을수 없었음.

1250) 자세한 자료는 라)의 '(1) 임명'에서 확인 가능.

- ③ 특별대표부: 일반적인 특별대표들 외에도 선주민을 위한 특별대표가 따로 존재.
- ④ 지역 대표: 주 대표, 시 대표 단위로 존재.

(2) 지역사무소<sup>1251)</sup>

큰 지역 단위의 지역사무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역 내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소 (“Sede”)와 준사무소 (“Subsede”)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지역사무소 수는 특정지역 사무소와 준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33곳.

다음은 지역사무소 목록:

- Amazonas
- Anzoátegui (Sede Barcelona, Subsede El Tigre)
- Apure (Sede San Fernando, Subsede Guasdalito)
- Aragua
- Área Metropolitana de Caracas
- Barinas
- Bolívar (Sede Ciudad Bolívar, Subsede Puerto Ordaz)
- Carabobo
- Cojedes
- Delta Amacuro
- Falcón
- Guárico (Sede San Juan de los Morros, Subsede Valle de la Pascua)
- Lara
- Mérida
- Miranda (Sede Los Teques, Subsede Guarenas-Guatire, Subsede Charallave)
- Monagas
- Nueva Esparta

---

1251) <http://www.defensoria.gob.ve/contactanos/sedes-regionales.html>  
(검색일 2016.10.6.)

- Portuguesa
- Sucre (Sede Cumaná)
- Táchira
- Trujillo (Sede Trujillo, Subsede Valera)
- Vargas
- Yaracuy
- Zulia (Sede Maracaibo, Subsede Costa Oriental del Lago, Subsede Sur del Lago)

(3) 예산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2015년 연간보고서를 기본으로 베네수엘라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 총액은 567,493,935.31 볼리바르 (한화로 약 65,171,907,500원)<sup>1252)</sup>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예산안 작성 및 실행에 있어 관련 법률 및 규정, 헌법에 따라야 함. 단,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시민 권력(Poder Ciudadano)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구로, 국가 내 모든 정부 부서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조직, 역할, 재정 및 행정의 자율성을 지니기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 적용<sup>1253)1254)</sup>.

1252) P. 391, [http://www.defensoria.gob.ve/images/informes\\_anuales/INFORME\\_ANUAL\\_2015.pdf](http://www.defensoria.gob.ve/images/informes_anuales/INFORME_ANUAL_2015.pdf)

1253)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5 Independencia y Autonomía

제 5조 독립성과 자율성

La Defensoría del Pueblo como órgano integrante del Poder Ciudadano, es independiente de los demás poderes del Estado, y goza de autonomía organizativa, funcional, financiera y administrativa.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시민 권력 (Poder Ciudadano)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구로, 국가 내 모든 정부 부서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조직, 역할, 재정 및 행정의 자율성을 지닌다.

1254)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75 Autonomía Presupuestaria

제 75조 예산의 자율성

La Defensoría del Pueblo estará sujeta a las leyes y reglamentos sobre la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옴부즈맨 (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참석한 의원의 2/3 이상의 득표를 통해 임명되고, 7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재임 불가. 옴부즈맨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 베네수엘라인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베네수엘라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정직함과 도덕성을 갖춘 자여야 함<sup>1255</sup>).

(나) 사무총장 (Director Ejecutivo o Directora Ejecutiva)

사무총장은 옴부즈맨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정치, 전략, 프로그램 분야 등에서 협업하고, 기관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부 활동을 담당함. 사무총장은 옴부즈맨을 통해 자유롭게 임명되고 해임됨.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려면 옴부즈맨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지녀야 하고 겸업금지 조건이 반영됨<sup>1256</sup>).

(다) 특별대표부 (Defensorías Delegadas Especiales<sup>1257</sup><sup>1258</sup><sup>1259</sup>)

---

elaboración y ejecución del presupuesto, en cuanto le sean aplicables. No obstante, a los efectos de garantizar su autonomía e independencia en cuanto órgano integrante del Poder Ciudadano en el ejercicio de sus deberes y atribuciones, regirán las disposiciones previstas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la ley.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예산안 작성 및 실행에 있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시민 권력 (Poder Ciudadano)의 구성단체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사무소의 활동은 베네수엘라 헌법을 따라야 한다.

1255)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17, 9

1256)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31, 32

1257)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34 Defensorías Delegadas Especiales

제 34조 옴부즈맨 특별대표부

Las Defensorías Delegadas Especiales con competencia nacional estarán a cargo de un Defensor Delegado Especial o Defensora Delegada Especial, quien será de libre nombramiento y remoción d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 ① 옴부즈맨 특별대표부는 국내에서 권한을 지니고, 특별대표들의 임명과 해임은 국가옴부즈맨을 통해 이루어짐. 옴부즈맨 특별대표들은 국

옴부즈맨 특별대표부는 국가 내 권한을 지니고, 특별대표들(...)의 임명과 해임은 국가옴부즈맨을 통해 이루어진다.

Corresponderá a las Defensorías Delegadas Especiales con competencia a nivel nacional apoyar técnicamente, y como órgano asesor especializado, a las distintas dependencias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diseñando, programando y coordinando acciones que contribuyan en la promoción, defensa y vigilancia de los derechos y garantías consagrados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en los instrumentos internacionales, en sectores y materias que ameriten un tratamiento especial.

옴부즈맨 특별대표들은 국가차원에서 기술적이나 옴부즈맨사무소 내 특정 분야에 도움을 준다. 즉,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다양한 분야에서 베네수엘라 헌법 및 국제법에 따른 인권(...) 홍보, 수호 및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

Las Defensorías Delegadas Especiales con competencia nacional que sean creadas en leyes que regulen materias sobre derechos humanos, se regirán por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que a tal efecto establezca 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mediante Reglamento Interno.

인권(...) 관련 법에 따라 국가단위의 관할권을 지닌 옴부즈맨 특별대표들은 국가옴부즈맨이 수립한 내규에 따라 관리된다.

- 1258)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35 Requisitos 제 35조 자격요건

Para ser Defensores Delegados Especiales o Defensoras Delegadas Especiales se requieren las mismas condiciones de elegibilidad d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y no estar incurso en las casuales de incompatibilidades del mismo o la misma.

옴부즈맨 특별대표가 되려면 국가옴부즈맨과 같은 자격요건을 지니고, 동일한 겸업 금지의 원칙이 전용된다.

- 1259)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36 Nombramiento 제 36조 임명

Los cargos de Defensor Delegado Especial o Defensora Delegada Especial serán creados por el Defensor o Defensora del Pueblo, de conformidad con la facultad contenida en el numeral 19 del artículo 29 de esta Ley, con el objeto de atender determinadas materias y en determinados espacios territoriales. Su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estará previsto en el Reglamento Interno que a tal efecto se dictará.

특정 주제나 지역에 대해 다루기 위한 옴부즈맨 특별대표의 임명은 동법 제 19조와 29조에 따라(...) 옴부즈맨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대표들의 세부적인(...) 역할은 내규에 따라 결정된다.

가차원에서 기술적이거나 옴부즈맨사무소 내 특정 분야에 도움을 주게 됨. 즉,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다양한 분야에서 베네수엘라 헌법 및 국제법에 따른 인권 홍보, 수호 및 보장에 기여하고, 관련 내규에 따라 관리된다.

옴부즈맨 특별대표가 되려면 국가옴부즈맨과 같은 자격요건을 지녀야 하고, 동일한 겸업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특정 주제나 지역에 대해 다루기 위한 옴부즈맨 특별대표의 임명은 옴부즈맨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대표들의 세부적인 역할은 내규에 따라 결정됨.

② 선주민을 위한 옴부즈맨 특별대표 (la Defensoría Delegada Especial Indígena)<sup>1260</sup>

선주민을 위한 옴부즈맨 특별대표 (la Defensoría Delegada Especial Indígena, 이하 ‘선주민 특별대표’) 헌법과 국제협약,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선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모니터링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함. 선주민 특별대표로 임명되려면 1) 옴부즈맨과 동일한 자격요건 및 겸업금지 원칙을 지키고 2) 선주민 운동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며, 선주민 개인 및 커뮤니티의 옹호 및 보호 매커니즘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이 있는 자여야 하며, 3) 선주민들 중에서 그들의 풍습에 따라 선출된 자여야 함.

(라) 지역단위 대표들

① 옴부즈맨 주 단위 대표 (Defensorías Delegadas Estadales, 이하 ‘주 대표’)<sup>1261</sup>

옴부즈맨 주 단위 대표들은 옴부즈맨 주 단위 특별대표장 (Defensor Delegado o Defensora Delegada Estatal)을 통해 관리되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오는 의견들이 수렴되어 옴부즈맨을 통해 임명 및 해임. 주 대표들은 상임위원(Dirección Ejecutiva)의 조정을 통해 지역들 내

1260)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38, 39

1261)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41~43

에서 베네수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홍보, 옹호,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을 함.

주 특별대표로 선출되려면 옴부즈맨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지니고 겸업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함.

② 옴부즈맨 시 단위 대표 (Defensoría Delegada Municipal, 이하 ‘시 대표’)<sup>1262)</sup>

옴부즈맨 시 단위 대표들은 시 단위 옴부즈맨사무소들(Defensorías Delegadas Municipales)의 총 책임자들로, 해당 관할권 내에서 옴부즈맨을 대표한다. 시 대표들은 옴부즈맨에 의해 자유로이 임명되거나 해임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1263)</sup>

옴부즈맨은 국내에서 국가도덕이사회 (Consejo Moral Republicano), 옴부즈맨사무소(la Defensoría del Pueblo), 검찰관(Ministerio Público), 국가회계사무소(la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의 구성원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다른 구성원들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264)</sup>

국가옴부즈맨의 활동은 국가, 주, 시 단위의 모든 공공기관들 및 공무원들을 다루고 그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선거나 군 관련 등의 분야에서 영향을 지님. 또한 사무소의 활동은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다루기도 함. 옴부즈맨의 활동은 강압적이지 않고, 법령 수립, 개정, 파기나 판결, 결정 내용 등에 있어 법적인 효력이나 집행권을 지니지 않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제 3조에 따라 위원장은 7년간의 임기를 가지게

---

1262)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45

1263)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28

1264)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7, 10

되고, 재임 불가.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1265)</sup> 등

옴부즈맨은 임명 시기부터 임기 만료 때까지 업무 수행 차원에서 면책을 누림. 위원장은 헌법적 및 법적인 권한 내에서의 입장 표명 및 행동을 근거로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 국가옴부즈맨의 면책 사항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을 물게 되고, 이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짐.

단,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구금이나 재판 명령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지닌 대법원(Tribunal Supremo de Justicia)을 통해 따로 조사됨. (옴부즈맨이) 현행범(delito flagrante)인 경우 해당 당국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대법원에 곧장 알리게 됨.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진정 및 조사<sup>1266)</sup>

(가) 요청이나 진정은 진정인이나 제 3자, 혹은 공동체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작성. 옴부즈맨사무소는 직권으로나 외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진행.

(나) 사무소는 사전 통보 없이 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에 조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자료들을 요청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며, 기록이나 서류, 아카이브 등 조사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기관과 개인 및 대표자는 보고서, 기록, 서류 등 옴부즈맨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 접근권을 신속하게 우선시하여 허가할 의무를 지님. 옴부즈맨사무소가 법에 따라 공개가 유보되어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지연 없이 관련 담당자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고, 사무소도 (정보 열람시) 정보 공개 유보 상태를 존중, 유지

1265)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23, 24

1266)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55, 66~68

해야 함. 즉, 해당 정보는 대중들에게 공개되거나 배포될수 없음.

(다) 옴부즈맨사무소로부터 요청된 정보는 요청을 받은 관계자 및 공무원  
을 통해 제출되는데, 이는 근무일 기준 15일 안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옴부즈맨의 승인에 따라서만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2) 국가기관들과의 협업<sup>1267</sup>):

---

1267)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ículo 69 Colaboración entre Autoridades 제 69조 당국 간의 협업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la Defensoría del Pueblo actuará en colaboración con otras autoridades públicas, a través de los siguientes procedimientos, entre otros:

옴부즈맨사무소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공공 당국과 협업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Cuando un asunto esté siendo conocido por otra autoridad, la Defensoría del Pueblo tendrá acceso a las informaciones y documentos pertinentes, y podrá aportarles los elementos provenientes de su investigación.

다른 기관이 특정 업무에 대해 알게 될 때, 옴부즈맨사무소는 관련 있는 정보와 서류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조사과정으로부터의 요소에 대해 알린다.

2. Cuando la Defensoría del Pueblo requiera a otras autoridades, asumir determinadas actuaciones de su competencia, éstas la mantendrán informada de los trámites sobre dichos asuntos y, en su defecto, la Defensoría del Pueblo podrá solicitar la información correspondiente.

옴부즈맨사무소가 다른 당국에 (해당 당국의) 권한 내에서의 행동을 요구할 때, 당국은 절차 과정에 대해 (사무소에) 알리고, 그렇지 못 했을 때에는 사무소 측에서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Cuando la Defensoría del Pueblo siga procedimientos vinculados a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pondrá en conocimiento al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y podrá ejercer acciones ante los tribunales competentes de la jurisdicción disciplinaria judicial.

옴부즈맨사무소가 사법 행정과 관련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대법원에 알려야 하고, 사법적 징계 관할권을 지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동을 수행한다.

4. Cuando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la Defensoría del Pueblo conozca de hechos que son competencia de la Fiscalía General de la República y de la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solicitará la intervención de éstas, según corresponda.

옴부즈맨사무소는 역할 수행 시 법무장관 및 국가감사원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 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5. Cuando en ejercicio de sus funciones, los órganos del Poder Público conozcan de hechos que sean competencia de la Defensoría del Pueblo, informarán y solicitarán la intervención de ésta.

(가) 일반적으로는, 옴부즈맨사무소가 특정 행동을 요청한 권한이 있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 국가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옴부즈맨사무소의 권한을 사전에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보고 및 요청.

(나) 사법 행정 관련 절차시에는 대법원이나 권한이 있는 법원과 협업, 허가를 받아 업무 수행. 필요에 따라 법무장관이나 국가감사원장 등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음.

(3) 옴부즈맨사무소의 아카이브 관리<sup>1268)</sup>

옴부즈맨사무소의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업무 내용 및 기록을 비밀로 유지, 사무소의 서류나 아날로그·디지털 기록 등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음.

옴부즈맨사무소의 아카이브는 공공 서비스만을 위해 사용되나, 이례적으로 관련 내부규율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는 관련 서류들의 접근성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음.

(4) 보고서<sup>1269)</sup>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사무소의 권한 내 활동 및 결정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데, 보고서에는 인권 상황과 공공행정, 공공서비스의 역할 수행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

(5) 기타 활동<sup>1270)</sup>

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 원칙은 구술성(oralidad), 즉각성(inmediatez), 무보

---

공공 기관들(...)은 옴부즈맨사무소의 권한을 사전에 알고 있고, 역할 수행 시 관련 개입에 대해 알리거나 요청한다.

1268)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78, 79

1269)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30

1270) [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http://www.oas.org/juridico/spanish/mesicic2_ven_anexo_35_sp.pdf)  
(검색일 2016.10.17.)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8, 15

수(gratuidad), 접근성(accesibilidad), 신속성(celeridad), 약식(informalidad), 직권으로부터 오는 추진력(impulso de oficio) 등으로, 이에 따라 사무소는 목적 및 역할을 수행함.

(가) 보호, 지원 및 고발

- ① 위법적 행동, 보호(amparo), 인신보호(hábeas corpus), 개인정보보호(hábeas data), 그 외 행동 및 사법적 조치에 개입.
- ②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권리 지지 및 보호, 임의적 행동, 권리 남용,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개인 권리 및 공동체 단위 및 일반적 권리 보호.
- ③ 국가가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물질적 손상에 대하여 국가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하는 적절한 요청 및 행동 지원
- ④ 법에 따른 협업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해당 당국, 공무원에 대해 고발

(나) 국내 사법적 및 조정 역할 수행

- ① 인권과 관련이 있는 국제조약, 협약, 협의 등에 대한 서명, 비준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국내 적용하도록 촉진
- ② 동법 제 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법적 혹은 법령 형성 시작 단계를 위하여 관련 연구 및 조사 진행 및 권고
- ③ 상황상 더 효율적이고 이익일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조정 등의 역할 수행

(다) 세부 분야별 인권 보호

- ① 효과적인 선주민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개선을 위해 관련 조치 실행
- ③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 피구금자(...) 등의 권리 지지 및 보장
- ④ 권한이 있는 기관에 소비자 및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상황에 대한 정정 조치나 처벌 요청
- ⑤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효과적 환경 보호 지원 및 노력

(라) 기타

- ① 효과적인 인권 보급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를 증진, 보급, 실행.
- ② 옴부즈맨사무소의 목적을 성취하고 헌법적 권리 및 보장을 위하여 국민적인 참여 고무
- ③ 그 외 베네수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립되어 있는 기타 권한 및 업무

바) 특이사항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이며, B등급으로 권고 받은 상태임.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271)</sup>

2002년에 A등급. 2008년 4월과 2013년 5월에도 A등급 유지. 2014년 3월에는 2014년 10월의 특별심사를 받게 되었으나, 정작 2014년 10월에는 특별조사가 2015년 3월로 미루어짐. 2015년 3월에는 B등급으로 등급 하락을 권고 받았으나 2016년까지 파리 원칙을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동 권고사항은 2016년 10월 GANHRI 심사로 미루어짐.

## 라. 아프리카

### 38) 카메룬

카메룬 국가 정보 <sup>1272)</sup>	
면적	475,442km <sup>2</sup>
인구	2,374만명 (2015년 기준)
수도	야운데(Yaoundé)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불어 및 영어
주요종교	천주교/기독교(45%), 회교(22%), 토속종교(25%)
주요민족	Bantu, Kirdis, Fulani
GDP	292억 달러(2015년)
	1,251 달러 (2015년)

1271)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6)

1272)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40.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40.jsp?menu=m_40_60_20)(검색일: 2016.9.20.)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국가 인권과 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CNDHL 이하 인권자유위원회)
- (2) 설립연도: 1990년
- (3) 설립배경: 1990년 대통령 폴 비야(Paul Biya)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 시위와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인권자유위원회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Décret n°90-1459 du 8 novembre 1990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을 내려 인권자유위원회를 설립함. 처음에는 당국의 명시적인 권한(autorité)을 지닌 위원회(commission)가 아닌 소규모 위원회(comité)였다가, 2004년에 카메룬 국회 승인을 거쳐 국가인권자유위원회법(Loi)을 통과시켜 지금의 위원회를 설립함<sup>1273</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국가 인권자유위원회 설립과 조직, 기능에 관한 법(Loi N°2004/016 du 22 juillet 2004 portant création, organisation et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sup>1274</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Secrétariat Permanent)과 임명된 30명의위원들이 활동하는 4개의 부위원회(sous-commission)를 주요 조직으로 두고 있음.

① 사무국(Secrétariat Permanent)

사무국 수장인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을 중심으로 6개의 부서

---

1273) 카메룬 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더 참고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hrw.org/legacy/reports/2001/africa/cameroon/cameroon.html> (검색일: 2016.9.19.)

1274) L.C.N.D.H.L. 이하 인권자유위원회법

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부서로는 인권과 자유 보호 및 증진부(Division de la Protection et de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커뮤니케이션부(Cellule de la Communication), 협력·자료·조사부(Service de la Coopération, de la Documentation et de la Recherche), 총무부(Service des Affaires Générales), 번역부(Service de la Traduction et de l'Interprétation), 안내 및 우편물 수리, 내부 연결부(le Service de l'Accueil, du Courrier et de Liaison)가 있음.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명령을 내리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 외 위원장이 위임하는 임무들을 수행함<sup>1275</sup>).

② 부위원회(sous-commission)

임명 위원 30명은 4개의 부위원회에 소속되어 부위원회별 인권 사안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함. 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부위원회는 위원장(président)과 위원장을 지원하는 보고관(rapporteur)을 둬. 부위원회로는 시민·정치적 권리 부위원회 (Sous-commission des Droits Civils et Politiques)<sup>1276</sup>,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부위원회 (Sous-commission des Droits Économiques, Sociaux et Culturels)<sup>1277</sup>,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 인권 부위원회(Sous-commission des Droits des Groupes Vulnérables)<sup>1278</sup>, 특별사안 부위원회 (Sous-commission des Questions Spéciales)<sup>1279</sup>가 있음. 부위원회 위원장 자격 제한이 있는데, 정부 혹은 공공기관 출신, 상원 및 하원 의원, 현역 판사 혹은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구성원, 치안유지 종사자, 지역의회 수장 및 위원, 정부 대표, 시장, 시의원 및 그

1275) <http://www.cndhl.cm/index.php/organisation-de-la-cndhl/le-sp>  
(검색일: 2016.9.19.)

1276) <http://www.cndhl.cm/index.php/les-sous-commissions> (검색일: 2016.9.19.)

1277) <http://www.cndhl.cm/index.php/les-sous-commissions/sous-commission-n-2>  
(검색일: 2016.9.19.)

1278) <http://www.cndhl.cm/index.php/les-sous-commissions/sous-commission-n-3>  
(검색일: 2016.9.19.)

1279) <http://www.cndhl.cm/index.php/les-sous-commissions/sous-commission-n-4>  
(검색일: 2016.9.19.)

외 지역 책임자, 국가·지역 단위 선출직 지위에 있는 자, 선주민 지역 지도자(chefs traditionnels)는 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sup>1280</sup>).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조 4항에 근거해 수도인 야운데(Yaoundé)에 본부를 설립함<sup>1281</sup>).

동법 제1조 5항은 지역 사무소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sup>1282</sup>, 이에 따라 남동부 지부(Antenne Régionale du Sud-Ouest), 리토랄 주 지부(Antenne Régionale du Littoral), 북부 지부(Antenne Régionale du Nord), 아다마우아 지부(Antenne Régionale de l'Adamaoua), 남부 지부(Antenne Régionale du Sud), 북서부 지부(Antenne Régionale du Nord-Ouest) 등 6개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음<sup>1283</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위원회법 제1조는 위원회가 법인(personnalité juridique)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재정 독립성을 보장 받음을 명시함<sup>1284</sup>. 위원회 재정은 동법 제20조에 근거해 1) 정부가 배분하는 연간 예산 2) 국내 및 국제 협력 주체들의 지원 3) 후원과 유산 이렇게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마련됨<sup>1285</sup>. 인권자유위

---

1280) L.C.N.D.H.L. art.18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8조) : Ne peuvent être désignés présidents des sous-commissions : a) l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assimilés ; b) les sénateurs et les députés c) les magistrats en activité et le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 d) les responsables et personnels des forces de maintien de l'ordre ; e) les présidents et membres des conseils régionaux, les délégués du Gouvernement, les maires, les conseillers municipaux ou tout autre responsable des collectivités territoires décentralisées ; f) les personnes exerçant un mandat électif national, régional ou local ; g) les chefs traditionnels.

1281) L.C.N.D.H.L. art.1(4)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조 4항) : Son siège est fixé à Yaoundé

1282) L.C.N.D.H.L. art.1(5)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조 5항) : La Commission peut créer des antennes dans d'autres localités sur l'étendue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1283) <http://www.cndhl.cm/index.php/organisation-de-la-cndhl/antenne-regionale-du-sud-ouest> (검색일: 2016.9.19.)

1284) L.C.N.D.H.L. art.1(3)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조 3항) : La commission est dotée de la personnalité juridique et de l'autonomie financière.

1285) L.C.N.D.H.L. art.20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0조) : Les ressources de la Commission proviennent des - dotations inscrites chaque année au budget de l'Etat ; appuis provenant des partenaires nationaux et internationaux ; dons et legs.

원회 위원장이 매년 예산을 책정하면 위원회가 이를 채택한 후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예산이 확정됨<sup>1286</sup>. 위원회 예산은 국가 재정법(loi de finances)상 특별 기재 대상에 속함<sup>1287</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1288</sup>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대통령령(décret)을 내려 대통령이 임명함.

(나) 위원

위원은 총 30명으로, 고등법원 판사 출신 2인, 국회의장이 지명한 하원 의원 대표 4인, 상원의장이 지명한 상원 대표 2인, 변호사협회 대표 변호사 2인, 대학협회가 지명한 법학 교수 2인, 종교협회가 지명한 중

---

1286) L.C.N.D.H.L. art.23(1)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3조 1항) : Le projet de budget annuel et les plans d'investissement de la commission sont préparés par le Président, adoptés par la Commission et soumis à l'approbation du Premier Ministre dans le cadre de la préparation de la loi de finances.

1287) L.C.N.D.H.L. art.23(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3조 2항) : le budget de la commission fait l'objet d'une inscription spécifique dans la loi de finances.

1288) L.C.N.D.H.L. art.6(1)~(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6조 1~2항) : (1) La commission est composée de trente (30) membres ainsi qu'il suit :

Président : Une personnalité indépendante assistée d'un vice-président, tous nommé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Membres : 2 magistrats du siège représentant la cour suprême; 4 députés représentant l'Assemblée Nationale désignés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2 représentant du sénat désignés par le Président du Sénat; 2 avocats représentant le Barreau; 2 professeurs de droit désignés par la conférence des recteurs; 3 représentants des confessions religieuses, désignés par leurs pairs; 2 représentants des organisations des femmes régulièrement constituées, oeuvrant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choisis par leurs pairs; 2 représentants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ésignés par leurs pairs ; 1 représentant de l'Ordre National des Médecins du Cameroun; 2 journalistes représentant respectivement la presse publique et la presse privée; 4 représentant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chargées respectivement des affaires sociales, des affaires pénitentiaires, de la condition féminine.

(2)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nommé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es administrations, associations et organismes socioprofessionnels auxquels ils appartiennent, à la diligence d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교협회 소속 3인, 여성인권단체 출신 2인, 노동조합 출신 2인, 카메룬 국가의사협회 출신 1인, 공영언론과 민영언론 출신 2인, 행정부 중 사회부처, 형무부처, 여성부처를 대표하는 4인을 임명하며, 위원으로 임명될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행정부, 협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다)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위원회법 제11조를 따라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sup>1289</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위원회법 제12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대통령령이 규정한 정기적인 급여와 혜택을 받는다고 밝힘<sup>1290</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카메룬 인권위의 유일한 관할 부처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에게 인권위 위원 임명권에 관한 전권이 있음. 또한, 인권위는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함<sup>1291</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회법 제8조에 근거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 모두 5년간 임명되며, 같은 기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1292</sup>).

---

1289) L.C.N.D.H.L. art.11(1)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1조 1항) : Pour l'accomplissement de ses missions, la Commission est dotée d'un secrétariat Permanent dirigé par un secrétaire Général, nomm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1290) L.C.N.D.H.L. art.12(1)&(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2조 1~2항) : (1) le Président, le vice-président et le secrétaire général bénéficient d'une rémunération mensuelle et d'avantages particuliers. (2) le montant de la rémunération mensuelle du président, du vice-président et du secrétaire général de la commission, ainsi que celui et la nature des avantages particuliers visés à l'alinéa 1 ci-dessus sont fixé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1291) Eric Ngonji Njungwe, 「Brief comparison between South African and Camero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in 『Cameroon Journal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vol.1 June 2007, p.27

1292) L.C.N.D.H.L. art.8(1) (인권자유위원회법 제8조 1항) : le Président, le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위원들은 위원회법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질 상실, 위원 직위와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해임할 수 있음. 사망 또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대체자를 위원으로 임용함<sup>1293</sup>).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법이 명시하는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1) 인권 침해 진정 접수 및 조사

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 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 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을 접수함<sup>1294</sup>. 인권위법에 카메룬 인권위의 진정 시스템 절차, 진정 방법, 접수 및 각하 기준 등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한 조항이 부재하며, 이를 알 수 있는 보고서나 홍보물 또한 없음. 진정 접수 후 위원회는 동법 제2조에 따라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조사 작업을 실시함<sup>1295</sup>. 조사 작업을 위해 위원회 조사팀은 증인 출두 요청장 및 조사 허가증을 발행받을 수 있음<sup>1296</sup>. 위원회의 조사권은 위원회법 제3조에 근거해 모든 당사자들과 증인을 출두시킬 권한, 당국에 가택수사와 모든 증거자료 및 조

---

vice-Président et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nommés pour un mandat de cinq (5) ans renouvelable une fois.

1293) L.C.N.D.H.L. art.8(2)&(3) (인권자유위원회법 제8조 2~3항) : (2) leur mandat prend fin à la suite de la perte de la qualité qui avait motivé la nomination, ou encore par révocation à la suite d'une faute grave ou des agissements incompatibles avec la fonction de membres de la commission. (3) En cas de décès en cours de mandat ou dans toutes les hypothèses où un membre de la commission n'est plus en mesure d'exercer son mandat, il est pourvu à son remplacement par le chef de l'administration ou de l'organe qu'il représente, pour la période du mandat restant à couvrir.

1294)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La Commission a pour mission la promotion et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A ce titre, elle : reçoit toutes dénonciations portant sur les ca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e et des libertés; (…)

1295)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 diligente toutes enquêtes et procède à toutes investigations nécessaires sur les ca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et en fait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1296) CNDHL(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 『Rapport d'activité』2013, p.53

사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정보를 요청할 권한, 위원회의 조사가 현행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권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할 권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소송 절차에 개입할 권한을 포함함<sup>1297</sup>).

(2) 직권조사(Activités d'auto saisine)

위원회는 진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사안도 자체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함. 직권 조사는 언론 보도, 카메룬 시민단체 및 국제인권단체의 고발, 익명의 요청 등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위원회가 결정함<sup>1298</sup>). 직권조사에서 위원회는 진정 요청 조사와 마찬가지로 인권 및 자유 침해 사례에 필요한 모든 조사 작업을 수행함.

(3) 구금시설 방문

카메룬에서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구금시설 내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 생략되거나 무기한 지연된 재판, 재판 대기 중인 수감자의 무분별한 수감, 경찰의 부정부패 등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에 따른 형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sup>1299</sup>). 이에 대해 카메룬 인권위는 교도소와 교정시설을 비롯한 구금시설을 정기 방문해 조사를 실시함. 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구금시설 방문 조사 시 국가 감찰관(검사) 또는 그 대리인을 동행함. 또한, 조사 결과를

---

1297) L.C.N.D.H.L. art.3 (인권자유위원회법 제3조) : Pour l'accomplissement de ses missions, la commission peut, suivant les modalités fixées par son règlement intérieur : convoquer pour audition toutes parties et/ou tous témoins ; demander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e procéder à toutes perquisitions et exiger la présentation de tout document ou toute preuve conformément au droit commun ; saisir le Ministre chargé de la justice pour toute infraction relevée sur les matières rentrant dans le cadre de la présente loi ; fournir une assistance judiciaire ou prendre des mesures pour la fourniture de toute forme d'assistance, conformément aux lois en vigueur ; intervenir en tout état de cause, pour participer à la défense des intérêts des victimes des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1298) Id. p.54

1299) CNDHL(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 『Rappot sur l'état des droits de l'homme』2014, p.53

관련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 보고할 수 있음<sup>1300</sup>).

(4) 피해자 구제

인권위는 진정 접수에 따른 조사, 직권 조사 작업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를 도모함. 인권위법이 명시하는 구제 활동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소송 절차 개입 등이 있음(1번 항목 참조). 이러한 법적 도움의 일환으로 인권위는 구금시설에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지 못한 수감자를 위해 재조사 및 재판을 요청하고<sup>1301</sup>,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카메룬 사법 절차상 문제점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함<sup>1302</sup>. 또한, 필요한 경우 갈등 당사자 간 조정(médiation), 화해(conciliation), 갈등 해결 합의(d'accord de resolution)을 도모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 및 보상, 치유 등 비사법적 구제 기능을 수행함<sup>1303</sup>.

(5) 선거 감시

카메룬 인권위는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활동의 하나로 선거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선거 감시 역할을 수행함. 선거 전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고, 신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평가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해 시민권 및 참여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sup>1304</sup>.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지역에 위원들을 배치시켜 지역의 지원을 받아 정당들의 합법적인 유세 활동, 선거 과정에서 폭력 및 불법행위 발생, 카메룬 선거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 등을 감시함<sup>1305</sup>.

---

1300)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procède, en tant que de besoin, aux visites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des commissariats de police et des brigades de gendarmerie, en prés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e son représentant ; ces visites peuvent donner lieu à rédaction d'un rapport adressé aux autorités compétentes;

1301) CNDHL(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 『Rapport sur l'état des droits de l'homme』2014, p.23

1302) Id. p.26

1303) Id. p.99

1304) CNDHL(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 『Rapport d'activité』2013, p.56

1305) Id. p.57

(6)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 보호 기능과 함께 인권 증진 기능을 위원회에 부여함.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인권 관련법들을 대중에 알리고 교육과 홍보활동,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인권 존중 문화를 증진시킬 의무를 짐<sup>1306</sup>).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는 구급시설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시민단체들을 위한 국내 및 지역인권법, 국제인권법과 인권보호시스템에 관한 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아동인권에 관한 세미나, 법 집행 공무원들을 위한 고문 방지에 관한 교육 등이 있음.

(7) 홍보

위원회는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수행함. 카메룬 방송국과 공동으로 인권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 “기업 내 인권(Les droits de l’Homme en entreprise)”을 제작하기도 하고,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 “Born Free”와 “Tribune des Droits et Libertés”를 제작해 인권 교육 및 국내외 인권 사안을 대중에 알림<sup>1307</sup>). 특히, “Born Free”는 매거진 형식으로도 제작해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함<sup>1308</sup>).

(8) 연구

위원회법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 수행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sup>1309</sup>). 연구 보고서는 연구 성격의 보고서뿐 아니라 구체적인 침해 사례에 관한 직권조사 실시 후 작성한 보고서를 포함함. 위원회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로는 아프리카 아동의 인권현장 채택 이후 25년 조혼 근절을 위한 노력(25 ans après l’adoption de la Charte Africaine des Droits et

---

1306)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vulgarise par tous moyens, les instruments relatifs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et veille au développement d’une culture des droits de l’homme au sein du public par l’enseignement, l’information et l’organisation des conférences et séminaires;

1307) id. p.20

1308) <http://www.cndhl.cm/index.php/repository/bornfree/> (검색일: 2016.9.20.)

1309)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Etudie toutes questions se rapportant à la promotion et à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du Bien-être de l'Enfant : Accélérons nos efforts pour éliminer les mariages des enfants en Afrique), 경찰과 군대 방문 조사 보고서(Rapport General des Descentes dans les unité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du département du WOURI), 카메룬 설탕제조협회 방문 조사 보고서 (Rapport de la descente d'observation et d'investigation à la Société Sucrière du Cameroun), 남부 지역 선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캠페인 보고(Campagne de promotion et de défense des droits des peuples autochtones de la région du sud), 해양부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보고서(mission d'observation et d'investigation sur les cas préoccupant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épartement de l'Océan) 등이 있음<sup>1310</sup>).

(9)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 및 국제협력

인권위는 국제인권협약을 국내에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감시하며,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배포할 의무를 짐<sup>1311</sup>. 이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 차원의 협력 활동을 수행함. 또한, 이 같은 국제협력활동에 관한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함<sup>1312</sup>).

바) 특이사항

- (1) 카메룬 인권자유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침해 사례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조사 활동에는 위원회 자체 판단에 의한 직권조사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구금시설을 비롯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 작업을 실시하기도 함. 조사업무와 관련해 기소권이 있지는 않으나 위원회

---

1310) <http://www.cndhl.cm/index.php/repository/Rapports-dactivit%C3%A9s---Activites-reports/> (검색일: 2016.9.20.)

1311)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recueille et diffuse la documentation internationale relativ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1312) L.C.N.D.H.L. art.2 (인권자유위원회법 제2조) : assure la liaison, le cas échéant, avec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comités ou associations étrangères poursuivant des buts similaires ; elle en informe le Ministre chargé des relations extérieures.

는 필요에 따라 침해 사례와 관계된 당국에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고 증인 출두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법은 조사 기능에서 침해 사례 관련자가 증인 출두 요청 혹은 증거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성을 밝히고 있지 않음.

- (2)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카메룬 인권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거나 잘못된 판결 혹은 경찰에 의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정의 실현 성격이 강한 구제기능과 중재나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같은 비사법적 방식의 구제를 병행함.
- (3)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등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님. 이는 카메룬에서 선거와 관련한 폭력 행위, 부정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한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하며, 인권위는 이를 카메룬 국민의 시민권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 감시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함.
- (4) 위원회는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상원의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짐. 또한, 분기별 보고서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관할 행정부에 제출함<sup>1313</sup>. 카메룬 인권위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이지만 국회의장에게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국회에 출두해 의견 및 권고를 전달하거나 입법 과정에 대한 개입 권한은 적음<sup>1314</sup>. 위원회의 의견, 권고, 보고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대중에 공개해 시민의 감시 및 모니터링을 받음<sup>1315</sup>.

####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1313) L.C.N.D.H.L. art.19(1)~(3)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9조 1~3항) : (1) Dans le cadre de ses activités, la commission délibère, formule des recommandations, émet des avis et dresse des rapports. (2) la commission adresse un rapport annuel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au Président du Sénat. (3) la Commission adresse un rapport semestriel au Premier Ministre, et aux Ministres chargés de la justice et de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1314) Eric Ngonji Njungwe, 2007, p.26

1315) L.C.N.D.H.L. art.19(4) (인권자유위원회법 제19조 4항) : les délibérations, recommandations, avis et rapports de la Commission sont rendus publics, à la diligence de son Président.

가입한 이후, 2006년 10월 심사에서 B등급, 2010년 3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  
2015년 3월에 예정됐던 심사가 2016년 1차 심사로 미뤄짐<sup>1316)</sup>

### 39) 이집트

이집트 국가 정보 <sup>1317)</sup>	
면적	100.1만km <sup>2</sup>
인구	9,500만명 (2012년 기준)
수도	카이로(Cairo)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아랍어
주요종교	이슬람교(90%), 콥틱교(10%)
주요민족	
GDP	3,308억 달러(2015년)
	3,761 달러(2015년)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
- (2) 설립연도: 2003년 6월 19일<sup>1318)</sup>
- (3) 설립배경: 2003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의 아들 가말 무바라크 (Gamal Mubarak)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이 이집트에서는 최초로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이사회(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 설립 법안을 제안함. 2003년 6월 16일 이집트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국가인권이사회가 설립됨. 당시 대통령 무바라크와 이집트 정부는 부정부패와 폭정으로 시민들의 저항과 이집트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국내에서의 정부 이미지 개선과 국제적인 압력에 대한 대응을 해야 했음<sup>1319)</sup>. 설립 당시 이집트 국내 시민사회, 인권 전문가들과 협의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역할에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316)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1317) <http://egy.mofa.go.kr/korean/af/egy/policy/overview/index.jsp>

1318) <http://nchregypt.org/index.php/en/about-us/establishment.html> (검색일: 2016.9.21.)

1319) <http://carnegieendowment.org/sada/21591> (검색일: 2016.9.21.)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설립근거는 2003년 설립 당시 근거법이었던 “2003 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법 (Law No. 94 of 2003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과 “2014년 개정 이집트 헌법(Constitu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2014)”이라 할 수 있음. 2003년 6월 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는 2003 국가인권이사회 설립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상원 자문이사회 (Shoura Council)<sup>1320)</sup> 산하, 독립적인 법인(legal personality)격을 지닌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되었음<sup>1321)</sup>. 그러나 당시 헌법은 국가인권이사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2012년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사례를 검사에게 알리고 기소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함. 쿠데타 이후 2014년 개정 헌법은 인권이사회 기능적,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명시했으며, 특히 이사회 위원 활동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최초로 포함시킴<sup>1322)1323)</sup>.

1320) 과거 이집트 의회의 상원 자문기구로서 shoura는 영어로 consultative(자문)이란 뜻을 지님. 슈라이사회는 국가인권이사회 임명권을 가진 인권이사회를 관할하는 상부 조직이었으나, 2013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소멸됨.

(출처: Alkarama Foundation, 『The Egypt’s national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before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HRIs』, 2016, p.4)

1321) Law No. 94 of 2003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 (이하 L.N.C.H.R.) art.1

(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법 제1조) : A council named “The 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 under the auspices of the Shoura Council, shall hereby be established to further the protection, set the values, raise the awareness, and ensure the observance of human rights. The Council shall have a legal personality, have its headquarters in Cairo, and may have branches and offices in other Governorates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Council shall independently perform its duties, activities and functions.

1322) Alkarama Foundation, 2016, p.5

1323) Constitu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2014 art.214 (2014 개정 이집트 헌법 제214조) : The law shall specify the independent national councils, including the 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 the National Council for Women, the National Council for Childhood and Motherhood,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Disabled Persons. The law shall state the composition, mandates, and guarantees fo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ir respective members. Each council shall have the right to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ny violations pertaining to their fields of work. These councils shall have legal personalities and shall be technically, financially, and administratively independent. (…)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법인  
격의 독립적인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위원들과 위원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secretariat)을 비롯한 행정부서(units)로 구성됨. 위원들은 7개의 주제별 주요 위원회(permanent committee)에 소속되어 위원 활동을 수행함.

① 위원회(Permanent Committee)

이집트 인권이사회 소속 위원들이 인권 사안별 실질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로, 이사회내 핵심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mittee), 경제적 권리 위원회(Economic Rights Committee), 사회적 권리 위원회(Social Rights Committee), 문화적 권리 위원회(Cultural Rights Committee), 법무 위원회(Legislative Affairs Committee), 국제 사안 위원회(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진정 처리 위원회(Grievances Committee) 등 7개 주제로 분류 구성됨<sup>1324</sup>. 7개 위원회는 각각 사무국(secretariat of committee)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 사무국을 이끄는 수장은 인권이사회 위원 중 한 사람으로 1년간 임명되며 재임은 허용되지 않음<sup>1325</sup>.

1324) N.C.H.R.(이집트 인권이사회), Annual Report 2004, p.79

인권이사회법 제8조에 의하면 설립 당시에는 본래 고충처리 위원회(Grievances Committee)를 제외한 6개 위원회가 있었으나, 추후 고충처리 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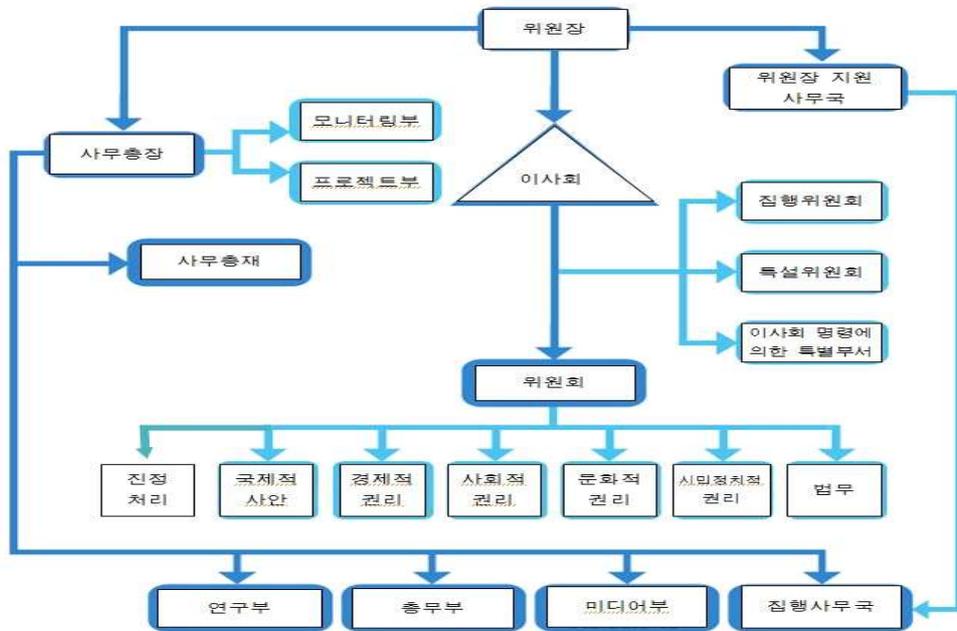
1325) L.N.C.H.R. art.8 (국가인권이사회법 제8조) : To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permanent committees shall be forme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as follows: 1.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mittee 2. Social Rights Committee 3. Economic Rights Committee 4. Cultural Rights Committee 5. Legislative Affairs Committee 6.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The Council may set up other permanent committees from among its members by a resolution adopted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its members. The Secretariat of each

②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는 인권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이사회 수장인 이사장(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행정적 수장으로 있으면서 7개 위원회 사무국(secretariats of committees) 및 이사회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의 업무 전반을 감독함<sup>1326</sup>).

③ 사무국(Secretariat)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으로 대표되는 조직으로, 이사회(Council)가 채택한 결정을 이행하고 이사회 전체의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지원함<sup>1327</sup>).



출처: 이집트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nhregypt.org/index.php/en/about-us/secretariat.html>

[이집트-그림 28] 이집트 인권위원회 조직도

committee shall be headed by one member of the Council's members.

1326) Id.

1327) L.N.C.H.R. art.9 (국가인권이사회법 제9조) : The Council shall have a Secretary-General who shall be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and personal affairs, and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ncil.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이사회법 제1조에 근거, 이집트 수도 카이로(Cairo)에 본부를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sup>1328</sup>).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소하그(Suhag), 베니수에프(Beni-Suef), 이스마일리아 (Ismailia), 카프르엘셰이크(Kafr El Sheikh), 포트사이드 (Port-Said), 아리시(Arish) 등 6개 도시에 지역사무소(regional branch)를 설치함<sup>1329</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이사회 설립법 제14조는 예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sup>1330</sup>, 제11조는 정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배분받음을 명시함<sup>1331</sup>). 예산 마련 근거로, 제12조에 의거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할당받으며, 이사회 정족수 2/3가 찬성하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기부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예산 및 외부 지원과 기부에 의한 예산은 모두 위원회의 인권 분야 활동과 이집트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관련 활동에 쓰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짐. 또한,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예산은 이집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gypt)의 통제 하에 이 은행 특별 계좌를 통해 집행됨<sup>1332</sup>. 인권이사회 연간보고서는 예

---

1328) L.N.C.H.R. art.1 (국가인권이사회법 제1조) : (...) The Council shall have a legal personality, have its headquarters in Cairo, and may have branches and offices in other Governorates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

1329)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지역사무소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nchregypt.org/index.php/en/media-center/news/946-the-national-council-for-human-rights-opens-new-branches.html> (검색일: 2016.9.22.)

1330) L.N.C.H.R. art.14 (국가인권이사회법 제14조) : The Council shall issue regulations to organize its work, and regulations to organize its technical secretariat and personne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In furtherance thereof, the Council shall not be bound by any governmental systems.

1331) L.N.C.H.R. art.11 (국가인권이사회법 제11조) : The Council shall have a separate budget that includes its income and expenses.(...)

1332) L.N.C.H.R. art.12 (국가인권이사회법 제12조) : The Council's resources shall consist of: 1. Funds allocated in the general budget of the state to the Council. 2. Grants, donations, and allowances that the Council accepts by a majority vote of at least two-thirds of its members. 3. State allocations including grants and allowances that are directed to human rights fields and pursuant to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with the Arab Republic of Egypt. A special account shall be opened for the proceeds of such resources at a bank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Bank of Egypt. The surplus in such an account shall be carried

산 및 결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예산보고서에는 분기별로 정부에서 배분받은 예산과 더불어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IRCT),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사무소(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ECID) 등 외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포함하며, 총 예산은 정부 예산(75.7%), 외부 지원금(25%)의 비율로 구성됨<sup>1333</sup>).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재정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나, 2014년 개정 헌법은 활동의 독립성과 함께 재정 독립성을 명시함으로써 헌법에 근거한 독립성을 보장함<sup>1334</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권이사회법 제2조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2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함. 2003년 설립법에 의하면 상원 자문이사회(Shoura Council)가 인권 분야에서 경험과 관심을 갖고 기여한 인물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임명함<sup>1335</sup>). 2011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심사에서 ICC는 이집트 인권이사회 임원 선임 절차 및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언급함<sup>1336</sup>). “인권 분야에서 경험과 관심을 갖고 기여한 인물”이라는 기준

---

forward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to the budget of the Council for the subsequent year.

1333) N.C.H.R.(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Annual Report 2011』, p.177

1334) Constitu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2014 art.214 (2014 개정 이집트 헌법 제214조) (각주 7 참조)

1335) L.N.C.H.R. art.2 (국가인권이사회법 제2조) :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a Chairman, one Deputy Chairman, and 25 public figures well known for their experience and interest in human rights' issues, or for their distinguished performance in this field. The Deputy Chairman shall substitute for the Chairman in the latter's absence. A decree of the Shoura Council shall establish the Council for three years.

이 모호하며 특정한 자격이나 구체적 경험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위원 임명권을 가졌던 상원 자문사회가 2013년 쿠데타 이후 해체됨에 따라 2013년 이후로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근거법에 의한 이사회 외부의 공식적인 임명 조직이 아닌 이사회 내부집행위원회(executive branch)의 투명하지 않고 임의적인 자체 결정에 의해서 위원을 임명했음. 개정 인권이사회법에 관한 법안(a draft law amending Law n°94 of 2003)이 2016년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안은 임원 선임 절차 개정 조항을 포함함<sup>1337)</sup>.

(나) 위원

위 항목과 동일함.

(다)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인권이사회법 제9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위원들 가운데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음. 사무총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과 같은 임기인 3년간 임명되며 재임에 관한 항목은 없음. 사무총장은 이사회 위원과 다른 지위를 가지며 투표권 없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음<sup>1338)</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지위에 관한 조항과 이를 알 수 있는 자료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설립 당시, 상원 자문사회(Shoura Council)은 위원 임명권을 갖는 동시

---

1336) Alkarama Foundation, 2016, p.6

1337) Id. p.7

1338) L.N.C.H.R. art.9 (국가인권이사회법 제9조) : The Council shall have a Secretary-General who shall be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and personal affairs, and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ncil. The aforesaid shall be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the Council. A decision by the Council shall appoint the secretary general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or otherwise.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that is equal to the term of the Council. If the Secretary-General is a person other than a Councilmember, he may attend its meetings without having a right to vote.

에 인권이사회가 예산 내역과 함께 활동을 보고하는 조직이었음<sup>1339</sup>). 그러나 2013년 상원 자문이사회가 해체됨에 따라 이 같은 종속성은 없어짐.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에 관한 언급은 없음<sup>1340</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인권이사회법상 해임과 사임, 위원 결격 사유, 면책 등에 관한 조항 없음.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인권 사안과 관련한 권고 및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인권자문기구 성격이 강함. 2003 인권이사회법과 2014 개정 헌법에 근거한 인권이사회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1) 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제공

이집트 인권이사회가 가장 비중을 두는 활동은 정부에 인권 관련 법률 혹은 정책에 국가인권기구로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로, 이는 인권이사회법 제3조 2항과 3항에서 명시함<sup>1341</sup>). 2014 개정 헌법 제214조 역시 인권이사회가 정부의 인권 사안과 관련한 모든 정책적 업무에서 정부와 협의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함<sup>1342</sup>). 2011년 이집트 시민혁명 발발 후 2012년에 인

1339) L.N.C.H.R. art.13 (국가인권이사회법 제13조) : The Council shall prepare an annual report concerning its efforts and activities and shall incorporate therein recommendations the Council deems appropriate within its functions. The Council shall present such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head of the People's Assembly and the head of the Shoura Council.

1340) L.N.C.H.R. art.2 (국가인권이사회법 제2조) : (각주 20 참조)

1341) L.N.C.H.R. art.3(2)&(3) (국가인권이사회법 제2조 2~3항) : (...) 2. Provide competent bodies with recommendations and advice on all means to protect further and promote human rights. 3. Provide opinions, recommendations, and advice on matters referred to i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bodie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1342) 이집트 헌법(2014 개정) 제214조 이집트 인권이사회가 정책관련 갖는 권한에 관한 조항 Article (214)

The law shall specify the independent national councils, including the 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 the National Council for Women, the National Council for Childhood and

권이사회는 두 차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sup>1343</sup>). 또한, 2013년 쿠데타 이후로는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다수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비판 의견 및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sup>1344</sup>).

(2) 인권 침해 진정(claim) 접수 및 조사(fact finding mission)

인권이사회법 제3조 4항은 인권 침해 진정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권한을 부여함<sup>1345</sup>). 이사회는 본부를 비롯해 지역사무소에서도 진정을 접수해왔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접수도 받고 있음<sup>1346</sup>). 이사회는 진정 접수 후 조사 작업(fact-finding mission)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권고를 함. 2004년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훈련 받은 직원과 정비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진정 사무소(Grievance Bureau)를 설치해 진정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사회 내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진정 처리 위원회

---

Motherhood,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Disabled Persons. The law shall state the composition, mandates, and guarantees fo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ir respective members. Each council shall have the right to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ny violations pertaining to their fields of work. These councils shall have legal personalities and shall be technically, financially, and administratively independent. They shall be consulted with respect to the bill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ir affairs and fields of work.

더 많은 조문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http://www.constitutionnet.org/sites/default/files/dustor-en001.pdf>) (검색일: 2016.11.08)

1343) N.C.H.R.(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011』, p.158

1344) Alkarama Foundation, 2016, p.9

1345) L.N.C.H.R. art.3(4)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4항) : Receive and examine complaints concern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fer, at its discretion, any such complaints to the competent bodies and follow-up with them, advise the parties concerned with the matter of the legal procedures to be followed and assist them in such regard, or settle such complaints with the relevant bodies.

1346) 이집트 인권이사회에의 접수와 관련하여 더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nchregypt.org/index.php/en/component/content/article/135-media-center/press-releases/836-a-partnership-agreement-between-the-council-and-the-european-union.html> (검색일: 2016.9.22.)

(Grievance Committee)로 자리 잡아 진정 접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  
옴<sup>1347)</sup>.

위원회 조사 활동(fact-finding mission)은 정부를 비롯하여 인권 침해 가  
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2011년 시민혁명 당시에도  
시위 및 집회 진압 과정의 인권 침해,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종파갈등, 파업현장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수행했음<sup>1348)</sup><sup>1349)</sup>.

### (3) 피해자 구제

인권이사회법 제3조 4항은 진정 접수에 따른 조사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피  
해자가 구제를 받도록 지원하는 이사회 역할에 밝히고 있음. 그러나  
2003 인권이사회법은 이와 관련한 법적 효력, 조사 및 권고의 법적 강제성  
을 명시하지 않음. 가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처벌 가능성  
이나 가해자 기소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사회 인권 침해 조사에 대  
해 정부가 답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음<sup>1350)</sup>. 2014년 개정 헌법은 이사  
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이사회 조사 권한을  
강화했는데, 개정 헌법 제99조는 진정과 관련하여 인권이사회가 검사에 기  
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침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sup>1351)</sup>.

### (4) 구금시설 방문 조사

인권이사회법상 이사회는 구금시설 방문 조사와 관련한 권한 및 기능을  
부여받지 않으나, 그간 이집트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구금시설 방문 조사를 수행해옴<sup>1352)</sup>. 이사회는 구금시설 방문 조사

1347) N.C.H.R.(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004』, p.82

1348) N.C.H.R.(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011』, p.118-119

1349) [http://nchregypt.org/index.php/en/media-center/news/915-2012-02-09-09-28-09.h  
tml](http://nchregypt.org/index.php/en/media-center/news/915-2012-02-09-09-28-09.html) (검색일: 2016.9.22.)

1350) Alkarama Foundation, 2016, p.13

1351) Constitu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2014 art.99 (2014 개정 이집트 헌법 제  
99조) : (...) file a complaint with the Public Prosecution of any violation of these  
rights, and it may intervene in the civil lawsuit in favour of the affected party at  
its request. (...)

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와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자의적 구금,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례를 조사함. 조사 후 국제인권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서는 가해자 기소 요청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sup>1353</sup>). 또한, 조사에 따른 권고 후에는 책임 주체의 권고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조사 작업 결과를 모두 공적으로 출간 함<sup>1354</sup>).

(5) 선거 감시

이사회법은 선거 감시와 관련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는 선거 지원부 (Election Support Unit)를 설치해 이집트 내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 및 폭력 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함<sup>1355</sup><sup>1356</sup>).

(6) 인권 교육

이사회법 제3조 10항은 인권 교육, 문화적 활동, 미디어 등을 활용해 대중의 인권 의식을 증진시키고 이집트 내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킬 임무를 부과함<sup>1357</sup>). 인권 교육 대상으로서 특히,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공무를 담당하는 정부 소속 공무원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함<sup>1358</sup>).

1352) Alkarama Foundation, 2016, p.12

1353) <http://nchregypt.org/index.php/en/media-center/news/1405-the-nchr-visits-el-qanater-women-prison.html> (검색일: 2016.9.22.)

1354) Alkarama Foundation, 2016, p.12

1355) N.C.H.R.(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Annual Report 2011』, p.159

1356) 인권이사회의 선거감시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다음 링크를 참조  
<http://nchregypt.org/index.php/en/media-center/news/1537-the-national-council-for-human-rights-demands-the-high-commissioner-for-elections-to-extend-the-period-of-the-receipts-of-requests-of-civil-society-organizations.html>  
(검색일: 2016.9.22.)

1357) L.N.C.H.R. art.3(10)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10항) : Disseminate and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culture of human rights through the assistance of institutions and organs related to education, culture, media and information.

1358) L.N.C.H.R. art.3(12)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12항) : Make the recommendations necessary to support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apacities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of employees of the state

(7)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행사

인권 증진(promo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 보호(protection of human rights)와 함께 인권이사회의 주요 목표이며,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설립 초기부터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인권 보호 기능 대신 인권 증진 활동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예상되었음. 이러한 인권 증진 활동으로서 이사회는 정부 부처, 시민사회, 국제 및 지역 기구, 국제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왔음. 2016년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이집트 NGO법안(draft NGO law)을 논의하고, 2011년 이집트 시민혁명과 2013년의 쿠데타 및 일련의 유혈 사태 이후 전환기 정의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함<sup>1359)</sup>.

(8) 국제인권협약 비준 및 이행 감시

인권이사회법 제3조 5항에 따라 이사회는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관련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정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sup>1360)</sup>. 지역 및 국제인권보호시스템의 인권 보장 활동에 협조하며<sup>1361)</sup> 이러한 기능의 일환으로 이집트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집트 정부가 비준한 인권협약을 관장하는 조약기구에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함. 또한, 인권 사안과 관련한 지역회의 및 국제회의에 이집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권한을 가짐<sup>1362)</sup>.

---

bodies related to civil libertie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ith a view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uch employees.

1359) Alkarama Foundation, 2016, p.10

1360) L.N.C.H.R. art.3(5)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5항) : Monito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s and conventions, as well as provide the concerned authorities with the proposals, notes, and recommendations necessary for the proper application of such agreements and conventions.

1361) L.N.C.H.R. art.3(6)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6항) : Coordinate with international and loc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concerned in human rights in matters that would help achieve the objectives of and promote the relationships of such organizations and agencies with the Council.

1362) L.N.C.H.R. art.3(7)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7항) : Participate with Egyptian delegations in forums and meetings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are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바) 특이사항

- (1)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이에 따른 권고 활동을 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초기에는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고 현실적으로 이사회에의 침해 사례 관련 권고 기능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시기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등 강한 권한을 갖지 못했음. 그러나 이집트 인권이사회는 최근 몇 년간 정부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조사 작업 및 보고서 작성 임무를 수행해옴. 2014년 헌법 개정과 함께 이집트 인권이사회에의 조사 권한이 일부 강화되었고, 2016년 인권이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사회는 법적 권한과 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됨.
- (2) 이집트 인권이사회 활동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정부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자문 역할로, 정책 자문 역할 중 중요한 기능은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sup>1363)</sup>, 이사회는 2004년부터 내무부, 외교부, 법무부(ministries of the interior, foreign affairs and justice), 검찰(General Prosecutor Office)과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해 행동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집트 시민사회와도 협력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옴<sup>1364)</sup>.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6년 10월 심사에서 B등급, 2010년 3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 2015년 3월에 예정됐던 심사가 2016년 1차 심사로 미뤄짐<sup>1365)</sup>.

1363) L.N.C.H.R. art.3(1) (국가인권이사회법 제3조 1항) : (...) Prepare and propose the means of implementation for a national action plan designed to furthe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1364) N.C.H.R.(이집트 국가인권이사회), 『Annual Report 2004』, p.158

136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 40) 모리타니

모리타니 국가 정보 <sup>1366)</sup>	
면적	1,030,700km <sup>2</sup>
인구	370만 명(2015년 기준)
수도	누악쇼트(Nouakchott)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아랍어(국어), 불어, 아프리카어(엘로프, 소닌케 등)
주요종교	이슬람교(수니파)
주요민족	백인계 무어(아랍-베르베르, 30%), 아프리카계 무어족(40%), 아프리카계(30%)
GDP	47억 달러(2015년)
	1,282달러(2015년)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모리타니 국가인권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CNDH)

###### (2) 설립연도: 2006년 7월 12일

(3) 설립배경: 2005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2003년에 선출된 타야(Taya) 대통령이 축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전환기 정부(gouvernement de la transition)를 구성함. 2005년에 정부와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Haut Commissariat des Nations Unies aux Droits de l'Homme),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 UNDP)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2006년 7월 12일 모리타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Ordonnance n°2006-015 du 12 Juillet 2006 portant institution d'un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 당시 인권위의 가장 큰 목표는 쿠데타와 유혈사태 이후 전환기 정부 수립의 안정적인 국면 속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인권위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간 발생한 인권 침해를 규명하는 동시에 사회를 통합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음<sup>1367)</sup>.

1366)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0/1\\_23102.jsp?menu=m\\_40\\_60\\_20#contentAction1](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0/1_23102.jsp?menu=m_40_60_20#contentAction1) (검색일: 2016.9.27.)

1367) C.N.D.H.(모리타니아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08-2009』, p.9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설립 근거는 2006년 위원회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Ordonnance n°2006-015 du 12 Juillet 2006)였음. 대통령령은 2010년 7월 20일 국회가 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이하, 인권위원회법 Loi n°2010-031 du 20 Juillet 2010)을 통과시킴에 따라 독립성과 인권 및 국제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보호와 증진 기능을 강화한 근거법을 갖게 됨. 이는 2009년 ICC 심사에서 기존의 대통령령이 대통령에 대한 예측성으로 인해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 참고한 결과였음. 2012년에는 정부가 2012 모리타니 개정 헌법(Loi Constitutionnelle n°2012-015 portant revision de la Constitution du 20 juillet 1991) 제97조<sup>1368</sup>)에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원회는 헌법 기구의 지위를 갖게 됨<sup>1369</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위원회는 이라비아 압델 웨두(Irabiha Abdel Wedoud) 위원장을 수장으로, 크게 의사결정기구인 총회(assemblée plénière)와 위원장 업무 및 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위원장 사무실(bureau permanent), 위원들이 활동하는 조직인 5개의 부위원회(sous-commission),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secrétariat)로 구성됨.

(가) 인원 및 부서

① 총회(Assemblée plénière)

1368) Loi Constitutionnelle n° 2012-015 art.97 (모리타니 2012 개정 헌법 제97조) :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st l'Institution consultative indépendante de promotion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La composition, l'organisation et le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sont fixés par une loi organique.

1369) Alkarama, 『L'institut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de la République islamique de Mauritanie devant le Comité international de coordination des INDH』, 2016, p.4

총회는 위원회법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계획 등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과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1년에 두 차례 개최함. 총회는 위원장의 소집 명령, 또는 전체 위원의 2/3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열리며 위원회 내규(règlement intérieur)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을 채택함<sup>1370)</sup>.

- ② 위원장 사무실(Bureau permanent ou Bureau de la Commission)  
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을 이행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위원회 활동과 주로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임. 위원장 및 5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요청에 따라 3개월에 최소 1회 소집 가능함<sup>1371)</sup>. 사무국은 인권 프로그램 및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총회 일정을 정하며, 부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그룹 활동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특히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함. 또한, 인권 사안 관련 연구 및 조사 작업을 담당하며 위원회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를 작성함.

③ 부위원회

5개의 부위원회는 각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장(président de la

---

1370) Loi n°2010-031 du 20 Juillet 2010 portant institution d'un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L.C.N.D.H. art.21 (2010 인권위원회법 제21조) : L'assemblée plénière est l'organe de conception et d'orientation de la Commission. Elle comprend le Président et les membres de l'institution. Elle se réunit en session ordinaire deux fois par an. L'Assemblée plénière se réunit en session extraordinaire sur convocation du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es 2/3 des membres ayant voix délibérative. Les avis et décision sont adoptés par vote majoritair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 règlement intérieur.

1371) L.C.N.D.H. art.23 (2010 인권위원회법 제23조) : Le Bureau de la Commission, composé de cinq membres y compris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se réunit en session ordinaire au moins une fois par trimestre, et en tant que de besoin sur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Le Bureau est chargé notamment : - de l'élaboration des programmes et de la coordination des activités de la Commission ainsi que de l'établissement de l'ordre du jour des réunions de la Commission : - de l'assistance technique aux travaux de la Commission, des sous Commissions et des groupes de travail, notamment par l'élaboration, le suivi et l'évaluation des plans d'action de promotion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 des activités d'études et de recherches en matière de droits de l'homme, notamment par la préparation des rapports annuels ou spécifiques élaborés par la Commission.

sous-commission) 1인과 특별 보고서 작성 및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권고를 담 당하는 보고관(rapporteur) 1인, 나머지 3인으로 구성됨. 보고관은 반드시 위원 회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함<sup>1372</sup>).

부위원회(sous-commission) 활동 <sup>1373</sup>	
법률 위원회 Sous Commission des Affaires Juridiques	위원회 법률 업무를 담당함.
인권증진 및 보호 부위원회 Sous Commission dite de Promotion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진정 접수 및 처리, 침해 당사자 정보 전달 및 조사 등 침해 사례 진정 요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함.
커뮤니케이션 부위원회 Sous Commission de communication	미디어, 대중 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를 담당함.
조정과 화해 부위원회 Sous Commission de Médiation et de Conciliation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조정자이자 중개자로서 인권 보호 및 시정 조치를 정부에 제안, 피해자 구제, 인권 사안에 관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 시스템 개발, 정부와 시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권고, 국가 침해 조정기구(Services du Médiateur de la République)와 협력하여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임무 등을 수행함.
인권사안부위원회 Sous Commission des droits catégoriels	사안별 인권 증진 활동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약자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인권 의식 증진, 장애인· 아동·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활동 도모 등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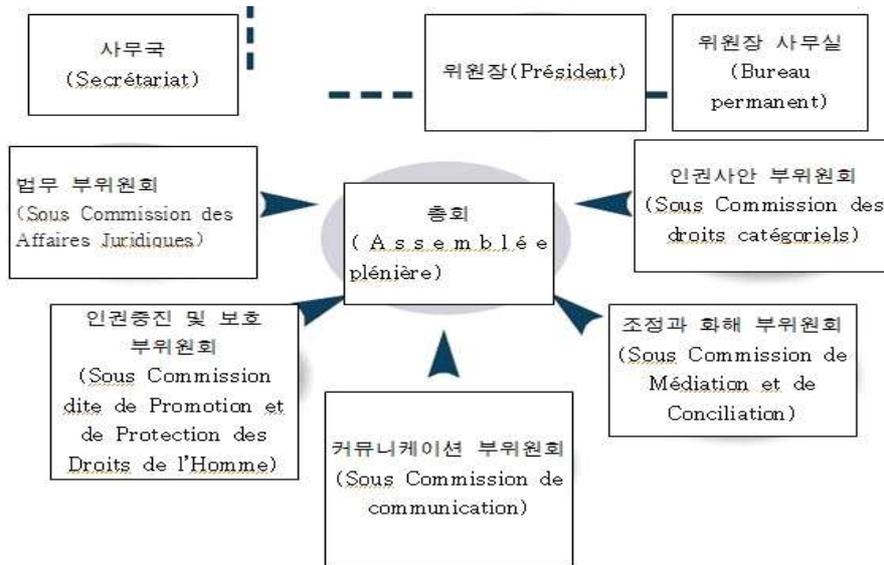
#### ④ 사무국(Secrétariat)

사무총장을 총 책임자로 하여 위원회의 행정조직으로서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원함. 사무총장은 투표권 없이 총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짐. 사무국은 위원장 사무실과 달리, 총회가 채택한 결정

1372) L.C.N.D.H. art.24 (2010 인권위원회법 제24조) : Les sous-commissions sont chargées d'étudier des questions spécifiques, d'élaborer des rapports sur les questions qui leur sont confiées ou de proposer toutes les recommandations utiles. La Commission peut nommer, en son sein, un rapporteur spécial chargé de lui présenter un rapport ou des recommandations sur des situations de violations graves des droits de l'homme. La Commission peut recourir, de manière ponctuelle et en cas de besoin, aux services d'experts.

1373) <http://www.cndh.mr/index.php/2014-03-08-01-10-34> (검색일: 2016.9.23.)

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 지원이 아닌 위원회 활동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 사무실의 연간보고서 작성에서 한 해 예산의 지출과 결산 부분을 담당함<sup>1374)</sup>.



출처: 모리타니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ndh.mr/>

[모리타니-그림 29] 조직도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현재 모리타니의 수도 누악쇼트(Nouakchott)에 본부를 설립했으며<sup>1375)</sup>. 위원회 사무국 예산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sup>1376)</sup>.

1374) L.C.N.D.H. art.26 (2010 인권위원회법 제26조) : Secrétaire Général qui assure le Secrétariat de la Commission sans droit de vote, est responsable des tâches administratives nécessaires a la réalisation des objectifs de la Commission. Il veille à la préparation des rapports du Bureau et de la Commission ainsi qu'à l'élaboration du budget annuel. Il assiste sans droit de vote aux réunions du bureau et de l'assemblée plénière de la Commission.

1375) L.C.N.D.H. art.3 (2010 인권위원회법 제3조) : Le siège de la Commission est établi à Nouakchott. (...)

1376) L.C.N.D.H. art.27 (2010 인권위원회법 제27조) : L'Etat met à la disposition de la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위원회법 28조는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위원회는 위원회기능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 관련한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과의 연계하에 정부 예산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함.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Ministre des finances)이 임명하는 공공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동 조항에 따라 인권위는 기부, 증여, 보조 등의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sup>1377</sup>). 모리타니 인권위는 연간보고서 또는 홈페이지에 예산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노동부(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ur)”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모리타니 인권위원회의 2015년 예산은 318,180 달 러(약 3억 5,289만 원)으로 확인됨<sup>1378</sup>). 이에 대해 ICC 심사 위원회는 부족한 예산이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예산 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음<sup>1379</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위원장과 위원들은 다음의 두 카테고리로 나뉘어 임명하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아닌 기관(au titre des institutions) 소속으로서 투표권(voix délibérative)을 가지는 위원들<sup>1380</sup>), 두 번째는 행정부(au titre des administrations) 소

---

Commission le personnel administratif dont elle a besoin. Toutefois, la Commission peut procéder, en cas de nécessité et dans la limite des crédits budgétaires, au recrutement de personnels répondants à un besoin particulier.

1377) L.C.N.D.H. art.28 (2010 인권위원회법 제28조) : La Commission élabore son budget en rapport avec les services techniques compétents de l'Etat et l'exécute conformément aux règles de la comptabilité publique. Les crédits nécessaires au fonctionnement et à l'accomplissement des missions de la Commission font l'objet d'une inscription autonome dans le budget général. Ils sont autorisés dans le cadre de la loi de finance. La Commission peut recevoir les moyens provenant d'autre sources, notamment des dons, legs et subventions. La comptabilité de la Commission est tenue par un comptable public nommé par le Ministre des Finances.

1378) Alkarama, 2016, p.12

1379) Id.

1380) L.C.N.D.H. art.11(1) (2010 인권위원회법 제11조 1항) : La Commission comprend un Président et les membres ci-après : 1) au titre des institutions, des

속으로서 투표권 없이 협의권(voix consultative)만을 가지는 비상임 위원들을 임명함<sup>1381</sup>). 투표권을 갖는 상임 위원들로는, 국회(하원)에서 지명하는 하원 의원 1인, 상원에서 지명하는 상원 의원 1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1인,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선출한 대표 6인(아동인권단체 대표 1인, 여성인권단체 대표 1인,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1인, 무슬림 종교학회 대표 1인, 중앙노동조합 대표 2인), 변호사협회가 지명하는 변호사 대표 1인, 언론인협회가 선출한 언론인 대표 1인, 교수협회가 지명하는 교수 대표 1인,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 분야에 자질과 능력을 갖춘 4인, 이렇게 총 16명을 임명함. 협의 지위를 갖는 비상임위원들로는, 대통령 자문위원 1인, 국무총리 자문위원 1인, 외교부 대표 1인, 법무부 대표 1인, 내무부 대표 1인, 여성부 대표 1인, 인권담당 부처 대표 1인 등 총 7인을 임명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임명될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 및 정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décret du Président)

---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de la société civile, et avec voix délibérative :  
 un député désigné par l'Assemblée Nationale;  
 un sénateur désigné par le Sénat;  
 un magistrat de siège désigné par la Cour Suprême;  
 six représentants élus par l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de droits de l'homme dont un représentant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 l'enfant, un représentant des organisations de promotion et de défense des droits de la femme, et un représentant des ONG de défense des droits des personnes souffrant d'un handicap ; un représentant de l'Association des Oulémas : deux représentants élus par les centrales syndicales ;  
 un représentant désigné par l'Ordre National des Avocats ;  
 un représentant élu par l'Associations des Journalistes ;  
 un représentant désigné par l'Université, Professeur de droit ;  
 quatre personnalités qualifiées choisies intuitu personae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raison de leur compétence en matière des droits de l'homme.

1381) L.C.N.D.H. art.11(2) (2010 인권위원회법 제11조 2항) : au titre des administrations, et avec voix consultative :  
 un conseiller à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  
 un conseiller au premier ministère ;  
 un représentant du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et de la Coopération ;  
 un représentant du Ministère de la Justice ;  
 un représentant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  
 un représentant du Ministère chargé de la Condition Féminine ;  
 un représentant du département en charge des Droits de l'Homme.

을 내려 대통령이 임명함<sup>1382</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은 동법 제15조에 근거해 인권위원회 위원장 외 어떤 시민단체 및 군, 민영 및 공공기관, 정치 조직, 모든 공직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그러나 급여 및 대우와 관련해서는 정부 소속 공무원이 받는 급여와 혜택을 공무원과 같은 자격으로 받음<sup>1383</sup>). 위원들은 제16조에 따라 임기 동안 정치적 지향을 지닌 집단에 속할 수 없으며, 이 제한은 상임 위원 중 국회 대표 2인은 예외로 함. 위원들은 분기별로 총회 참석에 보인 성실성과 효과적인 기여도에 따라 보상 급여를 받는데, 이러한 보상 체계는 모리타니 경제사회위원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 구성원들에 적용하는 체계에 바탕을 두었음<sup>1384</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위원들은 어떤 당국의 지시도 받지 않음<sup>1385</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동법 제13조는 위원장 및 위원들은 3년간 임명하며 같은 기간으로 한 번의

---

1382) L.C.N.D.H. art.12 (2010 인권위원회법 제12조) : Le Président et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désigné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es administrations, institution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de la société civile concernées.

1383) L.C.N.D.H. art.15 (2010 인권위원회법 제15조) : Les fonctions d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sont incompatibles avec l'exercice de tout mandat politique, de tout emploi privé ou public, civil ou militaire, de toute activité professionnelle ainsi que de toute fonction de représentation nationale. Au titre de ses fonctions,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reçoit des émoluments et avantage identique à ceux octroyés aux membres du gouvernement.

1384) L.C.N.D.H. art.16 (2010 인권위원회법 제16조) : Les fonctions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incompatibles avec l'appartenance aux organes dirigeants des partis politiques.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reçoivent, par cession, une indemnité de présence subordonnée à leur participation effective et assidue aux réunions de l'assemblée plénière. Cette indemnité est alignée sur celle allouée aux membres d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1385) L.C.N.D.H. art.14 (2010 인권위원회법 제14조) : Aucun membre de la Commission ne peut être poursuivi, recherché, arrêté, détenu ou jugé pour des opinions ou votes émis par lu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même après la cessation de celles-ci. Dans l'exercice de leurs attributions,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ne reçoivent d'instruction d'aucune autorité.

재임이 가능함을 명시함<sup>1386</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과 위원들은 임무 수행 동안 이들이 표현한 의견 또는 총회에서의 투표 때문에 조사·체포·구금·재판을 받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이 같은 의견 및 투표와 관련된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적용함<sup>1387</sup>).

사임을 제외하고는, 위원장 포함 위원들은 중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 능력 저하, 타당한 이유 없는 연속적인 불참, 위원으로서 자격 상실 등의 해임 사유가 위원회 내규에 따라 위원장 사무실(bureau de la Commission)의 심사를 거쳐 검토되었을 때 해임될 수 있음. 위원의 임기 완료 전 해임 또는 사임 시, 대체 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의 임무를 수행함<sup>1388</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

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서두에서 모리타니 인권위의 주요 임무를 정부의 인권 자문, 감시, 침해 사례의 조정(mediation) 역할임을 요약 제시하고 있음<sup>1389</sup>). 모리타니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인권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자문 기관이나, 침해 사례에 대한 개인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활동을 함께 수행함.

(1) 인권 정책 및 법률 자문

국가인권자문기구로서 모리타니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계된 사안에 국제인권기준과 개인 및 집단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자문을

---

1386) L.C.N.D.H. art.13 (2010 인권위원회법 제13조) : Le Président et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nommés, pour un mandat d'une durée de trois ans, renouvelables une fois. (…)

1387) Id.

1388) L.C.N.D.H. art.17 (2010 인권위원회법 제17조) : Sauf démission, il ne peut être mis fin aux mandats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qu'en cas de fautes graves, de défaillance ou d'empêchements constatés par le bureau de la Commiss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règlement intérieur.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nommés en remplacement de ceux dont les fonctions ont pris fin avant leur terme normal, achèvent le mandat de ceux qu'ils remplacent.

1389) L.C.N.D.H. art.4 (2010 인권위원회법 제4조) : La Commission est un organe de conseil, d'observation, d'alerte, de médiation et d'évaluation en matière de respect des droits de l'homme et du droit humanitaire.

제공하며, 구조적인 대규모 인권 침해 사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 인권 자문기구로서 위원회는 인권 관련 국내 법률 및 법안 계획에 의견을 제공함<sup>1390</sup>). 위원회는 2014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하고, 시민지위법(Code du Statut Personnel)상 미성년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강제 결혼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sup>1391</sup>). 그러나 정책 자문 역할에서 위원회는 모리타니 정부에 인권 관점에 근거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모리타니에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모리타니 아프리카계 흑인들에 대한 대규모 고문, 실종, 살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모리타니 정부가 이 시기 인권 침해에 연루된 가해자들을 전원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loi n° 93-23 1993)을 도입함. 2013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ité contre la torture)의 모리타니 정부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회는 이 법안의 개정 및 폐기를 권고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연간보고서 또는 조약 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음<sup>1392</sup>).

## (2) 구금시설 방문

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구금시설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위원회 임무 중 하나로 명시함<sup>1393</sup>). 위원회는 모리타니 수도인 누악쇼트 및 지역을 포함해 방문 예정인 구금시설에 사전 통보 후 교도소, 경찰서 내 구치소, 정신병원 등을 방문해 시설의 위생 상태, 수감자들의 건강, 가혹행위 여부, 미성년 수감자 수와 이들의 인권 상황 등을 조사하고 이 같은 사

1390) L.C.N.D.H. art.4 (2010 인권위원회법 제4조) : Dans ce cadre, la Commission a, principalement pour mission de : - donner, à la demande du Gouvernement, ou sur sa propre initiative, un avis consultatif sur les questions d'ordre général ou spécifique se rapportant à la promotion et à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au respect des libertés individuelles et collectives ; elle porte une attention particulière aux violations massives des droits de l'homme.

1391) C.N.D.H.(모리타니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4-2015』, p.28

1392) Alkarama, 2016, p.5-6

1393) L.C.N.D.H. art.4 (2010 인권위원회법 제4조) : (...) Visiter de manière inopinée tous l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et lieux de garde à vue afin de s'assurer du respect des droits de personnes privées de liberté.

안에 대해 권고함<sup>1394</sup>).

(3) 인권 침해 진정 접수 및 조사, 피해자 구제

인권 침해 진정 및 조사에 관련된 기능은 인권위법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모리타니 인권위는 홈페이지 및 팩스, 방문 요청 등을 통해서 진정 접수를 받고 조사 후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활동을 수행해옴<sup>1395</sup>. 2013-2014년 기간에는 2,487건의 진정 요청을 접수했고<sup>1396</sup>, 2014-2015년에는 3,432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됨<sup>1397</sup>. 위원회는 진정 요청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대해, 책임 당국에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상·배상·치유 조치를 요청하며, 재판 등의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소송 지원을 하고 당사자 간 조정(médiation)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고 연간보고서에서 보고함. 2014-2015년, 위원회는 총 80건의 침해 사례와 관련해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고함<sup>1398</sup>. 그러나 그 외에 진정 접수 및 조사 활동, 구제 권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인권 침해 종류, 연도별 진정 건수, 각하 및 기각 건수, 조정 및 중재를 통한 해결 건수 등)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례별로 어떤 구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지 않음<sup>1399</sup>).

(4)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비준 촉구 및 이행 감시

모리타니 인권위는 인권자문기구로서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비준 후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감시하며, 정부가 비준한 협약을 관할하는 유엔 조약기구 심사에서 정부의 인권 상황 보고서 제출을 지원함<sup>1400</sup>. 인권위는 특히 모리타니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노예

1394) C.N.D.H.(모리타니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3-2014』, p.37-43

1395) 모리타니 인권위원회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cndh.mr/index.php/2014-03-08-01-10-34/25-blog-venez-a-la-cndh/42-qu-est-que-une-plainte> (검색일: 2016.9.27.)

1396) C.N.D.H.(모리타니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Rapport Annuel 2013-2014』, p.5

1397) Alkarama, 2016, p.8

1398) C.N.D.H.(모리타니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Rapport Annuel 2014-2015』, p.47

1399) Id.

1400) L.C.N.D.H. art.4 (2010 인권위원회법 제4조) : (...) - encourager la ratification des instruments juridiques de droits de l'Homme. - contribuer en tant que de besoin

제 관행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해 국내법상 노예제를 처벌하고 완전히 폐지하도록 권고해왔고, 모리타니 정부는 2013년에 처음으로 노예제를 형사 처벌하는 법을 도입하고 2014년에는 노예제 관행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인 “노예제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로드맵 (Feuille de route sur la lutte contre les séquelles de l’esclavage)”을 출범 시킴<sup>1401)</sup>.

(5) 인권 증진 활동(인권 존중 문화 형성, 인권 교육)

인권위는 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국내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교육, 홍보를 통해서 대중의 인권 의식을 증진시키고 인권 존중 문화를 형성할 의무를 짐. 특히 모든 형태의 차별 폐지, 인간 존엄 훼손, 인종차별 및 노예제, 성차별 등의 주제에 집중함<sup>1402)</sup>. 2015년에는 위원회 진정 제도를 알리고 인권위 활동을 알리기 위한 3분 분량의 홍보 영상을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제작해 방송 광고로 송출했으며, 누악쇼트 대학(Université de Nouakchott)와 과학 기술 의과대학 (Université des Sciences, des Technologies et de Médecine)에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법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권협약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함<sup>1403)</sup>.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세미나, 시민사회와의 토론회 같은 행사를 다수 개최하는 등 대중

---

à la préparation des rapports que l’Etat doit présenter devant les organes et comités des Nations Unies et des institutions régionales conformément à ses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 - promouvoir la coopération dans le domaines des droits de l’homme avec les organes des Nations Unies, les institutions régionales, les institutions nationales des autres pays ainsi qu’avec l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nationales et internationales ; (…)

1401) C.N.D.H.(모리타니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3-2014』, p.26-27

1402) L.C.N.D.H. art.4 (2010 인권위원회법 제4조) : (….) contribuer, par tous moyens appropriés, à la diffusion et en l’enracinement de la culture des droits de l’homme ; - promouvoir la recherche, l’éducation et l’enseignement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dans tous cycles de formation et dans les milieux socioprofessionnels ; - faire connaître les droits de l’homme et lutte contre toutes les reformes de discrimination et d’atteinte à la dignité humaine, notamment la discrimination raciale, les pratiques esclavagistes et les discriminations à l’égard des femmes, en sensibilisant l’opinion publique par l’information, la communication et l’enseignement, et en faisant appel à tous les organes de presse ;

1403) C.N.D.H.(모리타니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Rapport Annuel 2014-2015』, p.45-49

의 인식 개선을 통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추진해옴<sup>1404</sup>).

바) 특이사항

- (1) 위원회는 국가인권자문기구로서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동시에 정부를 감시하 면서 인권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모리타니 인권위원회법 제9조는 모리타니 공화국 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 행정·사법·교도 담당 정부 부처, 국내 안보 및 치안 담당 부처, 노동 부처, 인권의 증진과 보호 담당 정부 부처들과 협력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sup>1405</sup>). 위원회 활동 보고서 역시 위원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인권 침해 보호 의무 실패 및 책임을 묻는 역할보다는 자문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냄.
- (2) 위원회법 제6조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대통령에게 매년 국내 인권 상황과 개선을 위한 권고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대중에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함<sup>1406</sup>). 인권위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는 인권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등 국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sup>1407</sup>).
- (3) 개인 진정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ICC 심사위원회 및 국제인권단체인

---

1404) Id. p.51-56

1405) L.C.N.D.H. art.9 (2010 인권위원회법 제9조) : La Commission établit, en accord avec les autorités concernées, des mécanismes de concertation, de coopération et de coordination avec les services suivants : - 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 services chargés de la promotion et d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 services relevant de l'Administration Judiciaire et pénitentiaire; - services chargés du maintien de l'ordre et de la sécurité publics; - services chargés de l'Administration du travail; (…)

1406) L.C.N.D.H. art.6 (2010 인권위원회법 제6조) : La Commission adresse annuelle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rapport sur la situation nationale en matière de droits de l'homme. Le rapport fait l'état des lieux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Pays et formule des recommandations pour leur amélioration. Ce rapport est rendu public.

1407) 모리타니인권위원회가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cndh.mr/index.php/2014-03-08-01-10-34/2-non-categorise/152-le-president-de-l-assemblee-nationale-recoit-le-rapport-annuel-de-la-cndh> (검색일: 2016.9.27.)

Alkarama가 지적한 바 있듯<sup>1408)</sup> 모리타니 국가인권위는 개인 진정 제도와 관련한 권한을 근거법을 통해서 보장받아야 하고 조사 권한, 기소 요청, 권고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더욱 강한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9년 11월 심사에서 B등급, 2011년 5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1409)</sup>.

41) 가나

가나 국가 정보 <sup>1410)</sup>	
면적	238,537km <sup>2</sup>
인구	2,633만 명('15.7 잠정, CIA)
수도	아크라(Accra)
정치형태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민족	Akan, Ewe족 등
주요언어	영어(공용어, 70%), Twi어, Ewe어 등
주요종교	기독교(71.2%), 회교(18.4%)
GDP	GDP : 379억불('15, World Bank)
	1인당 GDP : 1,381불('15, World Bank)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가나 인권·행정정의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 CHRAJ)

(2) 설립연도<sup>1411)</sup>: 1993년 7월

(3) 설립배경<sup>1412)</sup>: 가나 인권·행정정의위원회의 설립은 1992년 가나 헌법(1992 Constitution of Ghana)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456호(Act 456)에 의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음. 위원회는 옴부즈맨과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 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책임감 있고 투

1408) Alkarama, 2016, p.17

140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1410)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2/1\\_22476.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2/1_22476.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9.19.)

1411)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19.)

1412)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19.)

명한 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음.<sup>1413)</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1414)</sup>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헌법 18장 216조에서는 헌법 발효 후 6개월 이내로 인권·행정정의위원회의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동 헌법 18장 전반에 걸쳐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등을 정하고 있음.<sup>1415)</sup>

(나) 1993년 7월에 제정된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립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기본권의 침해, 부패, 권력의 남용(abuse of power), 공무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에 의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며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기능을 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1416)</sup>:

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장과 두 명의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통치기구(governing body)를 구성하며 각 부서의 장이 이들을 지원함. 위원회에는 총 4개의 부서가 있음: 법률 및 조사국(Legal and Investigations), 반부패국(Anti-Corruption), 공공교육국(Public Education), 재무 및 행정국(Finance and Administration)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417)</sup>: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

1413) [http://www.chrajghana.com/?page\\_id=25](http://www.chrajghana.com/?page_id=25) (검색일: 2016.9.19.)

1414)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19.)

1415) 인권위원회의 헌법적근거를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ghanaweb.com/GhanaHomePage/republic/constitution.php?id=Gconst18.html> (검색일: 2016.9.23.)

1416) [http://www.chrajghana.com/?page\\_id=29](http://www.chrajghana.com/?page_id=29) (검색일: 2016.9.19.)

1417) [http://www.chrajghana.com/?page\\_id=29](http://www.chrajghana.com/?page_id=29) (검색일: 2016.9.19.)

10조에 근거하여 가나의 지역 사무소가 설치됨.<sup>1418)</sup> 위원회의 본부는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Accra)에 위치하고 있음<sup>1419)</sup>. 위원회는 가나의 10개 행정구역에 각각 위치한 10개의 지역지부(Regional Offices)를 두고 있음. 또한 전국에 2개의 소지역(Sub-Regional) 사무소와 99개의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s)를 두고 있음.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420)</sup>: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 7조 2항<sup>1421)</sup>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수행한 조사로 인한 지출은 전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담함.<sup>1422)</sup> 위원회는 정부 보조금과 외부 단체의 지원금으로 예산을 충당함. 위원회는 2010년 정부로부터 Gh¢7,579,504 (한화로 약 21억 원)의 보조금과 DANIDA로부터 GH¢1,506,473 (한화로 약 4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음.

<가나-표 6> 가나 인권·행정정의위원회 정부 보조금

2009		2010	
승인된 예산 (Approved)	집행된 예산 (Released)	승인된 예산 (Approved)	집행된 예산 (Released)
Gh¢ 5,163,323.34 (한화 약 14억 5천만 원)	Gh¢ 5,002,337.38 (한화 약 14억 원)	Gh¢ 7,579,504.00 (한화 약 21억 원)	Gh¢ 6,471,462.97 (한화 약 18억 1천만 원)

출처: 2010년 가나 인권·행정정의위원회 연례보고서

1418) 모리타니 인권위원회법 제10조

The CHRAJ Act (Act 456) 10.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Region and District of Ghana Regional and District branches respectively of the Commission

(2) There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an officer who shall be the head of a Regional or District branch of the Commission.

(3) The Commission may create such other lower structures as would facilitate its operations.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23.)

1419) [http://www.chrajghana.com/?page\\_id=31](http://www.chrajghana.com/?page_id=31) (검색일: 2016.9.19.)

1420) [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 (검색일: 2016.9.20.)

1421) 모리타니 인권위원회법 제7조 제2항

7. (2) All costs and expenses related to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Commission into a complaint shall be borne by the Commission

1422)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23.)

라) 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1423)</sup>

-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 1장과 헌법 70조 1항<sup>1424)</sup>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국무원(Council of State)과 상의하여 위원장(Commissioner) 1명과 부위원장(Deputy Commissioner) 2명을 임명함. 위원장은 상소법원 판사(Justice of the Court of Appeal)의 임명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고등법원 판사(Justice of the High court)의 임명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여야 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음. 헌법 226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직원의 임명은 위원회가 공직 위원회(Public Services Commission)과 협의하여 임명함<sup>1425)</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 4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은 상소법원 판사(Justice of the Court of Appeal)의, 부위원장은 고등법원 판사(Justice of the High court)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1423)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19.)

1424) 가나헌법 제70조 제1항

70 (1) The President shall, ac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of State, appoint- (a)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 and his Deputies;

(b) the Auditor-General;

(c) the District Assemblies Common Fund Administrator;

(d) the Chairmen and other members of -

(i) the Public Services Commission;

(ii) the Lands Commission;

(iii) the governing bodies of public corporations;

(iv) a 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howsoever described; and

(e) the holders of such other offices as may be prescribed by this Constitution or by any other law not inconsistent with this Constitution.

<https://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31976/101268/F1513408204/GHA31976.pdf> (검색일: 2016.9.19.)

1425) 가나헌법 제 226조. 임명과 관련한 조항

The appointment of officers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by the Commission ac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Services Commission.

<http://www.ghanaweb.com/GhanaHomePage/republic/constitution.php?id=Gconst18.html> (검색일: 2016.9.23.)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426)</sup>: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른 사람 혹은 기관(authority)의 지시 혹은 통제를 받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은 70세에 도달했을 시점에, 부위원장은 65세에 도달했을 시점에 임기를 종료함.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회는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조사와 관련한 정보의 요청, 관련자의 출석 요구,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sup>1427)</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428)</sup>

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 인권 인식 증진 활동, 연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감.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 (가)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내 전역의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함. 정확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는 구금시설, 병원, 학교, 지역 사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sup>1429)</sup>
- (나) 개인은 차별,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가정폭력, 불법 체포, 강제 혼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발생 사건을 위원회에 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인권이 침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빠른 시일 내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접수는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함. 사건을 접수할 때 관련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관련 자료,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락처, 원하는 해결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함.
- (다) 접수된 불만 혹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위

1426) 위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혹은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427) [http://www.chrajghana.com/?page\\_id=23](http://www.chrajghana.com/?page_id=23) (검색일: 2016.9.23.)

1428) [http://www.chrajghana.com/?page\\_id=43](http://www.chrajghana.com/?page_id=43) (검색일: 2016.9.23.)

1429) [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 (검색일: 2016.9.23.)

위원회는 관련 기관 혹은 개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정보, 기록, 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하지만 위원회는 법원(court or Judiciary tribunal)에 계류 중인 사건, 가나 정부와 다른 국가의 정부 혹은 국제 기구 사이에 발생한 사건, 대통령이 사면권(prerogative of mercy)을 행사한 사건을 다룰 수 없음.<sup>1430)</sup>

(라) 위원회는 조직적 혹은 문화적인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함.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조사 과정에서 연구, 현장 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함.<sup>1431)</sup>

##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

(가) 위원회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함. 또한 제정된 법률과 시행중인 정책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며 이를 통해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함.<sup>1432)</sup>

(나) 위원회는 국가 정책 모니터링과 연구 활동을 통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초기의 위협 신호를 감지하고, 정부·국제사회·일반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3) 인권 문화 확산

(가) 위원회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강화함. 2010년 기준 학생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3000건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기본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함. 또한 300개가 넘는 학교에 ‘인권과 청렴 동아리(Human Rights and Integrity Clubs)’를 설립 및 유지하고 있음.<sup>1433)</sup>

1430) [http://www.chrajghana.com/?page\\_id=43](http://www.chrajghana.com/?page_id=43) (검색일: 2016.9.23.)

1431) [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 (검색일: 2016.9.23.)

1432) [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 (검색일: 2016.9.23.)

1433) [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

(4)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

(가) 위원회는 대중들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 행동 지침서(best practice guidelines)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와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의 활동을 연구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5) 인권 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sup>1434</sup>

위원회는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후 적당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인권·행정정의위원회법(CHRAJ Act, Act 456)에서는 위원회에게 접수된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mediation), 협상, 공판(hearing) 등의 해결방법을 취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판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6) 행정 정의 실현

(가) 위원회는 헌법 218조에 근거하여 옴부즈맨의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 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각 부처의 신뢰 할 수 있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감독함.

(나) 위원회는 공공 기관 혹은 공무원의 임의성, 차별, 권력 남용, 부공정한 대우 등과 관련한 행정 실책(maladministration)으로 인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함. 또한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s Commission), 정부 행정 기관, 군대(Ghana Armed Forces), 경찰(Ghana Police Service), 교도소(Ghana Prison Service)의 구조, 인사채용, 행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을 조사함.

(7) 부패 척결

(가) 위원회는 3가지 접근방식(예방, 조사, 교육)을 기준으로 부패에 대응하

---

(검색일: 2016.9.23.)

1434) [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http://chrajghana.com/wp-content/uploads/2012/08/Annual_Report_2010.pdf)

(검색일: 2016.9.23.)

는 역할을 함. 부패 사건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또한 공무원들에게 공익과 사익의 충돌 상황에 대한 지침서(Guidelines on Conflict of Interest)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함. 또한 위원회는 반부패 기본계획(National Anti-Corruption Action Plan, NACAP)의 수립에 기여하며 가나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나) 2006년에 제정된 내부고발자법(Whistleblower Act 2006, Act 720)에 근거해 확인된 부당한 행위(경제범죄, 낭비, 부당경영, 공공자원의 유용, 환경파괴)와 내부고발자가 겪은 피해(victimization)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바) 특이사항

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상소법원 판사, 부위원장은 고등법원 판사로 제한하여 그 인적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함. 또한 옴부즈맨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인권위원회에서 정부기관의 부패와 관련한 활동도 감찰가능. 위원회는 대부분의 활동에 관하여 조사가능 하지만 법원(court or Judiciary tribunal)에 계류 중인 사건, 가나 정부와 다른 국가의 정부 혹은 국제기구 사이에 발생한 사건, 대통령이 사면권(prerogative of mercy)을 행사한 사건은 다룰 수 없음.

####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1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8년 11월, 2014년 3월 심사에서도 A 등급을 유지함.<sup>1435)</sup>

---

1435)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16.)

## 42) 탄자니아

탄자니아 국가 정보 <sup>1436)</sup>	
면적	942,849km <sup>2</sup>
인구	5,105만 명('15.7 잠정)
수도	다레살람(Dar es Salaam, 경제·행정수도), 도도마(Dodoma, 정치수도)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민족 <sup>1437)</sup>	수쿠마족, 하야족, 니아큐사족, 니암웨지족
주요언어	스와힐리어, 영어
주요종교	이슬람교(35%), 기독교(30%), 토속종교(35%)
GDP	GDP : 449억불('15)
	1인당 GDP : 865불('15)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CHRAGG)
- (2) 설립연도: 2002년 3월<sup>1438)</sup>
- (3) 설립배경: 법률대책위원회(Legal Task Force)의 보고서와 1998에 키상가 판사(Justice Robert H. Kisanga)가 정부 백서(Government White Paper no.1 of 1988)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의 영향으로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었음. 당시 정부 백서(Government White Paper no.1 of 1988)에 대해 다른 보고서와 대중논의에서는 조사 상임 위원회(Permanent Commission of Enquiry)의 장단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인권과 행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의 설립이 결정되었음.<sup>1439)</sup>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는 1977년 탄자니아 헌법의 13차 개헌(13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o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77)에 근거하여 설립 됨. 이후 제정된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법(Commission for Human

1436)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54.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54.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9.23.)

1437)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9E%90%EB%8B%88%EC%95%84> (검색일: 2016.9.23.)

1438)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organisation-background> (검색일: 2016.9.25.)

1439) <http://www.chragg.go.tz/index.php/frequent-asked-questions> (검색일: 2016.9.25.)

Rights and Good Governance Act No. 7 of 2001)이 발효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이 결정되었으며 2002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sup>1440)</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는 2000년 제3호 법(Act No.3 of 2000)에 의해 개정된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of 1977) 제 129조 1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sup>1441)</sup>

(나) 2001년 5월에 제정된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법(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Act No. 7 of 2001)은 헌법 6장 1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기능, 권한, 특권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sup>1442)</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기구(Independent Government Department)<sup>1443)</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 위원회는 위원장(Chairman), 부위원장(Vice-Chairman)과 5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됨. 대통령은 위원회와 상의하여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을 임명함.<sup>1444)</sup> 위원회 사무국에는 6개의 부서가 있음: 인사 및 행정부(Personnel and Administration Division, DAP), 인권 (조사)부(Human Rights (Investigations) Division ,DHR), 행정정의(조사)부(Administrative Justice (Investigations) Division,

---

1440)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organisation-background> (검색일: 2016.9.25.)

1441) [http://www.chragg.go.tz/docs/mun/CHRAGG\\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0\\_2014\\_Final.pdf](http://www.chragg.go.tz/docs/mun/CHRAGG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0_2014_Final.pdf) (검색일: 2016.9.26.)

1442) [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 (검색일: 2016.9.25.)

1443)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organisation-background> (검색일: 2016.9.25.)

1444) [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 (검색일: 2016.9.25.)

DAJ), 법률서비스부(Legal Services Division, DLS), 연구 및 기록부 (Research and Documentation Division, DRD), 공공교육 및 훈련부 (Public 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 DET). 각 부서에는 부서장 (Director)이 있으며 소분과로 나뉨. 부서와 별도로 4개의 팀이 있음: 재무 및 회계(Finance and Accounts), 내부감사(Internal Audit), 정보 시스템관리(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조달관리 (Procurement Management).<sup>1445)</sup>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본부는 수도인 다레살렘(Dar es Salaam, Haki House)에 있음. 이 외에도 다레살렘에 두 개의 지역사무소(Twiga House, Tancot)를 포함해 므완자(Mwanza, Lake Zone), 린디(Lindi, South Zone), 잔지바르(Zanzibar Branch)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sup>1446)</sup>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447)</sup>: 위원회의 예산은 의회에서 배당한 정부 예산과 국내외 기관으로부터의 기여금으로 구성됨. 위원회는 수입과 지출 회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하며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연례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함. 위원회는 매년 장관(Minister)에게 당해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며 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함.

라) 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1448)</sup>

-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대통령은 임명위원회(Appointment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임명함. 위원의 후보 선정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며 장관(Minister)은 임명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위원장은 고등법원 및 상소법원의 판사 자격에 준하는 자여야 함.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다른 지역 출신의 인사를

1445)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organisation-background> (검색일: 2016.9.25.)

1446) <http://www.chragg.go.tz/index.php/contact-us> (검색일: 2016.9.25.)

1447) [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 (검색일: 2016.9.25.)

1448) [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 (검색일: 2016.9.25.)

임명함. 위원은 인권, 법률, 정부, 정치, 사회 현안과 관련한 깊은 관여, 지식,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함.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1449)</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 혹은 기구(authority)의 지시 혹은 통제를 받지 아니함.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재임할 수 있음. 위원은 65세에 퇴임함.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450)</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451)</sup>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가) 위원회는 모든 인권침해 혹은 실정(mal-administration)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혹은 개인·단체가 접수한 불만에 근거하여 사건 조사에 착수함. 하지만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지 24개월이 지났을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 하지 않음.

(나)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불만을 접수 받은 위원회는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며 이들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줌.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련자에게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장소의 수색을 진행할 수 있음.

(다) 위원회는 탄자니아 대통령 혹은 잔지바르 대통령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이를 포함해 위원회는 사법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 탄자니아 정부와 다른 국가의 정부 혹은 국제기구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면권(prerogative of mercy),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결정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또한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에

---

1449) 위원의 지위는 관련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450) 면책 관련 조항 없음.

1451) [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  
(검색일: 2016.9.25.)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

- (라) 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등의 이유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보다 기밀을 유지할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 (마) 위원회는 인권 침해 혹은 실정으로 인한 피해 사건 조사를 종료 한 후 사건 해결을 위한 협상 혹은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관련인 혹은 관련 기구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권고함.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재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음.
- (바) 위원회는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short messaging system)를 현존하는 불만 처리 시스템(Complaint Handling System)에 도입하여 대중들의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킴. 늘어나는 휴대폰 사용 인구 현황에 따라 SMS 기술을 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일반 대중들은 SMS통해 즉각적으로 편리하게 자신의 사건을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sup>1452)</sup>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sup>1453)</sup>

- (가)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국제 협약 및 조약의 가입을 촉구하며 가입한 국제 인권 규약과 국내법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국내의 국제인권규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며 인권과 굿거버넌스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을 권고함.<sup>1454)</sup>
- (나) 인권 및 굿거버넌스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함. 이 과정에서 정부에게 인권 및 굿거버넌스의 원칙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권고함.

---

1452) <http://www.chragg.go.tz/index.php/our-projects/sms-campaign-awareness>  
(검색일: 2016.9.25.)

1453)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services-we-provide> (검색일: 2016.9.26.)

1454) [http://www.chragg.go.tz/docs/mun/CHRAGG\\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0\\_2014\\_Final.pdf](http://www.chragg.go.tz/docs/mun/CHRAGG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0_2014_Final.pdf) (검색일: 2016.9.26.)

(3) 인권 문화 확산

(가) 위원회는 대중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과 굿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함.<sup>1455)</sup>

(나) 인권과 굿거버넌스와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관에 자문 제공.<sup>1456)</sup>

(4) 국제교류 활동

위원회는 아프리카 지역 내 인권 및 굿거버넌스 기구들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화시키고 지식·정보·자원을 공유함.<sup>1457)</sup>

(5) 행정 정의 실현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법(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Act No. 7 of 2001) 39조<sup>1458)</sup>에서 조사 상임 위원회(Permanent Commission of Enquiry)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 기구가 맡았던 공공기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 기능을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가 이어 받아 위원회는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함.<sup>1459)</sup>

바) 특이사항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나 그 자격요건을 고등/상소법원 판사로 제한하여 다양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며, 조사권한에 있어

---

1455)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services-we-provide> (검색일: 2016.9.26.)

1456)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functions> (검색일: 2016.9.26.)

1457) <http://www.chragg.go.tz/index.php/features-mainmenu-47/style-and-layout-options/services-we-provide> (검색일: 2016.9.26.)

1458)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Act No. 7 of 2001, article (39) The Permanent Commission of Enquire Act, 1996 is repealed. ( 1996년 조사 상임 위원회법을 폐지함.) [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http://aoma.ukzn.ac.za/Libraries/Newsletters_2011/Tanzania_Chragg_Act.sflb.ashx) (검색일: 2016.9.26.)

1459) [http://www.chragg.go.tz/docs/mun/CHRAGG\\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0\\_2014\\_Final.pdf](http://www.chragg.go.tz/docs/mun/CHRAGG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0_2014_Final.pdf) (검색일: 2016.9.26.)

서는 진정받은 사안에 한하여 국익 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 서면이나 인터넷, 전화 외에도 SNS를 통한 진정도 가능함.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3년 A등급으로 GANHRI 가입 후 2006년 10월, 2011년 10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1460</sup>).

### 43) 잠비아

잠비아 국가 정보 <sup>1461</sup>	
면적	752,614km <sup>2</sup>
인구	1,507만명('15.7 잠정)
수도	루사카(Lusaka)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민족	반투족(95%)
주요언어	영어(공용어)
주요종교	기독교(70%), 이슬람교, 토착신앙
GDP	GDP : 221억불('15)
	1인당 GDP : 1,361불('15)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HRC)
- (2) 설립연도<sup>1462</sup>: 1997년 3월
- (3) 설립배경: 제2공화국(second republic, 1972-1991)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된 문야마 조사위원회(Munyama Commission of Inquiry)는 인권 위원회의 설립을 정부에 권고하였음.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상설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한 조사위원회와 함께 1996년에는 헌법 검토 위원회(Mwanakatwe Constitution Review Commission)도 상설 인권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음.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1996년에 개정된 1991년 헌법 7부 125조에 인권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1460)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16.)

1461)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18.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18.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9.26.)

1462) <https://www.hrw.org/reports/1997/zambia/Zambia-05.htm> (검색일: 2016.9.27.)

내용이 포함되었음.<sup>1463)</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1464)</sup>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1996년에 개정된 1991년 헌법 7부 제 125조에 인권위원회의 설립, 독립성, 자율성(autonomy)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 헌법 126조에서는 인권위원회의 기능, 권한, 구성,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2016년 제2호 법(Act No 2 of 2016)에 근거하여 헌법은 개정되었으며, 개정 헌법 230조에서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동 헌법 216조, 238조, 241조, 242조에서도 인권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sup>1465)</sup>

(나) 1996년에 개정된 1991년 헌법의 126조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법(Chapter 48 of the Laws of Zambia, Human Rights Commission Act No. 39 of the Laws of Zambia)이 제정되었음. 동법에서 인권위원회의 기능, 권한, 구성, 예산, 행정절차, 인사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1466)</sup>

(가) 인원 및 부서: 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됨.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함. 사무국 내에서는 3개의 국(Department)이 있음: 정보·교육·훈련(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조사 및 법률서비스(investigation and legal services), 연구 및 기획(research

1463) <http://www.hrc.org.zm/index.php/our-history> (검색일: 2016.9.27.)

1464) <http://www.hrc.org.zm/index.php/our-history> (검색일: 2016.9.27.)

1465) 개정된 헌법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parliament.gov.zm/sites/default/files/documents/amendment\\_act/Constitution%20of%20Zambia%20%20\(Amendment\),%202016-Act%20No.%202\\_0.pdf](http://www.parliament.gov.zm/sites/default/files/documents/amendment_act/Constitution%20of%20Zambia%20%20(Amendment),%202016-Act%20No.%202_0.pdf) (검색일: 2016.9.27.)

1466) <http://www.hrc.org.zm/index.php/about-us/structure> (검색일: 2016.9.27.)

and planning). 국(Department) 이외에도 인사 및 행정(human resource and administration)과 재무회계(finance and accounting) 부서(Section)가 있음. 그리고 조달관리(procurement and supplies), 내부 감사(internal audit),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s and evaluation) 단(Unit)이 있음. 위원회 내에는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동 위원 사무소(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OCC)를 특별히 설치하여 운영 중임.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467</sup>: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에 본부를 두고 있음. 치파타(Chipata), 카사마(Kasama), 리빙스톤(Livingstone), 몽구(Mongu), 은돌라(Ndola)에 지역사무소(Provincial Office)을 두고 있음.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468</sup>: 위원회의 예산은 정부의 지원금, 기여금(grants and donations), 그리고 위원회의 귀속 재산 및 이월예산으로 구성됨. 위원회는 대통령의 동의하에 다른 재원으로부터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대여금을 활용할 수 있음.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가 구성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함.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재무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함.<sup>1469</sup> 2012년 인권위원회의 총 수입은 11,519,939,287과차 (한화로 약 24억 3천만 원)이었음. 이 중 정부의 지원금은 10,612,619,306과차 (한화로 약 22억 4천만 원)으로 총 수입의 92%임.<sup>1470</sup>

라) 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1467) <http://www.hrc.org.zm/index.php/contacts> (검색일: 2016.9.27.)

1468) <http://www.parliament.gov.zm/sites/default/files/documents/acts/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9.27.)

1469) Human Rights Commission Act, Part IV FINANCIAL AND OTHER PROVISIONS(채정 및 기타 조항) art.22 (1) The funds of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such moneys as may- (a)be appropriated by Parlia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be paid to the Commission by way of grants or donations; and (c)vest in or accrue to the Commission art.22 (2) The Commission may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 President- (a)accept money by way of grants or donations from any source; and (b)raise by way of loans or otherwise, such moneys as it may require for the discharge of its functions.

1470) <http://www.hrc.org.zm/index.php/publications/annual-reports/file/116-hrc-annual-report-2012> (검색일: 2016.9.28.)

등<sup>1471)</sup>

-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들이 위원장(Chairperson)과 부위원장(Deputy Chairperson)을 정함.<sup>1472)</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1473)</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등: 위원회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어 개인이나 기관(authority)의 지시 혹은 통제를 받지 않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하여야 하며 재임할 수 있음.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474)</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475)</sup>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인권침해 및 실정(maladministration)으로 인한 피해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

- (1) 국내 인권문제 조사<sup>1476)</sup>
  - (가) 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 혹은 개인·단체의 불만접수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단, 위원회는 조사 진행에서 필요한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함.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을 전달함. 관련 기관은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침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취한 행동을 위원회에 보고함. 2012년 기준 고용 및 노동권과 관련한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음.<sup>1477)</sup>

1471) <http://www.parliament.gov.zm/sites/default/files/documents/acts/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9.27.)

1472) <http://www.hrc.org.zm/index.php/about-us/structure> (검색일: 2016.9.27.)

1473) 위원의 지위는 헌법 및 인권위원회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474) 위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및 인권위원회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475) <http://www.hrc.org.zm/index.php/publications/annual-reports/file/116-hrc-annual-report-2012> (검색일: 2016.9.27.)

1476) <http://www.parliament.gov.zm/sites/default/files/documents/acts/Human%20Rights%20Commission%20Act.pdf> (검색일: 2016.9.27.)

- (나)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조사 결과에 근거해 위원회는 구금된 자를 석방시키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공무원(officer)에 대한 처벌을 권고함.
- (다)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 중 당사자가 인권침해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함. 또한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의 조사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서면으로 조사 중단 이유를 설명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함.
- (라) 위원회는 교도소, 구금소 등의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권고사항을 전달함. 현장을 방문할 때 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1955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SMRs)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함<sup>1478</sup>).

##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

- (가) 위원회는 국가 정책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함. 매년 발간하는 연례 인권 현황 보고서(Annual State of Human Rights Report, ASHRR)를 통해 국내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가 인권 문제에 접근 및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봄.
- (나) 위원회는 국내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로비 및 지지 활동을 계속해나감.

## (3) 인권 문화 확산

- (가)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옹호캠페인을 진행함. 대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은 사형제 반대 캠페인임. 위원회는 캠페인을 통해 사형제가 갖고

1477) <http://www.hrc.org.zm/index.php/publications/annual-reports/file/116-hrc-annual-report-2012> (검색일: 2016.9.27.)

1478) <http://www.hrc.org.zm/index.php/publications/prison-reports> (검색일: 2016.9.29.)

있는 문제점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함. 또한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방송 등에 출연하여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나) 위원회는 언론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함. 각종 방송을 통해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양한 인권 논의에 참여함. 또한 주간 칼럼의 연재를 통해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다) 위원회는 세계 인권의 날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관련 기념일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준비함. 당일에 인권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송의 방영,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 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들을 위한 수상식 등을 진행함.

(4)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sup>1479)</sup>

(가)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9조에 근거하여 잠비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진행함.

(5) 인권 교육 및 정보 공유

(가) 위원회는 대중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 프로그램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대중들의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둠. 특히 언론인, 작가, 연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나)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옹호 캠페인, 언론을 이용한 인권 감수성 증진, 인권과 관련한 기념일 행사 등을 통해 대중들의 인권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6) 아동인권보호

(가) 위원회는 많은 인권 영역 중에서도 특히나 아동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1479) <http://www.hrc.org.zm/index.php/publications/annual-reports/file/116-hrc-annual-report-2012> (검색일: 2016.9.27.)

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위원회는 아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 영역에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음: 첫 번째, 다양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효과적으로 조사 및 대응하기 위한 역량강화, 두 번째, 아동인권의 증진에 있어 위원회의 가시성 및 접근성 강화.

(나) 세이브더칠드런(스웨덴지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공청회(public hearing)을 개최함. 정부 관료, 시민사회, 그리고 아동들이 직접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

(다) 아동들이 있는 학교, 아동 보호 시설 등을 방문하여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하고 직접 아동들의 인권 실태를 모니터링 함.

(라)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아동의 권리 옹호 캠페인, 방송, 연극, 강연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킴. 세계인권의 날,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아프리카 아동의 날 등을 기념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강연, 방송 등의 행사를 진행함.

#### 바) 특이사항

인권신장을 위한 연구 외에도 방송,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의식개선 활동에 역량을 집중. 그 중에서도 사형제 폐지와 아동인권신장에 큰 관심을 두고 활동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아동인권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3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6년 10월, 2011년 10월 심사에서도 A등급을 유지함.<sup>1480)</sup>

---

1480)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9.16.)

#### 44) 부룬디

부룬디 국가 정보 <sup>1481)</sup>	
면적	27,834km <sup>2</sup>
인구	1,074만 명 (2015년 기준)
수도	부줌부라(Bujumbura)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불어, 키룬디(kirundi)어
주요종교	가톨릭(62%), 기독교(22%), 이슬람교(2.5%)
주요민족	후투인(85%), 투치인(14%), 트와인(1%)
GDP	31억 달러(2014년)
1인당	276달러(2014년)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부룬디 국가인권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Indépendante des Droits de l'Homme, CNIDH)
- (2) 설립연도: 2011년 1월 5일<sup>1482)</sup>
- (3) 설립배경: 부룬디는 오랜 내전으로 1972년부터 2000년 사이 약 30만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음. 2000년 8월에 아루샤 평화협정(Arusha Peace and Reconciliation Accords)을 체결하면서 부룬디 내전의 종식과 함께 헌법 개정, 전환기 정의 시스템(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설립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짐. 그러나 2010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정당 탄압, 선거 중 폭력 행위들, 인권옹호자들과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 대대적으로 발생했고, 12월에 유엔은 부룬디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59)을 통과시켜 유엔 부룬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in Burundi, BNUB)를 설립함. 같은 해 12월, 부룬디 의회는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서 부룬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1년 5월에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7명을 선출함<sup>1483)</sup>.

1481)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4.jsp?menu=m\\_40\\_50\\_20#contentAction1](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4.jsp?menu=m_40_50_20#contentAction1) (검색일: 2016.10.4.)

1482) <http://cnidh.bi/presentation> (검색일: 2016.10.4.)

1483) <http://www.ohchr.org/EN/Countries/AfricaRegion/Pages/BISummary20102011.aspx> (검색일: 2016.10.4.)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2011년 1월 5일에 제정된 부룬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Loi n°1/04 du 5 janvier 2011 portant creation de la Commission Nationale Indépendante des Droits de l'Homme)을 근거법으로 하며, 인권위법 제33조는 인권위의 법인격을 확인함<sup>1484</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법에 근거한 법인격의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위원회 인원은 총 42명(2015년 기준)<sup>1485</sup>으로, 부룬디 인권위원회는 크게 집행실(Bureau Exécutif)과 사무국(Secrétariat Permanent),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활동 단위인 부위원회(Sous-Commissions) 3개 조직으로 이뤄짐<sup>1486</sup>.

① 집행실(Bureau Exécutif)

집행실은 위원장(현 위원장: Jean Baptiste Baribonekeza, J.B. 바리보내케자)과 부위원장, 비서실장(Secrétaire)를 구성원으로 하며<sup>1487</sup>,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실로서 위원회의 행정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하고<sup>1488</sup> 위원회 회의 일정을 조정함<sup>1489</sup>. 집행실 임기는 4년이며

1484) Loi n°1/04 du 5 janvier 2011 portant creation de la Commission Nationale Indépendante des Droits de l'Homme, L.C.N.I.D.H. art.33 (부룬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이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 La Commission jouit d'une personnalité juridique (…)

1485)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5』, p.14

1486) <http://cnidh.bi/presentation> (검색일: 2016.10.4.)

1487) L.C.N.I.D.H. art.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 La Commission est dotée d'un Bureau Exécutif comprenant un Président, un Vice-Président et un Secrétaire. La composition de ce Bureau tient compte des divers équilibres de la société burundaise notamment ethniques, régionaux et de genre.

1488) L.C.N.I.D.H. art.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 Le Bureau Exécutif assure l'administration de la Commission.

1489) L.C.N.I.D.H. art.2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 La Commission se réunit sur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es deux tiers de ses membres.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1490</sup>).

② 사무국(Secrétariat Permanent)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을 수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행정 조직으로, 위원회일상 업무의 집행, 부위원회 및 그룹 활동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비롯해 위원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함. 사무국 직원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집행실에서 채용을 결정함<sup>1491</sup>).

③ 부위원회(Sous-Commissions)

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부룬디 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주요 기능인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주제로 하여, 2개의 부위원회인 인권 보호 부위원회(Sous-commission Protection)와 인권 증진 부위원회(Sous-commission Promotion)를 두고 있음. 부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위원들로, 각각 위원장 1인(Président de la sous-commission)과 보고관(Rapporteur de la sous-commission) 1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위원이 활동함<sup>149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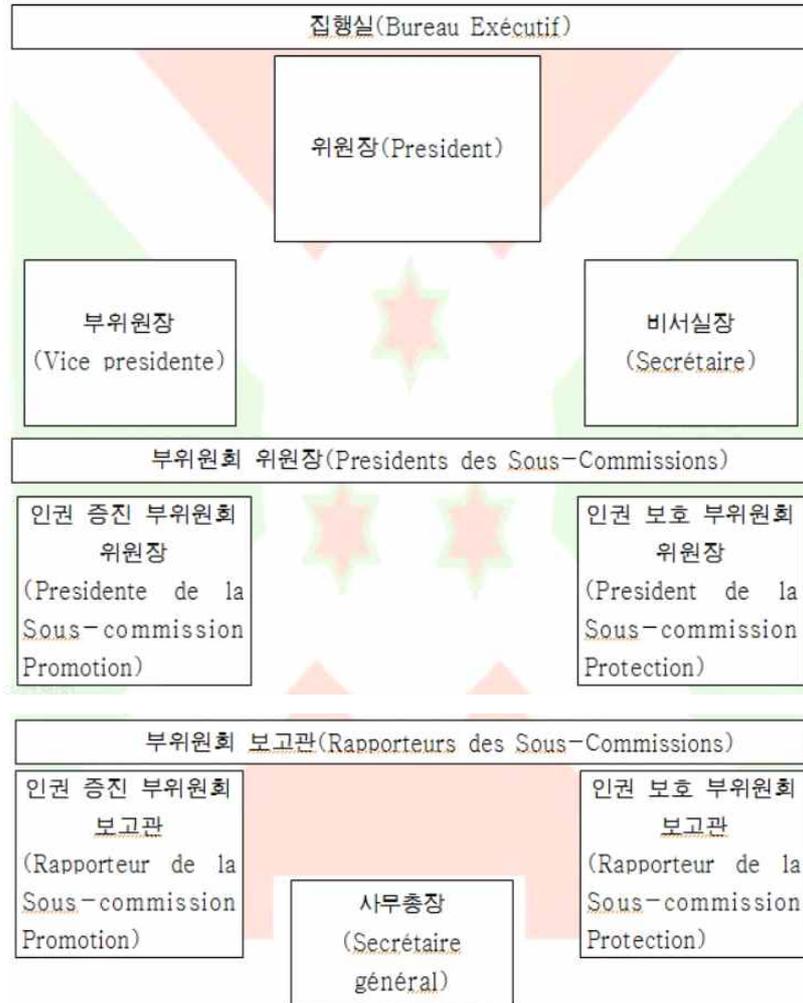
---

L'ordre du jour des réunions est établi par le Bureau exécutif.

1490) L.C.N.I.D.H. art.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 Le mandat de Bureau Exécutif est de quatre ans renouvelable une fois.

1491) L.C.N.I.D.H. art.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 La Commission dispose d'un Secrétariat Permanent composé d'autant de services que de besoin. Le personnel de la Commission est recruté par le Bureau après avis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dans le respect des lois en la matière et du statut du personnel de la Commission. Le Secrétariat Permanent est responsable de l'exécution des tâches quotidiennes de la Commission notamment l'assistance technique aux travaux de la Commission, des sous-commissions ou groupes de travail. Il est dirigé par un Secrétaire général. La Commission crée des sous-commissions de travail dont le nombre, la composi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sont déterminées par le règlement d'ordre intérieur.

1492)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1』, p.3



출처: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1』, p.3

[부룬디-그림 30] 부룬디 인권위원회 조직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근거해 수도인 부쭌부라(Bujumbura)에 본부를 설립하며, 위원의 2/3가 동의할 경우 부룬디 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음. 또한 동법에 근거해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sup>1493</sup>).

부룬디 인권위는 현재 중동부 지역의 지테가(Gitega) 사무소, 남부의 마캄

바(Makamba) 사무소, 북부의 은고지(Ngozi) 사무소, 그리고 가장 최근 개소한 서부 지역의 부반자(Bubanza) 사무소<sup>1494</sup>) 등 현재 4개의 지역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sup>1495</sup>).

(2)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위법 제33조는 부룬디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재정의 독립성을 명시하며, 공공 회계 기준에 따른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보장함<sup>1496</sup>). 위원회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을 할당받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정부를 포함한 외부 주체들에서 지원, 기부, 증여 등을 받을 수 있음<sup>1497</sup>). 인권위원회법은 재정 출처를 명시하지만 위원회 예산 승인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음.

<부룬디-표 7> 부룬디 인권위원회 2016년 예산

2016년 예산	784,462,324 부룬디프랑(약 5억 2천 5백만 원)
----------	----------------------------------

출처: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t Annuel 2015』, p.17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1493) L.C.N.I.D.H. art.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Le siège de la Commission est à Bujumbura. Il peut être transféré en tout autre endroit du territoire national sur décision des 2/3 des commissaires. La Commission couvre le territoire national et peut ouvrir des bureaux dans d'autres localités du pays.

1494)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t Annuel 2015』, p.14

1495)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t Annuel 2012』, p.2

1496) L.C.N.I.D.H. art.3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 La Commission jouit d'une personnalité juridique et d'une autonomie administrative et financière. Avant l'installation de la Commission, le Gouvernement met à sa disposition des ressources matérielles et financières nécessaires pour lui permettre d'assumer ses responsabilités. La Commission gère son budget de manière indépendante suivant les normes et les procédures de gestion de la comptabilité publique.

1497) L.C.N.I.D.H. art.3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Les ressources de la Commission proviennent essentiellement du budget de l'état. La Commission peut également bénéficier, via le Gouvernement, des aides, des dons et legs dans le respect de son indépendance.

부룬디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을 임명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하는 데 자격 구분이 없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공통적으로 부룬디 국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지닌 사람, 30세 이상의 성인, 범죄 기록이 없고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직업 활동을 금지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sup>1498</sup>).

7명의 위원은 적어도 3명의 여성을 포함하고 인종(ethnique), 종교(régional), 젠더(genre)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 가운데<sup>1499</sup>, 인권 분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1인, 여성 인권 단체를 대표하는 1인, 아동 인권 단체를 대표하는 1인, 대학 사회를 대표하는 1인, 인권 분야 전문가 1인, 종교단체를 대표하는 2인을 임명함<sup>1500</sup>. 위원 임명은 국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특별위원회(commission ad hoc désignée par l'Assemblée Nationale)가 임명될 위원의 3배수에 해당되는 후보 명단을 추천해 올리면 국회에서 이들 가운데 사무총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을 선정하는 절차로 이뤄짐. 인권위 위원 임명 특별위원회는 현 국회의원들 가운데 소수 민족인 바트와(Batwa)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해야 함<sup>1501</sup>. 국회의장은 국회가

1498) L.C.N.I.D.H. art.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 Tout membre de la Commission doit remplir les conditions ci- après : être de nationalité burundaise ; être âgé d'au moins trente ans révolus ; jouir de ses droits civils et politiques ; n'avoir jamais été condamné pour crime ou délit sauf pour les condanuiatioiis resultant d'infractions non intentionnelles ; ne pas appartenir à un organe dirigeant d'une quelconque formation politique ; n'avoir jamais subi une interdiction professionnelle.

1499) L.C.N.I.D.H. art.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 (...) Elles sont choisies dans un souci de représentation pluraliste et diversifiée des forces sociales, en veillant au respect des équilibres de la société notamment ethniques, régionaux et de genre.

1500) L.C.N.I.D.H. art.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 : La Commission est composée de sept personnalités dont au moins trois femmes et comprenant : un membre en provenance des ONGs s'occupant des droits de l'homme en général ; un membre en provenance des associations des droits de la femmes ; un membre en provenance des associations des droits de l'enfant ; un membre en provenance du corps professoral universitaire ; un expert qualifié en matière des droits de l'homme ; deux membres en provenance des confessions religieuses.

1501) L.C.N.I.D.H. art.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 Les candidat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sélectionnés sur base des candidatures libres par une

선정한 위원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완료함<sup>1502</sup>).

(다)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사무총장 역시 7명의 위원(membres de la commission) 가운데 포함  
되어 항목 (나)가 설명하는 선정 조건 및 절차를 거쳐 임명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부룬디 인권위법은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음. 다만 동법 제  
30조는 위원의 지위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임을 밝힘<sup>1503</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위법 제30조는 인권위원 지위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임을 밝힘으  
로써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원 활동을 보장함.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사무총장 포함 위원들의 임기는 기본 4년이며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재  
임명은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에 이뤄져야 하며, 위원들 7인 중 2인은 임  
기를 3년 이상 수행한 후 그만둘 경우 동법 제7조~15조항에 따라 임명하  
는 새로운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sup>1504</sup>). 위원은 임기 동안 선출직 공직을

---

commission ad hoc désign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La commission ad hoc  
est composée des représentants des groupes parlementaires présents à  
l'Assemblée Nationale ainsi qu'un représentant de la communauté Batwa. Elle  
établit une liste définitive des candidats comprenant le triple des membres requis  
par corps d'origine,

L.C.N.I.D.H. art.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 La commission ad hoc transmet la  
liste définitive des candidats à l'Assemblée Nationale qui choisit les sept  
membres de la Commission ainsi que son Bureau.

1502) L.C.N.I.D.H. art.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transmet la liste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élus ainsi que son  
Bureau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our nomination.

1503) L.C.N.I.D.H. art.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Le Commissaire siège à titre  
individuel et personnel.

1504) L.C.N.I.D.H. art.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 Le mandat des commissaires est  
de quatre ans renouvelable une fois. Il est stable et irrévocable sauf pour des cas  
expressément prévus par la présente loi ou le règlement intérieur de la  
commission. Le renouvellement se fait au plus tard trente jours avant l'expiration  
du mandat. Toutefois, le mandat de deux des commissaires nommés pour le  
premier mandat prend fin au bout de trois ans et sont remplacés conformément à  
la procédure prévue aux articles 7 à 15 mutatis mutandis. (…)

비롯한 모든 공직 및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음<sup>1505</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인권위법 제16조에 의하면, 위원직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 발견 시, 위원회 집행실(Bureau de la commission)이 위원 직무 수행 불가를 공표할 경우, 내규에 따라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장기 결근 또는 연속 결근,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의사 위원회(commission médicale)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공식 확인했을 때, 형사 처벌이 따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위원의 2/3의 해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 자격 심사를 거쳐 위원의 2/3가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행동 또는 위원회에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 부적격 사유 또는 결함은 인권위 내규에 따라 결정함<sup>1506</sup>). 위원들은 부룬디 법원 관할권에 속하나, 위원은 임기 동안 위원회 활동 혹은 위원회에서 낸 의견 때문에 수사, 체포, 구금, 재판을 받지 않으며,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서는 위원회 집행실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수사, 체포, 재판을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짐<sup>1507</sup>).

---

1505) L.C.N.I.D.H. art.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 La qualité de membre de la Commission es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toute autre fonction publique électorale, de tout emploi public et de toute activité professionnelle.

1506) L.C.N.I.D.H. art.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 : Le mandat de membre de la Commission prend fin dans les conditions ci-après : vice de conformité aux conditions d'éligibilité découvert après nomination par décret ; indisponibilité dûment constatée par le Bureau de la Commission; absence prolongée ou répétée au regard d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règlement d'ordre intérieur de la Commission ; démission ; décès ; incapacité physique ou mentale constatée par une commission médicale ; révocation sur proposition des 2/3 des membres pour manquements graves sans préjudice des poursuites pénales qui peuvent être engagées contre lui ; défaillance constatée par les 2/3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après audition de l'intéressé.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défaillance tout acte, tout comportement susceptible de compromettre la mission de la Commission. Les cas de défaillance ainsi que les manquements graves sont précisés par le règlement d'ordre intérieur.

1507) L.C.N.I.D.H. art.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justiciables devant la Cour Pendant et après son mandat, aucun membre de la Commission ne peut être poursuivi, recherché ou arrêté, détenu ou jugé en raison des opinions émises ou autres actes posés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Sauf flagrant délit, aucun membre ne peut être poursuivi, arrêté ou jugé sans l'autorisation préalable du Bureau de la Commission.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부룬디 인권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인 인권 보호(Protection et de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인권 증진(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인권 자문(role consultatif au Gouvernement)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1508</sup>. 위원회의 인권 보호 역할로 대표적인 것은 인권 침해 피해 진정 접수 및 직권에 의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작업이며, 인권 증진 역할은 교육, 컨퍼런스와 토론회 등 인권 의식 증진 행사, 인권 보호 시스템 활용 홍보 등의 활동을 포함함. 또한, 자문 역할로서 정부 인권 정책 및 법안에 의견과 권고를 제공함.

(1) 인권 침해 진정 접수 및 조사, 직권 조사

부룬디 인권위법 제4조에 따라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 접수와 이에 따른 조사 작업을 수행함<sup>1509</sup>. 인권위는 피해자나 시민단체 등의 진정 요청에 의한 조사뿐 아니라 위원회 자체 판단에 의한 직권 조사를 실시함<sup>1510</sup>. 인권위법상 인권 침해 사례 개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 위원회는 진정 접수 또는 직권에 따라 침해 사례에 대한 인권위의 개입 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commissaire)에게 사례에 대한 심리 및 조사 작업을 요청해 피해를 멈추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함. 이에 위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등 당사자들에게 합의안을 제안하거나 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sup>1511</sup>. 위원회 조사 작업이 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사례를 가

1508) L.C.N.I.D.H. <CHAPITRE II :DES MISSIONS> art.4~art.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장 “미션”제4조~6조) :

Art.4 Dans le cadre de la protection et de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la Commission a notamment pour missions de (...)

Art.5 Dans le cadre de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la Commission a notamment pour mission de (...)

Art.6 La commission a également pour mission de fournir à titre consultatif au Gouvernement (...)

1509) L.C.N.I.D.H. art.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 recevoir des plaintes et enquêter sur les ca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

1510) L.C.N.I.D.H. art.4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 La Commission est saisie par la victime ou ses ayants-droit, par d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des droits de l'homme ou par toute autr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intéressée. Elle peut se saisir d'office.

1511) L.C.N.I.D.H. art.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 Dès qu'elle estime la requête recevable, la Commission désigne un de ses membres aux fins d'instruire le cas et rechercher les voies et moyens pour mettre fin à la violation. Le commissaire

해자에게 알리고 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출두할 것을 명령함. 피해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재출두를 요청하기도 함<sup>1512</sup>). 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 인원이 참석할 경우에만 열릴 수 있음<sup>1513</sup>). 위원회에서의 증인 심문 및 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함<sup>1514</sup>). 조사 작업과 관련해 위원회는 정부, 시민단체, 정당 등 다양한 정보원에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얻을 권한<sup>1515</sup>), 조사 작업을 위해 적법하게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 지원을 요청할 권한<sup>1516</sup>), 피해자와 가해자 및 증인을 위원회에 출두하게 할 권한과 공기관 및 사인들에 정보와 답변을 얻을 권한을 가짐<sup>1517</sup>). 위원회의 증언 및 정보 요청에 대한 거부, 거짓 정보나 조작된 증거 제출은 법적 처벌을 받음<sup>1518</sup>).

---

désigné peut proposer un règlement à l'amiable de la violation dans les limites fixées par la loi. Au cas où il y parvient, un rapport circonstancié est adressé à la Commission pour son approbation et clôture.

- 1512) L.C.N.I.D.H. art.4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La plainte est notifiée au présumé auteur qui est invité à comparaître devant la Commission dans un délai qu'elle fixe. En cas de saisine d'office, la Commission invite directement le présumé auteur à comparaître à une date qu'elle précise. La date est communiquée à la victime ou à son représentant, à ses ayants-droits ainsi qu'aux témoins éventuels.
- 1513) L.C.N.I.D.H. art.4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 : La Commission ne peut valablement siéger que si les deux tiers de ses membres sont présents.
- 1514) L.C.N.I.D.H. art.5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 Les séances de la Commission ne sont pas publiques et le délibéré se fait à huis clos.
- 1515) L.C.N.I.D.H. art.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La Commission dispose des pouvoirs d'investigation les plus étendus sur toutes les questions relevant de sa compétence. Elle dispose d'un accès libre à toute source d'information. Elle exploite toutes les sources licites d'information notamment : (…)
- 1516) L.C.N.I.D.H. art.3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 La Commission peut requérir assistance de la police et d'autres services de l'Etat pour donner effet aux pouvoirs lui reconnus par la présente loi.
- 1517) L.C.N.I.D.H. art.3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 Les personnes appelées à comparaître devant la Commission sont tenues d'y répondre. La Commission doit prendre des dispositions pour les protéger.  
L.C.N.I.D.H. art.3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 Les responsables des services publics ou privés appelés à livrer des documents jugés utiles par la Commission sont tenus de les communiquer.
- 1518) L.C.N.I.D.H. art.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 Le refus de déposer, le refus de prêter serment et le faux témoignage devant la Commission constituent des infractions punissables par la loi.

2015년에 부룬디 인권위는 총 747건의 진정 요청을 접수했는데, 자의적 구금 및 체포사태가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4건은 법적 구제에 관한 요청, 64건은 공정한 법적 절차 관련 사례, 37건은 젠더 기반 폭력, 27건은 고문 사례 등의 순으로 집계됨<sup>1519</sup>).

## (2) 구금시설 방문

인권위는 교도소, 독방을 포함한 구금시설에 정기 방문 및 사전 고지 방문을 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여 인권 상황을 조사한 후 개선 조치를 권고함<sup>1520</sup>. 구금시설 방문 조사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구금 및 불법적 구금과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구금, 민사 사건에 과도하게 적용된 구금사태, 미성년자 구금 실태, 구금시설 내 건강과 보건 실태,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함. 2015년 기간에 위원회는 총 261개의 구금시설을 방문했고, 인권위의 방문 조사와 권고 이후 여성 수감자 84명과 미성년 수감자 78명을 포함해 부당하게 갇혀 있던 수감자 1058명을 구제함<sup>1521</sup>).

## (3) 피해자 구제

인권위는 당사자들 간 조정(conciliation), 관련 정책과 조치에 관한 권고, 법적 지원(assistance judiciaire) 등의 방식으로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해 피해자를 구제함<sup>1522</sup>. 특히, 정보와 자원이 부족해 법적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법 집행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함<sup>1523</sup>).

1519)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5』, p.22

1520) L.C.N.I.D.H. art.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 effectuer des visites régulières, notifiées ou inopinées dans tous les lieux de détention et formuler des recommandations à l'endroit des autorités compétentes à l'effet d'améliorer le traitement et la situation des personnes privées de liberté ;

1521)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5』, p.23

1522) L.C.N.I.D.H. art.5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9조) : Lorsqu'elle estime qu'il y a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la Commission dans ses avis et recommandations propose des solutions pour remédier à la situation.

1523) L.C.N.I.D.H. art.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 apporter ou faciliter l'assistance judiciaire aux victimes des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en particulier les femmes, les enfants et autres personnes vulnérables;

위원회는 세 가지 우선 사항에 집중하여 법적인 지원을 하는데, 첫 번째 사안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범주로서 생명의 위협, 사법 살인, 공권력 남용, 강제 실종, 집회 시위의 자유권 침해 사례 등이 포함됨<sup>1524)</sup>. 두 번째 우선 사안은 정치적인 탄압 범주로, 정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 인권 옹호자 및 노동조합 대표들의 인권, 종교인 및 언론인 인권 등이 있음. 세 번째 범주는 여성과 아동,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임<sup>1525)</sup>.

#### (4) 고문 방지 활동

인권위법 제4조는 인권위에 고문과 가혹행위, 비인간적 대우 방지 임무를 부여해 특히, 고문 관련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sup>1526)</sup>. 2015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고문 사례에 관한 조사 작업을 실시해 27건의 침해 사실을 확인함. 인권위는 고문 예방 활동으로서 경찰, 국가정보기관(Service National de Renseignement, SNR)과 협력해 확인된 침해 사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 및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부룬디 인권위는 고문에 대한 인식 증진 활동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토론회 등의 행사를 주최해왔는데,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유엔고문방지협약(Convention des Nations Unies contre la Torture et autres peines ou traitements cruels, inhumains ou dégradants)의 실질적 이행과 고문 근절을 위한 부룬디 인권위의 역할을 논의했으며<sup>1527)</sup>, 2015년에는 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고문 방지를 위한 공공 업무 종사자들의 역할을 교육함<sup>1528)</sup>.

---

1524)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t Annuel 2013』, p.10

1525) Id. p.11

1526) L.C.N.I.D.H. art.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 prévenir la torture et autres peines ou traitements cruels, inhumains ou dégradants, conformément aux normes universelles, régionales ou nationales pertinentes ;

1527)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t Annuel 2013』, p.15

1528)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t Annuel 2015』, p.25

(5) 인권 관련 자문

부룬디 인권위는 인권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 권고 등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에 자문을 제공함<sup>1529</sup>). 부룬디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및 지역인권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내고, 법과 정책, 규칙 등을 국제인권기준과 조화시켜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sup>1530</sup>).

(6)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해 공공 검찰(Ministère Public)의 대응 촉구

위원회는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인권 침해 사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룬디 공공 검찰의 관심을 촉구함. 이러한 사안들은 주로 자의적 구금이나 부당한 장기 구금, 미성년자 범죄 사례들이며,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실종이나 납치 같은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검찰에 요청하기도 함. 또한, 부당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피해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검찰에게 탄원하기도 하는데, 2015년에는 응고지(Ngozi) 국경 근처에서 르완다로 가려던 학생 17명이 내란 선동 동참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금된 후 인권위의 공공 검찰 탄원으로 풀려난 사례가 있었음<sup>1531</sup>).

(7) 인권 교육

부룬디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미나, 토론회, 컨퍼런스,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sup>1532</sup>). 2015년에는 선거 기

---

1529) L.C.N.I.D.H. art.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 fournir à titre consultatif au Gouvernement, au Parlement, soit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concernées, soit en usant de sa faculté d'auto-saisine, des avis, recommandations et propositions concernant toutes questions relatives à la promotion et à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n particulier sur les projets et propositions de lois relatifs aux droits de l'homme ;

1530) L.C.N.I.D.H. art.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 contribuer à l'harmonisation des lois, règlements et pratiques en vigueur sur le plan national avec les instruments internationaux et régionaux relatifs aux droits de l'homme ratifiés par le Burundi et s'assurer de leur mise en œuvre effective ;

1531)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5』, p.28

간 동안 시민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민 자유 (Libertés Publiqueset)’와 ‘젊은이여, 평화에 투표하라 (Jeunes, votons dans la paix)’ 같은 시민 교육 의식 증진 프로젝트를 실시함<sup>1533</sup>).

바) 특이사항

- (1) 개인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작업을 하는 인권 침해 구제 기관의 성격을 지님. 부룬디 인권위의 구제 역할은 우선적으로 조정 (conciliatory) 역할이지만,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중재 기관이자 더욱 적극적인 의미의 인권 구제 기관이기도 함.
- (2) 부룬디 인권위는 인권법상 정부에 인권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인권 자문기관으로, 새로운 법안, 현행 법, 정책 및 관행과 관련해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혹은 인권위 직권으로 의견과 권고를 내는 권한을 가짐.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12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12년 10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1534</sup>).

---

1532) L.C.N.I.D.H. art.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 Dans le cadre de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la Commission a notamment pour mission de :

- organiser des séminaires et ateliers de formation sur les droits de l'homme
- assurer la promo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enfant à travers notamment : l'éducation, l'information et la communication
- effectuer des campagnes d'information et de sensibilisation sur les droits de l'homme sur tout le territoire national ;
- participer à l'élaboration et à la mise en œuvre des programmes d'éducation aux droits de l'homme ;

1533) C.N.I.D.H.(부룬디 인권위원회), 『Rapport Annuel 2015』, p.32

1534)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 45) 말라위

말라위 국가 정보 <sup>1535)</sup>	
면적	11만 8천 km <sup>2</sup>
인구	1천 8백만 명(2015년 기준)
수도	릴롱웨(Lilongwe)
정치형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영어 (공용어), 체와어 (공용어)
주요종교	기독교 (83%), 이슬람교 (13%)
주요민족	체와인(33%), 톰웨인(18%), 요인(14%), 응고니인(12%)
GDP	64억 달러(2015년)
1인당	353 달러(201년)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말라위 국가인권위원회(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 (2) 설립연도: 1994년 5월 16일<sup>1536)</sup>
- (3) 설립배경: 말라위는 1964년 독립한 이후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의 통치 하에 고문, 강제 실종 등 대규모 인권 침해를 겪어오다, 1993년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당제를 합법화함으로써 민주화를 시작함. 1994년에는 말라위 헌법(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을 새로 도입하여 이 헌법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 감시 기관(democracy watchdogs)’인 법위원회(Law Commission, LC), 인권위원회(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옴부즈맨 사무소(Ombudsman), 국가피해보상기금(National Compensation Fund)을 설립하게 됨<sup>1537)</sup>.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말라위 인권위원회 설립 근거는 1994 말라위 헌법(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과 1998 말라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HRA)임. 정부는 1994 헌법이 제정되고도 2년 동안 인권

1535)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index>  
(검색일: 2016.10.16.)

1536) 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1994 말라위 헌법) 제정일

1537) Nandini Patel, 『The 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Office of the Ombudsman』, 2009, p.4

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음. 1996년에 말라위 국회가 처음으로 인권위 예산을 조성해 인권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8년 인권법 제정과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 침해 조사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과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 기능을 갖게 되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됨<sup>1538)</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sup>1539)</sup>.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말라위 인권위 구성원은 총 95명으로(2013년 기준) 크게 1) 현 위원장인 소피 아시멘예 칼린드(Sophie Asimenye Kalinde) 및 부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들이 있는 위원회, 2) 6개의 주제 위원회(thematic committees 혹은 Directorates), 3) 5개 분과(Divisions)의 사무국으로 구성됨.

① 사무국(Secretariat, Office of Executive Secretary)

인권법 제28조에 따라 말라위 인권위는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 및 행정을 책임지는 사무국(Secretariat 혹은 Office of Executive Secretary)을 둠<sup>1540)</sup>. 사무국은 위원회가 임명한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이 이끌며<sup>1541)</sup> 위원회 행정과 인사를 책임짐<sup>1542)</sup>. 사무국에

---

1538) Id. p.7

1539) Human Rights Act 1998, H.R.A. art.11 (1998 말라위 인권법, 이하 ‘인권법’ 제11조) : All authorities (including all organs of the Government) bodies and persons shall recognize the status of the Commission as national institution independent of the authority or discretion of any other body or person.

1540) H.R.A. art.28(1) (말라위 인권법 제28조 1항) : There shall be the office of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which shall be a public office.

1541) H.R.A. art.28(2) (말라위 인권법 제28조 2항) :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1542) H.R.A. art.29 (말라위 인권법 제29조) : Subject to the general and special directions of the Commission,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ecutive day to day management of the Com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members of staff of the Commission and, in that regard, shall

는 인사 경영과(Human Resources Management Division), 행정서비스과(Administration Services Division), 재정과(Finance Division), 기록 모니터링 평가과(Docu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Services), 내부감사과(Internal Audit) 등 5개의 행정 분과가 있음<sup>1543</sup>).

② 내부 위원회(Directorates)

인권위법 제8조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내부 위원회(committee)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함<sup>1544</sup>. 말라위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부서(Directorates)라는 뜻을 지닌 내부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Directorates)로는 운영위원회(Directorate of Corporate Services), 아동인권위원회(Directorate of Child Rights),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Directorat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Directorat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장애인 및 노인 인권 위원회(Directorate of Disability and Elderly Rights), 젠더 및 여성 인권 위원회(Directorate of Gender and Women Rights) 등 6개 위원회를 두고 있음. 각각의 주제 위원회는 1인 또는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두어야 하며, 필요하면 위원회 외부 인사를 둘 수 있으나 위원회 일반 직원(staff)은 구성원에 포함시킬 수 없음<sup>1545</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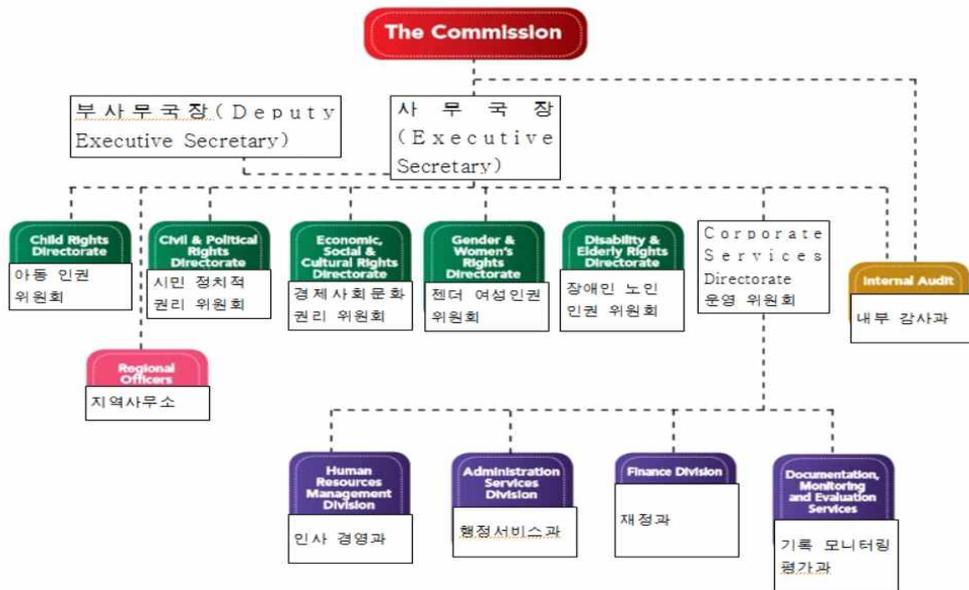
be answerable and accountable to the Commission

1543)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3』, p.93

1544) H.R.A. art.8(1) (말라위 인권법 제8조 1항) :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such number of its own Committees as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may assign to such committees any of its functions without prejudice to the power of the Commission itself to perform the function.

1545) H.R.A. art.8(2) (말라위 인권법 제8조 2항) : The composition of every committee of the Commission shall include one or more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may include persons who are not members of the Commission but shall not include members of staff of the Commission.

6개 내부 위원회(Directorates) <sup>1546)</sup>	
운영위원회(Directorate of Corporate Services)	위원회 운영 담당, 모든 프로젝트 및 활동을 위한 재정 마련과 운영을 책임짐.
아동인권위원회(Directorate of Child Rights)	아동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활동을 하며, 인권 의식 증진(human rights awareness) 활동도 담당.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Directorat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며, 위원회 활동 중 법적 사안을 담당함.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Directorat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말라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계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함.
장애인 및 노인 인권 위원회(Directorate of Disability and Elderly Rights)	장애인과 노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책임짐.
젠더 및 여성 인권 위원회(Directorate of Gender and Women Rights)	여성 인권 보호 및 증진,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위한 활동을 실행함.



출처: 말라위 인권위원회 2013 연간보고서, p.93

[말라위-그림 31] 말라위 인권위원회 조직도

1546) <http://www.hrcmalawi.org/profile.html> (검색일: 2016.10.15.)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법이나 헌법상 사무소 설립에 관한 조항은 없으나, 말라위 인권위원회는 수도인 릴롱궤(Lilongwe)에 본부를 설립함.

인권위원회는 북부 블랜타이어(Blantyre)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음<sup>1547</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법 제32조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권위 권한 행사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급함을 명시함<sup>1548</sup>. 인권위가 정부에서 배분받는 예산은 말라위 모든 정부 예산 출처인 정부통합자금(Consolidated fund)과 보호지출자금(Protected expenditure fund)으로, 국가 재정위원회(Treasury)의 통제를 받는 정부통합자금은 위원회 활동에 충분한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호지출자금을 통해 보충함<sup>1549</sup>. 인권법은 정부 예산 외에도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550</sup>).

<말라위-표 8> 말라위 인권위원회 2013년, 2014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정부 예산: 328,784,024 MWK (약 5억 1천 8백만 원)	정부 예산: 419,076,529 MWK (약 6억 6천만 원)
외부 지원: 226,039,111 MWK (약 3억 5천 6백만 원)	외부 지원: 452,760,932 MWK (약 7억 1천 4백만 원)

출처: 말라위 인권위원회 2013 연간보고서, p.88-89 / 2014 연간보고서, p.99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547) <http://www.hrcmalawi.org/index.html> (검색일: 2016.10.15.)

1548) H.R.A. art.32(1) (말라위 인권법 제32조 1항) : The Government shall adequately fund the Commission to enable it to exercise its powers and perform its duties and functions and so as to ensure it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1549) Nandini Patel, 『The 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Office of the Ombudsman』, 2009, p.14

1550) H.R.A. art.32(2) (말라위 인권법 제32조 2항) : The Commission may receive any donations of funds, materials and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for the purposes of its duties and functions: Provided that no such donation shall jeopardize or compromis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Commission.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정함<sup>1551</sup>). 부위원장 관련 조항 없음.

(나)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총 7명으로, 말라위 헌법 제131조에 근거해 비상임위원 2인과 상임위원 5인을 임명함. 비상임위원으로 말라위 법위원회(Law Commission) 소속 위원 1인, 말라위 옴부즈맨(Ombudsman) 1인을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 2인의 재량에 따라 말라위 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헌해 왔으며 높이 평가 받는 단체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임명하는데<sup>1552</sup>, 두 명의 비상임위원이 재량에 따라 말라위를 대표하는 명성 있는 단체들을 선정하고 이 단체들에 위원 공모에 관한 공문을 보내면 30일 이내에 단체들은 내부 및 외부 인사를 최대 2명 추천할 수 있음<sup>1553</sup>).

---

1551) H.R.A. art.6(1) (말라위 인권법 제6조 1항) : There shall be a Chairman of the Commission who shall be elected by the Commission from among the appointed members at a meeting of the Commission attended by all members.

1552) 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 art.131(1) (말라위 헌법 제131조 1항) :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hall consist of - a. the person for the time holding the office of Law Commissioner; b.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holding the position of Ombudsman; Provided that, save as prescribed by this section, no other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hall be a person in any public office or the President or Vice-President, a Minister or Deputy Minister or a member of Parliament. c. such persons as shall be nominated from time to time in that behalf by those organizations that are considered in the absolute discretion of both the Law Commissioner and the Ombudsman to be reputabl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of Malawian Society and that are wholly or largely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is Constitution.

1553) H.R.A. art.4(1)~(2) (말라위 인권법 제4조 1~2항) : (1) The procedure for nominating appointed members shall Procedure for involve first the issuing of a public advertisement, signed jointly by the Law Commissioner and the Ombudsman, directed to the organizations described in section 131 (I) (c) of the Constitution, being those which both the Law Commissioner and the Ombudsman, in their absolute discretion, consider to be reputabl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of Malawian society and that are wholly or largely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f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2명의 비상임위원은 단체와 해당 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을 평가한 후 위원으로 추천하는 인물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이를 공식 임명함<sup>1554</sup>). 인권법 제3조는 상임위원은 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sup>1555</sup>).

(다)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

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임기 및 근무 조건도 위원회 결정에 따름<sup>1556</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지위 알 수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위는 법률상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명시돼 있으며, 국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함<sup>1557</sup>).

---

Constitution.

(2) The advertisement under subsection (1) shall invite all appropriate organizations to nominate up to two persons who are independent, non-partisan and of high integrity and standing from within or outside the organization for appointment as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o do so within thirty days of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advertisement an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Commission, giving the full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so nominated and his curriculum vitae.

1554) H.R.A. art.4(3) (말라위 인권법 제4조 3항) : The Law Commissioner and the Ombudsman shall- (a) jointly assess the reputation of the nominating organizations and may, for that purpose, seek other or fur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ny nominated person from the person himself or any other person or source before recommending who among the nominated persons shall be formally appointed by the President as members of the Commission;

1555) H.R.A. art.3 (말라위 인권법 제3조) : The number of other members of the Commission appointed under section 131 (I) (c) of the Constitution (in this Act referred to as "appointed members") shall not exceed five at anyone time unless the Presiden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ssion, by Order published in the Gazette, prescribes a greater number of appointed members.

1556) H.R.A. art.28(2) (말라위 인권법 제28조 2항) :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1557) H.R.A. art.37 (말라위 인권법 제37조) : In addition to any specific report which the Commission Annual may at any other time submit to any authority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very calendar year submit a report to Parliament on the activities it has carried out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기본 3년으로 같은 기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한데, 3년 임기가 끝나면 비상임위원인 법위원회 위원과 옴부즈맨 위원이 재임명 이유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전체 위원들의 최소 절반의 인원을 재임명할 수 있음<sup>1558</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말라위 헌법 제131조 3항에 따라 위원으로서 부적격성(incompetence), 무능(incapacity), 위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 등 세 가지 이유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sup>1559</sup>).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말라위 헌법 제129조는 인권위원회의 최우선 기능을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조사라 명시함<sup>1560</sup>). 말라위 인권위원회는 2011-2015 전략 계획(2011-2015 Strategic Plan)에서 말라위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이해와 인권 향유 도모, 공공 주체뿐 아니라 민간 주체들의 인권 보호 책임 강화, 공공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시민사회의 인권 관련 역량 강화, 인권 보호 및 증진 기

---

during that calendar year

1558) H.R.A. art.5(1)~(2) (말라위 인권법 제5조 1~2항) : (1) Appointed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three years, and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2) when making recommendations for appointment after the expiry of the three-year term, the Law Commissioner and the Ombudsman shall have regard to the need to maintain a reasonable degree of continuity on the membership of the Commission, so that, at least half of the appointed members shall be reappointed for the next term of office.

1559) 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 art.131(3) (말라위 헌법 제131조 3항) :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ther than a member by virtue of paragraph (a) or (b) of subsection (1), shall continue to be members of the Commission until such time as they are removed from office on the grounds of a. incompetence; b. incapacity; or c. in circumstances where the member is compromised to the extent that his or her ability to impartially exercise the duties of his or her office is seriously in question.

1560) 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 art.129 (말라위 헌법 제129조) : There shall be a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rimary function of which shall be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violations of the rights accorded by this Constitution or any other law.

구로서 인권위의 가시성과 효율성,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 이와 관련된 활동들에 집중해 왔음<sup>1561)</sup>.

(1) 진정 접수 및 직권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

말라위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권 침해 진정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기능으로, 헌법 제130조는 위원회에 개인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침해 사례 조사 권한과 권고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함. 그러나 동시에 법적 효력이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권한에 제한을 둠<sup>1562)</sup>. 진정 접수 후 위원회가 조사 작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면, 가해자 및 피해자, 증인들을 소환할 권한이 있으며<sup>1563)</sup> 이는 위원회 고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고지는 반드시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 말라위 경찰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sup>1564)</sup>. 조사 작업에서 위원회는 정보와 증거를 얻을 권한, 자료 및 기록들을 얻을 권한을 지님<sup>1565)</sup>.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출입해야 할 경우 치안 법원 (magistrate)의 영장을 받아야 함<sup>1566)</sup>. 위원회는 접수한 사례들을 주제별로

1561)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4』, p.22

1562) Malawi Republican Constitution 1994 art.130 (말라위 헌법 제130조) :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hall,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s of an individual or class of persons, or on its own motion, have such powers of investigation and recommendation as a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romotion of the rights conferred by or under this Constitution, but shall not exercise a judicial or legislative function and shall not be given powers so to do.

1563) H.R.A. art.18(1)(b) (말라위 인권법 제18조 1-b항) :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investigations necessary investigations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and performance of its duties and functions, the Commission shall have powers - (b) to require any person by notice in writing under the hand of a member of the Commission to appear before it at a time and place specified in such notice and to produce to it all articles or documents in the possession or custody or under the control of any such person and which may be necessary in connexion with that investigation:

1564) H.R.A. art.18(2) (말라위 인권법 제18조 2항) : A notice under subsection (I) shall not be effectively served unless it is delivered by - (a) a member of the Commission; (b)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Commission; (c) a police officer or any other person

1565) H.R.A. art.18(3) (말라위 인권법 제18조 3항) : Any person questioned under subsection (I) shall - (a) be competent and compellable to answer all questions put to him regarding any fact or matter connected with the investigation; (b) be competent and compellable to produce to the Commission any article or document in his possession or custody or under his control which may be necessary in connexion with that investigation.

내부 위원회(Directorates)에 배분해 처리하도록 함. 2014년 기간에 말라위 인권위는 총 516건의 진정 신청 중 358건을 접수했고, 이중 172건이(전체 접수 건의 4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침해 사례였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침해 사례는 99건(전체의 27.7%)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sup>1567</sup>.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례 중 노동권 관련 사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에서는 사법절차 접근권 사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음<sup>1568</sup>.

## (2) 피해자 구제

인권법 제22조는 조사 작업 후 갈등 조정(conciliation) 및 갈등 해결, 피해 보상 및 배상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권고 역할을 부여함<sup>1569</sup>. 위원회는 사례 당사자들에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 및 의무 사항을 권고를 통해 전달하거나<sup>1570</sup>, 법적 해결 혹은 기타 기관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를 법원, 기타 기관 등으로 회부함<sup>1571</sup>. 침해 사례가 정부 관행이나 법, 정책 등과 인과적 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책임 당국에 법의 개정, 정책 시정, 제도 개선을 권고할 권한을 가짐<sup>1572</sup>.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바와

1566) H.R.A. art.20(1) (말라위 인권법 제20조 1항) : Entry and search of any premises under this Act shall only be upon a warrant issued by a magistrate if it appears to the magistrate from information on oath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any article or document, which has a bearing on the investigation concerned, is on such premises.

1567)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4』, p.25

1568) Id. p.26

1569) H.R.A. art.22(a) (말라위 인권법 제22조 a항) : Upon hearing complaints brought before it or based upon any investigations it has carried out or at any stage, the Commission - (a) shall seek an amicable settlement through conciliation and, where appropriate, on the basis of confidentiality;

1570) H.R.A. art.22(b) (말라위 인권법 제22조 b항) : shall inform the complainant and the respondent of their respective rights, remedies or obligations and the Commission shall promote a party's access to the remedies;

1571) H.R.A. art.22(d) (말라위 인권법 제22조 d항) : may transmit a complaint, petition or any other matter to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the law or as otherwise the Commission thinks fit;

1572) H.R.A. art.22(e) (말라위 인권법 제22조 e항) :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y, proposing amendments or reforms of the laws, regulations

같이 말라위 인권위는 조사 및 권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대신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기소 또는 조사하도록 검찰과 경찰 등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sup>1573</sup>).

(3) 구금시설 방문 조사

인권위는 인권법 제16조에 따라 교도소, 경찰서 독방 등 말라위 내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또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인권 상황을 조사함<sup>1574</sup>). 특히,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 비준 국으로서 의무인 고문 및 가혹행위 발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구금시설 조사는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이뤄짐. 2013년에는 유럽연합 민주정 프로그램(EU - Democratic Governance Programme)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말라위 내 경찰서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이 같은 조사 활동에서 구금 절차에서 경찰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 구금시설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의 인권 기준 준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말라위 경찰 및 교도소,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그 결과를 공유함<sup>1575</sup>).

(4) 선거 및 집회 모니터링

헌법이나 인권법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29조가 정의하는 ‘광의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in the broadest sense possible)’의 일환으로

---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or practices if the Commission has identified such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to have created the difficulties or hardships encountered by the persons who brought the complaints or petitions;

1573) H.R.A. art.22(e)~(f) (말라위 인권법 제22조 e~f항) : (e)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y, proposing amendments or reforms of the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or practices if the Commission has identified such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to have created the difficulties or hardships encountered by the persons who brought the complaints or petitions; and (f) may recommend to the relevant authority the prosecution of any person found to have violated human rights or the taking of any other action and any such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recommendation and take such action as it deems appropriate.

1574) H.R.A. art.16(d) (말라위 인권법 제16조 d항) : exercise unhindered authority to visit prisons or any place of detention of persons including police cells, with or without notice;

1575)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3』, p.24

말라위 인권위는 1999년 이해 선거 과정에서의 법 준수 및 인권 침해 발생 여부를 감시해 왔음<sup>1576</sup>). 선거 감시 활동은 유권자 등록 과정부터 유세 현장 감시 등 선거 전 단계(pre-election phase), 선거 진행 단계(election phase) 중 불법 및 폭력 행위 감시, 개표 감시를 포함한 선거 후 상황(post-election phase)에 대한 모니터링 등 선거 전체 과정에서 이뤄짐.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활동 중 하나로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하는데, 역시 집회 전 상황과 집회 현장, 집회 후 상황으로 단계를 나누어 말라위 헌법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감시함<sup>1577</sup>).

#### (5) 정책 및 법 자문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계된 법안, 법적 결정, 정책, 행정 조항의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함<sup>1578</sup>). 인권 관련 자문 기구로서 대통령과 국회,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혹은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과 관련한 권고, 의견, 제안 등을 전달함<sup>1579</sup>). 인권법은 법안 심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며, 매년 연간보고서 및 인권 사안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580</sup>). 자문 역할의 일환으로 말라위 정부의

1576)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4』, p.35

1577)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3』, p.27

1578) H.R.A. art.13(e) (말라위 인권법 제13조 e항) : to study the status and effect of legislation,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prepare reports on such matters and submit the reports, with such recommendations or observations as the Commission considers appropriate,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or to any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1579) H.R.A. art.14(a) (말라위 인권법 제14조 a항) : to submit to the President, Parliament or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un an advisory basis, either at the request of the President, Parliament or such other authority or on its own volition, its opinions, recommendations, proposals or reports on any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1580) H.R.A. art.37 (말라위 인권법 제37조) : In addition to any specific report which the Commission Annual may at any other time submit to any authority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very calendar year submit a report to Parliament on the activities it has carried out

국제인권협약 비준을 촉구하고<sup>1581)</sup> 비준 후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의 국내법 도입을 위한 권고를 하고, 국제인권조약기구의 말라위 정부 심사에 국가인권기구 보고서를 제출함<sup>1582)</sup>.

- (6)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말라위 인권법은 말라위 시민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조함<sup>1583)</sup>. 아동인권과 관련해 인권위는 말라위 아동 인권 현황, 아동 보호 시설 모니터링, 아동 양육 시설 모니터링, 구금시설 내 미성년자 인권, 아동보호법(Child Care, Protection and Justice Act, 2010) 통과 이후 경찰과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의 인권 기준 준수 모니터링 등을 주제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sup>1584)</sup>. 젠더 사안 및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진정 접수에 따른 조사활동과 별도로 여성의 재생산권 현황 공공조사(Public Inquiry on the Statu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와 젠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한 공공조사(Public inquiry on Gender-Based Violence in Nkhosakota)를 실시해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에 권고했으며, 말라위 전역에서 여성 인권에 관한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해왔음. 또한, 2014년 3부선거(2014 tri-partite elections)에 여성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

during that calendar year.

1581) H.R.A. art.13(1)(f) (말라위 인권법 제13조 1-f항) : to perform any other function which the Government may assign to the Commission in connexion with the duties of Malawi under those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to which Malawi is a party, without derogation from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shall remain primarily responsible for performing such functions.

1582) H.R.A. art.14(f)~(g) (말라위 인권법 제14조 f~g항) : (f) to promote the harmoniz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Malawi is a party and to promote and monit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g) to contribute to the reports which Malawi is required to submit pursuant to treaty obligations and, where necessary, express its opinions on the subject matter but always with due regard to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national institution;

1583) H.R.A. art.13(1)(c) (말라위 인권법 제13조 1-c항) : to promote more particularly the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illiterate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1584)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4』, p.44-49

을 함<sup>1585</sup>). 장애인 인권 및 노인 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법(Disability Act of 2012) 제정 후 정부의 이행 상황 감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비준 후 국내 이행 모니터링, 장애인 시설 방문 모니터링, 알비노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sup>1586</sup>).

바) 특이사항

- (1) 말라위 인권위는 말라위 헌법 구조상 기타 인권 감시 기구인 법위원회(Law Commission) 및 옴부즈맨(Ombudsman)과 협력하여 인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 옴부즈맨 사무소가 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인권위는 비사법적 방식을 통해서 당사자들 간 갈등을 조정(mediation)하는 중재자 성격이 강함. 말라위 헌법은 인권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법위원회(Law Commission, LC), 인권위원회(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옴부즈맨 사무소(Ombudsman), 국가피해보상기금(National Compensation Fund)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민주주의 감시 기관(democracy watch dog) 중 하나로 설립했음. 따라서 말라위 인권위는 인권 침해 구제기관보다는 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으로서 정부 및 민간의 인권 원칙 준수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0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7년부터 심사가 계속 연기되다 2016년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1587</sup>).

---

1585) 말라위 인권위, 『Annual Report 2014』, p.78-88

1586) Id. p.58-69

1587)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 46) 모리셔스

국가 정보 <sup>1588)</sup>	
면적	2,040 km <sup>2</sup>
인구	134만 명(2015년 기준)
수도	포트루이스(Port Louis)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주요언어	영어(공용어), 불어, 크레올어, 힌두어
주요종교	힌두교(52%), 가톨릭(28%), 이슬람교(17%)
주요민족	인도계(68%), Creole족(27%), 중국계(3%)
GDP	115억 달러(2015년)
1인당	9,117달러(2015년)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모리셔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Mauritius)
- (2) 설립연도: 1998년 12월 18일<sup>1589)</sup>
- (3) 설립배경: 모리셔스는 196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줄곧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왔음. 1967년 제정한 모리셔스 헌법은 일찍이 옴부즈맨 사무소(Ombudsman Office) 설립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모리셔스는 영연방 국가들(Commonwealth countries) 가운데 가장 먼저 옴부즈맨 사무소를 설립한 나라 중 하나였음. 199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 통과와 함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모리셔스 정부는 기존의 인권 보호 제도에 더해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 1998년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of 1998)<sup>1590)</sup>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sup>1591)</sup>.

1588)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4/1\\_22629.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4/1_22629.jsp?menu=m_40_60_20)(검색일: 2016.10.16.)

1589)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69100&p\\_country=MUS&p\\_classification=01.05](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69100&p_country=MUS&p_classification=01.05) (검색일: 2016.10.16.)

1590) 모리셔스가 처음으로 채택한 1998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of 1998)은 2012년 개정되었으며, 여기서는 개정안인 2012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mendment) Act 2012)을 인용함.

1591) L A Darga, 『The Ombudsma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uritius』, 2009, p.4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모리셔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 12월 18일 모리셔스 국회가 채택한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of 1998)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인권보호법은 이듬해인 1999년 2월 공포되고 발효됨.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2001년 4월에 임명됨<sup>1592</sup>). 1998 인권보호법은 2010년에 개정되어, 개정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mendment) Act 2012)에 의해 현재의 기능 및 구조를 갖추게 됐음<sup>1593</sup>). 인권보호법 제3조는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이며<sup>1594</sup>,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떤 개인이나 당국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임을 밝힘<sup>1595</sup>).

모리셔스 인권위원회는 설립법인 인권보호법 외에 진정 접수 및 조사 기능과 관련한 근거법 2개를 더 두고 있는데, 경찰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할 근거가 되는 ‘경찰 진정법(Police Complaints Act 2012)’과 고문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구금시설 조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는 ‘국가예방메커니즘법(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t 2012, N.P.M.A. 2012)’이 있음<sup>1596</sup><sup>1597</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 설립 근거법 및 활동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

1592) Id. p.9

1593) 2012 모리셔스 개정 인권보호법(이하 ‘인권보호법’, Protection of Human Rights (Amendment) Act 2012, P.H.R.A.2012)

1594) P.H.R.A.2012 art.3(1) (인권보호법 제3조 1항) : There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shall be a body corporate.

1595) P.H.R.A.2012 art.3(2) (인권보호법 제3조 2항) : The Commission shall not,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be subject to the direction or control of any other person or authority.

1596) 모리셔스 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43, 59

1597) <http://nhrc.govmu.org/English/Rules-Regulations-Policies/Pages/Legislation.aspx> (검색일: 2016.10.16.)

(가) 인원 및 부서

현재 모리셔스 인권위에서 정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 수는 47명이며, 이중 27명은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인사임<sup>1598</sup>). 인권보호법과 인권위 홈페이지가 소개하는 모리셔스 인권위 조직은 크게 현 위원장인 디루자랄 시툴싱(Dheerujlall Seetulsing)을 수장으로, 위원회 행정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Secretary of the Commission)과 함께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 경찰 진정과(Police Complaints Division), 국가 예방메커니즘과(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 3개 조직으로 구성됨<sup>1599</sup>).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 외 직원(Staff)을 사무관(Public Officer)직에 채용할 수 있음<sup>1600</sup>). 3개의 분과(Divisions)은 각각 부위원장(Deputy Chairperson) 1인과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위원 2인으로 구성됨<sup>1601</sup>).

①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는 인권위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인권 침해 진정(Complaints) 사례들을 처리하는 분과로, 정부 및 공공 기관, 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중에서 법원(Courts), 검찰 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공공 서비스위원회(Service Commission)의 관할권(jurisdiction)이 아닌 사례들을 수입하고<sup>1602</sup>,

1598) 모리셔스 재정경제발전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to be Appropriated by Votes, vote 1-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p.40

(출처: <http://mof.govmu.org/English/Pages/Budget2016Ministries.aspx> 검색일: 2016.10.16.)

1599) P.H.R.A.2012 art.3(3) (인권보호법 제3조 3항) : There shall be within the Commission (a) a Human Rights Division; (b) a Police Complaints Division; (c) a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

1600) P.H.R.A.2012 art.5(1) (인권보호법 제5조 1항) : The Secretary to the Cabinet shall mak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 officer of the rank of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who shall be th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and such other administrative and other staff as the Commission and any Division may require.

1601) P.H.R.A.2012 art.3(7) (인권보호법 제3조 7항) : Every Division shall consist of (a) the Chairperson, as its head; (b) a Deputy Chairperson who shall be assigned to it; and (c) 2 member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1602) P.H.R.A.2012 art.4(1)(a) (인권보호법 제4조 1-a항) : the Human Rights Division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r the powers conferred

조사 작업을 수행함.

② 경찰 진정과(Police Complaints Division)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 분과는 2012년 경찰진정법(Police Complaints Act of 2012)에 근거해 인권위 내부에 설립되었음. 본래 모리셔스는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처리하는 ‘경찰 진정조사 사무소(Complaints Investigation Bureau of the Police Force)’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경찰 내부 기관이었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경찰 인권 침해 감시 조직으로서 인권위 내부에 경찰 진정과를 설립하게 됨<sup>1603</sup>. 이 분과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경찰 출신을 채용할 수 없음<sup>1604</sup>.

③ 국가 예방메커니즘과(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그중에서도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분과로, 모리셔스가 비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제정한 국내법인 국가 예방메커니즘법(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t 2012)에 근거해 설치되었음<sup>160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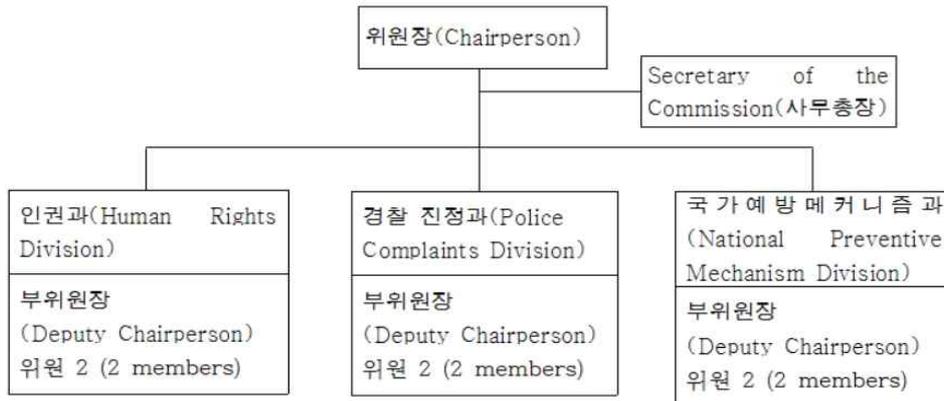
---

on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or the appropriate Service Commission –  
(a) enquire into any written complaint from any person alleging that any if his human rights has been, is being or is likely to be violated by the act or omission of any other person acting in the performance of any public function conferred by any law or otherwise in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any public office or any public body;

1603) 모리셔스 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3』, p.24

1604) Police Complaints Act 2012, P.C.A.2012 art.7(2) (경찰 진정법 제7조 2항) : No serving police officer shall form part of the staff of the Division.

1605)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t 2012, N.P.M.A.2012 Preamble (국가예방메커니즘법 서문) : An Act To give effect in Mauritius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o provide for the setting up of a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출처: 홈페이지(<http://nhrc.govmu.org/English/AboutUs/Pages/Members.aspx>) 토대로 작성

[모리셔스-그림 32] 모리셔스 국가인권위 조직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보호법상 사무소 관련 조항은 없으나 수도인 포트루이스(Port Louis)에 본부를 설립함<sup>1606</sup>. 모리셔스 인권위원회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모리셔스 인권위는 정부의 예산을 받으며 인권보호법상 외부 지원을 받지 않음<sup>1607</sup>. 인권위는 매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3달 전에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함<sup>1608</sup>. 인권위 예산 승인은 국회 표결(votes)로 결정함<sup>1609</sup>. 위원회 예산은 국가 회계 감사관(Director of Audit)의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은 예산 보고서는 책임 부처 및 국회에 제출함<sup>1610</sup>.

1606) <http://nhrc.govmu.org/English/Pages/Contact-Us.aspx> (검색일: 2016.10.16.)

1607) L A Darga, 『The Ombudsma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uritius』, 2009, p.21

1608) P.H.R.A.2012 art.12(1) (인권보호법 제12조 1항) : The Commission shall, not less than 3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of every financial year, submit to the Minister an estimate of its expenditure.

1609) <http://mof.govmu.org/English/Pages/Budget2016Ministries.aspx> (검색일: 2016.10.16.)

1610) P.H.R.A.2012 art.12(2)~(3) (인권보호법 제12조 2~3항) : (2) The account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udited by the Director of Audit and any expenditu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such audit shall be payable by the Commission to the Director of Audit.

<모리셔스-표 9> 모리셔스 국가인권위원회 2014, 2015 예산

2014년	2015/16년
14,623,000 모리셔스루피(MUR) (약 4억 7천만 원)	31,000,000 모리셔스루피(MUR) (약 9억 9천 6백만 원)

출처: 모리셔스 재정경제발전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to be Appropriated by Votes, vote 1-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p.39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3인, 각 분과 위원 6인은 모두 국무총리(Prime Minister)의 추천을 받아 모리셔스 대통령(President)이 임명함<sup>1611)</sup>.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리셔스 인권위는 1명의 위원장(Chairperson)과 3개 분과에 배치되는 3명의 부위원장(Deputy Chairpersons)을 임명함<sup>1612)</sup>. 위원장은 판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안판사(Magistrate),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률가, 치안판사 혹은 법률가로서 활동 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인물들 중에서 임명하며<sup>1613)</sup>, 부위원장은 법률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들 중에서 임명함<sup>1614)</sup>.

(3) The accounts of the Commission, as certified by the Director of Audit, together with the audit report thereon shall be forwarded annually to the Minister by the Commission and the Minister shall cause the audit report to be laid, as soon as may be after it is received, on the table of the Assembly.

1611) P.H.R.A.2012 art.3(8)(a) (인권보호법 제3조 8-a항) : The Chairperson, the Deputy Chairperson and the members of every Divis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cting on the advice of the Prime Minister,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resident thinks fit.

1612) P.H.R.A.2012 art.3(4) (인권보호법 제3조 4항) :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 a Chairperson, who shall be the head of every Division; and (b) 3 Deputy Chairpersons, each of whom shall be assigned to a Division.

1613) P.H.R.A.2012 art.3(5)(a) (인권보호법 제3조 5-a항) : The Chairperson shall be a person who has been (i) a Judge; (ii) a Magistrate for not less than 10 years; (iii) a law practitioner for not less than 10 years; or (iv) a Magistrate and a law practitioner for an aggregate period of not less than 10 years.

1614) P.H.R.A.2012 art.3(5)(b) (인권보호법 제3조 5-b항) : The Deputy Chairpersons

(나) 위원

위원들은 부위원장과 함께 3개 분과에 각각 2명씩 배치되는데<sup>1615)</sup>,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 위원 2명은 인권, 법, 고용, 산업관계, 경영, 교육, 사회학, 치안, 사회복지, 심리학, 정신의학, 의학 혹은 교도소 운영 영역의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인물 중에서 임명함<sup>1616)</sup>. 경찰 진정과(Police Complaints Division) 위원은 이 분과 근거법인 경찰진정법(Police Complaints Act 2012)에 근거해 임명하며 자격 조건은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 위원과 같음<sup>1617)</sup>. 국가 예방메커니즘과(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 위원은 근거법인 국가 예방메커니즘법(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t 2012) 제3조 5항에 근거하여 1인은 수감시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추천 명단 가운데서 임명하며, 다른 1인은 인권, 법, 고용, 산업관계, 경영, 교육, 사회학, 치안, 사회복지, 심리학, 정신의학, 의학 혹은 교도소 운영 영역의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인물 중에서 임명함<sup>1618)</sup>.

(다) 사무총장(Secretary of the Commission)

---

shall be persons who have been law practitioners for not less than 5 years.

- 1615) P.H.R.A.2012 art.3(7) (인권보호법 제3조 7항) : Every Division shall consist of (a) the Chairperson, as its head; (b) a Deputy Chairperson who shall be assigned to it; and (c) 2 member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 1616) P.H.R.A.2012 art.3B(3) (인권보호법 제3-B조 3항) : (...) The members referred to in subsection (2)(c) shall be persons having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law,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sociology, policing, social work, psychology, psychiatry, medicine or prison management.
- 1617) P.C.A.2012 art.3(4) (경찰 진정법 제3조 4항) : (...) The members referred to in subsection (3)(c) shall be persons having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law,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sociology, policing, social work, psychology, psychiatry, medicine or prison management.
- 1618) N.P.M.A.2012 art.3(5) (국가예방메커니즘법 제3조 5항) : (...) Of the 2 members referred to in subsection (4) (c) - (a) one member shall be selected from a list submitted b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volved in social work in prisons; and (b) the other member shall be a person having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law,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sociology, policing, social work, psychology, psychiatry, medicine or prison management.

위원회는 내각의 차관급 인사를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은 모리셔스 행정 구조상 수석차관보(Principal Assistant Secretary)급 지위에 해당되며, 위원회 행정 책임자로서 최고 사무관(Chief Executive Officer)이기도 함<sup>1619</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사무총장은 모리셔스 행정 구조상 수석차관보(Principal Assistant Secretary)급 지위에 해당되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지위는 알 수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보호법 제11조는 인권위가 매년 연간 보고서를 국회 심사를 받기 전 관할 부처가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함을 명시함<sup>1620</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모두 기본 4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1621</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조언을 받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임무 수행 불능(inability), 심신의 쇠약(infirmity),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

1619) P.H.R.A.2012 art.5(1)~(2) (인권보호법 제5조 1~2항) : (1) The Secretary to the Cabinet shall mak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 officer of the rank of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who shall be th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and such other administrative and other staff as the Commission and any Division may require.

(2) Th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mission and shall exercise such powers and discharge such administrative functions as the Commission may delegate to him.

1620) P.H.R.A.2012 art.11(1)~(2) (인권보호법 제11조 1~2항) : (1) The Commission shall, not later than 31 March in each year, submit a report on its activities and those of its Divisions during the preceding year to the President and may, at any other time, submit a special report on any matter which, in its opinion, is of such urgency or importance that it should not be deferred until submission of the annual report.

(2) The President shall cause every report of the Commission to be laid before the Assembly within one month of its submission.

1621) P.H.R.A.2012 art.3(9) (인권보호법 제3조 9항) : the Chairperson, the Deputy Chairpersons and the members of every Division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4 years and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misbehaviour) 등의 이유로 해임할 수 있음<sup>1622</sup>).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모리셔스 인권보호법상 인권위원회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기능은 1) 인권 보호 관련 법안 및 정책, 인권 침해 요소를 검토하고 정부에 권고나 의견을 통해 자문 제공 2) 인권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입법 및 이행을 위한 노력 4) 국제인권조약기구 모리셔스 정부 심사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인 보고서 제출 5) 국내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실행 등을 포함함<sup>1623</sup>. 모리셔스 인권위원회의 보다 핵심적인

---

1622) P.H.R.A.2012 art.3(10) (인권보호법 제3조 10항) : The President may, on the advice of the Prime Minister, remove the Chairperson, any Deputy Chairperson or any member of a Division from office for inability to perform the functions of his office, whether arising from infirmity of body or mind, or for misbehaviour.

1623) P.H.R.A.2012 art.3A (인권보호법 제3-A조) : The Commission shall - (a)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b) review the safeguard provided by or under any enactmen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 review the factors or difficulties that inhibit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 submit to the Minister any opinion, recommendation, proposal or report on any matter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 prepare reports on the national situation with regard to human rights in general, and on more specific matters; (f) inform the Minister of situation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advise on ways in which such situations can be ended; (g) promote and ensure the harmonis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s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Mauritius is a party, and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h) encourage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g), and ensure their implementation; (i) contribute to the reports which Mauritius is required to submit to United Nations bodies and committees, and to regional institutions, pursuant to its treaty obligations and, where necessary, to express an opinion on the subject, with due respect for its independence; (j)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and any other organisation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regional institutions and the national institutions of other countries that are competent in the areas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k) assist in the formulation of programmes for the teaching of, and research into, human rights and take part in their execution in schools, universities and professional circles; (l) publicise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by increasing public awareness, especially through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by making use of all press organs; (m)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it may consider to be conducive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기능은 인권 진정(Complaints)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 경찰 진정과(Police Complaints Division), 국가 예방메커니즘과(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의 활동에 있음.

(1) 인권과(Human Rights Division) 진정 접수 및 조사, 피해자 구제

인권과는 인권보호법이 규정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 작업을 수행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Conciliation) 역할을 담당함. 위원회 인권과의 관할에 속하는 침해 사례들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 가해자인 사례들이며 사적 주체에 의한 침해 사례는 다루지 않음<sup>1624</sup>). 모리셔스 인권위원회 인권과는 인권보호법에 근거한 인권 침해 사례들만을 관할하는데, 인권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법이 명시하는 인권이란 모리셔스 헌법(Mauritius Constitution) 제2장(Chapter II)이 규정하는 권리들을 뜻함. 모리셔스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포함하지 않음<sup>1625</sup>). 위원회 홈페이지 역시 사회적 권리 침해 사례들은 진정 접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sup>1626</sup>). 인권위의 진정 접수 및 조사 절차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와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듣고, 사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검토하거나 관련 장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됨<sup>1627</sup>).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기소(Prosecution)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

1624) 모리셔스 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3』, p.22

162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Chapter II art.3~16 (모리셔스 헌법 제2장 제3조~16조) :

3.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individual ; 4. Protection of right to life ; 5. Protection of right to personal liberty ; 6. Protection from slavery and forced labour ; 7. Protection from inhuman treatment ; 8. Protection from deprivation of property ; 9. Protection of privacy of home and other property ; 10. Provisions to secure protection of law ; 11. Protec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 12.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 13. Protection of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14. Protection of freedom to establish schools ; 15. Protection of freedom of movement ; 16.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sector on the ground of race, caste, place of origin, political opinions, colour, creed or sex

1626) 모리셔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FAQs “Can the NHRC enquire into complaints relating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출처: <http://nhrc.govmu.org/English/Faqs/Pages/default.aspx> 검색일:2016.10.16.)

1627) 모리셔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FAQs “How does the NHRC operate?”

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sup>1628</sup>). 만약 조정에 실패하거나 당사자들의 의의가 있을 경우, 공공 검찰(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 사례를 회부하여 해당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시정 교육이 필요한 경우 공공 서비스위원회(Service Commission)에 사례를 보내며, 준국가기관 혹은 공기업 소속원에 의한 인권침해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교육을 위해 동 기관으로 사례를 회부함<sup>1629</sup>).

(2) 경찰 진정과(Police Complaints Division) 조사 활동 및 피해자 구제

경찰진정법(Police Complaints Act 2012)에 근거해, 위원회 경찰 진정과는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혹은 경찰의 인권 보호 의무 불이행, 경찰 구금시설 혹은 경찰의 공무 집행 과정 중 발생한 사망 사례를 조사하고, 경찰로 하여금 가해 사실을 밝히고 해당 침해 행위를 근절하도록 권고하며, 입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경찰이 시민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함<sup>1630</sup>). 위원회는 경찰 진정 조사를 위해서 조사관

1628) P.H.R.A.2012 art.4(3) (인권보호법 제4조 3항) : The Human Rights Division shall, in the first place, attempt to resolve any complaint, or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n enquiry pursuant to subsection (1)(c), by a conciliatory procedure.

1629) P.H.R.A.2012 art.4(4) (인권보호법 제4조 4항) : Where the Human Rights Division has not been able to resolve a matter through conciliation, it shall, on the completion of its enquiry – (a) where the enquiry disclose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negligence in the prevention of such violation, refer the matter to (i)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where it appears that an offence may have been committed; (ii) the appropriate Service Commission where it appears that disciplinary procedures may be warranted; (iii)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appropriate public body where it appears that disciplinary action is warranted against an employee of a public body who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Service Commission;

1630) P.C.A.2012 art.4 (경찰 진정법 제4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r the powers conferred on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the Ombudsman or the Disciplined Forces Service Commission, the functions of the Division shall be – (a) to investigate any complaint made by any person, or on his behalf, against any act, conduct or omission of a police officer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y, other than a complaint made in relation to an act of corruption or a money laundering offence; (b). to investigate the death of any person which occurred when the person was in police custody or as a result of police action; (c) to advise on ways in which any police misconduct may be

(investigator)을 임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사례 조사를 위해 경찰(Police Force) 및 기타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권한과 정보를 얻을 권한, 경찰 및 공공기관을 이용할 권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소유 장소에 출입할 때 지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권한 등을 가짐<sup>1631)</sup>. 조사 작업 후, 인권위는 관련 당국들(relevant authority)에 권고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 경찰의 형법상 범죄(criminal offence) 사실을 확인할 경우 기소 요청과 함께 공공 검찰 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 회부하며, 인권 교육 혹은 훈련 등 처벌 외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례를 공권력 교육 서비스위원회(Disciplined Forces Service Commission)에 회부함. 또한, 피해자를 위한 보상 혹은 치유 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구제 조치 권고와 함께 법무장관(Attorney-General)에게 전달함<sup>1632)</sup>. 위원회의 권고를 받

---

addressed and eliminated; (d) to perform such other function as may promote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olice and as may be conferred upon it by any other enactment.

- 1631) P.C.A.2012 art.10(2)~(4) (경찰 진정법 제10조 2~4항) : (2)-(a)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n investigator may, for the purposes of an investigation (i) enter and search any premises occupied or used by the Police Force or any other public body in that capacity; (ii) inspect any document or other thing on the premises; (iii) take copies of any document on the premises. (b) The Police Force and every other public body shall make available to an investigator such faciliti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Division to exercise its powers under this Act.
- (3) Where an investigator wishes to enter and search private premises in furtherance of an investigation, he shall apply to a District Magistrate for a search warrant, setting out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urpose of entering the premises.
- (4) Notwithstanding any other enactment, the Supreme Court may, on an application made by the Division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make such order, issue such writs and give such direction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this Act.
- 1632) P.C.A.2012 art.14(1)(b) (인권보호법 제14조 1-b항) : may, where appropriate, refer the matter to (i)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with a recommendation that the police officer be prosecuted for a criminal offence; (ii) the Disciplined Forces Service Commission, with a recommendation that disciplinary proceedings, or such other action as the Division considers desirable, be taken against the police officer; (iii) the Attorney-General, with a recommendation that the complainant or his representative be paid such compensation or granted such relief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은 당국은 3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이행 사실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함<sup>1633</sup>). 만약 검찰, 공권력 교육 서비스위원회, 법무장관 등 당국이 인권위 권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초기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함<sup>1634</sup>).

(3) 국가 예방메커니즘과(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Division) 조사 및 구제

이 분과는 구금시설 내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며 이에 관한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임무를 수행함. 위원회 예방메커니즘과의 권한과 기능은 국가 예방메커니즘법(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t 2012)에 바탕을 둬. 구금시설 등 모든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시설에 접근해 수감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권한, 구금시설 내 모든 장소와 시설을 조사할 권한, 수감자 혹은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만한 사람과 대면하고 인터뷰할 권한, 조사 대상 구금시설 및 수감자를 선택할 권한, 시설 방문 계획 등 조사 절차를 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할 권한,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대동할 권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부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위원들과 접촉하고 정보를 교환할 권한 등을 가짐<sup>1635</sup>). 조사 후에는 유엔

1633) P.H.R.A.2012 art.14(2) (인권보호법 제14조 2항) : Where the relevant authority agree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Division, it shall (a) initiate appropriate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the recommendation; (b) within 6 months, inform the Division of the action taken.

1634) P.H.R.A.2012 art.14(3)~(4) (인권보호법 제14조 3~4항) : (3) Where the relevant authority does not agre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Division, it shall inform the Division of its decisio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4) In this section “relevant authority” means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the Disciplined Forces Service Commission or the Attorney-General, as the case may be.

1635) N.P.M.A.2012 art.5(2) (국가예방메커니즘법 제5조 2항) :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its powers under subsection (1), the Division shall, notwithstanding any other enactment, be given (a) full access to 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places of detention, as well as the number of places and their location; (b) access to all information referring to the

고문방지협약상 내용을 고려해 해당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 개선에 관해 책임 부처에 권고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 혹은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부처 및 관련 당국에 제출하며, 동법이 부여하는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과 협력함<sup>1636</sup>).

바) 특이사항

- (1)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mendment) Act 2012), 경찰진정법(Police Complaints Act 2012), 국가 예방메커니즘법(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t 2012) 등 세 가지 활동근거법을 토대로 인권 침해 진정(Complaints) 접수 및 조사,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며, 정부 및 공공 기관, 공무원, 경찰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임. 현재까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권한으로 각 부처, 경찰, 공기관 등에 침해 사례에 관해 권고

---

treatment of those persons as well as their conditions of detention; (c) access to any place of detention and its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d) the opportunity to have private interviews with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ersonally or with a translator where necessary, as well as with any other person whom they have reason to believe may supply relevant information; (e) the freedom to choose the places they want to visit and the persons they want to interview; (f) the freedom to determine its own procedures, including its programmes of visits; (g) the freedom for its members to be accompanied, if needed, by such expert with the relevant professional expertise, experience and knowledge as the Chairperson may determine, on visits to detention centres; (h) the right to have contacts with the Subcommittee and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it.

- 1636) N.P.M.A.2012 art.4 (국가예방메커니즘법 제4조) : The functions of the Division shall be (a) to visit places of detention on a regular basis so as to examine th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with a view to ensuring their protection against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b) to investigate any complaint which may be made by a detainee and, where the detainee so requests, investigate the complaint privately; (c) to make to the Minister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and condition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places of deten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levant norms of the United Nations; (d) to submit to the Minister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proposals and observations concerning legislation relating to places of detention and th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e) to work, where appropriate, in co-operation or consultation with any person or body, whether public or private, in connection with the discharge of any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and the Optional Protocol.

하며 해당 당국으로부터 권고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음.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활동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도모하는 조정(conciliatory) 기관의 성격이 강함.

- (2) 인권 침해 및 공무원에 의한 침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관할하는 기관들인 옴부즈맨(Ombudsman), 공권력 교육 서비스위원회(Disciplined Forces Service Commission), 공공서비스위원회(Service Commission), 공공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등과 관할권(jurisdiction)을 나누어 협력하여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 (3)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 총장 등 부처 상위 조직에 직접 권고하고 정책 및 법안을 제안하며, 특히, 대통령과 국회에 연간 보고서 및 특별 주제 보고서를 직접 제출할 권한을 가짐.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2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8년부터 4월 심사에서 A등급, 2014년 10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1637)</sup>.

47) 모로코

모로코 국가 정보 <sup>1638)</sup>	
면적	710,850km <sup>2</sup>
인구	3,350만 명 (2015년 기준)
수도	라바트(Rabat)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주요언어	아랍어, 베르베르어, 불어
주요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1.1%)
주요민족	아랍인(60%), 베르베르인(36%), 기타(4%)
GDP	1,006억 달러(2015년)
1인당	3,002 달러(2015년)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모로코 국가인권이사회(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1637)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1638)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0/1\\_23100.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10/1_23100.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10.28.)

du Royaume du Maroc, CNDH)

- (2) 설립연도: 1990년 5월 8일<sup>1639)</sup>
- (3) 설립배경: 모로코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1990년 5월 8일에 인권자문이사회(Conseil consultatif des Droits de l'Homme, CCDH)가 설립됨. 초기 인권자문이사회는 모로코 전환기 민주주의 시기의 기관 중 하나로서 과거 발생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들을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해왔음. 2001년 모로코는 '인권자문이사회 재구성에 관한 왕령(Dahir n°1-00-350 du 15 moharem 1422 (10 avril 2001) concernant la réorganisation du Conseil consultatif des droits de l'Homme)'을 발행해 인권자문이사회 권한과 임무를 확대하고 파리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강화함. 이후 이사회는 자문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유지해왔음.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모로코에서는 중요한 법적·헌법적 개혁이 일어났고, 그 중 하나가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이었음. 2011 헌법 개정안 제 161조는 새로운 국가인권이사회 설립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 국왕은 2011년 3월 1일에 '국가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왕령(Dahir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을 발행함. 이로써 인권자문이사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이사회로 재탄생함<sup>1640)1641)</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모로코 국가인권이사회는 2011 7월 1일에 채택된 '2011 모로코 개정 헌법(Constitution marocaine du 1 juillet 2011)<sup>1642)</sup>과 개정 헌법을 준수해 2011년 3월 1일에 발행된 '국가인권이사회 설

1639) 모로코 국가인권이사회의 전신 '인권자문이사회(Conseil consultatif des Droits de l'Homme, CCDH)'는 1990년에 설립됐으며, 이는 2011년 3월 1일에 현재의 '국가인권이사회(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CNDH)'로 재편되었음.

<http://www.cndh.ma/fr/textes-de-referance/discours-de-sa-majeste-le-roi-hassan-ii-lors-de-linstallation-du-conseil> (검색일: 2016.10.19.)

1640) <http://www.cndh.ma/fr/presentation/presentation-du-cndh> (검색일: 2016.10.26.)

1641) Alkarama, 『L'institut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du Royaume du Maroc devant le Comité international de coordination des INDH』, 2015, p.3

1642) Constitution marocaine du 1 juillet 2011, art.161 (2011 모로코 개정 헌법 제161조) : Le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est une institution nationale pluraliste

립에 관한 왕령(Dahir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을 근거법으로 함.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왕령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기구<sup>1643</sup>).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모로코 인권이사회는 드리스 엘야자미(Driss El Yazami) 현 위원장을 수장으로, 이사회 행정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인 사무국(Secrétariat), 이사회 분기와 분기 사이(intervalle des sessions)에 소집되는 비(非) 상설 행정 조직인 조정실(Bureau de coordination), 이사회 위원들이 소속되어 주요 활동을 하는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등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장 및 위원 외에 사무국 전체 직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① 사무국(Secrétariat)

사무국은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행정 조직으로서 사무총장 (secrétaire général)이 이끌고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이사회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이사회에 접수된 진정 처리를 포함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 워킹그룹 활동 조직 및 지원, 이사회 결정의 집행, 이사회 회의와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서 작성 등의 준비,

---

et indépendante, chargée de connaître de toutes les questions relatives à la défense et à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à la garantie de leur plein exercice et à leur promotion, ainsi qu'à la préservation de la dignité, des droits et des libertés individuelles et collectives des citoyennes et citoyens, et ce, dans le strict respect des référentiels nationaux et universels en la matière. (국가인권이사회는 인권과 자유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관할하는 다원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서,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개인과 국민 집단의 존엄, 인권, 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함.)

- 1643) Dahir n° 1-11-19 du 25 rabii I 1432 (1er mars 2011)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D.C.N.D.H. art.54 (2011 모로코 국가인권이사회회 설립에 관한 명령, 이하 '국가인권이사회령' 제54조) : Le Conseil jouit, en tant qu'institution nationale indépendante des droits de l'Homme, de la pleine capacité juridique et de l'autonomie financière.

이사회에서 생성한 모든 문서와 자료 정리 및 보관 등을 담당함<sup>1644</sup>). 사무국은 총 6개의 부서(Départements)인 인사 재정 총무부(Départ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et financières et des affaires générales), 인권 정책부(Département des politiques publiques liées au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대외 소통 및 홍보부(Département de la communication et des relations extérieures), 대외 협력부(Département de la coopération et du partenariat), 인권 보호 감시부(Département du monitoring et de la protection), 연구 조사 및 역량강화부(Département des études, des recherches, de la documentation et du renforcement des capacités) 등을 하부 조직으로 두고 있음<sup>1645</sup>).

② 조정실(Bureau de coordination)

이사회 결정 및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장 소집에 의해 한시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으로서 위원장(Président), 사무총장(secrétaire

1644) Règlement intérieur du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R.I.C.N.D.H. art.8 (국가인권이사회 내규, 이하'내규' 제8조) : (...) Il veille, en cette qualité, à : - La gestion de l'administration du Conseil; - La coordination des travaux des groupes de travail permanents et des groupes de travail thématiques; - L'exécution et au suivi des décisions du Conseil après leur approbation; - La prise de toutes les mesures nécessaires à la préparation et à l'organisation des travaux du Conseil, en procédant à l'élaboration des documents relatifs aux réunions, aux plans et aux programmes du Conseil; - L'enregistrement des demandes de saisine du Conseil par les instances et les organisations nationales et internationales d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les administrations, les institutions et les mécanismes régionaux relevant du Conseil, ainsi que les plaintes reçues des organisations et des individus; - La tenue des données, rapports, dossiers et documents du Conseil et leur conservation dans les archives du Conseil.

1645) R.I.C.N.D.H. art.66 (내규 제66조) : Outre la présidence du Conseil, son cabinet et son secrétariat général, il est créé une structure administrative qui se compose des départements suivants : - Départ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et financières et des affaires générales ; - Département des politiques publiques liées au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 - Département de la communication et des relations extérieures ; - Département de la coopération et du partenariat ; - Département du monitoring et de la protection ; - Département des études, des recherches, de la documentation et du renforcement des capacités.

général), 워킹그룹 조정관 및 보고관(coordonateurs et rapporteurs des groupes de travail), 지역 인권위원회 위원장(présidents des commissions régionales) 등으로 구성됨<sup>1646</sup>). 이사회 결정에 따른 연간 프로그램 계획, 위원회 제출 전 프로젝트 예산안 심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의 이행 모니터링 등을 담당함<sup>1647</sup>).

③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인권이사회는 주제별, 영역별 5개 워킹그룹을 두고 있음. 각각의 워킹그룹은 다수위원들과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조정관(coordonateur) 1인, 보고관(rapporteur) 1인으로 구성됨<sup>1648</sup>). 5개 워킹그룹 주제와 활동은 다음과 같음.

---

1646) D.C.N.D.H. art.52 (국가인권이사회령 제52조) : Afin d'assister le Conseil dans l'accomplissement de ses missions, il est créé un bureau de coordination composé du président et du secrétaire général ainsi que des coordonateurs et des rapporteurs des groupes de travail, et chaque fois que de besoin, les ou des présidents des commissions régionales. (…)

1647) R.I.C.N.D.H. art.13 (내규 제13조) : Le bureau de coordination exerce les missions qui lui sont déléguées par le Conseil dans le cadre des attributions qui lui sont dévolues, et assure l'exécution et le suivi des décisions du Conseil. A cet égard, il contribue à : - L'élaboration du projet de programme d'action annuel du Conseil ; - La coordination des programmes d'action des commissions et groupes de travail, en tenant compte du programme annuel d'activités du Conseil, ainsi que des décisions et recommandations du bureau du Conseil ; - La délibération au sujet du projet de budget avant sa soumission au Conseil pour approbation ; - Le suivi des différentes étapes d'élaboration du projet de rapport annuel (…)

1648) R.I.C.N.D.H. art.31~32 (내규 제31~32조) : 31.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44 et 45 du dahir précité n° 1.11.19, le Conseil créé des groupes de travail permanents et des commissions spécialisées.

32. Les groupes de travail permanents créés au sein du Conseil sont répartis comme suit : - Un 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a parité, de la non-discrimination et des nouvelles générations des droits de l'Homme ; - Un 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l'examen des violations ; - Un groupe de travail chargé du développemen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partenariats et de la coopération ; - Un 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a promotion de la culture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consolidation démocratique ; - Un 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évaluation et du suivi des politiques publiques dans les domaines des droits de l'Homme et de l'harmonisation des législations.

평등과 반-차별, 3세대 인권 워킹그룹(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a parité, la non discrimination et des nouvelles générations de droits de l'Homme)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상황 감시, 정책에 평등과 형평성, 존엄의 원칙을 보장하는 의견 제시, 환경권·소비자권리·직업윤리 등 3세대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sup>1649)</sup>
인권보호 및 감시 워킹그룹(Groupe de travail chargé du monitoring et d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인권침해 감시 및 조사, 구금시설 방문 조사, 인권 관련 법 적용과 이행 모니터링 <sup>1650)</sup>
국제관계 및 협력 워킹그룹(Groupe de travail chargé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partenariats et de la coopération)	인권 사안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 제시, 인권이사회의 국내 및 국제 차원의 협력 도모, 유엔 등 국제적·지역적 인권보호 시스템과 협력 강화 <sup>1651)</sup>
인권문화 증진과 민주주의 강화 워킹그룹(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a promotion de la culture des droits de l'Homme et la consolidation de la construction démocratique)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시민 연대 및 시민행동과 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제안, 공공 기관과 시민 사회의 협력 형성, 인권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 증대를 위한 방안 제시 <sup>1652)</sup>
인권 관련 정책 및 법 이행 평가 및 감시 워킹그룹(Groupe de travail chargé de l'évaluation et du suivi des politiques publiques dans les domaines des droits de l'Homme et de l'harmonisation des législations)	인권 관련 정책 감시, 국제 인권기준과 국내법의 조화 및 국제 인권기준 이행 모니터링,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비준 촉구 및 비준 협약 이행 감시 <sup>1653)</sup>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가) 모로코 국가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 내규 제2조에 따라 수도인 라바트(Rabat)에 본부를 설립함<sup>1654)</sup>.

(나) 지역사무소

내규 제16조에 근거해 모로코 전역에 지역사무소(commissions régionales)를 설립하며<sup>1655)</sup>, 각 지역사무소마다 16인~30명 사이의 위

1649) <http://www.cndh.ma/fr/groupe-de-travail/le-groupe-de-travail-charge-de-la-parite-la-non-discrimination-et-des-nouvelles> (검색일: 2016.10.26.)

1650) <http://www.cndh.ma/fr/groupe-de-travail/le-groupe-de-travail-charge-du-monitoring-et-de-la-protection-des-droits-de> (검색일: 2016.10.26.)

1651) <http://www.cndh.ma/fr/groupe-de-travail/le-groupe-de-travail-charge-des-relations-internationales-des-partenariats-et-de> (검색일: 2016.10.26.)

1652) <http://www.cndh.ma/fr/groupe-de-travail/le-groupe-de-travail-charge-de-la-promotion-de-la-culture-des-droits-de-lhomme-et> (검색일: 2016.10.26.)

1653) <http://www.cndh.ma/fr/groupe-de-travail/le-groupe-de-travail-charge-de-levaluation-et-du-suivi-des-politiques-publiques> (검색일: 2016.10.26.)

1654) R.I.C.N.D.H. art.2 (내규 제2조) : Le siège permanent du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est sis à Rabat.

원들과 위원장 1인, 인권보호 중재자 지역 대표(délégué régional de l'institution du Médiateur) 1인을 둠<sup>1656</sup>). 지역사무소로는 라바트-케니트라 사무소(CRDH Rabat-Kénitra), 페스-메크네스 사무소(CRDH Fès-Meknès), 마라케시 사무소(CRDH Marrakech), 카사블랑카-세타 사무소(CRDH Casablanca - Settat), 에라시디아-와르자жат 사무소(CRDH Errachidia -Ouarzazate), 베니멜랄-쿠리브가 사무소(CRDH Béni Mellal-Khouribga), 탕헤르 사무소(CRDH Tanger), 우지다-피귀 사무소(CRDH Oujda-Figuig), 탕탕-겔뫼 사무소(CRDH Tantan - Guelmim), 아가디르 사무소(CRDH Agadir), 알호세이마-나도르 사무소(CRDH Al Hoceima-Nador), 라운-에스스마라 사무소(CRDH Laayoun Es-Smara), 다클라-아우세르드 사무소(CRDH Dakhla - Aoussered) 등 13개 사무소를 설치함<sup>1657</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이사회법 제54조는 이사회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권이사회 예산 출처는 모로코 정부 예산 외에도 국내외 공공 기관 및 사인의 지원, 기부 및 유산 등을 포함함. 인권이사회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일반 예산(budget général)으로 분류됨<sup>1658</sup><sup>1659</sup>).

1655) R.I.C.N.D.H. art.16 (내규 제16조) :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premier du dahir précité n° 1.11.19, le Conseil est assisté dans l'exercice de ses attributions, par des commissions régionales créées à travers toutes les régions du Royaume.

1656) R.I.C.N.D.H. art.17 (내규 제17조) : Chaque commission régionale des droits de l'Homme, dont le nombre des membres varie entre 16 membres au minimum et 30 membres au maximum, se compose, outre son/sa président(e) et le délégué régional de l'institution du Médiateur (…)

1657) <http://www.cndh.ma/fr/commissions-regionales-des-droits-de-lhomme/presentation-missions-et-mandat-territorial-de-chaque> (검색일: 2016.10.26.)

1658) D.C.N.D.H. art.55 (국가인권이사회령 제55조) : Le Conseil est doté d'un budget propre destiné à couvrir ses dépenses de fonctionnement et d'équipement. Le budget du Conseil comprend :

En recettes : les revenus de ses biens meubles et immeubles ; les subventions du budget de l'Etat ; les subventions de tout organisme national ou international de droit public ou privé ; les revenus divers ; les dons et legs. (…)

Les subventions allouées au Conseil sont inscrites au budget général de l'Etat.

1659) 모로코 정부 예산안에서 인권이사회 예산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인권이사회 홈페이지도 최근 1~2년간 연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모로코 국왕이 추천이나 협의 없이<sup>1660)</sup> 왕령(Dahir)을 내려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임명하지 않음<sup>1661)</sup>.

(나) 위원

위원은 총 30명으로, 다양성과 성비, 경쟁력 및 전문성,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추천받아 모로코 국왕이 왕령을 통해 임명함. 임명 위원들은 5개 범주로 분류하여 임명하는데, 8명은 국내외적으로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명성을 지닌 인물들 가운데서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 11명은 인권단체 및 시민권, 사회권, 환경, 여성, 아동,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 8명은 모로코 국회 상원과 하원 의장이 각각 추천하는데, 하원 의장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2인,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중에서 2인을 추천함. 상원 의장은 대학 교수, 언론인,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4개 조직들이 각각 추천하는 인물 4명을 추천함. 2인은 고등 종교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나머지 1인은 모로코 판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sup>1662)</sup>.

---

1660) Alkarama, p.7

1661) D.C.N.D.H. art.34 (국가인권이사회령 제34조) : Le président du Conseil est nommé par dahir pour un mandat de six (6) ans, renouvelable une seule fois.

1662) D.C.N.D.H. art.35 (국가인권이사회령 제35조) : Les membres du Conseil sont nommés par dahir pour un mandat de quatre (4) ans renouvelable parmi les personnalité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3 ci-dessus de manière à concilier entre la pluralité, la compétence, l'expertise, la représentation de la femme et la représentation régionale. Ils sont répartis selon les catégories suivantes : Huit (8) membres choisis par Notre Majesté parmi les personnalités reconnues pour leur grande expertise et leur apport méritoire, à l'échell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en matière de protection et de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 Onze (11) membres proposés par l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actives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et reconnues pour leur travail sérieux en la matière, y compris les associations spécialisées dans les domaines liés aux droits civils, politiques, économiques, sociaux, culturels et environnementaux, ainsi qu'aux droits de la femme, de l'enfant, des handicapés et du consommateur ; Huit (8) membres dont la candidature est portée par les

(다)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사무총장 역시 모로코 국왕이 왕령을 통해 직접 임명함<sup>1663</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 및 위원 지위 알 수 없음. 다만, 인권이사회법 제39조는 위원은 정부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직무(à titre bénévole)임을 밝히고 있음<sup>1664</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이사회법이 인권위에 부여한 권한 외에 위원의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위원의 기본 임기는 4년에 재임 가능하며, 사무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 및 위원은 사망, 사임, 임명 시 가졌던 위원으로서 자격 혹은 역량 상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의 상실,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위원 자격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될 수 있음<sup>1665</sup>).

---

présidents des deux chambres du Parlement et ce, sur proposition des instances suivantes :

Pou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représentants : deux (2) membres choisis parmi les parlementaires après consultation des groupes parlementaires ; deux (2) membres choisis parmi les experts marocains exerçant au sein des instances internationales concernées par les droits de l'Homme ;

Pou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conseillers : quatre (4) membres proposés par le ou les organismes respectivement représentatifs des professeurs universitaires et des journalistes professionnels, l'Ordre national des médecins et l'Association des barreaux du Maroc ;

deux (2) membres proposés par les instances institutionnelles religieuses supérieures ; un (1) membre proposé par l'Amicale Hassania des magistrats.

1663) D.C.N.D.H. art.50 (국가인권이사회령 제50조) : Le secrétariat du Conseil est assuré par un secrétaire général, nommé par dahir pour un mandat de six (6) ans, renouvelable une seule fois.

1664) D.C.N.D.H. art.39 (국가인권이사회령 제39조) : Les membres du Conseil et de ses structures régionales y siègent à titre bénévole. (…)

1665) D.C.N.D.H. art.39 (국가인권이사회령 제39조) : (….) La qualité de membre du Conseil se perd par le décès, la démission, la perte de la qualité ayant fondé le droit de siéger au sein du Conseil, l'incapacité physique totale, la condamnation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모로코 인권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크게 인권 보호(Protection et de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인권 증진(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및 대화 증진(enrichissement de la pensée et du dialogue concernant les droits de l'Homme et la démocratie) 세 가지로 나뉜다<sup>1666</sup>).

(1) 인권 상황 감시

인권이사회는 모로코 전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며, 특히 13개 지역사무소 (commission régionale)마다 인권 보호 메커니즘을 설치해 지역 차원에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함. 모로코 인권 감시 기관으로서 피해에 대한 진정이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함. 또한 감시 활동 중 하나로, 이사회는 교도소, 구치소, 정신병원, 아동보호시설, 이주민 수용시설 등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감자에 대한 처우를 비롯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함. 조사 활동 후에는 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당국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권고 및 의견을 냄<sup>1667</sup>).

(2) 인권 침해 진정 접수 및 조사

보호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권 침해 사례 개인 진정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 라바트 인권이사회 사무소뿐 아니라 13개 지역사무소에서도 진정 신청을 받음. 인권이사회가 접수한 사례에 대해 이사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당국에 정보를 요구할 권한, 증거와 자료들을

---

définitive en vertu d'une décision de justice pénale ou en raison d'actes ou agissements contraires aux engagements liés à la qualité de membre du Conseil.

1666) <http://www.cndh.ma/fr/rubriques/missions-programmes/missions> (검색일: 2016.10.18.)

1667) D.C.N.D.H. art.11 (국가인권이사회령 제11조) : Sous réserve des attributions dévolues aux autorités publiques compétentes, le Conseil effectue, dans le cadre de l'exercice de ses missions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des visites aux lieux de détention et aux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et surveille la situation des détenus et le traitement qui leur est réservé, ainsi qu'aux centres de protection de l'enfance et de la réinsertion, les établissements hospitaliers spécialisés dans le traitement des maladies mentales et psychiques et aux lieux de rétention des étrangers en situation irrégulière. Le Conseil élabore des rapports sur les visites qu'il a effectuées, faisant état de ses observations et de ses recommandations visant à améliorer les conditions des détenus et des pensionnaires desdits centres, établissements et lieux. Il soumet ces rapports aux autorités compétentes.

검토할 권한, 조사 및 심리(audition)를 위해 당사자 혹은 관련 기관을 소환할 권한을 가짐. 이사회는 이 같은 조사와 심리를 위해 특별위원회(commission ad-hoc)를 구성하는데, 특별위원회는 사무총장, 이사회 내 보호 부서(département) 책임자 혹은 그 대리인,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됨. 보호 부서 책임자는 조사를 완료하고 7일 후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sup>1668</sup>).

(3) 피해자 구제

인권이사회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관련 공공 기관, 시민과 정부 간 소통 증진을 담당하는 기관, 인권 관련 시민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정(médiation), 화해(conciliation) 등 갈등 중재를 통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례에 개입해 피해 상황을 중지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함<sup>1669</sup>).

(4) 국왕에게 인권 현황 및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모로코 인권이사회는 국왕이 제기한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사회는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안 혹은 특별/주제 보고서를 국왕에게 제출해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매년 모로코 인권 현황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및 계획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국왕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 보고서는 동시에 공보(Bulletin officiel)로도 발간하여 대중에 공개해야 함<sup>1670</sup>).

---

1668) <http://www.cndh.ma/fr/presentation/les-attributions-du-conseil-en-matiere-de-protection-des-droits-de-lhomme> (검색일: 2016.10.28.)

1669) D.C.N.D.H. art.9 (국가인권이사회령 제9조) : Le Conseil peut, dans le cadre des missions qui lui sont dévolues et en coordination avec les autorités publiques concernées, l'institution chargée de la promotion de la communication entre le citoyen et l'Administration et les associations œuvrant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intervenir par anticipation et d'urgence chaque fois qu'il s'agit d'un cas de tension qui pourrait aboutir à une violation individuelle ou collective des droits de l'Homme et ce, en déployant tous les moyens nécessaires de médiation et de conciliation qu'il juge appropriés afin d'empêcher la survenance de ladite violation.

1670) D.C.N.D.H. art.24 (국가인권이사회령 제24조) : Le Conseil soumet à la Haute Appréciation de Notre Majesté des propositions ou des rapports spéciaux et

(5) 인권 존중 문화 형성 등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인권이사회의 인권 증진 기능은 크게 인권 존중 문화 형성, 시민사회와 공공 기관 및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 관련 역량 강화,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인권 정책 및 법률의 조화, 국제 협력 등 4개 범주로 나뉘<sup>1671)</sup>.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008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가행동계획(Plan d’action national en matière de démocratie et de droits de l’Homme)’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 인권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모로코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주도함<sup>1672)</sup>. 또한, 2007년부터 인권 문화 조성 및 인권 교육을 목적으로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시민 플랫폼(Le projet de la plateforme citoyenne pour la promotion de la culture des droits de l’Homme)’을 출범시켜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국가적 차원의 포럼을 개최해 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인권 교육 및 인권 의식 증진에 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게 했으며, 인권 교육 전문가 집단 형성과 대학의 참여를 도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함<sup>1673)</sup>.

(6)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 증진

모로코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인권 관련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국가적·국제적·지역적 차원의 포럼, 토론회 등 행사를 개최함. 의식 증진 활동의 하나로, 모로코 인권이사회는 2007년부터 선거 감시(Observation des élections) 활동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를

---

thématiques sur tout ce qui est de nature à contribuer à une meilleure protection et à une meilleur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Il soumet à Notre Majesté un rapport annuel sur l’état des droits de l’Homme ainsi que sur le bilan et les perspectives d’action du Conseil. Ce rapport est publié au « Bulletin officiel ».

1671) <http://www.cndh.ma/fr/presentation/presentation-du-travail-de-promotion-de-la-culture-des-droits-de-lhomme-au-ccdh> (검색일: 2016.10.28.)

1672) <http://www.cndh.ma/fr/programmes/structuration-du-plan-daction-national-en-matiere-de-democratie-et-de-droits-de-lhomme> (검색일: 2016.10.28.)

1673) <http://www.cndh.ma/fr/programmes/le-projet-de-la-plateforme-citoyenne-pour-la-promotion-de-la-culture-des-droits-de-lhomme> (검색일: 2016.10.28.)

비롯한 책임 주체들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sup>1674</sup>). 또한 인권상(un prix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을 제정해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국내 및 국제 단체에 상을 수여함<sup>1675</sup>).

바) 특이사항

- (1) 모로코 인권이사회는 모로코의 전환기 정의 및 민주주의로의 이행 시기에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뿐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감시 기구로서 기능함. 따라서 시민사회 출신의 위원을 일정 비율로 임명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함.
- (2) 국민을 대리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매년 모로코 인권 현황 및 이사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왕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공보로 발간해 국민에게 공개함. 또한, 헌법과 인권이사회 내규는 위원장이 1년에 최소 한 번은 국회에 출두해 이사회 활동을 보고하고, 이사회 활동 보고서가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함<sup>1676</sup>).
- (3) 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서 성비, 경쟁력 및 전문성, 지역 대표성 등의 다양성을 반영함. 위원장은 국왕이 왕령을 통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국왕, 상원/하원 의장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7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11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1677</sup>)

---

1674) <http://www.cndh.ma/fr/enrichissement-de-la-pensee/les-attributions-du-conseil-en-matiere-denrichissement-de-la-pensee-et> (검색일: 2016.10.28.)

1675) Id.

1676) R.I.C.N.D.H. art.60 (내규 제60조) : Le Président du Conseil présente, une fois par an au moins, un rapport sur ses travaux qui fait l'objet d'un débat au sein du Parlemen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60 de la Constitution. (...)

1677)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48) 르완다

르완다 국가 정보 <sup>1678)</sup>	
면적	2.6만km <sup>2</sup>
인구	1,266만 명(2015년 기준)
수도	키갈리(Kigali)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영어, 불어, 키냐르완다어
주요종교	가톨릭(49.5%), 개신교(27%), 이슬람교(2%)
주요민족	후투인(84%), 투치인(15%), 트와인(1%)
GDP	81억 달러(2015년)
1인당	697.3 달러(201년)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of Republic of Rwanda)
- (2) 설립연도: 1999년 3월 12일<sup>1679)</sup>
- (3) 설립배경: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르완다 정부와 당시 반군이었던 르완다 애국전선(Rwanda Patriotic Front)이 체결한 아루샤 평화협정(Arusha Peace Agreement of 1993)에서 최초로 구상되었음. 평화협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이듬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르완다에서는 제노사이드와 내전이 발생함. 르완다 내전이 종식된 후 1999년에 들어선 르완다 전환기 국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는 3월 12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을 통과시킴<sup>1680)</sup>. 이후 르완다는 2003년 개정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wanda of 4th June 2003)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명시함<sup>1681)</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르완다 인권위원회 설립 근거는 “2003 르완

1678)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3/1\\_22565.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3/1_22565.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10.28.)

1679) <http://www.cndp.org.rw/index.php?id=23> (검색일: 2016.10.28.)

1680) Michelle Parlevlie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Peace Agreements: Establishing national institutions in divided societies』, 2006, p.14

1681) <http://www.cndp.org.rw/index.php?id=23> (검색일: 2016.10.28.)

다 개정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wanda of 2003)<sup>1682)</sup>과 ‘2013 개정 르완다 인권위원회 임무와 구성, 기능에 관한 법(이하 르완다 인권위원회법, Law determining missions, organis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L.N.C.H.R.)<sup>1683)</sup>’임.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법인격의 국가기구<sup>1684)</sup>.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르완다 인권위원회는 니레레 마들렌(Nirere Madeleine) 현 위원장 이하 부위원장과 위원 7명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Council of Commissioners),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원하는 위원회실(Bureau of the Commission), 그리고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으로 구성됨. 전체 인원수는 알 수 없음.

① 이사회(Council of Commissioners)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위원회 활동 및 계획 결정, 정부에 제출할 예산안 검토 및 승인, 보고서 승인, 외부 지원 및 기부 승인 결정, 채용과 임명 관련 결정 등을 담당함<sup>1685)</sup>. 이사회 구성원은 위원장

168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wanda of 4th June 2003. art.177 (2003 르완다 개정 헌법 제177조) :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is an independent national Commission especially in charge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1683) Law determining missions, organis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L.N.C.H.R. (2013 개정 르완다 인권위원회 임무와 구성, 기능에 관한 법, 이하 ‘인권위원회법’) : 1999년에 제정된 르완다 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Law n° 04/99 of 12th March 1999)은 2002년, 2007년, 2013년 세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13 인권위원회 임무와 구성, 기능에 관한 법(Law determining missions, organis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of 2013)’이 됨. 개정법은 국가인권기구의 국제 기준인 파리 원칙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을 강화함.

1684) L.N.C.H.R. art.3 (인권위원회법 제3조) : The Commission shall be independent and permanent. In fulfilling its mission, the Commission shall not be subject to any instructions from any other organ. The Commission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and autonomy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atters

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sup>1686)</sup>.

② 위원회실(Bureau of the Commission)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사회가 위원회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면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조직임. 이와 함께 사무국(Secretariat)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인권 분야의 국내외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함<sup>1687)</sup>.

③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인권위의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 조직으로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을 수장으로 함. 사무총장은 위원이 아닌 보고관(Rapporteur)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함. 사무국은 법률 인권부(Legislation and Human Rights Unit), 교육 기획 연구부(Education, Planning and Research Unit), 행정 재정부(Administration and Finance Unit) 등 3개 부서를 하부 조직으로 두고, 위원회 활동의 기술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위원회 재정 및 행정을 담당하며, 이사회 결정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실(Bureau of the Commission)에 제출함. 또한, 이사회에 제출할 위원회 활동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고 준비함<sup>1688)</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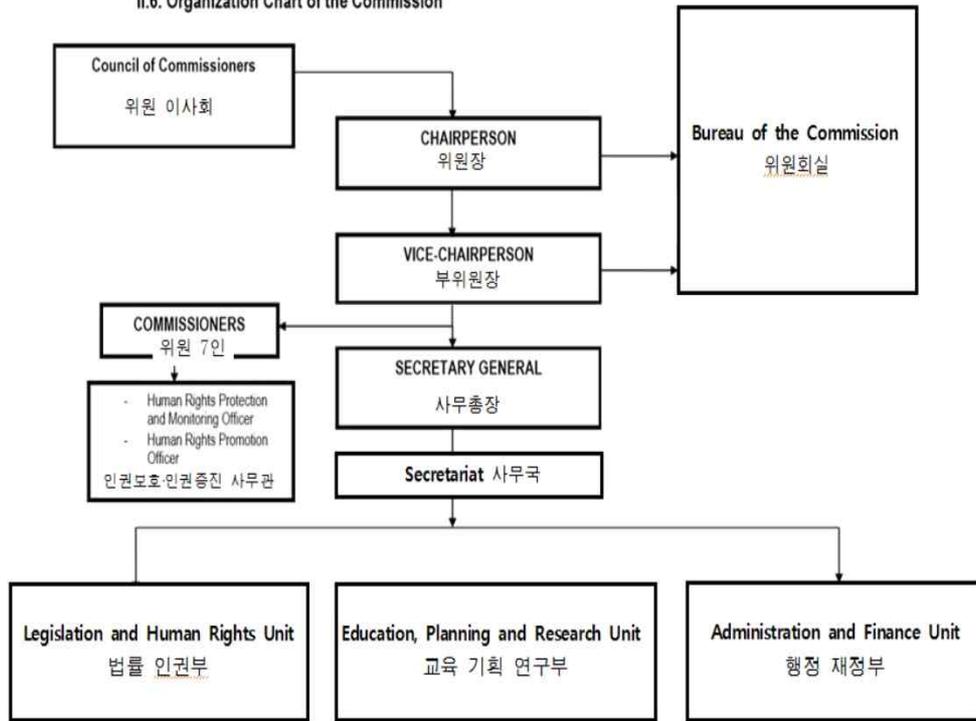
1685) L.N.C.H.R. art.16 (인권위원회법 제16조) : The Council of Commissioners shall be the supreme organ of the Commission. In particular, i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 to take all decis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to approve the annual draft budget proposal of the Commission before de la Commission submitting it to relevant organs; to approve the annual activity report of the Commission; (...) to approve subsidies, donations and bequests; (...) to recruit and appoint the personnel of the Commission; (...)

1686) L.N.C.H.R. art.17 (인권위원회법 제17조) : The Council of Commissioners shall be composed of seven (7) Commission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1687) L.N.C.H.R. art.32 (인권위원회법 제32조) : The Bureau of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of the Commission and its budget; to monitor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General Secretariat; to promote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national or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688) L.N.C.H.R. art.37 (인권위원회법 제37조) : The Secretary General shall have the

II.6. Organization Chart of the Commission



출처: 르완다 인권위원회, The Strategic Pl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2013-2018, p.10

[르완다-그림 33] 르완다 인권위원회 조직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위법 제2조에 근거해 르완다 인권위원회 본부(Head Office)를 수도인 키갈리(Kigali)에 설립함<sup>1689)</sup>. 현재까지는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following responsibilities: to attend meetings of the Council of Commissioners and serve as rapporteur; to coordinate and supervise the technical activities; to ensure proper management of the property and finances of the Commission; to submit to the Bureau of the Commission a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of the Council of Commissioners; (...) to prepare the programme of activities and the draft budget proposal of the Commission.

1689) L.N.C.H.R. art.2 (인권위원회법 제2조) : The head office of the Commission shall be located in Kigali City, the Capital city of the Republic of Rwanda. It may be transferred elsewhere in Rwanda if deemed necessary.

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위원회가 운영과 재정 면에서 자율성을 갖는다고 명시하며, 독립적인 기구로서 어떤 정부 조직의 지시도 받지 않음을 확인함<sup>1690</sup>). 위원회 주요 재원은 정부 예산이며, 인권위법은 정부 예산 외에도 외부로부터 기부, 지원, 유산을 받는 것을 허용함<sup>1691</sup>). 정부 예산을 배분받기 위해 예산안을 재정부(Minister in charge of finance)에 제출한 후 정부에서 예산이 채택되기 전에 국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sup>1692</sup>). 위원회 재정은 회계 연도 말에 정부 회계 감사관(Auditor General of State Finances)의 감사를 받음<sup>1693</sup>).

<르완다-표 10> 르완다 인권위원회 2014-2015 예산

2014-2015 인권위 예산	정부 예산: 988,924,176 Rwf (약 14억 9백 40만 원) + 외부 지원: 166,515,269 Rwf (약 2억 3천 7백만 원)
	총 1,155,439,445 Rwf (약 16억 4천 7백만 원)

출처: 르완다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Annual Activity Report 2014-2015), p.136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1690) L.N.C.H.R. art.3 (인권위원회법 제3조) : The Commission shall be independent and permanent. In fulfilling its mission, the Commission shall not be subject to any instructions from any other organ. The Commission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and autonomy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atters.

1691) L.N.C.H.R. art.40 (인권위원회법 제40조) : The main source of the property of the Commission shall be the State budget. It may also come from partners' grants, donations and bequests. (...)

1692) L.N.C.H.R. art.41 (인권위원회법 제41조) : The Commission shall prepare its budget proposal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in charge of finance. The Commission shall table its budget proposal to the relevant Committee of the Parliament, Chamber of Deputies, before the adoption of the State budget.

1693) L.N.C.H.R. art.42 (인권위원회법 제42조) : The property of the Commission shall be subjected to the audit by the Auditor General of State Finance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whenever necessary.

르완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포함 총 7명을 선정하며<sup>1694</sup>, 위원 명단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 선정 위원회(Committee in charge of selecting Candidate Commissioners)가 작성함. 인권위원 선정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권 분야 시민단체,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시민사회, 인권 전문가 출신 5인으로 구성됨<sup>1695</sup>. 인권위원 선정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원을 공모하며 선정 후에는 명단을 정부에 제출, 내각은 이를 국회에 올려 상원의 동의를 얻음<sup>1696</sup>. 이후 대통령이 명령(Presidential order)에 의해 위원을 임명하는데, 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원 의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내각에 이 사실을 알려 대체 명단을 올리도록 요청해야 함<sup>1697</sup>.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고등 교육 기관의 학위(degree)와 인권 분야의 충분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sup>1698</sup>. 부위원장의 특별한 자격 조건은 명시하지 않음.

- 
- 1694) L.N.C.H.R. art.17 (인권위원회법 제17조) : The Council of Commissioners shall be composed of seven (7) Commission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 1695) L.N.C.H.R. art.19 (인권위원회법 제19조) : The Committee in charge of selecting Candidate Commissioners shall be comprised of five (5) member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ublic Service Commission; Civil Society; other relevant experts with expertise and skills in Human Rights issues. A Presidential Order shall appoint members of the Committee in charge of selecting Candidate Commissioners.
- 1696) L.N.C.H.R. art.20 (인권위원회법 제20조) : The Committee in charge of selecting Candidate Commissioners shall function independently. In selecting the candidates, the Committee shall: (1)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2) widely announce vacancies for Commissioners; (3) submit to the Government a list of seven (7) selected candidates comprising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 1697) L.N.C.H.R. art.21 (인권위원회법 제21조) : The Cabinet shall submit to the Senate for approval seven (7) candidate Commissioners before their appointment by a Presidential Order. In case the Senate does not approve one or several candidate Commissioners,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form the Government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fifteen (15) days, and request for the submission of other candidates to replace those who are not approved.
- 1698) L.N.C.H.R. art.17 (인권위원회법 제17조) : (...) In particular, the Chairperson of

(나) 위원

인권위 위원은 르완다 국민이면서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제노사이드(genocide)와 인류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노사이드 이념에 근거한 범죄(crime of genocide ideology)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6개월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을 이끈 경험이 있는 인물 중에서 선정한다는 기본 자격 제한을 둠<sup>1699</sup>). 구체적으로는, 인권 분야 시민단체 출신, 국립 및 사립 대학 혹은 고등 교육 기관 출신, 시민사회 출신, 공공 기관, 민간 영역 출신 중에서 골고루 임명하며, 임명 위원 중 최소 30%는 여성이어야 함<sup>1700</sup>).

(다)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sup>1701</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행정구조상 지위는 알 수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법이 인권위에 부여한 권한 외에 위원 권한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모든 위원의 기본 임기는 4년이며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1702</sup>).

---

the Commission must hold a degree from an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and have experience and sufficient knowledge in the Human Rights field.

1699) L.N.C.H.R. art.17 (인권위원회법 제17조) : For a person to be a Commissioner, he/she shall fulfil the following conditions: (1) to be a Rwandan; (2) to be a person of integrity; (3) not to have been convicted of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rime of genocide ideology; (4) not to have been convicted to a sentence equal to or exceeding six (6) months of imprisonment; (5) to have an experience in leadership positions in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1700) L.N.C.H.R. art.18 (인권위원회법 제18조) : Commissioners shall come from following: (1)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 (3) Civil Society; (4) public institutions; (5) private sector. At least thirty percent (30%) of Commissioners selected from those bodies must be females.

1701) L.N.C.H.R. art.36 (인권위원회법 제36조) : A Presidential Order shall appoint the Secretary General upon request by the Commission.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모든 위원은 임기 동안 임무 수행 중 밝힌 의견,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이유로 기소, 체포, 구금되지 않음. 또한, 5년 이상의 형량에 해당되는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위원은 임시 구금(provisionally detained)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짐. 이 특권은 위원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만 적용됨<sup>1703)</sup>. 위원은 위원 본인이 서면을 통해 사임을 표명할 경우, 건강부(Minister in charge of health)가 임명한 의사 패널이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 위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및 인권 침해, 인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최소 6개월 구금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위원은 해임될 수 있음. 위원 해임안은 대통령과 국회 상원에 동시에 전달되며, 대통령 명령에 의해 해임이 결정됨. 해임안 전달 후 30일 동안 답변이 없으면 해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sup>1704)</sup>.

---

1702) L.N.C.H.R. art.23 (인권위원회법 제23조) : The term of office for the Commissioners shall be four (4) years which may be renewable only once. Commissioners shall hold office on a full-time basis.

1703) L.N.C.H.R. art.24 (인권위원회법 제24조) : During and after his/her term of office, a Commissioner shall not be prosecuted, wanted or arrested, detained or sentenced due to his/her views expressed or other acts committed in carrying out his/her duties. A Commissioner shall not be provisionally detained unless he/she is caught red-handed committing an offence punishable by a penalty exceeding five (5) years of imprisonment. Such immunity shall cover only offences committed while carrying out his/her duties or those related to such duties.

1704) L.N.C.H.R. art.26 (인권위원회법 제26조) : A Commissioner may be removed from office if (1) his/her term of office expires; (2) he/she resigns through a written notice; (3) he/she is no longer able to perform his/her duties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certified by a panel of medical doctors nominated by the Minister in charge of health upon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 (4) he/she demonstrates behaviour contrary to his/her duties; (5) he/she abuses Human Rights; (6) he/she jeopardizes the interests of the Commission; (7) he/she has been definitively sentenced to at least six (6) months of imprisonment without suspension of sentence; (8) he/she dies. The resignation of a Commissioner shall be submitted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rough a registered mail or hand-delivery letter with acknowledgment of receipt, with a copy to the Senate and the Commission's authorities. If a period of thirty (30) days elapses without a response, the resignation shall be considered approved. A Presidential Order shall approve the removal of a Commissioner from his/her office in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Paragraph One of this Article.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1) 진정 접수 및 인권 침해 조사

르완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 임무 중 진정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활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관련 임무를 수행함. 인권위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 받고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데<sup>1705</sup>, 일반 권한(ordinary powers)으로서 증거 및 증언을 얻을 권한, 침해가 발생한 장소에 출입해 조사 작업을 수행할 권한, 증언 및 정보를 제공할 증인을 소환해 조사할 권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위해 전문가를 요청할 권한 등을 행사함<sup>1706</sup>. 뿐만 아니라, 인권위법 제8조에 따라 위원(commissioners)들은 사법경찰(Judicial Police powers)을 동원할 상시 권한을 가지며, 직원(staffs)의 경우 조사 작업 중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사법경찰을 동원할 수 있음. 또한, 동 조항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을 기소할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함<sup>1707</sup>. 2014-2015 기간에 르완다 인권위는 총 2,038건의 진정을 접수했고, 이중 1,705건에 대해 조사 작업을 수행함<sup>1708</sup>. 위원회가 조사한 사례들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531건(31%)로 가장 많았고, 사법 접근권 침해 298건(17%), 교육권 침해 113건(7%),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104건(6%) 순으로 집계됨<sup>1709</sup>.

1705) L.N.C.H.R. art.6(1) (인권위원회법 제6조 1항) : (...) to receive, examine and investigate complaints rela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1706) L.N.C.H.R. art.7(1)~(3) (인권위원회법 제7조 1~3항) : In order to fulfil its mission provided under Articles 4 to 6 of this Law,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1) to receive and consider testimoni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2) to have access to any place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lleged or reported including places of detention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s; (3) to contact, interrogate and seek explanations from any person likely to have testimony, information,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deemed to enlighten the Commission on scrutinising and collecting Human Rights violation evidence;

1707) L.N.C.H.R. art.8 (인권위원회법 제8조) : Commissioners shall have permanent judicial police powers throughout the territory of Rwanda while discharging their duties. If deemed necessary, a member of staff of the Commission may be given judicial police powers by competent authority upon request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Persons summoned by the Commission must appear, failure of which they shall be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law.

1708) 르완다 인권위원회, 『Annual Activity Report 2014-2015』, p.13

(2) 공공 기관, 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조사

위원회는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정부 기관 및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함<sup>1710</sup>).

(3) 구금시설 방문 조사

위원회는 교도소, 경찰서 내 구치소를 포함한 르완다 전역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감자들이 인권 기준을 준수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 당국에 권고함<sup>1711</sup>).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위는 전국의 총 14개 교도소와 52개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 작업을 수행했음<sup>1712</sup>). 구금시설 방문 조사는 수감자 수와 성비, 수감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 여부, 합법적인 수감 명령과 그에 따른 문서 소지 여부, 수감자의 식량권(Right to food) 및 의료권(Right to medical care), 적절한 공기와 빛이 드는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be detained in an aerated and lighted place),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함. 조사 작업 후 인권위는 국내 안보부(Ministry of internal security), 검찰, 대법원 같은 관련 당국에 수감시설 인권 상황 개선 조치 및 법적 절차 준수 강화 등을 권고함. 인권위는 권고 후에도 구금시설을 포함한 관련 당국이 전년도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sup>1713</sup>).

(4)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비 방식으로서 당사자 간 갈등 조정(mediation)과 화해(conciliation)를 중개하며<sup>1714</sup>),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건 없는 조

---

1709) Id.

1710) L.N.C.H.R. art.6(2) (인권위원회법 제6조 2항) : to examin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wanda committed by State organs, those who work in the public service abusing their powers, associations and individuals;

1711) L.N.C.H.R. art.6(3) (인권위원회법 제6조 3항) : to carry out visits to custodial places with the purpose of inspecting whether the rights of detainees are respected and urge relevant authorities to address identified cases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detainees;

1712) 르완다 인권위원회, 『Annual Activity Report 2014-2015』, p.119

1713) Id. p.120-129

1714) L.N.C.H.R. art.7(5) (인권위원회법 제7조 5항) : to conduct mediation and

치를 관련 당국에 요청함<sup>1715</sup>). 가해자가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위원회는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sup>1716</sup>). 르완다 인권위는 보다 적극적인 구제 조치로서, 직접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참여하며, 변호인을 고용해 소송을 진행할 권한을 가짐<sup>1717</sup>). 2014-2015년 기간에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 사례 중에서 아동 인권 침해 사례, 생명권 침해, 강간 사건, 고문 사례 등을 포함해 총 9건의 소송을 진행함<sup>1718</sup>). 지난 3년간 인권위는 조정과 화해 등 비 방식, 구제를 포함하여 2012-2013년 기간에는 접수된 1,576건 중 626건을 해결하고, 2013-2014 기간에는 1,269건 중 401건을, 그리고 2014-2015 기간에는 총 2,038건 중 806건을 해결하며 구제 건수를 늘려왔음<sup>1719</sup>).

#### (5) 선거 감시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 원칙 및 민주적인 절차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책임 당국에 권고함<sup>1720</sup>). 위원회는 지난 2013년, 르완다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Direct elections)와 국회의 여성·청년·장애인 대표들을 뽑는 간접 선거(Indirect elections)에서 선거 유세 기간과 선거 당일, 투표 후 개표 과정을 감시함.

---

conciliation between parties with human rights litigations where the mediation or conciliation does not contravene the law;

1715) L.N.C.H.R. art.7(6) (인권위원회법 제7조 6항) : to request relevant organs to unconditionally restore the rights of any person where it appears that his/her rights have been violated;

1716) L.N.C.H.R. art.7(7) (인권위원회법 제7조 7항) : to request relevant organs to bring to justice any person having committed offences related to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1717) L.N.C.H.R. art.9 (인권위원회법 제9조) : The Commission shall have powers to file legal proceedings in civil, commercial, labour and administrative matters for violation of human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international treaties ratified by Rwanda and other laws. In that regard, the Commission may be represented in courts by its employees authorized by relevant authority on the request of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may also be represented by a council of its choice

1718) 르완다 인권위원회, 『Annual Activity Report 2014-2015』, p.93

1719) Id. p.91

1720) L.N.C.H.R. art.6(5) (인권위원회법 제6조 5항) : to monitor respect for human rights throughout elections process and submit report to relevant organs.

선거 기간 동안 르완다 30개 지역에 45명의 감시단(observers)을 배치해 후보자들의 안전, 불법 선거 자금 동원 여부, 비밀 투표 원칙 준수 여부, 선거 보안 요원들의 임무 수행 여부,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했음<sup>1721</sup>).

(6)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워크숍

인권 보호와 함께 인권 증진은 르완다 인권위의 주요 임무로서<sup>1722</sup>),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워크숍, 컨퍼런스,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함. 르완다 인권위는 매년 교육 대상과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총 1,726명에게 교육을 제공함<sup>1723</sup>). 전국의 비서실장(executive secretary)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 378명을 대상으로 르완다 인권위의 기능 및 권한, 역할, 인권 개념 및 원칙, 국제인권협약과 르완다 국내법상 인권 보호 메커니즘, 인권 보호 및 증진에서 지역 공무원의 역할 등을 강의함<sup>1724</sup>). 그밖에도 지역 의회, 건강 센터 위원회(Health Centres Committees), 사법부 소속 기관 등 공공 영역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종교 지도자와 청년들,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 HIV/AIDS 감염인, 선주민 등 르완다 내 다양한 시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sup>1725</sup>).

바) 특이사항

- (1) 국가인권기구로서 르완다에서 발생한 민간, 공공 기관 및 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기소 요청 권한, 사법경찰 동원 권한 등 강한 권한을 갖고 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함.
- (2) 르완다 인권위는 위원 임명 절차부터 예산안 승인, 위원회 활동 보고 등 위원회 조직과 운영 면에서 르완다 내각, 국회, 대통령과 상호 소통하고 승인

1721) 르완다 인권위원회, 『Annual Activity Report 2013-2014』, p.114-117

1722) L.N.C.H.R. art.5(1) (인권위원회법 제5조 1항) : To educate and sensitize the population on matters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al programmes;

1723) 르완다 인권위원회, 『Annual Activity Report 2014-2015』, p.25

1724) Id. p.26

1725) Id. p.29-33

을 얻음. 인권위법 제13조에 근거해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가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국회 상원과 하원 모두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보고서 복사본을 대통령과 내각, 대법원에 제출해야 함<sup>1726</sup>). 또한, 위원회가 수행한 조사 작업을 통해 얻은 주제별 보고서를 대통령, 국회, 내각, 대법원에 제출해 책임 당국 및 국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함.

- (3) 위원 자격 조건의 하나로 제노사이드 범죄 가담 경력의 유무가 있음. 인적 구성에서도 7명중 3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며,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1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12년 3월 심사에서 B등급을, 2013년 5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1727</sup>).

49)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국가 정보 <sup>1728</sup>	
면적	71,740km <sup>2</sup>
인구	588만 명(2015년 기준)
수도	프리타운(Freetown)
정치형태	대통령중심제
주요언어	영어(공용어), 토착어
주요종교	이슬람교(60%), 토착종교(30%), 기독교(10%)
주요민족	Crole, Mende, Temne
GDP	44.7억 달러(2015년)
1인당	693 달러(201년)

1726) L.N.C.H.R. art.13 (인권위원회법 제13조) : The Commission shall submit to the Parliament, both Chambers, its activity report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3) months from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reserve a copy thereof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Cabinet and the Supreme Court. The Commission shall also submit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Parliament, both Chambers, the Cabinet and the Supreme Court thematic reports acknowledged through its investigations or research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ose with negative impact on such rights.

1727)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1728)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12.jsp?menu](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12.jsp?menu)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HRCSL)
- (2) 설립연도: 2004년 8월 26일<sup>1729)</sup>
- (3) 설립배경: 시에라리온에서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와 반군 간 내전으로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됐음. 1999년 정부와 반군이 체결한 로메 평화협정(1999 Lomé agreement)은 진실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와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설립을 평화 재건 계획에 포함시킴.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에라리온 진실 화해 위원회는 2004년에 발간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권고함. 1999 로메 평화협정과 진실 화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8월 26일, 시에라리온 국회는 인권위원회법(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Act 2004, H.R.C.S.L.A.)을 통과시킴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sup>1730)</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 26일에 시에라리온 국회가 채택한 2004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법(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Act 2004)을 근거로 설립됨<sup>1731)</sup>. 어떤 사인이나 당국의 통제,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임<sup>1732)</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 (1) 조직 구성

---

=m\_40\_60\_20(검색일: 2016.10.28.)

1729) 2004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법 제정일

1730)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Sierra Leone』, 2011, p.10

1731)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Act 2004, H.R.C.S.L.A. (2004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

1732) H.R.C.S.L.A. art.14 (인권위법 제14조)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 shall not be subject to the control or direction of any person or authority.

(가) 인원 및 부서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는 레브 모세스 카누(Rev. Moses B. Khanu) 위원장을 수장으로, 위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 위원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제별 내부 위원회(committees), 위원회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secretariat)로 구성됨. 내부 위원회의 구체적인 종류는 명시한 자료가 없으나, 인권위법 제17조는 여성과 아동인권 같은 위원회 인권 보호 및 증진 임무와 관계된 주제별 내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는 위원을 책임자로 둔다고 명시함<sup>1733</sup>. 사무국 전체 직원 수, 부서 등을 명시한 자료 없음. 다만, 인권위 연간 보고서는 위원회 업무가 진정 처리 및 조사(Complaints and Investigations), 인권 상황 모니터링(Monitoring), 대중 교육(Public education), 언론 모니터링 및 검토(Media monitoring and Desk Review) 4개 범주로 나뉘어 있음을 보고함<sup>1734</sup>. 사무국은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을 수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임명하는 부사무총장(Deputy Executive Secretary)의 지원을 받음<sup>1735</sup>.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수도인 프리타운(Freetown)에 본부(National Headquarter)가 위치해 있음<sup>1736</sup>. 또한, 인권위법 제20조에 근거해 위원회는 지역에 지역사무소(Provincial offices)를 세울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위원회 고위 사무관(senior officials of the Commission)을 책임자로 둬<sup>1737</sup>. 현재까지 시에라리온 인권위는 남부에 보(Bo) 지역사무소, 동부에

1733) H.R.C.S.L.A. art.17(1) (인권위법 제17조 1항) :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so as to facilitate a thorough study and research into all the substantive issues within its jurisdiction, the Commission shall appoint at least four committees each headed by a member of the Commission wellversed in the subject-matter assigned to the committee concerned, including a committe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1734)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Sierra Leone』, 2013, p.12

1735) H.R.C.S.L.A. art.18(6) (인권위법 제18조 6항) : In the performance of his functions under this Act,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be assisted principally by a Deputy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1736) <http://www.hrcsl.org/content/contact-us> (검색일: 2016.10.29.)

1737) H.R.C.S.L.A. art.20(1) (인권위법 제20조 1항) : The Commission shall, when funds

케네마(Kenema) 지역사무소, 북부에 마케니(Makeni)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음<sup>1738</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위법 제14조는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어떤 사인이나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명시함. 위원회 재정은 국회 승인을 통해 배분 받는 정부 예산, 외부로부터 받는 기부, 선물 등의 지원금으로 이뤄짐. 외부 지원금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sup>1739</sup>. 인권위는 정부 회계 감사(Auditor-General)가 승인한 형식으로 재정 사항을 기록하고 매년 회계 감사관의 감사를 받아야 함<sup>1740</sup>).

<시에라리온-표 11> 시에라리온 인권위 2015 예산

2015 인권위 예산 (정부 예산) <sup>1741</sup>	1,700,571,600 SLL (약 3억 4천 8백만 원)
-------------------------------------	--------------------------------------

출처: 시에라리온 국회, 『2014 Sub Appropriation Committee Report』, p.13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become available therefor, establish offices in each provincial headquarters, headed by senior officials of the Commission designat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for the purpose.

1738) <http://www.hrsl.org/content/contact-us> (검색일: 2016.10.29.)

1739) H.R.C.S.L.A. art.21 (인권위법 제21조) :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financed by a fund consisting of - (a) moneys appropriated by Parliament for the purposes of the Commission; and (b) gifts, grants or donations from any person or authority but only if they are not likely to compromise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1740) H.R.C.S.L.A. art.22 (인권위법 제22조) : (1) The Commission shall keep proper books of account and proper records in relation to them in a form approved by the Auditor-General.

(2) The books of account kept under subsection (1)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be audited by the Auditor-General or an auditor appointed by him.

1741) <http://www.parliament.gov.sl/ParliamentaryBusiness/SubAppropriation.aspx> (검색일: 2016.10.29.)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3인을 임명하며, 대통령의 지명(appointment)과 국회 승인(approval)을 거쳐 임명함<sup>1742</sup>). 먼저 대통령은 행정부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과 내각 법무장관(Minister of Justice)을 통해 위원 후보 명단을 모집하는데, 위원 후보는 위원 선정단(selection panel)이 작성함. 위원 선정단은 정부 대표 1인과 종교이사회(Inter-Religious Council) 출신 1인, 국가인권포럼(National Forum for Human Rights) 출신 1인, 시민사회운동(Civil Society Movement) 대표 1인, 지도자이사회(Council of Paramount Chiefs) 대표 1인, 시에라리온 여성포럼(Sierra Leone Women's Forum) 대표 1인, 시에라리온 노동회의(Sierra Leone Labour Congress)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선정단은 최소 2명의 여성을 포함해야 함. 패널 7인이 각각 추천 인물을 1명씩 명단에 올려 이를 국가공보(Gazette)에 공개하면, 2주 후에 대통령이 이 명단에서 5명의 위원을 선정 후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sup>1743</sup>).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된 5인의 위원이 모여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위원장(Chairman)과 부위원장(Vice-Chairman)을 결정함<sup>1744</sup>).

1742) H.R.C.S.L.A. art.3(1) (인권위법 제3조 1항) :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 Chairman, a ViceChairman and three other members all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subject to the approval of Parliament, after they have been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Schedule.

1743) H.R.C.S.L.A. Schedule (인권위법 별첨) :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follow the following procedure; The President, through the Attorney-General and Minister of Justice, shall invite nominations from the public. The list of nominees shall go through a selection panel comprising one representative from the Government and each of the following umbrella organizations; (a) Inter-Religious Council; (b) National Forum for Human Rights; (c) Civil Society Movement; (d) Council of Paramount Chiefs; (e) Sierra Leone Women's Forum; and (f) Sierra Leone Labour Congress.

The selection panel shall include at least two women. Each member of the selection panel shall short-list one candidate. The name of the 7 short-listed candidates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and two weeks later, the selection panel shall invite the President to appoint 5 of the short-listed candidates for approval by Parliament.

1744) H.R.C.S.L.A. Schedule (인권위법 별첨) : Upon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they shall assemble to elect by simple majority from among themselves a Chairman and Vice-Chairman.

(나) 위원

위원은 시민의 존경을 받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인권 분야에서 공헌도가 인정되며, 시에라리온 헌법이 담고 있는 인권 원칙과 국제인권협약 내용에 정통한 인물이어야 하며, 위원 5인은 변호사 출신 위원 2명과 여성 위원 2명을 포함해야 함<sup>1745</sup>).

(다)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사무총장은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와 협의를 거쳐 인권위가 임명함<sup>1746</sup>. 사무총장은 투표권 없이 위원 회의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있음<sup>1747</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지위를 특별히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인권위법 제4조 3-g항은 위원 해임 시 시에라리온 헌법 제137조에서 대법원 판사(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Judicature) 해임 시 적용하는 규정을 인권위 위원에게 적용한다고 밝힘<sup>1748</sup>. 위원들은 기타 공직 및 민간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sup>1749</sup> 시에라리온 국회가 결정한 급여와 혜택을 받

---

1745) H.R.C.S.L.A. art.3(2) (인권위법 제3조 2항) :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 (a) of high moral probity who have so distinguished themselv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s to command the respect of the public; (b) of proven record of respect for, and interest in human rights; (c) well-versed in the rights contained in Chapter III of the Constitution and familiar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relating to human rights: Provided that the members shall include at least two lawyers and two women.

1746) H.R.C.S.L.A. art.18(1) (인권위법 제18조 1항) : The Commission shall have an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1747) H.R.C.S.L.A. art.18(5) (인권위법 제18조 5항) :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attend all substantive meetings and deliberations of the Commission but shall not be entitled to vote.

1748) H.R.C.S.L.A. art.4(3)(g) (인권위법 제4조 3-g항) : the member is dismissed or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subsection (7) of section 137 of the Constitution as if he were a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Judicature.

1749) H.R.C.S.L.A. art.4(2) (인권위법 제4조 2항) : A member shall, after his appointment has been approved by Parliament, relinquish any other post or appointment, whether in the Government, the Judiciary, as a Member of Parliament or in any other employment.

음<sup>1750</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법이 인권위에 부여한 권한과 임무 외 위원들의 권한에 관한 명시적 조항 따로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모든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1751</sup>. 사무총장 임기 역시 5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1752</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인권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임무 수행 중 행한 결정, 행위에 대해 기소 및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음<sup>1753</sup>. 위원은 서면 통보를 통해 사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파산했을 경우, 합당한 이유 없이 위원 임무를 거부할 경우, 정치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sup>1754</sup>).

---

1750) H.R.C.S.L.A. art.4(4) (인권위법 제4조 4항) :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cluding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shall work full-time and shall be paid such salaries, allowances and other benefits as shall be determined by Parliament:

1751) H.R.C.S.L.A. art.4(1) (인권위법 제4조 1항) : The Chairman, the Vice-Chairman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hold office in their personal capacities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another period of five years, but no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after the expiration of a second term of office.

1752) H.R.C.S.L.A. art.18(2) (인권위법 제18조 2항) :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five years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and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one term only of another five years (…)

1753) H.R.C.S.L.A. art.5 (인권위법 제5조) : No action, suit or other legal proceeding shall lie against any person who is or was a member or employee of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any decision taken or any act done or omitted to be done in good faith in the performance of any function under this Act.

1754) H.R.C.S.L.A. art.4(3) (인권위법 제4조 3항) : A vacancy in the Commission shall occur if - (a) a member's term expires, whether initially or after reappointment; (b) a member dies or is so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citated as to be unabl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his office; (c) a member becomes bankrupt or insolvent; (d) the member wilfully fails or refuses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e Commission without due cause; (e) the member becomes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f) the member resigns by written notice addressed to the President;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1) 인권 침해 진정 접수, 조사

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 받고, 조사 작업을 수행함<sup>1755)</sup>. 조사와 관련해 인권위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판사(High Court of Justice or a judge thereof)에게 부여된 권한인 증인 소환 및 심리, 정보 제출 요구, 해외에 있는 증인 소환 권한을 가짐<sup>1756)</sup>. 또한, 모든 정부 기관 및 시설, 사무실, 구금시설,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 문서 중 확인·분류되지 않은 자료에도 접근권을 가짐<sup>1757)</sup>. 만약 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공익(public interest)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인권위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대법원에 의탁함<sup>1758)</sup>. 위원회는 조사 작업 후에

---

1755) H.R.C.S.L.A. art.7(2)(a) (인권위법 제7조 2=a항) :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it shall be the function of the Commission to (a) investigate or inquire into on its own or on complaint by any person any alle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report thereon in writing;

1756) H.R.C.S.L.A. art.8(1)(a) (인권위법 제8조 1=a항) : For the purposes of any investigation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 shall have (a) such powers, rights and privileges as are vested in the High Court of Justice or a judge thereof in a trial in respect of -

(i) enforcing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examining them on oath, affirmation or otherwise; and

(ii) compelling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other things; and

(iii) the issue of a commission or request to examine witnesses abroad;

1757) H.R.C.S.L.A. art.9(1) (인권위법 제9조 1항) : A member of the Commission or any person authorized in that behalf by such member, shall have access to all government offices, facilities and places of detention, including prisons, police cells, remand homes and probation facilities, in order to investigate a human rights matter initiated by the Commission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ssion as well as access to any non-classified information in government documents.

1758) H.R.C.S.L.A. art.9(2) (인권위법 제9조 2항) : Where the President certifies that the giving of any information or the answering of any question or the production of any document or thing might prejudice the security or defence of Sierra Leone,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or detection of offences, or the proceedings of Cabinet relating to matters of a secret or confidential nature, or that the disclosure would be injurious to the public interest,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power to refer the matter concern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shall determine whether the document or other information shall be disclosed, produced or withheld.

는 보고서를 작성해 사례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결론을 보고해야 함<sup>1759)</sup>.

(2) 피해자 구제

시에라리온 인권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함. 위원회는 가해자 및 책임 당국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족 혹은 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에게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함<sup>1760)</sup>.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위해 재판 과정을 지원하는데 5년을 넘지 않는 재판 기간 내에서 법정의견서 (*amicus curiae* briefs)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함<sup>1761)</sup>. 인권위가 당국에 침해 사례 조사 결과, 권고, 피해 보상 조치에 대한 결정 등을 통보한 후 정부는 21일 이내에 공개 답변을 해야 함<sup>1762)</sup>. 인권위 권고에는 법원 규정(Rules of Court)이 적용되어 강제력을 갖는데,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의학적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지침 및 결정을 명령할 수 있음. 위원회 결정 및 권고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절한 기간 내에 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고등법원에 회부할 권한을 가짐<sup>1763)</sup>.

- 
- 1759) H.R.C.S.L.A. art.10(1) (인권위법 제10조 1항) : The Commission shall (a) be impartial and fair in the conduct of any investigation or inquiry under this Act; (b) report in writing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r inquiry; and (c) furnish in the report, the reasons for the conclusions reached or reported. (…)
- 1760) H.R.C.S.L.A. art.11 (인권위법 제11조) : It shall be lawful for the Commission in its report on an investigation, to recommend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ir families or legal representatives and also to award costs in appropriate cases.
- 1761) H.R.C.S.L.A. art.12 (인권위법 제12조) : The Commission may, where it finds it necessary, appoint a legal practitioner of not less than five years' standing, to intervene, with leave of the court, in legal proceedings in cases which involve human rights issues over which the Commission has competence but such intervention shall be restricted to issuing *amicus curiae* briefs dealing with the matter in question.
- 1762) H.R.C.S.L.A. art.13 (인권위법 제13조) : The Government shall respond publicly and within 21 days to the specific case as well as in the more general finding, conclusion, recommendation or other decision made by the Commission as the remedy for a violation of human rights.
- 1763) H.R.C.S.L.A. art.8(1)(b)~(c) (인권위법 제8조 1=b&c항) : Rules of Court shall, with the necessary modification, apply to the exercise of the powers, rights and

(3) 인권 정책 및 법, 인권 사안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부 정책과 현행법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시에라리온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함. 또한, 정부가 입법 계획 중인 법안의 인권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전달함. 국가인권기구로서 시에라리온 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기구 심사 시 정부가 보고서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지원함<sup>1764</sup>).

(4) 인권 증진 활동

보호 임무와 함께 인권 증진은 주요 임무로서, 인권위는 인권 존중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며,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를 대중에 제공하고, 인권 보호에서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 분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관련 활동들을 공동으로 수행함<sup>1765</sup>).

---

privileges of the Commission conferred by this subsection;

(b) the power to issue or make orders or directions to enforce its decisions, including measures to protect the life and safety of an individual and free medical treatment where necessary;

(c) power to refer to the High Court for contempt any person who refuses, without justifiable cause, to comply with a decision, direction or order of the Commission within a specified time.

1764) H.R.C.S.L.A. art.7(2)(c)~(e) (인권위법 제7조 2-c~e항) : (c) review existing legislation and advise the Government concerning compliance by such legislation with the obligations of Sierra Leone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d) advise the Government concerning draft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human rights;

(e) advise Government concerning preparation of periodic report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or agreements to which Sierra Leone is a party;

1765) H.R.C.S.L.A. art.7(2)(b) (인권위법 제7조 2-b항) :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through (i)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mes aimed at creat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in Sierra Leone; (ii) providing human rights information, including locating within the Commission a 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documentation centre; (iii) publishing guidelines, manuals and other materials explaining the obligation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v) effectiv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other public - interest bodies engag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바) 특이사항

- (1) 시에라리온 인권위는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기관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 소송을 지원하며, 고등법원과 같은 권고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권고를 집행함.
- (2) 국가인권기구로서 매년 시에라리온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인권위 활동 내역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이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 검토를 거친 후 대중에 공개됨<sup>1766</sup>).
- (3) 인권위 위원은 위원 선정단이 추천하는 인물들 가운데 임명되는데, 시민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선정단은 종교이사회(Inter-Religious Council), 국가인권포럼(National Forum for Human Rights), 시민사회운동(Civil Society Movement), 지도자이사회(Council of Paramount Chiefs), 시에라리온 여성포럼(Sierra Leone Women's Forum), 시에라리온 노동회의(Sierra Leone Labour Congress) 등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출신들로 구성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11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11년 5월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sup>1767</sup>).

---

1766) H.R.C.S.L.A. art.24(1)~(2) (인권위법 제24조 1~2항) : (1) The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submit a report of its activities to the President and Parliament to be entitled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Sierra Leone" which shall contain details of (a) the ways in which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and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agreements to which Sierra Leone is a party have been observed or violated; (b) the steps taken by the Commiss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including results of individual complaints investigated and interven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ssion or by any of its committees in respect of matters brought before them.

(2) Any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1) shall thereafter be published for the information of the public.

1767)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50) 토고

토고 국가 정보 <sup>1768)</sup>	
면적	56,785km <sup>2</sup>
인구	755만 명 (2015년 기준)
수도	로메(Lomé)
정치형태	대통령중심제
주요언어	불어(공용), Ewe어, Kabiye어
주요종교	전통신앙(51%), 기독교(29%), 이슬람교(20%)
주요민족	에웨인, 미나인
GDP	40억 달러(2015년)
1인당	548달러(2015년)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토고 국가인권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du Togo, CNDH)

(2) 설립연도: 1987년 6월 9일<sup>1769)</sup>

(3) 설립배경: 토고는 독립 이후 30년 동안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다 1991년에 처음으로 다른 정당들을 합법화함. 아야데마(Eyadema) 당시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일당 독재 통치와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던 변호사 야오 아그부아 이보르(Yao Agboyibor)와 아부두 아수마(Aboudu Assouma)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토고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고, 토고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함.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정부는 1987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Loi N°87-09)을 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설립함.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설립 제안자였던 두 변호사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함<sup>1770)</sup>.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1992 토고 헌법(Constitution du 14 octobre

1768)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61.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61.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10.31.)

1769) <http://cndh-togo.org/organisation/mandat-et-creation/> (검색일: 2016.10.31.)

1770) <https://www.hrw.org/legacy/french/reports/hrc/togo.html> (검색일: 2016.10.31.)

1992) 제156조<sup>1771)</sup>에 근거해 독립성을 보장받은 헌법 기구이자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이며, ‘2005 인권위원회 구성과 조직, 기능에 관한 개정법(Loi organique n°2005-004 du 9 février 2005 modifiant et complétant la loi organique n°96-12 du 11 décembre 1996 relative à la composition, à l’organisa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을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받음<sup>1772)</sup>. 동법 제1조는 토고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구이자 법인 (personnalité morale)임을 확인함<sup>1773)</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법인 격의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토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을 포함한 위원 17명, 위원들이 주제 별 임무를 수행하는 부위원회(Sous-commission) 또는 워킹그룹 (Groupes de travail),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위원회 회의에 관계 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실(bureau exécutif), 위원회 전반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Secrétariat)으로 구성됨.

① 사무국(Secrétariat)

1771) Constitution du 14 octobre 1992 art.156 (1992 토고 헌법 제156조) : Il est créé un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lle est indépendante. Elle n’est soumise qu’à la constitution et à la loi.

1772) Loi organique n°2005-004 du 9 février 2005 modifiant et complétant la loi organique n°96-12 du 11 décembre 1996 relative à la composition, à l’organisa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L.C.N.D.H. (2005 인권위원회 구성과 조직, 기능에 관한 개정법, 이하 ‘인권위법’) : 최초의 설립 법안은 1987년 6월 9일에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Loi N°87-09)’이지만, 현재의 구조와 조직,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한 법은 1996년에 처음 채택된 후 2005년에 개정된 인권위법으로, 여기서는 2005년 개정법을 인용함.

1773) L.C.N.D.H. art.1 (인권위법 제1조) :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CNDH), ci-après dénommée la Commission, est conformément à l’article 156 de la Constitution, une institution indépendante. Elle n’est soumise qu’à la Constitution et à la loi. Elle est dotée de la personnalité morale. (…)

사무국은 인권위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행정 조직으로서 사무국장(Secrétaire administratif)이 총 지휘함<sup>1774</sup>.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 행정 부서들과 함께 예산안을 비롯하여 집행실에서 나올 보고서를 준비하고 위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함. 사무국장은 집행실 회의를 비롯한 위원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음<sup>1775</sup>. 현재 사무국 전체 인원 및 세부 부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② 집행실(Bureau exécutif)

집행실은 위원장(Président), 부위원장(Vice-président), 보고관(rapporteur général), 부보고관(rapporteur général adjoint), 회계 위원(trésorier) 등 5인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집행실은 4년의 임기를 갖고 한 번 재임이 가능함<sup>1776</sup>.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집행실은 사무국의 행정 업무를 최종 결정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회 회의 일정과 위원회 예산 계획 등을 세움<sup>1777</sup>.

③ 부위원회(Sous-Commission),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1774) L.C.N.D.H. art.11 (인권위법 제11조) : La Commission est dotée d'un secrétariat permanent dirigé par un secrétaire administratif engagé par le président, après avis du bureau exécutif.

1775) L.C.N.D.H. art.12 (인권위법 제12조) : Le secrétaire administratif est responsable des tâches pratiques nécessaires à la réalisation des objectifs de la Commission. Il veille à la préparation des rapports du bureau exécutif et de la Commission, ainsi qu'à l'élaboration du budget annuel. Il assiste sans droit de vote aux réunions du bureau exécutif et à celles de la Commission.

1776) L.C.N.D.H. art.5 (인권위법 제5조) : La Commission élit en son sein un bureau exécutif de cinq (5) membres dont :

- un président,
- un viceprésident,
- un rapporteur général,
- un rapporteur général adjoint,
- un trésorier.

Les membres du bureau exécutif sont élus pour une période de quatre (4) ans renouvelable une fois.

1777) L.C.N.D.H. art.7 (인권위법 제7조) : Le bureau exécutif assure l'administration de la Commission. Il établit notamment l'ordre du jour des réunions de la Commission et le projet de budget annuel. Le bureau exécutif peut déléguer une partie de ses fonctions à son président.

토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는 인권 침해 조사 등의 작업에 필요한 경우 집행실에서 워킹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근거법 및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워킹그룹의 종류와 활동 내역을 알 수 없음.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는 토고 인권위에 ‘인권 보호와 증진 부위원회(Sous Commission Protection et promotion)’와 ‘고문방지 부위원회(Sous commission Prévention de la Torture)’ 이렇게 2개 부위원회가 있음을 소개하나, 현재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sup>1778)</sup>.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수도인 로메(Lomé)에 본부를 설립함<sup>1779)</sup>.

현재까지 토고 인권위원회는 아타크파메(Atakpamé), 소코데(Sokodé), 카라(Kara), 다파옹(Dapaong) 등 4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sup>1780)</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토고 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해 어떤 조직이나 기관 또는 사인도, 인권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도 인권위 활동에 관여해 독립성을 해칠 수 없음을 명시함<sup>1781)</sup>. 인권위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받으며, 재정은 외부의 보조금, 기부, 증여, 위원회 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포함함. 위원회는 매년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정부 일반 예산(budget général)으로 제출함으로써 예산을 배분받음<sup>1782)</sup>.

---

1778) <http://cndh-togo.org/les-sous-commissions/sous-commission-protection-et-promotion-cndh-togo/> (검색일: 2016.10.31.)

1779) <http://cndh-togo.org/contact/> (검색일: 2016.10.31.)

1780) <http://cndh-togo.org/organisation/fonctionnement-organisation/> (검색일: 2016.10.31.)

1781) L.C.N.D.H. art.1 (인권위법 제1조) : (···) Aucun membre du gouvernement ou du parlement, aucune autre personne ne s’immisce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et tous les autres organes de l’Etat lui accordent l’assistance dont elle peut avoir besoin pour préserver son indépendance, sa dignité et son efficacité.

1782) L.C.N.D.H. art.25 (인권위법 제25조) : La commission jouit d’une autonomie de gestion administrative et financière. Les ressources de la Commission sont constituées par des subventions, des dons et legs, et des recettes provenant de ses activités. L’Etat inscrit au budget de chaque année, les crédits nécessaires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토고-표 12> 토고 인권위원회 2015 예산

2015 인권위 예산 <sup>1783)</sup>	280,000,000 CFA Franc (약 5억 3천 6백만 원)
------------------------------	--

출처: 토고 2015 정부 예산, 『Budget de l'Etat, gestion 2015』, p.146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높은 도덕성과 독립적인 정신, 본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지닌 인물 17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토고 국회에서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선출함<sup>1784)</sup>.

(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권위 회의에서 다수결로 17명의 위원들 중에서 선출함<sup>1785)</sup>.

(나) 위원

토고 국회는 다음의 조건으로 17명의 위원을 선출함. 국회가 선출한 4인 중 2인, 동료 법관들이 추천한 법관 2인 중 1인, 동료 변호사들이 추천한 변호사 2인 중 1인, 동료 교육자들이 추천한 인권 교육자 2인 중 1인, 의사들이 추천한 의사 2인 중 1인, 여성인권 단체들이 추천한 여성인권 활동가 2인 중 1인, 인권 단체들이 추천한 인권 활동가 4인 중 2인, 아동인권 단체들이 추천한 아동인권 활동가 2인 중 1인, 중앙노동조합이 추천한 노조 활동가 4인 중 2인,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추천한 지도자 2인 중 1인, 가톨릭교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 개신

1783) [http://www.togoreforme.com/fr/index.php?option=com\\_docman&Itemid=122](http://www.togoreforme.com/fr/index.php?option=com_docman&Itemid=122)  
(검색일: 2016.10.31.)

1784) L.C.N.D.H. art.3 (인권위법 제3조) : La commission est composée de dix-sept (17) personnalités élues par l'Assemblée nationale à la majorité absolue de ses membres en raison de leur probité morale, de leur indépendance d'esprit, de leur expérience dans leur domaine respectif et de leur intérêt pour les droits de l'Homme

1785) La Commission élit en son sein un bureau exécutif de cinq (5) membres dont : un président, un vice président, un rapporteur général, un rapporteur général adjoint, un trésorier. Les membres du bureau exécutif sont élus pour une période de quatre (4) ans renouvelable une fois.

교에서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 무슬림 연합에서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 국제적십자에서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sup>1786</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기능에 상응하는 급여를 법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으며, 위원은 계약에 따른 활동비를 규정에 따라 받음<sup>1787</sup>. 지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없음.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토고 인권위는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위원은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음.

---

1786) L.C.N.D.H. art.3 (인권위법 제3조) : (…)

- deux (02) personnalités sur une liste de quatre (04) personnalités élues par l'Assemblée nationale,
- un (01) magistrat sur une liste de deux (02) magistrats proposés par leurs pairs,
- un (01) avocat sur une liste de deux (02) avocats proposés par leurs pairs,
- un (01) enseignant de faculté de droit sur une liste de deux (02) enseignants proposés par leurs pairs,
- un (01) médecin sur une liste de deux (02) médecins proposés par leurs pairs,
- une (01) militante des droits de la femme sur une liste de deux (02) militantes proposées par les associations des droits de la femme les plus représentatives,
- deux (02) militants des droits de l'homme sur une liste de quatre (04) militants proposés par les associations des droits de l'homme les plus représentatives,
- un (01) militant des droits de l'enfant sur une liste de deux (02) militants proposés par les associations des droits de l'enfant les plus représentatives,
- deux (02) syndicalistes sur une liste de quatre (04) syndicalistes proposés par les centrales syndicales les plus représentatives,
- un (01) chef traditionnel sur une liste de deux (02) chefs traditionnels proposés par leurs pairs,
- une (01) personnalité sur une liste de deux (02) personnalités proposées par l'Eglise catholique,
- une (01) personnalité sur une liste de deux (02) personnalités proposées par l'Eglise protestante,
- une (01) personnalité sur une liste de deux (02) personnalités proposées par l'Union musulmane,
- une (01) personnalité sur une liste de deux (02) personnalités proposées par la Croix-Rouge et le Croissant-Rouge togolais.

1787) L.C.N.D.H. art.24 (인권위법 제24조) :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perçoit une rémunération et d'autres avantages liée à ses fonctions. Cette rémunération et ces avantages sont déterminés par la loi. Les autres membres de la commission perçoivent une indemnité forfaitaire fix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4년 임기에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하며, 위원 임기 역시 4년이나 재임 불가능함<sup>1788</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은 인권위 직무 수행 중의 활동이나 발언으로 조사받거나 체포, 구금, 재판받지 않으며, 이는 위원 직무가 끝난 후에도 적용됨<sup>1789</sup>). 위원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2/3가 동의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뒤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3개월간 자리를 유지함<sup>1790</sup>). 위원장 역시 인권위 기능과 신뢰성에 해를 끼칠 정도로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위원의 1/2의 요청으로 위원장 해임 투표를 열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전체 인원의 2/3 동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위원장은 해임 결정 후 대체자가 임명될 때까지 15일간 직무를 유지함<sup>1791</sup>).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1) 인권 침해 청원(requêtes) 및 직권에 따른 조사

위원회는 인권 보호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인권 침해 청원을 받고

---

1788) L.C.N.D.H. art.4 (인권위법 제4조) : Le mandat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est de quatre (04) ans renouvelable. Il n'est pas révocable.

1789) L.C.N.D.H. art.15 (인권위법 제15조) : Aucun membre de la Commission ne peut être poursuivi, recherché, arrêté, détenu ou jugé, à l'occasion des opinions ou voies Amis par lu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et même après la cessation de celles-ci.

1790) L.C.N.D.H. art.4 (인권위법 제4조) : (...) Toutefois, tout membre qui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définies par la présente loi organique est déclaré démissionnaire par la commission statuant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2/3) de ses membres. Il doit être pourvu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e trois (03) mois au remplacement du membre démissionnai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loi organique.

1791) L.C.N.D.H. art.10 (인권위법 제10조) : Au cas où, par suite d'un manquement grave à ses obligations, le président du bureau exécutif viendrait à paralyser le fonctionnement normal de la commission ou à compromettre sa crédibilité, il peut être déclaré démissionnaire sur décision prise par les deux tiers (2/3) des autres membres de la commission à la requête de la moitié d'entre eux. La réunion est convoquée et présidée par le Vice-président. Il doit être pourvu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e quinze (15) jours au remplacement du président démissionnaire.

그에 따른 조사 활동을 수행함. 위원회는 청원이 아닌 위원장 혹은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도 사례를 수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른 직권 (autosaisines) 조사 활동을 수행함<sup>1792</sup>). 위원회가 사건을 수임한 후 48시간 후 집행실 회의를 소집하는데, 사례가 긴급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인 침해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함. 위원회는 사례 수임 가능성 (irrecevabilité)을 판단한 후<sup>1793</sup>), 사례 착수를 결정하면 사건의 심리 (instruire)를 위해 특별보고관(rapporteur spécial)을 지명함<sup>1794</sup>). 특별보고관 위원은 조사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관련 당국,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심문할 권한, 증거 가치가 있는 모든 문서에 접근할 권한 등을 가짐<sup>1795</sup>). 2015년에 토고 인권위는 총 101건을 접수했고, 사례 중에서는

1792) L.C.N.D.H. art.17 (인권위법 제17조) : Toute personne qui s'estime victime de la violation d'un droit de l'Homme, peut adresser une requête à la commission. La requête peut émaner également d'une tierce personne ou d'une organisation non gouvernementale. La commission, à la demande de son président ou de l'un de ses membres, peut se saisir d'office des ca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En dehors des requêtes qui lui sont adressées, la commission se saisit d'office des ca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dont elle a connaissance.

1793) L.C.N.D.H. art.18 (인권위법 제18조) : La requête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 préciser l'identité et l'adresse de l'auteur,  
 - spécifier le cas de violation commise,  
 - ne pas concerner une violation qui a déjà cessé,  
 - ne pas contenir des termes outrageants ou injurieux à l'égard de l'agent ou de l'administration mise en cause.

Il ne saurait y avoir de requête pour des faits dont la justice est déjà saisie sauf en cas de déni manifeste de justice. (위원회는 먼저 접수한 청원 사례의 수임 가능성을 심사함. 청원자 신원 및 작성자 주소를 밝혔는지, 사례를 제대로 기술했는지, 이미 다른 절차를 소진해 종료된 사건인지, 공무원의 모욕적 언행이나 행정적 실책에서 비롯된 사례인지 판단 후 위 조건들에 해당되는 사례는 각하함. 법원에서 심리를 거부한 사례를 제외하고 법원에서 이미 재판 중인 사례도 각하함.)

1794) L.C.N.D.H. art.19 (인권위법 제19조) : Le bureau exécutif se réunit au plus tard dans les quarante huit (48) heures suivant la saisine de la Commission. En cas de violation grave, manifeste et continue, le bureau exécutif se réunit sans délai. S'il estime que les conditions de recevabilité définies à l'article 18 ci-dessus sont remplies, il désigne parmi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un rapporteur spécial aux fins de l'instruire.

1795) L.C.N.D.H. art.21 (인권위법 제21조) : Le rapporteur spécial est habilité dans le cadre de ses investigations : à notifier pour explications, la requête à l'agent où à l'administration mise en cause ; à procéder à l'audition de la victime, de l'agent impliqué et de toute personne apte à l'éclairer ; à avoir accès à tous rapports,

자의적 구금과 학대(détention arbitraire ou abusive)가 17건, 사법 접근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sup>1796)</sup>. 101건 중 27건을 각하하고 74건을 수입해 조사 활동 및 피해자 구제 작업에 착수했음<sup>1797)</sup>. 또한, 진정 요청 없이 직권에 의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직권 조사는 주로 경찰이나 안보 관련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audition)로 이뤄짐.

(2) 피해자 구제

토고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당국과 정부에 권고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건을 수입한 특별보고관 위원은 사례를 맡고 15일 후에 사실 확인과 조사 결과,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sup>1798)</sup>. 특별보고관은 피해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과 조치를 고려해 권고하며, 만약 보고관이 검토한 피해가 지속되고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법원에 사건을 회부함<sup>1799)</sup>. 인권위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조사를 포함한 인권위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6개월에서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거나, 50만

---

registres et autres documents ainsi qu'à tous objets et lieux ayant trait à l'enquête ; à bénéficiaire, dans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du concours des supérieurs hiérarchiques de l'agent impliqué.

1796) 토고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Rapport d'activités 2015), p.17

1797) Id. p.18

1798) L.C.N.D.H. art.21 (인권위법 제21조) : (...) Il recherche, s'il y a lieu, avec l'administration concernée, les voies et moyens pouvant faire cesser la violation objet de la requête. Il dépose,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e quinze (15) jours, à compter de sa désignation, un rapport sur l'ensemble des diligences qu'il a effectuées et formule le cas échéant, des avis et recommandations à l'adresse de la Commission.

1799) L.C.N.D.H. art.22 (인권위법 제22조) : au cas où la violation persiste, la Commission se réunit immédiatement pour examiner le rapport déposé par le rapporteur spécial et arrête toutes mesures susceptibles d'y mettre fin, notamment, le recours :

- au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qui en fait un rapport à l'Assemblée Nationale ;
- ou/et au chef de l'Etat ;
- aux tribunaux

프랑에서 100만 프랑 사이의 벌금을 물어야 함<sup>1800</sup>).

(3) 구금시설, 선거, 집회 인권 모니터링

위원회는 인권 보호 임무로서 교도소, 경찰서 내 구치소를 비롯한 구금시설 방문 조사와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 이행 모니터링, 집회 시위 현장의 인권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함.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선거 모니터링을 실시해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해왔음<sup>1801</sup>). 구금시설 방문 조사 활동으로 2015년에는 5개의 전국 교도소와 11개 군대 및 헌병대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관련 당국에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현장을 방문해왔는데, 2015년에는 총 6개의 집회 현장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함<sup>1802</sup>).

(4)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토고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함께 인권 증진을 주요 임무로 두고,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권고하며 인권 정책 및 인권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공적으로 발표하고, 세미나 및 콜로키움 같은 행사를 개최함. 또한, 대중 인권 의식을 확산하고 인권 교육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인권 캠페인을 진행함<sup>1803</sup>).

---

1800) L.C.N.D.H. art.21 (인권위법 제21조) : Quiconque par action, inertie, refus de faire, ou tout autre moyen, aura entravé ou tenté d'entraver l'accomplissement des fonctions assignées à la Commission, sera puni d'un emprisonnement de six (6) mois à cinq (5) ans et d'une amende de 500,000 à 1,000,000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1801) 토고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Rapport d'activités 2015), p.46

1802) Id. p.70

1803) L.C.N.D.H. art.2(b) (인권위법 제2조 b항) : (...) de promouvoir les droits de l'Homme par tous les moyens, notamment : d'examiner et de recommander aux pouvoirs publics toutes propositions de textes ayant trait aux droits de l'homme en vue de leur adoption, d'émettre des avis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d'organiser des séminaires et colloques en matière des droits de l'Homme, d'organiser des campagnes de sensibilisation sur les droits de l'Homme en direction des populations ; (...)

바) 특이사항

- (1) 토고 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구이자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이에 불응할 경우 일정 액 이상의 벌금처분 등 후속조치를 함.
- (2) 토고 인권위는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받으며 전체 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함. 국민의 대리로서 인권 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매년 그 결과를 연간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의장 및 상원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가 갈등 조정관에게 전달하고 보고함. 이는 다시 대중에 공개됨<sup>1804</sup>).
- (3) 인권위 위원은 국회의원,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 시민사회 출신들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국민을 대리해 인권 보호 및 증진 임무를 수행하게 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1999년, 2000년, 2007년 10월, 2013년 5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1805</sup>)

---

1804) L.C.N.D.H. art.9 (인권위법 제9조) :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adresse pour information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Premier ministre, au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au président du Sénat, au présiden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au président de la Cour suprême et au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un rapport annuel sur les activités de la commission et en assure une large publicité. Ce rapport est rendu public au premier trimestre de l'année suivante.

180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 51) 우간다

우간다 국가 정보 <sup>1806)</sup>	
면적	241,038km <sup>2</sup>
인구	3,710만명('15.7 잠정)
수도	캄팔라(Kampala)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민족	반투족(바간다 족 포함, 17%), 반야콜레 족(Banyakole, 9.5%), 바소가 족(Basoga, 8.4%), 바키가 족(Bakiga, 6.9%), 이테소 족(Iteso, 6.4%), 랑기 족(Langi, 6.1%), 에콜리 족(Acholi, 4.7%)
주요언어	영어(공용어)
주요종교	카톨릭(41.9%), 성공회(42%), 이슬람(12.1%)
GDP	GDP : 264억불('15)
	1인당 GDP : 676불('15)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우간다 인권위원회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UHRC)

#### (2) 설립연도<sup>1807)</sup>: 1996년 11월

(3) 설립배경<sup>1808)</sup>: 우간다 인권위원회는 1995년 우간다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우간다는 독립을 전후해 안보기구(security organs)의 활동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허용되어(impunity) 임의적 체포(arbitrary arrest), 재판 절차 없이 구금(detention without trial), 고문, 가혹한 억압 등으로 인한 폭력적이고 격동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인식하여 국내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결정함.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1995년 우간다 헌법 51조 1항에서 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함. 동 헌법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예산과 인사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하고 있음.<sup>1809)</sup>

1806)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17.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17.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10.25.)

1807)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SForum/3sfMrOmaraUganda.pdf> (검색일: 2016.10.30.)

1808) <http://www.uhrc.ug/background> (검색일: 2016.10.28.)

- (나) 1995년 우간다 헌법 제 52조 1(i)항과 58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97년 우간다 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됨. 동법에서 위원회의 구성, 권한, 기능,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sup>1810)</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1811)</sup>: 헌법과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 (가) 인원 및 부서<sup>1812)</sup>: 위원회는 위원장(Chairperson)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사무국 소속 직원들은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과 함께 위원회가 정함.<sup>1813)</sup> 회계 담당자(Accounting Officer)가 위원회의 총무(Secretary to the Commission)직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일과를 감독하고 운영관리팀(management team)을 이끌며 위원회 회의의 총무(secretary)로서의 역할을 함. 사무국(office of the Commission)은 위원회의 홍보, 기획, 편집 기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위원회는 헌법적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다섯 개의 국을 두고 있음: 진정국(Directorate of Complaints), 조사 및 법률국(Investigation and Legal Services), 재무 및 행정국(Directorate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연구·교육·기록국(Directorate of Research, Education and Documentation), 모니터링 및 검사국(Directorate of Monitoring and Inspections), 지역국(Directorate of Regional Service). 이러한 국 산하에 여러 개의 팀을 두고 있음: 인사팀(Human Resource Unit), 홍보팀(Public Affairs Unit), 건강권팀(Right to Health Unit), 취약계층팀(Vulnerable Persons; Unit), 내부

1809) [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 (검색일: 2016.10.30.)

1810) <http://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94561/110995/F1266020944/UGA94561.pdf> (검색일: 2016.10.30.)

1811) [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 (검색일: 2016.10.30.)

1812) <http://www.uhrc.ug/administrative-structure> (검색일: 2016.10.28.)

1813) [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 (검색일: 2016.10.30.)

감사팀(Internal Audit), 편집팀(Editing Unit), 시스템행정팀(System Administration Unit), 기획팀(Planning Unit), 도서관 및 기록 센터(Library and Documentation Center), 재판소 사무국(Tribunal Registrar's Unit), 인권옹호자팀 (Human Rights Defenders Desk).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814</sup>: 위원회는 수도인 캄팔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와 현장사무소(Field Office)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아루아(Arua), 중앙(Central), 글루(Gulu), 소로티(Soroti), 음바라라(Mbarara), 포트 포털(Fort Portal), 진자(Jinja), 마사카(Masaka), 모로토(Moroto), 호이마(Hoima)에 총 10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 지역사무소에서는 관할권 내에서 진정 접수, 조사 진행, 중재, 구금소 방문, 지역 인권 현황 모니터링, 인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함. 위원회는 민군협동 센터(Civil-Military Co-operation Centres, CMCCs)가 폐쇄됨에 따라 본래 센터가 맡았던 역할을 이어받기 위해 10개의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를 운영함. 글루지역사무소 산하에 리라(Lira), 파더(Pader), 킷검(Kitgum) 현장사무소가, 모로토 지역사무소 산하에 나카피리피리트(Nakapiripirit), 코티도(Kotido) 현장사무소가, 소로티 지역사무소 산하에 캅초르와(Kapchorwa), 카베라메이도(Kaberamaido) 현장사무소가 운영 중임<sup>1815</sup>. 이 외에도 카란갈라(Kalangala), 모요(Moyo), 부부마(Buvuma)에 현장사무소가 있음.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816</sup>: 위원회는 독립채산제(self-accounting)로 운영되며 위원회의 모든 비용은 정리기금(Consolidated Fund)에서 충당함. 의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의 봉급은 의회가 정함. 의회는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과 시설이 지원되도록 함.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국내외 보조금(grant) 혹은 기부금(donation)을 재정을 책임지는 장관(Minister responsible for finance)과 협의한 장관(Minister)의 승인 하에 위원회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음. 헌법 55조와 우

1814) <http://www.uhrc.ug/administrative-structure> (검색일: 2016.10.28.)

1815) [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 (검색일: 2016.10.30.)

1816) [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 (검색일: 2016.10.30.)

간다 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한 예산은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에 따라 총무(secretary)에 의해 집행되고 통제되어야함.<sup>1817)</sup>

<우간다-표 13> 우간다 인권위원회 예산

(단위: 10억 UGX)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5/2016
국가보조금	7.27(약 24억 원)	7.22(약 23억 9천만 원)	8.33(약 27억 5천만 원)	9.78(약 32억 4천만 원)	9.78(약 32억 4천만 원)
외부지원	4.09(약 13억 5천만 원)	4.1(약 13억 5천만 원)	3.58(약 11억 6천만 원)	3.28(약 10억 8천만 원)	4.9(약 16억 3천만 원)
국가보조금 비율	63%	63%	70%	75%	67%

출처: 2015년 우간다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출처: 2015년 우간다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우간다-그림 34] 우간다 인권위원회 조직도

1817) <http://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94561/110995/F1266020944/UGA94561.pdf> (검색일: 2016.10.30.)

-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1818</sup>):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이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integrity)을 갖춘 인물<sup>1819</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의 지위는 헌법 및 인권위원회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위에 부여한 권한 외에 위원의 권한 조항 없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1820</sup>):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재임이 가능함.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인권위원회법 13조에 근거하여 위원은 면책 특권을 향유함. 위원 혹은 위원회의 지시 하에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 혹은 개인은 역할 수행을 위해 선의(in good faith)로 행한 행동에 대해 민 책임을 지지 않음.<sup>1821</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1822</sup>)

-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 (가) 조사와 진정의 해결은 위원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임. 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통해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이 행위에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진정 해결과 관련된 역할은 조사, 중재, 상담, 조언, 사건의 회부(referral), 재판을 통해 수행됨.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가 실제로 인권 침해 사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나)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하다면 소환장(summon)을 발부하거나

1818) <http://www.uhrc.ug/administrative-structure> (검색일: 2016.10.28.)

1819) [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http://www.ulii.org/ug/legislation/consolidated-act/0/consolidated_act_2000_0.doc) (검색일: 2016.10.30.)

1820) <http://www.uhrc.ug/administrative-structure> (검색일: 2016.10.28.)

1821) <http://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94561/110995/F1266020944/UGA94561.pdf> (검색일: 2016.10.30.)

1822) [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 (검색일: 2016.10.30.)

다른 명령을 통해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문서 혹은 기록을 남길 수 있음. 또한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으며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다) 위원회는 구금소에 방문하여 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인권사항과 권고사항 및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여부를 조사함. 위원회는 고문, 의료서비스, 엄마와 같이 구금되어 지내는 아동, 어른들과 함께 구금된 청소년, 법원 출석, 직원 복지 등의 현황을 점검함.
- (라) 위원회는 인권 혹은 자유의 침해가 확인되었을 때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음: 구금 혹은 제약이 가해진 자(restricted person)를 석방함, 보상, 법적 해결(remedy) 혹은 시정(redress).<sup>1823)</sup>

## (2)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법률제안

- (가) 위원회는 피해자 보상 등을 포함한 인권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의회에 권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 국제인권규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함.<sup>1824)</sup> 또한 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함.
- (나) 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함. 위원회는 최근에 아동개정법안(Children amendment bill), 헌법 개정법안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2015), 사형법안(Death Penalty bill), NGO법안(NGO Bill 2015), 국가 바이오텍 법안(National Biotech Bill)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함.<sup>1825)</sup>

## (3) 인권 문화 확산

- (가) 위원회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권에 관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기량(skill)을 전파하고자 함. 위원회는 정부기관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훈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community outreach programmes), 미디어 캠페인, 인권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인권 문

1823) [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http://uhrc.ug/system/files_force/ulrc_resources/UHRC%2018th%20Annual%20Report%20edited%20mail.pdf?download=1) (검색일: 2016.10.30.)

1824) <http://www.uhrc.ug/functions> (검색일: 2015.10.30.)

1825) <http://www.uhrc.ug/uhrc-position-ngo-bill-2015> (검색일: 2016.10.30.)

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함.

- (나) 위원회는 공동체 회의(community meeting, baraza)를 개최하여 인권 인식을 제고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시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공동체 회의는 특정 인권 사안이 문제가 된 지역, 분쟁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최되었으며 교도소와 종교시설에서도 개최됨. 또한 경찰, 공동체 개발 담당자(community development officers), 지역 위원(Resident District Commissioners),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체 회의를 개최하기도 함.
- (다) 시민교육 밴을 통해 마을 로드쇼 형태의 인권교육을 진행함. 위원회 직원들이 밴을 타고 마을을 이동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교육을 진행함.

#### (4)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

- (가) 위원회는 인권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특정 주제에 대한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s)를 발간함.<sup>1826)</sup>
- (나) 위원회는 도서관 및 기록센터(Library and Documentation Centre)을 통해 인권 관련 자료들이 잘 관리되고, 분류되고 위원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5)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가) 위원회는 호이마(Hoima), 마신디(Masindi), 음피기(Mpigi), 루위로(Luweero), 캄팔라(Kampala), 와키소(Wakiso), 리라(Lira), 콜(Kole)에 '우간다의 취약계층 인권 증진 프로젝트(Strengthening Human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in Uganda Project)를 통해 특정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에이즈 환자, 소수 민족, 노인 등의 인권문제를 다룸. 관련 취약계층에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문제를 논의함.

---

1826) <http://www.uhrc.ug/special-reports> (검색일: 2016.10.30.)

(나) 위원회는 특정 인권이슈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역의 문화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바) 특이사항

우간다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고등법원 판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겸으로써, 법률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함. 공동체 회의를 개최하고 밴을 타고 로드쇼를 하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0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1년, 2008년 4월, 2013년 5월 심사에서도 A등급을 유지함.<sup>1827)</sup>

---

1827)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25.)

## 2. GANHRI B 등급 국가인권기구 (5개국)

### 가. 태국

태국 국가 정보 <sup>1828)</sup>	
면적	513,000km <sup>2</sup>
인구	6,600만 명('15)
수도	방콕(Bangkok)
정치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민족	타이족(85%), 화교(12%) 등
주요언어	타이(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주요종교	불교(95%), 기타(회교, 기독교 등)
GDP	GDP : 3,751억불('15)
	1인당 GDP : 5,547 불('15)

####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가) 정식명칭: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나) 설립연도 : 2001년 6월<sup>1829)</sup>

다) 설립배경<sup>1830)</sup>: 1997년 태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40)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제도의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 1기(first batch)는 2001년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했음. 2006년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기존의 1997년 헌법은 폐지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지되었음.

#### 2) 설립 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1828)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10/1\\_23038.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10/1_23038.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8.31.)

1829) 국가인권법(National Human Rights Act B.E.2542, 1999)이 1999년 11월 25일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위원회 1기가 2001년 7월에 출범함.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Background-and-History.aspx> (검색일: 2016.10.6.)

1830)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Background-and-History.aspx> (검색일: 2016.8.31.)

등)<sup>1831)</sup>

가)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1997년 태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40) 8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sup>1832)</sup> 국가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 1999)은 1997년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40) 29조, 35조, 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및 자유와 관련하여 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 근거, 권한, 역할 등에 대해 헌법보다 더 자세히 정하고 있음.<sup>1833)</sup>

2006년 쿠데타로 기존의 1997년 헌법은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2550)<sup>1834)</sup> 11장 2부 256조, 257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정하고 있음. 1997년 헌법과 비교해 2007년 헌법은 위원회 정원뿐만 아니라 추천 및 임명 과정의 변화, 권한과 의무의 추가 등 위원회 구성 및 성격에 변화를 주었음. 하지만 2014년 국내의 정치적 갈등으로 국가평화질서회의(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가 집권을 하게 되자 2007년 헌법은 폐지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지속되었음. 국가평화질서회의는 같은 해 NPCO.NO.48/2557<sup>1835)</sup>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공석을 기존 2007년 헌법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겠다고 발표함.

국가평화질서회의는 2016년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쳤음.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헌법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130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

1831)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Background-and-History.aspx> (검색일: 2016.8.31.)

1832) <http://www.asianlii.org/th/legis/const/1997/1.html> (검색일: 2016.9.2.)

1833) [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 (검색일: 2016.9.2.)

1834) [https://www.unodc.org/tldb/pdf/Thailand\\_const\\_2007.pdf](https://www.unodc.org/tldb/pdf/Thailand_const_2007.pdf) (검색일: 2016.9.2.)

1835) <http://www.mfa.go.th/main/en/media-center/3756/46220-Announcement-of-the-National-Council-for-Peace-and.html> (검색일: 2016.9.2.)

회 기본법 제정 계획을 서술하고 있으며, 12장 6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역할을 정하고 있음.<sup>1836)</sup>

나)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3)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가) 조직 구성<sup>1837)</sup>(인원 및 조직도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2550)에 근거하여 한명의 위원장(president)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회는 산하에 인권조사(human rights investigation), 행정 및 인사관리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그리고 기타 업무를 맡고 있는 소위원회 등을 산하에 두고 있음.<sup>1838)</sup>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내에 자문단(Advisory Expert to the Office), 인권조사단(Human Rights Inspectors)과 함께 중앙행정국 (Central Administration Bureau), 대외협력국(Human Rights Promotion and Network Coordination Bureau), 인권보호국(Human Rights Protection Bureau), 연구 및 기술 지원국(Research and Technical Support Bureau), 법률국(Legal Affairs and Litigation Bureau), 국제인권국(International Human Rights Affairs Bureau)을 두고 있음.

---

1836) [http://www.un.or.th/wp-content/uploads/2016/06/2016\\_Thailand-Draft-Constitution-EnglishTranslation-Full-Formatted\\_vFina....pdf](http://www.un.or.th/wp-content/uploads/2016/06/2016_Thailand-Draft-Constitution-EnglishTranslation-Full-Formatted_vFina....pdf) (검색일:20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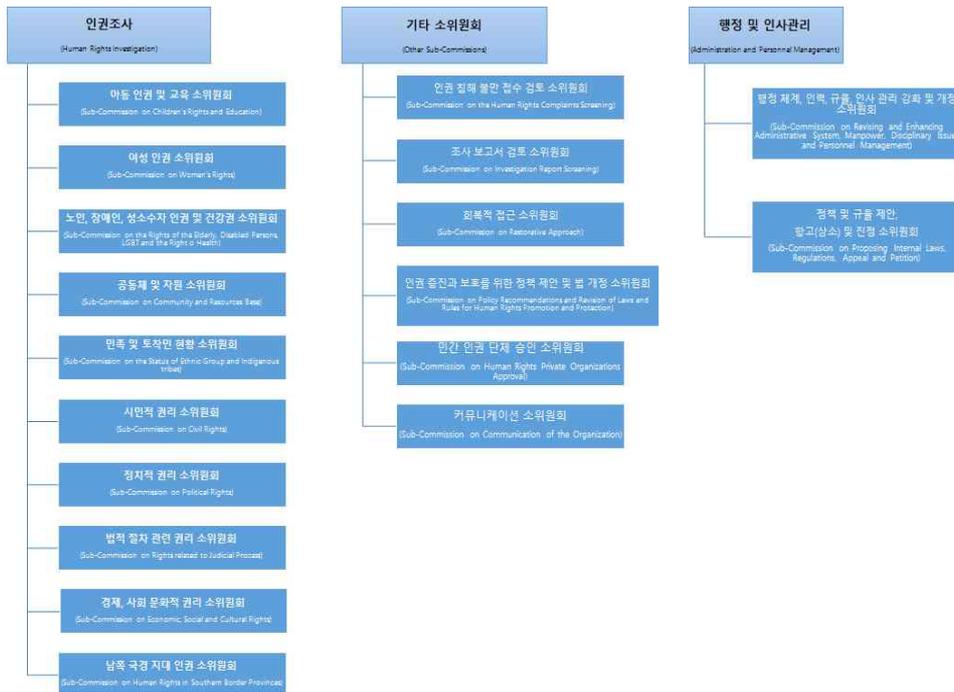
1837) <http://www.nhrc.or.th/AboutUs/The-Office/Office-structure.aspx> (검색일: 2016.9.2.)

1838) <http://www.nhrc.or.th/AboutUs/Sub-Committees/Structure.aspx> (검색일: 2016.9.2.)



출처: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태국-그림 35]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출처: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태국-그림 36] 태국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조직도

나) 지역사무소<sup>1839)</sup>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는 방콕에 위치하고 있음.

다) 예산<sup>1840)</sup>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 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을 배정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을 통해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 알맞은 예산안을 제출함.<sup>1841)</sup>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1842)</sup>

가)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2007년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2550) 256조에 근거하여 국왕이 상원(Senate)의 자문을 받아 인권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권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에 임명함.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 6조, 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적, 나이, 정당 가입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함. 상원 의장(President of the Senate)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는 왕명(Royal Command)에 부서(countersign)함.<sup>1843)</sup>

나)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에 따라 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은 반부패에 관한 헌법상 국가 공무원

다)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2007년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2550) 256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행정, 예산 및 다른 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음. 동 헌법 257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수

---

1839) <http://www.nhrc.or.th/ContactUs.aspx> (검색일: 2016.9.2.)

1840) [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 (검색일: 2016.9.4.)

1841) 공식홈페이지, 연간보고서 등에서 구체적인 연간 예산이 따로 발표되어 있지 않음.

1842) [https://www.unodc.org/tldb/pdf/Thailand\\_const\\_2007.pdf](https://www.unodc.org/tldb/pdf/Thailand_const_2007.pdf) (검색일: 2016.9.2.)

1843) [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 (검색일: 2016.9.4.)

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어떠한 개인에게 요구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상근하여야 하며 칙령(Royal Decree)에 근거하여 월급 및 여행경비(travel allowance)를 지급 받음.<sup>1844)</sup>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두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함.<sup>1845)</sup> 또한 위원회는 국내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정부와 의회(National Assembly)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함.<sup>1846)</sup>

라)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2007년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2550) 256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기는 6년이며 재임할 수 없음.

마)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847)</sup>

5) 주요권한 및 활동<sup>1848)</sup>

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권한과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에 근거하여 인권 현황 모니터링, 인권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정책 모니터링 및 입법 제안 등의 활동을 함.

가) 국내 인권문제 조사

(1) 위원회는 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혹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하여 조사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권고함. 권고한 방법이 실행되지 않을 시 국회(National Assembly)에 보고함.

(2) 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대응을 검토

1844) [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 (검색일: 2016.9.4.)

1845) [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 (검색일: 2016.9.4.)

1846)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Mandates.aspx> (검색일: 2016.9.4.)

1847) 위원의 면책 특권 및 지위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1848) [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http://www.asiapacificforum.net/media/resource_file/Thailand_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Act_1999.pdf) (2016.9.4.)

함.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 원인, 해결방법 그리고 국가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임. 만약 국가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예방과 해결 방법을 권고함. 특히 취약 계층인 여성, 아동, 토착민, 성소수자 등의 인권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sup>1849)</sup>

#### 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

- (1)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도서관(Librar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이 설립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연구 및 기술국(Research and Technical Support Bureau) 산하로 이전하였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Action Pla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for the Fiscal Year 2011)에 근거하여 인권 정보 센터(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로 개편함. 인권 정보 센터는 기존 기능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계획 및 연례보고서 작성을 보조함.<sup>1850)</sup>

#### 다)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1)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출판물<sup>1851)</sup>, 인권 관련 영상물<sup>1852)</sup>, 그리고 인권 관련 음악<sup>1853)</sup>을 공유함으로써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2) 인권의 날에 인권운동가 상(Human Rights Defender Award)을 수여함. 개인, 대중매체(mass media), 청소년(youth), 정부 조직, 민간 영역(private sector), 언론 및 언론 프로그램(media or media's program)

1849) <http://www.nhrc.or.th/getattachment/e2662f60-2689-45da-9179-61d19a9642fc/Executive-Summary-Reports-on-the-Appraisal-of-Huma.aspx> (검색일: 2016.9.4.)

1850) <http://library.nhrc.or.th/en/history.php> (검색일: 2016.9.4.)

1851) <http://www.nhrc.or.th/Human-Rights-Knowledge/Documents/Articles.aspx> (검색일: 2016.9.4.)

1852) <http://www.nhrc.or.th/Human-Rights-Knowledge/Multimedia/Human-rights-videos.aspx> (검색일: 2016.9.4.)

1853) <http://www.nhrc.or.th/Human-Rights-Knowledge/Multimedia/Human-rights-songs.aspx> (검색일: 2016.9.4.)

영역으로 나누어 수상함.<sup>1854)</sup>

라)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입법 자문활동

- (1) 위원회는 국회(National Assembly) 및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게 법의 개정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에 대해 제안함. 사형제, ILO가입, 자원입대, 계엄령(martial law)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함.<sup>1855)</sup> 또한 국내법이 새롭게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보편적연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있도록 개정을 제안함.<sup>1856)</sup>
- (2) 국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을 국회 및 각료이사회에 제안함.
- (3)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쿠데타 후 집권하게 된 국가평화질서회의(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의 통치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함. 특히 구금된 자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시점에서 직접 구금소를 방문하고 구금자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이 인권침해 없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금되고 있는지를 확인함.<sup>1857)</sup>

마)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 (1) 2007년 헌법에서는 법률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음.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하여 헌법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법, 규정, 행정 행위(administrative act) 등에 대한 소송을 헌법재판소 혹은 행정 법원에 제기함. 또한 일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 인권 침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sup>1858)</sup>

1854) <http://www.nhrc.or.th/NHRCT-Work/Human-Rights-Defenders-Award.aspx> (검색일: 2016.9.4.)

1855) [http://www.nhrc.or.th/NHRCT-Work/Research-papers\(1\)/Revision-of-laws.aspx](http://www.nhrc.or.th/NHRCT-Work/Research-papers(1)/Revision-of-laws.aspx) (검색일: 2016.9.4.)

1856) <http://www.nhrc.or.th/getattachment/e2662f60-2689-45da-9179-61d19a9642fc/Executive-Summary-Reports-on-the-Appraisal-of-Huma.aspx> (검색일: 2016.9.4.)

1857) <http://www.nhrc.or.th/getattachment/4cc7dafc-525b-48d8-b175-ea8bb79bf182/Report-on-the-National-Council-for-Peace-and-Order.aspx> (검색일: 2016.9.4.)

1858)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Mandates.aspx>

(2) 인권 침해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서(petition)를 제출하여 사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사건을 접수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국은 진정서를 수령한 후 3일 이내로 접수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는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양측이 제공한 정보와 자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시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의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고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 사건을 송부함.

바)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협력 도모

- (1) 1999년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 15조 5항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정부 기관 및 인권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 (2) 위원회는 2014년 국가평화질서회의(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의 쿠데타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만나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국내 인권 상황과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시점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평화질서회의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 특히 국가평화질서회의가 집권한 이후 시민사회에서 실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할 수 있음.<sup>1859)</sup>

6) 특이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1997년과 2007년의 헌법은 각각 폐기되었으나 2016년 헌법개정안에서는 국가위원회의 근거, 권한, 구성,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을 설립한 바 있음

---

(검색일: 2016.9.4.)

1859) <http://www.nhrc.or.th/getattachment/4cc7dafc-525b-48d8-b175-ea8bb79bf182/Report-on-the-National-Council-for-Peace-and-Order.aspx> (검색일: 2016.9.4.)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4년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14년 10월 심사에서 B등급, 2015년 11월 심사에서 B등급 유지<sup>1860)</sup>.

나.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국가 정보 <sup>1861)</sup>	
면적	147,570km <sup>2</sup>
인구	1500만 명('15)
수도	다카(Dhaka)
정치형태	내각책임제('91.9월 개헌)
민족	벵갈인(98%)
주요언어	벵갈어(90%, 공용어)
주요종교	이슬람교(89%, 국교)
GDP	GDP : 2,057억불('15)
	1인당 GDP : 1,286 불('15)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가) 정식명칭: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Bangladesh, NHRC, Jatiyo Manobadhikar Kommison, JAMAKON)

나) 설립연도 : 2008년 12월<sup>1862)</sup>

다) 설립배경<sup>1863)</sup>: 1990년대부터 방글라데시 국내외에서 인권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열망에 힘입어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령(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rdinance 2007)이 공포되어 2008년 12월에 위원장과 두 명의 위원이 임

1860)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1861)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2975.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2975.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9.5.)

1862) 2008년 12월에 최초로 설립되었음. 당시 설립의 근거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법령(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rdinance 2007)이 소멸(lapsed)됨에 따라 2009년 7월 14일에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설립 됨. <http://www.nhrc.org.bd/site/page/1c65dfa1-f9c2-48e9-a66b-eab8de75d9b1/Introduce> (검색일: 2016.10.06.)

1863) <http://www.nhrc.org.bd/about-nhrc/> (검색일: 2016.9.5.)

명되었음. 이후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함께 임명되어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1864)</sup>

가)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방글라데시 헌법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이 제정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에서 위원회의 구성, 역할, 권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동법 2장 2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법이 정한 독립적인 기구(statutory independent body)이며 영구적으로 존속(perpetual succession)하며 자산을 취득, 보유, 관리,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나)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 기구

3)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가) 조직 구성<sup>1865)</sup>(인원 및 조직도 등)

위원회는 인권분야에서의 전문성이 검증되고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1991)의 조건에 부합하는 위원장(Chairman)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장과 위원 중 한명은 상근위원(full time member)이며 나머지 위원들은 명예위원(honorary embers)임<sup>1866)</sup>.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과 민족(ethnic group)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시켜야함. 국가인권위원회 사

1864) <https://drive.google.com/file/d/0B0Fm43gJLWjcZTVtYXFQZkt4bVU/view> (검색일: 2016.9.5.)

1865) <http://www.nhrc.org.bd/about-nhrc/> (검색일: 2016.9.5.)

1866) 2013년 연례보고서 p.46 <http://hrlibrary.umn.edu/research/bagladesh/Appendix%20E-%20Annual%20Report%202013.pdf> (검색일: 2016.10.9.)

무국(Secretary) 아래에 진정 및 연구부(Complaints&Research)와 행정 및 재무부(Administration&Finance)가 있음. 진정 및 연구부 산하에는 진정 모니터링 및 조정팀(Complain Monitoring&Mediation), 진정 및 조사팀(Complaint&Enquiry), 연구 및 정책·법률팀(Research, Policy&Law), 특정 지역 담당팀(Divisional Offices of Dhak, Mymensingh, Chittagong, Sylhet, Khulna, Barisal, Rajshahi&Ranpur)이 있으며 행정 및 재무부 산하에는 정보기술팀(Information Technology),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팀(Seminar, Workshop, Raising Awareness&Public Relations), 역량개발팀(Capacity Development), 관리·행정 및 재무팀(Management, Administration&Finance)이 있음. 2015년 기준 사무국에서 48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임.1867)



[방글라데시-그림 37]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나) 지역사무소186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국은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 위치하고 있음.

다) 예산1869)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1867) 2015년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1868) <http://www.nhrc.org.bd/contact/> (검색일: 2016.9.5.)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 24조에 근거하여 동법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부의 연례 보조금, 지역 당국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기금(Human Rights Commission Fund)을 조성함. 동법 25조에서는 위원회의 재정적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위원회 예산의 독립성에 있어서 개선될 부분이 많음.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위원회의 예산을 승인해야 하며 국가 예산에 위원회의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또한 현재 위원회 전체 예산의 25%만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나머지 75%는 외부의 개발 협력 단체(development partners)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2015/2016년 회계연도(2015년 7월-2016년 6월)에 위원회는 국가로부터 38,221,000타카(한화 약 5억 4천만 원)를 지원받았으며 그 중 2015년 12월까지 13,950,126타카(한화 약 1억 9천 6백만 원)을 지출함. 해당 기간 동안 지역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없음.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1870)</sup>

가)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국회의장(Speaker of the Parliament)이 의장인 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함. 법, 인권, 교육, 사회복지, 인적 개발 등의 영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관련 분야에 크게 기여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후보에 오를 수 있음.

나)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위원장, 간사, 기타임원, 인권위원회 직원 등은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공무원으로 간주

다)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871)</sup>

위원회의 권한은 방글라데시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1869) <https://drive.google.com/file/d/0B0Fm43gJLWjceDhPNnY2a0Fycjg/view>  
(검색일: 2016.9.5.)

1870) <http://www.nhrc.org.bd/about-nhrc/> (검색일: 2016.9.5.)

1871) 위원회의 지위 및 면책특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Rights Commission Act 2009),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함. 국가인권위원회설립에 관한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위원장, 위원 또는 사무국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라)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재임할 수 있음.

마)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872)</sup>

5) 주요권한 및 활동<sup>1873)</sup>

방글라데시는 인권과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함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역할을 함.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담고 있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조사, 정책제안, 연구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함.<sup>1874)</sup>

가) 국내 인권문제 조사

- (1) 위원회 의장과 상근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교도소, 고아원, 병원 등의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인권 현황을 검토함. 현장 점검을 토대로 정부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함.
- (2) 위원회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받고 이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함.

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

- (1) 위원회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 법, 정책, 규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이러한 규범들을 적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간극 그리고 준수(compliance)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함. 연구

---

1872) 해당 정보 찾을 수 없음

1873) 2015년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0B0Fm43gJLWjceDhPNnY2a0Fycjg/view> (검색일: 2016.9.6.)

1874) <http://www.nhrc.org.bd/about-nhrc/> (검색일: 2016.9.5.)

결과는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효과적인 도입과 국내 이행, 국내법의 개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하는데 도움이 됨.

- (2)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이슈를 연구 및 논의하기 위한 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 및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의 논의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 정책 및 법안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도출해냄. 최근에는 조혼(Child Marriage)에 관한 워크숍, 고문 예방 및 구금 중 사망(Prevention of Torture and Custodial Death) 세미나, 인권 보호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음.

다) 인권 인식 증진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1) 위원회는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집회를 개최함.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집회(gathering)을 개최하였음.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특히 인권의 날 주간에 인권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뒤이어 인권 관련 집회를 열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자하는 활동을 함.
-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기반의 NGO, 민간 단체, INGO, 그리고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권 활동가, 정부 관료, 판사, 경찰, NGO대표 등의 역량강화를 통한 인권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음.

라)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입법 자문활동

- (1) 위원회는 인권관련 정책 및 법률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지금까지 위원회는 수많은 법률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음.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근거법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을 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검토하였음.

- (2) 위원회는 2013년 아동법(Children Act-2013), 조혼제한법안(Proposed legislation on Child Marriage Restraint), 아동 노동 금지 정책(Child Labour Elimination Policy),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정책(Domestic Workers Protection and Welfare Policy), 반인신매매법(Anti-Trafficking Act)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정책 및 법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음.
- (3) 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이해관계자 보고서(stakeholder's report)를 제출하고 정부 관계자의 참여 및 준비를 도움. 또한 보편적연례검토의 후속 회의를 통해 국내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다음 보편적연례검토를 준비하는 활동을 함.

마) 인권 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

- (1)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개인, 국가, 정부 기관 혹은 어떠한 단체에 의해 침해 혹은 침해당할 위험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sup>1875)</sup>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9) 12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사건에 대한 중재 및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함. 동법 14조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결정하기 이전에 가해자로 고발된 이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함. 위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진정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 만약 위원회의 권한으로 사건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건을 송부함.
- (2) 위원회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진정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정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상용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500여건 이상의 진정 사항이 접수되었음.

바) 취약 영역의 인권상황 개선

- (1) 위원회는 2011년부터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는 인권영역에 대한 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약 영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함.

1875) <http://nhrc.org.bd/newpage/HR-Complaints.html> (검색일: 2016.9.7.)

현재 9개의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각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민단체, INGO, UN, 국가 소속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음. 현재 아동의 권리, 아동 노동 및 여성 인신매매(Child Labour and Anti-Trafficking Women's Rights), 치타공 구릉지대(Chittagong Hill Tracts Affairs), 달리트 및 소수민족(Dalits and other Excluded Minorities),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 소수 종교인의 보호(Protection of Religious Minorities), 민족의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존재함. 위의 위원회들은 특히 아동, 자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의류 산업 노동자, 소외 계층(disadvantage community)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 (2) 위원회는 모든 연령의 여성들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gender responsive human rights)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 아직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연락처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 NGO에 배포하였음.

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위원회는 다양한 법안 및 정책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함. 위원회는 국내 달리트 계급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안(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차별금지법: 인권 증진을 위한 힘찬 한걸음(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 Firm Step to Promote Human Rights)’이라는 국가자문회의(National Consultation)을 개최함.

자) 인권 관련 교육 제공 및 인식 제고

- (1) 위원회는 위원들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 관료, 인권 활동가, NGO 대표, 언론인, 판사, 변화, 학생, 공동체 조력자(Community

Facilitators), 지역구(Union Parishad)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인권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소수자 권리, 조약 위원회(treaty bodies) 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인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키울 수 있음.

- (2) 위원회는 대중들을 위한 인권 인식 제고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속해왔음.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음. 설문조사 결과 2010년에는 응답자 중 50%가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32%가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답한 반면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8%가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45%가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음.

#### 6) 특이사항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과 민족 집단의 대표자를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음. 이 외에도 인권 취약 영역 중에 여성의 인권이 포함되고 특히 여성들에게 성인지적으로 인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기관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위원회 예산의 25%는 정부와 지역 당국의 보조금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기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75%는 외부의 개발협력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11년 5월 B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15년 3월 심사에도 B등급 유지<sup>1876)</sup>

---

1876)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 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국가 정보 <sup>1877)</sup>	
면적	83,871km <sup>2</sup>
인구	867만 명('15)
수도	빈(Vienna)
정치형태	의원내각제(양원제)
민족	오스트리아계(91%), 슬라브계(4%), 터키계(1.6%), 독일계(1%)
주요언어 <sup>1878)</sup>	독일어(공용어), 슬로베니아어, 헝가리어, 크로아티아어
주요종교	가톨릭(74%), 개신교(4.6%), 이슬람교(4.3%)
GDP	GDP : 3,792억불('15)
	1인당 GDP : 47,230 불('15)

###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sup>1879)</sup>

가) 정식명칭: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The Austrian Ombudsman Board, AOB)

나) 설립연도: 1977년 7월

다) 설립배경: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정치인들은 오스트리아 내 옴부즈맨의 도입을 요구했음. 종전 직후 정치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옴부즈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논의는 장기화되었음. 1970년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의 수상이 옴부즈맨의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진전을 보임. 1975년과 1977년 초반 하원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옴부즈맨 위원회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relating to the Ombudsman Board)이 통과하였으며 세 명의 옴부즈맨이 임명되어 1977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음. 당시 관련 법안은 옴부즈맨 위원회가 1983년에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정해놓았으나 이후 옴부즈맨 위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자 1981년 옴부즈맨 위원회 관련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됨. 옴부즈맨 위원회는 2012년에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음.

1877)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60330/1\\_72693.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60330/1_72693.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9.8.)

1878)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검색일: 2016.9.8.)

1879)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history> (검색일: 2016.9.8.)

- 2)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가)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의 설립과 이의 법적 지위는 오스트리아 연방 헌법(Austrian Federal Constitution, B-VG) 148a조, 148j조<sup>1880)</sup> 그리고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the Austrian Ombudsman Board, Volksanwaltschaftsgesetz 1982 - VolksanwG)<sup>1881)</sup>에서 정하고 있음. 헌법과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에 관한 연방법에서는 위원회의 내부 구조와 기능을 정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 절차 규칙(Rules and Procedure of the Austrian Ombudsman Board)<sup>1882)</sup>에서 위원회의 자세한 운영 형태를 정함.
- 나)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과 옴부즈맨 위원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 3)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가)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옴부즈맨 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됨.<sup>1883)</sup> 매년 6월 말에 위원장(Chairman)이 바뀜.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90여 명이며 그 중 절반정도는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임. 2012년부터 옴부즈맨 위원회는 산하에 6개의 위원회(commissions)에 총 48여 명의 직원을 배정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비인간적 대우 혹은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관련 시설들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함. 새롭게 설립된 인권 자문 위원회(Human Rights Advisory Council)는 옴부즈맨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2009년부터 위원회는 옴부즈맨 국제기구(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의 사무국 본부를 맡아 운영하고 있음.<sup>1884)</sup>

1880) 헌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a78uj/AOB\\_Austrian\\_Constitution\\_Chapter\\_VIII.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a78uj/AOB_Austrian_Constitution_Chapter_VIII.pdf) (검색일: 2016.9.8.)

1881)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974v3/AOB\\_Ombudsman\\_Act.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974v3/AOB_Ombudsman_Act.pdf) (검색일: 2016.9.8.)

1882)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8t04/AOB\\_Standing\\_Rules.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8t04/AOB_Standing_Rules.pdf) (검색일: 2016.9.8.)

1883)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members> (검색일: 2016.9.8.)

1884)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anchor-index-2959> (검색일: 2016.9.8.)

나)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1885)</sup>: 옴부즈맨 위원회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빈(Vienna)에 있는 로탈궁(Palais Rottal)에 위치하고 있음.

다)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1886)</sup>: 위원회의 예산 구조는 현금입출금내역서(cash flow statement)와 운영실적에 대한 손익계산서(operating statement)으로 나뉨. 2014년 현금내역은 10,046,000유로(한화 약 123억 7천만 원), 운영실적내역은 10,039,000유로(한화 약 123억 6천만 원).

<오스트리아-표 14>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 현금 흐름 내역

2014년 현금 내역 (Cash flow statement 2014)	2013년 현금 내역 (Cash flow statement 2013)
10,046,000 유로 (약 125억 2천만 원)	10,209,000 유로 (약 127억 2천3백만 원)

출처: 2014년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 연례보고서

-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 가)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헌법 148g 조항에 근거하여 위원은 국가 회의(National Council)가 중앙 위원회(Main Committee)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선정함. 가장 많은 의석수(mandates)를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정당에서 각각 한명씩 위원 후보를 추천함. 국가회의에서 확정된 위원은 최종적으로 대통령(Federal President)의 승인을 받아 임명됨.<sup>1887)</sup>
- 나)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알 수 없음
- 다)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888)</sup>: 위원장은 위원회의 내부 행정을 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음.<sup>1889)</sup> 구체적으로 행정 모니터링, 접수된 진정에 대한 조사, 인권의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사법 기능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함.<sup>1890)</sup> 행정실책(maladministration)이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는

1885)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history> (검색일: 2016.9.8.)

1886)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 (검색일: 2016.9.10.)

1887)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a78uj/b-vg-fassung-vom-26-08-2016-english.pdf> (검색일: 2016.9.9.)

1888) 위원의 지위 및 면책특권은 관련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1889)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anchor-index-2959> (검색일: 2016.9.8.)

직권(ex-officio)을 행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법성(legality)을 검토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음.<sup>1891)</sup>

라)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재선될 수 있음.<sup>1892)</sup>

마)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회 위원의 의무 수행과 활동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들은 소환(recall)되거나 해임(removed)당할 수 없음.<sup>1893)</sup>

#### 5) 주요권한 및 활동<sup>1894)</sup>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는 1977년부터 연방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음. 2012년 7월부터는 헌법으로부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음.

#### 가) 국내 인권문제 조사

(1)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을 경우 조사를 진행함. 진정은 오스트리아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이 소진 된 후에 진정할 수 있음.<sup>1895)</sup> 2014년에는 총 19,64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45일 이내로 접수자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함.

(2) 위원회는 모든 행정 활동을 조사할 권리를 가짐. 2014년에는 총 6,37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음.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 예방 메커니즘(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적 책임을 가짐. 이를 위해 NPM은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의 발생 소지가

1890)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anchor-index-1679> (검색일: 2016.9.9.)

1891)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 (검색일: 2016.9.8.)

1892)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anchor-index-2959> (검색일: 2016.9.8.)

1893)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index-lead> (검색일: 2016.9.8.)

1894)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 (검색일: 2016.9.8.)

1895) <http://volksanwaltschaft.gv.at/en/problems-with-authorities> (검색일: 2016.9.9.)

있는 기관 및 시설들에 대한 직접 방문, 모니터링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

나)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함.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의 개최, 보도자료의 배포,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감. 또한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의 공유, 대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한 논평 등을 제공함으로써 언론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며 위원회의 대중 노출을 증가시킴.
- (2) 시민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인권 교육의 확산을 위해 2014년에 옴부즈맨 위원회 방문자 센터(VA.TRIUM)가 개관했음. 방문자 센터에서는 인권의 발전 및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뿐만 아니라 보호활동을 제공하는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교육 및 여성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Women's Affairs)와의 협력 하에 많은 학생들이 본부를 방문하고 위원 및 직원들과 만나 시민적 권리, 민주주의의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청년과 그들의 권리(Young People and their rights)”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했음.

다)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입법 자문활동

- (1) 지난 40여 년 동안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는 정부 행정이 오스트리아 연방 헌법(Austrian Federal Constitution)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관리해왔음.
- (2)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기존의 법 혹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검토함. 필요에 따라 법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함.<sup>1896)</sup>
- (3)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가 인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국가

---

1896)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 (검색일: 2016.9.9.)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옴부즈맨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함. 인권 국가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수의 NGO, 오스트리아 내 인권기구,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라) 국제협력 강화

- (1) 위원회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옴부즈맨 국제기구(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는 이러한 국제 협력의 결과물으로써 2009년부터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가 옴부즈맨 국제기구의 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는 국제 옴부즈맨 기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옴부즈맨 기구들과 함께 회의의 개최, 연구의 진행, 정책 보고서(policy paper)의 발간 등의 활동을 함.
- (2) 위원회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위원회는 유럽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활동의 질을 개선하고 활동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함. 또한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 위원회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유엔(United Nations, UN),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세계인권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 of NHRIs),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옴부즈맨 연합(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반부패 아카데미(Anti-Corruption Academy)등과 협력을 강화함.

6) 특이사항<sup>1897)</sup>

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Laender)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상담의 날(Consultation days)을 지정함. 이날 모든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옴부즈맨(ombudsperson)과 상의할 수 있음. 많은 시민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음. 2014년 기준 총 232번의 상담의 날 프로그램이 진행

---

1897) [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http://volksanwaltschaft.gv.at/downloads/7ate5/VA_Jahresbericht_2014_-_internationale_Version_%28EN%29_-_FINAL.pdf) (검색일: 2016.9.8.)

되었으며 1,600명의 시민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음.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0년 B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11년 5월 심사에도 B등급 유지<sup>1898)</sup>

**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가 정보 <sup>1899)</sup>	
면적	32.38만km <sup>2</sup>
인구	518만 명('15.8월)
수도	오슬로(Oslo)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민족	노르웨이인
주요언어	노르웨이어
주요종교	루터 복음교(74%)
GDP	GDP : 5,231억 불('15)
	1인당 GDP : 80,749 불('15)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sup>1900)</sup>

가) 정식명칭: 노르웨이 인권센터

(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 NCHR)

나) 설립연도: 1987년<sup>1901)</sup>

다) 설립배경: 1987년 노르웨이 인권 기구(Norwegian Institute of Human Rights)가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노르웨이 연구 위원회(Norwegian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 센터였음. 1995년 오슬로 대학교 법학부 산하에

1898)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1899)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1.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1.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9.9.)

1900)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States/Norway.pdf> (검색일: 2016.9.13.)

1901) 1987년에 노르웨이 인권기구(Norwegian Institute of Human Rights) 설립, 2001년에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로 바뀌었으며 2003년부터 노르웨이 인권센터(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로 명칭을 변경함.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States/Norway.pdf> (검색일; 2016.10.9.)

소속됨. 2001년 9월 21일 왕실칙령(Royal Decree) 에 근거하여 국가인권 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가 됨. 2003년부터 정식 명칭이 노르웨이 인권센터(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로 변경 되었음.<sup>1902)</sup> 2011년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연구, 평가, 교육(training), 자문 (advice), 정보, 기록(documentation)을 통해 국제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sup>1903)</sup>

2)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1904)</sup>

가)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2005년 2월 14일에 개정되어 발효된 노르웨이 인권 센터 규정(Statutes of The 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에 근거하여 운영됨. ‘노르웨이 인권기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설립 및 권한(the foundation of and mandate for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the Norwegian Institute of human rights)가 정식 명칭 인 2001년 왕실칙령(Royal Decree)에서 노르웨이 인권센터(당시에는 노르웨이 인권기구)를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였음.<sup>1905)</sup> 노르웨이 인권센터의 활동은 현존하는 인권 보호 체계 및 기구들에 근거하고 있음. 노르웨이 인권 센터는 오슬로 대학교 법학대학 산하에 있는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multidisciplinary) 기구임.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노르웨이의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National Institution of Human Rights)로서 노르웨이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관련 연구소, 비정부기구, 국내·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협력함.

나)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왕령에 근거한 국가기구이자 인권센터

---

1902) <http://www.jus.uio.no/smr/om/organisasjon/styret/referater/2010/04/orientering/nitor.pdf> (검색일: 2016.9.13.)

1903)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statutes.html#toc1> (검색일: 2016.9.13.)

1904)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statutes.html> (검색일: 2016.9.11.)

1905)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States/Norway.pdf> (검색일: 2016.9.13.)

3)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sup>1906)</sup>

- 가)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위원회(Board), 위원장(Chair of the Board)과 부위원장(Deputy Chair of the Board), 센터장(Director),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포함한 특별 위원회로 구성됨. 법학과 소속의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음. 부위원장은 오슬로 대학교에서 교수직/연구직(academic posts)을 맡고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됨. 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별도의 부위원(deputy)을 두어야함.<sup>1907)</sup>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자도 특별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음. 센터는 센터장 바로 아래에 부센터장 및 연구팀 팀장(Head of Research and Deputy Director), 행정팀 팀장(Head of Administration), 교육팀 팀장(Head of Education), 국제 프로그램팀 팀장(Head of International Programmes)이 있음.<sup>1908)</sup> 현재 센터에는 약 70여명의 직원이 재직 중임.<sup>1909)</sup>
- 나) 사무소: 센터는 수도 오슬로에 소재한 오슬로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음.<sup>1910)</sup>
- 다)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센터는 오슬로 대학(University of Oslo)의 지원금과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됨. 한해 예산은 약 1억 노르웨이 크로네

---

1906)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statutes.html> (검색일: 2016.9.11.)

1907) 노르웨이 인권 센터 규정(Statutes of The 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구성 원문 a) Three representatives of academic staff in permanent tenure at the University of Oslo (one from the Faculty of Law; one from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and one from the Faculty of Arts; but in such a way that one member from the other faculties may be nominated given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and the Faculty of Arts). Representatives must possess expertise on human rights either through their scientific work or other work, or have demonstrated concern for human rights issues in other respects. b) One representative of academic staff in permanent tenure at the Centre. c) One representative of academic staff at the Centre in fixed-term appointments. d) One representative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at the Centre. e) Two representatives of the student body. f) Two representatives from civil society outside the University of Oslo.

1908)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 (검색일: 2016.9.12.)

1909)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1910)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contact/> (검색일: 2016.10.9.)

(NOK, 한화로 약 135억 원).<sup>1911)</sup>

-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1912)</sup>
- 가)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위원회 위원 중 오슬로 대학교 정교수(academic staff in permanent tenure)는 동료 교수들이, 센터 소속 직원은 센터의 선거 위원회(Centre's electoral assembly)가, 시민사회 대표는 센터의 국가 인권 기구 자문 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dvisory Committee)가, 학생 대표는 학생 의회(Student Parliament)가 지명(nominated)함. 지명은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해의 11월에 이루어짐.
- 나)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알 수 없음.
- 다)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1913)</sup>: 위원회(Board)는 노르웨이 인권 기구의 최고 기구임. 위원회는 센터장(Director)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며 특정 분야나 이슈에 대한 특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위원회는 정해진 규칙과 지침 내의 연구, 학문적 발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짐. 위원회는 교수직과 법학과 연구직(fellowships in law)을 제외한 센터의 구성원 채용(appointment)에 관해 추천을 함.
- 라)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 중 오슬로 대학교 혹은 센터 소속의 교수(academic staff), 센터의 기술 및 행정 직원(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오슬로 대학교 소속이 아닌 시민사회 대표는 임기가 3년이며 센터 소속의 계약직 교수와 학생 대표는 임기가 1년임. 모든 위원이 재임할 수 있음.
- 마)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명시적인 조항 없음.

#### 5) 주요권한 및 활동

##### 가) 인권분야의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sup>1914)</sup>

- (1) 노르웨이 인권 센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권분야의 연구기관이며

1911)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1912)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statutes.html> (검색일: 2016.9.11.)

1913) 위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언급은 없음.

1914)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 (검색일: 2016.9.12.)

법, 사회과학, 인류학, 지리학, 철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

- (2) 연구 분야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뉨: 인권과 헌법(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ism), 인권과 개발, 인권과 다양성, 인권과 분쟁(human rights and conflicts).
- (3) 노르웨이 인권 센터의 연구 결과물은 다양한 형태로 출판됨.<sup>1915)</sup>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노르딕 인권 저널(Nordic Journal of Human Rights)의 편집을 맡고 있음.

#### 나) 인권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인권의 이론과 실제(The Theory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라는 2년 과정의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함. 또한 오슬로 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들에게 인권과 국제 인권법을 가르치는데 관여하고 있음.<sup>1916)</sup>
- (2) 오슬로 대학교 함께 노르웨이 인권 센터는 국제인권 여름학교(International Human Rights Summer School)를 운영함. 여름학교에서는 인권 입문 1개월 과정이 개설됨.<sup>1917)</sup>
- (3) 노르웨이 인권센터의 국제 프로그램은 노르웨이 외교부(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sup>1918)</sup> 국제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학문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자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여섯 개의 우선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법치주의(rule of law), 평등과 비차별(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of expression),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인권제도(human rights mechanisms), 인권 교육.<sup>1919)</sup> 구체적으로 국가별,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함. 인권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

1915)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1916)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 (검색일: 2016.9.12.)

1917)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1918)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 (검색일: 2016.9.12.)

1919)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주제별 프로그램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한 오슬로 연합(The Oslo Coalition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이 운영 중임.<sup>1920)</sup>

- (4)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이전에 중국의 자치권 프로그램(The China Autonomy Programme), 국제형사재판소 법적 도구 프로그램(The ICC Legal Tools Program),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권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음.<sup>1921)</sup>
- (5) 인권학교(Academy of Human Rights)를 운영하여 인권 교육의 확산 및 인권 인식 증진에 기여함. 인권학교는 활동가(practitioners), 정책 입안자, 학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인권 교육과정을 제공함. 매년 4개의 정규과정이 진행되며 인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을 다룸. 현재 국제인권에 대한 입문 과정이 있으며 요청에 따라 기업과 인권, 인권과 교육,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심화 과정을 진행함.<sup>1922)</sup>
- (6) 인권 도서관을 운영 중임. 노르웨이 인권 센터의 인권도서관은 인권관련 최신 및 최다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권 분야에서 국내 최고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도서관은 국제법, 국제인권법, 민족주의(nationalism), 소수자 문제, 이슬람, 발전, 민주화 등을 다루는 도서들을 보유하고 있음. 도서관은 연구원, 학생을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음.<sup>1923)</sup>
- (7)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함. 연중에 세미나를 포함한 공개 강의를 기획하며 변호사를 위한 인권 포럼(Human Rights Forum for Lawyers), 법철학·정치철학의 토론에 관한 포럼(Forum for debate on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sup>1924)</sup>
- (8) 정규 행사로 매년 센터 설립자 중 한 분이자 저명한 인권변호사였던 토

1920)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programmes/> (검색일: 2016.9.12.)

1921)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programmes/archive/> (검색일: 2016.9.12.)

1922)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programmes/hracademy/> (검색일: 2016.9.12.)

1923) <http://www.jus.uio.no/smr/english/services/library/> (검색일: 2016.9.12.)

1924)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켈 옉살(Torkel Opsahl)을 기억하기 위한 공개 강의를 진행함. 또한 아동인권의 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며 ‘두 여인과 함께 차 한 잔(Tea with two ladies)’이라는 제목의 학술 토크쇼를 개최함.<sup>1925)</sup>

다) 대외 교류 및 협력<sup>1926)</sup>

- (1)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국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에 위치한 많은 대학교들과 협력함. 특히 북유럽 자매 기구인 스웨덴의 라울 왈렌버그 기구(Raul Wallenberg Institute)와 덴마크의 인권 기구(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2)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자원은행(Norwegian Resource Ban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NORDEM)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NORDEM은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유럽연합의 지휘 하에 (under the auspices) 현장 조사(field operation)을 진행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활동을 수행함.

6) 특이사항

인권 침해 관련 진정 및 조사 기능이 없으며 연구와 교육 위주의 인권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임.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3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4년, 2005년 5월 심사 때까지 A등급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10월 심사에서 B등급으로 하락하였고 2012년 11월 심사에서도 B등급을 유지함<sup>1927)</sup>

---

1925)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1926) [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http://www.jus.uio.no/smr/english/about/nchr_eng_lowres.pdf) (검색일: 2016.9.12.)

1927)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24)

## 마. 스웨덴

스웨덴 국가 정보 1928)	
면적	450,294km <sup>2</sup>
인구	949만 명
수도	스톡홀름(Stockholm)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민족	스웨덴인(90%)
주요언어	스웨덴어
주요종교	루터교 소속인 스웨덴 교회 신자(63.2%) <sup>1929)</sup>
GDP	GDP : 5,697억 불('14)
	1인당 GDP : 45,895 불('14)

###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가) 정식명칭: 평등옴부즈맨

(Equality Ombudsman, Diskrimineringsombudsmannen, DO)

#### 나) 설립연도<sup>1930)</sup>: 2009년 1월

다) 설립배경<sup>1931)</sup>: 스웨덴의 평등옴부즈맨이 설립되기 이전에 4개의 옴부즈맨이 분리되어 존재하였음: 평등한 기회 옴부즈맨(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JämO), 인종차별금지 옴부즈맨(Ombudsma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DO), 장애 옴부즈맨(Disability Ombudsman, HO),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반대하는 옴부즈맨(Ombudsman agains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HomO). 2009년, 기존에 존재하던 4개의 반차별 옴부즈맨(anti-ombudsmen)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독립적인 정부 기구(government agency)인 평등옴부즈맨이 되었음.<sup>1932)</sup> 하나의 기관으로 옴부즈맨이 통합됨에 따라 모든 이유로 인한 차별, 그리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차별을 모두 한 기관이 담당하게 되었음. 2009년에 보다

1928)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83.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83.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9.13.)

1929)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C%9B%A8%EB%8D%B4#.EC.A2.85.EA.B5.90> (검색일: 2016.9.13.)

1930)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E2%80%93%20Sweden.pdf> (검색일: 2016.9.14.)

1931) [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 (검색일: 2016.9.16.)

1932)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E2%80%93%20Sweden.pdf> (검색일: 2016.9.14.)

포괄적인 차별법(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됨에 따라 평등옴부즈맨은 국내 차별금지법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맡음.

- 2)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가)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차별법(Discrimination Act 2008:567)은 평등 옴부즈맨의 권한을 정하고 있음. 평등옴부즈맨에 관한 법(Act Concerning the Equality Ombudsman, 2008:568)은 평등옴부즈맨의 구체적인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추가로 정하고 있음.<sup>1933)</sup>
  - 나)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옴부즈맨 설립 근거법과 활동법에 근거한 국가기구(national equality body)<sup>1934)</sup>

### 3)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가)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평등옴부즈맨은 사무국장(Director-General)이 조직을 총 관리 및 감독함.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차별 문제와 평등옴부즈맨의 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며 이들은 사무국장이 임명함.<sup>1935)</sup> 평등옴부즈맨 사무국에는 인사팀, 분석팀, 개발팀, 프로세스 팀, 행정팀, 법률팀 등이 있음.<sup>1936)</sup> 2011년 기준근무하는 직원 수는 약 90명임.<sup>1937)</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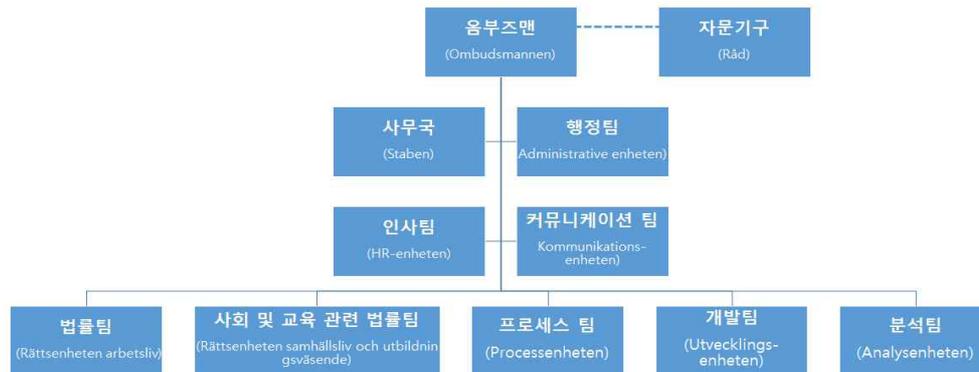
1933) Act concerning the Equality Ombudsman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ilo\\_aids/documents/legaldocument/wcms\\_128053.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ilo_aids/documents/legaldocument/wcms_128053.pdf) (검색일: 2016.9.14.)

1934)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E2%80%93%20Sweden.pdf> (검색일: 2016.9.14.)

1935)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E2%80%93%20Sweden.pdf> (검색일: 2016.9.14.)

1936) <http://www.do.se/om-do/organisation/> (검색일: 2016.9.16.)

1937)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 Ombudsman - Sweden.pdf](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20Sweden.pdf) (검색일: 2016.9.16.)



출처: 스웨덴 평등옴부즈맨 공식 홈페이지

[스웨덴-그림 38] 스웨덴 평등옴부즈맨 조직도

나)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스톡홀름에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음.<sup>1938)</sup>

다)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한해 예산은 약 95,000,000 SEK (약 1천1백만 유로, 한화로 약 125억 8천만 원)<sup>1939)</sup>

4)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가)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평등옴부즈맨의 사무국장은 정부가 임명하며 소속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임명함.<sup>1940)</sup>

나)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알 수 없음.

다)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평등옴부즈맨은 재판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또한 접수된 진정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sup>1941)</sup> 차별 및 보복(reprisal)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은 접수된 사건의 조사에 협조해야하며

1938) [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 (검색일: 2016.9.16.)

1939)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_Ombudsman\\_-\\_Sweden.pdf](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_Ombudsman_-_Sweden.pdf) (검색일: 2016.9.16.)

1940)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20E2%80%93%20Sweden.pdf> (검색일: 2016.9.14.)

1941) <http://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Equality%20Ombudsman%20%20E2%80%93%20Sweden.pdf> (검색일: 2016.9.14.)

평등옴부즈맨은 가해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짐. 평등옴부즈맨은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한 자에게 벌금형(financial penalty)을 내릴 수 있음<sup>1942)</sup>. 평등옴부즈맨은 차별법의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sup>1943)</sup> 또한 육아휴직(parental leave)에 관한 법이 국내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육아휴직을 떠난/다녀온 부모들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함.<sup>1944)</sup>

라)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1945)</sup>:

마)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1946)</sup>:

#### 5) 주요권한 및 활동

평등옴부즈맨은 성별,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위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sup>1947)</sup>

#### 가) 국내 인권문제 조사

(1) 차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는 평등옴부즈맨에 관련 사건을 접수할 수 있음. 사건을 접수할 때 개인의 연락처와 함께 차별을 한 개인/기관의 이름과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한 이유, 그리고 차별을 당한 근거(예를 들어 나이, 종교, 장애 등)를 기술해야함.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토대로 평등옴부즈맨은 사건의 대응 방법을 찾아나감.<sup>1948)</sup>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시점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1942) Discrimination Act [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6732121a2cb54ee3b21da9c628b6bdc7/oversattning-diskrimineringslagen\\_eng.pdf](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6732121a2cb54ee3b21da9c628b6bdc7/oversattning-diskrimineringslagen_eng.pdf) (검색일: 2016.9.14.)

1943) Discrimination Act [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6732121a2cb54ee3b21da9c628b6bdc7/oversattning-diskrimineringslagen\\_eng.pdf](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6732121a2cb54ee3b21da9c628b6bdc7/oversattning-diskrimineringslagen_eng.pdf) (검색일: 2016.9.14.)

1944) [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 (검색일: 2016.9.16.)

1945) 평등옴부즈맨의 임기에 대해 관련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음.

1946) 평등옴부즈맨의 면책특권, 지위에 대해 관련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음.

1947)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act-concerning-the-equality-ombudsman/> (검색일: 2016.9.14.)

1948) [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 (검색일: 2016.9.16.)

평등옴부즈맨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sup>1949)</sup>

- (2) 국내 인권 문제를 조사할 때, 평등 옴부즈맨은 중립적 입장을 취함.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와 당사자가 지목한 가해자 양측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함. 만약, 조사 결과 공평하지 않은 대우 혹은 차별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등옴부즈맨은 가장 먼저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함.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평등옴부즈맨은 이 사건을 노동재판소(Labor Court)로 가져갈 수 있음.<sup>1950)</sup>
- (3) 평등옴부즈맨은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접수된 사건은 공공문서로 기록되며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밀자료로 분류하지 않은 자료는 대중 및 언론에 공개됨.<sup>1951)</sup>
- (4) 매년 약 2500여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음. (2011년 2353건, 2010년 2892건, 2009년 2502건)<sup>1952)</sup>

#### 나)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1) 평등옴부즈맨은 “차별”을 사람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함. 특히 개인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의 형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개인이 직접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평등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함.<sup>1953)</sup>
- (2) 평등옴부즈맨은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미나, 회의,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sup>1954)</sup>

---

1949)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working-life/>  
(검색일: 2016.9.16.)

1950) <http://www.accessfacility.org/equality-ombudsman-sweden> (검색일: 2016.9.16.)

1951)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working-life/>  
(검색일: 2016.9.16.)

1952) [http://ec.europa.eu/enlargement/taix/dyn/create\\_speech.jsp?speechID=25484&key=36ab962627138f5dbb52ce21c14e9786](http://ec.europa.eu/enlargement/taix/dyn/create_speech.jsp?speechID=25484&key=36ab962627138f5dbb52ce21c14e9786) (검색일: 2016.9.16.)

1953)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other-areas-of-society/>  
(검색일: 2016.9.16.)

1954) <http://www.do.se/om-do/vad-gor-do/> (검색일: 2016.9.16.)

다) 차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

- (1) 평등옴부즈맨은 국내의 차별 현황에 대해 심층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로는 사미인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s of Sami), 로마인의 권리(Roma Rights), 국내 로마인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Romanies in Sweden), 교육에서 소수민족들이 겪는 차별(Discrimination of national minorities in the education system) 등이 있음<sup>1955)</sup>.

라) 국가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 (1) 차별법(Discrimination Act) 4장 1조에 근거해 평등옴부즈맨은 해당 법률의 감독(supervision) 기구로써 국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함.<sup>1956)</sup>
- (2) 평등옴부즈맨은 회사, 학교 등의 성평등계획(gender equality plan), 평등한 대우계획(equal treatment plans)을 살펴보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반차별 법률의 현장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함.<sup>1957)</sup>
- (3) 평등옴부즈맨은 정부에 법안 개정 및 다른 반차별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제안함.<sup>1958)</sup>

6) 특이사항

평등옴부즈맨은 차별을 경험한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언과 다른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sup>1959)</sup>.

- (1) 평등옴부즈맨은 특히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모든 개인은 고용이 되었을 때, 취업 사무소(employment office)를 방문했을 때,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때 등 모든 상황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음. 또한 직장 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정책이 존재하

---

1955)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reports-in-english/> (검색일: 2016.9.16.)

1956)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discrimination-act/#4> (검색일: 2016.9.16.)

1957) [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5675/file/Sweden_info_about_Equality%20Ombudsman_en.pdf) (검색일: 2016.9.16.)

1958) [http://ec.europa.eu/enlargement/taiaex/dyn/create\\_speech.jsp?speechID=25484&key=36ab962627138f5dbb52ce21c14e9786](http://ec.europa.eu/enlargement/taiaex/dyn/create_speech.jsp?speechID=25484&key=36ab962627138f5dbb52ce21c14e9786) (검색일: 2016.9.16.)

1959)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act-concerning-the-equality-ombudsman/> (검색일: 2016.9.14.)

는 등의 간접적인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도 평등옴부즈맨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음. 평등옴부즈맨은 대중에게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신이 겪는 차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접수가 또 다른 차별 혹은 보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sup>1960)</sup>

- (2)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모든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음. 평등옴부즈맨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 사례를 접수 받음. 차별법은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들과 관련된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을 평등옴부즈맨이 다룰 수 있음. 학생들이 차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평등옴부즈맨은 구체적인 예시와 대응방안을 알리는 역할을 함.<sup>1961)</sup>

#### 7)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11년 5월 B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에 가입하였음.<sup>1962)</sup>

---

1960)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working-life/>  
(검색일: 2016.9.16.)

1961) <http://www.do.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education/>  
(검색일: 2016.9.16.)

1962)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 III

## 주요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주요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심층조사

1. 호주	629
2. 인도	659
3. 말레이시아	692
4. 필리핀	723
5. 덴마크	757
6. 프랑스	784
7. 독일	815
8. 영국	837
9. 폴란드	861
10. 스페인	895
11. 캐나다	926
12. 코스타리카	962
13. 멕시코	999
14. 케냐	1033
15. 남아프리카공화국	1065
16. 나이지리아	1095



## 1. 호주

호주 국가 정보 <sup>1963)</sup>	
면적	7,692,024km <sup>2</sup>
인구	24,129,400 (2016년 기준)
수도	캔버라
정치형태	입헌군주제의 내각책임제
주요언어	영어
주요종교	기독교(61.1%), 무종교(22%), 기타(7%)
주요민족	앵글로색슨(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애보리진) 및 기타(2%)
GDP	12,238억불 (2015 기준)
	1인당 GDP : 5만 961불 (2015 기준)

### 1)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sup>1964)</sup>
- (2) 설립연도 1981년 12월<sup>1965)</sup>
- (3) 설립배경<sup>1966)</sup>
  - 호주 인권위원회는 1981년 인권의 날(12월 10일)에 설치되어 1986년까지 존속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로써, 호주정부가 1977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19881년에 설치되었음.
  - 하지만, 1981년에 설립된 위원회는 임시기구였으며, 좀 더 확장된 인권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1986년 12월 10일(국제 인권의 날)에 호주 연방의회가 호주인권과평등위원회 법(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을 근거

1963)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10/1\\_23052.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10/1_23052.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7.1)

1964) <https://www.humanrights.gov.au/> (검색일 2016.8.1.)

1965)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3.11

1966) <http://www.humanrights.gov.au/about-commission-0> (검색일 2016.7.1.)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3768&page=312&key=publishday+between+817657200+and+964969200&order=1](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3768&page=312&key=publishday+between+817657200+and+964969200&order=1)(검색일 2016.10.2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3.11 등을 참고하여 서술

로 ‘호주인권과평등위원회’를 설립함<sup>1967)</sup>. 이때, 인권, 인종차별, 성차별 분야의 전임위원이 임명되었고, 이후 30년에 걸쳐 위원회의 분야는 개인 정보분야, 간접차별, 장애인 차별, 호주의 원주민 보호, 아동 보호등의 총 7개의 분야로 확장됨.

- 2009년 8월 5일에는 호주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에 의하여 ‘호주인권과평등위원회법’에서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로 기관명이 변경됨<sup>1968)</sup>. 이것은 평등이란 가치가 인권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호주인권위원회가 사람들에게 더 잘 기억되기 위한 조치였음.
- 호주인권위원회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닌 연방정부 소속 독립법정기구<sup>1969)</sup>(independent statutory organization)로써, 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연령, 장애,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등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연방의회에 제반사항을 보고함. 실제로 호주인권위원회는 이런 독립적 지위를 활용하여 정부부처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호주인권사황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왔음.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호주 인권위원회는 1986년 제정된 호주인권위원회 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외의 인종 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 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장애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그리고 연령

---

1967)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참고.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8.1.)

1968) 호주인권위원회 ADR제도의 현황과 사례.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겨울호 (검색일 2016.7.1.)

1969) 호주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및 예산통제를 받는 기구이지만, 그 활동에 있어서는 많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보장되며 상·하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함.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성격은 매우 독립적인 동시에 호주연방의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음.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을 바탕으로 운영함.<sup>1970)</sup> 국제 노동기구 협약 제Ⅲ호에 위반되는‘종교, 형사 기록, 노조활동, 정치적 견해,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한 차별’관련 법에도 근거함<sup>1971)</sup>. 뿐만 아니라 원주민 토지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the Native Title Act, 1993) 공정근로법(the Fair Work Act, 2009) 법률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정 책임이 부여됨.<sup>1972)</sup>

(2) 성격(법적 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인권기구인 호주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연방검찰총장(federal attorney-general)의 업무영역에 속하며 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법률 근거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음<sup>1973)</sup>. 이는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특정 당락 및 노선에 편향되지 않기 위한 목적임<sup>1974)</sup>.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내 위원장 및 위원에 의하여 기관 운영의 방식이 결정.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1975)</sup>

(가) 인원 및 부서조직도

위원장 1명 및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7개의 팀으로 구성된 본부로 이루어지며 본부는 시드니에 위치<sup>1976)</sup>.

197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8.1.)

1971) <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검색일 2016.8.1.)

1972)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2012) Know your Rights -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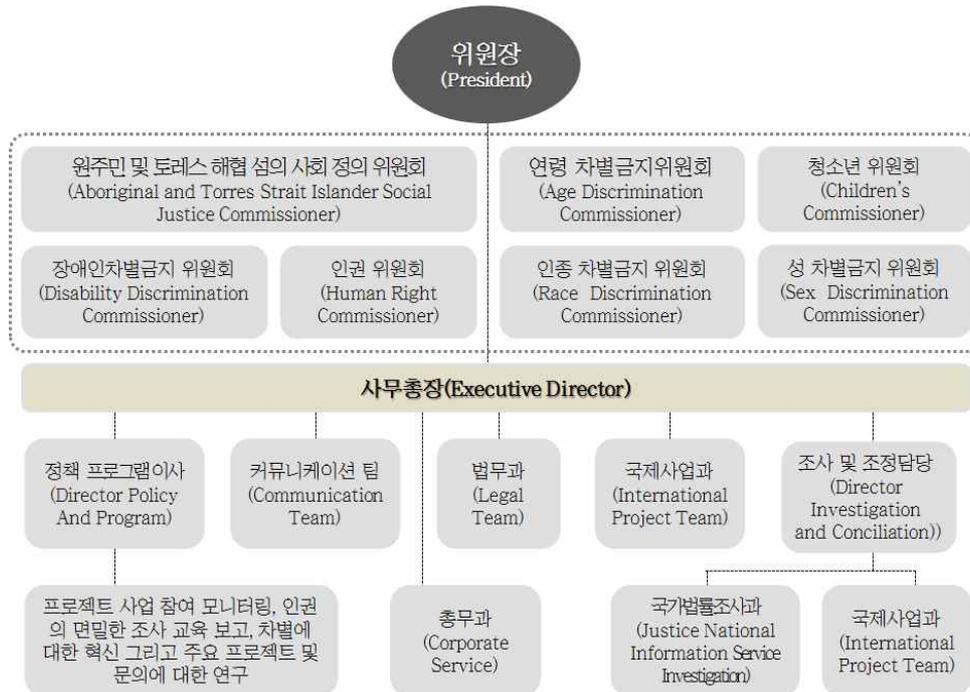
1973) <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검색일 2016.8.1.)

1974)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91>

(검색일 2016.8.22.)

1975)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2014-2015

1976) <http://www.humanrights.gov.au/contact-us-0#address> (검색일 2016.7.1.)



출처: 호주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v.au/contact-us-0#address>

[호주-그림 39] 호주 인권위원회 조직도

① 위원회 구성 현황(이사회)

-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됨(1977).
- 위원장 : Professor Gillian Triggs
- 위원:

-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의 사회 정의 위원회 위원(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ocial Justice Commissioner) : Professor Gillian Triggs  
(대리)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의 사회 정의 위원회 위원(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ocial Justice Commissioner) : Ms Robynne Quiggin

1977) <http://www.humanrights.gov.au/about/president-commissioners>  
(검색일 2016.8.20.)

- ㉠ 연령 차별금지 위원(Age Discrimination Commissioner) : Dr Kay Patterson
- ㉡ 청소년 위원회 위원(Children's Commissioner) : Ms Megan Mitchell
- ㉢ 장애 차별금지 위원회 위원(Disability Discrimination Commissioner) : Mr Alastair McEwin
- ㉣ 인권 위원회 위원(Human Rights Commissioner) : Mr Edward Santow
- ㉤ 인종 차별금지 위원회 위원(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 : Dr Tim Soutphommasane
- ㉥ 성 차별금지 위원회 위원(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 : Kate Jenkins
- ② 위원장 및 위원 임명관련 법령: 법령해석법 (Interpretation Act)<sup>1978)</sup> 33A
  - 법령해석법은 영국연방(commonwealth) 법을 해석하거나, 영국연방법을 기초로 기관을 설립할 때 사용하는 매뉴얼의 성격을 지니는 법으로써,<sup>1979)</sup> 33A항에서는 본 법령해석법에 의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임명자(appointer)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③ 사무국(본부)<sup>1980)</sup>
  - ㉠ 프로젝트 사업 참여 모니터링, 인권의 면밀한 조사 교육 보고, 차별에 대한 혁신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 및 문의에 대한 연구(Programs Business Engagement Monitoring and Reporting Human Rights Scrutiny Education and Innovation Discrimination and Research Major Projects and Inquiries)
  - ㉡ 커뮤니케이션팀(Communications Team)
  - ㉢ 총무과(Corporate Services)
  - ㉣ 법무과(Legal Team)
  - ㉤ 국제사업과(International Projects Team)

1978)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aia1901230/](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aia1901230/) (검색일 2016.8.1.)

1979)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Part 1. 1A

1980)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Annual Report 2014·2015. 4p

Ⓜ 국가법률정보조사과(Justic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Investigation)

Ⓨ 조사 및 조정과(Investig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④ 인력현황

2015년도 기준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균 근무 인원은 119.3명으로. 다른 정부기관 비교하면 매우 작고 구속력있는 처분은 할 수 없으나,<sup>1981)</sup> 인권관련 문제제기를 통해 다른 정부기관 견제 가능. 전체 근무자 중 상시근무자는 97명(74%), 계약직 근무자는 33명(2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10.2%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음. 여성근무자는 95명으로 전체의 72.5%에 달하며, 장애인은 10%, 원주민은 2.3%(3명), 비영어권 직원은 27명으로 전체의 20.6%를 구성하고 있음.

Classification	Male	Female	Full Time	Part Time	Total Ongoing	Total Non-Ongoing	Total
Statutory Office Holders	4	4	8			8	8
SES Band 2		1	1		1		1
SES Band 1	1	1	2		2		2
Executive Level 2 (\$111,285-130,787)	7	15	17	5	20	2	22
Executive Level 1 (\$92,560-103,493)	6	21	16	11	23	4	27
APS 6 (\$73,998-84,563)	7	22	20	9	24	5	29
APS 5 (\$66,848-73,617)	4	6	7	3	6	4	10
APS 4 (\$59,933-66,351)	5	16	17	4	17	4	21
APS 3 (\$53,775-59,178)	2	9	9	2	5	6	11
APS 2 (\$48,512-53,382)	0	0	0	0	0	0	0
APS 1 (\$41,717-47,010)	0	0	0	0	0	0	0
	36	95	97	34	98	33	131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27	20.6%					
Aboriginal and/or Torres Strait Islander	3	2.3%					

출처: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Annual Report 2014-2015

[호주-그림 40] 호주 인권위원회 인력구조

1981) 호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1993년의 브랜디 판결에서 호주 대법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한 당시의 인권위원회법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민원 사건에서 불법적 차별행위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갖고있지 않다. 위원회는 다양한 조정을 통해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하나, 민원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이나 호주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의 불법여부는 법정에서 판단된다.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PrivLawPRpr/1995/19.html> (검색일 2016.10.23.)

(2) 지역사무소

별도의 지역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호주에서는 연방 혹은 주 단위로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으며 이들 기구와는 상호 이송 등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음. 특히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반차별 위원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 중임.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 (수입) 2015년도의 호주 인권위원회 예산 규모는 약 26,557천달러 규모(한화로 약 233억원)로 기관 서비스 및 간행물 판매 등의 기관 자체 수입과 정부 수입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외부로부터 기금을 모금하진 않으나 간행물 판매 등의 활동은 하고 있음.
- 자체 수입의 경우 전체 예산의 31.4%로 서비스 및 간행물 판매, 이자 수입, 기타(임대소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이중 서비스 제공 및 간행물 판매가 전체 예산의 26.4% 차지
- 정부수입의 경우 연방검찰총장은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않고 연방의회가 인권위원회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연방재무부(Federal Government's Department of Finance)가 구체적 예산안을 편성함<sup>1982)</sup>. 정부 출연금은 전체 예산의 68% 차지<sup>1983)</sup>

<호주-표 15> 호주 인권위원회 2014, 2015년도 예산(수입) 현황  
(단위: 호주 달러 1,000 / 한화 약 87만원)

항목	2015	2014
간행물 판매	0	1 / 약 87만
서비스	7,116 / 약 62억	5139 / 약 45억
이자 수입	305 / 약 2.7억	0
기타 임대소득	1034 / 약 9억	951 / 약 4.4억
이월금	92 / 약 0.75억	17 / 약 0.15억
정부출연금	18,315 / 약 160억	18,092 / 약 157억
전용금	0	144 / 약 1.3억
총 수입	26,862 / 약 233억	24,344 / 약 218억

출처: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Annual Report 2014·2015

1982) <http://finance.gov.au/> (검색일 2016.8.1.)

1983) 후술하겠지만, 호주인권위원회의 정부의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예산상의 자율성보장이 요구된다.

- (지출) 2015년도 호주 인권위원회의 지출 규모는 25,893천달러 규모(약 225억원)로 직원 급여, 업무활동비, 감가상각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 직원 급여가 15,992천달러(약 139억원)로 전체 지출의 61.7%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이어 업무활동비가 8,909천달러(약 77.5억원) 소요

<호주-표 16> 호주 인권위원회 2015년도 예산(지출) 현황  
(단위: 호주 달러 1,000 / 한화 약 87만원)

항목	2015	2014	2014(추가비용)
직원 급여	15,992 / 약 139억	15,855 / 약 138억	0
업무활동비	8,909 / 약 77.5억	8,228 / 약 71.6억	144 / 약 1.25억
감가상각비	992 / 약 8.6억	980 / 약 8.5억	0
총 비용	25,893 / 약 225억	25,063 / 약 218억	144 약 1.25억

출처: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Annual Report 2014·2015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sup>1984)</sup> 및 근거

- 위원장 및 인권위원은 연방검찰총장의 추천으로 총독(Governor-General)이 임명함.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즉, 외부의 통제 없이 행정부내의 결정에 의해 임명된다는 것을 의미함. 인권위원은 상임 혹은 비상임이며, 직원의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나 민간 전문가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함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sup>1985)</sup>(장관급 등)

1984)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이하 ARHC) 제8A조 The President “(1) The President is to be appointed by the Governor General as a full time member or a part time member. (2) The President is the senior member of the Commission. (3)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mmission. (4) For the purposes of the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the President is the accountabl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및 제8B조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 (1)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is to be appointed by the Governor General as a full time member. (2) A person is not qualified to be appointed as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unless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has appropriate qualifications, knowledge or experience.

1985) ARHC 제8A조\_The President “(1)The President is to be appointed by the

- 위원장의 선정을 장관들의 추천 하에 총독이 임명하는 방식인 것을 고려한다면,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지위는 일반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의 장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소신 것 표현<sup>1986)</sup>1987)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장관급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 위원회는 인종·성별·장애·연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적 차별,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Ⅲ호에 규정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등으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ADR 형태 중 하나인 조정(Conciliation)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움.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1988)</sup>

- 호주인권위원회법 제 21, 22, 23, 24, 26, 42, 48, 그리고 49조에 근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근직이며 그 외 다른 구성원은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으로 임용가능. 상근위원의 임기는 최고 7년<sup>1989)</sup>이며 위원은 동일한 자격 또는 다른 자격으로 재임명(re-appointment)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1990)</sup> 등

- 위원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상원과 하원의 제청에 따라 총독(Governor-General)이 해임 가능함. 이는 매우 강력한 신분보장을 의미하며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가능.

---

Governor General as a full time member or a part time member. (2) The President is the senior member of the Commission.(3)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mmission.(4) For the purposes of the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the President is the accountabl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1986) [글로벌24 브리핑] 호주 인권위원장 연일 정부 비판 입력 2015.06.08 (18: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91282> (검색일 2016.10.24.)

1987) 호주 정부 vs 인권위 또 한 판 붙어  
[http://hojuda.com/bbs/board.php?bo\\_table=Gcnews&wr\\_id=762](http://hojuda.com/bbs/board.php?bo_table=Gcnews&wr_id=762) (검색일 2016.10.24)

198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10.24)

1989) ARHC 제37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10.24)

1990) ARHC 제41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10.24)

- 위원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상원과 하원의 제청에 따라 총독 (Governor-General)이 해임 가능함.

마) 주요권한 및 기능<sup>1991)</sup>

- 호주인권위원회는 연방검찰총장의 업무영역에 속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법정기구임.
- 시행령제정권 : 연방검찰총장이 인권위원회 관련법 및 시행령을 성안하여 연방의 회의 공포로 발효함.
- 호주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제출권을 지니고 있음.
- 호주인권위원회는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기구와의 협조가 가능하지만 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기구가 협조할 의무조항은 없음.
- 호주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구금시설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고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찰 실시 전 구금시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 한편 감찰은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 직원이 실시함.
- 민원이 접수된 후, 조사시효는 1년 이내로 제한하며, 인종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연방인종차별금지법<sup>1992)</sup>이 발효된 1975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있음.
- 개인의 신고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조사 및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
- 개별불만사항과 관련된 공청회에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이나 자료작성 또는 위원회 출두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
- 자문위원회 설치
- 정부가 인권규칙을 준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의 매뉴얼화
- 인권문제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 개입
- (성별 및 장애인 차별 행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사면조치

1991) ARHC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10.24)

1992)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4C00014> (검색일 2016.8.1.)

- 검찰총장의 요청이나 자신의 요청으로 중요문제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국가의 문의 실시
- 위원회는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장애, 인종과 연령에 따른 집단 괴롭힘의 불만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AHRC는 연방과 기관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적 성향, 범죄 기록, 노조 활동, 정치적 의견,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에 대한 신고를 조사 할 수 있음.

바) 해당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sup>1993)</sup>

(1) 호주인권위원회의 역할

- 인권위법에 따라, 차별금지법 및 국제인권 규약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음. 설립초기 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보상 혹은 사과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1995년 호주 대법원이 위원회는 행정기관일뿐 사법기관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원회의 명령은 법적 강제성은 사라지고, 대부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
- 민원인은 위원회가 민원 건을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호주연방법원이나 호주연방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호주인권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출석 불응, 자료제출거부에 대해서는 금전적제재(fine)가 부과될 수 있음. 호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벌금과 과태료의 구분이 없음.
-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가 차별행위와 관련되지 않는 한 조사하지 않음.
- 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차별적 관행의 변경과 제도 개혁에 있으며, 조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검찰기능과의 중복 문제는 없음.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게 되었음<sup>1994)</sup>

(2) 호주인권위원회의 기능<sup>1995)</sup>

1993) 호주인권위원회 ADR제도의 현황과 사례.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겨울호 (검색일 2016.7.1.)

1994) 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의 취약성에 집중하여 특별 보호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성인과 같은 인간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함.

- 위원회는 차별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며,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문제들을 청문회로 보낼 수 있음
- 위원회는 모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인 토론의 장을 확장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함.
-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안에 권고사항을 제출하며, 권고사항의 이행을 감시 한다. 그것은 인권 침해 또는 기회의 평등과 고용자의 인권을 해치는 차별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법과 개정법 초안을 검토함.
- 또한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 문서를 검토하여 다른 국제 협약 또는 기존 호주 법률과의 일관성을 살펴서 연방 정부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인권과 차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의 대부분은 해당 법에 반영됨.

<호주인권위원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차별에 대한 민원 또는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조정</li> <li>·지역 사회 단체, 기업, 미디어, 교사 및 청소년을 위한 연구, 출판, 자원, 교육 프로그램의 광범위하고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개발</li> <li>·중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미디어 작업</li> <li>·지역사회, 정부, 기업 부문의 조직 및 기관장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지원을 위해 협력</li> <li>·인권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질의 및 협의</li> <li>·연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권 보호를 촉진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조언 제공</li> <li>·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에서의 사회 정의, 원주민 토지 소유 권리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li> <li>·기존 법률 및 정책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회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건 작성</li> <li>·인권이 포함된 사례에 대해 법률 시스템 상에서 법정 조언자로 역할</li> <li>·타 국가의 인권 기구(특히 아시아 태평양 포럼을 통한 인권기구)와의 협력</li> </ul>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sup>1996)</sup>

1995) 호주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v.au> (검색일. 2016.8.1) 및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3.11 등을 참고하여 서술

1996)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10.24.), 2011년 5월까지지만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6년 10월, 2011년 5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

## 2)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1)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에서의 사회 정의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ocial Justice)<sup>1997)</sup>

- 사회정의란 삶의 일상적인 문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에 대해 접근 가능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만족스러운 고용의 기회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호주 원주민의 특유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
- 즉 호주 정부 이전의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지역 사람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에서의 사회 정의, 원주민 토지 소유 권리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
  - 원주민 법률, 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 건강, 가정폭력, 아동권리 그리고 ‘도난세대’를 포함한 원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조언 제공
  - 원주민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

#### (2) 연령에 대한 차별 (Age Discrimination)<sup>1998)</sup>

- 구직, 임대, 연구 등록 등 연령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직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는 젊은 사람 및 나이든 사람에 대한 호주 내 고정관념으로 인한 문제
- 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은 고용, 교육, 임대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공공생활 내 많은 영역에서 연령에 기초한 차

1997)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boriginal-and-torres-strait-islander-social-justice/about-aboriginal-and-torres-strait> (검색일 2016.10.24)

1998)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ge-discrimination/about-age-discrimination> (검색일 2016.10.24)

별을 보호함

- 위원회는 호주 내 개인과 조직이 연령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직간접적으로 연령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위원회에 이의 제기
  - 연령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고정관념 등을 연구하고, 정책 자문 및 교육 활동을 수행

(3) 망명 신청자 및 난민 (Asylum Seekers and Refugees)<sup>1999)</sup>

- 지난 10여년 간 위원회는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
- 이민 구금 및 난민에 대한 이의사항을 포함하여 연방 및 기관에 대한 인권 위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가지고 있음.
  - 이민 수용소에서의 인권 위반에 대한 이의 사항을 조사
  - 이민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해당 시설 방문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
  - 이민 수용소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개발
  - 이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 관한 국가적 질의 실시
  - 망명 신청자, 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안서 제출
  - 이민 수용소에 구금된 망명자, 난민에 대한 연방 법률과 정책에 대해 언론을 활용하여 논평 실시
  -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설, 출판물, 교육자료 제작

(4) 아동 권리 (Children's Rights)<sup>2000)</sup>

- 아동 또한 성인과 같이 인권이 있으며, 특히 아동의 경우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해 특별 보호를 권리가 있음
- 아동에 대한 국제 인권 조약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비준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호주는 1990년 12월에 비준하여 모든 어린이가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게 되었음<sup>2001)</sup>

1999)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sylum-seekers-and-refugees>  
(검색일 2016.10.24)

2000)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childrens-rights/about-childrens-rights>  
(검색일 2016.10.24)

2001) 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의 취약성에 집중하여 특별 보호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성인과 같은 인간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함.

- 아동권리협약은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권 전체의 영역을 통합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확보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원칙 중 일부는 아동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존중, 아이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권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권리협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호주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나, 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후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적절한 인권 보호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어린이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함
  - 18세 이전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함
  -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참여를 독려
  -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의 리더십과 조정 제공
  - 호주에서 아동과 젊은 사람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
  - 아동 인권에 대한 조사
  -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탐색

(5) 장애인 권리 (Disability Rights)<sup>2002)</sup>

-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은 일상적 활동 참여, 연구, 스포츠 등의 작업을 할 때 큰 장벽에 직면
- 장애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은 호주 내 공공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권리, 기회, 접근을 촉진함
- 위원회는 또한 2008년도에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을 촉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관련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

---

2002)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disability-rights/about-disability-rights> (검색일 2016.10.24)

- 업계 전반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 기준과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 공개 질의 수행
  - 장애 조치 계획 및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 지원
- (6) 가정폭력 (Family and Domestic Violence)<sup>2003)</sup>
-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낮아지며 자신의 기회를 제한시키고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함. 때로 살인 또는 자살 등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호주 내 가정폭력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압도적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
- (7) 인종 차별 (Racial Discrimination)<sup>2004)</sup>
- 호주는 270개 이상의 혈통이 있어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은 국가적 장점 중 하나이지만 출신 지역에 따라 부당한 대우와 인종차별을 경험함. 인종차별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로부터 장벽을 만들 수 있음.
  - 인종 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은 공공 생활 내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에 근거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호주 전역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국제인권공약과 함께 다양한 배경의 사람 간의 평등을 촉진함
    - 직간접적으로 인종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 호주 내 개인과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함
    - 인종 차별 금지 전략을 구현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기업, 지역 사회, 교육 기관, 언론과 협력
    - 국제 학생 및 호주 지역 내 아프리카 사람 등 다른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조언
- (8) 권리와 자유 (Rights and Freedoms)<sup>2005)</sup>

2003)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family-and-domestic-violence/about-family-and-domestic-violence> (검색일 2016.10.24)

2004)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race-discrimination/about-racial-discrimination> (검색일 2016.10.24)

2005)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rights-and-freedoms/about-rights-and-freedoms> (검색일 2016.10.24)

- 호주 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호주 연방차별법(Australia's Federal discrimination laws)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 보장할 것을 촉진하고 보호할 중요한 기능 지님
- 위원회 내 권리와 자유 정책 팀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의에 대한 민원 처리, 인권 교육의 기여를 하며 주 및 지역 내 인권 보호 기관과 협력
  -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 감시를 촉진(2006)
  - 인권 관련 법률 해석 및 법정 절차 개입 시행 등의 법원 감시
  -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옹호 활동 수행(2007)
  - 국가 인권 행동 계획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 등 인권 개선 정책과 실천 등 인권 공약의 이행을 촉진
  - 인권 지표의 개발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 수준의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의 적용을 추진
  - 국제 인권의 이의 절차, 인권 조약에 대한 보고 등 국제 인권 감시기구로서 활동 실시

(9) 성차별 (Sex Discrimination)<sup>2008)</sup>

- 호주는 최근 성평등 관련 좋은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많은 여성이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함. 여성은 임금격차와 리더십 역할에 대한 장벽에 직면함. 가족을 돌보는 책임으로 인해 많은 고용기회가 감소하며, 성희롱과 성별 기반의 폭력은 공공 장소 및 직장 내에서 여성의 기본권을 위협함.

---

2006) 인권에 대한 의회 공동위원회와 협력 수행, 다른 위원회에 초안 법률 및 기타 문의 사항 제출 (출처: <http://www.humanrights.gov.au/our-work/rights-and-freedoms/about-rights-and-freedoms>, 검색일자 : 2016.8.22.)

2007) 차별에 보다 포괄적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며 이외 일반 법률에 대한 인권 호환성에 대한 법령 검사하는 기능 수행(출처: <http://www.humanrights.gov.au/our-work/rights-and-freedoms/about-rights-and-freedoms>, 검색일자 : 2016.8.22.)

2008)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sex-discrimination/about-sex-discrimination> (검색일 2016.10.24)

- 성 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은 성별, 성적 지향, 정체성, 결혼 유무, 임신과 모유 수유에 기초한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및 가족에 대한 책임, 불법 성희롱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국제인권 의무와 함께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을 촉진함
    - 직간접적으로 성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시도
    - 주요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정책 조언 제공
- (10)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차별 (Sexual Orientation, Sex & Gender Identity)<sup>2009)</sup>
- 성적 취향,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평등과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호주 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적 소수자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 차별, 괴롭힘, 적대감 경험이 가능함.
  - 2013년도 8월 1일 개정된 성 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으로 인해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 기준 차별이 금지되어 동성커플은 결혼 여부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음.
  - 위원회는 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수행
    - 위원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가 직면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주요 프로젝트 수행

---

2009)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sexuality-sex-gender-identity/about-sexual-orientation-gender-identity-and-intersex-status> (검색일 2016.10.24)

[호주-표 17] 호주 인권위원회 분야별 정의 및 업무

분야	내용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에서의 사회 정의	- 호주 정부 이전의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지역 사람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연령	- 호주 내 개인과 조직이 연령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
망명 신청자 및 난민	- 난민, 망명 신청자의 인권 보호하기 위하여 이민 구금시설 방문 및 보고서 제작,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수행
아동 권리	- 취약 계층의 어린이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
장애인 권리	-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권리, 기회,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이의 조사, 가이드라인 연구 등 수행
가정폭력	-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 등 수행
인종 차별	- 호주 내 개인과 조직이 인종차별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
권리와 자유	- 위원회 내 권리와 자유 정책 팀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조정
성 차별	- 호주 내 개인과 조직이 성 차별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가 직면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주요 프로젝트 수행

출처: 호주 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v.au>)

#### 나) 관련법률

- 인권위원회는 호주인권위원회 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인종 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 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장애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그리고 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해당 법률의 의거하여 기능이 부여됨
- (1) 호주인권위원회 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sup>2010</sup> : 호주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권한과 기능을 설명함. 국제기구를 참조하여 인권을 정의함

201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711> (검색일 2016.10.24)

-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서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 종교 및 신념 바탕으로의 차별 및 편협함의 철폐 선언
  - 고용 및 업무에 대한 차별에 관한 협약
- (2) 인종 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sup>2011)</sup>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를 제시하며, 인종 차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및 출신 민족 등에 대한 차별 및 혐오와 관련된 인종 차별 민원 조사·조정 기능을 부여함. 해당 법률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인종, 피부색 또는 국가 및 민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촉진함
  -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국가, 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비합법으로 규정
  - 인종 증오에 대한 보호 제공
- (3) 성 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sup>2012)</sup>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및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약 등에 따른 호주의 의무에 영향을 줌. 성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 성별, 성 정체성, 임신, 결혼 및 모유수유, 가족사, 성적 성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 차별 관련 민원 조사·조정을 실시함.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촉진
  -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간의 상태, 배우자, 임신, 직장에서의 모유 수유 등에서의 차별을 제거하며 공공 및 타 지역에서의 교육 실시
  -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에 따른 차별 철폐
  -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철폐, 공공 및 기타 영역에서의 교육 실시
- (4) 장애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sup>2013)</sup> : 장애 차별금지

2011)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rda1975202/](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rda1975202/) (검색일 2016.8.1.)

2012)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sda1984209/](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sda1984209/) (검색일 2016.8.1.)

2013)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dda1992264/](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dda1992264/) (검색일 2016.8.1.)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 질병, 의학적 질환, 직장에서 입은 부상, 과거·현재·미래의 장애 상태 혹은 장애인과의 유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 차별 관련 민원 조사·조정을 실시함. 관련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능한 제거
-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역 사회의 수용을 위하여 촉진
-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법 앞에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보장함

(5) 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sup>2014)</sup>: 연령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차별과 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적 차별 관련 민원을 조사하고 조정.

-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촉진함
- 고용, 교육, 서비스 또는 시설 제공 등 공공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제거함
-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변경함

(6) 기타

-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III호에 위반되는 '종교, 형사기록, 노조활동, 정치적 견해,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한 차별' 관련 민원 역시 조사·조정.
- 호주 연방정부 혹은 이를 대신한 단체들의 행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sup>2015)</sup>,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up>2016)</sup>,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up>2017)</sup>과 같은 특정 국제 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그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조정하도록 되어있음.

---

2014)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ada2004174/](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ada2004174/) (검색일 2016.8.1.)

2015) <https://www.humanrights.gov.au/international-covenant-civil-and-political-rights-human-rights-your-fingertips-human-rights-your> (검색일 2016.8.1.)

2016) <https://www.humanrights.gov.au/convention-rights-child> (검색일 2016.8.1.)

2017) <https://www.humanrights.gov.au/news/speeches/convention-rights-persons-disabilities> (검색일 2016.8.1.)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sup>2018)2019)</sup>

- (1) 호주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인권보호를 최고 가치로 두고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은 위원들의 임기보장, 해임 제한 등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동시에 법정기관으로써 정부의 조직 및 예산상의 통제<sup>2020)</sup>를 받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한 이해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 다만, 중앙은행처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호주인권위원회의 트릭스 위원장은 인권관련 사안을 두고서 애벗총리 및 브랜디스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펼친 사례<sup>2021)</sup>가 있고,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존재.
- (3) 호주인권위원회는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현하는데 있어서 NGO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NG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더불어, NGO의 추천 없이는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과, 인권위가 NGO의 지지를 일반 국민의 지지를 대변하는 척도로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인권위원회와 NGO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4) 또한, 인권위는 정부의 정책전반을 감시, 비판하며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상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결국, 인권위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독립된 법정기구로서 인권수호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할 때에야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부와의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보여짐.

2018)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3768&page=312&key=publishday+between+817657200+and+964969200&order=1](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3768&page=312&key=publishday+between+817657200+and+964969200&order=1) (검색일 2016.10.24.)

2019)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5560&page=293&key=publishday+between+786121200+and+962290800&order=1](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5560&page=293&key=publishday+between+786121200+and+962290800&order=1) (검색일 2016.10.24.)

2020) 실제로 과거 인권위에 부정적인 보수연립정부는 인권위의 예산을 집권기간(3년)동안 42%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였다. 반면, 노동당 정부집권기간(13년)동안은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실제로 현재 재정보고서를 보더라도 예산의 7할 정도를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호주 인권위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런 문제는 입법적으로 인권위의 예산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대안은 어려워 보인다.

2021) 애벗, 인권위원장 몰아내기 '막장 드라마'? (2016.10.23.일 검색)  
<http://www.hojuonline.net/detail.php?seq=12366&c1=&c2=&c3=&findstr=%C0%CE%B1%C7%C0%A7%BF%F8&scale=20&page=1>

### 3)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 가) 피해자 구제<sup>2022)</sup>

호주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구제 방식은 진정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 소송참가 3가지로 분류 가능함.

- (1) 진정에 의한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써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진정을 조사하는 것임. 인권위원회는 국내법이나 해당 국가가 가입한 조약에 규정을 근거로, 진정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진정이 접수되면, 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짐. 진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의 절차는 ① 진정의 제기 ② 조정<sup>2023)</sup> ③ 조사의 실행 ④ 침해에 대한 구제 순임
- (2) 직권조사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식적 진정을 받지 않고 조사를 시작할 권한을 의미함. 이 권한은 개인적으로 진정을 제출하기에 경제, 사

2022) 이성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023) 대체적 분쟁해결(ADR)

#### (i) 대체적 분쟁해결

- 호주인권위원회는 인종·성별·장애·연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적 차별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Ⅲ호에 규정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등으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ADR 형태 중 하나인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해결하고자 함.
- 분쟁해결에 있어 대면 회의, 전화 회의, 온라인 회의 혹은 조정인을 통한 서신·전화·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위원회는 민원인과 피민원인 사이의 분쟁해결을 도움.
- 호주인권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지만, 위원회는 여러 방식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민원 건을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호주인권위원회의 조정인은 불법적 차별 관련 민원을 조정할 시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합법에 해당함. 조정인은 민원 당사자들의 위치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등을 인지하여 그에 알맞은 유연한 조정절차를 도입함.

#### (ii)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설립 초기에 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보상 혹은 사과 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1995년 호주 대법원이‘Brandy v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사건에서 위원회가 행정기관일 뿐 사법기관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위원회의 명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졌다.
- 따라서 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민원 사건에서 불법적 차별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 위원회는 여러 방식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민원 건을 자발적으로 합의,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민원인은 위원회가 민원 건을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이나 호주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행위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하게 된다.

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인권기구가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권고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직권 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절차는 ① 조사 대상 선정 ② 직권조사의 수행 ③ 후속조치 ④ 호주에서의 공공조사 순임.

- (3)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관계법에 관한 사건이나 관할에 속하는 인권문제에 관련 된 사건에 관하여 소송에 관여할 권한을 가질 수 있음. 국가인권기구가 소송에 관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당해 사건의 인권적 의미와 국내적/국제적 기준을 알릴 수 있게 됨. 호주인권위원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인권문제에 관련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아래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이것이 호주 내 차별 관련 분쟁해결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함. 사례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주 태머러(Thamarrurr) 원주민 지역사회내 교육 영역에서의 인종차별·장애차별 관련 민원<sup>2024)</sup>

(가) 사례 개요<sup>2025)</sup>

노던 테리토리 주에 있는 와디여(Wadeye) 지역에는 태머러 원주민 지역사회가있으며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접수함. 원주민 지도자는 교육 영역에서 인종 및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와디여 지역 학교를 이전에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태머러 원주민 지역사회 사람들을 대표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음.

와디여 지역사회의 학교는 가톨릭 교육재단에서 관리하는 선교학교였으며 민원인은 그 학교의 공동 교장이었음. 민원인에 따르면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는 1979년 자체 주정부 출범 시, 선교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

2024) 호주인권위원회 Social Justice Report 2012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boriginal-and-torres-strait-islander-social-justice/publications/social-justice-report-11> (검색일: 2016. 10. 24.), p. 80

2025) 호주인권위원회 ADR제도의 현황과 사례.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73-73쪽 2015년 겨울호

년간 공립학교 지원금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선교학교에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지원금 차이가 해당 선교학교를 과거에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태머러 원주민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인종 차별이며,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피민원인인 주·연방정부는 민원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위원회는 3일간 노던 테리토리 주의 수도인 다윈(Darwin)에서 조정을 진행함.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우선 자문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연방교육부 장관이 와디여 지역사회에 향후 3년에 걸쳐 770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음. 지원금은 첫째, 학교에 네 개의 교실을 새로 건설하고, 둘째, 지역참여를 통해 학교출석률을 정규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셋째, 장애 학생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성인들에게 문해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데 쓰이도록 명시하였음

#### (나) 의미와 시사점

##### ① 사전 토론(Pre-Conciliation Discussion)의 유용성

- 본격적인 조정회의 이전에 조정인은 민원인 및 피민원인과 각각 민원에 관해토론을 진행되었으며, 본 토론에서 조정인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설명해 주고, 조정인의 역할과 한계 또한 주지시켰음.
- 역사적으로 호주 원주민과 정부 사이에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인해 심한 불신의 벽이 남아 있는 것을 조정인은 잘 인지하고 불신의 벽이 자칫 조정과정에 끼칠 수 있는 편견 및 악영향을 감소시키고자 참여자들에게 조정회의의 목적이 옳고 그름 혹은 승패 여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것임을 상기시켰음.
- 또한 조정인은 본 토론을 통해 참여자가 '조정과정에 임하는 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걱정을 들어주고 이러한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였고, 참여자들 모두가 조정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참여자 모두가 조정회의에서 평상복

을 착용하고 법률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이 사전 토론에서 협의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나아가 사전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과 여러 해결방안들을 검토하고, 방안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타협점을 찾아, 당사자들이 조정에서 효율적으로 합의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음

② 새로운 해결방안의 창출

-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드러내고 대화를 나누게 하는 촉진형 조정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시각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고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하였음
- 또한 이를 통해 민원에서 제기된 이슈만이 아닌 참석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해당 지역사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결방안까지 제시 및 논의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와 해당 정부 사이에 존재했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참여자들이 고려하도록 촉진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한정적 판결과는 다른 더욱 가치가 창출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였음.
- 여기에는 법원의 소송보다 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방식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ADR제도의 효율성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이 사례는 소송에서 초래되었을 사회경제적 비용과 더불어 당사자들 간 적대감, 신뢰도와 유대관계의 훼손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나) 교육<sup>2026)</sup>

호주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해 전국의 다른 조직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부 지원을 통해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1)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인권 정보 “rightsED” 교육 자원을 제공.
- (2) 인권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및 산업체와 관계를 맺음.
- (3)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

---

2026)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p. 222.

다) 홍보<sup>2027)</sup>

위원회는 인권이슈에 대하여 호주정부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1) 호주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v.au)는 호주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진정 처리 업무관련 보고서, 연설, 미디어 자료와 정보를 학교 및 지역 사회 그룹에 제공하고 있음. 더불어 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스페이스를 이용함.
- (2) 호주인권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에 관련한 이슈를 소개하기 위하여 CD를 제작하여 배포함.

라) 정책 개선<sup>2028)</sup>

호주국가인권위원회는 현존하는 법안과 제안된 법안을 검토하고, 인권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함.

- (1) 위원회의 의견은 정부기관, 의회 위원회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 전달되고 호주가 국제인권 준수사항에 부합해야함
- (2) 위원회는 인권위반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에는 검찰총장이 연방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권고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음.

마) 사법부 의견 제출<sup>2029)</sup>

호주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사건을 사법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된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법정조언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문제나 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님.

---

2027)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p. 223.

2028)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pp. 219~220.

2029)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pp. 219~220.

바) 주요 인권이슈<sup>2030)</sup>

- (1) 호주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환경에서 그들의 권리를 이해시키고 법적 책임을 잘 충족시키도록 개인들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연령(age)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정책 조언, 교육활동을 포함되어 있음.
- (2) 위원회는 또한 호주가 2008년에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촉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위원회에 고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준과 지침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혁을 촉진하였음.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sup>2031)</sup>

- (1) 호주는 중국과 베트남 정부와 인권 기술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AusAID에 의해 후원되고 호주 정부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2) 중국-호주 인권 기술 협력 프로그램은 법적 분야에서의 개혁, 중국의 행정,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 그리고 민족과 소수 민족 권리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3) 베트남-호주 인권 기술 협력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인권신장을 도움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4) 태평양지역 장애인단체 지원 위원회는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단체 및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통가앤나우루(Tonga and Nauru)에서 3개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AusAID에 의해 투자되고, 태평양 장애 포럼과 협력하여 실시하고자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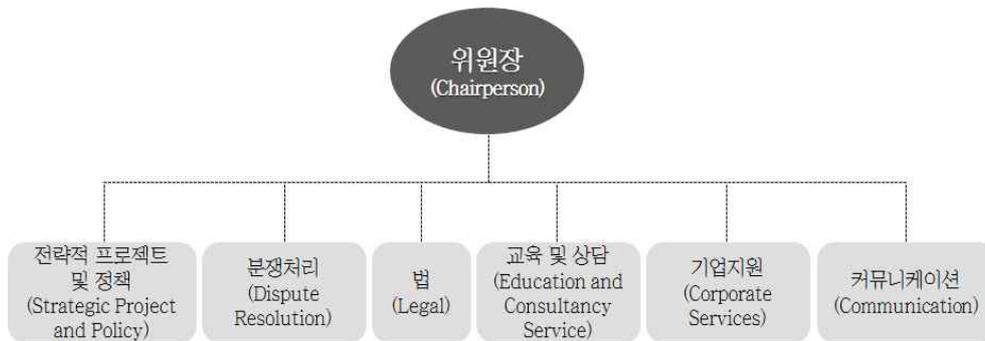
2030)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221쪽

2031)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222쪽

4) 호주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sup>2032)</sup>

가) 빅토리아주 기회균등인권위원회(이하 균등위)

- (1) 설립: 호주 빅토리아주의 ‘빅토리아주 인권과 책임의 헌장<sup>2033)</sup> (Victorian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은 2006년 호주 빅토리아주 법령 제43번으로 채택되어 2007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헌장은 생존권과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등 총 20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장된 인권은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 헌장의 주요 목적은 균등위로 하여금 의회가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인권을 제시하고, 제정된 모든 법적 규정들이 인권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해석되도록 보장하고, 모든 공공 당국에 인권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빅토리아주 내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임.
- (2) 조직 구성: 균등위는 위원장 아래 전략적 프로그램 및 정책, 분쟁처리, 법, 교육 및 상담, 기업지원, 커뮤니케이션 등 6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빅토리아주 기회균등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commission.vic.gov.au/>

[호주-그림 41] 빅토리아주 기회균등위원회 조직도

2032) 빅토리아주 기회균등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commission.vic.gov.au> (검색일: 2016.10.30.)  
<http://www.humanrightscommission.vic.gov.au/about-us/organisational-structure/the-commissioner> (검색일 2016.10.24)

2033) <http://gov.seoul.go.kr/files/2014/06/539999a7396009.99771195.pdf>  
 (검색일 2016.10.24.)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6 인권과 책임의 헌장

(3) 주요업무: 균등위는 1978년 설립된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서 'Equal Opportunity Act 2010', '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등 세 가지 법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균등위는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 그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관을 소개하며,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그 반응을 다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무료 전화문의 서비스
- 무료 분쟁해결 서비스
- 균등 기회, 인종과 종교 비방 및 Charter of Human Right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
- 교육 및 훈련, 자문 서비스
- 전략적 프로젝트 및 정책: 인권 차별에 대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적 조언을 제공
- 분쟁처리: 성차별, 욕설, 비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균등위 조직 및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에 대한 조정 실시
- 법: 인권관련 법 연구 및 정책적 조언을 제공
- 교육 및 상담: 맞춤 워크, 조직진단 등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기업지원: 균등위의 재정, 인적자원, 정보기술, 행정적 기술을 기업에 지원

## 2. 인도

인도 국가 정보 <sup>2034)</sup>	
면적	약 330만km <sup>2</sup>
인구	12억 9,500만 명 (2014년 기준)
수도	뉴델리(New Delhi)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주요언어	영어, 힌두어 외 21개의 공용어
주요종교	힌두교 80.5%, 이슬람교 13.4%,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주요민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GDP	2조 907억불(2015년, IMF)
	1,617불(2015년, IMF 기준)

### 1) 인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NHRC)
- (2) 설립시기: 1993년 10월 12일<sup>2035)</sup>
- (3) 설립배경<sup>2036)</sup>: 인도 정부는 1990년대 초까지 지역 인권단체 및 자유권 운동 단체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해 침묵해왔음. 특히 당시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Kashmir), 펀자브(Punjab)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해 왔음. 또한 인도에는 카스트(Castes) 제도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존재함. 국내 인권운동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던 인도 정부는 1991년과 1992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시아워치(Asia Watch)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인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함<sup>2037)</sup>. 국제인권단체의 고발 외에도 인도에 국가 원조를 제공하던

2034)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3004.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9/1_23004.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8.23.)

203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Brochure(인도 인권위원회 브로셔), p.3

2036) Reenu Pa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A Human Rights Evaluation』, 2003, p.18~21

2037) [https://www.hrw.org/reports/1992/WR92/ASW-07.htm#P540\\_207732](https://www.hrw.org/reports/1992/WR92/ASW-07.htm#P540_207732) (검색일:

나라들이 인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원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인도 정부는 국내 인권문제에 대응해야 했음.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1990년에는 ‘지정 카스트와 지정 민족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sup>2038)</sup>’를, 1992년에는 ‘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를 설립함.

1993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인도 정부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고려했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었음. 1993년 5월, 인도 정부는 ‘인도 인권위원회 법안(The Human Rights Commission Bill 1993 - Bill No.65 of 1993)’을 제출했고, 대통령이 ‘인권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Protec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을 통해 승인함. 이 법안은 다시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1993)’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통과, 1993년 10월 12일에 인도 정부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인도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함.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1993년 인도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승인한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1993) 제3조 1항<sup>2039)</sup>에 근거해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

2016.7.26.)

2038)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는 인도의 오래된 신분제인 카스트 위계에서 최하층을 형성하는 계급으로 ‘불가촉 천민(untouchable)’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차별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음. 지정 민족(Scheduled Tribes)이란 인도 오지에 살고 있는 250여 개 소수 민족들을 포괄하는 말로, 전통 공동체의 특성과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감. (출처: 박홍윤, 『인도의 대표 관료제 정책 연구: 적극적 조치 정책의 집행을 중심으로』, 2009, 『행정논총(제48권3호)』 p.309

2039)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1993 - Amendment Act 2006-No.43 of 2006 “Constitution of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t.3(1) (인권보호법 제3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constitute a body to be known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upon, and to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under this Act.

Commission)를 설립함. 또한 동법 제21조 1항<sup>2040)</sup>에 근거해 인도 주 정부(State Governments)는 주 정부인권위원회(State Human Rights Commissions)를 설립함. 1993 인권보호법을 개정한 2006년 개정 인권보호법(Amendment Act 2006-No.43 of 2006 Constitution of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성과 활동 권한을 강화했음<sup>2041)</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H.L. 다투(H L Dattu) 위원장 이하 총 343명(2014년 기준)<sup>2042)</sup>으로, 위원장과 상임 위원 5인으로 이뤄진 이사회(committee), 인권위 외에 소수 집단을 위한 4개 위원회 위원장 4인 등 비상임 위원(ex-officio members), 사무국(Secretariat), 다양한 인권 이슈에 관한 전문가 그룹 및 특별보고관(Core Group and Special Rapporteur) 등 크게 4개 집단으로 구성됨. 인도 인권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25% 이상은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들 중에서 채용해야 함<sup>2043)</sup>.

① 이사회(committee)

위원회 이사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지낸 인물이어야 하며, 위원 1인은 대법원 판사 출신, 다른 1인은 고등법원의 기관장 판사 출신,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인권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임명함.<sup>2044)</sup>

2040) P.H.R.A.1993 art.21(1) “Constitution of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s”(인권보호법 제21조 1항“주 정부인권위원회의 구성”) : A State Government may constitute a body to be known as the (name of the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upon, and to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a State Commission under this chapter.

2041) N.H.R.C. Brochure(인도 인권위원회 브로셔), p.3

2042) Asia Pacific Forum, APF Member ‘Bare Facts’ India, 2014, p.2

2043) Id.

2044) P.H.R.A.1993 art.3(2) (인권보호법 제3조 2항) :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 a Chairperson who has been a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 one

② 비상임 위원(ex-officio members)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소수집단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지정 카스트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Scheduled Castes), 지정 민족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Scheduled Tribes), 여성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등 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같은 지위로 대우함<sup>2045)</sup>. 이들은 상임 위원은 아니지만, 직권 상 위원(deemed members)으로 간주함<sup>2046)</sup>.



출처: 인도 인권위원회 브로셔

[인도-그림 42] 인도 인권위원회 이사회 구성도

Member who is or has been, a Judge of the Supreme Court; (c) one Member who is, or has been, the Chief Justice of a High Court; (d) two Members to be appointed from amongst persons having knowledge of, or practical experience in matters relating to human rights.

2045) P.H.R.A.1993 art.3(3) (인권보호법 제3조 3항)

2046) Asia Pacific Forum, APF Member 'Bare Facts' India, 2014, p.1

③ 사무국(Secretariat)

위원회의 행정, 교육,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책임짐.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급은 중앙 정부 비서실장급(Secretary to the Government)에 해당함. 사무국은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며,<sup>2047)</sup> 각 부서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임명함. 조사부장은 경찰 심의관 (Director-general) 출신, 법률부서장은 사법부 차관보(Additional-Secretary)급에 해당하는 서기관 (Registrar)출신을 임명하며, 연구개발부장은 행정부 비서실장 (Joint-Secretary) 출신을, 교육훈련부장 역시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Chief Coordinator 출신을 임명함.



출처: 인도 인권위원회 브로셔

[인도-그림 43] 인도 인권위원회 조직도

<인도-표 18> 사무국 세부 부서

법률부(Law Division)	인권침해 진정 신청을 접수하고 위원회 자체 조사(suo motu) 사례를 등록하는 등 주로 사건의 수임을 담당함.
조사부 (Investigation Division)	접수된 사례들의 조사 업무 전반을 맡는데 주로 사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경찰 및 수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주 정부 인권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함.
연구개발부 (Policy Research, Projects and Programs Division)	인권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인권을 주제로 컨퍼런스, 토론회, 워크숍 등 학술 행사를 개최함.
교육훈련부 (Training Division)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무원을 위한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
행정부 (Administration Division)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행정부 밑에 작은 분과로서 홍보 분과를 두어 뉴스레터를 포함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미디어 대응을 담당함.

2047) 인도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14~15

④ 전문가 그룹과 특별보고관(Core Groups and Special Rapporteurs)  
 5개의 행정 부서 외에 다양한 인권 이슈에 관한 전문가 그룹(Core Groups)과 특별한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존재함. 전문가 그룹으로는 건강, 정신 건강, 장애인, 시민단체, 노인, 법적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그룹이 있으며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됨. 특별보고관은 노예 노동, 아동 노동 착취, 구금시설, 인도 내 분쟁지역 등 특수한 사례에 관한 임무를 맡으며, 은퇴 직전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됨<sup>2048</sup>).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보호법 제3조 1항에 근거, 수도인 뉴델리(New Delhi)에 본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 인권보호법 제21조 1항에 근거해 인도 주(states)마다 주 인권위원회(State Human Rights Commission)를 두고 있음. 현재 24개 주에 지역인권위원회를 설립함.

24개 주 정부 인권위원회: ASSAM, ANDHRA PRADESH, BIHAR, CHHATTISGARH, GUJARAT, GOA, HIMACHAL PRADESH, JAMMU AND KASHMIR, KERALA, KARNATAKA, MADHYA PRADESH, MAHARASHTRA, MANIPUR, ODISHA, PUNJAB, RAJASTHAN, TAMIL NADU, UTTAR PRADESH, WEST BENGAL, JHARKHAND, SIKKIM, UTTARAKHAND, HARYANA, TRIPURA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도 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법 제32조를 재정 독립성의 근거 조항으로 언급함<sup>2049</sup>. 인권보호법 제32조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위원회 예산을 책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배분함<sup>2050</sup>. 인권위원회의 예산은 인도 재정

2048)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16

2049) 인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Frequently Asked Questions' 5번 항목  
<http://www.nhrc.nic.in/> (검색일: 2016.7.26.)

2050) P.H.R.A.1993 art.32(1) "Grants by the Central Government"(인권보호법 제32조 1항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 :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after due appropriation made by Parliament by law in this behalf, pay to the Commission by way of grants such sums of money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think fit for being utiliz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부(Ministry of Finance)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책정하며, 정부 예산 외 기부를 통해 받는 자금은 없음<sup>2051)</sup>.

그러나 인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돼왔음. 2012년 제13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심사(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인도의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NGO보고서는 1) 인도 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따른 재정 독립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sup>2052)</sup> 2) 인도 정부 관료 출신의 구성원들로 인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독립성을 해친다고 보고함<sup>2053)</sup>. 2011년 ICC(GANHRI 전신) 보고서에서도 인도 NGO들은 인도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 요청을 냈으나 진정 요청이 자주 연기돼 결국에는 무효 처리가 됐다고 고발하는데, 그 주된 이유로 인권위원회 조사 팀을 경찰 출신이 이끌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시민단체가 진정을 낸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에서 인도 경찰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음.<sup>2054)</sup> 이에 대해 2011년 당시 ICC 내 인권위원회 등급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는 진정 요청에 관한 인권 단체들의 주장과 인도 인권위원회 사이의 엇갈린 주장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몇몇 사례에서 명백한 조사 작업의 지연을 확인했으며 경찰 출신이 인권위원회 조사 팀에 구성원으로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인도-표 19> 인도 인권위원회 2015년 예산

2015년 예산	4,878,969달러 (약 57억 5천 4백만 원)
----------	------------------------------

출처: Asia Pacific Forum, APF Member “Bare Facts” India, 2014, p.2

-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2051) A/HRC/22/47 Margaret Sekaggy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Annexure-A 「Questionnaire on NHRIs and human rights defenders」, 2013, p.12~13

2052) 제13차 UPR NGO 보고서

2053) 제13차 UPR NGO 보고서

2054) ICC 2011년 보고서

인권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인권위원회 위원 선정 위원회(Selection Committee)<sup>2055</sup>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sup>2056</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사무국장의 지위는 중앙정부 비서실장급이라는 명시가 있으나<sup>2057</sup>,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급에 관한 언급은 없음. 다만, 위원회 및 주 위원회(state commission)의 모든 위원, 위원회 위원장 및 주 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모든 직원은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제21조가 정의하는 공무원(Public Servant)의 지위를 가짐<sup>2058</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 받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인권보호법 제6조에 근거해 위원장 임기는 기본 5년이며, 같은 임기로 1회 재임 가능함. 위원들의 임기 역시 기본 5년, 임기가 끝난 후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7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을 적용함<sup>2059</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2060</sup>

---

2055) 인도 인권위원회 임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회로, 선정 위원회(selection committee) 위원장은 수상(prime minister)이 맡고, 그 외에 하원의장, 내무부 장관, 하원 제1야당 대표, 상원 제1야당 대표, 상원 부의장을 포함한 6인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함.

2056) P.H.R.A.1993 art.4(1)“Appointment of Chairperson and other Members”(인권보호법 제4조 1항 “위원장과 위원 임명”) : (1)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warrant under his hand and seal; Provided that every appointment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made after obtaining the recommendations of a Committee (…)

2057) supra p.3 다)(1)(가)③ 사무국 참조.

2058) P.H.R.A.1993 art.39 “Members and officers to be public servants”(인권보호법 제 39조 “위원과 사무관의 공무원 지위”) : Every Member of the Commission, State Commission and every officer appointed or authorized by the Commission or the State Commission to exercise functions under this Act shall be deemed to be a public serva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1 of the Indian Penal Code.

2059) P.H.R.A.1993 art.6 “Term of office of Chairperson and Members”(인권보호법 제6조 “위원 임기”)

2060) P.H.R.A.1993 art.5(3) “Resignation and removal of Chairperson and Members”(인권보호법 제5조 3항 “위원장 및 위원 사임과 해임”) : (중략) (3) the President may, by order, remove from office the Chairperson or any Member if the Chairperson

인권보호법 제5조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사임을 통보해야 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해임 시에는 고등법원이 입증 가능한 잘못 혹은 임무 불이행에 관한 사실 관계를 판단한 후 대통령이 승인해야 함. 혹은 다음 문제들에 해당되면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임이 가능함.

: 임기 동안 맡은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돈을 받고 맡았을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정신적 신체적 결함, 관할 법원이 해당 위원이 불건전한 마음 및 자세를 지녔다고 판결했을 경우, 구금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 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그 행위가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 (1) 인권침해 조사(Investigation by *suo motu* / complaint)

인도 인권위의 가장 큰 권한은 조사권인데, 조사 절차에서 인권위는 민사법원(Civil Court)과 같은 권한을 갖고 민사절차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sup>2061</sup>). 인권위의 조사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직권조사(*suo motu*)로, 직권조사란 인권보호법 제12조 a항<sup>2062</sup>)에 따라 진정(complaint)

---

or such Member, as the case may be (a) is adjudged an insolvent; or (b) engages during his term of office in any paid employment outside the duties of his office; or (c) is unfit to continue in office by reason of infirmity of mind or body; or (d) is of unsound mind and stands so declared by a competent court; or (e) is convicted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n offence which in the opinion of the President involves moral turpitude.

2061) P.H.R.A.1993 art.13 “Powers relating to inquiries”(인권보호법 제13조 “조사 관련 권한”) : (1) The Commission shall, while inquiring into complaints under this Act, have all the powers of a civil court trying a suit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 (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민사절차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에 따라 민사 법정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그 권한은 증인 요청 및 소환, 자료와 정보 탐색 및 발간, 진술서 및 증거 수집, 법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적 기록 요청, 증인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다.)

2062) P.H.R.A.1993 art.12(a) (인권보호법 제12조 a항): The Commission shall perform all or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namely: (a) inquire, *suo motu* or on a petition presented to it by a victim or any person on his behalf [or on a direction or order of any court], into complaint of (i)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abetment thereof;

이 들어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혹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을 말함. *Suo motu*는 정보와 교육 등 자원의 부족 혹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인권위 진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침해 사례 조사를 가능하게 함.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 진정에 의한 조사로, 피해자가 진정 요청을 하면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임<sup>2063</sup>). 인권보호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당국의 인권 보호 의무 불이행을 인권보호법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어<sup>2064</sup>) 침해 사례에 관한 조사 작업 또한 정부의 보호 의무 이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음.

인권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사 관할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이용할 권한을 가짐. 또한 조사에 필요한 증인 등 관련 인물들의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발간할 권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수집할 수 있음<sup>2065</sup>).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 및 정보 수집에 응한 공공 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침해 사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명시된 기간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sup>2066</sup>).

## (2) 구금시설 방문 조사(Visit in custodial facilities)

인도는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고문, 사망 등 인권 침해 발생 비율이 높은 국가로, 인도 인권위원회는 인도 전역에 주(States) 정부 관할권에 있는 구

---

or (ii) negligence in the prevention of such violation, by a public servant;

2063) Id.

2064) P.H.R.A.1993 art.12(a)(ii) (인권보호법 제12조 a-ii항) : negligence in the prevention of such violation, by a public servant;

2065) P.H.R.A.1993 art.14(1) (인권보호법 제14조 1항) : The Commission ma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ny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inquiry, utilise the services of any officer or investigation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any State Government with the concur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State Government, as the case may be.

2066) P.H.R.A.1993 art.14(4) (인권보호법 제14조 4항) : The officer or agency whose services are utilised under subsection(1) shall investigate into any matter pertaining to the inquiry and submit a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specified by the Commission in this behalf.

금시설을 방문해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sup>2067</sup>). 조사 후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이와 관련한 권고 지침을 중앙정부 및 주 정부에 전달해 피해자 구제 및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권고(Recommendation)와 지침(Direction)을 통한 피해자 구제

인도 인권위는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위한 보상 및 배상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며 인권위의 구제 권고는 강제성(enforcement)을 띠지 않음.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필요한 경우 민사 법정과 같은 권한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 기관을 기소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또한, 인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의 경우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보상, 즉각적인 임시 조치(interim relief)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권고 (Recommendation)와 지침(Direction)을 명령함<sup>2068</sup>). 위원회는 조사가 끝난 후 조사 내용과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관련 당국에 보내는 동시에 발간할 수 있음.

(4) 사법절차 개입을 통한 구제(Intervention in judicial proceedings)

인권법 제12조 b항에 따라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소송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혹은 절차는 모두 소진했으나 정부 개입과 방해 등의 이유로 법적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와 재심 청구 등을 통해서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음<sup>2069</sup>).

(5) 인권 법률과 정책에 대한 검토

인권위는 인도 헌법에 따라 제정된 인권 보호 조치 및 인권 법률을 검토하

2067) P.H.R.A.1993 art.12(c) (인권보호법 제12조 c항) : visit,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any jail or other institution (...) for the stud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inmates thereof and make recommendations thereon to the Government.

2068) 인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Frequently Asked Questions' 7번 항목  
출처: <http://www.nhrc.nic.in/> (검색일: 2016.7.26.)

2069) P.H.R.A.1993 art.12(b) (인권보호법 제12조 b항) : intervene in any proceeding involving any allega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pending before a court with the approval of such court;

고, 이 같은 법률들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권고함<sup>2070)</sup>. 또,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들이 인권의 원칙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6) 국제인권기준 국내 도입과 적용

인도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국제인권기준을 도입해 인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었으므로, 인권위는 인권법 제12조 f항에 근거해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인권에 관한 국제 인권기준(standards)들을 연구하고 인도 국내에서 이러한 인권법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권고함.

(7) 연구·조사, 학술 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국제 및 인도 국내 인권 이슈에 관한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인권 주제에 관한 연구 조사 작업을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와 단행본 등의 형식으로 발간함. 또한, 위원회는 주로 효과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주요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학술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함.

(8) 교육

위원회는 인도 유일의 인권위원회로서 대중들 사이에 교육을 통해 인권 개념과 인권 인식을 증진시키고, 미디어와 인쇄물, 강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인권위 시스템 같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홍보할 의무를 짐<sup>2071)</sup>. 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공무원, 경찰, 군대 종사자들의 인권 인식 증진과 인권 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훈련을 포함하고 있음.

---

2070) P.H.R.A.1993 art.12(d) (인권보호법 제12조 d항) : review the safeguards provided by or under the Constitution or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ecommend measures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2071) P.H.R.A.1993 art.12(h) (인권보호법 제12조 h항) : spread human rights literacy among various sections of society and promote awareness of the safeguards available for the protection of these rights through publications, the media, seminars and other available means;

(9)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시민단체의 활동 촉진

인권법 제12조 I항은 위원회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부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촉진할 것을 인권위의 한 기능으로 명시함<sup>2072</sup>). 인도 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압력과 국내 시민단체들의 운동으로 설립이 촉진되었기에 설립 초기부터 시민사회와 견제 및 협력 관계에 있었음. 특히 많은 경우 인권피해에 관한 진정과 직권조사(*suo motu*)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참여로 시작되며, 조사 단계에서 시민단체가 증거를 제공해 인권위 활동에 기여함을 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음<sup>2073</sup>).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인권 침해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기관

인권위는 인권보호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 받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중시하여, 인권보호법은 인권위 조사부의 부서장으로서 경찰 간부 출신을 임명하도록 규정함<sup>2074</sup>).

인도 인권보호법이 규정하는 인권은, 2006년 인권보호법 개정 전까지 인도 헌법과 인도가 비준한 두 개의 국제조약인 시민 정치적 권리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한정돼 있었음<sup>2075</sup>).

---

2072) P.H.R.A.1993 art.12(i) (인권보호법 제12조 i항) : encourage the effort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orking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2073) Manoj Kumar Sinha,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in Protection of Human Rights』 p.5

2074) P.H.R.A.1993 art.11(1)(b) (인권보호법 제11조 1-b항) : such police and investigative staff under an officer not below the rank of a Director General of Police and such other officers and staff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2075) P.H.R.A.1993 art.2(d) “Definition”(인권보호법 제2조 d항 “정의”) : “human rights” means the rights relating to life, liberty, equality 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and enforceable by courts in India.

기본권은 생명, 자유, 개인의 존엄함과 관계된 권리로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 같은 사회 경제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음. 2006년 인권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들을 국내에서 준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역시 보장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됨.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 사례들은 기본권에 관한 사례들이 많아, 조사 활동 역시 기본권 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인도는 아직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 비율(13%)과, 경찰·군대·구금시설 등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탄원(41%)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sup>2076)</sup> 기본권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2) 사법부의 보완(Complementary) 기관으로서 사법 정의 실현

인권 침해 구제 기관으로서 인도 인권위는 화해 및 갈등 조정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등 사법 정의(criminal justice) 실현의 성격이 강함. 인권을 법적 보호의 틀에서 다루는 인도의 법적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살인, 강간, 고문, 실종, 집단 학살 같은 중대 범죄의 발생 빈도에 비해, 정부 주도의 조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경향이기도 함.

위원회는 설립 이후 줄곧 인도 고등법원 및 대법원과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맺어왔으며, 인도 사법부 역시 위원회의 인권 보호 역할을 인정하며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기능을 인권위원회 고유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sup>2077)</sup>.

진행 중이거나 혹은 종료된 사법 절차에 인권위가 권고와 재심 청구, 소송 지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에서 위원회의 대표적인 역할임.

(3) 제도 및 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과 공익을 대표하는(representing) 기관으로서 새로운 법안 및 현행 제도의 인권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정부 당국의 요청에 의해, 혹은 특별한 요청 없이도 위원회는 중요한 인권 이슈 혹은 법안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 위원장 직

2076) Reenu Pa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A Human Rights Evaluation』, 2003, p.31

207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hievements of NHRC Vol.I 1993-2006』, 2012, p.105

권으로 관련 부처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권한을 가짐. 제도와 정책에 관한 인권위 의견 제출 전, 위원회는 내부 의견뿐 아니라 회의를 조직하여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반영함<sup>2078)</sup>.

(4) 국제인권기준 준수

위원회는 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의무를 감시하고 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 기능을 수행함. 법원이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을 위해 헌법 해석과 판결을 통해 기여한다면, 위원회는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들을 도입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술 행사 및 국제 교류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6년 10월, 2011년 5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2079)</sup>

## 2) 인도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활동 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진정(Complaint)과 직권(*Suo Motu*)에 의한 조사(Investigation)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조사는 인도 인권위원회 조사절차규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rocedure Regulations, 1994)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가) 사전 심사(Preliminary Consideration)

- ① 위원회는 조사에 앞서 접수된 사례들이 인권 침해 진정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판단함. 이 과정에서 진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은

---

2078) 위원회는 법안 도입 및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전 각계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절차를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개함.

207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각하(dismissal)하는데, 각하 사유로는 불법적 행위(피해 사실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 내용이 모호하거나 허위 또는 익명에 의한 고발일 경우, 극히 사소하거나 장난스런 이유, 인도 인권위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재산권 분쟁 혹은 계약 의무 위반 등 민사적 분쟁일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분쟁일 경우, 노동 및 산업 분쟁 사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없는 사례일 경우, 어떤 인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례, 법원에서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례, 위원회의 조정 및 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례, 다른 당국에서 유사한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있음<sup>2080</sup>).

- ② 직권조사(suo motu) 혹은 진정(complaint)에 의한 조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례에 관한 사전 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admits cognizance), 위원회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정보 또는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 위원회가 특정 기간을 공지하지 않은 이상, 관련 당국은 일반적으로 인권위의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함. 정보 제공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당국의 답변이 없거나 늦을 경우 위원회가 사례를 재검토하거나 부차적인 지침(further direction)을 결정함<sup>2081</sup>).

208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rocedure Regulations 1994. art.9 (인권위원회 조사절차규정 제9조) : Commission may dismiss in limini complaint of the following nature: (i) illegible; (ii) vague, anonymous or pseudonymous; (iii) trivial or frivolous; (...) (vi) allegation is not against any public servant; (vii) the issue raised relates to civil dispute, such as property rights,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he like; (viii) the issue raised relates to service matters; (...) (ix) the issue raised relates to labour/industrial disputes; (...) (xi) matter is sub judice before a Court/Tribunal; (xii) matter is covered by a judicial verdict/decision of the Commission; (xiii) where is only a copy of the complaint addressed to some other authority;

2081) N.H.R.C.P.R. 1994. art.21 (인권위원회 조사절차규정 제21조 b항, c항, e항) : (b) If on consideration of the complaint or su-motu the Commission admits/takes cognizance and directs issue of notice to any authority calling upon it to furnish information/report (...) (c) If no time is fixed by the Commission for the return of notice/furnishing of information/report the time shall be 30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 (...) (e) If the reports information is not received from the concerned authority within the given time or received late or not complete in all respects the case shall be placed before the Commission or further direction.

- ③ 위원회는 관련 당국이 제출한 정보 및 보고서 검토 후, 관련 기관의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 사실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조사 착수를 결정함. 권고 없이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면 사례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나) 조사(Investigation)

조사 착수를 결정한 사례는 증언(summons)과 심층 조사 등 조사 작업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함.

- ① 증언(summons): 위원회는 침해 사례와 관련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필요한 사람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된 사람은 위원회에 출두해 증언해야 함<sup>2082</sup>).
- ②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Report) 요청: 위원회의 권한에 의한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인권위 조사부서(Investigation Division)가 구성한 위원회 고유의 조사팀에 의한 조사와, 두 번째, 인권법 제14조<sup>2083</sup>)에 따라 해당 침해 사례가 속해 있는 관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특별 조사팀에 의한 조사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후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음<sup>2084</sup>). 조사팀은 조사 지침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인권 침해 사실과 조사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sup>2085</sup>).

(2)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 메

---

2082) N.H.R.C.P.R. 1994. art.21 (인권위원회 조사절차규정 제25조 b항) : The case in which summons has been issued for personal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placed before the Commission on the date shown in the summons for such personal appearance.

2083) P.H.R.A.1993 art.14(1) (인권보호법 제14조 1항) : The Commission ma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ny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inquiry, utilise the services of any officer or investigation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any State Government with the concur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State Government, as the case may be.

2084) V.Ramaraj, 「Human Rights Complaint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Asia Pacific Journal of Research, 2015, p.182

2085) N.H.R.C.P.R. 1994. art.26 “Calling for Investigation report” (인권위원회 조사절차규정 제26조)

커니즘은 직권조사 외에도 특정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및 전문가 그룹(Core Group)의 조사 활동이 있음. 그중에서도 인도 전역의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특별조사팀은 위원회 권한으로 교도소, 정신병원, 경찰 수감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 업무를 수행함. 구금시설의 인권은 인도 인권위가 매년 보고서 등에서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인권위의 장기 목표 중 하나로서 구금시설 개혁(Prison Reform)이 있을 만큼 위원회가 오랫동안 집중해 온 사안임.

- (가) 특별조사팀은 조사 후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 가혹 행위 및 비인간적인 대우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함<sup>2086)</sup>.
- (나)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의 개선뿐 아니라, 재판 절차 없이 구금되었거나 재판 과정의 지연으로 장기간 구금된 피해자 사례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법적 시정 조치를 권고하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함<sup>2087)</sup>.
- (다) 위원회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위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금시설 개혁(Prison Reform)을 목적으로 더 다양하고 세심한 내용의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권고들로는, 수감자 과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위생과 건강 등 기본권 침해, 경제적 약자들이 보석금 신청과 법률 지원 제공 등에서 겪는 어려움,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행위, 수감자 사망 후 사인 규명을 포함한 사후 절차, 수감자의 건강권, 정신장애인 및 여성 수감자의 인권, 구금시설과 미성년 수감자를 위한 교정시설과의 분리, 구금시설 감사에 대한 권고 등이 있음<sup>2088)</sup>.

- (3) 특별조사관(Special Rapporteurs) 및 전문가그룹(Core Groups)에 의한 조사  
인도 인권위원회는 1997년-1998년, 그동안 위원회가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 조사 및 권고 작업을 한 인권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위원회 권고 이후 정부의 보호 및 예방 의무 등 권고 이

---

208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hievements of NHRC Vol.I 1993-2006』, 2012, p.18

2087) Id.

208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hievements of NHRC Vol.II 2007-2011』, 2012, p.2-15

행 상황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위원회는 특별보고관과 전문가그룹 제도를 도입함.

- (가) 특별보고관은 위원회의 내부 조직에 속하지 않는 외부 인사들 중에 임명하는데, 주로 관련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임명해 더욱 심층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 (나) 전문가그룹은 특별보고관 제도와 비슷하지만 좀 더 복잡한 인권 사안에서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위원회가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지정하여 운영함<sup>2089)</sup>. 전문가그룹으로는 구금시설 및 정신병원의 장기 수감자들의 치료와 인권을 위한 그룹, 인도 내 식량권(Right to Food)에 관한 그룹,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그룹, 인권위의 법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가 그룹, 난민 인권 및 난민법 제정을 위한 그룹, 불안정한 약물 및 의료 행위 감시를 위한 그룹 등이 있음.

#### (4) 피해자 구제

인권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에서 위원회는 갈등 당사자 간 갈등 조정(conciliation)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조치(punitive approach)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띤다. 이는 인도에서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침해 사건 발생의 비율이 높고, 인도 중앙 정부가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특징에서 기인함. 이들 피해 사례들은 고문과 살해, 강제 실종, 특정 카스트와 민족에 대한 대량학살(Atrocities on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등 기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인 경우가 많아서 갈등 조정이나 화해 조치보다는 형사적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같은 사례들에서 정부 당국이 가해자로서 인권침해에 직접 개입되어 있거나 인권 보호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간접 관계된 경우가 많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

---

208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hievements of NHRC Vol.I 1993-2006』, 2012, p.4-5

(가) 가해자 처벌에 관한 권고

인도 인권위가 조사 작업을 통해 개입하는 사례들 중 다수는 경찰, 구금시설 등 공권력이 가해자로 관계되어 있음. 위원회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권한은 없으나 권고를 통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 수사 및 기소, 법 집행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관할 지역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형법에 따라 가해자 기소를 요청하는 권고를 함. 더불어 중앙 수사 기관인 중앙조사부(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경찰 감사관(Inspector General of Police) 등의 상위 기관에 해당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함<sup>2090</sup>).

(나)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권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청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책임 기관에 위원회 권한으로 직접 권고할 수 있음. 위원회가 권고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첫 번째로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인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 기관에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상황 개선 등의 권고 조치를 하여 이행 상황 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제출하도록 함. 배상 및 보상에는 긴급 구제 조치(Interim Relief)도 포함됨. 위원회는 설립 후 2006년까지 총 707건의 사례에서 정부 당국에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하여 104,758,643 루피(한화 약 17억 3,480만 원)를 지불하도록 했음<sup>2091</sup>).

(다) 인도 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 현황

---

2090) <http://www.nhrc.nic.in/cdcases.htm> (검색일: 2016.8.11.)

209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hievements of NHRC Vol.I 1993-2006』, 2012, p.7

<인도-표 20> 인도 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현황

처리유형	2011-2012 <sup>2092)</sup>	2010-2011 <sup>2093)</sup>	2009-2010 <sup>2094)</sup>
	건수	건수	건수
접수 각하	43,780	54,676	60,041
진정(complaint)	93,446	82,779	80,260
직권조사	116	53	49
지역인권위 송부	24,055	9,254	5,929
권고 건수	592	628	398
총 접수 건	95,174	84,605	82,021

출처: NHRC, 연간보고서

(5) 인권 법률과 정책 검토

인권위는 전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거나 정책 변화가 필요한 사안을 시민사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하기 위해 국가협의(National Consultation)의 장을 개최함. 2013년에는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협의(National Consult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개최해, 판사, 인도 여성단체, 심리학자 및 의사, 경찰 고위 간부 등과 함께 토론을 거쳐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 수사방침 변화, 법률 개정, 피해자 재활 조치를 포괄한 정책 권고를 도출함. 권고들에는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모든 경찰의 윤리 강령 채택, 수사과정에서 DNA 테스트 및 법의학 도입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하는 의료진들의 관점 변화, 여성폭력 감시 및 구제를 담당할 더 많은 국가 구제 기관들의 설립을 위해 국가여성위원회법(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Act 1990) 개정 제안, 언론의 젠더 관점 및 감수성 변화 등이 포함됨<sup>2095)</sup>. 2016년에는 인도 인권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협의(National Consultation to

2092)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2093) 인도 인권위원회 2010-2011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0-2011』

2094) 인도 인권위원회 2009-2010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09-2010』

2095) <http://nhrc.nic.in/dispatcharchive.asp?fno=12756> (검색일: 2016.9.25.)

asses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를 6개 지역에서 진행한 후 최종 회의를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함. 여기서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미성년자의 형법 적용에서 아동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두는 현행법 개정, 여성이 종교와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건강·보건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GDP의 3%까지 증가시킬 것, 국가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을 국제인권기준과 대법원 명령을 준수하여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새로운 고문방지법(Prevention of Torture Bill)의 신속한 도입 등을 권고함<sup>2096</sup>).

(6) 인권 주제 및 관련 국내법에 관한 연구

인도 인권위원회의 연구 작업은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포괄하며, 사안별로 10년 동안 현장 방문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이뤄지는 장기 프로젝트, 위원회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 같은 정기 조사 활동 수행 중 구금시설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 작업 등을 수행함. 장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위원회는 노예 노동 및 아동 노동(Bonded Labour/Child Labour) 사안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2~3회 현장 방문 조사 뒤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구금시설 중 소년원과 노숙인 보호시설 심층 조사(2013)를 실시함. 특히 최근에는 사회권과 관련한 침해 사례 조사뿐 아니라 연구 작업을 늘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정책 수립을 위한 현행 정책 및 현황 검토 보고서(Monitoring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NHRC - Inspection Formats for Schemes & Programmes in States/UTs, 2016), 인권으로서의 건강보험 보고서(Recent Initiative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Health Care as a Human Rights, 2016)를 발간함<sup>2097</sup>).

(7) 인권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위원회는 매년 시민단체와의 협력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련 예

---

2096) <http://nhrc.nic.in/dispatcharchive.asp?fno=24077> (검색일: 2016.9.25.)

2097) <http://nhrc.nic.in/> (검색일: 2016.9.25.)

산을 편성함. 시민단체와 특정 인권 현안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위원회가 국내 인권 이슈에 대해 권고를 내기 전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이에 관한 의견을 반영함. 또한, 위원회가 접수하는 개인 진정 사례의 많은 부분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이며, 진정에 의한 조사나 직권조사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에서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음.

인도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인권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시민사회 대표들을 초청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한편,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지향함을 공적으로 인식시키고 이 같은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주제로 한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함. 2007년에는 '인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보조자로서 시민단체의 역할(Role of NGOs in support of NHRC in bette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주제로 국가 컨퍼런스를 주최함<sup>2098)</sup>.

나) 정부조직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이해관계 등)

- (1)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로서 인권 침해의 조사 영역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정부 당국의 책임, 인권 보호 의무 실패,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의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권고함. 인도 인권위가 대표하는 (representing) 것은 인도 시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인권이며 인도 국가 이익이 아닌 시민 편에서의 공익(public interest)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중앙정부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서에 담긴 권고 내용은 국회에서 발표됨<sup>2099)</sup>.
- (2) 사법부의 보완 기관(complementary) 성격이 강하며, 고등법원 및 지역법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관련 임무들을 수행함. 대법원으로부터 특정 인권 이슈에 집중할 것에 대한 지침을 받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며, 특히, 인권 침해 사건에서 사법 절차에 개입해 법원 및 관계 당국에 공정

209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hievements of NHRC Vol. II 2007-2011』, 2012, p.131

2099) Vijayashri Sripati, 『Indi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Shackled Commission?』, 2000, p.29

한 수사 및 기소, 재판이 이뤄지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인권 사례만을 특별히 다루는 인권재판소가 없는 대신, 인도의 인권 사례들은 고등법원과 지역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데 이 절차에서 인권위는 법원의 보완 기관으로서 권고 및 요청 기능을 수행함<sup>2100</sup>).

- (3) 인권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자문 기관의 성격을 지님.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고 행정부 및 입법부에 의견을 보낼 때 위원장 직권으로 부처 수장에게 편지를 통해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 시에도 인권위 위원장이 부처 고위 관료들과 논의해 결정함.

### 3) 인도 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

##### (1) 진정에 의한 조사 및 구제

###### (가) 즉각적인 임시 조치(interim relief)

Sanjay Sharma는 2009년 Ferozabad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구금되었는데 이는 충분한 증거 없는 체포였고 유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24개월 이상 투옥됨. 2011년, 한 시민단체가 이 사례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해당 주 정부 상위 조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해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오인해 체포했으며 이는 경찰의 실수였다는 보고를 받음. 이후 위원회는 피해자를 즉각 석방할 것과 그간의 피해에 대상 즉각적인 임시 조치로서 30만 루피를 지급할 것을 권고함<sup>2101</sup>).

###### (나) 가해자 처벌 및 교육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2001년, 경찰이 불법 구금하고 고문한 Anil Kumar 사건에 대한 진정 요청을 받음.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 전 해당 경찰

---

2100) 인도 인권위원회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기는 하지만, 인권 침해 가해자인 정부 당국 및 공무원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출처: Id. p.30

2101) NHRC, Press Release 2014.7.7. <http://nhrc.nic.in/disparchive.asp?fno=13246>  
(검색일: 2016.8.11.)

서장에게 먼저 청원을 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인권위는 진정을 받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해당 주 정부에게도 사건과 피해자를 구금하고 고문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요청함. 주 정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경찰관의 과실치사가 인정됐으나 주 정부가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임시 조치로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원회는 가해자 처벌로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함께 벌금을 따로 부과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의 조치임을 상기시킴. 위원회의 요청에 주 정부는 다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 조치로서 1년 정직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게 3만 루피를 배상금으로 지급함<sup>2102</sup>).

(2) 직권조사(suo motu) 및 구제

위원회는 2009년 5월 5일과 6일자 Hindustan Times에 소개된 기사를 보고 Madhya Pradesh주의 4개 지역에서 정부 건강보건 담당자에 의한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됨.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해당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조사 작업을 수행, 학교에서 지정 카스트에 속한 아동들을 카스트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그 순서에 따라 점심 급식을 받게 했음이 밝혀짐. 조사 과정에서 하층 카스트 아동들의 부엌 출입을 금지하거나 부엌에 있는 식수 접근을 금지하고, 상위 카스트 소속 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직원 중 하층 카스트 직원이 준비한 음식은 거부하는 등의 차별 행위들도 있었음이 드러남. 위원회는 이 같은 차별 행위를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할 것과 주 정부 차원에서 지정 카스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sup>2103</sup>).

(3) 구금시설 방문 조사

위원회는 2011-2012년, 주 별로 교도소 및 교정시설을 포함해 총 7개 구금 시설을 방문해 방문 조사를 진행함. 이 조사를 통해서 주 별 구금시설 수감자 수, 수감자의 성별/연령 비율, 과다 수용 비율, 재판 중인 수감자 비율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구금시설 개혁(Prison Reform)에 관한 권고로

2102) <http://nhrc.nic.in/PoliceCases.htm> (검색일: 2016.8.11.)

2103) <http://nhrc.nic.in/dispatchive.asp?fno=1741> (검색일: 2016.8.11.)

서 구금시설의 건강권과 위생, 여성 수감자의 인권, 수감자들의 교육권, 재판 중인 수감자들이 제공받아야 할 권리 등을 포함한 내용을 각 주 정부에 제출함<sup>2104</sup>).

(4) 특정 주제에 관한 특별조사관, 전문가 그룹의 조사와 구제

(가)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에 대한 학살 특별 보고관

인도에서는 특정 카스트 그룹에 대한 학살이 공공연히 발생해왔음.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에 대한 학살과 같은 기본권 탄압을 고발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특별 보고관을 파견함. 특별보고관은 장기간의 조사 끝에 인권위 위원장, 인도 수상, 각 주 정부 수상 등에게 보내는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함. 특별 보고관의 권고에는 지정 카스트에 대한 인권 탄압 사건들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명시할 것, 이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이 사례들과 관련한 특별 법원 및 특별 검사를 구성할 것, 지정 카스트에 대한 학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여성 사무관들을 배치하고 인권 침해 진정을 받는 부서(Cell)를 만들 것 등이 포함됨<sup>2105</sup>. 이 보고서가 나온 후 인권위는 특별 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내부에 달릿 부서(Dalit Cell)를 설치함.

나) 교육

인도 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활동은 주로 공무원, 경찰 등 공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함.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전개를 위해 인권위 위원장은 교육 대상자들인 각 부처 수장들과 만남을 통해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함. 위원장은 국가행정교육기관(National Academy of Administration) 기관장과의 논의에서 공무원 기초교육 과정 중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기관이 공직자 교육과 관련한 다른 기관들에서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청함.

2104)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64-72

2105) <http://nhrc.nic.in/disparchive.asp?fno=908> (검색일: 2016.8.11.)

(1) 경찰 및 법원 공무원 교육

- (가) 2001년, 위원회는 ‘구금시설 운영에서 인권 증진(Improving Custodial Management)’을 주제로 경찰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함. 5개 주 고위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구금시설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교육했으며 교육받은 고위 간부들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교육 받은 내용으로 지역 경찰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의무를 부여 받음<sup>2106</sup>).
- (나) 2011-2012년 기간에 인권위원회가 단독으로 또는 법학 대학, 기타 행정기관과의 협력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은 총 50개로서, 협력 대학 캠퍼스, 주 정부 인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됨<sup>2107</sup>).
- (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경찰을 위한 인권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게재함<sup>2108</sup>).

다) 홍보

2000년, 위원회는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출판물들을 발간했는데, 주로 재판 과 정과 관계된 일을 하는 법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음.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기념으로 발간한 핸드북 ‘Handbook on Human Rights for Judicial Officers’을 시작으로, NALSAR 대학과의 공동으로 작업한 시리즈물을 발간해 경찰 및 법원 공무원들에게 배포함. 시리즈물의 주제는 인권과 인도 헌법, 국제인권협약, 직장 내 성희롱, Manual Scavenging<sup>2109</sup>, 아동노동착취 등 국제인권기준과 인도의 법규, 국내 인권 상황을 다루고 있음<sup>2110</sup>).

2106) NHRC, 『Achievements of NHRC Vol.I 1993-2006』, 2012, p.27

2107)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220

2108) [http://nhrc.nic.in/ignou/EUnit1/Unit\\_1.pdf](http://nhrc.nic.in/ignou/EUnit1/Unit_1.pdf) (검색일: 2016.9.25.)

<http://nhrc.nic.in/ignou/EUnit1/Main.swf> (검색일: 2016.9.25.)

2109)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하층 계급이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관습이 있음. 특히 하층 계급인 Dalit 사람들이 안전 조치 없이 인간의 배설물을 치우는 직업에 종사하는 “manual scavenging”이 대표적인 예로, 인도 인권위원회도 manual scavenging에 관한 조사팀을 구성하고 이 관습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음.

2110) Id.

라) 정책 개선

(1) 다양한 인권 분야와 인권 관련 법률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인도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 착취,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장기 밀매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주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배포하며, 인권법과 관련해 경찰과 구금시설을 포함한 주체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인권 보호 지침을 제작함.

위원회가 작성하고 배포한 인권 가이드라인 중에는, 교도소 수감자 입소 시 신체검사 절차의 인권 기준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Medical Examination of Prisoners on Admission to Jail), 경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명 사망에 관한 지침(Death During the course of Police Action), 구금시설에서의 사망 및 성폭력(Custodial Deaths/Rapes), 수사 및 체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 테스트와 체포 절차의 인권 가이드라인(Visits to Police Lock-ups/Guidelines on Polygraph Tests and Arrests), 경찰과 대중 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제안(Measures to Improve Police-Public Relationships), 교도소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Human Rights in Prisons), 아동 성폭력 이슈에 관한 미디어 인권 원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Media in addressing the issue of child sexual abuse) 등을 포괄하고 있음<sup>2111</sup>).

(2) 시행 중인 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

시행 중인 정책과 법률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해 제도의 개선과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가) 2002년, 조혼방지법 개정안(amendment to the Child Marriage Restraint Act, 1929)에 대한 권고를 제출함

(나) 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2000년에 제정된 구금 또는 재판 중인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Juvenile Justice -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2000)이 주 정부 관할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동법의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모든 행정 부처 장관에게 제출함<sup>2112</sup>).

2111) 인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List of Important Instructions/Guidelines Issued by the Commission」 <http://www.nhrc.nic.in/> (검색일: 2016.8.10.)

2112) <http://www.nhrc.nic.in/dispatchive.asp?fno=62> (검색일: 2016.8.10.)

(3) 법안 도입에 관한 의견 제출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려 할 때 보고서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법안의 인권 원칙 준수 여부와 인권법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인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법안 도입을 제안하기도 함.

(가) 위원회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Bill, 2000)에 관한 의견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출해, 이 법이 시민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법안 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안 명칭을 정보 접근권법(Right to Information Bill)으로 바꿀 것을 관련 부처 장관에게 요청함<sup>2113</sup>).

(나) 1993년, 인권위는 그간 구금시설에서 인권 침해로 인한 의문사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나 조사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인도 내 모든 구금시설에서 사망자 발생 시 24시간 내에 인권위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법안의 도입을 모든 부처 장관에게 요청함. 이후 위원회가 구금시설에서의 사망과 관련해 제출한 4개 이상의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임<sup>2114</sup>).

(다) 2001년, 위원회는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Prevention of Terrorism Ordinance, 2001)에 관한 검토 의견에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 도입에 반대함<sup>2115</sup>).

(라) 2002년, 가정 폭력에 관한 인도 최초의 법안인 가정폭력방지법

2113) <http://www.nhrc.nic.in/dispatchive.asp?fno=155> (검색일: 2016.8.10.)

2114) 수감 중 사망자의 사망 확인과 시신 촬영 등 사후 과정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video-filming and photography of post-mortem examination in case of death in police action), 수감 중 사망에 관한 사망 확인 보고서가 지켜야 할 지침(Revised instructions to be followed while sending post-mortem reports in cases of custodial deaths), 구금시설에서의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 작업의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regarding conducting of Magisterial Enquiry in cases of Death in Custody or in the course of police action), 경찰 구금 중 사망에 관한 사후 검사 과정에 관한 의견(Revised format of post-mortem examination in case of death in police custody) 등.

출처: <http://www.nhrc.nic.in/dispatchive.asp?fno=157> (검색일: 2016.8.10.)

2115) 인도 인권위원회 뉴스레터 2001년 12월호 (December 2001)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Bill, 2002)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sup>2116</sup>).

마) 사법부 의견 제출

(1) 구자라트 베스트 베이커리 사건(Gujarat Best Bakery case)에 대한 사법부 의견제출

2002년 구자라트 주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산발적으로 벌어졌는데, 베스트 베이커리(Best Bakery)이름의 상점에 폭도들이 습격해 이슬람 교도 민간인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살해함. 이 과정에서 지역 경찰이 학살을 전혀 예방하지 못했으며 학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 그러나 사건을 재판한 반도다라(Vadodara) 지역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재판 중 검찰은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인도 인권위원회는 고등법원에 특별 청원(Special Leave Petition)을 넣어 피해자들이 구자라트 주가 아닌 다른 법원에서의 재심을 통해 공정판 재판에 대한 권리(Right to fair trial)를 보장받고,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한 경찰들이 독립적인 기관의 재수사를 받을 수 있기를 청원함. 고등법원은 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앙정보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명령함<sup>2117</sup>).

바) 주요 인권 이슈

(1) 대법원의 지침에 의한 인권위 집중 이슈<sup>2118</sup>)

인도 인권위는 대법원의 지침(Direction)으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모니터링할 인권 이슈를 정해 감시 및 연구 활동을 계속함. 최근 고등법원의 지침에 의해 인권위 집중 이슈가 된 인권 영역으로는 아동노예노동의 근절(Abolition of Bonded Labour), 란치(Ranchi), 아그라(Agra), 그왈리오르

2116) 인도 인권위원회 Year-end review 2003

출처: <http://www.nhrc.nic.in/disparchive.asp?fno=631> (검색일: 2016.8.10.)

2117) NHRC, Year-end review 2003, <http://nhrc.nic.in/disparchive.asp?fno=631> (검색일: 2016.8.11.)

2118) <http://www.nhrc.nic.in/hrissues.htm> (검색일: 2016.8.12.)

(Gwalior) 지역의 정신병원 감독(Functioning of the Mental Hospitals at Ranchi, Agra and Gwalior), Agra 지역의 여성을 위한 쉼터 감시 감독(Functioning of the Government Protective Home (Women), 식량권(Right to Food) 등이 있음.

(2) 인권위가 최근 몇 년간 집중해온 이슈

위원회가 대법원의 지침에 의한 이슈 집중 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슈들:

(가) 아동노동 폐지

위원회는 인도에서 아동을 노동에 고용하는 것을 헌법과 국제협약에 의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옴. 특히, 유리산업, 섬유산업, 다이아몬드 세공, 선박 제조, 건설업, 카펫 제작 등의 분야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만연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나) 열차 여성 승객에 대한 성희롱 예방

위원회는 인도에서 열차를 탄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철도경찰청(Government Railway Police) 등 관계부처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왔음. 이들과의 회의에서 위원회는 철도 관계 부처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홍보 정책 및 예방 조치에 관한 권고를 전달함.

(다) 지정 카스트에 대한 학살

지정 카스트에 대한 학살은 인도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로서, 위원회는 이 같은 극심한 인권탄압을 근절하고 특히 달릿(Dalit)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그 일환으로 2003년에는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 인원으로 하여 위원회 내부에 달릿 부서(Dalit Cell)를 만들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음.

(라) 건강권

인도 인권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사회권 관련 조사 활동을 점점 늘렸는데, 그중에서 건강권은

위원회가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권 이슈 중 하나임. 위원회는 건강권에 관한 전문자문위원 그룹(Core Advisory Group on Health)을 결성했고, 2004년 건강복지 접근권에 관한 공개 청문회 및 진정 접수(public hearing on access to healthcare) 행사를 지역과 수도에서 개최한 이후 같은 취지의 공개 행사를 열어왔음.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인도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체제의 압력을 받은 인도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설리반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보호시스템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정부의 국제인권기준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함.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및 조약기구 심사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 제출

인도 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11년, 인도 정부의 UPR 심사를 위해 인도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를 제출함<sup>2119)</sup>. 또한, 유엔조약기구와 협력 차원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인도의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를 제출함. 또한, 인도 국내에서 난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난민과 관련한 국제인권협약들을 비준할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2) 국제협력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영역에서는 2011년, 인권위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cs Center), 사법부 법원등록부(Joint Registrar)와 함께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방문해 진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함<sup>2120)</sup>.

#### 4) 인도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주 정부 인권위원회(State Human Rights Commissions)<sup>2121)</sup>

2119)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170-171

2120)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172

2121)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 설립

인권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주 정부 인권위원회를 설립함(각주 5 참조).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주 정부 인권위원회는 최소한의 구성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 필수 구성 요소로서 인권위 주요 부서인 행정부, 법률부, 조사부, 교육 연구부가 포함되어야 함.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4인을 배치하는데, 위원 수는 주 별로 다름. 각각의 부서에는 중앙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료 출신의 사무관이 부서장으로 업무를 담당함. 주 정부 인권위원회 예산은 해당 인권위를 관할하는 주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함.

(3) 주요업무

주 정부 인권위원회는 중앙 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사례 중 중앙 인권위가 해당 관할인 주 정부 위원회로 송부한 사건들에 대한 접수, 조사를 담당해 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함. 중앙 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UPR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며 인도 정부가 받은 권고의 이행 상황을 지역에서 모니터링하고, 중앙 인권위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협력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sup>2122)</sup>.

---

Annual Report 2011-2012』, p.195

2122) 인도 인권위원회 2011-2012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1-2012』, p. 176-177

### 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 정보 <sup>2123)</sup>	
면적	32.9만km <sup>2</sup>
인구	3,063만 명 (2015년 기준)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정치형태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우위)
주요언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주요종교	이슬람교(국교, 종교의 자유 보장), 불교, 힌두교
주요민족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 기타(9%)
GDP	3,381억 달러(2015년, IMF)
1인당	10,796 달러(2015년, IMF 기준)

#### 1)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의 일반 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 (2) 설립연도: 1999년 9월 9일
- (3) 설립배경: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설립 계획은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말레이시아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대륙별 대표단 국가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동안 유엔 인권보호 시스템 및 인권 논의에 활발히 참여한 경험에서 시작됨. 말레이시아는 1995년 탄 스리 무사(Tan Sri Musa) 전 부총리가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세션 대표단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1993년부터 유엔에서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에 활발히 관여했고, 탄 말레이시아 대표는 1994년,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음. 아시아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태국은 설립을 논의하는 중이었는데, 말레이시아는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집권 여당이 야당 정치인과 인권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등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경험함.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따랐고, 5년 뒤인

2123)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22.jsp?menu=m\\_40\\_20\\_20#contentAction1](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22.jsp?menu=m_40_20_20#contentAction1)

1999년 7월에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나 인권 전문가 그룹과 논의 없이 국가인권기구 설립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선포함<sup>2124)2125)</sup>.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1999년 말레이시아 국회에서 통과된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Act 1999 (Act 597)에 의해 설립됨. 인권위원회법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됐는데, 개정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임명 방식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음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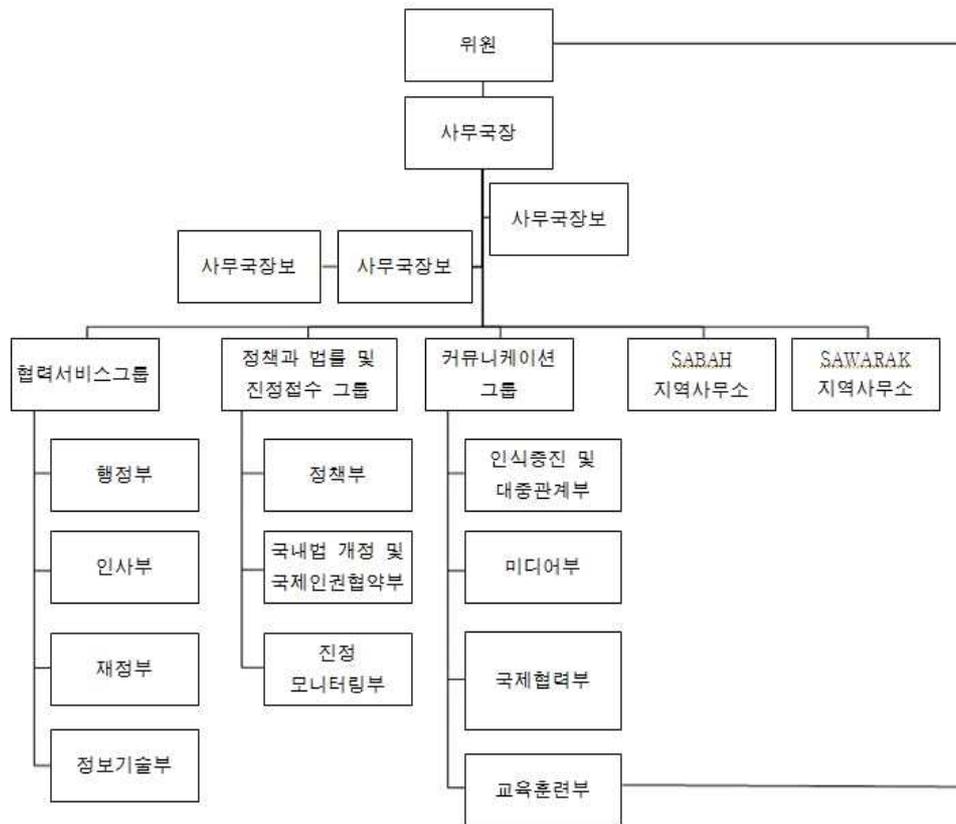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20명 이하의 위원(commissioner)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장 (secretary)을 포함한 사무국으로 구성됨<sup>2126)</sup>. 사무국은 크게 협력 서비스 그룹(Corporate Services Group), 정책과 법률 및 진정 수리 그룹(Policy, Law and Complaints Group), 커뮤니케이션 그룹(Communications Group) 3개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그룹은 각각의 소규모 부서들로 이루어짐.

---

2124) <http://www.suhakam.org.my/about-suhakam/> (검색일: 2016.9.7.)

2125)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NNI Report on the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sia』, 2009, p.91

2126) 전체 인원수를 알 수 있는 자료 부재함.



출처: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uhakam.org.my/about-suhakam/carta-organisasi/>

[말레이시아-그림 44] 말레이시아 인권위 조직도

① 협력 서비스 그룹(Corporate Services Group)<sup>2127)</sup>

협력 서비스 그룹은 부사무국장(Deputy Secretary)을 대표로 하여 6개 부서 (unit)로 구성됨. 6개 부서에는 각각의 부서를 이끄는 사무국장보(Principal Assistant Secretary)가 있는데 이들은 부사무국장(Deputy Secretary)을 보좌함.

2127) <http://www.suhakam.org.my/corporates-services-group/> (검색일: 2016.9.8.)

행정부(Administration Unit)	사무국 전반의 행정 사안을 담당. 위원 및 직원의 출장 지원, 물품의 구입과 전달, 기록 파일의 관리와 보안, 사무국 위생과 안전 등을 책임짐.
인사부(Human Resource Management Unit)	위원회 전략과 임무에 맞게 인사 전략을 세우고 채용, 직원의 역량 개발, 인사 배치, 교육 등을 수행하며, 조직의 목표에 맞는 인사 구조 및 환경, 시스템을 조성함.
재정부(Finance Unit)	위원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국무총리실에서 배분되는 위원회 예산 준비 및 예산안 제출, 월간 회계보고서 작성, 회계 감사 대비 등의 업무를 수행. 재정부서는 위원회의 재정을 담당하지만, 정부 행정구조상 말레이시아 조달위원회(Malaysia Tender Procurement Committee Board) 및 견적위원회(Quotation Committee) <sup>2128)</sup> 사무국의 일부로 소속되어 있음.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Unit)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관리하며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함.
출판부(Publication Unit)	위원회 발간 출판물의 제작에 관계된 모든 업무: 연 4회(계간) 뉴스레터·인권저널(Human Rights Journal)·연간보고서(Annual Report) 등 정기간행물과 부서별 모든 출판물 발행을 담당함.
도서관부(Library Unit)	도서관 인쇄물 및 전자 기록물 등 모든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위원회 구성원을 위한 정보 전달 및 배분 서비스를 담당.

② 정책과 법률 및 진정 접수 그룹(Policy, Law and Complaints Group)<sup>2129)</sup>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자문을 비롯해 진정 요청 접수, 법률 지원 등  
 정책과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3개의 부서(unit)으로 구성됨.

정책부(Policy Division)	정책부는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여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의 일환으로 사안별 인권 연구를 진행함.
국내법 개정 및 국제인권협약부 (Law reform & Treaties division)	법과 국제인권협약부는 국내법 및 국제인권협약과 관련한 정부의 인권 원칙 준수 의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정부에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전달함.
진정 모니터링부 (Complaints and Monitoring Division)	인권 침해 진정(complaint)을 처리하며, 진정 요청에 따른 조사(investigation) 업무 전반을 담당함.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구금시설 정기 감사, 평화적인 집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함.

2128) 말레이시아 정부 물품 조달 및 공급 시스템의 일부로, 견적위원회는 정부의 승인 하에 견적서가 발행된 정부물품 계약자 및 공급자를 선택하는 역할을 함.

(출처: <http://ideas.org.my/wp-content/uploads/2013/10/Policy-Ideas-No.71.pdf> 검색일: 2016.9.8.)

2129) <http://www.suhakam.org.my/policy-law-and-complaints-group/>  
 (검색일: 2016.9.8.)

③ 커뮤니케이션 그룹(Communications Group)<sup>2130)</sup>

위원회의 대중 소통 및 국제 협력에 관계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4개 부서로 구성.

인식증진 및 대중관계부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Division)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활동, 인권위와 다양한 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함.
미디어부 (Media Division)	언론 등 미디어와의 소통 창구로서, 보도자료를 포함한 위원회 자료 배포, 인터뷰, 언론 발표회 등의 미디어 관계 업무를 담당함.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Coordination Division)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의 국제협력과,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조약기구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함.
교육훈련부 (Training Division)	말레이시아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공공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 활동을 수행함.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본부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사무소 설립 근거조항은 따로 없음.

수도에 있는 본부 외에 지역사무소로서 코나키나발루(Kota Kinabalu)에 위치한 Sabah 사무소와 쿠칭(Kuching) 지역에 위치한 Sarawak 사무소가 있음. Sabah 사무소는 국무 총리실 연방 진정 사무소(Federal Complaints Bureau of the Prime Minister's Department)와 협력 하에 5개 지역(district)에서 진정 요청을 접수 받고 인권 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저개발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인권 의식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 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s)를 방문해 미취학 선주민 아동이 취학 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함. 또한, 매년 9월 말레이시아의 날(Malaysia Day)을 기념해 문화 교육 페스티벌(Cultural and Education Festival)을 조직하고 진행함. 쿠칭(Kuching)의 Sarawak 사무소는 말레이시아 국가선주민협회(Dayak Bidayuh National Association), Sri Aman 중앙교도소(Central Prison of Sri Aman), 경찰교육센터(Police Training Centre), Kuching 간호대학(College of Nursing, Kuching)과 협력하여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임무를 수행함<sup>2131)</sup>.

2130) <http://www.suhakam.org.my/communications-group/> (검색일: 2016.9.8.)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하며, 다만 예산 배분 방식만을 명시해 놓음.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법 제19 조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매년 할당된 예산을 제공받으며, 일체의 해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음. 그러나 위원회 인권 증진과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위원회의 승인 하에 개인 및 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sup>2132</sup>). 근거법상 재정 독립성 부재 원인은 위원회가 설립되던 때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으로 국회에서 근거법이 통과된 배경과 관련 있는데, 당시 정부는 외부 주체들과 법안에서 재정 독립성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다만, 외교부 장관이 국회 연설을 통해 위원회법은 파리 원칙(Paris Principle)을 준수해 독립성을 보장할 것임을 밝힘. 그러나 근거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 인권위의 독립성은 이후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2008년 ICC 심사에서 B등급 강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sup>2133</sup>).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함에 따라 아시아 시민 단체들이 말레이시아 인권위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말레이시아 국무총리 앞으로 보냄<sup>2134</sup>).

2131)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2』 p.38

2132)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Amendment) Act 2009 art.19(1)~(3) (이하, H.R.C.M.A.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법 제19조 1~3항) : (1)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Commission with adequate funds annually to enable the Commission to discharge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2) The Commission shall not receive any foreign fund.

(3)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the Commission may receive funds without any conditions from any individual or organisation on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wareness of and providing educat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s may be approved by the Commission.

2133) ANNI, 『ANNI Report on the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sia』, 2009, p.92

2134) <https://www.forum-asia.org/?p=19807> (검색일: 2016.9.8.)

<말레이시아-표 21> 말레이시아 인권위 2015-2016 예산

2015년	2016년
10,986,200 MYR(약 29억 3800만 원)	5,509,400 MYR(약 14억 7300만 원)

출처: 말레이시아 인권위 2015년 11월 16일자 보도자료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Chairman and Vice-Chairman)

개정 인권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현 위원장: 탄 스리 라잘리 이스마일 / Tan Sri Razali Ismail) 및 부위원장은 임명된 20명 이하의 위원들 가운데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말레이시아 대통령(Yang di-Pertuan Agong, Head of State)의 지명을 통해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함<sup>2135</sup>).

(나) 위원(member of the Commission)

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20명 이하의 위원을 임명하는데<sup>2136</sup>, 인권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을 고려해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해 임명해야 함<sup>2137</sup>. 또한, 국무총리는 위원을 추천하기 전, 동법 제11조 A(1)항이 규정하는 참고위원회(Committee to be consulted with regard to appointment)와의 협의 과정을 거침. 참고위

2135) H.R.C.M.A. art.6(1)&(3) (인권위원회법 제6조 1항, 3항) : (1) The Yang di-Pertuan Agong shall designate one of the members appointed under section 5 to be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3) A Vice-Chairman shall be elected by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from amongst themselves.

2136) H.R.C.M.A. art.5(2) (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 : (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Yang di-Pertuan Agong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who shall, before tendering his advice, consult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section 11(A).

2137) H.R.C.M.A. art.5(3) (인권위원회법 제5조 3항) : (3)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st men and women of various religious, political and racial backgrounds who have knowledge of, or practical experience in, human rights matters.

원회는 말레이시아 행정부 비서실장(Chief Secretary to the Government)을 수장으로 하여, 인권위원회 현 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sup>2138)</sup>, 국무총리 지명 3인은 동법 제11조 A(3)항에 따라 전임 판사 출신 및 인권위원회 전임 위원 출신 중에서 임명함. 단, 정치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거나 정당에 소속된 인물, 법 집행 권한을 지닌 사무관(enforcement officer) 출신은 임명할 수 없음<sup>2139)2140)</sup>.

(다) 사무국장(Secretary) 및 직원(Staff)

위원회 위원들이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위원회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사무관 및 직원들을 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명함<sup>2141)</sup>.

2138) H.R.C.M.A. art.11(A)(1) (인권위원회법 제11조 A(1)항) : (1)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5(2), there is established a committee consisting of the following persons: a) the Chief Secretary to the Government who shall be the Chairman; b)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and c) three other members, from amongst eminent persons, to be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2139) H.R.C.M.A. art.11(A)(3) (인권위원회법 제11조 A(3)항) :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 (1)(c) may include former judges and former members of the Commission.

(4) The following persons shall not be appointed as members of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1)(c): (a) any person who is actively involved in politics and registered with any political party; and (b) any person who is or was an enforcement officer.

2140) H.R.C.M.A. art.11(A)(7) (인권위원회법 제11조 A(7)항) : (7)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enforcement officer” means as officer of (a) any Ministry, Department, Agency or any other body set up by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a unit, section, division, department or agency of such Ministry, Department, Agency or body, conferred with enforcement functions by any written law or having enforcement powers; (b) a body established by a Federal law which is conferred with enforcement functions by that Federal law or any other written law; (c) a unit, section, division, department or agency of a body established by Federal law having enforcement functions; or (d) the joint service established under Article 133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ho is performing enforcement functions. (법 집행 사무관이란 a) 연방 정부가 설립한 부처, 국, 사무소와 그 이하 부서에서 성문법 규정에 의한 법 집행 권한 혹은 그러한 권력을 갖고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 b) 연방법 혹은 기타 성문법에 의해 법 집행 권한을 수행하는 기관 소속 사무관 c)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부서 및 소규모 조직에 소속되어 법 집행 기능을 가진 사무관 d)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133조가 규정하는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협력 기관 소속 사무관을 통칭한다.)

2141) H.R.C.M.A. art.16(1)&(2) (인권위원회법 제16조 1항, 2항) : (1) The Commission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인권위원회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위원들의 지위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함<sup>2142)</sup>.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편입되었으나<sup>2143)</sup>, 위원 활동은 독립성을 보장받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위원들은 3년간 임명되며, 같은 기간으로 한 번의 재임 가능함<sup>2144)</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위원회 소속 사무관 및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은 임기 동안 업무 수행 중 면책 특권을 가지며, 위원회가 발행하는 모든 보고서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도 구성될 수 없음<sup>2145)</sup>. 위원장 및 부위원장

---

shall appoint a Secretary to the Commission. (2) The Commission may appoint such other officers and servants as may be necessary to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discharge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2142) H.R.C.M.A. art.8 (인권위원회법 제8조 1~2항) : (1)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be paid such remuneration and allowances as the Yang di-Pertuan Agong may determine. (2) Every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paid allowances at such rates as the Yang di-Pertuan Agong may determine.

2143) ANNI, 『ANNI Report on the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sia』, 2009, p.94

2144) H.R.C.M.A. art.5(4) (인권위원회법 제5조 4항) :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hold offi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is eligible for reappointment once for another period of three years.

2145) H.R.C.M.A. art.18 (인권위원회법 제18조 1~3항) : (1) No action, suit, prosecution or proceeding shall be instituted in any court against the Commission or against any member, officer or servant of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any act, neglect or default done or committed by him in such capacity provided that he at the time had carried out his functions in good faith. (2) Any member, officer or servant of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produce in any court, any document received by, or to disclose to any court, any matter or thing coming to the notice of, the Commission in the course of any inquiry conducted by the Commission under this Act. (3) No action or proceeding, civil or criminal shall be instituted in any court against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any report made by the Commission under this Act or against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publication by such person of a substantially true account of such report.

포함 위원들은 위원회법 제10조에 따른 자격 상실 조건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음. 자격 상실에 해당되는 조건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와 상의 끝에 해당 위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위원이 위원회의 허락 없이(위원장의 경우는 국무총리의 허가)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가 해당됨. 대통령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권고에 근거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 국무총리는 a) 인권위 위원 자격에 어긋나는 다른 업무 혹은 소속으로 유급 채용됐을 경우 b) 위원회 평판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c) 인권위원회법과 어긋나는 행위 또는 위원으로서 의무와 충돌하는 행위를 했을 때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sup>2146)</sup>. 이와 관련해 2009년 개정 인권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국무총리의 위원 재임명 및 해임 권한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위원을 재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위원의 임무 및 역할 수행 평가를 위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sup>2147)</sup>.

2146) H.R.C.M.A. art.10 (인권위원회법 제10조) : A member of the Commission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Yang di-Pertuan Agong if. (a) the member is adjudged insolvent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 the Yang di-Pertuan Agong, after consulting a medical officer or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member is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ble of continuing his office; 10 Laws of Malaysia ACT 597 (c) the member absents himself from three consecutive meetings of the Commission without obtaining leave of the Commission or, in the case of the Chairman, without leave of the Minister; (d) the Yang di-Pertuan Agong,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member. (i) has engaged in any paid office or employment which conflicts with his duties 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ii) has misbehaved or has conducted himself in such a manner as to bring disrepute to the Commission; or (iii)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this Act and in conflict with his duties 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2147) H.R.C.M.A. art.5(5)&(6) (인권위원회법 제5조 5~6항) : (5) The Prime Minister may determine suitable mechanisms, including appropriate key performance indicator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and duties under this Act. (6) Such assessment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 by the Prime Minister before tendering his advice to the Yang di-Pertuan Agong for the reappointment of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under subsection (4); and (b) for the removal of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개인 진정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피해자 구제, 정부 정책 및 법률 감시로 대표되는 인권 보호 기능과 인권 교육, 다양한 토론회, 연구 등 인권 증진 역할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관련 활동들을 수행함.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인권위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 논의를 통해서 역할을 확장해오고 있음.

(1) 진정 접수(complaint)에 따른 조사/직권 조사(inquire on own motion)

말레이시아 인권위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관한 개인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며, 상황과 사안에 따라 진정이 들어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 (inquire on own motion)를 실시함<sup>2148</sup>.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 건이 이미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안일 경우 사건을 각하함<sup>2149</sup>.

조사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증거를 요구하고 입수할 권한, 증인 출두 요청, 공공 기관 혹은 담당 공직자에 대한 증거 제출 요청 권한이 있음<sup>2150</sup>. 위원

---

2148) H.R.C.M.A. art.4(d) (인권위원회법 제4조 d항) : 4. In furtherance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Malaysia,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d) to inquire into complaints regarding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referred to in section 12.

H.R.C.M.A. art.12(1) (인권위원회법 제12조 1항) : (1) The Commission may, on its own motion or on a complaint made to it by an aggrieved person or group of persons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an aggrieved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inquire into an allegation of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f such person or group of persons.

2149) H.R.C.M.A. art.12(2) (인권위원회법 제12조 2항) : (2) The Commission shall not inquire into any complaint relating to any allegation of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hich. (a) is the subject matter of proceedings pending in any court, including any appeals; or (b) has been finally determined by any court.

2150) H.R.C.M.A. art.14(1)(a~c) (인권위원회법 제14조 a~c항) : The Commiss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an inquiry under this Act, have the power. (a) to procure and receive all such evidence, written or oral, and to examine all such persons as witnesses, as the Commission thinks necessary or desirable to procure or examine; (b) to require that the evidence, whether written or oral, of any witness be given on oath or affirmation, such oath or affirmation being that which could be required of the witness if he were giving evidence in a court of law, and to administer or cause to be administered by an officer authorized in that behalf by the Commission an oath or affirmation to every such witness; (c) to summon any

회가 얻은 증거는 말레이시아 증거법(Evidence Act 1950, Act 56)에 따라 민·형사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sup>2151</sup>). 또한, 구금시설에 구금된 증인일 경우 해당 시설에 접근하거나 증인에게서 증언 및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함<sup>2152</sup>).

(2) 구금시설 방문 조사

인권위는 말레이시아 내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권한을 가짐<sup>2153</sup>). 구금시설 방문 조사는 구금시설에서의 사망 통계를 비롯하여 시설 내 위생과 수감자 건강 상태, 교도관들의 업무 환경 등을 다루며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를 관련 기관에 전달함.

(3) 피해자 구제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위원회법 제4조 2(d)항에 따라 진정 접수와 조사 또는 직권 조사 후 권고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기능을 수행함<sup>2154</sup>).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법은 가해자에 대한 기소 권한 또는 기소 요청 권한을 명시하지 않음. 위원회의 피해자 구제는 대부분 위원회의 당사자 출두 요청에 의한 원탁회의(Round Table Discussion) 개최 - 당사자 간 협의

---

person residing in Malaysia to attend any meeting of the Commission to give evidence or produce any document or other thing in his possession, and to examine him as a witness or require him to produce any document or other thing in his possession;

2151) H.R.C.M.A. art.14(1)(d) (인권위원회법 제14조 d항) : (d) to admit notwithstanding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Evidence Act 1950 [Act 56], any evidence, whether written or oral, which may be inadmissible in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2152) H.R.C.M.A. art.14(2) (인권위원회법 제14조 2항) :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c), where a person summoned is a person under detention under any other written law, such summons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place of detention.

2153) H.R.C.M.A. art.4(2)(d) (인권위원회법 제4조 2-d항) : (d) to visit places of detenti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s prescribed by the laws relating to places of detention and to make necessary recommendations;

2154) H.R.C.M.A. art.4(2)(b) (인권위원회법 제4조 2-b항) : (b) to advise the Government and/or the relevant authorities of complaints against such authorities and recommend to the Government and/or such authorities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settlement of dispute) 혹은 갈등 해결(resolution) - 협상 사안 준수를 비롯한 인권 원칙 준수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이루어짐.

(4) 정부 정책 및 법률 자문

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인권 관련 법안 및 정책 입안 시, 혹은 행정 절차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sup>2155</sup>. 정부 부처가 법안 혹은 정책 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위원회를 초청해 의견을 구하며,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정책 및 법안 수립 혹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함. 위원회는 해당 법률 및 정책이 우선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준을 두고 판단함. 정부 정책 및 법률을 위한 자문 기능으로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그 이행에 대한 권고 역할이 포함 됨<sup>2156</sup>.

(5) 집회 현장 모니터링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평화적 집회법(Peaceful Assembly Act 2012)<sup>2157</sup>이 발효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 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권 모니터링을 위해 집회 현장을 방문함. 평화적 집회법은 경찰의 사전 허가(police permit)를 받지 않고 다만 집회 10일 전에 사전 고지만으로 집회 시위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집회 시위 유지를 위한 경찰의 시민 보호 의무를 강화함.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집회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경찰이 법을 준수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나아가 원활한 집회 진행을 도모하는지(facilitate) 등을 감시함.

---

2155) H.R.C.M.A. art.4(1)(b) (인권위원회법 제4조 1-b항) : (b) to advise and assist the Government in formulating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directives and procedures and recommend the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2156) H.R.C.M.A. art.4(1)(c) (인권위원회법 제4조 1-c항) : (c) to recommend to the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subscription or accession of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2157) Peaceful Assembly Act 2012

(6) 인권 교육

인권 의식 증진과 인권 교육 의무는 위원회법 권한과 기능 섹션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sup>2158</sup>),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본부와 지역 사무소, 그 외 지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함. 교육 대상은 대중, 경찰과 공무원, 구금시설 교도관, 선주민(indigenous people)을 포괄하며, 말레이 인권위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시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임.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 교육부와 공동으로 권장할만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Human Rights Best Practices Programme, HRBPS)을 시작해 적용 지역 및 학교를 확대해 왔음<sup>2159</sup>).

(7) 연구

위원회는 인권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동시에 인권 보호 기능인 조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함<sup>2160</sup>). 말레이시아 인권위의 연구 보고서는 특정 인권 사안과 관련한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 사례들을 근거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 주제별 인권 사안 보고서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함.

(8) 인권 증진 행사 - 컨퍼런스, 세미나, 인권상 시상식

위원회는 인권 증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 인권 논의의 장을 마련할 뿐 아니라<sup>2161</sup>), 2011년부터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인권상(Human Rights Awards)을 제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해왔으며 이 상을 말레이시아 국내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집단에게 수여함으로써 시민단체, 개인,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 분야에 대한 참여를 독려

2158) H.R.C.M.A. art.4(1)(a) (인권위원회법 제4조 1-a항) : (a) to promote awareness of and provide educat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2159) <http://www.suhakam.org.my/human-rights-best-practices-in-schools-hrbps/> (검색일: 2016.9.12.)

2160) H.R.C.M.A. art.4(2)(c) (인권위원회법 제4조 2-c항) : to study and verify any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2161) H.R.C.M.A. art.4(2)(a) (인권위원회법 제4조 2-a항) : (a) to promot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o undertake research by conducting programmes, seminars and workshops and to disseminate and distribute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함<sup>2162</sup>).

(9) 국제 협력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보호체제를 위시한 국제 및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 시스템과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설립 배경으로 두고 있음. 위원회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동남아시아 국가인권기구 포럼(Southeast Asi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um, SEANF), 아세안 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등 아시아 지역 연합체 및 인권보호체제와의 협력을 활발히 하며 회의, 세미나, 콜로키움을 비롯한 행사를 주최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함<sup>2163</sup>).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1)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이며, 이와 관련해 조사 업무와 갈등 당사자 간 갈등해결, 기소 요청을 포함한 가해자 처벌 등 구제 기능을 가짐. 처벌 관련 강력한 권한은 없고,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함. 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함.
- (2) 집회 시위 현장을 방문해 공권력이 평화적 집회법이 보장하는 인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으로, 이는 부패, 선거 부정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고질적 병폐를 비판하는 시민 집회 및 시위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구금시설 수감자들이 직접 진정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 기관.
- (3)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주로 갈등 조정 등 비사법적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활동을 수행하나, 조사 및 구제 작업 중 공적 성격이 강한 활동들을 실시함. 조사 과정은 크게 공공 청문회(public hearing)와 비공개 조사 방식으로

---

2162) <http://www.suhakam.org.my/berita-peristiwa/human-rights-award-2014/background-objectives/> (검색일: 2016.9.12.)

2163) <http://www.suhakam.org.my/regional-international/> (검색일: 2016.9.12.)

로 수행되는데 공공 청문회 방식은 해당 사안을 말레이시아 사회에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효과를 지님.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진정 요청과 관련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거나 구조적 인권 침해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판 사례에 참고인 혹은 변호인 자격으로 감시 보고(watching brief)를 통해서 개입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2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8년 심사에서 B등급을 받은 이후, 2009년 11월, 2010년 10월, 2015년 11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21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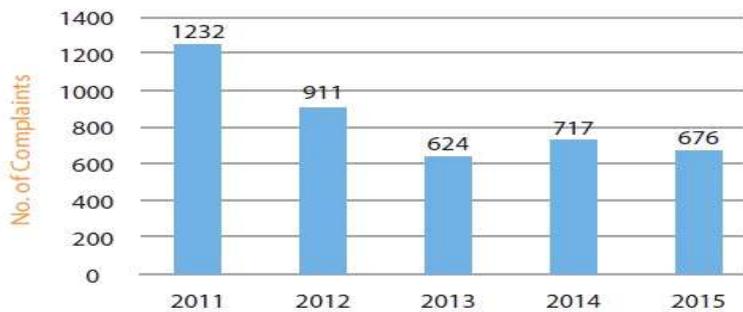
2)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활동 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진정(complaint)에 따른 조사/직권 조사(inquire on own motion)

(가) 진정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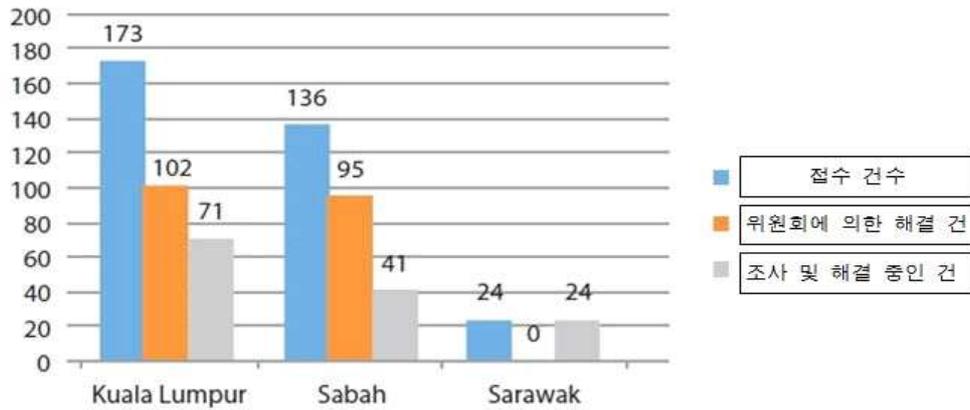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2014년부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진정 접수를 시작해 대중의 진정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최근 몇 년 동안의 위원회 진정 접수 건수 추이와 침해 종류, 진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출처: 말레이시아 인권위 2015 연간보고서, p.79

[말레이시아-그림 45] 2011년-2015년 진정 접수 건수

2164)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말레이시아 인권위 2015 연간보고서, p.80

[말레이시아-그림 46] 2015년 지역 사무소 포함 진정 추이

<말레이시아-표 22> 2013년~2015년 진정 건수 및 갈등 해결 전수

	2013년	2014년	2015년
위원회 갈등 해결	173건	195건	197건
각하	221건	269건	343건
총 접수 건수	624건	717건	676건

출처: 말레이시아 인권위 2013 연간보고서 p.41, 2014 연간보고서 p.45, 2015 연간보고서 p.80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위원회 진정 접수 및 갈등 해결 추이를 보면,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 성공률을 점점 증진시켜 왔음.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사안 중 지역 사무소 포함 선주민 땅에 대한 권리 관련 진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체포와 같은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많으며, 난민 인권이 그 뒤를 이음.

<말레이시아-표 23> 2015년 진정 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사안

진정 사안	본부	지역 사무소 (Sabah, Sarawak)
선주민 땅에 대한 권리(Right to native customary land)	9건	38건
고문을 포함한 비인간적 대우(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31건	-
자의적 구금과 체포(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18건	10건
난민 인권(Right to seek asylum and refugee status)	24건	-
의식주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standard of living - food, clothing, housing, healthcare)	12건	6건
인신의 자유 및 안전(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12건	-
노동권 및 이주노동자 인권(Right to work/employment and migrant workers' rights)	10건	2건

출처: 말레이시아 인권위, 2015 연간보고서

(나) 조사(Inquiry)

말레이시아 인권위의 조사 및 구제 모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공개 청문회(public hearing)를 통한 공개 조사 및 구제 절차, 공개 청문회 없이 진행되는 비공개 절차가 있음<sup>2165)</sup>. 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관한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음<sup>2166)</sup>. 그러나 위원회법은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증거 서류 제출 요청에 대해 지체(delay) 없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 위원회의 증거 요청에 대한 초기 답변 후에도 2차·3차 요청에 따를 의무 등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이는 자주 위원회 조사 과정의 지

2165) H.R.C.M.A. art.13 (인권위원회법 제13조) : (1) Where an inquiry conducted by the Commission under section 12 does not disclose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 Commission shall record that finding and shall forthwith inform the person making the complaint.

(2) Where an inquiry conducted by the Commission under section 12 discloses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power to refer the matter, where appropriate, to the relevant authority or person with the necessary recommendations.

2166)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110

연으로 이어짐<sup>2167</sup>).

(다) 직권 조사

인권위는 중요한 인권 사안의 경우 진정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조사 팀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음. 지금까지 직권 조사는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인권위가 접수한 사례들 중 공통된 특정 사안 혹은 구조적 침해 사례, 말레이시아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 같은 공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 실시했음. 직권 조사 활동은 대부분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공 조사(public inquiry)의 이름으로 이뤄짐. 말레이시아 인권위가 실시한 직권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음<sup>2168</sup>).

2001년: 케사스 고속도로 사고에 대한 직권 조사(Inquiry On Its Own Motion Into The November 5th Incident At The Kesas Highway)

2003년: 1960년 제정 국내 안보법 체제 하의 구금시설 현황에 관한 공공 조사(Report of the Public Inquiry Into the Conditions of Detention Under the Internal Security Act 1960)

2004년: 쿤다상 선주민 지역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공공 조사(Kundasang Public Inquiry Report)

2006년: 구금시설에서 S. Hendry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공공 조사(Report Of Suhakam Public Inquiry Into The Death In Custody Of S. Hendry) /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 시위 진압 사례에 대한 공공 조사(Report of SUHAKAM Public Inquiry Into The Incident at Kuala Lumpur City Centre)

2008년: Bandar Mahkota Cheras 지역 공권력 남용에 대한 공공 조사(Report Of Suaram Observations On The Public Inquiry Into The Allegation Of Excessive Force During The Incident At Bandar Mahkota Cheras)

2009년: 쿠알라룸푸르 법조 지원 센터 소속 변호사 5인의 체포와 구금 사례

---

2167) Id. p.80

2168) <http://www.suhakam.org.my/pusat-media/sumber/laporan-siasatan-awam/>  
(검색일: 2016.9.12.)

에 대한 공공 조사(Report Of SUHAKAM Public Inquiry Into The Arrest And Detention Of Five Lawyers Of The Kuala Lumpur Legal Aid Centre)

2011년: 집회 과정에서의 과잉 진압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공 조사 (Report of the Public Inquiry into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Use of Excessive Force Prior to and During the Assembly)

2013년: 선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국가 조사(Report of The National Inquiry Into The Land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2) 구금시설 방문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 및 모니터링 목적의 구금시설 접근과 조사 권한을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에게만 허용함. 이 조사권은 완전한 권한은 아니며 방문에 대한 당국의 사전 허가가 전제된 권한임. 말레이시아 구금시설은 수감자에게 오가는 모든 물품을 통제하므로 구금시설의 수감자가 인권위에 보내는 진정이 구금시설 당국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는 없음<sup>2169</sup>). 따라서 말레이시아 인권위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는 국내 국가기관에 의한 유일한 감시 수단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위원회의 방문조사 대상은 교도소, 경찰 내 유치장, 이주민 구금시설 등을 포함하며, 조사 성격은 정기 방문(periodic visit), 특정 사례 조사 목적의 방문(case-based visit)이 있음. 방문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국에 권고를 전달함.

### (가) 방문조사 활동 추이

2013년에는 총 30개의 구금시설 방문하여(교도소: 12, 이주민 시설: 8, 유치장:10) 수감자들의 건강과 시설 위생 상태,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및 관리,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점검함.

2015년, 총 24개의 시설 방문하여 수감자들의 건강, 처우, 교도관들의 노동 환경 등을 점검한 후 수감자 과다 수용으로 인한 문제, 교도관의 부족,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권고함.

---

2169) SUHAKAM(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Malaysian Journal on Human Rights 2014』, p.131

(나) 구금시설 특별 조사

위원회는 그간의 정기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금시설 관련 특정한 사안에 관한 특별 조사 혹은 정부와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함. 2013년에는 이주민 구금시설에서의 미성년자 인권 실태에 관해 그동안 정기방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초청해 원탁토론(Round Table Discussion)을 개최함<sup>2170</sup>. 2014년에는 구금시설의 건강권(Right to health in Prison)을 주제로 말레이시아의 구금시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4086명의 수감자, 646명의 교도관, 37명의 구금시설 의료원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함<sup>2171</sup>. 2015년에는 미성년 수감자를 위한 대안 구금시설 설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 정부 이주부서(Immigration Department), 여성과 가족 공동체 개발부(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국제구금시설연합(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등 다양한 주체들을 초청해 대안시설 설립에 관해 논의함. 또한, 2014년에 시작한 구금시설 내 사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부에 이와 관련한 권고를 전달함<sup>2172</sup>.

(3) 집회 현장 모니터링

인권위는 집회 현장을 방문해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 여부와 인권 원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집회 현장 방문은 연 평균 10건 이내의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짐. 집회 현장은 시위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내 선거, 말레이시아 총선 등 집회의 자유에 해당되는 모든 시민 참여 현장을 포함함.

(가) 모니터링 사례

2012년에는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학(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내 선거를 비롯해 11개의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으며, 2013년에는 3개의 집회 현장 모니터링을 비롯해 2012년 4월 28일 집회에서 발생한 과잉진압과 인권 침해에 대한 공공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에 권고함.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경찰이 평화적

2170)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3』 p.52

2171)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4』 p.49

2172)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74

집회법(Peaceful Assembly Act 2012)에 따른 집회 절차 기준(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준수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엄수할 것을 권고함. 2014년에는 4개의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으며 2015년에는 6개의 현장을 모니터링함. 2012년 평화적 집회법이 발효된 이후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622 Himpunan Hijau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현장에서 공권력이 남용됐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16명이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음. 위원회는 평화적 집회법 위반에 대한 답변을 경찰에 요구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함<sup>2173</sup>).

#### (4) 정책 자문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인권위법상 정부 정책 및 법률 자문에 관한 명시적 권한을 위임받음. 위원회의 자문 역할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정책 담당 부처 및 관련자들과의 정책과 법률 검토, 원탁토론, 보고서 제출, 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의 이행 점검(follow-up)의 방식으로 이뤄짐.

##### (가) 법안 검토(Review of Laws)

2013년: 2013 개정 범죄 예방법(Prevention of Crime Amendment and Extension Act 2013), 2013 개정 형법(Penal Code Amendment Act 2013), 2013 개정 안전위반법(Security Offences Special Measures Amendment Act 2013), 개정 형사절차법(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 Bill 2013), 개정 증거법(Evidence Amendment Bill 2013) 등 5개의 개정안을 검토함.

2014년: 인종 및 종교 혐오범죄 처벌법안(Racial and Religious Hate Crimes Bill) 도입 검토, 국가 통합과 화해법안(National Harmony and Reconciliation Bill) 도입 검토, 위험약물금지법(Dangerous Drugs Act) 도입안 검토,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입국 및 매매 금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nd Anti-Smuggling of Migrants Act) 개정안 검토 등 4개 법안 도입 및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함.

---

2173)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4』 p.52

2015년: 테러방지법안(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15) 검토, 내란  
선동처벌법(Sedition Act 1948) 개정안 검토.

(나) 원탁토론

2014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주최 위험약물금지법 도입  
에 관한 토론회와 인신매매와 이주민 매매 금지법 도입안 검토를 위  
한 회의에 참석함.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 (1)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설립부터 2004년까지 외무부 소속 기관이었으나,  
2004년 이후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재편됨. 국무총리는 위원 선임 및  
재임과 해임에 강한 권한을 가지며, 예산 또한 국무총리실의 결정과 이에  
대한 국회 승인 과정을 거쳐 배분됨.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저  
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특히 2016년 예산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위원회와 논의 없이 50% 삭감  
이라는 결정을 전달해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연합 등 국제 연대체들이 항의 서한을 보냄. 국무총리실에 대  
한 전적인 예측성은 말레이시아 인권위의 독립적 권한 강화를 위해 개선  
또는 해결해야 할 부분임을 ICC 또한 권고한 바 있음<sup>2174)</sup>.

- (2) 위원회법 제21조는 인권위의 연간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  
여, 위원회는 설립 후 지금까지 연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왔음. 이는 원  
칙적으로 국회에서 인권위의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의 정책 검토  
의견 및 인권 사안에 대한 권고를 논의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나, 지금까  
지 국회에서 인권위가 제출한 연간보고서를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  
음<sup>2175)</sup>. 2013년에 위원회는 국회와의 관계 및 소통 강화, 국회에서의 위원  
회 참여와 발언권 강화를 위한 국회선정위원회(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 설립을 제안함. 2015년 국무총리실이 법안 통과 전 사전 절차  
강화(process of pre-legislative scrutiny of Parliamentary Bills)를 발표함  
에 따라,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서 위원회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2174) ANNI, 『ANNI Report on the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sia』, 2009, p.94-95

2175)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4』 p.4

열림<sup>2176)</sup>.

### 3)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

위원회는 개인의 진정 요청에 응하거나, 조직이나 단체, 기관이 공문(memorandum) 형식으로 접수하는 진정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 구제 역할을 수행함.

#### (1) 갈등해결(resolution)을 통한 구제

(가) 2014년 노동자들의 조합권이 침해된 사례를 접수 받고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처(Department of Labour), 노동조합 관련 부처(Department of Trade Union Affairs),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말레이시아 고용주 연맹(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노동조합의회(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을 포함한 원탁토론을 개최해 협상을 시도함. 원탁토론에서 산업관계부가 조합의 진정 요청에 대한 응답을 지체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됨.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 Act 177)상 아직 노사갈등 관련 진정 요청과 그 대응의 지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산업관계부처에 조합의 진정 요청에 적절한 시간 내에 응답할 의무를 포함시키는 산업관계법 개정안을 제안함. 2014년 말레이시아 인권위 연간보고서에 대한 정부 기관과의 대화(Dialogue Session with Government Agencies on SUHAKAM's 2014 Annual Report)에서 산업관계부는 노동조합의 조합권과 관련한 모든 진정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2015년에 58건의 사례를 검토하고 논의했음을 밝힘<sup>2177)</sup>.

(나) 2014년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내 선주민 거주 지역인 Ulu Telom의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진정 요청을 이 지역 선주민들로부터 접수함. 위원회는 이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Tenaga Nasional Berhad(TNB)에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먼저 거칠 것을 골자로 한 서신을 보냄. 이에 TNB는

2176)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212

2177)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84

위원회에 위원회와 말레이시아 선주민 개발부서(Department of Orang Asli Development, JAKOA) 사무관이 참석한 개발 계획 설명회를 제안함.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개발 계획이 아직 환경 취약성 검토(feasibility study)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검토 완료 후 지역 주민과의 논의 자리에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초대할 것을 요청함. 이후 TNB로부터 환경 취약성 검토를 완료했음을 보고받은 후, 선주민개발부서(JAKOA)로부터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 선주민의 문화 및 전통과 함께 교육권, 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권리, 경제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약속받음<sup>2178</sup>).

(2) 책임자 처벌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나 처벌 요청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인권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사망, 고문, 인신매매 등 심각한 침해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의 기소 및 조사를 요청하기도 함.

나) 교육

말레이시아 인권위의 교육 활동에는 크게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 과정 내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경찰과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 이러한 교육 활동은 교육부, 경찰과 같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고 있음.

(1) 법 집행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인권 원칙들에 맞게 국내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인권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2002년부터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에 있는 경찰교육부(Police Training Division of Bukit Aman)와 협력해 일상 업무 및 경찰의 임무와 책임에 관하여 인권 원칙을 준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음. 2007년부터는 RELA 지역 경찰들과 자원 활동가들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2178)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97

음. 매년 150여 명의 경찰 및 자원 활동가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15년에 총 27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구금시설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미성년자와 여성, 아동, 수감자의 재활과 교육 같은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음. 2015년에는 구금시설 내 건강권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권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중하급 교도관들 약 150명을 위한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했음. 또한,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공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인권 교육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인권, 장애인, 아동,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역 공무원 을 위한 교육 중에는 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사례들을 공유하고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등의 문제들을 해결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됨<sup>2179)</sup>.

(2) 학교 인권 교육(Human Rights Best Practices Program)

위원회가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 교육부(Mistry of Education)와 공동으로 학교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아동 인권을 비롯한 인권 존중을 일상에서 자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정규 교과 과정 또는 활동들에서도 인권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아동과 교사들이 겪은 인권과 관련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학생들 사이에 종교,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음. 2009년 첫 시행 때는 5개 학교에서 시작해 2011년 이후부터는 11개 학교, 2015년에는 152개 학교까지 참여 학교를 늘려서 2016년 현재까지 총 222개 학교들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함<sup>2180)2181)</sup>.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별히 선주민 지역 아동들의 교육권 과 아동 인권에 집중하여, 선주민 지역 학교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를 포함한 이 지역 아동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레이시아 선주민 개발부(Orang Asli Development Department of

2179) <http://www.suhakam.org.my/training-for-enforcement-agencies/> (검색일: 2016.9.18.)

2180)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2181) <http://www.suhakam.org.my/human-rights-best-practices-in-schools-hrbps/> (검색일: 2016.9.18.)

Malaysia, JAKOA), 교육부와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JAKOA 내에 선주민 지역 학교 예산 배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 하도록 하고, 유엔 선주민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하는 선주민 언어를 배울 권리를 포함한 선주민 아동의 교육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함<sup>2182</sup>).

#### 다) 홍보

##### (1) 인권상(Human Rights Awards) 시상식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인권 의식 증진과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에 인권상(Human Rights Awards)을 제정해 시상해왔음. 이 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인권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수여하며, 개인상(Individual Awards), 단체상(Organisation/Group Awards), 미디어 상(Media Awards), 정부 기관상(Government Awards), 기업상(Business Awards) 등 5개 수상자 카테고리를 나누어 시상함. 2015년에는 개인 부문에서 말레이시아 내 취약 계층의 권리와 인종 차별 근절에 기여한 Jerald Joseph이, 그룹 부문에서 여성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페렉 소사이어티(The Perak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를 포함한 5개 주체들이 상을 수상함<sup>2183</sup>.

##### (2) 인권 교육 만화

2015년 5월에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권 교육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제작함. 'ATHAM'이라는 제목의 이 애니메이션은 총 6분으로 아동이 인권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었음<sup>2184</sup>. 제목 ATHAM은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인 Human Rights Best Practices in Schools의 말레이어 버전의 앞 글자들로 이루어진 약어임. 애니메이션 제작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150개 학교에 애니메이션을 배포했으며, 위원회는 앞으로 말

2182) SUHAKAM(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nnual Report 2015』, p.157-158

2183) Id. p.139

2184) <https://www.youtube.com/watch?v=KgBEDEBglUI> (검색일: 2016.9.18.)

레이시아 선주민들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들도 해당 지역 학교들에 배포할 예정임<sup>2185</sup>).

라) 정책 개선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은 편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법 개정과 입법에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보다는 국가가 주도한 인권 관련 프로젝트에 후속 조치로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가 정책에 국제인권협약을 활용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함.

(1) 선주민 토지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Native Land Rights) 설립 제안

위원회는 2013년 선주민의 토지권에 관한 국가 조사(The National Inquiry Into The Land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보고서에서 토지를 둘러싼 선주민과 당국 사이의 갈등, 선주민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회의 탄압 등을 해결할 선주민 권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 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비록 정부가 이 보고서의 권고를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2015년에 상원 의원인 Datuk Paul Low가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를 수장으로 하는 선주민 토지 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Native Land Rights) 설립을 발표했음<sup>2186</sup>).

(2)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프레임워크(Framework on a National Action Plan NA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 Malaysia) 수립

인권위는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국제 기준을 도입하고 국내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사회적 방법을 모색해왔음. 위원회는 유엔 말레이시아(United Nations Country Team in Malaysi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에 국무총리실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전략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on a 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출범시켰음. 위원회는 프레임워크

---

2185) Id. p.140

2186) Id.

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첫해인 2015년 동안 5개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시행함<sup>2187)</sup>.

마) 사법부 의견 제출

위원회는 인권 사안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참고인 혹은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출두하여 사안에 대한 감시 보고(watching brief)를 함으로써 사법 절차에 개입 함. 위원회는 민사 법원,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 연방법원(Federal Court)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단계의 법원에서 감시 보고를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법정변호사회(Malaysian Bar Council)에서 소송 지원 변호사들을 지원함.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감시 보고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7개 사건에서 감시 보고를 수행했으며, 2015년에는 내란선동법 위반과 관련한 공안 검사 대 Abdullah Zaik 사건(Deputy Public Prosecutor v Abdullah Zaik; the case concerned the Sedition Act 1948), 선주민 토지권과 관련한 Sarawak 지역 숲 소장 대 TR Sandah 외 선주민 사건(Director of Forest Sarawak & Anor v TR Sandah A/K Tabau & Others; the case concerned Native Customary Rights)을 비롯한 총 9개 사건에 감시 보고를 통해 사법적 의견을 제출함<sup>2188)</sup>.

바) 주요 인권 이슈

(1) Bersih 운동과 집회 결사의 자유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줄곧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 없이 사실상 다수 여당에 의한 지배 체제를 유지해왔음. 그 원인으로 공정하지 않은 절차, 개표에서의 부정행위 등 선거 과정의 불법적 행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2007년 말레이시아의 선거 시스템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됨. 이 시위는 2010년과 2012년, 2015년에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특히 Bersih 2.0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주도 하에 이 운동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음

---

2187) Id. p.36

2188) Id. p.56

며, 2013년 총선에서 다시 집권 여당이 승리하자 많은 시민들이 선거 부정을 의심하며 운동은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그 과정에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시위대에 대한 고소 사건이 발생했고, 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국내안보법을 재도입함. 이와 관련해 새로 취임한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Tan Sri Razali Ismail 위원장이 Bersih 2.0을 비롯한 운동 주체들이 과격한 방법보다는 좀 더 복잡적이고 영리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킴. 시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고질적인 선거 부정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정부패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시위의 과격함을 지적했다는 비판을 받았음<sup>2189</sup>).

####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 (1) UPR 및 조약기구 심사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 제출

인권위는 2009년 유엔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말레이시아 정부 첫 번째 심사를 위해 국가인권기구 보고서를 제출함. 이 보고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범죄 예방법들의 문제점과 사법 절차 개혁, 구금시설 개혁,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인권 침해, 선거 부정 등 말레이시아 국내 인권 사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sup>2190</sup>. 2013년 두 번째 심사에서도 인권기구 보고서를 제출해 아동, 여성, 장애인, 선주민, 이주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고 정부 비판적인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여러 보안법들이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함<sup>2191</sup>.

##### (2) 국제협력

말레이시아 인권위는 영연방 국가인권기구 포럼(COMMONWEALTH FORUM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2189) <http://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opinion/2016/08/27/the-right-to-protect/> (검색일: 2016.9.19.)

<http://www.themalaymailonline.com/malaysia/article/i-support-bersih-right-to-protect-suhakam-chief-clarifies> (검색일: 2016.9.19.)

2190) <http://www.suhakam.org.my/regional-international/upr/first-cycle-2009/> (검색일: 2016.9.18.)

2191) <http://www.suhakam.org.my/regional-international/upr/second-cycle-2013/> (검색일: 2016.9.18.)

CFNHRI) 회원으로서 협력 활동들에 참여해오고 있는데, 2013년에는 의장국을 맡아 2015년 말까지 임기를 수행했음. 의장국으로서 2015년에는 조기 결혼 및 강제 결혼,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주최했으며, 영연방 국가인권기구들 간 격년 회의(CFNHRI Biennial Meeting)에서 조기 및 강제 결혼 근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주민 인권 등을 주제로 토론한 후 영연방 국가 내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가인권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함<sup>2192)</sup>.

#### 4)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

##### (1) 설립

2008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부패법(Malaysian Anti-Corruption Act 2009)을 제정하고, 2009년에는 이에 근거해 기존의 반부패사무소(Anti Corruption Agency, ACA)를 확대한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함. 반부패위원회는 정부 기구이지만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의 부패, 권력 남용, 잘못된 관행 등을 감시하고 근절하는 역할을 부여받음<sup>2193)</sup>.

#####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반부패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과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자 조직은 '검수와 균형(check and balance mechanism)'으로서, 이는 5개의 외부 감시 조직으로 구성됨. 5개 조직으로는 반부패자문이사회(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부패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Corruption), 진정위원회(Complaints Committee), 기능감시패널(Operations Review Panel), 협의와 부패방지 패널(Consultation and Corruption Prevention Panel)가 있음<sup>2194)</sup>.

---

2192) Id. p.127

2193) <http://www.sprm.gov.my/index.php/en/corporate-info/mengenai-sprm/organisation-info/organisation> (검색일: 2016.9.18.)

(3) 주요업무

반부패법(MACA 2009) 제7조에 근거해 위원회는 부패 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대상 부패 범죄로는 반부패법이 정의하는 부패죄(offence), 반부패법이 정의하는 부패 행위 시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해당됨. 고발된 부패 행위와 관련이 있는 관행, 시스템, 해당 기관의 절차 등을 규명하고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부패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기관의 관행 및 시스템 변화를 위한 조언을 기관장에게 제공하며 부패에 관한 대중 교육을 실시함<sup>2195</sup>).

4. 필리핀

필리핀 국가 정보 <sup>2196</sup>	
면적	300,400km <sup>2</sup> (한반도의 1.3배)
인구	1억100만명(2015년)
수도	마닐라
정치형태	대통령제(6년 단임제)
민족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주요언어	타갈로그어(Tagalog), 영어
주요종교	가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GDP	국내총생산(GDP) : 2,846억 불
	1인당 GDP : 2,875불

1)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CHRP)<sup>2197</sup>

2194) <http://www.sprm.gov.my/index.php/en/corporate-info/mengenai-sprm/organisation-info/organisation> (검색일: 2016.9.18.)

2195) <http://www.sprm.gov.my/index.php/en/corporate-info/mengenai-sprm/organisation-info/functions> (검색일: 2016.9.18.)

2196) 출처: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60108/1\\_71696.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60108/1_71696.jsp?menu=m_40_20_20) (검색일 2016.7.26)

- (2) 설립연도: 1987년 5월 5일<sup>2198)</sup>
- (3) 설립배경: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는 1986년 대통령 코라손 아퀴노(Persident Corazon Aquino)가 만든 대통령인권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Human Rights)을 모체로 함.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는 1987년 헌법 공포로 이후 독립된 기구로 설립됨.<sup>2199)</sup>
-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1987년에 제정된 필리핀헌법 제13장의 제17조, 제18조, 제19조(The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ARTICLE XIII, section 17, section 18, section 19)<sup>2200)</sup>에 근거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 헌법기구로서, 이후 1987년 5월 5일에 제정된 행정명령 제163호(Executive Order No. 163)<sup>2201)2202)</sup>를 구체적인 설치 및 조직운영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파리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짐.
- 위원회 설립이후 2012년 기준으로 8개의 위원회 관련법이 통과됨.<sup>2203)</sup> 고문방지 관련법인 공화국법 제9851호(Republic Act No. 9851)와 공화국법

2197) 필리핀인권위원회 현재 홈페이지는 <http://www.chr.gov.ph/> 이나, 현재 미완성이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임. (검색일 2016.7.26)

2198) 출처: <http://198.23.173.74/chr/who-we-are/> (검색일: 2016.9.22.)

2199) Cardenas, S. (2014). Chains of justice: the global rise of state institutions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97,98

2200) 출처: <http://www.gov.ph/constitutions/1987-constitution/> (검색일: 2016.7.26.)

2201) 출처: <http://www.gov.ph/downloads/1987/05may/19870505-EO-0163-CCA.pdf> (검색일: 2016.7.26.)

2202) 행정명령 제163호는 1번의 개정내용이 있음. 1987년 같은 해 6월 30일 2조(section 2)를 개정하는 행정명령 제 163-A조(Executive Order No. 163A, s.1987)가 그것임. 또한 1987년 같은해 7월 30일 더 구체적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명령인 행정명령 제292호가 시행(Executive Order No. 292 [BOOK V/Title II/Subtitle A-Commission on Human Rights])

각각의 출처: <http://www.gov.ph/1987/06/30/executive-order-no-163-a-s-1987/>, <http://www.gov.ph/1987/07/25/executive-order-no-292-book-vtitle-iisubtitle-a-commission-on-human-rights/> (검색일: 2016.7.26.)

2203) 이에 대한 설명은 2012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엔 인권최고대표 (UN OHCHR)의 국가인권기구(NHRI)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을 참조함.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NHRIs/Philippines.pdf> (검색일: 2016.7.26.)

제9745호(Republic Act No. 9745)<sup>2204</sup>,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화국법 제9710호(Republic Act No. 9710)과 공화국법 제9262호(Republic Act No. 9262)<sup>2205</sup>, 테러리즘에 대한 법으로 2007년 인권보장법((Human Security Act of 2007)으로 불리는 공화국법 제9372호(Republic Act No. 9372)<sup>2206</sup>,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법인 공화국법 제9344호(Republic Act No. 9344)와 공화국법 7610호를위한실행규칙및규제(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for Republic Act No. 7610)<sup>2207</sup>, 공화국법 제 7438호

- 2204) “국제인도법률, 학살, 인권침해의기타범죄처벌, 사법구역조직, 특별법원구성, 상기관관련 목적을위한법률(An Act Defining and Penalizing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ocide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Organizing Jurisdiction, Designating Special Courts, and for Related Purposes)”. 별칭으로는 “국제인도적법률, 학살, 인권침해의기타범죄에대한법(Philippine Act on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ocide,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의 18조(Section 18)와 “고문및기타잔인하고비인간적처벌및처우와차별 약화, 처벌규제에관한법(An Act Penalizing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 별칭으로는 “2009고문방지법(Anti-Torture Act of 2009)”의 7, 9, 11, 17, 21, 23, 24조 (Sections 7, 9, 11, 17, 21, 23 and 24)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 (검색일: 2016.7.26.)
- 2205) “여성권리장전을위한법률(An Act Providing for the Magna Carta of Women)”, 별칭으로는 “여성권리장전(Magna Carta of Women, specifically Sections 39, 40, 41 and 44)”이라고 불리는 법의 39, 40, 41, 44조. 와 “여성과 여성의자녀에대한폭력을확인하고, 피해자를위한예방적정책제공, 그에대한처벌및기타목적을위한법률(An 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별칭으로는 “2004여성및그녀에대한폭력방지법(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의 39조(Section 39)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 (검색일: 2016.7.26.)
- 2206) “테러리즘으로부터국가를수호하고우리국민을보호하는법률(An Act to Secure the State and Protect Our People from Terrorism)의 19조와 55조 (Sections 19 and 55).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 (검색일: 2016.7.26.)
- 2207) “청소년을위한포괄적인정의및복지시스템구축, 법무부산하청소년과정의복지의회설립, 그에관한기금사용및기타목적을위한법률(An Act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Juvenile Justice and Welfare System, Creating the Juvenile and Justice Welfare Council Under the Department of Justice,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별칭으로는 “청소년정의법(Juvenile Justice Law)”의 8, 11조 (Sections 8 and 11)와 아동학대착취차별에 대한더강한억지와특별보호및기타목적을 위한법률(An Act Providing for Stronger Deterrence and Special Protection Against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7438)<sup>2208</sup>)가 있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2209</sup>/<sup>2210</sup>): 먼저 케손시티(Quezon City)에 위치한 본부조직에는 1인의 위원장(Chairman), 4명의 위원, 위원회비서실(Commission Secretary), 운영위원장(Executive Director)이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이들 산하에 총 10개의 국(Office)이 있고, 각 국의 하위부서로 28개의 과(Division)가 설치되어 있음<sup>2211</sup>. 이외에도 법의학센터(Forensic Center) 1개 및 핫라인사무소(Hot Line)가 마련되어 있음. 다음은 주요 설치 부서 현황의 관계를 나타냄. 또한 2014년 기준, 위원회의 본부직원 253명, 지역사무소 직원 303명으로 총 직원의 수는 556명이며, 이중 281명(50.5%)이 남성, 275명(49.5%)이 여성임<sup>2212</sup>.

---

별칭으로는 “반아동학대법(Anti-Child Abuse Law)”의 1,21,22,24조(Sections 1, 21, 22 and 24)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 (검색일: 2016.7.26.)

2208) “체포,감금,구금조사된자에대한특별권리와폭력을위한처벌을가하는체포감금조사원의의무에관한법률(An Act Defining Certain Rights of Persons Arrested, Detained or Under Custodial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Duties of the Arresting, Detaining and Investigating Officers and Providing Penalties for Violations Thereof)”, 별칭으로는 “체포된자의구금조사권리법(Custodial Rights of the Accused)”의 2조(Section 2)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nswersNHRI/> (검색일: 2016.7.26.)

2209) 출처: <http://198.23.173.74/chr/central-office/> (검색일: 2016.7.26)

2210) 조직은 최근 개편되었고, 현재 새로 개정된 홈페이지에는 조직도가 확인되지 않음. 이전 홈페이지에서 이전 조직도를 참조하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hr.gov.ph/MAIN%20PAGES/about%20us/06org\\_structure.htm](http://www.chr.gov.ph/MAIN%20PAGES/about%20us/06org_structure.htm) (검색일: 2016.7.26)

2211) 이외에도 현장운영국(Field Operation Office), 재무관리국(Financial Management Office), 정보시스템관리국(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Office)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3개의 국에는 하위부서가 없음. 또한 법의학센터(Forensic Center)와 핫라인사무소(Hot Line)가 설치되어 있음.

2212) 출처: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http://www.chr.gov.ph/MAIN%20PAGES/about%20us/PDF/2015/SDPO/2014%20Annual%20Report.pdf>) (검색일: 2016.7.26.)



[필리핀-그림 47]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본부 조직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sup>2213)</sup> : 케손시티(Quezon City)의 본부 사무소 외에 다음과 같이 15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지역 I (산페르난도 라우니온(San Fernando, La Union)), 꼬르디엘라행정지역(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바기오시티(Baguio City)), 지역 II (투게가라로 시티(Tuguegarao City, Cagayan)), 지역 III (산페르난도 팜팡가(San Fernando, Pampanga)), 지역 IV (산파블로시티(San Pablo City)), 지역 V (레가스피시티(Legaspi City)), 지역 V 하위사무국 (나가시티(Naga City)), 지역 VI (일올리오시티(Iloilo City)), 지역 VI 하위사무국 (바코로드시티(Bacolod City)), 지역 VII (세부시티(Cebu City)), 지역 VIII (타클로반시티(Tacloban City)), 지역 VIII 하위사무국 (칼바요그시티(Calbayog City)), 지역 IX (잠보앙가시티(Zamboanga City)), 지역 X (카가안데오로시티(Cagayan de Oro City)), 지역 X 하위사무국(일리간시티(Iligan City)), 지역 XI (다바오시티(Davao City)), 지역 XII (코타바토시티(Cotabato City)), 지역 XII 하위사무국 (마라위시티(Marawi City)), 카라가지역(Caraga

2213) 지역사무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198.23.173.74/chr/regional-offices/> (검색일: 2016.7.26.)

Region) (부투안시티(Butuan City))([그림 50] 참조)<sup>2214)</sup>.



출처: 필리핀인권위원회 구 홈페이지

[필리핀-그림 48] 필리핀 인권위원회 15개 지역사무소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 인권위원회의 예산은 예산관리부(the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가 수위를 결정하고 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회계연도의 일반예산법(General Appropriations Act)에 따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예산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으며,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sup>2215)</sup>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 및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 OHCHR)<sup>2216)</sup>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서 인권위원회가 법률상으로는 재정적 독립성(fiscal autonomy)을 보장받

2214) 출처: [http://www.chr.gov.ph/MAIN%20PAGES/services/regional%20projects/regional\\_projects.htm](http://www.chr.gov.ph/MAIN%20PAGES/services/regional%20projects/regional_projects.htm) (검색일: 2016.7.26.)

2215) 2012년 6월에 제출한 필리핀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보고서(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eenth session Geneva, 21 May - 4 June 2012)의 p.3, 항목 13번.

출처: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2/119/16/PDF/G1211916.pdf?OpenElement>(검색일: 2016.7.26.)

2216)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p.8.

고 있지만 현재 예산 결정과정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 2012년 기준으로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는 등 인권위원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바 있으며, 제한적 재정적 독립성(limited fiscal autonomy)이 전반적인 인권위원회 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예산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355,753,000 필리핀페소(PHP)(한화 약 8억 5천만원) 정도이며, 이는 2013년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2011년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이후 적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필리핀-표 24> 2011-2014년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연도	2011	2012	2013	2014
예산 총액 (단위: 필리핀 페소(PHP))	330,719,000 (한화 약 7억 9천만원)	356,608,000 (한화 약 8억 5천만원)	329,690,000 (한화 약 7억 9천만원)	355,753,000 (한화 약 8억 5천원)

출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 각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은 1987년 행정명령 163호의 제 2조(section 2)<sup>2217</sup>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임명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은 반드시 필리핀 태생의 국민이어야 하며(natural-born citizens of the Philippines) 임명당시 35세 이상, 선거에서 선출되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아야 함., 위원회 과반수를 필리핀국립변호사협회(the Integrated Philippine Bar)<sup>2218</sup> 회원인 변호사로 함. 현재 위원장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활동가로 활동했던 호세 루이스 마틴 C. 가스콘(Jose Luis Martin C. Gascon)으로, 그는 2015년 베닝고 S. 아키노 3세 대통령(President Benigno S. Aquino III)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까지임. 이외에도 현재 4인의 위원은 카렌 루이사 S. 고메즈 덤피트(Karen Lusia S. Gomez Dumpit), 그웬돌린 LL. 피엔탈-가나

2217) 출처: <http://www.gov.ph/downloads/1987/05may/19870505-EO-0163-CCA.pdf> (검색일: 2016.7.26.)

2218) 공식홈페이지: <http://www.ibp.org.ph/> (검색일: 2016.7.26.)

(Gwendolyn LL. Pimentel-Gana), 레아 C. 타노드라-아르마멘토(Leah C. Tanodra-Armamento) 있음. 하지만 위원회와 위원을 대통령이 선임하는 과정은 헌법이나 행정명령 등 법으로 자세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sup>2219)</sup>, 대통령의 권한으로 단독으로 임명하여 그 투명성과 참여 부분에 문제가 있음. 인권위원회는 이에 관해 대통령이 투명한 선발기구를 설치할 것을 2007년 제청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임(Commission's Resolution with number CHR (III) No. A2007-163).<sup>2220)</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명시적인 조항 없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위원회와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에 복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sup>2221)</sup>. 또한 헌법에 명시한 위원회의 권한은 헌법의 제18조 9항에 명시된 것으로, 어떠한 정부부처, 기관, 사무소, 기구(any department, bureau, office or agency)든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1987년 행정명령 163호의 제 2조(section 2)<sup>2222)</sup>에 근거, 위원장과 위원 모두 7년 임기를 가지며 재임이 불가능함.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현재 중심인물시스템(Focal Person System)을 운영하여, 위원회는 '전원합의위원회(the Commission en Banc)'로서 각 위원들은 각 부서장들(the Directorate and other Offices)과 함께, 취약집단과 인권메커니즘, 외부기금프로젝트와 내부 행정을 위해 주요 구심점(focal point)로서 임무를 수행함.<sup>2223)</sup>

2219) 출처: <http://198.23.173.74/chr/about-us/> (검색일: 2016.7.28.)

2220) 출처: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 p.2, p.9.

2221) 국가인권위원회(2005, 12). 2005년 세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집. 출처: [http://국립중앙도서관.한국/app/nl/search/common/download.jsp?file\\_id=FILE-00000548613](http://국립중앙도서관.한국/app/nl/search/common/download.jsp?file_id=FILE-00000548613) (검색일: 2016.7.28.)

2222) 출처: <http://www.gov.ph/downloads/1987/05may/19870505-EO-0163-CCA.pdf> (검색일: 2016.7.26.)

2223)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 3페이지.

마) 주요권한 및 활동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크게 3가지 활동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3가지 활동은 인권보호 서비스(Human Rights Protection Service), 인권증진서비스(Human Rights Promotion Service), 정책자문활동서비스(HR Policy Advisory Service)이며, 이외에도 인권이슈별 중점 사업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 단체 등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1) 국내 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sup>2224)</sup>

(가) 인권보호서비스는 인권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인권관련 발생하는 불만 사항접수, 사건처리를 기록·문서화(documentation), 조사(investigation), 위탁(referral), 사건감시(case monitoring)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처리함.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피해자를 폭력으로 보호하고, 특히 취약·장애·소외 집단의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학대로부터 보호, 예방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인권보호 프로그램은 전국,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영역별수준에서도 다양한 인권이슈에 개입하여 실행하고 있음.

(나) 더욱 구체적으로는 먼저 인권위원회는 본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불만사항 접수에 대한 기록 및 관리 활동(Documentation and management of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을 수행함.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만제기자, 피해자, 목격자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법률적 도움(legal aid), 대안적 분쟁 해결안 제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사실조사(fact finding), 공개조사(public inquiries), 단계별 법률서비스 제공(the provision of developmental legal services)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국가감시메커니즘(National Monitoring Mechanism)<sup>2225)</sup>을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및 보안기관

2224) 출처: <http://198.23.173.74/chr/what-does-the-commission-do/core-programs-and-strategies/> (검색일: 2016.7.26.)

2225) 국가감시메커니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Nation Report)를 참고. 출처: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2012).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p.51. 출처:

들과 함께 운영하여 사법적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살인, 고문 등의 인권문제 등 기타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활동도 포함함.

- (다) 그 다음으로 ‘구금시설 및 죄수갱생시설에 대한 인권환경 감시 (Monitoring of human rights conditions in detention facilities and penal rehabilitation centers)’는 2014년 인권위원회가 통과시킨 ‘고문에 관한 국가예방메커니즘(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on torture)’<sup>2226)</sup>의 일환으로서, 자유를 빼앗긴 국민의 인권(구금시설, 죄수갱생시설)을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률과 관련 지원을 제공하며, 인권침해환경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함.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상은 8개의 국립교도소, 85개의 지방교도소, 1,500여개의 지방 및 시립 교도소 및 이외에도 기타 구금 및 죄수갱생시설이 포함됨.
- (라) 또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범죄조사 및 법의학적 조사 수행 (Provision of independent forensics services and medico-legal services in aid of investigation)’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이 활동은 시체발굴(exhumation), 부검(autopsies) 및 기타 법의학적 서비스, 법의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부상과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활동도 수행함. 연수프로그램과 개선활동을 통해 관련 법의학 도구, 실험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법의학조사 서비스 품질 제고에 힘쓰고 있음.

(2)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및 홍보 활동<sup>2227)</sup>

(가) 인권증진프로그램(The Human Rights Promotion Program)은 국민들

---

<http://daccess-ods.un.org/access.nsf/Get?Open&DS=A/HRC/WG.6/13/PHL/1&Lang=E> (검색일: 2016.7.26.)

2226) 교도소 등 감금시설과 죄수갱생시설 내 인권환경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인 국가예방 메커니즘을 2014년 5월 필리핀 제16대국회에서 통과 시킴. 출처: 2014년 필리핀국가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227) 출처: <http://198.23.173.74/chr/what-does-the-commission-do/core-programs-and-strategies/> (검색일: 2016.7.26.)

과 사회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 생활 및 공적인 생활에서 인권보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 이 증진사업은 특히, 사법보안업무(the law enforcement, security and intelligence, LESI)를 수행하는 공직자, 공무원 및 정부관료(the civil service or the government bureaucracy), 교육기관, 지역정부, 언론, 취약·장애·소외집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함. 이 프로그램은 또한 기초 및 고등 교육, 군대 및 경찰의 연수과정, 공무원 연수과정에서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인권옹호캠페인 사업도 추진하는데, 연례인권의식주간(the annual human rights consciousness week) 동안의 인권증진캠페인 사업 혹은 국제인권의날(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을 기념하는 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러한 인권증진프로그램은 전국적 단위에서도 추진되지만 지역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나)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에서는 인권교육대상이 되는 집단별 교육과 연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각 관련 단체들과 협동하여 인권교육 모듈,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인권옹호캠페인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인권 관련 이벤트와 증진캠페인을 위한 국민 동원활동 추진과 관련 정보교육커뮤니케이션 자료 (the corresponding Inform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IEC) materials) 개발을 통해 광범위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언론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수행함.

(다) 이외에도 인권에 대한 연구와 출판 사업을 인권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음.

### (3) 정부의 인권 정책 자문 및 국제인권규약 준수 감시 활동<sup>2228)</sup>

(가)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서비스는 인권경보발령(the issuance of human

<sup>2228)</sup> 출처: <http://198.23.173.74/chr/what-does-the-commission-do/core-programs-and-strategies/> (검색일: 2016.7.26.)

rights advisories), 현재 혹은 제안된 입법내용, 지자체 명령(local ordinances) 및 정책 프로그램, 정부 단체의 정책활동에 대한 상황보고서(position papers), 성명(statements), 조언(comments)을 통한 자문활동을 포함함.

- (나) 이러한 정책자문서비스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새로운 혹은 특별 인권법 혹은 인권 관련 정책프로그램 실행 등을 수행함. 위원회는 이외에도 법제 연구, 정책 연구를 통해 국제인권조약과 표준이 국내법과 상응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며, 이러한 정책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인권 조약 조항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함. 보고서는 연례인권상황보고서, 구금시설, 건강, 거주, 젠더, 개발과 같은 인권 이슈별 내용에 대한 보고서,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에 대한 평가 보고서, 각 유엔 기구가 요구하는 독립적인 보고서들을 포함하고 있음.
- (다) 인권위원회는 8개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인권조약감시기구(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of the eight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sup>2229</sup>, 유엔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sup>2230</sup>,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 인권조사제도인 특별절차제도(Special Procedures Mechanism),<sup>2231</sup> 그리고 기타 유엔 기구들과 같은 인권현장과 조약 기반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및 다른 국가조약보고서 작성의 3자 보고 및 감시 체계(the tripartite reporting and monitoring mechanism)를 제도화하고자 함.

---

2229) 해당 감시 기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유엔 인권최고대표(UN OHCHR)의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조.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8개로 적시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9개의 감시 위원회가 존재함.

출처: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oreInstruments.aspx> (검색일: 2016.7.28.)

2230)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ohchr.org/HRC/Pages/redirect.aspx> (검색일: 2016.7.28.)

2231) 특별절차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역시 유엔 인권최고대표(UN OHCHR)의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조. 출처: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검색일: 2016.7.28.)

(4) 인권 이슈별 특별 중점 사업<sup>2232)</sup>

- (가) 인권위원회는 이외에도 위원회 내에 특별 중점사업을 위한 이슈별 센터를 운영하여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인권이슈별 센터는 우선 아동권리센터(Child Rights Center, 이하 CRC), 성평등여성인권센터(Center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경제사회문화권센터(Center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기갈등및인도적권리센터(Center for Crisis, Conflict and Humanitarian Rights)가 있음.
- (나) 아동권리센터의 활동: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센터는 아동권리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기능,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용이하도록 마련된 센터로서, 아동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및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 실행, 감시활동,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여 아동권리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보고 시스템 구축, 국제아동권리협약을 필리핀 정부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다) 성평등여성인권센터의 활동: 성평등여성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가 성평등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문 센터이며,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관한 국가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을 선도하고, 여성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아동권리센터와 마찬가지로,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the conven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필리핀 정부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 (다) 경제사회문화권센터의 활동: 경제사회문화권센터는 비즈니스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사회문화권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개발 및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준수에 관한 활동을 수행

2232) 출처: <http://198.23.173.74/chr/what-does-the-commission-do/specialized-thematic-human-rights-program/> (검색일: 2016.7.26.)

하고 있음.

(라) 위기갈등 및 인도적 권리센터의 활동: 위기갈등 및 인도적 권리센터는 무력갈등, 재해와 비상상황 등으로 위기와 갈등을 겪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주요 거점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5)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 단체 등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sup>2233)</sup>

(가) 인권위원회는 파리협약에 따라, 국내외 인권관련 이해집단들(stakeholders)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해당 용건이 발생할 시,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력관계 및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행함.

(나) 구체적으로 필리핀의 정부기관, 지역정부, 헌법기구, 사법부와 협력하며, 상원과 하원과 같은 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국제인권시스템에 해당하는 여러 국제인권조약관련 기구들(예: 유엔 인권이사회)과의 협력, 국가인권기구와 네트워크(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sup>2234)</sup>,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the Asia Pacific Forum of NHRIs, APF)<sup>2235)</sup>, 동남아시아국가인권기구포럼(the South East Asia NHRIs Forum, SEANF)<sup>2236)</sup>과의 협력, 시민사회 및 국제인권민간단체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바)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에서의 역할과 기능

(가)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여러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에 근거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먼저 공화국법 제9372호인 2007보안법(Human Security Act of 2007)의 제19조(section 19)에 따라,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3일 이상 위원회의 허락 없이 구금할 수 없는

2233) <http://198.23.173.74/chr/what-does-the-commission-do/cooperation-partnership-program/> (검색일: 2016.7.26.)

2234) 공식홈페이지: <http://nhri.ohchr.org/EN/Pages/default.aspx> (검색일: 2016.7.28.)

2235) 공식홈페이지: <http://www.asiapacificforum.net/> (검색일: 2016.7.28.)

2236) 공식홈페이지: <http://seanf.asia/index.php/about-us/89-south-east-asia-nhri-forum> (검색일: 2016.7.28.)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역시 동법 제55조(section 55)에 근거하여 이러한 법을 어긴 어떠한 공직자나 사법기구 종사자 등 어떤 누구에 대해서든지 기소할 수 있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sup>2237)</sup>

- (나) 또한 공화국법 제7438호(피고소인의구금에관한권리에대한법률(Custodial Rights of the Accused)의 제2조(section 2)에 근거하여, 구금에 처한 자가 만날 수 있는 직속 가족 및 기타 접촉 가능한 자를 인권위원회가 심사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권한을 수행하며, 공화국법 제9344호(청소년정의법(Juvenile Justice Law))의 제8조(section 8)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의복지이사회(Juvenile Justice and Welfare Council)의 일원으로 인권위원회가 참여하게 되며, 동법 제11조(section 11)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인권상황 및 국제협약준수 감시, 관련 보고서 작성, 정부기관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센터(CRC)가 담당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음. 그리고 공화국법 제7610호 제32조를 위한 군사적분쟁에서의 아동에대한규칙과규제(Rules and Regulations on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s pursuant to Section 32 of Republic Act No. 7610)의 제21조(section 21)에 근거하여 아동이 군사분쟁과 관련하여 구금/체포할 시 바로 인권위원회는 정부 공권력에 의한 관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으며, 제22조(section 22)에 근거하여 군사적 분쟁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내용을 인권위원회 및 인권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비정부단체가 기록하고 이를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마지막으로, 공화국법 제9262호인 2004 여성아동폭력방지법(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of 2004)의 제39조(section 39)가 정한 부처간이사회(Inter-Agency Council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의 일원으로 인권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음.<sup>2238)</sup>

---

2237)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이 유엔 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작성한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근거법률모음집(Resource Book 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의 p.13. 출처: <http://www.ombudsman.gov.ph/UNDP4/wp-content/uploads/2013/07/RESOURCE-BOOK-0n-CHRP.pdf> (검색일: 2016.7.26.)

2238)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 (1)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7년 10월, 2012년 12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239)</sup>

## 2) 필리핀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및 활동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주요 업무 범위

(가) 필리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조사, 갈등조정 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

①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필리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 상담, 법률서비스 (legal assistance)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sup>2240)</sup> 특히 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그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이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접수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함.

②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및 대상은 <sup>2241)</sup> 헌법이 명시한 권한에 따라 시민적 혹은 정치적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으며 그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sup>2242)</sup>

---

of the Philippine, p.10-12.

223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7.26)

2240) 인권침해사태 수집 혹은 접수 경로는 보통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2011년 및 2012년 연례보고서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인권침해사태 접수 경로를 ‘직접방문/지역사무소(Walk-in/Regional Office)’, ‘조사감시(Investigative Monitoring)’ ‘바랑게이인권센터(BHARC)’, ‘자발적활동(Motu Proprio)’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직접 방문(Walk-in)이 90%를 상회함. 출처: 2011년, 2012년 필리핀 연례보고서.

2241)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정확한 접수경로 및 방법 과정 등은 현재 공식홈페이지나 기타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함. 다만 공식홈페이지 상에서 핫라인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화 등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2242)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공화국법 제 9710호(여성권리장전)에서는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위원회는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제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8개의 핵심 규약을 기초로 하여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활동은 헌법 제19조에서 간접적으로 명시한 권한에 근거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또한 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정부, 경찰, 군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조사대상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입장 혹은 답변을 제출하게끔 인권위원회가 지시할 수 있음. 불이행시, 인권위원회는 청문회(hearing)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원합의위원회가 좀 더 중요한 사건(high-profile case)로 다루게 됨.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는 결의내용을 채택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적절한 정부관련 기관에 기록하여 제출하는데, 보통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필리핀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필리핀경찰청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필리핀국군(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에 전해지게 됨.<sup>2243)</sup>

③ 또한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sup>2244)</sup> 인권침해접수사례에 대한 혹은 직권조사활동, 법률지원서비스, 제한적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교도소, 감옥 및 기타 구금시설에 대한 감찰활동, 인권침해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법의학수사 서비스 등을 포함함.

④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163호 제3조(section 3)에 따라 조사에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것 혹은 증거

---

of the Philippine, p4.

2243)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 p4-5.

2244)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2012). Questionnaire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sponse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 p5.

를 보유하거나 증언을 한 사람은 면책특권(immunity from prosecution)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 ⑤ 인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평균 3천여 건 정도의 인권침해 피해건수에 대한 업무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2014년에는 이러한 수치가 2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6,433건의 피해사태가 접수되었음.<sup>2245)</sup> 또한 이러한 피해사태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서 2가지 대표적 피해자 구제 서비스인 법률지원과 조사진행별로 나누어 사건 해결 통계를 집계 할 때, 법률 지원활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246)</sup>.

<필리핀-표 25> 2011-2014 필리핀 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해결현황

	2011	2012	2013	2014
인권침해 피해건수	2,988	2,846	3,660	6,433
피해자 구제1: 법률 지원 (Legal assistance)	1,807	1,584	2,458	5,024
피해자 구제2: 조사진행 (Investigation)	237	986	1,118	1,350
사건최종완료 (Resolution)	463	675	1,036	1,078

출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나) 인권교육 및 인권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한 인권증진

- ① 인권위원회는 공직자, 전문가 집단과 같은 인권 관리에 책임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과 자료를 개발, 이외에도 아동의 달(Children's month)

2245) 이러한 폭발적 증가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2014년 연례보고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음.

2246) <표>에서 피해자 구제1과 피해자구제2를 합산 할 경우 총 인권침해피해건수의 통계치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본 표에는 사건해결에 관한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가 연기된 사례 건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

기념 행사와 같은 인권에 있어서 주요 이벤트를 기회삼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②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 활동으로서 포함되는 활동은 세미나/연수, 강연/강의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1년부터 ①2014년까지 다소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658건의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필리핀-표 26> 2011-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활동 현황

	2011	2012	2013	2014
세미나/연수	264	250	자료없음	자료없음
강연/강의	153	177	자료없음	자료없음
기타 교육 활동	218	136	자료없음	자료없음
총 활동건수	735	563	685	649

출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

(다) 필리핀 정부의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자문활동

- ①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지시한 권한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 수행 방식은 인권정책자문(HR policy advisories), 상황보고서(position papers), 결의안(resolution), 가이드라인(guideline) 등으로 이루어짐. 2013년, 201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는 19건, 14건의 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sup>2247)</sup>.

(라) 중점별 센터 운영 및 정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지원과 역량 제고

- ① 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인권증진, 정책법률자문활동 이외에도 중점별 센터 운영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관련 단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며,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을 통해서 필리핀국가인

2247) 2013년,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권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음.

(2) 헌법 및 행정명령에 명시된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 (가) 헌법 제13절 제18조 및 행정명령 제163호 제3조에 명시된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Investigate, on its own or on complaint by any party, all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volv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② 필리핀 국민 및 필리핀 재외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 혹은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 대해 예방정책과 법률지원서비스 제공(Provide appropriate leg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all persons within the Philippines, as well as Filipinos residing abroad, and provide for preventive measure and legal aid services to the underprivileged whose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or need protection) ③ 교도소, 감옥, 기타 구금시설에 대한 감찰 활동(Exercise visitorial powers over jails, prisons, or detention facilities) ④ 인권존중을 강화하는 연구, 교육, 지식전파에 관련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구축(Establish a continuing program of research,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enhance respect for the primacy of human rights) ⑤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의회에 제안하고, 인권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보상을 지급(recommend to the Congress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to provide for compensation to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their families) ⑥ 필리핀정부가 국제인권관련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Monitor the Philippine Government'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rights).

(3)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 (가)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활동 하여, 어떠한 정부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정부의 정책활동과 입법에 대해서 자문을 하며 필리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리핀 국민의 인권을 위한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의 독립성과 위원회 및 위원 선정의 투명성이 법률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예산 독립성과 위원회 선발에 대한 참여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독립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라고는 할 수 없음.<sup>2248)2249)</sup>

### 3) 필리핀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sup>2250)</sup>

- (가) 인권위원회는 조사, 법률지원 등의 여러 피해자 구제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국가기구임. 인권위원회는 해당연도의 다양한 피해자 구제 관련 사례에 대한 구체적 업무 활동을 연례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2014년에 보고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비나나 라구나, “고문의바퀴” 사례(Binana Laguna, “Wheel of torture case”): 공공변호사사무소에(the Public Attorney’s Office, 이하 PAO)에서 제보한 사건으로, 7명의 구금된 사람들이 산페드로경찰청(San Pedro Police Station)에 이송될 시, 소위 “고문의 바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짐.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범의학 조사, 라구나(Laguna) 지역의 카람바 시(Calamba City) 캠프 비센테 림(Camp Vicente Lim) 구치소(the Base Police Detention Facility)로 즉각 이송될 것을 요청

2248) 본 내용은 II. 세계 각국의 인권기구 일반 현황의 다)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3)예산 부분과, 라)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임명의 내용을 참고바람.

2249) 이러한 내용은 인권위원회 관련 대법원 판례로서 추가적으로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근거법률모음집(Resource Book 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의 제 4장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1989-2004)(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1989-2004))”에서 확인 가능.

2250)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했으며, 2명은 좀 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개발부(the DSWD City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로 이송하였음. 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진술서(affidavit) 작성을 돕고, 해당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소(PNP-4A (CALABARZON) Memorandum)를 인권위원회의 지역 IV 사무소장이 제기하여 2014년 8월 25일, 각 경찰관의 해고, 강등을 조치하도록 함. 2014년 7월 12일 인권위원회 지역 IV 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결의안(resolution)을 발표하는데, 이 결의안 내용에는 해당 가해 경찰관들이 영장 없는 체포와 고문, 불법 수사 등을 용이하게 하는 체계적인 폭력을 가했던 패턴에 대한 보고도 포함함.

- 알드린 제프 P. 쿠디아 (Aldrin Jeff P. Cudia) 사례: 2014년 2월 28일, 레나토와 쿠디아가 인권위원회 카라가(Caraga) 지역사무소에 그의 아들인 알드린 제프 P. 쿠디아(Aldrin Jeff P. Cudia)가 생명권, 교육권, 사생활권을 침해받았다고 접수함. 필리핀군사학교(the Philippine Military Academy, PMA))의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는 223명의 사관후보생들과 같이 2014년 3월 16일, 차석 졸업생으로서 졸업해야 하지만, 2분 지각으로 그를 학교운영회(the Honor Committee)에서 낙제 결정을 내림. 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2014년 5월 22일, 카라가지역사무소는 결의안에서 관련 장교, 필리핀군사학교 운영회 참석자들이 쿠디아 사관후보생의 존엄성, 올바른 과정과 교육에 대한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함. 이에 대한 내용을 해당 군사학교 관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국립변호사청(PAO)에 제출함. 프레시다 아코스타(Precida Acosta) 변호사장과 쿠디아 가족이 학교에 대해 졸업 불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작성 내용은 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함.
- 제니퍼 라우데 사례 (Jennifer Laude Case): 트랜스젠더인 제니퍼 라우데(Jennifer Laude)의 살인 사건으로 이는 가해자가 미국 해병이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가짐.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motu proprio investigation)기제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지역 III 사무소인 팜팡가 지역사무소가 관련 조사(investigation)를 수행하고, 인권위원회

본부의 조사과가 해당 업무를 지원함. 2014년 10월 16일은 지역 III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권고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인 올롱가포시의 검찰청(the Office of the City Prosecutor, Olongapo City)이 처리하고 있는 조셉 스콧 펨버튼(Joseph Scott Pemberton)의 살인사건( I.S. No. III-10-INV-14J-01102)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 또한 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5일 암비안츠 디스코바(Ambyanz Disco Bar), 셀존 산장(Celzone Lodge)를 올롱가포시의 검사인 에밀 페 델로스 산토스(Emile Fe Delos Santos) 검사의 주재 아래, 시진(ocular inspection)을 진행함.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니퍼라우테를위한필리핀여성마닐라포럼(Manila on a Philwomen Forum for Jennifer Laude) 과 같은 포럼에 참석하여 관련 발표를 수행함.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문내용의 초안을 작성중임.

- (나) 인권위원회는 2014년 기준으로 4,122명 피해자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7,625명에게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6,283명을 위한 구금시설 감시, 789명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혹은 목격자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142명에 대해 법의학 수사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함.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124회 실시하여 여전히 한정된 감옥시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두거나,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인권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 구체적 현황은 2014년 기준으로 3,569,500 필리핀페소(PHP) (한화 약 8천 4백만원)가 789명의 피해자에게 생명의 자의적 박탈(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아동권리의 침해, 실종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생존자 지원금(Survivor's Benefit) 명목으로 83명이 837,000 필리핀페소(PHP) (한화 약 1천 9백만원)를 지급받았으며, 104명이 의료비지원으로 918,000 필리핀페소(PHP)(한화 약 2천 2백만원)를 지급받고, 602명이 지역공동체지원(community assistance) 명목으로 1,814,000 필리핀페소(PHP)

(한화 약 4천 3백만원)를 지급받음. 또한 위원회는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대상인 특별사건의 목격자 3명에 대해서 특별 예산을 배분함. 법의학 서비스 제공 규모는 2014년 구체적으로 121회의 물리적 조사 13회의 의학적 평가, 8회의 부검을 실시하였고 전국교정의식주간(National Correctional Consciousness Week) 중 “의학미션(Medical Mission)” 차원에서 총 353명의 죄수 환자들에 대한 의학 지원을 실시함.

나) 교육<sup>2251)</sup>

- (가) 인권위원회는 강연, 교육/연수 프로그램 실시뿐만 아니라, 포스터, 팸플렛, 핸드북, 현황보고서, 학술지, 여성권리장전, 노인법(Senior Citizen Act), 장애인권리장전, 국제인권법과 같은 인권법 온라인 자료 등 관련 교육 및 정보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음.
- (나) 인권위원회는 2014년 최근 이슬람민주주의필리핀센터(the Philippine Center for Islamic Democracy, PCID)와 파트너십을 맺고 “알리마트 모듈: 지역권한강화를 위한 인권기반적 접근(Aleemat Modules: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Community Empowerment)”라는 이름의 무슬림여성 지도자를 위한 8개의 인권교육 표준 모듈을 만들었으며 이 모듈은 민다나오 전체 지역(Mindanao area)에서 파일럿으로 실행됨.(다) 인권위원회는 또한“잔해 속 인권(Human Rights in the Rubble)”, 인권위원회조약출판시리즈 2번째인“고문기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며잘못된처우와차별에대한UN협약핸드북(Handbook on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HR Treaty Series Publication # 2)”, 영어, 필리핀어, 세부어로 작성된 “올란다태풍 피해 국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에 대한 인권표준(Human Rights Standards on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of Populations affected by Typhoon Yolanda)”등의 단행본을 출판함.
- (라)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와

---

2251)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함께 4개의 인권교육 모듈(구금시의권리, 강요된 실종, 인권침해피해자보상, 반고문법)을 함께 개발했으며, 유럽-필리핀정의프로그램 II(EPJUST II)<sup>2252</sup>와 필리핀정부평화와개발을위한프레임워크(Pamana)<sup>2253</sup>의 기금을 지원받아 10개의 모듈 파일럿을 수행함. 그 10개의 파일럿 모듈에는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기본개념과 원칙(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HR),” 올바른 지방정부운영을 위한 인권(Human Rights in Good Local Governance),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 여성과 LGBTs(Women and LGBTs Respecting Rights and Diversity)” 등이 포함됨.

(마) 인권교육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CHRE)<sup>2254</sup>의 우수사례를 담은 컴필레이션 CD를 제작하고, 인권위원회와 세인트모어토론변호회(St. Thomas More Debate and Advocacy Society)와의 “인권자문토론토너먼트(A HR Advisory Debate Tournament)” 비디오 자료, 아동을 위한 “아동에 관한 필리핀 법(compilation of Philippine Laws & Issuances on Children)과 아동포르노그래피반대기관간위원회(the Inter-Agency Council against Child Pornography, IACAP)<sup>2255</sup>의 일부로서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센터(CRC)가 2009년 통과된 반아동포르노그래피법에 대한 인식을 위한 홍보자료와 포스터를 제작함.

다) 홍보<sup>2256</sup>

(가) 인권위원회는 2014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필리핀의 인권 현상과 관련 이슈를 제기 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21개의 언론 자료를 배포함.

(나) 또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국내 인식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UN

---

2252) 공식홈페이지: <http://www.epjust2.com/> (검색일: 2016.7.29.)

2253) 공식홈페이지: <http://pamana.net/> (검색일: 2016.7.29.)

2254) 인권교육센터는 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마다 지역사무소 산하로 설치되어 있음. 출처: <http://www.hurights.or.jp/archives/pdf/asia-s-ed/v10/12Center%20for%20HRE,%20Philippines.pdf> (검색일: 2016.9.22.)

2255) 공식홈페이지: <http://www.iacacp.gov.ph/> (검색일: 2016.7.29.)

2256)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에서 제정한 여러 기념비적인 인권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홍보사업을 2014년 한 해 동안 만 179개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세계여성의날, 세계여성의달, 세계인권법의 날과 같은 날의 기념행사를 가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최함:

- 아동의 달 (Child's Month) 기념 행사 프로그램: UN이 정한 아동의 달 기념을 행사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함. 먼저 에세이쓰기, 포스터제작 콘테스트를 지역사무소 단위에서 전국적 단위에서 실시하였고, 원주민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원주민의 권리와 무력갈등의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개념과 실행을 주제로 한 강연 실시함. 또한 코르디엘라 지역 사무소에서는 아동가족서비스필리핀(Child Family Service Philippines, Inc.)과 파트너십을 맺고 벤구엣(Benguet)이 라 트리니다드(La Trinidad)에서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매뉴얼(the Protocol Manual in Managing Child Abuse Cases) 런칭을 기념하는 행사인 “당신의 아이가 중요합니다(Bata Kasali Ka, Ikaw Ay Mahalaga)”를 개최함.
- 전국인권의식주간(National Human Rights Consciousness Week) 기념 행사: “시민, 정부와 발전을 위한 권리(Mamamayan at Pamahalaan, Kapit - Bisig sa Pagsulong ng Karapatan sa Kaunlaran)”를 주제로 전국적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함. 그 일환으로 2014년 12월 16일 케손시티메모리얼서클(Quezon City Memorial Circle)에서 1주일동안 인권에 대한 국가감시매커니즘(the National Monitoring Mechanism (NMM) on Human Rights) 설립선언을 위한 인권위원회,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조직의 서명 릴레이 행사가 있었으며, 지역IV에서는 SM 시티몰 산파울로(SM City San Pablo)와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차원으로 파트너십을 맺어 ‘아동 코너 (Children's Corner)’를 1주일 주간 내내 설치해, UN아동권리협약에서 선언한 다양한 아동들의 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시하도록 함. 또한 “고문방지대사프로젝트(Torture Prevention Ambassador (TPA) Project)”를 필리핀경찰청(Philippine National Police)와 함께 고문관련 프로그램을 펼침.

(다) 이외에도 아테네오로스쿨의 토론변호회(Ateneo Law School Debate & Advocacy Society)와 함께 인권헌안을 주제로 인권위원회 토론대회(the CHR Debate Cup)를 개최함.

라) 정책개선<sup>2257)</sup>

(가)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정책 자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한해 5건의 인권 자문(human rights advisories), 4건의 성명서(position papers) 발표, 5건의 결의안(resolutions) 발표 형태로 이루어짐. 이러한 자문활동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음:

- “올란다태풍 피해 국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에 대한 인권표준(Human Rights Standards on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of Populations affected by Typhoon Yolanda)”에 대한 자문: 인권위원회는 올란다 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UN에서 정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이슈를 인권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안함. 또한 지역사무소는 특히 이러한 인권표준이 각 지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함.
- 2013년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2013)<sup>2258)</sup>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 성명서는 2009년정보자유법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주장을 더 개정한 것으로 여성과 아동과 같은 취약 집단의 중요 정보에 대한 더욱 특별한 관리를 할 것과 2013년정보자유법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참조해야 하는 다양한 관련 국제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 공공조직법(Public Assembly Act)에 대한 성명서 발표<sup>2259)</sup>: 하원법안 3668호(HB 3668)인 공공조직법(Public Assembly Act)에 대한 분석에

2257)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258) 본 법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gov.ph/foi/> (검색일: 2016.7.29.).

2259) 본 법안에 대한 성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hr.gov.ph/MAIN%20PAGES/about%20hr/position%20papers/pdf/PosPpr\\_HB3668HB2534HB3058.pdf](http://www.chr.gov.ph/MAIN%20PAGES/about%20hr/position%20papers/pdf/PosPpr_HB3668HB2534HB3058.pdf) (검색일: 2016.7.29.)

근거하여, 위원회는 1987년 필리핀 헌법과 기존의 인권관련규약에 합당하게 내용을 수정한 대체 법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함.

- 2004여성과아동에대한반폭력법(the 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 Republic Act No. 9262)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하원의 지속적인 여성에대한폭력방지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안 수립의 노력을 돕기 위해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하원발의 법 (HB No. 2265, HB No. 2591, HB no. 1330, HB no.1412)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함.

마) 사법부 의견 제출<sup>2260)</sup>

(가) 인권위원회는 사건별로 필요하면 결의안을 통해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임. 다음은 사법부의 의견을 제출한 사례임:

- 카피타네아 사례(Capitanea Case): 2009년 8월 22일, 전 나타니엘 카피타네아 경찰조사관(Police Inspector Nathaniel Capitanea)이 필리핀마약조사국(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PDEA)의 홍춘찬(Hong Chun Chan)을 검거하는 마카티 시(Makati City)에서 벌어진 총격전에서 사망함. 2009년 10월, 나타니엘의 형인 제랄드 카피타네아(Gerald Capitanea), 단지 총격전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나타니엘이 사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죽음 이후에 마약조사국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함. 위원회는 마약조사국이 작전 중에 사용한 모든 무기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필리핀경찰청(National Police Philippines) 범죄수사국에 탄환 조사를 맡겼으며 사건이 발생한 조야 타워(Joya Tower)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2011년 11월 24일과 2012년 4월 24일 각각 결의안을 통해 마약조사국의 작전이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나타니엘 카피테나의 사살과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 2012년 9월 20일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이송하고, 2014년 3월 6일에는 필리핀옴부즈맨(the Office of the

---

2260)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Ombudsman)과 다시 사건번호 FF-C-12-0147로 하여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014년 9월 5일, 1차 조사가 특별검사실에서 살인, 신체상해, 위증, 시신유기, 정의방해, 실명숨김 등의 혐의((CHR vs. Gen. Dionisio R. Santiago, et. al., with NPS Docket No. XVI-INV-121-0043, for the charge of murder, physical injuries, perjury, dereliction of duty, obstruction of justice, concealing true name and RA 7438)로 수행되었고, 결의안이 다시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검토와 발표를 할 예정.

- 필리핀승무원연합회 사례(FASAP Case): 필리핀승무원연합회(The Flight Attendants and Steward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FASAP)는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이는 노동고용부(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의 결정을 뒤집는 것임. 2014년 7월 9일 이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신청하였으며 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서 개입하기를 요청함. 인권위원회는 2014년 현재 이러한 개입을 준비.

바) 주요 인권이슈<sup>2261)</sup>

- (가) 인권침해피해자기념위원회 (Human Rights Violations Victims Memorial Commission) 설립: 계엄령파일프로젝트(the Martial Law Files Project, MLFP)에 의해 주도된 이 기념위원회 건립 프로그램은 이미 계엄령파일프로젝트가(MLFP)가 진행하고 있었던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마르코 독재 시기의 인권문제에 대한 공공의 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자료 작성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이 위원회 설립은 인권위원회의 지역사업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및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기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원회 건립을 위한 실행규칙과 규제의 초안을 공화국 법 제 10368호(Republic Act No. 10368)<sup>2262)</sup>에 근거하여 작성하기 위해 NCR 지역, 케손지역, 라유니온(La Union) 지역에서 자문회를 개최

2261)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262) 법률 원문 참고: <http://www.gov.ph/2013/02/25/republic-act-no-10368/> (검색일: 2016.7.29.).

함. 계엄령선포 4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과거의 폭력으로부터의 교훈, 정의로 가는 길(Mga Aral sa Karahasan ng Nakaraan, Gabay Tungo sa Katarungan)”를 주제로 계엄령파일프로젝트(MLFO)는 계엄령파일 아카이브 단행본(the Martial Law Files Archives Registry Books) 출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인권운동가였던 펠릭스베레토 카버트 오라리아(Mr. Felixberto “Ka Bert” Olalia)를 기념하는 헌정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했음. 국제인권의날 기념 행사의 일부분으로 인권침해피해자기념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공화국법 제 10368호 실행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도 2014년 12월 17일 마라카낭(Malacanag)에서 개최함. 기념위원회 도서관과 아카이브 설립을 위하여 또한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계엄령관련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이러한 내용은 기념위원회의 인권침해사례와 관련한 기본적인 연구자료로서 사용하도록 하였음.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sup>2263)</sup>

(가)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엔개발기구(UNDP)와 수행하고 있는 “인권기반접근주류화와 인권문화 육성 (Nurtur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On HRBA Mainstreaming)”이 있음. 이 프로젝트는 인권기반접근방식(Human rights Based Approach, 이하 HRBA)가 정부 행정과정 전체에 개입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입법, 정책입안, 기획, 예산, 섹터별 공공프로그램 진행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엔개발기구가 후원하고 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4가지 계획이 실시됨: 먼저 HRBA가 입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12명의 정부 간부들에게 강좌를 진행하여, HRBA의 핵심개념과 발전 계획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줌. 또한 발전 계획에서의 HRBA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전에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권표준과 관련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하는 강좌를 진행하고, 여러 연습과 개입을 통해 HRBA를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였음. 예산에 있

---

2263) 2014년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어서도 HRBA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재정부(the Departments of Budget and Management)와 함께 HRBA 예산관리 가이드라인과 운영기제, 틀을 개발. 이사업은 2015-16년 완료 필요. 마지막으로, 취약집단의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HRBA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원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리핀선거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sup>2264</sup>와 함께 언어의 장벽을 높이는 등의 활동을 추진함. 이러한 4가지 활동을 통해 HRBA가 더 적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권고안이 작성되었고, 이러한 권고안은 공동의사표명을 위한 행정명령의 초안(Executive order for joint manifestation)으로 작성되어 관련 인권위원회-정부연계팀과 더불어, 입법행정개발자문위원회(Legislative and 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 LEDAC)<sup>2265</sup>의 사무국장, 대통령입법연계실(Presidential Legislative Liaison Office, PLLO)<sup>2266</sup>으로 이루어진 사업실행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에 회람하여 각각으로부터 조언을 얻도록 조치함.

(나)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호주국제개발기구(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AUSAID)<sup>2267</sup>와의 “법의학조사역량 개발(Forensic Investigation Capability Building)”제목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이 프로젝트에서는 법률가, 조사관, 법의학조사관 등 법의학 수사 영역에서의 전문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20대의 DSLR 카메라, 20대의 비디오 카메라, 26대의 컴퓨터 등의 장비들을 기증받기도 함.

(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지원기금으로 국내난민문제(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활동으로는 국내난민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난민 예방, 국내난민문제에 대한 평가, 보호 등이 포함되었고, 정부부처와 관련 비영리

2264) 공식사이트: <http://www.comelec.gov.ph/> (검색일: 2016.7.29.)

2265) 공식사이트: <http://ledac.neda.gov.ph/> (검색일: 2016.7.29.)

2266) 공식사이트: <http://www.pllo.gov.ph/> (검색일: 2016.7.29.)

2267) AUSAID 소개사이트: <http://dfat.gov.au/aid/pages/australias-aid-program.aspx> (검색일: 2016.7.29.). 공식사이트인 [ausaid.gov.au](http://ausaid.gov.au) 는 현재 접속 불가.

기구들과 협업하여, 국내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원회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국내난민문제에 대한 보고, 옹호활동, 네트워킹에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 분석결과를 사용하도록 함. “잠보앙가재해로 인한 국내난민에 대한 인권표준과 지역정부의 역할(Human Rights Standards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in Zamboanga Crisis and this paved way for further engagement with the local government)”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자문내용을 잠보앙가 지역 회복과 재건을 위한 수혜관련 명령(the Code of Beneficiaries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the Zamboanga road map to recovery and reconstruction) 등을 지역정부 관리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함. 인권위원회는 본부에서 다양한 국내난민이슈에 관한 시민단체와 인도적 공동체, 국립원주민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NCIP)<sup>2268</sup>)와 잠보앙가시의 국내난민들과 함께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

#### 4) 필리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 (1) 필리핀옴부즈맨 (Office of Ombudsman)<sup>2269</sup>)

(가) 설립<sup>2270</sup>): 필리핀옴부즈맨은 정부행동에 대한 공식 비판기구로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직자의 업무 및 행위에 대한 감시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87년 헌법과 1987년 7월 발효된 행정명령 제 243호(Executive Order No. 243), 1989년 옴부즈맨법(Ombudsman Act of 1989, Republic Act No. 6770)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2일 설립됨. 헌법 제11장 14조(Sec. 14, Art. XI, 1987

2268) 공식사이트: <http://www.ncip.gov.ph/> (검색일: 2016.7.29.)

2269) 공식사이트: <http://www.ombudsman.gov.ph/> (검색일: 2016.7.26.)

2270) 필리핀옴부즈맨은 1950년부터 키리노 대통령(President Quirino)의 “진실위원회(Integrity Board)”등의 여러 이전 기구들을 전신으로 함. 자세한 설립 배경과 역사는 필리핀옴부즈맨 홈페이지 참조. 출처: <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Q==&subNavId=ODU=> (검색일: 2016.7.29.)

Constitution)에 근거하여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며 어떠한 국가기구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적 기구로서 출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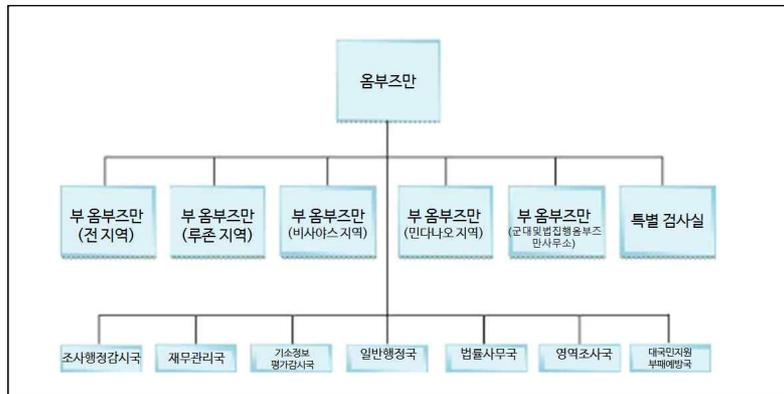
- (나)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헌법 제11조 2조에 근거하여 탄핵과정만을 통해서 사임할 수 있는 7년 임기의 옴부즈맨을 장으로 하여 옴부즈맨을 비롯한 그 직원들은 헌법 제11장 8조와 9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없이 임명될 수 있으며,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함. 옴부즈맨 사무소는 케손시티에 본부를 두고, 루존, 비시야스, 민다나오 지역 3개의 지역사무소, 군대및법집행옴부즈맨사무소 (the Military and Other Law Enforcement Offices, MOLEO)를 두고 있음. 옴부즈맨 본부 사무소의 조직은 옴부즈맨을 장으로 하여 필리핀 전 지역의 부 옴부즈맨을 포함하여 3개 지역의 지역별 부옴부즈맨, 군대및법집행옴부즈맨 사무소의 부 옴부즈맨을 두고, 특별검사실(Special Prosecutor Office)을 설치하고 있음. 현재의 옴부즈맨의 장은 콘치타 카피오 모라레스(Conchita Carpio Morales) 전 대법원 판사이며, 2011년 7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함. 이외에 실무 부서로는 조사행정감사국(Preliminary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Monitoring Office), 재무관리국(Finance and Management Information Office), 기소정보평가감시국(Prosecution, Information, Evaluation and Monitoring Services Office), 일반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Office), 법률사무국(Office of Legal Affairs), 영역조사국(Field Investigation Office), 대국민지원부패예방국(Public Assistance & Corruption Prevention Office) 등이 있으나, 현재 조직개편 중으로 새로운 조직도가 발표될 예정([그림 2] 참조). 각 지역사무소의 조직은 본부사무소와 유사하나 각각의 사무소의 구조는 지역 사무소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sup>2271)</sup>

---

2271) 각 사무소의 핵심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정보는 지역마다 다른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Y=\(루존사무소\)](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Y=(루존사무소)), [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c=\(비시야스사무소\)](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c=(비시야스사무소)), [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g=\(민다나오사무소\)](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g=(민다나오사무소)), [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k=\(모레오사무소\)](http://www.ombudsman.gov.ph/index.php?home=1&navId=Mg==&subNavId=MTk=(모레오사무소))

(다) 주요업무: 필리핀옴부즈맨은 현재 1987년 헌법, 1989년 옴부즈맨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실행하고 있음:

- ① 불법, 부정의, 부적절, 비효율적인 공직자의 행위, 공공기관의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기소할 수 있음(헌법 제11장 13조 1항, 옴부즈맨법 15조 1항)



출처: 필리핀옴부즈맨 홈페이지 (\*현재 조직개편중)

[필리핀-그림 49] 필리핀옴부즈맨 조직도

- ② 어떠한 정부기관, 정부 공직자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의무에 있어서의 권리남용과 부적절행위를 중단, 예방,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 (헌법 제11장 13조 2항, 옴부즈맨법 15조 2항, 13조 2항)
- ③ 정부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의 해고, 징직, 강등, 벌금 등의 처벌을 권고하고 확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징계 권한을 집행할 수 있음. (헌법 제11장 13조 3항, 옴부즈맨법 15조 3항)
- ④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공직자에게 국가기금과 재산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사위원회에 이러한 사용에 대한 비규칙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헌법 제11장 13조 4항, 옴부즈맨법 15조 4항)
- ⑤ 어떠한 정부기관에게도 확실한 기록과 문서 등 필요 자료와 정보 제

소) (검색일: 2016.7.29.)

출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헌법 제11장 13조 5항, ombudsman법 15조 5항)

- ⑥ 정부에서 발생한 비효율성, 잘못된 관리, 사기, 부패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며 높은 윤리와 효율성 수준이 지켜지도록 감시함(헌법 제11장 제13조 7항, ombudsman법 15조 7항)
- ⑦ 인권위원회는 선서를 지키도록 하며(administer oaths), 해당 사건에 대해 소환장(subpoena)과 문서 지참 증인 소환 영장(subpoena duces tecum)을 발부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에서 증언을 채택하고, 은행 계좌와 기록에 접근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짐(ombudsman법 15조 8항).

## 5. 덴마크

덴마크 국가 정보2272)	
면적	43,098km <sup>2</sup>
인구	5,580,000명 (2015년 기준)
수도	코펜하겐
정치형태	입헌군주제하 내각 책임제
주요언어	덴마크어
주요종교	루터복음교(국교, 80%), 가톨릭, 침례교, 이슬람교
GDP	3,420억 불 (2014 EIU 기준)
	1인당 GDP : 44만 655불(2014 EIU기준)

### 1)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덴마크인권연구소 (Institut for Menneskerettigheder,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
- (2) 설립연도: 1987년
- (3) 설립배경 : 1987년 덴마크 의회법에 의해 현 DIHR의 전신인 덴마크인권센터(Center for Menneskerettigheder)가 먼저 설립됨. 2002년 덴마크국민당(Dansk Folkeparti)이 예산 등의 문제로 덴마크인권센터의 폐지를 제안했

2272)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3.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63.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6.27)

으나<sup>2273)2274)</sup> 덴마크 의회는 대신에 여러 관련 연구기관들을 묶어 덴마크 국제학·인권연구소(Dansk Center for Internationale Studier og Menneskerettigheder, 이하 DCIS)를 설립을 결정, 현재의 인권연구소는 2002년에 덴마크국제학·인권연구소센터 설치법 (Lov om Institut for Menneskerettigheder - Danmarks Nationale Menneskerettighedsinstitution)<sup>2275)</sup>에 따라 DCIS의 일부로 설립.<sup>2276)</sup> 인권 연구소는 2011년까지 DCIS의 일부였으나, 덴마크 2011년 총선 이후에 새로 꾸려진 내각에 의해 2012년에 DCIS가 해체되면서 덴마크국제학연구소(Dansk Institut for Internationale Studier, DIIS), 덴마크정당협력기구(Institut for Flerpartisamarbejde, DIPD)와 함께 분리되어 2012년 6월 18일 제정된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관련법(Lov om Institut for Menneskerettigheder - Danmarks Nationale Menneskerettighedsinstitution, LOV nr 553 af 18/06/2012)<sup>2277)</sup>에 근거하여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 출범하게 됨.

- 나) 설립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 (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2002년 6월 6일에 제정된 덴마크국제학·인권 연구센터설치법<sup>2278)</sup>에 근거하여 덴마크인권센터라는 독립된 인권기구에서 DCIS의 일부 기구로 지위와 함께 조직명도 변경됨. 당시 DCIS 자체는 국가의 연간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institute)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 2011년 DCIS의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 6월 18일 제정된 덴마크인권연구

2273) <http://menneskeret.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r/imr20hvidbog20ii.pdf> (검색일 2016.6.27)

2274) 자세한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의 역사는 Justesen(2013,2). "Bridging the divide-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of national equality bod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se study: Denmark"를 참조. 출처: <https://www.ucl.ac.uk/laws/bridging-the-divide/docs/btd-denmark-study> (검색일 2016.7.3.)

227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2116> (검색일 2016.6.27)

2276) <http://www.equineteurope.org/Danish-Institute-for-Human-Rights> (검색일 2016.6.27)

2277)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2116> (검색일 2016.6.27)

2278) LOV nr 411 af 06/06/2002

소설치법<sup>2279</sup>)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기구로 현재의 인권연구소가 설립. 최근 2013년 12월 6일에는 덴마크인권연구소및덴마크국제학연구소설치법개정안(Lov om ændring af lov om Institut for Menneskerettigheder - Danmarks Nationale Menneskerettighedsinstitution og lov om Dansk Institut for Internationale Studier, LOV nr 656 af 12/06/2013)<sup>2280</sup>)이 통과되면서 연구소의 일부 운영방식이 변경됨<sup>2281</sup>). 기타 관련법으로는 남녀평등법(Bekendtgørelse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LBK nr 1095 af 19/09/2007)<sup>2282</sup>, 고용등에서의남녀평등대우법(Bekendtgørelse af lov om ligebehandling af mænd og kvinder med hensyn til beskæftigelse m.v, LBK nr 645 af 08/06/2011)<sup>2283</sup>, 민족평등대우법(Bekendtgørelse af lov om etnisk ligebehandling, LBK nr 438 af 16/05/2012) 등이 있음. 또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인권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기관행정에 관한 법(offentlighedsloven<sup>2284</sup>),forvaltningsloven<sup>2285</sup>), 국가회계에관한법(Lov om statens regnskabsvæsen<sup>2286</sup>) 등에 의거하여 운영됨.<sup>2287</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현재 인권연구소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은 인권자문위원회(Rådet for Menneskerettigheder, 영문명: Council of Human Rights)<sup>2288</sup>)<sup>2289</sup>, 이사회, 관련대학 아래 실무를 총괄 담당하는 운

2279) LOV nr 553 af 18/06/2012

2280)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52005> (검색일 2016.6.27.)

2281) 종전 연구소를 운영하는 13인의 위원에서 총 14인의 위원으로 변경. 위원회에 1인이 더 추가된 경우는 그린란드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하는데 그 이유가 있음.

2282)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20929> (검색일 2016.6.27.)

2283)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37042> (검색일 2016.6.27.)

2284)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52299> (검색일 2016.7.3.)

2285)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67-02-10> (검색일 2016.7.3.)

2286)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57058> (검색일 2016.7.3.)

2287)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2015 연례보고서(ÅRSRAPPORT,2015).

2288) <http://www.humanrights.dk/about-us/the-council-human-rights> (검색일 2016.6.27.)

영관리국(3명), 운영관리국 아래에는 4개의 사무국(커뮤니케이션국(Communication Division)(8명), 재무행정국(Financial and Administration Division)(25명), 국내사업국(National Division)(총 49명), 국제사업국(International Division)(총 68명)이 설치되어 있음. 국내사업국 산하에는 평등대우과(Equal Treatment Department)(20명), 모니터링과(Monitoring Department)(10명), 연구과(Research Department)(19명)가 설치되어 있고, 국제사업국 직속으로 국제사업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5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로는 인권시스템과(Human Rights System Department)(34명), 인권함양과(Human Rights Promotion Department)(17명), 인권개발과(Human Rights Development Department)(17명)가 설치되어 있음. 2016년 현재, 총 163명의 직원(학생조교, 박사펠로우 등 포함)이 연구소에 근무([그림 1] 참조)<sup>2290</sup>.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먼저 국내사업국 산하에 있는 평등대우과는 차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집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적 설문조사와 관련 프로젝트를 사회이슈별로 수행하고 이러한 조사수행을 위한 방법론과 툴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sup>2291</sup> 모니터링과에서는 덴마크 정부가 국내외 인권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입법 단계에서의 자문활동을 수행하며 덴마크가 UN에 보고하는 인권상황과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역시 같이 검토함<sup>2292</sup>. 연구과에서는 연구과에서는 인권연구소의 핵심적인 역할인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로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입법자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sup>2293</sup> 다음으로 국제사업국 하위 부서인 국제사업사무국

2289) 인권자문위원회는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2장 5조(LOV nr 553 af 18/06/2012 Kapitel 2. §5)에 따라 인권연구소를 운영을 위한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인권연구소 내 기구로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6개 부처, 의회옴부즈맨을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 3곳, 덴마크장애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관련 위원회 5곳, 정당 및 관련 NGO들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운영되고 있음.

2290) <http://www.humanrights.dk/about-us/departments> (검색일 2016.6.27.)

2291)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departments/equal-treatment> (검색일 2016.8.1.)

2292)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afdelinger/monitoring> (검색일 2016.8.1.)

2293)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afdelinger/research> (검색일 2016.8.1.)

같은 경우, 인권연구소 부서들과 행정재무팀 간의 업무 연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정적 기회확대, 기금조성등에 대한 활동으로, 국제업무를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sup>2294)</sup> 인권시스템과에서는 다른 국가인권기구들과의 파트너십 사업, 기타 다른 국가의 정부기관들(아시아, 아프리카 등)과의 협력 사업을 담당함.<sup>2295)</sup> 인권함양과에서는 국내외 인권 모범 사례를 나누고, 국제 인권연구 사업, 인권교육 사업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자료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함.<sup>2296)</sup> 마지막으로 인권개발과에서는 지속가능개발, 기업과인권, 기업의 인권참여 3가지로 나누어 국제적 인권개발을 위한 국제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연구수행, 도구개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UN글로벌팩트(UN Global Pact)와 같은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함.<sup>2297)</sup>

이사회는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2장 ‘운영 관한 조항(Institutionens ledelse)’ 및 덴마크인권연구소및덴마크국제학연구소설치법개정안 제1조에 근거하여 4년 임기(재임 가능)의 14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사회 위원장 1명과 이사회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위원장은 Dorte Elise Svinth.(코펜하겐시 프레데릭스베르지역 사무국장). 부위원장: Carsten Fenger(독립 연구자), Jesper Lindholm(올보르대학 조교수)임. 이사회 위원장과는 달리 연구소 소장(Executive Director)은 Jonas Christoffersen이며, 부소장직(Deputy Executive Director)에는 국내사업 담당의 Louise Holck, 국제사업 담당의 Eva Grambye가 각각 2명이 맡고 있음. 소장은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2장 6조<sup>2298)</sup>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선출함.<sup>2299)</sup>

2294)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afdelinger/international-secretariat> (검색일 201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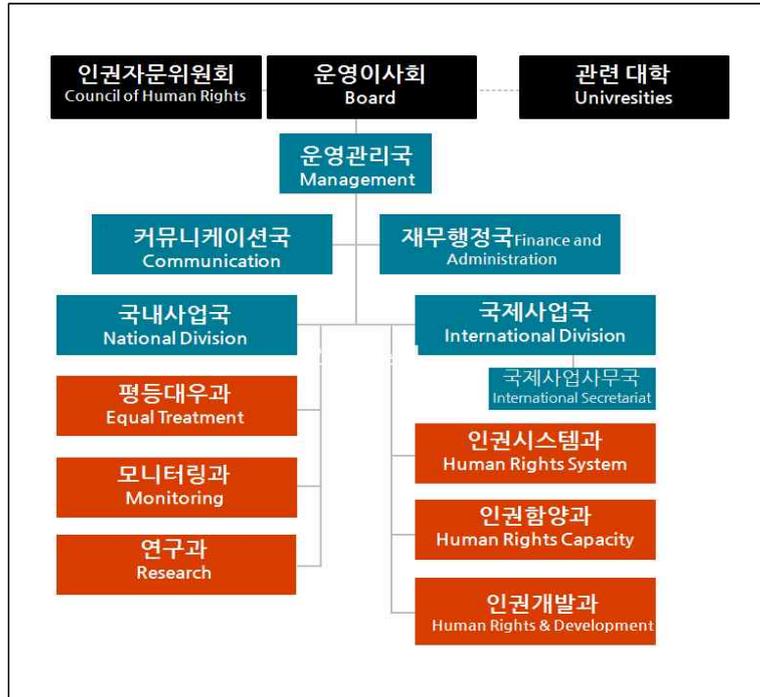
2295)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departments/human-rights-systems> (검색일 2016.8.1.)

2296)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departments/human-rights-capacity> (검색일 2016.8.1.)

2297) 출처: <http://www.humanrights.dk/about-us/departments/human-rights-development> (검색일 2016.8.1.)

2298) LOV nr 553 af 18/06/2012, Kapitel 2 §6.

2299) <http://www.humanrights.dk/about-us/board> (검색일 2016.6.27.)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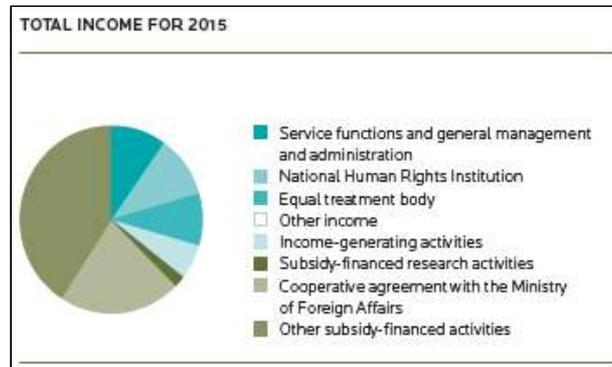
[덴마크-그림 50] 덴마크인권연구소 조직도

-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덴마크인권연구소 본부의 위치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 있으며 따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음.
-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 정부의 한 해 예산 책정으로 받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grant)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 등에 의해 운영. 유럽연합, 덴마크외무부(Udenrigsministeriet) 등 여러 기관과 해마다 맺는 협약에 따라 자금 조달하기도 함. 2015년에는 덴마크외무부의 덴마크 개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으로 290만 2천 DKK(약 51억원)를 조달받음.<sup>2300)</sup> 그러나 2016년 정부 예산안 통과에서 외무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덴마크인권연구소 국제사업에 관한 예산이 종전보다 530만 DKK(약 92억 7천만원)이 삭감됨.<sup>2301)</sup> 2015년 덴마크인권연

2300) 출처: 덴마크 인권연구소 2015년 연례회계보고서 [http://menneskeret.dk/files/media/dokumenter/om\\_os/oekonomi/arsrapport\\_2015\\_institut\\_for\\_menneskerettigheder.pdf](http://menneskeret.dk/files/media/dokumenter/om_os/oekonomi/arsrapport_2015_institut_for_menneskerettigheder.pdf) (검색일 2016.6.27)

구소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총 수입은 총 13억 3,300만 DKK(약 23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정부의 보조금은 390만 DKK(약 67억원)으로 이는 총 수입에 약 30%를 차지하고, 외무부의 자금까지 합칠 경우 정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총 수입의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302)</sup> 이외에도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업을 위한 운영비,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있음([그림 2] 참조).<sup>2303)</sup>

- (4) 인권연구소는 또한 핵심적인 행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정부가 정하는 조건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sup>2304)</sup>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2015-16 연례보고서

[덴마크-그림 51] 2015년 인권연구소 수입

-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 2301) <http://www.humanrights.dk/news/institutes-budget-cut-53-million-kroner> (검색일 2016.6.27)
- 2302)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2015-16 의회제출 연례보고서 [http://www.humanrights.dk/sites/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s/beretning\\_2016\\_engelsk\\_1.pdf](http://www.humanrights.dk/sites/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s/beretning_2016_engelsk_1.pdf) (검색일 2016.6.27)
- 2303) [그림 2]에서 수입창출사업에 의한 수입(Income-generating activities), 연구활동지원금(Subsidy-financed research activities), 기타 지원금활동에 의한 수입(Other subsidy-financed activities)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보조금 및 외무부와의 협약에 의한 지원금임.
- 2304) Justesen(2013,2). “Bridging the divide-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of national equality bod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se study: Denmark”를 참조. 출처: <https://www.ucl.ac.uk/laws/bridging-the-divide/docs/btd-denmark-study>

-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2장 제3조 2항과 덴마크인권연구소및덴마크국제학연구소설치법개정안 제1조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 그린란드인권위원회(Grønlands Råd for Menneskerettigheder, 영문명: Greenland Human Rights Council)<sup>2305</sup>, 인권연구소직원들이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여 총 14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구성함. 먼저 연구소 내 기구인 인권자문위원회가 6인을 임명하고, 덴마크의 4개 대학교(코펜하겐대학교, 아르후스대학교, 서덴마크대학교, 올보르대학교)에서 각각 1인을 임명, 덴마크대학교총장연합회(Rektorkollegiet under Danske Universiteter)에서 2인을 임명함. 이외에 인권연구소 직원들에 의해 임명된 위원 1인을 임명하고 있으며, 2013년 개정안 도입 이후 그린란드인권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 위원 1인으로 총 14인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이사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함.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3조 4항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임명된 위원 중 소수민족국민에게 중요한 인권영역, 남녀간 평등한 대우와 관련한 중요 인권영역을 다룰 수 있는 위원을 최소 1인 임명하며, 덴마크장애협회의 권고에 따라 최소 1인을 선출하여야 함.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3조 5항 및 6항에 각각 근거하여, 대학에서 임명된 위원들 중 최소 2인 이상은 법조인이어야 하며, 인권연구소 직원들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은 덴마크의 회사법(selskabsloven)<sup>2306</sup>의 관련조항에 따라 선거를 거쳐 선출됨.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알 수 없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알 수 없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2장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4년이며,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위원들 가운데에서 재임이 가능하며, 공공자문을 거침.<sup>2307</sup>

2305) 덴마크의 지배 아래 있으나, 자치정부가 있는 그린란드는 현재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있어서도 덴마크의 관리 아래에 있음. 그린란드인권위원회는 덴마크인권연구소 그린란드정부에 의해 그린란드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위임받은 이후로 협력 기구로서 2013년 4월 발족함. 이에 따라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개정안이 그린란드인권위원회의 1인이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이사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내용으로 제정됨. 더 자세한 그린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 공식 홈페이지(<http://humanrights.gl/om-os/>) 혹은 덴마크인권연구소의 그린란드인권위원회와의 협력에 대한 내용의 웹사이트(<http://www.humanrights.dk/place/greenland>)를 참조토록 함.

2306)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4205> (검색일 2016.6.28)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알 수 없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덴마크인권연구소(이하 인권연구소)는 교육, 연구, 정부 및 국회 권고 등과 같이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인권인식증진사업에 주로 힘쓰는 인권홍보 중심의 국가인권기구(promotional type and legal support body)임.<sup>2308)2309)</sup>

(1) 국내외 인권상황 모니터링

(가) 덴마크인권연구소는 2009년 국가평등대우기구(National Equality Treatment Body)로 지정되면서,<sup>2310)</sup> 평등대우과(Equal Treatment Department)가 신설되었음. 국내 인권 모니터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률제안이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연간 약 60건의 입법초안에 대한 자문 사업 수행을 해오고 있음.<sup>2311)</sup>

(나) 국내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매년 각 분야별 인권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서(status report) 및 국내 인권상황문제를 종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덴마크의 사안별 인권보고서(Human Rights on the Agenda)를 제출하여,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함.

(다) UN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에 2009년 비준하여, 2011년 1월부터 인권연구

2307) 출처: 서창록·정규선·권용주(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현황 연구.

2308) <http://www.equineteurope.org/Danish-Institute-for-Human-Rights> (검색일 2016.7.3.)

2309) 여기서 인권홍보중심의 기구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조직내 인권증진 모범사례를 지원하거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반차별과 평등에 근거한 지식 확충,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적 자문서비스 제공하는 등의 넓은 범위의 다양한 활동들에 투여하는” 기관을 말함 (유럽연합이사회(EC) 평등기구에 대한 보고서(2010), Equinet 재인용). 출처: [http://www.humanconsultancy.com/Publications/EB%20study%20Final%20Synthesis\\_Report\\_EN%2026-01-2011.pdf](http://www.humanconsultancy.com/Publications/EB%20study%20Final%20Synthesis_Report_EN%2026-01-2011.pdf) (검색일 2016.7.3.)

2310) EU 반차별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함(2006/54/EC, 2004/113/EC, 2000/43/EC). [http://menneskeret.dk/files/media/hoeringssvar/h%C3%B8ringsvar\\_afgivet\\_i\\_2013/februar\\_2013/32\\_b\\_antidiscrimination\\_situation\\_and\\_priorities.pdf](http://menneskeret.dk/files/media/hoeringssvar/h%C3%B8ringsvar_afgivet_i_2013/februar_2013/32_b_antidiscrimination_situation_and_priorities.pdf) (검색일 2016.7.3.)

2311) <http://menneskeret.dk/monitorering/hoeringssvar> (검색일 2016.7.3.)

소는 장애인권리협약 33조 2항에 따라 장애인권리 협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덴마크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감시, 인식증진,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적 권한을 부여받아 (appointed as the independent mechanism for monitoring,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RPD in Denmark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2) of the CRPD)<sup>2312)</sup>,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덴마크 국내 사업 분야에서도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 관련 사업을 진행함.

(라) 덴마크 국내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국제사회에도 발표하여 국가대표 인권기구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7개의 인권관련 UN협약(UN 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 ESC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 고문방지협약, UN CRC(아동권리협약), UN 인종차별철폐협약, UN 여성차별철폐협약, UN CRPD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상태이며<sup>2313)</sup>, 이러한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국내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및 권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함.<sup>2314)</sup>

(2) 인권 연구 및 분석 수행<sup>2315)</sup>

(가) 인권에 관한 연구는 인권연구소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덴마크인권연구소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인권연구소 중 하나이며 현재 인권연구소연합(Association of Human Rights

2312)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2015). THE GOLD INDICATORS. ([http://www.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r/equal\\_treatment\\_2015/gold\\_indicators\\_ii\\_2015.pdf](http://www.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r/equal_treatment_2015/gold_indicators_ii_2015.pdf)) (검색일: 2016.8.1.)

2313) 그러나 2011년 5월에 발표한 Universal Periodic Review 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유엔 협약 조항이 유럽인권협약과는 달리, 덴마크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덴마크인권연구소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시정할 사항으로 보고함. (출처: 2011 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2011/1/28),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1/104/87/PDF/G1110487.pdf?OpenElement>) (검색일: 2016.7.21.)

2314) <http://menneskeret.dk/monitorering/internationale-rapporter> (검색일 2016.7.3.)

2315) <http://www.humanrights.dk/Research> (검색일 2016.7.3.)

Institute, AHRI)<sup>2316</sup>의 사무국(secretariat)을 맡고 있음.

(나)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은 19명(박사펠로우, 학생 조교포함)이며, 주요 연구분야로는 6개의 분야가 책정되어 있으며, 평등과 취약집단(Equality and vulnerable groups), 인권과 개발(Human rights and development), 인권과 보편성(Human rights and universality), 사법체계 행위자(Justice system actors), 기술과 인권(Technology and human rights), 방법론과 이행(Methods and implementation)이 있음.

(다) 이외에도 연구 분과는 인권에 대한 지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인권도서관(Human Rights Library)<sup>2317</sup> 관리에도 힘쓰고 있음.<sup>2318</sup>

(라) 또한 인권관련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 세계 인권연구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는 등의 연구협력 사업도 2014년 9월 추진함.<sup>2319</sup>

### (3) 인권 교육 수행 및 촉진

(가) 인권교육은 국내외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국내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의무 이행자(duty bearers)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인권교육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인권연구소의 인권교육은 ①인권연구소의 파트너 혹은 타겟 그룹을 위한 상황에 알맞은 인권교육 개발, ②국가인권기구의 인권교육 역할과 능력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수행함.<sup>23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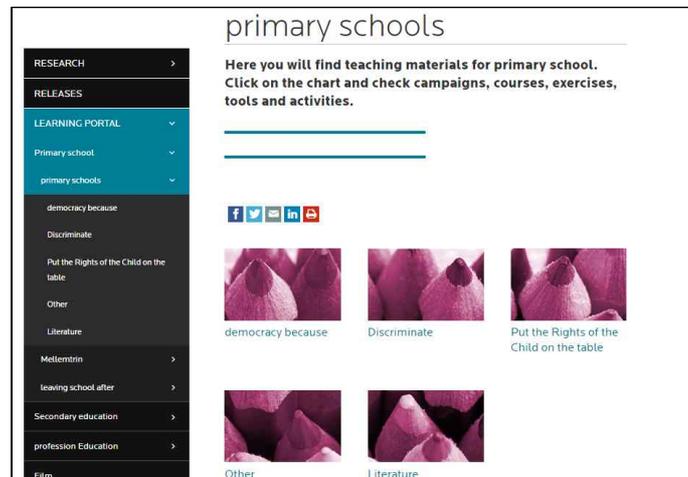
2316) 인권연구소연합(Association of Human Rights Institute, AHRI)는 전세계에서 50개 이상의 인권분야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모임임. 현재 24개국의 다른 국가들의 인권연구소들이 본 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이 기구는 다학제적 인권연구를 신장시키고, 세계 인권연구소간의 연구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더 자세한 연합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출처: <http://www.ahri-network.org/> (검색일 2016.8.1.)

2317) <http://www.humanrights.dk/research/library> (검색일 2016.7.3.)

2318) 인권도서관은 인권센터 시절부터 쌓아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 공공에게 개방됨.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대한 참고도서, 인터넷 자료(e-resource), 학술지 원문열람, 유럽연합 인권 관련 조약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http://www.humanrights.dk/research/library/about-the-library> (검색일 2016.7.3.)

2319) 2014년 9월 코펜하겐 대학교와 인권연구소가 함께, 인권연구소연합의 국제연구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100여명이 넘는 발표자가 인권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함. 출처: 2014-15 덴마크인권연구서 연례보고서

- (나) 덴마크인권연구소 홈페이지 내 인권교육 포털(Læringsportalen)<sup>2321</sup>을 운영하여, 인권연구소가 개발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직을 위한 단계별 교육자료와 영화, 책과 같은 인권교육 참고자료를 열람해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을 위한 FAQ 코너도 마련해 놓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간부 혹은 학교 교사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를 위한 봄과 가을학기 시민사회인권교육 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사회단체에 특화된 인권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sup>2322</sup> 2016년 현재는 4개의 강좌가 진행 중임.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포털

[덴마크-그림 52]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포털 초등학교를 위한 인권교육자료 페이지

#### (4)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

- (가) 인권연구소는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권에서의 기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촉진하기

2320) <http://www.humanrights.dk/our-work/our-work-denmark/education> (검색일 2016.7.3.)

2321) <http://menneskeret.dk/viden/laeringsportalen> (검색일 2016.7.3)

2322) <http://menneskeret.dk/viden/undervisning/civilsamfundskurser> (검색일 2016.7.3)

위해 덴마크 전역의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기업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틀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sup>2323)</sup>

(나) 인권연구소는 회사협력원칙(corporate engagement principles)<sup>2324)</sup>에 의거하여, 네슬레(Nestle), 셸(Shell)과 같은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기업 내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국제적, 국가적, 프로젝트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기업 내 인권보호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sup>2325)</sup>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상황 개선 기여

(가) 인권연구소는 국내 인권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사업팀을 두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힘쓰고 있음.

(나) 크게 5개의 지역(중동-북아프리카(예멘,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유라시아(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타지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시아(중국, 미얀마, 네팔), 서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아프리카(잠비아, 짐바브웨))으로 하여 해당 국가의 관련 국가기관과 단체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의 인권 증진에 함께 힘쓰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함.<sup>2326)</sup>

(6) 국내 발생하는 인권문제 상담

(가) 인종평등진정위원회(Klagekomitéen for Etnisk Ligebehandling og Ligestillingsnævnet., 영문명: Complaints Committee on Ethnic Treatment)가 2003년 4월 24일 인권연구소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인종차별사태에 대한 진정사건 결정을 담당한 바 있었으나, 평등한대우

2323) 기업 내 인권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틀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그 예시로는 인권연구소가 개발한 인권가이드와 툴박스(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등이 있음.

출처: <http://www.humanrights.dk/business-human-rights/highlighted> (검색일 2016.7.3.)

2324) [http://www.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business/dihr\\_corporateengagementprinciples\\_12.2012.pdf](http://www.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business/dihr_corporateengagementprinciples_12.2012.pdf) (검색일 2016.7.3)

2325) <http://www.humanrights.dk/our-work/business/working-companies> (검색일 2016.7.3.)

2326) <http://www.humanrights.dk/where-we-work> (검색일 2016.7.3.)

를위한이사회설치법(Bekendtgørelse af lov om Ligebehandlingsnævnet, Lov nr. 387 af 27. 27/05/2008)<sup>2327)</sup>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진정기능이 2009년 1월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Ligebehandlingsnævnet, 영문명: The Board of Equal Treatment)<sup>2328)</sup>로 이행되었음. 이 기구는 인종평등진정위원회 외에도 2000년에 설립되었던 양성평등이사회(The Board of Gender Equality) 등 이외의 기능을 합친 기구로 설치됨. 따라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관점, 성적 취향, 나이, 장애 등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진정을 해결하게 됨. 이에 따라 인권연구소에는 현재 따로 진정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인권문제 상담 기능만 존재하는 상황임.<sup>2329)</sup> 현재는 차별예방과 평등 확대를 위한 자문기구로 기능하고 있음.

- (나) 인권연구소는“전문화된 평등 국가기구(specialized equality body)”라는 지위를 가지고, 차별을 겪은 국민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 직통번호와 전용 이메일을 운영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함. 인권연구소에서 마련된 상담기능(counselling)은 이메일이나 상담직통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상담분야는 직장, 의료, 여가, 교육, 상품과 서비스, 공공기관에서의 처우로 나뉘어져 있음.<sup>2330)</sup>
- (다) 유럽연합평등기구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equality bodies, Equinet)에 보고된 인권연구소의 프로필 정보에 따르면, 인권연구소에 접수하여 지원한 사례 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는 1년 동안 15건, 2015-16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년 동안 30건으로 나타나며 매우 적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음.<sup>2331)</sup>

2327)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3051> (검색일 2016.6.28)

2328) 홈페이지: <https://ast.dk/naevn/ligebehandlingsnaevnet/hvis-du-vil-klage-til-ligebehandlingnaevnet>

2329) [http://www.humanrights.dk/sites/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ser/ethnic\\_profiling\\_english.pdf](http://www.humanrights.dk/sites/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ser/ethnic_profiling_english.pdf) (검색일 2016.6.30)

2330) <http://menneskeret.dk/counseling> (검색일 2016.6.30.)

2331) Justese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구소가 피해자 지원하는 수가 이처럼 적기 때문에 실제 차별에 의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효과적인 전문화된 국가평등기구인지에 대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기도 함 (p.10, Justesen, 2016). 출처: Justesen,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덴마크 국내 유일한 인권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인식에 대한 인식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 진행

(가) 1987년 덴마크인권센터로 시작한 덴마크인권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지원(state-funded)을 받지만, 여러 인권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가 관여하여 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하는 독립 기관으로, 덴마크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차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보고서를 출판하고 자문활동을 하는 유일한 국가인권기구임. 전반적인 국민의 인권인식 및 지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2) 덴마크 국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정부, 의회 감시 등을 수행

(가) 다양한 교육, 연구, 홍보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연구소는 감시활동과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정부와 의회가 제안하는 법안이 인권법에 저촉되는지를 감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자문활동을 실시함.

<덴마크-표 27> 덴마크인권연구소 정부 및 국회 입법 자문활동 건수

(단위: 건)

연도	2013	2014-15	2015-16
입법 자문활동 건수	157	174	154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2013, 2014-15, 2015-16 연례보고서 종합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B 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2016. "Denmark - Country report, non-discriminatio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report. <http://www.equalitylaw.eu/downloads/3678-denmark-country-report-pdf-1-26-mb> (검색일 2016.7.3.)

Institutions) 가입 후 2001년 A등급을 받았으며, 2007년 10월, 2012년 12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332)</sup>

## 2)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및 활동내용

###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1) 주요 업무 범위

(가)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 연구,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덴마크 유일의 국가평등기관(National Equality Body)<sup>2333)</sup> 이자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NHRI)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예산에 대한 회계내부감사(internal audit)를 받으나 이사회 및 소장 등 관리직 선출, 예산집행, 지원결정, 기타 연구소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나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임.

(나) 인권연구소는 인권에 관한 지식 확산을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권교육자료를 직접 개발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인권도서관을 통해 관리하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다) 인권연구소는 연구활동을 통해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활동과 보고활동 및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 별로 인권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발표함.<sup>2334)</sup>

(라) 기업과 같은 사적 단체들(private actors)과도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2332)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6.27)

2333) 덴마크인권연구소는 유럽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인종 뿐만아니라, 젠더 분야에서도 평등국가기구로 지정되어 인종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정됨(2000/43/EC, 2004/113/EC, 2006/54/EC). 또한 2011년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의 33.2조에 따라 장애인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2334) 덴마크인권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총 12개(아동, 기업, 인종, 장애, 젠더, 전쟁과 테러리즘, 감옥, 사법, 외국인, 경찰, IT권리, 그린란드 인권) 인권분야로 나누어 인권사업을 소개하고 있음. 출처: <http://menneskeret.dk/vores-arbejde> (검색일 2016.7.3.)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환경 안에서의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

- (마)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2009년 따로 분리된 진정기구인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 등을 통해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권연구소 안에 있는 진정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했음).
- (바) 국제적인 인권신장을 위해 외무부에 따로 기금을 받아 국제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내 5개 지역의 18개 국가들의 지역 단체들 및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2)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에 명시된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주요 업무

- (가)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 제1장 2조<sup>2335)</sup>에 명기된 인권연구소의 주요 업무와 의무는 8가지임 - ① 덴마크내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감시와 보고, ② 인권에 대한 분석과 연구 수행, ③ 의회, 정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게 인권관련 자문활동, ④ 인권관련 시민사회조직과의 협력과 지원, ⑤ 인권교육 수행과 인권문화 육성, ⑥ 인권에 대한 정보 관리, ⑦ 인권에 대한 도서관 시설 제공, ⑧ 국내외 인권을 위한 기여 활동
- (나) 동법 2조 2항<sup>2336)</sup>에 따르면, 인권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활동을 통해 성별, 인종, 민족에 의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함. 3개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① 피해자, 연합, 조직, 그리고 기타 법인단체들의 권리 측면에서 차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②차별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 ③ 차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권고사항을 작성.
- (다) 이외에도 동법 2조 3항<sup>2337)</sup>에 의해, 인권연구소는 반드시 현재 인권연구소의 활동 및 덴마크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2335) LOV nr 553 af 18/06/2012, Kapitel 1 §2.

2336) LOV nr 553 af 18/06/2012, Kapitel 1 §2. stk 2.

2337) LOV nr 553 af 18/06/2012, Kapitel 1 §2. stk 3.

(3)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가) Justesen의 2013년 연구<sup>2338)</sup>에 따르면, 2012년 새로 제정된 덴마크 인권연구소설치법에 의해, 인권연구소는 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외무부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덴마크인권연구소설치법이 제정된 민법(civil law)에 의해 관리됨.

(나) 인권연구소는 또한 핵심적인 행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정부가 정하는 조건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의 제한 없이 지원결정을 내릴 수 있음. 조사수행, 연구보고서 및 권고사항 작성, 정부 자문활동 등 모두 인권연구소는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sup>2339)</sup>

(다)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나 여전히 외무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특히 인권연구소는 인권연구소의 활동을 의회에 1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Beretning, Annual Report to Danish Parliament)”라는 제목으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외무부의 경우에는 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Justesen의 2013년 같은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2년 해당 법의 발의 당시, 외무부 대표가 이사회에 투표권 없이 감독관으로 참석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공공자문을 받을 당시 파리협약 조항 B2에 근거할 때,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금부문에 통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따라 큰 비판을 받아 삭제됨. 이외에도 인권연구소의 이사회는 인권연구소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이 역시 UN파리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비판받았으나, 해당 조항(OV nr 553 af 18/06/2012, Kapitel 1 §4 stk 3.)은 통과되어 현재 인권연구소 관련법 상정에 있어

---

2338) Justesen(2013,2). “Bridging the divide-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of national equality bod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se study: Denmark”를 참조. 출처: <https://www.ucl.ac.uk/laws/bridging-the-divide/docs/btd-denmark-study>

2339) Justesen (2013). Bridging the divide-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of national equality bod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se study: Denmark”를 참조. 출처: <https://www.ucl.ac.uk/laws/bridging-the-divide/docs/btd-denmark-study>

서 외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sup>2340)</sup>

### 3)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

(가) 덴마크인권연구소는 진정기능이 사라진 이후, 직접 연구소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해당 사례에 대하여 상담 및 법률 자문 실시 등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음.<sup>2341)</sup> <표 1>은 인권연구소에 접수 혹은 법률 자문으로 처리 된 사례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자문활동 건수가 71건에서 30건으로 떨어져 관련 활동의 둔화가 두드러짐.

<덴마크-표 28> 차별에 의한 인권피해 사례 접수 및 법률 자문 건수

연도	2013	2014	2015
접수	자료없음	자료없음	354
법률자문	71	43	30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2013, 2014-15, 2015-16 연례보고서 통계 종합

#### 나) 교육

(가) 인권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It Takes All Kinds - Fighting Homophobia in Schools’라는 이름의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동등한 대우, 차별,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높이는 EU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유럽연합 국가 9개국의 관련 기관과 함께, 3개의 웹사이트를 시작함 - 학생들을 위한 포털사이트, 교사와 학교장을 위한

2340) Justesen (2013). Bridging the divide-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of national equality bod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se study: Denmark”를 참조. 출처: <https://www.ucl.ac.uk/laws/bridging-the-divide/docs/btd-denmark-study>

2341) 인권연구소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3가지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① 차별에 대한 진정을 위한 자문이나 반차별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 해당 사례를 재판에 회부하거나,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가 할 수 없는 지원을 피해자에게 제공. ③ 차별 사례에 대해 법률 고문으로서 재판에 관여. 출처: Justsen, 2016.

교육자료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 LGBT 인권 이슈에 관여하는 활동가, 언론인, 당사자들 간의 온라인 포럼사이트). 각 웹사이트는 9개의 참여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활용됨.<sup>2342)</sup>

- (나) 2014년 인권연구소는 중국 텐진의 난카이대학교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방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기로 함. 본 협력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고, 첫 두 해에는 다른 연령 집단 마다의 맞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 세 번째 해에는 교육자료에 근거하여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함.<sup>2343)</sup>

#### 다) 홍보

- (가) 2011년 인권연구소는 ‘지금 단호히 반대하세요(put your foot down now)’라는 뜻의 덴마크어인 ‘sigranu’라는 이름의 차별 알리기 웹사이트 시작함. 이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자신이 차별받은 내용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로 이용됨. 이러한 웹사이트는 불법적이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코펜하겐시가 이를 담당하였지만, 2011년에는 인권연구소가 담당하여 해당 사례를 수집함. 또한 2012년 2월에는 차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권연구소의 상담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Say No to Discrimination’ 캠페인을 펼침. 여러 언어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을 겪을 경우 적극적으로 인권연구소의 상담과 자문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됨.<sup>2344)</sup>
- (나) 2014년에는 인권연구소는 아동권리협약 25주년을 기념하여 인스타그램 홍보캠페인인 ‘Stand for your right’(#ståpådinret)를 시작함. 1천 5

---

2342) 9개국 관련기관: LGBT Denmark (덴마크), RFSL (스웨덴), LEN (아일랜드) Campaign against Homophobia(폴란드), Mozaika (라트비아), Bilitis (불가리아), ACCEPT (루마니아), ILGA-Portugal (포르투갈), FELGBT (스페인). 대표 웹사이트: <http://www.ittakesallkinds.eu>, 출처: 2011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http://www.humanrights.dk/publications/annual-report-2011>, 검색일(2016.7.3.))

2343) 출처: 2014-15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http://www.humanrights.dk/publications/annual-report-danish-parliament-2014-15> (검색일 2016.7.3.))

2344) 출처: 2011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백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인권연구소와 함께 협약 25주년을 축하함  
(2345)(2346)

라) 정책개선

- (가) 의료시스템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호<sup>2347)</sup>: 인권연구소의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따라, 덴마크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Elders)는 의료시스템에서 아동을 통역인으로 사용하는 법을 개정. 결론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에만 15세 이하의 아동을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현재 인권연구소는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통역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안 강화<sup>2348)</sup>: 의회는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안(child-abuse package , Overgrebspakke)’을 채택, 새로운 법안에서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보호시켜야 하며, 24시간 안에 보고된 성폭력 사항에 대해 조치를 당국이 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 인권연구소의 권고사항에 따라 피해 아동이 도움과 치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Five Children’s home’이 설립될 예정.
- (다) 보육시설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대한 규칙 강화<sup>2349)</sup>: 2014년 당시 덴마크사회아동통합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Children and Integration)는 보육기관에서의 강제력의 사용과 관련한 인권문제가 있음을 인권연구소가 참여한 옴부즈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위원회(Committee on the Use of Force, Magtanvendelsesudvalget)를 발족함. 2014년 말까지, 해당 위원회는 보육기관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기로 함.

2345) 출처: 2014-15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46) 인스타그램 해쉬태그를 통해 확인가능. 출처: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st%C3%A5p%C3%A5dinret/> (검색일 2013.7.3.)

2347)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48)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49) 출처: 2014-15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조치<sup>2350</sup>): 2014년 덴마크의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조사활동그룹을 조직하였고,  
인권연구소는 해당 조사활동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5년 1월  
에 정부에 관련 권고사항을 제출함.

마) 사법부 의견 제출

(가) 인권연구소는 정부와 의회의 입법과정, 정책개선에 대한 자문내용 및  
권고사항만을 제출하며, 사법부에 대한 의견 제출은 따로 하지 않음.  
다만 차별 피해자에 대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로서 활동할 수  
있음.

바) 주요 인권이슈

(가) 페퍼스프레이(Pepper Spray)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sup>2351</sup>): 2015-16년  
최근 인권연구소는 감옥, 재판 이전 감금시설,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한 페퍼스프레이 사용에 대한 문제를 관심 있게 연구 및 조사하고  
있음. 2014년 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덴마크감옥  
보호관찰청(Direktoratet for Kriminalforsorgen, 영문명: the Danish  
Prison and Probation Service)<sup>2352</sup>)은 직원들의 페퍼스프레이 사용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였고, 불필요한 상황에서의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기도 함. 또한 해당청은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의  
페퍼스프레이 사용 시 매우 조심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함.  
또한 2015년 10월, 경찰의 페퍼스프레이 사용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덴마크경찰청(Politi, 영문명: the Danish National Police)<sup>2353</sup>)은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정교화하  
기 위한 조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나) 특정 시민들에 대한 총선 투표권 제외에 대한 문제<sup>2354</sup>): 2015년 총선

2350) 출처: 2014-15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51)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52) <http://www.kriminalforsorgen.dk/Direktoratet-for-Kriminalforsorgen-3954.aspx>  
(검색일 2016.7.3.)

2353) <https://www.politi.dk/en/servicemenu/home/> (검색일 2016.7.3.)

2354)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기간 동안, 덴마크선거법은 2000명 정도의 소위 가디언쉽6에 해당하는 덴마크국민의 투표권리를 배제함. 가디언쉽 6(værgemål 6)<sup>2355</sup>에 해당하는 덴마크국민은 자신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가디언쉽 6에 해당하는 국민 중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선거기간 동안 투표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함. 인권연구소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 새로운 정부는 가디언쉽 6에 해당하는 국민이 지방, 지역, 유럽의회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인권연구소는 총선에서의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 (가) 잠비아에서의 법적자문활동<sup>2356</sup>: 인권연구소는 잠비아의 루사카(Lusaka)의 지방법원과 함께,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1200명이 넘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고소된 국민들을 법률서비스유닛(Legal Service Unit)을 통한 지원을 수행. 법원은 이 프로젝트가 잠비아 전국으로 퍼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 (나) 서아프리카 테러리즘 내 인권문제 해결활동<sup>2357</sup>: 2015년 1월 인권연구소는 UN마약및범죄사무국의 테러리즘예방과(the Terrorism Prevention Branch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sup>2358</sup> 와 함께 테러리즘에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 이 파트너십을 통해 서아프리카 국가의 경찰 공무원에게 UNODC의 강력범죄에 대한 인권과 정의 실현에 관련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소의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관련 인권 향상 방법론과 지식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전달 하도록 함.

2355) 가디언쉽6는 법적능력을 상실한 국민에게 부과되며 가디언쉽법 6조(værgemålslovens § 6)에 근거함.[http://www.civilstyrelsen.dk/fondskontor/Personret/vaergemaal/hvad\\_er\\_vaergemaal.aspx](http://www.civilstyrelsen.dk/fondskontor/Personret/vaergemaal/hvad_er_vaergemaal.aspx) (검색일 2016.7.3.)

2356)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57)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58) <https://www.unodc.org/unodc/en/terrorism/> (검색일 2016.7.3.)

- (다) 니제르 테러리즘 용의자 구금 시 발생하는 인권문제 워크숍 개최<sup>2359)</sup>: 2015년 6월, 니제르국립경찰학교와 함께, 파트너십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 25명의 법조인, 니제르의 반테러리즘 경찰부대 대장과 함께한 이 워크숍은, 테러리스트 용의자 감금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공정한 재판과정과 구금된 아동용의자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함. 유사한 워크숍이 아동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여, 다카르에서 2015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됨.
- (라) 네슬레 사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업 내 인권 개선<sup>2360)</sup>: 인권연구소의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로는 스위스식품업체인 네슬레사와의 2010년부터 시작된 협력 사업인데, 인권연구소와 협력하여 33만 5천명의 197개 직원이 11개의 인권영향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up>2361)</sup>를 도입해 인권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수행함. 각각의 평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되었고, 인권연구소는 50명에서 100명까지의 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원, 간부, 생산직, 지역정부관리와 같은 관련 인물을 인터뷰도 수행함. 이에 대한 결과물로 백서인 ‘Talking the Human Rights Walk’을 발간,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영향력을 공동 평가하는 내용을 담음. 백서는 또한 네슬레 사례를 벤치마킹한 다른 기업의 사례도 담고 있음. 인권영향력평가는 매 3개월마다 오늘날까지 네슬레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지속적인 행동계획과 평가결과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결과를 낳음.
- (마) 리비아에서의 인권감시활동<sup>2362)</sup>: 리비아인권및시민자유위원회와 함께, 향후 3년 동안(2013-2016년)의 리비아인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인권연구소는 리비아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감옥에서의 인권에 대한 감시활동과 보고활동을 수행함.
- (바) 짐바브웨 인권기구 사무국 설립 지원<sup>2363)</sup>: 인권연구소는 짐바브웨 인권기구 사무국 설립을 돕고, 인권기구의 역할과 선거와 관련된 의무

2359) 출처: 2015-16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60) 출처: 2013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61) <http://www.humanrights.dk/projects/human-rights-impact-assessment>  
(검색일 2016.7.3.)

2362) 출처: 2013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63) 출처: 2013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등과 관련한 워크숍을 2013년 8월에 진행함.

- (사) 말리 국가인권기구 연례 보고서작성 지원<sup>2364</sup>: 인권연구소는 말리 국가인권기구가 오래되고 낙후된 감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를 연례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작성활동을 지원함.
- (아) 미얀마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센터 설립지원<sup>2365</sup>: 인권연구소는 영국과 덴마크 외무부와 함께, 양곤에 인권보호를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센터 설립을 지원함.

#### 4)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의회 옴부즈맨 (Folketingets Ombudsmand, 영문명: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sup>2366</sup>/<sup>2367</sup>)

- (1) 설립: 의회 옴부즈맨은 공공행정결과와 개인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1996년 의회옴부즈맨에관한법(Bekendtgørelse af lov om Folketingets Ombudsmand)에 의해 설립됨.<sup>2368</sup>/<sup>2369</sup>)
-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2370</sup>: 우선 의회가 법조인 1인이 옴부즈맨으로 임명함. 현재의 옴부즈맨으로 임명된 변호사는 아르후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인 Jørgen Steen Sørensen임. 옴부즈맨 변호사를 중심에 두고 이를 보좌하는 100여명의 직원이 있음. 관련 지원부서로는 국제사업국, 행정관리국, 국가기관사업국이 있으며, 행정관리국 산하에는 인사과, 정보·커뮤니케이션과, IT과, 학술과, 서비스과, 재무행정과가 속해있으며, 국가기관사업국에는 공공문제과, 사회문제과, 감독과, 아동과, 산업통상과, 언어

2364) 출처: 2013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65) 출처: 2013년 덴마크인권연구소 연례보고서

2366) 영문홈페이지: <https://en.ombudsmanden.dk/> (검색일: 2016.7.3.)

2367) 덴마크어홈페이지: <http://www.ombudsmanden.dk/> (검색일: 201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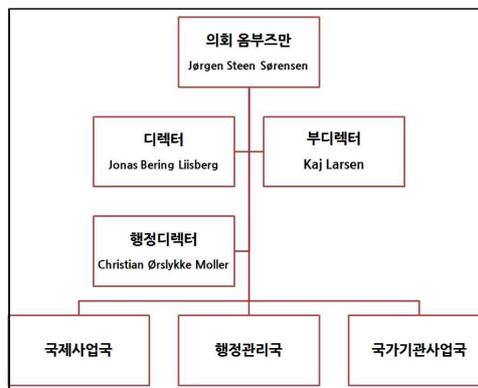
2368) LOV nr 473 af 12/06/1996

2369) 이후 개정법안으로 LOV nr 556 af 24/06/2005, LOV nr 502 af 12/06/2009, LOV nr 568 af 18/06/2012, LBK nr 349 af 22/03/2013이 있음 (출처: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3235> (검색일: 2017.7.3.)

2370) <http://www.ombudsmanden.dk/om/organisation/organisationsdiagram/> (검색일: 2017.7.3.)

서비스과가 속해 있음.

- (3) 주요업무<sup>2371)</sup>: 옴부즈맨의 주요 업무는 행정법 준수여부,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행정법상의 동등한 처우문제와 관련한 사건, 행정결정에 관한 사건뿐만 아니라 단순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의뢰한 사건까지 처리. 옴부즈맨은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데 한하여 어떠한 기관이나 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조사수행 동안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할 수 있음. 옴부즈맨이 사건 조사 이후,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권고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결정은 내리지 못함. 옴부즈맨은 해당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연례 4천에서 5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인권에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이 동등한 처우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 접수 및 사건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조사도 수행 가능함.



출처: 의회옴부즈맨 덴마크어 홈페이지

[덴마크-그림 53] 의회옴부즈맨 조직도

나)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 (Ligebehandlingsnævnet,, 영문명: The Board of

2371) 영문 의회옴부즈맨 사이트와 덴마크인권연구소의 2011년 보고서인 “Ethnic profiling in Denmark - legal safeguards within the filed of work of the police”를 참조함 (출처: <http://www.humanrights.dk/publications/ethnic-profiling-danmark-legal-safeguards-within-field-work-police> (검색일 2016.7.3.)

Equal Treatment)

- (1) 설립<sup>2372)</sup>: 2009년 1월 1일,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설치법<sup>2373)</sup><sup>2374)</sup>에 근거하여 설립됨. 기존 인권연구소의 진정기능과 기타 관련 위원회의 진정기능이 통합되어 인종, 성별, 정치적 신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진정처리를 접수하고 해결하도록 함.
-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2375)</sup>: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는 덴마크국립고충처리위원회(Ankestyrelsen, 영문명: The Danish Appeal Board)<sup>2376)</sup>아래에 설치되었음. 이사회는 3명의 판사가 이사회 의장직(chairmanship)을 겸직하고 있으며 9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사회의 위원은 덴마크고용부(beskæftigelsesministeren, 영문명: The Ministry of Employment)에 의해 임명됨.
- (3) 주요업무<sup>2377)</sup>: 이사회는 이전의 차별 개별 사건에 대한 진정기능을 그대로 가져와 차별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진정과정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음. 진정사건 접수와 처리는 무료이며, 이사회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건 의뢰자가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할 필요 없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사회는 893건의 사건처리를 진행하였고, 2009년부터 2014년 2월까지 145건의 사건이 진정결정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민사재판으로 회부됨. 2014년 2월에는 이 사건들 중 법원이 59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41건의 사건은 이사회 결정 그대로 유지하고 7건의 사건은 뒤바꿈. 나머지 사건들은 합의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민사법원으로써

2372) <https://ast.dk/naevn/ligebehandlingsnaevnet/regler-og-lovstof-om-ligebehandling> (검색일 2016.7.3.)

2373) Lov nr. 387 af 27

2374) 이외에도 관련법으로는 평등한대우를위한이사회과정에대한명령(Bekendtgørelse om forretningsorden for Ligebehandlingsnævnet, BEK nr 220 af 01/03/2013)이 있음. (출처: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5432> (검색일 2016.7.3))

2375) <https://ast.dk/naevn/ligebehandlingsnaevnet/om-ligebehandlingsnaevnet/ligebehandlingsnaevnets-medlemmer> (검색일 2016.7.3)

2376) <https://ast.dk> (검색일 2016.7.3.)

2377)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음. 출처: <https://ast.dk/naevn/ligebehandlingsnaevnet/hvis-du-vil-klage-til-ligebehandlingsnaevnet> (검색일 2016.7.3.)

지 간 사건들 대부분은 성별 혹은 나이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으로 확인됨. 보통은 법원은 이사회결정을 대부분 따르는 것으로 보임.<sup>2378)</sup>

## 6. 프랑스

프랑스 국가 정보 <sup>2379)</sup>	
면적	551,695km <sup>2</sup>
인구	6,632만명 (2015년 기준)
수도	파리(Paris)
정치형태	대통령제(5년 임기)
주요언어	프랑스어
주요종교	가톨릭, 무슬림, 개신교, 유대교
주요민족	골(Gaul)족,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무슬림 등 소수 민족
GDP	2조 8억 달러(2014년)
	40,445달러(2014년)

### 1) 프랑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française, CNCDH)
- (2) 설립연도: 1947년 3월 17일
- (3) 설립배경<sup>2380)</sup>: 1946년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외교부 장관(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령(arrêté)을 통해 1947년에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를 설립함. 이 당시 위원회는 주로 국제 관계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음. 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외형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1986년

2378) 이에 대한 내용은 Justesen의 2016년 연구 참조.

2379)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4.jsp?menu=m\\_40\\_50\\_20#contentAction1](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4.jsp?menu=m_40_50_20#contentAction1) (검색일: 2016.9.6.)

2380) <http://www.cncdh.fr/fr/linstitution> (검색일: 2016.8.24.)  
<http://www.humanrights.ch/fr/droits-humains-suisse/interieure/institution-nationale/indh-europe/cncdh-france> (검색일: 2016.8.24.)

으로, 국무총리(Premier Ministre) 산하 인권 사무국(Secrétariat d'État charge des Droits de l'homme)으로 재편되어 국가인권계획(droits humains sur le plan national) 책임 기관으로 임무를 확장했고, 40명의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2년간 임무를 부여받음. 위원회는 1989년부터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재편되었고 모든 임무와 활동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1990년,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와 인종혐오를 포함한 모든 인종주의 철폐법(La loi tendant a réprimer tout acte raciste, antisémite ou xénophobe)'이 통과되면서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반인종주의 보고서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고 공적으로 출간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감시 기능을 갖게 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2007년 프랑스 국회가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법(La loi n°2007-292 relative à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sup>2381)</sup>'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임무를 명시한 근거법이 처음으로 제정됨. 이에 앞서 1984년 발행된 법령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자문기구로서의 주요 임무들을 최초로 명시했으나, 의회의 승인을 얻은 근거법(Loi)이 아닌 국무총리령(Décret)이었으므로 행정구조상의 지위뿐 아니라 활동의 독립성 면에서도 예측성이 남아 있었음. 2007년 제정한 국가인권자문위원회법을 통해 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인권 보호와 증진(la promotion et la protection des droits humains)임을 밝힘. 같은 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sup>2382)</sup>이 발행한 '국가인권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Décret no 2007-1137 du 26 juillet 2007 relatif à la composi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2381) LOI n°2007-292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법, 이하 L.C.N.C.D.H. 자문위원회법)

2382)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은 국사원이라고도 하며, 최고행정재판소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재판을 관장하는 기관이면서 프랑스 정부의 행정 법령 해석 및 입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의 관계』, 2015)

l'homme)<sup>2383)</sup>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위원 선임절차,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자문)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총 64명(2014년 기준)<sup>2384)</sup>으로, 위원회는 주요 5개 부위원회(sous-commissions)와 조정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나누어 행정 업무를 담당함.

① 위원장실(Le bureau)

위원장실은 위원장 1인(현 위원장 Christine Lazerges: 크리스틴 라제르주)과 2명의 부위원장, 64인의 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실로 총회(assemblée plénières) 사안을 최종결정하고 사무총장이 올린 예산안을 검토함<sup>2385)2386)</sup>.

② 조정위원회(Le comité de coordination)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실 옆에서 위원회 전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역할로서, 부위원회(sous-commissions)의 모든 활동과 해당 연도의 주요 인권 사안, 총회 일자 등을 결정함. 또한, 위원장이 제기한 모든 사안과 관련해 위원장실 구성원들이 결정을 내릴 때

2383) Décret no 2007-1137 du 26 juillet 2007 relatif à la composi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이하 D.C.N.C.D.H.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 근거법은 총 3개로, 첫 번째는 최초로 자문위원회에 공적인 임무와 독립성을 부여한 '자문위원회법'이고, 두 번째가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Décret no 2007-1137)'으로서 조직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상세히 명시한 법령이며, 세 번째는 2012년 위원회 구성원을 실제로 임명한 근거법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Arrêté du 20 août 2012)'이다.

2384) <http://www.humanrights.ch/fr/droits-humains-suisse/interieure/institution-nationale/indh-europe/cncdh-france> (검색일: 2016.8.25.)

2385) <http://www.cncdh.fr/fr/fonctionnement> (검색일: 2016.8.25.)

2386) 전체 인원수 알 수 없음.

조언하고 지원함<sup>2387</sup>).

③ 부위원회(sous-commissions)

64인의 위원은 5개 부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부위원회는 각각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있음. 부위원회는 사회와 윤리, 교육(Questions de société, questions éthiques, éducation),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및 인종혐오, 차별과 소수자 집단(Racisme, antisémitisme, xénophobie, discriminations et groupes vulnérables), 정부 기관 및 경찰에 의한 침해와 정의 문제, 이민자 관련 사안(Institutions, justice, police, questions migratoires), 유럽 및 국제 인권 사안(Questi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국제인도법 및 인도주의적 활동에 관한 문제(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et action humanitaire) 등<sup>2388</sup>).

④ 총회(Assemblée plénières)

인권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상시 기구가 아닌 분기별로 위원들이 모여 해당 분기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이며, 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 및 의견, 내규 등을 결정함.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여타 국가인권기구와 달리 최고 의사결정 위원회 혹은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고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 총회는 위원장의 소집 명령, 또는 전체 위원 중 최소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1년에 최소 6번 개최 가능함<sup>2389</sup>).

⑤ 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사무국은 사실상 위원회 행정을 책임지며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함<sup>2390</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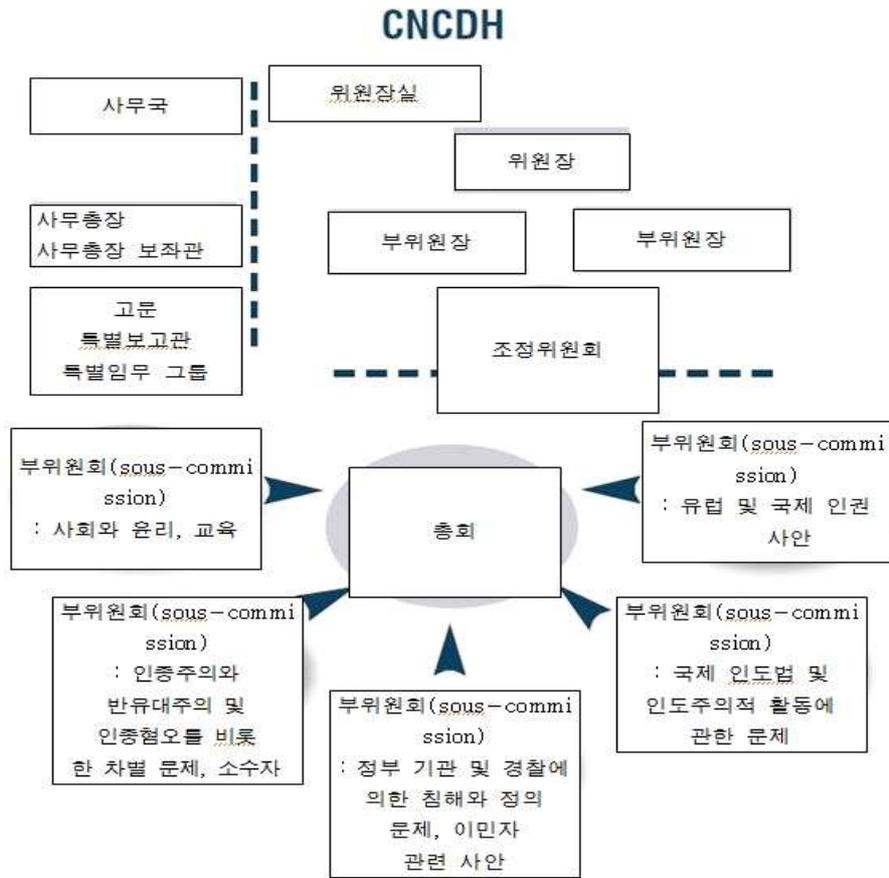
2387) Ibid.

2388) <http://www.cncdh.fr/fr/linstitution> (검색일: 2016.8.25.)

프랑스인권자문위원회(CNCDH), 2015 활동보고서(Rapport d'Activité 2015), p.13

2389) D.C.N.C.D.H. art.10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10조) : L'assemblée plénière, organe décisionnel de la commission, adopte tous les documents émis par la commission dans le cadre de ses missions. Elle adopte notamment le règlement intérieur de la commission. L'assemblée plénière est réunie en tant que de besoin, et au minimum six fois par an, sur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au moins un tiers de ses membres ayant voix délibérative (…)

2390) <http://www.cncdh.fr/fr/fonctionnement> (검색일: 2016.8.25.)



출처: CNCDH, 2012 활동보고서(Rapport d'Activite 2012), p.9

[프랑스-그림 54]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 조직도

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특별보고관 (Rapporteur)	고문 (Conseiller)	특별임무 (Chargés de mission)	기타 행정 분과
사무총장 보좌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특별보고관	사회, 윤리, 교육에 관한 고문	인종주의 및 차별, 사회적 약자에 관한 특별임무	총무 및 회계
	인종주의 특별보고관	법률 고문	유럽 및 국제 인도주의 특별임무	커뮤니케이션 자료 관리원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위원회 근거법상 사무소 설립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사무소는 수도인 파리(Paris)에 두고 있음.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지역 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Décret no 2007-1137) 제17조에 근거해 국무총리실 예산을 배분받으며, 이 예산을 위원회 활동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음<sup>2391</sup>).

<프랑스-표 29>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 2015년 예산

2015년 예산	1,103,763 EUR(약 13억 7천 9백만 원)
----------	-------------------------------

출처: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pour 2015, p.131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권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13조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 하며, 동법 제4조 항목 a 또는 b에 해당하는 인권 분야 시민단체 출신, 인권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 혹은 국제인권기구 출신의 위원들 중에서 임명함.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회 총회에서 임명하는데 마찬가지로 동법 제4조 항목 a와 b에 해당되는 위원들 중에서 총회에 모인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임명함<sup>2392</sup>).

2391) D.C.N.C.D.H. art.17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17조) : La commission gère librement les crédits nécessaires à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qui sont inscrits au budget des services du Premier ministre.

2392) D.C.N.C.D.H. art.13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13조) :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est désigné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parmi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mentionnés aux paragraphes a et b de l'article 4,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renouvelable une fois. Deux vice-présidents sont élus par l'assemblée plénière, l'un parmi les membres titulaires de la commission mentionnés au paragraphe a de l'article 4 et l'autre parmi les membres titulaires mentionnés au paragraphe b du même article. Leur mandat est de trois ans

(나) 위원

위원들은 총 64명으로, 2012년 8월 22일 ‘인권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Arrêté du 20 août 2012 relatif à la composition de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에 근거해 국무총리가 임명함<sup>2393</sup>. 위원들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4조<sup>2394</sup>에 근거해 크게 a) 인권 및 인도주의 영역에서 활동해온 시민단체 출신 b) 인권 분야 전문가 및 국제인권기구 출신의 전문가 c) 하원과 상원 국회의원 d) 프랑스 옴부즈맨(Défenseur des droits)<sup>2395</sup> 출신 e) 프랑스 경제·사회·환경 위원회<sup>2396</sup> 출신 등 5개 범주에 속하는 인물 가운데 임명함. 이중 a 항목인 인권 분야 시민단체 출신 구성원들과 b항목의 학계 및 국제인권기구 출신 구성원들은 프랑스 최고행

---

renouvelable une fois.

2393) Arrêté du 20 août 2012 art.1 (국가인권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 제1조)

2394) D.C.N.C.D.H. art.4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4조) : Dans le souci d’assurer le pluralisme des convictions et opinions, la commission est composée, avec voix délibérative : a) De trente personnes nommément désignées parmi les membres des principal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oeuvrant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du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ou de l’action humanitaire et des principales confédérations syndicales, sur proposition de celles-ci ; b) De trente personnes choisies, en raison de leur compétence reconnue dans le domaine des droits de l’homme, y compris des personnes siégeant en qualité d’experts indépendants dans les instances internationales des droits de l’homme ; c) D’un député et d’un sénateur ; d) Du Défenseur des droits ; e) D’un membre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2395) Défenseur des droits (인권 수호자)라는 뜻의 이 제도는 프랑스의 인권 ‘옴부즈맨’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자문위원회와 비슷한 취지를 지닌 제도이지만 개인 진정을 받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권고한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와 차별화됨. 본래 아동, 차별 금지, 프랑스 행정 제도 및 기관의 시민 권리 침해, 공권력 수행자의 윤리 등 주제별 사안에 대해 임명된 독립적인 개인 옴부즈맨 제도였으나, 2008년 프랑스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개별적인 옴부즈맨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성격의 옴부즈맨 제도로 변화됨.

(출처: <https://www.senat.fr/rap/109-482/109-4826.html> 검색일: 2016.8.26.)

2396)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프랑스 경제 사회 환경 위원회) :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설립된 헌법 기구로서,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시민을 대표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자(patronat), 노동조합(syndicat), 결사 단체(association)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임. 본래는 경제사회 위원회였다가 2008년 헌법 개정안에 의해 환경 영역이 추가되었음.

(출처: [https://fr.wikipedia.org/wiki/Conseil\\_%C3%A9conomique,\\_social\\_et\\_environmental](https://fr.wikipedia.org/wiki/Conseil_%C3%A9conomique,_social_et_environmental) 검색일: 2016.8.26.)

정법원(Conseil d'état) 부원장과 대법원(Cour de cassation) 및 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의 수석 판사들로 구성된 임명 위원회(Comité)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임명위원회의 추천 의견을 공개함. 하원과 상원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환경 위원회 출신 구성원들은 국무총리가 임명함<sup>2397</sup>. 동법 제4조를 따라 전체 위원의 30인 이상을 시민사회 및 인권 분야의 개인 전문가, 국제기구 출신의 인물을 임명해야 함(각주 16). 또한, 위원들 중 a항목에 해당되는 위원은, 총회에 불참하거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임명 시 이들의 대체 위원(suppléant(e)s)을 a항목 위원의 수만큼 함께 임명함. 이 대체 위원들은 본 위원의 총회 불참 혹은 활동 불참 시 위원들을 대체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으며, 본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될 경우 이를 대체해 남은 임기를 완수해야 함.

(다)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사무총장은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함<sup>2398</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인권자문위원회 관련법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특별한 행정상의 지위 혹은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 없음. 다만, 인권자문위원회법(LOI n°2007-292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제4조는 위원들 중에서 동법 c, d, e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옴부즈맨, 경제사회환경 위원

2397) D.C.N.C.D.H. art.5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5조) :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mentionnés au a de l'article 4 et leurs suppléants sont nommés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après avis d'un comité composé du vice-président du Conseil d'Etat et des premiers présidents de la Cour de cassation et de la Cour des comptes sur les organismes susceptibles d'émettre des propositions de nomination.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mentionnés au b de l'article 4 sont nommés après avis du même comité. Les avis du comité sont rendus publics. Le député, le sénateur et le membre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ont nommés par le Premier ministre.

2398) D.C.N.C.D.H. art.16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16조) : Le secrétariat de la commission est assuré par un secrétaire général nommé, sur proposition du président,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회 위원 출신을 제외한 시민단체 혹은 개별 전문가 출신의 위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임명할 것을 명시함.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행정구조상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이나<sup>2399)</sup>, 인권자문위원회법은 위원 활동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함<sup>2400)</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3년간 임명되며, 같은 기간으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각주 15). 위원들 중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4조' a와 b 항목에 해당되는 시민단체 혹은 인권 분야 전문가 출신의 구성원들은 3년간, 나머지 c, d, e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국회의원, 옴부즈맨, 경제·사회·환경 위원회 위원 등 본래의 직무를 맡을 동안 위원 자격을 유지함<sup>2401)</sup>. 일반 위원들의 재임에 관한 근거 조항은 없음. 사무총장은 3년간 임명되며 재임에 관한 언급 없음.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자발적 사임이 아닌 경우, 위원회 활동에 방해(empêchement)가 되거나 위원장실의 심사(audition de l'intéressé)에 의해 직무 소홀(défaillance)로 판명될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총회에 연속으로 3회 이상 불참하면 직무 소홀로 판단함<sup>2402)</sup>.

2399) <http://www.humanrights.ch/fr/droits-humains-suisse/interieure/institution-nationale/indh-europe/cncdh-france> (검색일: 2016.8.26.)

2400) L.C.N.C.D.H. art.1 (자문위원회법 제1조) : La commission exerce sa mission en toute indépendance.

2401) D.C.N.C.D.H. art.6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6조) : Les membres désignés au titre des a et b de l'article 4 sont nommés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Les membres mentionnés aux paragraphes c, d et e du même article sont nommés pour la durée de leur mandat.

2402) D.C.N.C.D.H. art.7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7조) : En cas d'empêchement, les membres titulaires désignés au titre du a de l'article 4 ne peuvent être représentés que par leur suppléant. Lorsqu'ils sont empêchés, les membres désignés au titre du b de l'article 4 peuvent être représentés par un autre membre de la commission muni d'une procuration, à concurrence de deux par membre.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nommés en remplacement de ceux dont les fonctions ont pris fin avant leur terme normal achèvent le mandat de ceux qu'ils remplacent. Sauf démission, il ne peut être mis fin aux mandats des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인권자문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와 국회 자문 (입법과 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자문위원회는 설립 때부터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권기관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 2007년 개정 인권자문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임무(mandat) 및 활동 영역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견(avis)을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부처를 지원함. 때에 따라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위원회 견해를 전달함. 또한, 정부에서 요청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자체 판단(auto-saisine)에 따라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들에 관해 정부 및 국회의 공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음<sup>2403</sup>). 위원회의 의견 제출 주제로는 국내 및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견해도 포함됨.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매년 총회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 해당 의견이 총회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는지 명시해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며, 동시에 공적으로 출간해 대중에 공개함. 또한, 다수에 의해 채택되지 못한 소수 의견 중 전체 의원의 14%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견은 공개함<sup>2404</sup>).

---

membres de la commission qu'en cas d'empêchement ou de défaillance constatés par le bureau de la commission, après audition de l'intéressé.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défaillant tout membre qui n'a pas participé, sans motif valable, à trois séances consécutives de l'assemblée plénière.

2403) L.C.N.C.D.H. art.1 (자문위원회법 제1조) : (...) Elle assiste le Premier ministre et les ministres intéressés par ses avis sur toutes les questions de portée générale relevant de son champ de compétence tant sur le plan national qu'international. Elle peut, de sa propre initiative, appeler publiquement l'attention du Parlement et du Gouvernement sur les mesures qui lui paraissent de nature à favorise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

2404) D.C.N.C.D.H. art.10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10조) : (...) Les documents publiés font mention du résultat des votes ayant présidé à leur adoption. Y sont également exposées de droit les opinions minoritaires, dès lors qu'elles ont été soutenues par au moins quinze pour cent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

- (2) 국제법 준수에 관한 자문 (국제법 도입과 적용, 국제인권협약 심사 준비 지원)

프랑스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정부가 비준한 협약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인권법을 국내법에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함<sup>2405</sup>. 정부가 유엔 인권 보호 시스템 및 유럽연합 인권보호 시스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정부의 인권 심사를 위한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함.

- (3) 인권 사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 촉구, 인권 증진

위원회는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경우 인권 교육 혹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참여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프로그램을 시행함. 특히 인종차별 및 인종주의에 대응한 행동 계획을 시행함<sup>2406</sup>.

- (4) 인권 교육

자문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을 교육할 임무를 지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브로셔, 가이드라인, 책, 영상물 등을 출간하고, 국내 및 국제기관들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콜로키움 등을 진행함. 자문위원회는 특별히, 매년 인권 교육의 중요성과 권장할 만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르네 카생 인권상(Prix des droits de l’homme René Cassin)’ 시상식을 개최함<sup>2407</sup>.

---

2405) D.C.N.C.D.H. art.2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2조) : (...) la ratification des instruments internationaux relatifs aux droits de l’homme et au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et, le cas échéant, la mise en conformité de la loi nationale avec ces instruments; (...)

2406) D.C.N.C.D.H. art.2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2조) : (...) l’exécution de programmes d’action,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enseignement et la recherche sur les droits de l’homme, la participation à leur mise en oeuvre dans les milieux scolaires, universitaires et professionnels et, plus généralement, la lutte contre le racisme et la xénophobie.

2407) <http://www.cncdh.fr/fr/education-aux-droits-de-lhomme> (검색일: 2016.8.29.)

(5)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부위원회(sous-commission) 활동

자문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5개 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5개 부위원회는 ‘사회와 윤리, 교육’,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및 인종 혐오를 비롯한 차별 문제, 그 외 소수자’, ‘정부 기관 및 경찰에 의한 침해와 정의 문제, 이민자 관련 사안’, ‘유럽 및 국제 인권 사안’, ‘국제 인도법 및 인도주의적 활동에 관한 문제’ 등을 주제로 구성됨. 부위원회는 한 해 동안 여러 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하며 위원회 총회는 부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 의견(avis)으로 채택함. 위원회는 이렇게 채택한 의견이 공공정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기울임<sup>2408</sup>. 부위원회 활동은 크게 a) 정부 기관, 시민단체, 국제 시민사회, 국제기구와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콜로키움 등의 행사 개최 b) 부위원회가 맡은 주제별 인권 사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 심사(audition) c) 관련 보고서 정부 제출 및 발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6) 특정 주제에 관한 국가 특별보고관(Rapporteur National)으로서 감시 및 보고

인권자문위원회는 1990년 ‘반유대주의와 인종혐오를 포함한 모든 인종주의 철폐법’에 의해 프랑스 내 모든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임무를 부여받음. 이와 함께, 2014년부터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간 착취에 관한 국가 특별보고관(Rapporteur national indépendant sur la traite et l’exploitation des êtres humains)’의 임무를 받고 활동을 시작함. 인간 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 활동의 일환으로 프랑스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뿐 아니라 유럽의 관련 단체들과 인간 착취 근절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연대 활동을 전개함<sup>2409</sup>.

(7) 국제 협력, 국제 인권사안에 대한 관여(intervention)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국제 시민단체 및 지역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통

---

2408) CNCDH, 2014 활동보고서(Rapport d’Activité 2014), p26

2409) CNCDH, 2014 활동보고서(Rapport d’Activité 2014), p52

해 국제 인권 사안에 관여하고,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함. 여러 국가들의 인권 옴부즈맨, 인권 분야 시민단체, 국가 대표단 등과의 만남을 갖고, 콜로키움, 세미나 같은 행사를 주최하거나 이 같은 행사에 참여함<sup>2410</sup>. 또한, 자문위원회법 제3조는 위원회가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마다 ‘프랑스 공화국의 자유·평등·박애 정신 인권상(Prix des Droits de l’hom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Liberté - Égalité - Fraternité)’ 시상식을 주최해, 국내 및 국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주체들에게 인권상을 시상함<sup>2411</sup><sup>2412</sup>.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여 위원회 위원 15명 이상의 수상자 선정단(jury)을 구성해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활동 분야와 연구 및 프로젝트 분야를 구분하여, 관련 주제에 공헌한 개인 혹은 집단을 국적과 국경에 관계없이 선정함. 또, 위원회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통한 협력활동뿐 아니라 국가별 혹은 주제별 국제 인권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인권 사안에 관여하는데, 특히 국제적인 인권 사안에 대한 정부 자문기관으로서, 프랑스 외교부, 국방부 같은 대외 활동 담당 부처에 국제 대응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함<sup>2413</sup>.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1)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의 요청을 받고

2410) CNCDH, 2014 활동보고서(Rapport d’Activité 2014), p57-62

2411) D.C.N.C.D.H. art.3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령 제3조) : La commission décerne annuellement le “ Prix des droits de l’hom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Liberté - Egalité - Fraternité”, distinguant des actions de terrain, des études et des projets portant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s droits de l’homme dans l’esprit de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Ce prix est attribué, sous forme de bourses, à titre individuel ou collectif, sans considération de nationalité ou de frontière, conformément au règlement adopté par la commission.

2412)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상은 ‘프랑스 공화국의 자유·평등·박애 정신 인권상(Prix des droits de l’hom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Liberté - Egalité - Fraternité)’과 르네 카생 인권상(Prix des droits de l’homme René Cassin) 2종류로, 자유평등박애 인권상은 프랑스 국내외에서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집단을 선정하며, 르네 카생 인권상은 특별히 인권 교육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한 국내 및 해외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2413) <http://www.cncdh.fr/fr/dossiers-thematiques/international> (검색일: 2016.8.29.)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인권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때로, 위원회 자율적인 판단으로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한 의견과 권고를 내기도 하며, 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효력을 지닌 권고가 아닌 공신력 있는 조언으로서 기능함. 프랑스 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기능을 하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인종주의와 인간 착취에 대응하는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이 역시 조사관보다는 보고관으로서 상황 보고 및 광범위한 정책 제안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임.

- (2) 국가 윤리(morale)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띤. 자문위원회는 인권 사안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부정한 재산 축적과 관계된 공직자 윤리 등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공권력 수행자의 윤리, 법원 및 검찰의 행정 업무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일반 국민의 의식구조(mentalité)와 존엄성에 영향을 끼치는 직업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인권 원칙과 윤리 문제에 관여하며, 민주공화국 가치의 구체적 구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 사회 기초 혹은 국가 근간의 척도를 제시하기도 함.

####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7년 10월, 2013년 5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2414)</sup>

## 2) 프랑스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활동 내용

###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1) 정책 자문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의 가장 주요 업무는 정부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자문으로, 자문위원회는 의견(avis)의 이름으로 위원회 결정을 전달함. 위원회 의견 제출의 범위는 크게 a) 인권과 관련한 프랑스 현행 국내법 및 입법에 대한 의견 b) 정부가 비준한 국제/ 지역인권협약의 국내 적용과 이행

2414)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에 대한 의견 c) 국내 및 국제인권 사안에 대한 우려 표명 및 권고, 이렇게 3개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 위원회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총 335건의 의견을 채택했는데, 1991년까지는 연평균 7건 내외의 의견을 채택하다 1995년부터 채택 의견 건수를 늘려왔음<sup>2415)</sup>. 2013년에 16개의 의견, 2014년에는 13개의 의견, 2015년에는 12개의 의견을 채택했음<sup>2416)</sup>.

(가) 인권 관련 국내법에 대한 의견

시행 중인 국내법 및 입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채택은 정부의 자문 요청 또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주로 국무총리, 법무부, 여성부, 노동사회부, 외교부, 내무부 등 각 부처 장관이 검토 요청 서한을 위원회에 보내면 위원회가 법안이나 사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위원회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의견을 채택함.

(나) 국제인권협약 비준 및 준수, 국제 인권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인권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동시에 국제인권 보호 시스템 심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다) 국내 및 국제 인권사안에 대한 의견

위원회는 주요 국내/국제 인권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며, 특히 국제 인권사안의 경우 다음 4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제적 사안에 한해 의견을 채택함. a)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b)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 c) 다양한 정보원에 의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 d) 프랑스 정부의 유용한 개입이 가능한 사안<sup>2417)</sup>. 이에 따라 국제 분쟁이나 인권 사안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제시함.

(2) 국가 특별보고관(Rapporteurs Nationaux) 역할 수행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위원회법에 의해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 외에 국

2415) CNCDH, 『Grands Avis de la CNCDH』, 2016, p.19

2416) CNCDH, 『Rapport d'Activité』 2015, p67

2417) <http://www.cncdh.fr/fr/publications/questions-internationales-criteres-et-modalites-dauto-saisine> (검색일: 2016.8.31.)

가로부터 특별히 ‘인종차별’과 ‘인신매매’ 인권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 보고관의 임무를 위임받아 관련 활동을 수행함. 위원회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으로서 국내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인종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 조치들을 권고하며,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으로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내용 및 이행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가) 인종주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0년, 프랑스 정부는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종주의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권자문위원회에 위임했음. 이후 위원회는 매년 세계 인종차별철폐선언기념일인 3월 21일마다 프랑스 내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인종혐오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국무총리실 앞으로 제출함. 인종차별 보고서 작성에는 위원회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 인종차별 대응 관련 기관, 시민사회,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한 학계 등 많은 협력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a) 인종차별 현실에 가장 근접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차별의 구체적인 양태들 포함 인종차별 현상에 대한 양적 분석 b) 인종차별 현상의 원인과 맥락 등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c)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 가능한 조치들의 제시 d) 이 같은 조치들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예상과 권고 및 제안, 이 같은 4개 요소를 포함해야 함<sup>2418</sup>).

(나)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 인간 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0년 유엔의 ‘인신매매 및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예방, 억지, 처벌에 관한 의정서(일명 팔레르모 의정서 : 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채택과 2011년 유럽연합평의회 인신매매에 관한 지침(directive) 채택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인신매매를 비롯한 모든 비인간적 착취에 대한 국가 대응계획(national d'action contre la traite et l'exploitation des êtres humains)에 착수하여, 2014년에 처음으로 인신매매 및 인간 착취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발

2418) <http://www.cncdh.fr/fr/dossiers-thematiques/racisme> (검색일: 2016.9.2.)

포함.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인권자문위원회에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부여해, 2016년 2월, 위원회는 인신매매 및 인간 착취에 대응에 관한 첫 번째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공적으로 발간했음<sup>2419</sup>).

### (3) 인권 증진 활동

인권자문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함께 인권 증진을 위원회의 설립 목적으로 하며,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인권상 시상식과 영화제, 인권 분야 시민사회 및 전문가,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콜로키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진시키고 사안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함.

#### (가) 인권상 시상식

- ① 르네 카생 인권상: 1988년부터 프랑스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국내 및 국외의 인권 교육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신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제정했음. 이 상은 대학부(collège), 일반 및 기술고등학교부(lycée général et technologique), 직업 고등학교부(lycée professionnel)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 작업에 의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 과정 또는 과외 활동으로서 수행된 것이어야 함<sup>2420</sup>).
- ② 자유·평등·박애 인권상: 프랑스 국무총리가 상금을 지급하고 인권자문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인권 정신을 현장 활동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구현한 개인 및 집단에게 수여함. 이 상은 인권자문위와 프랑스 정부의 인권 사안에 대한 연대 정신에 근거하여, 수상자와 활동 영역은 프랑스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국외 활동 및 프랑스 외 국적자를 포괄함. 선정단은 매년 2개의 주제를 택해 공지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

2419) <http://www.cncdh.fr/fr/dossiers-thematiques/traite-et-exploitation>  
(검색일: 2016.9.2.)

2420) <http://www.cncdh.fr/fr/prix/prix-rene-cassin-des-etablissements-scolaires>  
(검색일: 2016.9.2.)

기여한 후보자들을 신청 받음. 인권상은 1988년 제정 이래 170팀 이상의 수상자에게 상과 상금을 수여했음<sup>2421</sup>).

(나) 콜로키움, 세미나 행사 개최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인권 사안을 유럽 지역의 공동 주제 혹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는 작업을 계속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유엔 조약기구, EU 인권위원회 및 각국 국가인권기구, 프랑스 정부 부처,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 세계 각국의 인권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같은 공통의 과제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해왔음. 위원회는 그간 다음의 콜로키움들을 주관하고 개최한 바 있음<sup>2422</sup>).

1994: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인종주의

1998: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인권의 의미와 인류 공통의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

2000: 세계 곳곳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종주의에 대하여

2002: 1990년 프랑스 역사 부정(négationnisme) 처벌법 제정 이후 역사 부정주의 개념 정립 및 대응의 발전, 그리고 기타 유럽 사회에서의 대응에 대하여

2008: 세계인권선언 60주년과 유엔 사회권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을 기념하여 전세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 불평등, 국제 연대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2008: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국가인권자문위원회 창립자이자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참여자였던 르네 카생의 정신과 유산에 대한 콜로키움.

2011: 유럽 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전세계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콜로키움.

2016: 국제노동기구(ILO)의 현대적 노예제 근절 선택의정서 채택을 위한 캠페인인 “50 for Freedom”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매매, 노동착취를 비롯한 모든 현대적 의미의 노예제를 고발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콜로키움.

2421) <http://www.cncdh.fr/fr/prix/prix-des-droits-de-lhomme> (검색일: 2016.9.2.)

2422) [http://www.cncdh.fr/fr/publications/?f%5B0%5D=im\\_field\\_type\\_de\\_document%3A149](http://www.cncdh.fr/fr/publications/?f%5B0%5D=im_field_type_de_document%3A149) (검색일: 2016.9.2.)

(4) 인권 사안 연구

자문위는 총회에서 의견(avis) 채택 준비 과정 또는 채택 후, 중요한 인권 사안이거나 연구 가치가 있는 주제일 경우 의견의 부차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 혹은 심층 연구로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들은 2007년 위원회 개편 이후로는 주제별 부위원회(sous-commission) 및 그룹 활동(Group Travail) 단위로 보고서 작업을 진행해 전문성과 사안 집중력을 강화함.

(가) 최근 조사 연구 보고서들

- ① 프랑스 내 이주민 출신 공동체의 일부다처제 관행에 대한 보고서 (2006)

2000년대 초반 자문위 총회에서 여성성기절제술, 강제결혼 악습에 대한 의견 채택 후, 일부다처제 관행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 위원회는 세 가지 관행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는 없으나 주로 이주민 출신 공동체에서 횡행한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해 전통적인 악습의 잔재가 프랑스에 정착한 이주 여성 및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적용 가능한 대안 및 조치를 제안했음<sup>2423</sup>).

- ② 인권을 존중한 형벌(Sanctionner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homme, 2007)

2000년대 초중반 정부의 구금시설 개혁을 포함한 형사절차법 개혁안 도입 후, 위원회는 관련 의견들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음. 구금시설 및 형사절차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특히 외국인 수감자, 미성년 수감자, 수감자의 의료권, 수감 중 가족 접견권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함<sup>2424</sup>.

- ③ 외교와 인권 보고서(2008)

자문위는 설립 초기부터 프랑스 외교부의 인권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옴. 위원회는 2008년에 외교와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의견으로 채택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함<sup>2425</sup>).

2423) <http://www.cncdh.fr/fr/publications/etude-sur-la-situation-de-la-polygamie-en-france> (검색일: 2016.9.5.)

2424) <http://www.cncdh.fr/fr/publications/sanctionner-dans-le-respect-des-droits-de-lhomme> (검색일: 2016.9.5.)

2425) <http://www.cncdh.fr/fr/publications/diplomatie-et-droits-de-lhomme> (검색일: 2016.9.5.)

-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08/06, 2008/08, 2009)  
위원회는 기업과 인권 관련 3차례 보고서를 발간함. 3개의 보고서는 각각 프랑수어권(francophonie) 국가인권기구들과 지역별 법적 전통에 따라 기업의 인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방법을 논의한 결과와, 기업과 인권 문제에서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및 국가의 역할, 2008 금융위기 후 금융 제재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골자로 한 권고를 담고 있음<sup>2426</sup>).
- ⑤ 프랑스 내 인신매매 상황에 대한 보고서(2010)  
자문위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채택해 관련 권고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음. 인신매매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와 별도로 그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인 보고서로 발간해 인신매매와 이주, 성매매 등 기타 사회적 현상과의 관련성에서 접근한 분석과 법적 해결 방안, 피해자 입장에서 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 및 인신매매에 저항하는 방법 등을 제시함<sup>2427</sup>).

(5) 국제 협력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의 인권기구들 - 유럽연합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를 비롯하여 유럽 인종주의 및 불관용 대응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 contre le racisme et l'intolérance), 유럽인권대표(Commissaire aux droits de l'homme), 유럽 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 인신매매 전문가그룹(Groupe d'experts sur la lutte contre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의 프랑스 정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고, 이들 지역 인권보호체제와 협력 활동을 진행함. 그 일환으로 EU 장관위원회(Comité des Ministres)는 유럽 인권재판

2426) <http://www.cncdh.fr/fr/publications/droits-de-lhomme-et-responsabilite-societale-de-lentreprise>  
<http://www.cncdh.fr/fr/publications/la-responsabilite-des-entreprises-en-matiere-de-droits-de-lhomme-0>  
<http://www.cncdh.fr/fr/publications/la-responsabilite-des-entreprises-en-matiere-de-droits-de-lhomme> (검색일: 2016.9.5.)

2427) <http://www.cncdh.fr/fr/publications/la-traite-et-exploitation-des-etres-humains-en-france> (검색일: 2016.9.5.)

소(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의 명령(arrêt)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유럽의 국가인권기구들에 위임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 인권자문위도 정부의 명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왔음<sup>2428</sup>).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 (1) 프랑스 인권자문위는 1989년 인권자문위원회 설립 개정안(Décret n°89-52 du 31 janvier 1989 MODIFIANT LE DÉCRET 84-72 DU 30-01-1984)에 의해 국가 행정조직상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분류됨<sup>2429</sup>). 그러나 동시에, 동법은 정부 요청에 의한 자문 역할뿐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auto-saisine)에 의한 정책 제안 권한과 의견을 출판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함. 또한, 2013년부터는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avis)을 프랑스 정부 공보(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면서 국가 인권자문기관이자 시민을 대표해 인권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자리매김함<sup>2430</sup>).
- (2) 2007년에 제정된 근거법인 '인권자문위원회법(LOI n°2007-292 du 5 mars 2007, 각주3 참조)'은 자문위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국제 및 국내 인권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를 지원하는 자문기구임을 명시함.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각 부처 수장들은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인권 관련 자문을 위원회에 요청하며, 위원회 의견은 장관과 해당 부처에 전달되어 참고 의견으로 기능함. 국무총리 및 장관 본인, 또는 해당 부처 대표자는 위원회 총회 및 논의를 포함한 활동에 발언권 없이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sup>2431</sup>).

---

2428) CNCDH, 『Bilan de Mandature』, 2012, p.13

2429)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17453&categorieLien=id> (검색일: 2016.9.6.)

2430) CNCDH, 『Grands Avis de la CNCDH』, 2016, p.17

2431) L.C.N.C.D.H. art.2 (자문위원회법 제2조) : Des représentants du Premier ministre et des ministres intéressés peuvent participer sans voix délibérative aux travaux de la commission

### 3) 프랑스 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정책 자문

##### (1) 자문위원회가 시행 중인 국내법 및 법 개정안에 대해 채택한 의견<sup>2432)</sup> (일부)

- 경찰과 군인 등 국가 안보 직무 수행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국가 감사 기관(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의 설립에 대한 의견
- 극빈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한 의견
- 프랑스 거주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지원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의견
- 무죄추정 원칙의 강화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 조항에 대한 의견(1998)
- 이혼 혹은 동거 커플의 친권과 양육 책임 및 의무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1999)
- 로마(Roma)족 등 떠돌이 집단(gens des voyages)의 경제 활동과 떠돌이 집단 아동의 교육권 보장 법안에 대한 의견(1999)
- 경제, 교육, 법(정의), 건강, 안보, 주거 등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공공 및 민간의 21개 직업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교육을 위한 윤리 현장 제정에 대한 의견(1999)
- 형사절차에 관계된 국가 행정 업무 종사자들의 윤리에 관한 법안 검토 의견(2000)
- '마인드 컨트롤'의 형법상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2000)
- 정보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0), 정보화 시대 정보 접근권 및 온라인상의 권리, 사이버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2000)
- 프랑스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1)
- 테러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1)
- 비보호 외국인 아동의 행정 대리인 도입에 관한 형사절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
- 사법정의를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에 관한 법안 중 미성년 수감자를 위한 수감시설 신설과 시민판사(juge de proximité)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2002)
- 시경의 인권 원칙 준수를 위한 윤리 강령 도입안에 대한 의견(2002)
- 국내 안보법 도입안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2002)
- 집단범죄 및 조직범죄에 대응한 처벌 법안에 대한 의견(2003)
- 내무부의 이민자 관리 및 체류에 관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법률 기록 자동화 법안의 인권 원칙에 대한 의견(2003)
- 가해자 처벌 결정을 포함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부 법안에 대한 의견(2004)
- 인종주의를 포함한 모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 기관 설립안에 대한 의견(2004)
- 질병과 죽음에 대한 권리(안락사) 법안에 대한 의견(2004)
- 프랑스 내 강제 결혼 방지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5)
- 프랑스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일부다처 금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견(2006)
- 신분증에 생체인식 요소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2006)
- 이민자와 사회통합 법안에 대한 의견(2006)
- 사회보장부 장관 요청에 의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6)
- 범죄 방지 법안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강화 및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2006)
- 형사 처벌에서 구금시설 수감의 대안적 조치에 관한 제안(2006)
- 형사 처벌에서 범죄자의 교정시설 구금을 최소화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2007)
- 정신 장애가 원인이 된 범죄의 불처벌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2008)
- 구금의 대안적 조치 및 구금시설 개혁을 비롯한 새로운 형사 처벌에 대한 심층 권고(2008)
- 망명인 및 난민의 입국을 위한 통합 항구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2010)
-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2010)
- 국내 보안법 시행의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의견(2010)

2432) <http://www.cncdh.fr/fr/avis> (검색일: 2016.8.30.)

- 형사절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0)
- 형사절차법 개정안에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치(garde à vue: 보호 감시를 위한 경찰 등의 배치)의 축소에 대한 의견(2011)
- 이민자와 사회통합, 국적법의 국회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1)
- 보건부 장관 요청에 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1)
- 미성년자 형사 처벌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1)
- 정신과 진료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의무화한 법안에 대한 의견(2012)
- 프랑스 내무부의 체류권 심사를 위한 외국인 억류 허용 법안에 대한 의견(2012)
-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법의 연장에 대한 의견(2012)
- 취재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3)
- 국민의 은행 이용 및 대출 관련 신용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 등록 시스템 도입안에 대한 의견(2013)
- 프랑스 사법부 독립에 관한 의견(2013)
- 공직자의 투명도와 청렴도를 포함한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2013)
- 법무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의 공동 요청에 의한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상호 부처 간 행동 계획'에 대한 의견(2013)
- 국민자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 취약성(précarité sociale)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법'상 20번째 차별 근거로 포함 시키고 형법에 관련 조항을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2013)
- 법적 판단 오류로 인한 부당한 형사 처벌의 재심 법안에 대한 의견(2014)
- 범죄 예방과 구금 대체 처벌의 비공개화(individualisation des peines) 법안에 대한 의견(2014)
- 형사처벌 절차법상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 절차 재정립 법안에 대한 의견(2014)
- 성매매 시스템 근절 강화 법안에 대한 의견(2014)
- 내무부 요청에 의한 망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4)
- 가족 아동 노인 국무차관(Secrétaire d'Etat chargée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âgées)령에 의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율적 의사 표현 보장 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증진에 대한 의견(2015)
- 대량감시(surveillance massif)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관련법(loi relatif au renseignement)안에 대한 의견(2015)
- 국무총리령에 의한 외국인 권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5)
- 테러와 관련해 국가 비상 사태 선포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법(loi n°55-385 du 3 avril 1955 relative à l'état d'urgence)의 개정안과 시민 통제 및 공권력 남용에 관한 의견(2016)
-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국적 박탈 조항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6)
- 법무부 장관령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유전 정보 판독 로봇 사용'법안에 대한 의견(2016)
- 투명성 강화와 부패 척결, 경제 활동의 현대화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2016)
- 자유·평등·박애 가치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평등과 시민권(Egalité& Citoyenneté)법 도입에 대한 제안(2016)

(2) 국제인권협약 준수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대해 채택한 의견(2433)

-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국내 이행에 대한 의견(1993)
- 유럽 국가들에서 난민 지위 협약의 적용과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1993)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내법 적용에 대한 의견(1994)
- 국제인도법을 국내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인도주의법의 발전에 대한 의견(1994)
- 유럽연합평의회와 '개인정보 자동화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에 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의 국내 적용에서 출신 인종 및 민족, 사상, 정치적 성향, 종교, 소속된 조합 등의 특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1994)

2433) <http://www.cncdh.fr/fr/avis> (검색일: 2016.8.30.)

- 아동권리협약 및 유럽연합평의회 권고와 관련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성산업의 처벌 법안에 대한 의견(1996)
- ‘유엔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인도주의적 노력과 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1996)
- 유럽평의회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채택이 사회권 보장에 가져올 영향과 프랑스 정부의 헌장 비준에 대한 의견(1997)
- 프랑스 정부의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국제 무력분쟁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비준 촉구 의견(1998)
-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 인권 논의에서 프랑스 정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의견(1998)
- 정부가 비준한 제네바 협약 및 선택의정서와 관련해 국내에서 협약 위반 가해자들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형법 적용에 대한 의견(1998)
- 프랑스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1998)
- 유럽 내에서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수용을 위한 EU 국가들의 구체적 행동 계획 내용을 담은 암스테르담 협약(Traité d'Amsterdam) 비준과 이행에 대한 의견(1998)
- 유럽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관련 프랑스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1998)
- 국무총리 요청으로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유럽 인종주의 컨퍼런스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2000)
-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여가생활과 휴식에 대한 권리 조항의 이행에 대한 의견(2000)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의 프랑스 국내 형법 적용에 대한 의견(2003)
- 프랑스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3차 심사 관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고문 및 가혹행위 감시를 위한 국가 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2004)
- 정부의 유엔 이주민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의견(2005)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금시설 감시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2007)
- 제네바 협약상 분쟁 시 민간인 보호 원칙 이행에 대한 의견(2008)
- 종교 편파 및 중상 반대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른 정부의 국내 이행 노력에 대한 의견(2008)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의견(2008)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장애인 인권보호 메커니즘 수립에 대한 의견(2009)
- 북경 세계여성인권대회 15주년을 기념해 세계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북경행동강령의 국내 이행에 대한 의견(2010)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에 대한 의견(2011)
- 프랑스 내에서 모로코 인권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불가능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프랑스-모로코 범죄에 관한 법적 협력에 관한 상호조약 의정서’비준에 대한 의견(2015)

### (3) 국내 및 국제 인권 사안에 대한 의견<sup>2434)</sup>

-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의견(1988)
- 작가 살만 루시디가 자국에서 받는 위협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옹호 의견(1989)
- 국제(international war)/국내(internal war) 무력 분쟁의 증가에 따른 국제인도법 발전에 대한 의견(1990)
- 조셉 레신스키(Joseph Wresinski) 신부의 ‘극빈과 사회 경제적 취약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프랑스 경제사회 협의회 의견과 관련해 빈곤 근절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정립할 것에 대한 제안(1990)
- 이라크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의견(1990)
- 국내 난민 보호에 대한 의견(1991)
-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의견(1991)
-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 조항에 대한 의견(1992)

2434) <http://www.cncdh.fr/fr/avis> (검색일: 2016.8.31.)

- 프랑스 교육 기관의 신입생 환영회 관행에 대한 의견(1992)
-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행동 계획의 도입을 비롯한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1992)
- 캄보디아의 평화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 증진에 대한 의견(1992)
-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 인권침해 범죄 및 국제인도법 위반 등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1992)
- 경찰과 시민의 이상적 관계 및 인권 원칙에 대한 의견(1993)
-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에서 프랑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1993)
- 토고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토고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외교적 압박에 대한 제안(1993)
-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견(1994)
- 알제리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신변 보호와 자유권 보호에 대한 의견(1995)
- 미등록 이주민과 그들의 프랑스 국적 자녀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1995)
-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후 대기 장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1995)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1995)
- 수단인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프랑스의 수단 정부에 대한 제재 참여(1996)
-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인종주의적 당령 및 제안에 대한 의견(1996)
- 인터넷의 발전이 지식의 배포 및 민주주의 증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1996)
- 튀니지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1996)
- 도시정책부 장관 요청에 의한 정부의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안에 대한 검토 의견(1997)
- 인종주의 및 인종혐오와 관련 유럽연합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의견(1997)
- 유전정보과학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 친권 행사 및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의견(1998)
- 무기 거래 및 불법 무기 운송 반대 및 이에 관한 통제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1998)
-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견(1998)
- 비보호 난민/망명 신청 아동의 입국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가이드라인(1998)
- 장애인 후견인 제도 및 재산 관리 관련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견(1998)
- 인권(Droit de l'Homme) 단어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성(sex) 중립적인 대체 표현에 대한 의견(1998)
- 인권침해국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가 해당 국가 시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프랑스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 대응에 대한 의견(1998)
- 형사절차에서 감치(garde à vue) 과정 중 범죄 용의자의 의료 권리에 대한 의견(1999)
- 암스테르담 협약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한 행동 계획의 일부로서 유럽 내 모든 인간을 위한 '자유, 안전, 정의'의 공간 개념 수립에 대한 의견(1999)
-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 인권에 대한 의견(1999)
-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으로서 중립적인 국제 인도주의적 중재 기관(l'institution d'un médiateur humanitaire) 설립에 대한 의견(2000)
-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éenne)에 대한 의견(2000)
- 체첸 인권 상황 관련 프랑스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2000)
- 아동의 양육결정과 관련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에 대한 의견(2001)
- 유럽연합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의견(2001)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프랑스 정부가 인권법 및 국제 인도주의적 원칙을 준수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의견(2001)
- 테러 대응 대책과 관타나모 수용소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의견(2002)
- 대통령 선거 관련 국민전선(Front National) 정당의 극우 이념에 대한 우려 표명(2002)
- 미국 관할권에서의 외국인 사형 집행에 대한 의견(2003)
- 미디어의 폭력적인 이미지가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2004)
- 유럽연합기본권사무소(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설립에 대한 의견(2004)
-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에서 위험성과 아동 인권 보호(2005)
-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에 대한 의견(2005)
- 아동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의 아동 보호와 아동의 의사 표현권을 존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2005)

- 국제 혹은 국내 불법무기 거래 및 중개 금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역할과 무기거래 금지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의견(2007)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서 프랑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2007)
- 인권자문위원회 부위원회(sous-commission)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인권과 빈곤에 대한 의견(2007)
- 유엔 인권이사회 제6차 세션의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논의에서 프랑스 정부의 참여 방향에 대한 의견(2007)
- 인권 사안과 관련한 외교 관계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2008)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의견(2008)
-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이사회의 개편 후 유엔의 인권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의견(2010)
- ‘아랍의 봄’ 이후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유입과 그들의 보호에 대한 의견(2011)
- 정부의 인종 통제 작업에서 인간의 출신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신체적 유전적 특징인 인종이 아닌 출생 장소, 국적, 부모의 국적 등 객관적 요소들로 대체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2011)
- 노인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의견(2013)
- 법무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의 공동 요청에 의한 젠더 정체성의 정의와 및 트랜스젠더의 시민권에 대한 의견(2013)
- 정교분리(laïcité) 원칙과 종교적 관용의 균형에 대한 의견(2013)
- 여성의 성기절제술(mutilations sexuelles féminines) 금지에 대한 의견(2013)
- 국제협력과 개발부 장관 요청에 따른 국제 개발 및 연대 정책에 대한 의견(2014)
- 국제적인 인권 사안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대한 의견(2014)
- 판자촌 거주 빈민들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견(2014)
- 국제 인도주의 정상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국제 인도주의적 원칙들에 대한 의견(2015)
-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에 대한 의견(2015)
- 개발과 환경 보호, 인권의 관계에 대한 의견(2015)
- 칼레(Calais)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위생과 기본권 등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2015)
- 말리, 이라크, 시리아 등 분쟁 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견(2015)
- 여성 살해(femicide)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의견(2016)
- 그랑 생트(Grande-Synthe) 지역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2016)

## 나) 교육

자문위원회는 2007년 인권자문위원회 설립법과 그 기능에 관한 법을 통해 인권 교육을 위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재확인하고, 인권교육 및 시민 교육(citoyenneté démocratique)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음. 2015년 ‘자유·평등·박애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안(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 rendre effectives les valeurs de la République)’을 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인권 교육과 함께 공화국 기본 근간인 정교 분리 원칙 및 관용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는 데 학교 역할의 중요성을 밝힘.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일련의 의견들을 채택하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 전개해왔음<sup>2435</sup>).

(1) 국립 사법관학교(l'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 교육 프로그램

2435) CNCDH, 『Rapport d'Activité』 2015, p.25

자문위는 프랑스 검찰과 법관, 변호사, 경찰, 행정 법관을 양성하는 국립 사법관 대학에서 인권 교육 강좌를 진행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인권 사안을 교육하는데, 특히 인종주의 및 인종혐오와 관련한 내용을 강조함<sup>2436</sup>).

(2) 국립 행정학교(l'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ENA)와 공동 주관 인권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는 또한, 매년 프랑스 국립 행정학교의 제안으로 불어권 지역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인권 교육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좌를 공동 주최함<sup>2437</sup>).

다) 홍보

자문위는 인권 교육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 새싹(Graines de citoyens)'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는 동시에 대중에 공개함<sup>2438</sup>. 이 애니메이션은 반차별, 표현의 자유, 주거, 차이(다름), 착취(racket) 등 5개 주제에 관한 시리즈물로, 위원회는 2016년에 정교분리(laïcité)를 주제로 6번째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라) 정책 개선

인권자문위원회는 주로 정부 요청 혹은 자체 판단에 의한 정책 및 입법 검토 후 의견 채택을 통해 정책 변화에 개입함. 2009년~2012년 사이 총 29건의 의견을 채택했고 이중 24건은 위원회 자체 판단에 의한 채택이었으며, 의견 중 6건에 대해 정부 답변을 얻음.

(1) 시행 중인 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

(가) 감치(Garde à vue) 제도 개정: 위원회는 구금시설 개혁과 형사절차 개정에 대해 수감자 및 용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1년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감치 제도 개정안을 도입함<sup>2439</sup>).

2436) <http://www.cncdh.fr/fr/education-aux-droits-de-lhomme> (검색일: 2016.9.6.)

2437) CNCDH, 『Rapport d'Activité』 2014, p.23

2438) <http://www.cncdh.fr/fr/actualite/graines-de-citoyens-0> (검색일: 2016.9.6.)

영상물: <http://www.dailymotion.com/grainesdecitoyens>

- (나) 위원회는 2013년 국민의 신용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 등록 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채택했고 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 해당 법안을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후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조치함<sup>2440</sup>).
- (다) 2013년 위원회는 프랑스 내 망명 및 난민 신청 절차 접근권 강화 및 대기일의 단축,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권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고, 의견이 반영된 법안은 2014년 국회 심의를 거쳐 2015년 공포되고 발효됨<sup>2441</sup>).
- (2) 법안 도입에 관한 의견 제출
- (가) 자문위가 90년대부터 극빈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그 대응 방안 관련 의견을 꾸준히 채택해, 2013년 '사회적 취약성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법'에 빈곤을 차별 근거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채택했음. 이후 자문위의 제안이 반영된 법안을 2015년 상원에서 통과시킨 후 정부가 2016년 6월에 공포함<sup>2442</sup>).
- (나) 2016년 위원회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법안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에 정부는 차별 금지와 다양한 시민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법인 '평등과 시민권(Égalité et citoyenneté)' 법안을 도입함<sup>24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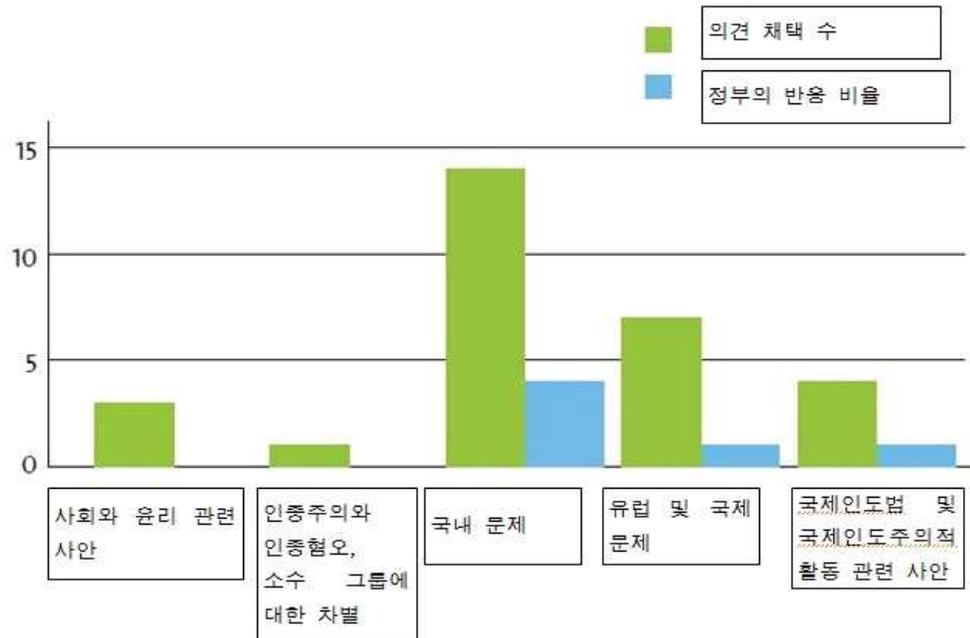
2439) <http://www.cncdh.fr/fr/publications/avis-sur-le-projet-de-loi-relatif-la-garde-vue> (검색일: 2016.9.5.)

2440) CNCDH, 『Rapport d'Activité』 2013, p.29

2441) CNCDH, 『Rapport d'Activité』 2015, p.29

2442) CNCDH, 『Grands Avis de la CNCDH』, 2016, p.19

2443) <http://www.cncdh.fr/fr/publications/avis-sur-le-projet-de-loi-egalite-citoyennete> (검색일: 2016.9.5.)



출처: CNCDH, 『Bilan de Mandature』, 2012, p.15

[프랑스-그림 55] 2009년~2012년 의견 채택의 범위와 정부 반응 추이

마) 사법부 의견 제출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는 사법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체적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지원하는 등 사법 절차 개입 활동을 하지 않음.

바) 주요 인권 이슈

(1) 부르키니(burkini) 금지 논란

2016년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부르키니(신체를 대부분 가린 무슬림식 수영복)를 착용한 여성에게 경찰이 의복을 벗도록 조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월 22일 니스 행정법원의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명령(ordonnance)이 발효됨. 이에 대해 다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국사원, Conseil d'Etat)이 반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법은 무효화될 예정. 자문위는 이러한 국사원의 결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찬성하는 내용을

게재했는데, 정교분리 원칙(laïcité)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선에서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르키니 금지가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만약 공공질서 존중을 이유로 부르키니를 금지하려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proportionnée)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힘<sup>2444</sup>).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1) UPR 및 조약기구 심사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 제출

자문위는 프랑스 정부의 2008년 UPR 1차 심사와 2013년 2차 심사를 위해 국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를 제출함<sup>2445</sup>).

(2) 국제협력

자문위원회는 중요한 국제 인권사안에 대해 의견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거나 공표해왔는데, 의견 채택 외에도 세계 인권 현안 지역의 정부 대표들 및 시민단체들과의 회의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위원회 의견 채택에 반영하는 방식의 국제 협력활동을 전개해옴.

(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해당 지역 정부 대표단과 지역 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 당시 ‘아랍의 봄’을 포함한 이 지역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함. 이 회의는 이후 리비아, 튀니지 분쟁에서 프랑스 정부의 개입, 시리아·모로코·이집트 출신 이주민 유입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한 위원회의 원칙을 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요 토대가 됨<sup>2446</sup>).

(나) 국제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2013년에는 유럽연합위원회의 요청으로 튀니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튀니지에서 개최했고, 코트디부아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확장 및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정부 대표 및 국회의원과 논의를 가짐. 같은 목적으로, 국제인

2444) <http://www.cncdh.fr/node/1476> (검색일: 2016.9.5.)

2445)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FRSession2.aspx>  
(검색일: 2016.9.6.)

2446) <http://www.cncdh.fr/fr/dossiers-thematiques/international> (검색일: 2016.9.5.)

권단체와 함께 베트남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베트남 정부 대표들을 초청해 인권위원회의 의의를 알리고 설립 허가를 설득함<sup>2447</sup>).

#### 4)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인권 옴부즈맨(Défenseur des droits)

(1) 설립

2008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립이 결정된 헌법기구로, 2011년 인권 옴부즈맨 설립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에 의해 설립됨. 프랑스 인권 옴부즈맨은 기존에 권리 구제를 임무로 활동하던 4개 기관 - 권리 중재자(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아동인권 옴부즈맨(Défenseur des enfants), 차별퇴치평등고용청(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HALDE), 국가안보윤리위원(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 을 통합한 헌법상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인권 구제기관임<sup>2448</sup>.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인권 정책 및 법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지만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기능을 하지 않는 데 비해 옴부즈맨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권리 구제 역할을 수행함.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옴부즈맨 자크 투봉(Jacques Toubon)을 대표로 약 25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공공 서비스 접근권 보호부', '사회·노동·고용 보호부', '개인 보호부(아동, 법률, 국가안보상 윤리, 건강 사안 담당)', '평등과 권리 증진부' 이렇게 권리 구제 내용에 따라 4개 부서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sup>2449</sup>.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외에도 프랑스 전역에 인권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대표단(délégués)이 397명 분포해 있으며, 이들은 권리 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권리 구제 수단 및 절차, 해결 방안을 비롯한 정보를 제공함<sup>2450</sup>.

2447) CNCDH, 『Rapport d'Activité』 2013, p.62-63

2448) <http://www.defenseurdesdroits.fr/institution/presentation> (검색일: 2016.9.6.)

2449) <http://www.defenseurdesdroits.fr/fr/institution/une-equipe-de-specialistes> (검색일: 2016.9.6.)

2450) <http://www.defenseurdesdroits.fr/fr/institution/les-delegues> (검색일: 2016.9.6.)

(3) 주요업무

옴부즈맨의 주요 임무는 a) 형법이 규정하는 20가지 차별근거<sup>2451)</sup>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b) 안전 보장 의무를 담당하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인권 원칙 준수 c) 공공 서비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권리 d) 아동인권 보호, 이렇게 4개 범주로 나눌 수 있음. 397명의 옴부즈맨 대표단은 프랑스 전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옴부즈맨 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자가 직접 옴부즈맨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음. 매년 아동인권의 날인 11월 20일, 아동인권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함.

7. 독일

독일 국가 정보 <sup>2452)</sup>	
면적	357,112km <sup>2</sup>
인구	8,085만 명
수도	베를린
정치형태	연방공화제(16개주)
주요언어	독일어
주요종교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교(4%)
주요민족	게르만족
GDP	GDP : 3.4조불 (2015년)
	1인당 GDP(PPP) : 41,955불

1) 독일 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독일 국가인권위원회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영문명: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MR)

(2) 설립연도: 2001년 3월

245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2EA8C87847C6FCD3FEF47F6BD8E70E16.tpdila13v\\_3?idSectionTA=LEGISCTA000006165298&cidTexte=LEGITEXT000006070719&dateTexte=20160629](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2EA8C87847C6FCD3FEF47F6BD8E70E16.tpdila13v_3?idSectionTA=LEGISCTA000006165298&cidTexte=LEGITEXT000006070719&dateTexte=20160629) (검색일: 2016.9.6.)

2452)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1.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1.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6. 28.)

(3) 설립배경: 2000년 12월, 독일 연방의회가 만장일치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Bundestag Drucksache 14/4801), 2001년 3월에 설립된 독일 인권위원회는 국가 내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임.<sup>2453)</sup> 한편 유럽의회의 장관급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권고(Recommendation R(97) 14)하면서 설립의 배경이 되었음.

위원회는 설립당시에 법률에 의한 법적 기반이 없었으나, 2015년 7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독일 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sup>2454)</sup>(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und Aufgab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Menschenrechte (DIMRG), 영어명: Act on the Legal Status and Mandate of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을 제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기구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임무 등을 재확인함. 법이 채택된 이후로 같은 해 9월 22일, 독일 인권위원회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이 법에 상응하게 내규(Bylaws of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를 개정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독일 연방의회가 2015년 7월에 채택한 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und Aufgab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Menschenrechte, DIMRG)에 따라 법적지위를 부여받음.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구임.

동법 제1조 “법적지위 및 재정”에 따르면, “독일 인권위원회는 독일 연방

2453)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about-us/structure/statutes/#c2780> (검색일 2016. 6. 28.)

2454) 이 법의 공식 영어번역본은 없으나, 위원회의 내규(Bylaws)에서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다;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das-institut/struktur/dimr-gesetz/> (검색일 2016. 7. 22.)

공화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공중(Public)에게 자국 및 해외의 인권상황에 대해 적절히 알리며, 유엔 파리 원칙(UN Paris Principles)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한다.”<sup>2455</sup>)고 규정하고 있음.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위원회는 총회(General Assembly), 이사회(Board of Trustees),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구성되며,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s)는 특수한 목적이나 사안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내규 7조 1항)<sup>2456</sup>).

이사회와 상임이사의회의 회원자격 지위는 동시에 부여될 수 없음.

2455) 이 법의 1조 1항의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 Rechtsstellung und Finanzierung

(1) Der eingetragene Verein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ist die unabhängige nationale Instituti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über die Lage der Menschenrechte im In- und Ausland sowie zur Förderung und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wenn und solange der Verein die sich aus den Pariser Prinzipien der Vereinten Nationen aus dem Jahr 1993 (Anlage der Entschließung der Generalversammlung der Vereinten Nationen vom 20. Dezember 1993, U.N. Doc.A/Res/48/134) ergebenden Aufgaben des § 2 wahrnimmt und die Voraussetzungen der §§ 3 bis 7 erfüllt. Für die Finanzierung der Aufgaben gemäß § 2 Absatz 2, 4 und 5 stehen dem Deutschen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e.V. Mittel zur Verfügung, soweit sie im Haushaltsplan des Deutschen Bundestages etatisiert sind und die in den §§ 2 bis 7 genannten Mindestvoraussetzungen in der jeweiligen Satzung des Instituts erfüllt sind.

2456) Bylaws of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 7 “Organs of the Association” (독일 인권위원회에 관한 내규 제 3조 “협회의 구성”);

1. The organs of the Association on which the Institute’s legal personality rests are: (위원회의 법인격에 대한 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the General Assembly, (총회)
- the Board of Trustees, (이사회)
- the Board of Directors, (상임이사회)
- advisory boards that may be appointed when needed for specific subjects or projects. (특수한 주제 또는 프로젝트 별로 필요할 시에 위원을 임명하는 자문 위원회)

2. Simultaneous membership in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permitted. (이사회와 상임이사의회의 회원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원회 사무소의 직원은 54명(2013년 기준)임.<sup>2457)</sup>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본부 사무소는 베를린에 위치해 있으며(내규 1조에 3항),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위원회는 독일 연방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며(내규 5조 1항), 추가예산은 총회의 회원 회비, 프로젝트 기반의 공공 민간 자금, 민간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짐.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

2013년도의 예산지원 부처의 경우 법무부(Federal Ministry of Justice, BMJV)가 29%, 연방 경제협력 및 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가 28%, 연방 외교부(Federal Foreign Office)가 22%, 연방 노동 및 사회문제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BMAS) 21%의 비율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sup>2458)</sup>

<독일-표 30> 독일 인권위원회 2013년 예산

(단위: 유로)	수입	지출
2013년 재정보고	3,959,363.76 EUR	3,959,363.76 EUR (한화 약 50억원)

독일인권위원회 2013년도 연간보고서 p.41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모를 통하여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서 투표로 임명하며, 직위는 이사(Director)와 부이사(Deputy Director)로 명시되어 있음(내규 31조 3항).

2457)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3, 2013, p.39

2458) ibid., p.42.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모든 법적 지위를 대표하고(내규 3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반드시 1인이 변호사, 1인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함(내규 31조).

한편 위원회는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회원으로 하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구성하며, 회원 중에 1인의 의장(Chair)과 2인의 부의장(Deputy Chair)을 투표로 선출함(내규 8항, 25항).<sup>2459)2460)</sup>

---

2459)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about-us/structure/membership/> (검색일 2016. 6. 28.)

2460) Bylaws of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 26 “Duties of the 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독일 인권위원회에 관한 내규 제 26조 “협회의 구성”) ; In addition to the duties laid down elsewhere in the bylaws, the 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has the following duties: (내규 2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Chair)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To represent the Institute, without prejudice to the Board of Directors’ legal powers of representation. (의장은 상임이사회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To convene and chair meetings of the Board of Trustees.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To represent the Board of Trustees in the periods between meetings. (의장은 여러 회의기간 중에 이사회를 대표한다)

To grant approval on behalf of the Board of Trustees if decis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requiring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Trustees cannot be postponed. In this event he or she must inform the Board of Trustees without delay. (만약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상임이사회의 안이 연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사회를 대신하여 승인한다. 대신 의장은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게 알려야 한다.)

In certain urgent cases the Chair may obtain decisions of the Board of Trustees by written consent in lieu of a meeting. The Chair will conclude that the Board of Trustees has passed a resolution if the majority of Board of Trustees members with voting rights have given their written consent. (특정 긴급 사안에 대하여, 의장은 회의 대신에 서면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의장은 만약 대다수의 회원들이 서면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이사회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The Chair may attend meetings of committees and advisory boards. (의장은 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독일-표 31> 독일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2016년 7월 기준)

<p>총회 (General Assemb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 회원의 회원자격 (내규 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법인이 위원회 총회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짐. 회원은 총회 규정에 따른 회비 금액과 납입 날짜에 맞추어 회원회비를 납부해야 함.</li> <li>- 2016년 7월 기준, 위원회는 64인의 개인 및 단체가 위원회의 회원자격(Membership) 지위를 가지고 있음.</li> <li>- 내규 9조에 따라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서 총회가입 신청서를 심사하여 총회의 신규회원가입을 결정함.</li> </ul> </li> <li>○ 총회의 임무 (위원회 내규 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활동 원칙에 대한 권고</li> <li>- 내규의 수정에 대한 결정</li> <li>- 재무감사 보고서 및 연례보고서의 검토</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조언 및 감독</li> <li>-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신규 회원 가입의 건을 승인한 것에 대한 최종 결정</li> <li>-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제명 결정에 따라 면직된 회원의 재심요청에 대한 심의</li> <li>-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의원 중 6인을 투표로 선출</li> <li>- 회원회비 금액 및 회비납입 날짜를 결정</li> <li>- 2인의 감사 임명</li> </ul> </li> </ul>
<p>이사회<sup>2461)</sup> (Board of Trust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명 (위원회 내규 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인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의원</li> <li>- 3인: Forum Menschenrecht (독일 시민사회단체 연합네트워크)가 지명한 대표</li> <li>- 2인: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한 위원회가 지명한 대표</li> <li>- 3인: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지명한 인권 관련 연구기관이 지명한 대표</li> <li>- 3인: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지명한 시민사회 대표</li> <li>- 1인: 독일 장애인 의회(German Disability Council)가 지명한 자</li> <li>- 6인: 위원회의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선출한 대표(총회의 회원 지위를 가지며, 최소 1인은 학계출신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인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li> </ul> </li> <li>- 독일연방정부의 9개 부처가 지명한 9인 대표</li> </ul> </li> <li>○ 임기 (위원회 내규 24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표권이 있는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두 번의 임기를 모두 마친 자가 다시 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 뒤에 다시 허용됨.</li> </ul> </li> <li>○ 임무 (위원회 내규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규 8조, 9조에 근거 총회의 신규 회원의 가입을 결정하며, 11조에 따라 회원의 제명에 대한 권한을 가짐.</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임명 및 해고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음.</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함께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함.</li> <li>-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수 있음.</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작성한 중기 및 장기 계획을 채택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초안을 마련한, 사업 활동, 재정, 인사관리,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을 채택함.</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회계보고 및 연례보고서를 승인하며, 상임이사회의 해고와 관련하여 총회에 권고할 수 있음.</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이를 실행하기 전에 중요한 사안들과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함.</li> <li>- 이사회(Board of Trustees)와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활동에 대한 복무규정(Standing order)를 제정할 수 있음.</li> <li>- 특정한 주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을 임명할 수 있음.</li> </ul> <p>○ 이사회 의장(Chair) 및 부의장(Deputy Chair)의 선출 (내규 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이사회 의원 중에서, 의장(Chair) 및 부의장(Deputy Chair)을 투표로 선출함.</li> </ul>
<p>상임이사회 (Board of Directors)</p>	<p>○ 임명 (내규 3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민법 26조에 따라 1인은 변호사, 1인은 여성으로 구성됨.</li> <li>- 2016년 7월 기준, 이사는 Prof. Dr. Beate Rudolf(여성)이며, 부이사는 Michael Windfuhr(변호사)임.</li> </ul> <p>○ 임기 (내규 31조 3, 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공개채용(Public job advertisements) 방식을 통해 이사(Director)와 부 이사(Deputy Director)를 선출 임명하며, 상임이사회의 임기는 4년으로 재임용이 가능함.</li> </ul> <p>○ 임무 (내규 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모든 법적 문제를 대표로서 가능함.</li> <li>-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위원회의 모든 사업 활동을 관장함.</li> <li>- 내규 29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회 회계연도까지 연례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회계감사보고서는 총회(General Assembly)에 제출, 총회의 감사에 의해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li> <li>- 내규 31조에 따라, 상임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이사 및 부이사 모두는 위원회의 대표권한을 가짐. 이 둘 사이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사에게 결정권이 주어짐.</li> <li>- 내규 31조에 따라, 이사와 부이사가 사직할 경우, 이사회(Board of Trustees) 의장은 후임의 재임용과정까지 임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음.</li> </ul>
<p>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규 28조에 따라,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특정주제 및 사업 활동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음.</li> </ul>

2461) 2016년 7월 현재, 이사회의 의장은 MP, Prof. Dr. Markus Krajewski, 부의장은 Dr. Beate Wagner, Dr. Julia Duchrow이며 총 의원 명단은 다음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about-us/structure/board-of-trustees/>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권한, 면책 등  
법에 따라 명시된 위원회의 법적 지위(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외에 위원장의 지위와 기구의 면책 사항과 관련하여 명시된 바는 없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함(내규 31조 4항).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위원회의 핵심 이슈

2016년 7월 현재,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 ‘차별’, ‘개발’, ‘고문금지’, ‘여성권리’, ‘아동권리’, ‘노예금지’, ‘인권대화’, ‘이주 및 통합’, ‘지속가능성’, ‘인종차별철폐’, ‘안보정책’,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인권이슈를 중점과제로 활동하고 있음.

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기구(NHRIs)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일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활동을 수행함(내규 2조)

(2) 위원회의 중점 사업

① 독일 내외 인권상황에 대하여 대중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사료를 구축 및 제공함으로써, 의회, 정부 부처, 비정부기구, 학계, 언론 및 법조계, 공중(Public)을 대상으로 정보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내규 2조 2항(a)). 특히, 독일의 법률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조약, 판례법, 국제인권보호기구의 관련 결의안, 인권과 관련된 국회의 결의안, 독일 국내외 인권상황 및 개발문제 등의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 사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적절히 대중에게 제공함.

한편 위원회 도서관은 다자기구 조약 및 협약(UN, 유럽회의, 유럽안보협력기구 및 기타기구), 판례법(유럽 인권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조약기구), 유엔 및 유럽연합, 유럽의회의 결의안 등의 기록을 보관함.

② 연구 및 출판

위원회는 인권의 제도적, 실질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기관 및 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출판 사업을 수행함(내규 2조 2항(b)에 근거). 이를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

③ 정책자문

위원회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국가행동전략 개발 및 권고하기 위한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함(내규 2조 2항(c)). 위원회는 학계 및 정계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교류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함.

④ 독일 내 인권관련 교육사업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조정센터(National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 Rights)를 설립하여 인권교육 교재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부처의 인권교육을 지원함. 특히, 치안 및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교육과 학교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함(내규 2조 2항(d)). 또한 국가 내 분쟁상황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 참여,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의 개발, 인권관련 심포지움 등의 사업을 수행함.

⑤ 인권과 관련된 독일 국내외 행위자 간 대화 촉진

위원회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인권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인권대화과 교류를 통해 전문역량을 구축함(내규 2조 2항(e)). 특히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간 상호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유럽연합, 유럽회의,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⑥ 전체주의 독재, 무력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 대한 인권영향 조사

관련 정부부처의 활동과 상호 협력하면서 분쟁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조사를 수행함.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의 국가 모니터링 기구(National Monitoring Body)의 역할

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33조 2항에 따른 ‘독립적인 모니

터링 기구'의 역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의 국가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을 수행함(내규 2조 3항).

(2) 국내외 인권현황 조사, 연구 및 정책자문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제 3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상황에 관한 국가분석보고서의 초안 작성 및 질의서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국가 및 독일의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조사활동을 수행함.

(3) 인권교육

위원회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 학교 및 탈학교 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정부,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부처 간 정책 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4) 독일 연방의회에 연례 활동 보고

위원회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 연례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독일 내 인권상황의 발전 변화정도가 포함되어야 함. 하원의회는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함.

사) 승급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1년 A등급으로 GANHRI 가입 후, 2010년 3월에 이어 2015년 3월 심사 에서 A등급 유지<sup>2462)</sup>

## 2) 독일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및 활동 내용

가) 주요업무 범위 및 성격

① 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sup>2463)</sup>:

- 인권실태 조사
- 인권 이슈에 대한 문헌기록 관리 및 도서관 운영
- 공공 세미나

2462) ICC, Chart of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ccreditation status as of 26 January 2016,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2463)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about-us/mandate/>  
(검색일 2016. 6. 29.)

- 전문가 토론
- 국내외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정치대표자 및 시민사회에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
- 인권교육
- 국제사회 국가인권기구(NHRIs)와의 협력
- 기타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 인권대화의 증진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하여 모든 이슈에 대한 공공의견을 형성하는 데에 활발한 역할을 수행함. 더불어서 국가기구와 비정부기구, 국가 내외의 인권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의 기능을 수행함. 또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조정역할을 수행하며, 인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함.

- ② 위원회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사연구, 문헌기록 관리, 전문가 토론, 정책자문 등 연구소로서의 기능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정부부처 간 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sup>2464</sup>).

<독일-표 32> 독일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주요 사업

2013년 주요 사업 (2013년)	
전일 및 양일간 회의	25회
전문가 토론회	33회
패널 토론회	6회
대학 강연	6회
세미나/워크숍	34회
의회 청문회	2회
의회 조찬회의	2회
영화 상영	1회
하계 아카데미	1회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의 시민사회 협의	3회

2464)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about-us/mission/>  
(검색일 2016. 6. 29.)

나) 정부조직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이해관계 등)  
위원회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9인은 연방정부의 9개 부처의 수장으로 구성되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음(위원회 내규 24조).

9개의 연방정부 부처는 ① 연방 이민, 난민, 사회통합 정부위원회(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Migration, Refugees, and Integration) ② 연방 인권정책 및 인도지원 정부위원회(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olicy and Humanitarian Aid) ③ 연방 인권문제 정부위원회(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atters) ④ 연방 원주민 재정착자 및 소수민족 정부위원회(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Matters Related to Ethnic German Resettlers and National Minorities) ⑤ 연방 장애인 관련 문제 정부 위원회(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Matter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⑥ 연방 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⑦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⑧ 연방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Bundesrat)와 같음.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부 부처 간 업무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함.

### 3) 독일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가) 피해자 구제

해당 자료 없음.

나) 교육

(1) 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수행에서의 국가 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구체적인 업무로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독일어와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보급함.<sup>2465)</sup> 또한 언론인과 사서 등 인권교육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함.

---

2465)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human-rights-education/material/>  
(검색일 2017. 7. 2.)

한편, 독일의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기구(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와 협력 및 인권교육 매뉴얼(Compass-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도입하여, 아동 및 성인 대상의 인권교육을 위한 온라인 포털(<http://www.coe.int/en/web/portal/home>)에 인권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지속적인 과제로는 인권교육을 고등교육의 정규학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함.

- (2) 위원회는 ‘기억, 책임 및 화해’를 위한 재단(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인권으로서의 포용(Inclusion as a Human Rights)”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매뉴얼 및 포털 사이트([www.inklusion-als-menschenrecht.de](http://www.inklusion-als-menschenrecht.de))을 개발함.<sup>2466</sup> 이 사이트는 2016년 7월 현재, 독일어를 제외한 다국어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BC 8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권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선정하여 당시 사회적 배경과 주요 권리, 인물 생애 등을 만화, 게임, 이야기 등을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확대해 나갈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함. 교육의 큰 주제는 인권교육의 담론으로서의 ‘포용(Inclusion)’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장애와 인권’, ‘다양성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함. 이 사업은 위원회가 2015년 상반기까지 완수해야 할 주요 사업과제였으며,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 과정’에 대한 포괄적 교육 자료를 구축한 첫 번째 성과사례로 보고되었음.

#### 다) 홍보

##### (1) 연구 및 출판

위원회는 중점 이슈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독일어와 영어로 출판·공개함.<sup>2467</sup>

중점 이슈는 ‘차별’, ‘개발정책’, ‘고문금지’, ‘여성 권리’, ‘젠더’, ‘아동권리’, ‘인신 매매’, ‘인권교육’, ‘인권대화’, ‘인권기구’, ‘이주 및 통합’, ‘지속가능성’, ‘장애인 권리’,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 ‘안보정책’, ‘경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임.

2466)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3, 2013, p.22

2467)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publications/> (검색일 2016. 7. 2.)

Online-Handbuch  
**Inklusion als  
Menschenrecht**

evz STIFTUNG  
UNIVERSITÄT  
DUISBURG  
ESSEN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Kontakt | Impressum | Glossar | Inhalt | Hilfe | Übungen | Suche

Gezielte Suche ▾

-800 500 1500 1900 1933 bis 1945: Nationalsozialismus 1945 1994

Du befindest Dich hier: Startseite » Nationalsozialismus

**Nationalsozialismus (1933 bis 1945)**

**Der "Rassegedanke"**

Zwischen 1933 und 1945 änderte sich wenig an den Haltungen und Gesetzen, die Ende des 19. und Anfang des 20. Jahrhunderts entstanden waren. Jedoch änderten sich nach der Wahl der NSDAP zur stärksten Partei die Auslegung von Gesetzestexten und ihre Anwendung. Vor allem aber wurden ab 1933 systematisch nur die Haltungen, Einrichtungen, Forschungen, Bücher und öffentlichen Diskussionen unterstützt, die dem sogenannten "Rassegedanken" entsprachen. Alle anderen Positionen wurden für unerwünscht erklärt. Dieser sogenannte "Rassegedanke" teilte Menschen ohne deren Beteiligung und nach willkürlichen Kriterien in "gut" oder "schlecht" ein. Diese Einteilung entschied häufig darüber, ob die Menschen das Recht hatten (frei) zu leben oder ob sie eingesperrt, zwangsweise sterilisiert oder sogar getötet wurden.



Manche Ärzte und Ärztinnen, Juristen und Juristinnen teilten Menschen willkürlich in Gruppen ein © DIMR/Ka Schmitz

**Die willkürliche Einteilung von Menschen**

[독일-그림 56] 온라인 인권교육 매뉴얼, “인권으로서의 포용”

<2015 - 2016년 연구수행 결과물 (영어 보고서)>

- Children's and young people's righ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s and guideline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March 2016
- aktuell 08/2015: Germany's Accession to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January 2016
- "Just head-banging won't work." How state donors can further human rights of LGBTI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at LGBTI think about it, October 2015
-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human rights issu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October 2015
- Comments on the AIIB's Draft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dated 3rd August 2015, October 2015
- aktuell 3/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pportunity for therealisation of human rights in and by Germany, June 2015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Germany, May 2015
- Paralle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pril 2015
- How the Child's Right to Participation Can be Promoted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February 2015
- Policy Paper Nr. 28: Human Rights Require Accountability. Why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needs a human rights complaints mechanism, February 2015
- ABC of Children's Rights: R for Research Involving Children, February 2015

(2) 인권도서관 운영

인권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문서화 작업은 위원회가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중의 하나임.

위원회는 2013년 말 기준 1만여 권의 미디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sup>2468)</sup>

인권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의 경우 인권 주제와 관련한 약 3000여개(694권의 출판단행본, 2100권의 논문, 182권의 전자 출판물)의 신규출판물의 서지 정보(bibliographic information)를 등록한 바 있음.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세계최대의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WorldCat에 등록되어 있음.

도서관은 공중(Public)에게 주 5일 개방하며, 인권 관련 도서, 전자 자료, 학술논문, 점자 도서, 전자 자료 대출이 가능함.

라) 정책개선: 차별로부터의 보호 - 법에서의 젠더다양성을 위한 권고

위원회는 차별과 관련된 업무로 ‘차별금지법 제정’, ‘유럽인종차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유엔 여성권리협약’ 등을 주제로 하여 워크숍, 공공세미나 등을 개최함. 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법에서의 젠더 다양성”에 관한 활동에 주력하면서 연방 가족부(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시민, 여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특히, 독일 시민적 지위에 관한 법(German Civil Status Act) 22조 3항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을 “남성 또는 여성”에서 “성별의 지정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예에 참여하고 있음. 이를 위해 독일 법에 대한 법률 분석과 타 국가의 사례, 독일법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중임. 다양한 규정 모델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전반적인 연구조사 보고서는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음.<sup>2469)</sup>

마) 사법부 의견 제출

해당 자료 없음.

2468)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3, 2013, p.32

2469)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topics/protection-from-discrimination/gender-diversity-in-law/> (검색일 2015. 7. 15.)

바) 주요 인권이슈

해당 자료 없음.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PRD)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

독일정부는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PRD)의 33조에서 명문화된 바와 같이 조약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하고자 독립적인 국가 모니터링 기구(National Monitoring Body, NMB)를 위원회 내부에 설치하였음. 현재 이 기구는 독일 연방 노동 사회문제부(German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6인의 직원이 상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기구(NMB)는 독일의 장애인의 인권 현황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보호시설 방문, 정부, 국회, 장애인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간담회, 언론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장애인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결정에 대한 권고 및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그러나 기구(NMB)는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개별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sup>2470)</sup>

한편 이 기구(NMB)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협약 35조 이행현황에 대한 기구차원의 독립보고서<sup>2471)</sup>를 2015년 3월에 제출함.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결과를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개발에서 인권적 관점이 주류화 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해야 할 주요요소로 분석하고 있음. 장애인과 관련 단체 대표자의 참여는 활발했으나, 의미 있고 적합한 참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도적, 행정적, 사법적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제출함.<sup>2472)</sup>

---

2470)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national-cprpd-monitoring-mechanism/> (검색일 2016. 6. 30.)

2471)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fileadmin/user\\_upload/PDF-Dateien/Parallelberichte/Parallel\\_Report\\_to\\_the\\_UN\\_Committee\\_on\\_the\\_Rights\\_of\\_Persons\\_with\\_Disabilities\\_March\\_2015.pdf](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fileadmin/user_upload/PDF-Dateien/Parallelberichte/Parallel_Report_to_the_UN_Committee_on_the_Rights_of_Persons_with_Disabilities_March_2015.pdf)

2472) National Monitoring Body fo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lle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또한 동 조약 심의에 대한 정부 보고서(State Party's Report)는 보고 의무에 따라서 단순히 법·제도적 상황만을 나열하였을 뿐, 정부가 주도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변화를 측정하고 다루지 못한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음.

(2)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국내 모니터링 기구로의 역할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992년부터 독일정부가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핵심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2014년 2월 동일한 권고안 직후, 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는 아동권리협약(CRC)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을 독일 인권위원회에 부여함.

위원회의 협약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은 2015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 6월에 1차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모니터링 기구에는 총 5명의 직원이 상근업무를 맡고 있음.<sup>2473)</sup>

이 기구는 아동권리협약(CRC)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 정부, 의회, 시민사회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구의 활동에서 특히 아동과 청년의 참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있음.

이 기구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와 동일하게 개별사건의 진정에 대한 조사 권한이나 법률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나 진정사안을 어떠한 기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3)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독일 정부는 2009년 2월, 2013년 4월에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심사를 받았으

---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of Germany under Article 35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rch 2015, p.4.

2473)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national-crc-monitoring-mechanism/about-us/> (검색일 2016. 7. 1.)

며, 2009년에는 44개, 2013년에는 총 132개의 권고를 각국으로부터 받았음. 한편 위원회는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사(2013)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보고서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권고한 바 있음.<sup>2474)</sup>

<독일 국가인권위원회의 UPR 2차 심사 독립보고서 주요내용>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할 것
-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인권의무를 사법관할권 외 지역에서 적용할 것
- 지원시설, 진정제도의 보장 등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확대할 것
- 독일 주의회가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안과 인권의무 사항에 보다 체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할 것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공립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하며 경찰, 국가 정보원, 구금시설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심화할 것.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재 및 교안 개발 등을 확대할 것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국가행동계획(NAP)를 추가로 개발할 것
- 포용적인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교육문화부의 리더십을 제고할 것
- 망명신청자 및 난민의 권리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시 거주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개발프로젝트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수행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것
- 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ATI)에 실행계획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인 공약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것
- 양자 개발 기구에서의 진정 제도를 제정할 것

<독일 제2차 UPR 권고(2013)에 대한 주요 권고내용>

1.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22. 유럽 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비준할 것
24. 아동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EU 협약(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을 비준할 것.
25. 공립학교 내에서의 차별행위로부터 이를 명백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연방 반-차별법(Federal Anti-Discrimination Law)를 개정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독립 기구를 설립할 것
40. 공립학교 교사가 종교적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을 철회할 것
- 44. 독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대할 것**
45. 연방 반차별 기구(Federal Anti-Discrimination Agency)의 권한을 확대할 것

2474) GIHR, Recommendations of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the Second Review of Germany under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HRC)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2013

(4) 유럽 기본권기구(Fundamental Rights Agency)에 대한 보고

2007년부터 위원회는 비엔나에 위치하고, 유럽연합 27개국이 참여하는 European Fundamental Rights Agency(FRA)의 국내 포컬 포인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기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sup>2475)</sup> 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위원회는 독일 내 인권상황에 관한 광범위한 법률연구를 진행함. 또한 2007-2012년까지 인종주의, 차별, 인권침해 피해자 배상, 아동권리, 망명 및 이주 등 유럽연합의 핵심 인권분야에 대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였음. 위원회를 포함한 이 기구에 참여하는 27개 회원국은 개별 연구의 결과를 모아내어 EU의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출판하였음. 2008년 동성애 혐오(호모포비아) 문제에 대한 보고서 출판을 시작으로, 아동 인신매매(2009), 국가인권기구와 데이터 정보 보호(2010), 인종 평등 디렉티브(Racial Human Rights Directive)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2010)를 발간한 바 있음.

(5) 국제개발협력

① 위원회는 2011년부터 독일의 무상원조 기관인 독일 국제협력공사(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와 협력하여 개발과정에서의 인권의 통합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정책자문, 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의 인권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중점이슈는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 ‘개발과정에서 아동권리’, ‘식수 및 위생’, ‘성적지향 및 정체성’, ‘갈등 전환’임.

② 위원회는 사법관할권 외 영토(Extra-territorial obligation)에서의 의무를 중요하게 다루며, 협력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예방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함.

위원회는 독일의 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정책에서의 인권기반접근(HRBA) 전략을<sup>2476)</sup> 개발하고, 개발협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

2475)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reporting-to-the-fundamental-rights-agency-franet/> (검색일 2016. 7. 17.)

2476)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3, 2013, p.24-25.

함.<sup>2477)</sup>

2013년 위원회는 인권 주류화 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식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인권기반접근(HRBA)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및 실행시 요청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실무자에게 배포하였음. 위원회는 인권적 관점에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자문을 수행함.

③ 위원회는 독일의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이 양자개발협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을 설립을 고려할 것을 발표<sup>2478)</sup>한 이후로, 개발협력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주민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진정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에 착수하였음.

2012년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민사회와 두 차례에 걸친 진정 방안의 마련 및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독일개발협력을 위한 인권 진정 방안에 대한 제안<sup>2479)</sup>을 받아들임.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진정 방안의 설립을 요구하는 정책권고 및 정책문서를 발간하였음.

#### <개발협력사업 관련 독일인권위원회-독일국제협력공사(GIZ)의 주요협력 업무>

- 주요 정책 개발
  - 양자 간 개발협력에서의 진정 방안에 관한 정책권고(인권은 책무성을 필요로 한다: 왜 독일의 국제개발협력은 인권 진정 방안이 필요한가 (2015))
  - 성적지향 및 성적정체성과 관련한 인권이슈를 개발협력에 통합하기 위한 실행 지침 (2015)
  - ‘인권과 갈등 전환’: 개발협력 담당자들을 위한 지침 (2011)
  - 이라크에서의 인권 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행 매뉴얼 (2010)
- 개발협력 컨설팅
  - 독일-캄보디아 토지 권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2013)

2477)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topics/development/>  
(검색일 2016. 7. 15.)

2478)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3, 2013, p. 32.<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topics/development/main-issues/accountability-and-transparency/> (검색일 2016. 7. 15.)

2479) Forum Menschenrechte, Proposal for a Human Rights Complaint Mechanism for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October 2012 [http://www.forum-menschenrechte.de/cms/upload/PDF/ab\\_02\\_2012/1210\\_FMR\\_Proposal\\_HR\\_Complaint\\_Procedure\\_Dev\\_Coop.pdf](http://www.forum-menschenrechte.de/cms/upload/PDF/ab_02_2012/1210_FMR_Proposal_HR_Complaint_Procedure_Dev_Coop.pdf)

- 네팔 보건 분야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기반접근의 강화 (2009)
- 보건 분야 지원을 위한 탄자니아-독일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기반접근의 강화
- 가나에서의 지역(Local) 및 대륙(Regional)의 경제개발 - 스코핑 스타디: 진정 방안의 개발을 통한 기업의 우호적 환경 조성 지원 (2008) 외 다수

○ 인권기반접근(HRBA)의 모범 실행 사례

- 아프리카 인권시스템의 강화 (2016)
- 조언에서 합의로, 협력으로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아구산 숲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대화에서의 원주민의 참여 (2015)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과정에서 잠비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효과적 참여
-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에서의 노동권 개선 (2014)
- 지방자치: 인도네시아의 공공서비스의 책무성 (2014)

#### 4) 독일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 가) 연방 시민교육 기구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연방 시민교육 기구는 독일연방의 공공기관으로 시민교육과 독일 내 모든 시민의 정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교육의 실행을 위해 출판, 연구, 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함. 위원회의 인권교육사업 시 주로 협력하는 기구로 공동으로 인권교육교재 개발을 수행함.<sup>2480)</sup>

##### 나)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독일의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 등 규범통제, 정당외의 위헌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탄핵소추심판, 기관쟁송, 연방국가적 쟁송, 선거 및 의원자격에 대한 심판, 헌법소원 심판, 기본권 실효에 관한 심판의 8가지 권한을 가짐.<sup>2481)</sup>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President)과 부소장(Vice-President) 1인을 포함한 16인의 재판관(Judge)으로 구성되며, 독일 연방의회(하원)과 독일 연방참사원(상원)에 의해 선출됨.

연방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을 가진 두 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는

2480) <http://www.bpb.de/die-bpb/138867/key-activities> (검색일 2016. 7. 2.)

2481)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B%B0%A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검색일 2016. 7. 20.)

데, 제1 재판부는 주로 시민과 국가의 다툼을 결정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수행함. 제2 재판부는 초창기의 경우 주로 국가기관 간의 헌법충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1956년 이후 기본권, 특히 망명권 및 국적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음. 양 재판부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 다른 재판부의 판례를 심사할 수 없음. 만약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16명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가능함.

헌법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s)의 경우, 법인격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기본법(Basic Law)에 따른 기본권(독일 기본법 1조에서 19조까지)과 기본권에 상응하는 특정권리(기본법 20조, 33조, 38조, 101조, 203조, 104조)의 침해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sup>2482)</sup> 그러나 헌법소원은 정규 재판과정에서의 항소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재판소가 특정 헌법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음. 1995년 재판소 설립초반에는 연간 500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2013년에는 6477건의 절차가 진행되었음.

#### 다) 연방 반차별 기구 (Federal Anti-Discrimination Agency)

연방 반차별 기구는 동등대우에 관한 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 2006)에 따라서 인종, 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일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sup>2483)</sup>

연방 반차별 기구는 차별행위에 대한 법률 소송 등의 지원 및 중재,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자문, 차별 피해자들의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특히, 핫라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터, 고용 상에서 차별을 겪은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함. 이외에도 대중홍보,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연구, 차별행위에 대한 현황, 차별근절을 위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독일연방의회에 보고(4년마다) 등의 업무를 수행함.

2482)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Verfahren/Wichtige-Verfahrensarten/Verfassungsbeschwerde/verfassungsbeschwerde\\_node.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Verfahren/Wichtige-Verfahrensarten/Verfassungsbeschwerde/verfassungsbeschwerde_node.html) (검색일 2016. 7. 21.)

2483) [http://www.antidiskriminierungsstelle.de/EN/AboutUs/Greeting/greeting\\_node.html](http://www.antidiskriminierungsstelle.de/EN/AboutUs/Greeting/greeting_node.html) (검색일 2016. 7. 20.)

## 8. 영국

영국 국가 정보 <sup>2484)</sup>	
면적	약 24,482만km <sup>2</sup>
인구	6,374만 명(2014)
수도	런던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주요언어	영어
주요종교	기독교(59.5%), 이슬람교(4.4%), 힌두교(1.3%)
주요민족	앵글로색슨족
GDP	GDP : 2조 9,451억불(2014, IMF)
	1인당 GDP : 45,653불

### 1) 영국 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평등과 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2) 설립연도: 2007년 10월 1일

(3) 설립배경: 2006년에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에 근거, 2007년에 설립된 독립기구임. 위원회의 전신인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장애인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의 3개 기구가 통합되면서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sup>2485)</sup> 위원회의 비전은 '시민의 권리를 지킨 오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보호하고 편견으로부터 맞서며, 영국의 가치를 유지 및 강화하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불공정한 차별행위들을 시정하는 것'이며, 미션은 '인권의 보호와 인지 제고' 및 '인권법의 준수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증진'으로 명시되어 있음.<sup>2486)</sup>

2484)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1.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1.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 6. 28)

2485)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bout-us/who-we-are> (검색일 2016. 6. 28)

2486)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human-rights/our-human-rights-work> (검색일 2016. 7. 1.)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 2006) 1절<sup>2487</sup>에 따라 설립되고, 동법 2절<sup>2488</sup>에 따라 효력을 지님.

평등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제정되었고, 2010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기존 관련법의 116개의 법조항들을 단일한 법으로 통합하였음<sup>2489</sup>

평등법(2006) 12절(Section12)<sup>2490</sup>에 따라 위원회는 영국의 평등과 인권문

---

2487) Equality Act 2006, section. 1 "Establishment" (인권법 제 1절 "설립") : There shall be a body corporate known as the 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기구는 '평등과 인권 위원회'으로 칭하며, 법인이어야 한다.)

2488) EHRC., section. 2 "Constitution, &c." (인권법 제 2절 "구조 등") : Schedule 1 (constitution of the Commission, proceedings, money, &c.) shall have effect. (기구는 별표1[위원회의 구조, 절차, 재정 등]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489)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equality-act-2010/what-equality-act> (검색일 2016. 7. 17.) 통합된 9개의 기존법은 다음과 같음: ① Equal Pay Act 1970 ② Sex Discrimination Act 1975 ③ Race Relations Act 1976 ④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⑤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⑥ Employment Equality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3, ⑦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⑧ Equality Act 2006, Part 2 ⑨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7.

2490) Equality Act 2006, section. 12 "Monitoring progress" (인권법 제 12절 "진전사항 모니터링") :

(1) The Commission shall from time to time identify -. (위원회는 수시로 다음의 사항을 규명하여야 한다.)

(a) changes in society that have occurred or are expected to occur and are relevant to the aim specified in section 3, (3절(Section 3)에서 명시된 목표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사회 변화)

(b) results at which to aim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described in section 3 ("outcomes"), and (3절에서 기술된 사회의 발전을 장려 및 지지하고자 한 목적에 대한 결과, 그리고)

(c) factors by reference to which progress towards those results may be measured ("indicators"). (결과가 "지표"로서 측정될 수 있는 진전사항으로 참고 할 수 있는 요소)

(2) In identifying outcomes and indicators the Commission shall -(성과와 지표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 위원회는 -)

(a) consult such persons having knowledge or experience relevant to the Commission's functions as the Commission thinks appropriate,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을 갖고 있는 자와의 협의한다.)

제의 개선정도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 의무<sup>2491)</sup>를 가지게 됨.

- 
- (b) consult such other persons as the Commission thinks appropriate,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의 사람들과 협의한다.)
  - (c) issue a general invitation to make representations, in a manner likely in the Commission's opinion to bring the invitation to the attention of as large a class of persons who may wish to make representations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nd (대표권을 가지는 이들을 초청, 위원회의 의견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신뢰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협의한다.)
  - (d) take account of any representations made. (대표자들이 제안하는 바를 고려한다.)
- (3) The Commission shall from time to time monitor progress towards each identified outcome by reference to any relevant identified indicator. (위원회는 확인된 관련 지표들을 참조하여 밝혀낸 성과들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4)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a report on progress towards the identified outcomes by reference to the identified indicators – (위원회는 확인된 지표들을 참조한 성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진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a) within the period of thre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and (이 절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3년의 기간 내에, 그리고 )
  - (b) within each period of thre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a report is published under this subsection. (이 관(款)에 의거하여 보고서가 출판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3년마다)
- (5) The Commission shall send each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who shall lay a copy before Parliament. (위원회는 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이자 여성 및 평등 장관(번역자 주: 2016년 현재, 장관의 명칭은 Secretary for state for Education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임.)에게 보내며, 장관은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2491) EHRC., section. 3 "General duty" (인권법 제 3절 일반의무) : The Commission shall exercise its functions under this Part with a view to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in which –. (위원회는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고자 이 법에 근거, 아래의 관점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 (a) people's ability to achieve their potential is not limited by prejudice or discrimination, (인민의 잠재적 역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편견 또는 차별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 (b) there is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each individual's human rights, (사인의 개별 권리의 보호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 (c) there is respect for the dignity and worth of each individual, (사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 (d) each individual has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사인은 사회에 참여할 동등한 귀회가 주어져야 한다.)
- (e) there is mutual respect between groups based on understanding and valuing of diversity and on shared respect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평등과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법인임. 반관반민 성격의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으로, 독립적 법인<sup>2492)</sup>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 및 국가기관이 평등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규제기구(Regulatory body)의 성격<sup>2493)</sup>을 가짐.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위원회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르면<sup>2494)</sup>, 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구조로 이사회(Board of Commissioners)를 두고 있으며, 장애 위원회(Disability Committee), 스코틀랜드 위원회(Scotland Committee), 웨일즈 위원회(Wales Committee)의 3개위원회가 이사회 산하에 구성되어 있음.

또한 법정기구는 아니지만, 회계 및 위험관리 위원회(Audit and Risk Assurance Committee, ARAC), 인적 자원 및 보상 위원회(Human Resource and Remuneration Committee, HRRC)가 설치되어 있음. 위원회는 한시적 프로젝트에 한하여 실무그룹(Working Groups)을 둘 수 있으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인권위원이 실무그룹에 참여 할 수 있음. 현재 위원회 이사회 내에는 ‘국제조약 모니터링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인권위원 실무그룹(Commissioner Working Group on Treaty Monitoring and Related Matters)과 영국 인권현황 조사 “Is Britain Fairer?” 실무그룹(Commissioner Working Group on “Is Britain Fairer?”)이 설치되어 있음.

---

인권을 향한 공동의 존중과 다양성의 이해 및 가치를 기반으로 집단 간의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2492)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bout-us/who-we-are>  
(검색일 2016. 6. 28)

2493)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legal-action/our-powers>  
(검색일 2016. 7. 1.)

2494)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EHRC), Governance Framework, September 2015, p. 15.

한편, 위원회는 거버넌스 구조와 상위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Governance Framework) 문서를 2007년 2월에 발표한 이후 2015년 9월, 6번째로 개정(Ver. 4.0)된 문서<sup>2495)</sup>를 토대로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위원회의 본부는 런던에 위치해 있음.

지역사무소는 맨체스터(Manchester), 카디프(Cardiff), 글라스고(Glasgow) 지역 3곳에 두고 있음.<sup>2496)</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위원회는 여성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협력기관인 정부평등부(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로부터 연간 예산을 지원받음.

<영국-표 33> 영국 평등과 인권위원회 예산

(단위: 백만 파운드)	2014/2014	2014/2015	2015/2016
행정성경비	15.027	15.027	14.727
감가상각	0.500	0.500	0.620
사업비	1.400	1.400	1.400
총계	16.927	16.927	16.747 (한화 약 252억원)

출처: Framework Document, EHRC&DCMS (1March 2015), p. 3.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소속의 여성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이 위원장(Chair)과 인권위원(Commissioner)을 임명함.

여성 및 평등부 장관은 위원장과 위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2495) *ibid.*, p. 2.

2496)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contact-us> (검색일 2016. 6. 28.)

판단하는 경우 위원의 임명을 해임할 수 있음<sup>2497</sup>).

<영국-표 34> 영국 평등과 인권 위원회의 이사회 명단 (2016년 7월 기준)

	직위	성명
1	위원장 (Chair)	David Isaac CBE
2	부위원장 (Deputy Chair)	Caroline Waters OBE
3	장애부문 인권위원 (Disability Commissioner)	Lord Chris Holmes
4	웨일즈 지방 인권위원(Wales Commissioner)	June Milligan
5	스코틀랜드 지방 인권위원 (Scotland Commissioner)	Dr Lesley Sawers
6	인권위원	Evelyn Asante-Mensah
7	인권위원	Laura Carstensen
8	인권위원	Susan Johnson OBE
9	인권위원	Lorna McGregor
10	인권위원	Professor Swaran Singh
11	인권위원	Sarah Veale CBE
12	인권위원 / 사무총장 (Chief Executive)	Rebecca Hillsenrath

이사회 내에는 위원장(Chair) 1인과 부위원장(Deputy Chair) 1인, 스코틀랜드 지방의 인권위원(Scotland Commissioner) 1인, 웨일즈 지방의 인권위원(Wales Commissioner) 1인, 장애인 인권위원(Disability Commissioner) 1인을 포함하여 2016년 7월 현재 총 12인으로 이루어져 있음.<sup>2498</sup> 그러나 평등법(Equality Act)과 위원회 운영방향의 기초문서(Government framework)에 따르면, 이사회는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sup>2499</sup> 한편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방의 인권위원은 해당 지역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자로 스코틀랜드 장관(Scottish Ministers)과 웨일즈 장관(Welsh Ministers)과 협의하여 지명함.<sup>2500</sup>

2497) (평등법(Equality Act) 별표1(Schedule 1) ‘재직’

2498)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who-we-are/our-commissioners-committees-and-governance/about-our-commissioners> (검색일 2016. 6. 28)

2499)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EHRC), Governance Framework, September 2015, p. 10.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이사회 인권위원 중에 1인을 선임하며, 위원회의 전략을 도출하여 이사회에 제안,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에 기초한 연간 사업계획 및 정책의 개발, 위원회 조직 운영, 인사관리 및 직원훈련, 재정 및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관할하며, 위원회 부서인 선임경영팀(The Senior Management Team)을 이끌면서 위의 업무를 수행함.<sup>2501)</sup>

2016년 3월 기준, 현재 위원회의 전 직원은 207명임.<sup>2502)</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앞서 기술한 대로 위원회는 반관반민 성격의 비정부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지위는 구체적으로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12년부터 위원회 조직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과의 관계, 의회의 보고 책임과 인권위-장관-의회와의 관계 등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 이는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과정에서 영국정부가 받은 권고(“(5)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참고), <정부-위원회 간 프레임워크 문서 및 중요 원칙에 관한 메모(Government-Commission Framework Document and note of overarching principles)>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됨.<sup>2503)</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위원회는 평등법 별표1(Schedule 1) ‘지위 등’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부속 시행기관(Servant or agent of the Crown)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와 동일한 지위, 면제 또는 특권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여성 및 평등부 장관은 위원회가 활동, 시행계획 및 우선순위과제를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제한을 둘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평등법(Equality Act) 별표1(Schedule 1) ‘재직’), 재임명 될 수 있음.

---

2500) *ibid.*, p. 9.

2501) *ibid.*, p. 26.

2502) EHRC, Annual Report and Accounts, July 2016, p. 21.

2503)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who-we-are/our-commissioners-committees-and-governance> (검색일 2016. 7. 17.)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면책 특권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 없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위원회의 전략목표

위원회는 평등과 인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도전과제를 규명 및 진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3년마다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 2016년에는 향후 3년간 4가지 전략목표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였음.<sup>2504)</sup>

- ① 중요 영향력 제고 - 평등과 인권에 관한 진전사항을 유지
- ② 증거기반 접근 개선 - 신뢰할만한 권위 있는 증거와 통찰의 제공
- ③ 지속가능한 사회기반구조 - 실제 생활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조 마련
- ④ 전문역량 개선 -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권위 있는 국가기구로서의 확립

위원회는 인권현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2015년에는 <Is Britain Fairer?>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주요인권문제의 현황과 개선현황을 담아낸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위원회는 2010년에 첫 번째로 <How Fair is Britai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Is Scotland Fairer?>, <Is Wales Fairer?>의 시리즈 형태로 지역을 구분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의 인권현황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 위원회는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 12절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2) 위원회의 사업 계획

한편 위원회는 매해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년에 한번 씩 평가를 수행함. 2016년 주요 사업으로 다음의 5가지 활동방향을 수립하였음.<sup>2505)</sup>

---

2504)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who-we-are/our-strategy>  
(검색일 2016. 6. 28.)

2505)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ublication-download/our-business-plan-201617> (검색일 2016. 6. 28.)

① 사법정의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위원회는 사법정의를 보장함으로써 법에 의한 보호를 증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시스템의 이용개선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함. 또한 형사사법제도 상에서의 아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

②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의 증진 및 사생활보호 개선

위원회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하게 인지하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문제 등을 중요 이슈로 관련 사업을 수행함.

③ 일자리에서의 공정한 대우 및 승진 기회 보장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성별, 장애, 인종에 따른 임금격차를 없애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며, 일자리에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안 등을 개발함.

④ 정체성에 의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

혐오범죄(Hate Crime)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법제도와의 통합적 접근을 개발. 또한 장애에 따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함.

⑤ 생활수준의 개선과 개인의 자율성 보장

사회보장체계가 시민의 인권과 기회의 평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변화정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수행함. 장애인의 주거권과 더불어 버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등의 개선정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sup>2506)</sup>

(1) 평등법의 위반 사항 점검 및 이행

위원회는 효과적인 2010년에 개정된 평등법(Equality Act)의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함(사례: 2015년 여성 및 평등 위원회가 실시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보호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의회가 취해야 할 법제 및 관련 보호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2506) EHRC, Business Plan 2016/17, March 2016, pp. 17-20.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sites/default/files/business\\_plan\\_2016-17.pdf](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sites/default/files/business_plan_2016-17.pdf)

록 감독함)

(2) 국제인권조약의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CESCR),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국제협약의 이행현황을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과 국내법·정책·관행 간의 정책조화를 제고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

(3) 정부부처 간 인권 및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조정

위원회는 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럽연합법과 정책과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또한 의회의 책무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사) 승급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8년 A등급으로 GANHRI 가입 후, 2010년 10월에 이어 2015년 11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2507)</sup>

## 2) 영국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및 활동 내용

가) 주요업무 범위 및 성격

(1) 주요업무 범위

평등법 제정이후의 영국 내 인권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인권현안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 인권과 평등과 관련된 법제 강화 등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수행함.<sup>2508)</sup>

① 영국 내 인권현황을 모니터링하고, UN, 정부 및 의회에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을 제출함.

②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른 위원회의 임무인 평등과 인권의 보호에 대한 진전현황을 보고함. 2015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인권현안 조사

2507) ICC, Chart of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ccreditation status as of 26 January 2016, 2016.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2508)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human-rights/our-human-rights-work> (검색일 2017. 7. 1.)

의 수행결과를 보고함.

- ③ 인권보호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법률자문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 하며, 2011년 이후 정부와 공공기구를 대상으로 한 70건의 법률소송에 개입함.
- ④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동료검토 과정인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참여, 의견서를 제출함.
- ⑤ 국가인권기구(NHRIs)로서의 역할로서 UN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위원회의 활동 및 관련정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함.
- ⑥ 국가인권기구(NHRIs)로서 영국이 비준 한 7개 국제인권조약을 모니터링 하며 이행 상황을 보고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
- ⑦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 정보는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이 충족하여야 할 인권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⑧ 정부와 의회에 정책에 대한 인권적 의미와 제출된 법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정부와의 정책협의 의회보고 등을 수행함.

## (2) 법률 업무

위원회는 평등법(Equality Act)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규제기구의 성격을 지님.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불평등을 줄이고, 차별을 근절하며,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지침의 발간,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기관들이 평등법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방법이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평등법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적 접근은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법적 강제력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할 때만 행사함.

- ① 시민들과 공공기관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 ② 한 의제가 최우선순위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과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③ 전 산업 또는 부문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정책 또는 관행을 해결하고자 할 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sup>2509)</sup>

위원회의 법률소송 업무의 경우, 크게 ‘법률구조’(Legal assistance), ‘법률 개입(Interventions)’,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법원제소(Applications to court)’로 이루어짐. 위원회는 지난 8년간 300건의 주요 사건에 개입<sup>2510)</sup>하였으며, 국가기관의 인권법, 평등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질의, 조사 및 평가, 위법행위에 대한 공지 및 제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위원회의 법률 구조는 평등법 28절(Section 28)에 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들의 법적 대표로서 인권과 관련된 차별 사건들을 지원함. 또한 법률개입의 경우 동법 30절(Section 30)에 근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법률 소송절차와 사법심사 등의 사안에 법률 개입을 할 권한이 있음. 위원회는 사법심사를 위한 소송절차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률 및 정책 전문가로서 법률적인 개입을 통하여 사건이 보다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개입을 시도함. 법률제소는 위원회가 평등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의 주(州) 법원(Country court)에 제소하거나, 스코틀랜드 지방의 판사(Sheriff)에 제소함. 사법심사는 동법 30절(Section 30)에 근거, 공공기관이 인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를 결정하는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등의 합법성여부를 판단함.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이 결정됨.

### (3) 진정 기능 (위원회의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진정에 한함)

진정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① 위원회의 서비스의 질 ② 위원회 직원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의 행동 ③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위원회 소속 또는 협력 직원의 소양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진정만을 다

2509)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legal-action/our-powers>  
(검색일 2016. 7. 10.)

2510)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legal-casework/our-legal-work-action>  
(검색일 2016. 7. 1.)

루며, 이는 “서비스 진정(Service Complaints)”으로 일컬어짐.<sup>2511)</sup> 그러나 위원회는 1) 위원회의 정책 및 정책 결정에 대한 논평 2) 법률자문 또는 지원에 대한 요청, 재정지원, 개별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정책과 관련된 진정 3) 진정 절차를 통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안 4) 익명의 진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위원회는 진정인의 진정 접수 즉시 20일 이내로 해당 사안을 진상규명하여 답변을 제공하며, 진정 제기자가 조사 결과에 불만족하여 2차 진정 조사결과까지 불응할 경우, 위원회 서비스에 대한 진정은 “의회 및 보건서비스 옴부즈맨(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으로 보내짐.

#### (4) 질의 및 조사

(가) 위원회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는 인권법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며, 일체의 차별 및 괴롭힘 행위의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sup>2512)</sup>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자,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차별 관행을 시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차별행위 또는 평등법 미준수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함. 위원회는 예방적 조치가 실패한 경우에 공식 조치로써 질의(Inquiries), 조사(Investigations), 불법행위에 대한 공지(Unlawful act notices), 협의(Agreements), 평가(Assessments), 준수에 대한 공지(Compliance notices)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질의(Inquiries): 질의 업무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평등법의 8조, 9조에 근거, 특정부문 또는 이슈에 대한 이행지시서(Terms of Reference, TORs)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과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제출된 정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진행된 질의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함.

2511) EHRC,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Complaints Policy and Procedure, 2014

2512)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powers/inquiries-investigations-and-wider-powers> (검색일 2016. 7. 9.)

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조현병 환자의 상황<sup>2513</sup>, 장애와 관련된 괴롭힘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sup>2514</sup>하였으며, 모든 조사 결과는 보고서와 함께 이후 후속 조치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다) 조사(Investigations): 조사 업무의 경우, 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이 평등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함. 조사는 아래의 단계별로 수행됨.<sup>2515</sup>

- ①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상세히 기술한 서면 제공.
- ② 해당기관이 조사의 사실확인서(TORs)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③ 최종 사실확인서(TORs)의 발표.
- ④ 해당 기관이 정보, 서면 또는 구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
- ⑤ 해당 기관이 부당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의 최종보고서를 발표.

(다) 불법행위에 대한 공지(Unlawful act notices):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 최소 28일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며, 해당 기관은 이해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음.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권고안을 도출하며, 평등법 21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불법행위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지함.

(라) 협의(Agreement): 위원회는 불법행위를 한 협의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과 공식적인 협의(Agreement)를 할 수 있음.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개인/기관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도록 함.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의 행동계획이 도출되면, 해당 개인/기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짐. 만약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

2513)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reventing-deaths-detention-adults-mental-health-conditions> (검색일 2016. 7. 9.)

2514)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inquiry-disability-related-harassment> (검색일 2016. 7. 9.)

2515)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powers/inquiries-investigations-and-wider-powers> (검색일 2016. 7. 9.)

회는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편 위원회는 해당 개인/기관이 평등법 23조 사항을 동의하고, 이러한 협의사항과 행동계획을 준수한다면 조사를 중지함.

(마) 평가(Assessments): 평가는 공공기관이 평등과 관련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만 해당되는 평가로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등을 사함. 이는 개정 평등법 1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평등에 대한 의무 (Equality Duty)의 명시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군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평가임.<sup>2516)</sup> 조사의 주 내용은 공공기관이 인종, 장애, 젠더, 나이, 성적지향 및 성전환, 종교 및 임신과 모성보호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임.

<영국 평등과 인권위원회의 집행업무(질의, 평가, 조사, 협의)의 사례><sup>2517)</sup>

질의 (Inqui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금시설 내 조현병 환자사망의 예방에 대한 질의</li> <li>- 기업 이사회 임원의 채용 또는 임명에 대한 질의</li> <li>- 스코틀랜드의 인신매매 현안에 대한 질의</li> <li>- 잉글랜드 내 노인의 가정 보호요양에 대한 질의</li> <li>- 장애인의 괴롭힘에 대한 질의</li> <li>- 육공시설에서의 고용 및 채용에 대한 질의</li> </ul>
평가(Assess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금융 거래 결정: 영국 재무부에 대한 평가(31조)</li> </ul>
조사(Investig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 경찰국에 대한 조사</li> </ul>
협의(Agre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velodge 기업의 고용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협의</li> <li>- Springcare Limited 기업의 고용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협의(의료기기 납품 노동자에 대한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 등)</li> <li>- Hinckley and Bosworth 지방의회와 증오범죄(장애아동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의 예방 및 안전망 형성 등의 업무 협의</li> <li>- Belfred 기업의 진정처리제도, 평등 및 다양성에 관한 교육훈련, 소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채용 관행 등의 업무 협의</li> </ul>

2516)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Equality Act 2010: Schedule 19, 24 June 20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quality-act-2010-schedule-19-consolidated-april-2011>

2517)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legal-casework/enforcement-work>  
 (검색일 2016. 7. 9.)

(5) 인권교육

위원회는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인권 및 평등’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교재·교안·온라인 강좌 제작 및 배포, 인권영화 제작 및 배포<sup>2518)</sup>, 교사 연수 등의 인권교육 사업을 수행함.<sup>2519)</sup>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교사협회, 교사노조,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6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인권교육을 수행한 바 있음.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워크시트, 인권과 평등에 대한 기초이해 자료 등 교육에 요구되는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초·중고등 인권교육 학습 안>

초등교육 인권교육 안 <sup>2520)</sup>	중·고등교육 인권교육 안 <sup>2521)</sup>
학습 1: 나는 누구인가? 학습 2: 바뀌어야 할 고정관념 학습 3: 여자와 남자의 직업은 따로 있지 않아 학습 4: 내 주변 공동체에서 진로 모색해보기 학습 5: 임무/직업 수행!	학습1: 행동과 결과 학습2: 공감능력을 개발하기 학습3: 정체성과 특성 학습4: 다양성 학습5: 편견과 고정관념 학습6: 차별 학습7: 평등법(Equality Act) 학습8: 인권이란 무엇인가? 학습9: 인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학습10: 행동하기!
각 학습별로 교육목표, 교육진행가이드, 교육도구 및 워크시트, 기타자료 등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 교사가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함.	

(6) 홍보

홍보의 일환으로는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sup>2522)</sup>, 블로그 및 SNS 운영<sup>2523)</sup>

2518)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rimary-education-resources/pass-it-short-film> (검색일 2016. 7. 19.)

2519)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rimary-education-resources> (검색일 2016. 7. 19.)

2520)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lesson-activity-ideas> (검색일 2016. 7. 19.)

2521)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lesson-plan-ideas> (검색일 2016. 7. 19.)

2522)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ccessibility-statement>

등의 홍보활동 정도를 수행하고 있고 그 밖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보이지 않음.

나) 정부조직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위원회의 위상은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 근거, 반관반민 성격의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으로 정부의 사업 또는 정부의 기능을 대신해서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원회는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책무가 있으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정부기관의 산하조직이 아님. 위원회 직원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sup>2524)</sup>

위원회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협력기관인 정부 평등부(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음.

위원회는 매년 4월1일부터 3월 31까지 연간지출과 소득, 직원의 성과급 내역 등이 담긴 회계내역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교육부 차관(Permanent Secretary of the DfE)과 정부평등부의 이사(Director)에게는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타 정부부서와의 관계를 촉진하고, 교육부-정부평등부와 위원회 간의 소통을 조율하는 역할이 주어짐.<sup>2525)</sup>

여성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은 위원회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장관은 위원회의 활동, 일정 계획, 우선순위 과제가 어떠한 제약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책임이 있음. 장관은 평등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예산을 승인할 권한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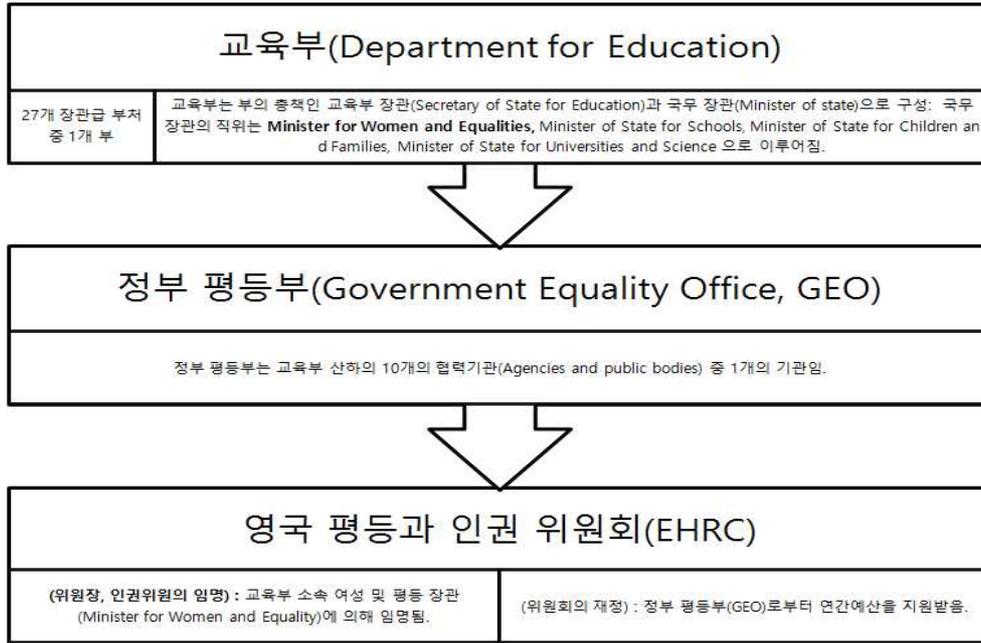
---

(검색일 2016. 7. 19.)

2523)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work/blogs> (검색일 2016. 7. 19.)

2524) EHRC, Governance Framework, September 2015, pp.6-9.

2525) *ibid.*, p. 10.



\*\* 현재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인 Justine Greening은 여성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y)을 겸하고 있음.

[영국-그림 57] EHRC와 영국정부 내각과의 관계(2016년 7월 기준)

### 3) 영국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sup>2526)</sup>

#### 가) 피해자 구제

해당 자료 없음.

#### 나) 교육

##### (1) 보건 및 사회보장

위원회는 2년간(2014-2016년)의 프로젝트로 영국의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이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함.<sup>2527)</sup> 위원회는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불평등 이슈를 다루면서, 인권의 보호, 존중, 증진의 의무를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2526)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what-we-do/our-achievements> (검색일 2016. 7. 1.)

2527)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dvice-and-guidance/human-rights-health-and-social-care> (검색일 2016. 7. 9.)

이해와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을 수행함.

특히,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인권개념을 인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함.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사례연구, 이러닝(e-learning), 프레임워크, 템플릿 및 툴킷 등을 왕립간호대학 등과 협력하여 개발함.<sup>2528)</sup> 또한 노인요양보호 가정을 위한 인권 지침(Human Rights Guidance for Older People's Care Homes: A series of guides and resources)을 영국인권연구소, 싱크탱크 등과 협력하여 시리즈별로 발간함.

(2) 기업과 인권

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인권 존중책임이 있는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여러 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특히 지난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채택 이후, 정부차원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implementing the UNGPs)의 발표됨에 따라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의 조사연구, 지침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 1월, 위원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가이드(A Guide to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발표한 이후<sup>2529)</sup>로, 2016년 5월, 기업과 인권: 기업 이사회를 위한 5단계 가이드 (Business and Human Rights: A five-step guide for company board)<sup>2530)</sup>를 발간하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의 인지제고 활동을 수행함.

다) 홍보

해당 자료 없음.

라) 정책 개선

- (1) 위원회는 교도소, 병원 및 구금시설에 구금된 조현병 환자의 변사(變死)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건부장관 및 관계부처에 개선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2528)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human-rights-health-and-social-care/practical-guidance-health-and-social-care-staff> (검색일 2016. 7. 9)

2529)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ublication-download/guide-business-and-human-rights>

2530)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ublication-download/business-and-human-rights-five-step-guide-company-boards>

제출한 바 있음.

- (2) 위원회는 지난 2012년,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한 권고가 정부에 받아들여진 이래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형사정책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을 개정함. 법 개정안은 장애인, 트랜스젠더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시 최대 30년까지의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3)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규모가 큰 조사로 54,000명에 이르는 임신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 겪은 부당경험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정부는 임신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준비 중에 있음.
- (4) 위원회는 스코틀랜드 지역 내에서 소수 민족과 장애인들이 견습 기회(Modern Apprenticeships)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낮은 것과 젠더 격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출판하였으며,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청년 근로자의 개발을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the Development of Scotland's Young Workforce)가 이 사안을 우선순위과제로 다룰 수 있도록 이끌었음.
- (5) 위원회는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 영국인권연구소(Brit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런던정치경제대학과 협력하여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Human Rights Measurement Framework)를 개발, 연구한 결과 보고서를 2011년에 발표하면서 인권현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증거기반 데이터 수집, 평가지표 등의 분석 툴(Analysis Tool)을 개발함. <sup>2531)</sup>

---

2531)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research/human-rights-measurement-framework> (검색일 2016. 7. 10.)

<2012-2016년 7월까지 위원회의 연구보고서 발간목록><sup>2532)</sup>

연구보고서 시리즈 (Research reports 81-99)

- Research report 81: Human Rights Measurement Framework: Prototype panels, indicator set and evidence base
- Research report 82: Investigat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trafficked into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n Scotland
- Research report 83: The UK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Research report 84: Religion or belief,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England and Wales
- Research report 85: Gender Diversity on Boards: The Appointment Process and the role of Executive Search Firms
- Research report 86: The impact of changes in commissioning and funding on women-only services
- Research report 87: Use of pre-employment health questionnaires by employers
- Research report 88: Barriers to employment and unfair treatment at work, a quantitative analysis of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 Research report 89: Close to home recommendations
- Research report 90: Crime and Disabled people: Baselin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s from the formal legal inquiry into disability-related harassment
- Research report 91: Caste in Britain: Socio-legal Review
- Research report 92: Caste in Britain: Experts' Seminar and Stakeholders' Workshop
- Research report 93: The Strategic Funding Programme: An Evaluation
- Research report 94: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 Research report 95: Coming clean: the experience of cleaning operatives
- Research report 96: Coming clean: contractual and procurement practices
- Research report 97: Review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law relating to religion or belief
- Research report 98: Fairness, dignity and respect in SME workplaces
- Research report 99: Equality, human rights and access to civil law justice: A literature review

(6) 협력사업

- ① 위원회는 경찰청과 협력, '소수민족 남성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수색'을 주제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함. 이리 프로그램은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이끌었고, 2013/2014년 904,000건을 2014/2015년 541,000건으로 약 40%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짐.
- ② 위원회는 청소용역, 육가공시설 부문 관련 협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을 이끌었음. 웨일즈 지방에서,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정책을 도입하였음.

<sup>2532)</sup>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research/list-all-our-research-reports> (검색일 2016. 7. 10.)

③ 웨일즈 지방에서 위원회는 조현병 환자와 가정 폭력에 대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소니(Sony) 기업이 이를 자사정책으로 도입하도록 이끌었음. 왕립 간호대학 (Royal College of Nursing)와 협력하여 조현병 환자를 위한 인권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영국 전역의 다양한 부문의 420,000명의 개별 및 기관을 지원하였음.

마) 사법부 의견 제출

- (1) 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 3년 간 80개의 법률사건을 다루었으며, 이중 3분의 2 이상의 성과가 있었음. 주요 업무로 노인, 장애인 등 50만여 명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함.
- (2) 어떠한 재정적 지원 없이 가정 내에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소송에 개입함.
- (3) 취약계층 환자가 병원에서 ‘연명치료 금지(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의사의 처분이 내려질 때, 환자가족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소송에 개입함.
- (4) 위원회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법률소송을 지원함. 실레로 숙박시설주인이 성소수자 커플의 호텔예약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법률소송을 지원함.
- (5) 위원회는 웨일즈 지방에서 유랑 중인 소수민족 집시(Gypsy)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법적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수행함.

바) 주요 인권 이슈

- (1) 위원회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인권현황 및 우선과제의 진전 상황을 측정하는 보고서를 5년마다 발표, 의회에 보고함. 2010년 첫 번째 보고서 “How fair is Britain?”을 발표한 이후로, 중간보고서 격인 “Human Rights Review”가 발표되었음. 이후 2015년, 최종보고서 격인 “Is Britain Fairer”가 발표되었음.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웨일즈

정부와 협력하여 웨일즈 지방의 평등, 인권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는 보고서 "Is Wales Fairer"를 발간할 예정이다.

- (2) 2015년도 보고서 "Is Britain Fairer"에 따르면, '교육과 학습', '노동', '소득 및 경제', '건강 및 보건', '정의', '안보 및 생명권', '개인과 사회'를 중점이슈로 영국의 현황을 평가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가지 기준을 '시간별 변화 정도', '해당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인구집단의 비율', '생활기회(Life chances)에 대한 영향의 규모'로 설정하였음. 이 조사는 자료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10가지 분야로, 즉, ①교육, ②생활수준, ③생산적이며 가치 있는 활동, ④건강, ⑤생명, ⑥물리적 안전, ⑦법적 보호, ⑧개인, 가족 및 사회적 삶, ⑨정체성, 표현 및 자기 존중, ⑩참여, 영향력 및 목소리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각의 분야별 증거 수집을 통해 현황 자료를 구성하였음. 이 2015년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다음의 8가지 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임.

[1] 영국사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역량 및 증거기반접근을 개선

[2] 교육의 학업달성 격차와 기준의 향상

[3] 고용상의 공정한 채용, 개발 및 보상의 장려

[4] 화합을 위한 공동체사회에서의 생활 조건 개선

[5] 민주적 참여의 장려 및 사법정정의 보장

[6]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및 조현병 환자 지원

[7] 구급 치료시설 내에서의 환자의 인권침해, 학대 등을 예방

[8]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주민 대상의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를 저지

이 조사는 영국 내 평등과 인권 문제의 진전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조사로써 영국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의제를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되었음.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국제인권조약 모니터링 및 증진

- (1) 인권위원회의 핵심 임무 중에 하나는 영국이 비준한 7개의 국제인권조약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임.

영국이 비준한 조약으로는 ①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②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ICESCR), ③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④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⑤고문방지협약(CAT), ⑥아동권리협약(CRC), ⑦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CRPD, OP)와 같음. 조약 이행현황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ICCPR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지침(Legal guidance on freedom of expression)을 2015년 2월에 발간한 바 있음.

- (2) 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9대 국제인권조약 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기구의 의견표명 시, 총 350개의 권고안이 담긴 의견사항을 제출했으며, 이중 70%가 반영되어 정부에 의해 시정조치 되었음.
- (3) 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200건 이상의 권고안이 담긴 30건의 의회보고를 통하여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 및 웨일즈 총회에 정책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 4) 영국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의회 및 보건서비스 옴부즈맨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

- (1) 설립: 이 기구는 영국의 의회 및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업무에 대하여 진정인이 부당한 서비스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최고 결정 기관임. 이 기구는 의회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정부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진정처리 기구.
- (2) 조직구성: 옴부즈맨은 수상의 제안에 따라 영국왕실에 의해 임명됨. 이 기구의 옴부즈맨은 의회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진정과 영국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진정을 조사함.
- (3) 주요업무: 이 기구는 의회 옴부즈맨에 관한 법(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1967)과 건강보험 옴부즈맨에 관한 법(Health Service Commissioners Act 1993)에 의거하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sup>2533)</sup>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총 진정건수는 21,270건(2,799건 조사 종결)에 달하며 2014년의 경우 20,576건임(2,808건 조사종결).

---

2533) <http://www.ombudsman.org.uk/about-us/who-we-are/history-and-legislation>

## 9. 폴란드

폴란드 국가 정보 <sup>2534)</sup>	
면적	312,683km <sup>2</sup> (한반도의 1.4배)
인구	3,852만명
수도	바르샤바(171만명)
정치형태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민족	폴란드인(98.7%),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1.3%)
주요언어	폴란드어
주요종교	카톨릭(95%), 기타(5%)
GDP	GDP : 5,933 억불(2015 기준)
	1인당 GDP : 15,418불(2015 기준)

### 1)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현황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폴란드인권위원회(폴란드옴부즈맨)<sup>2535)</sup> (Rzecznika Praw Obywatelskich, 영문명: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Poland, RPO)<sup>2536)</sup>
- (2) 설립연도: 1988년 1월 1일
- (3) 설립배경: 폴란드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1988년 1월 1일에 1987년 7월 15일에 통과된 인권위원회관한법(Ustawa o Rzeczniku Praw Obywatelskich, Dz. U. nr 21, poz. 123)<sup>2537)</sup>에 근거하여, 당시 법학 교수였던 이바 웬토브스카(Ewa Łętowska)를 기관장으로 하여 출범함. 이후에 1997년 헌법(Konstytucja, z dnia 2 kwietnia 1997 r.)<sup>2538)</sup> 제 2절의 80조,

2534) 출처: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96.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96.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8.1)

2535) 현재 영문 연례보고서에서는 옴부즈맨(Poland Ombudsman)이란 이름을 사용하였고, 이외에도“시민권보호위원회(the Commissioner for Protection of Civil Rights)” 혹은 “인권수호기관(the Human Rights Defender)” 사용했으나 현재는 공식영문홈페이지에는 공식영문명으로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씀. 본 보고서에서는 공식영문명의 번역인 폴란드인권위원회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함.

2536)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사이트: <https://www.rpo.gov.pl/pl> (검색일 2016.9.19)

2537) 이 법의 폴란드어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19870210123> (검색일: 2016.8.5.)

2538) 이 법의 폴란드어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19970780483> (검색일: 2016.8.5.)

제15절의 208조-212조가 신설되고 이 조항을 근거로 확고한 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짐<sup>2539)</sup>.

이바 웬토브스카의 1990년 연구논문에 따르면, 폴란드인권위원회의 설립은 1980년대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s) 설립, 1983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의 설립 등에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기능의 기구 설립 추진을 위해 조직된 “국가재건을위한애국운동(the Patriotic Movement for National Rebirth)”이 1983년 학계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게 되면서 인권위원회와 관련한 법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는 행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고, 의회에만 보고하는 단독적인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출범을 가능하게 하였음.<sup>2540)</sup>

나) 설립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 (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2541)</sup>

(1)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인권위원회 설립 근거를 제공하는 최초의 법률은 1987년 7월에 통과된 인권위원회에관한법(Ustawa o Rzeczniku Praw Obywatelskich, 영어명: Acts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으로, 해당 법에는 인권위원회의 지위, 역할, 업무 등에 대한 자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원회는 최근 2014년 개정된 법을 따르고 있음(Dz.U. o. 2014, poz.1648).<sup>2542)2543)</sup> 인권위원회는 1997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데, 구체적으로 헌법<sup>2544)</sup>의 제2

2539)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historia-ombudsmana-na-swiecie> (검색일: 2016.8.5.)

2540) 출처: Letowska, E. (1990). The Polish Ombudsman (The Commissioner for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39(01), 206-217.

2541) 다음의 링크에서 인권위원회가 근거로 하는 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https://www.rpo.gov.pl/en/content/legal-acts> (검색일: 2016.8.5.)

2542) 인권위원회의 지위,역할등에 대한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act-commissioner-human-rights> (검색일: 2016.8.5.)

2543) 개정법의 폴란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140001648> (검색일: 2016.8.5.)

2544) 인권위원회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에 대한 모든 개정안을 바탕으로 함 (Dz. U. Nr 78,

절 “시민의 자유, 권리 그리고 의무(Freedoms, Rights and Obligations of Persons and Citizens)”의 80조, 제4절 “폴란드하원, 상원, 국회의원(The Sejm and the Senate Deputies and Senators)”의 103조, 제8절의 “법원, 재판소, 헌법재판소(Courts and Tribunals. The Constitutional Tribunal)”의 188조, 191조, 제15절 “국가통제기관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Organs of State Control and the Defence of Rights)”의 208조-212조가 인권위원회 설립과 역할 및 지위에 대한 근거법으로 제시됨.<sup>2545)</sup> 헌법 제2절의 조항은 폴란드국민이라면 폴란드인권위원회의 제청을 할 수 있다는 권리(the right to apply to the Commissioner)를 명시하고, 제4절의 조항에서는 폴란드 국회의원은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8절의 조항에서는 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make application to the Constitutional Tribunal) 자격을 부여받은 인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제15절의 조항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의무, 역할, 위원의 임기와 면책 특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권위원회 관련법으로 평등대우에관한유럽연합규제실행에관한법률(Ustawa o wdrożeniu niektórych przepisów unii europejskiej w zakresie równego traktowania, 영문명: ACT of 3rd December, 2010 on the implementation of some regulations of European Union regarding equal treatment, Dz.U.10.254.1700)<sup>2546)</sup> 및 “고문방지조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sup>2547)</sup>”를 제시하고 있음.

---

poz.483) (sprost. Dz. U. 2001, Nr. 28, poz. 319; zm.: Dz. U. 2006, Nr 200, poz. 1471) 출처: <https://www.rpo.gov.pl/pl/content/podstawy-prawne-dzia%C5%82ania-rpo> (검색일: 2016.8.5.)

2545)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constitution-republic-poland> (검색일: 2016.8.5.)

2546)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act-3rd-december-2010-implementation-some-regulations-european-union-regarding-equal> (검색일: 2016.8.5.)

2547) <https://www.rpo.gov.pl/en/content/optional-protocol-convention-against-torture-a>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원회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폴란드국가기구로, 옴부즈맨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헌법상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구<sup>2548)</sup>. 폴란드 인권위원회 역시 다른 국가인권기구와 마찬가지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로서 기능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적지위를 통해 권한 상의 독립성과 재정에 있어서의 자율성<sup>2549)</sup>을 보장받음.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 받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직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폴란드 헌법과 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음. 폴란드 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기구의 구성원에 관한 다양성<sup>2550)</sup>이, 활동과 재원 등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법령을 통해 보장함. 또한, 폴란드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sup>2551)</sup>. 전체회의

---

nd-other-cruel-inhuman-or-degrading-treatment (검색일: 2016.8.5.)

2548) 폴란드 헌법 제 80조 인권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조항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OF 2nd APRIL, 1997  
Article 80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specified by statute,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Commissioner for Citizens' Rights for assistance in protection of his freedoms or rights infringed by organs of public authority.

2549) 폴란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2조 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조항

Act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rticle 22.

The Commissioner may, upon the Sejm's approval, establish his local representatives.

2550) 폴란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조 인권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Act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rticle 2.

A Commissioner may be a citizen of Poland having legal knowledg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high authority owing to their moral qualities and social sensitivity.

2551) 폴란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9조, 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

Act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rticle 9.

Undertaking activities by the Commissioner takes place:

- 1) at the request of citizens or their organisations,
- 2) at the request of local government bodies,
- 3) at the request of the Ombudsman for Children,
- 4) on his or her own initiative.

이 조항외에 더욱 자세한 법률조항은 폴란드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근거법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조함. <https://www.rpo.gov.pl/en/content/act-commissioner-human->

와 실무회의 구성 등 운영 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야 함<sup>2552</sup>).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는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권한 보유<sup>2553</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1) 조직구성<sup>2554</sup>): 현재 인권위원회 사무국(Biuro RPO) 조직 구성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발효된 인권위원회에관한명령45호(Zarządzeniem Nr 45/2015 Rzecznika Praw Obywatelskich z dnia 19 listopada 2015 roku)<sup>2555</sup>)에 근거하며, 인권위원회 사무국 조직의 전반적 관리는 3명의 위원(Zastępcy RPO, 영어명: the Commissioner's deputies)과 함께 사무국장(General Director)이 같이 수행함. 사무국장은 명령45호의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자산, 예산, 행정, 인사에 대한 업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현 사무국장은 카타지나 야키모비치(Katarzyna Jakimowicz)임.<sup>2556</sup>)

---

rights (검색일 2016.10.31.) 자세한 법률조항은 폴란드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근거법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조함.

2552) 폴란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0조 인권위원회 조직 및 업무분장관련 조항 Act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553)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조항은 폴란드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11조~제17조의 내용을 참조함, <https://www.rpo.gov.pl/en/content/act-commissioner-human-rights> (검색일 2016.10.31) Article 20.

1. The Commissioner shall perform the Commissioner's duties with the assistance of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 The tasks and organization of the Office shall be set forth by its statute to be conferred by the Commissioner.

3. The Commissioner may appoint up to three Commissioner's deputies. The Commissioner may recall the Commissioner's deputies.

4. The Commissioner shall determine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ssioner's deputy (deputies).

5. Respective regulations on the employees of government offices shall apply to the Deputy Commissioner and employees of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6. (deleted).

7. (deleted).

2554) 출처: <https://www.rpo.gov.pl/pl/content/biuro-rpo> (검색일: 2016.8.5.)

2555) 자세한 명령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iki/14480067050.pdf> (검색일: 2016.8.5.)

2556) 출처: <https://www.rpo.gov.pl/pl/content/biuro-dyrektora-generalnego>

바르샤바(Warsaw)에 있는 인권위원회사무국 본부가 그단스크(Gdansk), 카토비체(Katowice), 브로츠와프(Wroclaw) 지역사무소의 대표를 임명함. 현재는 총 17개의 하부조직이 본부사무국 내 마련되어 있음: 헌법국제법유럽연합법팀(Zespół Prawa Konstytucyjnego, Międzynarodowego i Europejskiego)<sup>2557</sup>, 형법팀(Zespół Prawa Karnego)<sup>2558</sup>, 민법팀(Zespół Prawa Cywilnego)<sup>2559</sup>, 행정경제법팀(Zespół Prawa Administracyjnego i Gospodarczego)<sup>2560</sup>, 노동사회보장법팀(Zespół Prawa Pracy i Zabezpieczenia Społecznego)<sup>2561</sup>, 우선평가지원팀(Zespół Wstępnej Oceny Wniosków)<sup>2562</sup>, “국가예방메커니즘(National Prevention Mechanism, NPM)”팀(Zespół “Krajowy Mechanizm Prewencji)<sup>2563</sup>, 감금 및형집행조사팀(Zespół do spraw Wykonywania Kar)<sup>2564</sup>, 평등대우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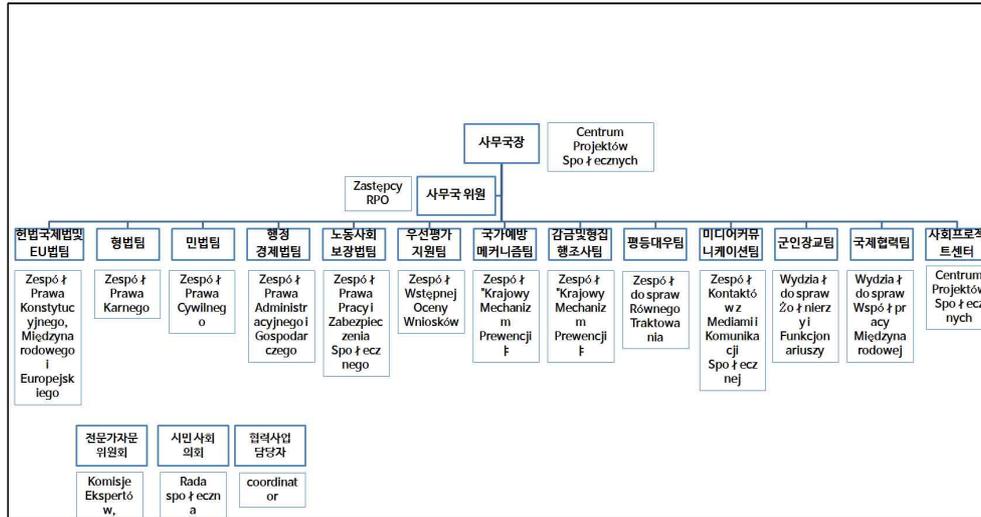
(검색일: 2016.8.5.)

- 2557) 헌법국제법유럽연합법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prawa-konstytucyjnego-mi%C4%99dzynarodowego-i-europejskiego> (검색일: 2016.8.5.)
- 2558) 형법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prawa-karnego> (검색일: 2016.8.5.)
- 2559) 민법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prawa-cywilnego> (검색일: 2016.8.5.)
- 2560) 행정경제법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prawa-administracyjnego-i-gospodarczego> (검색일: 2016.8.5.)
- 2561) 노동사회보장법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prawa-pracy-i-zabezpieczenia-spo%C5%82ecznego> (검색일: 2016.8.5.)
- 2562) 우선평가지원팀은 다른 부서가 담당하지 않는 민원,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연락 전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함. 우선평가지원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wst%C4%99pnej-oceny-wniosk%C3%B3w> (검색일: 2016.8.5.)
- 2563) “국가예방메커니즘”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krajowy-mechanizm-prewencji> (검색일: 2016.8.5.)
- 2564) 감금및형집행조사팀은 감옥,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국민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군대의 공무집행에 있어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함. 이 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C3%B3%C5%82-krajowy-mechanizm-prewencji> (검색일: 2016.8.5.)

(Zespół do spraw Równego Traktowania)<sup>2565</sup>),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Zespół Kontaktów z Mediami i Komunikacji Społecznej)<sup>2566</sup>), 사회프로젝트센터(Centrum Projektów Społecznych)<sup>2567</sup>), 사무국장실(Biuro Dyrektora Generalnego), 브로츠와프지역사무소(Biuro Pełnomocnika Terenowego we Wrocławiu), 그단스크지역사무소(Biuro Pełnomocnika Terenowego w Gdańsku), 카토비체지역사무소(Biuro Pełnomocnika Terenowego w Katowicach), 군인장교팀(Wydział do spraw Żołnierzy i Funkcjonariuszy)<sup>2568</sup>), 국제협력팀(Wydział do spraw Współpracy Międzynarodowej)<sup>2569</sup>)이 있으며, 다른 인권관련 시민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맡는 3명의 사법판결, 지역프로젝트, 지역사무국과의 협력사업 협력담당자(coordinator)가 있음<sup>2570</sup>). 17개의 하부조직 이외에 전문가자문 위원회(Komisje Ekspertów, 영어명: Expert Committee)<sup>2571</sup>) 및 시민사회의회(Rada społeczna RPO, 영어명: Social Council)<sup>2572</sup>)가 설치되어 있음.

- 
- 2565) 평등대우팀은 폴란드 국민의 평등을 위한 조사, 분석,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 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ol-do-spraw-rownego-traktowania> (검색일: 2016.8.5.)
- 256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zespol-kontaktow-z-mediami-i-komunikacji-spolecznej> (검색일: 2016.8.5.)
- 2567) 사회프로젝트센터는 인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컨퍼런스 개최, 분석 업무, 연수/교육 자료의 제작등의 업무를 담당함. 이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centrum-projektow-spolecznych> (검색일: 2016.8.5.)
- 2568) 군인장교팀은 군대에서의 군인과 장교들의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이 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wydzial-do-spraw-zolnierzy-i-funkcjonariuszy> (검색일: 2016.8.5.)
- 2569) 국제협력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pl/content/wydzial-do-spraw-wspolpracy-miedzynarodowej> (검색일: 2016.8.5.)
- 2570) 출처: <https://www.rpo.gov.pl/pl/content/koordynatorzy> (검색일: 2016.8.5.)
- 2571)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정부정책 및 입법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노인, 장애인, 이민자, 3개 분야의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음. 전문가자문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expert-committees> (검색일: 2016.8.5.)
- 2572) 시민사회의회는 인권위원회의 다른 공공 기관들, 비영리적 기구들과의 협력을 용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의 참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시민사회의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social-council-office-commissioner> (검색일: 2016.8.5.)

사무소의 총 정직원(full-time)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286명으로 나타남 ([그림 1] 참조)<sup>2573)</sup>.



[폴란드-그림 58] 폴란드인권위원회 조직도

(2) 지역사무소: 본부 사무국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 3개의 도시(그단스크, 카토비체, 브로츠와프)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 그단스크 지역사무소는 서포모제주(zachodniopomorskiego), 포모제주(pomorskiego), 바르미아-마주리주(warmińsko-mazurskiego)를 관할하고, 카토비체 지역사무소는, 실롱스크주(śląskiego), 소폴란드주(małopolskiego), 시비엥토크시츠키에주(świętokrzyskiego)를 같이 관할하고 있으며, 브로츠와프 지역사무소는 돌니실롱스크주(dolnośląskiego), 루부시주(lubuskiego), 오폴레주(opolskiego)를 관할하고 있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인권위원회의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37,602,000 즈워티(PLN, 한화 약 10억 8천만원)이며, 2016년에는 인권위원

2573) 출처: 폴란드예산재정부(DEPARTAMENT BUDŻETU I FINANSÓW)(2015). 폴란드인권위원회국가예산이용감사결과보고서(Informacja o wynikach kontroli WYKONANIE BUDŻETU PAŃSTWA W 2015 R. W CZĘŚCI 08 – RZECZNIK PRAW OBYWATELSKICH), <https://www.nik.gov.pl/plik/id,11342.pdf> (검색일: 2016.8.5.)

회는 인권위원회사무소 건물 개조,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사무국직원 월급 인상문제, 인권침해사례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및 주요 기능 확대를 근거로 하여 18% 상승한 45,566,000 즈위티(PLN, 한화 약 13억 원)을 제안하였으나<sup>2574</sup> 하원(Sejm)<sup>2575</sup>에서 1천만 즈위티(PLN, 한화 약 2천 8백만 원)를 삭감해, 약 3천 5백만 즈위티로 2016년 예산을 책정해 2011년 수준으로 예산이 감소함. 예산안 내용, 액수에 대한 결정은 인권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1조<sup>2576</sup>에 의해 중앙예산에 따라야 하며, 이는 여전히 역시 하원(Sejm)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2016년과 같은 대대적인 삭감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폴란드-표 35> 2014-2016 폴란드인권위원회 예산 현황

	2014	2015	2016
예산액 (단위: 즈위티(PLN))	38,151,300 (한화 약 10억 9천만원)	37,602,000 (한화 약 10억 8천만원)	35,561,900 (한화 약 10억 2천만원)

출처: 폴란드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폴란드예산재정부 감사보고서, 2016년 폴란드의회예산안 종합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2577</sup>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인권위원회의 위원장(commissioner, ombudsman)의 임명은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3조 1항부터 6항<sup>2578</sup>까지

2574)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budget-office-commissioner-human-rights-questions-and-answers> (검색일 2016.8.1)

2575) 폴란드 하원의회 공식홈페이지: <http://opis.sejm.gov.pl/en/index.php>

2576)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21조 예산에 관한 조항  
Article 21.

The expenses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re financed from the central budget.

2577)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자세한 법률조항은 폴란드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근거법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조함. <https://www.rpo.gov.pl/en/content/legal-acts> (검색일: 2016.8.5).

2578)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3조 위원임명에 관한 조항  
Article 3.

1. The Commissioner is appointed by the Sejm with prior approval of the Senate

의 조항에 근거하여 하원의원장(the Marshal of Sejm) 혹은 35명의 의원(a group of 35 deputies)이 상정한 위원 임명 안전에 대해 상원(Senate)이 의결한 뒤, 하원(Sejm)에서 최종 의결하여 결정함. 인권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하원의 의결안(resolution)에 의해 결정되며, 하원의원장은 위원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의결안을 상원의원장에 바로 전달하도록 함. 상원은 하원의원장이 임명의결안을 전달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상원은 의결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만약 1달 이내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함. 상원이 하원의원장의 의결안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하원은 다른 사람으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이 새로운 위원장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이전 임기의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함. 위원장은 헌법 제 209조 2항과 3항<sup>2579)</sup>에 근거하여 임명될 당시에 대학의 교수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노조 혹은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은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조<sup>2580)</sup>에 근거하여 “법률적 지식, 전문적 경험을 갖추고 도덕과 사회적 감

---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shal of the Sejm or a group of 35 deputies.

2. Detailed procedure of reporting candidates for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s specified in a resolution of the Sejm.

3. The Marshal of the Sejm sends the Resolution of the Sejm on appointing the Commissioner immediately to the Marshal of the Senate.

4. The Senate adopts a resolution concerning expressing consent to appoint the Commissioner within one month after the day of transferring the resolution of the Sejm to the Senate referred to in passage 3. Failure to adopt the resolution by the Senate within one month means consent.

5. In the case the Senate refuses expressing consent to appointing the Commissioner, the Sejm appoints to the position of the Commissioner another person. The provisions of passage 1-4 shall apply accordingly.

6. The previous Commissioner fulfils their obligations until taking up the position by the new Commissioner

2579) 폴란드 헌법 제 209조 제2항과 3항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Art.209.

2.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all not occupy other position, with the exception of that of a university professor, nor shall he carry out other professional commitments.

3.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all not be affiliated with any political party, trade union and shall not perform any public activities which could not reconcile with the dignity of his office.

2580)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2조 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수성을 지녀 권위를 가진 폴란드 국민(be a citizen of Poland having legal knowledg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high authority owing to their moral qualities and social sensitivity)”임. 현재 위원장은 아담 보드나(Dr. Adam Bodnar)로 인권위원회의 7번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5년 9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함.<sup>2581)</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위원장과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적 지위는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법령상(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에관한법)에서 특별히 장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하지만, 상원의회에서 사전승인 후 하원에서 임명되는 점<sup>2582)</sup>, 임기가 보장되는 점, 국가에서 일어나는 행위 전반에 걸쳐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런 권한을 무리없이 활용하려면 각 부처의 장관급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장관급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임.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0조 2항과 3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은 최대 3명의 위원(the Commissioner’s deputies)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영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3인의 인권위원회 위원은 동법 제20조 5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에 관한 법률의 관리를 받게 됨. 현재 스티니스와프 트라우치우크(Stanisław Trociuk), 크리슈토프 올코비치(Col. Krzysztof Olkowicz), 실비아 스프레크(Dr. Sylwia Spurek)이 3인의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또한 위원장은 헌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하원의 의결을 받아, 인권위원회는 각 지역 사무소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5조에 1항과 2항<sup>2583)</sup>에

---

Article 2. A Commissioner may be a citizen of Poland having legal knowledg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high authority owing to their moral qualities and social sensitivity.

2581)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list-commissioners> (검색일: 2016.8.5.)

2582) 폴란드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3조 제1항, Act on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rticle 3

1. The Commissioner is appointed by the Sejm with prior approval of the Senate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shal of the Sejm or a group of 35 deputies.

2583)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5조 위원임명절차에 관한 조항 Article 5.

근거하여, 하원 앞에서 임명 선서를 한 이후 5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은 면책특권을 갖는데, 헌법 제 211조에 근거하여 하원의 동의 없이는 처벌적 법률상의 책임(penal liability)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구금(detention)되거나 체포(arrest)되지 않음.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인권위원회에 대한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들의 경우 인권위원회에관한명령 45호의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각 분야별 대변인 역할을 수행함에 동시에, 동법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사무국장과 함께, 인권위원회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인권위원회 운영을 이끌어가게 됨. 또한 동법 제2조 4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 공석 시, 인권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시할 수 있음.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국내 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 (가)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11조부터 제 17조<sup>2584)</sup>까지의 조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폴란드 내 발생한 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정밀 조사, 소송 개입, 사법부에 의견제출, 인권침해의 당 기관, 조직, 기구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12조<sup>2585)</sup>에 따르면 인

---

1. 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lasts five years, counting from the date the oath is made before the Sejm.

2. The same person cannot be a Commissioner for more than two terms of office.

2584) 폴란드 내에서의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다음 조문을 참조. Dz.U. o. 2014, poz.1648, art. 11-17 <https://www.rpo.gov.pl/en/content/act-commissioner-human-rights> (검색일 2016.11.08)

2585)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12조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에 관한 조항

Article 12. Taking the case, the Commissioner may:

1) conduct an investigation on his own,

2) apply to examine the case or its part to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to supervision authorities, the prosecutor's office, state, professional or social control,

3) apply to the Polish Sejm to order the Supreme Audit Office to conduct an inspection to examine a specific case or its part.

권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국가감독기구 및 검찰청과 같은 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원에게 감사원(the Supreme Audit Office)이 사찰(inspec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같은 법 제13조<sup>2586)</sup>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사전통지 없이 바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최고행정기구(the Supreme administration bodies), 중앙국가행정기구(the central state administration bodies), 지방정부기구(the local governments), 정부부처(the governmental bodies), 사회-전문적조직들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s)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법인(legal personality)의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법원, 검찰이 처리하고 있거나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권위원회의 사찰을 수행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정보(information, files)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해당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4조<sup>2587)</sup>에 근거하여 해당 인권침해사건 접수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침

---

2586)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13조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  
Article 13.

1. Conducting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Article 12, item 1 the Commissioner is entitled to:

- 1) examine, even without prior notification, each case on site,
- 2) request a hearing or presentation of files of each case conducted by the supreme and central state administration bodies, government bodies, bodies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social, professional and socio-professional and the bodies of organizational units with legal personality as well as local government bodies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units,
- 3) request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case conducted by courts, as well as the prosecutor's office and other prosecution authorities as well as request court files and public prosecutor's files as well as files from other prosecution authorities for inspection in the Commissioner's Office after the end of the proceedings and a decision,
- 4) order the preparation of experts' studies and opinions.(하략)

2587)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14조 조사이후 진정인이 활용가능한 조치에 관한조항  
Article 14.

Having examined a case, the Commissioner may:

- 1) explain to applicant that no infringement of liberties and rights of a human and a citizen has been found,
- 2) refer to the agency, organization or institution whose activity has been found to have caused an infringement of the liberties and rights of a human and a

해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침해 행위를 유발한 조직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 기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법률소송(proceeding)이 민사소송(civil cases)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소송에 검사의 권리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직권을 가진(ex officio) 검사가 소송준비절차(preparatory proceedings)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lodge complaints)할 수 있으며, 검사의 권리를 가지고 해당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이외에 지정하는 규칙과 과정에 따라(under rules and procedures set forth elsewhere) 최종 판결에 대해서 소송파기(cassation) 혹은 비상상고(extraordinary appeals)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

- (다) 이외에도 동법 제 15조<sup>2588</sup>)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사건이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과 결론을 제시할 수 있고, 징계절차(disciplinary proceedings)나 공식적인 제재(official sanctions)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징계를 받은 기관, 조직 등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러한 조치 선택에 대한 내용에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라) 인권침해사건 혹은 사례에 대한 접수는 서면, 직접방문, 이메일 및

---

citizen; such motion may not, however, infringe upon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하략)

2588) 폴란드인권위원회에 관한법 제15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조항 Article 15.

1. In the motion mentioned in art. 14 point 2, the Commissioner shall present opinions and conclusions as to how the case could be settled, and may also demand that disciplinary proceedings be instituted or official sanctions imposed.  
 2. The agency, organization or institution to which such motion has been addressed must, without unreasonable delay and no later than within 30 days, inform the Commissioner of whatever action or view has been taken. Should the Commissioner disagree with such a view, he can approach the relevant superior entity for necessary actions.

ePUAP(전자우편박스) 시스템 접수를 통해 가능함. 인권침해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사건 접수자의 이름, 주소, 인권침해유형(subject of the case)을 명시해야하며, 지참 서류로 변호인과 관련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no power of attorney is required) 단순 접수자의 개인 정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함.<sup>2589)</sup>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16일 무료핫라인 개설(infoline)을 통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상담업무도 진행하고 있음.<sup>2590)</sup>

(2) 인권 이슈별 중점 사업 추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홍보 활동 등

(가)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4가지 의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예방(prewencyjna), 감시(kontrolna), 진단(diagnostyczna), 창조(kreująca)이며<sup>2591)</sup> 이를 위해 국내인권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이에 필요한 감시와 교육, 연구,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인권 분야별로 접근하여 해당 이슈 영역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인권상황 개선을 추구하도록 함.

(나) 예를 들어, 현재 인권위원회는 평등대우에관한유럽연합규제실행에관한법률(o wdrożeniu niektórych przepisów Unii Europejskiej w zakresie równego traktowania) 및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및 장애인차별철폐국제협약(przeciwdziałanie torturom i okrutnemu traktowaniu w więzieniach i innych miejscach pozbawienia wolności)을 비준하여 평등한대우를 받을 권리, 노인 인권, 장애인 인권, 이민자 인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감시,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이슈별로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권리의 영역의 범위는 대단히 넓은데, 홈페이지에 소

2589)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submitting-application-commissioner-human-rights> (검색일: 2016.8.5.)

2590)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helplinie> (검색일: 2016.8.5.)

2591)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폴란드인권위원회에 대한 폴란드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참조: [https://pl.wikipedia.org/wiki/Rzecznik\\_Praw\\_Obywatelskich](https://pl.wikipedia.org/wiki/Rzecznik_Praw_Obywatelskich) (검색일: 2016.8.5.)

개되어 있는 이슈영역만으로는 공교육 제도에서의 학생의 권리, 아동의 권리, 대학생의 등록금 및 장학금 문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넷 관련 권리, 의료 서비스 관련 권리, 생명공학 윤리, 노동권, 주거권, 여성 인권 등 약 27개 정도의 인권 이슈 영역을 다루고 있음.<sup>2592)</sup>

(다)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에 기여한 이에게 인권상과 인권메달을 수여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sup>2593)</sup> 인권위원회가 주는 상과 메달은 3가지로 먼저 폴란드인권위원회명예메달(Honorary Medal of the Commissioner)이 있음. 이 명예메달은 국내외 기관 및 인물에게 수여하며 2009년 11월 2일부터 수여하기 시작함.

두 번째는 파베우보카비치상(Paweł Włodkowic Award)으로 국제인권의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을 폴란드에서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10일 인권위원회가 판단하여 인권증진을 위해 힘쓴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임. 마지막으로 마체이박사 상(Doctor Maciej Lis Award)이 있음. 이 상은 장애인과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힘썼던 브로츠와프 지역사무소의 대표이기도 했던 마체이 박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약 1만 즈워티(PLN, 한화 약 2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 기타 기관도 상금 수여 대상이 됨. 대학이나 시민사회조직이 후보자를 추천하며 브로츠와프대학교 총장, 브로츠와프시 시장, 폴란드인권위원회 마체이 리스 가족의 대표, 브로츠와프 교회 주교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됨.

(3)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가)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폴란드 국민의 인권수호와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옴부즈맨위원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sup>2594)</sup> 유럽이사회(European Board)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592) 출처: <https://www.rpo.gov.pl/pl/content/sprawy-rzeczniaka> (검색일: 2016.9.19.)

2593) 폴란드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상과 메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awards-and-honorary-medals-granted-commissioner-human-rights> (검색일: 2016.8.5.)

2594) 국제옴부즈맨위원회 공식홈페이지: <https://www.rpo.gov.pl/en/content/international-ombudsman-institute> (검색일: 2016.8.5.)

현재 위원장인 아담 보드나가 국제옴부즈맨위원회의 사무국장 (General Secretary)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옴부즈맨기구에서 활동하고,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sup>2595</sup>에서도 중심으로서 동유럽 국가 내의 인권증진을 위한 포럼, 컨퍼런스 참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sup>2596</sup>)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례를 직접방문, 서면,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받고,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접수를 직접 실시하거나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또 다른 감독기관, 상급기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바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거나, 현재 기관에서 염려를 두고 있는 사건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사건 파일을 요청하는 권한을 수행하여 인권침해사례 접수자의 민원을 도우며, 만약 해당 기관, 조직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권고 조치 실행에 대한 감시까지도 수행하게 됨.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사건 (penal case)에 대해서는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last resort appeal)까지도 인권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바로 직전의 헌법소송에 인권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행사함.<sup>2597</sup>)

(2) 인권이슈별 감시활동, 인권교육연구, 홍보활동 및 협력사업을 통한 인권증진

(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슈별, 인권침해에 관련한 법률의 종류별로 감시활동 및 인권교육연구, 홍보활동을 버리고 있으며, 기타 관련 국내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와 활발한

2595) 동방파트너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eeas.europa.eu/eastern/index\\_en.htm](http://eeas.europa.eu/eastern/index_en.htm) (검색일: 2016.8.5.)

2596)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international-cooperation> (검색일: 2016.8.5.)

2597)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what-we-do> (검색일: 2016.8.5.)

협력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 신장과 인권증진활동에 힘쓰고 있음.

- (나) 인권위원회가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인권이슈분야는 평등한 대우 부분, 노인 인권, 장애인 인권, 이민자 인권, 노숙자 인권, 국제예방매커니즘(NPM) 등이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폴란드 국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폴란드인권위원회의 평등한대우에 관한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Human Rights Defender (Ombudsman in Poland) in the Area of the Equal Treatment and the Observance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in the Republic of Poland”)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에는 인권위원회의 연수, 교육 활동 및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sup>2598)</sup> 국제 예방매커니즘(NPM)과 관련한 감시활동등의 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도 연례보고서(“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Human Rights Defender (Ombudsman in Poland) on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in the Republic of Poland”)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음.<sup>2599)</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7년 10월, 2012년 12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600)</sup>

## 2)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주요 업무 범위

---

2598)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equal-treatment-publications>  
(검색일: 2016.8.5.)

2599) [https://www.rpo.gov.pl/sites/default/files/Report\\_of\\_the\\_Human\\_Rights\\_Defender\\_%28Ombudsman%29\\_on\\_the\\_Activities\\_of\\_the\\_NPM\\_in\\_Poland\\_in\\_2014.pdf](https://www.rpo.gov.pl/sites/default/files/Report_of_the_Human_Rights_Defender_%28Ombudsman%29_on_the_Activities_of_the_NPM_in_Poland_in_2014.pdf) (검색일: 2016.8.5)

2600)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1.)

- (가)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는 헌법 제 2절 80조인“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국가 기관에 의한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호에 있어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specified by the statute,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or assistance in the protection of his freedoms or rights infringed by organs of public authority)”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 및 공공 기관에 의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sup>2601)</sup>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해당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접수, 사건 조사, 법률소송으로의 진행업무, 관련 혹은 상급 기관으로 사건 이관, 소송 참여 및 처벌적 조치 부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감시까지 수행함.
- (나) 이외에도 기관 내에 국제협력팀, 협력담당자와 같은 협력사업 담당자를 두어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들,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며 각 법률 및 분야별 팀이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 감시, 교육, 홍보 활동을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함.
- (2) 헌법 및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에 명시된 폴란드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 (가)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제208조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인권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all guard human and civic freedoms and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legal acts)”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에관한법의 경우, 제3조<sup>2602)</sup>에서는 “인권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어떠한 사례에 있어서든지,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와 권리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해당 기관, 조직의 행위 혹은 비행위의 결과로서 법률 및 사회적 정의 및 공생의 원칙

2601)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18조 1항에 근거하여 “폴란드 국가 내에 있는 폴란드 국민이 아닌 사람(persons of non-Polish citizens under the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Poland)”도 역시 보호 받음.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act-commissioner-human-rights> (검색일: 2016.8.5.)

2602) Dz.U. o. 2014, poz.1648, art. 3

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In any case concerning safeguarding the freedom and human's and citizen's rights, the Commissioner examines whether as a result of acts or omissions of authorities,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obliged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se freedoms and rights, there has not occurred violation of the law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coexistence and social justice)”라고 인권위원회의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과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은 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법률로서 정하지 않고 선언적인 방식으로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이외에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제17a조와 제 17b조<sup>2603)</sup>로, 17a 명시하고 있음. 본 조항에서는 인권위원회가 다른 시민사회 및 조직과의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7b조에서는 평등한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는 1) 모든 이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분석, 감시, 지원 활동, 2) 독립적인 보고서 발행을 통해 차별과 관련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차별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를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인권위원회는 헌법 제210조 “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이며 오직 법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서만 하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all be autonomous and independent from other state bodies and shall be responsible only before the Sejm as stipulated by the Law)”라는 내용에 따라 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활동하지만 인권위원회에 대한 하원의 권한의 비중<sup>2604)</sup>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하원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 의결안을 제출하여 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고, 예산안 역시 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의결권<sup>2605)</sup>을 가지고 있음. 헌법 제212조 및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제19조<sup>2606)</sup>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2603) Dz.U. o. 2014, poz.1648, art. 17a, 17b

2604) 다) 조직구성 및 예산의 독립성-(3) 예산의 내용 참고

2605) 라) 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1) 임명의 내용 참고

연례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하지만 하원의 이러한 개입 이외에 인권위원회는 검찰(the Prosecutor's Office),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 Court),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인권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지며, 다른 공공기관에 사건을 징계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실질적인 법률적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3)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가) 피해자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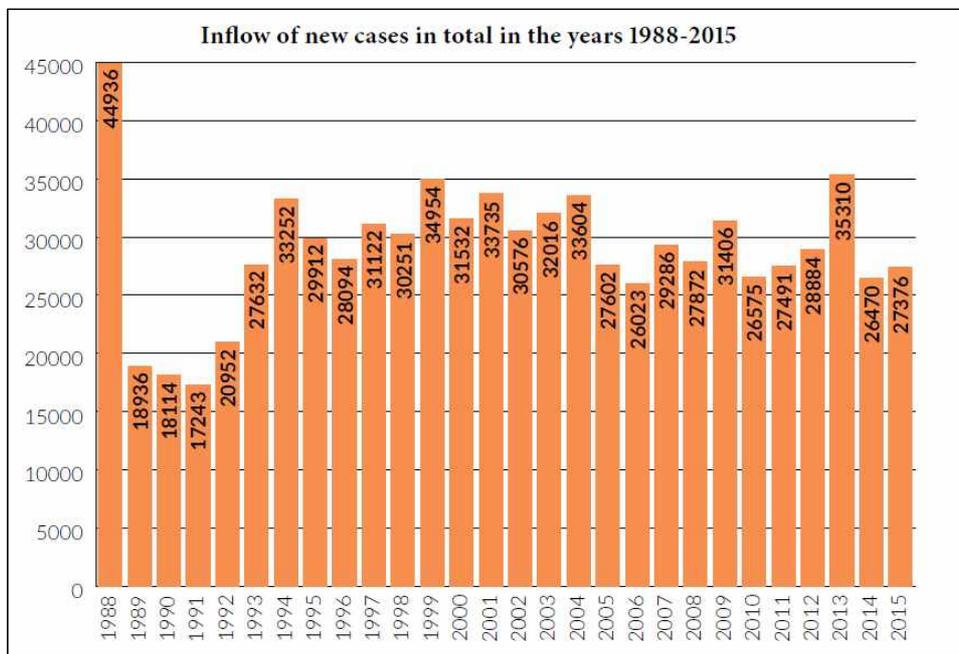
- (1)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례를 직접방문, 서면,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받고,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접수를 직접 실시하거나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또 다른 감독기관, 상급기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바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거나, 현재 기관에서 염려를 두고 있는 사건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사건 파일을 요청하는 권한을 수행하여 인권침해사례 접수자의 민원을 도우며, 만약 해당 기관, 조직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권고 조치 실행에 대한 감시까지도 수행하게 됨.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사건(penal case)에 대해서는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last resort appeal)까지도 인권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바로 직전의 헌법소송에 인권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행사함.<sup>2607)</sup>
- (2) 2015년 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sup>2608)</sup>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57,627건으로 이 중 27,376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며 직접방문자는 5,656명, 핫라인을 통한 상담은 38,074건으로 나타남.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세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

2606) Dz.U. o. 2014, poz.1648, art. 19

2607)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what-we-do> (검색일: 2016.8.5.)

2608)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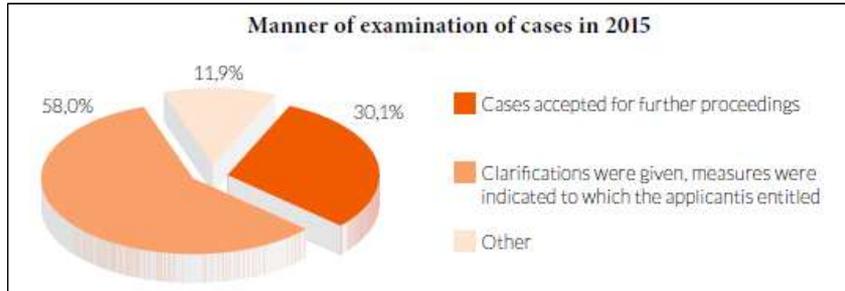
(3) 또한 2015년 중 총 29,923건의 사례가 검토(examine)되었고, 검토 이후 조치된 방식의 종류는 보통 3가지로 추가 소송을 위해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 건수(Cases accepted for further proceedings)가 총 9,006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 접수자를 위한 조치 등의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 건수(Clarifications were given, measures were indicated to which the applicant is entitled)는 총 17,857건(58.0%)이었으며, 정보 불충분으로 더 이상 검토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종료되는 사례나, 더 적합한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 건수는 총 3,560건(11.9%)에 달했음<sup>2609</sup>).



출처: 2015년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폴란드-그림 59] 1988~2015 접수된 인권침해사례 건수

2609)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출처: 2015년 폴란드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폴란드-그림 60] 2015년 검토 사건 중 후속 조치 결과 현황

(4) 실제사례 1 - 타이먼(Tymon)의 사례: 15살인 타이먼씨는 2016년 1월 16일 서포모제주(zachodniopomorskiego)의 등록사무소장(Head of the Registry Office)로부터 자신의 어린 연령을 귀책삼아 자신의 할아버지의 사망신고서 발부 요청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지방행정법원에 제소함. 이에 대해 슈체친(Szczecin)지방법원은 제소자가 완전한 법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송을 기각함.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지방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 내용을 최고행정법원에 대해 제소함. 인권위원회는 지방법원 및 서포모제주(zachodniopomorskiego)의 주지사의 결정이 행정법원소송에관한법 26조 2항(법적능력에 제한이 있는 이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행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26 § 2 prawa o postępowaniu przed sądami administracyjnymi)<sup>2610</sup>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충분히 자신의 조상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능력은 타이먼씨가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적문서를 받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인권위원회는 청소년과 같은 약자가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음.<sup>2611)</sup><sup>2612)</sup>

2610) 해당법의 폴란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021531270> (검색일: 2016.8.7.)

2611) <https://www.rpo.gov.pl/pl/content/sprawa-pana-tymona-kasacja-rpo-w-sprawie-mlodego-obywatela-kt%C3%B3remu-USC-odmowil-informacji-o-przodku> (검색일: 2016.9.19.)

(5) 실제사례2 - 도로이용에 관한 사건: P씨는 자신의 부동산 안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들어올 수 없는 문을 만들었는데, 공공도로에서의 교통저지와 관련한 형법 90조 위반(Art. 90 kodeksu wykroczeń polegającego na utrudnianiu ruchu na drodze wewnętrznej gminnej)으로 1천 즈위티(PLN, 한화 약 28만원)에 대한 벌금 판결을 받음. 인권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조사한 바, 문제가 된 도로가 공공의 도로가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P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함. 공공도로를 포함한 특정 장소에서의 질서와 교통 보호를 위한 형법 90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지방도로와 내부도로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오직 지방도로만이 공적도로에 해당함. 그렇다면 해당 내부도로는 지방도로에 속하느냐를 검토해야 하는데, 해당 내부도로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아직 지방도로로 포함시키지 않은 영역이므로, P씨는 사유지로서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권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함.<sup>2613)</sup>

#### 나) 교육

(1) 반차별교육아카데미(Akademia Edukacji Antydyskryminacyjnej) 개최<sup>2614)</sup>: 인권위원회는 아우슈비츠유대인센터(Centrum Żydowskie w Oświęcimiu)<sup>2615)</sup>, 페니벤대화재단(Fundacja Dialog-Pheniben)<sup>2616)</sup>, 베를린 소재의 기억책임그리고미래재단(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sup>2617)</sup>과 함께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반차별영역에 대한

2612) 해당 사건에 대한 게시물 게재날짜는 2016년 8월 10일이며, 해당 사건의 처리는 사건이 발생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사건 당사자와 정부간의 제소가 진행되었음. <https://www.rpo.gov.pl/sites/default/files/Skarga%20kasacyjna%20dost%C4%99p%20do%20informacji%20TR.pdf/> (검색일: 2016.9.22.)

2613) 해당 게시물의 게시 날짜는 2016년 6월 28일이며, 확실한 사건 발생 일시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 <https://www.rpo.gov.pl/pl/content/sprawa-sporu-o-przejazd-drog%C4%85-kasacja-rpo> (검색일: 2016.8.7.)

2614) <https://www.rpo.gov.pl/pl/content/projekt-akademia-edukacji-antydyskryminacyjnej-pod-patronatem-rzecznika-praw-obywatelskich> (2016.8.7.)

2615) 아우슈비츠유대인센터 공식홈페이지: <http://ajcf.pl/> (검색일: 2016.8.7.)

2616) 페니벤대화재단 공식홈페이지: <http://dialogpheniben.pl/> (검색일: 2016.8.7.)

2617) 기억책임그리고미래재단 공식홈페이지: <http://www.stiftung-evz.de/start.html> (검색일: 2016.8.7.)

연속 워크숍을 2016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 아카데미의 목적은 혐오발언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과 교습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카데미를 통해 교사들은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여러 사례를 통해 모범 사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외부 연사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됨.

- (2) 제10회 다문화사회에서의 아동과 아동기의 문제 - 이론, 연구, 실행 국제 하계대학(10. Międzynarodowa Szkoła Letnia "Współczesne problemy dziecka i dzieciństwa w społeczeństwach wielokulturowych - teoria, badania, praktyka) 개최<sup>2618)</sup>: 2016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강연, 워크숍, 토론, 현장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이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연구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전공자들이 참석하며 문화적으로 다양화되는 현재 사회에 대한 기타 연구자들의 참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sup>2619)</sup>

#### 다) 홍보

- (1) 인권위원회가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인권이슈분야는 평등한 대우 부분, 노인 인권, 장애인 인권, 이민자 인권, 노숙자 인권, 국제예방매커니즘(NPM) 등이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폴란드 국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폴란드인권위원회의 평등한 대우에 관한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Human Rights Defender (Ombudsman in Poland) in the Area of the Equal Treatment and the Observance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in the Republic of Poland")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에는 인권위원회의 연수, 교육 활동 및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sup>2620)</sup> 국제예방매커니즘(NPM)과 관련한 감시활동등의 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도 연례보고서("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2618) <https://www.rpo.gov.pl/pl/content/10-miedzynarodowa-szkola-letnia-wspolczesne-problemy-dziecka-i-dziecinstwa-w-spo%C5%82eczenstwach> (검색일: 2016.8.7.)

2619) 하계대학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aps.edu.pl/> (검색일: 2016.8.7.)

2620) 출처: <https://www.rpo.gov.pl/en/content/equal-treatment-publications> (검색일: 2016.8.5.)

Human Rights Defender (Ombudsman in Poland) on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in the Republic of Poland”)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음.<sup>2621)</sup>

- (2) “폴란드 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에 관한 토론회- 도입 필요성과 그 전망(Ustawa o ochronie sygnalistów w Polsce. O potrzebie i perspektywach jej wprowadzenia)” 개최<sup>2622)</sup>: 2016년 7월 4일 내부고발자 법에 대한 토론회가 스테판바토리재단(Fundacji im. Stefana Batorego)<sup>2623)</sup>과 폴란드노조포럼(Forum Związków Zawodowych)과 함께 개최됨. 폴란드에서 현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직장 내 학대를 폭로하는 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인권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가족노동사회정책부(Ministerstwo Rodziny, Pracy i Polityki Społecznej, 영어명: the Minister of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sup>2624)</sup>에 대한 서신으로 이미 현재 이러한 직장 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상황을 알린 바 있음.
- (3) 국제인권의날 기념을 위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보고서 발표<sup>2625)</sup>: 인권위원회는 “윤리옹호협약” 프로젝트를 “2014-2020 기업과 인권: UN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실행”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하도록 함. 인권위원회는 정부대표자 및 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위표준(Standard of Conduct)를 제정하도록 하며, 인권위원회는 현재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리시스템프로그램과 윤리정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국제인권의날을 기념하기

---

2621) [https://www.rpo.gov.pl/sites/default/files/Report\\_of\\_the\\_Human\\_Rights\\_Defender\\_%28Ombudsman%29\\_on\\_the\\_Activities\\_of\\_the\\_NPM\\_in\\_Poland\\_in\\_2014.pdf](https://www.rpo.gov.pl/sites/default/files/Report_of_the_Human_Rights_Defender_%28Ombudsman%29_on_the_Activities_of_the_NPM_in_Poland_in_2014.pdf)

(검색일: 2016.8..5)

2622) <https://www.rpo.gov.pl/pl/content/debata-%E2%80%9Eustawa-o-ochronie-sygnalistow-w-polsce-o-potrzeb-i-perspektywach-jej-wprowadzenia%E2%80%9D-pod>

(검색일: 2016.8.7.)

2623) 스페관 바토리 재단공식홈페이지: <http://www.batory.org.pl/> (검색일: 2016.8.7.)

2624) 가족노동사회정책부 공식홈페이지: <https://www.mpips.gov.pl/en/> (검색일: 2016.8.7.)

2625) <https://www.rpo.gov.pl/pl/content/obchody-%C5%9Bwiatowego-dnia-praw-cz%C5%82owieka-inauguracja-raportu-%E2%80%9Ebiznes-i-prawa-cz%C5%82owieka%E2%80%9D-pod-patronatem> (검색일: 2016.8.7.)

위하여 2016년 12월 8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 (4)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미디어 대응활동을 2015년 내에 수행함<sup>2626</sup>): 우선 800건의 미디어로부터 정보 및 질문에 대한 응답 요청을 받았으며,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20,344건의 기사를 내보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TVP Info 방송채널에서는 “게임의 룰(PL“Reguły Gry)”이란 제목의 13개의 에피소드를 내보냈으며, 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여러 대표자들이 출연하게 됨. 이와 더불어, 야누스 바이츠(Janusz Weiss)와 함께 폴스키라디오제1채널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함. 웹사이트에서는 895 건의 게시물을 사무국에서 업로드했으며, 48개의 뉴스레터가 5천명(기관 및 개인)에 대해 메일로 발송됨. 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폴스키라디오제1, 3프로그램(Polskie Radio Programme I and III,) TOK FM, RMF FM, RMF Classic와 같은 라디오, 폴셋(Polsat), TVP INFO, TVN 24, TVP 1와 같은 TV채널 및 지에닉 가제타 프라브나(Dziennik Gazeta Prawna), RDC, 슈퍼스타야(Superstacja), 티그오드닉 포브쉴츠니(Tygodnik Powszechny), 텔레비자 레푸블리카(Telewizja Republika), 레제시츠허폴리타(Rzeczpospolita),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와 같은 신문사, ngo.pl.와 같은 온라인미디어와 인터뷰를 가짐. 이외에도 “인권대사(Ambassador of Human Rights)”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 및 법학 기타 분야 학생들과 협력하여, 폴란드어로는 헤트(“hejt”)라고 불리는 증오발언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라운드테이블을 다른 시민사회 및 기타 비영리단체, 정부, 언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함.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어떻게 인터넷 상에서의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막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함.

---

2626)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라) 정책개선<sup>2627)</sup>

- (1) 인권위원회는 폴란드보건부(Ministerstwo Zdrowia, 영어명: the Ministry of Health)<sup>2628)</sup>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바이오은행(biobanks)를 관리하는 기본적 조항에 관련한 입법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이에 대해 보건부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바이오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자료들 이용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보건부 안에 있는 과학자문위원회(the Scientific Council)과 의논 중에 있으며, 과학고등교육부(Ministerstwo Nauki i Szkolnictwa Wyższego, 영어명: the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sup>2629)</sup> 장관과 논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적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함.
- (2)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에게 가족노동사회정책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별의 이유로 사산된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주는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개정안 내용에서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함.
- (3) 인권위원회는 내무행정부(strona główna MSWiA Ministerstwo Spraw Wewnętrznych i Administracji, 영어명: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Administration)<sup>2630)</sup> 장관에게 퇴직 전 혜택을 받는 개인의 여권발급에 대한 비용 삭감에 대한 권리 연장을 요구, 이에 대해 내무행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부처가 여권시스템에 있어서 추가적인 잠재적 개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앞으로의 추가 입법 상황에서 고려하겠다고 알림.
- (4) 인권위원회는 국가추모위원회(Instytut Pamięci Narodowej 영어명: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sup>2631)</sup>의 위원장에게 정화선언(lustration declarations) 등록과정에 대한 법률적 차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

2627)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2628) 폴란드보건부공식홈페이지: <http://www.mz.gov.pl/en/> (검색일: 2016.8.7.)

2629) 폴란드과학고등교육부공식홈페이지: <http://www.nauka.gov.pl/en/> (검색일: 2016.8.7.)

2630) 폴란드 내무행정부 공식홈페이지: <https://mswia.gov.pl/en> (검색일: 2016.8.7.)

2631) 폴란드 국가추모위원회 공식홈페이지: <https://ipn.gov.pl/en> (검색일: 2016.8.7.)

개정안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마) 사법부 의견 제출<sup>2632)</sup>

- (1)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 6월 25일 발효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법(Dz U. 2015. poz.106 4)<sup>2633)</sup>에 의해 더 그 권한이 강화됨. 이 법은 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사건이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위원회는 헌법소원에서는 21건의 소송에 참여함. 이 중 12건은 실제 헌법적 불만사항(constitutional complaints)에 대한 것이고, 5건은 다른 법원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한 소송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다른 기관에서 제기한 소송이었음.
- (2) 인권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를 대법원 및 최고행정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의 원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일반법원에서의 판례법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는 2015년 동안 대법원의 판결 내린 (adjudicated)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4건 제기했으며, 최고행정법원의 판결 내린 법률에 대한 문제는 1건에 있었음. 기타 법원에서 제기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60건의 폐기항소(cassation appeals, 발송 및 일반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2건의 폐기항소를 발송함. 행정사건의 경우 인권위원회는 주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s)에 12건의 폐기항소를 진행했으며 최고행정법원에서는 6건의 폐기항소를 진행함.

바) 주요 인권이슈<sup>2634)</sup>

장애를 가진 국민의 투표권 확보 및 선거정보의 운용: 인권위원회는 국가

2632)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2633) 이 법의 폴란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150001064> (검색일: 2016.8.7.)

2634)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선거위원회(Panstwowa Komisja Wyborcza, 영어명: the State Electoral Commission)<sup>2635</sup>)에 2014년 유럽의회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활동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에 대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선거위원회 사무국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를 가능한 한 시정하겠다고 답함. 장애를 가진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소 마련에 관련하여서 역시 인권위원회는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투표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여 선거위원회가 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했으며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결정을 같이 수반해 줄 것을 제안함.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대통령에게 장애를 가진 국민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관련 헌법조항에 대한 개정도 함께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대통령 측에 응답은 없는 상황임.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sup>2636</sup>)

- (1) 2015년 국제옴부즈맨위원회(IOI)와 함께 유럽이사회 회의가 바르샤바에서 개최됨. 이 회의에서는 현재 옴부즈맨위원회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한 것으로 유럽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슬로바키아 옴부즈맨(Verejný Ochranca Práv, 영어명: Slovak Ombudsman)<sup>2637</sup>)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탈리아의 중앙옴부즈맨 기구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을 결정함.
- (2) 30개 유럽 옴부즈맨과 함께 제10회 유럽옴부즈맨네트워크 세미나를 폴란드에서 “차별에 대항하는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 against discrimination)”라는 제목으로 2015년 4월 26일부터 27까지 바르샤바에서

2635) 공식홈페이지: <http://pkw.gov.pl/> (검색일: 2016.8.7.)

2636)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9.20.)

2637) 공식홈페이지: <http://www.vop.gov.sk/langEnglish> (검색일: 2016.8.7.).

개최함<sup>2638</sup>).



출처: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폴란드-그림 61] 유럽 옴부즈맨네트워크세미나 개최모습

- (3) 비스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소속 국가<sup>2639</sup>의 옴부즈맨들과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음. 2015년 9월 4일에는 위원장 아담 보드나가 비스가르드 국가 및 서발칸반도 국가의 장애인인권보호 분야 전문가회의에 폴란드 외무부((Ministerstwo Spraw Zagranicznych, 영어명: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sup>2640</sup>)와 함께 참석하였음. 이 이벤트는 서발칸반도 국가의 인권보호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보호시스템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였음.<sup>2641</sup>)
- (4) 2015년 12월에는 인권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사무국(the Office of Volksanwaltschaft, Austria Ombudsman)<sup>2642</sup>의 방문을 재정적으로 지원

2638) 개최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seminar-european-network-ombudsmen> (검색일: 2016.9.20.)

2639) 관련 국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visegrad-group> (검색일: 2016.8.5.)

2640) 폴란드외무부 공식홈페이지: <http://www.msz.gov.pl/en/> (검색일: 2016.9.20.)

2641)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rpo.gov.pl/en/content/visegrad-group-western-balkans-cooperation> (검색일: 2016.8.7.)

하고, 이들과 국제옴부즈맨위원회, 비영리단체 및 과학분야 단체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통합재단(Erstestiftung, Austria Integration Foundation)<sup>2643)</sup>의 발표가 하이라이트 일정으로, 오스트리아통합재단은 이민 문제 위기와 관련하여 난민과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함.

#### 4) 폴란드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sup>2644)</sup>

가) 폴란드국가아동인권위원회(Rzecznik Praw Dziecka, RPD)<sup>2645)</sup>

- (1) 설립: 폴란드국가아동인권위원회(이하 아동인권위원회)는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옴부즈맨의 형태로 구성되었고, 최초의 아동옴부즈맨은 2000년에 임명되었으며, 1997년 헌법 제 72조 1항부터 4항(Konstytucji Art.72)까지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sup>2646)</sup> 이외에도 국가아동인권위원회는 아동인권위원회에관한법(Ustawa o Rzeczniku Praw Dziecka w języku angielskim, Dz. U. 6 stycznia 2000 r.)<sup>2647)</sup>를 구체적인 운영과 설립 근거법으로 가지고 설립됨. 아동인권위원회는 폴란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며,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 권리, 의무를 존중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2) 조직구성: 아동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장(옴부즈맨)을 기관장으로 하여, 사무국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위원회 실무를 수행함. 인권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근거법과 규칙(Statut Biura Rzecznika Praw Dziecka<sup>2648)</sup>,

2642)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사무국 공식홈페이지: <http://volksanwaltschaft.gv.at/en/about-us> (검색일: 2016.8.7.)

2643) 오스트리아통합재단 공식홈페이지: <http://www.erstestiftung.org/> (검색일:2016.8.7.)

2644) 폴란드인권위원회(2015). 2015 폴란드국가인권위원회연례보고서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Activity of the Ombudsman in Poland 2015. <https://www.rpo.gov.pl/en/content/summary-report-activity-ombudsman-poland-2015> (검색일: 2016.8.5.)

2645) 폴란드 국가아동인권위원회공식홈페이지: <http://brpd.gov.pl/> (검색일: 2016.8.5.)

2646) 출처: <http://brpd.gov.pl/konstytucja-rp> (검색일: 2016.8.7.).

2647)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materialy-do-pobrania/ustawa> (검색일: 2016.8.7.)

2648) 폴란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sites/default/files/statut\\_biura\\_rzecznika\\_praw\\_dziecka.pdf](http://brpd.gov.pl/sites/default/files/statut_biura_rzecznika_praw_dziecka.pdf) (검색일: 2016.8.7.)

Regulamin Biura Rzecznika Praw Dziecka<sup>2649</sup>)이 함께 마련되어 있음. 현재 위원장은 마렉 미하락(Marek Michalak)이며, 2013년 8월 27일부터 임기를 수행하였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와 아동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제4조<sup>2650</sup>)에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하원의원장, 상원의원장, 35명의 하원의원 또는 15명의 상원의원이 추천한 이에 대해 상원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하원이 의결하여 임명함. 역시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임기는 아동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제 6조<sup>2651</sup>)에 근거하여 5년이며 1회 한해서 연임이 가능함.

조직구성은 1명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의회(The Cabinet of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s Rights), 행정팀(Zespół Administracyjny), 교육양육팀(Zespół Edukacji i Wychowania), 청년및가족팀(Zespół Spraw Rodziny i Nieletnich), 사회행정법팀(Zespół Spraw Społecznych i Prawa Administracyjnego), 국제법헌법팀(Zespół Spraw Międzynarodowych i Konstytucyjnych.), 아동헬프라인방문접수팀(Zespół Dziecięcego Telefonu Zaufania i Przyjęć Interesantów)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 해고할 수 있음.<sup>2652</sup>

- (3) 주요업무: 아동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생명건강권, 가족양육권리, 건강한 사회조건을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특히 수호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아동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제3조<sup>2653</sup>)에 따라 아동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잘못된 대우, 착취, 폭력, 도덕적 부패와 같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진행함. 또한, 각 아동침해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으로 기존의 조치들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아동보호와 관련한 기구들과 함께, 기존의 과정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아동인권침해방지 및 지원 과정이 이루어져있는지에 대해 개입하도록 함. 아동인권위원회는 모든 공

2649) 폴란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sites/default/files/regulamin\\_organizacyjny\\_brpd.pdf](http://brpd.gov.pl/sites/default/files/regulamin_organizacyjny_brpd.pdf) (검색일: 2016.8.7.)

2650) Dz. U. 6 stycznia 2000 r.Art. 4.

2651) Dz. U. 6 stycznia 2000 r.Art. 6.

2652) 출처: <http://brpd.gov.pl/biuro> (검색일: 2016.8.7.)

2653) Dz. U. 6 stycznia 2000 r.Art. 3.

공, 국가기관에 대하여 해당 침해사건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필요 정보, 기록,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와 복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의견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관련 입법안이나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 현재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여러 기관이 있지만, 이렇게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위해 특화된 기관은 폴란드아동인권위원회만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감시, 지원 등의 활동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음.<sup>2654)</sup>

구체적으로는, 개별 아동인권침해사태에 대한 개입<sup>2655)2656)</sup>, 진행 소송에 대한 법률적 개입<sup>2657)</sup>, 법률/입법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sup>2658)</sup>, 현재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감시결과에 대한 성명 발표<sup>2659)</sup>, 여러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 컨퍼런스 개최 활동<sup>2660)</sup>, 아동인권보호 명예배지(Odznaka Honorowa za Zasługi dla Ochrony Praw Dziecka) 수여<sup>2661)</sup>, 캠페인 진행<sup>2662)</sup>, 연구 보고서 출판<sup>2663)</sup>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상하원에 아동인권위원회는 자신의 1년 활동 내용과 폴란드 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됨.

2654) 출처: <http://brpd.gov.pl/czym-zajmuje-sie-rzecznik-praw-dziecka> (검색일: 2016.8.7.)

2655)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interwencje-indywidualne-0> (검색일: 2016.8.7.)

2656) 2015년동안 폴란드국가아동인권위원회는 49,674건의 인권침해사태를 접수하였으며, 대부분(24,851건)이 가족양육권리에 관한 것이었음.  
출처: <http://www.sejm.gov.pl/Druki8ka.nsf/0/51490221AACFD703C1257F8C0044C7F3/%24File/388.pdf> (검색일: 2016.8.7.)

2657)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postepowania-przed-trybunalem-konstytucyjnym> (검색일: 2016.8.7.)

2658)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pytania-prawne-0> (검색일: 2016.8.7.)

2659)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wystapienia> (검색일: 2016.8.7.)

2660)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patronaty> (검색일: 2016.8.7.)

2661)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odznaka-honorowa-rzecznika> (검색일: 2016.8.7.)

2662)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kampanie-spoleczne> (검색일: 2016.8.7.)

2663) 출판물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brpd.gov.pl/ksiazki-informatory-poradniki> (검색일: 2016.8.7.)

## 10. 스페인

스페인 국가 정보 <sup>2664)</sup>	
면적	504,030km <sup>2</sup>
인구	46,464,053명 (2015년) <sup>2665)</sup>
수도	마드리드
정치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가톨릭(74% 이상)
GDP	GDP : 1조 4,101억불 (2014 EIU)
	1인당 GDP : 33,636불 (2014 EIU)

### 1)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1) 정식명칭: 스페인 옴부즈맨

(El Defensor del Pueblo de España; The Spanish Ombudsman)

(2) 설립연도: 1981년 4월 6일에 설립되었고, 1981년 5월 7일에 국가옴부즈맨 사무소기본법이 국가관보에 게재됨. 1982년 12월 28일 첫 옴부즈맨 위원장의 임기 시작<sup>2666)</sup>.

(3) 설립배경<sup>2667)</sup>: 옴부즈맨의 어원은 스웨덴의 대리인이란 뜻에서 유래함. 스페인의 옴부즈맨은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에 의한 36년간의 독재통치 이후, 그의 사후 1981년까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음. 그 후 1981년에 민주화가 되자, 그간 표출되지 못한 민주주의의 열망이 표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어 헌법에 기재되어 옴부즈맨이 설립되었음.

옴부즈맨이 다른 국가인권기구와 비교하여 독특한 점은 인권보호 기능 외에 행정의 부당, 적정성을 감시하는 혼합 기구라는 점이고, 이러한 특징은

2664)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80.jsp?menu=m\\_40\\_50\\_20](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80.jsp?menu=m_40_50_20) (검색일 2016.8.23.)

2665)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E%98%EC%9D%B8> (검색일 2016.8.23.)

2666) <https://www.defensordelpueblo.es/el-defensor/historia-del-defensor/> (검색일 2016.9.27.)

2667)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CulturalRights/ConsultationEnjoyBenefits/UNESCODefensordelpueblo.pdf> (검색일 2016.8.23.)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의 인권 옴부즈맨을 설립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

나)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근거법 및 상위법<sup>2668)</sup>

(가) 스페인 헌법 제 54조 (Artículo 54 de la Constitución española)<sup>2669)</sup>

옴부즈맨 제도의 기본법(ley orgánica)으로, 옴부즈맨이 스페인 의회 (Cortes Generales)의 최고 대표 (alto comisionado)으로 임명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옴부즈맨 위원장은 행정 활동을 감독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포함.

(나)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3/1981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1981년 4월 의회로부터 통과되며 이를 통해 옴부즈맨사무소가 형성됨. 이 법은 동 해 5월 7일, 국가관보(Official State Gazette)에 게재됨<sup>2670)</sup>.

(다) 국가옴부즈맨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한 법규 (Reglamento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l Defensor del Pueblo) (1983)

1983년 4월 옴부즈맨의 제안으로 양원에 의해 승인된 법규로, 그 후 여러 번에 걸쳐 (1992년, 2000년, 2012년) 개정됨.

(라) 자치옴부즈맨조정법 (Ley de coordinación con los Defensores autonómicos (1985); 총칭 Ley 36/1985, de 6 de noviembre, por la que se regulan las relaciones entre la Institución del Defensor del

---

2668) <https://www.defensordelpueblo.es/el-defensor/que-es-el-defensor/> (검색일 2016.8.23.)

2669) 스페인 헌법 제 54조 (공식 영문본)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cons\\_engl.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cons_engl.pdf) (2016.8.26.)  
Section 54

An organic act shall regulate the institution of the Defender of the People (Defensor del Pueblo) as high commissioner of the Cortes Generales, appointed by them to defend the rights contained in this Part; for this purpose he or she may supervise the activity of the Administration and report thereon to the Cortes Generales. (Senate Standing Orders, section 183)

2670)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ho-we-are/history/> (검색일 2016.8.29.)

Pueblo y las figuras similares en las distintas Comunidades Autónomas ‘1985년 11월 6일의 옴부즈맨사무소와 각 자치 구역의 유사 기관과의 관계 규제법’)

‘기본법 36/1985’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옴부즈맨사무소와 자치 지역 내의 유사한 시스템들간의 관계에 대한 법.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자치성을 지니는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각 자치지역의 국가인권기구 및 옴부즈맨사무소와도 협업.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sup>2671)</sup>

옴부즈맨사무소는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들을 갖추고 있고, 옴부즈맨 위원장이 그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뽑게 됨. 2016년, 국가옴부즈맨 제도 내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172명에 이르렀음.

- ① 조정 및 내부체제 위원회 (The Coordination and Internal Regime Board): 옴부즈맨위원장, 제 1 부위원장, 제 2 부위원장, 사무국장<sup>2672)2673)</sup>.
- ② 제 1 부위원장의 세부 부서: 국방 및 내무부 (Defensa e Interior), 정의와 가정폭력과 (Justicia y Violencia Doméstica), 경제행정과 (Administración Económica), 이민과 외무과 (Inmigración y Asuntos Exteriores)
- ③ 제 2 부위원장의 세부 부서: 교육과 문화부 (Educación y Cultura), 토지관리부 (Ordenación Territorial), 건강 및 사회정책부 (Sanidad y Política Social), 직무와 공공고용과 (Función y Empleo Públicos)<sup>2674)</sup>
- ④ 사무국장의 세부 부서: 정보와 등록과 (Régimen de Interior y

2671)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ho-we-are/structure/> (검색일 2016.8.24.)

2672) <https://www.defensordelpueblo.es/el-defensor/quien-es-el-defensor/> (검색일 2016.8.23.)

2673)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RegOrgDIngles.pdf> (검색일 2016.8.31.)

2674)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CulturalRights/ConsultationEnjoyBenefits/UNESCODefensordelpueblo.pdf> (검색일 2016.8.26.)

Registro), 경제제도분야 (Régimen Económico), 연구 및 서류사무실 (Gabinete de Estudios y Documentación), 정보처리과 (Informática)

(2) 지역사무소

기본법 36/1985 ‘옴부즈맨사무소와 각 자치 구역의 유사 기관과의 관계 규제법’ (Ley 36/1985, de 6 de noviembre, por la que se regulan las relaciones entre la Institu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y las figuras similares en las distintas Comunidades Autónomas)<sup>2675</sup>)에 따라 각 자치 지역(Comunidades autónomas)은 지역별로 자율적인 형태의 옴부즈맨사무소를 두고 있음. 총 13개 지역사무소가 있으며<sup>2676</sup>, 명칭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옴부즈맨사무소의 형태 및 매커니즘을 따르고 있음<sup>2677</sup>.

다음은 지역사무소들의 정식 명칭 (괄호가 지역명):

- ① Ararteko (País Vasco)
- ② Defensor del ciudadano (Segovia)
- ③ Defensor del Pueblo (Andalucía)
- ④ Defensor del Pueblo (Murcia)
- ⑤ Defensor del Pueblo-Ararteko (Navarra)
- ⑥ Personero del Común (Extremadura)
- ⑦ Diputado del Común (Canarias)
- ⑧ Justicia de Aragón (Aragón)
- ⑨ Procurador del Común (Castilla y León)
- ⑩ Procurador General (Principado de Asturias)
- ⑪ Síndic de Greuges (Cataluña)
- ⑫ Síndic de Greuges (Comunidad Valenciana)
- ⑬ Valedor do Pobo (Galic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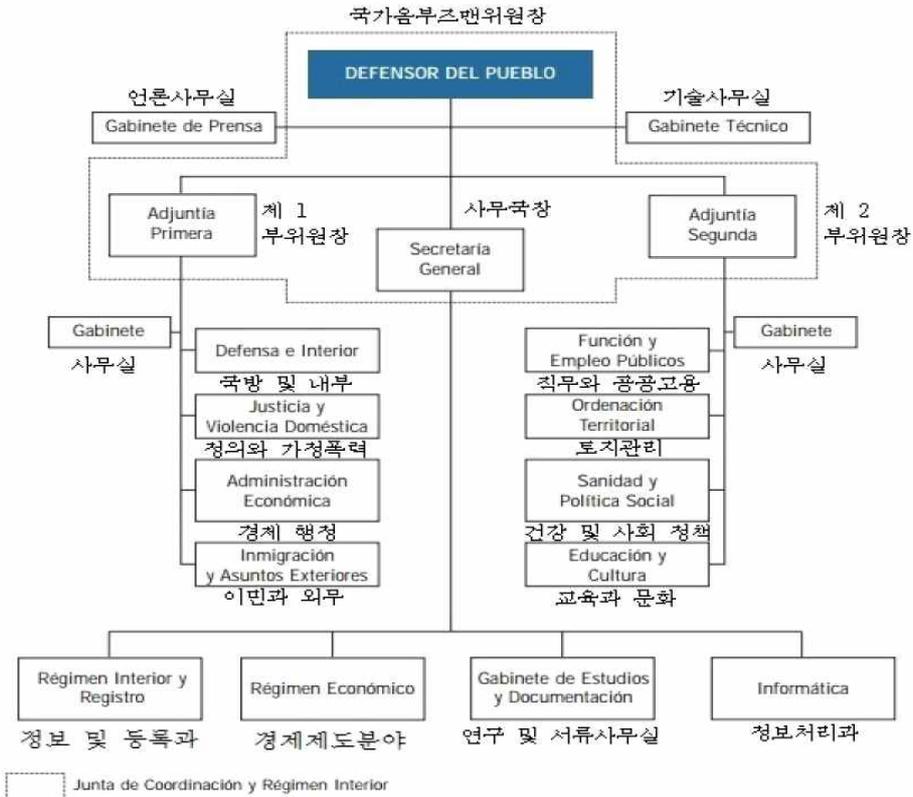
---

2675) <https://www.boe.es/buscar/pdf/1985/BOE-A-1985-23210-consolidado.pdf>  
(검색일 2016.8.31.)

2676) [https://es.wikipedia.org/wiki/Defensor\\_del\\_Pueblo](https://es.wikipedia.org/wiki/Defensor_del_Pueblo) (검색일 2016.8.31.)

2677)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CulturalRights/ConsultationEnjoyBenefits/UNESCODefensordelpueblo.pdf> (검색일 2016.8.23.)

GRÁFICO 1. ORGANIGRAMA



[스페인-그림 62]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2678)2679)</sup>

2678)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5/11/LeyOrganicaDP.pdf> (검색일 2016.8.23.)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Artículo 6

1. El Defensor del Pueblo no estará sujeto a alguno. No recibirá instrucciones de ninguna autoridad. Desempeñará sus funciones con autonomía y según su criterio.

제 6조 1항

국가옴부즈맨 위원장은 의무적 지침(mandato imperativo)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당국에게서도 지침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옴부즈맨은 그의 재량 안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2679)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8.26.)

- (가) 전반적으로 국가옴부즈맨 위원장은 의무적 지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어떤 당국에게서도 지침이나 영향을 받지 않음. 옴부즈맨은 그의 재량 안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함.
- (나)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은 독립성을 지님. 의회의 예산에 있어서 양원이 여러 서비스 섹션 (하원, 상원, 중앙선거이사회 (Junta Electoral Central), 국가옴부즈맨사무소)에 따라 예산법안을 대통령실(Ministerio de la Presidencia)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따로 분류되어 예산이 책정됨<sup>2680</sup>).
- (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은 14,180,900 € (한화로 약 17,501,433,050원) 로, 이는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11.19% 감소된 금액<sup>2681</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 (가) 옴부즈맨 위원장 후보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스페인 국적 2) 성인 3)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sup>2682</sup>).

---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Art. 37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shall constitute an item of the Parliamentary Budget.

제 37조

국가옴부즈맨의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재원은 의회 예산의 일부로 책정된다.

2680)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Transparencia/InfEco/PresupuestoCCGG2016> (검색일 2016.8.26.)

2681) <https://www.defensordelpueblo.es/transparencia/informacion-economica-presupuestaria-y-contractual/presupuestos/> (검색일 2016.9.27.)

2682)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5/11/LeyOrganicaDP.pdf> (검색일 2016.8.23.)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Artículo 3

Podrá ser elegido Defensor del Pueblo cualquier español mayor de edad que se encuentre en el pleno disfrute de sus derechos civiles y políticos.

제 3조

옴부즈맨 위원장으로 임명되려면 성인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스페인인이어야 한다.

옴부즈맨 위원장 후보 추천은 선거를 위한 하원 전체 회의일 기준으로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하원의 3/5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그 후 최대 20일 안에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승인됨. 임명된 옴부즈맨 위원장은 양원 합동위원회(la Comisión Mixta Congreso-Senado)에 합류, 추천된 후보들 중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됨<sup>2683</sup>).

옴부즈맨 위원장의 임명은 양원의 의장들 (Los Presidentes del Congreso y del Senado)을 통해 승인됨. 이는 국가관보를 통해 게재됨. 옴부즈맨 위원장은 양원 절차위원회(Procedures Committees)의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취임하고, 최선을 다해 의무 이행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됨<sup>2684</sup>).

---

2683)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5/11/LeyOrganicaDP.pdf> (검색일 2016.8.23.)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2조 4, 6항

Artículo 2

4. Propuesto el candidato o candidatos, se convocará en término no inferior a diez días al Pleno del Congreso para que proceda a su elección. Será designado quien obtuviese una votación favorable de las tres quintas partes de los miembros del Congreso y posteriormente, en un plazo máximo de veinte días, fuese ratificado por esta misma mayoría del Senado.

옴부즈맨 위원장 후보 추천은 선거를 위한 하원 전체 회의일 기준으로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옴부즈맨으로 임명되려면 하원의 3/5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그 후 최대 20일 안에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

6. Designado el Defensor del Pueblo se reunirá de nuevo la Comisión Mixta Congreso-Senado para otorgar su conformidad previa al nombramiento de los adjuntos que le sean propuestos por aquel.

임명된 옴부즈맨 위원장은 양원 합동위원회(la Comisión Mixta Congreso-Senado)에 합류해 추천된 후보들 중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게 된다.

2684)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8.29.)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4조

Artículo 4

1. Los Presidentes del Congreso y del Senado acreditarán conjuntamente con sus firmas el nombramiento del Defensor del Pueblo, que se publicará en e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1. 옴부즈맨 위원장의 임명은 양원의 의장들 (Los Presidentes del Congreso y del Senado)을 통해 승인된다. 이는 국가관보를 통해 게재된다.

2. El Defensor del Pueblo tomará posesión de su cargo ante las Mesas de ambas

- (나) 제 1 부위원장(Adjunto Primero)과 제 2 부위원장(Adjunto Segundo)은 옴부즈맨을 보조하는 역할. 옴부즈맨 위원장에게는 부위원장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 과정은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부위원장들의 임명 역시 국가관보에 출판됨. 옴부즈맨 위원장과 관련된 법 조항들은 부위원장들에게도 해당됨<sup>2685</sup>).
- (다) 사무국장의 경우 옴부즈맨 위원장이 직접 임명함<sup>2686</sup>).
- (라) 2016년 현재 옴부즈맨 위원장은 Soledad Becerril Bustamante(2012년 7월부터 임기 시작), 제 1 부위원장은 Francisco Fernández Marugán, 제 2 부위원장은 Concepció Ferrer i Casals, 그리고 사무국장은 José Manuel Sánchez Saudinós(2012년 9월부터 임기 시작)임<sup>2687</sup>).

---

Cámaras reunidas conjuntamente, prestando juramento o promesa del fiel desempeño de su función.

옴부즈맨 위원장은 양원 절차위원회 (Procedures Committees)의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취임하고, 최선을 다해 의무 이행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된다.

2685)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8.29.)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8조

Artículo 8

1. El Defensor del Pueblo estará auxiliado por un Adjunto Primero y un Adjunto Segundo, en los que podrá delegar sus funciones y que le sustituirán por su orden,

en el ejercicio de las mismas, en los supuestos de imposibilidad temporal y en los de cese.

제 1 부위원장(Adjunto Primero)과 제 2 부위원장(Adjunto Segundo)은 옴부즈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맨 위원장은 그의 업무 내용을 위임하거나, 혹은 그의 임시적 부재 혹은 해임 상황에서 옴부즈맨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위원장들이 순차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2. El Defensor del Pueblo nombrará y separará a sus Adjuntos previa conformidad de las Cámaras en la forma que determinen sus Reglamentos.

옴부즈맨 위원장은 부위원장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El nombramiento de los Adjuntos será publicado en e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부위원장들의 임명은 국가관보에 출판된다.

4. A los Adjuntos les será de aplicación lo dispuesto para el Defensor del Pueblo en los artículos 3, 6 y 7 de la presente ley.

옴부즈맨 위원장과 관련된 이 법의 제 3조, 6조, 7조는 부위원장들에게도 해당된다.

2686)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ho-we-are/structure/> (검색일 2016.8.24.)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옴부즈맨은 의회의 최고 대표 (high commissioner of Spanish Parliament) 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헌법 제 1부에 명시되어있는 국민들의 권리들의 보호를 위해 임명됨<sup>2688</sup>). 옴부즈맨 위원장은 행정부의 활동들을 감독하고, 의회에 보고. 그는 헌법과 스페인 옴부즈맨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

두 부위원장들은 옴부즈맨 위원장으로부터 그의 업무 내용을 일부 위임받게 됨. 부위원장들은 옴부즈맨 위원장의 임시적 부재 혹은 해임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순차적으로 대리하게 됨.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해당 자료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2689</sup>)

국가옴부즈맨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옴부즈맨 위원장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5년<sup>2690</sup>)의 임기를 가짐<sup>2691</sup>). 부위원장들의 경우 새로운 옴부즈맨

---

2687) <https://www.defensordelpueblo.es/el-defensor/quien-es-el-defensor/>  
(검색일 2016.8.24.)

2688)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8.25.)

국가옴부즈맨기본법

Artículo 1

El Defensor del Pueblo es el alto comisionado de las Cortes Generales designado por estas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comprendidos en el Título I de la Constitución, a cuyo efecto podrá supervisar la actividad de la Administración, dando cuenta a las Cortes Generales. Ejercerá las funciones que le encomiendan la Constitución y la presente ley.

제 1조

옴부즈맨은 의회의 최고 대표의 지위를 지니고, 헌법 제 1부에 명시되어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임명된다. 옴부즈맨 위원장은 행정부의 활동들을 감독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그는 헌법과 이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2689) 위원장의 재임 여부나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동일한 것으로 보임.

2690) 2016년까지 총 6명의 위원장이 있었는데, 모두 5년만 근무한 것을 보면, 재임이 단임으로 추정됨. 또한, 옴부즈맨기본법 제 36조를 참고하면 부위원장의 임기도 최대 5년 단임인 것을 추론 가능함.

2691)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5/11/LeyOrganicaDP.pdf>  
(검색일 2016.8.23.)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2조 1항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그들의 임기를 마치게 됨<sup>2692)</sup>. 사무국장의 경우 임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음.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가) 면책

옴부즈맨 위원장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짐. 그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표한 의견이나 실행한 행동들에 대해 체포되거나,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벌금을 물거나, 기소되거나, 판결받지 않음. 그 외 모든 경우, 옴부즈맨 위원장이 의무를 계속 이행할 때, 옴부즈맨 위원장은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음. 단, 현행범(flagrante delicto)인 경우, 그의 체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형사과에서 특별한 관할권을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 이러한 규범들은 옴부즈맨 부위원장들에게도 해당됨<sup>2693)</sup>.

---

Artículo 2

1. El Defensor del Pueblo será elegido por las Cortes Generales para un período de cinco años, y se dirigirá a las mismas a través de los Presidentes del Congreso y del Senado, respectivamente.

제 2조

1. 옴부즈맨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5년의 임기를 가진다. 옴부즈맨은 양원의 각 의장들에게 보고한다.

2692)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9.5.)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36조 본문

Art. 36.

Los adjuntos y asesores cesarán automáticamente en el momento de la toma de posesión de un nuevo Defensor del Pueblo designado por las Cortes.

제 36조

부위원장들 (...) 은 의회를 통해 새로 임명되는 옴부즈맨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그들의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2693)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6조 2, 3, 4항

Artículo 6

2. El Defensor del Pueblo gozará de inviolabilidad. No podrá ser detenido, expedientado, multado, perseguido o juzgado en razón a las opiniones que formule o a los actos que realice en el ejercicio de las competencias propias de su cargo.

3. En los demás casos, y mientras permanezca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el Defensor del Pueblo no podrá ser detenido ni retenido sino en caso de flagrante

(나) 겸업 금지의 원칙

옴부즈맨 위원장의 직무는 그 어떤 다른 업무와 공존 불가<sup>2694</sup>). 이러한 공존 불가한 업무들에는 정치적 자리나 정치적 선전과 연관이 있는 활동, 공공 행정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동, 정치 정당이나 노조,

---

delito, correspondiendo la decisión sobre su inculpación, prisión, procesamiento y juicio exclusivamente a la Sala de lo Penal del Tribunal Supremo.

4. Las anteriores reglas serán aplicables a los Adjuntos del Defensor del Pueblo en el 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제 6조

2. 옴부즈맨 위원장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그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포한 의견이나 실행한 행동들에 대해 체포되거나,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벌금을 물거나, 기소되거나, 판결받지 않는다.

3. 그 외 모든 경우, 옴부즈맨 위원장이 의무를 계속 이행할 때, 옴부즈맨 위원장은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는다. 예외인 경우는 현행범인 경우, 그의 체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형사과에서 특별한 관할권을 지니는 경우이다.

4. 앞서 언급한 규범들은 옴부즈맨 부위원장들에게도 해당된다.

2694)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5/11/LeyOrganicaDP.pdf> (검색일 2016.8.23.)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제 7조

Artículo 7

1. La condición de Defensor del Pueblo es incompatible con todo mandato representativo; con todo cargo político o actividad de propaganda política; con la permanencia en el servicio activo de cualquier Administración pública; con la afiliación a un partido político o el desempeño de funciones directivas en un partido político o en un sindicato, asociación o fundación, y con el empleo al servicio de los mismos; con el ejercicio de las carreras judicial y fiscal, y con cualquier actividad profesional, liberal, mercantil o laboral.

옴부즈맨 위원장의 직무는 그 어떤 다른 업무와 공존 불가하다. 이러한 업무들에는 정치적 자리나 정치적 선전과 연관이 있는 활동, 공공 행정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동, 정치 정당이나 노조, 협회, 재단 등의 소속 및 관리 직무, 판사나 검사로서의 법 집행, 자유 직업이나 비즈니스, 경제활동 등이 해당된다.

2. El Defensor del Pueblo deberá cesar, dentro de los diez días siguientes a su nombramiento y antes de tomar posesión, en toda situación de incompatibilidad que pudiere afectarle, entendiéndose en caso contrario que no acepta el nombramiento.

옴부즈맨 위원장 임명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옴부즈맨 위원장은 이전의 업무들을 모두 종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옴부즈맨 위원장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Si la incompatibilidad fuere sobrevenida una vez posesionado del cargo, se entenderá que renuncia al mismo en la fecha en que aquella se hubiere producido. 만약 이 문제가 위원장 임명 후에 발생하는 경우, 옴부즈맨 위원장은 문제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임해야 한다.

협회, 재단 등의 소속 및 관리 직무, 판사나 검사로서의 법 집행, 자유 직이나 비즈니스, 경제활동 등이 해당됨. 옴부즈맨 위원장 임명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옴부즈맨 위원장은 이전의 업무들을 모두 종료해야 하고, 그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 위원장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만약 이 문제가 위원장 임명 후에 발생하는 경우, 옴부즈맨 위원장은 문제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임해야 함.

(다) 해임 및 경질

옴부즈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를 중단<sup>2695</sup>):

2695)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5/11/LeyOrganicaDP.pdf>  
(검색일 2016.8.23.)

국가옴부즈맨 기본법  
Artículo 5

1. El Defensor del Pueblo cesará por alguna de las siguientes causas:

- 1) Por renuncia.
- 2) Por expiración del plazo de su nombramiento.
- 3) Por muerte o por incapacidad sobrevinida.
- 4) Por actuar con notoria negligencia en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y deberes del cargo.
- 5) Por haber sido condenado, mediante sentencia firme, por delito doloso.

2. La vacante en el cargo se declarará por el Presidente del Congreso en los casos de muerte, renuncia y expiración del plazo del mandato. En los demás casos se decidirá por mayoría de las tres quintas partes de los componentes de cada Cámara, mediante debate y previa audiencia del interesado.

3. Vacante el cargo se iniciará el procedimiento para el nombramiento de nuevo Defensor del Pueblo en plazo no superior a un mes.

4. En los casos de muerte, cese o incapacidad temporal o definitiva del Defensor del Pueblo, y en tanto no procedan las Cortes Generales a una nueva designación, desempeñarán sus funciones, interinamente, en su propio orden, los Adjuntos al Defensor del Pueblo.

제 5조

옴부즈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를 중단한다:

- 1) 사직
  - 2) 재임기간 종료
  - 3) 사망이나 예상치 못한 업무 불능상태
  - 4) 옴부즈맨사무소의 의무 이행에 대한 명백한 태만
  - 5) 최종 판결이 내려져 항소가 불가능한 흉악 범죄 사실
2. 사망, 사직이나 재임기간 종료로 인한 옴부즈맨 위원장의 공석은 하원 의장을 통해 공표된다. 그 외의 경우는 토론과 (...) 상, 하원 각각 3/5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해당 개인의 직무 중단 여부를 결정된다.
3. 옴부즈맨 위원장의 자리가 비게 되면 한 달 안에 새로운 옴부즈맨 위원장을 뽑는

- ① 사직
- ② 재임기간 종료
- ③ 사망이나 예상치 못한 업무 불능상태
- ④ 옴부즈맨사무소의 의무 이행에 대한 명백한 태만
- ⑤ 최종 판결이 내려져 항소가 불가능한 흉악 범죄 사실

사망, 사직이나 재임기간 종료로 인한 옴부즈맨 위원장의 공석은 하원 의장을 통해 공표됨. 그 외의 경우는 토론을 거쳐 상, 하원 각각 3/5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해당 개인의 직무 중단 여부를 결정.

옴부즈맨 위원장의 자리가 비게 되면 한 달 안에 새로운 옴부즈맨 위원장을 뽑는 절차가 이루어짐. 옴부즈맨 위원장의 사망, 해임, 영구적인 업무 불능 상태의 경우, 그리고 의회가 그에 따른 임명 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옴부즈맨 부위원장이 선임 순으로 위원장의 업무를 이행함.

#### 마) 주요권한 및 활동

##### 1) 주요권한 및 기능

###### (1) 진정/조사 권한<sup>2696)</sup>

옴부즈맨위원장은 직권에 따라 (de officio), 혹은 진정인을 통해 제기된 모든 진정을 검토하고 응답.

옴부즈맨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진정들에 따라 케이스 파일이 열림. 진정인은 진정을 제출하고 나서, 케이스파일 고유번호를 제공받게 됨. 진정을 신청하고 곧, 진정인은 진정 내용이 옴부즈맨사무소의 관할권 아래 있는지, 옴부즈맨사무소가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안내받게 됨.

옴부즈맨사무소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조사 과정에 대해, 그리고 정부 당국 측의 답변에 대해 계속적으로 알림. 진정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정부기관이 얼마나 빠르게 소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어떤 조사

---

절차가 이루어진다.

4. 옴부즈맨 위원장의 사망, 해임, 영구적인 업무 불능 상태의 경우, 그리고 의회가 그에 따른 임명 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옴부즈맨 부위원장이 선임 순으로 위원장의 업무를 이행한다.

2696)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about-the-complaint/what-is-the-procedure/> (검색일 2016.8.31.)

는 빠르게 처리되나, 어떤 조사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옴부즈맨 사무소는 진정인에게 조사에 따른 결론을 알림.

진정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답변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음<sup>2697)</sup>:

- (가) 권고 Recomendación: 기존 규칙이나 법률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령 형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전반적인 적용 가능.
  - (나) 제안 Sugerencia: 해당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특정 행동에 대한 수정 요청.
  - (다) 법적의무 상기 Recordatorio de deberes legales: 법적 요구사항을 잊지 않고 완수해야 함을 알리는 것
  - (라) 경고 Advertencia: 개선되어야 하는 실제적 상황 및 수행의 존재에 대해 소통하는 것
- (2) 연간보고서 작성 및 보고

옴부즈맨위원장은 매년 의회의 정기세션 회의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심각성이나 긴급성이 따르는 특수한 경우에는 경우, 옴부즈맨위원장은 양원의 상임위원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함. 연간보고서와 몇몇 특별보고서는 게재됨<sup>2698)</sup>.

2697) <https://www.defensordelpueblo.es/resoluciones/> (검색일 2016.8.31.)

2698)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9.5.)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32.

1. The Ombudsman shall inform Parliament annually of the action that he has taken in an annual report submitted to it when meeting in ordinary session.

2. When the seriousness or urgency of the situation makes it advisable to do so, he may submit a special report that he shall present to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Houses of Parliament, if these latter are not in session.

3. The annual reports and, when applicable, the special reports, shall be published.

제 32조

1. 옴부즈맨위원장은 정기세션 회의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2. 만약 특정 상황에 심각성이나 긴급성이 따르는 경우, 옴부즈맨위원장은 양원의 상원위원회에 (...) 특별보고서를 제출한다.

옴부즈맨은 연간보고서에 매년 접수된 진정 접수 및 처리 내역(접수, 처리 여부, 등록 거절 사유, 조사 결과, 권고 및 제안, 행정부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 옴부즈맨위원장은 양원 총회에서 보고서에 대해 구두로 요약해 발표해야 하고, 연간보고서의 내용은 의회에 공개, 토론되어야 함<sup>2699</sup>).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진정 (quejas)

그 어떤 국민, 스페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이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 누구나 옴부즈맨사무소에 호소할 수 있음. 옴부즈맨사무소에 제출하는 진정은 무상으로 처리됨. 스페인 밖에 거주하고, 불구이거나, 형무소나 구금센터에 갇히더라도 옴부즈맨사무소에 진정을 신청하는 데에는 장애가

---

3. 연간보고서와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특별보고서는 출판된다.

2699)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5/06/LOIngles.pdf> (검색일 2016.9.5.)

국가옴부즈맨사무소 기본법

Art. 33.

1. The Ombudsman shall give an account in his annual report of the number and type of complaints filed, of those rejected and the reasons for their rejection, and of those investigated,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specifying the suggestions or recommendations accepted by the Public Administrations.

2. No personal data that enables public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investigation proceedings shall appear in the report,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4.1.

3. The report shall include and appendix, directed to Parliament, detailing the settlement of the budget of the institution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4. An oral summary of the report shall be presented by the Ombudsman to the Plenums of both Houses. It shall be open to debate by the parliamentary groups in order that they may state their positions.

제 33조

1. 옴부즈맨은 매 년 연간보고서에 접수된 진정 접수 및 처리 내역(접수, 처리 여부, 등록 거절 사유, 조사 결과, 권고 및 제안, 행정부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2. 조사 과정에서의 관계자나 기관이 드러나는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후략)

(3항 번역 생략)

4. 옴부즈맨위원장은 양원 총회에서 보고서에 대해 구두로 요약해 발표해야 한다. 이는 의회에 공개되어 토론되어야 한다. (후략)

되지 않음. 협회나 법인 역시 진정 신청 가능.<sup>2700)</sup>

(2) 연구

옴부즈맨사무소는 의회에 보고하는 연간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과 특수성에 따라 특수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들이 작성됨<sup>2701)</sup>.

(가) 아동 및 청소년의 분야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1991년 구금 시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의 보고서들을 공개하고 있음<sup>2702)</sup>.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하고 있고, 유니세프(UNICEF)나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국제노동기구(ILO) 등과도 협업.

(나)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메커니즘(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ortura)의 경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관련 연구보고서들이 공개되어 옴부즈맨사무소 웹사이트에 업로드됨<sup>2703)</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2000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7년 10월, 2012년 11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704)</sup>

**2) 스페인 국가인권기구의 주요업무 및 활동 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2700) <https://www.defensordelpueblo.es/el-defensor/como-te-podemos-ayudar/> (검색일 2016.8.24.)

2701)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publications/other-publications/> (검색일 2016.9.5.)

2702)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rights-of-the-child/publications-and-documentation/> (검색일 2016.9.5.)

2703) [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s/resultados-busqueda-informes/?tipo\\_documento=informe\\_monografico](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s/resultados-busqueda-informes/?tipo_documento=informe_monografico) (검색일 2016.9.5.)

2704)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12)

(1) 진정 접수 및 권고

2015년, 옴부즈맨사무소는 17,822건의 서면 진정을 받았고, 123건의 법적심리 (recurso de inconstitucionalidad) 및 비호 (amparo) 신청을 받음. 직권 조사 (Las actuaciones de oficio) 522건. 다 합쳐서 18,467건이 진행됨. 옴부즈맨사무소는 행정부에 1503건의 권고 형성. 국민들의 진정사항 대다수가 다루는 이슈들은 사법행정(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공안(a seguridad pública), 경제활동, 보건, 그리고 고용.

진정의 결과물로, 옴부즈맨사무소는 다양한 행정기관에 권고했고, 총 706건의 권고(Recomendaciones)와 613건의 제안(Sugerencias) 제공.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됨:

- (가) 권고 311건이 수용되고, 95건이 불수용 되었으며, 300건은 해당 행정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대기하는 상태.
- (나) 제안 324건이 수용되고, 112건이 불수용 되었으며, 177건이 해당 행정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대기하는 상태.<sup>2705)</sup>

(2) 연간보고서 작성

연간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sup>2706)</sup><sup>2707)</sup>:

- (가) 옴부즈맨위원장의 소개글 (Presentación)
- (나) 통계자료 (Estadísticas y Balance de Gestión): 접수되어 처리된 진정에 대한 분석과 예산 사용
- (다) 행정분야별 감독 내용 (Supervisió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인권의 전반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옴부즈맨사무소의 방문 사실이나 교육, 인권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다룸.

(3) 단분야 연구 (Monographic Studies)<sup>2708)</sup>

- (가) 전자통신: 국민들의 요청과 필요 (Telecommunications: Requests and

---

2705)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 (검색일 2016.8.24.)

2706)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 (검색일 2016.9.5.)

2707)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 (검색일 2016.9.5.)

2708)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 (검색일 2016.8.28.)

needs of citizens)

이 연구는 가격, 고객센터, 광고 및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행동 및 투명성을 감독하는 공공행정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음.

- (나) 심리 과정과 아동 최선의 이익: 가족 절차 및 보호에 대한 사법 검토 (The Process of Hearing an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Judicial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protection measures)

이 연구는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 권리 (right to be heard)”에 대한 것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listen to the child)”보다 더 엄격한 권리에 대한 것.

- (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에 대한 부상 보고 (Injury Reports on People Deprived of Their Liberty)

이 연구는 사법당국에 고문방지에 중요한 평가를 위해 제출되는 의료 기록에 대한 기준점을 획일화 하는 데에 목표를 둠.

- (라) 비상 병원 서비스: 환자의 권리와 보장 (Emergency Hospital Services: Rights and guarantees of patients)

이 연구는 자치커뮤니티의 옴부즈맨 기관들과 협업하여 진행됨. 환자들의 권익 이행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각 옴부즈맨사무소들의 기술 전문가들과 응급실 의사들, 12개의 환자 연합, 그리고 자치커뮤니티의 의료서비스 담당자들 등이 여러 업무 회의를 통해 결과를 유추해 냄.

- (마) 2016 스페인 내의 난민신청자/망명자 조사 (Study on asylum in Spain (2016))<sup>2709)</sup>

이 보고서는 난민시스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스페인 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26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난민 유입 및 사회통합은 유럽연합뿐 아니라 스페인에게도 반드시 고려

---

2709)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the-ombudsman-hands-in-three-reports-to-parliament/> (검색일 2016.8.25)

되어야 하는 요소임.

나)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201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맨 위원장이 조사 차원에서 정보를 요청할 때, 정부는 기본법 3/1981 제 19조에 따라 그에 응답할 의무를 지님<sup>2710</sup>). 하지만, 이러한 응답은 항상 즉각적이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의 요청이 있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단, 응답을 못하는 경우 매우 적음.

만약 후자의 상황이 발생하면, 동법 18.2조에 따라 옴부즈맨 위원장은 협조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옴부즈맨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기관으로 공포하고 의회에 연간보고서나 특별보고서를 통해 비협조적인 기관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옴부즈맨은 몇몇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난과 인력난을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 기관들의 의무는 헌법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요청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어려움.

이처럼 옴부즈맨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큼의 강제력을 지니고 있음. 이는 옴부즈맨이 스페인 내에서 갖고 있는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그런 측면서 볼 때, 옴부즈맨일 연례보고서나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공포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서는 매우 큰 부담임을 알 수 있음.

3) 스페인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가) 피해자 구제

(1) 진정 (Quejas; Complaints)에 대한 권고

- (가) 옴부즈맨 위원장은 1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스페인의 지자체 당국들에 취약 가정의 아동들이 제대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 특히 학기 중이 아닌 때에도 - 지원하라고 강력히 촉구함. 옴부즈맨 사

2710)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 (검색일 2016.8.24.)

무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치 지역들과 도시들에 비슷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10만 명 이상 사는 지역들에 특히 강조를 줌.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서는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가까이 살피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아동들의 식사를 위해 (옴부즈맨 위원장은) 각 당국별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했는데, 이에는 학교 구내식당 특별 개방, 여름캠프, 수표나 선불카드 사용 등을 통한 음식 구매 등이 있음. 또한, 사회적 혜택 배분에 있어, 미성년이나 장애인 연관 케이스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요청<sup>2711</sup>).

(나) 옴부즈맨 위원장은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에 총선거가 다가옴(2016년 6월 26일)에 따라 해외로부터 오는 우편을 통한 투표 과정을 더 수월하게 하라고 권고함. 선거가 발표되는 매 순간마다 투표 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용지 수·발신이 해외 우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해외 유권자의 투표율은 30%에서 5%로 하락한 것이 그 배경.

옴부즈맨사무소는 다양한 장관급 부서 - 내무부와 외무부 - 간의 협업관계 강화 요청을 통해 영사관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알 수 있도록 함.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스페인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해 왔던 이러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음에 따라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선거 절차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해 왔음<sup>2712</sup>).

(2) 직권 조사 (actuación de oficio; own-initiative inquiries, ex officio investigation) 및 관련 조치

(가) Seseña 지역 내 타이어 창고에서 난 화재 피해

지난 (2016년) 5월 13일, Toledo 주(provincia) 내의 도시 Seseña 타이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후, 환경위원회 (las Consejerías de Medio

2711) <https://www.defensordelpueblo.es/noticias/el-defensor-del-pueblo-pide-a-los-municipios-que-garanticen-la-alimentacion-de-los-menores-en-vacaciones/> (검색일 2016.9.1.)

2712) <https://www.defensordelpueblo.es/noticias/elecciones-26-j-el-defensor-del-pueblo-solicita-facilitar-el-voto-por-correo-desde-el-exterior/> (검색일 2016.9.1.)

Ambiente de Castilla-La Mancha)와 마드리드 지역 (Comunidad de Madrid)와의 협업을 통해 조사 시작.

- ① 공공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 ② 대기 오염 정도와 공기 청정도
- ③ 불에 타지 않은 타이어들 처리 방식

(나) 젠더 폭력의 위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사<sup>2713)</sup>

움부즈맨 위원장은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와 더불어 젠더 폭력의 위협을 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수단과 행정기관간의 협업을 개선할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음.

움부즈맨 위원장으로부터 경찰국장 (Dirección General de la Policía)에게 보내진 서면에는 ① 전국적으로 이행될 젠더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 단위 프로코콜 (protocolo municipal)에 대한 자세한 경과 정보와 ② 가정폭력, 젠더폭력, 성폭력 전문 특별 팀을 위한 절차 설명서 업데이트 및 개정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음.

나) 교육

(1) 움부즈맨사무소는 교육시스템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믿음. 교육시스템은 빠른 적용과 교사 트레이닝, 적절한 시설, 교습법과 학습자료 재개발, 그리고 새로운 트레이닝과 학습과정 이행 등을 용이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함<sup>2714)</sup>.

(가) 재학기간이 아닌 동안에도 아동들에게 음식 공급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 모든 자치구와 Ceuta, Melilla에 제안되었고 대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짐.

(나) 교과서 재활용 및 무료화. 모든 자치구와 교육부에 제안되어 대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짐.

(다) 학사와 석사 학위에 대한 유럽 학위보조자료(suplemento europeo a los títulos de Grado y Máster)에 대한 권고. 받아들여짐. 학위보조자료에 대한 칙령 22/2015 (Real Decreto 22/2015)의 발표가 이루어짐에

2713) <https://www.defensordelpueblo.es/noticias/proteccion-integral-contr-la-violencia-de-genero-domestica/> (검색일 2016.9.2.)

2714) <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2015/educacion.html> (검색일 2016.8.24.)

따라 기존의 관련 법령에 명확성이 생기기에는 했으나, 동시에 스페인 대학들이 학위보조자료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

(라) 6월과 9월에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입학에 장려하기 위해 대학입학과정 관련 규정 수정. 권고는 받아들여짐,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 있음.

(2) 옴부즈맨 위원장이 교육행정기관들에 통합교육을 강력히 권고<sup>2715)</sup>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법 (Ley orgánica para la mejora de la calidad educativa, LOMCE) 8/2013의 발전과 실행을 통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통합교육모델을 통한 교육시스템의 적응을 이루는 것.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 모델은 각 아동의 필요를 살피고 돌봄으로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시키고 아동들의 전면적인 참여와 학습 향상이 가능하도록 함. 옴부즈맨 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에 기반하여 교육 당국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교육이란 그 동안 제외되고 소외감을 느껴 왔던 집단들을 포함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집단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단체들은: 장애가 있는 아동, 소녀, 외진 산골 마을의 아동, 극빈곤층 등. 이러한 집단들은 정부 정책이나 교육의 접근성에 있어 자주 제외되어 왔음<sup>2716)</sup>.

(3) 인권그림대회 (Concurso Escolar de Dibujo sobre Derechos Humanos)<sup>2717)</sup>

스페인 전역의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콘테스트로, 옴부즈맨사무소가 NGO들과 함께 진행.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각각 3개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옴부즈맨 위원장과 예술계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하게 됨.

---

2715)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 (검색일 2016.8.24.)

2716) <http://www.unescobkk.org/education/inclusive-education/what-is-inclusive-education/> (검색일 2016.8.26.)

2717) <https://www.defensordelpueblo.es/edicion-premio/ii-edicion-concurso-escolar/> (검색일 2016.9.5)

다) 홍보

(1) 디지털 잡지 ‘옴부즈맨 업데이트 (El Defensor al Día; 영문 Ombudsman Update)’

옴부즈맨 사무소의 주요 활동 내용을 포함. 3000여명의 사람들, 단체, 공공기관들이 이 내용을 구독하고 있음 (자치 위원 Autonomous Commissioners, 중앙정부 및 행정기관, 국가기관, 자치지역의회, 정부 내 대표 및 부대표, 옴부즈맨 관련 합동위원회 the Joint Commission for Relations with the Ombudsman, 이베로아메리카 옴부즈맨연방 Ibero-American Federation of Ombudsman, 협회와 NGO들, 미디어와 개인으로서의 시민들 중 관심이 있는 자 등).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옴부즈맨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에 대한 개관을 옴부즈맨 웹사이트(www.defensordelpueblo.es)에도 업데이트.

(2) 커뮤니케이션<sup>2718)</sup>

옴부즈맨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는 국민들이 옴부즈맨 사무소가 그들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옴부즈맨 사무소의 권고사항과 기타 업무가 어떻게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적을 위해 옴부즈맨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미디어와 유동성있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옴부즈맨사무소는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17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고, 사무소의 활동을 홍보. 트위터의 간결한 성격상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진정신청을 받는 창구로는 사용되기가 어려움.

(3) 새로운 포털 사이트 (portal web)<sup>2719)</sup>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국민들과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하고 진정 접수 과정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며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 행정기구들과 국민들의 관계와 연관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재조정. 또한 더 접근성 있는 상담 서

2718)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 (검색일 2016.8.28.)

2719) [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wp-content/uploads/2016/02/Resumen_Informe_Anuual_2015.pdf) (검색일 2016.8.28.)

비스, 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과 다른 관련 활동, 연간활동보고서, 출판된 사례 연구 보고서 등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기관의 역할을 더 잘 알고, 어떻게 옴부즈맨사무소의 도움을 최대한 받을수 있는지 알 수 있음.

새로운 웹사이트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전부터 공개되어 있던 서류들을 공개하는데, 연간활동보고서, 연구보고서, 언론보도내용, 예산사용내역, 채용 및 협약 등이 여기에 해당됨. 새로 업데이트된 웹사이트에는 2014-2015년의 최근 권고내용들의 전문(textos completos)이 업로드되고, 권고내용들은 해당 행정기관에 진정이 제출된지 15일 후에 업로드됨.

#### 라) 정책 개선

- (1) 2016년 7월, 옴부즈맨 위원장은 세 개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sup>2720</sup>). 하나는 2016년 상반기 활동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 스페인 내 난민에 대한 연구 보고서 (보고서명 Estudio sobre el Asilo en España: La protección internacional y los recursos del sistema de acogida)<sup>2721</sup>), 그리고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매커니즘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ortura)의 2015년 연간보고서.

세 보고서 모두 행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포함.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매커니즘의 보고서 내 284건의 권고 중 236건이 행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짐.

- (2)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정해진 기간에 영사등기소 (Registro Civil Consular)를 통해 서약 혹은 서원/계약 수속이 실행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체류를 통하여(por residencia)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대체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조치를 채택하도록 사법국무장관에게 권고. 받아들여짐<sup>2722</sup>).
- (3)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국적 획득을 위한 필요한 지원 규정 권고. 받아들여짐<sup>2723</sup>). 국가장애협의회(Consejo Nacional de la Discapacidad)와의 협업을

2720)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the-ombudsman-hands-in-three-reports-to-parliament/> (검색일 2016.9.1.)

2721) 자세한 내용은 '단분야 연구'소제목 아래 ⑤번 및 각주 42번 참고.

2722) <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2015/justicia.html> (검색일 2016.9.1.)

2723) <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2015/justicia.html> (검색일 2016.9.1.)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장애 및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특수 요구를 만족함으로써 그들이 체류를 통한 스페인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지니고 있을 불이익이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sup>2724</sup>).

마) 사법부 의견 제출<sup>2725</sup>)

바) 주요 인권 이슈

(1) 난민

(가)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 연합 단위에서의 난민 수용이 중요한 인권 이슈화. Soledad Becerril 옴부즈맨 위원장은 말타에서 진행된 지중해옴부즈맨협회(La Asociación de los ombudsmans mediterráneos)의 회의를 통해 난민들의 인도적 수용, 지원, 재배치 및 사회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며, 난민들의 난민신청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송환은 난민의 권리 및 인권적인 차원에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힘<sup>2726</sup>). 추가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그들의 국경을 막거나 난민의 물건을 압류하는 일을 중단하고 난민을 위한 안내시설과 수용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나) 올해(2016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가 Manuel Broseta 공존상 (Premio Convivencia Manuel Broseta)을 수상<sup>2727</sup>). Soledad Becerril 옴부즈맨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2015년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온 난민들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가 스페인 정부 및 국가난민위

2724) <https://www.defensordelpueblo.es/resoluciones/adecuacion-del-contenido-de-las-entrevistas-en-los-procedimientos-de-adquisicion-de-nacionalidad-espanola-por-residencia-a-las-necesidades-especificas-de-las-personas-con-discapacidad-psiquica-ela-2/> (검색일 2016.9.1.)

2725) 웹사이트 및 연간보고서에서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음.

2726)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the-collective-return-of-refugees-should-be-rejected-by-defenders-of-human-rights/> (검색일 2016.9.2.)

2727)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unhcr-wins-the-manuel-broseta-co-existence-award/> (검색일 2016.9.2.)

원회(Comisión Nacional de Asilo y Refugio)와 협업하며 난민들의 국제적 보호에 힘쓴 공로를 인정하며, 변호사, 공무원, 시민단체로부터의 자원봉사자 등의 트레이닝을 돕고 난민들에 대한 국제규범에 대해 감독하는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 (2) 젠더

### (가) 젠더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2016년 1월-3월까지 적어도 13명의 여성이 그들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함. 2015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2.5%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러한 젠더 폭력의 수치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됨.

2015년, 옴부즈맨 위원장은 정부 각 기관에 젠더 폭력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 평가와 프로그램 이행을 추진했음<sup>2728</sup>).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국가전략 2013-2016 (National Strategy for Eradicating Violence against Women 2013-2016)의 전국적인 이행상황 감독
- ② 국가 경찰서들에 가족케어서비스 마련. 가정폭력의 여성 피해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 ③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반대하는 보호 프로토콜(Basic protocol for Intervention against child ill-treatment in the family environment) 제안. 아버지에 의해 자녀가 살해당하는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알고, 미리 예방하고자 함.

### (나) 동성애 혐오 폭력 및 LGBTI 권리<sup>2729</sup>)

마드리드 지역(Comunidad de Madrid) 내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및 공격이 잦아짐. 옴부즈맨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폭력이 증오범죄로 확장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초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2728)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comprehensive-protection-against-gender-violence/> (검색일 2016.9.2.)

2729)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inquiry-by-the-defensor-del-pueblo-owing-to-homophobic-attacks-in-madrid/> (검색일 2016.9.2.)

하는 폭력은 총 52건이었음.

(2) 로마족/집시 (Pueblo gitano)

(가) 국제 로마족의 날(4월 8일)을 맞아 옴부즈맨 위원장은 로마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평등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함. Soledad Becerril 옴부즈맨 위원장은 로마인들도 온전한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인들이 아직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 당국에 의해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 로마인들도 스페인의 모든 사람들처럼 온전한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sup>2730</sup>).

① 2015년 스페인어왕립언어원 (Real Academia Española; Spanish Royal Academy of Language)은 옴부즈맨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집시(gitano)”와 “집시 특유의(gitanada)”같은 단어들의 정의로 포함되어 있는 “사기꾼(trapeceero)”이나 “착복하는, 부정 거래(trapacería)” 등의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함.

② 또한, 옴부즈맨사무소는 가족아동서비스(Head Office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의 조사를 통해 로마인 아동의 의무 중등교육 활성화를 돕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중. 로마인 학생들의 고등학교 중퇴에 대한 연구도 진행.

(나) 마드리드 마요르 광장에서 네덜란드 축구팀의 팬들이 구걸을 하고 있던 로마인 여성들에게 “(로마인들이) 민족적 배경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생겨나게 한다며 (네덜란드에서였다면) 고소를 당할 것”이라며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음. 이 사건에 대해 옴부즈맨 위원장은 “당혹스럽고 참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그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공격되어서는 안 되고, 스페인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동체에 대한 모멸적인 대우”라고 공표하며 증오가 담긴 이러한 표현들을 철저히 막고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임.

(3) 특정 질병 환자

(가) 만성소아장애증 (coeliac disease)<sup>2731</sup>

---

2730)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the-defensor-is-pledged-to-achieving-the-full-integration-and-real-and-effective-equality-of-the-roma-community/> (검색일 2016.9.2.)

옴부즈맨사무소는 국가 만성소아장애증 의식의 날 (Día Nacional Del Celiaco; National Coeliac Disease Awareness Day - 5월 27일)에 이 특정 장애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권고하겠다고 밝힘. 사무소는 정부 기관들에 소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지원이나 세 금환불 등을 통해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은 식료품의 가격을 낮추고자 일하는 중에 있음.

(나) 희귀병 (rare disease)<sup>2732)</sup>

세계희귀병의 날에 옴부즈맨 위원장은 희귀병에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의학 연구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2014년, 보건부는 “국가의료제도를 통한 희귀병을 위한 전략 (Strategy for Rare Diseases in the National Health system)”의 설립을 통해 희귀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연구에 집중하고자 하고, 2015년에는 국가의료시스템 안에서 희귀병 치료를 할 때에 각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옴부즈맨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또한, 옴부즈맨사무소는 희귀병 치료를 위한 특수한 약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일과 희귀병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지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1) 유엔과의 협력

스페인인 유엔의 국제인권협약 및 선택의정서 대다수를 비준<sup>2733)</sup>. 이와 더

2731)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the-defensor-del-pueblo-is-preparing-a-study-with-recommendations-for-enhancing-the-quality-of-people-with-coeliac-disease/> (검색일 2016.9.2.)

2732)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news/the-defensor-del-pueblo-reiterates-its-commitment-to-the-rights-of-people-affected-by-rare-diseases/> (검색일 2016.9.2.)

2733) 유일하게 가입도 비준도 되어 있지 않은 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163&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163&Lang=EN)

불어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차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참여한 것은 2010년<sup>2734)</sup>.

스페인이 비준한 국제협약들(비준 연도, \*표시는 가입(accession))<sup>2735)</sup>은 다음과 같음:

- (가)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7)
- (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OP (2006)
-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77)
- (라) 사형제도 철폐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CPR-OP2-DP (1991)
- (마) 강제실종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ED (2009)
- (바)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4)
- (사)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68\*)
- (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77)
- (자)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
- (차)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

(검색일 2016.8.23.)

2734)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ESSession8.aspx>

(검색일 2016.8.23.)

2735)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163&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163&Lang=EN) (검색일 2016.8.23.)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OP-AC (2002)

(카) 아동의 매매 ·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OP-SC (2001)

(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PRD (2007)

(2) 국제적인 프로젝트<sup>2736)</sup>

2014년 3월, 유럽연합 쌍둥이 프로젝트 (the Twinning Project of the European Union)가 터키의 새로운 옴부즈맨 위원장과 함께 시작됨. 기관 간의 “Twinning”이란 본디 유럽연합의 가입국을 늘리기 위해 확장되기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국가의 가입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데에 목적이 있었음. 또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내에서는 민중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역사회 기준을 규제하는데에도 목표를 둠.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옴부즈맨 위원장 (프로젝트 리더)과 프랑스의 권리 옴부즈맨 (Défenseur des droits; 영문 the Ombudsman for the Rights of France)이 형성한 협력단 (consortium)에게 수여되었고, 터키의 옴부즈맨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옴부즈맨 위원장은 다른 자치지역의 옴부즈맨들과 다른 기관들의 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이 프로젝트를 이행함. 모든 예산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지원.

#### 4) 스페인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인권기구 현황

가)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매커니즘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ortura; 영문명 National Mechanisms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NMP)<sup>2737)</sup>

---

2736)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https://www.defensordelpueblo.es/en/wp-content/uploads/sites/2/2016/01/Summary_report_2014.pdf) (검색일 2016.8.24.)

2737) <https://www.defensordelpueblo.es/en/prevention-of-torture/defensor-as-npm/>

(1) 설립

스페인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조인에 따라, 스페인 의회는 2009년 11월 3일, 기본법 1/2009에 따라 스페인 옴부즈맨 위원장에게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매커니즘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2) 조직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위원장, 부위원장 두 명과 별개로 최대 10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짐.

한 명은 스페인변호사협회 (General Council of Spanish Lawyers)에서 지명되고, 또 한 명은 스페인의료협회 (General Council of Spanish Medical Associations)에서 지명되고, 다른 한 명은 스페인 심리학자 공식대학 협회 (General Council of Official Colleges of Psychologists of Spain)에서 지명. 그 외 옴부즈맨 조직 내에서 옴부즈맨과 협업계약을 체결하는 대표가 최대 2명까지 지명, 그리고 최대 5명까지는 옴부즈맨 위원장을 통해 지명된 후보들의 인력풀에서 선정되는데,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속한 기관이나 협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들.

(3) 주요 활동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매커니즘의 예방 활동은 주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

- (가) 선택의정서 제 1조, 19조 a항에 따라 구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피구금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자유를 박탈당해 구금되어있는 기관들에 대해 정규 및 비정규적 시찰 시행
- (나) 선택의정서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찰 기록과 보고서 작성
- (다) 선택의정서 제 19조 b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당국에 권고문 발부
- (라) 선택의정서 제 19조 c항의 규정에 따라 존재하는 법 혹은 법안 초안에 대한 제안 및 논평

또한,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매커니즘은 의회와 고문방지소위원회 (U.N. Sub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에 연간 활동 보고. 2015년, 구금기관(centros de privación de libertad)들을 64회 방문하고, 58건의 권고문, 224건의 제안(sugerencias), 그리고 법적의무 상기(recordatorios de deberes legales) 2건 발부. 직권 조사(expedientes

---

(검색일 2016.8.25)

de oficio) 106건 진행.

또한, 음부즈맨위원장의 연간보고서와 별개로 연간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됨<sup>2738)</sup>.

## 11. 캐나다

캐나다 국가 정보 <sup>2739)</sup>	
면적	9,984,670 km <sup>2</sup>
인구	34,834,841 (2014년 기준)
수도	오타와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주요언어	영어, 프랑스어
주요종교	가톨릭 (43.6%), 개신교 (29.2%)
주요민족	영국계(21%), 프랑스계 (15.8%), 기타유럽계 (28.9%), 기타 민족 (20%)
GDP	1조 4,623 억불 (2016 IMF 기준)
	1인당 GDP : 4만 409불 (2016 IMF 기준)

### 1)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캐나다 인권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 (2) 설립연도: 1977년 8월 10일
- (3) 설립배경: 캐나다는 지역마다 차별금지법안(anti-discrimination laws)들을 두고 있었는데, 1977년에 처음으로 연방 정부 관할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차별금지 법안으로서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이하 인권법)<sup>2740)</sup>을 제정했음. 1977년 인권법과 함께 고용평등법

2738) [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s/resultados-busqueda-informes/?tipo\\_documento=informe\\_mnp](https://www.defensordelpueblo.es/informes/resultados-busqueda-informes/?tipo_documento=informe_mnp) (검색일 2016.9.5.)

2739) [http://www.mofa.go.kr/countries/northamerica/countries/20110809/1\\_23017.jsp?menu=m\\_40\\_30\\_20](http://www.mofa.go.kr/countries/northamerica/countries/20110809/1_23017.jsp?menu=m_40_30_20) (검색일 2016.5.16.)

2740)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 Revised Statutes of Canada, R.S.C., 1985, c. H-6) : 1977년 제정, 1985년 개정된 법으로 캐나다 차별금지 법률들의 차별금지 및 평등의 원칙을 더욱 강화·확대하기 위해 제정했다. 캐나다 정부 관할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권법이 금지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권리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다. 인권법은 캐나다 인권위원회 및 캐나다 인권재판소의 설립 근거 법률이기도 하며 이들 인권 기구의 구조와 역할

(Employment Equity Act)<sup>2741)</sup>의 준수를 목적으로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설립함. 위원회는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의 이행을 관장하면서 정부의 통제와 압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의를 지님.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2742)</sup>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캐나다는 1977년, 영토 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함. 캐나다 인권법 제2부 제26조 1항<sup>2743)</sup>에 근거해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감시·감독 기관인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설립함. 또한,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의 이행 기관으로서 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캐나다 연방 관할 소속 고용 장소들의 고용 평등 상황을 감독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기구

---

에 관한 조항도 포함한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page-1.html#h-2> (검색일: 2016.5.16.)

2741)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 S.C., Statutes of Canada, 1995, c. 44) : 1995년 캐나다의 모든 직장에서 고용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여성, 선주민, 장애인, 소수 인종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아닌 소수자성을 이유로 고용 상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한 법률. 고용 문제에서 이 같은 약자들을 단지 다수 집단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닌,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등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http://lois-laws.justice.gc.ca/eng/acts/e-5.401/page-1.html> (검색일: 2016.7.6.)

2742)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about-us> (검색일 2016.5.16)

2743) Canadian Human Rights Act 1977, Part II“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art.26(1) (캐나다 인권법 제2부 제26조 1항) : A commission is hereby established to be known as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is Part and Part III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consisting of a Chief Commissioner, a Deputy Chief Commissioner and not less than three or more than six other members, to be appoin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이 법안의 제2부와 3부에 등장하는 ‘위원회’란 제26조 1항에 근거해 설립한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총독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3명 이상 6명 이하의 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page-3.html#h-6> (검색일: 2016.5.16.)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위원 외 직원들(Staffs)은 인권법 제32조 1항에 근거해 공무원 임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에 따라 임용함.<sup>2744)</sup> 현재 전체 구성원은 약 185명<sup>2745)</sup>

인권위 조직은 크게 총 4개의 부서(branch)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4개의 부서는 다시 18개의분과(Divisions)를 두고 있음. 총 4개의 부서로는 분쟁 해결부(Dispute Resolution), 차별예방부(Discrimination Prevention), 지식 센터(Knowledge Centre), 기획운영부(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Secretary)가 있음<sup>2746)</sup>.

① 분쟁해결부

차별 진정에 대한 갈등 조정, 조사 등 위원회의 구제 기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 지원 역시 이 분과에서 진행함. 세부 분과로는 조기 해결과 대안적 분쟁해결과(Early Resolu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조사과(Investigation), 소송지원과(Litigation Services)가 있음.

② 차별예방부

차별예방부는 고용평등법 이행을 비롯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세부 분과로는 지역 사무소담당과(Regional Offices), 고용평등법 이행과(Employment Equity Compliance Division), 차별방지계획 및 지역연계과(Prevention Initiatives and Liaison Division), 커뮤니케이션과(Communications Division)를 두고 있음.

2744) C.H.R.A. art.32(1) “Staffs” (캐나다 인권법 제32조 1항) : Such officers and employees as are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위원회의 적절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원으로서 사무관들과 직원들은 공무원 임용법에 따라 임명한다.)

2745)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5 Annual Report to Parliament (2015 캐나다 인권위원회 연간 보고서)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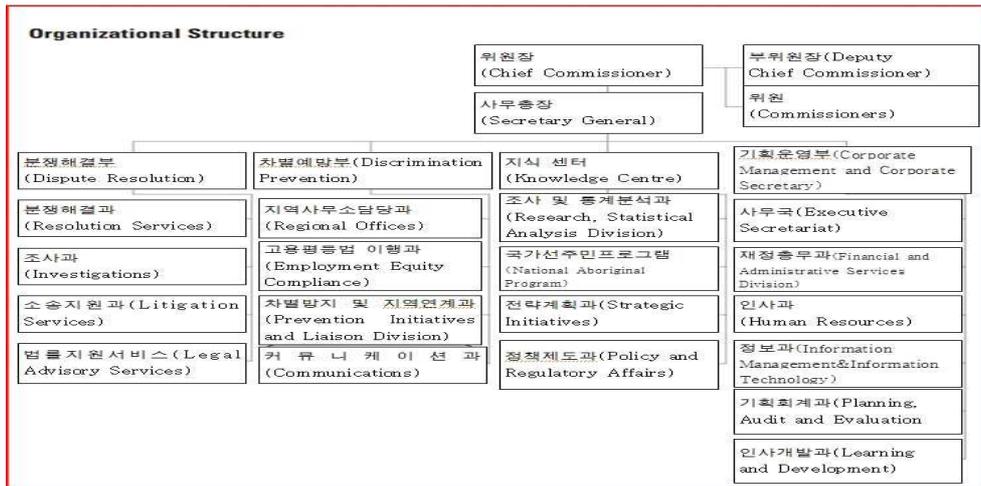
2746) Yvonne Peters,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Strives to Design a New Business Model: What Does This Me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7

③ 지식센터

지식센터는 연구 및 정책 개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며, 2005년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인권 정책 제안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부서.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의 가이드라인 개발, 국제인권기준의 도입 및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등 인권과 관련한 규범적(regulatory) 역할을 수행함. 세부 분과로는 조사 및 통계분석과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Division), 정책제도과(Policy and Regulatory Affairs Division), 국가선주민프로그램(National Aboriginal Program), 전략계획과(Strategic Initiatives) 등이 있음.

④ 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는 위원회 운영과 총무, 회계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세부 분과로는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과 국제프로그램과(International Program Division), 재정총무과(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인사과(Human Resources Division), 정보과(Informat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기획회계과(Planning, Audit and Evaluation Division), 인사개발과(Learning and Development Division)를 두고 있음.



출처: Yvonne Peters,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Strives to Design a New Business Model: What Does This Me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7

[캐나다-그림 63] 캐나다 인권위원회 조직도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위원회 본부: 인권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근거해 위원회 본부는 수도 오타와(Ottawa)에 두고 지역에 12개 이하의 지역 사무소 설립 가능함.<sup>2747)</sup>

지역사무소: 2016년 현재, 수도 오타와(Ottawa) 외 11개 지역인 Albert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rthwest Territories, Nova Scotia, Nunavut,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and Yukon<sup>2748)</sup> 등지에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sup>2749)</sup>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의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며 위원회로 들어오는 모든 자금과 위원회의 지출은 연방통합예산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 : CRF)을 통해 이루어짐.<sup>2750)</sup>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임이 홈페이지 소개에도 등장하지만, 예산의 독립성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인권법에 나타나 있지 않음. 다만, 독립적인 기구로서 연방통합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기금은 국회의 상원에서 심의하는 예산의 기본 단위임<sup>2751)</sup>.

---

2747) C.H.R.A. art.34(1) “Head office” (캐나다 인권법 제34조 1항 “본부”) : The head office of the Commission shall b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described in the schedule to the National Capital Act. (위원회 본부는 캐나다 국가 수도법이 지정하는 공식 수도에 위치한다.)

art.34(2) “Other offices”(캐나다 인권법 제34조 2항 “지역사무소”) :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such regional or branch offices, not exceeding twelve,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powers, duties and functions under this Act. (위원회는 인권법에 따른 권한과 임무,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2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외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index.html> (검색일 2016.5.18.)

2748)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provincial-and-territorial-human-rights-agencies> (검색일 2016.5.25.)

2749)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provincial-and-territorial-human-rights-agencies> (검색일 2016.5.18.)

2750)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financial-statements-unaudited-year-ended-march-31-2015> (검색일 2016.5.16.)

2751)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 제도』 p.244

<캐나다-표 36> 캐나다 인권위원회 예산

인권위원회 2016년 - 2017년 예산	인권위원회 2017년 - 2018년 예산 <sup>2752)</sup>
22,149,172 CAD (약201억)	22,149,310 CAD (약201억)

출처: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6-2017년 계획보고서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캐나다 인권법 제2부 제26조 1항(각주 4 참고)에 따라 캐나다 총독(Governor in Council)<sup>2753)</sup>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을 임명함.<sup>2754)</sup> 2016년 현재, 위원장 Marie-Claude Landry, Ad. E., 부위원장 David Langtry 외 5명의 위원이 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음.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캐나다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지위는 명시된 바 없음. 다만 위원장은 GCQ-8급<sup>2755)</sup>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캐나다에서 GCQ-8급 공무원은 총독이 임명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기관장들로 주로 준사법적(quasi-judicial) 기능을 지닌 위원회, 이사회 등의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직급에 해당함<sup>2756)</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해당 자료 없음.

2752)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report-plans-and-priorities-2016-17> (검색일 2016.5.17.)

2753) 캐나다는 국가 통치 방식으로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총독(Governor General in Council)은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지위로서 행정부를 대표하며, 선출직 최고 대표인 수상(Prime Minister)은 입법부를 대표한다. 그러나 수상이 하원(Parliament)에서 장관들을 임명해 행정 내각(Cabinet)을 구성하므로 캐나다에서 총독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다. 다만, 총독은 내각의 추천을 받아 주요 인사들을 지명하는 임명권을 갖는다. (출처: 외교부 캐나다 개황)

2754) C.H.R.A. 1977, art.26(1) (캐나다 인권법 제26조 1항) 재인용

2755) <https://www.appointments-nominations.gc.ca/prflOrg.asp?OrgID=CHRC&type=typ=3&lang=eng> (검색일: 2016.7.14.)

2756) GCQ에서 'Q'는 준사법적 기능(quasi-judicial function)을 의미함. (출처: Gary Levy, Canadian Parliamentary Review, 2008, p.42)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인권법 제26조 2항에 근거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근, 그 외 위원들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임용<sup>2757</sup>하며, 상근 위원의 임기는 최고 7년, 비상근 위원의 임기는 최고 3년으로<sup>2758</sup>, 모든 위원은 1회 연임 가능함.<sup>2759</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들은 품위유지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직위를 유지함. 해임 사유 발생 시 상원과 하원의 제청에 따라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해임함.<sup>2760</sup>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1) 차별 진정 조사

차별 진정 사례를 접수 받고 조사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조사권은 인권위의 특별한 권한임. 인권위는 인권법상 기준에 따라 진정 사례를 접수 받는데 주요 진정 대상은 인권법 제3조의 금지된 차별 근거들(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sup>2761</sup>인 인종, 국가 혹은 민족 출신, 피부색, 중

2757) C.H.R.A. art.26(2) “Members”(인권법 제26조 2항 “구성원”) : The Chief Commissioner and Deputy Chief Commissioner are full-time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other members may be appointed as full-time or part-time members of the Commission.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임명하며 그 외에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은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임명한다.)

2758) C.H.R.A. art.26(3) “Term of appointment”(인권법 제26조 3항 “임기”) : Each full-time member of the Commission may be appointed for a term not exceeding seven years and each part-time member may be appointed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모든 상근직 위원들의 임기는 최고 7년, 비상근 위원들의 임기는 최고 3년을 넘지 않는다.)

2759) C.H.R.A. art.26(5) “Re-appointment”(인권법 제26조 5항 “재임명”) : A member of the Commission is eligible to be re-appointed in the same or another capacity. (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직위 혹은 다른 직위로 재임명할 수 있다.)

2760) C.H.R.A. art.26(4) “Tenure”(인권법 제26조 3항 “직무 유지”) : (4)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holds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but may be remov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on address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모든 위원회 구성원은 임기 중 직무에 어울리는 적절한 언행을 유지하는 동안 지위를 잃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원과 상원의 제청으로 총독이 해임할 수 있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page-3.html#docCont> (검색일: 2016.5.18.)

2761) C.H.R.A. art.3(1)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인권법 제3조 1항 “금지된 차별 근거들”) : (1) For all purposes of this Act,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re race, national or ethnic origin, colour, religion, age, sex, sexual

교, 나이, 성, 성적 지향, 결혼 유무, 가족관계, 장애, 소멸된 전과 기록이나 사면 받은 유죄 혐의 등 11가지 주요 차별근거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임. 그 외 진정 대상은 제5조~1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위 11가지 주요 차별 근거들에 의해 공공 서비스 이용 및 고용, 주거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들(Discriminatory Practices)<sup>2762</sup>이 있음.

---

orientation, marital status, family status, disability and conviction for an offence for which a pardon has been granted or in respect of which a record suspension has been ordered. (인권법의 준수를 위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근거들이란 인종, 국가 혹은 민족 출신, 피부색, 종교, 나이, 성, 성적 지향, 결혼 유무, 가족관계, 장애, 소멸된 전과 기록이나 사면 받은 유죄 혐의 등을 말한다.)

(2) Where the ground of discrimination is pregnancy or child-birth, the discrimination shall be deemed to be on the ground of sex. (임신 혹은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을 근거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page-1.html#docCont> (검색일: 2016.7.7.)

2762) C.H.R.A. art.5~art.14 Discriminatory Practices (인권법 제5조~14조가 명시하는 차별행위들)

art.5 “Denial of good, service, facility or accommodation”(인권법 제5조 “공공재, 공공서비스, 시설 이용 거부”)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in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facilities or accommodation customari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a) to deny, or to deny access to, any such good, service, facility or accommodation to any individual, or (b) to differentiate adversely in relation to any individual,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재화, 서비스, 시설 등의 이용에서 다음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개인이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근거로 공공재, 서비스, 시설 등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b) 개인이 이 같은 시설 이용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C.H.R.A. art.6 “Denial of commercial premises or residential accommodation”(인권법 제6조 “상업적 부동산 혹은 거주 시설 이용 거부”)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in the provision of commercial premises or residential accommodation (a) to deny occupancy of such premises or accommodation to any individual, or (b) to differentiate adversely in relation to any individual,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상업 시설이나 거주지에서 발생한 다음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개인이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상업 부지 이용이나 거주 시설의 이용을 거부당했을 때 b) 개인이 이 같은 시설 이용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C.H.R.A. art.7 “Employment”(인권법 제7조 “고용”)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directly or indirectly, (a) to refuse to employ or continue to employ any individual, or (b) in the course of employment, to differentiate adversely in relation to an employee,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개인이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실직 상태가 계속될 경우 b) ‘금

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고용 중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C.H.R.A. art.8 “Employment applications, advertisements”(인권법 제8조 “고용 관련 구인 절차나 광고”)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a) to use or circulate any form of application for employment, or (b)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or prospective employment, to publish any advertisement or to make any written or oral inquiry that expresses or implies any limitation, specification or preference based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조건으로 고용 제한이나 특별 조건의 명시, 혹은 특정 조건의 선호 혹은 불호를 표현하거나 암시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위의 내용을 밝힌 모든 형태의 구인 절차 b) 위의 내용을 담은 구인 광고 혹은 고용 과정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거나 구두로 밝힌 차별행위)

C.H.R.A. art.9“Employee organizations”(인권법 제9조 “노동자 단체”) : (1)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for an employee organization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a) to exclude an individual from full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b) to expel or suspend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or (c) to limit, segregate, classify or otherwise act in relation to an individual in a way that would deprive the individual of employment opportunities, or limit employment opportunities or otherwise adversely affect the status of the individual, where the individual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or where any of the obligations of the organization pursuant to a collective agreement relate to the individual. (노동자 단체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노동자 단체에서 개인의 노동자 단체 소속 자격을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박탈했을 때 b)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개인을 해당 단체에서 제명하거나 소속을 연기했을 때 c) 개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로서의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다른 이들과 분리 혹은 분류하는 행위, 개인이 구성원으로 소속된 구직자 단체 혹은 집단 협약에 의해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노동자 단체에서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근거로 개인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구직자로서 지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C.H.R.A. art.10 “Discriminatory policy or practice”(인권법 제10조 “차별적인 정책 혹은 관례”)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for an employer, employee organization or employer organization (a) to establish or pursue a policy or practice, or (b) to enter into an agreement affecting recruitment, referral, hiring, promotion, training, apprenticeship, transfer or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employment or prospective employment, that deprives or tends to deprive an individual or class of individuals of any employment opportunities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고용주 혹은 구직자 단체 혹은 고용주 단체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근거로 개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거나 취업 기회 자격(조건)을 박탈하는 정책과 관례들 b) 취업과 관련된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개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거나 취업 기회 자격을 박탈하는 구인, 추천, 고용, 승진, 교육 훈련, 견습, 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

---

행령이나 협약에 착수하는 행위)

C.H.R.A. art.11(1) “Equal wages”(인권법 제11조 1항 “동일임금”)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for an employer to establish or maintain differences in wages between male and female employees employed in the same establishment who are performing work of equal value. (같은 직장에 고용되어 같은 가치를 지닌 업무를 수행 중인 여성 고용인과 남성 고용인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Assessment of value of work”(2항 “업무평가”) : In assessing the value of work performed by employees employed in the same establishment, the criterion to be applied is the composite of the skill, effort and responsibility required in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work is performed. (같은 직장에 고용된 고용인들의 업무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감 같은 요소들을 종합한 것이어야 한다.)

(3) “Separate establishments”(3항 “조직 혹은 시설의 분리”) : Separate establishments established or maintained by an employer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or maintaining differences in wages between male and female employees shall be deem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o be the same establishment. (같은 직장에 고용된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그러한 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을 분리/분류한 행위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같은 조직 또는 시설로 통합해야 한다.)

(4) “Different wages based on prescribed reasonable factors”(4항 “임금 차등 지급의 합리적인 근거”) :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it is not a discriminatory practice to pay to male and female employees different wages if the difference is based on a factor prescribed by guidelines, issued by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pursuant to subsection 27(2), to be a reasonable factor that justifies the difference. (1항에서 밝힌 임금 차등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용주가 본 인권법 제27조 2항에 따라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근거해 성별이 다른 피고용인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Idem”: For greater certainty, sex does not constitute a reasonable factor justifying a difference in wages. (그러나 정확히 하자면, ‘성별’은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6) “No reduction of wages”(6항 “임금 감봉 불가”) : An employer shall not reduce wages in order to eliminate a discriminatory practice described in this section. (고용주는 본 항목에서 금지하는 임금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해서는 안 된다.)

(7) (7항) :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wages means any form of remuneration payable for work performed by an individual and includes (a) salaries, commissions, vacation pay, dismissal wages and bonuses; (b) reasonable value for board, rent, housing and lodging; (c) payments in kind; (d) employer contributions to pension funds or plans, long-term disability plans and all forms of health insurance plans; and (e) any other advantage received directly or

인권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차별 사례 진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는 다음의 절차로 이뤄짐.

(가) 진정접수(Complaint)

인권위가 차별 사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함. 진정 접수 후 사례가 다음 사항들에 해당되면 조사를 각하함<sup>2763</sup>).

---

indirectly from the individual's employer. (본 항목에서 '임금'이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불 가능한 사례 혹은 보수를 의미한다. a) 급여, 수수료, 휴가비, 실업급여, 보너스 b) 숙소 제공, 숙소 대여, 주거 시설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급여 c) 현물 지급 d) 고용인의 연금 자금이나 연금 계획에 대한 기여, 장애에 대한 장기 계획 및 모든 형태의 건강 보험 e) 그 외 고용주가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기타 사례

C.H.R.A. art.12 "Publication of discriminatory notices, etc."(인권법 제12조 "차별적 고지의 출판")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to publish or display before the public or to cause to be published or displayed before the public any notice, sign, symbol, emblem or other representation that (a) expresses or implies discrimination or an intention to discriminate, or (b) incites or is calculated to incite others to discriminate if the discrimination expressed or implied, intended to be expressed or implied or incited or calculated to be incited would otherwise, if engaged in, be a discriminatory practice described in any of sections 5 to 11 or in section 14.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고지나 사인, 상징, 기호 혹은 기타 표현물을 통해서 대중 앞에 전시하거나 출판 인쇄하는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차별을 표현하거나 암시 혹은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경우 b) 차별을 선동하거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계산된 행위. 위와 같은 행위들이 차별을 표현 혹은 암시했거나, 표현 혹은 암시할 의도를 지닌 경우, 혹은 차별을 선동했다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밖에도 그러한 표현이 인권법 제5조~11조 혹은 제14조에서 명시한 차별 행위들과 관계있을 경우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C.H.R.A. art.14(1) "Harassment"(인권법 제14조 1항 "학대") :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a) in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facilities or accommodation customari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b) in the provision of commercial premises or residential accommodation, or (c) in matters related to employment, to harass an individual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다음의 행위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재, 서비스, 시설 b) 상업 시설이나 거주지 c) 고용 관련 사안에서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이유로 개인이 학대를 받았을 때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Sexual harassment"(2항 "성희롱") :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sexual harassment shall, for the purposes of that subsection, be deemed to be harassment on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1항의 일반적인 차별 근거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은 '금지된 차별 근거들'에 근거한 학대에 해당한다.)

- ① 해당 사례가 캐나다 인권위의 관할권(jurisdiction)에 속하지 않는 경우
- ② 인권법(각주 22 참고)이 제시한 11가지 차별 근거가 아닌 경우
- ③ 인권법이 명시한 차별행위들(discriminatory practice)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④ 갈등 당사자들 간 내부적인 분쟁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⑤ 인권위 외 기타 기관에서 불만 해결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
- ⑥ 지나치게 사소하고 하찮은 이유, 혹은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유에서 비롯된 진정
- ⑦ 발생 시점에서 1년이 경과된 사건

(나) 중개(Mediation)

진정 접수 단계에서 내부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에 의한 사실 검증을 필히 하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에 대한 양측 당사자의 동의 및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위원회는 중개를 시도함.

- ① 조사 시작 전 사례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가 중개자(mediator)로서 당사자들 간 합의를 촉진함.
- ② 중개 과정은 자율적(voluntary)이며 비공개적(confidential)인 성격을 띤다.
- ③ 당사자 간 갈등 해결 동의서(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함.<sup>2764)</sup>

(다) 조사(Investigation)

인권법에 근거해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사례 조사에 착수함.

위원회가 지명하는 조사관(Investigator)은 인권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권한을 가짐.

- ①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정보 확보를 위해 관련 사유지 또는 기관에 출입함
- ② 법원으로부터 조사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는 영장(warrant)을 발행받음<sup>2765)</sup>

2763) <http://www.chrc-ccdp.gc.ca/eng/node/84#stage1> (검색일: 2016.7.7.)

2764) <http://www.chrc-ccdp.gc.ca/eng/node/84> (검색일: 2016.7.7.)

2765) C.H.R.A. art.43(2.1) "Power to enter"(인권법 제43조 2-1항 "출입권") : Subject to such limitations as the Governor in Council may prescribe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defence or security, an investigator with a warrant issued under subsection (2.2) may, at any reasonable time, enter and search any premises in order to carry out such inquiries as a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 ③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찰관 혹은 공권력을 대동할 수 있음<sup>2766)</sup>
- ④ 조사 과정에서 방해나 압력을 받지 않음<sup>2767)</sup>
- ⑤ 조사가 끝난 후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2) 피해자 구제

캐나다 인권위는 차별 진정 사례에 대해 조사권뿐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인권기구임. 인권위는 인권법상 차별행위를 성립시키는 근거들에 의해 사례 조사 착수를 결정하면 조사관(investigator)을 임명해 조사를 시작함. 조사관은 관련 정보와 자료들,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 등 조사 작업을 거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함. 권고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중재, 갈등 조정, 피해 보상 및 배상, 정책과 관행의 시정, 피해자 치유 등을 포함함.

(가) 조사결과 후 권고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아래 세 가지 형태의 결정<sup>2768)</sup> 중 하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총독이 명시한 대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조건 내에서 조사관은 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행받아 사유지나 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C.H.R.A. art.43(2.2) “Authority to issue warrant”(인권법 제43조 2-2항 “영장 발행”) : Where on ex parte application a judge of the Federal Court is satisfied by information on oath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re is in any premises any evidenc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the judge may issue a warrant under the judge’s hand authorizing the investigator named therein to enter and search those premises for any such evidenc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warrant. (사례를 관할하는 법원은 조사에 필요한 증거나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장소에 조사관이 출입할 수 있는 영장을 발행할 수 있다.)

2766) C.H.R.A. art.43(2.3) “Use of force”(인권법 제43조 2-3항 “공권력 사용”) : In executing a warrant issued under subsection (2.2), the investigator named therein shall not use force unless the investigator is accompanied by a peace officer and the use of force has been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e warrant. (2-2항에서 명시한 소환권을 행사할 때 조사관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찰관을 대동하거나, 특별히 허가를 받아 공권력을 대동하는 경우 외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2767) C.H.R.A. art.43(3) “Obstruction”(인권법 제43조 3항 “방해”) : No person shall obstruct an investigator in the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차별 진정을 조사하는 동안 조사관은 방해받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2768) <http://www.chrc-ccdp.gc.ca/eng/node/84#stage1> (검색일: 2016.7.7.)

나를 채택함.

- ① 차별 진정의 기각(dismissal)
- ② 배상 및 보상 등 갈등 조정(Conciliation)
- ③ 사례를 캐나다 인권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에 회부함

※ 사례 당사자 양측 혹은 한 쪽이 위원회 또는 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 법적 의견(Judicial Review)을 요청할 수 있음. 연방법원이 만약 인권위 혹은 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사자의 의견에 동의하면, 사례를 인권위 혹은 인권재판소에 돌려보내 사례를 재검토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sup>2769</sup>).

(나) 갈등 조정(Conciliation)

갈등 조정은 인권위가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배상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임.

- ① 조정관은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함<sup>2770</sup>
- ② 중재와 달리 의무적(mandatory) 성격을 띠지 않음
- ③ 조사 후 당사자들이 기간 내 의무적인 갈등 해결(settlement)에 이르도록 함
- ④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인권재판소 회부를 결정함
- ⑤ 인권재판소 회부 후에는 위원회가 해당 사례에 관여할 수 없음<sup>2771</sup>

(3) 사법 기관에 법률 의견 요청

인권위의 피해자 구제 조치와 갈등 조정 권고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

2769)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your-guide-understanding-canadian-human-rights-act-page2> (검색일: 2016.7.29.)

2770) C.H.R.A. art.47(2) “Eligibility”(인권법 제47조 2항 “조정관 자격”) : A person is not eligible to act as a conciliator in respect of a complaint if that person has already acted as an investigator in respect of that complaint.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은 해당 사례의 조정관으로 임명하지 않음.)

2771) <http://www.chrc-ccdp.gc.ca/eng/node/84#stage1> (검색일: 2016.7.7.)

제기하거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준 사법기관<sup>2772)</sup>인 인권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에 사건을 회부해 법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인권재판소에 진정 사건을 회부하는 권한은 오직 인권위에 있으며, 다른 주체는 차별 사건을 인권위를 거치지 않고서 인권재판소에서 재판을 요청할 수 없음<sup>2773)2774)</sup>.

(4) 고용평등법 이행 감사

인권위가 관장하는 두 가지 법률 중 하나인 고용평등법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캐나다 연방의 규제를 받는 민간 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용평등법 이행 상황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짐. 마찬가지로 고용평등법의 이행을 관장하며 고용평등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처에는 노동부가 있으나, 고용주들의 고용평등법 준수 상황 감사(Compliance Audit)의 정기적 시행은 인권위 고유 권한임.

(가) 고용평등법이 명시한 고용의무<sup>2775)</sup>

---

2772) [www.chrt-tcdp.gc.ca/about/chairperson-message-en.html](http://www.chrt-tcdp.gc.ca/about/chairperson-message-en.html) (검색일: 2016.9.26.)

2773) C.H.R.A. art.49(1) “Request for inquiry”(인권법 제49조 1항 “인권재판소 회부”) : At any stage after the filing of a complaint,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Chairperson of the Tribunal to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omplaint if the Commission is satisfied tha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laint, an inquiry is warranted. (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사례 진행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든 진정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권재판소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소에 사례를 회부할 수 있다.)

2774)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진정 요청을 하려면 우선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 인권위가 아닌 개별적 주체는 진정 요청을 위해서 사건을 인권재판소로 바로 가져올 수 없으며, 인권재판소에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인권위에 있음을 홈페이지 Frequently Questions 1번과 2번 항목에서 소개함. 그 이유는 인권재판소의 공정성(impartiality)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인권재판소가 진정 접수 및 조사 기능을 갖고 있다면 공정판 판관이 아닌 변호(advocate)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출처: <http://www.chrt-tcdp.gc.ca/about/faqs-en.html> 검색일: 2016.8.1.)

2775) E.E.A. art.5 “Employer’s duty”(고용평등법 제5조 “고용주의 의무”) : Every employer shall implement employment equity by (a) identifying and eliminating employment barriers against persons in designated groups that result from the employer’s employment systems, policies and practices (···) and (b) instituting such positive policies and practices and making such reasonable accommodations as will ensure that persons in designated groups achieve a degree of representation in each occupational group in the employer’s workforce (···). (모든

- ① 4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모든 직책에 고용하고 포 함시킬 것
- ② 4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소수자들을 고용할 때 고용 장벽을 파악하고 밝힐 것
- ③ 피고용인들과 함께 4개 소수 집단 고용을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 할 것
- ④ 고용평등계획(Employment Equity Plan)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을 설정해 기간마다 측정 가능한 수치로 설정한 단기 목표 및 구체적 이행 방식을 담고 있을 것
- ⑤ 1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캐나다 연방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기 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매년 6월 1일 전, 고용평등보고서<sup>2776</sup>)를 ‘고 용과 노동인력개발부’(노동부)의 노동프로그램(Labour Program at Employ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Labour)<sup>2777</sup>)에 제출할 것

고용주는 4개 지정 그룹 소수자들을 고용을 방해하는 고용주의 시스템이나 정책, 직 장 관행에서 비롯된 고용 장벽을 밝히고 없애야 한다. (중략) 고용주는 직장 내 모든 직책에 4개 지정 그룹 소수자들을 포함하도록 선제적인 정책과 관례를 수립해야 한 다.)

E.E.A. art.10 “Employment equity plan”(고용평등법 제10조 “고용평등계획”) : The employer shall prepare an employment equity plan that (...). (고용주는 ‘고용평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E.A. art.15(b) “Consultation with employee representatives ”(고용평등법 제15조 b항 “피고용인과의 협의”) : Every employer shall consult with its employees’representatives by inviting the representatives to provide their views concerning (b) the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revision of the employer’s employment equity plan. (고용주는 피고용인 대표들과 고용평등계획의 준비, 이행 및 수정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2776) 고용평등보고서(employment equity report)는 전 직원의 고용 지위, 지위별 그룹 분 포(4개 소수 그룹 포함), 급여 범위, 승진과 계약 종료, 고용평등계획 관련 노동자들 과의 협의 사항, 조치, 활동, 결과 등 사업장 전반의 고용 상황 및 4개 지정 소수 그 룹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http://www.esdc.gc.ca/en/jobs/workplace/human\\_rights/employment\\_equity/leep.page](http://www.esdc.gc.ca/en/jobs/workplace/human_rights/employment_equity/leep.page) (검색일: 2016.7.8.)

2777) 캐나다의 노동부 격인 고용과 노동인력개발부(Employ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Labour)에 속하는 행정부서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고용과 노 동 관련 행위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 특히 고용평등법 및 노동법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고용평등법과 관련해서는 고용주들의 고용평등보고서를 수집해 매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http://www.labour.gc.ca/eng/home.shtml> (검색일: 2016.7.20.)

(나) 위원회의 주요 감사(Compliance Audit) 대상<sup>2778)</sup>

위원회의 고용평등 이행 감사는 분기별로 주요 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고용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함.

- ① 50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한 직장 및 고용주
- ② 같은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고용평등 수준을 보인 직장 및 고용주
- ③ 모든 100인 이상 고용주들을 포괄하는 추가적인 감사(대상자 임의 선정) 진행함.

(다) 감독절차

- ① 3년마다 500인 이상 피고용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임의적으로 선정함.<sup>2779)</sup>
- ② 위원회가 지정한 감사관(Compliance officer)의 요구로 고용주는 고용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기록, 정보, 보고서를 제출함
- ③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라) 조사 결과

- ① 조사관의 권고에 따라 고용주는 지적 받은 문제에 대해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함
- ② 고용주가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혹은 심사 결과에 대한 고용주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임시 법정인 고용평등재심재판소 (Employment Equity Review Tribunal)<sup>2780)</sup>를 구성해 해당 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

(마) 관련 기관과의 협력

캐나다 고용평등법 시스템은 인권위의 감사 역할 외에도 고용평등 보고서 및 관련 정보 관리를 맡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유지됨<sup>2781)</sup>.

2778)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employment-equity#6> (검색일: 2016.7.8.)

2779)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employment-equity-compliance-program-forward-plan-notification>

2780) E.E.A. art.28 “Establishment of Tribunals”(고용평등법 제28조 “임시재판소 설치”) : If an employer mak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27(1) or the Commission makes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7(2), the Chairperson shall establish an Employment Equity Review Tribunal to consider the request or application. (고용주 혹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요청을 심사하기 위한 임시 법정인 고용평등재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고용과 노동인력개발부 노동프로그램(Labour Program at Employ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Labour):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용평등 보고서 수집 및 관리
- ② 국가재무위원회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sup>2782</sup>: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4개 소수 그룹 고용 상황과 대표성에 관한 정보 관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용평등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상정함.
- ③ 공무원인사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sup>2783</sup>: 공공 영역의 고용 및 인사 관련 고용평등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함.

(5) 입법부에 의견 및 권고 제출

캐나다 인권위는 크게 두 가지 권고 권한을 갖는데, ①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인권위 활동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해당 분기 인권 사안에 권고하며 ② 국회의 법률 제정 혹은 개정 시 관련 법안이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차별 진정과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인권위는 매년 최우선 목표(Plan and Priorities)를 통해서 해당 분기에 인권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분야와 관련 활동 계획을 발표함. 인권위는 차별 진정을 받을 때 해당 분기의 최우선 목표에 해당하는 주

2781) <http://www.chrc-ccdpc.gc.ca/eng/content/employment-equity#6>

2782) Treasury Board Secretariat(캐나다 국가재무위원회 사무국): 재무원은 캐나다의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중 하나로, 정부의 사업성과, 재정, 윤리, 직원 및 사무관리, 감사에 대한 책임, 각 부처의 규제와 명령 등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각에서 승인한 정책이나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인데, 국가재무위원회 사무국은 재무위원회의 부속기관이지만 1966년에 독립 부서로 독립했다. 재무위원회 사무국은 재무위원회가 캐나다 정부의 예산과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방향, 규제 및 사업 예산 제안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감사원 평가연구원, 『캐나다 정부의 평가제도 및 복지제도 평가실태』, 2006)

2783) Public service commission(캐나다 공무원인사위원회): 캐나다의 인적자원 분야를 담당하는 상위 기관으로 고위 공무원 평가와 공직 직원 구성을 하고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농촌진흥청, 『과장급 공무원 역량모델링 연구』, 2010)

요 인권 이슈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 노력함.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인권위는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시스템 활용 증진’, ‘선주민 권리 증진’, ‘장애인 권리 확대’ 등에 주력하면서 관련 활동들을 전개함.

- ① 2013-14 최우선 목표와 계획: 캐나다 다수 인구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인권 침해, 선주민의 인권 보호 시스템 접근권 및 활용도 증대
- ② 2014-15 최우선 목표와 계획: 최하위 취약계층(특히 선주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 이용 확대, 지역 기관 및 지역 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인권위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적 기능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수준 증진
- ③ 2015-16 최우선 목표와 계획: 2014-15와 동일
- ④ 2016-17 최우선 목표와 계획: 캐나다 인권위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늘릴 것,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로서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 차별 진정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

(2) 고용평등법 이행 감독

위원회는 캐나다 연방 관할권에 속하는 100인 이상 피고용인들을 고용한 민간기업 및 공기업, 공기관의 고용평등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일한 감사 기관임.<sup>2784)</sup> 고용평등법은 캐나다 내 모든 직장이 법안이 지정한 4개 집단에 속하는 소수자들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고용평등법 지정 4개 집단: 여성, 선주민(Aboriginal people), 장애인, 기타 소수인종<sup>2785)</sup>

---

2784) Employment Equity Act art.22(1) “Compliance audits”(고용평등법 제22조 1항 “법안 준수 감독”) : The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he obligations imposed on employers by sections 5, 9 to 15 and 17. (위원회는 고용평등법 제5조, 9조~15조, 17조가 부과한 고용주들의 고용 관련 의무를 감독할 책임 권한을 갖는다.)

2785) E.E.A. art.3 “Definitions”(고용평등법 제3조 “정의”) : members of visible minorities means persons, other than aboriginal peoples, who are non-Caucasian in race or non-white in colour. (이 법안에서 가시적인 소수 집단이란 선주민 외에도 비백인 소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3) 인권 존중 문화 증진<sup>2786)</sup>

캐나다 인권위는 인권위의 역할을 인권 옹호(Human Rights Protection)와 인권 문화 증진(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이라고 밝히고 있음. 인권 존중 문화 증진 프로그램들은 캐나다에서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고, 두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음.

(4) 연구·조사 작업을 통한 정책 참여

위원회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인권 이슈들에 관한 대중과 학계, 정부 기관, 국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조사 작업을 수행함. 조사 작업 결과는 위원회가 발간하는 주제별 보고서, 특별 보고서, 국회와 유엔에 제출하는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및 현황 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기록함. 조사 보고서의 주제 역시 대체로 위원회의 분기별 ‘최우선 목표(Plans and Priorities)’가 포함하는 주요 이슈에 집중함.

또한 인권위는 연구 조사 작업을 통해 국제인권기준과 동향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함. 캐나다는 연방 국가로서 지역마다 다른 법률과 법적 관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제인권기준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였음. 인권위는 보편적 인권 기준(Human Rights Standards)을 검토·연구하고 국내 법률과 조화시켜 국내 인권 관련 법과 정책 기준을 제시함. 캐나다는 특히 국내에서 선주민 인권과 관련해 과거 캐나다 백인 정부가 저지른 학살에 가까운 인권 침해들과, 관할(jurisdiction)상의 문제로 캐나다 연방의 인권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아왔음. 이 같은 권고들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인권위가 담당함.

(5) 국회에 권고

(가)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사안에 권고·제안을 제출<sup>2787)</sup>

2786)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our-work> (검색일 2016.5.21.)

2787) C.H.R.A. art.27(1)(e) “Powers, duties and functions”(인권법 제27조 1(e)항 “권한, 의무 및 기능”중) : may consider such recommendations, suggestions and requests

캐나다 인권법 61조에 근거, 위원회는 의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를 제출함.

(나) 법률, 규칙, 조례, 정책의 인권법 및 고용평등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권고함.<sup>2788)</sup>

(6) 소송 지원

위원회는 차별 진정 사례가 인권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 연방 법원(Federal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소송 진행 중일 때, 사안이 공익을 대표하거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인권침해일 경우, 소수자들의 인권 개선 및 관련 정책의 진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지원함.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A 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6년 1월, 2011년 5월 심사에서 A등급 유지<sup>2789)</sup>

---

concerning human rights and freedoms as it receives from any source and, where deemed by the Commission to be appropriate, include in a report referred to in section 61 reference to and comment on any such recommendation, suggestion or request; (위원회는 본 법안 제61조에서 명시한 국회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 특별보고서 등을 통해 권고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인권과 자유 관련 사안에 권고, 제안,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788) C.H.R.A. art.27(1)(g)&(h) (인권법 제27조 1(g)&(h)항) : may review any regulations, rules, orders, by-laws and other instruments made pursuant to an Act of Parliament and, where deemed by the Commission to be appropriate, include in a report referred to in section 61 reference to and comment on any provision thereof that in its opin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described in section 2; and (h) shall, so far as is practical and consistent with the application of Part III, try by persuasion, publicity or any other means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discourage and reduce discriminatory practices referred to in sections 5 to 14.1.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시행령, 명령, 조례를 포함한 법안들이 인권법 제2부에서 명시한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서 혹은 발언을 통해서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설득이나 공고 등 적절한 권고 조치를 통해서 인권법 제5조~14조가 규정하는 차별행위를 근절하도록 한다.)

278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5.18.)

## 2)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활동 내용

###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1) 인권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사례 진정

(가) 캐나다 인권위의 설립 근거 법률인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상 권리들을 국내에서 보장하도록 실행 주체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인권위의 임무임. 인권법의 주요 목적은 11개 차별근거로 발생하는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음. 고용평등법의 의의는 캐나다 연방 관할권의 모든 직장에서 고용평등을 실현하며, 특히 4개 지정 소수집단(여성, 선주민, 장애인, 기타 가시적인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고용에서 사회 모든 계층의 대표성과 고용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임. 인권위는 매년 최우선 목표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에서 인권위의 존재 의의가 두 법률을 다양한 주체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밝힘.

(나)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의 핵심 정신은 ‘차별 금지’에 근거한 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음. 인권위는 특히 인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11개 차별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 진정을 받아왔음.

(다) 두 개 법률의 적용 대상 범주는 넓은데,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모든 연방 정부 부서 및 사무소, 공기업 등 공공 영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은행, 운송,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관계된 민간 영역을 포괄.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모든 직장, 고용주들은 인권법과 고용평등법 준수 의무가 있음.

#### (2) 고용평등법 감사

캐나다에서 고용평등법은 크게 두 개 기관에서 관장함. 고용과 노동인력개발부의 노동프로그램이 고용주들의 고용평등보고서를 매년 접수해 이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역할을 맡는다면, 인권위는 정기적인 감사(compliance audit)를 통해서 고용평등 정도를 좀 더 면밀히 평가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가) 고용주들의 시정 조치 이행 동의(agreement)를 이끌어 냄

위원회는 감사를 마친 후 4개 소수 그룹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고용평

등법 이행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고용주들과 협상을 실시해 시정 조치 방법과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 이행 동의서 (agreement)를 작성하게 함. 2014년에는 고용평등법을 준수하지 않은 29개 고용주들과 협의해 이행 동의를 이끌었음<sup>2790)</sup>.

(나) 감사 결과 보고서(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국회에 제출  
위원회는 분기별로 지정한 민간 영역 및 공공 영역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기별 보고서 혹은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 형식으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함.<sup>2791)</sup> 2014년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높은 고용평등 수준을 달성한 고용주들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함.<sup>2792)</sup>

### (3) 갈등 조정

진정 후 갈등 조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 (punitive)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구제(remedial)에 초점을 둠.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에 바탕을 두고 피해를 보상하고 감정을 치유하며 상실한 권리를 복권시키는 갈등 조정이라는 의미를 지님. 최근 3년간 캐나다 인권위는 구제 절차 단계 중 위원회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중재 및 갈등 조정에서 합의 성공률을 꾸준히 높여왔음.

#### (가) 캐나다 인권위 진정 처리 현황

##### ① 2015년<sup>2793)</sup>

총 진정 건수	조사 착수	갈등 조정 <sup>2794)</sup>	진정 기각	접수 기각	인권재판소 회부
1,207	630	226	155	142	46

2790)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4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4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19

2791) [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parl\\_lp\\_e\\_933.html](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parl_lp_e_933.html) (검색일 2016.7.11.)

2792)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4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4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19

2793)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5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79

2794) 이 수치에서 갈등 조정은 진정 사례를 조사하기 전에 이뤄지는 중재(mediation) 과

② 2013~2015년 진정 추이<sup>2795)</sup>

처리유형	2013		2014		2015	
	건수	%	건수	%	건수	%
접수 기각 <sup>2796)</sup>	344	40	283	33	260	38
진정 기각	196	23	217	25	155	23
갈등 조정	234	28	293	34	226	32
인권재판소회부	72	9	70	8	46	7
종결	846	100	863	100	687	100
총 진정 건	1,236		1,364		1,207	

2013': 306건 중 234건 해결. 76%의 중재 및 합의 성공률  
 2014': 363건 중 293건 해결. 80%의 중재 및 합의 성공률  
 2015': 272건 중 226건 해결. 83%의 중재 및 합의 성공률

③ 진정 피고 대상자<sup>2797)</sup>

	민간 영역	공공기관	지역의회(선주민 지역)	조합
2013	496 (40%)	602 (49%)	93 (8%)	25 (2%)
2014	585 (43%)	616 (45%)	91 (7%)	44 (3%)
2015	492 (41%)	588 (49%)	81 (7%)	24 (2%)

④ 차별 및 인권 침해 발생 영역<sup>2798)</sup>

	고용 문제	공공서비스 이용	직장 내 확대	노동조합
2013	1,228 (71%)	321 (19%)	118 (7%)	22 (1%)
2014	1,347 (70%)	376 (19%)	138 (7%)	41 (2%)
2015	1,145 (65%)	391 (22%)	155 (9%)	20 (1%)

정을 포함함.

2795)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5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88

2796) 인권법이 명시한 차별 근거를 구성하지 못해 기각한 사례 외에도 시효가 지났거나 인권의 관할권(jurisdiction)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기관의 구제 및 진정 절차로 회부한 경우를 포함함.

2797)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5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83

2798)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5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84

2015년 진정 사례 중 차별 근거로는 장애인(58%), 출신 민족(16%), 인종(14%), 성별(13%) 순으로 집계됨. 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진정 사례의 40%는 정신적 장애(mental health issues)에 관계된 사례였음. 2014년 역시 차별 근거 장애인(57%), 출신 민족(16%), 인종(14%), 성별(13%) 순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정신 장애인 권리는 최근 캐나다에서 부상한 권리 분야로 인권위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함.

#### (4) 인권 문화 증진

##### (가) 인권성숙모델(The human Rights Maturity Model)<sup>2799)</sup> 개발

2005년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캐나다 전역의 모든 직장에서 인권과 고용평등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고용주, 노동자, 노동조합 및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프로그램. 인권성숙모델(The human Rights Maturity Model)은 교육 프로그램이자 법규 이행 기준으로 고용평등법의 준수를 실용적인 방식으로 돕고 고용주로 하여금 감사(Compliance Audit)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나) 국가 선주민 계획(National Aboriginal Initiative)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권고를 받아온 선주민 권리 확대에 대해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음. 2008년 인권법 개정으로 선주민 지역을 인권법 관할권으로 포함시키면서 인권위의 주요 목표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선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선주민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되었음. 이 같은 목표 아래 선주민의 인권위원회 제도들의 활용과 인권 교육을 돕는 프로젝트인 국가 선주민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이트를 마련함. 2016년 5월 10일에는 캐나다 정부가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sup>2800)</sup>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캐나다법에 적용할 것을 공표

2799)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입한 후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평가 항목을 따라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인권성숙도(maturity)'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과 달성 목표 등을 설정해 상황을 개선하도록 도움. <http://www.hmmm-mmdp.ca/eng/fact-sheets> (검색일 2016.5.23.)

함<sup>2801)</sup>.

(5) 국회에 권고

인권위 설립 초기, 인권위는 행정상 책임 당국인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직접 발언할 권한이 없었음<sup>2802)</sup>. 국회에서 위원장이 정책 제안 발언을 하고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게 된 것은 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확장을 의미하며 독립적 정부 기구로서 위상이 높아진 것이기도 함.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①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② 분기 외 특별 인권 사안에 대한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③ 국회 법안 상정 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출두 발언(Address)으로 나눌 수 있음.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sup>2803)</sup>

(1) 캐나다 행정 구조상 법무부가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책임 당국이지만, 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권법과 고용평등법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임을 보장받음.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소속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출두하고 발언하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공익을 대변하고 인권 사안과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sup>2804)</sup>

(2) 캐나다 각 행정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중 하나인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로서<sup>2805)</sup>, 재무위원회

2800) 유엔선주민권리선언 : 유엔이 2007년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으로서 선주민에게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음. 전세계 선주민이 몰수된 토지 및 자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했으며, 고유문화와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로 하여금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었음. [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 (검색일 2016.5.26.)

2801)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10052016-acknowledging-indigenous-rights-key-step-towards-reconciliation-chrc> (검색일 2016.5.23.)

2802) 캐나다 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의 발전(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in Canada)』, 2012

2803)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annual-report-2015> (검색일 2016.5.26.)

2804) <https://www.canada.ca/en/human-rights-commission.html> (검색일: 2016.7.13.)

2805) 각주 46 참고

는 재정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재정 및 행정 구조상 법무부 산하 기관<sup>2806</sup>인 인권위에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함. 재무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안을 승인·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하원(House of Commons)입<sup>2807</sup>.

- (3) 인권위는 행정상 책임부처인 법무부에 예산 계획과 관련해 매년 최우선 목표에 관한 보고서(The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를 제출해야 함. 법무부는 산하의 기타 기관들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다시 하원에 보내 심의 과정을 거침. 재정의 결산 및 성과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부처성과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짐<sup>2808</sup>. 법무부는 이를 다시 재무위원회에 제출해 해당 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함. 위원회 활동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결과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검토되고 평가받음.

### 3)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

##### (1) 진정을 통한 차별 시정

캐나다 인권 역사에서 차별 진정을 통해 정책 및 관행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들을 소개함<sup>2809</sup>.

##### (가) 성별(sex)에 따른 차별 진정

① 1989년, Isabelle Gauthier, Marie-Claude Gauthier 외 2명의 군인들이 여군의 전투 참여 복무 제한 규정을 성별에 근거한 차별로 진정. 캐나다 인권재판소에 회부된 이 사례는 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캐나다 군대의 모든 직무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계기를 마련함.

② 1993년 보험회사의 임신부 차별에 대한 진정: 1993년 Cynthia Floyd

---

2806)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R.S.C., 1985, c. F-11) SCHEDULE I-1(Sections 2 and 3) (출처: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f-11/page-32.html#docCont> 검색일: 2016.8.1.)

2807)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 제도』, p.243

2808)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 제도』, p.275

2809)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milestones-human-rights-canada> (검색일: 2016.7.11.)

가 실직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인 지급 금액의 절반만을 지원하자 이를 인권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냄. 이에 인권재판소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상액을 지불하도록 판결했고, 국회는 임신부도 똑같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 급여(보험)법을 개정함. 이를 계기로 고용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관행적 차별이 없어지게 됨.

(나) 동일임금 원칙 위반에 관한 진정

- ① 1984년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던 여성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어긋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차별 진정을 냄. 이 사례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재판소로, 다시 연방 법원으로 회부되면서 10년 동안 진행됨. 연방 법원이 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노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다) 장애에 따른 차별 진정

- ① HIV 환자의 장애인 차별 진정: 캐나다 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주들의 의무 중에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duty to accommodate)가 있음. 이는 각각 다른 조건을 지닌 피고용인들이 각자의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에 최대한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다는 의미임. 그중에서도 4개 소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중시함. 1989년,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을 이유로 해고되자 진정을 냈고, 인권재판소는 이를 장애의 일종인 병(illness)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고 판결함. 1993년에는 같은 이유로 군대에서 해고된 군인이 차별 진정을 내자, 인권재판소는 캐나다 군대가 장애인을 위한 환경 조정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정. 두 진정 사례는 캐나다에서 HIV 및 에이즈 환자들의 권리에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음.
- ② 장애인을 위한 시설 마련에 대한 진정: 1991년 시각 장애인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서비스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차단한다고 진정을 냄. 인권위는 이를 접수하고 1996년 은행과 진정인 사이에 갈등 조정을 통해 해결함. 이 조정으로 1997년에 캐나다는 세

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용 ATM을 설치한 국가가 됨.

(라) 선주민 차별 진정과 인권법 개정

- ① 2008년까지 선주민 자치 지역(First Nations)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선주민 법(Indian Act)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캐나다 연방 정부와 자치 정부(First Nations government)의 차별이 계속 발생하자 2008년 캐나다 의회는 인권법을 개정, 선주민 법 관할권의 사람들도 인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2008년 인권위가 인권법 개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권고하는 역할을 했음.

(마) 고용평등에 관한 진정

- ① 1990년 캐나다 연방 정부의 건강 복지 분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승진과 인사를 비롯한 고용 사안에서 인종 및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 신청을 함. 1997년, 인권재판소는 해당 연방 정부 분과가 고용과 승진 정책에서 차별 행위를 했다고 결정했고, 이후 해당 분과는 모든 지위에서 가시적 소수 인종의 채용을 늘리게 됨.

(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의 인권법 포함에 관한 진정

- ① 1989년 캐나다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성소수자 대위가 승진에서 누락되자 차별 진정을 하려고 시도함. 그러나 당시 인권법에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11가지 차별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1992년 온타리오주 상소 법원은 성적지향을 포함하지 않은 캐나다 인권법이 차별적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인권법은 성적지향을 차별 근거들 중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고 권고함. 1996년 국회는 인권법을 개정해 성적 지향을 11번째 금지된 차별행위의 근거로 포함시킴.

(2)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절차 중 중재(mediation)는 조사 착수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들 간 내부 합의 조치로서 정책과 관행상 변화를 이끌어 더 많은 차별 진정을 방지하며,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조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절약해 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소송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함.

(가) 중재의 예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장애인이 차별 진정을 냈고, 고

용주는 위원회 중재 과정에 참여해 진정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직장 내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도록 함. 또, 선주민 자치 지역(First Nation community)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차별 정책에 대한 중재 과정으로서, 캐나다 정부가 인권법을 선주민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후 일종의 사죄 및 치유의 의미로 정부가 법을 개정했음을 알리는 세리머니를 자치 지역에서 벌인 바 있음<sup>2810)</sup>.

(나) 인권재판소 회부

위원회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로 이끄는 반면, 보다 위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인권재판소 회부를 고려함.

‘정신 장애’(mental health issue)는 위원회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진정 사례들을 접수한 차별근거로서, 이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를 인권재판소에 회부함. 2010년 캐나다 교정 시설(Correctional Service Canada)에서 독방에 수감됐다가 정신 장애를 얻게 된 진정인의 피해를 조사하던 중, 이 시설에서 2004년~2009년 사이 유사한 인권 침해로 정신 장애인이 된 사례들을 발견함. 이후 위원회는 교정 시설의 독방과 관련한 사례들을 접수하고 법적 해결들을 모색해오고 있음.<sup>2811)</sup>

나) 교육

인권위는 캐나다 내에서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시키고 대중, 고용주, 취약 계층,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두 법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해왔음.

- (1)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십니까?(Do you know your rights?)” 사이트 제작: 캐나다 인권법이 금지하는 11가지 주요 차별 근거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 및 지역공동체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인권 원칙을 설명함. 특히, 선주민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 및 인권

2810)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3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3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15

2811)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5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76

위 진정 시스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선주민 지역공동체를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First Nations)을 발간함.<sup>2812)</sup>

- (2) 『일과 부양의무의 균형을 위한 가이드』(Guide to Balancing work and Caregiving obligations)를 발간함으로써 고용주, 변호사 및 인사 관련 담당자들에게 이 문제를 공정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부양의무가 있는 피고용인을 위해 고용주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설명함.<sup>2813)</sup>

#### 다) 홍보

- (1) Webinar (시뮬레이션) 사이트 제작<sup>2814)</sup>

인권위는 인권위가 수행해온 거의 모든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용 콘텐츠를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제작해 webinar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고용평등법상 ‘4개 소수 그룹을 위한 환경 조정의 의무(duty to accommodate)’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모듈 프로그램, 인권위의 차별진정 활용 절차에 관한 시각적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부터 인권 관점에서 정의한 현대적 가족, 구조적 인권침해, 인권적 관점(Human Rights Lens) 등 개념을 설명하는 시각적 콘텐츠를 망라하고 있음.

- (2) 인권법 가이드(Your Guide to Understanding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제작

총 10장으로 구성된 교육동영상을 통해 인권 기초교육, 캐나다 인권보호 시스템 활용법, 인권위원회 활동을 홍보함.<sup>2815)</sup>

#### 라) 정책 개선

인권위는 홈페이지에서 연구 및 조사 작업은 캐나다 국내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으며 그 대상은 대중, 고용주, 취약 계층, 정부 기관, 그리고 국회임을 밝히고 있음. 연구 조사 작업은 분기별로 인권위가

---

2812) [http://www.doyouknowyourrights.ca/en/individuals\\_particuliers/quickfacts\\_enbref](http://www.doyouknowyourrights.ca/en/individuals_particuliers/quickfacts_enbref) (검색일 2016.5.20.)

2813)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2014-15-departmental-performance-report> (검색일 2016.5.24.)

2814)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webinars> (검색일: 2016.7.21.)

2815)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multimedia> (검색일 2016.5.25.)

집중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를 담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 보고서는 국회에서 정책 입안 시 혹은 유엔 인권모니터링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참고됨.

(1) 선주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선주민 권리는 캐나다가 인권법을 개정해 선주민 지역을 인권법의 관할에 포함시킨 2008년 이전부터, 인권법 개정 후 선주민들의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몇 년 까지 인권위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이슈임. 2014년에는 2008년의 인권법 개정이 선주민 권리와 선주민들의 인권보호 시스템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 결과를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to Parliament on the Impacts of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함<sup>2816</sup>. 2016년에는 선주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여성폭력 문제 등을 고발하고 인권보호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Honouring the Strength of Our Sisters: Increasing Access to Human Rights Justice For Indigenous Women and Girls)를 발간함<sup>2817</sup>.

(2) 평등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Documenting Equality Rights)<sup>2818</sup>

사회적 권리(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에 관한 작업의 하나로, 평등권을 삶의 질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한 작업. 인권위는 헌법 및 인권법, 각 지역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같은 권리들이 캐나다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고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 또, 캐나다 법이 포괄하고 있는 권리들의 실질적 보장 정도와 11개 차별 근거들과의 관계를 밝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 및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캐나다 통계 관리 기관들 및 부처와 협력했으며 이들 기관들이 통계 수집을 담당함. 위원회는 캐나다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풍요도(economic well-being), 교

2816)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4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4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8

2817)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publications> (검색일: 2016.7.21.)

2818)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0, 『평등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개념 작업(Framework for Documenting Equality Rights)』 [http://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11/ccdp-chrc/HR21-78-2010-eng.pdf](http://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11/ccdp-chrc/HR21-78-2010-eng.pdf)

육, 고용, 건강, 주거, 사회정의와 안전(Justice and Safety), 정치 참여도와 사회 통합 정도(Political Engagement and Social Inclusion) 등 7가지 측면을 조사한 데이터를 수집했음.

캐나다 인권법의 금지된 차별 근거인 11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삶과 관할 지방법 및 지역 정책들을 분석함. 다음 단계에서는 영역별, 주제별 정책 입안 시 고려해야 할 11개 차별 근거들을 분석해 차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 것인지 제시함.

(3)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은 2010년 이후로 인권위가 꾸준히 ‘최우선 목표’에 포함하고 있는 주요 이슈로 2012년 캐나다 최초로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결과인 ‘장애인의 평등권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Equality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장애인이 겪는 물리적, 제도적 차별의 정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음<sup>2819</sup>).

(4) 캐나다 인권위는 2014년 Bill S-201<sup>2820</sup> 유전적 차별 금지 및 방지법안(An Act to prohibit and prevent genetic discrimination)과 관련하여 법안상정을 위한 인권상 임위 원회에 참가해 고용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개인유전정보를 사용하는 일에 반대 의견을 제출함<sup>2821</sup>).

(5) 2013년 인권위 위원장 대행은 인권 상원위원회에 참석해 연방 정부의 공공 서비스 기업이 고용과 승진 분야에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 권위의 고용평등법 이행 감사(Compliance Audit) 제도가 고용 차별을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함<sup>2822</sup>).

(6) 2013년 인권위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인권법이 명시하는 차별 근거에 젠

2819)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2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26

2820) 인권위원회는 캐나다에서 고용 및 서비스분야에서 유전적 정보를 사용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음. 2014년 4월 국회는 위원회에 개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사용 법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유전 정보 대신 멀티모달시스템(multi-modal systems)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http://www.chrc-ccdp.gc.ca/eng/report/2014/engagement/advice-parliament> (검색일 2016.5.24.)

2821) <http://www.chrc-ccdp.gc.ca/eng/report/2014/engagement/advice-parliament> (검색일 2016.5.25.)

2822) 캐나다 인권위원회 2013 연간보고서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s 2013 Annual Report to Parliament』 p32

더 표현(Trans Gender and Gender Expression)을 포함시키는 법안인 Bill C-279 도입에 대해 발언함.

마) 사법부 의견 제출

위원회 소송 지원 팀(litigation team)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차별 사례가 인권재판소 및 연방 법원, 대법원 등에서 진행 중일 때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사례가 캐나다 인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권법을 새롭게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조적 인권침해 사안 등이 해당됨.

- (1) 2014년, 위원회는 선주민 아동 권리 관련 단체 및 아동복지 기관이 연방 정부가 관할권의 문제로 아동복지 정책을 선주민 아동에 대해 유보시킨(on-reserve) 것에 대해 낸 진정 사례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소송 지원함. 이 사례는 2007년에 처음 진정 신청이 접수된 후 법적 난제들로 인해 사례 조사에 난항을 겪어 위원회가 인권재판소에 회부함. 2011년, 인권재판소는 사례 피고인인 캐나다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3년 다시 연방법원이 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고 공개 심리를 진행함. 연방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25차례의 증인 증언이 있었고, 재판소는 500여건의 문서를 증거로 채택함.

바) 주요 인권 이슈

- (1)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의 차별근거 포함<sup>2823)</sup>

2016년 5월 17일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인권법상 금지하고 있는 11가지 차별근거에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및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을 추가함으로써 트랜스젠더 등 개인의 젠더 정체성 혹은 그러한 젠더 정체성의 표현을 이유로 고용 및 공공서비스에서 차별 받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

- (2) 캐나다 내 난민 인권<sup>2824)</sup>

최근 캐나다 국경감시대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의해 억류

2823) <http://www.chrc-ccdp.ca/eng/content/17052016-transgender-rights-are-human-rights-canadian-human-rights-commission-welcomes-new> (검색일 2016.5.20)

2824) <http://www.chrc-ccdp.gc.ca/eng/node/2047> (검색일 2016.5.23)

돼 있다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에 캐나다 내 언론이 집중됨.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여러 관계기관에게 이민자의 죽음에 관해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함.

(3) 실종 선주민 여성 진상 조사<sup>2825)</sup>

캐나다 정부는 연방 정부의 관할권의 문제로 그동안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선주민 여성들의 실종 및 살인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국가적 차원의 조사 작업에 관한 보고서인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Submission By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To The Government Of Canada Pre-Inquiry Design Process)을 발간하고, 생존자 및 관련자 가족, 국립 원주민 단체 및 NGO 들과 만나 사전 조사 활동을 시작함.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캐나다는 유엔에서 체결한 국제인권협약들에 대부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에 반영함.

국제인권협약 비준뿐 아니라 국제인권보호시스템인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캐나다가 비준한 협약들에 근거한 조약 감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1) 캐나다가 비준한 국제협약들 (비준 연도)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70)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7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76)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

---

2825)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submission-canadian-human-rights-commission-government-canada-pre-inquiry-design-process> (2016.5.23)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7)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1)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0)

(2) UPR 및 유엔인권보호시스템과의 협력

캐나다는 2009년, 2013년에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사를 받았음. 인권위는 2009년 UPR 심사를 위해서 사회적 평등에 관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 『Social Equality in Canada: A Submission from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s part of the UPR of Canada's Human Rights Obligations』를 제출함. 2013년에는 캐나다 선주민들의 인권위원회 접근성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사회적 요소에 관한 보고서인 『Submission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to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를 유엔 선주민권리에 관한 전문가 그룹에 제출함. 또한, UPR에서 선주민 권리 확보와 관련해 권고를 받자 캐나다 인권위는 선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 작업과 선주민들의 인권위시스템 활용 홍보 및 정책 변화를 추진했음.

#### 4) 캐나다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캐나다 인권재판소 (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

(1) 설립

1977년 캐나다인권법에 의해 캐나다 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창설됨. 1998년 6월 28일, 인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권재판소를 인권위원회와 분리함. 인권재판소는 캐나다 인권법 및 고용평등법에 근거, 연방정부 관할권 내에서 차별금지 원칙을 보장함.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sup>2826)</sup>

캐나다 인권법 48조 1항에 근거,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상임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최대 15명의 재판위원으로 구성함. 재판위원은 총독

2826)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index.htm> (검색일 2016.5.26.)

(Governor in Council)이 임명하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민감성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함.

의장과 부의장은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 변호사협회 회원이거나 퀘벡 공증인협회 회원을 역임해야 하고 재판 위원 중 최소 2명이 변호사협회 회원이거나 퀘벡 공증인협회 회원이어야 함.

(3) 주요업무<sup>2827)</sup>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캐나다인권위원회에서 회부한 차별 진정 사건을 심리하는 준 사법(quasi-judicial) 기관임. 인권재판소는 인권위원회와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양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개 심리(Public hearing)를 개최해 증언 및 증인을 공개함. 재판소는 인권법이 금지하는 11가지 사유에 근거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구제 절차(remedy)를 명령함. 만약 사례 당사자들이 인권 재판소의 결정이나 권고를 거부할 경우, 연방 법원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의견(Judicial Review) 및 법적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sup>2828)</sup>

## 12.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국가 정보 <sup>2829)</sup>	
면적	51,100km <sup>2</sup>
인구	4,810,000명 (2015년 7월 기준)
수도	산호세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가톨릭(76%), 개신교(14%)
GDP	GDP (명목) : 505억불 (2014 IMF 기준)
	1인당 GDP : 10,568불 (2014 IMF 기준)

2827) <http://www.chrt-tcdp.gc.ca/NS/index-eng.asp> (검색일 2016.5.25.)

2828) C.H.R.A. art.57 “Enforcement of order”(인권법 제57조 “강제력이 있는 명령”) : An order under section 53 may, for the purpose of enforcement, be made an order of the Federal Court by following the usual practice and procedure or by the Commission (...). (제53조에서 명시한 피해 보상 및 배상에 연방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 (중략))

2829)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48.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10808/1_22848.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08.01)

## 1) 코스타리카 국가인권기구의 일반현황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코스타리카 옴부즈맨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영문번역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Costa Rica)
- (2) 설립연도: 1993년 10월 1일<sup>2830)</sup>
- (3) 설립배경<sup>2831)</sup>: 초창기에는 1982년 9월에 국가법무장관사무소(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의 일부로 세워졌던 인권법무장관사무소(la Procuraduría de Derechos Humanos; 영문명칭 Office for the Defense of Human Rights, 지역 인권보호사무소)가 인권보호 메커니즘으로 작용 하였음. 법무장관사무소가 수립될 때 동일한 근거법에 따라 연방공정거래사무소(Procurador del Consumidor)의 개념 역시 수립됨. 이때 형벌 시스템(Sistema Penitenciario), 민원접수 옴부즈맨(el Defensor de los Usuarios del Registro Nacional)과 난민권리 옴부즈맨 (el Defensor de los Derechos de los Refugiados) 등 인권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들이 생겨났으나, 추후에 사라지게 됨. 그 후 법무부에 여성과 아동의 권리 수호를 위한 세부 기관이 생겨났는데, 여성의 사회적 평등 증진을 위한 법 (la Ley de Promoción de la Igualdad Social de la Mujer; Ley No. 7124)의 승인을 통해 효력을 지니게 됨.

그 이후 생겨난 옴부즈맨(Defensoría)은 사법부로부터 배정된 기관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했고, 6개의 세부조직 (일반옴부즈맨(Defensoría General), 여성옴부즈맨(Defensoría de la Mujer), 아동옴부즈맨(Defensoría de la Infancia), 소비자옴부즈맨(Defensoría del Consumidor), 내무 및 형벌시스템 옴부즈맨(Defensoría de los Internos del Sistema Penitenciario), 그리고 국가접수수령 옴부즈맨(Defensoría del Usuario del Registro Nacional))으로 나뉘어 짐. 이러한 세부 옴부즈맨들의 구성, 역할 및 권한은 행정법규(reglamento ejecutivo)에 의해 결정됨. 이 기관들은 인권 수호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의 계층적

2830) [http://www.dhr.go.cr/la\\_defensoria/](http://www.dhr.go.cr/la_defensoria/) (검색일 2016.9.26.)

2831) [http://www.dhr.go.cr/la\\_defensoria/](http://www.dhr.go.cr/la_defensoria/) (검색일 2016.8.9.)

이고 재정적인 관계 및 법무부와의 관계로 인해 업무 과정에서의 한계를 드러냄. 이에 따라, 세부 옴부즈맨들은 허가된 최대치의 자유 아래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됨.

이 과정과 병행하게 국가옴부즈맨법(Ley d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초안 형성 작업이 시작되고, 1985년 11월 7일 의회에서 발표됨. 이 법안의 작성은 스페인의 국가옴부즈맨법 (la Ley del Defensor del Pueblo Español; Ley Orgánica del 6 de abril de 1981)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최초의 옴부즈맨은 Rodrigo Alberto Carazo Zeledón로, 1993년 4월 28일에 선출됨. 그 후 1993년 10월 1일, 국가옴부즈맨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됨.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가)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설립은 헌법 제48조에 기반한 수정안이 1979년에 제안되면서 처음으로 시도됨. 이런 과정과 함께, 사법부와 대통령이 1985년 의회에서 제시한 옴부즈맨 법안의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는 스페인 옴부즈맨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음.

(나) 1992년,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은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줄여서 ‘법 No. 7319 (Ley 7319)’을 통해 설립<sup>2832</sup>). 동 법은 1994년 법 No. 7423을 통해 제 1, 2항<sup>2833</sup>)이 추가됨으로서 현재의 모습에 이룸. 또한 동 법은 법 No.

2832) [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 (검색일 2016.8.1.)

2833) 법 No. 7319에 따르면 두 항목은 제 1장: 법적 성격(Capítulo Único: Naturaleza Jurídica)으로 묶여 있다.

Artículo 1 Atribucion general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s el órgano encargado de proteger los

derechos y los intereses de los habitantes. Este órgano velará porque el funcionamiento

del sector público se ajuste a la moral, la justicia, la Constitución Política, las leyes, los

convenios, los tratados, los pactos suscritos por el Gobierno y los principios generales del

Derecho. Además, deberá promocionar y divulgar los derechos de los habitantes.

7423을 통한 개정 이전에는 제 3항을 통해 옴부즈맨(*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옴부즈맨 사무소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로 명칭이 변경됨<sup>2834</sup>).

(다) 행정법령 (Decreto Ejecutivo, 영문 Executive Decree)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Reglamento de la Ley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줄여서 ‘법규 (Reglamento)’는 헌법 제 140조 3, 8항과 1992년 11월 17일에 통과된 법 No. 7319의 제 31조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지님<sup>2835</sup>).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옴부즈맨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정부의 행동

---

#### 제 1항 전반적인 역할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이 기관은 공공분야에서 도덕, 정의, 헌법, 법안, 협약, 조약, 정부가 맺은 협정, 권리들의 기본 원칙 등이 효과적으로 지켜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 기관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 증진 및 홍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

#### Artículo 2 Independencia.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stá adscrita al Poder Legislativo y

desempeña sus actividades con independencia funcional, administrativa y de criterio. La

Asamblea Legislativa evaluará, anualmente, el funcionamiento de la Institución, mediante el

informe presentado por ese funcionario, el cual se conocerá y discutirá en el capítulo que

se establezca en el Reglamento de Orden, Dirección y Disciplina Interior de la Asamblea

Legislativa.

#### 제 2항 독립성

옴부즈맨사무소는 의회에 배정되어 있고, 활동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기능 및 행정적인 차원의 독립성을 지닌다. (후략)

2834) NOTA: el artículo 1 de la ley No.7423 del 18 de julio de 1994 reformó la denominación "Defensor" por la de "Defensoría", tanto en el Título como en el articulado. (1994년 7월 18일에 제정된 법 7423의 제 1항은 "옴부즈맨위원장"을 "옴부즈맨사무소"로 변경 (후략)) [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 (검색일 2016.8.1.)

2835) [http://www.dhr.go.cr/la\\_defensoria/reglamento\\_pdf/reglamento\\_dhr.pdf](http://www.dhr.go.cr/la_defensoria/reglamento_pdf/reglamento_dhr.pdf) (검색일 2016.8.1.)

및 활동 부족에 대해 검토함<sup>2836</sup>). 옴부즈맨은 입법 초안 작성과 승인에 참여하고, 공정한 행정과 투명성을 촉진하며, 의회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권고사항(nonbinding recommendations)을 포함한 연간보고를 해야 함.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절대적인 독립성을 지님<sup>2837</sup>).

다)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고 상호 작용을 함. 부서별로 담당 과장들(Directores)이 존재<sup>2838</sup>).

코스타리카 국가옴부즈맨사무소에서는 총 168명의 직원이 일함<sup>2839</sup>).

(가) 허용성 및 즉각적인 주의과 (Dirección Admisibilidad y Atención Inmediata)<sup>2840</sup>: 진정(queja) 및 문의(consulta)사항을 접수하는 부서. 이 곳에서 특정 진정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진행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함. 특히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사건 및 진정의 경우 옴부즈맨사무소 관련 법령들에 부합하는 긴급한 개입 및 대응을 실시함. 현재 과장은 Jenny Phillips Aguilar.

(나) 여성인권과 (Dirección Defensoria de la Mujer)<sup>2841</sup>: 여성의 사회적

---

2836) 출처: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 for 2015: Costa Rica.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3215.pdf> (검색일 2016.8.8)

2837) 행정법령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Decreto Ejecutivo N° 22266: Reglamento de la Ley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Artículo 3º- Independencia

Ni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ni su titular están supeditados a órganos o funcionario alguno en asuntos de su competencia y actuarán con absoluta independencia en el cumplimiento de sus atribuci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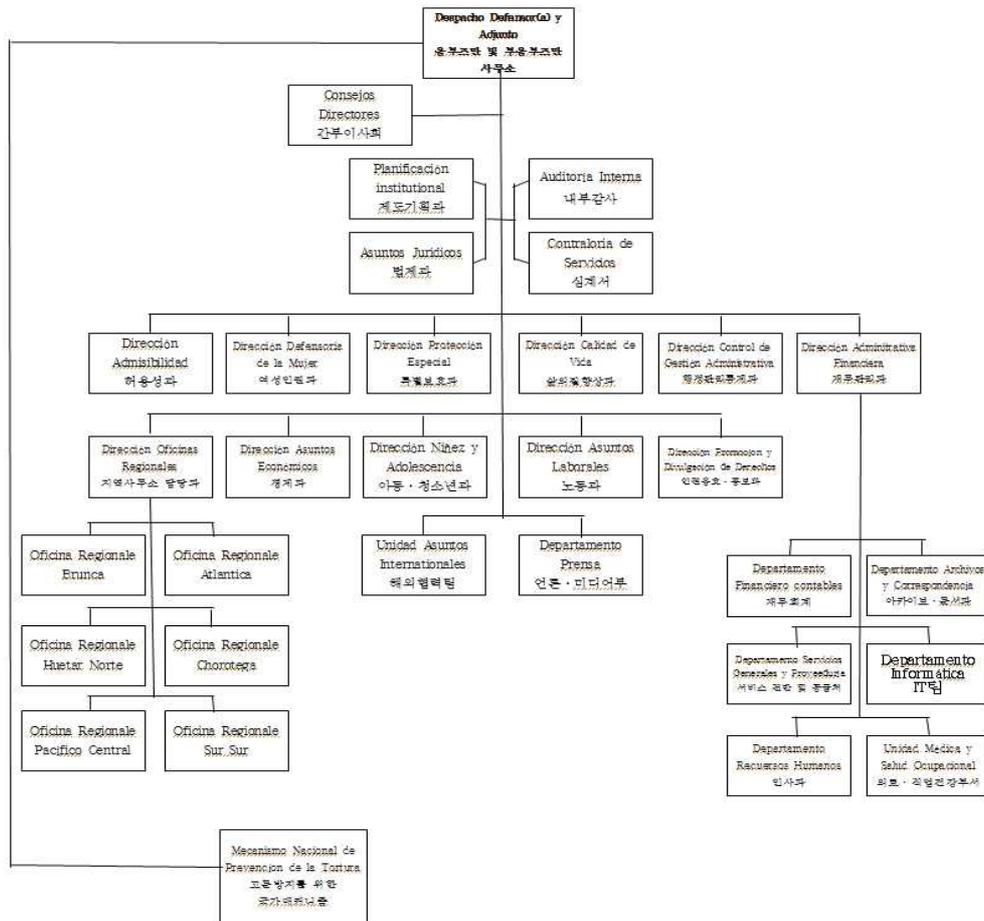
제3조: 옴부즈맨사무소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아님. 역할 수행의 위한 차원에서 절대적인 독립성(absoluta independencia)을 지닌다.

2838) [http://www.dhr.go.cr/la\\_defensoria/manual%20puestos/directores\\_dhr.pdf](http://www.dhr.go.cr/la_defensoria/manual%20puestos/directores_dhr.pdf) (검색일 2016.9.27.)

2839) [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cri\\_clases.pdf](http://www.oas.org/juridico/pdfs/mesicic4_cri_clases.pdf) (검색일 2016.9.27.)

2840)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dmisibilidad.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dmisibilidad.html) (검색일 2016.8.11.)

평등 증진을 위한 법 (la Ley de Promoción de la Igualdad Social de la Mujer; Ley No. 7124)을 통해 세워졌던 여성사무소(Defensoría de la Mujer)가 옴부즈맨사무소에 합류하며 생성된 부서. 모든 여성의 인권 및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 평등에 대한 증진 및 홍보 담당. 현재 과장은 Liliana Castro López.



출처: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dhr.go.cr/la\\_defensoria/estructura.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estructura.html)

[코스타리카-그림 64]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사무소 조직도

2841)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defensoria\\_mujer.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defensoria_mujer.html)  
(검색일 2016.8.9.)

- (다) 특별보호과 (Dirección Protección Especial)<sup>2842</sup>: 특정 대상들에 집중하여 사람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이 대상의 범주에는 선주민, 피구금자(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영문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이주민,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유에 상관없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포함됨. 현재 과장은 Álvaro Paniagua Núñez.
- (라) 삶의 질 향상과 (Dirección Calidad de Vida)<sup>2843</sup>: 자체조사 및 진정 관련 조사 후의 최종보고 과정 전반을 관리.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인프라 배치. 현재 과장은 Tatiana Mora Rodríguez.
- (마) 행정관리통제과 (Dirección Control de Gestión Administrativa): 현재 과장은 Hazel Díaz Meléndez.
- (바) 재무관리과 (Dirección Administrativa Financiera)<sup>2844</sup>: 아래 세부부서로 재무회계 (Financiero contables), 아카이브·문서과 (Archivos y Correspondencia), 서비스 전반 및 공급처 (Servicios Generales y Proveduría), IT팀 (Informática), 인사과 (Recursos Humanos), 그리고 의료 및 직업건강팀 (Unidad Médica y Salud Ocupacional)을 두고 있음. 행정 및 예산 관련 업무 담당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대한 계획 및 사용 결정.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행, 검토 등 담당. 옴부즈맨사무소 관련 아카이브 및 문서 정리, 분류, 등록, 배급 외 다양한 업무 담당. 현재 과장은 Ronald Retana López.
- (사) 지역사무소 담당과 (Dirección Oficinas Regionales): 코스타리카 전역에 위치한 6개의 지역사무소 (Brunca, Atlántica, Huetar Norte, Chorotega, Pacífico Central, Sur Sur) 관리. 현재 과장은 Carlos León Ureña.
- (아) 경제과 (Dirección Asuntos Económicos)<sup>2845</sup>: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2842)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proteccion\\_especial.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proteccion_especial.html) (검색일 2016.8.11.)

2843)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calidad\\_vida.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calidad_vida.html) (검색일 2016.8.9.)

2844)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dministrativa\\_financiera.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dministrativa_financiera.html) (검색일 2016.8.11.)

2845)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suntos\\_economicos](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suntos_economicos).

이익을 위한 부서. 대중교통이나 공공세금 관련 업무도 담당. 현재 과장은 Ana Katrina Zeledón Lépiz.

(자) 아동·청소년과 (Dirección Niñez y Adolescencia): 현재 과장은 Laura Fernández Díaz.

(카) 노동과 (Dirección Asuntos Laborales)<sup>2846</sup>): 노동권 전반에 대한 여러 분야 담당. 월급시스템, 급여지급 형태, 직업에 대한 접근권, 업무환경 시찰, 국제노동기구(Organizacion Internacional del Trabajo, OIT; ILO)의 협약 이행여부 검토, 연금 및 생활보조금, 자유로운 이직 가능 여부, 고용과정에서의 인사과의 투명성 등을 살핌. 현재 과장은 Roxana Chacón Artavia.

(타) 인권옹호·홍보과 (Dirección Promoción y Divulgación de Derechos)<sup>2847</sup>):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부서. 인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홍보 등을 담당. 현재 과장은 Jeannette Carrillo Madrigal.

(파) 해외협력팀 (Unidad Asuntos Internacionales)<sup>2848</sup>): 옴부즈맨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있어 국제 협력, 국제 관계 및 협업 지원

(하) 언론·미디어부 (Departamento Prensa)<sup>2849</sup>): 옴부즈맨사무소의 활동을 알리는 일을 담당. 언론기사, 라디오, TV 등 미디어 외에도 옴부즈맨사무소 공식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정기간행물(boletines) 담당.

그 외에도 외무자문위원회 (Consejo Asesor Externo, 영문직역 External Advisory Council)<sup>2850</sup>)가 존재하는데, 구성원들은 국가옴부즈맨사무소 밖

---

html (검색일 2016.8.11.)

2846)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suntos\\_laborales.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asuntos_laborales.html) (검색일 2016.8.9.)

2847)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promocion\\_divulgacion.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ireccion_promocion_divulgacion.html) (검색일 2016.8.9.)

2848)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unidad\\_asuntos\\_internacionales.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unidad_asuntos_internacionales.html) (검색일 2016.8.9.)

2849)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epartamento\\_prensa.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epartamento_prensa.html) (검색일 2016.8.9.)

2850) [http://www.dhr.go.cr/defensoria\\_transparente/documentos\\_despacho.html](http://www.dhr.go.cr/defensoria_transparente/documentos_despacho.html) (검색일 2016.9.27.)

의 전문가들로, 엄밀하게는 국가옴부즈맨사무소 소속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무소 측의 초대를 받아 위원회에 합류하게 됨. 위원회는 옴부즈맨 위원장에게 자문 및 권고 제공을 통해 옴부즈맨사무소의 더욱 객관적인 업무 이행, 즉각적인 인권침해 조사 및 국내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를 도움. 위원회는 영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고, 연간 1-2회 정도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가짐.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모든 업무를 대가 없이 수행함.

(2) 지역사무소

해당 자료 없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코스타리카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재무부 (Ministerio de Hacienda)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데, 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받음.<sup>2851)2852)</sup>

2016년 재무부의 국가재정 법안(Proyecto de Ley del Presupuesto de la República 2016)에 따르면 옴부즈맨사무소의 재정은 의회의 재정이거나 정부의 다른 부처(Ministerio)들과 별개로 책정<sup>2853)</sup>되었고, 2016년에는 5.771.000.000 코스타리카 콜론 (CRC) (미화로는 \$10512742.15, 한화로는 약 11,522,438,470원)이 책정됨으로서 국가재정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 받음<sup>2854)</sup>.

---

2851) [http://www.dhr.go.cr/preguntas\\_frecuentes.html](http://www.dhr.go.cr/preguntas_frecuentes.html) (검색일 2016.8.11)

2852) 행정법령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Decreto Ejecutivo N° 22266: Reglamento de la Ley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Artículo 61.- Financiamiento

El financiamiento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se incluirá como

un título separado en el presupuesto del Poder Legislativo.

제 61조: 재정

옴부즈맨사무소의 예산은 의회 예산의 일부로, 별개로 (título separado) 책정된다. (이하 후략)

2853) <http://www.hacienda.go.cr/contenido/13396-proyecto-de-ley-del-presupuesto-de-la-republica-2016> (검색일 2016.8.11.)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sup>2855)</sup>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옴부즈맨(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은 코스타리카 의회에 의해 지명되는데, 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수(absolute majority<sup>2856)</sup>)의 찬성 표를 받아야 함. 옴부즈맨으로 추천되는 인물은 코스타리카 시민권을 가진 30세 이상의 코스타리카 국민이어야 하며, 도덕적 및 직업 전문적인 분야에서 명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지명될 수 있음<sup>2857)</sup>.

부옴부즈맨(Defensor Adjunto)의 경우 옴부즈맨이 부옴부즈맨 자리에 적합한 3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의회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옴부즈맨보다 한 달 더 늦게 임명됨. 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의 자격조건 및 역할, 책임 등에 있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

2854) [http://www.hacienda.go.cr/docs/55e75cb6b0e7b\\_Folleto%20Presupuesto%20Nacional%202016%20FINAL.pdf](http://www.hacienda.go.cr/docs/55e75cb6b0e7b_Folleto%20Presupuesto%20Nacional%202016%20FINAL.pdf) (검색일 2016.8.11.)

2855) 코스타리카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찾을수 있었으나, 위원에 대한 정보는 따로 찾을수 없었음. 또한, 국가옴부즈맨사무소와 가끔씩 협업하는 외부자문위원회 (Consejo Asesor Externo)라는 매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역시 찾을수 없었음.

2856) <http://www.corteidh.or.cr/tablas/R08066-5.pdf> (검색일 2016.8.12.)

2857)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 (검색일 2016.8.1.)

ARTICULO 4.- Requisitos.

Podrá ser nombrado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l costarricense que se encuentre en el ejercicio de sus derechos civiles y políticos; que sea mayor de treinta años, con solvencia moral y profesional de prestigio reconocidos. La Asamblea Legislativa designará una Comisión Especial, que analizará los atestados de las personas que opten por el puesto de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 conformidad con lo que prescriba el Reglamento de Orden, Dirección y Disciplina Interior de la Asamblea Legislativa.

제 4조: 4년에 한 번 임명되고, 재임이 한 번 가능하다. 1) 30세 이상의 2)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 가능한 3) 코스타리카 시민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덕적이고 직업분야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라면 옴부즈맨으로 임명될 수 있다.

ARTICULO 8.- Oportunidad del nombramiento.

El nombramiento d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be hacerse dentro del mes anterior al vencimiento de su período o a partir de la vacante del cargo.

제 8조: 옴부즈맨의 임명은 그 전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나 옴부즈맨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에 이루어진다.

과 직접적으로 협업해야 하고, 옴부즈맨이 특수하게 지정하는 역할을 충족하거나, 옴부즈맨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대리하기도 함<sup>2858</sup>).

2016년 현재 옴부즈맨 위원장(Defensora)은 Montserrat Solano Carboni (2014년 9월 9일부터 임기 시작)이고, 옴부즈맨 부위원장은 Juan Manuel Cordelo González (2015년 2월 26일부터 임기 시작)<sup>2859</sup>).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 기타 인권위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sup>2860</sup>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은 그들의 본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적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음. 단,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적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일,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업무는 예외에 해당함. 또한 옴부즈맨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의 경우 정치 및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옴부즈맨이나 부옴부즈맨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옴부즈맨법

---

2858)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http://www.dhr.go.cr/biblioteca/leyes/ley_7319.pdf) (검색일 2016.8.1.)

ARTICULO 10.- Designación y requisitos.

1.- La Asamblea Legislativa nombrará al Defensor Adjunto, de una lista de tres candidatos

propuestos por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a más tardar un mes después del nombramiento de éste. El Defensor Adjunto debe reunir los mismos requisitos exigidos

para el titular. Asimismo, estará sujeto a lo dispuesto para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n los artículos 2, 4, 6 y 9 de la presente Ley.

2.- Este funcionario será colaborador directo d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cumplirá las funciones que éste le asigne y lo sustituirá en sus ausencias

temporales.

제 10조

1. 부옴부즈맨의 경우 옴부즈맨이 추천하는 3인 중 한 사람을 의회에서 임명한다.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선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임명된다.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후략)

2. 부옴부즈맨은 옴부즈맨과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위치에 있고, 옴부즈맨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옴부즈맨이 임시적으로 부재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2859) [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espacho.html](http://www.dhr.go.cr/la_defensoria/departamentos/despacho.html) (검색일 2016.8.5.)

2860)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음.

에 대한 법규 (Reglamento)에 따라 직무 중단, 혹은 제명까지도 이루어  
짐(2861)2862).

2861)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ARTICULO 9.- Incompatibilidades y prohibiciones

1.- El cargo de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s incompatible con cualquier otro cargo, público o privado, que no sea docencia o la investigación universitarias.

2.-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debe renunciar a todo cargo incompatible con su función, dentro del término de los diez días siguientes a su nombramiento y antes de su juramentación.

3.- Ningún funcionario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podrá participar en actividades político-partidista.

4.-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no podrá ejercer profesiones liberales fuera del cargo, salvo en asuntos estrictamente personales, los de su cónyuge, hermanos, ascendientes y descendientes hasta el tercer grado de consanguinidad o afinidad, excepto que haya impedimento por la existencia de un interés directo o indirecto de la propi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제 9조: 옴부즈맨은 교육이나 대학 연구 차원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와 옴부즈맨으로서의 직무를 겸업할 수 없다. (9조 1항) 옴부즈맨사무소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들의 경우 정치 및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9조 3항) 옴부즈맨은 직무 외 다른 자유직에 종사 불가한데 배우자, 형제, 자녀, 부모, 가까운 친인척 (최대 3촌 tercer grado de consanguinidad 까지)의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asuntos estrictamente personales)은 예외.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가까운 친인척의 일의 내용이 옴부즈맨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사려된다면 겸직 불능 (9조 4항). 이러한 규제는 옴부즈맨사무소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해당.

2862) 행정법령 (Decreto Ejecutivo)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Reglamento) Artículo 19.- Incompatibilidades

Los cargos de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y de Defensor Adjunto son incompatibles con el ejercicio de cualquier otro cargo público o privado que impida la dedicación exclusiva a la función. Se exceptúan de esta prohibición aquellas actividades que resulten de obligaciones familiares o personales no lucrativas, los cargos que deban ejercerse en el cumplimiento de las funciones y atribuciones de la institución, y la docencia e investigación universitarias. En el caso de que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o el Defensor Adjunto incurriera, después de su nombramiento, en alguna de las incompatibilidades previstas en la ley, se seguirán, en lo aplicable, l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17 de este Reglamento.

제 19조: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은 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 다른 공·사적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이 경우 중 예외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적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일 등이 있다. 옴부즈맨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위치에 임명된 후 이 항목에 따르지 않는다면 동 규제 17조(업무 중단)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sup>2863</sup>).
-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위원장에게는 특별한 면책(immunity)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는 옴부즈맨위원장의 업무 수행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임<sup>2864</sup>).
- (6) 해임, 직무 중단, 사임, 경질 및 공석<sup>2865</sup>(2866)

286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ARTICULO 3.- Designación.

La Asamblea Legislativa nombrará a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por un período de cuatro años, mediante mayoría absoluta de los diputados presentes. *El Defensor podrá ser reelegido únicamente por un nuevo período.* (옴부즈맨은 한 번 더 재임명되어 새로운 임기동안 일할 수 있다.)

2864) <http://www.corteidh.or.cr/tablas/R08066-5.pdf> (검색일 2016.8.12)

2865)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ARTICULO 6.- Causas de cesación.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cesará en sus funciones, por cualquiera de las siguientes causales:

- a) Renuncia a su cargo.
- b) Muerte o incapacidad sobreviniente.
- c) Negligencia notoria o por violaciones graves al ordenamiento jurídico en el cumplimiento de los deberes de su cargo.
- ch) Incurrimiento en cualquiera de las incompatibilidades previstas en esta Ley.
- d) Haber sido condenado, en sentencia firme, por delito doloso.

제 6조

옴부즈맨의 업무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직무포기
- b. 사망, 혹은 질병으로 인한 위독상태
- c.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명백한 과실 및 소홀함: 이 경우에는 의회위원장이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옴부즈맨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실시, 근무일 기준 15일 내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7조)
- ch. 법 7319의 맥락과 합치하지 않는 직무 수행
- e. 범죄나 사기죄 확정 판결시

ARTICULO 7.- Vacante.

1.- La Asamblea Legislativa debe declarar vacante el cargo de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cuando se presente una de las causales previstas en los incisos a), b), ch) y d) del artículo anterior.

2.- En el caso del inciso c) del artículo anterior, el Presidente nombrará una Comisión que le dará audiencia a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 informará a la Asamblea Legislativa, el resultado de la investigación, en el

término de quince días hábiles.

제 7조: 옴부즈맨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후략)

2866) 행정법령 (Decreto Ejecutivo)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Reglamento)

Artículo 16.- Renuncia

La renuncia al cargo deberá ser presentada ante la Asamblea Legislativa y surtirá efectos a partir de su presentación. En caso de renuncia d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l Defensor Adjunto lo sustituirá en tanto la Asamblea Legislativa declare la vacante del cargo y designe al nuevo titular.

제 16조: 업무 포기 / 사직

직무 사임은 의회에서 공표되어야 하고, 그 시점부터 발효된다. 옴부즈맨이 사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부옴부즈맨이 대행할 것을 의회에서 공표하게 된다.

Artículo 17.- Negligencia notoria o violaciones graves

Cuando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incurra en negligencia notoria o violaciones graves al ordenamiento jurídico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el Presidente de la Asamblea Legislativa nombrará una Comisión Especial para que realice, en el término de quince días hábiles, una investigación sumaria sobre los hechos y actuaciones cuestionados. Dicha Comisión dará audiencia al funcionario para que presente su defensa, y respetará durante toda la investigación los principios del debido proceso.

Una vez finalizado el procedimiento, se presentará al plenario un informe sobre los resultados de la investigación. 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podrá comparecer ante la Asamblea Legislativa a defender sus actuaciones. Concluida la discusión del mismo, la cual se realizará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del Reglamento de Orden, Dirección y Disciplina de la Asamblea Legislativa, el informe será sometido a votación. Si este es desfavorable a la actuación del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y es aprobado, el plenario podrá declarar por mayoría absoluta de los diputados presentes, la vacante del cargo.

Para investigar la negligencia notoria o las violaciones graves al ordenamiento jurídico en que pudiera incurrir el Defensor Adjunto se aplicarán los mism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en este artículo.

제 17조: 특별위원회는 근무일 기준 15일 안의 신속조사 실시. 모든 과정은 변론을 제기하는 공무원(옴부즈맨) 측에 대해 적절하고 정중하게 진행된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변론할 수 있다. 그 후 의회 내 규제 (Reglamento de Orden, Dirección y Disciplina de la Asamblea Legislativa)에 따라 토의가 마무리되고,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투표 결과가 옴부즈맨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면 총회는 옴부즈맨에게 직무 사임을 공표하게 된다. 옴부즈맨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과정을 치르게 된다.

Artículo 18.- Vacante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직무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가) 사직·업무 포기: 의회에서 공표, 공표시점부터 발효. 옴부즈맨이 사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부옴부즈맨이 대행.
- (나) 사망, 혹은 질병으로 인한 위독 상태
- (다) 직무수행 중의 명백한 과실 및 소홀: 이 경우에는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옴부즈맨에 대한 청문회 개최.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실시, 15일간의 신속절차를 통한 조사 결과 발표.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변론 가능. 관련 토의가 마무리되면 투표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는 옴부즈맨에게 해임 공표.
- (라) 국가옴부즈맨 사부소법의 맥락과 합치하지 않는 직무 수행
- (마) 범죄나 사기죄 확정 판결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가능한 신속하게 임명하여야 함.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2867)2868)2869)</sup>

---

En caso de que se produzca la vacante del cargo de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o de Defensor Adjunto, la Asamblea Legislativa deberá proceder de inmediato a nombrar a quien habrá de ejercerlo por el resto del período, utilizando para ello el mismo procedimiento previsto por la ley y el Reglamento de Orden, Dirección y Disciplina Interior.

제18조: 옴부즈맨 위원장이나 옴부즈맨 부위원장의 자리가 공석이라면 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 절차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임명하여야 한다.

2867) 행정법령 (Decreto Ejecutivo)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Reglamento) Artículo 6º- Atribuciones generales

Corresponderá a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las siguientes atribuciones generales:

- 1) Proteger los derechos e intereses de los habitantes frente a amenazas, perturbaciones, restricciones o violaciones provocadas por acciones u omisiones provenientes de la actividad administrativa del sector público.
- 2) Velar porque el funcionamiento del sector público se ajuste a lo prescrito por la moral, la justicia y el ordenamiento jurídico.
- 3) Velar por el buen funcionamiento, la eficiencia y la agilización en la prestación de los servicios públicos.
- 4) Desarrollar programas para la promoción y divulgación de los derechos de los

habitantes.

제6조 옴부즈맨사무소의 주요 업무

- 1) 협박, 방해, 제약, 인권침해 및 공공부문에서 존재하는 행정적인 행동 및 누락 등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및 이익 보호
- 2) 공공부문에서의 기능 유지를 통해 도덕, 사회정의, 법적명령 등의 교정 조정
- 3) 공공부문에서의 효과, 개선, 혜택 등의 순기능 유지
- 4) 모든 사람의 권익(derechos e intereses)을 위한 홍보 및 지식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868) 행정법령 (Decreto Ejecutivo) No. 22266: 국가옴부즈맨법에 대한 법규 (Reglamento) Artículo 7º- Otras atribuciones

Corresponde también a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 a) Proponer para los derechos e intereses de los habitantes, o bien, recomendar la adopción de regulaciones en caso de alguna normativa.
- b) Estudiar los proyectos de ley para determinar si lesionan los derechos e intereses de los habitantes.
- c) Procurar el establecimiento y consolidación al interior de las instituciones públicas de instancias encargadas de velar por el buen funcionamiento de los servicios que prestan.
- ch) Velar por el cumplimiento de las normas y programas que constan en instrumentos jurídico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y que tienen como objetivo la tutela y promoción de los derechos de los habitantes.
- d) Divulgar los programas y las actividades de las instituciones u organismos que trabajan en la promoción y tutela de los derechos e intereses de los habitantes.
- e) Incentivar la participación organizada de los habitantes para que colaboren en la tutela de sus propios derechos e intereses.
- f) Promover y coordinar lo necesario con las dependencias responsables para que los establecimientos de enseñanza incluyan en sus programas la enseñanza sobre los derechos de los habitantes.
- g) Desarrollar actividades, realizar estudios, investigaciones, preparar informes, publicaciones y campañas con el propósito de hacer conciencia en los diversos sectores de la población sobre la importancia de estos derechos.
- h) Establecer y mantener comunicación con las diferentes organizaciones públicas y privadas, nacionales o extranjeras, encargadas de la defensa y promo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 i) Participar en eventos internacionales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u otros que se relacionen con sus objetivos.

제 7조 기타 업무

- a) 권익 보호를 위한 규범적 규제에 대해 권고
- b) 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안 검토
- c) 각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수립 및 보강에 진력
- ch) 국내 및 국제사법기구를 형성하고 인권수호의 목적을 지닌 규율과 프로그램 수

옴부즈맨사무소는 코스타리카 내의 모든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 부문 및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차원에서 도덕, 정의, 헌법, 국내법 및 국제법의 가치가 부합할 수 있게 도움<sup>2870</sup>).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에 대해 알리고, 옹호하는 일 역시 옴부즈맨사무소의 중요한 역할<sup>2871</sup>).

- (1)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조사 및 규제
  - (가) 공공부문<sup>2872</sup>의 특정 행정조치에 의해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진정에 대한 조사나 직권 조사 시행.
  - (나) 인권침해 케이스 조사 후 적절한 권고, 혹은 필요에 따라 재심사 이행. 특히 성추행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 후속조치 취함. 전반적으로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당국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해 감시.
-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협업
  - (가) 공공부문에서의 효과, 개선, 혜택 등의 순기능 유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 검열 실시.
  - (나) 공공기관의 순기능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수립 및 보강에 진력
  - (다) 모두의 권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하는 민간의 조직적 참여 촉진

---

행 유지

d) 권익 보호 및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활동 보급

e) 모두의 권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협업하는 민간의 조직적 참여 증진

f)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습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책임 기관들과 협력, 필요에 따른 증진 및 편성

g)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 연구, 조사, 보고서, 출판, 캠페인 등 개발

h) 인권옹호와 홍보를 책임지는 다양한 공·사, 국내·국제기관들의 소통 확립 및 유지

i) 인권 및 인권 관련 국제행사 참여

2869) [http://www.dhr.go.cr/la\\_defensoria/](http://www.dhr.go.cr/la_defensoria/) (검색일 2016.9.27.)

2870) <http://www.corteidh.or.cr/tablas/R08066-5.pdf> (검색일 2016.8.12.)

2871) [http://www.dhr.go.cr/preguntas\\_frecuentes.html](http://www.dhr.go.cr/preguntas_frecuentes.html) (검색일 2016.8.1.)

2872) 공공부문(Sector Público)이란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스템 확보를 목적으로 형성된 기관들의 모임. 국가기관, 자치기관, 시 기관, 국가은행, 공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포함.

- (라) 인권옹호와 홍보를 책임지는 다양한 공·사, 국내·국제기관들의 소통 확립 및 유지
- (3) 인권교육 홍보
  - (가) 모든 사람의 권익(derechos e intereses)을 위한 홍보 및 지식 보급 프로그램 개발
  - (나) 국내 및 국제사법기구를 형성하고 인권수호의 목적을 지닌 규율과 프로그램 수행 유지
  - (다) 권익 보호 및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활동 보급
  - (라)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습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책임 기관들과 협력, 필요에 따른 증진 및 편성
  - (마)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 연구, 조사, 보고서, 출판, 캠페인 등 개발
- (4) 법적 조치
  - (가) 모든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범 및 규제 제안
  - (나) 새로운 법안에 대한 기준점 제공 법안의 인권 침해 가능성 검토
  - (다) 도덕, 사회정의, 법적명령 등 조정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역동적이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 사무소들을 통해 접근성을 살리고, 국가적인 규모의 합법성과 영향권을 지님. 법적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의 현실에 적합한 혁신적인 개입 전략을 형성. 공공부문 관리와 코스타리카 내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권익에 대한 예방, 옹호,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정의와 도덕성 형성, 공공부문의 행위 및 비행위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sup>2873</sup>).

옴부즈맨은 연간보고를 통해 의회에 옴부즈맨사무소의 주요 활동을 알릴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알리거나 특정 법

2873) [http://www.dhr.go.cr/la\\_defensoria/](http://www.dhr.go.cr/la_defensoria/) (검색일 2016.9.27.)

령에 대한 권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법과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자문을 제공하기도 함. 또한 인권교육 및 홍보,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sup>2874</sup>).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6년 10월, 2011년 10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875</sup>)

## 2) 코스타리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업무 및 활동 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진정 (Denuncia, 혹은 Queja) 제도

(가) 진정이란 한 개인이 공공부문의 기관이나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 이행으로 인해 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에 옴부즈맨사무소에 청원하는 제도. 진정제도를 통해 옴부즈맨사무소는 코스타리카 내 모든 개인이 인간다운 존중을 누리기 위한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함<sup>2876</sup>). 공공부문(Sector Público)이란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형성된 기관들의 모임. 국가기관, 자치기관, 시 기관, 국가은행, 공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포함됨.

(나)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노인, 미성년자 등 코스타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해당되고, 공공부문 및 그 관계자의 부적합한 업무 이행으로 인해 개인의 권익에 대한 손해를 겪은 사람. 또한, 굳이 누군가가 진정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옴부즈맨사무소가 특정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

(다) 진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해당. 단, 진정 내용이 사법부와

---

2874) <http://www.corteidh.or.cr/tablas/R08066-5.pdf> (검색일 2016.8.12.)

287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2876) <http://www.dhr.go.cr/denuncias/> (검색일 2016.8.10.)

관련이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또한 신청된 진정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사법부의 결정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대기하고 있다면<sup>2877)</sup> 옴부즈맨사무소에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

(라) 2013년,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30,000여건의 진정 및 불만사항을 접수 받음<sup>2878)</sup>.

(마) 진정처리과정(Flujo de la Denuncia)<sup>2879)</sup>:

① 접수 (Recepción)

옴부즈맨사무소에 제기되는 진정은 특별한 비용이나 형식 없이 방문 접수(서면, 구두, 수화 모두 가능), 전화 통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진정인의 이름과 신분, 거주지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함<sup>2880)</sup>. 6 개 지역사무소와 산호세 중앙사무소 모든 곳에서 가능.

② 등록 (Registro)

진정이 등록되려면 신청인은 본인의 신상(이름, 신분, 거주지)과 사실 관계 내용, 그리고 옴부즈맨사무소 측에서 진정인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제안에 대해 설명해야 함.

③-1 허가 (Admisión)

모든 진정은 ‘개입요청(solicitud de intervención)’으로 분류되어 권리 침해 사실이 옴부즈맨사무소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진행. 구체적인 절차(trámite)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 허가됨.

2877) <http://www.corteidh.or.cr/tablas/R08066-5.pdf> (검색일 2016.8.12.)

2878) [http://www.nacion.com/nacional/politica/Defensoria\\_de\\_los\\_Habitantes-Defensor-denuncias-quejas\\_0\\_1427457426.html](http://www.nacion.com/nacional/politica/Defensoria_de_los_Habitantes-Defensor-denuncias-quejas_0_1427457426.html) (검색일 2016.9.27.)

2879) [http://www.dhr.go.cr/denuncias/flujo\\_denuncia/Flujo%20Denuncia%20DHR.jpg](http://www.dhr.go.cr/denuncias/flujo_denuncia/Flujo%20Denuncia%20DHR.jpg) (검색일 2016.8.10.)

2880)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ARTICULO 17.- Interposición de reclamo o queja.

1.- La intervención ant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se solicitará sin costo alguno y sin formalidades especiales, de modo verbal o escrito. Sin embargo, el reclamante debe indicar su nombre, sus calidades y su domicilio exactos.

제 17조 1항: 옴부즈맨사무소에 제기되는 진정은 특별한 비용이나 형식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이름과 신분, 거주지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2 불허 (Inadmisión)

옴부즈맨사무소에서 특정 진정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인 측에 대안적인 해결책의 가능성 제공.

④ 절차 (Trámite):

개입요청이 허가되어 받아들여지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됨:

개입 전략 정의

진정 대상 기관이 신고되었던 이유 및 관련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소통 진행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조사 진행: 전화 통화, 이메일, 방문, 시찰, 미팅 등

옴부즈맨사무소는 이 과정을 거칠 때 진정의 대상이 된 해당 공무원과 그 상사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구에 통보해야 함. 해당 공무원 및 기관은 통보시점으로부터 5일 안에 옴부즈맨사무소에 직접 출두해서 변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음<sup>2881</sup>).

⑤ 이행 (Seguimiento)

옴부즈맨위원장은 2개월 안에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림<sup>2882</sup>). 최종 결정 (informe final)이 내려지고 나면 개입요청은 수행 단계를 거치게 됨. 각 사건별로 수행전략을 짜고 권고사항을 완수하기 위한 행동을 집행함.

2881)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ARTICULO 20.- Trámite de la investigación.

Admitida la queja,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iniciará la investigación que juzgue conveniente, la cual deberá ser sumaria e informal. En todo caso, notificará el acto que la admite a la dependencia administrativa correspondiente, para que su jefe y el funcionario denunciado, obligatoriamente, remitan el informe respectivo en un plazo perentorio de cinco días hábiles. El funcionario podrá apersonarse ant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para ofrecer las pruebas de descargo que estime convenientes y formular el alegato procedente; de todo quedará constancia en un expediente levantado al efecto.

제 20조: (전략) 이러한 사실[조사절차 진행]에 대해 사무소는 진정의 대상이 된 해당 공무원과 그 상사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진정 대상인 공무원과 그 상부기관은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 옴부즈맨사무소에 직접 출두해서 본인 변호를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후략)

2882) <http://www.corteidh.or.cr/tablas/R08066-5.pdf> (검색일 2016.8.12.)

⑥ 재심사 (Recurso de Reconsideración)<sup>2883)</sup>

옴부즈맨사무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난 지 8일(근무일 기준) 한에 재심사 과정 신청 가능.

나)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sup>2884)</sup>

국가옴부즈맨사무소의 목적은 공공부문(sector público)에서 법과 도덕 관념을 지킴으로서 코스타리카 내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음. 옴부즈맨사무소는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의 임명, 예산 최종 승인, 연간 보고 등에 있어 의회와 밀접하게 업무를 하면서도 예산을 책정받는 부분에서는 의회와 별개로 재무부를 통해 예산을 받음.

국가옴부즈맨사무소는 의회와 협업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무소의 활동은 다른 국가기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나, 법무장관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이나 법원 등의 권한에 따른 감독 하에 있음.

3) 코스타리카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가) 피해자 구제

구체적인 진정에 대한 내용 및 결정 사항은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옴부즈맨사무소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구제 사례가 두 가지 공개되어 있음. 관련 조사 내용 및 권고사항은 당시 삶의 질 분야과 (Dirección del Area de Calidad de Vida)<sup>2885)</sup>와 함께 협업.

(1) 살충제(DBCP Nemagón)<sup>2886)</sup> 확대 (Expediente 250-23-98)

2883) 국가옴부즈맨사무소법 (Ley 7319)

ARTICULO 22.- Recurso contra las decisiones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Contra las decisiones, las actuaciones y los informes de la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solo procederá el recurso de reconsideración, dentro de los ocho días hábiles posteriores a partir de la notificación.

제 22조: 옴부즈맨사무소의 결정(중략)에 반대하는 경우는 재심사 요청(el recurso de reconsideración)만이 가능하다. 재심사는 결정이 내려진 후 8일 안에 진행된다.

2884) [http://www.dhr.go.cr/la\\_defensoria/](http://www.dhr.go.cr/la_defensoria/) (검색일 2016.9.27.)

2885) 코스타리카 국가인권기구 조직 설명 내 '삶의 질 향상과'와 유사하나, 동일한 명칭이 아님. '삶의 질 향상과'가 가장 최근의 부서 명칭인 것으로 보임.

바나나 플랜테이션 및 바나나 관련 사업자들의 대표들이 옴부즈맨사무소에 조사 요청. 농부들이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위해 DBCP를 사용, 그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sup>2887)</sup>을 받게 됨. 이러한 농부들에게 관련 공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정 수리. 옴부즈맨사무소는 세부 조사를 거친 후, 기관별로 자세한 권고사항(권고 대상)을 제안함.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가) (정부 내각 Consejo de Gobierno) DBCP 사용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부와 그 가족에게 사회보장금 제공 보장
- (나) (보건부 Ministro de Salud)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불임을 포함한 DBCP 노출에 따른 결과에 대해 환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 (다) (생활환경보호팀 Unidad de Protección al Ambiente Humano) MAG/SALUD 부서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검토
- (라) 국내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도입, 국가생명보험협회 (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농목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세관부(Dirección General de Aduanas)와 협력.
- (마) (DBCP로 고통받는 인구 밀집지역의 병원·보건소 담당자들 A los Directores de Hospitales y Clínicas de las zonas donde se concentran de población afectada) DBCP에 노출되어 관련 증상을 보이는 농부들에게 진단, 주의, 진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
- (바) 병원 및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특정 농부 및 개인에게 신장암이나, 췌장암, 간암이나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겪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에 대해 다방면적 접근을 통해 살핌.

2886) DBCP (Dibromochloropropane)는 바나나에 치는 농약의 한 종류, Nemagón은 DBCP의 브랜드명. <http://www.bananasthemovie.com/nemagon> (검색일 2016.8.12.)

2887) 신체 마비, 불임,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 암에 걸릴 가능성 증가 등. <http://www.bananasthemovie.com/nemagon> (검색일 2016.8.12.)

(2) 코발트 조사(照射) 방사선 과도 노출<sup>2888</sup>) (Expediente IO-1574-23-96)

당시 옴부즈맨 위원장이 1997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San Juan de Dios 병원에서의 코발트 방사선 치료에서 과도한 방사선이 조사(照射)되는 바람에 115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 San Juan de Dios 병원의 병원장과 방사선치료 의사들을 포함한 의사들과 보건부 내의 세부 기관 관련자들이 함께 협업. 옴부즈맨사무소는 세부 조사를 거친 후, 권고 대상기관 및 개인마다 그 특성에 맞는 상세한 권고사항을 제안함.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가) (San Juan de Dios 병원 의과과 la Dirección Médica del Hospital San Juan de Dios) 어떤 의료서비스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자세히 살피고, 그 중 특히 삶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을수도 있는 환자들이라면 더욱 각별히 주의.
- (나) 전리방사선에 대한 보호 법규(el Reglamento sobre la Protección contra las Radiaciones Ionizantes)의 조항들을 철저히 준수
- (다) (코스타리카사회보험 의료관리과 (la Gerencia Médica de la 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방사선에 노출된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방사선 과도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결과 및 가능성을 모두 알림.
- (라) 20 000 000 코스타리카 콜론(한화로 약 403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여 방사선에 영향을 받은 장소 및 공간, 식품, 약품 등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필요 충족
- (마) (보건부 Ministro de Salud) 코스타리카사회보험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들과 암 예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임.
- (바) 코스타리카 원자력위원회 (la Comisión de Energía Atómica de Costa Rica)와 소통, 국내 혹은 국제적인 단위로 이러한 이슈를 놓고 일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지 계속.

---

2888) [http://www.dhr.go.cr/biblioteca/resoluciones/exp\\_1574-23-96\\_irradiacion\\_cobalto.pdf](http://www.dhr.go.cr/biblioteca/resoluciones/exp_1574-23-96_irradiacion_cobalto.pdf)  
(검색일 2016.8.12.)

## 나) 교육

### (1) 온라인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sup>2889)</sup>

국내 다양한 인권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인권교육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옴부즈맨사무소는 온라인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창설함. 여러 기구들의 지식 교환과 경험 공유, 참여 기관들의 인권교육 매커니즘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사무소 인권옹호·홍보과를 중심으로 진행. 공교육부 (Ministerio de Educación Pública, MEP), 국립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국가여성연구원 (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 INAMU), 코스타리카 공과대학 젠더사무소 (Oficina de Género del Instituto Tecnológico de Costa Rica), 법무부 소속 Zurquí 소년원 (el Centro Juvenil Zurquí del Ministerio de Justicia y Pas), 사법부 법학과 (la Escuela Judicial del Poder Judicial), 문화부 (Ministerio de Cultura),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사회행동 (Acción Social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y la Adolescencia)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

### (2) Talamanca 지역 선주민들의 인권교육 증진

옴부즈맨사무소는 공교육부와 학생생활과 (Dirección de Vida Estudiantil)의 협력을 통해 Talamanca 지역 선주민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함<sup>2890)</sup>. 교육기관들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을 알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인권을 증진합니다 (Yo promuevo Derechos, 영문 I promote rights)’ 전략 프로그램을 형성,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이 지역봉사활동(총 30시간)에 참여함을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생들의 실습을 통한 인권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인권교육 및 자기 성장에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하거나 접하는 커뮤니티에서 직접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맡을수 있게 됨. 옴부즈맨사무소는 지역의 5개 중학교 (Shiroles, Sureka, Boca Cohen, Alto Cohen, 그리고 Gavilán Vesta 중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소개함.

2889) <http://www.dhr.go.cr/actualidad/boletines/2015/julio/0.999.Red%20de%20Educacion%20en%20DD.HH%2002-07-2015.pdf> (검색일 2016.8.11.)

2890) <http://dhr.go.cr/actualidad/boletines/2016/junio/9994.boletin-DHtalamanca.pdf> (검색일 2016.8.11.)

-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로상 (Premio Aportes para el Mejoramiento de la Calidad de Vida) 경연대회<sup>2891)</sup>

1993년부터 코스타리카대학교 산업공학부 (la Escuela de Ingeniería Indust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가, 1995년부터 옴부즈맨사무소가 주최하는 경연으로, 코스타리카 내 다른 대학들과 더불어 개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 내 구성원들(개인, 법인,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분야(산업, 관광, 교육, 문화, 건강, 농업, 건축 외 다양)별 참여,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용 및 개발, 사회·경제·환경·생산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발표. 대학생들이 팀을 꾸려 참여 가능.

- (4) <인권교육 및 창의성 교육: 새로운 방법 (Educación en Derechos Humanos y la Creatividad: nuestra metodología)>

2012년,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사무소의 인권옹호·홍보과 (Dirección Promoción y Divulgación de Derechos)가 과테말라와 노르웨이 두 국가 내의 국가인권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협력한 IBSEN 프로젝트 (Proyecto IBSEN)<sup>2892)</sup>를 통해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그에 대해 펴낸 책자. 프로그램은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두 곳에서 진행됨.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민중의 적(1882)> 공연을 통해 공연 참가자들부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인권교육적인 접근을 꾀함. 공연은 코스타리카대학교(Universidad de Costa Rica)와 과테말라 San Carlos 대학교 (Universidad de San Carlos)의 공연예술학부(La Escuela de Artes Escénicas), 그리고 독립적인 연극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공연을 만들어내고, 공연에 대해 대화하고, 생각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의 모델을 통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을 통해 인권에 대해 배우고, 또 옹호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sup>2893)</sup>

---

2891) [http://www.dhr.go.cr/actualidad/premio\\_calidad\\_vida.html#HERMES\\_TABS\\_2\\_0](http://www.dhr.go.cr/actualidad/premio_calidad_vida.html#HERMES_TABS_2_0) (검색일 2016.8.8.)

2892)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이름을 따 명명된 프로젝트. 인권교육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극(teatro; theatre)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의 특성 역시 반영되어있음.

2893) [http://www.dhr.go.cr/biblioteca/publicaciones/derechos\\_humanos\\_creatividad.html](http://www.dhr.go.cr/biblioteca/publicaciones/derechos_humanos_creatividad.html) (검색일 2016.8.11.)

다) 홍보

(1) 옴부즈맨사무소 내의 언론·미디어 부서(Departamento Prensa)의 최신 공보(boletines)를 월 단위로 공식 웹사이트<sup>2894)</sup>에서 확인 가능.

(2)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2009년 9월부터 페이스북<sup>2895)</sup> 페이지, 2015년 1월부터 트위터<sup>2896)</sup> 계정을 통한 홍보 시작. 적극적인 포스팅을 통해 옴부즈맨사무소의 간략한 입장 표명이나 권고사항, 최신 뉴스, 행사 및 세미나, 방송자료(TV, 라디오), 인권 관련 기념일 및 인권 관련 문구 등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음.

(3) 국제 평화의 날 기념 인권사진전<sup>2897)</sup>

옴부즈맨사무소는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코스타리카 공과대학 (el Instituto Tecnológico de Costa Rica), 원격교육국영대학 (la Universidad Estatal a Distancia), Veritas 대학교 사진대학 (la Escuela de Fotografía de la Universidad Veritas)과 유엔평화대학 (la Universidad para la Paz)과 협력하여 2016년 9월 21일 국제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제 2회 사진 경연대회를 개최, 관심있는 아마추어 사진가(전문가, 비전문가 모두 가능)를 모집하고자 2016년 5월에 관련 정보 공고. '4가지 자유'라는 구호를 주제로 하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자유와 필수품(의식주) 부족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자유 (la libertad de vivir libres de necesidad)에 대한 사진들을 모집. 출품되는 사진들은 인권교육이나 전시회, 책자, 워크샵 등에서 사용될수 있음.

라) 정책 개선

옴부즈맨사무소의 연간 보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개인자율법 (Proyecto de Ley dr Autonomía Personal)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권고사항에 장애인의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국

2894) <http://www.dhr.go.cr/actualidad/boletines/2016.html> (검색일 2016.8.8.)

2895) <https://www.facebook.com/defensoriacr> (검색일 2016.8.11.)

2896) <https://twitter.com/defensoriacr> (검색일 2016.8.11.)

2897) [http://www.dhr.go.cr/actualidad/ultimas\\_noticias/00\\_premiofoto.pdf](http://www.dhr.go.cr/actualidad/ultimas_noticias/00_premiofoto.pdf)  
(검색일 2016.8.5.)

내 프로젝트인 장애에 대한 국가정책 (La Política Nacional sobre Discapacidad, PONADIS)<sup>2898</sup> 측의 빈곤 퇴치나 사회적 보호 제도 등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sup>2899</sup>이 발견됨. 이에 따라 옴부즈맨 위원장은 이러한 한계점 개선에 대해 권고.

마) 사법부 의견 제출: 해당사항 없음.

단, 옴부즈맨사무소의 연간보고서 및 연설을 통해 의회에는 의견 제출이 이루어짐.

바) 주요 인권 이슈

(1) 소수민족/인종 차별 (National/Racial/Ethnic Minorities)

2015년, 옴부즈맨사무소는 아프리카계열 커뮤니티(Afro-descendant population)의 대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 의회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assembly)의 심리에 참여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논의<sup>2900</sup>. 옴부즈맨사무소는 코스타리카 내에 차별에 대한 적절한 장치, 차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그리고 차별의 주체에 대한 제재 확립 등을 마련할 법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 표명. 2015년 6월 11일, 의회의 개헌 승인과 8월 26일의 대통령 서명을 통해 코스타리카는 공식으로 ‘다민족 및 다문화의 나라’로 공표됨. 그 후 대통령은 아프리카계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대통령령 위원(presidential commissioner)을 임명, 대통령령 아프리카계 민족 위원 사무실 (El Despacho del Comisionado de Asuntos de la Afrodescendencia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이 세워지게 됨<sup>2901</sup>.

(2) 지속가능개발목표

---

2898) 코스타리카 장애인국가이사회(Consejo Nacional de Personas con Discapacidad) 소속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 [http://www.cnree.go.cr/el\\_conapdis/marco\\_legal/plan\\_de\\_accion\\_de\\_la\\_ponadis.aspx](http://www.cnree.go.cr/el_conapdis/marco_legal/plan_de_accion_de_la_ponadis.aspx) (검색일 2016.8.10)

2899) Informe de Labores de la Defensor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2016/6/27). Asamblea Legislativa. <http://www.dhr.go.cr/actualidad/discursos/0.887.DISCURSO%202016.pdf> (검색일 2016.8.12.)

2900) 출처: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 for 2015: Costa Rica.

2901) <http://presidencia.go.cr/afrodescendencia/> (검색일 2016.8.22.)

2016년 연간보고서의 두 파트 중 첫 번째 파트로 상당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퇴치(목표 1), 양질의 교육 (목표 4), 젠더평등 (목표 5), 불평등 감소 (목표 10), 생태계 보호 (목표 15) 등이 강조됨<sup>2902</sup>. 코스타리카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예시<sup>2903</sup>가 될 정도로 이러한 목표들에 대해 적극적인 편으로, 옴부즈맨사무소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함. 특히:

- (가) 빈곤퇴치에 있어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들의 삶에 있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방면적인 접근을 통해 빈곤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
- (나) 불평등에 대해서는 예전에 차별금지법안(Proyecto de Ley Marco para Combatir Toda Forma de Discriminación)을 주장했던 바 있음. 또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 및 그룹에게 있어 소속감을 주고, 코스타리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국제인권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권고.

(3)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요금 정찰

2015년 8월, 버스요금 고정에 대한 공공서비스규제당국(Autoridad Reguladora de Servicios Públicos, ARESEP) 측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지닌 개인 및 기관 관계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가지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음. ARESEP의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오해를 풀고, 솔직하고, 진행적이고, 투명하고,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진행할수 있도록 옴부즈맨사무소가 2일간의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sup>2904</sup>. 버스비 전자결제(pago electrónico)제도가 소개되며 요금 인상의 가능성과 교통카드(tarjeta)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안적 제도의 부재, 그에 대한 불만 및 ARESEP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옴부즈맨사무소는 공공사업부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

2902) Informe de Labores de la Defensor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2016/6/27). Asamblea Legislativa. <http://www.dhr.go.cr/actualidad/discursos/0.887.DISCURSO%202016.pdf> (검색일 2016.8.12.)

2903) [http://www.dhr.go.cr/actualidad/ultimas\\_noticias/02\\_medio\\_ambiente.pdf](http://www.dhr.go.cr/actualidad/ultimas_noticias/02_medio_ambiente.pdf) (검색일 2016.8.12.)

2904) [http://www.dhr.go.cr/actividades/modelo\\_tarifas\\_autobuses/programa/programa.pdf](http://www.dhr.go.cr/actividades/modelo_tarifas_autobuses/programa/programa.pdf) (검색일 2016.8.12.)

Transportes, MOPT)에 이에 따른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함<sup>2905</sup>).

2016년, 옴부즈맨사무소는 ARESEP과 40여번이 넘는 회의를 통해 버스, 택시, 전기, 수도 등의 요금 및 가격 책정 과정에 있어 적극 참여. 공공재의 비용 고정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적 평등의 차원에서 모두가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힘<sup>2906</sup>).

#### (4) 젠더 및 LGBTI

##### (가) 직장 내 성추행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옴부즈맨사무소는 직장에서 벌어진 성추행 관련 개인진정(complaint) 151건을 접수받음. 국가여성연구원(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 INAMU; 영문명 National Institute of Women)는 그 중 31건의 조사를 맡아 지원·보고. 연구원에 따르면, 전 해(2014년)에 비해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은 연구원 측 인식제고 캠페인의 영향으로 보임<sup>2907</sup>).

##### (나) LGBTI 이슈

옴부즈맨사무소는 연간보고서 및 의회에서의 연설<sup>2908</sup>을 통해 국가에 동성결혼 (uniones entre personas del mismo sexo) 및 트랜스섹슈얼의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한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 또한, 옴부즈맨사무소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와 얘기합시다(Contá conmigo)’라는 캠페인 및 서명을 실시<sup>2909</sup>. 8가지의 이야기로 LGBTI 배경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지 얼마 되지 않아 18,00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지지의 반응을 끌

2905) <http://www.crhoy.com/archivo/defensoria-solicita-informe-sobre-el-pago-electronico-de-bus/nacionales/> (검색일 2016.8.12.)

2906) Informe de Labores de la Defensor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2016/6/27). Asamblea Legislativa. <http://www.dhr.go.cr/actualidad/discursos/0.887.DISCURSO%202016.pdf> (검색일 2016.8.12.)

2907) 출처: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 for 2015: Costa Rica.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3215.pdf> (검색일 2016.8.8)

2908) Informe de Labores de la Defensor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2016/6/27). Asamblea Legislativa. <http://www.dhr.go.cr/actualidad/discursos/0.887.DISCURSO%202016.pdf> (검색일 2016.8.12.)

2909) <http://www.crhoy.com/casi-18-mil-personas-se-apuntaron-a-decir-conta-conmigo/nacionales/> (검색일 2016.8.12.)

어냄. Monserrat Solano 움부즈맨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8가지 이야기가)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한 전환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밝힘.

(5) 이주민 및 선주민

움부즈맨사무소는 연간보고<sup>2910</sup>)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힘:

- (가) 이주민의 불법인신매매 (tráfico ilícito)에 대한 주의와 제재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이민법(Ley de Migración) 검토 및 개정을 국가에 권고.
- (나) 선주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선주민소위원회를 영구화 하고 의회에도 선주민 부서를 세워야 한다고 권고. 선주민 자치개발법(Proyecto de Ley de Desarrollo Autónomo de los Pueblos Indígenas)을 20년 전에 제안했었으나 검토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조만간 검토와 분석에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코스타리카는 유엔의 국제인권협약 및 선택의정서 대다수를 비준<sup>2911</sup>). 이와 더불어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차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참여한 것은 2009년<sup>2912</sup>).

(1) 코스타리카가 비준한 국제협약들 (비준 연도)<sup>2913</sup>)

---

2910) Informe de Labores de la Defensor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2016/6/27). Asamblea Legislativa. <http://www.dhr.go.cr/actualidad/discursos/0.887.DISCURSO%202016.pdf> (검색일 2016.8.12.)

2911) 유일하게 가입도 비준도 되어 있지 않은 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41&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41&Lang=EN) (검색일 2016.8.1.)

2912)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CRSession6.aspx> (검색일 2016.8.9.)

2913)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4](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4)

- (가)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93)
  - (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OP (2005)
  -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76)
  - (라) 사형제도 철폐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CPR-OP2-DP (1998)
  - (마) 강제실종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ED (2012)
  - (바)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6)
  - (사)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67)
  - (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8)
  - (자)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
  - (차)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OP-AC (2003)
  - (카)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OP-SC (2002)
  - (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PRD (2008)
- (2) 코스타리카는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일원

---

1&Lang=EN (검색일 2016.8.1.)

으로, 1889년부터 미주 지역 시스템에 합류.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는 1979년 5월 산호세에 세워져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 옴부즈맨사무소는 미주인권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CIDH)와 이베로아메리카 연방옴부즈맨(Federación Iberoamericana del Ombudsman, FIO) 등의 국제기구와도 종종 협업<sup>2914)</sup>.

(가) 2016년 6월, 코스타리카에서는 이베로아메리카의 국가 관료들이 모여 각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산과폭력(violencia obstétrica; 영문 obstetric violence.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도 특히 임신부에 대한 폭력을 일컫음<sup>2915)</sup>)에 대한 회담<sup>2916)</sup>이 개최. 이 회담을 통해 각 국가는 산과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의 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등을 명확하게 인식, 토론 및 연대행동을 진행.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의 주요개념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 진정서(peticiones)와 권고사항을 미주인권위원회와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님.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사무소, 이베로아메리칸 옴부즈맨연합(Federación Iberoamerica del Ombudsman, FIO), FIO의 여성옴부즈맨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유엔연구기금, PROFIO-GIZ<sup>2917)</sup> 지역 프로젝트,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 센터(Centro para la Justicia y el Derecho Intenacional, CEJIL; 영문명 Center for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과 공동으로 제휴. 미주인권재판소의 Elizabeth Odio 판사와 코스타리카 옴부즈맨사무소의 Montserrat Solano Carboni 옴부즈맨위원장 역시 참여하여 산과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차원의 책임에 대해 의견을 표명. 추가적으로 옴부즈맨사무소는 산과폭력이 다른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폭력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동

---

2914) <http://www.dhr.go.cr/enlaces.html> (검색일 2016.8.1.)

2915) <http://www.may28.org/obstetric-violence/> (검색일 2016.9.26.)

2916) [http://www.dhr.go.cr/actualidad/ultimas\\_noticias/01\\_violencia\\_obstetrica.pdf](http://www.dhr.go.cr/actualidad/ultimas_noticias/01_violencia_obstetrica.pdf) (검색일 2016.8.5.)

2917) FIO 구성원의 강화 (Fortalecimiento de los Miembros de la Federación Iberoamericana del Ombudsman, PROFIO)와 국제개발협회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영문직역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공동프로젝트.

안 이야기되지 않았으며, 성 및 재생산에 대한 건강 (salud sexual y reproductiva)에 대한 인권 증진 및 교육, 건강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4) 코스타리카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인권기구 현황

##### 가) 이주민·난민 영구포럼

(Foro Permanente sobre Población Migrante y Refugiada)

이주민·난민 영구포럼은 기관별, 분야별로 다양하고 다학문적인 배경을 지닌 국가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 이주 이슈에 대한 권한, 자격 및 관심을 지닌 여러 활동기관들을 위한 상호 작용적인 공간.

- (1) 설립: 1995년 11월, 미등록 외국인의 대규모 국외추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시 옴부즈맨이 다양한 기관들과 포럼을 개최. 그 결과 이주 현상 및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위한 지역적 및 국가 차원의 정책, 정책 실현 및 분석을 위한 포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옴부즈맨이 이주민·난민 영구포럼 사무국장 (la Secretaría Técnica del Foro Permanente sobre Población Migrante y Refugiada)의 역할을 맡게 됨. 2006년 12월, 옴부즈맨사무소는 포럼의 참여기관들과 양해각서 (Carta de Entendimiento; 영문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 국가적 및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기준점들을 확립.

##### (2) 주요 활동기관<sup>2918)</sup>:

- (가) 국제기구: 유엔난민기구(La Oficina del Alto Comisionado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os Refugiados, ACNUR), 국제이주기구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 OIM), 유엔인구기금(UNFPA) 등
- (나) 국가기관: 옴부즈맨사무소를 포함, 이민·출입국사무소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노동부 (Ministerio de Trabajo), 사법행정개선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el Mejor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CONAMAJ) 등

2918) 모든 기관의 목록은 [http://www.dhr.go.cr/migracion\\_refugio/foro/05\\_integrantes\\_foro.html](http://www.dhr.go.cr/migracion_refugio/foro/05_integrantes_foro.html) 에서 확인 가능. (검색일 2016.8.8)

- (다) 민간기관: 정의와 국제법 센터 (Centro para la Justicia y el Derecho Intenacional, CEJIL), 이주민사회권센터 (Centro de Derechos Sociales del Migrante, CENDEROS),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센터 (Centro Internacional para los Derechos Humanos de los Migrantes, CIDEHUM) 등
- (라) 학술기관: 코스타리카대학교 (Universidad de Costa Rica),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de Costa Rica), Paulo Freire 대학교 이주민지원협회(Asociación de Apoyo para Migrantes, Universidad Paulo Freire)
- (마) 기타: 평생축구협회 (Fundación Fútbol por la Vida), 루터 교회 (Iglesia Luterana), 민주주의를 위한 니카라과인 협회 (Asociación Nicaragüense por la Democracia) 등

(3) 활동기관들의 참여 형태:

- ① 구성원(Integrantes): 양해각서에 서명한 포럼 참가 단체
- ② 임시 및 초대인사(Instancias o personas invitadas): 이민이라는 주제에 관계가 있고, 포럼 중 한 세션 이상을 참여하며 세부적인 테마 개발이나 포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참가 단체

나)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메커니즘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contra la Tortura)<sup>2919)</sup>

(1) 설립

법 No. 9204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메커니즘 창설법 Creación del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contra la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를 근거로 하는 기관으로, 의회의 동법 입법을 통해 구금 철폐와 고문 및 비인간적인 처우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됨.

코스타리카는 고문방지협약(Convención contra la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 CAT)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el Protocolo Facultativo a la Convención contra la

2919) [http://www.dhr.go.cr/prevencion\\_de\\_la\\_tortura/index.html](http://www.dhr.go.cr/prevencion_de_la_tortura/index.html) (검색일 2016.8.10.)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 CAT-OP) 모두에 비준한 국가로, 국제적인 규모로는 고문방지소위원회 (Subcomité para la prevención de la tortura, SPYT)를 통해, 그리고 국내 적인 규모로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메커니즘(Mecanismo Nacional para la prevención de la tortura)을 통해 구금 철폐와 고문 및 비인간적인 처우 방지를 실현하고자 함.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메커니즘은 피구금자의 대우 와 권리 존중을 위한 인프라 상황 완화를 꾀하는 구체적인 보고서와 권고 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어떤 구금기관이든 방문할 수 있는 권 한을 지님.

(2) 주요 업무 및 권한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메커니즘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sup>2920</sup>):

- (가) 구금기관 내 피구금자 대우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고문 및 비인도적 인 대우에 반한 보호 강화.
- (나) 피구금자의 대우 및 환경 개선과 구금 및 비인도적인 대우 예방을 목 적으로 권한 있는 관계자 및 당국에 권고
- (다) 고문에 대해 존재하는 코스타리카의 법률 및 법안 적용에 있어 적극적 인 역할을 하고 피구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와 감시

다) 조직간 투명성 네트워크 (La Red Interinstitucional de Transparencia)

(1) 설립

2920) 법 No. 9204 제 5조 원문

ARTÍCULO 5.- Ámbito de intervención. Facultades del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Corresponderá al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ortura:

- a) Examinar periódicamente el trato que reciben las 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en lugares de detención. Lo anterior con el fin de fortalecer su protección contra la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
- b) Hacer recomendaciones a las autoridades competentes con el objeto de mejorar el trato y las condiciones de las 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y de prevenir la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
- c) Hacer propuestas y observaciones acerca de la legislación existente o de los proyectos de ley en materia de tortura, con el fin de desempeñar un papel activo en la adecuación de las normas jurídicas emitidas por el Estado costarricense para el fortalecimiento de la protección de las personas privadas de libertad.

2004년 11월 옴부즈맨사무소에 의해 형성. 헌법에 명시된 정보접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고, 공공분야 사업에서 투명한 행정을 진행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세워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간행물을 통해 공공행정 관련 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짐.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참여하는 공기관들의 예산, 수입, 지출, 투자, 급여지급총액, 경매, 상거래, 구매, 공급업자, 업무계획서, 업무 및 회계보고서, 증서, 협약, 기타 프로젝트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및 헌법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 공공기관의 업무 내용이 이행된 대로, 이해하기 쉽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가시화, 국민참여와 회계책임 증진, 부정부패 척결과 모든 사람들의 신뢰 회복을 꾀함.

(2) 참여기관<sup>2921)</sup>

(가) 국가기관: 옴부즈맨사무소, 의회, 이민·출입국사무소, 행정부 (Dirección General de Servicio Civil), 사법부 (Podel Judicial), 법무부 (Ministerio de Justicia y Paz), 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재무부, 경제산업부 (Ministerio de Economía, Industria y Comercio), 과학기술부 (Ministerio de Ciencia, Tecnología y Telecomunicaciones),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de Exteriores y Culto) 등

(나) 시 자치단체 (Régimen Municipal): San José시, Escazú시, Bélen시, Santa Ana시, Alajuela시, Moravia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칸톤위원회 (Comité Cantonal de Deportes y Recreación de Moravia) 등

(다) 분산부분 관련 단체 (Sector Descentralizado): 공공서비스규제당국 (Autoridad Reguladora de Servicios Públicos, ARESEP), 코스타리카 사회보험(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국가여성연구원 (INAMU), 코스타리카대학교, 유공소방대 (Benemérito Cuerpo de Bomberos) 등

---

2921) 모든 기관들의 목록은 <http://www.dhr.go.cr/transparencia/index.html> (검색일 2016.8.11.)에서 확인 가능. 국가기관 총 21개, 시 자치단체(Régimen Municipal) 총 17개, 분권화 관련 단체 (Sector Descentralizado) 총 18개, 그리고 NGO 및 기타 카테고리 총 6개 단체.

(라) NGO 및 기타: 중앙아메리카-유럽연합협의회 (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등

(3) 가입과정

(가) 공공단체가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는 해당 단체에 부정부패에 맞서는 가치 준수, 그리고 기관의 행정적 결정과 더불어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정치적 자발성을 요구함.

(나) 네트워크 가입 시의 기술적인 절차:

- 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식웹사이트 생성
  - ② 기관 내의 행정 정보 재수집 및 체계화
  - ③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형태로 정리된 최신정보를 공식웹사이트에 업로드
- 단체가 이러한 정보를 이미 공식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링크만 새로 개설.

13. 멕시코<sup>2922)</sup>

멕시코 국가 정보 <sup>2923)</sup>	
면적	1,960,000km <sup>2</sup>
인구	1억 2,174만명 (2015년 7월 기준)
수도	멕시코 시티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페인어
주요종교	카톨릭(90%), 기독교(5%), 기타(2.2%)
GDP	GDP (명목) : 12,252억불 (2015 전망치, EIU)
	1인당 GDP : 17,026불 (2015 전망치, EIU)

2922)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www.cndh.org.mx](http://www.cndh.org.mx)) 및 관련 제반 링크 접속이 불가능하여 조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음. 구글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경우 선택 가능한 옵션인 '저장된 페이지(Cached view)'를 통해 웹사이트의 일부 내용(각주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가 나와있는 경우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 열람)을 파악할 수 있었음. (저장된 페이지 예시: [www.wikipedia.org](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5CKM6egtTjgJ:www.cndh.org.mx/Comunicados+&cd=1&hl=en&ct=clnk&gl=kr; 진한 이탤릭 부분이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로부터의 링크. 위키피디아(<a href=))의 경우 역시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상당 차용, 조사 초반부와 일부 내용에 사용. (위촉연구원 주)

## 1) 멕시코 국가인권기구의 일반 현황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멕시코국가인권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de México, CNDH; 영문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exico)
- (2) 설립 연월일: 1989년 2월
- (3) 설립배경<sup>2924)2925)</sup>: 1847년 국민 옴부즈맨사무소 (Procuraduría de Pobres)이라는 기관이 동일한 이름의 법 (국민옴부즈맨사무소법 Ley de Procuraduría de Pobres)을 근거로 생겨남. 이 사무소는 주변 국가들의 옴부즈맨사무소(Defensorias del Pueblo)들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음. 1975년도에는 소비자를 위한 연방 옴부즈맨사무소(la Procuraduría Federal del Consumidor)이 수립되고, 1983년에는 Colima라는 도시 내에 이웃을 위한 시 옴부즈맨사무소 (la Procuraduría de Vecinos)가 세워짐. 1985년 5월 29일,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옴부즈맨사무소 역할을 하는 대학권리옴부즈맨 (la Defensoría de los Derechos Universitarios)이 세워짐. 1989년 2월 13일, 인권일반사무실(la Dirección General de Derechos Humanos)이 멕시코 연방 내무부(la Secretaría de Gobernación)에 세워짐. 그 전에 존재하던 다른 기관들보다 현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 사무실은 1990년의 대통령령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명명되고, 소속 부처로부터 자유로워짐. 국가인권위원회는 1992년 1월 28일 헌법 개정 (제 102조 b항)을 통해 세워지며 분권기관(agencia descentralizada)의 성격을 띠게 됨. 1999년 9월 13일 연방공식저널(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기재된 또 다른 헌법 개정을 통해 기능상 예산상의 자치성을 얻고, 멕시코 사법부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된 개체로 인정.

---

2923)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60407/1\\_73081.jsp?menu=m\\_40\\_4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merica/countries/20160407/1_73081.jsp?menu=m_40_40_20) (검색일 2016.8.12)

2924) <http://www.cndh.org.mx/Antecedentes> (검색일 2016.8.18.)

2925)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Mexico\)](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Mexico)) (검색일 2016.8.12)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근거법 및 상위법

(가) 1999년 멕시코 헌법 개정 후 102조 b항에 근거, 멕시코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운영과 예산에 있어서 자율적인 독립 법인기구’로 명시하면서 위원회의 성격이 확립되었음<sup>2926)</sup>

(나) 1992년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o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sup>2927)</sup>이 제정됨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지위, 운영, 권한, 주요업무 등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

(2) 법적 지위

국가기구, 헌법기구, 연방관할. 분권화 조직(organismo descentralizado)<sup>2928)</sup>.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가) 인원 및 부서<sup>2929)</sup>

---

2926) Artículo 102, B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l Congreso de la Unión y las legislaturas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en el ámbito de sus respectivas competencias, establecerán organismos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que ampara el orden jurídico mexicano, los que conocerán de quejas en contra de actos u omisiones de naturaleza administrativa provenientes de cualquier autoridad o servidor público, con excepción de los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que violen estos derechos.

멕시코연방 헌법 제 102조 b항 (중 일부 발췌)

연방 의회 및 입법관은 멕시코 법률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정부기관 혹은 공무원의 작위 및 부작위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연방 사법부는 제외한다.

El organismo que establezca el Congreso de la Unión se denominará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contará con autonomía de gestión y presupuestaria, personalidad jurídica y patrimonio propios.

이러한 기구를 국가인권회로 명명하며, 기능상 예산상 독립기구이다.

출처: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htm/1.htm> (검색일 2016.8.18), 세계주요 국가인권기구현황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2927)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세계주요 국가인권기구현황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2928) 출처: 세계주요 국가인권기구현황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2929)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사무국 (Secretaría Ejecutiva), 조사관 (Visitadores Generales)과 부조사관 (visitadores adjuntos) 외 전문가, 기술자, 행정직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더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Consejo Consultivo) 역시 존재.

① 위원장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의무사항 실행: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역할
- 인권위 내의 행정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세부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임용, 지휘, 조직화 등 총괄.
- 인권위의 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지시
- 내부규율에 따른 업무 분담 및 위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52조에 따라 멕시코 정부(Powers of the Union: 멕시코정부의 사법, 입법, 행정기관)에 인권위 연간 활동 내역 보고
-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당국 및 기관들의 협업에 대해 축하하고 기립.
-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물을 근거로 하는 공공 권고사항 승인 및 발표
- 국내에서의 더 나은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
- 예산사용 초안을 준비, 자문위원회에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6조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 및 공무원의 항소 시 상원 및 의회 앞에서 사실 관계 공표 및 권고사항 이행 강력 권고.
- 멕시코가 비준한 국제규약 및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는 연방, 주, 시 단위 기관들의 위헌적 행동에 대한 소 제기
- 동법 및 타 규율에 따른 기타 제반 업무

---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7.)

Artículo 5o.- La Comisión Nacional se integrará con un Presidente, una Secretaría Ejecutiva, Visitadores Generales así como el número de visitadores adjuntos y personal profesional, técnico y administrativo necesario para la realización de sus funciones.

La Comisión Nacional para el mejor desempeño de sus responsabilidades contará con un Consejo.

현재의 위원장은 Luis Raúl González Pérez로, 2014년부터 11월부터 임기 시작<sup>2930</sup>).

②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sup>2931</sup>):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 가이드라인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규율(Reglamento Interno)에 대한 승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기구들 앞에 발표하는 연간보고에 대한 의견 및 자문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혹은 해결한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다음 해의 예산 사용 제안에 대한 의견 제공

---

2930)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Mexico\)](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uman_Rights_Commission_(Mexico))  
(검색일 2016.8.22.)

2931)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9.)  
Artículo 19. El Consejo Consultivo de la Comisión Nacional tendrá las siguientes facultades: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I.- Establecer los lineamientos generales de actuación de la Comisión Nacional;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 가이드라인 수립
- II.- Aprobar el Reglamento Interno de la Comisión Nacional;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규율(Reglamento Interno)에 대한 승인
- III.- Aprobar las normas de carácter interno relacionadas con la Comisión Nacional;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관된 내재적 특성 기준 허용
- IV. Opinar sobre el proyecto de informe anual que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presente a los Poderes de la Unión;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기구들 앞에 발표하는 연간보고에 대한 의견 및 자문 제공
- V. Solicitar a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información adicional sobre los asuntos que se encuentren en trámite o haya resuelto la Comisión Nacional;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혹은 해결한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VI. Opinar sobre el proyecto de presupuesto para el ejercicio del año siguiente; y  
다음 해의 예산 사용 제안에 대한 의견 제공
- VII. Conocer el informe d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respecto al ejercicio presupuestal.  
예산연도에 대한 위원장의 보고 내용 숙지

- 예산연도에 대한 위원장의 보고 내용 숙지  
또한,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를 가지고, 참석한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함<sup>2932)</sup>. 정기회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특별회의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을 통해 이루어짐.

③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의무를 수행함<sup>2933)</sup>:

- 2932)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9.)  
Artículo 20.- El Consejo funcionará en sesiones ordinarias y extraordinarias y tomará sus decisiones por mayoría de votos de sus miembros presentes. Las sesiones ordinarias se verificarán cuando menos una vez al mes.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를 가지고, 참석한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한다. 정기회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Las sesiones extraordinarias podrán convocarse por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o mediante solicitud que a éste formulen por lo menos 3 miembros del Consejo, cuando se estime que hay razones de importancia para ello.  
특별회의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 2933)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9.)  
Artículo 22. La Secretaría Ejecutiva tendrá las siguientes facultades y obligaciones: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의무를 수행한다:  
I.- Proponer al Consejo y a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las políticas generales que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habrá de seguir la Comisión Nacional ante los organismos gubernamentales y no gubernamentale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그리고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자문위원회와 위원장에게 제안  
II.- Promover y fortalecer las relaciones de la Comisión Nacional, con organismos públicos, sociales o privado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관련 공기업, 사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 증진 및 강화  
III.- Realizar estudios sobre los tratados y convenciones internacionales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약에 대한 연구·검토 실행  
VI.- Enriquecer, mantener y custodiar el acervo documental de la Comisión Nacional; y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종 서류자료 관리

-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그리고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자문위원회와 위원장에게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관련 공기업, 사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 증진 및 강화
  -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약에 대한 연구·검토 실행
  -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종 서류자료 관리
  - 그 외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관련 업무 제반
- 사무국의 세부적인 구조 안에는 여성권, 아동 및 청소년, 선주민, 삶의 질 및 환경권, 소수민족의 보호, 이주자의 권리 등에 대한 부서 등이 존재<sup>2934)</sup>.

사무국에는 사무국장(El Titular de la Secretaría)이 존재, 자격 요건으로는 1) 권리 행사가 가능한 멕시코 시민 2) 임명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자 3) 명망 있는 자여야 함<sup>2935)</sup>.

④ 조사관 (Visitadores Generales; 영문직역 General Inspectors):

국제인권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임명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sup>2936)</sup>: 1) 권리 행사가 가능한 멕시코 시민 2) 임명일 기준으로

---

VII.- Las demás que le sean conferidas en otras disposiciones legales y reglamentarias.

그 외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관련 업무 제반

2934) 출처: 세계주요 국가인권기구현황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2935)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7.)

Artículo 21.- El Titular de la Secretaría Ejecutiva deberá reunir para su designación, los siguientes requisitos:

사무국장(El Titular de la Secretaría)으로 임명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Ser ciudadano mexicano en pleno ejercicio de sus derechos;

권리 행사가 가능한 멕시코 시민

II.- Gozar de buena reputación; y

명망 있는 자

III.- Ser mayor de treinta años de edad, el día de su nombramiento.

임명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자

293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9.)

Artículo 23.- Los Visitadores Generales de la Comisión Nacional deberán reunir para su designación, los siguientes requisitos:

30세 이상인 자 3)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학 학위를 소유, 적어도 3년 이상 법률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 4) 명망 있는 자.

현재 조사관은 6명이 있는데, 분야는 다음과 같음<sup>2937)</sup>:

제 1 조사관 (Primera Visitaduría): 피해자 중점의 특별 프로그램, 실종 사건, 장애 관련 특별 주의, HIV/AIDS, 아동 및 가족 관련분야 등 담당

제 2 조사관(Segunda Visitaduría): 관할권 안에서의 연방행정기관의 특정 행동이나 비행동으로 인한 진정 관리

제 3 조사관 (Tercera Visitaduría): 연방 형사기관에 의한 피구금자 관련 인권침해 숙지, 국내 사회적 재통합 시스템에서의 인권 존중 진단을 매년 진행, 고문 및 비인간적인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 구금센터 및 보호소 시찰

제 4 조사관 (Cuarta Visitaduría): 선주민 커뮤니티와 마을 사람들의 권리 증진 (Promo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de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및 여성 관련 문제 및 남녀간의 성 평등 (Asuntos de la Mujer y de Igualdad entre Mujeres y Hombres) 분야 담당.

제 5 조사관 (Quinta Visitaduría): 이주민 특별관리 프로그램 (Programa de Atención a Migrantes), 언론인 공격반대 프로그램(el Programa de Agravios a Periodistas) 그리고 시민인권옹호자(Defensores Civiles de Derechos Humanos), 인신매매 반대 프로그램 (el Programa contra la Trata de Personas) 등 담당.

---

국제인권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임명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Ser ciudadano mexicano en pleno ejercicio de sus derechos;

권리 행사가 가능한 멕시코 시민

II.- Ser mayor de treinta años de edad, el día de su nombramiento;

임명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자

III.- Tener título de Licenciado en Derecho expedido legalmente, y tener tres años de ejercicio profesional cuando menos; y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학 학위를 소유, 적어도 3년 이상 법률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

IV.- Ser de reconocida buena fama.

명망 있는 자.

2937) [http://www.cndh.org.mx/Preguntas\\_Frecuentes](http://www.cndh.org.mx/Preguntas_Frecuentes) (검색일 2016.8.19.)

제 6 조사관 (Sexta Visitaduría): 노동권, 환경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한을 지님.

조사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의무가 있음<sup>2938</sup>):

-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오는 진정 신청 및 불만사항 수리, 등록 혹은 각하.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진정 및 불만사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시작된 사건조사를 시작. 소통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진행.
- 소통을 통한 진정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
- 권고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진행. 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됨.

2938)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9.)

Artículo 24.- Los Visitadores Generales tendrán las siguientes facultades y obligaciones:

조사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의무가 있다:

I.- Recibir, admitir o rechazar las quejas e inconformidades presentadas por los afectados, sus representantes o los denunciantes ante la Comisión Nacional;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오는 진정 신청 및 불만사항을 수리, 등록하거나 각하.

II.- Iniciar a petición de parte la investigación de las quejas e inconformidades que le sean presentadas, o de oficio, discrecionalmente aquéllas sobre denuncias de violación a los derechos humanos que aparezcan en los medios de comunicación;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진정 및 불만사항이나 위원회 자체에서 시작된 요청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 소통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진행.

III.- Realizar las actividades necesarias para lograr, por medio de la conciliación, la solución inmediata de las violaciones de derechos humanos que por su propia naturaleza así lo permita;

소통을 통한 진정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

IV.- Realizar las investigaciones y estudios necesarios para formular los proyectos de recomendación o acuerdo, que se someterán a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para su consideración; y

권고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진행. 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됨.

V.- Las demás que le señale la presente ley y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necesarias para el mejor 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동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인권위 및 위원장의 역할 이행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Los visitadores adjuntos auxiliarán en sus funciones a los Visitadores Generales en los términos que fije el Reglamento y para tal efecto deberán reunir los requisitos que establezca el mismo para su designación.

부조사관들은 조사관들의 업무를 보조한다. (...) 부조사관들의 자격요건은 조사관들의 자격요건과 동일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인권위 및 위원장의 역할 이행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부조사관들(Los visitadores adjuntos)은 조사관들의 업무를 보조함. 부조사관들의 자격요건은 조사관들의 자격요건과 동일.

⑤ 자문위원회 (Consejos Consultivos)<sup>2939)</sup>

총 12명으로, 이 중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Consultivo)의 위치는 위원장이 담당하고, 위원회 내 기술비서(Secretario Técnico del Consejo Consultivo)를 따로 둠.

(2) 지역사무소

중앙사무소를 포함 총 24개 사무소가 존재. 수도 멕시코시티에 7개 사무소 설립<sup>2940)</sup>



출처: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iVBZGjzGMC4NETD06w3AssI6U2Y>

[멕시코-그림 65]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 위치

2939) [www.cndh.org.mx/Estructura](http://www.cndh.org.mx/Estructura) (검색일 2016.9.27.)

2940) 전체 리스트 및 구글 지도는 <http://www.cndh.org.mx/Sedes> (검색일 2016.8.17.)

지역사무소들의 위치 및 지역명 (도시 이름, 주 이름)<sup>2941)</sup>:

- 1) Periférico, Distrito Federal
- 2) Anexo Periférico, Distrito Federal
- 3) Héctor Fix Zamudio, Distrito Federal
- 4) Picacho, Distrito Federal
- 5) Cuba (Centro Histórico), Distrito Federal
- 6) Centr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Distrito Federal
  - 6)-1. Río Magdalena
  - 6)-2. Oklahoma
- 7) Sassoferato, Distrito Federal
- 8) Aguascalientes, Aguascalientes
- 9) Tijuana, Baja California
- 10) La Paz, Baja California Sur
- 11) San Cristóbal de las Casas, Chiapas
- 12) Tapachula, Chiapas
- 13) Cd. Juárez, Chihuahua
- 14) Torreón, Coahuila
- 15) Acapulco, Guerrero
- 16) Ixtepec, Oaxaca
- 17) San Luis Potosí , S.L.P.
- 18) Nogales, Sonora
- 19) Villahermosa, Tabasco
- 20) Reynosa, Tamaulipas
- 21) Veracruz, Veracruz
- 22) Mérida, Yucatán
- 23) Morelia, Michoacán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능상 예산상의 독립성을 지님<sup>2942)</sup>. 예산 자체는 연방

---

2941) <http://www.cndh.org.mx/Sedes> (검색일 2016.9.27.)

정부로부터 지급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간 비용예산 초안을 잡아 제출하면 국무장관(Secretario de Estado; 영문 Secretary of State)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sup>2943</sup>).

2017년의 연방 예산지출 기획안 (El Proyecto de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ón (PPEF))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은 2016년과 비교해 8.2% 증가할 예정. 즉, 201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출 예산은 1,598,200 멕시코 페소 (한화로 약 89,938,100원)였으나, 2017년의 경우 약 1,728,566.039 멕시코 페소 (한화로 약 97,274,400원)로 증가하게 됨<sup>2944</sup>).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위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1999년 헌법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자문위원회(Consejo Consultivo)의 위원 9인은 멕시코 상원의회로부터 2/3 표를 받아 선출<sup>2945</sup>).

---

2942)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2o.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es un organismo que cuenta con autonomía de gestión y presupuestaria, personalidad jurídica y patrimonio propios, y tiene por objeto esencial la protección, observancia, promoción, estudio y divulg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que ampara el orden jurídico mexicano.

제 2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능상 예산상(...)의 독립성을 지닌 기구이다. (후략)

2943)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75.-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contará con patrimonio propio. El Gobierno Federal deberá proporcionarle los recursos materiales y financieros para su debido funcionamiento.

제 75조: (전략) 연방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기능 수행을 위한 물질적 및 재정적인 재원을 제공한다.

Artículo 76.- La 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tendrá la facultad de elaborar su anteproyecto de presupuesto anual de egresos, el cual remitirá directamente al Secretario de Estado competente, para el trámite correspondiente.

제 76조: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연간 비용예산 초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국무부에 직접 제출하는 대로 (...)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2944) <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6/09/14/sueldos-73-presupuesto-cndh>  
(검색일 2016.9.27.)

2945)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인권위원장은 위원회법 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sup>2946)</sup>.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10.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será elegido por el voto de las dos terceras partes de los miembros presentes de la Cámara de Senadores o, en sus recesos, por la Comisión Permanente del Congreso de la Unión, con la misma votación calificada. Para tales efectos, la comisión correspondiente de la Cámara de Senadores procederá a realizar una amplia auscultación entre las organizaciones sociales representativas de los distintos sectores de la sociedad, así como entre los organismos públicos y privados promotores o defensores de los derechos humanos.

제 10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원위원 2/3의 표를 얻어야 한다. (후략)

Artículo 18. Los miembros del Consejo Consultivo serán elegidos por el voto de las dos terceras partes de los miembros presentes de la Cámara de Senadores o, en sus recesos, por la Comisión Permanente del Congreso de la Unión con la misma votación calificada.

제 1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상원위원 2/3의 표를 얻어야 한다. (후략)

2946)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9o.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deberá reunir para su elección los siguientes requisitos:

제 9조: 위원장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I. Ser ciudadano mexicano por nacimiento y estar en pleno goce y ejercicio de sus derechos civiles y políticos;

멕시코에서 태어난 시민이자 국내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II. Tener cumplidos treinta y cinco años de edad, el día de su elección;

선거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인 사람

III. Contar con experienci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o actividades afines reconocidas por las leyes mexicanas y los instrumentos jurídicos internacionales; 인권 분야나, 멕시코 국내법 및 국제사법기구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IV. No desempeñar, ni haber desempeñado cargo de dirección nacional o estatal, en algún partido político en el año anterior a su designación;

임명일 기준, 그 전 1년간 국가적, 정치적 수장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사람.

V. No desempeñar ni haber desempeñado cargo de Secretario o Subsecretario de Estado, Procurador General de la República, Gobernador o procurador general de justicia de alguna entidad federativa o jefe de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en el año anterior a su elección;

선거일 기준 그 전 1년간 국무장관이나 차관보, 법무장관 등 연방정부의 수장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

VI. Gozar de buena reputación y no haber sido condenado por delito intencional que amerite pena corporal de más de un año de prisión; pero si se tratase de robo, fraude, falsificación, abuso de confianza u otro que lastime seriamente la buena fama en el concepto público, lo inhabilitará para el cargo, cualquiera que

- (가) 멕시코 국적의 국민
- (나) 임명당시 35세 이상인 자
- (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경력이 있는 자
- (라) 임명 이전에 정치정당 대표 또는 주 대표를 역임하지 않은 자
- (마)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혐의가 없는 자로, 명성이 있고 뇌물수수, 사기, 위조, 등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바) 법학 학위가 있는 자
  - 자문위원회의 위원들(9명, 위원장 포함 10명.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회의 주제)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멕시코 시민이어야 하고, 위원들 중 최소 7명은 공무원직 종사자가 아니어야 함<sup>2947</sup>).
-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
-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 위원장은 5년의 임기를 가지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sup>2948</sup>. 위원장을 제

---

haya sido la pena, y  
 명망이 있고 1년 이상 감옥에 갈 만한 국제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 강도, 사기, 위조, 신탁의무위반/배임 혹은 그와 유사한 범주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여전히 명성에 해가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 후보가 될 수 없다.

VII. Tener preferentemente título de licenciado en derecho.

법학 학위를 지닌 사람 우대.

2947)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17.- El Consej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5o. de esta ley, estará integrado por diez personas que gocen de reconocido prestigio en la sociedad, mexicanos en pleno ejercicio de sus derechos ciudadanos, y cuando menos siete de entre ellos no deben desempeñar ningún cargo o comisión como servidor público.

제 17조 (중 일부) - (자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5조에 그 형성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적 명망이 있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멕시코 시민들 1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7명은 사무소나 위원회 등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야 한다.

2948)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11.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외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매해 10월에 2명의 위원을 교체하는데, 위원들의 선임 순서대로 교체됨<sup>2949)</sup>.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가) 면책

국제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그들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의 의견, 권고 및 행동 이행에 대한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음<sup>2950)</sup>.

(나) 겸업 금지의 원칙<sup>2951)</sup>

---

durará en su encargo cinco años, y podrá ser reelecto por una sola vez.

제 1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5년간의 임기가 주어지며, 단 1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2949)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lo será también del Consejo Consultivo. Los cargos de los demás miembros del Consejo serán honorarios. A excepción de su Presidente, anualmente, durante el mes de octubre, serán sustituidos los dos consejeros de mayor antigüedad en el cargo, salvo que fuesen propuestos y ratificados para un segundo periodo. Para el caso de que existan más de dos consejeros con la misma antigüedad, será el propio Consejo quién disponga el orden cronológico que deba seguirse; sin que puedan ser más de dos nombramientos, derivados por el principio de renovación anual a que se refiere este artículo.

제17조 (중 일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장 역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다. 다른 위원들은 명예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매년 10월에 위원들 중 선임 2명이 교체된다. 두 번째 임기동안에도 위원직에 있으려면 그에 대한 제안 및 비준이 있어야 한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의 위원이 선임이라면, 순차적 순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후략)

2950)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13.-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y los Visitadores Generales no podrán ser detenidos ni sujetos a responsabilidad civil, penal o administrativa, por las opiniones y recomendaciones que formulen, o por los actos que realicen, en ejercicio de las funciones propias de sus cargos que les asigna esta ley.

제 1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조사관은 동 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의견, 권고 및 행동 이행에 대해 체포되거나 민·형법상이나 행정적인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51)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12.- Las funciones d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Visitadores Generales y de la Secretaría Ejecutiva, son incompatibles con el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조사관, 사무국의 업무는 그 어떤 다른 업무와도 함께 겸업될 수 없음.

(다) 해임 및 공석<sup>2952)</sup>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멕시코 헌법 제 4장에 제시된 절차 및 사유에 따라 해임 될 수 있음. 기존의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제 1 조 사관이 임시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권한<sup>2953)</sup>

---

desempeño de cualquier otro cargo, empleo o comisión de la Federación, los Estados, Municipios o en organismos privados, o con el desempeño de su profesión, exceptuando las actividades académicas.

제 12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조사관, 사무국의 업무는 학술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 다른 업무와도 함께 겸업될 수 없다.

2952)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7.)

제 14조 원문

Artículo 14.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podrá ser removido de sus funciones y, en su caso, sujeto a responsabilidad, sólo por las causas y mediante l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por el Título Cuarto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este supuesto, el Presidente será substituido interinamente por el primer Visitador General, en tanto no se designe nuevo Presidente de la Comisión Nacional.

2953)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18.)

Artículo 3o.- La 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tendrá competencia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para conocer de quejas relacionadas con presuntas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cuando éstas fueren imputadas a autoridades y servidores públicos de carácter federal, con excepción de los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제 3조 (일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연방 사법부는 예외이다.

Cuando en un mismo hecho, estuvieren involucrados tanto autoridades o servidores públicos de la Federación, como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o Municipios, la competencia se surtirá en favor de la Comisión Nacional.

같은 사건을 시 단위나 연방 단위의 공공기관과 국제인권위원회가 동시에 조사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그 우선권이 실린다.

El personal de la Comisión Nacional deberá manejar de manera confidencial la

(가) 위원회는 위원회법 2조에 근거, 위원회의 권한을 “멕시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의 보호, 관찰, 증진, 조사 및 보급”이라고 명시함. 한편, 헌법 102조 B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선거 및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사의 권한이 없으며,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표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방단위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되, 연방 사법부는 예외. 같은 사건을 시 단위나 연방 단위의 공공기관과 국제인권위원회가 동시에 조사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그 우선권이 부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도덕적 가치 및 자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위원장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정 케이스에 대한 권한을 사양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직원은 권한 안에서 접하게 되는 관련 서류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니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야 함.

(2) 활동<sup>2954)2955)</sup>

(가) 피해자 구제

- 개인진정 접수 및 처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정을 수리, 조사 및 그에 대한 결정. 관련 권고사항을 전국단위로 적용하거나 사법부와 함께 협업을 하기도 함. 멕시코에 거주하는 내국인, 외국인 등 그 누구라도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거나 침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 신청이 가능

---

información o documentación relativa a los asuntos de su competencia.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직원은 권한 안에서 접하게 되는 관련 서류 및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Artículo 35.- La Comisión Nacional, por conducto de su Presidente y previa consulta con el Consejo, puede declinar su competencia en un caso determinado, cuando así lo considere conveniente para preservar la autonomía y autoridad moral de la institución.

제 35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도덕적 가치 및 자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위원장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정 케이스에 대한 권한을 사양할 수 있다.

2954) [https://pbs.twimg.com/media/CpnVQUAUEAA\\_upw.jpg](https://pbs.twimg.com/media/CpnVQUAUEAA_upw.jpg) (검색일 2016.8.18)

2955) 출처: 세계주요 국가인권기구현황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중무휴이므로 진정 접수는 언제든지 가능. 진정은 구두로, 서면으로, 수화, 점자 등으로 신청 가능<sup>2956</sup>).

- 진정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및 조정(conciliación)에도 참여.

(나) 교육 및 연구

- 인권 관련 연구, 교습법, 교육 등에 대해 연구 및 보고.

- 모든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증진 프로그램 및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기획·실행

(다) 인권수호를 위한 감독 및 검토

- 성 평등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 이행에 대해 검토.

- 법령 및 행정규율 등을 검토, 더 효과적인 인권수호를 꾀함.

- 연방정부가 국제인권규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및 보고.

- 시민의 시각에서 정부 감시

바) 특이사항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위한 보호 및 감시를 목적으로 세워진 독립적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동적인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 인권수호를 강화하고, 인권침해와 분쟁 등에 대한 해결 및 조정, 그리고 문제 해결을 꾀함<sup>2957</sup>).

그 외 자세한 기능<sup>2958</sup>)은 다음과 같음:

- (1)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 (2) 연방 공공기관이나 자치기관, 혹은 공무원 등의 행동에 의한 인권 침해 조사 공공, 진정, 불만사항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을 위한 권고사항 작성
- (3) 가능하다면, 인권침해 상황 및 갈등 해결 후 진정인과 해당 기관 사이의 조정 시도
- (4) 국내 인권상황 감독
- (5) 인권연구, 교습법 등을 국가적·국제적인 단위로 추진

2956) [www.cndh.org.mx/Preguntas\\_Frecuentes](http://www.cndh.org.mx/Preguntas_Frecuentes) (검색일 2016.8.19)

2957) [https://www.facebook.com/Comisi%C3%B3n-Nacional-de-los-Derechos-Humanos-CNDH-125269014208515/about/?entry\\_point=page\\_nav\\_about\\_item&tab=page\\_info](https://www.facebook.com/Comisi%C3%B3n-Nacional-de-los-Derechos-Humanos-CNDH-125269014208515/about/?entry_point=page_nav_about_item&tab=page_info) (검색일 2016.8.18.)

2958) [www.cndh.org.mx/Preguntas\\_Frecuentes](http://www.cndh.org.mx/Preguntas_Frecuentes) (검색일 2016.9.27.)

- (6)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programas preventivos) 구성 및 이행
- (7) 멕시코가 서명했거나 비준한 인권 관련국제조약, 협약 및 협정 내용이 국내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들과 프로그램을 짜고 협업
- (8) 감옥 등의 형사 구금 기관의 인권 존중을 감독, 연간 진단을 통해 국내 재활센터 상황에 대해서도 관리
- (9)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 (10) 기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른 인권 침해이자 위헌 행동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 소개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6년 10월, 2011년 10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2959)</sup>

**2) 멕시코 국가인권기구의 주요업무 및 활동 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1) 위원회는 주요 핵심 업무로 ‘언론의 자유와 시민 옹호’, ‘여성문제 및 성평등’, ‘아동 및 가족문제’, ‘이주자 보호’, ‘범죄 피해자 보호’, ‘장애인권’, ‘강제 실종’, ‘원주민 및 공동체 권리’, ‘인신매매’, ‘HIV/에이즈’ 이슈를 핵심 주요 과제로 설정함.<sup>2960)</sup>
- (2)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sup>2961)</sup>:

2959)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출처: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12)

2960) [http://www.cndh.org.mx/Programas\\_Atencion](http://www.cndh.org.mx/Programas_Atencion) (검색일 2016.7.6)

2961) 국가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Los Derechos Humanos (1992)) [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doc/47.doc) (검색일 2016.8.22.)

Artículo 6o.-La Comisión Nacional tendrá las siguientes atribuciones:

I.- Recibir quejas de presuntas violaciones a derechos humanos;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접수)

II.- Conocer e investigar a petición de parte, o de oficio, presuntas violaciones de derechos humanos en los siguientes casos:

a) Por actos u omisiones de autoridades administrativas de carácter federal;

b) Cuando los particulares o algún otro agente social cometan ilícitos con la

---

tolerancia o anuencia de algún servidor público o autoridad, o bien cuando estos últimos se nieguen infundadamente a ejercer las atribuciones que legalmente les correspondan en relación con dichos ilícitos, particularmente en tratándose de conductas que afecten la integridad física de las personas;

(정당 또는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인권침해를 조사; 공무원의 묵인 하에 발생하는 정부부처의 부당행위,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와 결탁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III. Formular recomendaciones públicas no vinculatorias y denuncias y quejas ante las autoridades respectivas, en los términos establecidos por el artículo 102, Apartado B,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102조 b항에 근거,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구속적 권고)

IV.- Conocer y decidir en última instancia las inconformidades que se presenten respecto de las recomendaciones y acuerdos de los organismos de derechos humanos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a que se refiere el citado artículo 102, apartado B,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V. Conocer y decidir en última instancia las inconformidades por omisiones en que incurran los organismos de derechos humanos a que se refiere la fracción anterior, y por insuficiencia en el cumplimiento de las recomendaciones de éstos por parte de las autoridades locales, en los términos señalados por esta ley;

VI.- Procurar la conciliación entre los quejosos y las autoridades señaladas como responsables, así como la inmediata solución de un conflicto planteado, cuando la naturaleza del caso lo permita; (정부부처가 권고 수용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진정사건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및 자문)

VII.- Impulsar la observancia de los derechos humanos en el país;

VIII.- Proponer a las diversas autoridades del país, que en el exclusivo ámbito de su competencia, promuevan los cambios y modificaciones de disposiciones legislativas y reglamentarias, así como de prácticas administrativas, que a juicio de la Comisión Nacional redunden en una mejor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정부부처에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행정 관행의 변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자문)

IX.- Promover el estudio, la enseñanza y divulg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el ámbito nacional e internacional;

X.- Expedir su Reglamento Interno;

XI.- Elaborar y ejecutar programas preventivos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인권침해예방 프로그램 및 인권 관련 사업의 시행)

XII. Supervisar el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en el sistema de reinserción social del país mediante la elaboración de un diagnóstico anual sobre la situación que éstos guarden.

En dicho diagnóstico deberán incluirse, además de las evaluaciones que la Comisión pondere, datos estadísticos sobre el número, las causas y efectos de los homicidios, así como de las riñas, motines, desórdenes, abusos y quejas documentadas que sucedan en las prisiones, centros de detención y retención federales y locales.

- (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접수
- (나) 정당 또는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인권침해를 조사; 공무원의 묵인 하에 발생하는 정부부처의 부당행위,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와 결탁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 (다) 멕시코 헌법 102조 b항에 근거,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구속적 권고
- (라) 위원회 권고안의 불수용 사항에 대한 조사
- (마) 인권침해예방 프로그램 및 인권 관련 사업의 시행
- (바) 사회통합을 위한 자국 내 인권 현황을 조사
- (사) 정부부처에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행정 관행의 변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자문. 또한, 정부부처가 권고 수용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진정사건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및 자문
- (아)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권고 및 이행사항 감독
- (자) (정부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에 대한 조사

---

El diagnóstico se hará del conocimiento de las dependencias federales y locales competentes en la materia para que éstas elaboren, considerando las opiniones de la Comisión, las políticas públicas tendientes a garantizar el respeto de los derechos humanos de los internos;

XIII.- Formular programas y proponer acciones en coordinación con las dependencias competentes que impulsen el cumplimiento dentro del territorio nacional de los tratados, convenciones y acuerdos internacionales signados y ratificados por México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권고 및 이행사항 감독)

XIV.- Proponer al Ejecutivo Federal, en los términos de la legislación aplicable, la suscripción de convenios o acuerdos internacionales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XIV Bis.- La observancia del seguimiento, evaluación y monitoreo, en materia de igualdad entre mujeres y hombres;

XV. Investigar hechos que constituyan violaciones graves de derechos humanos, cuando así lo juzgue conveniente o lo pidiere el Ejecutivo Federal, alguna de las Cámaras del Congreso de la Unión, el Gobernador de un Estado, el Jefe de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o las legislaturas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정부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에 대한 조사) y

XVI. Las demás que le otorgue la presente Ley y otros ordenamientos legales.

나)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sup>2962)2963)</sup>

- (1) 인권위는 1992년 헌법 개정 시점부터 분권기구(de-centralized agency)의 성격을 띠기 시작, 1999년의 헌법 개정 시점부터 인권위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가 되었음. 하지만 예전에는 정부(내무부)로부터 창설되었고 의회로부터 예산 지원 받음. 현재, 위원장과 위원들은 상원을 통해 임명되는데, 임명 확정 전 시민단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함.
- (2) 인권위는 정부 및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고발 가능.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을 때, 인권위는 그 해당기관이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 인권위는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고, 그에 따른 해당 기관의 권고 준수 정보를 연간보고에 포함해야 함. 해당 당국이 권고를 잘 이행하지 못하거나 권고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인권위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원에 그를 소환할 권한이 있음.

### 3) 멕시코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가) 피해자 구제

(1) 진정에 대한 권고

(가) 통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공개한 1990년 1월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의 통계자료<sup>2964)</sup>에 따르면: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3,102개의 기관 및 공무원에게 2,537건의 권고사항 전달. 이 중 54%는 주 범위, 35%는 연방 범위, 11%는 시 범위 기관들에 대한 것. 받아들여진 권고의 수는 2,791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고의 수는 311건.
- ② 진정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해는 1992년, 가장 적게 들어온 해는 2001년.

2962) 출처: Human Rights Report 2015 - Mexico.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3239.pdf> (검색일 2016.8.29.)

2963) <https://www.hrw.org/report/2008/02/12/mexicos-national-human-rights-commission/critical-assessment> (검색일 2016.8.19.)

2964) [https://scontent.xx.fbcdn.net/v/t1.0-9/13891972\\_1163843967017676\\_1053027422126382419\\_n.png?oh=6bc1de27a8669ceebf9b520cbe5114f2&oe=584F57BF](https://scontent.xx.fbcdn.net/v/t1.0-9/13891972_1163843967017676_1053027422126382419_n.png?oh=6bc1de27a8669ceebf9b520cbe5114f2&oe=584F57BF) (검색일 2016.8.18.)

2000년부터 권고사항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측 2006년부터 2015년  
까지의 또 다른 통계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 ① 임의구금 (arbitrary detention): 접수받은 진정 10,249 건 중 127건에  
권고
  - ②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s): 진정 9,331 건 중 242건(고문 82건, 그 외 비인  
도적인 처우 160건)에 권고
  - ③ 강제실종 (forced disappearance): 진정 313 건 중 13건에 권고
  - ④ 초법적 형집행(extrajudicial execution): 진정 11건 중 2건에 권고
- 각 진정의 내용은 1인 이상의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을수 있음. 예를 들  
어, 인권위는 Ayotzinapa에서 강제실종된 43명의 학생에 대한 케이스를  
진정 한 건으로 간주.

인권위가 국가 보안부대에 주로 가장 많이 권고한 내용은 생명 박탈, 고  
문, 그리고 강제실종에 대한 부분<sup>2965</sup>).

(나) 실제 권고내용 중 일부<sup>2966</sup> (괄호에는 일자 연월일 표기)

- ① 인권위는 Mikel Andoni Arriola Peñalosa 멕시코사회보험기관 소장  
(el Director General del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IMSS))과 Jorge Aristóteles Sandoval Díaz Jalisco 주지사를 대상으  
로 한 권고(Recomendación 36/2016)를 통해 초등학교 내의 따돌림으  
로 인해 사망한 7세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부족에 대해 다룸.  
(2016-09-20)
- ② Oaxaca 주 정부에 의한 Zapoteca 선주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  
해 인권위가 권고. Oaxaca 주지사인 Gabino Cué Monteagudo를 대상  
으로 하는 권고(Recomendación 33/2016)를 통해 연방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화장실에서 출산을 해야 했던 두 선주민  
여성의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 존엄성을 지닌 처우, 산과폭력  
(violencia obstétrica)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에 대한 필수적인

2965) <http://www.oas.org/en/iachr/reports/pdfs/Mexico2016-en.pdf> (검색일 2016.8.19.)

2966) [www.cndh.org.mx/Comunicados](http://www.cndh.org.mx/Comunicados) (검색일 2016.8.22.)

정보 등 제반 권리들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전달. (2016-08-11)

- ③ 인권위는 Tamaulipas의 Egidio Torre Cantú 주지사에게 보건부 소속의 Altamira 종합병원 (Hospital General de Altamira) Dr. Rodolfo Torre Cantu 지점에서 14세 미성년 소녀의 재생산의 자유 및 자율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하여 권고 (Recomendación 31/2016). (2016-07-09)

#### 나) 교육

- (1) 국가인권센터 (El Centr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CENADEH)<sup>2967)</sup> 1997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탄생한 기구. 인권보호 및 인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간물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관련 콘텐츠 작업 역시 도맡아 함. 연간 보고 관련 작업에도 참여. 국내 및 국제기관과 협력. CENADEH 내에서 문서·도서관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y Biblioteca) 운영. Castilla La Mancha 대학교 (la Universidad de Castilla La Mancha)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 전공(Especialidad en Derechos Humanos), 인권 석사(Maestría en Derechos Humanos), 인권 박사(Doctorado en Derechos Humanos) 프로그램 제공.
- (2) 인권 영화-다이올로그 (Cine-Diálogo en Derechos Humanos)<sup>2968)</sup>: 인권 존중의 문화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 인권과 관련된 멕시코 및 해외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하고, 각 주제에 맞는 평론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

#### 다) 홍보

- (1) 인신매매 예방 국가캠페인<sup>2969)</sup> 진행  
위원회는 “인신매매 예방 국가캠페인: 사기도 거짓 자유도 없는 자유

2967) [www.cndh.org.mx/CENADEH](http://www.cndh.org.mx/CENADEH) (검색일 2016.8.19.)

2968) <https://www.facebook.com/125269014208515/photos/a.138036672931749.27949.125269014208515/1171032182965521/?type=3&theater> (검색일 2016.8.18.)

2969) <http://www.gob.mx/conavim/articulos/conoces-la-campana-nacional-de-prevencion-de-la-trata-de-personas-libertad-sin-enganos-ni-promesas-falsas> (검색일 2016.8.18.)

(Campana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rata de Personas. Libertad sin engaños ni promesas falsas)”을 통해 인신매매로 인해 생겨나는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 인신매매로 인해 사람들은 성적으로, 노동력으로, 의학 실험이나 장기매매의 희생자로 착취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주정부 (Governo do Estado do Rio de Janeiro)와 함께 진행하며, 멕시코 내에서는 여성을 위한 사법기관들(los Centros de Justicia para las Mujeres)과 국민네트워크프로젝트(el proyecto de Redes Ciudadanas)가 협업.



[멕시코-그림 66] 사기도 거짓 약속도 없는 자유  
(Libertad sin engaños ni promesas falsas)

(2) 남자로 태어났지만 마초는 아닙니다 (#nacíHombreNoMacho) 캠페인<sup>2970)</sup>  
국가인권위원회는 멕시코시티 역사지구신탁 (el Fideicomiso del Centro

<sup>2970)</sup> www.cndh.org.mx/Comunicados (검색일 2016.8.19.)

Histórico de la Ciudad de México, FCH)과 더불어 ‘남자로 태어났지만 마초는 아닙니다 (#nacíHombreNoMacho)’ 캠페인을 진행. 그래피티와 스텐실, 기타 벽화 양식을 통해 예술을 창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중단, 여성이 접하는 폭력에 대한 숙고, 그리고 남성우위적인 남성성(la masculinidad machista) 거부 등의 내용을 일상 생활과 행동에 어떻게 적용시킬수 있을지에 대해 방안 모색. 이 캠페인은 여성 폭력 철폐의 날과 국제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10일에 개최됨.

당시 캠페인을 담당했던 Norma Inés Aguilar 제 4 조사관은 “그동안 교육은 남성 기준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성)폭력의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었으나 정신적, 심리적인 요소가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여성폭력은 직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영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임<sup>2971)</sup>.

(3) 이주민 아동·청소년의 인권옹호 캠페인<sup>2972)</sup>

극심한 빈곤, 폭력, 가족 재결합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이민을 택해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이 멕시코를 거쳐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들에게 오명이 씌워지거나, 그들이 차별이나 위법한 대우의 희생되지 않고, 아동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 매커니즘 개발.

라) 정책 개선

- (1) 정부 내 국가기관 3 단계 (tres niveles de gobierno: 연방정부 la Unión federal, 주정부 los gobiernos estatales y 시 정부 los gobiernos municipales<sup>2973)</sup>) 내 당국으로부터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정책 수행<sup>2974)</sup>

2971)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nacion/sociedad/2015/12/10/usan-arte-urbano-para-reflexionar-sobre-la-violencia-hacia-las> (검색일 2016.8.19.)

2972) [www.cndh.org.mx/Comunicados](http://www.cndh.org.mx/Comunicados) (검색일 2016.8.19.)

2973) [http://enciclopedia.us.es/index.php/Gobierno\\_y\\_administraci%C3%B3n\\_de\\_M%C3%A9xico](http://enciclopedia.us.es/index.php/Gobierno_y_administraci%C3%B3n_de_M%C3%A9xico) (검색일 2016.9.26.)

2974) [www.cndh.org.mx/sites/all/doc/informes/anuales/2014\\_Sintesis.pdf](http://www.cndh.org.mx/sites/all/doc/informes/anuales/2014_Sintesis.pdf)

2014년 인권위는 다양한 국가기관 (연방입법부, 지방의회, 연방정부, 대법원 등)의 공문서를 검토. 국가기관 내 다양한 세부기관들이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입법적 화합을 이루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368 건 진행했는데, 38,426 명이 참여, 분배된 관련 콘텐츠의 수가 452,279 개.

마) 사법부에 의견 제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당 사항 없음.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멕시코 정부 3개 헌법기관 (los tres Poderes de la unión: 입법부 Legislativo, 행정부 Ejecutivo, 사법부 Poder Judicial) 에 인권위의 연간 활동에 대해 보고함.

바) 주요 인권 이슈

다음 인권 이슈들은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가 핵심 주요과제로 설정한 인권 이슈들<sup>2975)</sup> 중 일부:

(1) 군 내 학대와 책임 면제<sup>2976)</sup>

멕시코는 마약 및 조직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군대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군 관계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많이 생겨남. 2006년부터 인권위는 군대 및 군인에 의한 진정을 9000여건 접수받았는데, 그 중 1700건 이상이 현재 군 행정에 속한 케이스, 100건 이상이 군인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것.

2014년, 의회는 군법을 개정하여 군 소속 개인이 민간인에게 저지르는 인권침해는 군 재판보다는 민간 형사재판을 받도록 함. 군 재판을 통해서도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었고, 이런 실패가 계속 반

---

(검색일 2016.8.22)

2975) 동 보고서 상단의 '2) (국가) 인권기구의 주요업무 및 활동 내용' 중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에 세부 내용 기재.

2976) <https://www.hrw.org/world-report/2016/country-chapters/mexico>  
(검색일 2016.8.19.)

복되었기 때문. 단, 군 소속 개인이 다른 군 소속 개인에게 저지르는 학대는 여전히 군 재판소를 통해 다루어짐.

멕시코 국방부(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SEDENA)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군 내에서 벌어진 고문, 살인, 강간 및 다른 인권침해에 대해 115건의 권고사항을 발표했음<sup>2977</sup>).

(2) 언론인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sup>2978</sup>)

언론인들, 특히 범죄나 공무원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자주 위협에 처하게 됨. 200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103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하고, 25명이 실종됨.

2012년 멕시코는 인권옹호자들과 기자들을 보호하려고 법을 제정, 국가적 보호 메커니즘이 형성됨.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몇몇 경우에 대응이 늦거나 충분치 못함. 기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당국으로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통상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게 됨. 이에 따라 언론인들은 정부 관련자나 범죄집단에 의한 폭력을 피하고자 자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검열하게 됨.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 80%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특수검찰청 (Special Prosecutor's Office)은 기자 및 언론인에 대한 범죄 303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그 중 21건만이 기소됨.

(3) 선주민 권리

멕시코 내의 선주민들은 인종차별주의, 차별, 육체적 및 정신적 폭력, 의료 및 교육 서비스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등을 맞닥뜨리게 됨. 그러한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공동체 내의 사람들과 선주민들의 권리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 선주민들이 마을 사람들과 공존하는 지역들에 457회 방문하고, 인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 알리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거치는 학생들에게도 강조함. 이를 통해 39,070명에게 홍보하고, 131,904개의 정보 팜플렛을 배포함<sup>2979</sup>).

2977) <http://www.oas.org/en/iachr/reports/pdfs/Mexico2016-en.pdf> (검색일 2016.8.19.)

2978) <https://www.hrw.org/world-report/2016/country-chapters/mexico> (검색일 2016.8.19.)

2979) [www.cndh.org.mx/sites/all/doc/informes/anuales/2014\\_Sintesis.pdf](http://www.cndh.org.mx/sites/all/doc/informes/anuales/2014_Sintesis.pdf)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주민 여성이 멕시코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밝힘. 선주민들과 선주민 여성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선주민들의 소외를 극복할수 없다고 밝히기도 함<sup>2980</sup>).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1) 유엔과의 협력

멕시코는 유엔의 국제인권협약 및 선택의정서 모두를 비준. 이와 더불어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차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참여한 것은 2013년<sup>2981</sup>).

멕시코가 비준한 국제협약들(비준 연도, \*표시는 가입(accession))<sup>2982</sup>은 다음과 같음:

- (가)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6)
- (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OP (2005)
-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81\*)
- (라) 사형제도 철폐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CPR-OP2-DP (2007\*)
- (마) 강제실종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

(검색일 2016.8.19.)

2980) <https://www.hrw.org/world-report/2016/country-chapters/mexico>  
(검색일 2016.8.19.)

2981)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MXSession17.aspx>  
(검색일 2016.8.12.)

2982)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MEX&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MEX&Lang=EN) (검색일 2016.8.12.)

Enforced Disappearance, CED (2008)

- (바)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
  - (사)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75)
  - (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81\*)
  - (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1999)
  - (차)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
  - (카)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OP-AC (2002)
  - (타) 아동의 매매 ·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OP-SC (2002)
  - (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PRD (2007)
- (2) 그 외 국제협력<sup>2983)</sup>
- (가) 1889년부터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구성원으로서 미주 지역 시스템에 합류.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주 인권위원회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CIDH, 영문명칭 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IACHR)의 회원국으로써, 인권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014년 9월 멕시코에서, 시위를 벌이던 43명의 교대생이 경찰과 결탁한 갱단에 끌려가 집단 피살된 사건에 대하여 IACHR은 6개월 간의 진상조사를 수행하여

---

2983) [www.cndh.org.mx/sites/all/doc/informes/anuales/2014\\_Sintesis.pdf](http://www.cndh.org.mx/sites/all/doc/informes/anuales/2014_Sintesis.pdf)  
(검색일 2016.8.19)

2015년 6월에 발표한 바 있음<sup>2984)</sup>.

(나) 또한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NHRI)의 일원이자 지역기구 미주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the Network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American Continent)의 일원<sup>2985)</sup>으로, 2004년 10월 27일에는 멕시코에서 국제이주상황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sup>2986)</sup>. 이베로아메리카 연방옴부스맨(Federación Iberoamericana del Ombudsman, FIO)와도 협력관계.

#### 4) 멕시코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인권기구 현황

가) 국가이주기관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INM)

정부 내무부 (Secretaría de Gobernación) 소속의 행정기관(단, 연방정부 행정과는 관련 없음)으로, 이민 관련 제반 업무 담당<sup>2987)</sup>. 전국에 32개 연방 사무소가 있음<sup>2988)</sup>.

(1) 설립: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음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명칭 뒤에는 현재 각 역할 담당자<sup>2989)</sup>.

- ① 국가이주기관 위원 (Comisionado del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Ardelio Vargas Fosado
- ② 대표조정 국장 (Director General de Coordinación con Delegaciones): Com. Gral. Seguismundo Doguin Garay
- ③ IT/커뮤니케이션 국장(Director General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Comunicaciones): Lic. Christian Ariel Ayala del Río

2984) 한국일보(2015년 9월 23일자), “멕시코 대학생 43명 실종 1년... 정부 발표 뒤집은 IA CHR 보고서” <http://www.hankookilbo.com/v/f151c6fbed7e4d099b9d27d6b0b15981>

2985) 가입시기: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986) [http://www.nhri.net/default.asp\\_PID=94\\_AFD=0.html](http://www.nhri.net/default.asp_PID=94_AFD=0.html) (검색일 2016.9.27.)

2987) <http://www.gob.mx/inm/que-hacemos> (검색일 2016.8.22)

2988) <http://www.gob.mx/inm/acciones-y-programas/horario-y-oficinas-del-inm?idiom=es> (검색일 2016.8.22)

2989) <http://www.gob.mx/inm> (검색일 2016.8.22.)

- ④ 이주민보호 및 관계 국장 (Director General de Protección al Migrante y Vinculación): Lic. Luis Fernando Pérez Azcárraga
- ⑤ 이주통제 및 검증 국장 (Director General de Control y Verificación Migratoria): Lic. Mario Madrazo Ubach
- ⑥ 행정국장 (Director General de Administración): Lic. Rogelio Valles Rosas
- ⑦ 사법, 인권 및 투명성 국장 (Directora General Jurídica, de Derechos Humanos y Transparencia): Mtra. Palmira Venero Uribe
- ⑧ 규정 및 이주 아카이브 국장(Directora General de Regulación y Archivo Migratorio): María Fernanda García Villalobos Haddad

(3) 주요업무

국가이주기관은 멕시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멕시코에 머무를 때 가족이나 직업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 또한 국가이주기관은 멕시코인과 외국인의 멕시코 출·입국시 각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권을 둬<sup>2990</sup>).

다음은 국가이주기관의 주요 업무들 중 일부:

- ① 이민절차 (Trámites migratorios)<sup>2991</sup>: 온라인을 통한 빠르고 쉬운 이민절차 지원. 내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민수속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② Paisano 프로그램 (Programa Paisano del INM)<sup>2992</sup>: 멕시코인들이 영토 입국, 통과, 출국 시 그들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돕는 프로그램.
- ③ 아동보호담당관 (Oficiales de Protección a la Infancia, OPI)<sup>2993</sup>: 미국으로부터 송환되는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민절차 지원.
- ④ Grupo Beta 프로그램 (Grupos Beta de protección a migrantes)<sup>2994</sup>:

2990) <http://www.gob.mx/inm/que-hacemos> (검색일 2016.8.22)

2991) <http://www.gob.mx/inm/acciones-y-programas/tramites-migratorios?idiom=es> (검색일 2016.8.22.)

2992) <http://www.gob.mx/inm/acciones-y-programas/programa-paisano-del-inm?idiom=es> (검색일 2016.8.22.)

2993) <http://www.gob.mx/inm/acciones-y-programas/oficiales-de-proteccion-a-la-infancia-opi?idiom=es> (검색일 2016.8.22.)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의 국적이나 이주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을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하는데에 집중.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인권수호 및 보호 추구.

- ⑤ 송환 관련 프로그램 (Programa de Repatriación)<sup>2995</sup>: 미국으로부터 송환 조치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보, 의료서비스, 음식, 보호소, 가족과의 연결 등을 지원.

나) 연방구인권위원회 (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del Distrito Federal, CDHDF)

- (1) 설립: 1993년 6월 연방구인권위원회법 (Ley de la 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del Distrito Federal)이 통과됨에 따라 그 해 9월 30일에 설립.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멕시코헌법 제 102조 B항 역시 모태로 하고 있음.

-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총 21개의 부서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음<sup>2996</sup>):

- ① 위원장 (Presidencia): 연방구인권위원회 위원장(El Presidente de la CDHDF, 혹은 옴부즈맨 Defensor del Pueblo)은 연방 구 의회 (la Asamblea Legislativa del Distrito Federal, ALDF) 에 의해 임명됨.
- ② 위원회 (Consejo)
- ③ 내부 감사원 (Contraloría Interna)
- ④ 사무국장 (Secretaría Ejecutiva)
- ⑤ 인권전문서비스조정 (Coordinación del Servicio Profesional en Derechos Humanos)
- ⑥ IT/커뮤니케이션조정 (Coordinación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 ⑦ 시민사회-공공정책 연결조정 (Coordinación de Vinculación con la

---

2994) <http://www.gob.mx/inm/acciones-y-programas/grupos-beta-de-proteccion-a-migrantes?idiom=es> (검색일 2016.8.22.)

2995) <http://www.gob.mx/inm/acciones-y-programas/programa-de-repatriacion-12469?idiom=es> (검색일 2016.8.22.)

2996) 각 부서 상세 내용 및 도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http://cdhdfbeta.cd hdf.org.mx/orgnigramas/> (검색일 2016.8.22.)

Sociedad Civil y Políticas Públicas)

⑧ 조사관 (Visitaduría general): 제 1 조사관부터 제 5 조사관까지 총 5명. 각각 부서가 따로 있음. 각 부서 아래에는 부조사관 (visitadores adjuntos) 들을 포함, 행정연결 (Enlace administrativo), 분석가 (analista) 혹은 행정 보조관 (auxiliar administrativo)이 소속됨<sup>2997)</sup>

⑨ 행정부 (Dirección General de Administración)

⑩ 인권커뮤니케이션부 (Dirección General de Comunicación por los Derechos Humanos)

⑪ 진정 및 지도부 (Dirección General de Quejas y Orientación)

⑫ 법률부 (Dirección General Jurídica)

⑬ 인권교육집행이사 (Dirección Ejecutiva de Educación por los Derechos Humanos)

⑭ 모니터링집행이사 (Dirección Ejecutiva de Seguimiento)<sup>2998)</sup>

⑮ 법무 및 평가 집행이사 (Dirección Ejecutiva de Asuntos Legislativos y Evaluación)

⑯ 전략연계집행이사 (Dirección Ejecutiva de Vinculación Estratégica)

⑰ 인권조사센터 (Centro de Investigación Aplicada en Derechos Humanos)

(3) 주요업무 및 권한<sup>2999)</sup>

연방구인권위원회는 주로 연방 내의 권위 있는 공공 연방 구 행정 혹은 사법집단이나 개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 받음. 연방구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수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연방구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① 진정 당사자 간의 타협안 형성

---

2997) 제 1, 2 조사관에게는 분석가가, 제 3~5 조사관에게는 행정보조관이 세부 조직 내 포함. <http://cdhdfbeta.cd hdf.org.mx/organigramas/> (검색일 2016.8.22.)

2998) 현재 자리 공식. <http://cdhdfbeta.cd hdf.org.mx/category/nosotros/quienes-somos/page/2/> (검색일 2016.8.22.)

2999) <http://cdhdfbeta.cd hdf.org.mx/nosotros-2/?lang=en> (검색일 2016.8.22.)

- ② 법적 구속력 없는 공공 권고나 특정 진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권고
- ③ 연방 내의 인권 준수 촉진
- ④ 연방 내의 다양한 기관들에 더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규율 개정 제안
- ⑤ 인권에 대한 연구, 교육, 보급 등 촉진
- ⑥ 인권에 대한 예방 교육 개발 및 이행

## 14. 케냐

케냐 국가 정보 <sup>3000)</sup>	
면적	570,000 km <sup>2</sup>
인구	45,930,000(2015년 7월 잠정)
수도	나이로비
정치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언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주요종교	기독교(80%), 이슬람(10%), 기타(10%)
주요민족	Kikuyu(22%), Luhya(14%), Luo(13%), Kalenjin(12%), Kamba(11%), Kisii(6%) 등 약 42개족
GDP	552.4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1,358불('14, World Bank)

### 1)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KNCHR)
- (2) 설립연도: 2002년에 최초 설립되고 실제로는 2003년부터 운영되었으나, 2010년에 헌법개정<sup>3001)</sup>으로 인해 재설립.
- (3) 설립배경: 최초 존재했던 인권기구의 명칭은 1996년 설립된 인권상임위원회 (The Standing Committee on Human Rights)이나 정치적 변동 때문에 두 번의 변화를 거침. 이 위원회는 24년간 케냐를 통치한 대니얼 모이 대

3000)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43.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5/1_22743.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7.4.) 외교부 케냐 약황(2016.3) 한글파일

3001) <http://kenyalaw.org/kl/index.php?id=398> 2010년 개정된 케냐 헌법, 정권교체와 민주화로 인하여 헌법 개정 (검색일 2016.10.26)

통령<sup>3002</sup>)이 국내외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설립한 기구<sup>3003</sup>)임. 이런 이유로 설립된 위원회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여론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통령의 의견만이 반영된 인물로 구성<sup>3004</sup>)되었고, 위원회의 권한, 자율, 독립성도 파리원칙에 미흡한 수준이었음. 또한 오랜 통치로 인해 발생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구이다 보니 실질적인 작동에 한계가 있었음.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뀐 2002년<sup>3005</sup>)에는 입법을 통해서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완하여 구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함. 하지만, 그 후에도 지속된 정치적 혼란과 더 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2010년 개헌이 되었고, 현재의 국가위원회가 설립. 새로 설립된 케냐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활동 지원 및 감시자 역할 및 케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케냐를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도 헌법 59조 1항, 2011년도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KNCHR법)이 설립됨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 이는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the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ct 9조)에 의하여 2002년에 설치된 구(舊)국가인권위원회를 대체함. 2011년에 특이한 점은, 구 국가 인권위원회에 있던 평등관련 권한을 성평등위원회(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에 부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새롭게 제정<sup>3006</sup>)하였다는 것임. 이런 구조 개편의 원론적인 이유는 케냐의 여아 할례, 조혼풍습, 일부다처제와 같은 심각한 성차별적 풍속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보

3002) 다니엘 아랍 모이 대통령은 24년간의 통치를 통해 그 피로감이 확대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국내외로 민주화에 대한 압력을 받음. 그런 와중에 인권상임위원회가 설립된 것. 케냐의 정치변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 <http://jinlezza.blog.me/220719669093> (검색일 2016.10.27)

3003) Risse, Thomas (EDT)등 3명,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63~67쪽

3004) 인권기구의 설립과 관련한 독립성과 자율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감시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 <https://www.hrw.org/reports/2001/africa/kenya/kenya.html> (검색일 2016.10.27)

3005)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opendocpdf.pdf?reldoc=y&docid=5476ec934> (구케냐국가인권위원회법 2002년) (검색일 2016.10.27)

3006) 제사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Kenya\\_National\\_Commission\\_on\\_Human\\_Rights](https://en.wikipedia.org/wiki/Kenya_National_Commission_on_Human_Rights) (검색일 2016.10.26)

여짐. 정치적인 이유는 민주화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예: 정치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비해 그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열망이 민주화가 되면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제정된 케냐 헌법 제 59조<sup>3007</sup>)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the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ct 9 조<sup>3008</sup>)에 근거하여 설립.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3009</sup>)

헌법에 근거한 국가인권기구. UN에서 승인한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로써 기능함. 그 특징은 먼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 받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직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가 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기구의 구성원에 관한 다양성이, 활동과 재원 등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함. 전체회의와 실무회의 구성 등 운영 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권한 보유.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 인권위원회는 2016년 기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2명의 위

---

3007) Kenya National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59. (1) There is established the Kenya National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2)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are (a)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evelop a culture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b)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quity generally and to coordinate and facilitate gender mainstreaming in national development; (후술 생략)

3008) 9. Membership of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 chairperson and four other membe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this Act.

3009)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4~6쪽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93명의 직원을 두어 인권위원회의 전략적 운영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sup>3010</sup>). 인권위원회는 민원 및 조사<sup>3011</sup>) (Complaint & Investigation), 보상<sup>3012</sup>) (Redress), 개혁 및 책임<sup>3013</sup>) (Reform & Accountability), 연구 및 준수<sup>3014</sup>) (Research & Compliance),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sup>3015</sup>) (Public Affair & Communication), 공공교육 및 훈련<sup>3016</sup>) (Public Education & Training),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sup>3017</sup>) (Economic Social & Culture right), 기타 지원부서<sup>3018</sup>) (Support)로 총 8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음.

<케냐-표 37> 케냐인권위원회 위원회 명단

부서	성명
위원장 (1)	Kagwiria Mbogori
부위원장 (2)	George Morara Monyoncho
위원 (2)	Jedidah Wakonyo Waruhiu
	Suzanne Shatikha Chivusia

출처: <http://www.knchr.org/Aboutus/Structure/Commissioners/CurrentCommissioners.aspx>

- 3010) KNCHR Annual Report 2015-2016 13쪽, 53쪽. <http://www.knchr.org/Aboutus/Structure/Commissioners/CurrentCommissioners.aspx> (검색일 2016.7.4)
- 3011) 케냐 인권위원회의 민원조사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ComplaintsInvestigation.aspx> (검색일 2016.10.28)
- 3012) 케냐인권위원회 보훈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Redress/AboutRedress.aspx>
- 3013) 케냐인권위원회 개혁책임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ReformsandAccountability.aspx> (검색일 2016.10.28)
- 3014) 케냐인권위원회 연구 및 준수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ResearchCompliance.aspx> (검색일 2016.10.28)
- 3015) 케냐인권위원회 대외협력 및 홍보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PublicAffairsandCommunication.aspx> (검색일 2016.10.28)
- 3016) 케냐인권위원회 공공교육 및 훈련 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PublicAffairsandCommunication.aspx> (검색일 2016.10.28)
- 3017) 케냐인권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부서 <http://www.knchr.org/Departments/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aspx> (검색일 2016.10.28)
- 3018) 케냐 인권위원회 기타지원부서는 감시,재정,인사관리등의 업무를 수행 <http://www.knchr.org/Departments/Support/MonitoringEvaluation.aspx> (검색일 2016.10.28)



출처: 케냐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nch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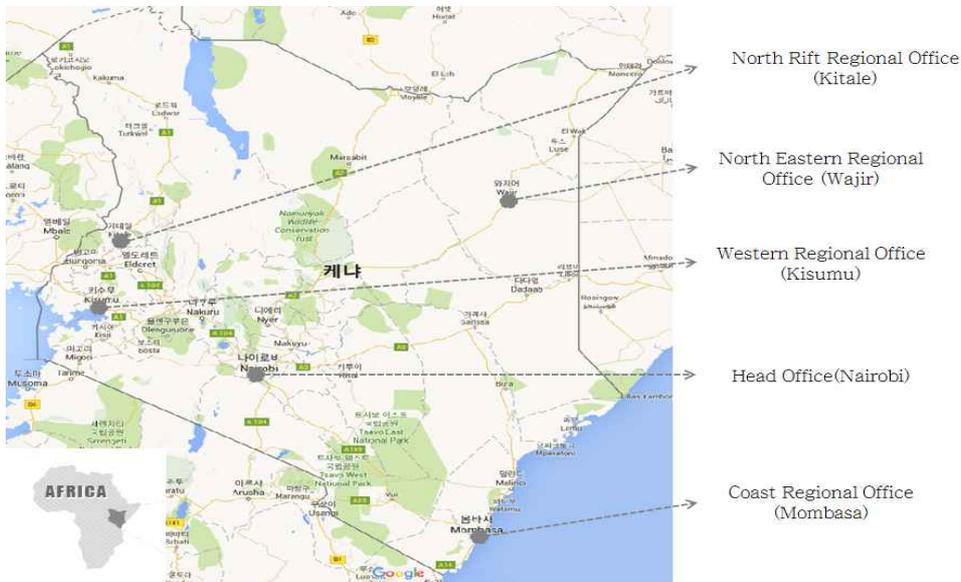
[케냐-그림 67] 케냐인권위원회 조직도

<케냐-표 38> 케냐인권위원회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업무
민원 및 조사 (Complaint & Investigation)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받아 조사하며,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위원회에 조언 인권침해 사항이 조정, 중재, 협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보상 (Redress)	기존이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보상 메커니즘 조정(인권 소송, ADR, 공공조정)
개혁 및 책임 (Reform & Accountability)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문제 해결 및 개혁 ·안보개혁(Security Sector reforms) ·사법개혁(Penal and Judicial Reforms) ·변혁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평화조성 및 국가통합 (Peace building and national integration)
연구 및 준수 (Research & Compliance)	인권과 관련한 입법,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개입을 알리는 목적으로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한 연구를 실시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Public Affair & Communication)	내부 및 외부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보의 교환 통로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내외적 정보교환 전략 수립
공공교육 및 훈련 (Public Education & Training)	인권의 존중 및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 Culture right)	케냐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강화
지원부서 (Support)	조직의 감시 및 평가, 재정, HR과 행정, 정보통신기술, 내부감사, 조달 등

자료출처: 케냐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nchr.org>

(2) 지역사무소: 인권위원회 본부는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에 위치하고 있으며, 키테일(Kitale)에 위치한 노트리프트리저널오피스(North Rift Regional Office), 와지르(Wajir)에 위치한 노트이스턴리저널오피스(North Eastern Regional Office), 키수무(Kisumu)에 위치한 웨스턴리저널오피스(Western Regional Office), 몸바사(Mombasa)에 위치한 코스트리저널오피스(Coast Regional Office) 총 5개의 지역사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sup>3019)</sup>



출처: 케냐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nchr.org>

[케냐-그림 68] 케냐 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sup>3020)</sup>

- 개헌이전 인권위원회는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Cohesion and Constitutional Affairs (MoJNCCA)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었음. 그러나 케냐 헌법 249조 제3항<sup>3021)</sup>에 명시된 ‘의회는 각 위원회와 독립 사

3019) <http://www.knchr.org/Aboutus/ContactUs.aspx> (검색일 2016.10.27.)

3020)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p.50

3021) 케냐 헌법 제249조 위원회의 재정과 독립성

249. Objects, authority and funding of commissions and independent offices

(1) The objects of the commissions and the independent offices are to (a) protect

무소들이 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고 각 예산안은 개별 투표에 부친다'는 내용에 따라 2011년 4월 재무부는 헌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표결권인 VOTE 64를 부여하여 위원회가 재무부에 직접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가고 있음.

-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제45조<sup>3022</sup>)에 따르면, 위원회의 재정공급은 의회에서 할당해주는 것과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보조금과 기부금, 위원회의 성과로 인한 자산의 축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통해 케냐 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을 충족하여 재정상의 독립성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음
- 케냐의 인권위원회의 재정은 2013~2014 회계연도에 적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다음해인 2014~2015 회계연도에는 적자가 매우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가능. 인권기구는 파리원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정보화가 매우 중요한 자율성, 독립성 판단의 척도임.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지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자가 감소한 점을 미루어 보건대, 케냐 헌법 제 249조의 위원회의 재정과 독립성보장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가능.

---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b) secure the observance by all State organs of democratic values and principles; and (c) promote constitutionalism.

(2) The commissions and the holders of independent offices (a) are subject only to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 and (b) are independent and not subject to direction or control by any person or authority.

(3) Parliament shall allocate adequate funds to enable each commission and independent office to perform its functions and the budget of each commission and independent office shall be a separate vote

3022) 케냐 인권위원회법 제45조 위원회의 재정 The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ct, 2011 45조

45. Funds of the Commission The funds of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 monies allocated by Parliament for the purposes of the Commission; (b) such monies or assets as may accrue to the Commission in the course of the exercise of its powers or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and (c) all monies from any other source provided, donated or lent to the Commission.

<케냐-표 39> 케냐 인권위원회 재정 현황

	2015-2016	2013-2014	2012-2013
수입	419,779 (약46억 2천만 원)	328,372 (약36억 2천만 원)	344,580 (약37억 9천만 원)
지출	422,641 (약46억 5천만 원)	346,761 (약38억 2천만 원)	347,690 (약38억 3천만 원)
적자	2,862 (약 3천만 원)	18,389 (약 2억 원)	3,110 (약 4천만 원 )

출처: 케냐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KNCHR Annual Report 2015-2016), pp.60~61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장관급 등),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sup>3023)</sup>: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①대통령의 권한으로 인권위원회 위원선정패널 구성 ② 위원선정패널에서 후보자 중 위원장 급 3명과 위원 급 8명을 선정 후 대통령에 리스트 제출 ③ 대통령과 총리의 합의를 통해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국회에 제출 ④ 국회에서 승인하면 위원에 임명함. 2016년 8월 현재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고문직을 역임하였던, 카그위리아 보고리(Kagwiria Mbogori)이며, 1명의 부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1석이 공석으로 남아있음<sup>3024)</sup>.

3023) 케냐 인권위원회법 제11조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의 선임관련 조항

The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ct, 2011

Procedure for appointment of chairperson and members

(1)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Commission the President shall, within fourteen days of the occurrence of the vacancy, convene a selection panel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suitable candidates for appointment as the chairperson or member of the Commission.

(2) The selection panel convened under subsection (1) shall consist of- (후략)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1](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1) (검색일 2016.10.28)

3024) <http://www.knchr.org/Aboutus/Structure/Commissioners/CurrentCommissioners.aspx> (검색일 2016.10.27)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케냐의 헌법기관<sup>3025</sup>이며, 케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관할. 그 활동들은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법률<sup>3026</sup>로 보장. 이런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서 케냐 인권위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sup>3027</sup>하는 역할을 수행. 여기에는 대통령선거도 포함. 헌법과 인권위원회법에는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실제로 이런 활동이 가능하려면 그 지위가 장관급이어야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직이므로 장관급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임.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sup>3028</sup>

위원장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음. 임명 후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함.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함. 또한 감독위원회의 작업을 지시하는 권한을 보유. 위원장이 권한 행사가 필요하나, 질병 및 타 원인으로 부재 시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함.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짐. ① 위원회

3025) <http://kenyalaw.org/kl/index.php?id=398> 케냐 헌법 제 59조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조항

Kenya National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1) There is established the Kenya National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후략)

케냐 국가인권위원회가 갖는 헌법기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링크를 확인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onst2010> (검색일 2016.10.28)

3026)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8조~20조,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지위와 각종 권한에 관하여 명시.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3](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3) (검색일 2016.10.26)

3027) <http://news.donga.com/3/all/20130301/53388925/1> “케냐 대선 앞두고 ‘5년전 종족 유혈사태 되풀이되나’”(2013.03.01.기사) (검색일 2016.10.26.)

지난달 27일 케냐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종족 간의 물리적 충돌, 갈등을 부추기는 혐박성 발언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은 수도 나이로비의 마타레 지역. 최근 2개월간 선거 관련 폭력으로 7명이 숨지고 100여 채의 집이 불탔다. 케냐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일부 지역에서는 마체테(날이 넓은 칼)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주민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28)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3](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3) (검색일 2016.10.26)

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소환장 발부가 가능하며, ②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법권이 있으며, ③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인권문제와 관련된 정보, 보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④ 위원회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관·지역·물질적 자료 등에 접근이 가능하며, ⑤ 필요로 하는 사람 및 조직을 인터뷰할 수 있으며, ⑥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참석을 강제할 수 있으며, ⑦ 헌법에 근거한 형평성의 원리를 정립하고 준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⑧ 정부 및 민간기관에게 형평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청가능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sup>3029)</sup>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단임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상근직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아야 함. 임기 만료 이외에 공석이 되는 경우는 죽음,구성원의 자발적 사임으로 그 근거는 케냐 헌법 제251조<sup>3030)</sup>에 명시.

3029)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3](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_5B/sec_3) (검색일 2016.10.26)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14조

14. Tenure of office

(1)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for a single term of six years and are not eligible for re-appointment.

(2)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on a fulltime basis.

3030) 케냐 헌법 제 251조 공직의 해임에 관한 조항

251. Removal from office

(1) A member of a commission (other than an ex officio member), or the holder of an independent office, may be removed from office only for—

(a) serious violation of this Constitution or any other law, including a contravention of Chapter Six;

(b) gross misconduct, whether in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or office holder's functions or otherwise;

(c)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to perform the functions of office;

(d) incompetence; or

(e) bankruptcy.

(2) A person desiring the removal of a member of a commission or of a holder of an independent office on any ground specified in clause (1) may present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setting out the alleged facts constituting that ground.

(3) The National Assembly shall consider the petition and, if it is satisfied that it discloses a ground under clause (1), shall send the petition to the President.

(4) On receiving a petition under clause (3), the President—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sup>3031)</sup> 등

케냐 헌법에 따라, 헌법 혹은 다른 법률의 심각한 위반, 지위를 오남용하는 경우, 공직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심신의 문제, 파산 등을 제외하고는 인권위의 구성원은 면책됨.

마) 주요권한 및 활동

(1)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sup>3032)</sup>

(가) 제도개혁: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 및 사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

---

(a) may suspend the member or office holder pending the outcome of the complaint; and

(b) shall appoint a tribunal in accordance with clause (5).

(5)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a person who holds or has held office as a judge of a superior court, who shall be the chairperson;

(b) at least two persons who are qualified to be appointed as High Court judges; and

(c) one other member who is qualified to assess the facts in respect of the particular ground for removal.

(6) The tribunal shall investigate the matter expeditiously, report on the facts and make a binding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who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within thirty days.

(7) A person suspended under this Article is entitled to continue to receive one-half of the remuneration and benefits of the office while suspended

3031)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15조

15. Vacancy of office of chairperson and members

(1) The office of the chairperson or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come vacant if the holder—

(a) dies;

(b) by notic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President resigns from office;

(c) is removed from office under any of the circumstances specified in Article 251 and Chapter Six of the Constitution.

(2) The President shall notify every resignation, vacancy or termination in the Gazette within seven days.

3032) <http://www.knchr.org/OurWork/TransitionalJustice/Institutionalreforms.aspx>

(검색일 2016.7.5.)

<http://www.knchr.org/OurWork/TransitionalJustice/EngagementwithTJRC.aspx>

(검색일 2016.7.5.)

(나) 진실·정의·회복위원회(TJRC: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와의 업무: 진실정의회복위원회(TJRC)는 2008년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TJR) 법에 의거하여,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케냐의 평화 및 정의 실현, 국가연합, 국민의 치료 및 회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독립된 1963년부터 국가 전체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인권침해의 원인 분석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sup>3033</sup>). 케냐인권위원회는 TJRC와의 협력을 통해 역사적으로 불공평한 정책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개인적, 비공개자료, 청문회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다) 법률·정책·행정개혁: 새로운 기관의 설립 및 기존기관의 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며, 시민권리 및 인권에 대한 책임성의 확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권한을 보장

(라) 탈선거폭력<sup>3034</sup>에 대한 책임과 평화구축 및 국가통합: 선거 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청문회 참여를 장려. 더불어 평화 구축과 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 강조

(2) 정치적 책임<sup>3035</sup>)

선거과정에 대한 시민 교육 실시하며,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캠페인 및 선거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3) 인권에 대한 공공교육<sup>3036</sup>)

(가) 법치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존중, 인권 신장 등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공공 인식에

3033)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 2013

3034) 선거폭력이란, 선거전·후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2013년 케냐의 새로운 대통령과 상원의원,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두 건의 폭력사태가 일어나 적어도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3035) <http://www.knchr.org/OurWork/Politicalaccountability.aspx> (검색일 2016.7.5.)

3036) <http://www.knchr.org/OurWork/Publiceducationonhumanrights.aspx> (검색일 2016.7.5.)

대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나) 정부 및 동부 지역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Based Organisation, CBO)<sup>3037</sup>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IEC(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자료를 보급
- (다) 교육 및 능력향상 교재: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및 커리큘럼 제 작됨. 매뉴얼 및 커리리큘럼은 정책집단에 대한 행정의 질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인 인권참고서로 사용되고 있음.
- (라)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 인권기반접근 방법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래 인권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돼 사용되어오고 있음. 또한 발전을 개인의 권리로 구성하고, 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우선에 둔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HRBA는 발전을 가로막는 권력구조의 개선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인권증진과 자유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3038</sup> 케냐인권위원회는 HRBA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권주류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 국제적 의무 준수<sup>3039</sup>

케냐의 법무부 등 각종 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적 인권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예를 들면, 케냐 국가인권위는 주거, 선거, 사업등에 대한 활동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국제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함. 특히, 2011년 이후 인권위는 그들의 예산을 재무부로부터 직접 받는데, 이것은 파리원칙중 재정적 독립성, 자주성의 요건을 충족<sup>3040</sup>시키려는 활동임.

(5) 실향민, 원주민, 장애인의 인권보장 노력

- (가) 케냐의 국내 실향민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sup>3041</sup>

3037) <http://www.compassion-cbo.org/about>, (검색일 : 2016.9.25.)

3038) 유해정(2009). 인권과 발전 : 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

3039) 국제적의무에 관하여 더 많은 내용을 알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knchr.org/OurWork/Compliancewithinternationalobligation.aspx> (검색일 2016.7.5.)

3040)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61쪽

3041) 원주민등의 사회적약자에 관한 프레임 워크에 관하여 더많은 내용을 알고자하면 다

하며, 원주민의 인권을 알리는 공공교육 실시하고 있음<sup>3042)</sup>

(나)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교육기관, 병원,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sup>3043)</sup>

(6) 문화와 인권<sup>3044)</sup>

케냐의 관습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함. 케냐에는 고대 아프리카의 많은 악습이 존재하는 데, 알비노<sup>3045)</sup>, 여성 할례<sup>3046)</sup>, 아내 상속 제도<sup>3047)</sup> 등이 있음. 인권위는 이런 활동을 최대한 개선시켜 케냐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함.

(7) 사업장에서의 인권<sup>3048)</sup>

사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홍보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sup>3049)</sup>을 진행. 특히 권력차이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중간관리자들과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음. 또한 불공정 임금, 노조활동 등의 노동법 준수여부도 실사

(8) 법률 서비스<sup>3050)</sup>

---

음 링크를 참조. <http://www.knchr.org/OurWork/Minoritiesandmarginalisedgroups/IDPs.aspx> (검색일 2016.7.5.)

3042)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홍보하는 공공교육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knchr.org/OurWork/Minoritiesandmarginalisedgroups/Indigenouspeople.aspx> (검색일 2016.7.5.)

3043) 실향민, 원주민,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knchr.org/OurWork/Minoritiesandmarginalisedgroups/Personswithdisabilities.aspx> (검색일 2016.7.5.)

3044) <http://www.knchr.org/OurWork/Cultureandhumanrights.aspx> (검색일 2016.10.26.)

3045) 케냐에서 알비노의 의미를 더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2401073309312001> (검색일 2016.10.26)

3046) 케냐의 여성할례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3010007177> (검색일 2016.10.26)

304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3>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검색일 2016.10.26)

3048) <http://www.knchr.org/OurWork/Businessandhumanrights.aspx> (검색일 2016.7.5.)

3049) 케냐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KNCHR Annual Report) 2015-2016, 18~23쪽

-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함. 또한 헌법 제 252조의 권한 외에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sup>3051</sup>).
- 인권위원회는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음.
  -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은 진술인의 선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되며, 인권위원회는 그 선서를 관리함.
  -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문제들을 판결함.
  - 인권위원회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보고서 및 기록물, 정부기관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증언을 포함한 모든 정보들을 합법적 수단에 의해 획득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그러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가능.
  - 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법원명령에 따라서 어떤 건물,토지를 압류할 수 있음. 인권위원회는 또한 특별히 정보를 획득, 조사목적 혹은 어떤 재산을 조사하거나 또는 서류들의 사본을 획득하여 그 상대방의 재산 및 서류들을 보존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압류가능함.
  - 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사람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소환하여 위원회와 미팅을 하거나 공청회에 참가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요청에 불응한 사람들을 강제소환하여 관련된 공청회에 답변하게 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 및 영리 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권리도 지님.
  - 인권위원회는 공공 기관 및 영리 단체들에 대해 성 평등을 포함한 평등과 형평성의 원리를 준수하는 문제와 관련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3050) <http://www.knchr.org/OurWork/LegalServices.aspx> (검색일 2016.7.5.)

3051)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52쪽~53쪽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인권위원회법 8조<sup>3052)</sup> “위원회의 기능(Functions of Commission)”이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짐. ①인권 및 인권문화를 증진하고, ②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권을 위한 보호 및 감시를 증진하고, ③국가 전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및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며, ④접수된 인권침해 및 남용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⑤인권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에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⑥인권과 관련된 공공 및 시민 의식 및 의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⑦ 인권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성평등위원회(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및 행정사법위원회(Commission on Administrative justice)와 협업하여야 하며, ⑧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⑨ 헌법 및 기타 법령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해야 함.<sup>3053),3054)</sup>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케냐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국제인권법등의 규범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 현행법 및 입법안,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함.
- (2) 인권관련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효율적인 고충처리 및 시정을 위해 시민

3052)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

8.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to (a)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evelop a culture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b) promote the protection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후략)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 5B/sec\\_1](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B#KE/LEG/EN/AR/K/CHAPTER%205B/sec_1) (검색일 2016.10.28)

3053) 국가성평등위원회(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NGEC)는 양성 평등과 자유를 증진의 목적으로 2011년 8월 의회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헌법위원회로 2011년도 국가 인권위원회법이 설립되면서 양성평등 기능이 분사됨. <http://www.ngeckenya.org/> (검색일 : 2016.9.25.)

3054) 행정사법위원회(Commission on Administrative justice)는 2011년도 행정사법위원회법(Commission on Administrative Justice Act 2011)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소송 및 준 사법 관련 처리 및 분쟁 해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임. <http://www.ombudsman.go.ke/> (검색일 2016.9.25.)

단체 및 전문기관 등 제휴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법률 및 심리상담등 인권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3)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임. 그중에서도 각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의 권력차이로 파생되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인권 분야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공.
- (4) 국가 전반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권이 보호되기 어려운 비개발지역의 인권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런 이유로 인권위는 인권 존중 및 인권 문화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공해 왔음.
- (5) 성평등 위원회가 관할하는 ‘차별로부터의 평등과 자유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학대에 대한 수리 및 조사,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다양한 조사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
- (6)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지니며, 그에 대한 민원이나 정황이 발생 시 조사하고 이를 법무부 및 관련부서 보고할 수 있음.
- (7)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인권이 잘 보호되고 인권관련 규범이 잘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권한을 지님.
- (8) 인권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 실효성 및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고, 시민단체 및 국제NGO들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 성평등 위원회 및 행정심판소와 협력해 왔음.

####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A등급을 받은 이후로 2008년 11월, 2014년 3월, 2016년 8월 심사에서도 A등급 유지<sup>3055)</sup>

---

3055) GANHRI 2016년 8월 5일자 등급심사, 출처 : <http://nhri.ohchr.org/E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검색일 2016.8.22.)

## 2)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sup>3056)</sup>

###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 (1)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을 근거규범으로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인권 활동 지원 및 감시자 역할 및 케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케냐를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수립되었으며<sup>3057)</sup>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피해구제, 교육, 홍보, 정책개선, 사법부 의견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수행해 오고 있음.
- (2) 피해구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인권 침해를 겪거나 이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가정 폭력 및 학대를 다루고 있음
- (3) 교육은 예비경찰관, 공무원, 예비교사,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헌법하의 인권에 대한 법안, 위원회의 형성과정,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4) 홍보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권을 홍보하는데 있으며, 케냐의 언론협회(Media Council of Kenya, MCK), 기자연합(Kenya Union of Journalists, KUJ)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분야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도모하고 있음.<sup>3058)</sup><sup>3059)</sup>
- (5) 정책개선 및 사법부 의견 제출은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법안에 대하여 국내외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문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인권관련 법안 및 정책을 리뷰하고 있음. 2015년에는 20개의 법안과 5개의 정책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졌음.

3056)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The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ct 8조 1항-10항

3057) <http://www.knchr.org/Aboutus/Establishment.aspx> (검색일 2016.7.4.)

3058) 케냐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ediacouncil.or.ke/en/mck/>, (검색일 : 2016.9.25.)

3059) 케냐 언론인협회 홈페이지 : <http://www.kenyaunionofjournalists.org/> (검색일 : 2016.9.25.)

나)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sup>3060)</sup>

-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사명을 가지고 2002년 설립된 국가의 최고인권기구로 관련 근거법이 2002년 법률에 명시되었다가 2010년 헌법에 명시하면서 위상관계가 국가적으로 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즉, 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하여 인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등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인권과 인도주의 법률 준수에 관한 조언, 관찰, 경고, 조정과 평가와 관련된 기구이다. 위원회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집단적, 개인적 자유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장려하고,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사항에 주목하며, 권리 침해 사안을 검토
- 또한 케냐를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KNCHR)로서 국가인권 기구 국제 합동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인권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Afric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ANHRI)의 구성원 중 하나로 속하여 있음.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고문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는 등 세계적 수준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sup>3061)</sup>
- 이렇게 국내외 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중인 케냐인권위원회지만, 케냐전역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2016년 7월에는 경찰을 고소한 원고와 변호사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케냐전역에서 조혼을 위한 여성할례와 알비노 사냥이 이뤄지는 중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케냐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방면에 걸친 의식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오랜 악습을 없애는 것이 쉬운일은 아님. 하지만, 마우마우 사태

3060)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pp.49~61.

3061) 아프리카 국가 인권 기관 네트워크(The Network of Afric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ANHRI)는 국가 인권기구의 국제 합동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HRIs, ICC) 내 4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역 중 하나로 아프리카 국가 인권기구의 모니터링,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개발 협력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임.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knchr.org/> (검색일 : 2016.11.21.)

와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케냐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 보임

### 3) 케냐 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 가) 피해 구제<sup>3062)3063)</sup>

- 케냐 인권기구는 인권표준에 맞도록 인권에 관한 불만들을 접수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교육시키며, 공공포럼을 개최하여 입법행위를 검토하고 있음. 인권위원회는 외부 상담사를 고용하여 고문, 모독 및 아동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겪거나 이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가정 폭력 및 학대를 다루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판단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응답(Rapid Response)’ 조사를 펼칠 수 있음
- 2015-2016년도 회계연도에 접수된 불만사항은 총 4,667건으로 전년도 1,797건에 비해 2870건(159.7%)이 증가함. 세부적으로 나이로비사무실(Nairobi Office)에 접수된 불만사항이 1,885건(35.9%), 북부지역사무소(North Rift Regional Office)에 접수된 불만사항이 1,750건(32.7%)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접수된 불만사항 4,667건 중 여성의 불만사항은 1,438건(30.8%), 남성의 불만사항은 3,229건(69.2%)으로 조사되어, 여성보다 남성의 불만사항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062) 케냐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5~2016(KNCHR Annual Report 2015-2016) , 28~30쪽

3063) <http://www.knchr.org/Departments/Redress/AboutRedress.aspx>  
(검색일 2016.10.27)

<케냐-표 40> 2015-2016년도 회계연도에 접수된 불만사항

지부	건수	백분율
Nairobi Office	1,885	35.9%
North Rift Regional Office	1,750	32.7%
North Eastern Regional Office	285	6.4%
Coast Regional Office	734	14.4%
Western Regional Office	319	10.6%
총계	4,667	100%

출처: KNCHR Annual Report 2015-2016 ,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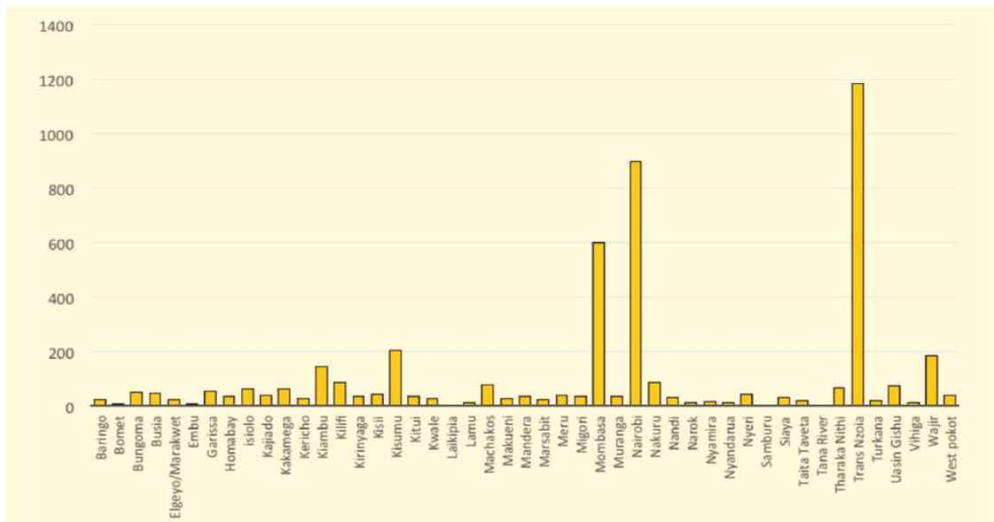
· 불만사항 접수방법은 직접방문(Physical Visits)을 통한 방법이 3,855건(8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전화(Telephone)접수가 46건으로 약 7.41%를 차지하였음. 공공포럼(Public Forums)을 통한 접수는 137건(2.94%), 이메일(Email)을 통한 접수는 130건(2.79%)으로 그 뒤를 이었음. 한편, 전년도와 불만접수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대리인(Referral), 공공포럼(Public Forums), Huduma Centre 방법이 추가되어, 불만사항의 접수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케냐-표 41> 접수방법에 따른 분류

접수방법	건수	백분율
직접방문 (Physical Visits)	3,855	85.20%
인쇄매체(Print Media)	2	0.04%
우편(Postal Mail)	66	1.41%
전화(Telephone)	346	7.41%
이메일(Email)	130	2.79%
홈페이지(Website)	42	0.90%
통합공공불만신고메커니즘 (IPCRM: Integrated Public Complaints Referral Mechanism)	40	0.86%
팩스(Fax)	2	0.04%
대리인(Referral)	7	0.15%
공공포럼(Public Forums)	137	2.94%
봉사센터(Huduma Centre)	40	0.86%
총계	4,667	100%

출처: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KNCHR Annual Report 2015-2016), p.30

· 지역별로는 트랜스 나이저리아 주(Trans Nzoia county) 약 1,200건으로 가장 많은 불만사항 건수가 접수되었고, 케냐국가인권위원회 본부가 있는 나이로비(Nairobi)가 약 900건, 몸바사(Mombasa) 지역이 약 600건으로 그 뒤를 이음.



출처: 케냐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KNCHR Annual Report) 2015-2016 , p.31

[케냐-그림 69] 지역별 불만사항 건수

· 인권위원회 피해자 구제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에서 빈번한 폭력사태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2014년 4월 “Usalama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케냐국가인권위원회는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임의적 체포, 강요, 절도와 주택약탈, 성희롱, 임의적 구금, 불법적인 용의자 인도, 고문, 잔혹하고 비하하는 대우와 같은 인권 침해 발생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 케냐국가인권위원회는 카라사니(Kasarani) 내 경기장과 카사라니(Kasarani), 엠바카시(Embakasi), 팡가니(Pangani), 부루(Buru) 등의 경찰서에 억류된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격되어진 다양한 폭력들에 대해 문서화하고 사실을 규명하였음. 특히 2개의 사건은 케냐 난민 컨소시엄(Refugees Consortium of Kenya, RCK)에 보내지기도 하였음.<sup>3064</sup>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경찰이 작전수행과정에서 헌법 244조<sup>3065</sup>)를 준수하지 않으며, 국제적 경찰로써의 전문적인 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냄.

나) 교육<sup>3066</sup>)

- (1) 예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헌법 하의 인권에 대한 법안, 위원회의 형성과정, 고문에 대한 수사과 서류, 인권기반적 접근의 적용에 대해 교육함. 또한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274개의 county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기반적 접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음
- (2) 비정부 영역에 대한 인권 교육도 워크샵이나 포럼을 개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 농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도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고, 인권에 대한 법률과 인권기반적인 접근에 대한 적용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등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Moi University와 Mosoriot Teachers Training College의 학생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3) 위원회는 인권 클럽을 설립하여 Wajir의 12개 중등학교, 34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원칙과 표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4) 수감자에 대한 인권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케냐 경찰(Kenya Police Service, KPS), 국가 경찰(National Police Service, NPS)를 대상으로 인권

---

3064) 케냐 난민 컨소시엄(Refugee Consortium of Kenya, RCK)은 1998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난민의 존엄성 및 권리에 대해 홍보하고, 국내 실향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임.

3065) 케냐 헌법 제24조 케냐 경찰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조항  
Objects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Police Service  
The National Police Service shall (a) strive for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and discipline among its members; (b) prevent corruption and promote and practi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 comply with constitu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d) train staff to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competence and integrity and to resp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dignity; and  
(e) foster and promote relationships with the broader society.

3066) 케냐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5~2016 (KNCHR Annual Report 2015-2016), 19~25쪽

교육 훈련을 착수하였음. 이에 Kodiaga, Kibos 지역의 감옥 시설과 Shikusa Bostal 시설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수감자에 대한 유엔 최소 기준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SMRTP) 인권 원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의 상호 작용을 위해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다) 홍보<sup>3067)</sup>

- (1) 홍보활동은 위원회를 외부에 알리고 인권을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위원회의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인권위원회는 언론홍보를 위하여 케냐언론 협회(MCK), 케냐 기자 연합(KUJ) 및 케냐 특과원 협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분야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하고 홍보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몸바사(Mombasa)의 저널리스트들과의 저녁식사 및 나이로비(Nairobi)의 편집장과 아침식사 등의 홍보 관련 조직 행사는 주목할 만 함.
- (2) 2014-2015년도 회계연도 동안 위원회는 시각적인 가시성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유튜브 인권위원회 채널(YouTube channel)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음. 온라인 오디오 유통 플랫폼인 사운드클라우드에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음. 이처럼 소셜 미디어의 최적화를 실시한 결과, 트위터의 팔로우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페이스북 내 좋아요(Like) 수는 증가하고 있음.
- (3) 헌법의 공포 이후, 케냐 언론 협회는 서부(Western), 중동부(Nyanza), 북부(North Rift) 지역 기자, 특과원, 리포터를 대상으로 새 헌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헌법이 구현될 수 있는가와 언론 종사자들이 어떻게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
- (4) 2013년부터 12월 10일을 국제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권위원회 주최로 TV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케냐 내의 인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200명이 이 토론회에 참가하였으며, 핀란드와 네덜란드 대사도

---

3067) 케냐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5~2016 (KNCHR Annual Report 2015-2016), 54~56쪽

토론회에 참석하였음.



출처: <https://www.youtube.com/channel/UCvau8kppyBG-j8ZHYWOpXDQ>

[케냐-그림 70] 케냐 인권위원회 유튜브

라) 정책 개선<sup>3068)</sup>

(1) 2014년 입법관련 활동 사례

채광법안(Mining bill), 장애인개정법안(Persons with Disabilities amendment bill), 국기 및 상징법안(Flags and emblems bill, Languages bill), 에너지 법안(Energy bill), 개정된 아동법률(Amendments to the children's Act), 적극적조치법안(Affirmative Action bill), 희생자보호법안(Victim protection bill), 동아프리카지역 시민교육 법안(East Africa Community Civic Education bill), 케냐정보개정법안(Kenya Information Amendment bill), 공익조직개정법안(Public Benefit Organizations Amendment bill), 결혼법안(Marriage and Matrimonial Causes Bill)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이 이루어 짐

(2) 2015년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 사례

· 국가등록 및 신원확인법안(National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Bill), 수자원법안(Water Bill), 공정한행정작용법안(Fair Administrative

3068) 케냐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5~2016(KNCHR Annual Report 2015-2016), 23~25쪽

Action Bill), 보건법안(Health Bill), 목격자보호개정법안(Witness Protection Amendment Bill), 장애인개정법안(Persons with Disabilities amendment bill) 등 총 20개 법안에 대한 리뷰 및 의견 제출이 이루어짐

- 인권보호운동가정책(Human Rights Defenders Policy)에 대한 리뷰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 인권위는 정기 인권이사회에 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의견 제출
- 평등정책(Equality Policy)에 대한 리뷰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 젠더다양성주류화정책(Gender Diversity Mainstreaming Policy)에 대한 리뷰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 공공분야의 보수 및 권력이양정책(Public sector remuneration policy and Devolution policy)에 대한 리뷰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마) 사법부 의견 제출

케냐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책임 하에 헌법, 국제인권법 원리 및 케냐에 적용가능한 기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법 및 입법안, 그리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법률, 정책, 행정조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입안자들에게 권고사항을 전달

- (1) 2011년 여성 변호사 연맹(The Federation of Women Lawyers, FIDA<sup>3069</sup>) 및 27명의 법무장관 및 3명을 상대로 한 청원(Petition No.273 of 2011 FIDA and 27 others vs. Attorney General and 3 others) 국내 난민(IDPs)에 의해 2007-2008년에 걸쳐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겪은 27명의 보상을 위해 위원회는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로써 참여하였으며, 이에 2011년 10월 여성변호사 연맹(The Federation of Women Lawyers, FIDA), 국제법학위원회와 함께 사법부에 청원서를 제출함<sup>3070</sup>)
- (2) 201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연합<sup>3071</sup>(Coali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3069) 케냐여성변호사연맹 홈페이지 : <http://fidakenya.org/>, (검색일 : 2016.9.25.)

3070) 여성변호사연맹과 국제법학위원회가 사법부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 <http://kenyalaw.org/caselaw/cases/view/116139/> (검색일: 2016.9.25.)

3071) 여성에 대한 폭력 연합(The Coali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COVAW)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는 케냐의 침묵에 대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단

의 청원 (Petition No. 122 of 2013 COVAW sexual violence :case)2007년 -2008년 선거기간 동안에 피해여성 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합이 피해여성이 겪은 성폭력 및 선거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위원회가 나이로비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함.

- (3) 2014년도 미혼모 LNW의 청원(Petition No. 484 of 2014 L.N.W v A.G and another) 결혼 후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주장하는 여성 및 아이들을 위하여 인권위원회가 나이로비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함.<sup>3072)</sup>

바) 구체적 활동

- (1) 2008년 4월과 5월 엘곤산(Mount Elgon) 지역 주민들이 치안부대원들에게 당한 인권 학대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군부대가 개입하게 된 시초는 그 지역 민병대들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들 때문이었음. 치안 부대에 의한 인권 침해 주장을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사보앗 지역방위군 (SLDF)이 6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일곱 명의 목을 베었으며 신체 훼손, 강간, 갈취와 약탈, 재물 훼손 등을 자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항상 죽임을 당하거나 시달릴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 더불어 그들은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게 신고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고 정치적 보복 운동이나 무어 지방방위군 등 다른 민병대 그룹들이 SLDF에 대항하여 결성됨. 그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발견. 위원회는 “The Mountain of Terror”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배포하고 조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의회 안전보장 위원회의 배석 하에 회의를 개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초빙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군대의 고문에 대한 증거 자료 및 진술의 사본을 법무 장관의 사무실로 발송.
- (2) 2013년 6월 4일자 편지를 통해 아프리카 인권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케냐

---

절하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1995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https://covaw.wordpress.com/>, (검색일: 2016.9.25.)

3072)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kenyalaw.org/caselaw/cases/view/122371/>, (검색일 : 2016.9.25.)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프리카 토착 주민 및 공동체를 담당하는 아프리카 위원회 조사단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3년 6월 18일 서신을 통해 이를 수락하였다. 토착민들에 대한 조사 위원회의 핵심으로서 위원회는 아프리카 토착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아프리카 위원회에 조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 (3) 토착민들의 상황, 그들의 인권 보호 단체 및 변호인에 대한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단에 제출. 토착민의 권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조사단의 제안, 긴급호소 및 결정 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세미나, 훈련, 회의, 워크숍 등 홍보 활동의 기획에 있어 조사단과 협조하고 그들을 지원. 조사단이 정보를 보내거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원. 조사단과의 공통 관심 영역이라면 어떤 분야이든 정보를 공유, 협력

사) 주요 인권 이슈<sup>3073)</sup>

(1) 마우마우 투쟁<sup>3074)</sup>

-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 설립 후 식민지시대 있었던 과거사인 마우마우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왔음. 1952년 이후,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당시 케냐에서 약 9만 명을 학살하고, 16만 명을 감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5만 명이 인권위에 신고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잠시 중단. 2010년 개헌이후 다시 활발하게 배상운동 재개.
- 2009년 영국정부는 개인 단위의 소송에 대하여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식민통치권을 케냐정부가 이양하여 책임역시 케냐정부에 있다고 주장. 하지만, 케냐 인권위의 배상 및 사과 촉구와, 유엔 특별조사관등 세계여론의 압력으로 당시 영국 수상인 카메론은 과거사와 관련한 서류를 공개. 이후 영국 사법부가 영국 정부의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단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재개. 이후 영국정부는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하고자 피해자에게 제안. 이후 피해자들은 합의<sup>3075)</sup>에 동의. 새로이 소송을

3073)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2013

3074) 마우마우 항쟁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마우마우’ 60년 항쟁에 영국 손들었다

<http://www.hani.co.kr/arti/PRINT/586365.html> (검색일 2016.10.26.)

주장한 41,005명의 피해자<sup>3076</sup>들은 재판진행 중.

- (2) 2011년 위원회는 HIV와 AIDS에 감염된 사람들이 겪는 비난과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KELIN (케냐 에이즈 문제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네트워크)와 함께 2010 국제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에이즈 환자가 겪는 차별과 비난을 멈추고 그들의 인권회복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3) 2013년 케냐 대통령 선거감시<sup>3077</sup>

다민족 국가인 케냐의 선거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특히 케냐의 몸바사 항을 통해서 아프리카 동부의 많은 물류가 운송되므로 그 피해는 주변국에도 영향을 줌. 이런 상황에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종족 간의 물리적 충돌, 갈등을 부추기는 협박성 발언이 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가열된 대선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음. 이와 같이 케냐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의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하여 논평하여 주의를 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 (1) 케냐 인권위원회는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파리조약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년에 한번씩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음. 또한 아프리카 국가 인권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Afric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ANHRI)의 일원 중 하나로 해당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음. 케냐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아프리

---

3075) 다음은 케냐의 인권위원회(국가기관이 아닌 NGO)가 올린 관련 링크.  
<http://www.khrc.or.ke/2015-03-04-10-37-01/press-releases/555-khrc-celebrates-kenya-s-heroes-and-heroines.html>. (검색일 2016.10.26)

3076) 마우마우 항쟁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마우마우를기억하라’링크를 참조. [http://rikszine.korea.ac.kr/front/article/humanList.minyeon?selectArticle\\_id=687](http://rikszine.korea.ac.kr/front/article/humanList.minyeon?selectArticle_id=687), (검색일 2016.10.26)

3077) 케냐의 대선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다음 기사를 확인 케냐 대선 앞두고 “5년전 종족 유혈사태 되풀이되나”(2013년 3월 1일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30301/53388925/1#csidx248a167b0f6c651bb61f0ace1006b22> (검색일 2016.10.28)

카 국가 인권기관 네트워크(NANHRI)의 사무국은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음<sup>3078)3079)</sup>

- (2) 인권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Network of Afric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ANHR)에 지속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아프리카에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3) 케냐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과 다른 국가의 인권위원회 인사들과의 교환방문을 통하여 위원회의 시스템을 전파 및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들을 지원하고 있음
- (4) 케냐인권위원회는 국제수준의 기준과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sup>3080)</sup>을 진행중. 특히 2015년 1월에는 제네바와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가별정례인권검토<sup>3081)</sup>(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위해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sup>3082)</sup>에 참석하여 세계각지의 국가인권기구의 위원 및 대사들과 각지의 인권현황과 인권문제에 대하여 심사 및 논의하고 상호 조언을 해줌. 또한, 2015년 4월에는 제 56회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정기총회에도 참가하여 나이지리아, 지부티, 말라위 등의 국가의 대표들과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교류하며 아프리카의 인권개선에 대하여 토의.

---

3078) 위의 내용은 케냐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를 참고하여 서술. KNCHR Annual Report 2013-2014

3079)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2013 , pp. 55~56.

3080) 케냐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5~2016(KNCHR Annual Report 2015-2016), pp. 40~41.

3081)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설된 제도로 193개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를 받는 제도이다.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4년에 걸쳐 193개 회원국 모두가 순차적으로 심의를 받는다. 매년 세 차례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심의를 한다. 심의 대상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이 국가보고서를 포함해 해당국의 인권과 관련된 별도의 국제연합 보고서와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보고서를 회람한다. 이후 심의 대상국 대표단이 UPR 실무 그룹 회의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평가한 후 토의한다. 1개국 당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인권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https://www.upr-info.org/en/upr-process/what-is-it> (검색일 2016.10.28)

3082)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 <http://www.unhcr.org> (검색일 2016.10.28)

#### 4) 케냐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국가성평등위원회<sup>3083)</sup>

- (1) 설립 : 국가성평등위원회(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NGEC)는 양성 평등과 자유를 증진의 목적으로 2011년 8월 의회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헌법위원회임. 종전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다가 2011년도 국가 인권위원회법으로 양성평등 기능이 분사되면서 국가성평등위원회가 설립됨. 2010년도에 개정된 헌법 제10조, 27조, 43조, 59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위원회에 관련 기능이 위임됨.
- (2) 조직구성 : 케냐 국가성평등위원회는 Winfred Lichuma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대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나이로비(Nairobi)에 위치함.
- (3) 주요업무 : 국가성평등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먼저  
① 법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② 국가 법률, 협약, 조약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성 평등에 대한 감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 실시, 기존 성폭력 및 차별 관련 정책 개발 및 평가 실시함. ③ 청소년 및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 공개 교육 포럼 실시,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함. ④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및 정부에 권고, 장애인 평등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나) 케냐 인권위원회(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 (1) 설립: 1991년 워싱턴DC에서 5명의 케냐인(Prof Makau Mutua, Mr Maina Kiai, Dr Willy Mutunga, Hon Kiraitu Murungi and Prof Peter Kareithi)에 의해 처음 형태를 갖추었으며, 1994년 1월에 케냐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음.<sup>3084)</sup> 케냐인권위원회(KHRC)는 케냐국가인권위원회(KNCHR)와 비교하였을 때, 주요업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직의 형태면에서 KHRC는 비정부조직(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며,

3083) 케냐 국가성평등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geckenya.org/> (검색일 : 2016.9.27.)

3084) 케냐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hrc.or.ke/about-us/history.html>  
(검색일 2016.7.11.)

KNCHR은 정부조직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을 들 수 있음.

- (2) 조직구성<sup>3085</sup>): 케냐 인권위원회는 George Kegoro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상의 전체 팀 멤버는 총 19명임<sup>3086</sup>)
- (3) 주요업무: 케냐 인권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법적 정의 실현<sup>3087</sup>)으로써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법률의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위해 노력함. 둘째는 경제적·사회적 정의 실현<sup>3088</sup>)으로써, 경제적·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책임성, 노동 권리, 무역 정의 실현, 권력 이양과 책임성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셋째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양성<sup>3089</sup>) 확보로써, 국가 내에서 소수 집단으로써 소외되어 의사 결정의 공공영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을 위해 소외 그룹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국가적·지역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법률 개혁을 위해 노력함. 넷째, 기관 지원 및 개발<sup>3090</sup>)으로써 여성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 개인과 기관에 대한 인권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에 대한 이슈를 미디어를 통해 계속 노출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4) 성공사례: 그 동안 케냐 내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비리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해 왔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인권위원회에서는 선거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

3085) <http://www.khrc.or.ke/about-us/board-members.html> (검색일 2016.7.11.)

3086) <http://www.khrc.or.ke/about-us/meet-the-team.html> (검색일 2016.7.11.)

3087) <http://www.khrc.or.ke/programmes/transformative-justice.html> (검색일 2016.7.11.)

3088) <http://www.khrc.or.ke/programmes/economic-and-social-justice.html>  
(검색일 2016.7.11.)

3089) 케냐 인권위원회의 정치자유에 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확인.  
<http://www.khrc.or.ke/programmes/political-pluralism-and-diversity.html>  
(검색일 2016.7.11.)

3090) 케냐 인권위원회의 기관차원의 지원개발관련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 <http://www.khrc.or.ke/programmes/institutional-support-and-development.html> (검색일 2016.7.11.)

기반을 만들어 인권 선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거 관련 법률 제정을 진행시킴. 또한 생체 인식을 통한 유권자 식별 장치 도입과 모든 선거과정을 기록하여 사진, 오디오 및 영상 기록 등을 포함하여 3,000여 개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기관에 대한 비리를 보도함<sup>3091</sup>. 더불어 입법 개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권리에 대한 특별 보호를 지원함.<sup>3092</sup>

## 15.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정보 <sup>3093</sup>	
면적	1,220,000km <sup>2</sup>
인구	5,368만 명('15.7 잠정)
수도	행정(프레토리아(Pretoria)), 입법(케이프타운(Cape Town)), 사법(블롬폰테인(Bloemfontein))
정치형태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의회가 대통령선출)
민족	흑인(79.4%), 백인(9.2%), 혼혈인(8.8%), 아시아계(2.6%)
주요언어	영어, 아프리카스어, 줄루어 등 11개 공용어
주요종교	기독교(대부분)
GDP	GDP : 3,501억불('14, World Bank)
	1인당 GDP : 6,483불('14, World Bank)

### 1) 남아공 국가인권기구의 일반현황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SAHRC)<sup>3094</sup>
- (2) 설립연도: 1995년 2월
- (3) 설립배경<sup>3095</sup> :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sup>3096</sup> 철폐이후, 흑인이 참여한

3091) <http://www.khrc.or.ke/achievements/success-stories/502-electoral-reform-for-last-ing-peace-in-kenya.html> (검색일 2016.7.11.)

3092) <http://www.khrc.or.ke/achievements/success-stories/501-landmark-legislative-work-to-revolutionize-equality-in-kenya.html> (검색일 2016.7.11.)

3093)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3/1\\_22560.jsp?menu=m\\_40\\_60\\_20#contentAction1](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3/1_22560.jsp?menu=m_40_60_20#contentAction1) (검색일 2016.7.11)

3094)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ahrc.org.za/> (검색일: 2016.7.11.)

3095) <http://sahrc.org.za/index.php/about-us/about-the-sahrc> (검색일: 2016.7.11.)

최초의 1994년 총선거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아프리카민족 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여러 인권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면서 남아프리카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설립됨.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1995년 2월에 1994년 제정된 인권위원회법(the Human Rights Commission Act)<sup>3097</sup> 제 54조와 1993년 제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sup>3098</sup> 제200절에 의해 설립되었음. 인권위원회는 헌법 제9장에 명시된 기관들(Chapter nine institutions)<sup>3099</sup> 중 하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과거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장 권리에 대한 법안(Chapter 2, the Bill of Rights)<sup>3100</sup>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임.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 (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sup>3101</sup>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 3096)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 제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간분리정책(segregation)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갈등을 심화시켰던 정책임.
- 3097)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acts/1994-054.pdf> (검색일: 2016.7.11.)
- 3098) 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onstitutionalcourt.org.za/site/constitution/english-web/> (검색일: 2016.7.11.)
- 3099) 인권위원회를 제외한 헌법 제9장의 기관들로는 다음의 6개의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the Public Protector, the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ultural, Religious and Linguistic Communities (CRL Rights Commission), the Commission for Gender Equality (CGE), the Auditor-General, the 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IEC), an Independent Authority to Regulate Broadcasting, the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Icasa)  
<http://www.constitutionalcourt.org.za/site/constitution/english-web/ch9.html> (검색일: 2016.7.11.)
- 3100)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constitution/SACConstitution-web-eng-02.pdf> (검색일: 2016.7.11.)
- 3101)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7.11.)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음. 인권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 제9장에 명시된 기구 중 하나로서, 그 권한과 성격은 1996년 헌법의 184절(Act No. 108 of 1996, section 184)<sup>3102</sup>에 자세히 명시하여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정하고 있음.

헌법 이외에는 현재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법(the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13, Act No. 40 of 2013, SAHRCA)<sup>3103</sup>, 정보접근성강화법(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200, Act No. 2 of 2000, PAIA)<sup>3104</sup>, 평등촉진및불공정한차별예방법(the 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ct, 2000, Act No. 4 of 2000, PEPUDA)<sup>3105</sup>을 근거법으로 가지고 있음. 2013년 인권위원회법은 1994년 초대 인권위원회법의 개정안이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13조 1항과 4항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헌법에서 보다 더 자세히 정하고 있음. 정보접근성강화법(PAIA)은 국가기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이 법 제83조, 84조에 따라 국민들의 정보요청에 잘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매년 PAIA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또한 평등촉진및불공정한차별예방법(PEPUDA)의 매년 인권이슈별 현황 보고서를 인권위원회가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이 법 제 25조 2항의 a에 근거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성평등위원회(Commission of Gender Equality)<sup>3106</sup>의 자문을 받아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등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동법 제 28조 2항에 따라 인종, 성별, 장애여부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제출해야 함.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3102) <http://www.gov.za/sites/www.gov.za/files/images/a108-96.pdf> (검색일: 2016.7.11.)

3103)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acts/2013-040.pdf> (검색일: 2016.7.11.)

3104) <http://www.justice.gov.za/paia/paia.htm> (검색일: 2016.7.11.)

3105)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acts/2000-004.pdf> (검색일: 2016.7.11.)

3106) <http://cge.org.za/> (검색일: 2016.7.11.)

다)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1)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인권위원회는 요하네스버그에 본부를 두고, 9개의 지역 사무소 조직을 설치하고 있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집행권한위원회(Executive Authority Commissioners) 바로 아래에는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최고경영자 직속으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감사책임자(CAO), 전략지원관리부(Strategic Support & Governance), 최고운영책임자(CPO)가 있어 인권위원회의 전략적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최고재무책임자는 법인서비스팀과 재무팀을 하위 부서로 가지고 있으며, 최고운영책임자 아래에는 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정보접근성강화, 법률서비스, 위원회프로그램 등의 하부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접근성강화부서 산하에 9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 2015년 3월 현재, 인권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집행위원회 등 모든 형태의 고용을 포함하여 162명이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하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권위원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310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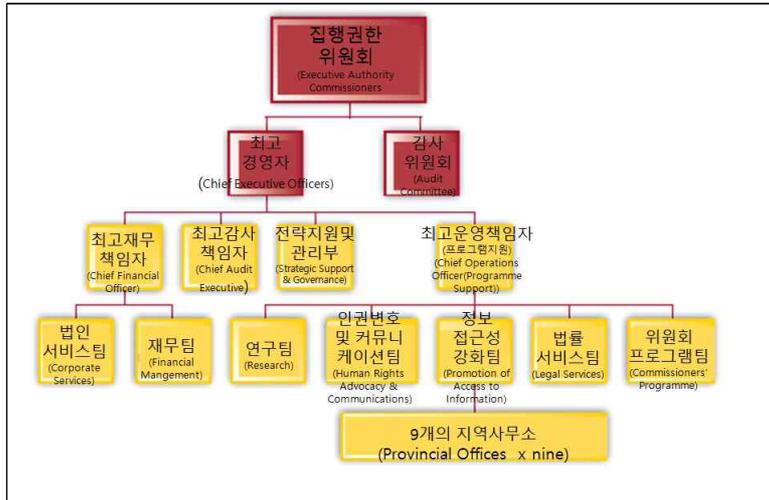
(2) 지역사무소

인권위원회의 본부는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카와줄루-나탈(KwaZulu-Natal), 노던케이프(Northern Cape),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가우텡(Gauteng), 음푸말랑가(Mpumalanga), 림포포(Limpopo),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노트웨스트(North West)총 9개의 지역 사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무소는 인권위원회의 운영을 지역 단위로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음. 지역사무소의 기본적 업무 영역은 법률담당자와 접수담당자(intake officer)에 의해 운영되는 법률서비스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법률서비스팀(The Provincial Legal Services Unit, 이하 지역LSU)은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진정기능을 수행하며 평등축진및불공정한차별예방법(PEPUDA)에 근거하여 평등법원(the Equality Courts, EQC)<sup>3108)3109)</sup>에 회부되기 이전까지의 업무를 지원

3107) 출처: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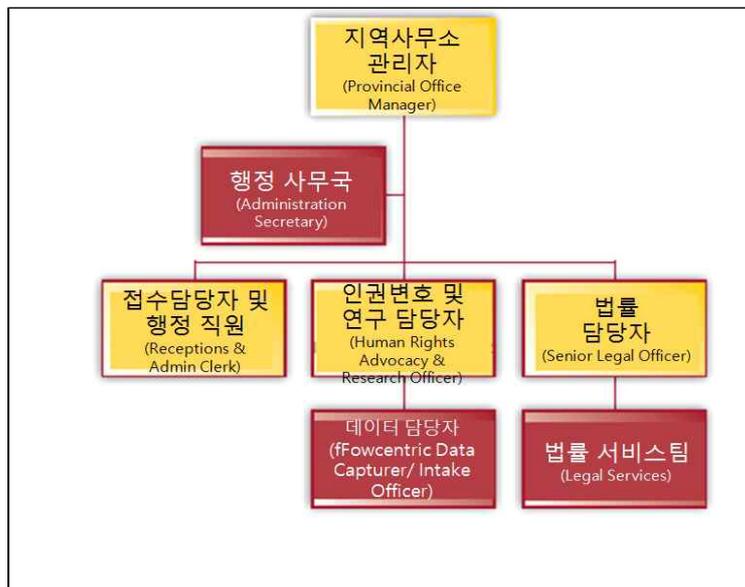
함. 지역 법률서비스팀은 헌법의 제184절 2조의 a, b조항<sup>3110</sup>), 평등촉진과 불공정한차별예방법, 2013인권법,<sup>3111</sup>에 근거해 위원회의 진정처리과정을 운영함. 또한 지역사무소는 지역인권옹호프로그램 담당자(The Provincial Human Rights Advocacy Programme, HuRAP)를 두어 연구와 인권옹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헌법 제184절 2항의 c<sup>3111</sup>)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동법 d<sup>3112</sup>)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사무소 담당자는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 정부기관 및 부처 등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도록 함<sup>3113</sup>).

- 
- 3108) [http://www.justice.gov.za/EQCact/eqc\\_main.html](http://www.justice.gov.za/EQCact/eqc_main.html) (검색일: 2016.7.11.)
- 3109) 평등법원에 대해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출한 2008년 3월 11일 제출한 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보고서에서 남아공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없이 인종차별에 대한 청원에 대한 법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평등법원을 설립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소송은 위원회의 통보없이 폐기되는 등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출처: 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2008/3/1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08/116/78/PDF/G0811678.pdf?OpenElement> (검색일:2016.7.21.)
- 3110) 헌법 제184절 2항은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조항으로 a는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보고( to investigate and to report on the observance of human right), b는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 피해자의 해명을 돕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 to take steps to secure appropriate redress where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을 명시하고 있음. (Act No. 108 of 1996, 184(2), (a), (b)) 출처: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constitution/SACConstitution-web-eng-09.pdf> (검색일: 2016.7.11.)
- 3111) 헌법의 184절 2항 c의 원문 조항은 “to carry out research”임. (Act No. 108 of 1996, 184(2), (c))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constitution/SACConstitution-web-eng-09.pdf> (검색일: 2016.7.11.)
- 3112) 헌법의 184절 2항 d의 원문 조항은 “to educate”임. (Act No. 108 of 1996, 184(2), (d))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constitution/SACConstitution-web-eng-09.pdf> (검색일: 2016.7.11.)
- 3113) 각 지역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ahrc.org.za/index.php/provinces> (검색일: 2016.7.11.)



출처: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남아공-그림 71]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조직도



출처: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남아공-그림 72] 지역사무소 조직도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헌법의 제9장 기관들과 같이 예산부분에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사법부 (Department of Justice)<sup>3114</sup>에 예속되어 있으며, 사법부와 재무부 (National Treasury)<sup>3115</sup>가 정한 뒤 의회가 통과시키는 예산안을 보조금 (grant) 명목으로 할당받음. 이러한 예산 결정과 집행의 종속성은 인권위원회에서도 직접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2000, p.303-304; Nowrojee, 2001, p.70-71)<sup>3116</sup>, 관련 두 부처가 의회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서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 년도 예산안이 인권위원회에서 의회로 바로 가지 못하고 사법부와 재무부를 통한다는 점이 있어(Maluwa,, 2013, p. 161)<sup>3117</sup>충분한 독립성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5년 예산규모는 131,643,000 란드(ZAR)로 한화 약 10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전체 수입의 정부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98%를 상회하는 등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남아공-표 42> 2013-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전체 예산규모 및 정부보조금 비율

연도	2013	2014	2015
전체 예산액(ZAR)	119,299,000 (한화 약 9억 3천만원)	120,083,000 (한화 약 9억 4천만원)	131,643,000 (한화 약 10억 2천만원)
정부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ZAR, %)	119,299,000(100.0%)	119,299,000 (99.3%)	130,136,000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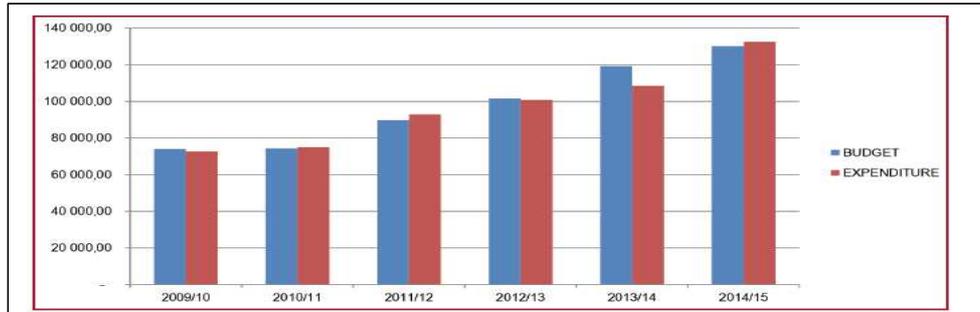
출처: 2014,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3114) [www.justice.gov.za](http://www.justice.gov.za) (검색일: 2016.7.11.)

3115) <http://www.treasury.gov.za/> (검색일: 2016.7.11.)

3116) Nowrojee, B. (2001). Protectors Or Pretenders?: Government Human Rights Commissions in Africa.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2000). Performance & legitimacy: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HRP.

3117) Maluwa, T. (Ed.). (2013). Law, Politics and Rights: Essays in Memory of Kader Asm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출처: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남아공-그림 73] 2009-2015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예산 및 비용 현황

라)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인권위원회법 제 5조, 6조에 따라 위원회장과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각각 임명함. 현재 위원장은 2009년 10월 임명된 변호사 마베들레 로렌스 무쉬와나(Mabedle Lawrence Mushwana)임. 위원 11명은 같은 법의 5조 1항에 따라 (a)남아프리카 시민으로 헌법 193 조 1항이 지정하는 위원회 직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적절한 자, (b) 인권 인식 및 인권 문화 개선을 위한 헌신을 한 바 있는 자, (c) 인권위원회의 운영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d) 헌법 193조 4항 혹은 5항<sup>3118)</sup>에 따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 의석 비율에 맞추어 추천 위원회를 조직하며, 이러한 의회의 추천위원회(a committee of the Assembly)의 다수 득표(a majority of members of the Assembly)를 얻은 자가 추천됨. 이후 의회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대통령이 임

3118) 법조항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3.(4) The Presiden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appoint the Public Protector, the Auditor-General and the members of—(a) the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5)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commend persons—(a) nominated by a committee of the Assembly proportionally composed of members of all parties represented in the Assembly; and (b) approved by the Assembly by a resolution adopted with a supporting vote— or (ii)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if the recommendation concerns the appointment of a member of a Commission. (출처: <http://www.justice.gov.za/legislation/constitution/SACConstitution-web-eng-09.pdf>) (검색일: 2016.7.21.)

명하는 자로 위원을 임명함. 2016년 7월 현재, 풀타임 위원은 3명, 파트타임 위원은 1명으로 위원 7석이 공석으로 남아있음. 또한 부위원장도 공석인 상황.<sup>3119)</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남아공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회법 제 4조 3항<sup>3120)</sup>에 따라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종사자들도 위원들의 권한, 기능을 이행하는데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는 활동의 보장을 받고 있으며, 동법 7조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권한과 기능(Powers and functions of Chairperson, Deputy Chairperson and other Commissioners)의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sup>3121)</sup>에 따라 정한 내용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해당법(this Act), 다른 법(other law), 위원회(the Commission)이 지정한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은 7조 5항에 따라 공공재정관리법(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집행수장(executive authority)로 역할을 수행함.<sup>3122)</sup>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인권위원회법제 5조 2항 a<sup>3123)</sup>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정하였으며, 동법 제5조 4항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sup>3124)</sup>

(가) 역할: 남아공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공적 얼굴(public face)’로서 인권위원회를 국제사회에서 혹은 국내에서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활동함. 이들은 전국적 수준에서 인권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인권위원회의 정책 및 입법적 권한에 더하여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인권 매트릭스(Human Rights Matrix)”라고 불리우는 문서의 내용을 채택하여 활동하는데, 인권 매트릭스 안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준

3119) <http://sahrc.org.za/index.php/about-us/commissioners> (검색일: 2016.7.11.)

3120) Act No. 40 of 2013, SAHRCA, 4(3)

3121) Act No. 40 of 2013, SAHRCA, 7(1),(2),(3),(4)

3122) Act No. 40 of 2013, SAHRCA, 7(5)

3123) Act No. 40 of 2013, SAHRCA, 5(2), (a)

3124) 위원의 면책특권은 같은 법에서 따로 명시되지 않음.

수해야 할 다양한 국내외 법과 조약에 기반한 인권 의무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 우선순위를 위원회가 결정하고 매년 남아공 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전략계획(the Stragic Plan)”을 작성하도록 함. 또한 각 위원들은 이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아공 각 지역, 이슈, UN 조약 기구별로 담당역할을 배분받아 담당받은 지역, 이슈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내 활동을 주도함.<sup>3125)3126)</sup>

마) 주요권한 및 활동<sup>3127)</sup>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설립되어,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인권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인권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해명시키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여 크게는 5가지 프로그램(법률서비스, 연구, 커뮤니케이션, 의회 및 국제업무)을 운영함. 이외에도 국민들의 인권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과 이를 위한 불만접수 및 진정기능도 운영하고 있음.

(1) 국내 인권문제 조사 및 법률 지원 (진정기능 포함)

(가) 국내 인권문제 조사와 법률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는 법률 서비스팀(The Legal Service Unit, LSU)를 운영하고 있음. 이 법률 서비스팀의 기본적 기능은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양질의 법률 지원과 자문을 수행,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를 담당하도록 함.

(나)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는 공개 조사(public inquiries)를 하거나, 소환장 발부(issuing of subpoenas), 사찰(inspection)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소송은 협상과 진정의 과정이 실패하거나, 요구되

---

3125) 출처: <http://www.sahrc.org.za/index.php/about-us/commissioners>  
(검색일: 2016.8.1.)

3126) 각각의 담당 지역, UN조약 기구, 중점 분야를 맡은 현황은 최근 내용은 2015년 남아공인권위 연례보고서의 15페이지를 참조.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8.1.)

3127) <http://sahrc.org.za/index.php/what-we-do/programmes> (검색일: 2016.7.11.)

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인권위원회의 불만 접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다) 이외에도 법률지원팀은 불만접수에 관한 분석을 연례 발행하는 현황 분석보고서(trend analysis report)를 통해 보고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불만이 접수된 건수와 해결 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분석 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라) 법률지원팀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인권침해사례 해결, 공청회, 진정, 소송, 연례현황분석보고서 작성이며, 85%의 사례 해결을 보여주고 있음.
- (마) 불만접수 및 진정기능 수행<sup>3128</sup>): 불만접수는 인터넷 웹사이트, 팩스, 서면 등을 통해서 혹은 가까운 지역사무소에 직접 접수가 가능함. 불만접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 그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자, 어떤 이해를 가진 이해집단의 이해를 공유하거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자,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 직원들의 이해를 위해 일하는 연합 혹은 조직으로 정하고 있으며, 불만 처리 과정은 협상과정 (conciliation and negotiation proceedings), 진정과정 (mediation proceedings), 심리 (hearing), 소송 (실체적 혹은 과정적, appeal - substantive or procedural), 사법적 검토 (judicial review), 상위 법률적 절차 진행 (institution of legal proceedings)으로 크게 이루어짐.

## (2)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위한 활동

- (가)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위한 활동을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법인 정보접근성강화법(PAIA)<sup>3129</sup>이 지정한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나) 이와 관련한 업무영역은 정보접근성강화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

3128) <http://sahrc.org.za/index.php/what-we-do/lodge-complaints#mymodal-1-content> (검색일: 2016.7.11.)

3129) PAIA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인권위원회의 관련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sahrc.org.za/index.php/understanding-paia> (검색일: 2016.7.11.)

터링과 보고 역할, 정보접근성강화법 실행을 위한 인식제고와 교육 및 연수 실시(해당 기관의 정보과 최고 담당자 및 부담당자), 공공기관(public bodies)으로부터 정보접근성강화법(PAIA) 32절 보고서(section 32 report)와 14절 매뉴얼(section 14 manual)을 요청<sup>3130</sup>, 사적 기관(private bodies)으로부터 51절 매뉴얼(section 51 manual) 요청<sup>3131</sup>, 정보요청자에 대한 업무 지원<sup>3132</sup>, 연구, 관련 보고서 작성, 정보접근성강화법 개선과 관련법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작성 등이 포함됨.

### (3)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

- (가) 인권연구팀(Research Unit)은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연구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 (나) 연구팀은 정부부처, 시민사회조직, 학계, 지역사회공동체와 함께 외부 관계자들과 광역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며, 연구팀의 각 연구자들은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음. 연구팀은 법률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음.
- (다) 연구팀은 4개의 하위 업무팀(시민정치권리팀, 경제사회권리팀, 평등팀,

3130) 32절 보고서란 해당 공공기관이 PAIA관련한 요청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년 단위로 보고하는 보고서임. 보고서의 기한은 매년 4월 30일까지이며, 1년의 기준은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에 회부됨. 14절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매뉴얼로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요청된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음. 이 매뉴얼은 위원회에 매년마다 3개의 공용어로 제출되어야함. 이메일 제출 가능. 출처: <http://sahrc.org.za/index.php/understanding-paia> (검색일: 2016.7.11.)

3131) 사적기관들도 정보공개에 대한 51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적기관의 기준은 4가지로 마련되어 있음. 각 산업분야별에 따른 연중 수입 규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있으나, 보통 6개월 이내에 주어진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 가능. 출처: <http://sahrc.org.za/index.php/understanding-paia> (검색일: 2016.7.11.)

3132) 정보권한법에 관련된 요청 접수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그 자세한 절차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ahrc.org.za/index.php/understanding-paia/lodging-paia> (검색일: 2016.7.11.)

의회국제업무팀)으로 이루어져 각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시민정치권리팀(Civil and Political Rights sub-unit)은 투표권,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권, 자기보호권 등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음. 경제사회권리팀(Economic and Social Rights sub-unit)은 물, 위생, 식량, 건강, 거주, 사회보장, 기본교육과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연구하고 헌법의 184절 3조에서 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함. 평등팀(Equality Unit)은 인종, 성별, 성적취향, 연령, 장애와 같은 요인들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평등보고서(Equality Report)를 작성하여, 현재 국가에서의 평등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의회국제업무팀(Parliamentary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t)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안과 개정안을 검토하고 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과 개정안이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개발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와 그림자보고서(shadow report) 등의 제출을 감시하고 있음.

(4)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가) 인권위원회의 법률서비스팀, PAIA활동, 연구팀의 활동의 가시성을 더 높이고, 이들의 활동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옹호활동을 수행함. 이 활동은 인권옹호및커뮤니케이션팀(Advocacy & Communication)이 담당하고 있음.

(나) 하부팀 중 하나인 인권옹호팀(Advocacy sub unit)의 역할은 인권의식 증진, 인권에 대한 이해 심화, 인권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연수워크샵,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토의, 컨퍼런스, 공공캠페인, 프레젠테이션, 언론활동, 공동체활동, 출판, 정보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옹호(advocacy)’는 옹호, 복지지원(outreach)활동, 인권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활동은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 나머지 담당 하위부서인 커뮤니케이션팀(The Communications sub

unit)의 업무는 이러한 홍보활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안팎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것임. 또한 인권위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업무 활동 역시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5) 의회의 법안 검토 및 국제인권상황을 위한 활동

(가) 인권이슈와 관련하여 의회, 국제, 지역 수준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회국제업무팀(Parliamentary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t)으로 사실상 인권위원회 조직에서는 연구팀 하위 부서가 담당하여 의회 및 국제업무에 관련된 연구활동도 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의회의 입법 처리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인권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인권조약을 잘 준수하는지도 모니터링하며, 관련 보고서 작성과 자문역할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의 역할을 국제사회 수준에서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함.

(나) 좀 더 구체적인 업무 영역으로는 입법 내용에 대한 분석,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제사회 혹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 수행,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보고서를 국제 및 지역사회에 제출하는 내용 기안 작성, 법률 및 국제적 시각에서 판례, 연구결과, 사례에 대한 자문활동, 비교 연구활동 등을 수행함.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입법 자문활동

(가) 헌법이 위임한 인권보호업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권문제 발생 시 피해자들의 불만 접수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고 이들의 권익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해당 문제 발생시, 인권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인권위원회법이 지정한 조사범위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진정절차를 처리하며 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나) 인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조사의 대상, 조사에 대한 권한, 조사 범위는 인권위원회법 제15조인<sup>3133)</sup> “위원회에 의한 조사(Investigations by Commission)”에서 정하고 있음. 우선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법15조 1항의 (a)와 (b)<sup>3134)</sup>에 따라 어떠한 정보(any particulars and information)을 어떠한 사람(any person)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조사를 직접 수행 혹은 수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동법 15조 1항 (c)와 (d)<sup>3135)</sup>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게 든지 위원회 위원의 자필서명으로 작성한 사전 통지(notice)를 통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에게 어떠한 문서나(documents) 관련 자료(articles)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선서(oath)와 진술(affirmation)를 수행할 수 있게 함.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법 16조인 1항<sup>3136)</sup>에 근거하여 어떠한 지역(premlises) 출입과 인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3항<sup>3137)</sup>에 근거하여, 어떠한 지역이나 인물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이나 인물로부터 발견한 정보,문서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복사본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함. 물론 이러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법 16조 5항<sup>3138)</sup>의 내용과 같이 상급법원의 치안판사 혹은 판사(magistrate or judge of a High Court)의 영장이 필요함.

(다)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불만접수 및 진정처리 건수의 규모는 2011/2012년 11,363건, 2012/2013년 8,919건, 2015년 9,217건으로 평균 약 9천 8백 건에 달하며, 사례 완료 비율은 2011/2012년 87%(9,851건), 2012/2013년 79%(7,047건), 2013/2014년 93%(8,550건)으로 평균 86.4%로 높은 처리 완료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불만접수 및 진정처리

3133) Act No. 40 of 2013, SAHRCA, 15

3134) Act No. 40 of 2013, SAHRCA, 15(1)- (a), (b)

3135) Act No. 40 of 2013, SAHRCA, 15(1)- (c), (d)

3136) Act No. 40 of 2013, SAHRCA, 16(1)

3137) Act No. 40 of 2013, SAHRCA, 16(3)

3138) Act No. 40 of 2013, SAHRCA, 16(5)

는 법률서비스팀(LSU)이 담당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남아공-표 43> 인권위원회의 불만 접수 및 진정처리 건수 규모(2011-2014년)

연도	2011/2012	2012/2013	2013/2014
불만접수 사례 수 (건)	11,363	8,919 <sup>3139)</sup>	9,217 <sup>3140)</sup>
연도 증감율 (%)	-	-27	3
종료 사례 수 (건, %)	9,851 (87)	7,047 (79)	8,550 (93)
처리진행중인 사례 수 (건, %)	1,512 (13)	1,872 (21)	667 (7)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현황보고서

(라) 이뿐만 아니라, 연구팀 산하에 있는 의회및국제업무팀은 의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이 국내외 인권법에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 자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2014년,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자문건수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2015년에는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의 법안 초안에 대한 인권상황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보장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

(가) 정보접근성강화법<sup>3141)</sup>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정보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및 사적기관에 대하여 정보접근성강화법이 지정하고 있는 3 가지 종류의 보고서인 ① 매뉴얼(32절 보고서), ②14절 매뉴얼(공공기관의 경우), ③ 51절 보고서(사적기관의 경우)<sup>3142)</sup> 제출을 관리하고 있음.

(나)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정보접근성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하여 보고하며 이

3139) 2012/2013년의 총 접수 건수 중 새로 2012/2013년에 새로 접수된 건수는 7,672건임

3140) 2013/2014년의 총 접수 건수 중 새로 2013/2014년에 새로 접수된 건수는 7,345건임

3141) Act No. 2 of 2000, PAIA

3142) 각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각주 35, 36을 참조.

를 기반으로 PAIA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sup>3143</sup>). 또한 정보접근강화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각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남아공-표 44> 정보접근성에 대한 요청 건수 처리 규모(2011-2012년)

연도	2011/2012 <sup>3144</sup> )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관련 지원 요청 수 (건)	138
사적개인 정보접근성 관련 지원 요청 수 (건)	154
사적기관 정보접근성 관련 지원 요청 수 (건)	35,662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PAIA보고서(2011-2012)

(3)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인권상황 증진

연구활동은 현재 국내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입법자문 활동을 통해 발견한 여러 인권이슈에 관련된 문제점을 법률 및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일반보고서(general reports)를 작성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툴킷(toolkit) 및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작함.<sup>3145</sup> 가장 최근에 발행된 관련 보고서로는 2014년“남아프리카의 사회적 배제와 가난의 덫(Social Exclusion and Poverty Traps among Children in South Afric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대표적임. 또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평등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연구수행을 통해 매년 평등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sup>3146</sup>,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3143) 가장 최근의 인권위원회의 PAIA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PAIA를 준수하는 비율은 2010-2011년 62%이며, 2011-2012년은 69.8%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전국적 수준에서 24,857건이 정보접근성에 대한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PAIA%20Annual%20Report%20201112.pdf> (검색일: 2016.7.11.)

3144) PAIA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11-2012년 보고서임. <http://www.sahrc.org.za/home/21/files/PAIA%20Annual%20Report%20201112.pdf> (검색일: 2016.7.11.)

3145) <http://sahrc.org.za/index.php/sahrc-publications/general-reports> (검색일: 2016.7.11)

3146) 가장 최근에 발행된 평등보고서는 2012년 보고서임.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184절 3항 보고서(section 184(3))”도 작성·제출하고 있음<sup>3147)</sup>.

- (4)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 영역별(focus area) 프로그램 진행
- 국내의 인권수준을 향상을 위해 인권위원회는 인권향상을 위한 중점 사업 분야 7개 영역을 선별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7개 영역으로는 정의와 거주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Justice and Housing)<sup>3148)</sup>, 환경, 자연자원, 농어촌지역개발(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 Rural Development)<sup>3149)</sup>, 기본적인 복지와 의료복지(Basic Services & Health Care)<sup>3150)</sup>, 아동의 권리와 기초교육(Children’s Rights and Basic Education),<sup>3151)</sup> 장애인과 노인(Disability & Older Persons)<sup>3152)</sup>, 고문예방을 위한 법 강화와 인권보호(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 Prevention of Torture)<sup>3153)</sup>, 이민과 평등(Migration & Equality)<sup>3154)</sup>이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부처, 시민 사회, 국제사회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Equality%20Report%2020%20Oct%202012%20Final.pdf> (검색일: 2016.7.11.)

3147) 가장 최근에 발행된 평등보고서는 2012-2013년 보고서임.

출처: <http://sahrc.org.za/index.php/publications> (검색일: 2016.7.11.)

3148)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access-to-justice-housing> (검색일: 2016.7.11.)

3149)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environment-natural-resources-rural-development> (검색일: 2016.7.11.)

3150)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basic-services-health-care> (검색일: 2016.7.11.)

3151)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children-s-rights-and-basic-education> (검색일: 2016.7.11.)

3152)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disability-older-persons> (검색일: 2016.7.11.)

3153)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human-rights-and-law-enforcement-prevention-of-torture> (검색일: 2016.7.11.)

3154) <http://sahrc.org.za/index.php/focus-areas/migration-equality> (검색일: 2016.7.11.)

사) 승인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 A등급으로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후 2007년 10월, 2012년 12월 심사에도 A등급 유지<sup>3155)</sup>

## 2) 남아공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및 활동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주요 업무 범위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는 헌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과 인권문화 육성, 인권보호, 발전, 획득 촉진, 국내 인권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수립되었으며<sup>3156)</sup> 이후 인권위원회 법을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내최고인권종합기구로서, 헌법에서 위임한 인권수호의 사명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진정처리, 연구, 홍보, 교육, 국제협력, 입법 자문, 정책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수행해 오고 있음.

(나) 법률지원 및 진정처리 지원은 국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연중 약 1만 건의 사건을 다루고, 85% 이상의 사건 종료율을 기록하는 등 가장 중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법률지원 및 진정처리는 이메일, 팩스, 서면,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지역사무소에 법률서비스팀을 따로 설치하여 남아공 국민이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sup>3157)</sup>

(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유통 및 기관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접근성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업무 및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관리를 정보접근성강화법에 따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음.  
3158)

3155)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3156) 설립목적은 헌법 제184절 1조에 제시됨(Act No. 108 of 1996, section 184(1))

3157)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6.1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입법 자문활동 참조

3158)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6.2.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라) 입법자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회의 입법에 대하여 국내외 인권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문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기구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3159)</sup>
- (마) 연구영역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현황과 분석,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권고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평등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보고함.<sup>3160)</sup>
- (바) 구체적인 인권향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인권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이슈의 관계단체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클리닉(human rights clinic)’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사) 이러한 연구, 자문활동, 법률지원서비스 활동, 진정활동, 인권프로그램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 연수, 홍보활동, 언론활동 등을 인권옹호및커뮤니케이션팀을 두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 헌법 및 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 (가) 헌법 제 184절 2조 및 3조<sup>3161)</sup>에서 명기된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인권에 대한 감시, 조사, 보고활동, ②인권피해사태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 ③ 연구 수행, ④ 교육 수행, ⑤ 거주, 의료서비스, 식량, 물, 사회안전망, 교육, 환경과 관련한 헌법의 기본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에게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함.
- (나) 인권위원회법 제14조 1항과 2항<sup>3162)</sup>에 명기된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헌법 제 2장에 있는 기본권과 위

의 보장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 참조.

3159)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6.3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인권상황 증진 참조

3160)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6.4.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 영역별(focus area) 프로그램 진행 참조

3161) Act No. 108 of 1996, section 184(2), (3)

3162) Act No. 40 of 2013, SAHRCA, 14(1), (2)

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정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해야 하고, ②공통의 정책집행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인권문제를 진정 처리할 때에 관할권이 비슷할 경우 기관과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③다른 인권과 관련한 다른 시민사회 기관들과 협력을 수행해야 하며 ④어떠한 출처이든지 인권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한 제안, 권고, 요청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⑤인권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며 ⑥인권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국내외조약 및 지역 조약에 따라 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⑦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⑧대통령이 승인한 인권관련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반드시 각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같이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⑨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관련 법원이나 조사심의 위원회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송치할 수 있음.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보호의 사명을 가지고 1995년 설립된 국가의 최고인권기구이며, 인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등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르트헤이트 해체 이후 1993년 설립된 새로운 헌법이 인권의 향상을 위해 지정한 헌법 제9장 기구들과 함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대표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NHRI)로서 국가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위원장을 해당기구의 위원장이 수행하는 등 세계적 수준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 그러나 대통령이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예산안 결정이 법무부를 거쳐야 하며 많은 국가법에 대해 활동업무가 제약을 받는 등 정부의 예측적인 부분이 있어 독자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된 국가인권기구라고는 할 수 없음.<sup>3163)</sup>

3163) 예산 독립성에 대한 설명은 다) 조직구성 및 예산의 독립성 참조.

### 3) 남아공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

다양한 불만접수사항에 따라 인권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대한 실례를 보고함:<sup>3164)</sup>

- (1) 크렉 테임(Craig Thiem), 레너드 맥케이(Lenard Mac Kay) vs. 월게호프 초등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회(Principal of Wilgehof Primary School, Chairperson of the School Governing Body, Wilgehof Primary School) (사건번호: FS/1314/0083)의 사건에서는 월게호프초등학교는 크렉테임과 레너드 맥케이 자신들을 ‘원숭이(monkeys, baboons)’ 혹은 ‘야만인(barbarian)’이라고 칭하였다는 점과 이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기를 걸고, 율리우스 말레마(Julius Malema)의 캐리커처와 원숭이가 그려진 그림을 교실에 부착하여, 인간적 존엄성, 평등, 아이들의 권리 침해를 주장함.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흑인 학생들에 대해 명백히 평등축진및 불공정한차별예방법<sup>3165)</sup>을 위반한 혐오발언이며,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내림.
- (2) 마이크 워터스 의원(Mike Waters MP) vs. 국립사회개발부(National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사건번호: GP/2012/0309)의 사건에서는 사회개발부의 국가아동보호등록부(National Child Protection Register, CPR)<sup>3166)</sup>가 헌법의 기본권 중 28절에 해당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여, 위원회는 현재의 국가아동보호등록부(CPR) 내용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3) 노몬도 보즈와나(Nomonde Bozwana) vs. 북서교육부(North West Department of Education) (사건번호: GP/1213/0705)의 사건에서는 폴로니아 초등학교(Polonia Primary School)의 학생들이 화장실 시설의 열악함

---

3164)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 ) (검색일: 2016.7.11.)

3165) Act No. 4 of 2000, PEPUDA

3166)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 폭력에 대한 내용 기록한 PartA 명부, 아동과 함께 일하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PartB로 아동보호등록부를 구성함. <https://www.westerncape.gov.za/general-publication/what-child-protection-register> (검색일: 2016.7.11.)

이 학생들의 위생상태를 극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북서교육부가 해당 학교가 위생시설을 구비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위생상태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4) 헤이젤 오토만 (Ms Hazel Oortman) vs. 성토마스아퀴나스학교(St. Thomas Aquinas School),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사건번호: MP/2010/0030)의 사건에서는 성아퀴나스학교가 휠체어가다닐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불만을 제기함. 위원회는 이에 대해 성아퀴나스학교가 이러한 장애 아동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힘.

#### 나) 교육

- (1) 2014년 정보접근성강화법(PAIA) 실행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및 정보접근성강화법(PAIA)지역법클리닉 진행<sup>3167</sup>):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는 2014년에는 공적 기관 및 사적 기관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총 28개의 연수 세션을 진행하고, 전국정보담당자 포럼 및, 가우텡지역 정보담당자 포럼 등을 개최하여,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정보접근성강화법(PAIA) 지역법클리닉(PAIA Community Law Clinics)을 위트워트스란드 대학(the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웨스트케이프대학(the Universities of the Western Cape), 케이프타운대학(the University of Cape Town)과 함께 개최하여 20번의 클리닉을 실시하였고, 법과대 학생들이 참석하기도 함.
- (2) 2012/2013년 정보접근성강화법(PAIA) 실행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및 특수 지역 프로그램 진행<sup>3168</sup>): 2012/2013년에는 다양한 기관들을 상대로 총 22번의 연수 세션을 실시하였고, 소웨토(Soweto) 지역에 대한 1번의 특별 연

3167)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 (검색일: 2016.7.11.)

3168) 2012-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Annual%20Report%202012-13.pdf%20October.pdf>) (검색일: 2016.7.11.)

수 세션 및, 9번의 지역별 특별 연수 세션을 진행하였는데, 이 9번의 9개의 지역세션에서는 정보접근성강화법(PAIA)을 사용하여 어떻게 위원회가 지역사회와의 물과 위생 공청회를 통해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됨. 이러한 세션은 정보접근성강화법(PAIA) 준수보다 사회경제적 권리를 위원회가 실현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다) 홍보

- (1) ‘당신의 헌법을 알자(Know Your Constitution)’ 캠페인 런칭<sup>3169)</sup>: ‘당신의 헌법을 알자’ 캠페인은 헌법에 대한 지식이 전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해 언론 활동 등을 추진함.
- (2) 식량권(Right to Food Conference) 컨퍼런스 개최<sup>3170)</sup><sup>3171)</sup>: 2014년 3월 20일 전국식량권컨퍼런스를 개최함. 이 컨퍼런스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다양한 인터랙티브 워크숍, 토론, 원탁회의의 총 결과물로서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료표(fact sheet)을 11개의 공용어로 제작하였음. 또한 이러한 식량권리와 다른 권리와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인권의 달 행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음.
- (3) 기업과 인권 라운드테이블(Business and human rights roundtable) 개최<sup>3172)</sup>: 2014년 2월 24일, 인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이 라운드테이블은 인권위원회의 주요 타겟 영역인 기업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였으며, 본질적으로는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는 데 그 주요 개최 목적을 두었음.

---

3169)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7.11.)

3170)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7.11.)

3171) 더 자세한 캠페인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humanrights.org.za/know-constitution-campaign/> (검색일: 2016.7.11.)

3172)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7.11.)

(4) 2015년 인권위원회의 언론활동현황 요약<sup>3173)</sup>: 2015년 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 북에서 3,000명의 팔로워, 트위터에서 9,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는 등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수행했고, 인권위원회의 이름이 국내에서는 신문을 통해 3,000만명, 라디오를 통해 3,500만명, TV를 통해서서는 6,600만명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신문을 통해 4억명, 라디오를 통해 700만명, TV를 통해 1억 9,900만명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고함.

라) 정책개선

(1) 2014년 입법 관련 자문활동 사례<sup>3174)</sup>:

- 장애모니터링(the Disability Monitoring and Evaluation Policy) 및 평가 및 장애국립개발계획(Disability Disaggregated National Development Plan)에 대한 자문
- 내무부(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이민규제에 대한 초안 자문
- 여성권리향상과 성평등법(the Women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Bill)에 대한 초안 작성완료 자문
- 2013년 10월 8일 형법(범죄수사)에 관한 안전 및 헌법발전을 위한 법 개정안 특별위원회(DNA Bill) 참석
- 헌법기관의 일원의 보수 및 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의 자문을 의회에 제출
- 교정업무(correctional service)에 대한 사법 조사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정업무 포트폴리오위원회 참석
- 범죄수사에 관한 형법 개정안 초안 2013년 8월 1일 경찰에대한포트폴리오위원회에 제출
- 2013년 7월 4일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에 지속법(Maintenance Act) 개정안에 대한 자문 내용 제출

3173)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7.11.)

3174)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 ) (검색일: 2016.7.11.)

등.

(2) 2015년 입법 관련 자문활동 사례<sup>3175)</sup>:

- 정의및교정서비스서비스에대한포트폴리오위원회에 성폭력 및 관련 형법에 대한 자문 제출
- 교육부(the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에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자문 제출
- 기초교육부(the Department of Basic Education)에 신체처벌에 대한 국가협약에 대한 자문 제출
- 정의및교정서비스에대한포트폴리오위원회에 남아프리카의 국제 및 지역 수준의 인권준수사항을 제출
- 협력적운영및전통부(Depart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and Traditional Affairs)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 정의와교정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Correctional Services)에 사실내용개발보호에 대한 법 개정안(the Protected Disclosure Amendment Act)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마) 사법부 의견 제출

인권위원회가 다룬 소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sup>3176)</sup>:

- (1) 에프더블유데클릭 재단(FW de Klerk Foundation)<sup>3177)</sup>, 맥스웰(Maxwele) vs 남아공경찰청(Ministry of Police) (가우텡 지역 사무소 - GP/2010/0182) 사건에서는 불만제기인이 남아공경찰청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불만을 제기함, 남아공지역법원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찰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해당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표시함.
- (2)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vs. 존 콰레인(Jon Qwelane)(가우텡 지역사무소 - GP/2008/0796)의 사건에서는 존 콰레인이 작성한 선데이선신문

3175)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출처: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7.11.)

3176)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http://www.sahrc.org.za/home/21/files/2013_14%20SAHRC%20ANNUAL%20REPORT%20AS%20AT%2031%20MARCH%202014.pdf) (검색일: 2016.7.11.)

3177) <http://www.fwdeklerk.org/index.php/en/> (검색일: 2016.7.11.)

(the Sunday Sun newspaper)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칼럼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함. 따라서 존 칼레인은 평등촉진및불공정한차별예방법의 10조와 12조에 대한 소를 제기.

- (3) 남아프리카공화국유대인협회(South African Jewish Board of Deputies)<sup>3178</sup> vs 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조합회의(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sup>3179</sup>(가우텡 지역사무소 - GP/2009/0362)의 사건에서는 본가니 마수쿠(Bongani Masuku)가 유대인 차별 발언을 수행하여, 법원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21까지 심리를 가질 것을 진행할 것을 지시함.
- (4)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 가난과압박으로고통받는사람들의모임(People Against Suffering Oppression and Poverty)<sup>3180</sup> vs. 내무부 및 기타 (Minister of Home Affairs & Others) (가우텡 지역사무소 - GP/2012/0134)의 사건에서는 망명신청자들이 린델라센터(the Lindela Repatriation Centre)에 감금된 기간이 법으로 규정된 시간보다 훨씬 넘어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던 내용이며 이에 따라 2013년 11월 28일 내무부에 대해 소가 제기됨. 2014년 8월 7일-8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수행함.

바) 주요 인권이슈

마리카나 조사위원회(the Marikana Commission of Inquiry) 활동<sup>3181</sup>: 2012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서북지역의 마리카나의 론민(Lomin) 탄광에서 있었던 마리카나 비극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1996년 헌법 제 84조 2항 f<sup>3182</sup>에 근거한 2012년 남아프리카대통령성명(Proclamation of President, 50, 2012)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진상조사를 위해 인권위원회가 참여함. 이 비극으로 총 1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50명 관계자가 체포되게 됨. 인권위원회는 감시자로서 해당 조사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3178) <http://www.jewishsa.co.za/> (검색일: 2016.7.11.)

3179) <http://www.cosatu.org.za/> (검색일: 2016.7.11.)

3180) <http://www.passop.co.za/> (검색일: 2016.7.11.)

3181) 2012-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 <http://www.sahrc.org.za/home/21/files/Annual%20Report%202012-13.pdf%20October.pdf> (검색일: 2016.7.11.)

3182) Act No. 108 of 1996, 84(2), f

지를 감찰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항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감찰하며, 전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열망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마리카나 비극에서 2012년 경찰의 시위자에 대한 총기사용 조사에도 적극 참여함. 2012년 8월 16일 시위자 34명에게 총기를 사용한 남아공경찰청(South African Police Service, SAPS)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위원회 위원의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실시함.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sup>3183)</sup>

- (1)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국가인권기구의 여성과 소녀에 관한 컨퍼런스 참석: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성평등위원회 및 인권 위원회의 메모랜드 개발을 이끌었고, 여성의 경제사회문화권리에 대한 UN인권회의전문가패널(the UN Human Rights Council Panel of Experts on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범사례 발표와 “국가인권기구와 성인지예산(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총회보고서(plenary report) 발표
- (2)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로벤아일랜드가이드라인(the Robben Island Guidelines, RIG)<sup>3184)</sup>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프리카의 고문 예방과 범죄화에 대한 요하네스버그선언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게 됨. 실행 계획은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미나는 로벤아일랜드가이드라인에 대한 광역적인 검토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3) 아일랜드인권위원회(the Irish Human Rights Commission)<sup>3185)</sup>와 함께 광산산업에서의 인권침해 모범모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 위원회는 또한

---

3183) 모든 내용은 2012-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례보고서를 참고함.  
<http://www.sahrc.org.za/home/21/files/Annual%20Report%202012-13.pdf%20October.pdf> (검색일: 2016.7.11.)

3184) 아프리카 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인 로벤아일랜드가이드라인(RIG)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apt.ch/en/robben-island-guidelines/> (검색일: 2016.7.21.)

3185) <http://www.ihrec.ie/> (검색일: 2016.7.11.)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산성광물유출(Acid Rock Drainage)에 대한 회의에 참석함.

- (4)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2014-2015년 기간동안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인권위원회의 그림자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하였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국가업무에 참여할 권리(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adequate housing)에 대한 UN특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에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25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를 완료하였음. 또한 국제아동권리협약(UNCRC)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였으며, 성주류화적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법률과 법률이행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UN실행그룹(UN working group)을 위한 질문지(questionnaire)를 작성 등을 수행함.<sup>3186)</sup>

#### 4) 남아공 국가인권기구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 가) 남아프리카공화국문화종교언어권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ultural, Religious and Linguistic Communities, CRL권리위원회)<sup>3187)</sup>
- (1) 설립: 남아프리카공화국문화종교언어권리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85절<sup>3188)</sup>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문화종교언어권리위원회법(No. 19 of 2002, CRL Act, 2002, 이하 CRL권리위원회법)<sup>3189)</sup>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수호를 위하여 설립된 제9장 헌법기관 중의 하나임.

---

3186)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남아공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를 참조함.  
<http://www.sahrc.org.za/home/21/files/SAHRC%20Annual%20Report%202015.pdf>  
(검색일: 2016.8.1.)

3187) <http://www.crlcommission.org.za/> (검색일: 2016.7.11.)

3188) Act No. 108 of 1996, section 185

3189) <http://www.crlcommission.org.za/docs/crl-act.pdf> (검색일: 2016.7.11.)

- (2) 조직구성: CRL권리위원회법 제 9조<sup>3190</sup>)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소 11명에서 1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짐. 위원회의 임명 절차는 같은 법 제 11조<sup>3191</sup>)에 따라, 미디어를 통한 광고 혹은 관련 단체 및 조직으로부터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 및 대통령이 임명함. 임기는 5년이며, 임기가 끝나고 1번 연임이 가능함. 현재 위원장은 소코 음카완지-살루바(Thoko Mkhwanazi-Xaluva) 이며 2014년 2월에 주마(Juma) 대통령에게 임명됨.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데이비드 루카 모소마(David Luka Mosoma) 박사이며, 최고경영자는 에드워드 마파즈다(Edward Mafadza)임<sup>3192</sup>).
- (3) 주요업무<sup>3193</sup>): CRL권리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총 3가지로 이루어짐. 먼저 법률서비스와 갈등해결 프로그램(Legal service & Conflict Resolution Programme)은 2004년부터 문화, 종교, 언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불만 및 인권개선 요청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되는 내용은 보통 복잡한 사안으로 광역적인 조사가 필요한바, 조사를 실시하고<sup>3194</sup>) 갈등해결하위프로그램은 CRL 권리위원회의 헌법적, 법적 권한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두 번째 업무는 연구 및 정책개발(Research & Policy Development)로 사라져가는 특정 민족, 종교, 언어를 가진 집단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마지막으로, 공공교육(Public Education & Engagement) 업무로서, CRL권리위원회법의 36절 1조<sup>3195</sup>)에 따라 문화, 종교, 언어 공동체, 연합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집단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 육성, 발전시키도록 다른 시민 사회조직과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3190) Act No. 19 of 2002, 9

3191) Act No. 19 of 2002, 11

3192) <http://www.crlcommission.org.za/leadership.html> (검색일: 2016.7.11.)

3193) <http://www.crlcommission.org.za/programs.html> (검색일: 2016.7.11.)

3194) 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CRL권리위원회법 제 7항에서 밝히고 있음(Act No. 19 of 2002, 7).

3195) Act No. 19 of 2002, section36, 1

## 16.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국가 정보 <sup>3196)</sup>	
면적	923,768km <sup>2</sup>
인구	181,562,056명 (2015년 기준)
수도	아부자(Abuja)
정치형태	연방공화제
주요언어	영어(공용어), 250개 토착어
주요종교	회교(50%: 북부), 기독교(40%: 남부)
주요민족	하우사-플라니족(29%), 요루바족(21%), 이보족(18%)
GDP	547십억 불 (2016년, IMF 기준)
	1인당 3,144 불(2016년, IMF 기준)

### 1)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 현황

#### 가)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1) 정식명칭: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igeria, NHRC)

##### (2) 설립연도: 1995년 9월 27일

(3) 설립배경: 나이지리아는 1966년 독립 이후 줄곧 군부에 의한 독재 통치를 겪음. 국제사회에서 파리원칙이 등장하고 여러 국가들에서 국가인권기구들이 설립될 무렵에도 나이지리아는 아바차(Abacha) 대통령의 군부 통치를 겪고 있었음. 1995년, 다국적 기업의 지역 착취와 나이지리아 정부에 저항하던 오고니(Ogoni) 지역 인권운동가 9명을 아바차 군부가 부당한 절차로 사형시키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어났음. 이후 오고니(Ogoni) 인권운동가 9인의 사형 이슈가 국제화되면서 특히, 영연방 국가들의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됐는데, 이후 유엔 및 영연방으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이지리아는 국제 무대에서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을 해야 했음. 1995년 Abacha 군부는 형식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압박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고자 함<sup>3197)</sup>.

3196) [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3/1\\_22559.jsp?menu=m\\_40\\_60\\_20](http://www.mofa.go.kr/countries/middleeast/countries/20110803/1_22559.jsp?menu=m_40_60_20) (검색일: 2016.8.23.)

3197) Ayoola Modupe Ogunsola Obe, Working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The Experience of Nigeria, p. 5-7

- 나)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및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1) 설립 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나이지리아 정부는 1995년에 제정하고 2010년에 개정한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에 근거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함.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harter)과 1999 나이지리아 개정 헌법(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1999)이 명시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함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종과 성(sex),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위한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존중하는 기본 목표들을 추구함<sup>3198</sup>).
- (2)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인권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다) 조직 구성(인원 등, 표로 번역하여 작성) 및 예산의 독립성

---

319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mendment) Act 2010 “Preamble” (인권위원회법 서문) : WHEREAS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1999 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dignity and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and seek, among other basic objectives, the promo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the Federal Government is desirous of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extra-judicial recognition, promotion and enforcement of all rights recognised and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1999 and under other laws of the land; in furtherance of the above objectives and in its determination to provide a forum for public enlightenment and dialogue on and to limit controversy and confrontation over alle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by public officers and agencies and to reaffirm the sacred and inviolable nature of human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harter)과 1999 나이지리아 개정 헌법(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1999)이 명시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함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종과 성(sex),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위한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존중하는 기본 목표들을 추구함. 이 법에 근거해 연방 정부는 개정 헌법 및 기타 국내 법률이 인정하고 명시하는 모든 권리들의 증진과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들을 비사법적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인권에 관한 대중 인식 및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며, 정부기관 및 공직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논란과 대립 없이 공정하게 다루며, 인간의 침해 불가하고 신성한 본성과 근본적 권리들을 재확인함.)

(1) 조직 구성

(가) 인원 및 부서

①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위원회는 정책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이사회를 둬. 집행이사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의장 1인과 3인의 비상임 위원, 12인의 상임 위원들을 포함해 총 16인으로 구성됨(3199)3200). 의장은 대법원이나 상고법원, 연방 및 주(state) 고등법원 출신의 은퇴한 판사, 혹은 20년 이상의 법률가 경력이 있으며 인권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물 중에서 임명해야 함. 상임 위원으로는, 3인은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등록된 인권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서 임명하고, 2인은 법률가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인물 중에서 나이지리아 변호사협회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 그리고 3인은 인쇄물 및 온라인 언론 종사자 출신을 임명하는데 1인은 공영언론, 2인은 민영언론 출신을 임명함. 그 외 3인은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1인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2인은 인권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임명함. 상임위원 중 마지막 1인은 위원회의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으로 함(3201).

3199) Standing Orders and Rules of Procedur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12(1) (이하 S.O.R.P.NHRC.) :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sixteen membe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including three ex-officio members respectively representing the Federal Ministries of Justice, Foreign Affairs and Interior.

3200) 전체 인원수 확인 불가함. 가장 최근 연간보고서인 2014 나이지리아 인권위 연간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음.

3201) N.H.R.C.A. 2010 art.2 “Governing Council of the Commission”(인권위원회법 제2조 “집행이사회”) : (1) There shall be for the Commission a Governing Council (in this Act referred to as “the Council”) which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ischarg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a) a Chairperson who shall be a retired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r Court of Appeal, or a retired Judge of the Federal High Court or High Court of a State or a legal practitioner with 20 years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 and requisite experience in human rights; (b) a representative each of the Federal Ministry of: (i) Justice, who shall not be below the rank of a Director, (ii) Foreign Affairs, who shall not be below the rank of a Director, (iii) Internal Affairs, who shall not be below the rank of a Deputy Controller of Prisons: Provided that ex-officio members shall not have voting powers in the council; (c) 3 representatives of

비상임위원 3인은 연방 내각의 법무부(Justice), 외무부(Foreign Affairs), 내무부(Internal Affairs) 대표를 임명하며, 법무부와 외무부는 부처 국장(Director of departments) 이상의 직급, 내무부는 교도소 부소장(Deputy Controller of Prisons) 이상의 직급에 있는 인사 중에서 임명함. 비상임위원들은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음<sup>3202</sup>).

- ② 사무총장 사무국(Executive Secretary's Office) 및 행정부서
-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은 집행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으로<sup>3203</sup>, 사무총장은 법률가로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인권 분야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지닌 인물을 임명함<sup>3204</sup>. 사무총장을 뒷받침하는 행정 사무국으로 사무총장 사무국이 있음. 사무총장 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사무국(Council Secretariat), 감사부(Audit), 공익소송부(Public Interest litigation Units) 등 3개의 하위 부서를 둬. 위원회 행정조직으로는 사무총장 사무국 외에 6개의 부서(Departments)로, 행정부(Admin), 재정회계부(Finance and Accounts), 대중 커뮤니케이션부(Public Affairs and

---

registere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Nigeria; (d) 2 legal practitioners who shall not have less than 10 years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 to be appoint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Nigerian Bar Association; (e) 3 representatives of the print and electronic media, 1 to represent the public and 2 to represent the private media; (f) 1 representative of the organised labour; (g) 2 other persons who shall be women with sufficient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and (h)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3202) S.O.R.P.NHRC. Rule 12(3) : Ex-Officio capacity shall not have voting powers in the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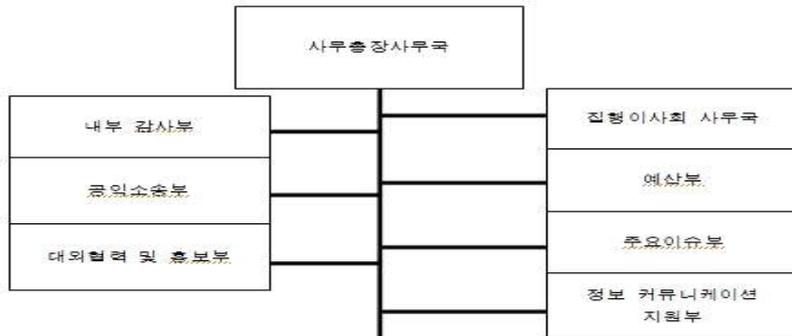
3203) 나이지리아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는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사무총장이 이끄는데, 사무총장은 인권위 최고대표(CEO)이다(The Commission is head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who is also the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소개하고 있음. (출처: <http://www.nigeriights.gov.ng/Commission.php> 검색일: 2016.9.26.)

또한, 언론보도 및 인권위 활동 소개에서도 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주요 행사(예: ICC 감사)에 대표로서 참석하며 내방하는 주요 정부 인사 및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도됨. (출처: [http://www.nigeriights.gov.ng/read\\_more.php?newsid=8](http://www.nigeriights.gov.ng/read_more.php?newsid=8) 검색일: 2016.9.26.)

3204) N.H.R.C.A. 2010 art.7(1)(a) : (1) There shall be for the Commission an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a) a legal practitioner with not less than 20 years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 and requisite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Communications), 기획부(Planning), 조사통계부(Research and Statistics), 모니터링 프로그램부(Monitoring and External Programmes)를 둠<sup>3205</sup>).

- ③ 특별절차 - 위원회(Committee),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등 집행이사회는 이사회 외부 조직으로서 위원회(committee), 워킹그룹(Working Group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 자문그룹(Advisory groups) 등 특별절차나 그룹을 구성할 수 있음<sup>3206</sup>. 특별절차 구성원은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이사회 위원들 또는 외부 인사들 중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지닌 인물로 임명함.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절차 구성원들은 이사회 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거나 조언할 수 있음. 특별절차의 권고 및 결정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없음<sup>3207</sup>).



출처: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igeriarights.gov.ng/Department.php>

[나이지리아-그림 74] 나이지리아 인권위 조직도

3205) <http://www.nigeriarights.gov.ng/Commission.php> (검색일: 2016.8.17.)

3206) S.O.R.P.NHRC. Rule 26 “Establishment of Committees and Special Procedures”

3207) N.H.R.C.A. 2010 [SCHEDULE] art.3 “Committee”(인권위원회법 부록조항 제3조 “위원회”) : (1) The Council may appoint one or more committees to carry out, on behalf of the Council, such of its functions as the Council may determine. (2) A committee appointed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paragraph shall consist of such number of persons (not necessarily members of the Council)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uncil, and a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Council shall hold office on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is appointment. (3) A decision of a committee of the Council shall be of no effect until it is confirmed by the Council.

(2)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인권위원회법은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나이지리아인권위원회 중앙 사무소는 수도인 아부자(Abuja)에 위치함<sup>3208</sup>).

중앙 사무소 외에 나이지리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6개 지역 사무소를 설립함<sup>3209</sup>. 북서부 카노 사무소(North West Zone, Kano), 북동부 마이두구리 사무소(North East Zone, Maiduguri), 북중부 조스 사무소(North Central, Jos), 남서부 라고스 사무소(South West, Lagos), 남동부 은누구 사무소(South East, Enugu), 남부 포트하코트 사무소 (South South, Port Harcourt)

(3) 예산 규모 및 예산의 독립성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법은 2010년 개정 전까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부재 했음. 2010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정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함<sup>3210</sup>).

인권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본 예산 출처는 연방정부 통합예산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 of the Federation)으로, 이 예산은 연방정부가 인권위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과 위원회 활동으로 청구된 서비스 비용, 개인이나 단체가 선물, 유산, 기부 등의 형태로 제공한 모든 금액을 포함함<sup>3211</sup>. 또한, 통합예산기금이 포함하는 기본 예산 외에 인권 연구, 시

3208) <http://www.nigeriights.gov.ng/locations.php> (검색일: 2016.8.17.)

3209) <http://www.nigeriights.gov.ng/Commission.php> (검색일: 2016.8.17.)

3210) N.H.R.C.A. 2010. “An Act to ame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Cap. N46 Laws of the Federation of Nigeria, 2004, to provide for, among other things, the independenc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Commission, the funds of the Commission to be a direct charge on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of the Federation (···)”

3211) N.H.R.C.A. 2010 art.12 “Funds of Commission”(인권위원회법 제12조 “예산”) : (1)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fund which shall be applied towards the discharge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2) The Fund of the Commission shall be a charge on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of the Federation.(3) There share shall be paid and credited to the fund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 such sums as may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on for the Commission; (b) any fees charged for

민단체 및 기타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서 인권기금(Human Rights Fund)을 책정함<sup>3212</sup>). 인권기금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역 정부가 이 기금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과 공기업 및 사기업이 기부 형태로 증여한 자금이 포함됨. 그 외에도 인권위원회법 제13-14조는 공기관 혹은 사인에 의한 부동산, 현금, 재산 등의 증여를 위원회법이 명시하는 위원회 기능을 준수해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 대출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신탁투자법(Trustee Investments Act)에 제시된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토지이용법(Land Use Act)을 준수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법이 명시하는 예산 책정 방식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인권위 집행이사회는 매년 다음 분기 지출과 수입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고 연방정부 집행이사회(Federal Executive Council)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sup>3213</sup>). 이는 기존에 법무장관을 통해서 연방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는 구조를 바꾼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공하는(grants) 방식이 아닌, 위원회가 책정한 예산을 국가가 아닌 정부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인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

---

services rendered by the Commission; and (c) all other sums accruing to the Commission by way of gifts, testamentary depositions, endowments and contributions from philanthropic persons and organizations or otherwise however.

3212) N.H.R.C.A. 2010 art.15 (인권위원회법 제15조) : (1) There is hereby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Fund which shall be applied by the Commission towards (a) the conduct of research on human rights issues; and (b) the facilitation of human rights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in collaboration with other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 holders. (2) There shall be paid and credited to the Fund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 such sums as may be provided by the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for purposes of the Fund; and (b) such contributions from national and multi-national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and institutions carrying on business in Nigeria.

3213) N.H.R.C.A. 2010 art.16(1) (인권위원회법 제16조 1항) : (1) The Council shall cause to be prepared, not later than 30th September in each year, an estimate of the expenditure and income of the Commission during the next succeeding year and when prepared they shall be submitted to the Federal Executive Council for approval.

등급<sup>3214</sup>). 나이지리아 예산처(Budger Office of the Federation) 발행 예산안에서 인권위는 법무부(Juctice)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음.

<나이지리아-표 45> 나이지리아 인권위 2014-2015 예산

'2014 <sup>3215</sup> )	'2015 <sup>3216</sup> )
135,000,000나이라(약 486,615,941원)	151,600,000나이라(약 526,977,528원)

출처: 나이지리아 정부 예산 집행실 <http://www.budgetoffice.gov.ng>

라) 집행이사회 위원과 사무총장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임기, 권한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집행이사회 의장 및 위원,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모두 상원(Senate)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sup>3217)3218</sup>).

(2)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

위원회 수장인 사무총장(현 사무총장: 벤 앙그웨 Bem Angwe)의 행정부 구조상 지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인권위원회법 제7조 2항은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 대통령 겸 국방장관(President,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sup>3219)3220</sup>과 같은 임기와 조건으로 5년간 직무를 맡

3214) Obiora Chinedu Okafor & Shedrack C. Agbakwa, 『On Legalism, Popular Agency and Voices of Suffering: The Nigeri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Context』, 2002, p.702

3215) [http://www.budgetoffice.gov.ng/pdfs/2014\\_appriation%20act/22.%20Summary\\_Justice%20Including%20NHRC.pdf](http://www.budgetoffice.gov.ng/pdfs/2014_appriation%20act/22.%20Summary_Justice%20Including%20NHRC.pdf) (검색일: 2016.9.28.)

3216) <http://www.budgetoffice.gov.ng/pdfs/2015appropriation/22.%20Justice%20Revised.pdf> (검색일: 2016.9.28.)

3217) N.H.R.C.A. 2010 art.2(3)(b) (인권위원회법 제2조 3(b)항) : (3)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each be (b) appointed by the President, subject to the confirmation by the Senate.

3218) N.H.R.C.A. 2010 art.7(1)(b) (인권위원회법 제7조 1(c)항) : (1) There shall be for the Commission an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c) appointed by the President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Senate.

3219) N.H.R.C.A. 2010 art.7(2) (인권위원회법 제7조 2항) : (2)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five years in the first instance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resident,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ma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Attorney-General of the Federation determine, and

는다고 명시함.

(3)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해당 자료 없음.

(4)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동법 제3조 1항에 근거해 의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기본 4년이며, 같은 임기로 1회만 재임 가능함. 사무총장의 임기는 기본 5년으로, 연방 법무장관 (Attorney-General)의 권고로 같은 임기로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함.

(5)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면책 특권 여부 알 수 없음. 인권위법 제4조에 따라 집행이사회 의장 및 위원들은 대통령의 결정과 상원의 동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해임 사유로는 파산이나 채권자들과의 신용 문제, 범죄 연루,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태도 등을 포함함. 위원의 자발적 사임은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함<sup>3221</sup>). 그러나 인권위원회법의 해임 원칙은 실질적 이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음. 2006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전임 사무총장 부카리 벨로(Bukhari Bello)를 전격 해임했는데, 해임 사유는 Bello 전 사무총장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논평과 당시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해 Bello 사무총장 시절 인권위 활동이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이었음<sup>3222</sup>).

---

may be reappointed for one further term of five years and no more.

3220) 나이지리아 헌법상 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여기서 'President,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는 대통령이자 국방장관인 국가 최고수반을 뜻한다. 그러나 위원회 사무총장의 직위가 대통령과 같은 직위라는 뜻은 아니며, 여기서는 임기를 뜻한다.

3221) S.O.R.P.NHRC. Rule 14(3) : A member of the Council may at any time resign his/her offic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President

3222) Human Rights Defender, 「Dismissal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6.6.23. (출처: <https://www.fidh.org/en/region/Africa/nigeria/Dismissal-of-the-Executive> 검색일: 2016.8.17.)

Bukhari Bello 전임 사무총장은 취임 후 ICC 등급 소위 평가 C등급으로 분류되던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를 A등급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Bello 전임 총장 해임 이후에 취임한 사무총장들에 대해서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시켰다.

마) 주요 권한 및 활동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법은 그 권한과 기능을 밝힘에 앞서, 인권위원회가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진 사안들이 나이지리아 헌법을 비롯해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들인 유엔 헌장, 시민·정치적 권리협약, 사회·경제적·문화적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등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임을 밝히고 있음<sup>3223</sup>).

(1) 인권 증진(Promotional Activities)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중시하는 기능은 국내에서의 인권 증진(Promotion of Human rights)으로, 이는 준사법적 성격 혹은 법적 효력을 지닌 조사 및 권고 기능과 달리 교육·훈련, 연구 및 세미나 같은 학술활동 등 비사법적(extra-judicial) 방식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기능임. 위원회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를 대표해 인권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대중 및 공무원의 인권 의식을 증진시킴<sup>3224</sup>).

(2) 인권 보호(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 증진(Promotion)과 함께 위원회가 중시하는 기능은 인권의 보호임.

---

3223) N.H.R.C.A. 2010 art.5(a) (인권위원회법 제5조 a항) : (...) all matters rela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to which Nigeria is a party

3224) N.H.R.C.A. 2010 art.5(n) (인권위원회법 제5조 n항) : (n) undertake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mes and such other programmes for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coordinate any such programme on behalf of the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s on its own initiative when so requested by the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report concerning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on matters relating to human rights

보호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 진정 및 조사 (complaint&investigation)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5조 j항에 따라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개인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임무를 수행함<sup>3225</sup>). 위원회는 진정 사례에 대한 처리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monitoring)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 작업을 시행할 수 있음<sup>3226</sup>).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 진정이 접수된 건이 아니더라도 자체 판단을 통해 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법원 및 경찰에 형사 조치를 요청함.

(3) 부정·부패 감시

정부 혹은 정당의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를 포함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갖고 활동함. 특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권한은 나이지리아 인권위의 특징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음<sup>3227</sup>).

(3) 구금시설 방문 조사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경찰서 유치장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내 모든 구금시설 방문조사로, 특별보고관 또는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구금시설 수감자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당국에 권고 및 결정을 보낼 권한임<sup>3228</sup>). 이 활동은 구금시설의 위생, 건강, 가혹행위 여부와 같은 시설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재판의 지연 때문에 장기 수감 중이거나 불충분하고 부당한 증거에 의해 구금된 수감자 사례 등 당국의 사법정의 실패에 대한 위원회의 개입을 포함하고 있음.

3225) N.H.R.C.A. 2010 art.5(j) (인권위원회법 제5조 j항) : (j) receive and investigate complaints concern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make appropriate determination as may be deemed necessary in each circumstance

3226) N.H.R.C.A. 2010 art.5(b) (인권위원회법 제5조 b항) : (b) monitor and investigate all allege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Nigeria (…)

3227) Commonwealth Secretariat, 『Comparative Study on Mandate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Commonwealth』, 2007, p.76

3228) N.H.R.C.A. 2010 art.6(d) (인권위원회법 제6조 d항) : (d) visit persons, police cells and other places of detention in order to ascertain the conditions thereof and make recommendations (…)

(4) 피해자 구제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인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sup>3229</sup>)로서, 권고(Recommendation) 혹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가해자 기소(Prosecution), 화해 (Conciliation)·중재(Arbitration)·조정(Mediation)을 포함한 갈등해결절차 권고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위원회가 형사 기소를 직접 할 권한은 없으며<sup>3230</sup>) 연방 및 주정부 법무장관에 기소 요청을 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진행할 권한을 가짐<sup>3231</sup>). 구제 권고에는 피해자를 위한 배상 및 보상 조치가 포함됨<sup>3232</sup>).

(5) 인권 정책 연구 및 자문

위원회는 인권과 관계된 모든 사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연방 정부, 이 연구를 토 대로 주(state) 정부 및 지역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함<sup>3233</sup>). 또한, 시행중인 법률이나 시행 예정인 법안, 정책 등이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권고함<sup>3234</sup>). 이는 나이지리아 인권위의 연구 기능 중 정부를 지원하는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정책 자문 역할에는 현행 법률이나 시행 예정인

3229) N.H.R.C.A. 2010 art.5(c) (인권위원회법 제5조 c항) : (c) assis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eek appropriate redress and remedies on their behalf

3230) N.H.R.C.A. 2010 art.5(p) (인권위원회법 제5조 p항) : (p) refer any matter of human rights violation requiring prosecution to the Attorney-General of the Federation or of a State (…)

3231) N.H.R.C.A. 2010 art.6(b) (인권위원회법 제6조 b항) : (b) institute any civil action on any matter it deems fit in relation to the exercise (…)

3232) N.H.R.C.A. 2010 art.6(e) (인권위원회법 제6조 e항) : (e) make determination as to the damages or compensation payable in relation to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re it deems this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3233) N.H.R.C.A. 2010 art.5(d) (인권위원회법 제5조 d항) : (d) undertake studies on all matters pertaining to human rights and assis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ere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in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policies o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3234) N.H.R.C.A. 2010 art.5(k) (인권위원회법 제5조 k항) : (k) examine and existing legislation,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proposed bills or bye-laws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such enactments or proposed bills or bye-laws are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norms

법률의 국제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활동을 포함함<sup>3235</sup>).

(6) 인권 상황 보고서 발간 및 제출(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인권위는 인권 감시기구로서 매년 나이지리아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및 연방과 주 정부, 국회에 제출해 보고함<sup>3236</sup>. 이 보고서는 정책 자문과 달리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서 정부의 인권 침해 및 인권 보호·인권 침해 예방 실패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함.

(7) 소송 지원 등을 통한 사법절차 개입(Intervene in judicial proceedings)

진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인권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나이지리아 인권 증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한 사안일 때 위원회는 소송 지원, 재판 참여 등을 통해서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음<sup>3237</sup>.

(8) 국내 및 국제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보호 활동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국내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국제기구 또는 국제 시민단체들과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함<sup>3238</sup>. 또한,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 시민단체

---

3235) N.H.R.C.A. 2010 art.5(o) (인권위원회법 제5조 o항) : (o) on its own initiative or when requested by the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report on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y the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y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3236) N.H.R.C.A. 2010 art.5(e) (인권위원회법 제5조 e항) : (e) publish and submit, from time to time, to the President, National Assembly, Judiciar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ports on the state of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in Nigeria;

3237) N.H.R.C.A. 2010 art.5(r) (인권위원회법 제5조 r항) : (r) where it considers it appropriate, with the leave of the court hearing the proceedings and subject to any condition imposed by the court, intervene in any proceeding that involves human right issues

3238) N.H.R.C.A. 2010 art.5(f) (인권위원회법 제5조 f항) : (f) organise local and international seminars, workshops and conferences on human rights issues for public enlightenment

와 협력해 나이지리아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국제인권보호메커니즘과 국제인권단체의 압력을 활용해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촉구함.

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1)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인권 증진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법 서문에서는 인권위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면서, 비사법적인 방식의 인권 증진(extra-judicial recognition, promotion)을 인권 관련법의 이행과 함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함<sup>3239)</sup>. 또한, 집행이사회 절차, 진정 절차,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절차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 항목을 담고 있는 위원회 내부 규칙인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 복무규정과 절차법(Standing Orders and Rules of Procedur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인권위 절차법)’역시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세부 조항에서 인권의식 증진 활동을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함<sup>3240)</sup>.

(2) 인권 침해 조사 및 사법적 구제 기관

인권위원회는 진정(complaint) 접수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나이지리아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결정 및 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진정 제도의 개설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진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성과 중 하나는 더 많은 진정 사례를 다루기 위한 지역 인권사무소의 설립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법 개정으로 조사 및 권고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위원회법 제5조 p항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관해 법무장관 및 정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기소는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도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기관으로서의 독립적 권한은 정부에 의해 종종 제한받아 왔음<sup>3241)</sup>.

3239) N.H.R.C.A. “Preamble” (인권위원회법 서문) : the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is desirous of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extra-judicial recognition, promotion and enforcement of all rights (…)

3240) S.O.R.P.NHRC. Part 2. Provisions relating to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Chapter XV “Promotional Activities”

3241) 2002년,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800건의 진정 사례 중 시민단체에 의한 접수 건은 5%밖에 되지 않았다. 이 통계 자료를 제시한 나이지리아 시민단체는 “나이지리아 시민단체는 위원회 진정 시스템보다는 법원에 직접 호소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인권위에 그만큼의 법적 강제력이나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

(3) 특별절차를 통한 인권 연구 및 고발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특별절차(특별보고관, 워킹그룹, 독립전문가, 전문가 그룹 등)에 의한 활동을 통해서 주제별 인권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해왔음. 특별절차 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 (investigation) 성격을 띤 작업이지만, 특정 사안에 관한 집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례들의 고발과 함께 보고서를 발간해 인권 사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함.

(4) 정부 감시 기능

나이지리아는 군부 독재 통치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주주의 및 법치, 선정(Good Governance)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미성숙한 사회임. 나이지리아는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정부 및 정당에 의한 집단 폭력 사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안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를 조사하고 예방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함.

(5) 인권영역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추진

국내 유일의 국가인권기구로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권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및 공헌도를 높이고 시민사회를 지원함.

(6) 국제인권기준 이행 모니터링 기관

나이지리아 인권위 설립의 목표 중 하나는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과 관련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을 감시하는 것이었음.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준수 의지와 실질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아직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중요한 인권협약들을 국내에 알리고 연구함으로써 정부의 비준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문”이라고 밝힘. (출처: Obiora Chinedu Okafor & Shedrack C. Agbakwa, p.713)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모든 결정 및 권고에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생겼음. 그러나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위원회의 정부 비판적인 활동에 대해 사무총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임.

사) 승인 소위 등급 심사 연혁

1999년에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한 이후, 2000년, 2006년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07년 등급 심사에서는 B등급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가, 2011년 5월 심사 에서 다시 A등급을 회복함<sup>3242)</sup>.

2)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활동 내용

가) 주요 업무 범위 및 성격

(1)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대중 인식 개선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나이지리아 시민의 진정제도 활용을 촉진시키고,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법 앞의 평등,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등 인권의 개념과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나이지리아 인권위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임. 인권위 절차법 제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집행이사회 의장은 위원들과 협의해 주제별, 사안별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들에 이사회 위원 및 특별보고관, 혹은 워킹그룹을 책임자로 지명하고 분기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sup>3243)</sup>.

(2) 조사(Investigation) 및 조정(Adjudication)

위원회 설립 이후 진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설립 초기인 1996년-2001년 사 이 총 1,278건이었던 수치가 2001년-2006년 사이 총 2,548건으로 증가함.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문맹자들을 위한 서면 진정 신청을 대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sup>3244)</sup> 지역을 방문해 진정 제도를 홍보하는 폴뿌

3242) GANHRI 2016년 1월 26일자 등급심사

3243) S.O.R.P.NHRC. Rule.57 (절차법 제57조) : The Chairman may,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members of Council, from time to time designate Commissioners with specific responsibility or expertis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n such issues, themes or subjects as Council may from time to time decide and periodically report back to Council. (...) Council may also appoint in its discretion, independent experts or rapporteurs not being members of Council to similarly undertake (...)

3244) Commonwealth Secretariat, p.77

리(Grass root) 접근 방식을 활용함.

<나이지리아-표 46> 2012~2014 나이지리아 인권위 진정 접수 현황

	총 진정 건수	접수	해결
2012년	22,542	21,373	18,188
2013년	26,067	24,198	19,806
2014년	31,847	28,974	24,339

출처: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 브로셔(Brochure), p.66

(가) 진정 절차

나이지리아 인권위의 진정 절차는 절차법 규칙72조-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사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접수된 진정 사례에 대한 진정 사유의 합리성, 서술 방식의 적합성, 관할권의 중복 여부(타 기관 구제절차, 유엔 및 지역 인권보호제도 중복 활용)를 판단해 접수 혹은 각하를 결정함. 접수를 결정하면 사전조사를 시작함. 사전조사는 침해 사실에 관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 작업을 시행하기 전, 가해자 측에 통보 후 14일 이내에 피해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응답을 고려하여 갈등해결(settlement) 절차 혹은 기타 구제 조치를 제시할지, 조사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단계임.

② 조사(further Investigation)

조사 착수를 결정하면, 위원회 조사팀은 진정 사례 관련자들을 출두시켜 증언, 증거 자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짐. 위원회법 개정 이후 인권위의 모든 활동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받음으로써 조사 활동 권한 역시 강해짐. 개정법 제6조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방해가 되는 증인 출석 및 증거 제출 거부, 조사활동 및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방해, 처벌, 위협 등을 불법행위(offence)로 규정함<sup>3245</sup>).

③ 집행이사회의 결정(Consideration by Council)

조사 작업을 거친 진정 사례는 집행이사회로 넘어가는데, 이사회는 진정 건별 혹은 진정 사례 그룹별로 위원 겸 보고관(Commissioner-Rapporteur)을 사례에 대한 책임자로 임명해 이사회 결정을 위한 권고를 내게 함. 위원 겸 보고관의 집행이사회에 보내는 권고를 고려해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함. a) 당사자 간 화해(conciliation), b) 구제 및 조정, 권고 등 구제 조치 모색(inquiry) 혹은 청문회(public hearing), c) 결정에 대한 숙고를 위해 위원회 내부 워킹그룹 및 팀에 위임함, d) 외부 전문가 혹은 다른 출처를 통해서 추가 증거와 자료를 요청함, e) 사무국(secretariat) 혹은 하부 위원회(sub-committee), 조사 담당팀의 권고를 채택함<sup>3246</sup>).

### (3)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사례 감시 및 조사

#### (가) 구금시설 방문 조사

위원회법 개정안이 구금시설 인권 상황에 대한 방문 조사를 위원회 기능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시설 내 인권 상황을 비롯해 사법정의 실현의 한 요소로서 재판 절차와 관련한 부당한 구금 사례 등을 감시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구금시설 감사 보고서(Report of Prison Audit)를 작성함. 위원회는 지금까지 1999년, 2004년, 2007년, 2009년 구금시설 조사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권고한 바 있음<sup>3247</sup>. 보고서는 수감자 수, 재판 중인 수감자, 보석금 문제로 구금된 수감자, 위생 상태, 성별 비율 등에 관한 통계 수치를 포함하며, 지역별 구금시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재판과 관련한 법적 구제, 위생 상태에 대한 긴급 조

3245) N.H.R.C.A. 2010 art.6(4)&(5) (인권위원회법 제6조 4항&5항) : (4) it is an offence for any person, body or authority to (a) refuse to provide evidence, including documentary evidence, to the Commission in response to a written request to do so; (c) punish, intimidate, harass or discriminate against any person for co-operating with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5)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subsection (4) of this section is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6 months or to a fine of N100,000.00 or to both such punishment and fine.

3246) S.O.R.P.NHRC. Rule.77(3) (절차법 제77조 3항)

3247) NHRC, Report of Prison Audit 2009, p.9 서문(Foreword)

치, 미성년 수감자를 위한 보호조치 등의 권고를 담고 있음<sup>3248</sup>). 2011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총선(2011 General Election) 감시 보고서와 코기주 주지사 선거(Kogi State Gubernatorial election) 감시보고서를 발간했고, 2012년에는 에도/온도주 주지사 선거(Edo and Ondo States Gubernatorial Elections) 감시 보고서를 발간함<sup>3249</sup>).

(나) 심각한 침해 사례에 관한 자체 조사

위원회법이 위원회의 직권조사(suo-motu)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진정 요청 없이 직권조사 활동을 수행해옴. 대표적으로는 군 혹은 경찰의 임의적 사형·사살, 무장 단체에 의한 집단 학살, 납치를 비롯한 대규모 폭력 사태, 민간인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집단 피해 등의 사례들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함.

(4) 피해자 구제

(가) 조정기능

나이지리아 인권위법은 2010년 개정 후 조사 권한의 강화와 함께 조정(adjudicatory)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처벌 외에도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대안적인 구제 조치를 가능케 함. 사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끝난 후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화해(conciliation), 중재(mediation), 조정(arbitration) 중에서 적합한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해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함<sup>3250</sup>. 위원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모든 조정 결정 및 권고에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legally binding) 명시함<sup>3251</sup>).

3248) NHRC, Report of Prison Audit 2009

3249) NHRC, 브로셔, p.54

3250) S.O.R.P.NHRC. Rule.78(3) (절차법 제77조 3항)

3251) N.H.R.C.A. 2010 art.22(1) (인권위원회법 제22조 1항) : 22(1) An award or recommendation made by the Commission shall be recognized as binding and subject to this section and this Act shall upon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court, be enforced by the court.

(나) 가해자 처벌

민간인에 대한 군과 경찰의 무장 공격, 임의적 사형(extra-judicial killing), 고문, 실종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거나 경찰 감사기관 및 수사 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함.

(5) 민주적인 선정(Good Governance)을 위한 감시

나이지리아 인권위 홈페이지는 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선정과 부정부패 감시 활동(Good governance and Corruption)을 소개하고 있음. 인권위는 부정부패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정부 및 정당에 비판적인 권고를 전달함.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 보고서는 정당에 의한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후보 교체, 투표자 수 조작, 개표에서의 불법 행위, 유권자 및 개표 담당자에 대한 집단 학살과 폭력 등 심각한 범죄 행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룸. 또한, 위원회 전략 활동 계획은 ‘민주주의와 선정의 강화(Deepening of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항목을 주요 활동으로 하여 유권자 등록에 관한 타운홀 미팅, 선거위원회 및 정당들과의 논의, 개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시킴<sup>3252</sup>).

(6) 정부 정책 자문

인권위는 매년 발간하고 정부에 제출하는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인 ‘인권현황보고서(A Report on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Nigeria)’를 통해서, 사안별 인권 상황을 기술한 후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를 제시함. 주로 관련 정책이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인권 관련 국내 법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해 권고함.

(7)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

위원회는 2009년, 내부에 공익소송지원부(Public Interest Litigation unit)

---

3252) NHRC, Nigeria Strategic Work Plan, 2010

를 신설함으로써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피해자인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구조적 인권 침해로서 나이지리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한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을 유용하게 함<sup>3253</sup>). 위원회 내부의 소송지원 부서는 처음에 특히 고문 피해자들을 대리한 고발과 사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짐.

(8) 시민사회와의 협력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다양한 활동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시민단체 연합과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공동 작성, 인권 사안 관련 워크숍과 컨퍼런스 공동 개최, 진정 및 자체 조사에 관한 시민사회의 협력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및 관계

(1)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는 설립부터 국제 사회의 나이지리아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 인권 기준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제인권협약에 명시된 인권의 기본적 개념을 국내에서 알리고 교육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음. 그러나 2010년 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기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보호 역할을 강화했고, 이후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특히 정부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압박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음. 독립적인 인권 침해 조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음.

(2) 나이지리아 인권위의 특징적 역할은 민주주의적 선정을 위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는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과 함께 특별히 선거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부패 행위 및 폭력 행위를 보고서를 통해 고발함. 이 보고서는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어 검토됨.

(3)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

3253) NHRA, Statutory Report 2009, p.8

위원회 법 개정으로 기능과 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한 임의적인 사무총장 해임이 계속 발생해왔음. 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연간 보고서 및 예산안 제출을 법무장관을 통하지 않고 국회에 바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조사 후 기소 요청을 할 때는 법무장관을 통해야 한다는 점, 사무총장 연임 결정 시 법무부 장관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장관에 대한 예측성이 남아 있음.

### 3)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활동 사례

#### 가) 피해자 구제

##### (1) 진정 요청에 의한 조사 및 구제

(가) 위원회는 Tse-Kucha 지역 주민들로부터 2014년 시멘트 기업인 Dangote Cement Company가 배출하는 폐유가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 요청을 받음. 이에 방문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공장 운영이 야기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출두해 증언할 것을 권고함.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고문, 임의적 살해 같은 기본권의 침해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경권,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개입을 늘리고 있음<sup>3254</sup>).

(나) 2013년 인권위는 Covenant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 120명이 대학 전체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한 사례에 대한 진정 요청을 접수함. 해당 대학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규칙으로 잘 알려진 대학으로, 위원회는 진정인들과 함께 학교 측을 설득해 퇴학에서 4주 정학으로 조치를 경감시켜 학생들을 구제함<sup>3255</sup>).

##### (2) 대규모 인권 침해에 관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가) 위원회는 2014년 3월에 Benue주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혐의가 있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자체 조사 실시를 결정하

3254) <http://www.informationng.com/2014/07/rights-commission-threatens-to-sue-dangote-over-benue-excavation.html> (검색일: 2016.8.19.)

3255) <http://www.informationng.com/2013/01/covenant-university-to-recall-expelled-students.html> (검색일: 2016.8.19.)

고 보호를 위한 워킹그룹 (Protection Sector Working Group)을 구성해 해당 주 정부 및 지역을 방문해 대대적인 조사 작업을 실시함. 이 워킹그룹은 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국가응급관리소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가난민위원회, 평화와 분쟁 해결 연구 소, 적십자 소사이어티, 유엔난민기구, 여성과 사회발전부 등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들이 연합해 구성한 조사팀으로서, 화학무기사용으로 국내 난민이 된 민간인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sup>3256</sup>).

#### 나) 교육

(1) 에볼라 바이러스(Ebola) 예방 포럼 및 HIV/AIDS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2014년, 위원회는 나이지리아 구금시설 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1일 관계자들 포럼(One Day Stakeholders Forum on Adopting Appropriate/ Urgent Strategies to Prevent the Outbreak of Ebola Virus in Nigerian Prisons)을 개최해, 교도소장, 나이지리아 건강부 대표들, 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원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갖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고 토론 과정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에볼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같은 해 9월에는 나이지리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HIV/AIDS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알리고 이 같은 차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함<sup>3257</sup>).

#### (2) 공무원 교육

인권위의 주요 교육 대상에는 공무원 및 경찰, 군, 교도관 등이 포함되어, 구금시설의 인권, 고문,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등을 주제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함. 위원회는 2009년, 남서부 지역 인권위원회 사무소와 클린 재단 (CLEEN Foundation)과 공동으로 민간 치안유지활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해 총 4개 세션에 걸쳐 인권 및 비군사적인 방식의 치안유지활동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

3256) <http://www.informationng.com/2014/04/nhrc-begins-probe-into-use-of-chemical-weapons-on-civilians-in-benue.html> (검색일: 2016.8.19.)

3257) NHRA, 2014 연간보고서(2014 Annual Report), p.31

함<sup>3258</sup>). 2014년 9월에도 매년 나이지리아 인권위가 진행해 온 경찰 대상 인권 교육인 “인권과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교육(Training of Police Officers on Human Rights and Policing)” 프로그램을 민나(Minna), 고펜(Gombe), 아우카(Awka), 소코토(Sokoto), 칼라바르(Calabar), 라고스(Lagos) 지역에서 진행함<sup>3259</sup>). 또, 2014년 3월에는 ‘프랑스 국경 없는 변호사회(Advocate Sans Frontieres France)’와 공동으로 법조인들을 위한 인권 워크숍(Practical Workshop for Judicial Stakeholders)을 개최하여 나이지리아 내 구금시설 수감자 인권, 보다 제한적인 사형제도 시행에 관해 교육함<sup>3260</sup>).

#### 다) 홍보

2015년, 인권위 앙그웨(Angwe) 사무총장은 2015년 말까지 나이지리아 국민의 80%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목표임을 발표한 바 있음. 그 일환으로 국가정책방향사무소(National Orientation Agency)와 함께 나이지리아 헌법 중 인권에 관한 조항을 3개 주요 나이지리아 언어로 번역해 배포할 계획을 밝힘<sup>3261</sup>).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중에는 지역 방문을 통한 인권위 홍보, 지역민들과의 미팅 주최 등이 있음.

#### 라) 정책 개선

##### (1) 선거 과정 모니터링 및 부패 행위 예방

(가)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2007년과 2011년 선거에서 벌어진 선거 부정 행위들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petition) 요청들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에 ‘선거부정행위 면책 근절 프로젝트(End Electoral Impunity Project) 최종보고서(End Electoral Impunity Project Final Report)’를 제작해 정부 및 사법부, 정당, 나이지리아 선

3258) NHRA, Statutory Report 2009, p.6

3259) NHRC, 2014 연간보고서(2014 Annual Report), p.32

3260) Id. p.83

3261) <http://www.informationng.com/2015/11/80-per-cent-nigerians-must-know-their-rights-by-end-of-2015-nhrc.html> (검색일: 2016.8.19.)

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경찰 등 모든 관련 당국과 주체들에게 권고함.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선거부정을 구조적 범죄(organized crime)로 보고, 선거부정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불처벌(impunity) 관행을 고발하고 경찰 및 선거위원회, 정당을 비롯한 주요 주체들이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역사를 지적함.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는 관련자들에게 대한 형사 기소 및 처벌 권고를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선거위원회에는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을 비롯한 위원회 내부개혁을 권고하며, 국회에도 입법을 통해서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부정 행위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 등을 권고함<sup>3262</sup>).

## (2) 정부 정책 자문

(가) 위원회는 2009년 Akwa Ibom주에서 법무장관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유엔아동 기금(UNICEF)와 공동으로 아동권리법상 아동 재판 절차에 관한 발표를 통해 법무장관이 아동권리법의 시행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자문 역할을 함.

(나) 위원회가 맡은 대표적인 국가정책 자문 역할은 파리 원칙(Paris Principle)에 근거해 정부의 인권 정책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과 시행에서 인권위의 적극적 개입임. 국가행동계획(NAP)과 관련해 인권위는 시민사회 등 여러 참여 주체들을 초청해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해 협의적 대화 과정(Consultive discussion)을 통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영역의 의견을 모아 국가 행동계획에 반영함<sup>3263</sup>).

## (3) 국회 의견 제출

(가) 선거 감시 보고서 발간: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 및 조사 보고서인 선거 책임 보고서(Electoral Accountability Report)를 정기적으

---

3262) NHRC, 『End Electoral Impunity Project Final Report』, 2016, p.21-32

3263) NHRA, Statutory Report 2009,

로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함. 2014년에는 2007년과 2011년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 행위들과 폭력 사태들에 대해 다룬 보고서 “2007년과 2011년 선거무효소송에서 밝혀진 참정권 및 공공서비스 접근권,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침해 관련 보고서(An independent review of evidence of gross violations of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to public service, and to fair trial through the election petition process in Nigeria 2007&2011)”를 작성해 2007년에는 총 1,299건의 당선무효소송이 청구됐고 2011년에는 769건의 무효소송이 발생했음을 보고함.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불법행위들과 정치세력 및 무장 세력에 의한 폭력적 선거 개입에 의해 벌어졌음을 고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요청과 예방 정책의 도입 등 국회 및 정부에 보내는 위원회의 권고를 담고 있음<sup>3264</sup>).

- (나) 구금시설 개혁: 2013년, 나이지리아 인권위는 국회의원들을 구금시설 방문조사에 초청해, 수감자 과다 수용으로 인권 상황이 열악한 Uyo 교도소를 함께 시찰하고 구금시설 개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계획을 국회 내에서 논의하도록 함. 이 방문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총 819명의 수감자 중 657명이 재판 대기 중인 수감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이지리아 구금시설 및 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것임을 밝힘. 조사 후 ‘인권과 법무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 on Judiciary, Human Rights and Legal Matters)’ 위원장은 교도소법(Prisons Act) 개정, 판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구금시설 수감자 현황을 점검하게 하는 법안 발의, 법률지원이사회(Legal Aid Council)를 통한 무료 법률 지원 관련 법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입법 계획을 밝힘<sup>3265</sup>).

#### 마) 사법부 의견 제출

나이지리아 인권위가 사법부에 의견 제출을 하는 방식은 주로 인권 침해

---

3264) NHRC, An independent review of evidence of gross violations of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to public service, and to fair trial through the election petition process in Nigeria 2007&2011, 2014

3265) NHRC, 2013 연간보고서(2013 Annual Report), p.144

사건에 대한 피해자 구제 조치로서 가해자 기소 요청 혹은 재판 요청, 소송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1) 위원회는 2013년 수도 아부자(Abuja)의 아포(Apo)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들에 대한 국가안보기관(State Security Service)의 비사법적(extra-judicial)이고 임의적인 살인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는 방어권 행사로서 민간인에게 총을 쏘았다는 국가안보기관의 주장과 달리, 당시 사건이 정부 당국의 부주의 및 민간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을 밝히고 관련 기관에 대한 기소를 요청함<sup>3266</sup>).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국회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인 및 증거를 국회의원과 시민에 공개하고 사건을 공론화함.

바) 주요 인권 이슈

- (1) 보코 하람(Boko Haram)에 의한 테러

보코 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무장세력으로 2009년부터 나이지리아 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테러를 자행해 왔음. 2013년부터는 나이지리아 국경과 인접한 카메룬, 차드 등의 인접국에도 테러 범위를 확대해 보코 하람은 IS와 같이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 보코 하람은 정부 시설물부터 국제법상 보호되는 장소인 종교 건물, 기도회당, 학교 등을 무차별 공격해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고, 특히 잔혹한 살인,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등 중대 인권 침해를 저질러 나이지리아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음.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야기되는 피해는 살인이나 강간 같은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많은 민간인의 집과 터전, 공기관, 학교나 교회 같은 시설물을 무원칙적으로 파괴해 나라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함. 보코 하람의 테러로 약 130만 명의 국내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 발생했고, 보코 하람은 유엔 난민 캠프 같은 국제기구 시설에도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난민과 인권활동가들이 공격받은 바 있음. 보코 하람은 인권운동집단, 시민사회, 언론인 등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능에 대한 테러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함. 나이지리아 정부

---

3266) <http://www.informationng.com/2014/04/jni-lauds-nhrcs-report-on-apo-killings.html>  
(검색일: 2016.8.19.)

는 보코하람의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자 지원기금(Victims Support Fund)과 북동부 지역을 위한 대통령 이니셔티브(Presidential Initiative for the Northeast)를 출범시켰으나 지원책으로서 역부족인 상황이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보코 하람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음<sup>3267</sup>).

사)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

(1) UPR 및 조약기구 심사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 제출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제17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한 2차 심사에서 시민단체들과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참여해, 부정부패에 대한 정부 대응,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인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sup>3268</sup>).

(2) 국제협력

위원회가 국제협력 활동으로서 주요하게 참여하는 영역은 아프리카 지역 인권보호 시스템상의 협력 및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공동체(ECOWAS)와의 인권 사안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임. 2008년에는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공동체(ECOWAS) 국가인권위원회 멤버들을 초청해 ECOWAS 지역법원(Ecowas Community Court) 활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sup>3269</sup>).

#### 4)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에 대한 현황

가) 시민진정위원회(Public Complaints Commission)<sup>3270</sup>

(1) 설립

---

3267)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ko Haram and the impact on human rights in the affected countries, 2015, A/HRC/30/67

3268)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and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2013, A/HRC/WG.6/17/NGA/3

3269) NHRA, Statutory Report 2009, p.4-5

3270) S.O. Nnamani,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Nigeria, p.132

1975년, 나이지리아 정부가 시민진정위원회법(Public Complaints Commission Act, 1975)에 근거해 설립한 위원회로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의 행정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을 받고 공기관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감시함.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국회의 승인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명의 위원들을 둘 수 있음. 또한, 국회 승인 하에 수도 외 지역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3) 주요업무

시민진정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에 명시하고 있는 주체들의 모든 행정적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 요청을 담당함. a) 연방 및 주 정부의 모든 부처 b) 연방의 일원인 주 정부에 속해 있는 지역 당국의 모든 부처 c)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모든 공공단체 및 공기관 d) 나이지리아 기업 관계법(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에 따라 정부 혹은 사인 소유의 기업 e) 앞서 말한 모든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위에 적시한 기관 및 담당자들의 시민에 대한 행정 행위가 법률 및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권위적인 행정 처분을 했을 경우, 행정 기관의 일반적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설명에 의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시민진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위원회법에 따라 범죄(crime) 행위가 성립되면 관련 개인 혹은 당국에 기소 요청, 교육 훈련과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나) 인권침해 조사위원회(Human Rights Violations Investigation Commission)<sup>3271)</sup>

(1) 설립

나이지리아에서 군부 독재 통치가 끝난 직후 국민이 선출한 오바산조(Obasanjo) 대통령은 Statutory Instrument No. 8 of 1999를 발행, 일명 Oputa Panel이라 불리는, 나이지리아의 진실 화해 위원회 격인 ‘군부 독재 기간에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Human Rights Violations Investigation Commission)’를 설립함. 나이지리아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는

3271) <http://www.usip.org/publications/truth-commission-nigeria> (검색일: 2016.8.22.)

설립 초기에는 1984년부터 1999년까지 4번의 군사 정부 통치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았으나, 나이지리아에서 첫 번째 군사 정부가 통치하기 시작한 독립 직후인 1966년부터 발생한 사례들까지 포함시켜 조사 대상을 확대함.

(2) 조직 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위원장 1인과(출범 당시 오푸타(Oputa) 판사가 위원장으로, 판사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오푸타 패널(Oputa Panal)이 됨) 나머지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됨.

(3) 주요업무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는 법적 기소 혹은 처벌을 목적으로 설립한 위원회가 아닌,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정립을 위한 진실 화해 위원회로서 설립됨. 따라서 군 독재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사와 관련한 정의를 정립하고, 이 같은 중대 인권 침해 범죄들의 발생을 방지하며 당사자 간 화해를 도모함.

---

---

## IV

---

---

###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국가의 인권시스템 현황

1. 미국	1127
2. 중국	1155
3. 일본	1187



## 1. 미국

미국 국가 정보 <sup>3272)</sup>	
면적	9,820,000 km <sup>2</sup>
인구	321,370,000명 (2015년 기준)
수도	워싱턴
정치형태	대통령제
주요언어	영어
주요종교	개신교 (46.5%), 가톨릭 (20.8%)
주요민족	백인(77.4%), 흑인 (13.2%), 아시아계 (5.4%), 원주민(1.4%), 기타(2.6%)
GDP	17조 9,681 억불 (2015 IMF 기준)
	1인당 GDP : 5만 5,904불 (2015 IMF 기준)

###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 연방차원

(i) 미국은 연방, 그리고 50개 주(state)가 결합된 51개 주권체(Sovereignties)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임. 연방국가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주들이 자주성을 가질 뿐 아니라 각 주가 독자적인 법 영역(jurisdiction)을 보유함. 연방 정부는 연방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주 정부에 의한 권한 행사가 금지된 사항에 대한 권한(예: 조약체결권, 화폐주조권, 세입세출권, 주 간 통상규제권, 공유지 이용규제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 이 외에 연방 헌법이 연방 정부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한이나 연방헌법이 주 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다른 모든 권한은 각 주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내에는 각각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수직적 권력 분립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동시에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는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 헌법 제 6조, 헌법과 조약을 포함한 미 합중국 법률은 이 나라의 최고법규가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3272) [http://www.mofa.go.kr/countries/northamerica/countries/20150807/1\\_68215.jsp?menu=m\\_40\\_30\\_20](http://www.mofa.go.kr/countries/northamerica/countries/20150807/1_68215.jsp?menu=m_40_30_20) (검색일 2016.6.26)

연방법이 우선권을 가짐(강재규, 2015; 이우영, 2010; 백상흠, 2004)<sup>3273</sup>).

(ii) 미국 연방차원의 인권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미국 연방헌법은 제정헌법의 규정 및 1791년 수정헌법,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 13조, 14조, 15조, 19조, 24조 및 26조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 기본권은 사회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연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 정도로 정의됨. 따라서 미국 헌법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헌법상의 권리를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결국 최종적인 유권 기관인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기본권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본권은 수정헌법 상 적법절차조항 및 평등한 보호조항에 의하여 정부 등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표명환, 2011)<sup>3274</sup>.

(iii) 미국 연방을 관할하는 법률 중에서 기본권 보호와 관련 있는 법률은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장애인 차별 금지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sup>3275</sup>,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 연방 재활법(Federal Rehabilitation Act), 투표권 법(Voting Rights Laws) 등이 있음.

(iii-1)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시민의 선거·주택·고용·안전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 하고, 서비스 기회에서 차별·부당

3273) 강재규, “미합중국 헌법과 연방 및 주의 권한: 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Vol.16, No.1(2015), pp. 252-253; 이우영, “미국의 연방대법원,” 『인권과 정의』 Vol. 411(2010), p. 8; 백상흠, “미국 법체계의 이해,” 『Patent 21』 Vol. 57(2004), p.25.

3274) 표명환, “미국 연방 대법원의 기본권 확장의 법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Vol.43(2011), p. 48

3275)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67)은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 절차 상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보호대상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고령자의 장기 실업을 막아 고용을 촉진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음. 유각근,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 『미국헌법연구』 Vol.22, No.3(2011), pp. 260-264.

대우·학대·약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64년 제정되었음. 미국 연방의 민권법은 UN 헌 장<sup>3276</sup>의 제정 목적보다는 좁은 범주를 규정하여 평등 정책, 즉 개인이 공공기관이나 타인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준수하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특정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 인권법이 연방 민권법보다 넓은 범주를 보유한 경우도 존재함. 특히, 다인종 문제, 복합 문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 인권법이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

민권법 제 7편<sup>3277</sup>에 근거하여 설립된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각 주에 설치된 인권 구제 행정기관에 의해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EOC)에 피해 신청이 가능하며<sup>3278</sup>,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EOC)에 신청할 수 있음(이병운, 2015).<sup>3279</sup>

(iii-2) 장애인 차별금지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1990)은 고용, 교통, 공공편의시설 등 사회의 다양한 활동 분야 내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0년 제정되었음. 1964년 제정된 민

3276) 국제연합 헌장 제 1조 3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un.org/en/charter-united-nations/> (검색일: 2016. 11.16)

3277) 1964년 민권법 제 7편은 제 701조부터 제 718조까지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고용상 차별행위, 예외적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미국연방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eoc.gov/laws/statutes/index.cfm> (검색일: 2016. 8.9)

3278) 피해자는 각 지자체 내 설치되어 있는 구제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EOC)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상기 원칙으로 미해결 시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EOC)의 적극적 개입 권한을 부여하며 EEOC의 구제 방법은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음.

3279) 이병운,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민권법 제 7편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Vol.67(2015), pp.393-398.

권법 이래로 가장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령으로 인식됨(이동우, 2007)<sup>3280</sup>.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편의 제공 의무를 각 장 별로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명칭도 각기 다름. 제 1장의 고용 분야에서는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고 규정하며, 2장의 공공 서비스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명칭 없이 합리적 개선의무 (the duty of reasonable modification)와 다른 편의 제공 의무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음. 3장의 공공 편의시설도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 없이 제 2장의 합리적 개선의무 등을 포함하여 4가지 형태의 편의 제공 의무를 제시함. 제 2장과 제 3장에 각각 포함되나 대중 교통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의제공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 4장은 기타사항과 관련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 (심재진, 2014)<sup>3281</sup>.

- (iv) 미국 연방 차원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권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단, 미국 연방 행정부 내 사법부, 노동부, 주택도시 개발부, 교육부 등 주요 부서들이 민권법의 관련 해당 조항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집행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음. 각 민권법 집행 기관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 처벌을 하는 권한 외에 연방 민권법 및 기타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연방 법무부에 이관하거나 직접 연방 법원에 고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보호와 권익 옹호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P&A)’과 같이 연방법을 근거로 하여 연방의 각 행정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호 프로그램도 존재함. 현재 미국에는 8개의 단독 P&A 프로그램이 있는데,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DD, 1975), 클라이언트 원조 프로그램(Client Assitance Program: CAP, 1973), 정신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3280) 이동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 『장애와 고용』 Vol.17, No.1(2007), pp. 42-44.

3281) 심재진,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와 장애인 사회보장 법제의 관계,” 『노동법학』 Vol.52(2014), pp. 258-259.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AIMI, 1986), 개인의 권리를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PAIR, 1993), 보조 기술을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tive Technology:PAAT, 1994), 사회보장 수급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PABSS, 1999),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을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PATBI, 2000), 투표 접근성을 위한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ing Accessibility: PAVA, 2003)이 있음. PADD와 PAVV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가족국 내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n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 의해 관리 감독되며, CAP, PAIR, PAAT는 교육부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실 내 재활 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 감독됨. PAIMI는 보건복지부의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 국 내 정신보건 서비스센터(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에 의하여, PABSS는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그리고 PATBI는 보건복지부 내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 의하여 관리감독을 받음(조한진, 2014)<sup>3282</sup>).

- (v) 주 정부와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연방법에 상응하는 민권법이나 인권 조례 시행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주 내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음. 또한 주 정부가 주관하는 인권국이나 인권위원회는 자체 법률을 시행하는 것 뿐 아니라 연방 부처(주택 도시 개발부, 법무부, 노동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연방법 집행을 각 주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vi) 국제 인권기구 협의회인 IAOHR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Human Rights Agencies)는 1949년 뉴욕에서 4개의 주가 각 주별 인권 기구들의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 2016년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기구들의

3282) 조한진,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미국의 P&A현황과 장애인 권리 옹호자의 역할 워크숍 발표자료』 (2014.11.17.), pp.84-85.

포럼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43개주의 인권 기구와 8개 연방 행정부처, 9개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소속되어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이 협의회는 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과 관련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기구들의 정례 회의를 통하여 인권 옹호를 위한 이해 증진활동을 벌이고 있음. 또한 협의회는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각 인권 기구들의 집행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 주별 개황

### 가)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WSHRC)

#### (1) 설립 배경 및 설립 연도

- (i) 1949년 워싱턴 주 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는 차별에 대응하는 워싱턴 주 법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ii)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는 워싱턴 주 내에서 발생하는 법의 공정한 적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동체 내 생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같이 차별을 방지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sup>3283)</sup>
- (iii) 위원회는 연간 대략 1,000건 이상의 인권 차별과 관련한 진정서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지사에게 인권 정책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연방 사법부, 연방 고용 평등 위원회 및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워싱턴 주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음.
- (iv) 위원회 본부는 Olympia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 Vancouver District Office, Spokane District Office, Yakima District Office 등 총 4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3283)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wa.gov/> (검색일 2016.4.28.)

(2) 설립근거 (근거법 및 상위법)

- (i) 위원회는 워싱턴 차별금지법(Washington Law Against Discrimination)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 49.60 조<sup>3284</sup>의 시행 및 집행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ii) 워싱턴 주 개정 법률은 주 내에서 벌어지는 학교와 공공시설 및 직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부동산 거래 및 신용 보험 거래에서 벌어지는 인종 및 피부색·출신 국가·종교 및 신념·성별(sex) 및 성 정체성·신체적 장애 여부·훈련견 및 도우미 동물 사용 여부 등에 의한 차별 관행 등을 금지하고 있음.

(3)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도

- (i) 워싱턴의 주지사가 5명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이 중에서 최고 위원장(Executive Director)까지 임명함(워싱턴 주 개정법률 차별 금지법 49.60.050). 2016년 현재, 최고 위원장은 Sharon Ortiz이며, 그 외 4명의 위원장은 Charlene Strong, Clarence Henderson, Lenore, Skylee Sahlstrom임.
- (ii) 임명받은 최고 위원장은 조사 담당 직원(investigative staff)을 포함하여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 내에서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선발할 권한을 보유함. 5명의 각 위원장들은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 규제방안을 채택하며, 정기 월례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함.
- (iii) 워싱턴 주 내에 있는 각 지역사무소(Olympia 본부, Vancouver 지역 사무소, Spokane 지역사무소, Yakima 지역 사무소)들을 운영하는 담당 위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 조사팀과 대민 업무 지원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3284) 워싱턴 주 입법부 홈페이지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검색일 2016.8.10.)



출처: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wa.gov> (저자가 재구성)

[미국-그림 75]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 조직도

(4) 주요 권한 및 구체적 업무 활동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주 내의 고용·주거·평등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장애인, 훈련견 및 도우미 동물 사용자, 모유수유자 등)·신용 및 보험(Credit & Insurance)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i) 차별적 부당행위 및 성적 부당행위에 대한 분쟁 해결

(i-1)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차별이라 함은 법에서 보호대상(protected class)으로 규정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에게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이 때 보호대상은 워싱턴 주 개정법을 차별금지법에 따라 인종 및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및 신념, 성별(sex),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장애 여부, 훈련견 혹은 도우미 동물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지정함. 즉, 차별적 부당행위는

보호대상 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음(위싱턴 주 개정법률 차별 금지법 49.60.030).

(i-2) 협박, 경멸성 농담, 신체적 폭력, 물리적 위협, 위험하거나 치욕스러운 기타 행위 등을 차별적 부당행위가 차별의 사례임.

(i-3) 위싱턴 주의 인권 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시민권 사무소(Equity and Civil Right Office)를 운영하며 시민권법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차별적 부당행위 및 성적 부당행위에 대한 분쟁을 전담관(Civil Rights Compliance Coordinator)이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하고 있음.

(ii) 고용차별 해소

(ii-1) 모든 개인이 고용에서 받는 차별대우는 위법적 행위로 규정되는데, 고용차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함. 고용에서의 피보호 대상 기준은 인종·피부색·국적·신념·성별·임신여부·성적취향·성정체성·재향군인·군인신분·감각, 정신 혹은 신체적 장애여부 (실체적이거나 혹은 장애로 인식되는 경우)·안내건사용 여부·HIV 또는 C 형간염 여부·결혼 여부·연령(특히 40세 이상)·주정부 직원 내부 고발자 신분·차별에 대한 민원의 제소 경험 혹은 이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보복 등이 해당됨(위싱턴 주 개정법률 차별 금지법 49.60.180).

(ii-2) 불법적인 차별행위는 취업 지원 과정 중, 혹은 고용 전 부당행위 및 근무 중 발생할 수 있음. 고용차별의 형태로는 부당처우(동등한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 다르게 대우를 받거나 피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작업장의 동료들과 구분되는 부당한 행위 등), 부당한 영향(고용주가 중립적인 정책 또는 대우를 시행하지만, 결과적으로 피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나타나는 행위), 학대 및 비우호적 작업 환경; 장애 또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차별 대우, 또는 차별 관련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 등이 있음.

(ii-3) 고용차별은 주 및 연방법과 소송을 통한 사법 제도에 의해 규제

될 수 있음. 소송은 인권법을 해석하여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판례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워싱턴 주 고용 차별 금지법은 워싱턴 주 개정법률 차별 금지법(RCW) 49.60; 워싱턴주 행정법(WAC) 제 162편 및 판례법에 근거하고 있음.<sup>3285)</sup>

(ii-4)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워싱턴 주 개정법률 차별 금지법 49.60에 따라, 고용차별과 관련한 민원은 피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에 제소해야 함. 민원 제기는 차별 행위를 당한 개인의 피해일로부터 2년 안에 할 수 있음. 단,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는 8 인 이하 직원의 고용주, 아메리카원주민, 연방정부, 종교인 또는 워싱턴 주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음.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는 중립적인 진상조사 기관이자 법 집행기관으로, 조사기간 중에는 특정한 편을 옹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 내 차별 방지 및 철폐를 위한 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함.

(iii) 교육 및 홍보: 위원회는 주 내의 차별관행 금지와 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홍보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 본부 사무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연사 및 강사를 섭외하여 특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주며, 소규모 그룹을 위한 초청 연사 섭외 지원을 제공함<sup>3286)</sup>.

또한 고용, 공정 주택, 신용 보증 영역에서 차별을 규정할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함. 특히 워싱턴 주 내에서 벌어지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차별 행위 규정에 대한 가이드북을 영어 외에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캄보디아어, 아프리카 어 등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

3285) 연방 고용 차별 금지법은 다음을 포함 한다:

1964 년 시민권법 제 7 편; 미국 장애 복지법; 1967 년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법(ADEA); 1963 년 동일 임금법(EPA);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 릴리 레드베터 평등 임금법 및 판례법.

3286) Volunteers of America West Washington 홈페이지, <https://www.voaww.org/> (검색일: 2016.8.10)

## 나) 뉴욕주 인권부 (The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i) 1945년 주지사였던 Thomas E. Dewey가 아이브스-퀸 차별 방지법 (The Ives-Quinn Anti-Discrimination Bill)<sup>3287</sup>에 서명하면서, 뉴욕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사례가 되었음.
- (ii) 이와 동시에 뉴욕 주는 ‘차별에 반대하는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against Discrimination)’를 설립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함. 1968년 아이브스-퀸 차별 방지법이 인권 법으로 개정되었고, 차별에 반대하는 뉴욕 주 위원회는 뉴욕주 인권부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2)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i) 뉴욕주는 미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제정하였음. 뉴욕주의 인권법은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성적 기호, 혼인 상태, 장애, 군 복무 신분 및 기타 명시된 계층을 근거로 고용, 주택 공급, 신용 대출, 공공 편의 시설 및 무종파 교육 기관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뉴욕주 인권법 §290.3. 법률의 목적)<sup>3288</sup>
- (ii) 뉴욕 주 인권법은 변화하는 미국의 문화와 뉴욕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꾸준히 개정되고 있음. 예를 들어 1974년 인권법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장하였고, 1997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있어서 적절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표현이 인권법 내에 포함되었음. 2002년에는 종교적 관례와 종교 의식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권법에 포함되었고 2003년에는 성적 정체성 비차별 법률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3287) 아이브스-퀸 차별방지법은 1945년 3월 12일 뉴욕주 입법부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를 이유로 고용이나 타인에 의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Terry Lichtash, "Ives-Quinn Act: The Law Against Discrimination," 『St. John's Law Review』 Vol.19, No.2(1945), p. 170.

3288) 뉴욕주 인권부 홈페이지 "Laws and Regulations" <http://www.dhr.ny.gov/law> (검색일: 2016년 4월 28일)

- (iii) 뉴욕 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은 고용, 견습 사원 채용 및 교육, 주택 및 상가 공간 구매 및 대여, 공공 편의 시설, 리조트 및 놀이 시설, 비종파 단체, 세금 면제 대상 교육 기관 및 모든 신용 거래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음. 이것은 뉴욕주 인권법이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함.
- (iv) 뉴욕 주 인권법은 뉴욕 주 인권부 (Division of human rights)의 설립과 목적,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뉴욕주 인권법에서 정하는 인권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뉴욕 주 인권부(division)를 설립한다고 규정하였음.
- (v) 법률 내에서 뉴욕 주 인권부의 수장은 ‘위원장(commissioner)’으로 규정하는데 이 직무는 주지사에 의하여 선정된다는 조항이 존재함(뉴욕주 인권법 §293.2. 인권부)<sup>3289</sup>). 위원장은 인권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을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3) 인권 담당기관의 구성 및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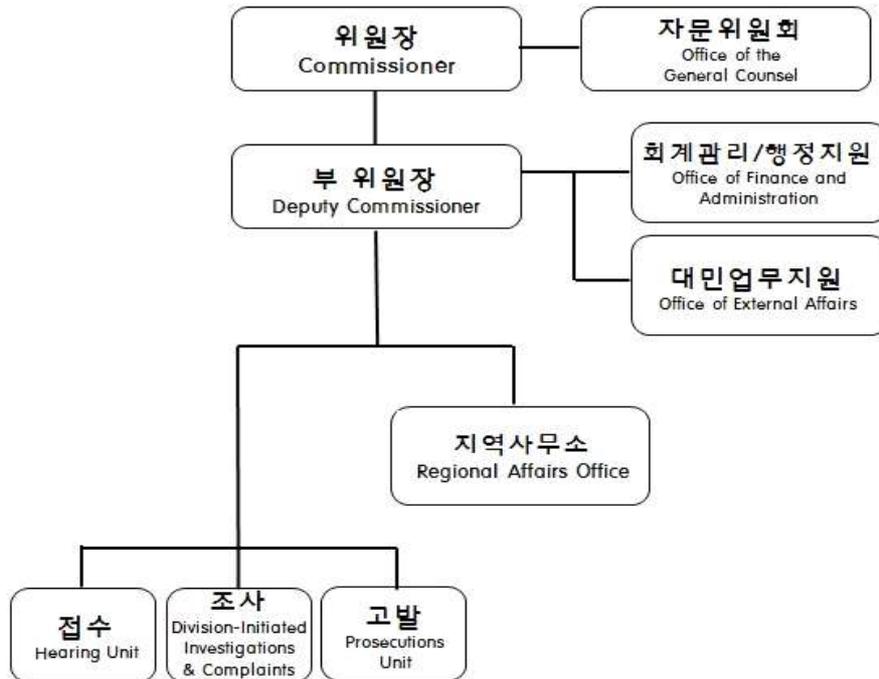
- (i) 뉴욕주의 인권부 위원장은 뉴욕 주 전반의 인권법 집행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함. 2016년 현재, 위원장은 Helen Diane Foster이며 부 위원장은 Valerie P. Dent가 맡고 있음.
  - (i-1) 위원장 직무: 개인이 접수한 부당 차별 대우나 조사 부서에서 밝혀낸 부당 차별 대우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적합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함.
  - (i-2) 부 위원장 직무: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권 정책의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조정을 담당함.
- (ii)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뉴욕 주 인권

---

3289) 뉴욕주 인권법 § 293.2, 뉴욕주 인권부 위원장은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서 내에 사무소나 기구를 설치, 재조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뉴욕주 인권부 홈페이지 "Laws and Regulations" <http://www.dhr.ny.gov/law> (검색일: 2016년 8월 9일)

법의 해석에 관련하여 모든 부서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함. 특히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을 위하여 사례 연구를 담당하고 이와 관련한 입법 초안을 작성함.

- (iii) 민원 접수부(Hearing Unit):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민원제기를 원하는 개인으로부터 차별 행위와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조사부서(Prosecutions Unit)에 조사를 의뢰함.
- (iv) 조사부(Prosecutions Unit): 뉴욕 주 인권부를 대표하여 접수된 차별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함. 증거에 기반하여 차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배상 협상 및 조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함. 이후 단, 위법적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음.



출처: 뉴욕 주 인권부 홈페이지 <http://www.dhr.ny.gov/> (저자가 재구성)

[미국-그림 76] 뉴욕 주 인권부 조직도

- (v) 지역 사무소(The Regional Affairs Office): 뉴욕 주에 위치한 지역 사무소(The Bronx 본부 외 11곳의 지역사무소)<sup>3290</sup>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들의 업무를 감독함. 지역 사무소로 접수되는 부당한 차별대우에 관한 조사 업무가 주요 업무임.
- (vi) 대민 지원실(Office of External Affairs): 대민 지원 업무 및 주 내에서 관할하는 아웃 리치 활동을 주관함. 주민들에게 인권법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 포럼을 기획함. 또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꾸준히 추가되는 인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소책자를 제작함.
- (vii) 연방 정부 협력사무소(Office of Federal Programs): 회계 년도 별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권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을 관할하며, 연방 주택 도시개발부(HUD)와 연방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EOC)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함.

#### (4) 주요 권한 및 구체적 업무 활동

인권부는 뉴욕 주 내 모든 개인이 경제적, 문화적, 인격적 삶에 전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위법적 차별 관행을 적극적으로 제소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 수사 및 해결하고 있음. 또한 차별 관행의 영향과 법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뉴욕주 내 인권 정책 및 법안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역할도 담당함.

##### (i)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원 제기

- (i-1) 뉴욕주 인권부는 인종, 종교적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 정체성, 군 복무 상태, 성별, 나이, 혼인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유전적 요인, 유죄 판결 기록 혹은 체포 기록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보호

---

3290) 올버니(Albany), 빙햄튼(Binghamton), 브루클린(Brooklyn), 버팔로(Buffalo), 롱아일랜드-나소(Long Island-Nassau), 롱아일랜드-서포크(Long-Island-Suffolk), 맨하탄-로워(Manhattan-Lower), 맨하탄-어퍼(Manhattan-Upper), 피스킬(Peekskill), 로체스터(Rochester), 시라큐즈(Syracuse) 에 뉴욕 주 인권부 지역사무소가 있다.

를 받지 못한 경우 민원 신청서(Complaint Form)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뉴욕주 인권법 §297).

- (i-2) 뉴욕 주 인권부의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받아볼 수도 있음. 또한 뉴욕 주 인권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음. 양식을 작성한 후 친필로 서명하고 공증을 거쳐 가까운 인권부 지역 사무소로 우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법적 절차를 위하여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도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불법적 혹은 부당한 차별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민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함.
- (i-3) 신청서에는 a. 본인에게 차별 행위를 한 사람들의 이름, 직위, 주소 및 전화번호, b. 차별 행위에 대한 증빙 문서의 사본, c. 신청서에 기입된 차별 행위(들)를 목격한 증인의 이름 및 주소(가능한 경우에만 제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i-4)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해당 지역 사무소는 해당 피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 1부를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EEOC) 또는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제출할 의무를 가짐(관련 사안인 경우에만 해당함). 이후 뉴욕 주 인권부 해당 사무소는 서면 질의, 현장 조사, 조사 회의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차별행위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수사하고,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 및 피의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i-5)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법권 부재의 경우 해당 사안은 기각되고,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뉴욕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음.
- (i-6) 차별 행위 분쟁 해결이 공개 청문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뉴욕주 인권부의 변호사 또는 인권부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해 해당 사건을 제기하거나, 신청인이 외부 고문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 청문회가 요청된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공지서가 발행되며, 청문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함. 뉴욕 주의 행정법 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가 청문회를 주재하고, 권장 명령 (Recommended Order)을 작성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에게 송부함.

#### 다) 미네소타 인권국 (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Rights)

##### (1) 설립배경 및 설립연도

- (i) 미네소타 인권국은 1967년 미네소타 주의 인권법(The Minnesota Human Rights Act, 1967)<sup>3291</sup>에 기반하여 설립되었고, 미네소타 주 내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3292</sup>
- (ii) 1967년 최초의 인권국 사무소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주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며, 미네소타 주의 인권법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책무를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iii) 미네소타 주 인권국은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엄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주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민족, 종교, 출신 국가, 성별, 결혼 여부, 장애 여부, 나이, 성적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iv)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네소타 주 인권국은 접수 받았던 민원 신청 중에서 1,800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였음. 이와 비교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400개 이상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또한 2010년까지는 각 사건별 조사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20일 정도였으나, 이후부터 2015년까지 각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66일로 줄어들었음<sup>3293</sup>).

3291) 미네소타 주 인권법은 1967년 ‘미네소타 주 차별 방지법(The Minnesota State Act Against Discrimination)’으로 제정되었으나, 1973년 ‘인권법(The Minnesota Human Rights Act)’으로 개정되었음. “미네소타 주 인권국 보고서” [http://mn.gov/mdhr/assets/MDHRBienniumReport2011-2012\\_tcm1061-229714.pdf](http://mn.gov/mdhr/assets/MDHRBienniumReport2011-2012_tcm1061-229714.pdf) (검색일: 2016. 8.10)

3292) 미네소타 주 인권국 홈페이지 <http://mn.gov/mdhr/> (검색일: 2016.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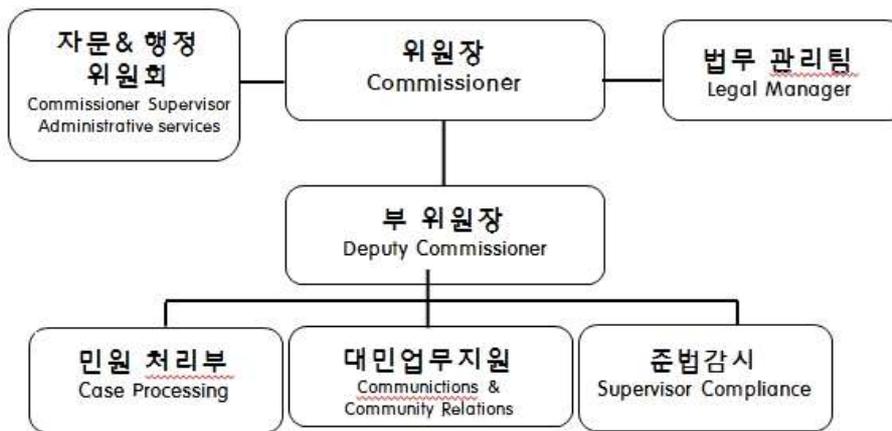
3293) 미네소타 주 인권국 홈페이지 <http://mn.gov/mdhr/about/history.jsp> (검색일: 2016.8.10)

(2) 설립근거(근거법 및 상위법)

- (i) 미네소타 인권국은 미네소타 주의 인권법 집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미네소타 인권법은 주 내에서 벌어지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미네소타 주의 모든 시민들은 인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결혼 여부, 가족 구성, 신체적 장애, 나이, 성적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ii) 미네소타 인권법(Minnesota Human Rights Acts)은 미네소타 인권국의 설립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3) 인권 담당기관의 구성 및 조직도

- (i) 미네소타 주의 인권국 위원장은 미네소타 주 전반의 인권법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주지사에 의해 임명됨. 2016년 현재, 위원장은 2011년 임명된 Kevin Lindsey이며, 부 위원장은 Rowzat Shipchandler가 맡고 있음.



[미국-그림 77] 미네소타 인권국 조직도

(4) 주요 권한 및 구체적 업무 활동

- (i)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i -1) 미네소타 주의 인권국은 인권 교육을 위하여 미네소타 대학의 인권센터에 미네소타 주 내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을 요청함. 이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미국 최초의 주 정부와 대학 간 제휴프로그램이었음.
- ( i -2) 이 제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이것이 나의 집 (This is My Home: A Minnesota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이라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가정 그리고 미네소타 주 인권 위원회 및 지역 사회 내 인권과 관련한 지도자들이 인권의 교육을 1차 교육기관인 학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 i -3) 인권국은 체계화 된 인권 교육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커리큘럼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훈련 및 전문적 개발 지원을 주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하였음.
- ( i -4) 인권국은 쉽게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와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미국 내 다른 지역의 교육가들도 미네소타 주 인권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권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TV방송사들을 활용하여 이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DVD를 제작하였고, 이 다큐멘터리 DVD를 통하여 인권 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경상남도 교육청, 2013).
- (ii)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민원 접수를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원 접수가 가능한 시기는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1년임. 따라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증거를 확보한 목격자는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하여 미네소타 주 인권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함. 민원이 접수 되면 인권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행함.<sup>3294)</sup>

---

3294) 미네소타 주 인권국 홈페이지 [http://mn.gov/mdhr/intake/process\\_longdesc.html](http://mn.gov/mdhr/intake/process_longdesc.html)  
(검색일: 2016. 6. 8)

##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기구 및 법제

### 1) 차별

#### 가) 민권 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 (i) 법적 근거: 1957년 설립된 연방 민권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단으로 구성되었음. 1964년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Law)이 제정된 이후 의회는 연방 민권위원회가 존속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법률을 개정하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따라서 위원회는 연방 민권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민권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장애, 국적에 의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연방기관임.
- (ii) 구성: 연방 민권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 8명으로, 4명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며 4명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됨. 현재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위원장은 Martin R. Castro, Patricia Timmons-Goodson, Karen K. Narasaki, Roberta Achtenberg이며,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장은 Gail Heriot, Michael Yaki, David Kladney, Peter N. Kirasnow임. 연방 민권 위원회는 본부 외에 6개의 지역 사무소(Central Regional Office, Eastern Regional Office, Midwestern Regional Office, Rocky Mountain Regional office, Southern Regional Office, Western Regional Office)를 보유하고 있음<sup>3295</sup>).
- (iii) 역할: 위원회는 민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 정책 개선을 위하여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미연방을 여러 개의 지역 관할구로 나누어 지역구 위원단을 두고 활동하며, 매년 지역구 위원회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취합하는데 법적 권한이 부재하므로 민권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평가되고 있음.<sup>3296</sup>

3295) 연방 민권 위원회 홈페이지 [www.usccr.gov](http://www.usccr.gov) (검색일: 2016. 8. 9)

3296) 연방 민권위원회 홈페이지 [www.usccr.gov](http://www.usccr.gov) (검색일: 2016. 6. 6)

## 나) 연방 법무부 민권국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 (i) 법적근거: 법무부 민권국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민권법이며, 이외에도 평등 선거법, 평등 고용법, 장애인 법이 있음. 민권국은 1957년 민권법의 발효 직후 설립되었으며, 미국 연방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헌법 상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ii) 구성: 민권국은 Vanita Gupta 위원장 하에 총 11개 부서(주거 및 시민권 강화, 범죄 담당, 이민자들의 불공정한 고용 관행 자문, 장애인 권익, 균등 교육 기회, 정책 및 전략수립, 고용 관련 소송, 특별 소송, 항소, 연방 협조, 투표권 담당)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들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활동함<sup>3297</sup>.
- (iii) 역할: 법무부 민권국은 법무차관 급 소속기관으로서 미국 내 모든 정부 관서나 민간 개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민권법 전반의 집행을 감독하고 조사하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연방 법원에 고발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 외에 연방 기금을 활용하는 교육 기회, 고용, 신용, 주택, 공공시설 이용 등의 차별 금지를 관장하고 있음.

## 2) 고용

### 가)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 (i) 법적근거: 미국의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는 개인의 인종, 성별(임신 유무, 성 정체성 포함), 종교, 나이, 장애와 같은 이유로 취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 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독립 연방 기구임. 위원회는 1964년에 제정되고 1965년 7월 2일에 발효된 시민권 법 제 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음.<sup>3298</sup>

3297) 연방 법무부 민권국 홈페이지 <http://www.justice.gov/crt> (검색일: 2016.8.11)

3298) 미국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의 법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민권법 1964, 제VII장, 42 U.S.C. § 2000e: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별을 근거로 행해지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률은 또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용 차별에 대한 조사나 소송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 (ii) 구성: 위원회는 대통령이 초당파적으로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장은 행정과 고용 차별 조사를 하는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위원장은 고용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며 전국 주요 지역별 지부를 두고 직접 고용 차별 사례를 접수하여 조사하는 인력도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각 주 정부와 지방 인권 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고용 차별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iii) 역할: 고용 차별과 관련한 법률 해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부문의 고용 차별 진정사건을 맡아 청문회를 실시하거나 모니터링을 실시함.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 차별법 집행을 기반으로 공정한 고용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후원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내에는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는 법무 자문 위원회(General Counsel)이 존재하여 위원장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며,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행하였을 때 이들을 연방 법원에 고발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나) 연방 노동부 산하 인권센터(The Civil Rights Center)

- (i) 법적근거 및 구성: 노동부(The U.S. Department of Labor)는 산하에 있는 인권센터로, 1964년 민권법, 1973년 재활법, 1975년 연령차별 금지법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센터에서는 고객이나 구직자, 면접 응시자, 종업원, 일반 대중이 인종·출신국가·종교·신체적 장애 여부·정치 성향 또는 신념·성별 및 연령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시민권 혹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

미국 장애인법(ADA) 제I장: 민간 영역 그리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장애가 있는 적격한 사람에 대한 차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률은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을 고발하거나 고용 차별에 대한 조사나 소송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률은 또한 사업 운영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주들이 장애가 있는 적격한 지원자나 직원의 알려진 신체 또는 정신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재활법 1973, 501조 및 505조: 미국 장애인법(ADA)의 제I장과 동일한 근거로 연방 정부에서 장애가 있는 적격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에 따른 차별행위,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등과 같은 특정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의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여부에 따른 차별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ii) 구성: 인권 센터의 센터장은 Naomi M. Barry-Perez이며, 센터장은 부서 내 예산 집행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함. 인권센터는 크게 세 개의 프로그램 사무소<sup>3299</sup>)를 운영하고 있음.
- (iii) 역할: 이 센터는 회사나 기업, 혹은 조직의 일부 및 전체 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차별 관행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 집행을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특정 업체나 조직, 회사에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차별 관행을 목격한 경우,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차별 관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진정서 제출도 가능함.

### 3) 주거

#### 가)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 (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 (i) 법적 근거: 개발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은 연방 민권법 (민권법 1968, 제 VIII장, 42 U.S.C. § 3601; 주택 및 지역 개발법 1974, 제I장, 109조, 42U.S.C.§5309)과 각 주별 인권법(Human Rights Act)임.
  - (i-1) 법률에 명시된 주택 차별의 근거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배경, 종교, 성별, 심신 장애, 가족 구성(자녀를 둔 가족), 성적선호 등이 있음. 이를 기반으로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할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

3299) 인권센터 내 프로그램 사무소는 크게 민원 접수 업무와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사무소 (Office of Internal Enforcement: OIE, 사무소장: Samuel Rhames, Jr.), 사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사무소(Office of External Enforcement: OEE, 사무소장: Denise Sudell), 준법감시 및 정책집행 담당 사무소(Office of Compliance and Policy: OCP, 사무소장: Roger ocampo) 등 세 가지로 분류됨. 미국 노동부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www.dol.gov/oasam/programs/crc/about-crc.htm> (검색일: 2016.8.10.)

특정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만을 보여주고 이사를 권유하는 경우, 동등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주택의 판매 혹은 임대 에 대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선호하는 그룹에 대해서만 주택 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 위법행위에 해당됨.

(i-2) 연방 공정 주거법은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하여 주거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주거 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 한 법임.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이 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ii) 구성: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 내 공정 주택 지원국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은 공정주택 보호법의 대상자인 극빈층, 노인, 심 신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 건설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임 대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주택 도시 개발부 산하에 있는 공정주택 및 평등 기회 사무소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는 주거의 차별을 철폐하고, 경제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 주택 정책과 법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3300)</sup>

(iii) 역할: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의 공정 주택국은 주택과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 입주 조건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사, 교육, 홍보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 주택 도시 개발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주 정부 이하의 인권기관이나 민간 인권 단체들의 조 사와 홍보 사업에 실적 보상을 지원하여 주택 차별 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또한 개발부는 전국 10대 지역 지부를 통하여 직접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 침해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주 정부 인권기관의 협조조 사 결과를 근거로 주택 차별 위법자들을 연방법원에 이관하여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3300) 연방주택도시개발부 홈페이지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 (검색일: 2016. 6. 6)

#### 4) 장애인 및 아동

##### 가) 국가 장애인 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 (i) 법적 근거: 이 위원회는 장애인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정책, 프로그램, 관례 등에 대하여 대통령과 하원 의원 및 기타 연방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임. 위원회는 1978년 교육부서 내에서 자문 위원회로 시작하였는데, 당시 연방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29 U.S.C. 780 et seq.)를 근거로 하였음. 1984년 독립적인 기구로 탈바꿈한 후 연방 차원의 장애인 프로그램 및 정책들을 모두 관장하게 되었음.
- (ii) 구성: 장애인 위원회는 Rebecca Cokley 최고 위원장 하에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과 규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을 조사하고 이것들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및 법률 팀’, 장애인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들이 의회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입법팀’, ‘회계 및 운영관리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iii) 역할: 1986년에 국가 장애인 위원회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제정을 촉구하였고 1988년에 이 법안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였음. 1990년 이 법률안이 발효된 이후 국가 장애인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음. 1997년 국가 장애인 위원회는 ‘기회의 평등: 미국 장애인법의 제정’이라는 주제로 출판물을 발간하였음. 미국 장애인 법은 모든 공공 서비스 및 통신, 교통시설 그리고 편의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음<sup>3301</sup>).

##### 나) 연방 노동부 산하 장애인 고용 정책실

######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

- (i) 법적 근거 및 구성: 2001년 설립된 장애인 고용 정책실은 대학을 졸업한 심신 장애인들이 취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

3301) 국가 장애인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cd.gov/> (검색일: 2016. 6. 1)

립된 노동부 산하 기관임. 장애인 고용 정책실은 장애인들이 노동 시장에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보장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 (ii) 역할: 전국적으로 감독하는 인력 수급 프로그램(Work Force Recruit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소속의 재활행정청과 함께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고용 우선(Employment First)’정책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 근로자가 비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였을 때, 직무지도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정책실은 장애인 근로자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을 증대시켜 통합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근본적인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sup>3302)</sup>

#### 다) 장애인 재활 행정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 (i) 법적 근거 및 구성: 장애인 재활 행정청은 연방 교육부 산하의 관리 기관으로 1973년 재활법(이후, 미국 장애인 법으로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재활서비스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음.
- (ii) 역할: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보조공학과 관련된 전문가가 각 장애인들이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고 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sup>3303)</sup>

#### 라) 연방 교육부 인권 사무소

##### (Office for Civil Rights, Department of Education)

- (i) 법적 근거: 교육부 인권사무소는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3302) 노동부 산하 장애인 고용정책실 홈페이지 <http://www.dol.gov/odep> (검색일: 2016. 6. 6)

3303) 교육부 산하 장애인 재활행정청 홈페이지 <http://rsa.ed.gov> (검색일: 2016. 6. 12)

수혜 기관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여부를 이유로 차별 받는 행위(괴롭힘, 성적 희롱 포함)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민권법 1964, 제 VI장, 42 U.S.C. § 2000d; 동등 교육 기회법 1974, 20 U.S.C. § 1701<sup>3304</sup>)을 집행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음.

(ii) 구성: 교육부 내에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차관보가 인권 사무소의 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Catherine E. Lhamon 차관보가 2013년부터 담당하고 있음. 교육부 내에서 인권과 관련한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권을 침해할 요인이 없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iii) 연방 교육부 산하 인권사무소는 민권법을 시행을 감독하여 전국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임. 또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민권 침해 문제점을 해결하여 교육환경을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서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현재 미국 교육부는 모든 공립학교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립 단과 대학 및 종합대학교, 그리고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 제도의 목표는 교육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민권법을 준수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데 있으며, 지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교육기관의 민권법 준수 계획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함. 특히 연방 정부 기금을 수령하는 교육기관에서 차별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처벌을 감행하고 있음.

---

3304) 민권법 및 동등교육기회법은 특히 주립 및 지역 교육 기관들이 학교 간에 또는 학교 내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고의적인 차별을 통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9/794> (검색일: 2016. 6. 12)

**마) 미국 법무부 산하 교육 기회 분과(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

- (i) 법적 근거 및 구성: 미국 법무부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장애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공립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시민권법(민권법 1964, 제 IV장, 42. U.S.C. § 2000c-6)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 기회 분과 설립으로 실행되었음.
- (ii) 역할: 연방 차원에서 교육 기회의 차별과 관련한 시민 민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나 연방 법 혹은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특수 민원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sup>3305)</sup>

**다. 미국 인권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1) 미국 인권시스템의 특징**

- (i) 이민 국가인 미국 연방에는 전 세계의 여러 인종이 모여 살고 있어서 분열과 충돌의 위협이 존재하며, 인종 간 뿐 아니라 지역 간 혹은 계층 간의 갈등 가능성 역시 존재함(장호순, 2016).
- (ii) 따라서 미국의 연방 법은 매우 광범위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음. 인종, 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관행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흑인의 취업률은 백인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인권 분야에서는 해결할 문제점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음.
- (iii) 또한 미국 정부는 인권의 문제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해 왔음.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국내적 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시도가 뒤늦게 시작되었음.
- (iv) 이러한 이유로 인권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나 공식적인 관리 감독 기구에 대한 구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Ellen Chesler and Terry McGovern, 2016).
- (v)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EEOC)를 포함한 미국 연방의 인권 기구들은 준사법 기능이나 시정명령권을 갖추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미국 내

---

3305)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www.justice.gov/crt/about/edu](http://www.justice.gov/crt/about/edu) (검색일: 2016. 6. 16)

인권 침해 구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그 효과성이 제한적임(한국여성개발원, 2004). 따라서 비소송적 분쟁해결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사법적 구제방식의 대안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이나 중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문강분, 2014).

- (vi) 미국 연방 정부 중에서 국제 사회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 체계를 갖춘 부서는 국무부임. 미국 연방 국무부는 법률에 따라 매년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상세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작성되는 <국가 인권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보고서에서 규정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들을 기술한 <인권·민주주의 지원 활동> 보고서가 있음. 또한 연방 정부는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핵심 공통 문서(common core document)를 통하여 미국 연방의 기본적 정치체제 및 인권 보호 체제, 차별에 대한 보장 방안 등을 서술하였음.

## 2) 미국 인권시스템의 쟁점

- (i)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연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됨.
- (ii) 연방 정부의 각 부처들은 담당하는 영역과 관련한 인권 정책들을 각 주별 인권법 뿐 아니라 연방 민권법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남. 그러나 미국 연방의 각 주들은 각각의 제도와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iii) 각 주별로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나 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주 내의 인권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방 행정부 산하 기관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구제에 있어서 연방 차원에서 다루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함.
- (iv) 미국의 인권 시스템은 기본권 보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발전해왔고, 이는

수정헌법 제 14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분쟁 문제도 대두되었음.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경제, 문화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행위 등에 대한 대응 확대가 불가피해졌음(이재희, 2016)<sup>3306</sup>).

- (v)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의 인권 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음. 이것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국가 인권 기구의 설립이나 미국 내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논의로 이어짐.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연방 정부 내 인권 기구 및 개별 주의 인권 위원회들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 보호 활동 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HRI/CORE/USA/2011, 2011).

## 2. 중국

중국 국가 정보 <sup>3307)</sup>	
면적	9,600,000 km <sup>2</sup>
인구	약 13억 6,782만 명 (2015년 기준)
수도	베이징
정치형태	인민 민주주의 사회주의
주요언어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주요민족	한인(91.5%), 소수민족(8.5%)
GDP	10조 9,828억불 (2016년 기준)
	1인당 GDP : 7,989불 (2016년 기준)

###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 정치체계와 법체계 등 인권시스템과 관련한 국가 기본 정제

- (1) 중국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하에 통치되는 사회주의 국가로 당이 행정부,

3306) 이재희, “미국 헌법의 평등보장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 헌법예의 시사점,” 『저스티스』 Vol.6(2016), p. 69.

3307) [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804/1\\_22623.jsp?menu=m\\_40\\_10\\_20](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804/1_22623.jsp?menu=m_40_10_20) (검색일 2016.6.26)

군, 사회조직 등 전반을 관할하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임. 집권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지도는 ①군대 ②정부 및 국가기관, ③정치협상회의.민주당과 ④노동조합.공사주의청년단.부인연합회 등 네가지 분야에서 행해지고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 동서남북에서 당은 모든 것을 지도한다”고 명기됨<sup>3308</sup>.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이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차원에서 보장. 공산당 일당체제 아래에서 당과 국가(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설정은 당의 영도하에 통합되는 당정분업, 융합의 방향이 견지되고 있음

- (2) <중국인권백서><sup>3309</sup> 또한 전문에서 인권정책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인권정책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건설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견지. 인권백서 전문은 “인권발전이 절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가치관 건설과 전인민의 인권의식 존중과 보장을 제고하는 것은 상보적으로 완성된다”고 주장.<sup>3310</sup>
- (3) 중국은 헌법이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4년에 개정된 중국헌법이 제2장의 “국민기본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인권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강조.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가 국가최고권력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대표권과 입법권을 통해 인권정책 수립의 주요 역할기관으로 강조. 그러나, 헌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고의 법적지위와 권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확고한 ‘중국공산당 영도’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 (4) 중국 전인대(의회), 국무원(행정부), 정치협상회의<sup>3311</sup>, 법원, 인민해방군

3308) 中國共產黨党内法規制度手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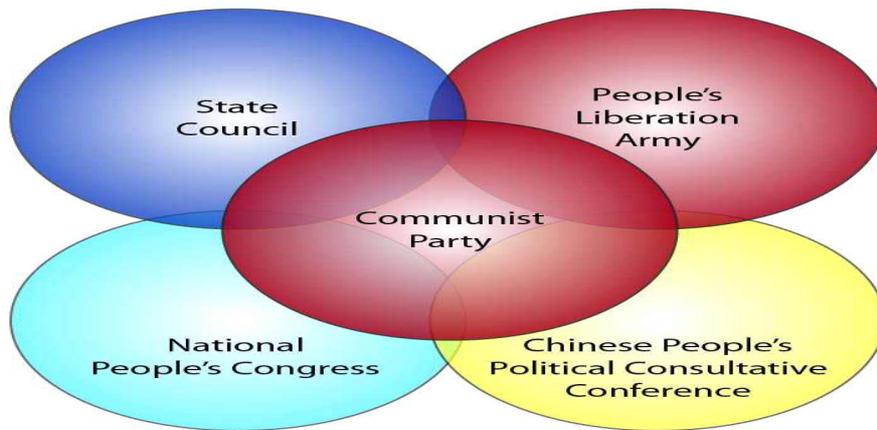
3309) 중국인권백서는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권비판과 압박에 대한 적극적 대응차원에서 정부가 중국의 인권정책발전과 인권향상노력을 종합하여 대외에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991년 <중국의인권상황 백서(“中國的人權狀況”白皮書)>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 <중국인권사업의진전 백서(“中國人權事業的進”白皮書)>라는 제목으로 2014년까지 총 11차례 발간.

3310)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4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 白皮書

3311) 중국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CPPCC -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는 중국공산당과 8개의 민주당과 각계 대표등이 참여하여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과 지도가 체계화됨. 공산당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있는 당그룹(黨組), 대구부(大口部), 간부 등에 의해 이뤄짐. 중국에서는 국가와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거의 없음. 정부, 법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도 공산당 영도와 영향력의 범위 안에 존재함. 특히 시민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체설립 승인이 더욱 엄격화되고 있어 실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활동에 제약. 중국에서 대표적인 전국적 시민사회단체를 표방하는 중화전국노동자총연맹(中華全國總工會), 중화전국부녀자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 등이 모두 공산당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공산당 영도’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비정부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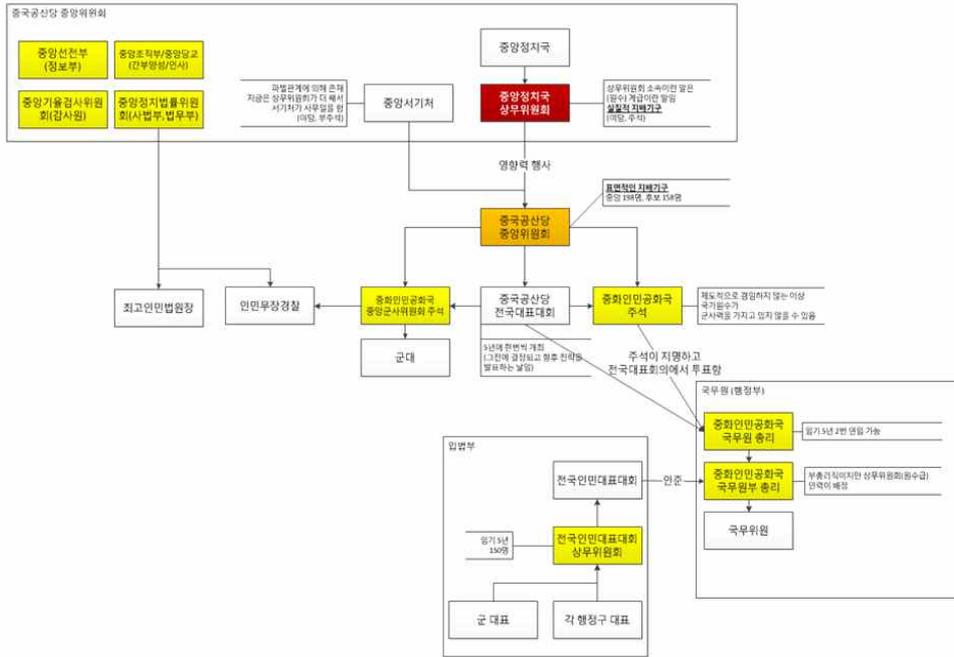
- (5) 아래는 중국 정치권력체계를 개괄하는 그림으로 각 정치영역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와 영향력이 명확히 보여짐.



Susan V. Lawrence and Michael F. Martin. 2013. "Understanding China's Political Syste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Report. March 20, p.3

[중국-그림 78] 중국의 정치제도 : 공산당이 중국 정치체계를 지배함

1949년 성립. 중국이 1954년 최초헌법을 제정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 명시할 때까지 헌법제정 등을 담당한 과도적 최고권력기관이었음. 이후 민주당파와 지식인, 각계대표 등이 참여하여 정치협상과 정책토론을 담당하는 조직. 매해 3월 전인대와 함께 개최되며 중국공산당의 사회민주주의, 협상민주주의를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핵심적인 조직으로 역할.



[중국-그림 79] 중국 정치체계의 세부 구조도

(6) 중국은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정치개혁의 핵심방침으로 결정하면서, 법치를 강조하고 법제도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990년대초 일시적으로 제기되었던 ‘당정분리’방침이 폐기되고 ‘당정결합’의 원칙이 확고해짐에 따라 실제 공산당의 지도와 지침으로부터 독립된 정부기관의 존재 기반 취약.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제의 현행통치체제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한 것으로, 실제 독립된 인권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일정한 자율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당의 영향력, 당이 침투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율성을 얻기는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존재

(7) 중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정부, 의회 등이 인사권, 재정권, 재판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면서 사법독립의 심각한 침해가 존재하였음. 법원 원장.부원장은 공산당 조직부가 사전에 검토하고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인대에 추천하고, 법원의 예산은 70-80%가 지방정부로부터 충당되면

서 인사권과 재정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을 판결할 때에는 동급의 공산당 정법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거나, 고위당정간부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은 동급의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가 조사하고 판결내용도 결정. 법원은 판결면에서도 지방공산당에 종속되어 왔음<sup>3312)</sup>

중국은 1997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 방침을 확정한 이래, 사법공정을 목표로 한 법제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법원의 독립은 법원 개혁의 공식목표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됨. 사법독립이 제외된 것은 공산당의 도덕성과 권위에 치명적인 중대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독자적 판결을 경계하는 공산당의 반대에 기인. 또한 대형재해, 식품피해, 환경오염,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집단소송이 법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결된다면 공산당과 정부는 이에 막대한 비용 지불해야 하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과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할 경우 법원은 공산당과 정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공산당은 사법독립 허용하기 어려움.<sup>3313)</sup>

- (8) 이렇듯 당이 곧 국가인 ‘당국가체제’ 공산당 영도원칙’에 기반한 중국에서 파리원칙에 입각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상당한 기간 출현하기 어려움. “삼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국가인권기구”라는 ‘파리원칙’은 ‘당정통합’과 ‘공산당 영도 원칙’의 근간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중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중국에서 칭하는 ‘인권사업(人權事業)’은 발전권과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사회보장적 문화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정치개혁의 목표로 삼고 사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심판, 투명성 강화, 행정심판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인권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sup>3314)</sup>

3312) 조영남,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 창비) 참조.

3313) 조영남(2012)

3314)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4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 白皮書, “四. 公正審判權”, p. 5

## 2) 인권 담당기관 및 조직

### 가) 개요

- (1) 중국은 ‘파리원칙’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가 부재하며 인권관련 업무를 국회와 공산당, 교육부 종교부 등 정부기관, 중국인권연구회 등 연구기관 등이 역할을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는 현재 소수 학자들의 학술적 검토에서만 존재할 뿐 정부차원의 검토나 논의 부재
- (2) 중국이 인권담당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정부, 비정부기관은 아래와 같음

<중국 인권보장 관련 정부조직>3315)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정치협상제도, 정협  
(中國共產黨領導的多黨合作和政治協商制度及人民政協)  
인민법원(人民法院)  
인민감찰원(人民檢察院)  
공안기관(公安機關)  
사법부(司法部)  
노동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  
국무원빈부개발연구소(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辦公室)  
교육부(教育部)  
문화부(文化部)  
민정부(民政部)  
국가계획생육위원회(國家計劃生育委員會)  
국무원부녀아동공작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전국노인위원회(全國老齡工作委員會)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국가종교사무국(國家宗教事務局)

3315) 주LA 중국총영사관 홈페이지, “中國的人權組織” 소개  
<http://losangeles.china-consulate.org/chn/topics/zgrq/t56533.htm>

<중국 인권보장 관련 비정부조직>

- 중화전국노동자총연맹(中華全國總工會)
- 중화전국부녀자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
- 중국장애인연합회(中國殘疾人聯合會)
- 중화전국변호사협회(中華全國律師協會)
- 중화전국신문기자협회(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 중화전국화교연합회(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

<중국 인권보장 관련 연구조직>

- 중국인권연구회(中國人權研究會)
- 중국인권발전기금회(中國人權發展基金會)
- 북경대학인권연구센터(北京大學人權研究中心)
- 중국인민대학인권연구센터(中國人民大學人權研究中心)
- 중앙당교인권연구센터(中央黨校人權研究中心)
- 산둥대학인권연구센터(山東大學人權研究中心)
- 무한대학사회약자권력보호센터(武漢大學社會弱者權力保護中心)

(3) 중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1989년 천안문사건이후 국제사회의 대 중국 비판과 압박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본격화됨. 그러나 중국이 인권문제를 활발히 다루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인권요구와 기준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권보호 조치를 진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서구와 다른 독특하고 우월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와 홍보작업에 주력. 중국의 인권담당 정부기관과 비정부단체들은 상당부분 <중국 고유의 인권> <중국인권의 발전상황>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역할에 비중.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기구인 중국인권연구회(中國人權研究會)는 1993년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권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의 인권을 독립적으로 연구 교육하기 위해 설립됨

## 나) 인권업무 관련 정부조직

독립적인 인권기관이 없는 중국에서는 입법을 담당하는 전인대(국회), 지역과 단체, 지식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협, 법원, 감찰원(부정부패 등 감사), 노동부 등 각 정부기관들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중국인권백서’는 이러한 각 기관들의 활동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하여 중국정부의 인권수호 노력과 인권발전 현황으로 발표. 1990년대 초 중국의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롭게 설립되거나 별도의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을 위주로 정리함

### (1) 민정부(民政府)

- (가) 구성: 민정부는 국무원 산하조직으로 민간조직관리국을 두고 각종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설립허가, 인권단체의 관리, 해외 인권단체나 인권조직의 방문을 응대하는 등 인권관련 행정업무를 담당.
- (나) 역할: 2015년 EU의 인권사부 특별대표의 방중시 민정부 민간조직관리국장(민정부의 당조위원)이 면담하는 등 정부조직내에서 인권관련 업무의 주요 기관으로 역할

### (2)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약칭 國務院新聞辦)

- (가) 구성 : 국무원신문판공실(약칭 국무원신문반)은 천안문사건이후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권비판과 압박이 전개되던 시기에 대내외 소통과 언론담당 조직으로 1991년 구성.
- (나) 역할 : 주요 임무는 국제사회에 중국의 국내외정책과 경제사회발전상황, 중국의 역사와 중국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발전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을 설명하는 것<sup>3316)</sup>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은 정례적으로 <중국인권 관련 백서>를 발표하여, 분야별 인권 발전상황을 소개하고 중국 인권에 대한 세계의 비판에 적극적 대응
- (다) 조직 구성 : 주임(1) 장젠궈(蔣建國). 중앙선전부부부장, 중국공산당 중

3316)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 홈페이지 <http://www.scio.gov.cn/xwbjs/index.htm>

양위원회위원/ 부주임(2) 추이위잉(崔玉英).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등

### (3) 국무원여성아동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가) 구성: 국무원여성아동위원회는 중국 최고행정기구인 국무원 산하 위원회로 1990년 설립. 유관정부부처들의 부장급으로 구성되며 국무원이 총괄. 참여 조직이 초기 19개에서 현재 35개로 증대됨. 국무원여성아동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설치. 일상업무를 담당하고 전임인력과 국가예산을 배정받음. 전국 31개 省(區, 市) 현 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모두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립함. 참여조직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농업부, 국가위생계획출산위 등 29개 기관과 전국노동자총연합회(全國總工會), 공산당청년단체중앙(共青團中央), 전국부녀연합회(全國婦聯), 중국장애인연합회(中國殘聯), 중국과학협회(中國科協), 중국미래세대사업위원회(中國關心下一代工作委員會)<sup>3317)</sup> 등 6개 단체

(나) 역할: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여성아동정책 관련 부처간협력, 지도, 감독을 담당.<sup>3318)</sup> 국무원과 지방 각급정부는 정기적으로 여성아동대책회의를 개최. 여성권익발전 관련 정책 제안. 성별관련 통계를 종합하여, <여성발전종합통계> 발표. 1990년, 2000년, 2010년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 실시, 중국여성사회지위의 상황과 변화 전면조사를 통해 정부가 여성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성별평등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를 제공함. 1995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2년 <중국사회속의 남녀-사실과 통계>를 출판. 2008년부터 매해 <중국여성아동 상황통계자료>를 출판

3317) 중국미래세대사업위원회(中國關心下一代工作委員會, 약칭 中國關工委)는 1990년에 성립, 노년세대를 조직하여 차세대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목표로 설립, 현재 1250만 명 회원의 전국단체임.

3318)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중국남녀평등과여성발전백서(中國性別平等與婦女發展 白皮書)> (2015) 출처: 중국인권연구회 [http://www.humanrights.cn/html/2015/4\\_0922/9644.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5/4_0922/9644.html)

#### (4) 국무원장애인위원회(國務院殘疾人工作委員會)

- (가) 구성: 국무원장애인위원회는 국무원 산하 기구로 왕용(王勇) 국무위원이 위원장, 옌징화(閻京華) 국무원 당위원, 장하이디(張海迪) 중국장애인연합회 주석, 리우리민(劉利民) 교육부부부장, 도우위페이(竇玉沛) 민정부부부장 등 7명이 부위원장을 담당. 중국공산당선전부부부장, 외교부부부장, 과기부 부부장 등 28명이 참여
- (나) 역할: 장애인관련 업무의 유관기관 협력과 정책, 법규, 규칙의 제정과 실천업무 담당. 장애인업무 관련 문제들을 총괄하고 UN의 장애인관련 기구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 (5) 전국노인위원회(全國老齡工作委員會)3319)

- (가) 구성: 전국노인위원회는 국무원의 주관하에 조직된 것으로, 1999년 설립. 노인위원회는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상무부, 국가신문출판총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 전국총공회, 공청단중앙, 전국부런, 중국노령협회 등 32개 단위의 기관이 참여하여 구성됨.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은 왕용(王勇) 국무위원. 부위원장 겸 위원회 사무처장은 리리구어(李立國) 민정부장관이 겸임
- (나) 역할: 노인정책 연구와 실행, 노인인권 보장 촉진위한 관련기관 협력, 노인건강을 위한 각종활동 촉진, 각성과 자치구.직할시의 노인사업 지도와 감독, 노인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등

#### (6)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3320)

- (가) 구성: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무원 산하 조직으로 1949년 설립된 국무원산하조직. 위원회는 150여명의 상근인원이 존재하며 정책연구실 등 15개 실국으로 구성
- (나) 역할: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집행하고, 민족이론을 연구하고, 민족사업과 교육을 전개하는 기관.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3319) 全國老齡工作委員會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cncaprc.gov.cn>

3320) 國家民族事務委員會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ac.gov.cn/>

## 역할

### 나) 인권관련 비정부조직

#### (1) 중국 비정부조직의 의미와 역할

(가) 중국비정부조직의 특징: 중국은 1990년대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해 비정부기구 조직과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인권문제 접근. 따라서, 중국인권연구 및 홍보의 역할이 비정부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나 인권연구회 등 관련 비정부단체는 실질적으로 '정부,당이 조직한 비정부기관'(GONGOs, government-organize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이러한 정부조직비정부기구들은 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수행. 포럼개최, 연구보고서 작성, 전국 홍보와 조직화 등 역할함.

(나) 중국 비정부조직의 역할과 규모 : 중국정부는 비정부조직을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와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방어와 홍보에 활용. 2008년말까지 중국은 중국민간단체국제교류활동촉진회(中國民間組織國際交流促進會)를 통해 국내 인권단체들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 중국인권연구회,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국장애인연합회, UN협회(聯合國協會) 등 25개 단체는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 보유. 2009년까지 중국에 법적으로 등재된 비정부조직은 43만1천개로 1988년에 비해 96배 성장. 빈부격차, 위생, 교육, 환경 등에서 활약하며 중국 정치경제 문화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2) 당주도의 비정부조직

(가) 중국공산당은 기층사회 관리와 침투 위해 '비정부기관' 조직 운영 주도. 서구학자들은 이를 GONGOs(government-organized non-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함. 이 조직들은 당과 정부 당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정부 지도에 매우 순응적.

(나) 이러한 당주도의 비정부조직은 중화전국노동자총연맹(中華全國總工會), 중화전국부녀자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 등은 당초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설립된 전국적 비정부기관으로 노동자권익, 부녀자권익 보호와 정책수립의 역할을 담당

(다) 중국장애인연합회(中國殘疾人聯合會) 등은 국무원의 비준하에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국무원장애인위원회와 협업하며 장애인정책과 권익 보호활동, 그리고 정부가 위탁한 관련 행정기능을 담당함

### (3) 중국인권연구회(中國人權研究會)

(가) 중국인권연구회(中國人權研究會,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는 중국이 천안문사건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설립된 기구로 현재 홈페이지 중국인권망(中國人權網, www.humanright.cn)을 통해 중국인권문제를 연구하고 종합하는 핵심조직.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UN비정부단체대회(CONGO)의 회원단체. 중국인권연구회는 중국인권연구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국적 학술단체로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자, 실천가와 유관인사가 연합하여 만든 전국적인 민간학술단체를 표방

(나) 국무원신문관공실(國務院新聞辦公室)과 사회등기관리기관민정부(社團登記管理機關民政部)의 활동지도와 감독을 받음.<sup>3321)</sup> 이러한 정관의 내용은 본 연구회가 민간단체를 표방하나 실제 정부의 지도하에 설립 관리되는 준정부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다) 중국인권연구회 역할은 인권이론, 역사와 현황, 인권지식의 보급과 홍보,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을 촉

3321) 『中國人權網』, “中國人權研究會章程”(2007.5.10.)

[http://www.humanrights.cn/html/2014/1\\_0612/611.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4/1_0612/611.html) (2016.6.9. 검색)

진하는 역할. 회원들을 조직하여 인권연구를 전개하고 인권자료를 취합하며 인권관련 간행물을 발간. 인권문제 관련 학술연구회, 토론회와 좌담회를 개최하고 인권지식배양과 인권문제의 선전과 교육활동을 전개. 국내국제인권사업을 관찰하고 인권문제와 관련된 조사연구와 분석을 추진하여 중국인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 해외유관기관과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 교류협력을 전개하며 UN 인권분야의 활동과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

※ 중국연구회의 주요활동

- (i) 1998년부터 홈페이지 <중국인권망(中國人權網)>을 개설
- (ii) 정기간행물 발간 : 2002년 2월부터 『人權』 잡지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중국인권행동(中國人權在行動)』이라는 인권정기보고를 발간하고 부정기적으로 『중국인권연감(中國人權年鑒)』 발간.
- (iii) 출판 : 인권관련 학술회의와 출판 등을 적극 전개하여 『인권과 주권(論人權與主權)』, 『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中國人權事業發展報告)』 등 수십권의 인권책 출판. 『인권백과전서(人權百科全書)』 등 다수의 해외책 번역출판
- (iv) 교육 및 사업 : 『중국인권박람회 (中國人權展)』 개최. 중앙인민방송국과 공동으로 『인권대화(話說人權)』 등 강좌를 진행하고, 인민일보와 『인권지식백제문답(人權知識百題問答)』 특별란을 개설하는 등 중국인권지식의 보급과 교육사업 실행. 인민일보 해외판에는 『중국인권상황(中國人權面觀)』 특별란을 보도하고 있으며 『인권지식간부독본(人權知識幹部讀本)』 등 교재를 출판. 『인권전문연구반』을 개설하여 각급 정부관료와 법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전개.
- (v) 국제교류활동 : 6차례의 <북경인권논단>과 3차례의 대규모 <국제인권학술회의> 개최. UN은 물론 국제인권분야의 인권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면서 미국 등 20여개국가와 지역을 방문하여 UN인권고문을 접견하고 유럽의회 등 인권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을 방문

(라) 중국인권연구회 조직 및 운영

- (i) 전국이사회 (全國理事會) : 연구회의 최고권력기구로, 회기는 5년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회기를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음. 전국이사회 정원은 166명임. 전국이사회의 역할은 △본 연구회 정강 심의통과 및 수정 △상무위원회 선출 △회장과 부회장, 비서장의 선출 △활동계획과 활동보고의 심의 통과 △ 기타 중대한 사항의 결정. 전국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제는 과반이상의 찬성표결로 통과됨. 원칙상 매년 1회 회의 개최, 특수한 상황에서 회의 소집가능.
- (ii) 상무이사회: 상무이사회는 전국이사회를 통해 선출되며 5년 임기임. 상무위원회는 현재 57명으로 구성. 상무이사회의 역할은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 결정 △전국이사회 결정사항집행 △명예회장, 특별고문, 고문 등 명예직무 설립결정 △기타 관련사항의 토론과 결정. 상무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의 회의개최. 과반이상의 상무이사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상무이사 과반 표결로 통과됨.
- (iii) 본 연구회의 회장, 부회장, 비서장의 임기는 5년이며 한번 연임가능.
- (iv) 연구회 재정은 주로 중국인권발전기금회의 자금지원과 단체의 기증, 사회적 지원과 기타 합법적 수입으로 충당

(4) 대학내 인권연구센터

(가) 대학의 인권연구센터는 중국인권연구회의 지도하에 설립. 최초로 설립된 대학내 인권연구센터는 남개대로 2005년 4월 8일 설립됨.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과 인권연구회와의 교류협력에 기반하여 센터가 운영될

- (i) 남개대 인권연구센터 (南開大學人權研究中心)<sup>3322</sup> : 중국인권연구회와 남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중국인권연구회 부회장겸 비서장인

---

3322) 남개대 인권연구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humanrights.nankai.edu.cn/> (2016.6.10. 검색)

동원후(董云虎) 교수와 남개대 당서기 쉬에진원(薛進文) 교수가 공동으로 센터장을 맡음. 2011년 4월 교육부와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남개대 인권연구센터를 최초의 국가인권교육 및 훈련기지로 선정 비준함

- (ii) 중국정법대 인권연구원 (中國政法大學人權研究院)<sup>3323)</sup> : 중국정법대 인권연구원 또한 교육부와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인권교육과 훈련기지로 3대 국가인권교육 및 훈련기지로 설립한 연구원중 하나임. 본 연구원의 전신은 2002년 6월 설립된 ‘인권과 인도주의법 연구소(人權與人道主義法研究所)’이고 2011년 교육부와 국무원신문판공실의 결정에 따라 설립됨.<sup>3324)</sup>
- (iii) 광주대학인권연구및교육센터 (廣州大學人權研究與教育中心)<sup>3325)</sup> : 2004년 7월 성립되어 교육부의 중점학과기지와 사회과학창조기지의 형식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어 독자적인 조직과 고정사무실, 독자적 연구경비 보유. 주임과 부주임, 집행주임, 부주임, 10인의 연구원, 1인의 행정원으로 구성<sup>3326)</sup>

**(5) 중국 비정부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촉진회(中國民間組織國際交流促進會, 簡稱中促會/ China NGO Network for International Exchange)**

(가) 구성 : 2005년 10월 설립. 독립법인자격의 전국적 비영리사회단체. 평화군축, 사회발전, 과학교육, 문화예술, 의료위생, 생태환경, 민주인권, 민족종교, 정치사법, 기업공상, 공익자선, 빈부격차, 장애인과 여성청년지원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는 사회단체와 인사들로 구성. 현재 63개 단체가 이사이며, 그중 25개 유엔경제이사회 자문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음, 162인의 개인 이사가 존재하고 특별초청 이사 1인이 존재.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로,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기구임.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기간에 이사회 대신 역할함.

3323) 중국정법대 인권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http://web.cupl.edu.cn/ihr/>

3324) 『중국인권망』 [http://www.humanrights.cn/html/2014/zgzf\\_0611/461.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4/zgzf_0611/461.html)(2016.6.10. 검색)

3325) 광주대학 인권연구 및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portal.gzhu.edu.cn/web/26356/23/> (2016.6.10. 검색)

3326) 『중국인권망』 [http://www.humanrights.cn/html/2014/gz\\_0611/462.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4/gz_0611/462.html)

- (나) 역할 : 국제교류와 협력의 민간조직연합체로, 중국 민간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각국 국민들의 우호를 증진함

##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정책 및 법제

### 1) 개요

- (1) 중국은 인권보호를 위한 법규를 총괄하는 인권법이 부재하고, 헌법상의 인 권호보 규정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 중국의 <인권백서>에서 홍보하고 있는 인권발전 상황도 실제 행정적 조치 수준의 인권보호 조치가 주(主)를 이루고 종합적인 법 내용과 체계 부재
- (2) 중국은 발전권과 생존권을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홍보에 주력 하는 반면, 표현, 집회, 정치참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는 헌법 등 문헌과 현실의 괴리가 현격히 나타남. 2004년 헌법개정에서 생 존권과 발전권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권백서 등에서도 인민의 경제 적 사회적 생활보장과 향상을 인권향상의 핵심으로 홍보하고 있음

### 2) 중국 헌법과 인권

- (1) 중국정부는 중국의 인권정책과 관련 헌법에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 호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권의 법적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가)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건 국이후 1954년 9월 최초 헌법 제정. 이후 1975년, 1978년, 1982년 대대 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짐. 현행 헌법은 1982년 헌법을 근간으로 하 며,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등 4번의 부분 수정을 거쳐 확정된 것임<sup>3327)</sup> 1954년 9월 20일 최초 제정된 헌법에서 중국은 15개조의 기 본권 규정. 1975년 마오쩌둥 체제 하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대부분의 기본권조항 삭제. ‘제27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8조 언론, 통신, 출

3327) <中華人民共和國憲法> <http://www.lawtime.cn/faguizt/162.html>

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 파업의 자유 및 신앙종교의 자유' 만을 남김.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1978년 헌법에서 대부분의 기본권 복원. 2004년 헌법에서 기본권은 제2항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公民的基本權利和義務)>에서 규정하고 있음

(나) 기본권은 제33조에서 제50조까지 총 18개조로 구성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sup>3328)</sup>

- ▲33조: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 향유
- ▲34조: 중국의 만18세이상 국민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가정배경,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을 불분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단, 법률에 의거하여 정치권리가 박탈된 사람은 제외
- ▲35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
- ▲36조: 종교신앙의 자유
- ▲37조: 신변의 자유침범 불가. 불법적 구금이나 수사 불가
- ▲38조: 국민의 인격존중
- ▲39조: 주거침해 불가.
- ▲40조: 통신자유와 통신비밀보장.
- ▲41조: 비판과 건의의 자유.
- ▲42조: 노동권리와 의무
- ▲43조: 노동자의 휴식권리
- ▲44조: 노동자와 공무원 퇴직자의 사회보장
- ▲45조: 노령, 질병이나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국가와 사회가 지원  
상해군, 열사, 우수군인 가정에 대한 보장  
장애인의 노동과 생활 교육 보장
- ▲46조: 교육의 권리와 의미
- ▲47조: 과학연구, 문화예술 등 창작활동의 자유
- ▲48조: 여성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
- ▲49조: 혼인, 가정, 모자에 대한 보호
- ▲50조: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 보호

3) 분야별 인권

중국은 정례적으로 중국인권의 발전노력과 현황을 신문판공실의 발표를 통해 종합하고 있는 만큼 가장 최근의 인권백서인 <2014년 중국인권사업의 진전(2014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인권정책과 내용을 살펴봄<sup>3329)</sup>

3328) <中華人民共和國憲法> <http://www.lawtime.cn/faguizt/162.html>

(1) **발전권** : 2014년 중국정부는 국민의 공평한 발전기회 보장 차원에서 발전 이념과 제도의 혁신 적극 추진.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권의 향상 보장. 국무원은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을 수립. 재정부가 11억원의 자금을 배분하여 2개성과 14개시, 300개현을 중심으로 도시화 추진

(2) **자유권** : 중국은 국제인권규약의 양대 규약인 자유권규약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음. 1998년 10월 5일에 서명한 자유권 규약은 중국의 국내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포함. 생명권의 보호(사형제도), 고문의 금지,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 및 결사의 자유, 가정과 혼인의 자유 등은 비준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경우 중국의 사회시스템 기반 자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논점들과 관련되어 있음. 만약 자유권 규약을 비준할 경우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거나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항목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나 자유권 규약의 경우 사회권 규약과 달리 대부분의 항목이 중국의 내부상황과 충돌하므로 비준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 예상

(2-1) 선거권, 참정권 : 1953년 2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중국 최초의 선거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을 통과시켜 기층단위인 향, 진, 시관할구 등은 직접선거, 현급 이상은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선출. 1979년 제5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는 53년 선거법을 기초로 개정하여 직접선거의 범위를 현급으로 확대. 선거법은 19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회의, 1986년 제6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 1995년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2차회의를 통해 개정. 1987년 촌민위원회조직법(村民委員會組織法)이 제정되면서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선거방식을 통해서 선출하게 되었고 이어서 1988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10년뒤에 1998년 촌민위원회조직법이 정식으로 제정.

---

3329)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 <2014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 전문 참고  
<http://www.scio.gov.cn/zfbps/rqbps/Document/1437487/1437487.htm>

### (3) 여성아동 보호

(가) 중국의 여성권익발전 정책방향

- (i) 중국은 2015년 <중국성별평등과 여성발전> 관련 백서를 발간. 여성의 발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종합보고를 발표.<sup>3330</sup> 1990년 중국은 국무원 여성아동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설립.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협조, 지도, 감독을 담당케 함.
- (ii) 중국은 여성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주력. 빈곤여성의 발전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 추진. 2014년 최저생계보장을 받는 여성의 수가 792만명에서 1826만명으로 증가. “빈곤모친질병치료지원”“모친주거안정”“모친건강열차” 등 공익자선사업을 추진, 병에 걸린 빈곤여성과 독거여성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iii) 여성의 취업과 창업독려정책 추진.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는 소액담보대출정책 실시. 2011년 “지방백만장애인취업프로젝트(城鎮百萬殘疾人就業工程)” 실시 이후 매해 장애여성의 취업이 약 10만명씩 증가하고 있음. 2013년 전국여성취업인구는 34640만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45% 점유.<sup>3331</sup>

(나) 여성아동 권익관련 법제

- (i)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中華人民共和國就業促進法)>은 1장“공평취업”조항에서 남녀평등취업 권리를 강조.<sup>3332</sup>> 여성의 평등한 취업권리 보장. 정부는 법률규정을 정비하여 공평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의 성별차이 제거
- (ii) <중화인민공화국노동합동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合同法)>은 기업에 여성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명시. 여성근로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법률

333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중국남녀평등과여성발전백서(中國性別平等与婦女發展 白皮書)> (2015) 출처: 중국인권연구회 [http://www.humanrights.cn/html/2015/4\\_0922/9644.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5/4_0922/9644.html)

333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중국남녀평등과여성발전백서(中國性別平等与婦女發展 白皮書)> (2015)

333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중국남녀평등과여성발전백서(中國性別平等与婦女發展 白皮書)> (2015) 출처: 중국인권연구회 [http://www.humanrights.cn/html/2015/4\\_0922/9644.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5/4_0922/9644.html)

에 근거하여 보호됨.

- (iii) <여성노동자보호특별규정(女職工勞動保護特別規定)>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남녀기술인력의 퇴직연령을 동일화함. 여성과학기술인재의 육성과 여대생 공평취업 등을 일련의 법규와 정책, 조치들을 지원하여 여성취업과 직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중점. 전국에 20여만 개의 “여성학교(婦女學校)”설립, 2억명 가까운 여성들이 농업신기술, 신 품종훈련을 받고 150만명의 여성들이 농업기술관련 자격증 획득. 5만3천명의 여성들이 협력기업들을 창업.
- (iv)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은 여성의 평등한 사회보장권리 명시.

#### (4) 종교의 자유

- (가) 중국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 <중국국무원령>으로 규정된 <종교사무조례(宗教事務條例)>와 신장 자치구가 제정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종교사무조례(新疆維吾爾自治區宗教事務條例)>는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을 준수한다고 명시
- (나) 중국의 <민족자치구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 <민법통칙(民法通則)> <교육법> <노동법> <의무교육법> <인민대표대회선거법> <촌민위원회조직법> <광고법> 등에서 종교의 자유 명시

\* “종교에 상관없이 선거권 피선거권 보유”; “종교단체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 “교육과 종교는 분리”; “국민은 종교에 상관없이 교육 기회”; “국민은 종교신앙에 차별없이 취업기회”; “광고나 상표에서 종교나 민족의 차별적 내용 금지” 등

- (i)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宗教活動場所管理條例)>는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함.
- (ii) <중국 국내외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은 외국인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중국종교와 우호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보호함<sup>3333</sup>

## (5) 인권침해

- (가) 중국은 사법영역의 인권보장이 인권사업발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다년간 인민권리와 권익실현을 위해 의법치리(依法治理)에 중점<sup>3334)</sup>
- (나) 인권보장에 있어 중요한 형법은 1997년 개정된 후 2015년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 1997년을 전후하여 행정절차법, 변호사법, 국가배상법, 행형법, 형법 등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sup>3335)</sup> 예를 들면,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제도, 변호제도, 심판절차, 집행과정 등을 체계화하는 등 인권존중과 보장 명확히 규정. 2014년 공안부는 조사진행시 녹음녹화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제요구 등을 진전시키는 데 명확히 함. 2013년 공안부 <형사소송법 발전과 오심방지방안> 사법부의 <오심방지를 위한 사법감도제도의 강화 의견> 등 오심방지 및 감독 제도 강화.<sup>3336)</sup> 민사소송제도를 개선하여 사회공익권리 보호를 강화함. 2012년 수정된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제도를 신설. 환경오염, 소비자권익피해 등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기관과 조직이 법에 의거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사형제도도 엄격하게 아주 소수의 중대범죄자에 대해만 시행하도록 제약함. 2011년 형법수정안은 13개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취소한 이후 2014년 형법수정안을 통해 사형적용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sup>3337)</sup>

3333)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宗教信仰自由狀況> (1997),

출처 : 中國人權網 [http://www.humanrights.cn/html/2014/1\\_0828/1739.html](http://www.humanrights.cn/html/2014/1_0828/1739.html)

3334) 중국신문판공실, <중국사법영역인권보장의 신진전 백서(中國司法領域人權保障的新進展 白皮書). 2016. 9.12. 출처 :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

<http://www.scio.gov.cn/zfbps/rqbps/Document/1490892/1490892.htm>

3335) 이금순 외 1명, "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 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2006), p. 154.

3336) <중국사법영역인권보장의 신진전 백서(中國司法領域人權保障的新進展 白皮書). 2016. 9.12. 출처 :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

<http://www.scio.gov.cn/zfbps/rqbps/Document/1490892/1490892.htm>

3337) 상동

## (6) 노동권

- (가)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 및 WTO 가입으로 경제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중국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리들은 정부가 소유. 노동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회사를 이직할 자유가 없었으며 경영자의 해고권 리도 부재.
- (나)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3결합정책' 발표. 노동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자신이 취업을 조직하며 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방법을 결합하는 정책으로 정부당국이 노동력 공급의 주체임을 부분적으로 포기<sup>3338</sup>). 1986년 중국정부는 새로운 고용체제인 '노동계약제의 적극적인 시험적 실행에 관한 통지'와 '국영기업 노동계약제 실시의 임시규정'을 제정하여 노동계약제<sup>3339</sup>를 실시
- (i) 노동계약제의 도입 이후 1992년 노동조합법(中華人民共和國 工會法)과 노동쟁의처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 제정. 1994년 노동법 제정
- (ii) 2007년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合同法) 제정.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노동제도를 수립 및 유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 노동법과 달리 노동계약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조

## 다. 중국 인권 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 중국 인권문제의 현황 및 쟁점

- 가) 중국은 60년 넘게 공산당 1당지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억압되는 권위주의 국가임. 2015년 사형집행의 축소와 장애

3338) 장영성, "지구화시대 중국의 노동관계," 『서울:폴리테이아

3339) 민경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2012), p. 391.

인의 대학입학기회확대 제도 등 일부 인권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출범이후 중국의 인권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음.<sup>3340)</sup> 중국지도부는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이를 “외국의 주권침해”로 규정함. 2015년 중국은 새로운 방법들로 표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 강화

\*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280여명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가 구금 심문당하였고, 다수의 NGO 종사자들이 억류되거나 체포되었음.

나) 중국은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권 이슈’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으로 국제사회 요구에 일부 호응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특색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유의 문화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무시하는 ‘양면전략’ 추진

(1)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빈부격차해소, 장애인·여성 등 소외계층 보호 등 경제적 사회적 인권문제인 ‘발전권, 생존권’에 대해서는 점진적 개선을 통해 중국인권 발전현황을 적극 홍보함

(2) 반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특색의 인권’이라는 주장으로 서구의 비판에 대응. 중국은 인권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서구식 보편주의(universalism)에 맞서 문화적 상대주의(relativism) 주장. 1991년 이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인권백서는 서구와 중국의 인권 인식의 차이 분명히 함

\* 1991년이후 중국정부가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국인권백서(中國人權白皮書)’는 ‘중국 특색의 인권’을 지속 강조

- “인권상황의 발전은 각국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등 조약의 제약을 받

3340)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s 2016』,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world\\_report\\_download/wr2016\\_web.pdf](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world_report_download/wr2016_web.pdf)

으며 이것은 역사의 발전과정이다. 때문에 각국의 역사배경, 사회제도, 문화전통, 경제발전의 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때문에 인권의 인식도 다르다” 3341)

“인권은 주권 범위안의 문제,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국가, 인권보호는 내정 불간섭을 전제, 인권은 우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등을 강조

- 2014년 인권백서에서도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발전방향(適合本國國情的人權發展道路)”을 강조하고 “인권의 보편원칙과 중국의 국정현실을 연계하여 생존권과 발전권을 향상시킨다”고 주장<sup>3342)</sup>

다) 2010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사회문화권리 국제공약 관련 집행현황 2차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파리원칙’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음. 중국은 인권관련 업무를 국회와 공산당, 교육부 종교부 등 정부기관, 중국인권연구회 등 연구기관 등이 역할을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는 현재 소수 학자들의 학술적 검토에서만 존재할 뿐 정부차원의 검토나 논의 부재. 중국정부는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원칙에 입각하며 공산당과 정부가 중국인권문제의 발전의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 인권신장은 공산당 주도로 정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입장. 중국정부는 소득의 향상,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장애인 부녀자 권익 등 먹고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을 중국인권발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교육부, 노동사회보장부 등 역할을 광의의 ‘인권사업’ 기관으로 규정. 중국정부는 1991년 이래 <중국인권백서>를 정례적으로 발간하면서 농민·근로자·여성 등의 소득개선 상황, 부처별 복지 정책 등을 총망라하여 <중국인권사업발전 상황 보고> 형식으로 발표. 실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대외적

3341) <1991年：中國人權狀況>, 출처：중국신문판공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http://www.scio.gov.cn/ztk/dtzt/2014/31553/31561/Document/1381043/1381043.htm>

334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4年中國人權白皮書(全文)： “2014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 [http://www.beijingreview.com.cn/wenjian/201506/t20150608\\_800033967.htm](http://www.beijingreview.com.cn/wenjian/201506/t20150608_800033967.htm)

커뮤니케이션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담당. 정부의 관련부처 혹은 위원회 별 인권사업 관련 보도, 대내외 언론 창구역할, 정례적인 <중국인권백서> 발표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중국인권발전상황을 소통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라) 중국에서 인권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하면서부터임. 과거 중국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공민의 기본적 권리(公民的基本權利)’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음.<sup>3343</sup> 중국에서 정의하는 공민은 법률개념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

마) 중국은 정례적인 인권발전상황보고와 대외 홍보, 소통 등을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외활동과 함께 ‘중국특색의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서구사회의 인권잣대를 비판하고 대응해왔음. 그러나, 중국의 인권문제는 ‘경제적 여건의 향상, 복지정책의 발전’ 등 ‘발전권과 생존권’에 초점을 두면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는 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면서 국제인권기구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

(1) 중국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 보호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중국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적에 더 개방되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음

(2)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소셜미디어와 인권활동 등에 대한 검열이 5만7천705명으로 5.4배 증대했다고 밝힘. 캐나다 난민위원회(IRB)는 2015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당했다고 주장하는 1천738건의 신고를 받았고 올해 1~3월에도 39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소개. 신고 내

---

3343) 강효백,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 논의 분석,”(2010)

용은 중국 내에서 종교·소수 민족·토지 몰수·가족계획정책 등 관련.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에도 많은 인권변호사와 사회활동가들이 국가위협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는 국제인권기구와 미국 등 서방세계의 비판과 충돌의 쟁점이 되고 있음

- (3) 중국의 인권정책은 1989년 천안문사건이후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차원에서 본격화됨.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유지와 정치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권’향상의 중심에 두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의 서구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인권이라는 틀 속에서 소극적 방어적 입장 취함. 이에 따라, 인권향상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력과 발전상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중국인권백서’는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농촌·장애인·노동자·소수민족 등 계층별 권익보호와 사회보장의 향상
- (4) 중국은 1999년 이후 국무원신문판공실 명의로 매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 하여 미국정부의 인권비판에 대응. 중국정부는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인권상황을 감추려하는 것이며 미국의 총기사고와 빈부격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인종차별, 타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비판. 또 한편으로 중국의 의견에 동의하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제회의를 진행함. 1990년 3월 제46차 UN 인권위원회 총회로부터 거의 매년 미국을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는 <대중국 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제3세계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해당 결의안을 지지.<sup>3344)</sup> 1993년 <방콕선언><sup>3345)</sup>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서구의 보편적 인권개입에 공동대응.

3344) 윤영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저항과 개입에 대한 국가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2호 (2008), p. 219.

3345) 전성홍, “중국의 인권담론과 정책: 해외민주화 압력에 대한 대응,” 『신아세아』 제15권 제2호 (2008), p. 97. “중국은 인권문제를 빌미로 UN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 2) 중국의 인권정책 변화와 방향

가)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가시화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건이후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권 비판과 압박이 강화되면서 부터임.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미미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권위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도가 높아지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노력 시작됨

(1)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권비판과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당이 주도하여 신설한 조직들은 대체로 정부내 독립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의 형식을 띤 연구단체나 사회단체임. 이들은 모두 <인권연구, 인권활동 단체>를 표방하면서 ‘중국 특색의 인권’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교류하며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 대표적인 기관은 <중국인권연구회(中國人權研究會)>와 <중국인권발전기금회(中國人權發展基金會)> 등으로 1990년대초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인권정책 수립과 제언을 목표로 신설된 비정부조직임. 주로 중국 특색의 인권 개념 연구와 홍보, 국제인권조직 참여 및 교류, 국내 인권연구자 및 활동가들 조직 및 대내 소통.교육 등 담당

(2) 중국은 과거 중국 특색의 인권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념을 부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중국 특색의 인권’개념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응하는 ‘양면전략’ 추진

나)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인권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국내 정치적 안정과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해 가느냐에 있음

\* 중국은 26항의 국제인권공약에 참여하고 있음. 양대 인권규약인 <경제사회와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공약(사회권 규약)>은 1979년10월 서명하고 2001년 3월 비준하였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은

1998년 10월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음.

다)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부상과 함께 중국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우호적 외교기반 확대의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게 됨. 중국은 대내적으로 헌법과 각종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중국 비판과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국은 적극적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기구에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중국의 인권관련 노력을 대외에 표방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간 등 자국의 인권개념을 옹호하고 서구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서구의 보편적 인권개념의 모순 부각.

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의 인권정책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sup>3346)</sup>

(1) 첫 번째 시기는 1949년 건국부터 1971년 중국이 대만을 대신해 유엔회원국 지위 확보한 시기. 1949년 헌법과 법률에서는 ‘인권’개념 부재. 문화대혁명 시기 인권이 자산계급의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무시됨.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부터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UN의 사회권.자유권 규약 채택 등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못하였음. 그 기간 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조치에 입장을 표한 것은 유일하게 1955년 4월 저우언라이 총리가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AA) 회의에 참가하여 <반동 10원칙>에 서명. 반동10원칙은 영토주권.상호존중.상호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과호혜.평화공존 등 <평화5원칙>에 UN인권선언을 존중하는 내용들을 덧붙여 구성. 저우언라이 총리는 같은 해 5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 확대회의에서 “‘반동선언’의 10원칙에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도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민의 일관된 주장이며 중국이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고 지적.<sup>3347)</sup>

3346) 윤영덕, “중국의 인권담론과 인권현실의 갈등,”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2011), pp. 485-491.

3347) 이만희, “중국의 국제적 인권활동”, 『북한』. 1993년 6월호, p. 81.

- (2) 그러나 중국에게 인권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에 일부에서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주의에 반하는 자산계급의 권리라는 인식이 팽배.
- (3) 중국의 인권개념과 인권인식이 전환적 시기를 맞이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짐. 천안문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강화. 중국은 지속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국의 인권상황이 서구와 다른 고유성과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성화.
- (i) 1993년 1월 중국당국은 중국인권연구회를 설립하여 각국의 인권현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국내의 인권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일보에 인권지식 백문답을 기재하는 등 적극 대응. 당시 주석이었던 장쩌민은 “인권문제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에 관한 지시”를 내려 인권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를 장려하였는데, 그의 지시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원이 발표한 <인권백서>로 문서화
- (ii) 최초로 발표한 인권백서는 <중국의 인권상황(中國的人權狀況)>이라는 제목으로 인민일보에 기재되었으며 인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힘. 중국정부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인권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문서로서 국제인권분야의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 1997년 장쩌민은 “인권보호와 축진은 UN헌장의 정신과 원칙,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포함.<sup>3348)</sup>
- (iii)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인 보편인권을 존중하나 인권이 나라마다 고유한

3348) 김용재, “중국 인권정책의 변화와 그 동인: 시장화의 심화, 그리고 국제 레짐,” 『공사논문집』 63집 2권 (2012), p. 240.

역사위에 형성되는 것이므로 각 나라마다 인권인식과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지속 강조. 1991년 인권백서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고유한 인권 인식과 상황을 명시. 1992년 10월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에도 인권은 주권의 범위 안의 문제라는 것,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국가라는 것, 인권보호는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인권은 우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이라는 것이 다시 천명. 중국학계는 이러한 인권의 상대주의적 입장이 이미 국제사회의 동의를 획득했다고 강조하는데 그 근거로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 제시.<sup>3349)</sup>

- (iv) 2001년 WTO 가입 등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적 대국을 지향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인권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치를 확대
- (v) 중국정부는 우선 법치를 인권보장의 주요한 틀로 인식하면서 2004년 개정된 헌법에는 인권의 존중 및 보장 조항이 추가. 이는 중국에서 인권의 보호 및 보장이 법률로서 보장 받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헌법 제33조 제3항의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 1982년 헌법의 개정판으로 이전의 헌법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을 국가기구 조항 앞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대변. 또한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문의 수를 늘려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한 법적 보장성 높임.

### 3) 국제기구 가입과 참여 등 관련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성

가) 중국은 1971년 유엔 회원국 가입 이후 유엔총회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sup>3350)</sup> 중국은 1979년, 1980

3349)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제 5조 “..국가와 종교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중요함을 명시해야 하나...”라는 문장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특수성도 인정하고 있다. 강효백,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 논의 분석,”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p. 128.

년, 1981년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여 UN인권위원회의 제35, 36, 37차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 1982년 유엔인권위원회 제38차회의에 최초로 공식대표단 파견.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이 되었고, 1984년 이후에는 인권문제전문가를 추천하여 차별방지.소수자 호보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후보에 연속하여 선출.<sup>3351)</sup> 미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상황을 미국과의 최혜국대우 연장조건으로 제시하면서 1994년 최혜국대우의 연장조건으로 중국의 인권관련 7개항<sup>3352)</sup>의 개선을 내걸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2000년 미국과 중국은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승인과 중국의 WTO 가입 성사

나)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국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sup>3353)</sup> 1993년 3월에는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의 아시아지역준비회의에 참여해 대회 부의장직 수행.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 1995년 9월에는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여성대회 개최. 중국은 개혁개방이후인 1980년대 초부터 점차적으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 총 23개의 국제인권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 그중 4개는 1950년대에 가입한 것이며 나머지 19개는 모두 개혁개방 이후 가입. 1997년과 1998년에는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에 연이어 서명하고 2001년에는 ‘사회권규약’ 비준. 현재까지 중국이 가입한 대표적인 국제인권협약은 <여성차별 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난민지위협약>, <아동권리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등임

3350) 윤영덕(2011), p. 487.

3351) 이만희, “중국의 국제적 인권활동,” 『북한』(1993년 6월호), p.82

3352) ①반체제인사와 가족들에 대한 해외이주 허용 ②교도소 재소자와 강제노동 등 2개항은 충족되었으나 ③국제인권선언 준수 ④상당수의 정치종교범 석방 또는 상황설명 ⑤재소자의 인간적 처우 ⑥티베트에 대한 종교 문화적 권리 존중 ⑦국제방송 허용 등 5개항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3353) 윤영덕(2011), pp.488-490 참조.

<중국의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비준 현황>

협약명	가입	비준	비고
인종차별철폐협약	1981.12.29	1982.11.28	제22조 보류 <sup>3354)</sup>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사회권규약)	1997.10.27	2001.03.27	제8조 1항 1a 보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자유권 규약)	1998.10.5		
여성차별철폐협약	1980.07.17	1980.11.04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2.09.24	1982.12.23	제14조 후반부분, 제16조 3항 보류
고문방지협약	1986.12.12	1988.10.04	제20조, 제39조 1항 보류
아동권리협약	1990.08.29	1992.03.02	제6조 보류
장애인권리협약	2007.03.30	2008.08.01	

다)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의 인권공세에 적극 대응.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대화를 적극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자체 인권백서 발간 및 제3세계 연대 등으로 서구의 공세 맞대응. 1990년부터 미국과 인권대화 시작. 1997년에는 유럽연합 및 호주와도 인권대화 개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브라질, 일본 등과도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부간 비정부간 대화 진행. 1990년부터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반발, 2000년부터는 미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 미국의 인권문제 공세. 1990년부터 유엔인권위에 매년 상정되는 대중국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견해를 같이하는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sup>3355)</sup>

3354) 중국은 22조는 보류하고 이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원은 1982년 1월 13일 22조를 보류하고 유포.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이름으로 본 협약에 대한 사인과 비준을 한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

3355) 윤영덕(2011), p. 489.

### 3. 일본

일본 국가 정보 3356)	
면적	약 37만km <sup>2</sup>
인구	1억 2,713만 명 (2014년 기준)
수도	도쿄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주요언어	일본어
주요종교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주요민족	일본인(98.5%), 재일조선인 (0.5%), 중국계 (0.4%)
GDP	4조 1,233억불 (2015 IMF 기준)
	1인당 GDP : 32,481불 (2015 IMF 기준)

####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 정치체제와 법체계 등 인권시스템과 관련한 국가 기본 정체

###### 가) 일본헌법 (日本憲法)

1947년에 시행된 일본 헌법은 주권 재민,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기동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1조에는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 일본 헌법에서 명시된 인권 존중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은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이면 그 역할을 다하는 곳이 인권옹호국이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은 법무성설치법이다.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입헌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활동은 입법, 사법, 행정의 각 기관에 명확하게 분할되어 있다.

일본 헌법은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를 선언함으로써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다. 국회는 일본의 통치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행정부에 우월하다. 행정부의 장인 수상(내각 총리대신)은 국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다.

의원내각제에 근거하여 수상은 내각 구성원의 과반수를 국회의원에서 선출

3356) [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804/1\\_22621.jsp?menu=m\\_40\\_10\\_20](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804/1_22621.jsp?menu=m_40_10_20) (검색일 2016.7.20)

하여 내각은 국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천황은 일본과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천황은 수상과 최고재판소 장관을 국회의 지명에 근거하여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 아래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실시한다. 국사 행위란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등이다.

#### 나) 지방자치법

1947년 4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일본 헌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일본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방 자치법은 지방 주민의 정치 참가의 권리를 보장하여 지방 자치체의 자주성이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는 법이다.

그 전에는 도도부현<sup>3357)</sup> 지사는 관선으로 선출되었으나 지방 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다. 또한 도도부현은 시읍면<sup>3358)</sup>과 동일한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되었다.

시 가운데 정령지정 도시는 지방 자치법에 정해진 일본의 도시제도에 하나이다.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법정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뜻한다. 2015년 현재 시는 전국에 20군데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으로부터의 권한의 이양 등에 따라 도도부현에 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도부현과의 사이에서 절차나 수속 등을 거치지 않아도 그 도시에서 독자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체 관계

일본 헌법의 국민 주권의 이념 아래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행정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지방공공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

3357) 지방 자치법상의 지방 공공단체에는 이하와 같은 종류가 있다 (지방 자치법 1조의 3).

일본의 포괄적 (광역적) 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이다. 도도부현이란 都都, 道道, 府府, 현縣의 총칭이다. 현재는 1수도(도쿄도), 1도 홋카이도, 2부 교토부 및 오사카부, 43현으로 1도 1도 2부 43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수는 47 도도부현이 된다.

3358) 시읍면은 지방 공공단체인 시·도시·마을의 총칭을 뜻하며 일본의 기초적 지방 공공단체(지방 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 공공단체라고 한다)이다.

시읍면은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구(수도 도쿄에서는 구라고 한다)가 따로 있다. 즉 도쿄도에서는 도내에서는 시가 아니라 특별구라고 불리는 구가 23군데 있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 기재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 지방의 관계는 상하 또는 주종 관계에 있으며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지방 행정의 상당수는 국가의 하청 기관화되고 있으며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일상 업무의 7~8할이 국가의 기관 위임 사무가 차지되었다. 또한 인사 면에 있어도 지방 자치체의 간부는 자치성으로부터의 파견된 직원이 차지했으며 그 때문에 현지 채용의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방해가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체가 주종 관계로 놓인 결과 중앙정부는 너무나 많은 업무를 거느리게 되어 이른바 너무 큰 정부로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순화하기 위해 지방에 더 권한을 위양하는 방향이 검토하게 되었다.

2000년 4월 지방분권 일괄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상하주종 관계로부터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여 문자 그대로 지역에서 생긴 사항은 지역 주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원점에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이다.

그 결과 지역 사회에서의 공공적 과제를 민간기관이나 시민과 협동하여 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 자치체에 대해 위양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제도 책정이나 시책 실시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이나 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주민의 실생활에 관련이 깊은 행정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으로 및 종합적으로 널리 담당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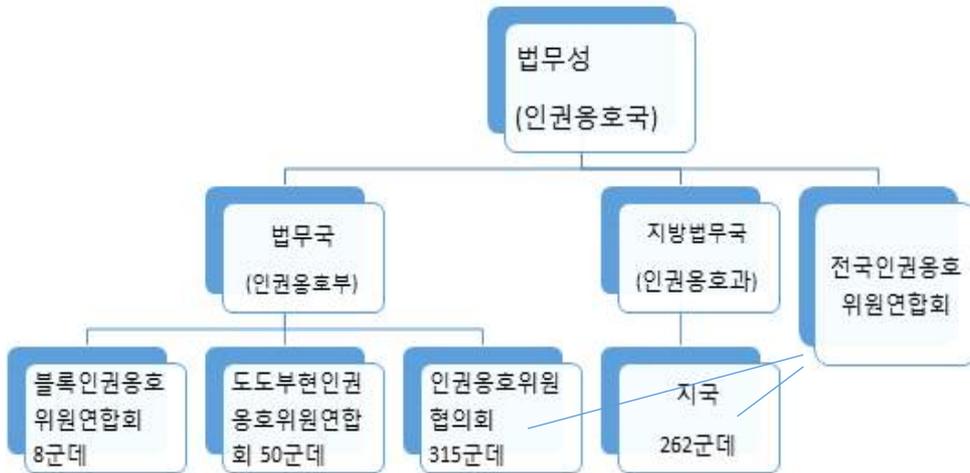
## 2) 인권옹호기관조직

### 가) 구성 및 조직도

법무성 인권 옹호국은 정부기관으로서 인권 옹호에 추진하는 일본에서 유일한 기관이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은 지방 지분부국(지방 지분부국이란 내각부 설치법 제43조 및 제57조, 국가행정조직법 제9조에 규정되고 있는 국가 행정 기관이며 법무성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된 보조 기관을 뜻한다)인 법

무국, 지방 법무국 및 지국과 법무성 장관이 위촉하는 인권옹호위원회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옹호위원을 조직하는 것이 인권옹호위원연합회 및 인권옹호위원협의회이다. 법무성 및 법무국은 인권옹호위원이 조직하는 전국 인권옹호위원연합회 및 인권옹호위원협의회와 협력하고 여러 가지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sup>3359)</sup>.



출처 <http://www.moj.go.jp/JINKEN/>

[일본-그림 80] 법무성 인권옹호기관 조직도 (2016년 1월 1일 현재)

#### 나) 법무성 인권옹호국

일본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은 법무성의 인권 옹호 국이다. 인권옹호국이란 인권침범 감시를 위해서 법무성에 두어진 내국이며 인권침범 사건의 조사와 정보의 수집, 인신 보호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의 배제 및 피해의 구제, 빈곤자 소송 지원 민간차원의 인권 옹호 운동에 대한 조장이나 지원, 자유인권 사상의 계발 활동 등 인권 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법무성 인권옹호국 설립배경을 보면 우선 1948년 2월 15일에 법무청 설치법이 시행되었다. 이어서 1948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 헌법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기본원리에 하나로 내걸렸다. 헌법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 인권의

<sup>3359)</sup> <http://www.moj.go.jp/JINKEN/>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에 따라 국가 기관으로서 법무청(법무성의 전신)에 인권 옹호국을 설치되었다. 그 당시에는 법무총재(법무청의 대표)가 인권 옹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의 활동 근거가 되는 법령은 1949년에 공포된 법무청 설치법이다 이법 시행에 따라 법무청은 법무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무부 조직 규정의 시행에 따라 법무부 인권 옹호국 제 1 과의 사무에 인권옹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가해졌다.

1952년 8월 1일에는 법무부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승격되어 인권 옹호국은 법무성내 7국이 있는 가운데 1국이 되었다.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1999년 7월에 제정된 법무성 설치법 제4조 26에 따르면 법무성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건에 관련된 조사 그리고 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것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sup>3360</sup>).

3360) <http://law.e-gov.go.jp/htmldata/H11/H11HO093.html>

법무성 설치법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법무성의 설치 및 임무 및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명확한 범위의 사무사무를 정하는 동시에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무성의 설치 및 임무 및 사무

제1절 법무성의 설치

(설치)

제2조 국가행정조직법 (쇼와23년 법률 제120호)제산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성을 설치한다.

2 법무성의 장은 법무대신(장관)으로 한다.

제2절 법무성의 임무 및 사무

(임무)

제3조 법무성은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소송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 및 출입국이 공정한 관리를 피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법무성은 달은 항에 정한 임무에 관련되는 특정한 내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돕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법무성은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각 관방을 돕는 것으로 한다.

(사무)

제4조 법무성은 전조 제1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26 인권침해 사건에 관련된 조사 그리고 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것.

법무성 인권 옹호 기관은 법무성 인권 옹호국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 인권옹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인권옹호위원회제도

1948년에 정령으로 인권옹호위원령(정령 제168호)이 시행되어 인권옹호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권옹호위원회제도는 법무총재 및 법무청 인권 옹호국의 사무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1949년6월1일에는 인권옹호위원의 수를 늘리고 항구적인 제도로 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령은 폐지되어 새롭게 인권옹호위원법(법률139호)이 시행되었다. 동법에 따라 전국의 시읍면에 골고루 인권옹호위원을 설치되어 기관정비가 완성되었다.

인권옹호위원법 1조에는 인권 옹호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인식 아래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자유 인권 사상의 보급 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인권옹호위원을 둔다고 그 목적을 정하고 있다<sup>3361)</sup>.

---

3361) 인권옹호위원법은 1949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전 20조로 이루어진다. 동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발제).

##### 1.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자유인권 사상의 보급 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인권옹호위원을 두고 이것에 적용해야 할 제반의 기준을 정하고 인권의 옹호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위원의 사명

제2조 인권옹호위원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만약 이것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를 취하는 과 동시에 항상 자유인권 사상의 보급 고양에 노력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 3. 위원의 설치 구역

제3조 인권옹호위원은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함. 이하 같음) 각 구역에 두는 것으로 한다.

##### 4. 위원의 정수

제4조 인권옹호위원의 정수는 전국을 통해서 2만명을 초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각 시 읍 면마다 인권옹호위원의 정수는 그 지역의 인구 경제, 문화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무성 장관이 정한다.

5.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는 전항의 인권옹호위원 정수에 대해서 법무성 장관에게 의견을 진달할 수 있다.

##### 6. 위원의 성격

제5조 인권옹호위원에게는 국가 공무원법(법률 제120호)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의 활동은 대별하여 두개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인권 구제 활동(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처리)이며 또 하나는 인권 계발 활동이다.

구체적인 인권 옹호국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위원들이다.

인권옹호위원법을 법적 근거에 바탕으로 두고 인권옹호위원은 인권 옹호국의 사무를 보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독립해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피해자 구제

인권옹호위원은 인권 상담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 법무국·지방법무국의 직원과 협력해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종사하여 당사자의 이해나 주장을 조정하는 등 구제의 수속을 수행한다.

구제 수속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데 이 조사는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협력에 의한 임의에 의한 것이며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하는 것 같은 소위 강제 수사가 아니다<sup>3362</sup>).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서 구제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구제 수속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에 설치된 상설 인권상담기관에서 법무국 직원과 함께 선출직인 인권옹호위원이 주로 면접 또는 전화에 의한 인권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령자 학대 등 개별의 법률에 의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는 분야도 있으나 종합적인 인권구제의 관점에 선 것은 아니다. 구제 요건이나 수법에 대해서도 각각의 법률마다 다른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체벌이나 왕따, 사생활의 침해나 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의 거부 등 개별의 법률에 의한 구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분야도 있다.

법무성의 인권옹호 기관은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으로부터의 신고를 받아 피해의 구제를 하는데 구제 수속을 시작

3362) <http://www.moj.go.jp/JINKEN/jinken120.html>

하여 조사에 들어간 경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인권침해가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뒤 조사의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한다.

구제 조치 가운데 원조와 조정에 대해서는 조사 도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

원조 (援助) 유관기관에 소개하거나 법률상의 조언 등을 한다.

조정 (調停) 당사자 간에서 논의하도록 중개하는 등 관계 조정을 한다.

권고 (勸告) 인권침해를 한 사람에게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요청 (要請)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통고 (通告) 관계 행정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조치의 발동을 요구한다.

고발 (告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한다.

계발 (啓發) 사건의 관계자나 지역에 대하여 인권존중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 등 가해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구제 조치는 관계자의 이해를 받아서 자주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의 관계자에게 인권에 관한 계발 계몽을 하기도 한다<sup>3363</sup>).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인권조정 전문위원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인권조정 전문위원은 인권옹호위원 중에서 지명되어 중립·공정한 입

---

3363) [http://www.zenginkyo.or.jp/fileadmin/res/abstract/efforts/contribution/human\\_rights/human\\_rights130717\\_1.pdf](http://www.zenginkyo.or.jp/fileadmin/res/abstract/efforts/contribution/human_rights/human_rights130717_1.pdf)

장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이해를 조정하고 사안이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역할을 톺아진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서 구제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구제 수속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설 상담소에서 인권옹호위원은 법무국 직원과 함께 주로 면접 또는 전화에 의한 인권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설 상담소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축제일을 제외해 매일 개설되고 있으면 상담은 무료로 한다.

상설 상담소에서는 우리 인권 110번, 어린이 인권 110번, 여성의 인권 핫라인 등의 전용 상담 전화를 마련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에 의한 인권상담의 접수 그리고 일부의 상담소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소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 의혹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구제 수속을 시작하기도 한다<sup>3364)</sup>.

## (2) 교육 홍보 활동

인권옹호위원회가 조직하는 전국 인권옹호위원회연합회에서는 인권옹호위원회법이 시행된 6월1일을 인권옹호위원의 날로 정하며 인권옹호위원이 각 시, 읍, 면에 배치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인권존중을 환기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매년 6월 1일 전후에 전국각지의 공공시설이나 백화점 등에서 특설 상담소를 개설한다.

왕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서 인권옹호연합회에서는 국민 주변에 있는 의논 상대로서 인권옹호위원을 활용하게 하는 취지로 왕따에 관한 긴급 메시지를 국민에게 발신하기도 했다.

최근에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 생겨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권옹호위원회는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인권계발 활동을 하는 것 과 동시에 특설 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통해서 입소자에게서 직접 인권상담을 받고 입소자의 가족이나 시설 직원에게서도 고민거리에 대한 상담을 접수하는 것으로 입소자와 시설 측간의 관계 조정이나 시설 내 대우 개선을 목

3364) <http://www.moj.go.jp/JINKEN/>

표로 사회복지 시설 내 인권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비방 증상이나 헛소문에 인한 피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고조하는 인권계발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피해 지역이나 대피소에는 특설 상담소를 개설하고 상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것 이외에도 시, 읍, 면 수준에서는 특설 인권상담소 개설하는 일,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인권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일, 중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일 인권계발에 관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논문 콘테스트의 실시 인권계발 광고나 인권 상품의 배포하는 등의 지역마다 다른 독자적인 계몽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sup>3365)</sup>.

### (3) 국제 인권 체제와의 협력

#### (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일본은 2008년 5월에 제1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대일심사를 받았다. 각 조약위원회의 대일심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2008년 10월 자유권 규약(B규약)심사

2009년 8월 여자차별 철폐 조약심사

2010년 2월 인종차별철폐조약심사

2010년 5월 아동의 권리조약심사

2013년 4월 사회권 규약(A규약)심사

2013년 5월 고문 등 금지조약 심사

계속해서 일본은 2012년 10월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2회 대일 심사를 받았다. 그에 앞서서 일본정부는 2012년 7월에 정부보고서를 국가별인권 상황정기검토(UPR)에 제출했는데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외무성과 조정

---

3365) [http://www.zenginkyo.or.jp/fileadmin/res/abstract/efforts/contribution/human\\_rights/human\\_rights130717\\_2.pdf](http://www.zenginkyo.or.jp/fileadmin/res/abstract/efforts/contribution/human_rights/human_rights130717_2.pdf)

하면서 내각부, 법무성, 문부과학성, 후생 노동성, 경찰성 등 많은 관계부처가 협조 관여했다. 그 이외에도 NGO 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와 의견 교환회를 개최했다.

보고서 내용은 2008년에 받은 심사 및 권고에 대한 대응책 실시 상황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이며 구체적으로는 강제 실조조약을 체결한 것, 장애인 리조약의 조기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개인통보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외무성 인권조약이 행실을 설립한 것, 여성의 인권보호 분야에서는 제3차 남녀 공동 참획 기본계획의 책정한 것, 인권분야에서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한 것, 아이누 차별에 대한 대응책,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공헌(결의 제안, 인권대화, 재정공헌) 등에 대해 보고했다.

그 결과 개성해야 할 점으로 174항목에 이르는 권고를 받았다. 그 에 따라 권고에 대한 회답서를 일본정부는 2013년 3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제출한 바 있다<sup>3366</sup>).

#### (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일본은 2007년 7월 17일에 가입서를 유엔에 기탁했으며 같은 해 10월1일 정식으로 105번째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체약국이 되었다. 로마 규정 및 그 협력법은 국내법에 있어서 2007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가맹한 후 일본은 GDP를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산에 22%을 분담하는 등 재정적 공헌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인 판관 배출을 통한 인적 공헌 등을 통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라) 지방 법무국 및 지국

##### (1) 구성

법무성이 실시하는 인권관련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각 지방에 설치된 보조 기관인 법무국(인권옹호부)이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센다이, 삿포로, 다카마쓰의 8 도도부현에 설치돼 있다. 지방 법무국(인권옹호과)는 법무국 소재지 이외의 42 부청 또는 현청에 설치 돼 있다.

3366) [http://www.mofa.go.jp/mofaj/gaiko/jinken\\_r/upr\\_gai.html](http://www.mofa.go.jp/mofaj/gaiko/jinken_r/upr_gai.html)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에는 전국 각지에 인권계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 및 인권계발 활동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도도부현 네트워크 협의회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도도부현,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이다. 그 이외 구성원은 해당 도도부현 내에 있는 정부 파견 기관 인권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 (2) 목적 및 활동

인권계발 활동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는 정부, 지방 공공단체, 인권옹호위원 및 기타의 인권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각각 역할에 따라 서로 제휴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인권계발 활동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도도부현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 특별구를 포함하는 시읍면 및 인권옹호위원협의회이다. 그 이외에는 해당 지역 내의 정부 파견 기관이나 인권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 등이다.

### 마) 인권옹호위원

인권옹호위원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인권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권을 옹호해 가는 역할을 다한다고 하는 취지 아래 마련되었던 것이며 일본 독자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인권옹호위원은 인권옹호위원법에 근거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옹호위원의 임무는 첫째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인권상담을 받는 인권상담 활동이다.

둘째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법무국의 직원과 협조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는 조사 및 구제하는 활동이다.

셋째로 인권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활동 지역 주민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홍보나 계발을 수행하는 인권계몽 활동이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상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 인권옹호위원제도는 확충되어 2015년 현재 약 1만

4천명의 인권옹호위원이 전국의 시읍면에 배치되어 있다.

(1)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 인권옹호위원 협의회

(가)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란 인권옹호위원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서 설치된 조직이다. 도도부현 단위로 조직되고 있는 50개의 인권옹호위원연합회가 모여서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로 조직되어 있다<sup>3367</sup>).

전국 인권옹호위원연합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집약해서 인권옹호위원 조직체 전체의 의견으로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인권 옹호 활동의 기본적 방침을 기획 입안해서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나)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

일본 국내의 각 법무국 관내를 단위로서 전국에 8블록(홋카이도, 동북, 간토, 중부, 긴키, 중국, 시코쿠, 규슈)의 블록 인권옹호위원연합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 구역을 몇 군데로 나눈 구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인권옹호위원협의회가 모여서 도도부현마다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를 조직되어 있다.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사무국은 각 지역의 법무국 인권옹호부 또는 지방법무국 인권옹호과내에 설치되어 있다.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집약해서 인권옹호위원조직체 전체의 의견으로서 발표하는 일을 한다.

그 것 이외에도 제 문제에 대응하는 상담 활동이나 인권옹호의식을 계발 계몽 활동을 실시한다. 인권상 문제가 있는 사회현상의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요청 등을 제출하는 일도 한다.

---

3367) [http://www.mofa.go.jp/mofaj/gaiko/jinken\\_r/upr\\_gai.html](http://www.mofa.go.jp/mofaj/gaiko/jinken_r/upr_gai.html)

#### (다) 인권옹호위원회의

인권옹호위원은 인권옹호위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각 도도부현의 구역을 몇 군데로 나누어서 정해진 구역마다 인권옹호위원회의가 조직되어 있다.

인권옹호위원회의는 각 지역에 인권상담소를 개설하여 지역에 밀착된 상담 업무를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전국 각지의 백화점이나 공민관, 시읍면 동사무소 등에서 특설 상담소가 개설되어 상담을 받기도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인권에 대해 강의를 하는 인권 교실, 기업에서 인권 연수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인권옹호위원회의 사무국은 주로 각 지역의 법무국 인권 옹호부, 지방법무국 인권 옹호과의 이외에도 그 지국 내에 설치되어 있다.

#### (2)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임기 등

1953년에 인권옹호위원법이 개정되어 인권옹호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인권옹호위원법 9조). 인권옹호위원에게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즉 위원직은 민간 자원봉사이며 보수는 없다(인권옹호위원법 9조, 8조). 위원은 직무에 관해서 법무대신(장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인권옹호위원법 14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선거권을 소유하는 주민이라고 정해져 있으며 법률로 사실상의 국적 조항 즉 일본국적을 가지는 성인자이어야 된다.

인권옹호위원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자세하게 아는 지역 주민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는 사람이 임명된다.

인권옹호위원은 인권옹호위원법에 따라 인권상담을 받는 일, 인권에 관한 홍보활동이나 인권의식을 계몽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2015년 현재 약 1만 4000명의 위원들이 법무성장관에게 위촉받아서 전국 각 시읍면(도쿄도에서는 구를 포함함)에 배치되어 각종의 인권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성 장관이 인권옹호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는 각 시읍면장 (도쿄도의 특별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인권옹호위원에게 마땅한 후보자를 법무국 (지방법무국)에 추천한다(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

시읍면장은 해당 시읍면에 거주하는 지방 선거권을 소유하는 주민 가운데

인격이나 식견 높고 지역 실정에 밝고 인권 옹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회사업가, 교육자, 변호사, 그리고 여성단체나 노동단체 청년 단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권의 옹호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해당되는 시읍면의 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인권옹호위원 후보자로 법무성장관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인권옹호위원법 6조3항).

그 다음 철차는 법무국(지방법무국)에서 해당 시읍면을 포괄하는 도도부현의 단위 변호사회(변호사 모임) 및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후 법무성 장관에게서 위촉을 받게 된다(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2항).

##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정책 및 법제

### 1) 차별

#### 가) 인종차별

차별 관련에 대한 법제에서 근거가 되는 법조는 일본국헌법이다. 일본 헌법은 각종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제11조)과 함께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하고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인종 차별 행위에 의해 손해를 지게 했을 경우에는 국가 배상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아래 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상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헌법은 어떤 사람에게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32조). 인종 차별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상기의 각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소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은 이 고소 또는 고발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수사를 추진하여 기소 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면 검찰관은 해당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인권 옹호 기관이 다루는 인권침해 사건의 인권침해란 널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인권존중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져 있으며 인종 차별 행위는 인권침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85년에 인종차별철폐조약을 비준했다. 대상이 되는 차별 행위

는 조약이나 법률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한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인권침해 행위가 형사 또는 민사의 소송 사건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재판소 검찰청 경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권 옹호 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인권이 침해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는 관계자에게서 제안이 있었을 때 이외에도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의혹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역시 인권 옹호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사에는 강제력이 없고 어디까지나 관계자가 임의의 협력 협조에 바탕을 두어서 실시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건 조사의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받으면 사안에 따른 처리를 하게 된다. 실제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관계자를 계발해서 그러한 침해 상황을 배제 개선하며 피해자의 구제를 피하지만 이미 인권침해가 행하여져버린 사건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를 한 본인이나 그 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에게 문서로 권고 또는 주의를 한다. 문서나 구두로 반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장래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나) 동화(同和) 출신자에 대한 차별 문제

동화문제란 부락차별의 문제이다. 일본 역사상 옛 신분제도에 근거하는 부락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의해 일본 국민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저위(낮은 계층)의 상태에 놓였으며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동화지구 즉 피차별 부락 등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지역출신자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결혼이 방해되거나 취직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각양각색인 차별을 당하는 사안은 아직도 대를 끊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동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1969년에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었다. 법 목적은 동화지구 주민에게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막는 제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있으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가 이 법에 명기되었다.

1997년 3월에는 5년간의 시한 입법으로서 인권옹호시책추진법이 시행되었다.

동 법에는 차별 의식 해소의 계발·교육과 인권구제에 대해서 나라의 책무를 명기돼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법무성에 인권 옹호 추진 심의회가 설치되었다(2002년 3월에 동법의 실효에 의해 심의회는 해산)<sup>3368)</sup>.

현재 동화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나 상담을 통한 구제 활동을 벌치고 있다.

또한 각 도시에 설치된 인권 계발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는 동화문제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특설 전화 및 명담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에 대해 공정한 채용 전형 시스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 업소에 있어서는 공정채용 전형 인권계발 추진원을 두는 것이 요구되어 있다. 원칙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명이상의 사업소 등에서는 공정채용 전형 인권계발 추진원을 두어야 한다. 공정채용 전형 인권계발 추진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공공직업 안정소에 꼭 보고를 해야 한다. 도도부현 노동국 직업안정 주무과 및 공공직업 안정소에서는 공정채용 전형 인권계발 추진원이 그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다) 고용

고용차별을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법제는 노동기준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용대책법이다. 집행 기구는 후생 노동성, 지방노동국 고용 균등실(고용 균등행정), 내각부의 남녀공동 참획국 (남녀공동 참획 행정)등이다.

2004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기업에 대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제의 폐지 65세까지의 정년을 연장하는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지 어느 쪽을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로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고령자 고용차별에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2007년에 시행된 개정 고용 대책법이 있다. 고용 대책법은 나라의 고용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완전 고용의 달성을 목표라고 하고 있다. 개정 고용 대책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 법에는 노동자의 모집·채용 시에는 원칙으로 연령을 불문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368) <http://www.nionet.jp/jinken/60law/houseibi25.pdf>

그 밖에도 2006년에 개정된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 남녀 양성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차별이 금지되는 대상도 확대되어 종래의 사항에 배치에 있어서의 업무의 배분·권한의 부여, 격하, 직종·고용 형태의 변경, 퇴직 권장, 노동 계약의 갱신 등 각 사항이 추가 되었다.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써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의 총무부기획실, 노동법에 의거하여 전국 343개소에 설치된 노동기준감독소가 있다. 노동기준감독소에서는 노동기준법이나 노동안전위생법 등 법적으로 노동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노동 기준감독서는 도도부현노동국의 지휘 감독을 받고 도도부현노동국은 주로 후생 노동성의 내부부국인 노동 기준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지도 권한을 가지는 노동기준감독관이 사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나 필요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및 노동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경찰관으로써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서류 송검하는 직무 권한이 부여돼 있다. 즉 노동 기준감독관 및 노동 기준감독 서장은 사법 경찰원이므로 노동기준법위반 등의 피의혹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별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도부현노동국에 노동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는 상당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도부현노동국 직원이 상담을 받고 조언이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 계약정지, 배치전환, 임금 미불 등의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모집이나 채용상의 차별 왕따 희롱 등등 인권침해 관련 문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노동자 및 사업주 양쪽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면담 혹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알선해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도부현 노동 국장에 의한 조언 및 지도를 할 때도 있다. 지도란 민사상의 개별 노동 분쟁에 대해서 도도부현 노동 국장이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분쟁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개별 노동 분쟁에 대한 지도를 하는 이 제도는 전술한 법 위반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상담에 의한 해결을 재촉하는 것이며 시정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분쟁 조사위원회에 의한 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분쟁 당사자의 사이에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 3자가 노동 문제 전문가로 중개자로 들어간다. 분쟁 조사위원회란 노동 문제의 전문가에 의해 조직된 위원 모임이며 도도부현 노동국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 분쟁 조정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지명 받은 위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알선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의 주장 요점을 확인하고 쌍방으로부터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양자에 대하여 사안에 응한 구체적인 알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 라) 아동 여성 및 소수자 보호, 장애인 등에 관한 법제

### (1) 아동

아동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법제로써는 1999년에 제정된 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0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아동상담소가 담당 부서이다.

일본 정부는 학대나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 등에 대해 정해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1990년에 서명하여 1994년에 비준했다.

일본은 아동의 권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요청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 및 가정이나 시설이 포함된 전면적인 체벌금지의 입법화도 유엔에서 요구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유엔에서강한 요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행의 민법 제731조에서는 혼인 연령이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등 남녀차별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민법 제900조 4항은 상속분에 대해 서자에게는 적자에 비해 2분의 1밖에 인정되지 않다는 차별 규정도 그대로 남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아 일본에서는 아동 권리기본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실시하는 어린이청도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2) 여성

일본 정부는 1985년에 여성차별 철폐 조약을 비준하여 발효되었다. 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5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어 198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직장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집·채용·승급·승진·교육 훈련·정년·퇴직·해고 등의 면으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1997년에는 일부 개정되어 여성보호를 위해 마련되어져 있었던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노동 심야 업무 등의 규제가 철폐되었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상의 관리가 의무화되었다.

이 입법과 동시에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는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노동기준법상의 여성노동자에 관한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노동 및 심야노동에 관한 제한이 축소된 한편, 산후의 휴직 기간의 연장 등 모성보호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임신·출산·산후 휴가 등 성 지침으로 정한 휴직기간(모성보호 조치 등)에 대해 해고 등 기타 불이익이 가는 것을 금지하여 임신 중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해고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보호 대상은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나 남성에게 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사용자에게는 조치 의무가 부과되게 되었으며 종래의 배려 의무보다 강화되었다. 즉 직장에서 성희롱에 관해서 사업주에게는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희롱 및 모성보호 조치 또한 분쟁 조정 위원회에 의한 조정대상이 되었으며,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관련 담당 부서는 후생 노동성의 지방노동국 고용 균등실(고용 균등행정), 내각부의 남녀공동 참획국(남녀공동 참획 행정) 등이다.

### (3) 외국인 차별

2016년 6월 외국인 또는 외국출신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처의 추진에 관한 법률(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성립하고 6월 3일에 시행되었다.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대책법이란 인권이나 국적 등의 차별을 부채질 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법이다.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계발이나 교육 활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체제의 확충 등에 대해 정한 법률이다.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별적인 언동을 해소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가 교육이나 계발 홍보, 상담 창구의 설치 등 지역의 실정에 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나 계발 계몽 활동을 통해서 차별적인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은 이념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벌칙 규정은 없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각종 계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예정이라고 한다.

#### (4) 장애인

일본에서는 장애인 권리조약의 비준에 따라 장애자기본법을 개정하고 장애자 지원법 및 장애자 학대 방지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장애자차별 해소법이 성립했으며 2016년에 시행되었다. 장애자차별 해소법은 장애자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정해진 법률이며 정식 명칭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이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며 일반 기업이나 점포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률 골자는 장애자에 대해 필요한 배려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행정 기관에서는 장애자에 대해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및 법무국지국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 있다.

#### (5) 아이누

1899년에 제정된 홋카이도 구 토인보호법은 폐지되어 1997년 5월에 아이누 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아이누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메이지시대 이후의 동화 정책에 의해 소수민족인 아이누의 독자적인 문화가 상실되어 왔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아이누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아이누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깊게 하는 교육이나 홍보 활동, 아이누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계발 활동,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행하고 있다. 각 도시에 설치된 인권 계발 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는 각종 차별을 당하는 아이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명담 상담을 하고 있다.

#### (6) 인신매매

2004년 4월5일에 내각에 인신매매 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 회의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인신거래의 박멸, 방지, 인신거래 피해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거래 대책행동 계획이 책정되었다.

또한 인신매매 등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5년 6월에 형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상담업무, 조사, 구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다. 일본 인권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일본에서는 정부나 자치단체 혹은 인권 NGO 등의 민간단체가 다원적이고 중층적으로 인권상담이나 구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권전반을 다루는 정부기관은 법무성의 인권 옹호국이 있다. 노동자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은 노동기준감독소, 아동인권문제는 아동상담소, 여성의 인권문제는 후생 노동성의 지방노동국 고용 균등실(고용 균등행정), 내각부의 남녀공동 참획국(남녀공동 참획 행정)이 있다.

또한 도도부현의 기관에서는 노동 행정 사무소, 아동상담소, 복지 사무소, 청소년상담 센터 등이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되어 왔다.

전술한 대로 1949년에 제정된 인권옹호위원법에 따라 발족한 인권옹호위원회도 아래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위원이 인권상담이나 인권 계발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인권옹호위원회는 법무성 장관에게서 위촉된 민간 자원봉사자이며 국내 인권기관의 요건으로서 유엔 파리 원칙이 정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일본에 있어서는 현행의 법무성 감독 아래 놓인 인권옹호위원회제도에서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인권 규약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국내인권기관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법무성에는 형무소나 구치소 등을 관할하는 교정국이나 입국관리국이 있으나 구금 시설 내에서 일어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법무성의 인권 옹호 행정이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인권행정은 종적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안이 일어났을 때 각 부처가 협조하거나 제후를 취하면서 행정적인 구제를 행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점도 또한 문제이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현실상 문제는 인권 옹호국에는 강제적인 조사권은 부여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조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권침해 사건에 90%이상은 원조 즉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이나 법률 보조 기간을 알선 또는 법률상의 조언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주의는 2-3%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 옹호국이나 인권 옹호위원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해도 피해자에게는 조언이나 알선이 행해지는 것에 그치며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옹호 행정은 지명도도 없고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위원회에 상담을 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평이 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3369)</sup>.

2002년에 국내 인권기관으로서 법무성 아래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새로운 인권옹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치하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sup>3370)</sup>. 또한 태평양전쟁전에 일본에서는 국가 권력이 언론기관 보도를 억압하여 표현 자유를 침해한 역사적인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sup>3371)</sup> 이 새로운 인권옹호법이 또 다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sup>3372)</sup>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성급하게 법 성립을 시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채 2003년 10월에 중의원 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폐안이 되었다.

3369) 金子匡良「자치체 인권구제제도(自治体の人權救済制度)」『금후의 인권보장(これからの人權保障)』 유신동, 2007년.

3370) 아사히신문 2002년 2월 7일.

3371) 아사히신문 2000년 12월 5일.

3372) 과잉보도에 대해 인권관계기관이 개입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반발이 그 배경에 있다.

2008년 11월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한 국내인권기관을 내각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요강을 공표했고 그 요강을 통해서 파리 원칙에 따른 인권구제 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정부에서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부는 2011년 8월에 법무성 정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내 인권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다.

2012년 9월에는 새로운 법안 명칭을 인권위원회설치법안으로 밝혔으며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여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위한 내각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11월에는 새로운 인권침해 구제 기관인 인권위원회를 법무성 산하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인권위원회설치 법안 (인권구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sup>3373)</sup> 그 법안 취지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는 위원은 5명이며 그들은 중의원과 참의원 동의를 받은 후에 수상이 임명한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인권위원회는 법률상 정부에서 독립한 권한을 가지는 산조 위원회(三條委員會)로 설치되어 국회, 경찰, 법무성은 개입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라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권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강권적인 운영을 해도 내각이 그것을 시정하는 수단은 없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도 인권침해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데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서 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즉 인권침해의 정의가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있다는 표현 밖에 없어서 대단히 애매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 법률을 이용해서 정부가 자기들에게 부적절하고 듣기 싫은 발언을 탄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 내에서도 인권침해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언론통제가 행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그 밖에도 우파 정치가나 우파세력으로부터는 인권위원 자격으로 국적조항이 없는 것을 문제시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들은 인권옹호위원 자격에 대해 일본국적 소유 유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 참정권이 영주권을 갖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부여하게 되면 인권옹호위원회에 일본사람이 아닌 외국인도 취임할 수

---

3373) <http://my-dream.air-nifty.com/siryoun/files/zinken-gaiyou.pdf>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외국인에게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재판소가 헌법의 파수꾼으로서 헌법위반심사제를 통해서 인권에 위반한 법률이나 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와는 달리 인권침해를 구제와 인권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내인권기관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일본에 인권구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독립한 국내인권기관의 실체를 갖추는 인권위원회 신설이 불가결한 것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부록

### 인권옹호위원회법

####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자유인권 사상의 보급 고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에 인권옹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이것에 적용해야 할 제반의 기준을 정하고 인권의 옹호를 빠짐없이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의 사명)

제2조 인권옹호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적이 없도록 감시하고 만약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항상 자유인권 사상의 보급 고양에 노력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위원의 설치 구역)

제3조 인권옹호위원회는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함) 구역에 두는 것으로 한다.

#### (위원의 상수)

제4조 인권옹호위원회의 정수는 전국을 통해서 2만명을 초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각 시읍면마다의 인권옹호위원회의 수는 그 지역 인구 경제 문화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무대신(장관)이 정한다.

3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는 전 항의 인권옹호위원 수에 대해 법무대신(장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의 성격)

제5조 인권옹호위원회에게는 국가 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6조 인권옹호위원회는 법무대신(장관)이 위촉한다.

2 법무대신(장관) 위촉은 시읍면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해당 시읍면을 포괄하는 도도부현의 구역 내 변호사회 및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3 시읍면장은 법무대신(장관)에 대하여 해당 시읍면의 의회 의원 선거권을 소유하는 주민에서 인격 식견 높고 널리 사회의 실정에 통해 인권 옹호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회사업가 교육자 보도관계자 및 변호사회 기타 여성, 노동자, 청년 등의 단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원 가운데 해당 시읍면의 의회 의견을 듣고 인권옹호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4 법무대신(장관)은 시읍면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인권옹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읍면장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읍면 장이 해당 기간 내에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대신(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목에 규정하는 사람가운데 해당 시읍면을 포괄하는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변호사회 및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인권옹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인권옹호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받고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 의견 혹은 정치적 소속 관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7 법무대신(장관)은 인권옹호위원을 위촉했을 때에는 해당 인권옹호위원의 성명과 직무를 그 관계 주민에게 주지하게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시읍면장은 법무대신(장관)에게서 요구되었을 때에는 전 항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위원의 급여)

제8조 인권옹호위원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인권옹호위원은 정령이 결정짓는 곳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하기 위해서 요하는 비용의 변상 받을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9조 인권옹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후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직무 집행 구역)

제10조 인권옹호위원은 그 사람이 소속하는 시읍면 구역 내에서 직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의 직무)

제11조 인권옹호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1 자유 인권 사상에 관한 계몽 및 선전을 하는 것.
- 2 민간에 있어서 인권 옹호 운동의 조장에 노력하는 것.
- 3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그 구제 때문에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해서 법무대신(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는 것.
- 4 빈곤자에 대하여 소송 원조 기타 그 인권 옹호 때문에 적절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는 것.
- 5 기타 인권의 옹호에 노력하는 것.

(위원의 복무)

제12조 인권옹호위원은 그 사명을 자각하고 항상 인격식견의 향상과 그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의 지식 및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고 적극적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조 인권옹호위원은 그 직무상의 지위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면 안된다.

인권옹호위원은 그 직무를 공정하게 하는데도 어울리지 않은 사업을 경영하고 또는 그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기타의 단체의 현 직원이 되서는 안 된다.

(위원의 감독)

제14조 인권옹호위원은 직무에 관해서 법무대신(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위원의 해촉)

제15조 법무대신(장관)은 인권옹호위원이 왼쪽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관계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고 또는 직무를 게을리게 한 경우
- 2 심신의 문제 때문에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3 인권옹호위원회에 어울리지 않은 비행을 행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은 해당 인권옹호위원에게 해촉 이유가 설명하거나 또한 변명 기회가 주어진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협의회,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제16조 인권옹호위원회는 법무대신(장관)이 각도도부현의 구역을 몇 개에 나누어서 정하는 구역마다 인권옹호위원협의회를 조직한다.

인권옹호위원협의회는 도도부현마다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를 조직한다. 단 홋카이도에서는 법무대신(장관)이 정하는 구역마다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전국의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는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를 조직한다.

(협의회의 임무)

제17조 인권옹호위원협의회는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락 및 조정을 하는 것.
- 2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할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하는 것.
- 3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의견의 발표를 하는 것.
- 4 인권 옹호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
- 5 기타 인권 옹호상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것.

인권옹호위원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실적을 해당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회의 임무)

제18조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인권옹호위원협의회에 임무에 관한 연락 및 조정을 하는 것.
- 2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것.
- 3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의견의 발표를 하는 것.
- 4 인권 옹호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
- 5 기타 인권 옹호상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을 하는 것.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실적을 법무대신(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전국연합회의 임무)

전국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임무에 관한 연락 및 조정을 하는 것.
- 2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것.
- 3 인권옹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의견의 발표를 하는 것.
- 4 인권 옹호상 필요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
- 5 기타 인권 옹호상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을 하는 것.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실적을 법무대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의 표창)

제19조 법무대신(장관)은 인권옹호위원, 인권옹호위원협의회,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 또는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가 직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표창하고 그 실적을 일반적으로 주지하게 하는 것에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0조 이 법률의 실시 위한 수속 그 외 그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해진다.

##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현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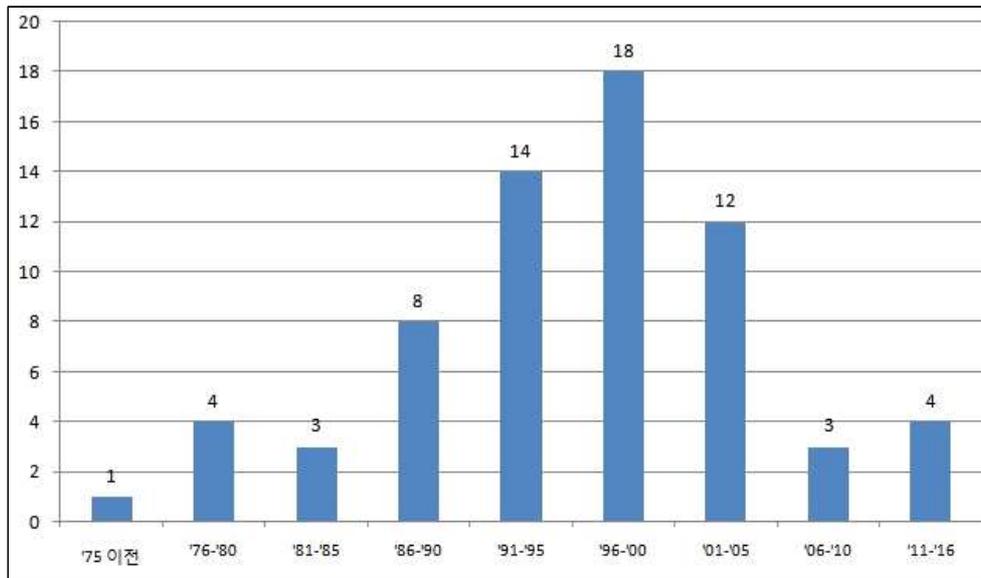
1. 조사 국가 일반 현황	1217
2. 법적 성격(설립근거법)으로 인한 기구의 유형화와 특징	1228
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유형화와 특징	1230
4. 지리적 위치에 따른 대륙별 기구 분석	1232
5. B등급 국가 특징 및 소결	1240



## 1. 조사 국가 일반 현황

### 가. 설립시기와 설립근거

국가인권기구로 가장 오래된 국가는 프랑스(1947년 설립)로 7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권기구가 존재한 기간은 평균 20년 정도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권기구는 1993년 파리원칙 발표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1990년대에 설립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이외에 약 40여 년간 인권기구가 활동한 국가들로는 캐나다(1977년), 뉴질랜드(1977년), 아이티(1978년), 스페인(1981년) 등이며, 최근 5년 미만기간 동안에 기구를 신설한 국가는 네덜란드(2012년), 헝가리(2012년), 핀란드(2012년), 아일랜드(2014년)이다. 이 중 아일랜드는 기존의 인권관련 기구였던 아일랜드 인권위원회(2001년)와 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2014년에 개편된 기구이다.



[그림 V-1]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연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명칭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옴부즈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구가 19개 국가, 인권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가 40개로 인권위

원회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국민보호소, 인권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8개 있었다.

<표 V-47> 기관 명칭에 따른 국가

기관명칭	국가수	해당 국가명
옴부즈맨	19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동티모르,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
인권위원회	40	캐나다, 멕시코, 네팔, 몽골, 뉴질랜드,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러시아, 스코틀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폴란드,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기타 (인권센터, 국민보호소)	8	칠레, 아이티, 요르단, 핀란드,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덴마크, 독일

\* 폴란드의 경우, 최고책임자를 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옴부즈맨이라 부르나, 기구명칭은 인권위원회임.

세계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을 근거로 설립된 국가가 36개국, 인권위법으로 설립된 국가가 26개국이 있었으며, 기타 5개 국가가 있었다.

<표 V-48> 설립근거법에 따른 국가 분류

근거법	국가수	해당 국가명
헌법	36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로코, 르완다,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인권위법	26	칠레, 니카라과, 캐나다, 네팔, 몽골, 뉴질랜드, 카타르, 요르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독일, 부룬디, 카메룬,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기타	5	팔레스타인, 북아일랜드, 러시아, 모리셔스, 영국

설립근거법 기타에 해당하는 국가들 사례를 보면, 평등법(영국) 경찰진정법(모리셔스), 벨파스트협정 및 북아일랜드법(북아일랜드), 헌법 이외에 시민권 및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러시아) 등 다양한 법적 기반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표 V-49> 기타 설립근거법에 해당하는 국가

인권위법 이외에 설립에 근거가 된 법	국가
인권위법+인권이사회 내규	팔레스타인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법	북아일랜드
인권보호법+경찰진정법+국가예방메커니즘법	모리셔스
평등법	영국
헌법+시민권 및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	러시아

#### 나. 위원장<sup>3374</sup>/위원의 선임절차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대통령 또는 왕으로, 국가 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경우가 21건, 국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3건, 대통령이나 왕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3건이었으며, 위원들을 먼저 선임하고 위원들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9건이 있었다. 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4.6년 이었다. 한편,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로는 대통령인 경우가 21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인 경우 9개국, 대통령과 국회 4개국, 그리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국가가 4개국이 있었다. 인권위원의 평균 임기는 4.6년으로 위원장과 유사하였다.

3374) 이 장에서 지칭하는 위원장에는 국가기구의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인권기구의 최고책임자를 의미 함.

<표 V-50> 위원장 및 위원 임명권자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 임명권자
대통령/왕	21	21
국회	23	9
대통령/왕 & 국회	3	4
위원/위원장	9	4
기타	7	10
미분류	4	19
합계	67	67

위원장 임명권자 중 ‘기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 인권기구 이사회 내에서 선출하는 경우(칠레, 팔레스타인, 오스트리아), 총리 또는 총독이 임명하는 경우(캐나다, 호주, 프랑스),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북아일랜드, 영국)로 다양하였다. 왕령에 따라 왕이 임명하는 경우는 모로코가 해당된다.

한편, 위원장 후보 구성 시 남녀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위원장의 임기 규정에 대해 70세까지(가나)라는 연령규정을 두거나, 이사회 내에서 선출하지만 임기는 무기한(덴마크)이라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종신직으로 분류되는 국가도 있었다.

<표 V-51> 위원장 임명권자별 국가 분류

위원장 임명권자	해당 국가명
대통령 (21)	파나마, 네팔,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코틀랜드, 카메룬, 케냐,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국회 (23)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베네수엘라, 몽골, 동티모르,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대통령/왕&국회 (3)	아이티, 잠비아, 부룬디
위원 (9)	카타르, 인도네시아, 그리스, 북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말라위, 토고
기타 (7)	칠레, 캐나다, 팔레스타인, 호주, 프랑스, 영국, 이집트

위원장의 임명에 있어서 의회 승인여부를 보면, 의회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35개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29개국이었다. 위 표에서 볼 때, 위원장 임명권자에 국회가 포함된 경우가 23개 국가였는데, 이에 6개국이 더 추가되어 최후에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로 최후에 의회 승인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우간다의 경우에도 의회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위원의 의회승인여부에 있어서도, 21개 국가가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표 V-52> 위원장 및 위원 임명의 의회승인 여부

	위원장 의회승인	위원의 의회승인
필요	35	21
불필요	29	34
미분류*	3**	12***
합계	67	67

\*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 위원장 의회승인 여부 관련 미분류 국가: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 위원 의회승인 여부 관련 미분류 국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아이티, 페루, 동티모르,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헝가리, 스페인

한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장관이 추천하고 총독이 임명하는 경우(뉴질랜드), 총리/총독이 임명하는 경우(캐나다, 호주),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북아일랜드, 영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인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팔레스타인),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경우(그리스),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경우(아일랜드) 그밖에 등으로 다양하여, 의회 승인 절차를 두지 않는 국가의 경우 공통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V-53> 위원장 및 위원 의회 승인 필요 국가

위원장	위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몽골, 동티모르,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러시아,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스페인, 부룬디, 케냐,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니카라과,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알바니아,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부룬디, 케냐,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35개국	21개국

<표 V-54> 위원장 및 위원 의회 승인 불필요 국가

위원장	위원
칠레, 캐나다, 네팔, 뉴질랜드,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 카메룬, 이집트,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가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베네수엘라, 캐나다, 네팔, 뉴질랜드,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팔레스타인,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포르투갈, 러시아,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 카메룬, 이집트,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가나
29개국	34개국

인권위원장의 재임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67개 국가 중, 자료 확인이 가능한 57개 국가 중 42개국이 재임가능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15개 국가는 재임이 불가하였다.

<표 V-55> 인권위원장 재임 가능 국가

재임여부	해당 국가명
재임가능 (42)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카타르,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러시아,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프랑스, 독일, 부룬디, 카메룬,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재임불가 (15)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베네수엘라, 네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필리핀, 덴마크, 스페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 가나

위원장 선출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가 21개국이며, 이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에 4개국, 아태지역에 2개국, 아프리카에 9개국, 유럽에 6개국이다. 위원장 선출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우는 후보구성에 시민단체 출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V-56> 위원장 선출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여부

	국가 수 (총 21)	위원장 선출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국가
아메리카	4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니카라과
아시아태평양	2	카타르,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9	부룬디, 카메룬, 말라위, 모리타니,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 탄자니아
유럽	6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 다. 예산

인권기구의 예산은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 기본법에서는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예산에 더하여 국제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국가예산과는 별도의 국내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예산과 더불어 국제협력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와 모로코가 해당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가 컨소시엄으로 기금을 마련한 경우이며, 이외 기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인권문제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인권문제를 조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57> 국가인권기구의 예산 출처와 국제단체의 재정지원 여부

예산출처	해당 국가	국제단체재정지원	해당 국가
국가예산	66	지원없음	39
기타	1*	지원있음	28
합계	67	합계	67

\*팔레스타인

<표 V-58> 국가별 국제단체의 재정지원 여부

국제단체 재정지원	해당 국가명
지원없음 (39)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캐나다, 뉴질랜드, 요르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폴란드, 스페인,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지원있음 (28)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파나마, 네팔, 몽골,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알바니아, 덴마크, 독일,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로코, 르완다,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안 제출은 정부예산안 제출이 32개국, 국회 예산안 제출이 8개국, 정부와 국회로 제출하는 경우가 2개국 있었다.<sup>3375)</sup>

<표 V-59>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안 제출

	국가 수	해당 국가명
정부예산안제출	32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캐나다, 아프가니스탄, 호주, 인도, 그리스,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부룬디, 카메룬,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토고,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국회예산안제출	8	몽골, 알바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정부, 국회 제출	2	아일랜드, 탄자니아
기타	2	말레이시아, 이집트
미분류*	23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네팔, 뉴질랜드, 카타르, 요르단,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헝가리, 러시아, 덴마크, 영국, 모로코, 가나
합계	67	-

\* 해당정보를 찾을 수 없음

3375)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하여 전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라. 주요 권한 및 역할

진정 및 조사/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35개국,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23개국이었으며, 관련 권한이 없는 국가가 5개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인권기구에 진정 및 조사/조정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국 내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필요성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15개국, 11개 국가였다.

<표 V-60> 주요 권한 및 역할

권한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필요성만 인지하고 없음.	미분류	합계
진정 및 조사/조정	35	23	5	4	67
인권교육	52	-	15	0	67
홍보	56	-	11	0	67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진정 접수-조사-피해자 구제(조정/법적 구제/법원 등 다른 기관으로의 회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지만, ‘없음’이나 ‘미분류’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예 진정 및 조사 역할이 없는 경우(프랑스, 룩셈부르크), 진정 접수와 조사 기능은 있으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역할은 하지 않는 경우(덴마크) 등에 해당한다. 덴마크는 진정이 아닌 상담을 접수하는데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인 인권위의 조정(mediation)이나 소송 지원 같은 완전한 사법적 지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정 및 조사/조정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다.

<표 V-61> 진정 및 조사/조정 권한 유무

	진정 및 조사/조정 권한 국가명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35)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캐나다, 뉴질랜드, 카타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 스페인, 케냐,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토고, 가나,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없음 (5)	콜롬비아, 요르단,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인권위원회의 주요 권한 중 소송지원 등에 대한 권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권조사의 권한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전문인력투입,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에 있어서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권한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특히 국가위기 시에도 조사를 중단받지 않을 권한에 대해서는 6개 국가만이 권한을 보장받고 있었다. 다음의 <표 V-16>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에 대한 직권조사 등 주요 권한 여부를, 그리고 <표 V-17>에서는 각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V-62> 직권조사 등 주요 기능 (국가 수)

	직권조사 여부	문서요구 제한여부	공공부문 조사가능 여부	전문인력 투입여부	증인소환 요구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	국가 위기 시에도 조사를 중단받지 않을 여부
권한 보장	43	22*	52	32	40	29	6**
권한미보장	23	44	14	30	26	35	53
미분류*	1	1	1	5	1	3	8
합계	67	67	67	67	67	67	67

\* 해당 정보 없음.

\*\* 전면적 보장이 3개 국가, 제한적 보장이 19개 국가

\*\*\* 전면적 보장이 2개 국가, 제한적 보장이 4개 국가

<표 V-63> 직권조사 등 주요 기능 (국가명)

	조사권한이 보장된 국가
직권조사권한보장 (43)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네팔, 몽골,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말라위, 모로코,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문서요구 (22)	니카라과, 동티모르, 부룬디(전면적 보장),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호주, 인도, 필리핀, 폴란드, 스페인, 케냐,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 탄자니아(제한적 보장)
공공부문 조사권한 보장 (52)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캐나다, 네팔, 몽골, 요르단, 동티모르,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 스페인,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 가나,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전문인력 투입권한 보장 (32)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캐나다, 몽골,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호주, 인도,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부룬디, 카메룬, 모리타니, 모리셔스, 르완다, 시에라리온, 잠비아, 나이지리아
증인소환요구권한 보장 (40)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캐나다, 네팔, 몽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 권한 보장 (29)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캐나다, 몽골, 뉴질랜드,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인도, 조지아, 헝가리,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덴마크, 영국, 폴란드,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모리타니, 르완다, 시에라리온, 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국가위기 시에도 조사를 중단받지 않을 권한(6)	조지아, 러시아 (전면적 보장), 볼리비아, 파나마, 스페인, 아일랜드 (제한적 보장)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의회에 대한 정책제안 기능이 있는 국가로는 조사대상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정 및 조사에 따른 권고이행에 있어서 후속조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1개 국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64> 정책제안 및 후속조치 기능 등 주요 기능 (국가명)

정책제안 기능(62)	네팔, 몽골, 뉴질랜드,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 폴란드, 스페인,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후속조치 기능(21)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캐나다, 네팔, 인도,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모리셔스, 르완다, 토고, 나이지리아

## 2. 법적 성격(설립근거법)으로 인한 기구의 유형화와 특징

이 절에서는 각 국가의 인권기구가 설립된 법적 성격에 따라 기구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설립근거법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헌법과 인권위법이 같이 해당되는 경우가 다른 대륙에 비해 많았다.

<표 V-65> 대륙별 설립근거법

근거법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합계
헌법	12	3	12	9	36
인권위법	3	9	4	10	26
기타	0	1	1	3	5
합계	15	13	17	22	67

설립근거법에 따른 위원장 임명권자에 있어서의 차이도 없었고, 위원장선출과정에 시민사회참여 여부도 설립근거법과는 관계가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시민사회 참여여부는 설립근거법 보다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거버넌스 형성구조, 또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임명할 때 의회 승인 절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회 승인여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사례수는 비슷하였으나, 헌법이 연계된 인권기구의 경우 의회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권위법만으로 설립

된 경우에는 의회승인 절차를 필요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6> 설립근거법별 위원장 의회승인 여부

	필요	불필요	미분류	합계
헌법	26	8	2	36
인권위법	8	17	1	26
기타	1	4	0	5
합계	35	29	3	67

인권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설립근거법의 관계를 진정 및 조사/조정, 직권조사, 공공부문 조사, 증인소환요구,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항목으로 살펴 보았다. 진정 및 조사/조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립근거법 별로 살펴보면, 헌법과 인권위법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인권위법만으로 설립된 국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헌법과 인권위법이 인권기구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경우 소송지원 등에 대한 권한은 좀 더 명확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권조사, 증인소환요구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조사 부문이나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권한에 대한 보장여부는 설립근거법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7> 설립근거법별 진정 및 조사/조정 권한

	진정 및 조사/조정				합계
	구체적 명시	있는 것으로 명시	없음	미분류*	
헌법	23	9	1	3	36
인권위법	10	12	4	0	26
기타	2	2	0	1	5
합계	35	23	5	4	67

<표 V-68> 설립근거법별 직권조사 권한

근거법	직권조사			
	권한 보장	권한 보장되지 않음	미분류*	합계
헌법	29	7	0	36
인권위법	13	13	0	26
기타	1	3	1	5
합계	43	23	1	67

### 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유형화와 특징

1993년 파리원칙 등장 이후 설립된 인권위는 진정 기능과 조사 기능, 조정 기능을 첫 번째 설립 근거법부터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 설립된 인권위의 경우 93년 파리원칙 등장 이후 근거법 개정을 통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사와 피해자 구제 기능을 포함한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추가한 경향이 있다.

국가인권기구가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유형화되는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권기구의 인권보호와 인권피해자에 대한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권한에 대해 국가별로 이러한 기능을 모두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진정 및 조사/조정권한과 직권조사 권한, 그리고 소송 지원 등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 권한 등의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구는 인권조사와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의 표를 보면, 대략 22개 정도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69> 진정 및 조사/조정·직권조사·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권한 보장 국가

해당 권한	국가 수	국가
진정 및 조사/조정권한 + 직권조사 권한	22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스페인, 말라위, 모로코, 토고, 가나, 우간다, 잠비아, 나이지리아
직권조사 권한 +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권한	19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몽골, 동티모르, 인도, 조지아, 헝가리,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진정 및 조사/조정권한 + 직권조사 권한 +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 등의 권한	8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동티모르,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가나, 나이지리아

이 같은 진정 및 조사/조정 기능, 직권조사 권한 등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보장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는 36개국으로, 이들 국가 중 진정 및 조사/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3개국,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9개 국가였다. 또한 권고에 따른 불이행시 취해지는 후속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체 21개였으며, 이 중 헌법에 기반한 국가가 14개 국가로, 이 기능 역시,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에서 더 많이 보장되고 있었다.

<표 V-70> 헌법에 기반한 국가의 진정 조사·직권조사·후속조치 권한 보장 국가

해당 권한	국가 수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
진정 및 조사/조정권한	23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동티모르, 필리핀,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케냐, 말라위, 모로코, 르완다, 토고, 가나, 우간다, 잠비아
직권조사 권한	29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이집트, 말라위, 모로코,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후속조치 권한	14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페루,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르완다, 토고

#### 4. 지리적 위치에 따른 대륙별 기구 분석

##### 가. 기구 유형과 설립배경 및 근거법

아메리카 대륙 인권기구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중남미 조사 대상국가 중 11개 국가에 해당하는 옴부즈맨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기구(칠레), 국민보호사무소(아이티), 국가인권위원회(멕시코)와 같은 인권기구이다. 또한 칠레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서, 법적 성격이 유사하였다. 헌법에 옴부즈맨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1990년대 옴부즈맨 법으로 연결이 된 유형이다.

유럽의 인권기구도 아메리카 대륙과 유사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옴부즈맨 유형이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인권위원회, 인권자문위원회, 연구소 등이다.

옴부즈맨 유형의 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조지아, 세르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다. 인권위원회의 유형을 인권기구로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영국,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국가인권자문위원회 / 인권옴부즈맨 별도), 룩셈부르크(인권자문위원회), 핀란드(인권 기구 산하에 국회 옴부즈맨), 덴마크(인권연구소/ 의회옴부즈맨), 네덜란드(인권연구소)가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괄호안에 표기한 바와 같이 인권자문위원회나 연구소를 두면서 산하에 또는 별도의 의회 옴부즈맨을 두고 있는 국가들(프랑스, 핀란드, 덴마크)도 있다.

유럽대륙 안에서도 정치적, 역사문화적으로 인접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유사한 유형의 인권기구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옴부즈맨,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조지아, 세르비아와 같은 동유럽 인근 국가들 역시 옴부즈맨 형태의 인권기구를 가지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인권연구소를 두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티모르가 옴부즈맨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인권기구가 설립된 배경은, 이처럼 헌법을 모태로 하여 자생적으로 헌법개정

을 통해 옴부즈맨사무소가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시민단체와 주변국의 지지(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를 통해 설립된 국가들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대륙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법치제도 도입도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필리핀, 동티모르는 헌법제정과 함께, 몽골, 요르단, 카타르 등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도입과 함께 국내에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인도의 경우 국내에서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했는데 국제인권보호단체의 운동과 원조국가들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호주는 가장 자생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호주 사회에서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인권위는 다양한 차별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차별에 대한 대책은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이다. 이는 성별, 장애, 연령, 성적취향으로 확산되었다.

설립시기와 배경을 보면 아태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의 파리원칙이 수립된 1993년 이후에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아태지역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설립이 개별 국가에 인권존중의 전통이 있었다기보다는 유엔의 주도에 따른 국제적 흐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7년부터 인권기구가 있던 뉴질랜드, 1986년 호주인권위원회의 전신인 호주 인권과 평등위원회를 설립하였던 호주와 1987년 헌법 제정과 함께 인권위원회를 설립한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국가인권기구는 대체로 3가지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선진국에서 독립 후에 특정후보 혹은 정당이 독재를 하거나 장기집권을 해온 후 정권교체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한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는 카메룬, 말라위, 모로코, 케냐 등이 있다. 두 번째 경우로는 독립후에 다민족국가인 탓에 오랜 내전이후 정치적 안정을 얻고서 위원회를 설립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로는 부룬디, 르완다, 시에라리온 등이 있다. 세 번째 경우로는 자국 내나 국제 여론의 압력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존재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권위원회의 힘이 약하고, 초기에 상대적으로 정부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토고, 모리셔스,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사례

가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아파르헤이트에 따라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사회전반에 걸친 차별이 있었으나, 아파르헤이트 철폐이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대륙별로 설립근거법을 살펴보면, 위 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로 설립된 경우가 다른 대륙에 비해 많았다. 또한 음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의 명칭과 실제 권한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대륙별 국가들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표 V-71> 대륙별 기구의 설립근거(법)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합계
헌법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12개국)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필리핀 (3개국)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로코, 르완다,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12개국)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9개국)	36
인권위법	칠레, 니카라과, 캐나다 (3개국)	네팔, 몽골, 뉴질랜드, 카타르, 요르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9개국)	부룬디, 카메룬,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4개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독일 (10개국)	26
기타	0	팔레스타인 (1개국)	모리셔스 (1개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영국 (3개국)	5
합계	15	13	17	22	67

남미의 설립근거법은 대개가 헌법과 해당 옴부즈맨/인권위원회법으로 해당이 되었고, 칠레와 니카라과의 경우만 헌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위원장의 임명절차는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의회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되었다.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의회와 대통령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와 의회가 단독으로, 또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콜롬비아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 내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수를 얻어 선출되는 과정으로 위원장을 선발하였다. 콜롬비아는 대통령이 후보를 선출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으로 임명하고, 칠레의 경우는 인권기구 내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면 의회 승인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위원장 자격에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국가는 페루와 아르헨티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직업군을 자격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후보군에 대해 의회투표를 하므로 후보목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볼리비아는 위원장 후보에 남녀 후보의 균형이 맞춰져야 하며, 시민단체가 후보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니카라과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목록 구성 시 시민단체 자문으로 구성한다.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갖는 위상은 그 근거규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권기구의 대부분은 헌법과 인권위법을 근거규범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인권기구는 그 민주화 수준과 관계없이 상당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직 인권위법에 따라 설립된 인권기구들은 아직 그 위상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정치적 상황도 내전 등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다.

#### 나. 예산 및 위원장/위원의 선임절차

아프리카의 경우 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직운영 및 재정운영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의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원조를 받거나 기부 등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카메룬, 이집트, 모리타니, 브룬디 등이 있다. 다만,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기관처럼 정부소속 회계책임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와 같이 예산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의회가 아닌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독립성에서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위원장을 자유롭게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는 파나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 해당되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전국단위 행정조직의 대표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동일하였으나, 페루의 경우 위원장은 5년, 부위원장은 3년으로 상이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 나라만의 사정과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 전문성,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선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로는 부룬디, 말라위, 모로코, 토고, 르완다 등이 있다. 또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전문성을 지닌 인권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학력과 전문성(예: 변호사, 법학박사, 심리학 박사 등)을 요구하며 제노사이드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대륙별로 위원장 임명권자를 살펴보면, 일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통령/왕 또는 국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고 있었다. 다만 기타의 내용을 보면, 인권기구 내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경우(칠레, 팔레스타인, 이집트), 총독/총리가 임명하는 경우(캐나다, 호주, 프랑스),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영국, 북아일랜드), 기구가 대학 내에 있는 경우 법학부 대표교수(노르웨이), 위원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한편, 장관 임명 중에서도 영국은 여성·평등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이한 사례이다.

<표 V-72> 대륙별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장 임명권자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합계
대통령/왕	파나마 (1)	네팔,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7)	카메룬, 케냐,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나이지리아(12)	스코틀랜드 (1)	21
국회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베네수엘라(11)	몽골, 동티모르 (2)	0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10)	23
대/왕/국회	아이티 (1)	0	부룬디, 잠비아 (2)	0	3
위원	0	카타르, 인도네시아 (2)	말라위, 토고 (2)	그리스, 북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5)	9
기타	칠레, 캐나다 (2)	팔레스타인, 호주 (2)	이집트 (1)	프랑스, 영국 (2)	7
미분류*	0	0	0	아일랜드,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4)	4
합계	15	13	17	22	67

그밖에, 시민사회 참여여부, 위원장의 의회승인은 대륙별로 큰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 다. 주요 권한 및 역할

차별구제의 절차에 대해, 아메리카 대륙은 대부분 진정을 접수한 이후, 국가 옴부즈맨/인권기구가 진정 당사자들과 해당 행정에게 권고를 하고, 이에 따라 권고대상 해당 행정은 옴부즈맨/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30일 안에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고, 옴부즈맨/인권기구는 진정인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알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맨사무소는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내용, 결론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 중단 및 침해된 권리 회복 증진, 권고를 통해 관례변화나 정책, 법/법규, 법령 등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해임이나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요청한다.

소송지원 등에 대한 권한과 관련하여, 아이티 국민보호사무소는 권고사항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민보호사무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의회와 대중에게 알리고, 해당 인권침해사태가 반복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멕시코 인권위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공무원의 항소 시, 상원 및 하원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제규약 및 헌법에 위배한 행위를 할 경우 위헌적 행동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진행, 위법적 행동에 대한 사법부 의견제출 및 소송지원의 역할을 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소송을 지원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차별구제 업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파리원칙에서 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에서 국가위원회는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고 차별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시켜 원만한 화해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등). 대부분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여부를 판단하지만 호주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호주의 경우는 초기에 피해 사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명령할 수 있었던 강력한 권한이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인권위원회의 차별구제에 관한 가장 강력한 업무는 차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이고 이후에는 중재를 강조한다. 사법조치는 연방법원등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인권위

는 특이하게 연방검찰총장의 업무영역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설립 당시의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주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베네수엘라는 2015년 B등급 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파리원칙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기로 한 상태이다. 그러나 같은 대륙에 속한 국가 중 파리원칙의 주요한 권한 및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직권조사 기능이 없지만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칠레가 있다.

아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가장 사법기능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 인권위는 조사 절차에서 민사 법원(Civil Court)과 같은 권한을 갖고 민사절차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사법 보완적 기능을 가지는데 이는 인도에서는 아직 인권 관련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반면 정부의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도인권위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특정 인권영역을 집중 이슈로 관심을 기울이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책임 기관에 위원회 권한으로 직접 권고할 수 있다. 필리핀도 사법기능은 없으나 독립적인 범죄수사 및 법의학적 조사 수행을 하는 등 강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가장 사법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데 인신매매 등 심각한 침해 사례를 제외하고는 처벌보다는 가이드라인, 인권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와 관련한 직권조사 권한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정이나 민원을 받으면 그를 조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르완다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사법경찰을 동원할 수 있고, 이집트, 카메룬, 케냐,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선거감시와 부패를 감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차이는 국가별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령 르완다의 경우에는 극심한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 교훈이 되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말라위 인권위의 경우에는 인권침해 방지역할보다도 민주주의수호 역할을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말라위가 30년이란 오랜 독재통치를 경험한 나라였기에 나온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유럽대륙의 조사된 모든 국가들은 인권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크게 구분 가능한 유형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차

이가 발견되는데, 국가마다 유형에 따라 위상이 더 높고 낮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옴부즈맨 유형의 기구(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조지아, 세르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진정, 조사, 권고 기능을 가지고 이를 주된 역할로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영국,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트랜드, 프랑스(인권옴부즈맨 별도), 룩셈부르크(인권자문위원회), 핀란드, 덴마크(인권연구소/ 의회옴부즈맨), 네덜란드), 그 역할은 옴부즈맨보다는 더 포괄적이지만, 진정처리 기능이 없는 경우들도 있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별도의 의회 옴부즈맨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인권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입법 정책 자문에 더 집중을 하고, 인권연구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보다 연구에 중심기능을 두고 있다.

## 5. B등급 국가 특징 및 소결

이번 조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태국과 방글라데시, 유럽의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다섯 국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태국과 방글라데시는 헌법과 위원회법을 설립근거로 두고 2000년대에 설립되었다. 태국은 2007년 헌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군부 쿠데타로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였고 2016년에 군부가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군부가 장악한 이후에도 이전 헌법의 내용을 무효화시켰지만 국가인권위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국은 직권조사 부분을 제외하고 진정 및 조사 등의 활동과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의 채용,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B등급으로 하락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sup>3376)</sup>

방글라데시는 2011년에 설립된 신생기구로서, 75%의 예산을 개발협력사업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진정 및 조사/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방글라데시 인권위원회는 방글라데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조혼에 대해 조혼제한법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권고하며, 여성들의 인권,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

3376) <http://www.nationmultimedia.com/news/opinion/aec/30278458> (검색일 2016. 11. 8)

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달리트계급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의 초안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는 옴부즈맨위원회이며, 자국의 정치인이나 총리가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입되었으며, 1977년 하원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진정 및 조사/조정권한이 있고, 교육과 홍보활동도 활발하다. 오스트리아 인권위원회는 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맨 위원회는 옴부즈맨 국제기구의 본부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다양한 옴부즈맨 기구들과 함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노르웨이 국립대학인 오슬로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어 위원장 역시 이 대학의 정교수 중 한명이 맡고 있다. 노르웨이 인권센터는 대학 안에 위치한 만큼 그 역할이나 기능도 다른 인권기구들과는 차이가 많아, 교육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석사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슬로대학과 함께 국제인권 여름학교(1개월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실무자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다양한 학술행사를 제공한다. 스웨덴은 평등옴부즈맨으로 기존의 4개의 옴부즈맨이 하나로 합쳐진 기구이다. 스웨덴은 성평등 분야 정책에 있어서 매우 앞선 국가이면서도 평등옴부즈맨은 국내에서 육아휴직에 관한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는 않는지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밖에, 성별, 성전환 정체성, 연령, 장애, 종교 등에 대한 차별에 대해 모든 이들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 평등 옴부즈맨은 이처럼 특히 차별에 대한 감독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정부에 대해 법안 개정 및 반차별 제도에 대한 도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인권기구는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인권기구들과는 설립형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나 조정,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에 대한 권한은 없으며, 옴부즈맨 기구들의 활동인 정부에 대한 감독·감시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 인쇄일 | 2016년 11월 24일  
| 발행일 | 2016년 11월 24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국제협력팀 02)2125-9882  
| F A X | 02)2125-0918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533-6 93340 비매품